

FTA 관련
질의답변·지시지침 사례집

2024. 2.

목 차

질의회신 _ 협정별

1. 공 통

1 B/L양수도 거래시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수입자	1
2 BOM 작성 방법 및 증빙자료	1
3 E-mail로 받은 원산지증명서를 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1
4 FTA관세특례법상 이의제기 절차	1
5 FTA수입자 원산지증명서 원본보관 의무	2
6 FTA특례법 제17조 제1항의 해석에 관한 질의	2
7 FTA 협정상 OEM 생산제품의 원산지 관련	2
8 FTA협정세율 적용시 제3국 송품장(INVOICE)발행시 원산지증명서 기재방법은	3
9 HS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매용 세트물품”으로 분류된 상품의 경우 원산지결정기준은 어떻게 적용하여야 하는지	3
10 OEM, ODM방식 생산물품의 수입시 FTA적용 가능여부 등	3
11 국내제조확인서 관련	3
12 대체가능물품의 재고물품 관리법	4
13 마른김의 원산지충족 입증자료	4
14 무상물품의 원산지기준 판정	4
15 법인 단위업체의 원산지신고서 작성방법	4
16 법인사업자 분할시 인증수출자 지위 인정가능여부	4
17 보세공장 반입물품 재 반입시 협정관세 적용 가능여부 관련	4
18 보세공장으로 원료수입 후 생산한 물품이 FTA협정세율이 적용가능한가.....	5
19 보세공장 잉여물품의 협정관세적용 관련	5
20 부가가치기준물품의 원산지소명서 작성방법.....	5
21 부가가치기준 비원산지재료비 공제 관련	5
22 사본을 제출토록 허용한 FTA의 경우 수입신고 수리 후 협정 관세 신청할 때, 스탬프 날인 생략이 가능한지 여부	6
23 쌀 완전생산 입증서류	6
24 생산자가 다수인 경우 원산지증명서 작성 방법	6
25 생산지원비의 협정관세 사후적용 가능여부	7
26 소매용 포장용기 등 원산지확인서 관련	7
27 수돗물의 원산지 입증 자료	7
28 수리비, 왕복운임, 임가공비의 FTA 협정관세 적용 여부 질의	7
29 수리후 협정관세 적용 여부 질문	7
30 수입신고서상 수출자와 C/O상의 수출자가 상이한 경우 C/O 유효성 여부	8
31 수입신고 이후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로 협정관세 사후적용 가능여부	8
32 수입신고 이후 소급발급된 원산지증명서로 협정관세 사후적용 가능여부	8
33 수출신고서상 제조자가 미상으로 기재된 경우 수출물품의 제조자 중 하나의 업체가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가능 여부	8
34 수출용원재료 원산지확인서 관련	9
35 수확시기에 따른 물품의 직접운송 해당여부	10
36 스크랩 및 폐기물의 완전생산 입증자료	10
37 완전생산 입증서류	10
38 우리나라 수출세번과 상대국의 수입세번이 상이한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법	10
39 원산지결정기준 관련 질의	11

40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관련	11
41	원산지 신고서 작성 요건	11
42	원산지증명서 결정기준이 서로 다른 경우 협정관세 적용 가능 여부	11
43	원산지증명서 구축관련 질의	11
44	원산지증명서 기재내용의 경미한 차이 인정여부	12
45	원산지증명서 발급기한의 해석	12
46	원산지 증명서 발급시기와 협정관세 사후적용 가능여부	12
47	원산지증명서 보관 관련	12
48	원산지증명서 사본제출 스탬프 관련 질의	13
49	원산지증명서와 수입신고서의 세번이 상이한 경우 협정적용 가능여부	13
50	원산지증명서와 수입신고서의 세번이 상이한 경우 협정적용 가능여부	13
51	원산지증명서와 수입신고서의 세번이 상이한 경우 협정적용 가능여부	13
52	원산지증명서와 수입신고서의 세번이 상이한 경우 원산지증명서 보완방법	13
53	원산지증명서 원본 보관 의무	14
54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스캔 등 전자이미지화 했을 경우 원본 인정 여부	14
55	원산지증명서 유효성 여부	14
56	원산지증명서의 세번과 수입신고서의 세번이 상이한 경우 원산지증명서 보완방법	14
57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 계산방법	14
58	원산지증명서 제출 및 발급면제 관련	15
59	원산지증명서 지연 발급시 적용 방법	15
60	원산지증명서류 등의 전자문서 보관 가능여부	15
61	원산지포괄확인서의 포괄기간	15
62	원산지포괄확인서의 포괄기간 작성방법	15
63	원산지확인서 공급자 기재 방법	15
64	원산지확인서 발급가능 여부	16
65	원산지확인서 발급 전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	16
66	원산지확인서의 공급받는 자	16
67	원산지확인서 작성방법 관련	16
68	원산지확인서 작성 여부 질의	17
69	원산지확인서 재발급시 유효성 여부	17
70	원재료가 모두 역내산으로 가공공정 적용시 공정기준 충족 여부	17
71	유효기간 경과 원산지증명서 정정 가능여부	17
72	유효기간 경과 원산지증명서 정정 가능여부	17
73	유효기간 경과 원산지증명서 정정 가능여부	17
74	인증수출자의 자율점검 제출기한	18
75	인증수출자 인증방법	18
76	임가공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	18
77	자유무역지역 반입물품 수입시 적출국을 한국으로 기재 시 협정적용 가능 여부	18
78	자유무역지역 반입물품의 사후적용신청 가능여부	18
79	자재명세서(BOM) 작성시 간접재료 기재 방법	19
80	재고관리기법 적정성관련 질의	19
81	재수입물품에 대한 협정적용 방법	19
82	제3국 발행 통과선하증권의 인정여부	19
83	제품생산시 발생한 스크랩의 역내산 인정여부	20
84	주택건축용 자재(가공목재) 수입물품의 FTA 협정관세 적용 여부	20
85	지하수 및 수돗물의 원산지와 원산지입증자료	20
86	지하수 및 수돗물의 원산지입증자료	20
87	지하수의 원산지 입증자료	20
88	직접운송에서의 '경유'의 의미	21
89	직접운송 요건 충족 증명방법	21
90	최소허용기준 및 원산지소명서 작성방법 관련	21
91	품목별 인증수출자 변경신고 대상	21
92	할인받은 물품의 부가가치기준 적용시 분모대입 가격	21

92	해외기술개발 비용이 포함된 자동차 제어용 칩을 수입하면서 실제 거래가격에 해외기술개발비용을 추가하여 협정세율 적용 가능 여부	22
93	협정관세 사후적용 기간 및 제출서류	22
94	협정관세 사후적용 방법	22
95	협정관세 사후적용 재신청 가능여부	22
96	협정관세 사후적용 후 가산세 환급 여부	22
97	협정관세 적용 제한자 관련	23
98	협정관세 적용후 송품장 가격 증액시 협정관세 적용 방법	23
99	협정발효일 이전 공급된 물품의 원산지포괄확인서 발급 가능 여부	23
100	협정 발효 전 공급물품의 원산지확인서 발급	23

2. 한-EU FTA

1	AWB의 통과선하증권 인정 가능 여부	24
2	BWT거래시 직접운송 충족 가능 여부	24
3	Delivery Note에 작성한 원산지신고서 인정 가능 여부	24
4	EU 국가 내에 있는 수출자가 EU역내에 있는 다른 나라의 물품을 수출해도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24
5	EU국으로 수출된 물품을 수입하여 표면처리 가공 후 재수출시 국내산 인정 여부	24
6	EU 소재 수출자가 다른 EU 수출자에게 발행한 원산지신고서 인정 여부	25
7	EU에서 수입했던 6,000유로 이하의 원산지제품을 수리를 목적으로 재수출했다가 다시 재수입되는 경우, 수리비를 탁송화물 전체가격에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 및 인증 받지 않은 수출자가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지	25
8	EU역내 국가에서 분리작업한 화물의 직접운송 요건 충족여부	26
9	EU역내국가에서 환적된 경우 환적표기 여부	25
10	EU역내국 경유시 직접운송 충족 여부	25
11	EU역내 수출자가 아닌 비당사국에서 재발행한 송장에 원산지 신고문안이 기재된 경우 유효성 여부	26
12	EU역내의 보세창고(Warehouse)에서 작성한 원산지신고서의 적정성 여부	26
13	HS7228.20호의 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 관련 질의	26
14	SKD(Semi Knock-Down)상태 증명	26
15	6천유로 초과 단일 탁송화물 해당여부	27
16	6천유로 초과 단일 탁송화물 해당여부	27
17	6천유로 초과 단일 탁송화물 해당여부	27
18	개성공단産 원재료가 투입된 완제품의 원산지판정(한-EU, 한-미 FTA)	27
19	개인 수출자 작성 원산지신고서 유효성 여부 관련	28
20	개인 이사차량 수입시 협정적용 가능여부	28
21	경유화물의 직접운송 요건 충족여부	28
22	공급국과 생산국이 다른 경우 원산지신고서 발행 등	28
23	공장도가격 산정 관련	29
24	관세부과 제척기간 관련	29
25	관세청 지침과 상이한 스페인 인증수출자 번호체계의 정확성 문의	29
26	국내 BWT거래시 협정적용 가능여부	30
27	국내 양수도 거래로 원산지신고서상의 수입자와 납세의무자가 상이한 경우 협정관세 적용 가능여부	30
28	국내에 도착된 이후 그 수출자가 인증수출자로 지정된 경우	30
29	국내에서 회수한 중고품의 원산지결정기준(완전생산기준) 해당 여부	30
30	노르웨이 업체가 스페인산 제품을 한국으로 수출시 원산지 신고서 인정 여부	30
31	단일 탁송화물에 원산지 물품과 비원산지 물품이 혼재된 경우	31
32	덴마크에서 중국을 거쳐 반입된 물품이 최초 B/L과 중국발행 B/L이 다른 경우 협정적용 가능 여부	31
33	독일의 수출자가 네덜란드 원산지제품 수출시 원산지 신고문안	31
34	독일의 인증수출자가 영국산 제품을 영국에서 선적 운송하는 경우 독일에서 작성된 신	31

고서 인정 여부	
35 말어권 원산지증명서 가능 여부(한-EU, 한-미 FTA)	31
36 면세점에 반입된 물품의 수입신고시 협정관세 적용 가능 여부	32
37 보세건설장 건설완료물품의 원산지결정	32
38 보세건설장 반입물품의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 여부	32
39 보세건설장 반입설비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 관련 질문	32
40 보세건설장 사용소비물품의 FTA 적용 여부	32
41 보세판매장으로 반입된 물품을 국내로 수입하는경우 협정적용 가능여부	33
42 불인정공정 해당여부에 대한 질의	33
43 브렉시트 이후 영국 경유 화물의 직접운송 충족여부	33
44 비당사국 경유물품의 직접운송 요건 입증자료	33
45 비당사국 수출자 발행 원산지신고서의 유효성	34
46 비당사국에서 우리나라로 운송된 경우 협정관세적용 가능 여부	34
47 비당사국에서 선적된 물품의 직접운송요건 충족여부	34
48 비인증수출자가 발급한 원산지신고서의 유효성	34
49 비인증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의 인정여부	34
50 비인증수출자의 원산지신고서 작성가능여부	35
51 비인증수출자의 원산지증명서 작성가능여부	35
52 사후적용 관련	35
53 상호가 변경된 경우 이전 상호로 발행된 원산지신고서의 유효성	35
54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수출자 작성 원산지증명서의 인정 가능 여부	36
55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원산지신고서 작성자	36
56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원산지신고서 작성자	36
57 생산자와 수출자가 상이한 경우 수출자 원산지증명서 발급가능여부	36
58 생산지원비의 협정관세 사후적용 가능여부	36
59 선하증권 등 운송서류의 상업서류 인정 여부	37
60 선하증권에 원산지신고문안 작성시 원산지신고서로 인정 가능 여부	37
61 송장 등이 제3국에서 다시 발급된 경우	37
62 송장 양식과 일부 상이한 경우 한-EU FTA 적용 가능 여부	37
63 송품장 등 상업서류가 비당사국에서 다시 발행된 경우 EU 역내 수출자가 원산지신고서를 작성, 제출시 협정관세 적용 여부	37
64 송품장에 기재된 HS번호와 수입신고시 HS 번호가 다른 경우 협정관세 적용 여부	38
65 송품장이 아닌 다른 상업서류에 원산지 신고문안이 작성된 경우 유효성 여부	38
66 수리물품 재수입시 가공비와 운임의 협정 적용 가능 여부	38
67 수리후 협정관세적용 신청기간 관련	38
68 수리후 협정관세 적용신청 가능 여부	39
69 수입신고서의 수출자와 원산지증명서의 수출자가 상이할 경우 당해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 여부	39
70 수출물품의 세번이 계약상대국과 상이한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법	39
71 수출자와 생산자가 상이한 경우 비당사국 생산자 앞으로 발행된 원산지신고서의 유효성	39
72 수출자와 생산자가 상이한 경우 생산자 발행 원산지신고서의 유효성	39
73 수출자와 생산자가 상이한 경우 생산자 발행 원산지신고서의 유효성	40
74 수출자와 생산자가 상이한 경우 수출자 발행 원산지신고서의 유효성 여부	40
75 수출자와 생산자가 상이한 경우 원산지신고서의 유효성	40
76 수출자와 생산자가 상이한 경우 원산지신고서 작성자	40
77 수출자와 생산자가 상이한 경우 원산지신고서 작성자 및 기재사항	40
78 수출자와 생산자 상이시 협정관세 적용가능여부	41
79 수출자와 제조자가 상이한 경우 제조자 작성 원산지신고서의 유효성	41
80 수출자의 범위	41
81 수출후 인증수출자 자격 취득시 협정관세 사후적용 가능여부	41
82 수출후 인증수출자 자격 취득하여 소급발급된 원산지신고서의 유효성	42
83 수출 후 인증수출자 취득하여 발행한 원산지신고서로 협정관세 사후적용 가능여부	42
84 스위스에서 사용중인 설비를 네덜란드 수출자가 한국으로 수출시 적용	42

85	스위스 원산지 물품이 독일을 경유하는 경우 증빙 서류는	42
86	스탬프를 사용하여 작성한 경우	42
87	신발의 갑피와 안창 원산지 결정기준	43
88	알루미늄빌렛(제7601.20호)의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대상	43
89	어획물 완전생산기준 입증서류	43
90	여러국가에서 생산된 물품 수입시 협정관세 적용 가능 여부	43
91	여행자 휴대품 간이통관시 구매영수증	44
92	여행자 휴대품 간이통관시 구매영수증에 판매자 서명 누락	44
93	여행자휴대품 원산지신고 관련	44
94	여행자휴대품 원산지신고 문안 작성방법	44
95	여행자휴대품의 원산지신고서 작성방법	44
96	여행자휴대품의 협정관세 적용 가능여부	45
97	여행자휴대품의 협정관세 적용을 위한 구비서류	45
98	역외산물품을 수출국에서 소분작업시 협정 적용 가능 여부	45
99	영국의 수출자가 프랑스에서 생산한 물품을 프랑스에서 수출시 협정관세 적용 여부	45
100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이외에 직접운송 원칙의 적용범위는	46
101	원산지가 협정당사국인 물품과 당사국이 아닌 물품이 혼재된 경우 원산지 신고문안 관련	46
102	원산지가 협정당사국인 물품과 당사국이 아닌 물품이 혼재된 경우 원산지신고서 유효성 여부 ..	46
103	원산지상품 해당여부	46
104	원산지 사전심사 결정 이전 협정관세 적용 가능 여부	46
105	원산지신고문안 관련	47
106	원산지 신고문안 수기 작성에 대한 질의	47
107	원산지 신고문안에 작성하는 국명표기는 방법은	47
108	원산지 신고문안에 표기하는 원산지 및 표기방법	47
109	원산지 신고문안을 협정에서 정하는 문구와 인증번호 기재 위치가 다르게 기재된 경우,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되는지	48
110	원산지신고문안을 협정에서 정하는 문구이외에 다른 문구가 포함된 경우, 유효한 원산지 증명서로 인정되는지 여부	48
111	원산지신고문안의 “ EUROPEAN UNION” 적정성 여부	48
112	원산지 신고문안의 명백한 형식적 오류 인정 범위	48
113	원산지신고문안의 원산지표기	49
114	원산지신고문안의 유효성 질의	49
115	원산지 신고문안이 협정과 다른 경우 유효성 여부	49
116	원산지 신고문안 인정 여부	49
117	원산지신고서	49
118	원산지신고서 관련	50
119	원산지신고서 관련	50
120	원산지신고서 관련	50
121	원산지신고서 관련	51
122	원산지신고서 관련	51
123	원산지신고서 관련 질문	51
124	원산지신고서 국가명 기재방법	51
125	원산지신고서 기재방법	51
126	원산지신고서로 송품장이 아닌 다른 서류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52
127	원산지 신고서 및 수출자	52
128	원산지신고서 상세내역 관련	52
129	원산지신고서 신고문안과 다른 경우	52
130	원산지 신고서에 국가명이 “UE” 로 표기된 경우 유효 여부	53
131	원산지신고서에 원산지국가 기재 방법	53
132	원산지신고서에 원산지 제품과 비원산지 제품이 혼재되어 기재된 경우 적용 가능 여부	53
133	원산지신고서 원산지국가 표기방법	53
134	원산지 신고서 유효성여부 관련	53
135	원산지신고서 유효 여부	54

136	원산지신고서의 유효성	54
137	원산지신고서 인정가능여부(원산지신고서 작성일자 관련)	54
138	원산지신고서 작성가능 서류	54
139	원산지신고서 작성관련	55
140	원산지신고서 작성관련	55
141	원산지신고서 작성관련	55
142	원산지신고서 작성방법	55
143	원산지신고서 작성자	56
144	원산지신고서 작성주체	56
145	원산지신고서 적용 관련	56
146	원산지신고서 적정 여부	56
147	원산지신고서 적정 여부	57
148	원산지신고서 종류 및 인정요건	57
149	원산지신고서 표기 관련	57
150	원산지신고서 형식요건 관련	57
151	원산지신고서(편지) 관련	58
152	원산지 유럽연합 인정 누적기준	58
153	원산지제품과 비원산지제품이 혼재된 경우 원산지 신고문안 기재방법	58
154	원산지제품과 비원산지제품 혼재시 원산지신고서 작성	58
155	원산지제품 해당 여부	58
156	원산지증명 관련	59
157	원산지증명방식 관련 질문	59
158	원산지증명서 관련	59
159	원산지증명서 국가명 표기방법	59
160	원산지증명서 사본 보관 관련	60
161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확인 관련	60
162	원산지 증명서 작성방법	60
163	원산지증명서 적용 관련 질의	60
164	원산지증명서 제출면제규정 적용 방법	60
165	원산지증명서 제출면제규정 해당 여부	61
166	원산지증명서 효력 여부 관련	61
167	원산지증빙서류 관련	61
168	원산지코드	61
169	원산지확인서 작성 관련	62
170	원상태 수출시 원산지신고서 작성가능여부	62
171	의류 원산지 결정기준	62
172	의류(61류)의 원산지결정기준	62
173	이사화물차량의 협정 적용 가능 여부	62
174	이탈리아 수출물품을 벨기에 원산지신고서	63
175	인보이스에 수출자명 대신 스탬프로 표기된 경우 인정 여부	63
176	인보이스에 제3국에 소재하는 자가 기재된 경우	63
177	인증받지 아니한 수출자 인정 여부	63
178	인증수출자가 EU내 다수의 제품에 대한 각각의 원산지를 표기할 경우 인정 여부	63
179	인증수출자가 인도증서(Delivery Note)에 원산지 신고문안 기재시 인정여부	64
180	인증수출자 관련	64
181	인증수출자 번호기재란에 REX번호 기입시 인정가능여부	64
182	인증수출자번호 유효성 관련	64
183	인증수출자번호 유효성 관련	64
184	인증수출자 번호의 송품장 기재 위치에 따른 유효여부	65
185	인증수출자 번호체계 관련	65
186	인증수출자(타사가 수출국 인증수출자) 관련	65
187	자동차부품 수입 관련	65

188	자유무역지역 반입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 여부	66
189	자유무역지역에서 국내로 수입하는 물품의 특혜관세 적용 관련	66
190	자유무역협정관세 적용	66
191	작성일자가 누락된 원산지신고서의 인정 가능 여부	67
192	적용 관련	67
193	적용 관련 등	67
194	적용 관련 질의(한-EU, 한-미 FTA)	68
195	적용 방법 및 사후적용 가능여부	68
196	적용시점 질문	69
197	적용신청기간	69
198	적용신청기간 질의	69
199	적용 여부	69
200	적용 여부 관련	70
201	전자상거래 물품(Ebay 사이트 구매)의 협정관세 적용 여부	70
202	제1504.10호의 원산지결정기준 해석방법	70
203	제3국 BWT거래시 협정적용 가능여부	71
204	제3국 경유 인정여부	71
205	제3국 발행 송장 거래시 EU역내 생산자의 원산지신고서 발급 가능여부	71
206	제3국 발행 송장 거래시 생산자 발행 원산지신고서의 유효성	71
207	제3국 발행 송장거래시 생산자 발행 원산지신고서 유효성	71
208	제3국 발행 송장 거래시 생산자 작성 원산지신고서 인정여부	72
209	제3국 발행 송장 거래시 협정관세적용 가능여부	72
210	제3국 발행 송장시 협정관세 적용 가능 여부	72
211	제3국 발행 송장에 원산지신고문안 작성한 경우 인정 가능 여부	72
212	제3국 소재자 원산지신고서 관련	72
213	제3국 소재자와 거래계약 체결	73
214	제3국 소재 창고에 보관하기 위해 경유하는 경우 협정 적용여부	73
215	제3국 송장 거래시 생산자 원산지신고서 인정 가능 여부	73
216	제3국 송장거래시 원산지신고서 유효성	73
217	제3국에서 송장이 다시 발행되는 경우 협정관세 적용 여부	74
218	제3국에서 송품장이 다시 발행되는 무역형태의 경우, EU 역내 수출자가 발행하는 서류 인 Customs Origin Declaration에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인정여부	74
219	제3국에 소재한 업체가 송품장을 작성하는 경우 인정범위는	74
220	제3국에 있는 제3자 물류창고에 보관하였다가 제3자가 수출판매하는 경우 제3국 경유 인정 여부	74
221	제5903호 원산지 결정기준	75
222	제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원산지신고서	75
223	제조자와 수출자가 상이한 경우, 제조자 작성 원산지신고서의 유효성	75
224	중간재 적용가능 여부	75
225	중고수입 설비 등 관련	75
226	직접운송 관련	76
227	직접운송 관련	76
228	직접운송 관련	77
229	직접운송 원칙	77
230	직접운송 인정여부	77
231	직접운송 입증서류 관련	77
232	직접운송 증명방법	78
233	직접운송 증빙서류	78
234	직접운송 충족입증서류	78
235	총금액이 150달러 미만인 물품의 협정관세 적용 여부	78
236	탁송화물 가격산정 관련	78
237	탁송화물의 가격산정 관련	79
238	통과선하증권의 해석	79

239	특혜관세 적용 여부 관련	79
240	폴란드 인증수출자로부터 원산지증명서 소급발급 여부	79
241	품목별인증수출자 인증서 양식 관련	79
242	프랑스의 물류창고가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아 독일 수출자가 발행한 상업서류에 원산지 신고문안을 작성하는 것이 가능한지	80
243	프랑스의 업체가 인증수출자인지 여부	80
244	하자있는 인보이스로 협정적용 후 사후에 보완된 인보이스로 재신청 가능 여부	80
245	한-EU FTA 원산지증명서로 'EUR1' 이 적용가능한지 여부	80
246	한-영 FTA발효 이후 영국 경유 화물의 직접운송 충족여부(BWT거래시)	80
247	해외직구물품의 협정적용 방법	81
248	협정관세 사후적용	81
249	협정관세 적용방법	81
250	협정관세적용을 위한 필요서류	81
251	협정문구와 인증번호 위치	81
252	협정세율 적용 관련	82
253	협정적용가능 여부	82
254	협정적용 관련	82
255	협정적용신청서 작성시 수출자 기재방법	82

3. 한-미 FTA

1	B/L양수도 거래시 협정관세 적용 가능 여부	83
2	HS2009.90호의 원산지결정기준	83
3	계절관세 적용 관련	83
4	곡류 가공품 수입 관세 관련	83
5	골프채 부분품을 중국, 미국에서 수입하여 조립 등 가공한 경우 우리나라 원산지 인정여부	84
6	국가간 품목분류 상이 시 한-미 FTA 적용 여부 질문	84
7	관세면제 해당여부 질의	84
8	관세율 할당물량 추천서 관련 질의	84
9	국내 BWT거래시 C/O수입자와 실제 수입자가 상이한 경우 협정관세적용 방법	85
10	긴급수입제한조치(ASG) 품목 관련, 수입신고 취하지 배정물량 복구 여부	85
11	다른 세번의 품목별 원산지기준 적용가능여부	85
12	미국산 물품이 네델란드를 경유시 증빙자료 요건	85
13	미국산 물품이 중국 경유시 중국의 재수출증명서가 직접운송 증빙서류 가능 여부	85
14	미국산 물품이 홍콩 경유시 적재항이 홍콩으로 표기된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86
15	미국산 제어반을 독일로 수출하여 독일에서 소프트웨어를 입력한 후 수입시 협정관세 적용 여부	86
16	미국에서 생산된 메모리폼 배개의 커버가 중국산인 경우 협정관세 적용 여부	86
17	미국 제조라인 전체를 한국에서 수리, 개조 후 미국으로 재수출시 협정 적용 가능 여부	86
18	미화 1천달러 미만 제품에 대한 협정세율 적용 방법	86
19	미화 1천달러 이하인 주류에 표기된 방법에 따른 협정 적용 가능 여부	87
20	발급번호가 없는 원산지 증명서 등의 협정관세신청서 기재 방법	87
21	발전기 구성요소별 신고하던 것을 하나의 기능단위로 신고할 때 협정 적용 방법	87
22	보세건설장 조립물품에 대한 적용여부	87
23	분할선적물품의 협정관세 적용여부	87
24	분할선적물품의 협정관세 적용 여부 질문	88
25	불인정공정 충족 필요 여부	88
26	비당사국 경유물품 직접운송 충족여부	89
27	비당사국 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증명서 인정 가능 여부	89
28	비당사국 수출자 발행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	89
29	비당사국에서 단순가공한 물품의 협정적용가능 여부	89
30	비당사국에서 소분, 포장작업시, 직접운송요건 충족여부	89

31	사후적용 관련 질의	90
32	상업서류에 작성된 원산지증명서의 인정 여부	90
33	생산자발급 원산지확인서를 근거로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원산지소명 의무자....	90
34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원산지증명서상 수출자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원산지증명서상 수출자	90
35	섬유류 원산지 결정기준 관련	90
36	소액물품 관세면제규정	93
37	소액물품 협정관세 적용 가능여부	91
38	소액물품 협정적용 가능여부	91
39	수리 및 개조 해당여부	91
40	수입원유가 보세구역 내 잔존유와 혼합된 경우 협정 적용 가능 여부	91
41	수입자발행 원산지증명서 인정여부	92
42	수입자 보관서류 관련	92
43	수입자 원산지증명서 서명권자 해당 여부	92
44	수입통관 완료된 할당물량 물품이 멸실된 경우 다른 수입통관건 대체 가능 여부	92
45	수지(resin)에 착색제를 첨가한 경우 원산지 결정기준	93
46	수출물품의 원산지 관련	93
47	수출물품의 원산지 결정 관련	93
48	수출용원재료 원산지확인서 관련	93
49	여행자 휴대품 협정적용 가능 여부	94
50	연구목적 수입물품 협정적용 가능여부	95
51	영역해당 여부	95
52	운송관련	95
53	원산지 결정기준 표기 관련	95
54	원산지기준 표기 해석	96
55	원산지 입증서류 관련 질의	96
56	원산지제품 관련	96
57	원산지 증명방법 등	97
58	원산지증명서 HS Code 기재 등	97
59	원산지증명서 관련	98
60	원산지증명서 관련	98
61	원산지증명서 관련 질의	98
62	원산지증명서 사본보관 관련	98
63	원산지증명서 수입자 기재방법	99
64	원산지증명서와 수입신고서의 세번이 다른 경우 협정적용 가능여부	99
65	원산지증명서의 세번과 수입신고 세번 상이시 협정관세 적용가능여부	99
66	원산지증명서의 수출자란에 비당사국 수출자 정보를 기재한 경우 인정가능여부	99
67	원산지증명서 인정가능여부	100
68	원산지증명서 인정여부	100
69	원산지증명서 작성 관련	100
70	원산지증명서 작성시 '수입자'기재 방법	101
71	원산지증명서 제출 방법	101
72	원산지 포괄증명 관련	101
73	원산지 포괄증명(증명일자 경과) 관련	101
74	원산지 포괄증명서 관련(증명기간)	102
75	원산지 확인 관련	102
76	원산지확인(멕시코산 라임) 관련	102
77	이사물품의 원산지증명 관련	102
78	이사물품인 차량의 협정적용시 구비서류는	103
79	이사차량 수입시 협정관세 적용을 위한 구비서류	103
80	이사차량 수입시 협정관세 적용을 위한 구비서류	103
81	이사화물차량의 협정 적용 가능 여부	104

82	자유무역지역(FTZ) 공정수행시 적용 여부	104
83	자유무역지역에서 보수작업한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여부	104
84	자유무역지역에서 보수작업한 물품의 협정관세 적용 여부	104
85	자유무역지역에서 재포장한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 여부 질의	105
86	재수입물품의 협정적용 가능여부	105
87	제0910.30호의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105
88	제1901.20호의 원산지기준 해석방법	105
89	제3901호 내지 제3915호의 원산지기준	105
90	제3901호 내지 제3915호의 원산지기준 해석	106
91	제3906.90호의 원산지결정기준 해석	106
92	제3907호의 원산지결정기준 해석	106
93	제5903.90호 원산지기준 해석 방법	106
94	제6104.12호 원산지 결정기준	107
95	제7308.90호의 원산지결정기준 해석	107
96	제8411.81호의 원산지기준의 해석 방법	107
97	제8414.80호의 원산지기준의 해석 방법제8414.80호의 원산지기준의 해석 방법	107
98	제8483.50호의 원산지결정기준 해석	108
99	제3국 경유물품 관련	108
100	제3국 경유물품 관련	108
101	제3국 경유물품이 운송원칙을 충족하는 서류인지	109
102	제3국 경유물품 입증관련	109
103	제3국 경유 수입물품 관련	109
104	제3국 발행 송장거래시 B/L상 송하인	110
105	제3국 발행 송장거래시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 여부	110
106	제3국 발행 송장 거래에서 부가가치 계산에 적용되는 조정가격 산정방법	110
107	제3국 발행 송품장상 수출당사국의 수출자 정보 기재 여부	110
108	제3국송장 거래 및 통과, 환적운송 관련	110
109	제3국에서 수리한 물품의 협정관세적용 가능 여부	111
110	제3국에서 수입통관된 물품의 협정관세 적용가능여부	111
111	제3국이 수입자로 기재된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	111
112	중고자동차 협정관세 적용 관련	111
113	직구한 1천불 이하 맥주에 Torrance, CA 라고 표기된 경우 협정적용 가능 여부	112
114	직접운송 충족여부	112
115	직접운송 충족여부	112
116	참치 캔 협정관세적용 질의	112
117	최소기준 충족여부	112
118	최소허용기준 및 원산지소명서 작성방법 관련	113
119	최소허용기준(미소기준)적용 가능 여부	113
120	최소허용수준 적용가능여부	113
121	포괄원산지 관련	113
122	포괄원산지증명서 적용 관련	113
123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관련	114
124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제7부 관련	114
125	품목분류 관련	114
126	품목분류 변경 물품의 사후적용 신청 기한	114
127	품목분류 상이 관련	115
128	품목분류 상이 관련	115
129	품목분류 상이할 경우	115
130	한국산 물품 수입시 협정관세 적용 여부	115
131	한-미 FTA의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적용 대상	115
132	할당받은 물품을 제외한 나머지 비할당 물품의 반송 여부	116
133	해외직구 1천달러 미만의 와인에 'Made in California'로 표기시 협정 적용 가능 여부	116

134	협정관세 적용가능 여부(한-미, EU)	116
135	협정적용 방법	117
136	협정적용신청서 작성시 원산지증명서 발급번호 기재 방법	117

4. 한-중 FTA

1	C/O의 유효성 여부	117
2	Certificate of Processing의 유효성	117
3	1국 2협정의 경우 협정관세 사후적용 가능 여부	118
4	1국 2협정의 경우 협정관세 사후적용 가능 여부	118
5	경유국에서 발급한 B/L의 통과선하증권 인정 가능여부	118
6	누적기준에서 ‘결합’의 의미는	118
7	누적적용 방법	118
8	다수의 생산자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기재 관련	118
9	대량원재료를 보세창고에 반입후 분할통관하는 경우 총중량 기재된 CO 인정 여부	119
10	동일물품에 대하여 2개의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된 경우 협정적용 가능여부	119
11	보세공장 반입물품을 제품과세시 협정적용 가능 여부	119
12	보세공장 사용신고물품의 원상태 국내 수입 시 협정세율 적용 여부	119
13	부속품, 예비부품 및 공구의 원산지 규정	120
14	비당사국 경유물품의 직접운송 충족 여부	120
15	비당사국 발행 통과선하증권의 적용여부	120
16	비당사국에서 선적된 물품의 직접운송 충족가능여부	120
17	비당사국에서 최종포장작업이 이루어진 경우 협정관세 적용 가능 여부	120
18	비당사국 운영자가 상품에 대한 송장을 발급시 원산지 증명서 기재 방법	121
19	생산지원비의 협정관세 적용가능여부	121
20	설비를 해체상태로 수출하여 상대방국에서 조립시 HS 통칙 제2호 적용 가능 여부	121
21	세번변경으로 기존 협정 불가시 다른 협정 적용 여부	121
22	세번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세번이 변경된 경우 수정신고 여부	121
23	수리물품 재수입시 협정 적용 가능 여부	122
24	수입당사국에 소재한 제3자가 송장을 발행하는 경우 원산지 증명서 기재 방법	122
25	수출자정보가 추가 기재된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	122
26	여러 개의 인보이스로 하나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원산지증명서 작성방법	122
27	용도세율 적용물품의 협정관세 사후 적용 신청 여부	122
28	원산지결정기준 해석(제 8462.10호)	123
29	원산지기준 기재 방법	123
30	원산지물품과 비원산지물품 혼재시 원산지증명서 물품수량 기재방법	123
31	원산지상품과 비원산지상품 혼재시 원산지증명서에 기재 가능한 수량	123
32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대리인 범주	123
33	원산지증명서 발급하여 수입된 물품의 국내거래시 원산지확인서 발급 가능여부	124
34	원산지증명서 세번과 수입신고 세번 상이시 BOM으로 원산지기준 충족여부 확인가능여부	124
35	원산지증명서 수출자 기재란 작성방법	124
36	원산지증명서와 수입신고서의 세번이 상이한 경우 협정적용 가능여부	124
37	원산지증명서와 수입신고서의 세번이 상이한 경우 협정적용 가능여부	124
38	원산지증명서의 대리인 발급 가능 여부	125
39	원산지증명서의 발행일이 1년 경과시 유효한 원산지 증명서 인정 여부	125
40	원산지증명서의 분할사용 가능 여부	125
41	원산지증명서의 생산자와 실제생산자가 상이한 경우 인정가능여부	125
42	원산지증명서의 세번과 수입신고 세번 상이시 협정관세 적용가능여부	125
43	원산지증명서의 세번과 수입신고 세번 상이시 협정관세 적용가능여부	126
44	원산지증명서의 세번과 수입신고 세번 상이시 협정관세 적용가능여부	126
45	원산지증명서의 세번과 수입세번이 상이한 경우 협정관세 적용 가능 여부	126

46	원산지증명서의 세번과 수입세번이 상이한 경우 협정 적용 가능 여부	126
47	원산지증명서의 세번과 수입신고 세번 상이시 협정관세 적용가능여부	126
48	원산지증명서의 세번과 우리나라 수입세번이 상이한 경우 협정관세 적용 가능 여부	126
49	원산지증명서의 수출대리인 발급 가능여부	127
50	원산지증명서의 원산지기준 기재 방법	127
51	원산지증명서의 원산지기준 작성방법	127
52	원산지증명서의 필수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 인정가능여부	127
53	원산지증명서 을지 사용	128
54	원산지증명서 작성 관련 질의	128
55	원산지증명서 작성시 제3국발행 송장거래 정보 기재방법	128
56	원산지증명서 제출면제규정 적용 방법	128
57	원산지증명서 제출면제규정 해당 여부	129
58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물품의 협정관세 사후적용 가능 여부	129
59	원산지 증명자료 관련 질의	129
60	원재료의 세번이 계약상대국의 세번과 상이한 경우 원산지기준 판정시 적용되는 원재료 세번	130
61	임가공 물품의 수입시 원산지 증명 발급 가능 여부	130
62	제3국 경유시 당사국발행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	130
63	제3국 발행 송장 거래시 비당사국 정보 기재 여부	130
64	제3국 발행 송장 거래시 원산지증명서 발급	130
65	제3국 발행 송장거래시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송장번호	131
66	제3국 발행송장 정보가 기재되지 않은 원산지증명서의 인정 가능 여부	131
67	제3국 Invoice발행 원산지증명서 유효여부	131
68	중계거래 무역시 원산지 증명서에 중계인의 정보없는 경우 유효 여부	131
69	중고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131
70	중국에서 수입하는 화공약품의 중국에서 수출시 HS와 수입시 HS가 상이한 경우	131
71	중국에서 조립된 물품을 국내로 수입한 후 다시 중국 판매시 한국산 가능 여부	132
72	직접운송요건 입증방법	132
73	직접운송 입증서류 관련	132
74	코로나 19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지연 발급 문의	132
75	통과선하증권 인정 가능 여부	132
76	통과선하증권의 인정범위	133
77	품목분류 통칙 제2호 적용 물품의 FTA CO 인정 여부	133
78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TROs) 적용 방법	133
79	홍콩 경유 수입물품의 적출국, 환적국 기재 방법	133
80	홍콩 경유하는 수출물품의 목적항이 홍콩으로 기재된 AWB기반 원산지 증명서 발급	133
81	홍콩 경유 화물의 경우 B/L상 선적일이 홍콩인지 중국인지	134
82	홍콩 업체가 중국산 물품을 중국에서 선적하면서 동 업체가 운송서류 발급시 협정적용 가능 여부	134
83	홍콩 지정장소 명칭의 인정여부	134
84	협정관세 적용 가능 여부 질의	134

5. 한-아세안 FTA

1	CTC+SP 인정여부	135
2	C/O 을지 미사용 질의	135
3	CO-PASS에서 원산지내역이 조회될 경우 사후신청 시 원산지증명서 제출 여부	135
4	FOB VALUE 환율 선택 관련	136
5	WO-AK 인정여부.....	136
6	1국 2협정의 경우 협정관세 사후적용 가능 여부	136
7	관세평가 이슈(무상물품)로 수입국 신고가격과 원산지증명서 상의 금액이 불일치한 경우 에도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보아 협정세율 적용 가능 여부	136

8	국내 BWT거래시 협정관세 적용가능여부	137
9	국내에서 회수한 폐고철 스크랩의 원산지 결정	137
10	누적적용 가능여부	137
11	다수의 제조자가 생산한 물품 수출시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	137
12	라벨의 원산지 상품 결정요인 여부	137
13	미소기준 적용 가능 여부	138
14	미얀마 물품이 싱가포르 경유시 선적항 등이 미얀마로 표기된 경우 운송서류 인정 여부	138
15	보세공장반입 원재료를 가공없이 반출시 협정적용 가능여부 및 신청시기	138
16	부가가치기준 계산시 FOB가격 산정방법	138
17	부가가치기준시 원산지증명서 작성방법	138
18	부가가치비율 계산시 직접법과 공제법 선택사용 가능 여부	139
19	비당사국 생산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가능여부	139
20	비당사국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가능여부	139
21	선적일로부터 3일 이후에 발급된 원산지 증명서에 소급문구가 없는 경우 특혜적용이 가능한지	139
22	선적일 후 발급된 B/L 인정가능 여부	139
23	세번변경기준인 경우 원산지증명서상 FOB가격 기재 여부	139
24	소급발급 문구 기재 방법	140
25	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에 서명 또는 인장이 없을 경우 인정 여부	140
26	수출자와 생산자가 상이한 경우 원산지신고서 수출자 기재 방법	140
27	수출국으로 재수출시 연결원산지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	140
28	수탁가공물품의 가공비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	141
29	아세안회원 국가가 아닌 제3국의 업체가 송품장을 발급한 경우 원산지 증명서 기재요령은	141
30	양도된 원산지증명서 인정가능여부	141
31	역내가치포함비율 계산관련	141
32	역외가공 인정여부 관련	141
33	연결원산지증명서 관련 질의	141
34	연결원산지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	142
35	연결원산지증명서 발행 시기 및 제출서류	142
36	연결원산지증명서 발급시 직접운송 증빙자료 필요 여부	142
37	연결원산지 증명서의 유효성	142
38	연결원산지증명서 직접운송 충족 가능 여부	143
39	완전생산기준 경우 원산지증명서 작성방법	143
40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물품의 범위	143
41	운송 관련	143
42	원산지 결정기준	143
43	원산지 결정기준 관련	144
44	원산지결정기준 기재방법	144
45	원산지 결정기준 표기	144
46	원산지기준 기재 방법	145
47	원산지 물품과 비원산지 물품이 하나의 C/O에 혼재되어 작성된 경우 해당 원산지 증명서는 유효한지	145
48	원산지상품 해당여부	145
49	원산지증명서 관련	145
50	원산지증명서 관련	145
51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간	146
52	원산지증명서 발급기한	146
53	원산지증명서 발급여부 관련	146
54	원산지증명서상 FOB 금액과 송품장상의 금액이 상이할 경우	146
55	원산지증명서상 FOB금액과 Invoice 금액과 차이가 있는 경우 원산지증명서 유효성 여부	146
56	원산지증명서상 FOB금액과 인보이스 금액과 차이가 있는 경우 원산지증명서 유효성 여부	147
57	원산지증명서상 수출자 관련	147
58	원산지증명서 상 표기되지 않은 구성품(미국産 프로브)의 협정세율 적용 가부	147

59	원산지증명서상 제3국 송장 기재시 제3국에 수입국도 포함되는지	147
60	원산지증명서 수입자 정보 기재방법	148
61	원산지증명서 식 관련	148
62	원산지증명서에 원산지결정기준 표기방법	148
63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적용범위 안내	148
64	원산지증명서 유효성 관련	148
65	원산지증명서 유효성 여부	149
66	원산지증명서의 경미한 하자 인정가능 여부	149
67	원산지증명서의 기재내용	149
68	원산지증명서의 원산지기준 기재 방법	150
69	원산지증명서의 원산지기준(부가가치기준) 기재 방법	150
70	원산지증명서의 원산지기준 작성방법	150
71	원산지증명서의 의류 원산지기준 기재방법	150
72	원산지증명서 인정 여부	150
73	원산지증명서 작성 관련	151
74	원산지증명서 작성 관련	151
75	원산지증명서 작성 관련 질의	151
76	원산지증명서 적용가능 여부	152
77	원산지증명서 제1란(수출자)에 수출자가 아닌 제조자를 기재하여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로 한-아세안 FTA특혜관세 적용 신청이 가능한지	152
78	원산지증명 운영절차 개정사항 안내	152
79	인도네시아 물품을 싱가포르에서 송장 발행시 가격 결정	152
80	인도네시아 물품이 싱가포르 수입자 앞으로 발행된 증명서를 토대로 연결원산지증명서 발급된 경우 구비서류	153
81	인증수출자 갱신시 부가가치 기준에서 세번변경기준으로 변경 갱신 가능 여부	153
82	자유무역지역 생산물품의 한-아세안 FTA 적용 여부	153
83	적용관련 질의	153
84	적용관련 질의	154
85	적용대상	154
86	적용절차	154
87	제2202.90호의 원산지결정기준	155
88	제6206호 원산지 결정기준	155
89	제8529.90호의 원산지결정기준 해석 방법	155
90	제3국 경유 물품	155
91	제3국 경유물품 FTA 협정관세 적용 여부 관련	156
92	제3국 경유물품의 한-아세안 및 최빈국 특혜관세 적용 여부	156
93	제3국 경유하여 수입하는 경우 직접운송 요건 충족 여부	157
94	제3국 발행 송장 거래 가능 여부	157
95	제3국 발행 송장거래시 협정적용 가능 여부	157
96	제3국 발행 송장의 경우 원산지증명서에 제3국 수출자 발행 송장번호 기재가능여부	157
97	제3국 발행송장 정보없는 원산지증명서의 유효 여부	158
98	제3국 송장 관련	158
99	제3국 송장 관련	158
100	제3국 송장 기재대상 여부	158
101	중고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	159
102	직접운송원칙 관련	159
103	직접운송원칙 관련 질의	160
104	채약당사국 정의 관련	160
105	최소허용기준 적용 가능 여부	160
106	최종 송품장 발행국이 수입국인 한국일 경우에도 제3국 발행 송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161
107	태국의 개정 FTA 원산지증명서 불인정 사례 및 대응방안 전파	161
108	통과선하증권 인정 가능 여부	161
109	통과선하증권 인정여부	161

110	통과선하증권의 사후 발급시 인정 여부	162
111	통과선하증권의 인정여부	162
112	특정공정(재단 및 봉제) 입증이 가능한지 여부	162
113	특혜세율 적용관련 질의 회신	162
114	포장용기의 원산지 판정	139
115	폐기물 등 원산지 결정	163
116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이 동시충족 요건인 경우 (4단위 변경 + 재단, 봉제 공정) 원산 증명서상 원산지 결정기준 표시는	163
117	품목분류 상이	163
118	한국산 미역을 태국에서 임가공 한 뒤 재수입시 협정 등 적용	163
119	한도수량내 협정관세 적용물품의 협정관세 사후적용 가능 여부	164
120	해외임가공물품의 원산지 판정	164

6. 한-베트남 FTA

1	FOB가격 산정방법	164
2	1국 2협정의 적용 수입물품의 협정관세 사후적용 가능 여부	164
3	무상거래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여부	164
4	베트남에서 원단 날염 공정 후 수입하는 경우 수리 또는 개조물품에 해당 여부	165
5	비당사국에서 수입한 물품을 베트남으로 수출시 원산지증명서 발급가능여부	165
6	수리 또는 개조물품의 협정적용	165
7	우리나라와 세번이 다른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법은	165
8	원산지증명서 소급발급 문구 기재여부	165
9	원산지증명서와 수입신고서의 세번이 상이한 경우 협정 적용 가능 여부	166
10	원산지증명서의 원산지기준 기재 방법	166
11	원산지증명서 재발급시 기재 문구	166
12	위탁가공수입물품 수리 또는 개조 포함 여부	166
13	임가공비 협정관세 적용 가능여부	166
14	제2008.19호 원산지결정기준 해석	166
15	제2106.90호의 원산지결정기준 해석	167
16	제6110.12호의 원산지 결정기준에서 링킹공정이 포함되는지	167
17	중복적용 관련	167
18	품목별 원산지기준에서 중간재 규정의 적용 여부	167

7. 한-EFTA FTA

1	B/L에 원산지신고문안을 기재한 경우 원산지신고서 인정 여부	167
2	BWT거래시 비당사국수입자에게 발행된 원산지신고서 유효성	168
3	노르웨이산 연어를 덴마크에서 내장제거 및 포장후 수입시 원산지 적용 방법	168
4	보세판매장 반입물품의 수입시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	168
5	비당사국에서 라벨링 작업 수행한 경우 협정적용 가능 여부	168
6	비인증수출자의 원산지증명서 작성가능여부	168
7	수입신고 관련	169
8	.스위스산 물품이 벨기에 등을 경유할 경우 직접운송 증빙자료 구비 요건	169
9	원산지물품과 비원산지물품 혼재시 원산지증명서 유효성	169
10	원산지신고서 인정 여부	169
11	원산지증명서 관련	170
12	제3국 경유	170
13	제3국 경유 관련	171
14	제3국 경유물품의 직접운송 요건 증빙서류	171

15	제3국 경유물품의 특혜적용 가능 여부	171
16	직접운송 관련	172
17	직접운송 적용 여부	172
18	최소허용수준 적용가능여부	172
19	협정발효전 수입신고	173

8. 한-인도 CEPA

1	누적기준 등 관련	173
2	부가가치기준 계산시 FOB가격 산정방법	173
3	미조립물품 수출시 원산지증명서 세번 기재방법	173
4	수집한 폐기물의 완전생산기준 입증자료	174
5	스크랩으로 생산한 제품의 완전생산기준 충족 여부	174
6	완전생산된 의류에 폴리백 등 소매포장시 원산지 인정 여부	174
7	우리나라 수출물품을 경유지인 인도에서 분할하역시 원산지증명서 인정 여부	174
8	원산지결정기준 관련	174
9	원산지증명서 관련	175
10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	175
11	원산지증명서상 생산자 기재 생략 가능여부	175
12	원산지증명서에 QR코드가 있는데 인장 등이 있어야 하는 지	175
13	원산지 증명서에 역내가치 포함비율 기재시 기재 방법	176
14	원산지증명서와 수입신고서의 세번이 상이한 경우 협정적용 가능여부	176
15	원산지증명서의 원산지기준 기재 방법	176
16	원산지증명서 제3국 송장란에 회사정보 기재 방법	176
17	의류 원산지 결정기준	177
18	의류 원산지 결정기준 관련	177
19	의류 원산지 결정기준 표기법 관련	177
20	인도에서 발급된 원산지 증명서에 QR코드만 있을 경우 인정 여부	177
21	중계무역 관련	178
22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관련	178
23	품목별 원산지기준 HS	178
24	한국산 물품에 제3국 송장발행의 경우 증명서 제11란 기재 방법	178
25	한국산 원단으로 인도에서 생산된 의류 수입시 협정 인정 여부	179

9. 한-호주 FTA

1	전적송장과 상업송장이 번호만 다른 경우 원산지 증명서 인정 여부	179
2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179
3	비당사국의 영역에서 재포장이나 재라벨링을 거친 경우 협정 적용 인정 여부	179
4	원산지증명서 내 제3국 발행 송장 관련 일부 누락 경우	179
5	원산지증명서 수출자 기재란 작성방법	180
6	원산지증명서 제출면제 기준	180
7	적용 조건 및 원산지증명서 작성 주체	180
8	중고물품 협정관세 적용 가능 여부	180
9	특별긴급관세 적용조치일 기준	180
10	특별긴급관세 적용조치일 기준	181
11	호주 상공회의서 발급 증명서 서식의 인정 여부	181

10. 한-영 FTA

1	6천 유로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경우에 비원산지 제품 포함 여부	181
2	덴마크 업체가 영국 당국에서 인증받은 번호로 협정 적용 가능한지	181
3	본사의 전산시스템에서 발행되던 원산지증명서를 별도로 발행할 경우 인정 여부	182
4	영국산 물품이 EU회원국을 경유하여 수입될 경우 협정적용 여부	182
5	영국산 물품이 네덜란드를 경유시 혼입하여 수입될 경우 직접운송 충족 여부	182
6	영국생산 물품을 덴마크 수출자로부터 수입시 한-영 FTA 적용 여부	182

11. 한-터키 FTA

1	대 터키 아세테이트 직물 수출시 원산지신고서 발급과 관련한 유의사항 안내	183
2	수입신고 후 발행된 비가공증명서로 협정적용가능 여부	183
3	원산지국가명 기재방법	183
4	터키산 물품을 말레이시아에서 환적하면서 컨테이너 번호와 Seal 번호가 변경된 경우 증빙은	183
5	협정관세 적용방법	184

12. 한-캐나다 FTA

1	건강기능식품의 비원산지 원료가 6% 정도인 경우 최소허용기준 적용 대상 여부	184
2	경유화물의 직접운송 요건 충족서류	184
3	비당사국물품의 협정적용 가능여부	184
4	소액물품 관세면제규정	184
5	캐나다 생산자가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미국수출자를 기재한 경우 원산지증명서 인정 여부 ...	185

13. 한-싱가포르 FTA

1	수리비 등에 협정관세 적용여부	185
2	원산지증명서 소급발급문구	185
3	원산지증명서의 원산지기준 작성방법	186

14. 한-페루 FTA

1	비당사국에서 수입통관된 물품을 우리나라로 수입시 협정관세 적용 가능 여부	186
2	참기름의 수입물량 제한 등은	186
3	한-페루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증명 발급관련 개정사항 안내	186

15. 한-뉴질랜드 FTA

1	냉동녹용 협정세율 적용에 관한 질의	187
2	산 동물의 원산지기준 충족여부	187

16. 한-칠레 FTA

1	원산지 결정기준 관련	187
2	원산지증명서 기재방법	187

17. 한-콜롬비아 FTA

1	수출자와 생산자가 상호만 다른 같은 회사일 경우 제8란 기재 방법	188
2	콜롬비아 산 커피 농축액을 파나마에서 단순 환적한 경우 구비서류	188

18. RCEP

1	RCEP 발효 전 회원국으로부터 수입한 원재료로 생산한 물품의 RCEP 원산지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	188
2	RCEP 원산지상품에 대한 연결 원산지증명 활용방법	188
3	RCEP 원산지증명서 제11번란(원산지국가)에 국가명이 모두 대문자로 기재된 RCEP 원산지증명서 유효성 인정 여부	189
4	RCEP 회원국으로부터 물품을 우리나라로 수입하여 RCEP 회원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RCEP 특혜세율 적용방법	189
5	개별 FTA 원산지증명서가 RCEP 누적 입증서류 가능 여부	189
6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작성한 자율발급 원산지신고서 인정 여부	189
7	제2.6조(관세차별) 제6항의 적용방법	189
8	제3자 송장 발행 시 원산지증명서 작성방법	189

19. 2개 FTA 적용

1	분할운송시 협정관세 적용여부 등(한-EU, 한-미 FTA)	190
2	동일상품 장기간 반복 수입시 원산지 포괄증명서 반복 사용 가능 여부(한-뉴질랜드, 캐나다, 호주, 콜롬비아 FTA)	190
3	수입 통관후 다른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아 재적용 가능 여부(한-아세안, 한-베트남 FTA)	191
4	싱가포르에서 수입할 경우 협정 적용 여부(한-싱가포르, 한-아세안 FTA)	191
5	완제품 생산과정에서 생산된 반제품의 중간재 지정 가능 여부(한-아세안, 한-베트남 FTA)	191
6	원산지결정기준 해석(한-베트남, 한-인도 FTA)	191
7	원산지신고서 국가명 기재방법(한-터키, 한-EFTA FTA)	192
8	원산지증명서의 수입자에 은행이 기재되어 있고 송장 등에는 수입자가 기재된 경우 유효 여부(한-아세안, 한-베트남 FTA)	192
9	원산지표시 및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여부 등(한-EU, 한-FTA)	192
10	주스생산 공정 중 특수기계 이용하여 탄소주입시 불인정 공정 해당 여부(한-아세안, 한-베트남 FTA)	193
11	중국에서 수입하는 물품의 원산지증명방법(한-중 FTA, APTA)	193
12	통과선하증권 인정가능 여부(한-미, 한-호주 FTA)	194
13	협정관세 적용 가능 여부 관련(한-호주, 한-캐나다 FTA)	194

20. APTA 협정

1	공장자동화 감면물품 APTA 특혜관세 적용여부는	195
2	국내 보세구역 반입 후 B/L을 양도하는 경우 APTA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적정한 C/O 기재방법	195
3	누적적용을 위한 비양허품목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기	195
4	누적적용을 위해 비양허품목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	195
5	본선인도 가격	195

6	비당사국 경유물품 직접운송 충족여부	196
7	비당사국 경유시 증빙자료	196
8	사후 협정관세 적용 여부	196
9	선적후 발급한 APTA 원산지증명서 인정여부?	196
10	세번변경기준의 누적적용 가능여부	196
11	소급문구 인정 여부	196
12	원산지증명서 관련	197
13	원산지증명서 관련 질의	197
14	원산지증명서 원산지기준 작성방법	197
15	원산지증명서 인정여부 관련	197
16	원산지증명서 품명 표기 관련	198
17	일반특혜관세 사후적용가능 여부	198
18	제3자 또는 제4자간 무역거래에서의 APTA 특혜관세 적용여부	198
19	중국산 물품이 홍콩경유시 직접운송 원칙 예외인정 여부	198
20	중국 생산 물품을 국내 수입시 제3국 발행 송품장 연정 여부	198
21	직접운송관련 AWB 인정범위	198
22	직접운송 입증서류 관련 질의	198
23	포장용기의 원산지 결정 방법	199
24	핸드캐리 반입물품 APTA 협정관세 적용 여부 질의	199
25	협정세율의 사후적용 관련 질문	200

21. 최빈개도국 특혜

1	개발도상국간의 양허관세 제3국 송장 인정여부	200
2	경유지의 보세구역에서 검사받는 경우 최빈국 특혜적용시 필요한 서류	200
3	국산원재료 원산지 결정기준	200
4	다른 원산지증명서 양식사용시 최빈국 특혜 적용관련 민원	200
5	비당사국 경유시 직접운송 증빙자료 인정 여부	201
6	원산지 결정기준	201
7	원산지증명서 발급시기	201
8	원산지증명서 서식	202
9	원산지증명서 선적후 발급시 소급발급 문구 기재 여부	202
10	원산지증명서에 송장번호, 발행일자가 오류 기재되고, 수출자도 원산지증명서상 수출자와 상이한 경우 유효성 여부	202
11	제3국 경유시 직접운송충족 입증자료	202
12	제3국 송장 인정여부 질의	203
13	최빈개발도상국의 특혜관세 사후적용 신청조건	203
14	특혜관세 적용과 관련한 민원 회신	203

질의회신 _ 항목별

I	거래당사자 요건	[Q1] ~ [Q20]	204
II	운송요건(직접운송원칙)	[Q21] ~ [Q43]	214
III	전시물품	[Q44]	226
IV	원산지 증명 요건	[Q45] ~ [Q100-2]	226
V	원산지 결정 기준	[Q112] ~ [Q164-2]	250
VI	원산지 인증 수출자 제도	[Q165] ~ [Q177-2]	280
VII	협정세율 적용	[Q178] ~ [Q182]	286

VIII 수리비, 왕복 운임	[Q183] ~ [Q185]	288
IX 보세건설장, 자유무역지역	[Q186] ~ [Q194-2]	290
X 분할 수입, 분할 선적	[Q195] ~ [Q198-2]	292
XI 품목번호 상이	[Q199] ~ [Q201]	295
XII 소액물품 등 기타	[Q202] ~ [Q233]	296
1. FTA 소액물품	[Q202] ~ [Q207]	296
2. 원산지 증빙서류	[Q208] ~ [Q217]	298
3. 기타 사항	[Q218] ~ [Q233]	306
기획재정부 질의 답변		313
관세사 보수교육시 질의답변 내용_관세청 FTA집행기획담당관		315

지시 및 지침

1. 공 통

1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심사 간소화 지침 통보	320
2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서류 제출 생략 지침 시달	320
3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취하제도 시행 지침 시달	321
4 FTA 원산지 증명서 확인 및 특혜관세 적용 지침 시달	321
5 FTA 특례법령 개정에 따른 협정관세 사후적용(소급) 업무처리 지침 통보	330
6 FTA 특례법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420호) 개정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	331
7 FTA 특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	331
8 FTA 활용관련 민원상담지침 안내	332
9 HS 상이시 처리지침 관련	333
10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 적용 기준에 관한 운영지침	333
11 국산 농산물의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증빙서류 인정관련 처리 지침	335
12 관세법 시행령 개정(원산지증명 제출기한의 예외 신설)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	336
13 관세사의 FTA 컨설팅 활성화 방안 통보	337
14 보세건설장 건설물품에 대한 FTA 협정관세 적용지침 통보	337
15 부족한 관세액이 없는 경우 FTA특례법 제36조에 따른 가산세 부과에 관한 지침	338
16 선착순 방식 수량별 차등협정관세 적용물품 수입통관처리 지침	338
17 수리 후 협정관세 적용신청 시 원산지증명서 원본 처리에 관한 지침	341
18 업체별 인증 전환 유도를 위한 심사 지침 시달	342
19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FTA 협정관세 적용업무 처리 지침	344
20 연결 원산지증명 작성·발급 업무 집행 지침	349
21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운영에 관한 지침 개정안 송부	352
22 원산지인증수출자 유효기간 만료전 사전안내 시행 지침 시달	363
23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시 ‘교육 이수실적’ 처리방법에 대한 지침 시달	363
24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외부 원산지전문가’ 인정범위에 대한 지침 시달	363
25 원산지증명서 상시발급 운영 지침	364
26 원산지증명서 전자본 발급 안내	365
27 원양어획물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 시 직접운송 인정 지침	366
28 자유무역지역 보관 물품의 원산지증명서 작성·발급 업무 처리 지침	367

29	인증수출자 인증번호 변경업무 처리지침 시달	368
30	인증수출자 인증업무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 업무 처리지침 시달	369
31	자유무역협정 기업지원 업체정보 보호에 관한 지침	370
32	자유무역협정 및 일반특혜관세 원산지증명서의 특혜관세적용업무 처리방법 시달	370
33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개선 지침 통보	372
34	중소기업의 FTA 활용지원을 위한 예산컨설팅 사업 운영 지침 시행	373
35	중소기업의 자유무역협정 활용촉진을 위한 통합지침 시달	374
36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직접운송 확인방법	378
37	품목분류번호 해석 상이 등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	383
38	품목분류번호 해석 상이 등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 해석 기준 통보	385
39	협정관세 사후적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386

2. 한-EU FTA

1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집행 지침 수정 시달	389
2	철도복합운송 제품의 한-EU FTA 직접운송 증명에 관한 지침	394
3	크로아티아공화국의 유럽연합당사자 추가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지침 시달	395
4	한-EU FTA 원산지신고문안 확인업무처리 지침 수정 시달	397
5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부속서1의 주석6 적용 지침	398
6	한-EU FTA 원산지표기 및 인증수출자 번호체계 확인업무 처리 지침 시달	400
7	한-EU FTA 품목별 인증수출자 「조건부 인증제도 시행지침」 변경 시달	401

3. 한-영 FTA

1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발효에 따른 운영지침	404
2	한-영 FTA 발효 관련 질의응답(Q&A) 자료	420
3	한-영 FTA 발효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 유의사항 안내	423
4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개정에 관한 교환각서안	424

4. 한-미 FTA

1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운영지침 시달	426
2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포괄증명물품의 협정관세 적용지침 시달	439
3	한-미 FTA 발효 대비 FTA 사전심사업무처리 지침 시행	439
4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처리 지침 시달	444
5	한-미 FTA 원산지포괄증명협정관세 적용 지침 시달	446
6	한-미 자유무역협정 통관원칙에 따른 원산지검증 업무지침	446
7	파나마 해상 환적 물품 한-미 FTA 적용 시 직접운송 입증 방법	449

5. 한-중 FTA

1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451
2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수출자 관련 업무 처리 지침 안내	460
3	한-중 FTA 중국 발행 원산지증명서 제8란(품명) 기재사항 처리 지침 시달	460
4	한-중 FTA 중국 발행 원산지증명서 처리 지침 통보	461
5	중국발 홍콩 경유 수입화물에 대한 비가공증명서 발급 기준	462

6. 한-아세안 FTA

1 한-아세안 FTA 집행에 관한 지침 시달	464
2 아세안회원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증명서 개정서식 사용관련 지침 시달	466
3 아세안회원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개정에 따른 처리지침 시행	467
4 캄보디아, 한-아세안 FTA 상품무역협정 발효 및이행개시 통보	467
5 한-아세안 FTA 이행협상 합의사항 시행지침 송부	467
6 한-아세안 FTA 발표에 따른 한국원산지증명서 불인정사례 전파 시달	468
7 한-아세안 FTA 연결원산지증명서 확인업무 지침	468
8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유의사항 시달	469
9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가격 기재 방법 안내	469

7. 한-EFTA, 칠레 FTA

1 한-EFTA, 칠레 FTA 등 원산지증명서 확인 및 특혜관세 적용 지침	469
2 한·EFTA FTA 체약상대국 인증수출자 인증번호 체계	469

8. 한-뉴질랜드 FTA

1 대한민국과 뉴질랜드간의 자유무역협정	470
-----------------------------	-----

9. 한-베트남 FTA

1 대한민국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480
2 베트남측 FTA 특혜적용(원산지증명서 제출) 절차 변경에 따른 재 안내	486

10. 한-인도 CEPA

1 한-인도 CEPA 설명	487
2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추가지정에 따른 관련 업무처리 지침 통보	491

11. 한-중미 FTA

1.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간의 자유무역협정 발효에 따른 운영지침	491
---	-----

12. 한-칠레 FTA

1 한-칠레 FTA 지침	506
2 칠레 사전판정(Advanced Ruling) 고시 번역 배포	506
3 한·칠레 FTA 부속서4 개정 교환각서 발효관련 원산지증명서 작성방법 안내	507
4 한·칠레 FTA 원산지증명서에 관한 유의사항	507
5 한·칠레 FTA 특례법령 폐지에 따른FTA 협정대상물품 업무처리지침 시달	507

13. 한-캐나다 FTA

1 한-캐나다 FTA 지침	507
----------------------	-----

14. 한-콜롬비아 FTA

- 1 대한민국과 콜롬비아 공화국간의 자유무역협정 발효에 따른 운영지침 통보 513

15. 한-터키 FTA

- 1 대한민국과 터키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운영지침 시달 521
2 대 터키 아세테이트 직물 수출시 원산지신고서 발급과 관련한 유의사항 안내 527

16. 한-페루 FTA

- 1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운영지침 시행 527
2 한-페루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변경 안내 532

17. 한-호주 FTA

- 1 대한민국과 호주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운영지침 시달 533
2 한-호주 FTA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 적용 품목 운영 지침 541
3 한-호주 FTA 발효 관련 관세율 구분부호 신설 통보 541

18. RCEP

- 1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에 따른 관세행정 운영지침 541
2 RCEP 원산지증명서 전자본 발급 시행 안내 570

19. 한-이스라엘 FTA

- 1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발효에 따른 관세행정 운영지침 572

20. 한-캄보디아 FTA

- 1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발효에 따른 관세행정 운영지침 592

21. 한-인도네시아 FTA

- 1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 협정 발효에 따른 관세행정 운영지침 609

22. APTA 등 일반 협정

- 1 APTA 등 일반특혜협정에 대한 원산지확인서 처리 지침 통보 625
2 APTA 등 협정세율 대상물품 신고수리전 반출 허용 수정지침 시달 625
3 APTA 직접운송원칙 입증서류관련 지침 송부 626
4 APTA 직접운송원칙 입증서류관련 추가 지침 송부 626
5 한·중 간 APTA 원산지 전자자료 교환 시스템 전면시행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제출 방법 안내 626
6 세계무역기구협정(WTO) 일반양허관세적용국가 통보 627
7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별표 1] 627

※ 참고자료

- 1 한-EFTA HS기준연도 변환(HS2012→HS2017)에 따른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유의사항 안내 628
2 중국세관의 인증수출자 관리방법 628
3 한-중 FTA 원산지 증명서 수량 단위 코드 목록 632
4 한-베트남 인증수출자 인증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 안내문 633
5 한-베 EDDDES 개통관련 공지사항 635

6 RCEP 회원국별 인정되는 원산지증명 형태	636
7 RCEP HS기준연도 변환(HS2012→HS2022)에 따른 품목별 인증수출자 인증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유의사항	636
8 RCEP 협정상대국 인증수출자 번호 부여 체계	637
9 List of RCEP Parties' Certificate of Origin Issuing Bodies as of 1 January 2022	637
10 중국세관의 RCEP 하의 수출입물품 원산지 관리방법 공포에 관한명령	638
11 인도 무역협정에 따른 세관 원산지관리규칙(비공식 번역)	650
12 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규정의 집행 규칙 [CAROTAR, 2020] FAQ	656
13 일본의 RCEP 협정 관련 질의응답.....	658
14 EU 현행 인증수출자제도 주요내용 안내.....	661

부록 서식 등 참고자료

1 수출자용 표준 질의서(안)【서식】	664
2 FTA 협정적용에 필요한 주요 환적국 세관통제 확인서류 안내	667
3 RCEP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간이 인증 신청서 및 협약서	677
4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개정 서식	678

질의회신 _ 협정별

1. 공 통

1. B/L양수도 거래시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수입자

Q : 국내양도 받은 물품을 수입신고시에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상 수입자를 원산지증명서의 수입자를 기재하여야 하는지 또는 수입신고서의 수입자를 기재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019.05.16.)

A : 협정관세적용신청서의 수입자 상호는 동 신청서의 작성방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수입자 상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2. BOM 작성 방법 및 증빙자료

Q : 수출물품의 원산지기준이 세번변경기준인 경우 BOM 작성시 원재료의 금액 기재 여부 및 관련증빙 자료는 무엇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017.07.14.)

A : 수출물품의 원산지기준이 세번변경기준인 경우에는 원산지소명서, BOM 등 원산지 확인을 위한 서류 작성 시 생산에 투입된 모든 원재료를 기재하되 가격에 대한 정보는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울러 세번변경관련 입증서류로는 원료구입명세서, 생산공정명세서, 원재료의 품목분류확인자료 등 원재료 생산과 관련된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라면 모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E-mail로 받은 원산지증명서를 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1. 귀 법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법인 문서 2009-04-22-002호와 관련하여 “E-mail로 송부받은 원산지증명서”는 원본으로 인정되지 않음을 회신합니다.

<참고>

○ 질의/회신 근거 : 근거자료:공정무역과-692 · 회신일자: 2007.02.27 ○ 사실관계 및 질의

Q. E-mail로 송부된 원산지증명서를 원본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A. 회신내용E-mail 또는 FAX로 송부된 원산지증명서는 어떠한 형식으로도 원본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세관장의 원산지증명서 제출요구가 있는 경우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4. FTA관세특례법상 이의제기 절차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 2013-07-22(회신일자)

질의 : ○ 세관장은 수입자에 대한 원산지조사를 마치면 조사 결과와 그에 따른 결정 내용을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FTA관세특례법 제13조제2항),

-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는 조사 대상자는 조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FTA관세특례법 제13조제7항 및 제8항)
- 따라서 수입자조사결과 원산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조사결과와 결정내용을 통지해야 하는데, 이 경우에도 수입자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원산지조사가 확정되었다는 결과통지에 대해서만 이의제기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모든 결과통지에 대해 이의제기 할 수 있는지

<갑론> 확정되었다는 결과통지에 대해서만 이의제기 가능

- 원산지조사가 확정되기 전 결과통지는 절차통지에 불과하며, 세관장은 추가적으로 국제검증을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 결과에 따라 조사결과가 확정되는 것

<을론> 원산지 미확정 상태의 조사결과에 대해서도 이의제기 가능

- 각각의 조사는 그 조사를 마치면 결과를 통지하는 것이므로 해당 조사는 확정된 것이며, 법 규정상 모든 조사결과통지에 대해 이의제기가 가능

답변 : 1. 서울세관 자유무역협정3과-1730(' 13.6.27)호와 관련입니다.

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3조제7항에 따라 세관장이 조사결과와 그에 따른 결정내용을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는 것은 조사결과 원산지가 결정된 경우에 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질의한 바와 같이, 수입자에 대해 원산지를 조사한 결과 원산지를 확정할 수 없어서 추가적으로 수출자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 세관장은 동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수입자에게 통지하는 것인 바,
- 동 조 제8항에 따라 수입자가 이의제기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끝.

5. FTA수입자 원산지증명서 원본보관 의무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 2017-09-08(접수일자)

질의 : ○ 협정관세 적용을 받은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 보관과 관련하여 원본을 보관하여야 하는지 또는 사본을 보관해야 하는지 여부

- 「FTA관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 “수입자가 보관해야 하는 서류” 중 “원산지증명서 사본”을 규정
- 「FTA관세법 고시」 제18조제1항 “수리 후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시 제출서류 중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규정

답변 :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받은 수입자는 개별협정 및 FTA 관련법령에 의거, 원산지증명서 사본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규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6. FTA특례법 제17조 제1항의 해석에 관한 질의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 2011-01-28(회신일자)

질의 : FTA특례법 제17조(협정관세의 적용보류) 제1항”의 “동종동질 물품”이란

답변 : “FTA특례법 제17조 제1항(협정관세의 적용보류)”의 해석과 관련하여 “동종동질 물품”은 관세법시행령 제25조(동종동질 물품의 범위)에 규정된 바와 같이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물리적 특성, 품질 등이 동일한 물품”임

7. FTA 협정상 OEM 생산제품의 원산지 관련

해외(FTA 체결국)에서 생산되어 국내에 유통되는 OEM* 생산제품 중 우리나라 회사 브랜드를 부착한 경우 FTA 협정상 국내산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질의

*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 : 생산자가 물품을 주문한 회사의 상표를 물품에 부착하는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을 말함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된 국가에서 생산된 OEM 생산제품의 원산지는 국내 회사의 상표가 부착되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각각의 FTA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결정기준에 따라 결정되며,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도 원산지 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운송요건 등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FTA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8. FTA협정세를 적용시 제3국 송품장(INVOICE)발행시 원산지증명서 기재방법은?

FTA의 협정관세를 적용함에 있어 반드시 원산지국의 회사가 송장을 발행하여야 하지 않는다. 즉 제3국의 회사가 송품장을 발행한 경우(보통은 중계무역이 많을 것임)에도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한-아세안FTA에서는 제3국 발행 송장은 원산지양식 13란 “Third Country Invoicing” 항목에 (√)로 표시하고 제7란에 송장을 발행한 회사의 이름 및 국가 정보를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다.

제3국에서 발행한 송장의 회사와 국가정보 등이 미기재 되어 있는 경우 통관단계에서 확인된 경우 보완요구 또는 협정관세적용 신청서를 반려하고, 사후심사단계에서는 원산지 검증절차 개시한다.

13란에 체크가 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도 단순 착오라는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C/O효력 인정된다. 예를 들어 제7란에 제3국 송장 발행인의 국적, 회사정보 등이 기재되어 있으면 인정된다.

동 지침은 관세청FTA포털(<http://fta.customs.go.kr>)의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9. HS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매용 세트물품”으로 분류된 상품의 경우 원산지결정기준은 어떻게 적용하여야 하는지?

(협정문에 세트물품의 규정이 없는 경우)

- 「HS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분류된 세트물품 세번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하여 원산지 충족여부를 판단

(협정문에 세트물품의 규정이 있는 경우)

- 각 협정문의 세트물품 규정을 적용하여 원산지 충족여부를 판단
EX) 구성품 각각의 세번에 해당하는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여부를 판단하여,
① 모든 구성품이 원산지물품으로 판정된 경우, 또는
② 비원산지 구성품이 전체 공장도가격의 15%이하인 경우 원산지 인정

10. OEM, ODM방식 생산물품의 수입시 FTA적용 가능여부 등

Q : 해외에서 OEM, ODM방식으로 생산 후 국내 수입시 FTA 협정 적용 가능한가요? (2018.11.20.)

A : 해당물품이

- ① 해당 협정에서 정한 협정적용 대상품목일 것,
- ② 협정에서 규정하는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 ③ 협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발급된 원산지증명서 구비
- ④ 직접운송원칙을 충족하는 경우 OEM, ODM방식으로 생산되어 수입된 물품이라도 협정관세를 적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11. 국내제조확인서 관련

- ① 특정업종(화학 및 섬유 등)에 국한 없이 모든 업종에서 국내제조확인서 사용이 가능한 지 여부
- ② 세번변경 기준 또는 공정누적기준에 국한 없이 국내제조확인서를 사용하여 확인한 국내부가가치 부분을 최종 수출물품의 원산지 판정 시 역내산 재료비 가치로 간주하여 합산 반영할 수 있는지?

수출용원재료 국내제조확인서는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를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해당 물품의 국내 제조 사실을 확인해주는 서류로서 사용 범위를 특정 업종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원산지 인정을 받지 못한 원재료에 대하여 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부분(공정의 수행으로 인한 부가가치 포함)은 수출물품의 원산지 결정시 반영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2. 대체가능물품의 재고물품 관리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대체가능물품의 원산지결정을 위한 재고물품관리법은 대체가능물품의 원산지결정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므로 해당 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재고물품관리법과 다르더라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보관대상 원산지증빙서류 등)에서 규정한 보관대상 원산지증빙서류중에서 동일한 물품을 반복적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BOM 구성, 원재료 단가, 원재료별 원산지지위 등에 관한 서류는 해당 수출물품이 동일한 물품임을 확인할 수 있다면 중복하여 보관하지 않아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13. 마른김의 원산지충족 입증자료

Q : 마른 김에 대한 수매확인서가 없는 경우 마른 김의 원산지입증 가능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2019.06.21.)

A : 마른 김에 대한 수매확인서가 없는 경우 마른 김의 원산지확인을 위해서는 마른 김이 국내에서 완전 생산 되었음을 입증가능 한 서류(예:어업권행사계약서, 출하확인서, 양식허가증 또는 물김생산 입증서류, 수산물 매매기록대장 등)등이 필요합니다.

14. 무상물품의 원산지기준 판정

Q : 무상수출물품도 부가가치기준 또는 최소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원산지 판정이 가능한가요? (2019.03.04.)

A : 무상물품의 경우에도 유상물품과 동일한 방법으로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기준에 따라 원산지판정이 가능합니다.

15. 법인 단위업체의 원산지신고서 작성방법

Q : 생산자가 인증수출자인 경우 생산자가 발행한 원산지신고서가 인정가능한가요? (2019.04.18.)

A : 본사가 인증수출자 인증시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제12조에 따른 법인단위 인증수출자가 아닌 경우라면, 생산공장에서 본사의 인증수출자 번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생산공장에서 인증수출자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FTA관세특례법에서 정한 인증수출자 인증요건을 갖추어 인증수출자 인증신청을 하거나, 본사에서 법인단위로 인증번호를 부여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인단위로 인증수출자 인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16. 법인사업자 분할시 인증수출자 지위 인정가능여부

Q : 업체별인증수출자인 법인이 분할되어 신규 사업장이 신설된 경우 신규사업장이 기존 법인의 기존 인증수출자 인증번호를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나요? (2017.03.28.)

A : 「FTA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제15조(인증사항 변경신고)제3항에 의거, 법인 사업자가 기업의 분할 등으로 사업자등록번호가 추가되어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신규 사업장에 대해 새로운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17. 보세공장 반입물품 재 반입시 협정관세 적용 가능여부 관련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171, 2015.1.16

1. 귀사의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수입시 협정관세를 적용받아 내국물품이 된 물품을 보세공장에 반입 후 다시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8. 보세공장으로 원료수입 후 생산한 물품이 FTA협정세율이 적용가능한가

FTA는 계약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철폐 또는 인하하는 것 이므로 협정상대국으로부터 원료를 수입하여 우리나라의 보세공장에 반입한 후 국내 생산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FTA를 포함한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협정의 원산지기준에 따라 원산지가 인정이 되어야 하며 해당국가의 발급기관으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갖추고 있어야 하고 우리나라로 직접운송되는 등 원산지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므로 보세공장 반입 후 국내생산된 물품에 대하여는 특혜관세 적용이 불가능하다.

참고로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에 대한 공지사항을 보면 국내 보세공장 및 자유무역지역 등에서 생산된 물품은 APTA 특혜관세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 결정지침을 내린 바 있다.

19. 보세공장 잉여물품의 협정관세적용 관련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2683, 2013-11-14

질의 : ○ 보세공장 반입물품에 대해 ‘사용신고’ 후에 제품 생산 중단 등의 사유로 사용하지 않은 원상태로 수입하는 경우

- (1) FTA관세특례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리 전 협정관세 적용’ 신청을 보세공장 사용신고시 해야하는지 수입신고시 해야 하는지
- (2) FTA관세특례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수리 후 협정관세 적용신청’ 은 보세공장 사용신고 후 1년이내에 할 수 있는 것인지 수입신고수리후 1년이내에 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 : 1. 귀소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관세법」 제186조에 따라 보세공장에서 사용하기 위해 반입한 물품을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27조에 따라 제품생산 중단 등의 사유로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인 잉여물품이 발생하여 원상태로 국내로 수입하는 경우,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적용신청은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같은 법 같은 조제3항에 따라 해당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부가가치기준물품의 원산지소명서 작성방법

Q : 품목별 인증수출자 인증을 위해 원산지소명서를 작성할 때 수출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이 부가가치기준인 경우에도 원산지소명서에 각 원재료에 대한 HS품목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나요? (2018.02.02.)

A : 원산지소명서는 법정서식으로 원산지기준 여부와 관계없이 제11란(품목번호)에 HS6단위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산지기준이 부가가치기준인 경우에도 최종제품 생산에 사용된 원산지재료에 대한 HS품목번호 확인 등의 사유로 원산지소명서 제11란(품목번호)에는 HS6단위가 기재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21. 부가가치기준 비원산지재료비 공제 관련

우리나라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에서 비원산지재료에 포함된 원산지재료비에 대하여는 협정별로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한-칠레, 한-싱가포르, 한-미 FTA에서는 상기 원산지재료비를 차감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고, 한-EU FTA에서는 비원산지 제품이 이후 다른 제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용된 비원산지 제품에 포함된 비원산지 재료만을 고려하여 정하게 되어 있으며, 한-인도 CEPA에서도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을 산정할 때 비원산지재료에 포함된 원산지재료의 비용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EFTA, 한-ASEAN FTA에서는 부가가치기준 적용시 비원산지 재료는 수입시 과세가격 등으로 가격을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비원산지재료에 포함된 원산지 재료비는 필요한 경우 공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2. 사본을 제출토록 허용한 FTA의 경우 수입신고 수리 후 협정 관세 신청할 때, 스탬프 날인 생략이 가능한지 여부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 2016-06-10(접수일자)

질의 : ○ 한-미 FTA 등 협정에서 원산지 증명서의 사본 제출 허용

- 협정관세 사전신청에 대하여는 FTA특례고시 제30조 제3항에 의거하여 스탬프 날인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다만, 수입신고 수리 후에 대하여는 규정하는 바가 없어, 스탬프 날인을 생략한 채 제출할 경우 종종 기각 당하여 업무에 불편을 겪는 사례가 발생

⇒ 한미 FTA 등 협정에서 사본을 제출토록 허용한 FTA의 경우 수입신고 수리 후 협정 관세 신청할 때, 스탬프 날인 생략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 : 1.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협정관세 사전 신청시에는 원산지증명서 사본에 사본제출 스탬프를 날인하여 제출 가능하며 사본 제출을 허용한 협정의 경우 스탬프 날인이 생략 가능합니다.
-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시에는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제출해야 되나 협정에서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사본 제출을 허용하고 있는 한-미 FTA의 경우 스탬프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원산지에 관한 조사’ 결과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규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3조

23. 쌀 완전생산 입증서류

Q : 쌀이 한국산(완전생산)임을 입증가능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2018.04.13.)

A : FTA관세특례법 시행규칙 제12조에서는 농산물에대한 원산지확인서로 관세청장이 농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증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서류를 원산지 확인서로 인정·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에서는 ①친환경농산물인증서 ②농산물우수관리 인증서 ③ 농산물 이력추적관리등록증 ④지리적표시 등록증을 원산지확인서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 서류가 없는 경우 쌀의 실제 생산확인자료(예시:농지원부, 수매확인서) 및 거래관계 확인자료(예시: 매매계약서 등)로 농산물의 완전생산입증이 가능합니다.

24. 생산자가 다수인 경우 원산지증명서 작성 방법

Q : 수출자와 생산자가 상이하고 생산자가 다수인 경우 원산지증명서 기재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18.01.12.)

A : 원산지증명서는 협정에 정하는 대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생산자가 다수인 경우 상품을 생산자별 구분하여 기재하거나 합쳐서 하나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 협정 규정에 따라 생산자와 수출자가 상이한 경우 원산지증명서 제2란(생산자)에는 생산자의 법적 이름과 주소를 기재해야 하며, 생산자가 다수인 경우 추가적인 생산자의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25. 생산지원비의 협정관세 사후적용 가능여부

Q : 수입 물품(금형)의 과세가격에 포함된 생산지원비도 사후협정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2017.02.09.)

A : FTA특례법 제6조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요건을 갖춘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과세가격에 포함된 생산지원비도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26. 소매용 포장용기 등 원산지확인서 관련

- ① 한-EU FTA에서 소매용 포장용기도 원산지 판정시 고려해야 하는지?
- ② FTA특례고시의 원산지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로 한-칠레 FTA 원산지 신고서로 대체가 가능한지?

질의하신 소매용 포장용기가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통칙 제5호에 따라 내용물과 함께 분류되는 경우에는 상품의 원산지결정에 포함되며, 상품이 원산지 물품인 경우 소매용 포장용기도 원산지 물품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한-칠레 FTA에 따르면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수출자는 생산자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에 근거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원산지신고서는 「한-칠레 FTA 통일규칙」 제3조에 따른 서식으로 작성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27. 수돗물의 원산지 입증 자료

Q : 수돗물의 원산지가 ‘한국산’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무엇인가요? (2019.10.21.)

A : 수돗물의 한국산 입증서류로는 수돗물이 우리나라에서 완전히 추출되었다는 입증 서류, 수돗물 공급내역 자료(예시:상수도 사용영수증 등) 등으로 입증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8. 수리비, 왕복운임, 임가공비의 FTA 협정관세 적용 여부 질의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 2010-04-23(회신일자)

질의 : 수리비, 왕복운임, 임가공비의 FTA 협정관세 적용 여부

답변 : ☐ 관세법 제14조 규정에 의해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09.8.20) 제5-8조에 따르면, 수리 또는 가공 후 재수입되는 물품의 과세가격은 당초 수출된 물품의 가격뿐 아니라 수리 또는 가공에 소요된 비용 및 기타 제비용을 포함한 가격을 의미합니다.

☐ 이때 적용할 세율은 FTA특례법 제5조 규정에 의해 FTA협정관세가 기본세율보다 낮은 경우 협정관세가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과세기술상 수입신고란을 분리하더라도 당해 수입물품 전체에 대해 협정관세가 적용됩니다.

☐ 따라서 재수입되는 물품이 협정관세 적용 요건을 구비한 경우, 당초 수출된 물품에 대하여 해외임가공 물품 등의 감세 적용신청을 위해 과세기술상 수입신고란을 분리한 경우에도 해외임가공 물품 등의 감세 적용 대상이 아닌 수리(가공)비용 및 왕복운임에 대해서도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9. 수리후 협정관세 적용 여부 질문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 2012-11-21(회신일자)

질의 : ○ 신청인의 요청으로 ‘기각’ 처리한 협정관세 사후신청건을 무효로 보아 최초 신청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수리 후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수리 후 1년 이내 신청하였으나, ‘2개의 란’이 아닌 ‘1개의 란’에 대하여만 신청
- ‘2개의 란’을 모두 신청하기 위해 세관에 기각을 요청*하였고 세관은 ‘기각’ 처리함. 이에 신청인은

다시 신청함

- * 협정관세적용시스템에서는 란을 추가하여 전송하는 것이 되지 않아, 기 접수된 협정관세신청을 기각요청함
- 하지만 이미 1년이 지나 신청할 수 없게 되자, 최초 신청한 사항(‘1개의 란’에 대한 신청)에 대하여만 인정해 줄 것을 요청

답변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신청인의 요청에 의해 세관장이 ‘협정관세적용신청’을 기각한 경우 해당 ‘협정관세적용신청’은 그 신청의 효력을 상실한 것이므로 유효하다고 볼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0. 수입신고서상 수출자와 C/O상의 수출자가 상이한 경우 C/O 유효성 여부

통상 “수출자”라 함은 국제 무역거래에 있어 수입자의 거래계약 당사자로서 거래대금의 결제 상대방이며, 각 FTA 협정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산지 검증시 원산지에 대한 입증책임과 기록유지 의무 등의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해 수출물품에 대한 수출자가 아닌 생산자, 제조자 등이 수출자로 되어 있는 원산지증명서는 FTA 특혜신청을 함에 있어 유효하다고 볼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1. 수입신고 이후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로 협정관세 사후적용 가능여부

Q : 수입당시 원산지증명서 미발급으로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않고 수입신고 후 수출자로부터 3개월 후에 원산지증명서 발급받은 경우, 사후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로 협정관세 사후적용신청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018.04.02.)

A : 원산지증명서가 수출 후에 발급된 경우라도 FTA특례법 제9조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지 못한 수입자는 해당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 사후적용신청이 가능합니다.

32. 수입신고 이후 소급발급된 원산지증명서로 협정관세 사후적용 가능여부

Q : 수출자가 수출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지 않고 우리나라 수입이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018.04.02.)

A : FTA특례법 제9조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지 못한 수입자는 원산지증명서가 수입이후에 소급발급되었다 하더라도 해당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 사후 적용신청이 가능합니다.

33. 수출신고서상 제조자가 미상으로 기재된 경우 수출물품의 제조자 중 하나의 업체가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가능 여부

자유무역협정 집행기획담당관, 2016-01-22(접수일자)

질의 : ☐ 사실관계

- 수출신고서상 수출자 A, 제조자는 다수인 관계로 미상으로 기재

☐ 질의사항

- 수출신고서상 제조자가 미상으로 기재된 경우 수출물품의 제조자 중 하나의 업체가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가능 여부

답변 : 1. 귀 법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수출신고서상 제조자가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거래관계 서류로 수출물품의 실질적인 제조자로 확인되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 제조자가 생산한 물품에 대해서만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34. 수출용 원재료 원산지확인서 관련

① 대리점 판매

질의 : 당사는 국내에서 제조한 제품을 대리점에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예를 들어, 한-칠레 FTA에 의거 부가가치기준 공제법에 따라 44%로 원산지미충족건이라서 ‘미충족’으로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발급했습니다. 그런데 대리점에서 판매마진/운영비등을 추가하여 판매가를 책정 세금계산서 발행시 혹시 부가가치가 추가되는지는 모르겠으나, 대리점이 원가계산을 다시 해서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재발급해야 한다면 당사의 원가내역을 요구할 것이라 보여집니다. 주지하다시피, 원가내역공개는 가능한 일이 아니므로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답변 : 수출용 원재료 원산지확인서의 발급은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를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어 수출용 원재료를 공급하는 대리점의 경우도 원산지확인서의 발급이 가능(FTA 관세특례법 시행규칙 제6조의3)따라서 대리점도 원칙적으로 생산자로부터 수출용 원재료 원산지확인서 등을 제공받아 대리점의 판매마진 등을 추가하여 부가가치비율을 계산 후 원산지확인서 발급 가능만약 생산자가 공급물품에 대해 ‘원산지기준 미충족’으로 수출용 원재료 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하고 대리점에 원가관련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리점에서는 공급받은 물품 전체를 비원산지 재료로 간주 하여 판매비, 이윤 등을 감안 부가가치비율을 산정 후 원산지확인서 발급 가능

② 국내판매

질의 : 세번변경기준이 아닌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해야 할 경우, 국내판매의 경우 본선인도가격(FOB) 대신 세금계산서발행 관련 국내공급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답변 :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국내공급가액이 재료 비용과 이윤 및 일반경비 등을 포함한 가격으로서 협정에 서 규정한 비용 등을 포함하였다면,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국내공급가액을 적용가능

③ 원재료가격

질의 : 제품을 만들기 위해 투입되는 원재료가 대부분 수입이 되고 있지만, 국내에서 조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수입가는 외화기재, 국내매입은 원화기재로 되어 있어 부가가치기준 적용이 적절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예를들어, 원화를 통일한다면, 동질/동종의 제품을 수입하는데 2009.1.1에 수입가 US\$5/KG(환율: 1,000원), 3월 1일에 US\$5.2/KG(환율: 1,100원), 5월1일에 US\$5.2(환율: 1,000원)이었다고 하면 각기 1톤씩 수입할 경우 원화단가가 각각 상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일정기간 포괄확인서 작성이 가능할지요? 아니면 원산지확인서를 건별로 발행해야 할지요? 아마 자동차업계의 경우 건별 발행은 원치 않을 것이며 당연히 관리측면에서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변 : 외화환산 회계 등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GAAP)에 부합하는 일관된 기준에 따라야 하며, 표준원가 혹은 추정원가 등을 적용하여 포괄확인서 발행 후 실제생산시점에 실제원가를 적용, 부가가치비율을 재산정하는 방법은 가능할 것임, 재산정후 원산지결정 ‘불충족시’ 즉시 해당업체에 통보하여야 함

④ 로얄티 지급

질의 : 사후(일년후) 로얄티지급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 부가가치기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변 :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발생주의 원칙으로 회계처리를 한 경우 로얄티 금액이 재료원가에 미리 반영될 것이므로 부가가치 계산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임

⑤ 업체별/월별 상이한 판매가

질의 : 업체별로 국내판매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매 업체별로 판매가를 달리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평균가격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또한, 한 업체인 경우에도 판매가가 매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판매가를 매번 달리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일정기간(1년) 평균가격등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답변 : 업체별 판매가격은 부가가치 비율 산출시 중요한 요소로 그 가격이 업체별로 상이하다면 각각 상이한 가격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판매가에 따라 부가가치비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판매가를 적용하여야 함

⑥ 원재료국내매입시 원산지 확인서

질의 : 예를 들어 국내에서 원재료 매입시 당사도 FTA원산지(포괄)확인서를 국내업체들에게 요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역시 해당제품에 대해 FTA별로 각기 원산지확인서를 받는 것이 맞을런지요?

답변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원산지확인서를 적용대상협정별로 생산자나 공급자로부터 통보받을 수 있음

35. 수확시기에 따른 물품의 직접운송 해당여부

수확시기에 맞춰 물품을 구입하여 제3국에 보관하였다가 판매되어 운송하는 경우 직접운송 해당 여부

한-ASEAN FTA, 한-인도 CEPA, APTA,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규정에서는 지리적 이유 또는 운송상 이유에 해당할 때에만 제3국을 경유를 인정하고 있으며,

한-EU FTA에서도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에게 일시에 송부되었거나 단일운송서류 또는 단일 송품장에 의한 단일탁송화물에 대해 제한적으로 제3국 경유를 인정하고 있는 바,

질의 내용과 같이 수확시기에 맞춰 물품을 구입하여 제3국에 보관하였다가 판매되어 운송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36. 스크랩 및 폐기물의 완전생산 입증자료

Q :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스크랩 및 제품생산을 위한 생산시설(틀, 통 등)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폐기물인 된 경우의 완전생산 입증자료는 무엇인가요? (2018.11.26.)

A : 완전생산 입증자료로는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부스러기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생산에 투입되어 사용되었던 틀 또는 통이 더 이상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 될 수 없고 원재료 회수용으로 적합한 폐기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입증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7. 완전생산 입증서류

Q : 수산물과 축산물의 완전생산 입증서류는 무엇인가요? (2018.12.10.)

A : 수산물의 완전생산 입증은 경우에는

- ①원양생산의 경우에는 원양생산 증빙자료(예시: 선박국적증명서, 원양어업허가증, 어획반입신고 확인서 등)
- ②근해생산의 경우에는 근해생산 증빙자료(예시:어업허가증, 출하확인서류, 수산물 수매확인서 등) 등으로 할 수 있으며,

축산물의 경우에는

- ①실제생산자 및 목장의 증빙자료(예시: 조합원 확인서류, 목장등록 자료)
- ②생산능력자료(예시: 예시: 연간 생산량, 생산시설, 생산인력등 확인자료) 등으로 완전생산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8. 우리나라 수출세번과 상대국의 수입세번이 상이한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법

Q : 본사가 품목별인증수출자인 경우 본사의 생산공장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서 본사의 인증수출자 번호를 사용할 수 있나요? (2019.04.18.)

A : 우리나라 수출세번과 상대국의 수입세번 상이시에는 협정상대국의 HS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서류*를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제출하고, 우리나라 HS번호와 협정상대국 HS번호로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공식서류: 수입신고필증, 품목번호 확인서, 사전심사결정서(advance ruling), 협정상대국 관세 ? 품목분류표에 명확하게 규정된 품목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정보

39. 원산지 결정기준 관련 질의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 2012-07-09(회신일자)

질의 : 국내에서 제조된 물품이 제3국(홍콩)에서 수입·통관되어, 추가 가공 없이 원상태로 보관되었다가, 다시 국내로 재수입되는 경우에도 원산지(한국산)물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답변 : FTA 특례법 제9조2항(원산지결정기준)에 따라 원산지 물품이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하여 운송되거나 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선적된 경우에는 그 물품을 원산지 제품으로 인정하지 않으나, 보세구역에서 운송 목적으로 환적되었거나 일시적으로 장치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산지 물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제조된 물건이 홍콩에서 수입통관 후 국내로 재반입 된 경우에는 원산지가 우리나라로 인정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40.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관련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2101, 2013.9.3.

1.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국내 철강업체의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스크랩이 원재료회수용으로 적합한 경우 해당물품은 각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생산 기준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3. 또한 원산지확인서는 물품을 공급하는 자가 그 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제공하는 서류인 바, 물품을 공급하는 자가 완전생산기준에 충족한다는 원산지확인서를 작성·제공하여야 합니다.

41. 원산지 신고서 작성 요건

(질문1에 대한 답변) 무역거래 당사자가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은 업체가 아닌 경우에는 6,000유로를 초과하는 탁송수출화물에 대해서는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본사 명의로 본사의 책임 하에 무역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본사가 인증수출자이어야 합니다.

(질문2에 대한 답변) 인증수출자 지정요건에 따라 원산지관리전담자는 인증수출자별로 지정·운영하여야 하며 다만, 특정 사업장이 다수 사업장을 통제하며 실질적으로 원재료 및 완성품의 원산지 관리를 수행하고 있다고 입증되는 경우 가능합니다.

42. 원산지증명서 결정기준이 서로 다른 경우 협정관세 적용 가능 여부

질의 : FTA CO의 HS 코드에 따르면 원산지결정기준이 RVC40%이고 한국 수입 세번과 그에 따른 원산지결정 기준(CTSH)이 다른 경우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 원산지증명서는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상품이 원산지상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수출국과 수입국 세 번 상이시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원산지기준으로 수입국 세번의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여야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산지증명서의 원산지기준은 부가가치기준(RVC40)이고 우리나라 수입 세번의 원산지기준은 세번변경기준으로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원산지기준으로 우리나라 수입세번의 원산지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협정관세적용이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43. 원산지증명서 구축관련 질의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 2010-02-26(회신일자)

귀사가 10.2.22.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질문1) 부가가치 비율 산출을 위한 재료비 계산 기준

답변 : 각 협정에서 정한대로 산출한 총 재료비를 총 수량으로 계산한 “평균재료비 값”을 다음 달 동 모델 수출시 재료비 값으로 산출할 수 있습니다. 단 사후정산결과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질문2) 사내 ERP 시스템 내 원산지증빙서류 등의 법적 유효성 인정여부

답변 : 귀사의 내부통제를 갖춘 ERP시스템내 원산지 증빙서류를 보관하는 것도 FTA특례법 제 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서 규정한 자료 전달매체의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문3) 수출업무 대행사의 원산지 증명서 발급신청 가능여부

답변 : ○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제도를 규정한 한-싱가포르 FTA,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는 각 협정의 규정에 의거 원산지증명서의 원활한 발급을 위하여 위임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각 협정에 따라 서면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위임하였을 경우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원산지 증명서의 신청 업무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임받은 대리인은 원산지증명서의 신청업무만 대리할 수 있고 대리인 명의의 원산지증명서는 발급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44. 원산지증명서 기재내용의 경미한 차이 인정여부

Q :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HS Code, Description 또는 Gross weight and Value, Number and date of invoice의 내용이 제출서류와 상이할 경우도 경미한 차이로 인정이 가능한가요? (2018.05.16.)

A : 원산지증명서상 기재 항목중 HS Code, Description, Gross weight and Value, Number and date of invoice가 제출 서류상 기재된 내용과 상이하하여 원산지증명서와 해당 상품과 일치여부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동 협정에서 정한 경미한 하자로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45. 원산지증명서 발급기한의 해석

Q : 원산지증명서 선적 후 발급일 계산시 “근무일”에서 토요일이 제외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018.01.18.)

A : 원산지증명서 발급기한 계산시 ‘근무일’은 원산지증명서 발행국의 공휴일(근로자의 날과 토요일을 포함)을 제외한 날로 봐야 합니다.

46. 원산지 증명서 발급시기와 협정관세 사후적용 가능여부

Q : ①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기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협정(한-호주, EU FTA 등)의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시기와 ② 수입신고 수리 후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로 협정 사후적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018.01.12.)

A : 원산지증명서를 자율적으로 작성하는 한-EU FTA 경우, 수출될 때 또는 수입국에서 명시한 기간(우리나라 1년) 내에 제시조건으로 수출 후에 작성할 수 있으나 소급하여 작성하는 경우 작성일자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한-호주 FTA는 협정에 별도 규정은 없으나 수출될 때 또는 수출 후 일정기간 내에 작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수입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므로 그 이전에 원산지증명서가 작성되어야 합니다.

47. 원산지증명서 보관 관련

Q : 협정관세 적용을 받은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 보관과 관련하여 원본을 보관하여야 하는지 또는 사본을 보관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017.09.08)

A :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받은 수입자는 개별협정 및 FTA 관련법령에 의거, 원산지증명서 사본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8. 원산지증명서 사본제출 스탬프 관련 질의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917, 2013-04-12(회신일자)

질의 : 원산지증명서 사본제출 스탬프 관련 질의

답변 : 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 협정관세를 적용 받으려는 수입자는 원산지증명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세관장이 요구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이 경우 원산지증명서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나 수입자의 편의를 위해 사본제출 스탬프를 날인할 것으로 조건으로 사본 제출도 인정하는 것이므로 사본제출 스탬프 날인 규정은 강행규정입니다.
3. 또한, 수입자가 사본을 보관할 때 스탬프를 날인할 지 여부는 수입자가 판단할 사항이나 수입자는 반드시 원본을 확인한 후 사본을 보관하여야 하며,
4. 아울러 세관에서 원산지증명서를 요청한 경우에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사본 제출시에는 원본과 일치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스탬프를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49. 원산지증명서와 수입신고서의 세번이 상이한 경우 협정적용 가능여부

Q : 원산지증명서에 원산지기준이 ‘WP’ 또는 ‘PE’ 로 기재되고 수입신고서 세번의 원산지기준이 ① 완전생산, ② 세번변경기준, ③ 부가가치기준인 경우 협정적용 가능한가요? (2019.07.15.)

A : 원산지증명서의 원산지기준이 ‘WP’ 또는 ‘PE’ 로 기재되었다면, ①수입신고서 세번의 원산지기준이 ‘WO’ 인 경우에는 협정적용 할 수 없으며, ②수입신고서 세번의 원산지기준이 ‘부가가치기준’ 또는 ‘세번변경기준’ 인 경우에는 협정적용 가능합니다

50. 원산지증명서와 수입신고서의 세번이 상이한 경우 협정적용 가능여부

Q : 원산지증명서의 원산지기준이 ‘RVC40’ 으로 기재되고 수입국 세번의 원산지기준이 ‘RVC40’ 또는 ‘세번변경기준’ 선택기준인 경우 협정 적용 가능한가요? (2019.07.15.)

A : 수입신고서 세번의 원산지기준이 ‘RVC40’ 또는 ‘세번변경기준’ 인 경우에는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므로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원산지기준이 RVC40인 경우 협정적용이 가능합니다.

51. 원산지증명서와 수입신고서의 세번이 상이한 경우 협정적용 가능여부

Q : 원산지증명서의 원산지기준이 ‘RVC40’ 으로 기재되고 수입국 세번의 원산지기준이 ‘세번변경기준’ 인 경우 협정관세적용이 가능한가요? (2019.07.15.)

A : 원산지증명서의 원산지기준이 RVC40이고 수입신고서 세번의 원산지기준이 세번변경기준인 경우는 원산지증명서의 원산지기준으로 수입신고서 세번의 원산지기준 충족여부를 확인 할 수 없어 원산지증명서 보완후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52. 원산지증명서와 수입신고서의 세번이 상이한 경우 원산지증명서 보완방법

Q : 원산지증명서의 원산지기준과 수입신고서 세번의 원산지기준이 상이한 경우 협정적용을 위한 원산지증명서 보완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19.07.15.)

A : 원산지증명서의 세번과 수입신고서 세번이 상이하야 수입신고서 세번으로 원산지기준 충족여부 확인이 곤란해서 원산지증명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입국 세번으로 원산지기준 충족여부를 확인 후에 수입국 세번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53. 원산지증명서 원본 보관 의무

Q : 협정관세 적용 후 수입자는 반드시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보관하여야 하나요? (2018.03.09.)

A : FTA 협정관세 적용 신청시에는 수입자는 원산지 증명서 원본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받은 수입자는 개별협정 및 FTA 관련법령에 의거, 원산지증명서 사본을 보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4. 원산지 증명서 원본을 스캔 등 전자이미지화 했을 경우 원본 인정 여부

질의 :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스캔 등의 방법으로 전자이미지화 한 것을 원본으로 인정하나요?

답변 : 원산지증명서의 원본을 스캔 등의 방법으로 전자이미지화 한 것은 원산지증명서 원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베트남의 경우 한시적으로 원산지증명서 사본 인정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베트남 세관에서 한국산 수입물품에 대한 특혜관세 적용 신청 시, C/O 원본 대신 사본* 제출을 한시적으로 허용 * 사본 : C/O 원본의 스캔본 또는 사진
 - 필요 시 관세청 운영 웹사이트에서 C/O 진위성 확인
- (대상 협정) 한-아세안 및 한-베트남 FTA
- (시행 일자) ' 21.8.17. ☞ 동 지침 해제일은 코로나 상황에 따라 공고 예정

55. 원산지증명서 유효성 여부

원산지증명서의 '수입자'란에 'TO THE ORDER OF KOREA EXCHANGE BANK'라고 기재된 경우, 거래관계에 따른 무역서류(B/L, Invoice, L/C)의 증빙으로 '수입자'와 '납세의무자'를 확인할 수 있다면 원산지증명서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56. 원산지증명서의 세번과 수입신고서의 세번이 상이한 경우 원산지증명서 보완방법

Q : 품목분류번호 해석상이에 따른 해석 지침에서는 원산지증명서로 수입국 세번의 원산지기준 충족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를 보완 후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산지증명서 보완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18.08.17.)

A : 품목분류번호 해석상이 등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에서 원산지증명서 보완의 의미는 수입국 세번으로 원산지기준을 충족한 경우 원산지증명서의 세번 및 원산지기준을 수입국 세번 및 수입국 원산지기준으로 정정 발급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57.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 계산방법

Q :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수입한 물품을 자유무역지역 창고에 보관하였다가 1년이 지난 후에 수입신고하는 경우 발행한지 1년이 지난 원산지증명서로 협정적용 신청이 가능한가요? (2019.02.07.)

A : 「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6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계산시에는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이내에 수입물품이 국내에 도착한 경우 국내 도착한 날의 다음날부터 협정관세 적용신청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외합니다. 따라서,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계산결과 각 협정의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이내인 경우에는 국내 도착한 날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하여도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

합니다.

58. 원산지증명서 제출 및 발급면제 관련

- 협정관세 적용신청은 FTA특례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수입자가 선택하는 사항이고, 원산지증명서 발급면제 규정은 각 협정에서 정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59. 원산지증명서 지연 발급시 적용 방법

질의 : 동일 B/L로 수입신고한 물품 중 일부는 포괄원산지증명서로 협정을 적용 받았으나, 일부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늦어지는 건(신규 수입물품)에 대해 사후 적용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 후 1년 이내에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와 원산지증빙서류, 경정청구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협정관세 사후 적용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60. 원산지증빙서류 등의 전자문서 보관 가능여부

Q : 원산지증명서를 종이서류가 아닌 이미지파일로 보관 가능한가요? (2018.04.03.)

A : 수입자 및 수출자가 보관해야 할 서류중의 하나인 원산지증명서 사본을 광디스크·마이크로필름 등 자료 전달 매체를 이용하여 보관할 수 있습니다.

61. 원산지포괄확인서의 포괄기간

Q : 원재료 생산자로부터 공급받은 원재료가 원재료의 원산지포괄확인서의 포괄기간 경과 후 실제 생산에 투입되는 경우 해당 원산지(포괄)확인서가 유효한가요? (2018.01.09.)

A : 원산지포괄확인서는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을 동일한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장기간 계속·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 생산자 등이 작성하여 제공하는 서류이며, 원산지확인서에 실제로 물품을 '공급한 날(공급받은 날)'이 포괄확인기간내에 있으면 됩니다.

62. 원산지포괄확인서의 포괄기간 작성방법

Q : 국내 생산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의 원산지포괄확인서의 포괄기간이 ' 18.6.1~' 18.12.31인 경우 동 물품을 타업체에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발급하여 물품공급시 포괄확인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2018.09.12.)

A : '원산지포괄확인서'는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을 동일한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장기간 계속·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 생산자 등이 공급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제공하는 서류이며, FTA특례법에서는 물품공급일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품을 공급한 날로부터 12개월의 범위에서 포괄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63. 원산지확인서 '공급자' 기재 방법

Q : 본사와 공장이 개별 사업자등록번호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원산지확인서 발급시 '공급자'란에 어느 사업장의 정보를 기재하여야 하나요? (2017.03.30.)

A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원산지확인서)제1항에 의거, 원산지확인서는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해당 재료

또는 최종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하는 서류로서 물품의 실제 생산자 또는 공급자가 작성하고 기재됨을 알려드립니다.

64. 원산지확인서 발급가능 여부

Q : 원재료공급자(C사)가 생산자(B사)가 아닌 수출자(A사)에게 원산지확인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2019.01.10.)

A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원산지확인서)제1항에 의거, 원산지확인서는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해당 재료 또는 최종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하여 재료 또는 최종물품을 공급받는 자에게 제공하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원산지확인서는 실제 물품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되어야 합니다.

65. 원산지확인서 발급 전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

Q : 원재료 공급업체로부터 구매시 원산지재료임을 확인 받은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 후에 원산지확인서 발급받은 경우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가능한가요? (2019.04.08.)

A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에서는 자율증명방식의 원산지증명서 작성시 원산지확인서, 원산지소명서 또는 그 밖에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정보 등을 근거로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산지확인서가 아닌 다른 서류나 정보를 통하여 공급받은 재료의 원산지를 확인 하고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한 경우라면 동 원산지증명서 작성 후 원산지확인서를 발급받았더라도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가능합니다.

66. 원산지확인서의 공급받는 자

Q : 국내수출자가 중간판매자를 통해 생산자로부터 상품을 구매계약을 하고, 물품은 생산자가 수출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 생산자가 수출자에게 발급한 원산지확인서는 유효한가요? (2019.04.18.)

A : 원산지확인서는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해당 재료 또는 최종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하여 재료 또는 최종물품을 공급받는 자에게 제공하는 서류입니다. 해당 거래구조는 수출자가 중간판매자를 통해 생산자로부터 상품을 구매하는 거래형태이나, 실제 상품이 생산자로부터 수출자에게 직접 운송된다면, 생산자가 수출자에게 발급한 원산지확인서는 유효한 원산지확인서로 인정가능합니다.

67. 원산지확인서 작성방법 관련

(1) 원산지포괄확인서는 ‘작성일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되어 포괄확인기간의 기산일을 작성일로 정하고 있는 바, 기존에 공급한 물품에 대해 사후에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 [예] 공급일 : ' 12.1.1 ~ ' 12.6.30, 작성일 : ' 12.10.1

(2) 단수원산지확인서의 경우 사후발급에 대한 규정이 없는 바, 가능여부

- 가능하다면, 기존에 동일물품이 공급된 경우 동일한 원산지확인서가 공급되어야 하는데(현행 서식에 공급일을 작성하는 란이 없음) 원산지확인서에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는 방법

‘원산지포괄확인서’는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을 동일한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장기간 계속·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 생산자 등이 작성하여 제공하는 서류이므로, 포괄확인기간이 ‘작성일로부터 12개월의 기간’이라 하더라도 사후에 작성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수원산지확인서’에 대하여도 법령에서 사후에 작성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으므로 작성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 때 원산지확인서 서식 ⑩란(원산지포괄확인기간)에 실제 물품공급일자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68. 원산지확인서 작성 여부 질의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 2013-04-05(회신일자)

질의 : 부품 전체를 공급받아 제품 생산 후 납품하는 경우*, 생산자(외주조립업체)를 부품공급자의 생산처로 볼 수 있는지(원산지확인서를 작성·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 부품을 공급하는 공급자가 제품의 전반적인 관리(설계, 도면, 설계변경 이력관리 등)을 진행하고 생산자는 공급자의 제품만 생산하는 관계

답변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3에 따라 ‘원산지확인서’는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나 물품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공할 수 있는 서류이므로

원산지확인서를 작성·제공한 생산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현지조사 등 세관의 원산지조사를 받을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생산자가 작성·제공한 원산지확인서가 없더라도 물품을 공급받은 귀사가 그 물품의 원산지를 직접 입증할 수 있고 현지조사 등 세관의 원산지조사를 모두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생산자가 반드시 원산지확인서를 작성·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69. 원산지확인서 재발급시 유효성 여부

귀 법인 질문과 같이, 기 수취한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재발급하는 경우 재발급일 당시의 원산지관리자가 서명한 원산지(포괄)확인서는 유효한 원산지(포괄)확인서로 인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0. 원재료가 모두 역내산으로 가공공정 적용시 공정기준 충족 여부

질의 : 제품생산에 투입되는 원재료가 모두 역내산이고 완제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이 가공공정인 경우, 원재료가 모두 역내산임에도 불구하고 가공공정기준을 충족시켜야 원산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 원산지재료만 사용하여 생산된 물품의 경우, 개별 품목별 원산지 규정에서 요구하는 가공공정을 거치지 않아도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가능하며, 이 경우 관련 FTA 협정문과 품목별 원산지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1. 유효기간 경과 원산지증명서 정정 가능여부

Q : 유효기간이 지난 원산지증명서 정정이 가능한가요? (2018.12.05.)

A : FTA특례법령 관련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의 오탈자, 수량, 품목번호 등 착오, 누락, 기재오류, 또는 수출신고 수리필증의 정정 등의 이유로 원산지증명서 정정이 가능합니다.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라도 원산지증명서 원본, 정정발급 신청사유서, 정정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원산지증명서 정정은 가능하나, 이 경우 수입관세당국에서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2. 윤활유 제조공정이 불인정공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귀사의 윤활유(절연유 포함) 제조시 배합(혼합)공정이 귀사에서 제출한 자료 및 2011년 7월14일 추가 제출한 자료와 같이 용도에 따라 점도 및 성상이 다른 여러 가지 원재료(기유)와 첨가제의 혼합(배합)비율을 달리하여 수백가지 종류의 윤활유(절연유 포함)를 생산하며, 혼합비율은 특별히 영업비밀로 관리하고 있어, 윤활유 배합기술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며,

귀사의 윤활유 제조공정이 백토 반응 처리 후 필터장치, 탈수탈기 장치, 첨가제 용해 및 분산장치로 구성되어

있으며, 배합기 자체도 생산될 윤활유 종류에 따라 다르고, 생산제품별 전열속도, 교반시간 및 속도 등을 조절할 수 있는 등 윤활유 제조를 위한 특화된 장비라면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한-EFTA 및 한-EU FTA에서 규정하는 ‘불인정공정’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한-미 FTA는 불인정공정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답변은 귀하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73. 인증수출자의 자율점검 제출기한

질의 : 원산지 인증수출자는 인증 요건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자율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하는데 해당 제출 기한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답변 :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에서는 원산지인증수출자는 인증수출자 인증요건이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를 자율적으로 점검한 후 그 결과를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회차 및 2회차의 제출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회차: 인증후 2년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
2. 2회차: 인증후 4년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

74. 인증수출자 인증방법

Q : 생산자와 수출자가 상이한 경우 인증수출자 인증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17.09.13.)

A : 수출자와 생산자가 상이한지 여부는 인증수출자 인증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업체별 또는 품목별 인증수출자 중 어떤 유형의 인증을 신청할지 여부는 아래의 인증요건과 혜택을 참고하시고, 사전에 인증신청 관할세관의 담당자와 상담을 통하여 결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75. 임가공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

Q : 임가공 위탁자가 임가공 수탁자에게 무상으로 일부원재료를 공급하고 나머지 원재료는 임가공 수탁자가 구매하여 완제품을 생산시 임가공 위탁자가 무상사급으로 공급한 원재료에 대한 자료를 임가공 수탁자에게 제공해 주는 경우 임가공 수탁자가 완제품에 대한 원산지확인서 발급 가능한가요? 또한, 임가공위탁자가 임가공수탁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한 원재료에 대한 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해 줄 수 있나요? (2018.05.10.)

A :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자는 해당 재료 또는 최종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한 원산지확인서를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가공위탁자가 무상사급하는 재료에 대한 자료를 임가공수탁자에게 제공한다면 임가공수탁자는 이를 근거로 완제품에 대한 원산지를 확인하여 원산지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임가공위탁자는 임가공수탁자에게 공급한 원재료에 대한 원산지를 확인하여 원산지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76. 자유무역지역 반입물품 수입시 적출국을 한국(KR)으로 기재 시 협정적용 가능 여부

질의 :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한 물품을 수입할 때 적출국을 한국(KR)으로 기재하더라도 협정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한 물품 수입시 적출국을 한국(KR)으로 기재하더라도 협정적용 받고자 하는 물품이 계약상대국으로부터 우리나라로 직접운송 되었음과 원산지증명서의 물품과 협정적용 신청하고자 하는 물품이 동일물품임이 확인가능하고, 협정에서 정한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77. 자유무역지역 반입물품의 사후적용신청 가능여부

질의 :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한 물품을 수입할 때 협정관세적용을 신청하지 못했는데 사후적용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 「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하므로, 자유무역지역에 반입 시기와 상관없이 협정관세 사후적용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78. 자재명세서(BOM) 작성시 간접재료 기재 방법

질의 : 원산지증명서 근거자료로 BOM 작성시 활성화탄(최종 제품의 색깔을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서 투입되며, 정제공정 이후에는 활성화탄이 모두 제거됨)을 기재하여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 활성화탄의 경우 제종공정 등의 확인을 통해 최종제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지 않는 경우에는 간접재료에 해당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모든 FTA 협정은 상기 간접재료(또는 중간재)가 원산지 결정 시 재료로 간주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해당 FTA 협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BOM은 생산에 투입된 모든 재료를 표시할 수 있는 자재명세서로서 간접재료도 자재명세서에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재명세서의 작성요령을 FTA 협정이나 관련 국내 규정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생산 사실을 반영하여 작성하면 될 것입니다.

79. 재고관리기법 적정성관련 질의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 2016-08-01(접수일자)

질의 : ○ 재고관리기법

- 회계 재무제표상 선입선출법이 기재
- 실제로 월평균법 사용 중, ERP, 기타 재고관리 증빙자료도 월평균법 사용
- 선입선출법을 적용하게 되면 실제 재고관리기법인 월평균법과 차이 발생

○ 대체가능물품을 재고관리기법에 따라 회계 재무제표상 선입선출법 기재되어 있으나 원산지판정하는 경우 월평균법을 사용해도 검증상 문제가 없는지

※ 동종 동질의 곡물, 과일, 볼트, 너트, 베어링, 타이어 등과 같이 물품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동일하여 원산지가 서로 다르더라도 상업적으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상품 또는 재료

답변 : 1. 귀 법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FTA특례법 시행규칙상 재고물품관리법은 대체가능물품의 원산지결정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므로 해당 제품에 대해 당해 회계연도 중 하나의 재고기법을 사용하였다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3. 다만 ‘원산지에 관한 조사’ 결과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규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7조

80. 재수입물품에 대한 협정적용 방법

Q : 협정상 원상태 재수입물품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 협정적용 가능여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018.10.15.)

A : 협정에서 재수입물품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99조(재수입면세)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관세 면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81. 제3국 발행 통과선하증권의 인정여부

Q : 협정에서 직접운송 증빙자료로 수출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는 협정의 경우 제3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도 인정 가능한가요? (2019.02.13.)

A : 통과선하증권의 발행국가를 수출당사국으로 한정하지 않는 협정의 경우에는 제3국에서 발행된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는 경우에도 직접운송요건 증빙자료로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82. 제품생산시 발생한 스크랩의 역내산 인정여부

Q : 국내에서 원재료 철괴를 사용하여 제품 생산시 발생한 스크랩을 역내산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018.05.10.)

A : 협정별로 규정방식 및 용어에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과 부스러기는 우리나라에서 완전생산된 물품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당해 투입원재료의 잔여 물품이 아닌 제조공정의 결과로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이어야 하며 협정별로 폐기물 및 부스러기에 대한 규정방식 및 용어에 차이가 있으므로 협정문을 참조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83. 주택건축용 자재(가공목재) 수입물품의 FTA 협정관세 적용 여부

수입물품에 대해 FTA협정관세를 적용 하기 위해서는 개별 FTA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인도, EU, 페루, 미국이 원산지인 제품이어야 하며, 우리나라의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한 후 아래와 같이 개별 FTA협정에서 정하는 일정한 가공이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 한-EU FTA : 협정문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6조(불충분한 작업 또는 공정)에서 정하는 공정을 넘어서는 경우

※ 한-미 FTA 제6.5조(누적) 제1항 :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이나 재료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상품에 결합된 경우

따라서 수입물품이 아래의 모든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① FTA협정 당사자 영역에서 상품이 생산되어야 함
- ② 원산지가 해당 FTA에서 정하는 원산지제품이어야 함
- ③ 우리나라의 자유무역지역에서 해당 FTA에서 정하는 작업만이 수행되어야 함
- ④ 원산지증명서의 물품과 수입통관 물품과 동일하여야 함

84. 지하수 및 수돗물의 원산지와 원산지입증자료

Q : 지하수 및 수돗물의 원산지는 ‘한국’ 인가요? 또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2018.06.11.)

A : 지하수 및 수돗물이 당사국에서 완전히 추출된 물품인 경우, 한국산으로 인정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하수 및 수돗물의 한국산 입증서류로는 지하수를 국내에서 채수(採水)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수돗물이 우리나라에서 완전히 추출되었다는 입증 서류 및 공급내역자료 등으로 입증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85. 지하수 및 수돗물의 원산지입증자료

Q : 지하수, 수돗물을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 원산지확인 입증서류는 무엇인가요? (2018.11.12.)

A : 지하수 및 수돗물의 원산지 입증서류로는 지하수를 국내에서 채수(採水)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시: 지하수개발·이용허가서 등), 수돗물이 우리나라에서 추출되었다는 입증 서류, 공급내역자료(예시: 상수도 사용료 고지서 겸 영수증 등) 등으로 입증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86. 지하수의 원산지 입증자료

Q : 음료제조시 재료로 사용되는 지하수를 제조자가 직접 채수하는 경우 지하수의 원산지 입증자료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2018.06.07.)

A : 제조자가 지하수를 직접 채수(採水)하는 경우에는 지하수 직접채수확인 자료, 지하수 채수량 및 사용량 확인자료, 지하수 생산에 사용된 비용 내역 등으로 지하수의 원산지를 입증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87. 직접운송에서의 '경유'의 의미

Q : FTA의 직접운송과 관련하여 '경유(transit through)'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2019.03.18.)

A : FTA에서 원산지상품이 양당사국간 직접 운송되어야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비당사국 또는 제3국을 경유하더라도 협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직접운송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정의 직접운송 규정에서 '비당사국 경유'의 의미는 해당선박이 비당사국을 단순 경유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88. 직접운송 요건 충족 증명방법

Q : 원산지상품이 계약상대국으로부터 비당사국을 경유하여 우리나라로 수입될 때, 직접운송요건 충족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서류에는 어떤것이 있나요? (2019.02.19.)

A : 원산지상품이 비당사국 경유시에는 협정에서 규정한대로 최초의 운송업자가 전구간(수출당사국에서 수입당사국까지)에 대해 책임지기로 하고 발행한 통과선하증권 또는 비당사국에서 머물러 있는 상태 등을 증명하여 비당사국 관세당국에서 발행한 서류로 직접운송 입증 가능합니다.

89. 최소허용기준 및 원산지소명서 작성방법 관련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1877, 2013.7.31.

1. 귀하의 민원 관련입니다
2. 제8537호의 품목별 원산지 기준에 제외되도록 명시된 제8538호의 물품은 원산지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나,
 - 한-칠레 FTA 제4.6조, 한-싱가포르 FTA 4.10조, 한-EFTA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제8538호의 물품이 비원산지재료라 하더라도 최소허용기준(미소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다만,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최대가치가 최소허용기준의 적용으로 인해 각 협정의 품목별 기준에 규정된 부가가치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3. 또한, 원산지소명서는 다음과 같이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 최소기준은 세번변경기준에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세번변경기준에 미소기준을 적용한 경우 다음과 같이 표기 16번 세번변경기준 충족여부 : “예” 표기 19번 최소기준 적용여부 : “예” 표기(세부내역은 별지에 작성 첨부)
 - 부가가치 기준을 충족한 경우 17번에 예 표기하고, 물품 생산과정에서 실제 발생한 부가가치 비율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90. 품목별 인증수출자 변경신고 대상

질의 : 제조자의 주소 및 대표자가 변경되었고, 인증받은 물품의 BOM이나 제조공정 상에는 변경이 없을 때 품목별인증수출자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는 인증수출자의 상호·주소·대표자의 성명·원산지관리전담자 등이 변경된 경우 변경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조자의 주소·상호 또는 생산공장의 변경은 인증 변경 신고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91. 할인받은 물품의 부가가치기준 적용시 분모대입 가격

질의 : 원산지 판정 시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려 하는데, 오랫동안 재고로 있던 물품인 경우나 혹은 불량품이라서 할인받은 물품의 경우에는 부가가치기준 산정 공식의 분모에 어떠한 가격을 대입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 대량구매, 사양 부적합 등으로 인하여 할인된 가격으로 제품 판매시에도 관세평가협정에 따라 EXW, FOB가격을 산정하여 역내부가가치비용을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92. 해외기술개발 비용이 포함된 자동차 제어용 칩을 수입하면서 실제 거래가격에 해외기술개발비용을 추가하여 협정세율 적용 가능 여부?

- FTA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 용어의 정의상 FOB 가격은 거래가격은 실제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가산요소를 포함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본 질의 건에서 언급된 해외로 지급된 기술개발 비용이 당해 수입물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라면 가산요소로 인정될 수 있음
- 또한 FTA특례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발급된 FTA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고 있다면 협정관세 적용신청이 가능함

93. 협정관세 사후적용 기간 및 제출서류

Q : 협정관세 사후적용 기간 및 제출서류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2018.09.21.)

A : 수입신고수리일까지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지 못한 수입자는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적용신청서, 원산지증빙서류, 보정신청에 필요한 서류 또는 경정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관련법령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대상일 것, 원산지가 해당 계약상대국일 것, 계약국 간 직접운송 될 것

94. 협정관세 사후적용 방법

Q :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받기 위한 방법은 어떻게되나요? (2018.11.14.)

A :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협정관세 적용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원산지 증명서, 보정신청에 필요한 서류 또는 경정청구서, 협정관세적용 신청서를 구비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95. 협정관세 사후적용 재신청 가능여부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 2014-09-02(회신일자)

질의 : 수입신고 수리 전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물품에 대해 수입신고 수리 후 협정관세의 적용을 재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 1. 관세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3386(2013.6.12.)호의 ‘수입신고 수리 후 협정관세 적용 신청 가능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 전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물품에 대해 동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수입신고 수리 후 협정관세의 적용을 재신청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96. 협정관세 사후적용 후 가산세 환급 여부

질의 : 다른 품목분류로 신고 납부하여 부족세액을 납부한 뒤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통해 관세를 환급 받는다면 납부한 가산세도 환급받을 수 있나요?

답변 : 품목분류 오류로 신고납부한 세액에 부족함이 확인되어 경정·부과고지의 사유로 부족세액 징수후 협정관세 사후적용신청으로 관세 환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 납부한 가산세는 환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97. 협정관세 적용 제한자 관련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2007, 2013.8.21

1.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6조에서 수입자, 계약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최근 5년간 2회 이상 반복적으로 원산지증빙서류의 주요내용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잘못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면 해당 계약상대국수출자나 생산자가 수출하거나 생산하는 동종동질의 물품 전체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한 바와 같이 귀사가 수출입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경우 귀사는 수입자, 계약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 원산지증빙서류를 작성하는 계약상대국의 수출자나 생산자가 원산지증빙서류를 거짓 또는 잘못 작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또한 상기 규정은 귀사의 질의와 같이 악의적인 의도가 있었는지 아니면 단순실수였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이고 동법 제13조에 따라 원산지조사를 통지한 날부터 최근 5년간 2회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4. 또한 원산지조사에 따른 세액부과는 협정관세적용신청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으나
 - 관세법 제2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그 기간 내에 경정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98. 협정관세 적용후 송품장 가격 증액시 협정관세 적용 방법

질의 : 협정관세 적용 이후 인보이스 가격이 증액된 경우 협정관세 적용 방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답변 : 수입신고 이후의 수입물품의 가격변동만 있을 뿐 세관에 이미 제출한 원산지증명서가 유효하다면, “협정관세 적용신청 정정신청”과 “수정신고”를 통해 기존 협정관세의 적용(유지)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99. 협정발효일 이전 공급된 물품의 원산지포괄확인서 발급 가능 여부

Q : 협정 발효일 이전에 공급된 물품에 대해 원산지포괄확인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2019.10.08.)

A : ‘원산지포괄확인서’는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을 동일한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장기간 계속·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 생산자가 작성하여 수출자에게 제공하는 서류입니다. 협정 발효일 이후 수출된 물품의 생산에 투입된 재료 또는 최종물품을 협정발효일 이전에 공급하였다면, 한-중미 FTA에서 규정하는 품목별원산지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협정발효일 전에 공급된 물품에 대해서도 원산지포괄확인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100. 협정 발효 전 공급물품의 원산지확인서 발급

Q : 협정 발효 전 공급된 물품에 대해 협정 발효 후 원산지포괄확인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2018.12.20.)

A : 협정 발효일 이후 수출된 물품의 생산에 투입된 재료 또는 최종물품을 협정발효일 이전에 공급한 경우, 해당협정에서 규정하는 품목별원산지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협정발효일 전에 공급된 물품에 대해서도 원산지포괄확인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2. 한-EU FTA

1. AWB의 통과선하증권 인정 가능 여부

Q : 비당사국 경유시 항공화물운송장(AWB)에 선적지, 도착지와 경유지를 기재하여 발급된 경우 인정가능한가요? (2017.03.23.)

A : 항공화물운송장(AWB)에 수출 당사국으로부터 경유국을 통해 우리나라까지 전체 운송경로를 포함하고 있고 운송서류에 기재된 물품에 대해 운송인이 전운송구간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고 발행하였다면 단일 운송서류로 인정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BWT거래시 직접운송 충족 가능 여부

Q : 덴마크에서 수출한 물품을 일본(비당사국) 보세창고에 보관하고 그 중 일부 수량을 한국으로 수입하는 경우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2017.06.15.)

A : 한-EU FTA 협정의 직접운송과 관련 단일 탁송화물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제3국에서 하역, 재선적 또는 제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한 작업만 허용하고 있어 제3국에서 화물의 분리가 이루어지는 경우 직접운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3. Delivery Note에 작성한 원산지신고서 인정 가능 여부

Q : 독일수출자로부터 Delivery Note에 작성된 원산지신고서를 받은 경우 해당 원산지신고서로 한-EU FTA 적용 가능한가요? (2019.05.30.)

A : 한-EU FTA에서는 EU국가로부터 원산지상품을 수입시 수입물품이 확인가능하도록 상세하게 동 물품에 대해 기재된 송품장, 인도증서(Delivery Note) 등에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도증서에 한-EU FTA에서 정한 바에 따라 EU역내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였다면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로 인정가능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EU 국가 내에 있는 수출자가 EU역내에 있는 다른 나라의 물품을 수출해도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 EU역내에 있는 한 EU역내에서 수출물품의 생산국가와 수출자의 국가가 다르더라도 인증수출자가 수출하면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

* (예) 독일 수출자가 원산지가 영국인 물품을 수출하여도 적용 가능

또한 원산지가 EU 역내 여러 국가의 물품을 인증수출자가 수출하는 경우 원산지 신고서 문안의 원산지란에 'EU' 또는 'EC' 로 기재하거나 각각의 원산지를 기재하면 적용 가능

* 송품장, 포장명세서, 선하증권, 인도증서 등

5. EU국으로 수출된 물품을 수입하여 표면처리 가공 후 재수출시 국내산 인정 여부

질의 : 국내 제조 물품을 EU국으로 수출 후 재수입하여 표면처리 가공 후 재수출할 때 국내산으로 원산지 판정 가능한가요?

답변 : 국내에서 제조되어 EU지역으로 수출되어 현지에서 사용되다 유지보수 목적으로 재수입되는 상품은 동 상품이 한국산으로 수출되었다 하더라도 EU 지역에서 통관되어 사용된만큼 원산지 지위가 유지되었다고 볼

수 없어 역외산으로 간주됩니다. 상기 역외산 재료로 국내에서 생산(표면처리)한 제품은, 한-EU 협정 상 요구되는 일정한 수준 이상의 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을 거친 경우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다시 수출되는 상품의 HS 코드와 이에 해당하는 협정상 요구되는 작업 또는 가공의 수행 여부(원산지결정기준)의 확인을 통해 한국산으로 판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EU 소재 수출자가 다른 EU 수출자에게 발행한 원산지신고서 인정 여부

질 의 : 프랑스 수출자(인증수출자가 아님) B가 프랑스 내 납품업체 C(인증수출자)에게서 물품을 받아 수입하는 경우, C가 B에게 발행한 상업송장에 원산지신고 문구를 기재하여도 CO가 유효한가요?

답변 : 우리나라 소재 수입자가 아닌 EU소재 수출자에게 발행된 원산지신고서로는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 신청이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7. EU에서 수입했던 6,000유로 이하의 원산지제품을 수리를 목적으로 재수출했다가 다시 재수입되는 경우, 수리비를 탁송화물 전체가격에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 및 인증 받지 않은 수출자가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지

※ [예시] 물품가액 : 5,000유로, 수리비 1,500유로

- 수리 후 재수입하는 물품의 경우 수리비를 포함한 물품금액이 해당 탁송화물의 전체가격인 바, 물품금액과 수리비를 합산한 금액이 6,000유로를 초과한 경우에는 인증수출자만 원산지신고서 작성 가능<2012.12.28.>

[이유]

- 한-EU FTA 협정에서는 ‘탁송화물의 전체가격’이 6,000유로 이하인 경우 인증수출자가 아니어도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음

* 탁송화물이란 아래의 물품을 말함

- ① 수출자가 수하인에게 일시에 송부한 물품
 - ②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에게 선적에 대한 단일의 운송서류(운송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송품장)에 의해 취급되는 물품
- 따라서 수리된 물품이 탁송화물이며, 물품이 수리되어 해당 물품의 가치가 증가된 것이므로 수리비는 탁송화물의 전체가격에 포함되어야 함

8. EU역내 국가에서 분리작업한 화물의 직접운송 요건 충족여부

Q : 독일에서 생산된 물품을 폴란드 보세창고에서 화물분리 후 우리나라로 운송된 경우 직접운송요건을 충족 하나요? (2018.05.03.)

A : 독일에서 선적되어 EU역내 국가인 폴란드의 보세창고에서 물품을 분리 후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물품은 직접운송 요건을 충족합니다.

9. EU역내국가에서 환적된 경우 환적표기 여부

Q : 프랑스에서 선적 후 독일(EU역내국)에서 환적된 경우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작성시 환적여부 사항에 환적으로 표기해야 하나요? (2018.11.20.)

A : 원산지 상품이라도 양 당사국 간 직접운송 되어야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한-EU FTA에서 양 당사국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프랑스에서 선적되어 EU역내 국가(독일)에서 환적하여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물품은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의 환적여부에 “N”으로 표기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10. EU역내국 경유시 직접운송 충족 여부

Q : 스페인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이 EU내의 다른 국가(예: 핀란드)를 경유하여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경우 협정관세적용이 가능한가요? (2017.12.18.)

A : 원산지 상품이라도 양 당사국 간 직접운송 되어야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한-EU FTA에서 양 당사국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스페인에서부터 EU역내 국가(예: 핀란드)를 경유하여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물품은 직접운송 요건을 충족합니다.

11. EU역내 수출자가 아닌 비당사국에서 재발행한 송장에 원산지 신고문안이 기재된 경우 유효성 여부

한-EU FTA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15조(일반요건)에 따라 ‘원산지신고서’는 해당제품이 확인될 수 있도록 충분히 상세하게 그 제품을 기술하는 송품장 등 상업서류에 수출자가 작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비당사국에서 송품장이 다시 발행되는 무역거래인 경우에도 EU역내의 수출자가 해당 수출거래와 관련된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므로 다른 업체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또한 포장명세서 앞장에는 원산지신고문안이 기재되어 있고 물품내역은 뒷장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제품이 확인될 수 있도록 충분히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고 포장명세서 앞장과 뒷장과 연계성이 충분한 정보로 명확하게 확인되어 두 서류에 기재된 물품의 동일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사가 제출한 포장명세서에는 수출자, 수입자, 화물번호(Carton No), 포장번호(Packing No), 발급일자, 수량 등의 정보가 두 서류에 공통으로 기재되어 있어 두 서류에 기재된 물품의 동일성이 확인되는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12. EU역내의 보세창고(Warehouse)에서 작성한 원산지신고서의 적정성 여부

※ 인보이스 상 Exporter : 싱가포르 소재 업체, 선하증권 상 Shipper : 스위스 소재 업체
선적지 : 폴란드(보세창고 소재지), 원산지신고서 : 포장명세서 상에 작성 (발송인 : 스위스)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원산지신고서의 작성자가 EU 역내 수출자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3. HS7228.20호의 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 관련 질의

품명 : 기타 합금강의 기타의 봉, 기타 합금강의 형강, 합금강 또는 비합금강의 중공드릴봉
원산지 결정기준 : 제7206호, 제7207호, 제7218호 또는 제7224호의 잉곳, 기타 일차형상 또는 반제품으로부터 생산된 것

질의물품(HS 7228호)의 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은 비원산지재료를 사용하여 수출물품을 생산한 경우 원산지를 판정하는 기준입니다. 즉, 비원산지재료인 일차재료(7202, 7205호)를 사용하여 반제품인(7206, 7207호)을 생산한 경우, 그 반제품이 협정에서 정한 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게 되면 그 반제품은 원산지재료로 판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체의 BOM상 원재료가 7201호 ~ 7205호인 경우에도 해당물품의 제조공정도 등 제조공정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 반제품(HS7206, HS7207호)이 원산지재료임을 확인할 수 있으면 최종생산품인 HS7228호의 물품은 원산지상품으로 판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 협정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에 관한 의정서’ 제10조(중립제)에 따라, HS7228호의 물품을 생산할 때 첨가제로 사용되는 물품은 그 제품의 최종 구성품에 투입되는 경우에는 원산지 결정시 고려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14. SKD(Semi Knock-Down)상태 증명

수입신고시 란별로 각각 구분하여 아래와 같이 CKD(Complete Knock-Down)상태로 신고수리된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가 SKD(Semi Knock-Down)상태로 증명된 경우 협정관세 적용 여부

「한-EU FTA 협정문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15조(일반요건)에 따라 협정관세는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 수입물품에 대해 적용하는 것이므로 원산지증명서의 물품과 수입물품이 동일한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동 의정서 제7조(원산지 자격 단위)에 따라 원산지자격은 HS상품분류체계에 따라 분류되는 제품을 단위로 결정되는 것인 바, 귀사가 문의한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는 ‘관세? 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2’에 따라 세관장에게 제시된 상태를 기준으로 완전하고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닌 경우에는 완전하고 완성된 물품으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수입신고수리된 내역이 이와 맞지 않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정정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품목분류된 수입물품과 원산지증명서의 물품이 동일한 경우에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15. 6천유로 초과 단일 탁송화물 해당여부

Q : 이탈리아 수출자(비인증수출자)와 우리나라의 수입자 간 수출입계약에 따라 이탈리아 내 수출자의 각 지점에서 별도의 B/L 발급하여 한국으로 물품이 송부되는 경우, 각각의 B/L별로는 6,000유로 초과하지 않으나 합산시에는 6천유로를 초과한다면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2018.06.05.)

A : 일시에 송부된 단일 탁송화물의 전체금액이 6천유로 미만인 경우 비인증수출자도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단일 수출자로부터 단일 수하인에게 동시에 송부된 물품이 여러개인 경우에는 동시에 송부된 물품의 가격의 합계가 탁송화물의 전체가격이 됩니다. 각 지점별로 분할된 탁송화물이 일시에 송부되지 않고 상이한 날짜에 다른 운송수단을 통하여 개별 송부되었다면 비인증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로 협정관세 적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거래계약 상 단일의 송품장과 운송서류가 발급되어야 함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수출자가 인증수출자 인증취득에 대한 의무를 회피하고자 부정적인 방법으로 분할 송부한 경우라면 협정관세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16. 6천유로 초과 단일 탁송화물 해당여부

Q : 각각 6천유로 이하로 여러개의 인보이스를 작성하고, 인보이스별로 각 다른 운송수단을 통해 물품을 발송하는 경우 비인증수출자가 각 인보이스별로 원산지 신고문안을 기재한 경우에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018.01.31.)

A : 일시에 송부된 단일 탁송화물의 전체금액이 6천유로 미만인 경우 비인증수출자도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탁송화물이 상이한 날짜에 다른 운송수단을 통하여 개별 송부되었다면 비인증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로 협정관세 적용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거래계약상 단일의 송품장과 운송서류가 발급되었음에도 수출자가 인증수출자 인증취득에 대한 의무를 회피하고자 부정적인 방법으로 분할 송부한 경우라면 협정관세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17. 6천유로 초과 단일 탁송화물 해당여부

Q : EU국가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이 각각의 B/L별로는 6,000유로 이하이나 같은 날 입항한 B/L의 가격 총합계가 6천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비인증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로 협정적용이 가능한가요? (2019.01.11.)

A : 일시에 송부된 단일 탁송화물의 전체금액이 6천유로 미만인 경우 비인증수출자도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단일탁송화물의 전체금액은 단일 수출자로부터 단일 수하인에게 동시에 송부된 물품이 여러개인 경우에는 동시에 송부된 물품의 가격의 합계가 탁송화물의 전체가격이 됩니다. 다만, 거래계약 상 단일의 송품장과 운송서류가 발급되어야 함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수출자가 인증수출자 인증취득에 대한 의무를 회피하고자 부정적인 방법으로 분할 송부한 경우라면 협정관세 적용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18. 개성공단産 원재료가 투입된 완제품의 원산지판정(한-EU, 한-미 FTA)

개성공단에서 사출한 사출물 국내 반입, 사출물 표면에 인쇄 및 코팅 작업, 부자재 부착 및 완제품(플라스틱 케이스) 생산, EU 및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성공단産 제품은 한반도 역외가공 지역위원회에서 세부사항이 합의되기 전까지는 역내산으로 인정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9. 개인 수출자 작성 원산지신고서 유효성 여부 관련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2116, 2013.9.4

1. 귀 세관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2. 한-EU FTA 제16조 규정에 의거 원산지신고서는 인증수출자 또는 탁송화물의 수출자인 경우에만 작성할 수 있으며, 원산지신고는 상업서류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 유럽 현지에서 물품을 구매한 현지인은 거래 당사자인 수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발행된 송장도 동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업서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 개인 이사차량 수입시 협정적용 가능여부

Q : EU국가에서 사용하던 차량을 이사차량으로 수입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개인도 협정관세 적용신청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018.11.01.)

A : 우선, 수입자가 개인인지 수입업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한 조건으로 FTA특혜관세 적용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U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자동차가 한-EU FTA 적용을 위해서 ①한-EU FTA 협정에서 규정하는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② 6천유로 초과 원산지상품인 경우에는 해당 원산지상품이 상세하게 기술된 송품장·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 상에 EU역내 소재 인증수출자가 동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신고문을 기재한 원산지신고서 구비 ③직접운송원칙을 충족하는 경우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21. 경유화물의 직접운송 요건 충족여부

Q : 룩셈부르크(수출국)에서 중국(경유국)을 경유하여 우리나라(수입국)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Multimodal Transport B/L’ (전체 운송경로, 운송수단, 컨테이너 정보가 기재)이 발급된 경우에 직접운송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가요? (2018.01.25.)

A : 원산지 제품이 비당사국을 경유할 경우 그 제품이 통과 또는 창고 보관하는 국가에서 자유로운 유통을 위해 반출되지 아니 하고, 하역, 재선적 또는 제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해 고안된 모든 공정 외의 공정을 거치지 아니해야 합니다. 단일 운송서류를 통해 수출국(룩셈부르크)에서 경유국을 거쳐 우리나라까지 전체 운송경로가 나타나 있고, 운송서류에 기재된 물품에 대해 최초의 운송인이 전운송구간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고 발행한 경우라면 직접운송 증빙자료로 인정가능합니다.

22. 공급국과 생산국이 다른 경우 원산지신고서 발행 등

1. 공급국(영국. 수출자)과 생산국(이태리, 프랑스 등. 생산자)이 다른 경우 원산지신고서를 발행하는 자는?
2. 영국산 직물로 스페인에서 재단, 봉제한 경우 원산지가 스페인이 맞는건지?
3. 선적지가 EU내 다른 국가에서 선적하여도 직접운송이 되는건지?
4. 수출자가 사후에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아 원산지신고서를 발급하는 경우 수리후 1년 이내 FTA 특혜관세를 소급적용 받을 수 있는지?

원산지신고서를 발행하는 자는 수출자이며 수출자는 원산지신고서사본과 국내 법령에 따른 공급자 또는 생산자의 진술서를 포함하여 해당 제품의 원산지 지위와 이 의정서의 다른요건의 충족을 증명하는 모든 적절한 서류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한-EU FTA 협정문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23조) 한-EU FTA에서 원산지는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에서 정한 기준에 의해 정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EU FTA 협정에서 정한 62류 원산지결정기준 중 ‘제조(절단을 포함한다)를 동반하는 직조’라는 것은 ‘직물을 직조하고 절단 및 제조하여 만들어진 의류’는 한-EU FTA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지위를 획득한 물품이라는 뜻입니다. 질의와 같이 직물은 영국에서 직조되고 재단작업과 봉제작업을 스페인에서 한 경우(즉, EU역내에서 수행된 경우), 동 물품은 한-EU FTA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지위를 획득한 물품이라는 뜻입니다. EU역내에서 우리나라로 직접운송되면 인정됩니다.

한-EU FTA 협정에서 6,000유로 이상의 물품을 수출할 때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자는 인증수출자입니다. 인증수출자로 인증받기전에 수출한 물품은 사후에 협정관세를 적용 할 수 없습니다.

23. 공장도가격 산정 관련

물품을 생산하여 공급하는 업체가 내수판매물품에 대해 원산지확인서를 작성하는 경우 한-EU FTA ‘공장도가격’ 산정방법 (현재 내수판매물품의 ‘공장도가격’ 산정방법) 내수판매물품과 수출판매물품이 혼재되어 운송되고 있으며, 물품판매시 국내운송비를 포함해서 대금을 수취하는 상황 중 판매물품의 운송비가 국내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하여 일괄적용

(질문1) 수출판매물품과 내수판매물품 중에서 원산지확인서를 작성하는 내수판매물품의 운송비를 따로 분리해야 하는지

(질문2) 내수판매물품도 개별 판매물품의 운송비를 따로 산출하여야 하는지

(질문3) 가격산정방법이 바뀌는 경우, 종전에 작성·제공한 원산지확인서를 수정하여 소급 발급해야 하는지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자유무역협정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공장도가격’은 ‘최종 작업 또는 가공이 수행된 당사자 내 생산자 공장에서 인도되는 제품에 대해 그 생산자에게 지급되었거나 지급되어야 할 가격’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 ‘공장도가격’은 개별물품의 인도가격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또한 수출자는 귀사가 작성·제공한 원산지확인서를 기초로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는 것이므로,
- 귀사가 ‘공장도 가격’을 다시 산정하여 원산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물품을 공급받은 자에게 원산지확인서를 다시 작성·제공해야 합니다.

24. 관세부과 제척기간 관련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 2017-12-11(접수일자)

질의 : ○ ‘17. 11월 세관의 자율점검 요청에 따라 자율점검표를 작성하고 수정신고를 진행하려고함.

- 「관세법」 제21조(관세부과 제척기간) 개정*(‘13.8.13.)에 따라 ‘13.8.13일 이후의 건만 수정신고를 하려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여부 * 2년 → 5년 연장
- FTA특례법 제35조(협정관세 적용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나 세관에서 해당법령을 근거로 ‘13.8.13일 이전의 수입신고 건도 수정신고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FTA 관세부과 제척기간은 협정관세 적용신청한 날의 다음날부터 5년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 법은「관세법」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아울러 수정신고는 관세법 제38조의3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신고 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 납세의무자가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5. 관세청 지침과 상이*한 스페인 인증수출자 번호체계의 정확성 문의

* 관세청 지침상의 인증번호(4자리) /민원인 제출서류상의 인증번호(3자리)

관세청 지침에 의한 인증번호 체계

그리스(Greece)	GR/01/1234/2004	국가(2)/세관번호(10)/인증번호(4)	인증번호(4)
스페인(Spain)	ES/28/0001/98	국가(2)/지역코드(2)/인증번호(4)/인증번호(2)	인증번호(2)
프랑스(France)	FR 013181/002	국가(2)/세관번호(6)/인증번호(4)	인증번호(4)

스페인 공급자로부터 받은 인증번호 체계

38551998 Referencia: D5796012001704

excepción de las justificaciones de origen por procedimiento simplificado.

2. La Declaración en Factura o la Declaración en Factura EUR-MED deberá contener el texto correspondiente previsto en los Protocolos de Origen reseñados, debiendo figurar el NÚMERO DE AUTORIZACIÓN QUE SE CONCEDE POR ESTE DEPARTAMENTO DE ADUANAS E I.E.E.

ES/08/409/12

bases de origen simplificadas que la presente autorización permite extender, únicamente, se

- 「우리나라와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자유무역협정」의 원산지신고서에 사용하는 인증번호체계가 아님

[이유]

- 민원인이 제출한 인증서는 EU가 기관발급원산지증명서(EUR.1)*를 채택한 FTA 체결국과 사용하는 인증서임. Movement Certificate EUR.1은 「Ministry of Economy」가 발급하는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이며, EU가 칠레, 멕시코, 남아프리카 등의 국가와 체결한 FTA에서 인보이스 방식과 병행하여 사용하고 있음

26. 국내 BWT거래시 협정적용 가능여부

Q : 독일산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하여 국내 BWT거래시독일 수출자가 국내 수입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한 경우 협정관세 적용 가능한가요? (2018.12.20.)

A : 국내보세창고 도착 후 구매가 이루어지는 경우 독일수출자가 우리나라 수입자에게 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작성한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를 구비하고 협정에서 규정하는 다른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협정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7. 국내 양수도 거래로 원산지신고서상의 수입자와 납세의무자가 상이한 경우 협정관세 적용 가능여부

Q : 독일에서 수입한 물품을 국내에서 양도하여 원산지증명서의 수입자와 수입신고시 납세의무자가 상이한 경우 협정관세 적용가능한가요? (2018.01.23.)

A : 독일에서 수입한 물품을 국내에서 양도하여 원산지신고서의 수입자와 수입신고시 납세의무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국내 거래관계자간 계약서 등을 근거로 원산지신고서 상의 물품과 수입신고하는 물품이 동일한지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협정관세 적용신청 할 수 있습니다.

28. 국내에 도착된 이후 그 수출자가 인증수출자로 지정된 경우

한-EU FTA에서는 전체가격이 6,000유로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인증수출자가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으므로 문의 내용처럼 국내에 도착된 이후 그 수출자가 인증수출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습니다.

다만 협정발효일에 운송중이거나 국내 보세구역에 도착되어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특례를 인정하여 국내에 도착된 이후에 인증수출자로 지정된 경우에도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9. 국내에서 회수한 중고품의 원산지결정기준(완전생산기준) 해당 여부

* 자동차 폐차장에서 재활용을 위하여 구입한 중고 자동차 부품(Used Alternator와 Start Motor)을 완전 분해재 사용할 수 있는 부품을 선별 선별된 부품을 재가공하여 새로운 부품으로 제조 재제조 부품과 일부 새로 구입한 부품을 조립하여 중고부품과 동일한 제품 생산

** 한-EU FTA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2부제4조 완전하게 획득된 제품
자. 당사자 내에서 수집된 것으로 원재료 회수용으로만 또는 폐기물 용도로만 적합한 중고 물품

한-EU FTA「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제4조에서는 원재료 회수용으로 수집된 중고물품을 완전하게 획득된 제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질의와 같이 재사용 목적으로 수집된 중고자동차부품은 완전하게 획득된 제품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30. 노르웨이 업체가 스페인산 제품을 한국으로 수출시 원산지 신고서 인정 여부

질의 : 중계회사인 노르웨이 업체가 스페인산 제품을 한국으로 수출하는데, 해당 업체가(선적서류도 발행) 인보이스 상에 선적지와 원산지를 스페인으로 표기한다면 유효한 원산지 신고서인가요?

답변 : EU 회원국인 스페인을 원산지로 하고 스페인에서 한국으로 운송된 경우라면, 스페인에 소재하며 인증수출자 지위를 부여받은 수출자(또는 생산자)가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1. 단일 탁송화물에 원산지 물품과 비원산지 물품이 혼재된 경우

○ 6,000유로 기준 및 원산지 신고서 작성방법은 ?

원산지 물품과 비원산지 물품이 혼재된 경우 원산지 물품이 6,000유로를 초과한 경우에 인증수출자가 원산지 신고서 작성 가능

* 비원산지 제품의 가격은 6,000유로에 포함하지 않음

원산지 신고서에는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신고서 문안이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하며, 단순히 원산지, 인증수출자 번호만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적용 불가

- 또한, 원산지신고서는 송품장 등 상업서류*에 기재되어야 하며, 별도로 작성된 원산지 신고서는 적용 불가

* 송품장, 포장명세서, 선하증권, 인도증서 등

32. 덴마크에서 중국을 거쳐 반입된 물품이 최초 B/L과 중국발행 B/L이 다른 경우 협정적용 가능 여부

질의 : 덴마크에서 출항하여 중국을 거쳐 국내로 반입되는 기계류의 최초 발행된 B/L과 중국 발행 B/L 상 수량 및 중량이 상이한 경우(중국에서는 비가공증명서를 발행 가능) 협정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 한-EU FTA에서는 원산지상품으로 구성된 단일탁송화물이 양 당사자간 직접 운송되어야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EU국가에서 수출된 물품이 비당사국(중국) 물류센터에서 분리, 해체 또는 다른화물과 병합하여 우리나라로 운송되는 경우에는 단일탁송화물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한-EU FTA에서 정한 직접 운송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33. 독일의 수출자가 네덜란드 원산지제품 수출시 원산지 신고문안

한-EU FTA에서는 EU지역 수출자가 EU원산지제품을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이 되는 것이므로, 귀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독일의 수출자가 네덜란드 원산지제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원산지신고문안은 동 협정에 규정된 바대로 기재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4. 독일의 인증수출자가 영국산 제품을 영국에서 선적 운송하는 경우 독일에서 작성된 신고서 인정 여부

질의 : 독일의 인증수출자가 영국산 제품(한-EU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을 구매하여 영국에서 선적, 한국으로 직접운송하는 경우 독일에서 작성된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문안이 작성되어 있는 경우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 가능한가요?

답변 :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수출자(또는 생산자)란 EU역내에 소재하며 해당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결정·입증할 수 있으며, 원산지 증명에 관한 모든 기록을 보관하고 원산지검증의 대상이 되는 자로 해당 소재 관세당국으로부터 인증수출자 지위를 부여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 독일 수출자가 ①자신이 발행한 상업서류에 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한 경우와 ②영국 생산자가 발행한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문안과 작성장소, 작성일자를 기재하는 경우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로 인정됩니다.

35. 말여권 원산지증명서 가능 여부(한-EU, 한-미 FTA)

미국과 EU에서 수입하는 승마용 말에 대하여 한-미/한-EU FTA 특혜적용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말여권으로 원산지증명이 가능한지?

협정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FTA 특례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세관장에게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해야 합니다.

협정관세 적용시, 한-EU FTA의 경우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15조(일반요건) 및 제16조(원산지신고서 작성조건), 한-미 FTA의 경우에는 협정 제6.15조(특혜관세대우 신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작성된 원산지증빙서류만이 유효합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말여권은 적정한 원산지증빙서류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36. 면세점에 반입된 물품의 수입신고시 협정관세 적용 가능 여부

질의 : A업체가 수입통관 전에 B와 양수도계약 체결 후 물품 전량을 B의 면세점으로 반입하였으나 판매 부진으로 인해 일부를 반품처리하여 A업체가 다시 수입신고를 하려고 할 때 협정관세 적용 가능한가요?

답변 : 보세판매장에서 미판매된 물품을 수입하면서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산지신고서에 기재된 물품(우리나라 도착시 물품)과 특혜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물품의 동일성이 확인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원산지신고서 작성 권한이 없는 국내 양도인 등이 임의로 수정한 원산지신고서로 협정관세의 적용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37. 보세건설장 건설완료물품의 원산지결정

한-EU FTA에 따른 협정관세는 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에 기술된 원산지물품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보세건설장 반입물품에 대하여는 법령적용 시점(‘사용 전 수입신고’ 가 수리되는 날)의 물품이 수출자가 원산지증명한 물품과 동일한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8. 보세건설장 반입물품의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 여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제22999호) 제2조에 따라 한-EU FTA는 발효되는 날에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 협정이 발효되기 전에 관세법 제192조에 따라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하여는 동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한-EU FTA는 협정당사자간, 즉 대한민국과 유럽연합당사자간에 체결된 자유무역협정이므로 협정 비당사국에서 송품장이 발행되는 무역거래의 경우에도 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당제품을 충분히 상세하게 기술하는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 상에 EU측 수출자가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6천유로를 초과하는 물품을 수출하는 때에는 수출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인증수출자로 지정되어야만 원산지신고서를 작성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9. 보세건설장 반입설비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 관련 질문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 2012-03-29(회신일자)

질의 : ○ 보세건설장 반입설비에 대한 한-EU FTA 적용과 관련하여 아래의 수입신고방법이 적정한지 여부 및 협정관세적용 여부

- ① 반입설비를 보세건설장으로 보세운송하여 수입통관 후 건설에 사용하는 방법 [※ 수입신고서의 항 수입신고방법 : ‘보세건설장에서의 수입신고(G)’]
- ② 반입설비를 당사 보세창고로 보세운송하여 수입통관 후 보세건설장에 반입하여 사용하는 방법
- ③ 반입설비를 입항지 보세구역에서 수입통관 후 보세건설장에 반입하여 사용하는 방법

답변 : 관세법 제191조(보세건설장)에 따라 보세건설장에서는 산업시설의 건설에 사용되는 외국물품인 기계류 설비품이나 공사용 장비를 장치·사용하여 해당 건설공사를 할 수 있으며, 관세법 통칙(191-0...1.호)에 따라 보세건설장에는 산업시설 건설에 사용되는 외국물품인 기계류 설비품과 공사용 장비, 산업시설에 병설되는 사무소 등 부대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물품 등을 반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세법 제183조(보세창고)에 따라 보세창고에는 외국물품이나 통관을 하려는 물품과 내국물품을 장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가 질의한 수입신고방법은 모두 적정함을 알려드리며, 동 수입신고방법에 의한 수입물품과 한-EU FTA에서 정하는 원산지신고서의 물품과 동일한 경우에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40. 보세건설장 사용소비물품의 FTA 적용 여부

한-EU FTA에서 유럽연합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제품이 대한민국으로 수입될 때는 ‘원산지신고서’에 근거하여 특혜관세대우의 혜택을 받는 것이며, 보세건설장은 산업시설의 건설에 사용되는 외국물품인 기계류 설비품이나 공사용 장비를 장치·사용하여 건설공사를 하는 것으로, 관세법 제192조(사용 전 수입신고)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 한 물품을 사용하여 건설공사가 완료된 때에 건설공사 완료보고를 한 이후, 완료된 제품에 대해 수입신고수리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EU FTA에 따른 원산지신고서에 근거한 원산지제품과 보세건설장에서 건설공사 완료 이후 수입신고 수리되는 물품과는 다른 물품이므로 동 원산지신고서에 근거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41. 보세판매장으로 반입된 물품을 국내로 수입하는경우 협정적용 가능여부

Q : 보세판매장에서 반품되는 물품을 국내로 수입통관시 수출자로부터 발급받은 원산지신고서, 송품장, B/L 등으로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2018.11.16.)

A : 보세판매장에 반입한 물품이 미판매 등의 사유로 국내수입하는 경우 한-EU FTA에서 정한 원산지기준과 기타 모든 요건을 충족하고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물품(우리나라 도착시 물품)과 특혜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물품의 동일성이 확인 가능한 경우 협정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2. 불인정공정 해당여부에 대한 질의

한-EU FTA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에 관한 의정서 제6조 및 주해에 관한 공동선언 제5조에서는 ‘해당 물품을 생산하는 경우 특별한 기술이나 특별히 제작 또는 설치된 기계·장비 또는 기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불인정공정인 ‘단순공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사 제조물품인 Tape의 제조공정은 Tape롤을 절단기를 이용해 절단하는 것으로서, 제시한 바와 같이 특별한 기술(일정한 장력을 유지하기 위한 특허기술)이 요구되는 기계를 사용되고 있는 바, 동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불인정공정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귀사 제조물품인 Optical Film의 제조공정은 원재료인 film을 재단하여 적층공정과 경화공정을 거쳐 일정한 형태로 절단하는 것으로서, 제시한 바와 같이 특별한 기술(일정한 장력과 일정한 두께를 유지하기 위한 기술)이 요구되는 기계를 사용되고 있는 바, 불인정공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43. 브렉시트 이후 영국 경유 화물의 직접운송 충족여부

Q : 브렉시트로 영국이 EU회원국에서 탈퇴 후 EU산 물품이 영국을 경유하여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경우 직접운송 충족이 가능한가요? (2019.10.28.)

A : 브렉시트로 영국이 EU회원국을 탈퇴하는 경우에는 영국은 한-EU FTA의 비당사국이 됩니다.따라서, 브렉시트 이후 EU를 원산지로 하는 상품이 영국을 단순 경유하여 우리나라로 운송되는 경우 최초 운송업자가 전구간에 대해 책임지고 발행한 통과선하증권 또는 영국 관세당국에서 해당상품이 영국에 머물러 있는 동안 세관통제하에 있었음을 입증하여 발급한 서류로 직접운송요건을 충족함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44. 비당사국 경유물품의 직접운송 요건 입증자료

Q : EU국가의 원산지상품이 중국을 경유하여 우리나라로 수입시 직접운송 요건 충족여부 입증자료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19.03.26.)

A : EU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상품이 비당사국을 경유하는 단일탁송화물의 경우 비당사국에서 자유로운 유통을 위해 반출되지 않으며, 협정에서 정한 공정(하역, 재선적, 보존 공정) 이외의 공정이 없어야 하며,이 경우에는 직접운송충족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최초의 운송업자가 전구간(수출당사국에서 경유국을 포함하여 수입당사국까지)에 대해 책임지기로 하고 발행한 통과선하증권 또는 비당사국에서 머물러 있는 상태 등을 증명하여 비당사국 관세당국에서 발행한 서류(예:비가공증명서 등)으로 직접운송 충족여부 입증이 가능합니다.

45. 비당사국 수출자 발행 원산지신고서의 유효성

Q : 제3국 발행 송장 거래에서 비당사국 수출자가 송장에 원산지신고서 문안을 작성한 경우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2017.05.08.)

A : 우선 수입물품에 대하여 한-EU FTA의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협정관세의 적용대상일 것 ②원산지가 해당 계약상대국일 것 그리고 ③협정관세적용을 신청할 것입니다. 아울러 유럽연합 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제품이 대한민국으로 수입될 때 원산지 신고는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 상에 EU 역내 수출자에 의해 작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비당사국 수출자가 발행한 송품장에 비당사국 수출자가 원산지신고 문안을 작성하는 경우 유효성한 원산지신고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46. 비당사국에서 우리나라로 운송된 경우 협정관세적용 가능 여부

Q : 스웨덴산 시계를 미국에서 구매하여 우리나라로 발송한 경우 한-EU FTA 협정관세적용이 가능한가요? (2018.09.18.)

A : 질의 물품이 한-EU FTA 협정적용을 위해서는 ① 동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대상 품목일 것 ② 동 협정에서 규정하는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③ 원산지 제품이 상세하게 기술된 송품장·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 상에 EU역내 소재 수출자가 동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신고문안을 기재한 원산지신고서 구비 ④ 직접운송원칙을 충족하는 경우 협정관세를 적용 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미국에서 발송되어 우리나라로 도착한 물품은 직접운송 원칙을 충족하지 못하여 협정관세 적용할 수 없습니다.

47. 비당사국에서 선적된 물품의 직접운송요건 충족여부

Q : 독일산 물품을 싱가포르에서 선적하여 우리나라로 수입하는 경우 협정적용이 가능한가요? (2018.11.12.)

A : 원산지 상품이라도 양 당사국 간 직접운송 되어야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EU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라도 비당사국에서 선적하여 우리나라로 운송되는 경우에는 한-EU FTA에서 정한 직접운송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협정관세 적용을 할 수 없습니다.

48. 비인증수출자가 발급한 원산지신고서의 유효성

Q : 비인증수출자인 생산자가 인증수출자인 수출자의 인증번호를 사용하여 Packing List에 작성한 원산지신고서는 유효한가요? (2017.03.03.)

A : 한-EU FTA상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는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① 상품의 원산지를 결정·입증할 수 있으며, 사후검증을 위한 요청에 응할 수 있는 자(수출자 또는 생산자) ② 상품의 원산지를 수출자가 소재한 관세당국에 입증하는데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구비하고 있는 자 ③ 수출자가 소재한 관세당국으로부터 인증수출자 지위를 부여 받은 자. 따라서, 인증수출자가 아닌 생산자 발급한 원산지신고서는 발급 권한이 없는 자가 발급한 원산지신고서로 유효하지 않습니다.

49. 비인증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의 인정여부

Q : 제조자와 수출자가 독일에 소재하며 제조자는 인증수출자이고 수출자는 비인증수출자인 경우로서수출자가 Packing List에 독일제조자의 인증수출번호와 원산지신고문안을 기재하여 발행한 경우 협정관세적용이 가능한가요? (2018.09.04.)

A :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수출자(또는 생산자)란 EU역내에 소재하며 해당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결정·입증할 수 있으며, 원산지증명에 관한 모든 기록을 보관하고 원산지검증의 대상이 되는 자로 해당 소재

관세당국으로부터 인증수출자 지위를 부여 받은 자를 의미 합니다. 따라서, 비인증수출자인 독일 수출자는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

50. 비인증수출자의 원산지신고서 작성가능여부

Q : 독일에서 우리나라로 수입하는 EU산 원산지 상품 12천유로 중 6천유로에 대해서만 비인증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로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2018.11.27.)

A : 일시에 송부된 단일 탁송화물의 전체금액이 6천유로 이하인 원산지상품의 경우 비인증수출자도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거래에서는 단일 탁송화물의 전체금액이 6천유로를 초과하므로 인증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또한, 거래계약 상 단일의 송품장과 운송서류가 발급되어야 함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수출자가 인증수출자 인증취득에 대한 의무를 회피하고자 부정적인 방법으로 분할 송부한 경우라면 협정관세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51. 비인증수출자의 원산지증명서 작성가능여부

Q : 비인증수출자로부터 총 1만유로 상당의 수입물품을 5천유로 상당씩 총 2회에 걸쳐 각 다른 편의 항공기로 분할하여 수입할 경우에 비인증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로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2018.01.17.)

A : 일시에 송부된 단일 탁송화물의 전체금액이 6천유로 미만인 경우 비인증수출자도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천유로 상당씩 분할된 탁송화물이 일시에 송부되지 않고 상이한 날짜에 다른 운송수단을 통하여 개별 송부되었다면 비인증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로 협정관세 적용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거래계약 상 단일의 송품장과 운송서류가 발급되어야 함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수출자가 인증수출자 인증취득에 대한 의무를 회피하고자 부정적인 방법으로 분할 송부한 경우라면 협정관세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52. 사후적용 관련

다음과 같은 제3국 송장발행 무역거래 시, ○○○(수출자)와 ○○○(제조사)의 인증번호 중 어떤 것을 사용해서 사후적용을 신청해야 하는지?

무역거래 관계 및 선적서류 발행

송품장 : ○○○(수출자) → ASPEN(호주, 인보이스발행) → (주)○○○운 송 : ○○○(제조사, PACKING 발행) → (주)○○○※ B/L상 SHIPPER : ○○○○ 인보이스 발행 : ASPEN (호주) PACKING 발행 : ○○○(○○○는 수출자이지만 서류발행은 없고, PACKING상에 BUYER로 표기되어 있음)

원산지신고서는 한-EU FTA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에 관한 의정서」 제15조(일반요건), 제16조(원산지신고서 작성 조건), 제17조(인증수출자)에 따라 원산지신고서는 수출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EU역내 수출자가 당해물품의 수출과 관련된 상업서류에 작성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제3국에서 발행된 송장과 새로 발행하는 원산지증명서상의 동일성이 충분히 확인가능하다면 수출자(○○○, ○○○ 둘 다 가능)가 관련 상업서류에 발행한 원산지 증명서는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53. 상호가 변경된 경우 이전 상호로 발행된 원산지신고서의 유효성

Q : 기업의 인수·합병으로 기업의 상호가 변경된 경우 이전의 상호명으로 발급된 원산지신고서로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2017.12.04.)

A : 기업의 인수·합병 전에 구매계약이 완료되고, 원산지신고서 등 모든 무역서류가 발행되어 수출이 완료되었다면, 수입신고 당시 인수·합병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전의 상호명으로 작성된 원산지신고서로 협정관세 적용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합병전후로 기업의 동일성 여부에 대한 입증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4.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수출자 작성 원산지증명서의 인정 가능 여부

Q : 오스트리아 생산자가 한국 수입자에게 생산물품을 선적하고 스페인에 소재한 수출자(인증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인정가능한가요? (2019.07.04.)

A :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수출자(또는 생산자)란 EU역내에 소재하며 해당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결정·입증할 수 있으며, 원산지 증명에 관한 모든 기록을 보관하고 원산지검증의 대상이 되는 자로 해당 소재 관세당국으로부터 인증수출자 지위를 부여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상기요건을 충족하는 스페인 수출자가 발행한 송품장 등 상업서류에 한-EU FTA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산지신고문안을 기재한 경우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로 인정가능합니다.

55.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원산지신고서 작성자

Q : 수입물품(6천유로 이하)의 생산자와 수출자가 상이한 경우 수출자가 송품장을 발행하여 작성한 원산지신고서는 인정가능한가요? (2018.11.15)

A : 한-EU FTA에서는 EU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원산지물품이 6천유로 이하인 경우 해당 상품의 원산지를 결정·입증할 수 있고, 원산지 증명에 관한 모든 기록을 보관하며, 원산지검증에 대해 원산지증빙자료 등의 제출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해당물품의 생산자 및 수출자가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산자와 수출자가 상이하더라도 EU역내소재 수출자가 상기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수출자가 발행한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6.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원산지신고서 작성자

Q :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원산지신고서는 생산자와 수출자 중 누가 작성할 수 있나요? (2018.04.04.)

A : 한-EU FTA협정상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는 자가 소재한 관세당국으로부터 인증수출자 지위를 부여받고 해당 상품의 원산지 증명에 관한 모든 기록을 보관하며, 원산지검증에 대해 원산지증빙자료 등의 제출의무를 이행할 수 있어야합니다. 따라서 상기요건을 갖춘 해당물품의 생산자 또는 수출자가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57. 생산자와 수출자가 상이한 경우 수출자 원산지증명서 발급가능여부

Q : 생산자와 수출자가 상이하고 수출자가 인증수출자인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가능한가요? (2019.01.04.)

A : 한-EU FTA에서는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수출자(또는 생산자)란

- ① EU역내에 소재하며
- ② 해당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결정·입증할 수 있으며,
- ③ 원산지 증명에 관한 모든 기록을 보관하고
- ④ 원산지검증의 대상이 되는 자로
- ⑤ 해당 소재 관세당국으로부터 인증수출자 지위를 부여 받은 자입니다. 따라서 생산자와 수출자가 상이하더라도 EU역내소재 수출자가 상기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수출자가 발행한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8. 생산지원비의 협정관세 사후적용 가능여부

Q : EU로부터 상품 수입시 상품생산에 사용된 금형의 비용(Tooling cost)에 대해 협정관세 사후적용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019.04.03.)

A : 수입물품 생산에 사용된 금형비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므로 금형이 동 수입물품 생산에 사용되

있음이 확인되고, 수입물품이 한-EU FTA에 따른 원산지기준과 기타 협정관세적용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협정적용이 가능하다면 금형비(Tooling cost)도 협정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수입신고시에 수입물품에 대해서만 협정적용 신청을 하고 금형비에 대해서는 협정적용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금형비에 대해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9. 선하증권 등 운송서류의 상업서류 인정 여부

질의 : 선하증권 등 운송서류는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상업서류로 인정 가능한가요?

답변 : 선하증권(B/L)은 선박회사가 발행하는 운송서류로 송품장, 인도증서와는 달리 원산지 상품에 대해 상세히 충분히 기술하고 있지 않아 원산지 증명의 목적상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산지 신고를 작성할 수 있는 상업서류로 인정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60. 선하증권에 원산지신고문안 작성시 원산지신고서로 인정 가능 여부

Q : 인증수출자가 선하증권상에 원산지신고문안을 작성한 원산지신고서로 협정관세적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017.11.23.)

A : 협정규정에 따라 원산지 신고는 해당 제품이 확인될 수 있도록 충분히 상세하게 그 제품을 기술하는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 상에 수출자에 의해 작성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선하증권(B/L)은 원산지 신고를 작성할 수 있는 상업서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61. 송장 등이 제3국에서 다시 발급된 경우

송품장 등 상업서류가 비당사국에서 다시 발행된 경우 EU역내 수출자가 원산지신고서를 작성, 제출시 협정관세 적용 여부

한-EU FTA에서는 유럽연합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제품이 대한민국으로 수입될 때 EU역내의 수출자가 송품장 등 상업서류에 작성·발급한 원산지신고서에 의해 원산지제품임을 증명하는 것이므로, 동 협정에서 정한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송품장 등의 상업서류가 비당사국에서 다시 발행되는 경우에도 EU역내의 수출자가 작성·발급한 유효한 원산지신고서가 세관에 제출되는 경우에는 동 협정 적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62. 송장 양식과 일부 상이한 경우 한-EU FTA 적용 가능 여부

- 첫 장에 이태리의 인증 수출자(ARMONIA)가 수입자(INBETWEEN)에게 발행한 인보이스 첨부(신고문안, 인증번호, 원산지 기재)
- 구성품목이 다양하여 수출자에게 물품을 공급한 업체(CHERVO)가 발행한 상세 인보이스 첨부(품명, 원산지, 단가, 수량 등 기재)

한-EU FTA 협정에서 원산지 신고서는 수출자가 송품장, 인도증서 등 상업서류에 원산지 신고문안을작성할 것을 요구하고, 원산지 신고는 해당 제품이 확인될 수 있도록 충분히 상세하게 그 제품을 기술하는 상업서류에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산자가 발행한 상세 인보이스가 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 신고서에 첨부된 경우에는 선적서류상의 품명, 규격, 수량 등을 통해 물품의 동일성이 입증되어야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63. 송품장 등 상업서류가 비당사국에서 다시 발행된 경우 EU 역내 수출자가 원산지신고서를 작성, 제출시 협정관세 적용 여부

- 협정에서 정한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송품장 등의 상업서류가 비당사국에서 다시 발행되는 경우에도 EU 역내의 수출자가 작성한 유효한 원산지신고서가 세관에 제출되는 경우에는 동 협정 적용 가능

<2011.8.1.>

[이유]

- 한-EU FTA에서는 유럽연합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제품이 우리나라로 수입될 때 EU 역내의 수출자가 송품장 등 상업서류에 작성·발급한 원산지신고서에 의해 원산지제품임을 증명하는 것임
또한, 제3국 송장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비당사국에서 송품장이 발급된다 하더라도 거래당사자인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될 수 있음

64. 송품장에 기재된 HS번호와 수입신고시 HS 번호가 다른 경우 협정관세 적용 여부

한-EU FTA에 따른 협정관세는 동 협정문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15조에 따라 수출자가 작성하는 ‘원산지신고서’에 근거하는 것이며, 동 신고서에는 동 의정서 부속서3에서 정한 ‘원산지신고문안’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산지신고서’에는 품목분류번호(HS번호)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출자가 작성한 송품장에 기재된 품목분류번호는 협정관세 적용시 고려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바, 귀소 질의와 같이 송품장에 기재된 품목분류번호와 수입신고하는 품목분류번호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도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65. 송품장이 아닌 다른 상업서류에 원산지 신고문안이 작성된 경우 유효성 여부

한-EU FTA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15조(일반요건)에 따라 ‘원산지신고서’는 해당제품이 확인될 수 있도록 충분히 상세하게 그 제품을 기술하는 송품장 등 상업서류에 수출자가 작성·발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 협정에서 상업서류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EU역내의 수출자가 원산지 물품내역이 충분히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고 원산지신고문안 등 동 협정에서 정한대로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여 발급한 경우에는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송품장과 해당 원산지신고서에는 충분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어 두 서류에 기재된 물품의 동일성이 명확하게 확인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66. 수리물품 재수입시 가공비와 운임의 협정 적용 가능 여부

Q : 체약상대국 수입물품의 기능저하로 상대국에 수출하여 수리 후 우리나라로 재수입한 경우 가공비와 운송비에 대해 협정적용 가능한가요? (2019.04.23.)

A :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37조에 따라 수리 후 재수입물품의 운임과 가공비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수리 후 재수입되는 물품이 한-EU FTA에서 정한 원산지기준과 기타 다른 요건을 충족함을 확인하여 수출자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한다면 가공비와 운임에 대해서도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67. 수리후 협정관세적용 신청기간 관련

EU측 수출자의 파업으로 인해 원산지증명서가 ‘수리 후 협정관세 적용신청기간(수리일로부터 1년)이 지나서 발급된 경우, 협정관세 적용 가능 여부

- 한-EU FTA 협정*에서 원산지증명서는 유효기간**안에 사용되는 경우 수입국에서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할 수 있고
- 예외적인 상황으로 인해 마감일까지 제출하지 못한 경우 수입당사자의 법에 따라 특혜관세 적용 가능
 - * 원산지의정서 제18조(원산지 증명의 효력) 제2항
 - ** 발급일부터 12개월

<질의 사례> 수입신고수리일 : 2011.7.25, 2011.8.9

EU측 수출자 파업기간 : 2012.4월 ~ 9월

EU측 수출자 인증취득일자 : 2011.11.9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자유무역협정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18조(원산지 증명 효력)에 따라,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한 경우 원산지증명서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귀사의 질의는 파업이 발생한 기간을 제외하더라도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던 상황인바 ‘수리 후 협정관세 적용 신청기간’을 연장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68. 수리후 협정관세 적용신청 가능 여부

EU측 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수입통관시 협정관세 적용하였으나,
- EU측 수출자가 인증수출자로 인증받지 못한 사실을 확인하여 세율을 바꾸어(협정관세→기본관세) 수정신고함
- 이후 EU측 수출자가 인증수출자로 인증받고 다시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면 다시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16조제6항에 따라 물품 수출 후에도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은 수입신고 수리 후에도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통관 당시 협정관세를 적용한 물품에 대하여도 수입신고 수리 후에도 다시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9. 수입신고서의 수출자와 원산지증명서의 수출자가 상이할 경우 당해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 여부

○ 통상 수입신고서상의 “수출자 ”라 함은 수입자의 거래계약 당사자로서 거래대금의 결제 상대방을 의미하며, 원산지 증명서상 상의 수출자는 각 FTA 협정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상대국에 소재하고 원산지 검증시 원산지에 대한 입증책임과 기록유지의무 등의 책임을 지는 人(자연인 법인을 포함)을 의미. 따라서 수입신고서의 수출자와 원산지증명서의 수출자가 서로 상이하더라도 협정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원산지 증명서는 유효함

70. 수출물품의 세번이 계약상대국과 상이한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법

Q : 한-EU FTA 원산지신고서 작성시 우리나라 수출세번과 상대국 수입세번이 상이한 경우 상대국 수입세번으로만 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아 원산지신고서 작성이 가능한가요? (2018.06.15.)

A : 우리나라 수출세번과 상대국 수입세번 상이시에는 공식적인 서류*로 HS번호가 다름이 확인되고 우리나라 HS번호로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품목에 대해 협정상대국의 HS번호의 원산지결정 기준을 충족여부를 확인하고 협정상대국의 HS번호로 추가로 인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 수입신고수리필증, 품목번호확인서, 사전심사결정서, 협정상대국 관세·품목분류표에 명확하게 규정된 품목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정보 등)따라서 우리나라 세번과 상대국 세번으로 모두 인증을 받은 후, 원산지신고서 작성시 수출물품이 양 국 세번으로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물품에 대한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71. 수출자와 생산자가 상이한 경우 비당사국 생산자 앞으로 발행된 원산지신고서의 유효성

Q : 제3국 발행 송장 거래의 경우 스페인 생산자가 우리나라 수입자가 아닌 스위스 수출자 앞으로 Delivery Note를 발행하여 원산지 신고문안 기재한 경우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로 인정가능한가요? (2018.08.17.)

A : EU역내 수출자(스페인)가 비당사국인 스위스로 발행한 Delivery Note는 한-EU FTA에서 정한 유효한 원산지신고서 서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72. 수출자와 생산자가 상이한 경우 생산자 발행 원산지신고서의 유효성

Q : 생산자가 인증수출자인 경우 생산자가 발행한 원산지신고서가 인정가능한가요? (2019.04.16.)

A :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수출자(또는 생산자)란 EU역내에 소재하며 해당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결정·입증할 수 있으며, 원산지 증명에 관한 모든 기록을 보관하고 원산지검증의 대상이 되는 자로 해당 소재 인증수출자인 스페인 소재 생산자가 우리나라 수입자에게 발행한 상업서류에 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산지신고문안을 기재한다면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가능합니다.

73. 수출자와 생산자가 상이한 경우 생산자 발행 원산지신고서의 유효성

Q : 독일에 소재하는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인증수출자인 생산자가 발행한 Packing List에 생산자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로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2017.11.15.)

A : 독일의 생산자가 독일 관세당국으로부터 한-EU FTA 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은 생산자라면 원산지신고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74. 수출자와 생산자가 상이한 경우 수출자 발행 원산지신고서의 유효성 여부

Q : 비인증수출자인 생산자(헝가리)가 물품을 우리나라로 선적하고 인증수출자인 수출자(독일)가 원산지신고서를 발행하는 경우 협정적용 가능한가요? (2019.06.21.)

A :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수출자(또는 생산자)란 ①EU역내 수출당사국에 소재하며 ②해당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결정·입증할 수 있으며, ③원산지 증명에 관한 모든 기록을 보관하고 ④원산지검증의 대상이 되는 자로 EU역내 관세당국으로부터 인증수출자 지위를 부여 받은 자를 의미 합니다.따라서 인증수출자인 독일 수출자가 발행한 상업서류에 한-EU FTA에서 규정된 바에 따라 원산지신고문안을 기재하여 원산지신고서를 발행하였다면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로 인정 가능합니다.

75. 수출자와 생산자가 상이한 경우 원산지신고서의 유효성

Q : 수출자와 생산자가 상이하고 이탈리아 수출자가 발행한 송품장에 프랑스 생산자의 인증수출자 번호와 원산지신고 문안이 기재된 경우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2017.12.29.)

A : 거래당사자인 수출자가 발행한 상업서류인 송품장 상에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원산지신고서는 인증수출자인 생산자가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신고서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하는 경우에만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로 인정 가능합니다. 아울러 원산지결정기준 및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76. 수출자와 생산자가 상이한 경우 원산지신고서 작성자

Q : 생산자와 수출자가 상이하고 생산자가 EU역내소재 인증수출자인 경우 생산자가 발행한 Packing List에 생산자가 원산지신고문안 작성시 협정적용 가능한가요? (2018.02.26.)

A : 생산자가 발행한 포장명세서(Packing List)에 인증수출자인 생산자가 한-EU FTA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한 경우는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77. 수출자와 생산자가 상이한 경우 원산지신고서 작성자 및 기재사항

Q : EU역내국에 소재한 수출자와 생산자가 상이한 경우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요? (2017.03.13.)

A : 한-EU FTA상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는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① 상품의 원산지를 결정·입증할 수 있으며, 사후검증을 위한 요청에 응할 수 있는 자(수출자 또는 생산자)② 상품의 원산지를

수출자가 소재한 관세당국에 입증하는데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구비하고 있는 자③ 수출자가 소재한 관세당국으로부터 인증수출자 지위를 부여 받은 자따라서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 EU역내 수출자와 생산자 모두 원산지신고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78. 수출자와 생산자 상이시 협정관세 적용가능여부

Q : 네덜란드 생산자가 생산한 네덜란드산 물품을 독일에 소재한 수출자로부터 수입하는 경우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2017.09.11.)

A : 한-EU FTA 협정은 상품무역과 관련된 양 당사자를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당사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EU역내 수출자(독일 수출자)가 EU 원산지제품(네덜란드산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도 동 협정이 적용되므로 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작성한 원산지신고서를 구비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에게 일시에 송부된 물품의 수출입금액이 6천유로 이상인 경우에는 관세당국으로부터 인증수출자 지위를 받은 인증수출자만이 원산지신고서 작성이 가능하며, 인증수출자인 경우 수출자 또는 생산자도 원산지신고서 작성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79. 수출자와 제조자가 상이한 경우 제조자 작성 원산지신고서의 유효성

Q : 제조자(인증수출자)와 수출자(비인증수출자)가 상이한 경우, 인증수출자인 제조자가 발행한 Delivery Note에 제조자가 직접 원산지신고문안을 작성한 경우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로 인정 가능한가요? (2018.09.28.)

A :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수출자(또는 생산자)란 EU역내에 소재하며 해당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결정·입증할 수 있으며, 원산지증명에 관한 모든 기록을 보관하고 원산지검증의 대상이 되는 자로 해당 소재 관세당국으로부터 인증수출자 지위를 부여 받은 자를 의미 합니다. 인증수출자인 제조자가 발행한 Delivery Note에 제조자가 직접 원산지신고문안을 작성한 경우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 가능합니다.

80. 수출자의 범위

한-EU FTA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에 관한 의정서 제16조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3에서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의한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가 작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수출자’의 정의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일반적 해석으로 ‘수출자’란 수입자와 무역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로서 내국물품을 외국물품으로 반출하는 행위를 하는 자인 바, 한-EU FTA에 따른 원산지지신고서는 생산자 또는 단순히 선적?발송행위를 하는자는 작성 할 수 없으며 물품의 매매계약자인 수출자가 작성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동 협정에 ‘수출자’를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수출자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하여는 수출당사국의 관세당국에서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귀사 질의 2-1과 관련하여, ‘원산지국가’는 단순히 생산한 국가가 아니며, 동 협정의 원산지결정기준에 부합되게 생산한 국가임을 알려드립니다.

81. 수출후 인증수출자 자격 취득시 협정관세 사후적용 가능여부

Q : 독일수출자가 우리나라로 수출 후 인증수출자 지위를 부여받고 원산지증명서 소급발급한 경우 협정 사후적용 가능한가요? (2019.05.28.)

A : 독일 수출자가 수출당시 인증수출자가 아니었지만 수출 후에 인증수출자 자격을 부여받아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한 경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이 가능합니다.

82. 수출후 인증수출자 자격 취득하여 소급발급된 원산지신고서의 유효성

Q : 수입물품의 수입신고 이후 계약상대국의 수출자가 인증수출자를 취득한 후협정관세 사후적용이 가능한가요? (2017.06.26.)

A : 해당물품 수출 당시에 인증수출자가 아니었어도 원산지신고서 작성당시에 인증수출자이면 소급하여 작성·발급한 해당 원산지신고서도 유효합니다. 따라서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간(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내에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은 후 발급한 원산지신고서를 첨부하여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83. 수출 후 인증수출자 취득하여 발행한 원산지신고서로 협정관세 사후적용 가능여부

Q : EU역내 수출자가 수출당시에는 비인증수출자였으나, 수출 후에 인증수출자 지위를 취득하여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여 수입자에게 제공한 경우, 협정관세 사후적용이 가능한가요? (2018.01.10.)

A : 수출 당시 수출자가 인증수출자가 아니었어도 원산지신고서 작성 당시에 인증수출자이면 소급하여 작성·발급한 원산지신고서도 유효합니다. 따라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간(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내에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은 후 발급한 원산지신고서를 첨부하여 협정관세 적용신청이 가능합니다.

84. 스위스에서 사용중인 설비를 네덜란드 수출자가 한국으로 수출시 적용

이태리, 영국, 독일 등에서 제조한 물품이 스위스에서 사용된 후 우리나라로 수출되는 경우에는 한-EU FTA 제15장「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13조(직접 운송)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협정관세 적용대상이 아니며, 아울러, 중고품인 경우에도 한-EU FTA 원산지결정기준과 직접 운송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협정관세 적용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5. 스위스 원산지 물품이 독일을 경유하는 경우 증빙 서류는

질의 : 재해로 인해 부득이하게 독일을 거쳐 운송하는 경우(스위스 원산지 물품) 한-EFTA 직접운송원칙을 위배하게 되는데 이때 협정 적용을 받기 위해 증빙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 질문에 예시한 EU 지역에서 발행되는 환적증명서(T1)는 EU 회원국 관세영역에서 비회원국 상품의 이동을 허용하는 서류로서 한-EFTA 협정 상 EU 회원국을 경유하는 EFTA 상품의 직접운송 증빙서류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86. 스탬프를 사용하여 작성한 경우

한-EU FTA에서, 원산지신고문안을 스탬프를 사용하여 작성한 경우에도 적정한 원산지신고서로 적용이 되는지? 또는, 수출자의 서명 및 수출국 원산지 관리 전담자의 정보 등을 추가로 제공해야만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한지?

한-EU FTA「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16조에 따르면 원산지신고서는 수출자가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다른 상업서류에 부속서3의 원산지신고문안을 타자로 치거나 스탬프로 찍거나 인쇄하는 방법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산지신고문안을 스탬프로 찍어서 작성한 원산지신고서로도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출자의 서명 및 원산지관리전담자의 정보 등을 추가로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87. 신발의 갑피와 안창 원산지 결정기준

- 한-EU FTA에서 신발의 갑피와 안창 또는 기타 바닥이 부착된 재료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생산되는 경우 원산지제품에 해당하지 않음(상단부와 바닥부가 분리되어 수입되어야 함)
 - ※ 한-EU FTA 제64류 신발의 원산지결정기준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제6406호의 안창 또는 기타 바닥에 부착된 갑피의 조립으로부터의 생산은 제외
 - 부티(Bootie)작업* 또는 보니스(Bonis)작업**이 끝난 갑피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신발을 제조(갑피와 바닥을 조립)하는 경우 한-EU FTA 원산지제품으로 볼 수 있는지
 - * 부티(Bootie)작업 : 방수신발을 만들기 위한 공법, 방수가 되는 Lining을 버선모양으로 제작한 후 신발 갑피와 재봉하여 갑피를 완성
 - ** 보니스(Bonis)작업 : 부직포나 Mesh를 갑피와 함께 제조하는 공법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자유무역협정에서 HS 제64류의 원산지결정기준은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제6406호의 안창 또는 기타 바닥에 부착된 갑피의 조립으로부터의 생산은 제외’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법인의 질의한 바와 같이 ‘부티작업’으로 갑피에 부착되는 고어텍스는 방수를 위해 신발안쪽 전체를 둘러싸고 있으므로 안창 또는 기타 바닥이 부착된 갑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바,

- ‘부티작업’에 따른 역외산 갑피를 재료로 사용한 경우에는 동 협정에 따른 원산지제품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보니스작업’으로 갑피의 하단부에 부착되는 부직포 등은 신발의 바닥부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기타 바닥이 부착된 갑피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바,
- ‘보니스작업’에 따른 역외산 갑피를 재료로 사용한 경우에는 동 협정에 따른 원산지제품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88. 알루미늄빌렛(제7601.20호)의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대상

질의 : 알루미늄빌렛(제7601.20호) 생산과정에서 알루미늄 잉곳(알루미늄 99% 이상)을 98% 이상, 망간, 실리콘, 철, 구리, 기타를 2% 이내 투입하는 경우 아래 원산지결정기준 2호를 충족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 (제7601.20호의 원산지결정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비합금 알루미늄 또는 알루미늄 웨이스트와 스크랩을 열 또는 전해처리하여 생산된 것

제7601호의 원산지기준 중 ‘비합금 알루미늄 또는 알루미늄 웨이스트와 스크랩을 열 또는 전해처리에 의한 생산된 것’은 제7601호의 제품 생산시 사용가능한 비원산지 재료는 비합금알루미늄 또는 알루미늄 스크랩과 알루미늄 웨이스트이며 그 외의 재료는 원산지재료를 사용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89. 어획물 완전생산기준 입증서류

Q : 한-EU FTA 원산지검증을 대비해서 제3류에 해당하는 재료가 체약당사국의 선박에 의하여 잡힌 어획물임을 증빙하기 위해 수출자로부터 받아야 하는 서류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2018.03.06.)

A : 수입자는 제3류에 해당하는 재료가 체약 당사국의 선박에 의하여 잡힌 어획물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수출자가 인증수출자 자격을 갖추고 한-EU FTA협정 제16조에 따라 작성한 원산지증명서로 입증이 가능하며,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한 수출자는 원산지신고서에 기재된 어획물이 완전생산되었음을 증명하기위해 한-EU FTA협정 제4조 제2항의 조건을 충족하는 선박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어획물이 당사국 선박에 의해 획득된 것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90. 여러국가에서 생산된 물품 수입시 협정관세 적용 가능 여부

Q : 폴란드에서 자동차 부품을 수입시 폴란드에서 생산된 부품뿐만아니라 독일, 중국, 터키 등 다양한 국가에서 생산된 부품들도 함께 수입하는 경우 협정관세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2017.07.27.)

A : 폴란드 또는 독일에서 생산된 자동차 부품이 협정관세적용대상 품목이고 유럽연합(EU) 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제품인 경우 EU역내 인증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신고서를 구비하여 협정관세적용을 신청할 수 있으나, 중국, 터키 등에서 생산된 제품의 경우 원산지 지위를 갖기 위해서는 EU역내 국가에서 제품이 완전 획득되거나 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을 거쳐야 하므로 동 협정상 원산지를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91. 여행자 휴대품 간이통관시 구매영수증

여행자휴대품 관련한-EU FTA에서 여행자 휴대품 간이통관시 구매영수증에 판매자의 서명이 누락된 경우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한-EU FTA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21조에 따라 여행자 휴대품의 총 가치가 미화 1,0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은 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야만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세청은 여행자의 편의를 위하여 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증명서 대신 판매자 서명이 기재된 구매영수증을 제출하는 경우에도 특혜관세를 적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 여행자 휴대품 간이통관시 구매영수증에 판매자 서명 누락

한-EU FTA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21조에 따라 여행자 휴대품의 총 가치가 미화 1,0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은 원칙적으로 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해야만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관세청은 여행자의 편의를 위하여 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 대신 판매자의 서명 및 원산지신고문안이 기재된 구매영수증을 제출하는 경우에도 한-EU FTA 협정관세를 적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 여행자휴대품 원산지신고 관련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1879, 2013.7.31

1. 귀하의 민원 관련입니다.
2. EU를 원산지로 하는 미화 1,000불 초과물품에 대한 FTA협정관세는 한-EU FTA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15조 규정에 의한 ‘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신고서’에 근거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3. 따라서, 수출자로부터 원산지신고서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 협정관세 적용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94. 여행자 휴대품 원산지신고 문안 작성방법

Q : 유럽에서 제품 구매후 원산지신고문안을 프린트한 별도용지와 구매영수증에 간인 받은 경우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2018.10.02.)

A : 여행자가 EU국에서 구입한 EU산 제품이 미화1,000달러 초과~6,000이하인 경우 구매영수증에 원산지신고문안을 작성하여야합니다.원산지신고문안을 구매영수증이 아닌 별도용지에 작성한 경우 인쇄, 타자, 스탬프, 수기로 판매자가 직접 작성하여야 하며,이 경우 작성자의 이름과 서명이 간인형태로 구매영수증과 별지에 걸쳐 수기로 작성 되어있다면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95. 여행자휴대품의 원산지신고서 작성방법

Q : 여행자휴대품의 구매영수증에 수기로 날짜가 기재된 경우 별도용지에 원산지신고서 작성시 날짜작성을 해야하나요? (2019.05.14.)

A : 미화 1천달러 이상 6천유로 이하의 EU국가를 원산지로서하는 상품을 구매하여 여행자 휴대품으로 반입시 별도용지에 원산지신고문안을 기재한 경우,구매영수증과 별지에 기재된 작성일자, 작성자의 이름, 서명이 동일하고 작성자의 이름과 서명이 구매영수증과 별지에 간인 형태로 수기로 작성된 경우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로 인정가능하며, 구매영수증에 작성일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일자는 생략 가능합니다.

96. 여행자휴대품의 협정관세 적용 가능여부

Q : 유럽에서 구매한 가방가격이 1000달러 이하인 경우 원산지증명서 없이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2019.05.14.)

A : EU국가로부터 1,0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물품을 비상업용으로 구매하여 여행자 휴대품으로 반입하는 경우 구매영수증, 현품의 원산지표시등을 통해 간이한 방법으로 원산지를 확인 후 협정관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97. 여행자휴대품의 협정관세 적용을 위한 구비서류

Q : 프랑스에서 미화1천달러 이상의 가방 구매시 협정 적용받기 위해 구비해야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2019.10.16.)

A : EU국가로부터 여행자휴대품으로 원산지상품을 반입하는 경우 구매금액별로 인정가능한 원산지신고서를 안내해 드립니다.

(1) 미화1천달러 이상~ 6천유로 이하의 원산지상품 반입시

① 송품장등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문안, 작성일자, 작성자의 성명과 서명이 기재된 경우

② 구매영수증에 원산지신고문안을 작성하고 작성자의 수기서명이 된 경우

③ 구매영수증의 사이즈가 작아 원산지신고문안을 기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 용지에 원산지신고문안 작성한 경우

※ 별도용지에 원산지신고서 작성시에는 별도용지에 원산지신고문안 작성자의 서명을 하고 구매영수증과 별도용지에 간인을 한 경우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로 인정

(2) 6천유로 초과하는 원산지상품반입시에는 인증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 구비

98. 역외산물품을 수출국에서 소분작업시 협정 적용 가능 여부

Q : 아프리카산 견과류를 독일에서 소분포장(로스팅이나 열처리 가공 하지 않으며, 첨가물 없음)하여 우리나라로 수출한 경우 한-EU FTA 협정적용이 가능한가요? (2019.04.24.)

A : EU국가로부터 우리나라로 수입하는 상품이 한-EU FTA 적용을 위해서는 ① 동 협정에서 정한 협정관세 적용 대상 물품일 것, ②동 협정에서 규정하는 원산지기준 충족(불인정공정이상 공정 수행 포함), ③ 상기 ①,②이 충족되는 6천유로 초과 원산지상품인 경우에는 해당 원산지상품이 상세하게 기술된 송품장·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 상에 EU역내소재 인증수출자가 동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신고문안을 기재한 원산지신고서 구비 ④ 직접운송원칙을 충족하는 경우 협정관세를 적용 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아프리카산 견과류를 독일에서 별도의 가공 없이 소분포장만 하는 경우에는 한-EU FTA에서 정한 불인정공정에 해당되어 협정관세적용이 곤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99. 영국의 수출자가 프랑스에서 생산한 물품을 프랑스에서 수출시 협정관세 적용 여부

○ 한-EU FTA에서 영국의 수출자가 프랑스에서 생산한 물품을 프랑스에서 수출하는 경우에도 협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용 가능 <2011.6.7.>

[이유]

- 영국의 수출자가 인증수출자이고 직접운송 등 동 협정에서 정한 다른 기준을 충족하며 인증수출자가 작성한 유효한 원산지신고서가 제출되면 협정관세 적용 가능

100.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이외에 직접운송 원칙의 적용범위는

- 원산지 제품이라 하더라도 양 당사자간 직접적으로 운송되어야 협정관세적용이 가능함
 - EU역내 국가이면 수출국과 선적국(출항국)이 다르더라도 EU역내에서 우리나라로 직접 운송된 경우에는 적용 대상

EU역내 이외의 지역을 경유하는 경우

- 단일 탁송화물을 구성하는 제품이 부득이한 사유로 환적 또는 일시장치되는 경우 역외 영역을 경유해도 적용 가능
- 다만, 이 경우에도 자유로운 유통을 위해 반출되지 않아야 하며, 하역, 재선적 또는 양호한 상태로 물품을 보존하기 위한 공정을 수행한 경우 인정

101. 원산지가 협정당사국인 물품과 당사국이 아닌 물품이 혼재된 경우 원산지 신고문안 관련

단일 탁송화물에 원산지가 협정당사국인 물품과 당사국이 아닌 물품이 혼재되어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경우, 한-EU FTA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원산지신고문안은 해당제품이 원산지제품임을 기재하는 것이므로 원산지신고문안은 원산지 제품이 구분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원산지가 한-EU FTA협정당사국이 아닌 물품과 혼재되어 있는 경우, 원산지신고서 마지막에 원산지신고문안이 한번 기재된 것은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로 인정하기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102. 원산지가 협정당사국인 물품과 당사국이 아닌 물품이 혼재된 경우 원산지신고서 유효성 여부

- 원산지 제품이 구분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함

103. 원산지상품 해당여부

Q : 제0902호의 제품 생산시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원산지기준 충족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017.04.12.)

A : 제0902호의 원산지결정기준은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입니다. 따라서 제0902호의 제품 생산시 동일한 호의 비원산지재료를 사용하더라도 한-EU FTA 제6조(불충분한 작업 및 가공)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원산지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04. 원산지 사전심사 결정 이전 협정관세 적용 가능 여부

- 한-EU FTA 관련, EU로부터 수입하는 차(茶)가 원산지제품인지(불인정공정 해당여부)를 알기 위해 관세평가 분류원에 ‘원산지 사전심사’를 신청한 상태
- 동 물품에 대해 영국관세청은 영국에서 블랜딩 작업 또는 가향작업이 수행되므로 원산지제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독일에서도 수출자가 인증을 받음
- 사전심사의 결정이전에 동 물품을 수입할 때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인증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를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한-EU FTA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15조에 따라 FTA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원산지 사전심사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FTA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협정관

세를 적용한 후 해당물품에 대하여 원산지검증을 실시할 수 있으며 검증결과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협정관세적용이 배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05. 원산지신고문안 관련

단일 타송화물에 원산지가 협정당사국인 물품과 당사국이 아닌 물품이 혼재되어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경우, 한-EU FTA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원산지신고문안은 해당제품이 원산지제품임을 기재하는 것이므로 원산지신고문안은 원산지 제품이 구분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원산지가 한-EU FTA협정당사국이 아닌 물품과 혼재되어 있는 경우, 원산지신고서 마지막에 원산지신고문안이 한번 기재된 것은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로 인정하기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106. 원산지 신고문안 수기 작성에 대한 질의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1732, 2013.7.12

1. 인천공항세관 휴대품과-3202(2013.07.02.) 호와 관련입니다.
2.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서 원산지신고문 안은 협정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므로 동 협정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수기로 작성되는 경우 대문자로 작성해야 합니다.
 - 하지만 작성된 원산지신고문안으로 해당 수입물품이 원산지제품인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명백한 형식적 오류’로 볼 수 있는 바,
 - 수기로 작성된 원산지신고서의 신고문안이 소문자로 작성되었더라도 협정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작성되어 있고, 명확하게 그 내용을 알 수 있으며, 원산지신고서로 원산지제품임을 증명한 것이 정확한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3. 또한 동 협정에서 원산지신고서로 사용하는 상업서류를 수기로 작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 원산지신고문안을 작성할 때, 타자로 치거나 스탬프로 찍거나 인쇄하거나 수기로 작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107. 원산지 신고문안에 작성하는 국명표기 방법은

- 원산지 신고문안에 작성하는 원산지는 협정문에 있는 당사자명,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가명, 당사자 국가의 ISO코드, EU’ 표기 및 ‘EC’ 표기도 인정
(예)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THE HELLENIC REPUBLIC (GREECE), THE EUROPEAN UNION, EUROPEAN UNION / EU, EC 표기 인정 EU 에는 세우타 및 멜리야 (Ceuta and Melilia)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세우타 및 멜리야 원산지 제품이 포함되었을 경우, ‘EU’ 로 표기하는 것은 인정불가
(예) ‘CM’표기만 인정 (‘Ceuta and Melilia’ 표기는 인정불가)

108. 원산지 신고문안에 표기하는 원산지 및 표기방법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119(1.5)

한-EU FTA에서 원산지신고문안에 표기하여야 하는 원산지는 협정 각 당사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원산지’란에 협정당사자명이 아닌 다른 표기를 한 것은 인정될 수 없으며, 유럽연합 협정당사자는 EU 및 EU회원국으로 귀하께서 질문하신 ‘CE’ 표기는 한-EU FTA 협정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 바, 올바른 원산지표기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 ‘원산지’란과 관련되어 인정되는 표기방법은 관세청 홈페이지(FTA 포털 <http://fta.customs.go.kr> 공지사항 216번. ‘한-EU FTA 원산지신고문안의 원산지 표기 인정범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9. 원산지 신고문안을 협정에서 정하는 문구와 인증번호 기재 위치가 다르게 기재된 경우,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되는지

<사례 1> The Exporter(authorized exporter authorization-number DE/8750/EA/0042)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EU preferential origin

<사례 2>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European Community preferential origin.
Approved exporter's licence number (DE/3450/EA/0329) HZA Giessen

○ 원산지신고문안이 협정에서 정한 대로 작성되고 인증번호 기재 위치가 상이한 경우, 원산지제품인 것을 확인할 수 있을 때에는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로 인정

[이유] ○ 원산지 신고서 문안에 인증번호 기재 위치 오류는 원산지를 확인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미한(형식적) 오류로 판단됨

110. 원산지신고문안을 협정에서 정하는 문구이외에 다른 문구가 포함된 경우,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되는지 여부

한-EU FTA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에 관한 의정서’ 제15조(일반요건) 및 동 의정서 부속서3(원산지 신고서 문안)에 따라 원산지신고문안은 협정에서 정하는 대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다만, 수입통관절차를 원활히 하기 위해 원산지신고문안이 협정에서 정하는 대로 작성되고 그 외의 문구가 추가로 적혀있을 때에는 원산지제품임을 확인하는데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산지신고서에 원산지신고문안이 협정에서 정하는 대로 작성되고 보다 세부적으로 원산지를 표현하기 위한 문구가 작성되어 있는 경우, 동 FTA에 따른 원산지제품인 것을 확인할 수 있을 때에는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로 인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1. 원산지신고문안의 “ EUROPEAN UNION” 적정성 여부

질의 : 원산지신고문안상 원산지표기를 “THE EUROPEAN UNION” 이 아닌 “EUROPEAN UNION” 으로 기재한 경우에도 규정에서 요구하는 형식적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 한-EU FTA에 따른 원산지신고서 작성시 원산지국가란에 원산지국가 표기 시 EU, THE EUROPEAN UNION으로 기재가능합니다. 그러나 EUROPEAN UNION으로만 기재한 경우라도 상품의 원산지국가가 EU임이 확인 가능하므로 인정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12. 원산지 신고문안의 명백한 형식적 오류 인정 범위

질의 : 원산지신고문안이 [명백한 형식적 오류]인 경우에 원산지신고서를 인정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 한-EU FTA 여행자 휴대품 원산지증명서 처리 지침에서는 아래의 경우를 명백한 형식적 오류의 예로 들고 있습니다.

(명백한 형식적 오류 예시)

①단어의 철자를 잘못 작성한 경우

(예) ‘these products’ 를 these produtcs’ 로 작성한 경우

②협정문에서 정한 단어 이외의 단어를 사용한 경우

(예) ‘these products’ 를 ‘these goods’ 로 작성한 경우

‘these products are’ 를 ‘this product is’ 로 작성한 경우

③ 단어순서 또는 항목 위치가 바뀌어 작성한 경우

(예) 인증수출자번호 · 제품의 원산지를 다른 위치에 기재한 경우

- ④ 협정에서 정하는 원산지신고문안을 수기로 작성하면서 소문자로 작성하는 경우
- ⑤ 원산지신고문안의 각주 또는 설명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예) ‘(customs authorisation No)’, ‘(Place and Date)’ 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상기 예시를 확인하여 귀하가 질의한 내용이 원산지신고서의 명백한 형식적 오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13. 원산지신고문안의 원산지표기

질문 : 한-EU FTA 원산지신고문안의 원산지표기를 “EU” 의 형용사형인 “European“ 으로 기재한 경우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되는지 여부

답변 : 원산지신고문안은 「한-EU FTA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에 관한 의정서」 제15조(일반요건) 및 「동 의정서 부속서3」의 양식대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다만, 원산지신고문안이 협정에서 정하는 대로 작성되고 원산지표기가 당사국의 형용사형으로 표기된 경우에도 동 FTA에 따른 원산지제품인 것을 확인할 수 있을 때에는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로 인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4. 원산지신고문안의 유효성 질의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 2015-12-24(접수일자)

질의 : ○ 원산지국가 : 독일(DE)

- 독일산 물품에 대하여 한-EU FTA 원산지신고 문안 제품의 원산지란에 ① “CE“, ② “CE/EU“로 표기된 경우 원산지 신고문안의 유효성 여부

답변 : 1. 귀 법인의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 2. 원산지신고문안 중 제품의 원산지 표기를 “CE“로 표기한 경우 유효한 원산지표기로 인정할 수 없으며 “CE/EU“로 표기한 경우 유효한 원산지표기로 인정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3. 다만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원산지에 관한 조사’ 결과에 따라 협정관세적용이 배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5. 원산지 신고문안이 협정과 다른 경우 유효성 여부

한-EU FTA에서 원산지신고서는 동 협정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16조에 명시된 바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므로, ‘원산지 신고서 문안’은 동 의정서 부속서 3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원산지 신고서 문안에 포함되는 ‘원산지’ 표기 란에는 협정당사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질의처럼 ‘원산지신고서 문안’이 협정과 다르고, 원산지 신고서 문안의 ‘원산지’ 란에 협정당사자를 기재하지 아니한 원산지신고서는 유효하다고 볼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16. 원산지 신고문안 인정 여부

한-EU FTA 협정문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부속서 3 원산지신고서 문안 각주5)에 의거 인증수출자의 인증번호가 기재되어야 하는 바, 다른 문구는 인정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117. 원산지신고서

한-EU FTA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15조(일반요건)에 따라 ‘원산지신고서’는 해당제품이 확인될 수 있도록 충분히 상세하게 그 제품을 기술하는 송품장 등 상업서류에 수출자가 작성·발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원산지 물품내역이 충분히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고 수출자가 원산지신고문안 등 동 협정에서 정한 대로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여 발급한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송품장과 별도로 작성된 원산지신고서에는 충분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어 두 서류에 기재된 물품의 동일성이 확인되어야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118. 원산지신고서 관련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2708, 2013.11.15

1. 귀 법인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원산지신고서에 작성되어야 하는 원산지신고문안은 동 협정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부속서3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작성되어야 하는 바,
 - 원산지신고서가 수기로 작성되는 경우에는 대문자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3.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바와 같이 수출자가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문안을 수기로 작성하면서 대·소문자를 혼용하여 작성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협정과 다르게 작성된 것이나
 - 해당물품의 송품장, 포장명세서, 선하증권 등 관련 무역서류로 원산지신고서의 물품이 명확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 의정서 제24조에 따라 원산지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의 정확성에 의심을 야기할 만한 정도가 아닌 명백한 형식적 오류로 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9 원산지신고서 관련

질의 : EU의 인증수출자가 아래와 같은 항목이 기재되어 해당제품을 확인하는데 문제가 없는 Delivery Note에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한 경우 인정여부
B/L번호, Vessel Name 등을 기재, B/L상의 물품정보를 충분히 기재

답변 :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자유무역협정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15조에 원산지신고는 ‘해당 제품이 확인될 수 있도록 충분히 상세하게 그 제품을 기술하는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 상’에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한 원산지신고서는 ‘인도증서’ 상에 작성되어 있는 바, 동 원산지신고서와 동 원산지신고서의 첨부서류가 동시에 세관장에게 제시되고 상기 서류간의 연관성이 충분히 확인되며 그 첨부서류에 해당 제품이 확인될 수 있도록 충분히 상세하게 그 제품을 기술하고 있다고 세관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동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120. 원산지신고서 관련

질의 : 한-EU FTA에 정한 바와 다르게 원산지신고문안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인정여부

답변 EU FTA의 원산지신고서는 동 협정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15조(일반요건) 및 부속서3(원산지신고서 문안)에서 정한대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협정내용과 다른 방법으로 기재된 원산지신고서는 동 협정에 적용될 수 없습니다.

질의 : 송품장 첨부서류로 원산지신고서를 작성 ? 발행한 경우 인정여부

답변 : ‘원산지신고서’는 해당제품이 확인될 수 있도록 충분히 상세하게 그 제품을 기술하는 송품장 등 상업서류에 수출자가 작성·발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송품장 첨부서류에 원산지 물품내역이 충분히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고 수출자가 원산지신고문안 등 동 협정에서 정한대로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여 발급한 경우에는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송품장과 해당 원산지신고서에는 충분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어 두 서류에 기재된 물품의 동일성이 확인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121. 원산지신고서 관련

질의 : 송품장 등 상업서류가 비당사국에서 다시 발행된 경우 EU역내 수출자가 원산지신고서를 작성, 제출시 협정관세 적용 여부

답변 : 한-EU FTA에서는 유럽연합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제품이 우리나라로 수입될 때 EU역내의 수출자가 송품장 등 상업서류에 작성·발급한 원산지신고서에 의해 원산지제품임을 증명하는 것이므로, 동 협정에서 정한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송품장 등의 상업서류가 비당사국에서 다시 발행되는 경우에도 EU역내의 수출자가 작성한 유효한 원산지신고서가 세관에 제출되는 경우에는 동 협정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동 협정에서 ‘원산지신고서’는 해당제품이 확인될 수 있도록 충분히 상세하게 그 제품을 기술하는 송품장 등 상업서류에 수출자가 작성·발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수출자가 발행한 상업서류(Delevery Note 포함)에 원산지 물품내역이 충분히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고 수출자가 원산지신고문안 등 동 협정에서 정한대로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여 발급한 경우에는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송품장과 해당 원산지신고서에는 충분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어 두 서류에 기재된 물품의 동일성이 확인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122. 원산지신고서 관련

한-EU FTA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15조(일반요건)에 따라 ‘원산지신고서’는 해당제품이 확인될 수 있도록 충분히 상세하게 그 제품을 기술하는 송품장 등 상업서류에 수출자가 작성·발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원산지 물품내역이 충분히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고 수출자가 원산지신고문안 등 동 협정에서 정한대로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여 발급한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송품장과 별도로 작성된 원산지신고서에는 충분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어 두 서류에 기재된 물품의 동일성이 확인되어야함을 알려드립니다.

123. 원산지신고서 관련 질문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 2012-02-09(회신일자)

질의 : 한-EU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증명서로 ‘EUR1’이 적용가능한지 여부

답변 : 한-EU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가 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므로, 귀하께서 질문한 원산지증명서인 ‘EUR1’은 동 FTA에 적용되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124. 원산지신고서 국가명 기재방법

Q : 한-EU FTA 원산지신고문안에 국가명을 영국을 ‘Great Britain’으로, 그리스를 Greek로 기재한 경우 인정 가능한가요? (2019.04.15.)

A : 한-EU FTA에서 정한 원산지신고문안에 작성하는 원산지국가명은 협정문에 있는 당사자명,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가명, 당사자 국가의 ISO 코드, ‘EU’ 표기 및 ‘EC’ 표기는 인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Great Britain’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가명이며, Greek은 Greece의 형용사적 표기이므로 인정가능합니다.

125. 원산지신고서 기재방법

- 한-EU FTA에서 ‘원산지신고서’는 해당제품이 확인될 수 있도록 충분히 상세하게 그 제품을 기술하는 송품장 등 상업서류에 수출자가 작성·발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 협정에서 상업서류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EU역내의 수출자가 원산지 물품내역이 충분히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고 원산지신고문안 등 동 협정에서 정한대로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여 발급한 경우에는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 다만, 이 경우 송품장과 해당 원산지신고서에는 충분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어 두 서류에 기재된 물품의 동일성이 명확하게 확인되어야 합니다.

- 독일어본 한-EU FTA 협정문에 따른 'Europäischen Union'은 원산지표기로 인정되며, 원산지신고문안의 언어종류와 '원산지표기'의 언어종류가 다른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 하지만 원산지신고문안의 '원산지표기'란에는 원산지가 표기되어야 하며, 동 협정에 따른 원산지제품과 비원산지제품이 하나의 원산지신고서에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원산지제품은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합니다.

126. 원산지신고서로 송품장이 아닌 다른 서류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발행한 서류로서 MEMORANDUM OF SHIPMENT, ADVANCE INVOICE

한-EU FTA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에 관한 의정서' 제15조(일반요건)에 따라 원산지 신고는 그 제품을 기술하는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 상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송품장이 아닌 다른 상업서류(MEMORANDUM OF SHIPMENT, ADVANCE INVOICE)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물품내역이 충분히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고 수출자가 원산지신고문안 등 동 협정에서 정한대로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여 발급한 경우에는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127. 원산지 신고서 및 수출자

한-EU FTA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에 관한 의정서' 제15조(일반요건) 및 제16조(원산지신고서 작성 조건)에 따라 원산지신고서는 수출당사국의 법령에 따른 수출자가 작성하는 것인 바, EU측 인증수출자가 동 협정에 따른 수출자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수출당사국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다만, 원산지신고서는 EU역내 수출자가 작성하도록 규정한 협정의 형식적 요건에는 부합하는 것입니다.

또한 동 의정서 제13조(직접운송)에서 협정 양당사자간 직접운송된 제품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협정 비당사국에서 선적되어 EU영역을 단순경유하여 운송된 경우에는 동 협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원산지신고서는 해당제품을 충분히 상세하게 기술하는 상업서류 상에 EU측 수출자가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EU측 수출자와 우리나라의 수입자간의 무역거래와 관련된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서가 작성되면 동 협정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128. 원산지신고서 상세내역 관련

한-EU FTA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15조(일반요건)에 따라 '원산지신고서'는 해당제품이 확인될 수 있도록 충분히 상세하게 그 제품을 기술하는 송품장 등 상업서류에 수출자가 작성·발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원산지 물품내역이 충분히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고 수출자가 원산지신고문안 등 동 협정에서 정한대로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여 발급한 경우에는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이 경우 송품장과 첨부서류에는 충분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어 두 서류에 기재된 물품의 동일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129. 원산지신고서 신고문안과 다른 경우

한-EU FTA 원산지신고문안을 협정에서 정하는 문구와 다르게 기재된 경우(밑줄 친 부분),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되는지?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is product is of European Community preferential origin.

* 협정에서 정한 these products are를 단수품목에 대한 원산지신고서임을 감안하여 this product is로 기재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신고서의 문안에 물품에 대한 표현을 these products are 대신 this product is를 기재한 것은 협정 제24조의 경미한 오류로 판단되므로 유효한 원산지신고임을 알려드립니다.

130. 원산지 신고서에 국가명이 “UE” 로 표기된 경우 유효 여부

질의 : 원산지신고문안 전체가 프랑스로 기재되어 있을 경우에만 UE 표기가 유효한 것인지, 영문 문언이지만 국가명만 UE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에도 유효한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 EU측 각 당사자 언어 협정문에 표현된 ‘EU’ 표기도 원산지신고서에 기재할 수 있는 원산지 표시이며, 프랑스어 한-EU 협정문에 표현된 ‘EU’ 표기인 ‘UE’를 원산지신고서에 기재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131. 원산지신고서에 원산지국가 기재 방법

Q : 원산지신고문안상 원산지국가 기재란에 ‘CE’가 기재된 경우 인정 가능한가요? (2019.07.10.)

A : 귀하가 제시한 원산지신고서의 국가 기재란에 기재된 ‘CE(Conformity European)’는 EU와 EFTA국가에 적용되는 유럽공동체인증 표시로 EU국가를 의미하는 표시는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원산지신고서의 원산지국가 기재란에 ‘CE’가 기재된 경우에는 원산지신고서의 정정이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132. 원산지신고서에 원산지 제품과 비원산지 제품이 혼재되어 기재된 경우 적용 가능 여부

질의 : 독일의 인증수출자가 송품장에 원산지신고문안을 기재하고, 각 물품별로 +(국가명등)을 기재한 경우에는 원산지 제품이고, -(국가명등)을 기재한 경우에는 비원산지 제품이라는 내용을 별도로 기재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고 있는 경우 협정세율 적용 가능한가요?

답변 : 원산지신고서에 원산지제품과 비원산지제품이 혼재되어 기재된 경우 원산지제품과 비원산지제품이 명확하게 구분 표시된 경우 원산지상품에 대해서는 협정적용이 가능합니다.

-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의 제10란(원산지)는 한-EU FTA 적용물품으로 원산지가 EU 당사국내 어느 한 국가가 아닌 경우 “EU”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133. 원산지신고서 원산지국가 표기방법

Q : 원산지신고문안에 원산지국가가 ‘EEA’로 기재되어 있으며 원산지신고문구 위에 Country of origin: Finland 기재되어 있는 경우 인정 가능한가요? (2018.04.22.)

A : 한-EU FTA에 따른 원산지신고서 작성시 원산지국가란에 원산지표시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면, 추가로 다른 문구가 기재되어 있더라도 인정가능합니다. 그러나, EEA는 EU국가뿐만 아니라, EFTA국가를 포함한 유럽 단일 통합시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한 상업서류에 제품의 원산지가 핀란드로 기재되어 있다하더라도 한-EU FTA 원산지신고서의 원산지란에 EEA가 기재된 경우는 원산지증명서의 정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34. 원산지 신고서 유효성여부 관련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1735, 2013.7.12

1. 귀하의 민원 관련입니다.
2. 한-EU FTA 원산지신고문안 확인업무 처리지침에 의거 원산지 신고문안은 협정문에서 정한 바와 일치하여야 하며,
3. 원산지 신고문안의 주요 내용이 순서가 불일치하고, “these products”와 “preferential” 등 주요 단어가 빠져 해당 제품이 EU 특혜 원산지 제품인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유효한 원산지 신고서로 인정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135. 원산지신고서 유효 여부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 2018-01-23(접수일자)

질의 : <거래관계>

- ㉠ 한국A와 B 물품공급계약 ㉡ 한국B는 싱가포르C에 구매요청 ㉢ 싱가포르C는 독일D에 구매요청
㉣ 독일D는 생산 후 한국으로 운송

<관련서류>

- (원산지신고서) 독일D는 인증수출자로서 인도증서(Delivery Note)에 원산지 신고문안 작성하여 한국 수입자에게 송부
- (선하증권) Consignee(한국 B사), Notify party(한국 A사)

<질의사항>

- 인도증서에 기재된 수입자는 한국B사이며, 한국A사가 해당 원산지신고서로 협정관세적용신청 가능한지 여부

답변 : ○ 한-EU FTA에서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수출자(또는 생산자)란 EU역내에 소재하며 해당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결정하고 입증할 수 있으며, 원산지 증명에 관한 모든 기록을 보관하고 원산지검증의 대상이 되는 자를 의미합니다.

- 따라서, 인증수출자인 생산자(독일)가 상업서류인 인도증서에 신고문안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원산지신고서상의 수입자와 수입신고시 납세의무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국내 거래관계자간 계약서 등을 근거로 원산지신고서 상의 물품과 수입신고하는 물품이 동일한지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협정관세 적용신청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36. 원산지신고서의 유효성

Q : 원산지신고문안 중 인증수출자번호 기재란에 인증수출자번호와 수출자 상호를 같이 기재한 경우 인정가능한가요? (2018.10.15.)

A : 원산지신고서의 원산지신고문안은 원칙적으로 한-EU 협정에서 정한 대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다만, 인증수출자번호 기재란에 수출자 상호가 기재된 경우라도 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산지신고문안이 기재되고 유효한 인증수출자번호가 기재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인정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37. 원산지신고서 인정가능여부(원산지신고서 작성일자 관련)

Q : Delivery note에 원산지신고문안 기재시, 원산지신고서 작성일자가 아닌 주문일자가 기재된 경우 인정가능한가요? (2018.01.17.)

A : 한-EU FTA 부속서3가(원산지 신고문안)에 따라 원산지신고서 작성시에는 작성장소와 일자를 기재하여야 하며, 그 정보가 원산지신고서에 포함되어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산지신고서 작성일자에 대한 정보 또는 그 작성일자가 기재되어있지 않는 경우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138. 원산지신고서 작성가능 서류

Q : 선적서류(B/L)에 한-EU FTA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한 경우 인정가능한가요? (2018.01.17.)

A : 원산지신고서는 해당제품이 충분히 상세하게 기술된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에 작성가능합니다. 그러나 선하증권(B/L)은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상업서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139. 원산지신고서 작성 관련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2005, 2013.8.21

1.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신고서는 동 협정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15조(일반요건) 및 제16조(원산지신고서 작성조건)에 따라 작성되어야 합니다.
3. 귀하의 질의와 같이 원산지신고문안의 원산지가 EU 로 표기된 원산지신고문안이 작성되어 있는 경우,
 - 동 원산지신고문안으로 원산지제품으로 신고한 것임을 알 수 있는 바,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40. 원산지신고서 작성 관련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2238, 2013.9.23

1.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신고서는 수출자가 작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따라서 질문과 같이 단순히 생산물품의 원산지를 관리하는 업체는 해당 물품 수출거래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41. 원산지신고서 작성관련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237, 2014.2.4

1.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에 관한 의정서’ 제17조(인증수출자)에 따라 유럽연합 당사자측 수출자가 타사의 인증 수출자 번호를 사용할 수 있는 지는 수출당사국의 관세당국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3. 또한 동 의정서 제15조(일반요건)에 따라 원산지신고서는 수출제품이 확인될 수 있도록 충분히 상세하게 그 제품을 기술하는 상업서류에 기재되어야 하며
 - 이 경우 상업서류는 수출당사자인 유럽연합 당사자 측에서 해당 수출거래와 관련되어 발행된 상업서류이어야 하는 바
 - 제3국에서 발행된 상업서류는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상업서류로 볼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142. 원산지신고서 작성방법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2775, 2013.11.27

1.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서는 ‘제3국 발행증장’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동 협정에서 당사자를 ‘유럽연합’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독일과 프랑스는 하나의 당사자로 볼 수 있습니다.
3. 또한 동 협정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17조에 따라 수출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인증수출자로 인증하는 것이며,
 - 동 의정서 제16조제5항에 따라 수출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서면약속을 제공한 경우에 인증수출자는 원산지신고서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는 것인 바,
 - 질의하신 원산지신고서가 수출당사자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었는지는 수출당사국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4. 따라서 동 원산지신고서의 수입물품에 대해 수입자가 협정관세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협정관세적용은 가능하며,

- 해당 원산지신고서의 진위여부와 정확성에 대한 확인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원산지조사시 수출당사자 관세당국에 요청하여 확인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43. 원산지신고서 작성자

Q : 국내 제조업자(인증수출자)로부터 완제품을 구매하여 수출자(비인증수출자)가 EU국가로 수출하는 경우 제조자가 원산지신고서 발급가능한가요? (2019.04.18.)

A :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수출자(또는 생산자)란 수출당사국에 소재하며 해당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결정·입증할 수 있으며, 원산지 증명에 관한 모든 기록을 보관하고 원산지검증의 대상이 되는 자로 관세당국으로부터 인증수출자 지위를 부여 받은 자를 의미 합니다. 국내 생산자가 인증수출자라면 생산자가 EU국 수입자에게 발행한 상업서류(Invoice, 포장명세서, 인도증서 등)에 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산지신고문안을 기재한 경우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 가능합니다

144. 원산지신고서 작성주체

한-EU FTA 협정에 따른 원산지신고는 수출자가 행하는 것이며, 전체가격이 6,000유로를 초과하는 원산지 제품을 수출하는 때에는 인증수출자만이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즉, 실제로 수출행위를 하는 자가 인증수출자이어야 하며, 동 업체가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145. 원산지신고서 적용 관련

☐ 아래의 거래형태에 대한 한-EU FTA 협정세율 적용여부

☐ 거래형태

- ① 벨기에업체(인증수출자)와 국내 기업 간에 수출계약 체결
- ② 벨기에업체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에서 생산된 물품을 구매하여 한국으로 직접 운송

☐ 원산지신고서 작성

- 인증수출자인 벨기에 업체가 발행한 인보이스상에 원산지신고문안을 기재하여 원산지신고서 작성

유럽연합 역내에서 생산한 물품에 대해 역내의 다른 당사국에 소재하는 인증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는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자유무역협정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15조의 원산지신고서 작성조건과 부합함을 알려드립니다.

146. 원산지신고서 적정 여부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2706, 2013.11.15

1.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6천유로 초과물품을 수출할 때 원산지신고서에 작성되어야 하는 인증수출자번호는 수출국의 법과 하는 것인 바,

- 수출국에서 적법하게 인증수출자로 인증된 경우에는 수출자가 작성하는 원산지신고서를 근거로 해당 수입 물품에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3. 또한 제3국에서 상업송장이 발행되는 무역거래의 경우에는 수출국에서 해당 물품의 수출과 관련되어 발행된 상업서류인 포장명세서를 원산지신고서로 사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47. 원산지신고서 적정 여부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239, 2014.2.4

1.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서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는 수출자는 수출국의 법령에 따라 공급자 또는 생산자의 진술서를 포함하여 해당 제품의 원산지 지위와 이 의정서의 다른 요건의 충족을 증명하는 모든 적절한 서류를 수출 당사자의 관세당국이 요청하는 경우 언제라도 제출할 준비가 되어야 하며, 원산지 신고서에는 수출자의 원본 서명이 수기로 작성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수출자인지는 수출국 관세당국이 판단할 사항이며, 인증 수출자가 아닌 수출자는 원산지 신고서에 원본 서명을 수기로 작성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148. 원산지신고서 종류 및 인정요건

한-EU FTA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15조(일반요건)에 따라 ‘원산지신고서’는 해당제품이 확인될 수 있도록 충분히 상세하게 그 제품을 기술하는 송품장 등 상업서류에 수출자가 작성·발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 협정에서 상업서류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EU역내의 수출자가 원산지 물품내역이 충분히 상세하게 기술된 상업서류상에 협정에서 정한대로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여 발급한 경우에는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송품장과 해당 원산지신고서에는 충분한 정보가 기재되어 수출물품과 상기 서류에 기재된 물품의 동일성이 명확하게 확인되어야 합니다.

귀 법인이 제시한 원산지신고문안이 작성된 서류는 해당 수출거래와 관련된 상업서류(Delivery Overview)와는 별도로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로 인정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49. 원산지신고서 표기 관련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4673(12.21)

- 한-EU FTA 원산지신고서의 원산지신고문안에 작성하는 ‘원산지’ 표기와 관련하여서는 관세청 홈페이지(FTA포탈 www.fta.customs.go.kr) 공지사항 227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하가 질문하신 네덜란드어로 작성한 ‘유럽’이라는 원산지 표시는 동 협정 계약당사자인 ‘유럽연합’이 아니므로 적절한 원산지 신고문구로 인정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본부세관 자유무역협정과를 방문하시기 바라며, 답변에 대해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실로 문의(042-481-3284)하시기 바랍니다.

150. 원산지신고서 형식요건 관련

질문1 : 한-EU FTA 관련, 원산지신고서를 포장명세서(Packing List)에 소급하여 발행하는 경우, 최초 발행일자가 없고 소급발행일자만 있는 경우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로 인정하여 특혜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질문2 : ‘원산지인증수출자’가 한-EU FTA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때, 원산지신고문안에 서명만 있고 성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특혜관세 적용 여부

한-EU FTA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15조(일반요건), 제16조(원산지 신고서 작성 조건) 및 부속서 3(원산지 신고서 문안)에 따라 동 협정에서 정하는 원산지신고서는 수출 후 작성될 수 있으며, 이 때 원산지신고문안의 작성일자를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최초의 상업서류 발급일자와 수출 후 작성되는 원산지신고서 작성일자가 반드시 병기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수출국의 법령에 따라 ‘자신임이 확인되는 원산지 신고서에 대해 본인에 의해 수기로 서명된 것처럼 모

든 책임을 지겠다는 서면약속을 수출 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제공한 인증수출자'는 원산지신고서에 서명과 성명기재를 생략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51. 원산지신고서(편지) 관련

불임의 문서가 한-EU FTA에서 의미하는 상업서류에 해당되어 원산지신고서로 유효한지(상업서류 범위)

한-EU FTA에서 원산지신고는 해당 제품이 확인될 수 있도록 충분히 상세하게 그 제품을 기술하는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commercial document) 상에 수출자에 의해 행해지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 협정에서 상업서류의 정의에 대해서는 규정한 바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수출입거래에서 '상업서류'란 '해당 수출입거래에 따른 계약상 의무의 이행 및 대금청구의 목적으로 수출입자 또는 관련기관에서 발행하는 서류'를 말하며, 선적서류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귀사가 질문한 서류는 일반적인 상업서류라 할 수 있는 '송품장, 운송서류, 보험서류, 포장명세서 등'과는 달리 수출자가 작성한 편지로 보이는 바, 동 협정에서 의미하는 '상업서류'로는 판단되지 않으며, 따라서 동 서류상에 원산지신고문안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를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로 볼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52. 원산지 유럽연합 인정 누적기준

한-EU FTA 협정문 '서문'에 한쪽 당사자는 대한민국으로, 다른 쪽 당사자는 'EU 27개국'과 '유럽연합'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동 협정문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에 관한 의정서' 제3조(원산지 누적) 적용시에도 '유럽연합' 전체를 하나의 당사자로 적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53. 원산지제품과 비원산지제품이 혼재된 경우 원산지 신고문안 기재방법

한-EU FTA의 원산지신고서 문안은 동 협정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부속서3에 규정되어 있는 바, 원산지신고서 문안은 아래와 같이 동 협정에 명시된 것과 같이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동 협정에 따른 원산지제품과 비원산지제품이 하나의 원산지신고서에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원산지신고서문안은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이 경우 비원산지제품은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어야 합니다.

154. 원산지제품과 비원산지제품 혼재시 원산지신고서 작성

Q : Invoice 전체금액은 6천유로 초과하지만, 그 중 협정적용 받고자하는 원산지상품은 6천유로 이하일 경우 비인증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가 유효한가요? (2018.12.04.)

A : 단일탁송화물에 원산지제품과 비원산지제품이 혼재되어 수입되고 그 중 원산지제품이 6천유로 이하인 경우에는 비인증수출자도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산지제품과 비원산지제품이 혼재되어 수입되는 경우 원산지신고서에 비원산지제품과 원산지제품이 명확하게 표시되어 구분가능하여야 합니다.

155. 원산지제품 해당 여부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2430, 2013.10.15

1. 귀사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부속서 2-가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9에 따라
 - 품목번호 7601호의 물품인 알루미늄 슬랩 (Aluminium Slab)이 비합금 알루미늄(Ingot)과 알루미늄 스크랩(폐 알루미늄 캔)을 재료로 사용하여 열처리공정으로 생산된 경우에는 원산지제품에 해당됩니다.
3. 또한 동 의정서 제5조가호에 따라 원산지제품이 된 알루미늄 슬랩(Aluminium Slab)이 다른 제품(Aluminium

Sheet)의 생산에 사용되는 경우,

- 생산물품(Aluminium Sheet)의 가치를 산정할 때 알루미늄 슬랩(Aluminium Slab)에 포함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는 고려되지 않는 것인 바
- 알루미늄 슬랩(Aluminium Slab)의 가치를 원산지재료의 가치로 산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56. 원산지증명 관련

[한-EU FTA] 탁송화물의 전체가격이 6,000유로 이하인 경우 인증받지 않은 수출자가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음

- EU에서 수입했던 6,000유로 이하의 원산지제품을 수리를 목적으로 재수출했다가 다시 재수입되는 경우,(수리비를 합산하면 6,000유로 초과)
 - ※ [예시] 물품가액 : 5,000유로, 수리비 1,500유로
 - 인증받지 않은 수출자가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지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16조에 따라 탁송화물의 전체가격이 6,0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증수출자만이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리 후 재수입하는 물품의 경우 수리비를 포함한 물품금액이 해당 탁송화물의 전체가격인 바, 물품금액과 수리비를 합산한 금액이 6,000유로를 초과한 경우에는 인증수출자만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57. 원산지증명방식 관련 질문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 2012-02-01(회신일자)

질의 : 한-EU FTA 원산지 증명방식

답변 : 한-EU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가 동 FTA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므로, 독일상공회의소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는 동 FTA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158. 원산지증명서 관련

한-EU FTA 원산지신고문안을 협정에서 정하는 문구와 인증번호기재 위치가 다르게 기재된 경우(밑줄 친 부분),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되는지?

The Exporter(authorized exporter authorization-number DE/8750/EA/0042)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EU(Germany) preferential origin

원산지신고문안은 「한-EU FTA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에 관한 의정서」 제15조(일반요건) 및 「동 의정서 부속서3」의 양식대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귀사에서 질의하신 “원산지신고서문안의 인증번호 기재 위치 오류는 원산지를 확인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미한 오류로 판단” 되므로 유효한 원산지 신고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산지신고서작성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원산지조사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59. 원산지증명서 국가명 표기방법

Q : 원산지신고문안 중 원산지 표기란에는 ‘european’ 으로 표기되어있고, 별도로 Country of origin: ‘FEDERAL REPUBLIC OF GERMANY’ 으로 원산지국가명이 표기된 경우 인정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018.05.11.)

A : 원산지신고문안에 작성하는 원산지는 협정문에 있는 당사자명,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가명, 당사자 국가

의 ISO 코드, 'EU' 및 'EC' 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원산지신고문안에 'european' 으로 기재된 경우에는 보정되어야 하나, 원산지신고서상에 별도로 Country of origin: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가 병기되어있어 예외적으로 인정가능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60. 원산지증명서 사본 보관 관련

Q : E-mail로 전달된 원산지증명서를 출력하여 보관하여도 되나요? (2018.11.08.)

A :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받은 수입자는 FTA관세특례법에서 원산지증명서 사본을 보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유효한 (인증)수출자가 발급한 유효한 원산지증명서의 스캔본을 보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협정적용신청시 세관장이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시에는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61.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확인 관련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679, 2014.3.20

1. 귀사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2. FTA특례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 계산에 있어서는 해당물품이 도착한 다음 날부터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외됩니다.
3. 따라서 수입항 도착 전에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해당 원산지증명서로 해당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62. 원산지 증명서 작성방법

- 한-EU FTA 원산지증명서는 송품장(INVOICE) 등 상업서류에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신고문안을 작성하는 방식(한-EFTA FTA와 동일)
 - 건당 6,000유로 초과 물품 수출입시 원산지 신고문구에 세관당국으로부터 부여받은 인증수출자 번호 기재

163. 원산지증명서 적용 관련 질의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 2012-08-13(회신일자)

- 질의 : ○ 2011.7.31 독일에서 냉동돼지고기를 수입하였고 2011.7.15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었으나 2012.7.14까지 수입통관하지 못하여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의 재발행을 요청함
- 이 경우 재발행한 원산지증명서로 협정세율을 적용받을수 있는지 여부와 재발행한 원산지 증명서의 효력이 유효하다면 재발행된 날로부터 다시 1년간 효력이 유효한지의 여부

답변 : 「FTA특례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 계산은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경우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다음 날부터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날까지의 기간을 제외하므로 기 발행된 원산지증명서로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FTA특례법 시행령」 부칙 제3조의 원산지증명서에 관한 특례에 해당하는 물품은 협정발효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64. 원산지증명서 제출면제규정 적용 방법

Q : 한-EU FTA 협정 원산지증명 제출면제를 적용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2018.05.31.)

A : 한-EU FTA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증명서 면제대상 물품의 경우 EU국에서 구매한 구매영수증 또는 현품의 원산지표시 등을 확인 후 협정관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165. 원산지증명서 제출면제규정 해당 여부

Q : 한-EU FTA협정문상 원산지증명의 면제규정에 사인 간 소포 또는 여행자의 개인 수하물만이 적용되고 상업용으로 수입되는 물품은 적용되지 않나요? (2018.05.30.)

A : 한-EU FTA에서는 상업적으로 수입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제출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166. 원산지증명서 효력 여부 관련

수출자(BASF SE)가 수입자인 BK가 아닌 임가공업체인 APEC(최종 도착지)으로 원산지 신고문구가 기재된 인도증서(Delivery Note)를 발행할 경우 특혜 원산지증명서로의 효력 여부 질의

※ B/L, Invoice 및 Delivery Note에 기재된 Purchase Order no, 품명, 수량 등으로 원산지 물품의 동일성 입증 가능

한-EU FTA 협정에서 원산지 신고서(Delivery Note)의 발행 대상을 수입자로 한정된 명시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원산지 신고문구가 기재된 인도증서를 수입자가 아닌 최종도착지로 발행한 경우 선적서류 등을 통하여 물품의 동일성이 입증되면 특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167. 원산지증빙서류 관련

한-EU FTA 관련, 아래의 물품은 원산지 결정기준이 2가지인데, 그 중 ①번에 따라 원산지제품이 된 경우에도 동 협정 원산지규정 부속서 2-가(공통규정) 제5항에서 규정한 증빙서류를 수입국세관당국에 제출해야 하는 것 인지?

※ 물품 : 인조필라멘트사의 직물(염색한 것)

○ HS번호 : 5408.22, 5408.32

○ 원산지결정기준

① 인조 필라멘트사로부터의 생산 또는,

② 염색되기 전 사용된 직물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의 조건하에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마무리 공정(조제연마·표백·머어서라이징·열처리·기모·캘린더·방축방지가공·영구마감처리·증기처리·침투·수선 및 별링과 같은 것을 말한다)이 동반되는 염색작업

※ 부속서 2-가(공통규정) 제5항 : 원산지 증명이 염색된 직물(제5408.22호 및 제5408.32호)에 대하여 작성되는 경우, 그 원산지 증명은 염색되기 전 사용된 직물이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는 증빙서류가 동반되어야 한다.

한-EU FTA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에 관한 의정서’ 부속서 2-가* 공통규정 제5항에서 규정하는 것은, 염색에 사용된 직물이 비원산지 재료인 경우 그 직물의 가격이 수출물품(염색직물) 공장도 가격의 50% 이하 이어야 원산지제품이 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입니다.

* 생산된 제품이 원산지 지위를 획득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비원산지 재료에 수행되도록 요구되는 작업 또는 가공 목록에 대한 부가규정

즉, 동 물품의 두 가지 원산지결정기준 중에서 ‘인조 필라멘트사로부터의 생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염색되기 전의 직물이 원산지재료이므로 그 직물의 가치가 수출물품 공장도가격의 50%이하 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동 물품의 두 가지 원산지결정기준 중에서 ‘염색되기 전 사용된 직물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의 조건하에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마무리공정이 동반되는 염색작업’을 통해 원산지제품이 된 경우에만 부속서 2-가(공통규정) 제5항에서 정하는 증빙서류가 필요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68. 원산지코드

물품명 옆에 단순히 ISO코드를 기재한 경우 국가코드를 한-EU FTA의 원산지코드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한-EU FTA협정에서 원산지신고서는 송품장 등 상업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물품이 특혜원산지 제품임을 신고하는 것이며, 특혜원산지 제품이 아닌 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달리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의와 같이 물품명 옆에 단순히 ISO코드를 기재한 경우(물품A DE, 물품B ES, 물품C CN), 송품장에 기재되어 있는 국가코드를 한-EU FTA의 원산지코드로 인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CN’ 이 원산지 표기인지 물품규격 표기인지 판단 곤란)

원산지제품과 비원산지제품이 섞여 있는 경우에는 단순히 원산지신고서의 문구만을 가지고 판단할 수 없으며 통관지세관장이 수입물품의 종류, 송품장의 작성형태 등을 감안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169. 원산지확인서 작성 관련

한-EU FTA 원산지증명된 수입물품을 다른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원산지(포괄)확인서의 ⑤번란(적용대상협정)은 ‘한-EU’, ⑧번란(원산지기준충족여부)는 ‘충족’, ⑨번란(원산지)는 ‘EU’, ⑦번란(원산지결정기준)은 알지 못하는 경우 공란으로 기재하시기 바라며, ⑩번란(원산지포괄확인기간)은 공급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등 원산지(포괄)확인서에 기재되는 항목의 내용이 모두 같은 경우에만 기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70. 원상태 수출시 원산지신고서 작성가능여부

Q : 이탈리아에서 우리나라로 수입한 가방을 수입한 상태 그대로 독일로 수출하려는 경우 우리나라 인증수출자가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IT로 기재하여 원산지신고서 작성 가능한가요? (2019.10.25.)

A : 한-EU FTA에서는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제품이 EU국가로 수입될 때, 수출자가 상업서류에 작성한 원산지신고서를 근거로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수출되는 물품의 원산지가 이탈리아(IT)인 경우에는 동 협정에 따른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

171. 의류 원산지 결정기준

한-EU FTA 의류(61류)의 원산지결정기준중 “절단을 포함한 편직 및 제조”란 ‘직물을 편직하여 제조하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즉, 편직을 하여 형성을 위해 절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절단을 하여 제조(조립)하여야 하는 것이며, 편직을 하여 바로 제조하는 경우에는 절단공정이 생략되므로 동 공정 없이 제조하여야 한다는 의미임을 알려드립니다.

172. 의류(61류)의 원산지결정기준

질의 : 한-EU FTA 적용 시, 주석6.1과 관련하여 안감과 심감은 100% 한국산만을 사용해야 의류(61류)의 원산지결정기준을 만족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 : 한-EU FTA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부속서1 주석6.1의 규정은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방직재료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미소기준)를 정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안감과 심감의 제조에 반드시 역내산 방직재료만 사용하라는 의미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173. 이산화물차량의 협정 적용 가능 여부

Q : 파리에서 구매한 슬로바키아산 차량을 이산화물로 한국 반입시 슬로바키아 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한 원산지 증명서로 한-EU FTA 특혜관세적용이 가능한가요? (2019.06.05.)

A : 이산화물차량의 경우에도 ①한-EU FTA에서 규정하는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② 원산지제품이 확인될 수

있도록 상세하게 기재된 송품장·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에 EU역내 소재 인증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증명서 구비 ③직접운송원칙을 충족하는 경우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그러나 한-EU FTA에서 규정한 원산지신고서가 아닌 슬로바키아 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로는 한-EU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174. 이탈리아 수출물품을 벨기에 원산지신고서

한-EU FTA에서는 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에 의해 유럽연합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제품이 우리나라로 수입될 때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에 ‘원산지신고서’는 수출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작성되는 것이므로 귀사의 질문처럼 이탈리아에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 벨기에 수출자가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유효한 지 여부는 수출국의 관세당국에 문의 하셔야 합니다.

다만 상기와 같이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는 것을 동 협정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수입통관시 협정관세 적용은 가능하지만, 실제로 해당 ‘원산지신고서’가 유효한 지 여부는 동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증명의 검증’이 수행된 이후에야 확정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75. 인보이스에 수출자명 대신 스탬프로 표기된 경우 인정 여부

질의 : 인보이스에 수출자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스탬프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 해당 서류를 유효한 FTA CO로 인정 가능한가요?

답변 : 원산지신고서에 수출자의 상호를 확인할 수 있는 스탬핑이 포함되어 있고, 동 수출자의 소속 직원 등이 수기 서명한 것이라면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로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176. 인보이스에 제3국에 소재하는 자가 기재된 경우

질의 : 한-EU FTA 관련, 인보이스 상 ○○○○는 ○○○&○○로 기재되어있으나 실질 인보이스 발행자는 ○○○○○&○○○○(독일)로서 해당서류에 Consignor로 병기하여 원산지증명서 발행(발행 장소 및 서명권자의 서명 포함), 이러한 경우, 상업서류 상 SELLER로 제3국수출자가 기재된 원산지증명서는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

답변 : 한-EU FTA에 따른 원산지신고서는 계약당사국에 소재하는 수출자(물품가격이 6,000불을 초과하는 경우 인증수출자)가 발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한 내용과 같이 독일 소재 인증수출자가 작성한 송품장의 ‘SELLER’란에 EU회원국이 아닌 제3국에 소재하는 자가 기재된 경우에도 상업서류에 의해 수출자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유효한 원산지 신고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177. 인증받지 아니한 수출자 인정 여부

한-EU FTA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15조(일반요건)에서 상품의 전체가격이 6,000유로를 초과하는 하는 경우 원산지신고서는 반드시 인증수출자가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 법인의 질문과 같이 인증을 받지 않은 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178. 인증수출자가 EU내 다수의 제품에 대한 각각의 원산지를 표기할 경우 인정 여부

질의 : 유럽의 의료장비 구성품 수출업체(인증수출자)가 발행한 CO에는 다수의 제품과 각각의 원산지(벨기에, 독일, 영국)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원산지신고서에 EU 회원국 내 다른 국가의 원산지상품(독일, 영국)이 표기되어 있어도 되나요?

답변 : 한-EU FTA의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수출자(또는 생산자)란 EU역내에 소재하며 해당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결정·입증할 수 있으며, 원산지 증명에 관한 모든 기록을 보관하고 원산지검증의 대상이 되

는 자로 해당 소재 관세당국으로부터 인증수출자 지위를 부여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EU역내 수출자가 발급한 원산지신고서에 EU회원국내 다른 국가의 원산지상품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한 수출자가 상기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동 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로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179. 인증수출자가 인도증서(Delivery Note)에 원산지 신고문안 기재시 인정여부

질의 : 독일의 인증수출자가 인도증서에 원산지신고문안을 기재하는 경우 유효한 원산지신고서인가요?

답변 : 인증수출자 지위를 획득한 독일 업체가 인도증서(Delivery Note)에 원산지신고서 문안을 기재하여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80. 인증수출자 관련

질의 : EU측 수출자(Shipper)가 자사가 자국 수출당국(이탈리아)으로부터 인증받지 아니하고 타사가 그 업체의 자국 수출당국(아일랜드)으로부터 인증받은 인증수출자 번호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 한-EU FTA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17조(인증수출자)에 따라 인증수출자는 수출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인증하는 것인 바, EU 수출자가 타사의 인증수출자 번호를 사용할 수 있는지는 수출국의 세관당국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주장과 같이 수출국의 법령에 따라 원산지신고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수입물품에 대해 동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 서류 등 귀사가 제출하는 서류의 진위여부와 정확성 등에 관한 사항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원산지에 관한 조사’ 업무가 수행될 때 확인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81. 인증수출자 번호기재란에 REX번호 기입시 인정가능여부

Q : 원산지신고서 인증수출자 번호란에 REX번호 기입한 경우 인정가능한가요? (2019.01.29.)

A : 원산지신고서의 인증수출자 번호 기재란에 REX 등록수출자 번호를 기재한 경우에는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182. 인증수출자번호 유효성 관련

1. 한-EU FTA 발효 이전(‘11.7.1) EU의 수출자가 인증을 취득한 경우 한-EU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인증 추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는 한-EU FTA 제17조(인증수출자)에 의거 수출당사국의 국내법에 따라 결정될 사항입니다.
2. 또한, 인증 추가 절차가 필요한 경우 한-EU FTA 발효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 기존 인증에 한-EU FTA에 적용되는 인증을 추가로 받았다면 인증 추가전 한-EU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원산지 신고서는 유효하지 아니하므로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3. 아울러 협정관세 사후적용 심사시에는 인증번호 체계의 적정 여부 등 원산지신고서의 형식적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며, 인증번호의 유효성 여부는 FTA 특례법 제13조에 따른 ‘원산지에 관한 조사’ 업무가 수행된 이후에야 확정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183. 인증수출자번호 유효성 관련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1875, 2013.7.31

1. 귀하의 민원 관련입니다.
2. 귀하가 수취한 송장상의 원산지 신고문안은 협정문과 일치하며, 인증수출자 번호체계도 영국의 번호체계와 일치하므로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3. 다만, 협정관세 적용 심사시에는 인증번호 체계의 적정여부 등 원산지신고서의 형식적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며,
4. 인증수출자번호의 유효성 여부는 FTA 특례법 제13조에 따른 ‘원산지에 관한 조사’ 업무가 수행된 이후에야 확정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184. 인증수출자 번호의 송품장 기재 위치에 따른 유효여부

질의 : 인증수출자 번호가 원산지신고문안에 기재되어 있지 않고, 송품장의 하단 또는 다른 위치에 독립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원산지신고서가 유효한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 인증수출자번호는 원산지신고문안 내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인증수출자번호를 원산지신고문안에 기재하지 않고 별도로 기재한 경우라면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로 인정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85. 인증수출자 번호체계 관련

한-EU FTA에서 인증수출자는 수출당사자의 법과 규정에 따라 인증하는 것으로 수출당사자의 관세당국에서 인증번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귀사께서 질의하신 ‘한-EU FTA 집행에 관한 지침’에 있는 ‘EU회원국 인증수출자 번호 체계’는 관세행정 집행을 위해 참고로 활용하기 위한 자료로서 인증수출자번호의 유효성을 판정할 수 있는 근거서류는 아닙니다. 따라서 스페인 수출자의 인증번호는 수출국의 관세당국에 문의 하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귀사가 문의한 스페인의 인증수출자번호로 수입통관시 협정관세 적용은 가능하지만, 실제로 해당 ‘원산지신고서’가 유효한 지 여부는 동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증명의 검증’이 수행된 이후에야 확정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86. 인증수출자(타사가 수출국 인증수출자) 관련

질의 : EU측 수출자(Shipper)가 자사가 자국 수출당국(이탈리아)으로부터 인증받지 아니하고 타사가 그 업체의 자국 수출당국(아일랜드)으로부터 인증받은 인증수출자 번호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 한-EU FTA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17조(인증수출자)에 따라 인증수출자는 수출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인증하는 것인 바, EU 수출자가 타사의 인증수출자 번호를 사용할 수 있는지는 수출국의 세관당국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주장과 같이 수출국의 법령에 따라 원산지신고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수입물품에 대해 동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 서류 등 귀사가 제출하는 서류의 진위여부와 정확성 등에 관한 사항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원산지에 관한 조사’ 업무가 수행될 때 확인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87. 자동차부품 수입 관련

질의 : 미국 생산(Made in U.S.A.) 자동차 부품과 유럽 생산(Made in EU) 자동차부품을 미국에서 컨테이너 단위로 같이 수입하는 경우, 유럽 생산 부품의 FTA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한지와 적용관세율을 문의

답변 : 한-EU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① 동 협정의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② 협정에서 정한 직접 운송원칙에 부합 ③ EU측 수출자(탁송화물의 전체가격이 6,0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증수출자’이어야 함)가 증명한 원산지신고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EU에서 생산된 물품이 미국을 거쳐 수입되는 경우에는 직접운송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므로 자세한 사항은 귀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본부세관으로부터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188. 자유무역지역 반입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 여부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26, 2014.1.6.

1.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자유무역지역에 사용소비 신고하여 반입한 외국물품을 원상태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선하증권, 원산지증명서 등으로 반입한 외국물품과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는 수입물품이 동일한 물품인 것과 협정에 따라 직접운송된 물품인 것을 세관장이 확인하는 경우
 -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에 의한 협정관세가 적용될 수 있으며, 반입한 물품을 분할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도 협정관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협정관세 적용에 필요한 서류는 물품의 종류, 보세화물 관리현황 등에 따라 세관장이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189. 자유무역지역에서 국내로 수입하는 물품의 특혜관세 적용 관련

한-EU FTA에서 EU역내 수출자가 비당사국 수출자에게 판매한 후 비당사국 수출자가 다시 우리나라에 판매한 물품으로 EU역내에서 직접운송되어 우리나라의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물품을 우리나라의 수입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해당 수입신고물품에 대해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직접운송확인서류와 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동 건의 경우 자유무역지역 사용소비신고시 제출하였던 원산지신고서 사본과 운송서류 등 직접운송확인서류와 EU측 수출자가 작성·발급한 원산지신고서에 기재된 물품과 수입신고되는 물품과의 동일성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가 수입신고시 제출되면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유무역지역 사용소비신고 이후 1년이상 경과한 후에 수입신고 하는 경우 한-EU FTA에서 원산지신고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2개월이지만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의 수입항에 도착한 다음날부터는 유효기간에 산입하지 않으므로 해당물품이 원산지신고서 유효기간안에 우리나라의 수입항에 도착하였다면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협정발효일 이전에 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된 물품은 직접운송 증빙서류와 함께 소급하여 작성된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하면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190. 자유무역 협정관세 적용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 2012-11-21(회신일자)

질의 : ○ 한-EU 할당관세(추천방식)를 적용받은 수입건이 원산지증명의 문제*로 다른 세율이 적용된 후,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를 다시 구비하여 사후적용할 때

* 인증수출자로 인증받지 않은 수출자가 원산지를 증명

- 수입통관시 제출받은 추천서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여 한-EU 할당관세(추천방식)를 다시 적용 할 수 있는지

※ 부산세관 의견 : [갑론]

[갑론] FTA 할당추천서가 유효하며 배제된 협정세율적용(추천서 포함) 사후신청을 받아들여 환급이 가능하다.

○ A사는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구, 농수산물유통공사)의 ‘한-EU FTA 분유 수입권 공매 입찰’에서 정상 추천받아 수입 이행함.

- A사는 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였고,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는 A사의 수입이행준수사항을 확인하고 낙찰 처리함.

※ 추천시 해외 인증수출자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함.

- A사는 유효 기간 내 한-EU FTA 협정을 적용하여 정상 수입하였으므로 추천서 효력은 상실되지 아니함.

○ A사는 자율점검에서 유효하지 아니한 인증수출자임이 확인되어 한-EU FTA 협정 적용 배제하고, 현행법

- 상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를 구비하여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할 수 있음.
- ※ 최초 수입시의 추천 물량은 불변임.
 - 세관장은 세액을 심사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보정하거나 경정함으로써 관세를 환급하여야 함.

[올론] FTA 할당 추천서 효력이 상실되어 협정세율적용 사후신청을 하더라도 FTA 할당추천 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 A사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로부터 받은 추천서의 유효기간은 당해 이행년도에 한하므로 협정세율적용 배제 이후, 다음 이행년도에 협정세율 사후신청 시에 동 추천서를 적용할 수 없다.
 - A사는 동 공사로부터 한-EU FTA 관세 할당물량 추천을 받았으나, 유효기간은 당해 연도('11.7.1 ~' 12.6.30)에 한정되어 있음.
 - ※ 동 추천서의 유효기간은 당해 연도 초과 금지(농수산물식품부고시 참조)
- A사는 동 추천서 유효기간 내에 네덜란드산 탈지분유에 대하여 한-EU FTA 관세할당물량 추천서로 FTA 양허 추천 세율(FEU6, 0%)을 적용받아 통관할 때 이미 사용하였음.
 - A사는 최초 수입시 원산지신고서 발급자가 한-EU FTA 협정에서 정한 인증수출자가 아님을 인지하여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후,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면 협정세율적용 사후 신청을 할 수 있으나,
 - 협정세율 사후적용 신청 시점은 당해 연도를 경과하였으므로 새로 추천받아야 하고, 기존 추천서로 한-EU FTA 할당추천 세율(FEU6, 0%)을 적용할 수 없음. 즉, FEU1(미추천, 176%)을 적용하여야 함.
- 또한, A사가 최초 수입신고시 유효한 인증수출자가 아니었으므로 이 때 적용한 한-EU FTA 협정 할당추천세율(추천서)은 원인 무효이고, 이후에는 추천서를 사용할 수 없음.

답변 : 1. 부산세관 자유무역협정과-3638(' 12.10.16)호와 관련입니다.
2. 동 건 질의는 귀 세관의 '갑론' 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끝.

191. 작성일자가 누락된 원산지신고서의 인정 가능 여부

Q : 인증수출자에 의해 소급발급된 원산지신고서에 작성일자가 누락된 경우 해당 원산지신고서를 근거로 협정 관세 사후적용이 가능한가요? (2017.10.25.)

A : 원산지신고서는 협정에서 규정한대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송품장과 소급 발급된 원산지신고서의 작성일자가 서로 상이한 경우 원산지신고서의 작성일자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192. 적용 관련

질의 : 이탈리아 도매업체로부터 의류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독일에 있는 배송대행업체를 이용하여 물품을 받아도 한-EU FTA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또한 인보이스에 상품별로 생산지가 적혀있는 경우 이를 원산지 증명서로 사용이 가능한지?

답변 : 이탈리아의 수출자가 한국으로 수출되는 물품을 독일에 소재하는 배송대행업체에게 송부하고 배송업체가 한국으로 다시 운송하는 경우에는 한-EU FTA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13조(직접운송)요건을 충족하므로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제출한 송품장은 원산지신고서문안과 수출자의 서명이 누락되어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로 인정될 수 없으나, 제출하신 송품장에 원산지신고문안과 수출자의 서명이 있다면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나라에서 생산된 제품들이 함께 기재되어 있는 송품장도 상품별로 원산지가 구분되어 기재된 경우에는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로 인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93. 적용 관련 등

- 질의 : ① 우리나라의 수출업체가 하나의 품목을 EU내 여러 국가로 수출할 때 EU의 각 국가별 수입자가 동일 물품에 대해 각각 다른 HS품목번호를 요청하는 경우,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할 때와 수출자에게 공급하는 공급자가 원산지확인서를 작성할 때 2개이상의 HS품목번호를 사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문제가 있다면 업무지침을 요청
- ② 간접검증시 EU 수입국의 통관실적이 있는 경우, 수입국의 HS품목번호를 사용하여 원산지를 판정했을 때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우리나라의 HS품목번호를 사용해야 하는지
- ③ 원산지가 프랑스인 제품을 우리나라 업체가 수입하여 그 물품을 원상태로 EU의 다른 나라로 수출하는 경우 그 수입국에서 한-EU FTA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 ④ 질문3의 경우, 우리나라 업체가 수입하여 국내 다른 업체에게 납품하는 경우 원산지확인서의 아래항목에 대한 작성방법과 원산지확인서를 역외산으로 발급하는 것이 타당한지
- 5번(적용대상 협정), 8번(원산지기준 충족여부)

답변 : 귀하의 질문과 같이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 EU의 각 국가별 수입자가 각각 다른 HS품목번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하나의 물품에 대해 여러 개의 HS품목번호를 사용하는 것은 동 협정과 국내법령상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수출입자의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는데에 도움을 주기 위해 동 협정에서는 무역업자가 품목분류에 의문이 있는 경우 동 협정 제6.6조(사전심사)에 따라 수입국의 관세당국에 서면요청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HS품목분류에 대한 분쟁이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HS국 제분쟁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한-EU FTA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물품을 우리나라 세관당국에서 검증(간접검증)할 때는 EU 수입국의 통관실적이 있는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세관당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HS품목번호를 기준으로 원산지제품임을 판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원산지가 프랑스인 제품을 우리나라 업체가 수입하여 그 물품을 원상태로 EU의 다른 나라로 수출하는 경우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대상은 아닙니다. 상기 4호의 물품을 우리나라 업체가 수입하여 국내 다른업체에게 납품하는 경우 원산지확인서 5번란(적용대상협정)은 ‘한-EU’로, 8번란(원산지기준 충족여부)은 충족하는 경우에는 ‘충족’란에 미충족인 경우에는 ‘미충족’란에 “?” 표시하면 되며, 원산지확인서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 생산자 등이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재료 또는 최종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한 서류’로서 역외산으로 발급하는 것에 대하여는 법령에서 별도로 금지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역외산으로 발급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194. 적용 관련 질의(한-EU, 한-미 FTA 협정관세)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 2012-10-05(회신일자)

질의 : 미국과 EU에서 수입하는 승마용 말에 대하여 한-미/한-EU FTA 특혜적용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말여권으로 원산지증명이 가능한지?

답변 : 협정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FTA 특례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세관장에게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해야 합니다.

협정관세 적용시, 한-EU FTA의 경우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15조(일반요건) 및 제16조(원산지신고서 작성조건), 한-미 FTA의 경우에는 협정 제6.15조(특혜관세대우 신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작성된 원산지증빙서류만이 유효합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말여권은 적정한 원산지증빙서류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195. 적용 방법 및 사후적용 가능여부

Q : EU국가로부터 물품수입시 협정적용을 받기 위한 방법 및 작년 수입물품에 대해 소급적용 가능 여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2018.11.02.)

A : EU국가로부터 우리나라로 수입하는 상품이 한-EU FTA 적용을 위해서는 ① 한-EU FTA의 협정관세적용 대상 품목이고, ② 동 협정에서 규정하는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③ 6천유로 초과 원산지상품인 경우에는 해당 원산지상품이 상세하게 기술된 송품장·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 상에 EU역내소재 인증수출자

가 동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신고문안을 기재한 원산지신고서 구비 ④ 직접운송원칙을 충족하는 경우 협정 관세를 적용 할 수 있습니다또한, 수입신고시에 협정관세 적용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물품의 수입 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적용신청서, 원산지증빙서류, 경정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추어 협 정관세 사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96. 적용시점 질문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 2011-08-10(회신일자)

질의 : 한-EU FTA 적용시점 질문

답변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2999호 제2조(일반적 적용례)에 따라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자유무역협정은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동 협정 시행 전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하여는 동 협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197. 적용신청기간

질의 : 한-EU FTA 협정*은 ‘수리후 협정관세적용 신청기간’ 이 ‘수입 후 2년’ 또는 ‘수입당사자의 법령에 명시된 기간’ 으로 규정(선택적으로 규정)

- *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제16조(원산지 신고서 작성 조건)
- FTA특례법*에는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으로 규정
- * FTA특례법 제10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
- 협정에 따르면 ‘수입 후 2년’ 이 가능한데도 국내법에서 ‘1년’ 으로 규정한 것은 수입자에게만 과다한 의무를 부과한 것
- 협정에 따라 ‘수입 후 2년’ 이내에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에서 ‘수리 후 협정관세적용 신청기간’ 을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으로 규정한 것은

-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자유무역협정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16조에 따라 수입당사국에서 법령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한 것인 바,
- ‘수리 후 협정관세적용 신청’ 은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98. 적용신청기간 질의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 2012-12-07(회신일자)

질의 :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자유무역협정 협정관세 적용신청기간

답변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에서 ‘수리 후 협정관세적용 신청기간’ 을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으로 규정한 것은

-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자유무역협정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16조에 따라 수입당사국에서 법령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한 것인 바,
- ‘수리 후 협정관세적용 신청’ 은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99. 적용 여부

질의 : □ 아래 구매 유형별 국내 수입통관시 한-EU FTA협정관세 적용여부

영국 무역회사가 원유를 한국석유공사에게 수출판매하고 한국석유공사가 그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B/L양수도 한 경우, EU 생산원유를 2이상의 업체가 공동선적한 경우

EU에서 선적한 원유의 국내 운송중 수에즈운하(이집트)를 경유하면서 운하를 통과하기 위해 일부 물량을

해당 선박에서 하역한 후 재선적*하여 운하를 통과하게 됨

* 200만B Cargo의 경우 Suez운하의 일부 수심이 낮은 구간 통과를 위해 약 50만B을 하역한 후 통과 완료 후 재선적함

- EU에서 발행된 B/L과는 별도로 재선적하는 항만(Terminal)에서 발행한 B/L이 있는 경우 FTA 협정세율 적용여부

* 이집트 Sidi Kerir Terminal(지중해) ⇒ 이집트 Ain Sukhna Terminal(홍해)

* 재선적시 Ain Sukhna에서 B/L 발행

답변 :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제품이 우리나라의 보세구역에 반입된 후, 물품을 수입신고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 납세의무자가 되며

동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증명서 요건 등 제반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수출국에서 여러 업체가 공동선적한 경우에는 각각의 원산지증명서와 선하증권으로 원산지를 확인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럽연합당사자의 수출자가 우리나라의 수하인에게 일시에 송부한 물품은 협정 비당사국을 경유할 수 있으며, 비 당사국에서 물품의 하역, 재선적 작업 등이 허용됩니다.

귀사가 제시한 B/L은 수에즈운하의 재선적 항만에서 발행한 것으로 운하 통과를 증빙하는 자료로 볼 수 있는 바, 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 송품장 및 EU부터 우리나라까지의 B/L 등 관련 서류와 제시한 B/L을 통해 원산지증명된 물품과 동일물품이 수입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00. 적용 여부 관련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1131, 2014.5.16

1. 귀사의 민원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한-EU FTA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에 관한 의정서’ 제15조(일반요건), 제16조(원산지신고서 작성 조건) 및 제17조(인증수출자)에 따라 원산지신고서는 수출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수출자가 작성하는 것입니다.

3. 따라서 수출자(체코)가 체코의 인증수출자 관련 규정에 의하여 독일에 소재한 본사의 인증수출자번호를 사용하여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한 경우라면 한-EU FTA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 협정 제27조(원산지 증명의 검증)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인증수출자번호의 진위여부와 정확성 등은 원산지 조사결과에 따라 판단되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201. 전자상거래 물품(Ebay 사이트 구매)의 협정관세 적용 여부

질의 : Ebay 사이트에서 네덜란드 판매자로부터 프랑스제 오토바이 헬멧 1개를(약\$345)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한 경우 협정 적용 가능한가요?

답변 : EU국가로부터 사인간 소포로 송부된 1,000달러 이하의 물품 수입시에는 원산지신고서 제출없이 간이한 방법으로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 물품의 경우는 사인간 송부된 물품에 해당하지 않아 협정관세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EU소재 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신고서를 구비하여야합니다.

202. 제1504.10호의 원산지결정기준 해석방법

Q : 제1504.10호 원산지결정기준은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입니다.

이 경우, 제1504.10호의 제품 생산에 완제품과 동일한 세번의 원재료를 사용한 경우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018.07.12.)

A : 품목별 원산지기준 중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의 의미는 제품과 동일한 상품명 및 동일한 호의 재료를 모두 사용 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만, 품목별 원산지기준을 충족한다 하더라도 동 협정 제6조(불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에 규정된 공정이상이 수행되어야 원산지제품의 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203. 제3국 BWT거래시 협정적용 가능여부

Q : 독일산물품을 비당사국 물류창고에 보관 후 그 중 일부를 우리나라에 수입시 독일 수출자가 국내 수입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한 경우 협정관세 적용 가능한가요? (2018.12.20.)

A : 한-EU FTA에서는 직접운송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단일탁송화물이 비당사국을 경유하는 경우에는 그 제품이 자유로운 유통을 위한 반출이 없어야 하며, 협정에서 정한 공정(하역, 재선적, 보존공정)이외의 공정이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비당사국에서 BWT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동 협정에서 정한 직접운송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204. 제3국 경유 인정여부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제13조(직접운송)에서 단일탁송화물을 구성하는 제품에 대해 다른 영역에서 환적 또는 일시적으로 창고보관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그 제품이 통과 또는 창고보관하는 국가에서 자유로운 유통을 위해 반출되지 아니해야 하고, 하역, 재선적 또는 제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한 공정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제3국에 소재한 창고에 보관하기 위하여 경유하는 것이므로 동 협정을 적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5. 제3국 발행 송장 거래시 EU역내 생산자의 원산지신고서 발급 가능여부

Q : 제3국 발행 송장거래에서 인증수출자인 독일소재 생산자가 원산지신고서를 발급한 경우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로 인정가능한가요? (2019.05.03.)

A : 유럽연합 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제품이 대한민국으로 수입될 때, “원산지신고서”에 근거하여 이 협정의 특혜관세대우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원산지 신고는 해당 제품이 확인될 수 있도록 충분히 상세하게 그 제품을 기술하는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 상에 수출자에 의해 행하여집니다. 인증수출자인 독일생산자가 우리나라 수입자에게 발행한 송품장에 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였다면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로 인정 가능합니다.

206. 제3국 발행 송장 거래시 생산자 발행 원산지신고서의 유효성

Q : 제3국 발행 송장거래시 인증수출자인 EU역내 생산자가 발행한 Packing List에 생산자가 직접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한 경우 원산지신고서로 인정가능한가요? (2019.05.31.)

A :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수출자(또는 생산자)란 EU역내에 소재하며 해당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결정·입증할 수 있으며, 원산지 증명에 관한 모든 기록을 보관하고 원산지검증의 대상이 되는 자로 해당 소재 관세당국으로부터 인증수출자 지위를 부여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수출자가 비당사국에 소재하더라도 EU역내 소재 인증수출자인 생산자가 자신이 발행한 상업서류인 포장명세서에 한-EU FTA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산지신고문안을 기재한 경우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로 인정 가능합니다.

207. 제3국 발행 송장거래시 생산자 발행 원산지신고서 유효성

Q : 제3국 발행 송장거래시 프랑스생산자가 발행한 Packing List 또는 Delivery Note에 원산지신고문안 기재시 인정가능한가요? (2019.02.11.)

A :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수출자(또는 생산자)란 EU역내에 소재하며 해당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결정·입증할 수 있으며, 원산지 증명에 관한 모든 기록을 보관하고 원산지검증의 대상이 되는 자로 해당 소재 관세당국으로부터 인증수출자 지위를 부여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수출자가 비당사국에 소재하더라도 프랑스 소재 인증수출자인 생산자가 자신이 발행한 상업서류인 인도증서 또는 포장명세서에 한-EU FTA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산지신고문안을 기재한 경우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로 인정 가능합니다.

208. 제3국 발행 송장 거래시 생산자 작성 원산지신고서 인정여부

Q : 제3국 발행 송장 거래에서 EU역내 생산자가 인증수출자인 경우 원산지신고서 작성가능한가요? (2018.10.18.)

A :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수출자(또는 생산자)란 EU역내에 소재하며 해당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결정·입증할 수 있으며, 원산지 증명에 관한 모든 기록을 보관하고 원산지검증의 대상이 되는 자로 해당 소재 관세당국으로부터 인증수출자 지위를 부여 받은 자를 의미 합니다.EU역내 생산자가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 인증수출자라면 생산자가 발행한 상업서류에 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산지신고문안을 기재하여 작성한 원산지신고서는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로 인정가능합니다.

209. 제3국 발행 송장 거래시 협정관세적용 가능여부

Q : 제3국발행 송장거래의 경우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2018.08.17.)

A : 한-EU FTA에서는 EU국가로부터 우리나라로 상품수입시 해당 상품이 동 협정에 따른 원산지기준을 충족하고 직접운송 등 협정에서 정한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제3국 발행 송장 거래인 경우에도 EU역내에 소재하며 해당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결정·입증할 수 있으며, 원산지 증명에 관한 모든 기록을 보관하고 원산지검증의 대상이 되는 자로 해당 소재 관세당국으로부터 인증수출자 지위를 부여 받은 수출자가 송품장, 인도증서 그 밖의 상업서류에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신고문안을 작성 방법에 따라 정확히 기재한 경우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210. 제3국 발행 송장시 협정관세 적용 가능 여부

Q : 네덜란드에서 생산된 물품을 미국 달러를 통하여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경우 협정관세를 적용 받을 수 있나요? (2017.06.29.)

A : 우선 수입물품에 대하여 한-EU FTA의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협정관세의 적용대상일 것 ②원산지가 해당 계약상대국일 것 ③협정관세적용을 신청할 것 그리고 ④양 당사국간 직접운송 될 것 입니다. 따라서 해당 제품이 양허대상 품목이고 네덜란드를 원산지로 하는 제품인 경우 EU역내 수출자가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 상에 발행한 원산지신고서가 구비되어야 하며, 동 제품이 EU역내 수출국으로 부터 우리나라로 직접운송 될 경우 협정관세가 적용됩니다.

211. 제3국 발행 송장에 원산지신고문안 작성한 경우 인정 가능 여부

Q : 제3국 발행 송장거래에서 스위스 업체가 발행한 제3국 송품장에 독일 수출자가 원산지신고문안을 작성한 경우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2017.06.19.)

A : 스위스 업체가 발행한 제3국 송품장상에 독일 수출자가 원산지신고 문안을 작성한 경우, 한-EU FTA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신고서로 작성요건을 충족한다면 형식적으로 유효한 원산지신고서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 및 협정에 규정한 요건 충족 여부 등 ‘원산지에 관한 조사’ 결과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12. 제3국 소재자 원산지신고서 관련

질의 : 한-EU FTA 관련, 다음과 같은 거래형태의 경우에 있어서 ‘B(인증수출자)’의 물건에 대하여 한-EU FTA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 A·B : 제조자(이탈리아), C: ○○○(이탈리아, 한국으로 배송·B/L발행)
- D: 수입자의 해외파트너로 대금지급처(스위스, 인보이스발행)

답변 : 한-EU FTA에 따른 원산지신고서는 계약당사국에 소재하는 수출자(물품가격이 6,000불을 초과하는 경우 인증수출자)가 발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EU회원국이 아닌 제3국에 소재하는 자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는 유효한 신고서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213. 제3국 소재자와 거래계약 체결

질의 : 다음과 같은 거래방법과 원산지신고서 작성방법으로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 가능 여부?

① 제조자(포르투갈)가 독일 소재 회사에 수출 → ② 독일 소재 회사는 홍콩 소재 회사에 수출 → ③ 홍콩 소재 회사가 한국 수입자에게 수출

☐ 운송형태

독일 소재 수출자가 한국 수입자에게 직접 운송하고 한국의 수입자를 수취인으로 하는 B/L이 발행됨

☐ 원산지신고서 작성

독일 소재 수출자(인증수출자)가 포장명세서 또는 Delivery Note로 발급 예정

답변 : 「한-EU FTA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에 관한 의정서」 제15조(일반요건) 및 제17조(인증수출자)에 따르면 6,000유로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신고서는 반드시 인증수출자가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 내용과 같이 계약당사국이 아닌 홍콩에 소재하는 자와 우리나라 수입자가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계약당사국인 독일에 소재하는 인증수출자가 직접 우리나라 수입자에게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 수출물품을 운송하고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214. 제3국 소재 창고에 보관하기 위해 경유하는 경우 협정 적용여부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제13조(직접운송)에서 단일탁송화물을 구성하는 제품에 대해 다른 영역에서 환적 또는 일시적으로 창고보관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그 제품이 통과 또는 창고보관하는 국가에서 자유로운 유통을 위해 반출되지 아니해야 하고, 하역, 재선적 또는 제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한 공정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제3국에 소재한 창고에 보관하기 위하여 경유하는 것이므로 동 협정을 적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15. 제3국 송장 거래시 생산자 원산지신고서 인정 가능 여부

Q : 제3국 발행 송장거래시 이탈리아 생산자가 Packing List에 Invoice customer를 스위스 수출자로 기재하고 우리나라 수입자를 수하인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로 인정 가능한가요? (2019.06.25.)

A :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수출자(또는 생산자)란 EU역내에 소재하며 해당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결정·입증할 수 있으며, 원산지 증명에 관한 모든 기록을 보관하고 원산지검증의 대상이 되는 자로 해당 소재 관세당국으로부터 인증수출자 지위를 부여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탈리아 소재 인증수출자인 생산자가 우리나라 수입자를 수하인(Consignee)으로 발행한 포장명세서에 한-EU FTA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산지 신고문안을 기재한 경우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로 인정 가능합니다.

216. 제3국 송장거래시 원산지신고서 유효성

Q : 제3국 발행 송장거래시 제3국(미국)에서 발행한 Invoice에 스페인에 소재한 생산자가 원산지신고문안을 기재한 경우 한-EU FTA 적용이 가능한가요? (2019.05.15.)

A : 한-EU FTA에서는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수출자(또는 생산자)란 수출당사국에 소재하며 해당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결정·입증할 수 있으며, 원산지 증명에 관한 모든 기록을 보관하고 원산지검증의 대상이 되는 자로 관세당국으로부터 인증수출자 지위를 부여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미국 수출자가 발행한 상업서류에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 스페인 생산자가 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산지신고문안, 작성장소와 작성날짜를 기재하고 서명하는 경우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로 인정가능합니다.

217. 제3국에서 송장이 다시 발행되는 경우 협정관세 적용 여부

한-EU FTA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에 관한 의정서’ 제15조(일반요건) 및 제16조(원산지신고서 작성 조건)에 따라 원산지신고서는 수출자가 송품장 등 상업서류에 작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협정당사국이 아닌 제3국에서 송장이 다시 발행되는 무역거래에서도 EU측 수출자가 발행한 포장명세서에 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동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송품장과 해당 원산지신고서에는 충분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어 두 서류에 기재된 물품의 동일성이 명확하게 확인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218. 제3국에서 송품장이 다시 발행되는 무역형태의 경우, EU 역내 수출자가 발행하는 서류인 Customs Origin Declaration에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인정여부

- EU측 수출자가 발행한 상업서류인 Customs Origin Declaration에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한 경우 협정관세 적용 가능 <2012.3.29.>

[이유]

- 협정당사국이 아닌 제3국에서 송장이 다시 발행되는 무역거래에서도 EU측 수출자가 발행한 상업서류인 Customs Origin Declaration에 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동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 가능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sation No ...(1))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2) preferential origin.
.....(장소 및 일자).....(3)
.....(4)
(1) 원산지 신고서가 인증수출자에 의해 작성되는 경우 인증수출자의 인증번호가 이 란 에 기재되어야 한다. 원산지 신고서가 인증수출자에 의해 작성되지 아니하는 경우 괄호 안의 단어는 생략되거나 빈칸으로 남겨둔다.
(2) 제품의 원산지가 표시되어야 한다. 원산지 신고서가 세우타 및 멜리야를 원산지로 하는 제품과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관련되는 경우 수출자는 신고서가 “CM” 이라는 기호로 작성된 문서에 이를 분명히 표시한다.
(3) 그 정보가 문서 자체에 포함되는 경우 이 표시는 생략될 수 있다.
(4) 수출자의 서명이 요구되지 아니하는 경우, 서명의 면제는 서명자의 이름이 면제된다는 것을 또한 의미한다

219. 제3국에 소재한 업체가 송품장을 작성하는 경우 인정범위는?

- 한-EU FTA에서는 수출자가 상업송장 등 무역서류 여백에 협정에서 정한원산지 신고문안을 기재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음
여기에서 ‘수출자’ 라 함은 FTA 체결 상대국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자이어야하고 제3국의 수출자는 원산지 신고서 작성권한 및 입증책임이 없으므로 제3국에서 작성한 송품장에 원산지신고문안이 기재되어도 원산지 증명서류로 인정되지 않음

다만, 원산지신고서 작성추체인 계약상대국(EU)에 소재하는 수출자가 상업송장(INVOICE)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예 : 포장명세서, B/L, 인도증서)에 원산지 신고문안을 기재하고, 이 서류에 수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가 기재되면 원산지 증명서류로 인정

220. 제3국에 있는 제3자 물류창고에 보관하였다가 제3자가 수출판매하는 경우 제3국 경유 인정 여부

한-EU FTA에서는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에게 일시에 송부되었거나 단일운송서류 또는 단일 송품장에 의한 단일탁송화물에 대해 제한적으로 제3국 경유를 인정하고 있으며,

- 전체가격이 6,0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증수출자만이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바,
- 질의 내용과 같이 제3국에 있는 제3자 물류창고에 보관하였다가 제3자가 수출판매하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21. 제5903호 원산지 결정기준

한-EU FTA에서 HS5903호(원산지결정기준 : ‘사로부터의 생산’)제품 생산에 비원산지 재료인 50류 ~ 63류 이외의 재료가 사용되는 경우, 동 협정 소개 주석3.5에서 ‘.....그 조건은 고유의 특성 때문에 그 규정을 충족할 수 없는 다른 재료의 사용을 명백히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직물에 관한 아래 주석 6.2참조)’ 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기 물품에 대해 ‘주석6.2’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222. 제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원산지신고서

질의 : 한-EU FTA 적용시, 제조자(스페인)와 수출자(독일, 인증번호소유)가 다른 경우 원산지 증명은 누가 해야 하는지?

답변 : 한-EU FTA「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16조(원산지신고서 작성조건)에 따라 질의하신 물품에 대한 원산지신고서는 독일의 수출자가 작성해야 하며 전체가격이 6,0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증수출자만 발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23. 제조자와 수출자가 상이한 경우, 제조자 작성 원산지신고서의 유효성

Q : 제조자와 생산자 모두 EU역내에 소재하고 있으나, 제조자만 인증수출자인 경우, 제조자가 우리나라 수입자에게 발행한 Packing list에 원산지신고문안을 작성하는 경우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로 인정이 가능한가요? 또한, 제조자가 EU역내 수출자에게 발행한 Packing list에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한 경우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로 인정가능한가요? (2018.05.25.)

A : 한-EU FTA협정상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는 자가 소재한 관세당국으로부터 인증수출자 지위를 부여받고 해당 상품의 원산지 증명에 관한 모든 기록을 보관하며, 원산지검증에 대해 원산지증빙자료 등의 제출의무를 이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요건을 갖춘 해당물품의 생산자 또는 수출자가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EU역내 생산자가 원산지신고문안을 작성한 Packing List가 우리나라 수입자를 대상으로 발행되었다면 유효한 원산지 신고서로 인정 가능하나, EU역내 생산자가 원산지신고 문안을 작성한 Packing List가 EU역내 수출자를 대상으로 발급 되었다면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로 인정 할 수 없습니다.

224. 중간재 적용가능 여부

Q : 한-EU FTA 의정서 제5조1항 가목은 완제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에 상관없이 모든 원산지결정기준(부가가치 기준, 세번변경기준, 가공공정기준)에 대해 적용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2018.07.24.)

<한-EU FTA 제5조제1항 가목>

비원산지 재료가 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을 거쳐 원산지 제품이 되어, 그 제품이 그 이후 다른 제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경우, 그 제품에 포함된 비원산지 재료는 고려되지 않

A : 한-EU FTA협정 제5조1항 가목의 규정은 완제품의 원산지기준(예:부가가치기준, 세번변경기준, 가공공정기준 등)과 상관없이 적용 가능합니다.

225. 중고수입 설비 등 관련

질의 : ① 중고수입설비에 대해서도 한-EU FTA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② 분할수입 신고시 협정세율 적용 신청을 하지 않고 수입신고 수리전 반출 승인을 받고 반출한 물품도 완성품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협정에서 정하는 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하여 협정세율 적용신청을 할 수 있는지?

③ 과세 통관한 물품도 소급하여 협정세율을 적용하여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와 환급 신청시 구비서류는?

④ 인증 수출자의 세번과 한국 세관의 세번이 상이한 경우 변경된 세번이 협정에서 정하는 원산지 요건을 충족할 경우 협정세율 적용 여부

답변 : 한-EU FTA는 중고품에 대하여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중고품도 원산지결정기준 및 직접운송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협정관세의 적용이 가능하며

분할수입의 경우, 한-EU FTA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20조는 “HS 통칙 2(a)의 의미에서 HS 제16부 및 제17부 또는 제7308호 및 9406호에 해당하는 분해되거나 미조립된 제품이 분할 수입되는 경우, 그 제품에 대한 단일 원산지 증명이 첫 번째 분할 수입시 관세당국에 제출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이 아닌 제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이 제출되는 경우 사후적용 신청이 가능합니다.

※ 또한 한-EU FTA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7조는 물품의 집단 또는 집합으로 구성된 제품이 HS 상에서 단일의 호로 분류되어 있을 때, 그 전체가 원산지의 자격단위를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산지신고서는 부품이 아닌 제품단위로 작성되어야 함

수입신고 수리 후에 협정관세의 적용 신청은 FTA 특례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규정된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특혜관세는 수입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부여되는 것이므로 한국 관세청의 품목분류 기준으로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26. 직접운송 관련

질의 : ○ 한-EU FTA 관련, 수출 당시 수입국 및 구매자가 정해진 상품이 독일 출발지(Hamburg) → 싱가포르 보세창고로 이동 → 한국 부산항 도착

- ① 한-EU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한지?
- ② 싱가포르 보세창고에서 한 달 이상 보관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 ③ 단순경유(환적)의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는?

답변 : 한-EU FTA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13조(직접운송)는 단일탁송화물*인 경우에만 비상사국에서의 하역, 재선적 또는 양호한 상태로 물품을 보존하기 위한 공정을 허용하고 있으며 경유국에서 세관당국의 통제하에 머물러 있었음을 입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단일탁송화물의 정의 :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에게 일시에 송부된 제품이거나,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으로의 선적에 대한 단일의 운송서류에 의하여, 또는 그러한 서류가 없는 경우 단일의 송품장에 의하여 다루어지는 제품

입증서류는 계약상대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하기까지의 선하증권 등 운송서류 및 경유국의 보세구역에서 환적 또는 일시 장치되었음을 해당 국가의 세관 등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증명서(예: 경유지 보세구역 입출고내역서, 보세구역 장치 확인서, 비조작증명서 등)를 말하며, 경유국에서의 보관기관은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227. 직접운송 관련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243, 2014.2.4

1.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라 탁송화물을 구성하는 제품은 제3국을 경유하여 수입되는 물품도 협정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으며
3. 선하증권이나 화물운송장상의 적출항이 계약상대국의 항구나 공항으로 기재되어 있고 도착항이 우리나라의 항구나 공항으로 기재되어 있는 때에는
 - 계약상대국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하기까지의 선하증권 등 운송서류로 세관장이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해당 선하증권이나 화물운송장 이외의 다른 운송서류로 경유국의 정보를 세관장이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도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4. 상기와 같이 제출된 운송서류의 진위여부, 경유된 사실이 확인되는지 여부 및 제출서류와 수입물품과의 동일성 여부에 관한 사항은 세관장이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228. 직접운송 관련

귀사가 질의한 한-EU FTA 직접운송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며, 한-EU FTA는 아직 미 발효된 협정으로 최종 서명 및 국내절차 마련할 때에 그 내용이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싱가포르 지사의 원산지증명서 서명권 존재여부

- 한-EU FTA협정문(이하 ‘협정문’) 제1.2조 ‘양 당사자의 정의’ 규정과 동 협정문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이하 ‘의정서’) 제15조 원산지 신고규정에 의거 싱가포르에 소재한 지사는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신고서 서명권자가 인정될 수 없음

나. 직접운송 원칙 요건의 충족 및 증빙 여부

- 이와 같은 거래의 경우 의정서 제1조 카호 탁송화물의 정의와 동 의정서 제14조 직접운송 규정에 의거, 직접운송 요건을 충족될 수 없음. 다만, 탁송화물 정의에 부합되고 직접운송 요건이 충족된 경우라면 싱가포르 세관에서 발행한 비조작증명서(CNM)는 세관의 통제 하에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인정될 수 있음

다. 직접운송 원칙 충족에 대한 사전심사 가능 여부

- 한-EU FTA는 미 발효된 협정으로 FTA특례법 제14조의 원산지 사전심사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229. 직접운송 원칙

한-EU FTA에 따르면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양 당사자간 직접운송되는 제품에 적용되지만, 운송상의 이유로 직접운송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제품이 통과 또는 창고보관하는 국가에서 자유로운 유통을 위해 반출되지 않고, 하역, 재선적 또는 제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한 공정만을 수행하였다면 동 FTA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직접운송이 불가능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경유국 행정당국에서 발급한 단순경유 사실 확인서류를 수입신고시 제출하여야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230. 직접운송 인정여부

1. 귀사의 질의문서(아미11-06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한-EU FTA에서는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에게 일시에 송부되었거나 단일운송서류 또는 단일 송품장에 의한 단일탁송화물에 대해 제한적으로 제3국 경유를 인정하고 있으며,

- 전체가격이 6,0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증수출자만이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바,
- 질의 내용과 같이 제3국에 있는 제3자 물류창고에 보관하였다가 제3자가 수출판매하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31. 직접운송 입증서류 관련

질의 : 한-EU FTA에서 비당사국을 환적하는 경우 운송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부담하고 있는 선박업체가 발행한 증명서를 “수출 당사자에서 경유국을 통한 통과를 다루고 있는 단일 운송서류”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 ○ 한-EU FTA에서는 단일탁송화물이 상황이 발생하면 다른 영역에서 환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아래의 서류를 협정관세 적용신청시 세관에 제출하여야 함

- 직접운송이 불가능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제3국에서 원산지 제품의 환적과 관련된 상황 증거서류
- 수출 당사자에서 경유국을 통한 통과를 다루고 있는 단일 운송서류

- 이 경우 수출국으로부터 수입국까지 운송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부담하고 있는 선사가 발행한 증명서도 ‘단일 운송서류’로 인정 가능. 다만, 해당 수입물품과 제시된 증명서상에 기술되어 있는 물품과의 동일성확인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232. 직접운송 증명방법

한-EU FTA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13조(직접운송) 제1항에서 ‘단일탁송화물을 구성하는 제품은 상황이 발생하면 다른 영역에서 환적 또는 일시적으로 창고보관되어 그 다른 영역을 통해 운송할 수 있으며, 동조 제2항에서는 그 증거서류를 수입국의 관세당국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질문과 같이 EU측 수출자가 수출당시에, 우리나라의 수하인을 명시하여 발행한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상에 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고, 경유국의 세관당국이 해당물품에 대하여 제2항에서 정한 사항을 증명한 증명서가 세관에 제출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33. 직접운송 증빙서류

Q : 프랑스산 물품이 비당사국(중국)을 경유하여 우리나라로 운송되는 경우 직접운송 요건을 충족함을 증명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2018.06.27.)

A : 한-EU FTA에서 정한 직접운송요건 충족여부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제3국에서 원산지 제품의 환적 또는 보관과 관련된 상황의 증거 ② 수출당사자에서 경유국을 통한 통과를 다루고 있는 단일 운송서류 ③ 경유국 관세당국이 다음의 내용을 기재하여 발행한 증명서 a) 제품의 정확한 설명을 제공하는 것 b) 제품의 하역 및 재선적 일자, 그리고 적용가능 한 경우, 선박명 또는 사용된 다른 운송수단을 기재하는 것, 그리고 c) 제품이 경유국에 머물러 있는 그 상태를 증명하는 것

234. 직접운송 충족입증서류

Q : 비당사국에서 환적하는 특송화물의 한-EU FTA 직접운송 충족 입증서류는 무엇인가요? (2018.12.26.)

A : 특송물품의 경우에도 비당사국을 경유하는 단일탁송화물의 경우 비당사국에서 자유로운 유통을 위해 반출되지 않으며, 협정에서 정한 공정(하역, 재선적, 보존 공정) 이외의 공정이 없어야 하며, 이 경우에는 직접운송충족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다음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제3국에서 원산지 제품의 환적 또는 보관과 관련된 상황의 증거

나. 수출 당사자에서 경유국을 통한 통과를 다루고 있는 단일 운송서류, 또는다. 경유국의 관세당국이 발행한 다음의 증명서

1)제품의 정확한 설명을 제공하는 것 2)제품의 하역 및 재선적 일자, 그리고 적용 가능한 경우, 선박명 또는 사용된 다른 운송수단을 기재하는 것, 그리고 3)제품이 경유국에 머물러 있는 그 상태를 증명하는 것

235. 총금액이 150달러 미만인 물품의 협정관세 적용 여부

질의 : 택배로 받은 와인 6병(총 금액이 미화 150달러 미만)에 대해 FTA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원산지 증명은 와인 라벨에 표기된 내용으로 같음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 한-EU FTA 협정에서는 ①사인 간 소포로 송부되고, ②상업적으로 수입되지 아니하며, ③의정서의 요건(직접운송 등)을 충족하고, ④미화 1,0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제품에 대해서는 원산지증명서 제출 없이 EU 지역 구매 영수증 또는 현품의 원산지표시 등을 확인하여 FTA 협정세율을 적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귀하가 수령하는 상기의 협정대상 물품은 EU 역내 지역에서 대한민국으로 직접 운송되어야 하며 상업적으로 수입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제출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236. 탁송화물 가격산정 관련

한-EU FTA에서 ‘탁송화물의 전체가격’은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에게 일시에 송부된 물품의 송품장에 표시된 가격입니다. 다만, 송품장에 EXW, FOB, CIF 등 무역거래상 사용되는 인도조건에 따른 가격이 구분되어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EXW조건에 따른 가격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237. 탁송화물의 가격산정 관련

한-EU FTA에서 탁송화물은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에게 일시에 송부된 제품이거나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에게 선적에 대한 단일 운송서류(또는 단일 송품장)에 의해 다루어지는 제품을 말합니다. 따라서 수출자가 각각 다른 경우에는 각 수출자별로 탁송화물의 전체가격을 산정하는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238. 통과선하증권의 해석

Q : 한-EU FTA에 따른 직접운송 증빙자료 중 “수출당사자 경유국을 통한 통과를 다루고 있는 단일 운송서류”는 B/L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2019.02.21.)

A : 한-EU FTA의 직접운송요건 충족여부 확인하기 위한 증빙자료 중 ‘수출당사자에서 경유국을 통한 통과를 다루고 있는 단일 운송서류’는 최초의 운송업자가 전구간에 대해 책임지기로 하고 발행한 통과선하증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39. 특혜관세 적용 여부 관련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396, 2014.2.19

1.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질의하신 사례 모두 EU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신고서가 한-EU FTA 협정에 규정된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특혜관세 적용은 가능하나
3. 영국의 수출자가 포르투갈 업체의 인증번호를 사용할 수 있는 지 여부는 수출당사국의 관세당국이 판단할 사항이며
4.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원산지에 관한 조사결과에 따라 협정관세가 배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40. 폴란드 인증수출자로부터 원산지증명서 소급발급 여부

질의 : 바베큐그릴을 수입하고 있는데, 폴란드 수출업체(인증수출자)로부터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수입건에 대해 CO발급을 요청한 경우, CO 소급 발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 원산지신고서는 수출자에 의해 관련된 제품이 수출될 때, 또는 원산지 신고서가 관련된 수입 후 2년 또는 수입 당사자의 법령에 명시된 기간 내에 수입 당사자에서 제시된다는 조건으로 수출 후 작성될 수 있습니다.

241. 품목별인증수출자 인증서 양식 관련

질의 : ◦ 품목별인증수출자 인증서의 기존 양식에서 「품명」*란을 삭제한 인증서 개정 요청

* 슬로바키아 세관에서 품목별인증수출자 인증서와 송품장에 기재된 품명이 상이하다는 이유로 협정적용 거부

답변 :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제도로써 HS 6단위 기준으로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에 인증을 부여하는 등 제도의 목적상 「품명」란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아국 제도에 대해 상대국에서 오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EU측 관세당국과 긴밀히 협력하는 등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242. 프랑스의 물류창고가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아 독일 수출자가 발행한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문안을 작성하는 것이 가능한지

한-EU FTA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15조(일반요건)에 따라 원산지신고서는 수출자가 작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법인의 질문과 같이 물품의 수출자가 아닌 다른 업체(물품보관창고)가 인증수출자로 인증을 받았더라도 동 협정에 따른 원산지신고서는 반드시 물품의 수출자가 작성하는 것으로 전체가격이 6,000유로를 초과하는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출자가 인증수출자로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243. 프랑스의 업체가 인증수출자인지 여부

질의 : ○ 프랑스의 수출자가 인증수출자라면, 원산지신고서를 다음의 어느 서류에 작성해야 하는지?

- 아일랜드 업체에서 작성한 서류에 프랑스 업체의 인증수출자번호가 기입된 원산지신고문안을 작성
- 프랑스 업체에서 작성한 서류에 프랑스 업체의 인증수출자번호가 기입된 원산지신고문안을 작성

답변 : 한-EU FTA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17조(인증수출자)에 따라 “인증수출자”는 수출 당사자의 법과 규정에 따르는 것이므로, 프랑스의 수출자가 인증수출자인지 여부는 수출국의 세관당국에 문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한-EU FTA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15조(일반요건)와 제16조(원산지 신고서 작성 조건)에 따라 수출물품의 전체가격이 6,0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에 원산지신고서는 인증수출자가 작성하여야 하며,

이 때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는 인증수출자가 발행한 서류가 아닌, 그 물품의 수출과 관련되어 수출당사자 역내의 다른 업체에서 발행한 상업서류상에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여도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업체에서 발행한 상업서류에 ‘인증수출자’가 원산지신고문안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작성장소와 작성일자가 해당 원산지신고서에 기재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244. 하자있는 인보이스로 협정적용 후 사후에 보완된 인보이스로 재신청 가능 여부

질의 : 내용상 하자 있는 인보이스로 FTA 협정 적용 신청하였는데 차후에 보완된 인보이스를 받아 FTA 재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서는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은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지 못한 수입자에 한하여 협정관세 사후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45. 한-EU FTA 원산지증명서로 ‘EUR1’ 이 적용가능한지 여부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558(2.9)

- 한-EU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가 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므로, 귀하께서 질문한 원산지증명서인 ‘EUR1’은 동 FTA에 적용되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규정

(협정문)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에 관한 의정서’ 제15조(일반요건), 제16조(원산지신고서 작성 조건) 및 제17조(인증수출자)

(법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3(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의한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등)

246. 한-영 FTA발효 이후 영국 경유 화물의 직접운송 충족여부(BWT거래시)

Q : 한-영 FTA 발효 후 EU산 물품이 영국의 물류창고에 보관 후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경우(BWT거래) 직접운송 충족이 가능한가요? (2019.10.28.)

A : 한-영 FTA 발효 후 영국은 한-EU FTA의 비당사국이 됩니다.EU를 원산지로 하는 상품이 영국 물류창고에 보관 후 그 중 일부를 우리나라로 운송되는 경우는 단일 탁송화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한-EU FTA에 따른 직접운송요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247. 해외직구물품의 협정적용 방법

Q : 독일로부터 인터넷 전자상거래로 물품을 구매 시 현품에 제품을 만든 국가명이 기재된 경우 협정적용 가능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19.05.16.)

A : 한-EU FTA에서는 상업적으로 수입되지 않는 사인간의 소포 또는 여행자휴대품 중 미화 1,0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의 제출없이 구매영수증과 현품의 원산지표시확인으로 협정적용이 가능합니다.그러나, 인터넷 전자상거래로 구매한 물품은 사인간의 소포 또는 여행자휴대품에 해당하지 않아 한-EU FTA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작성한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는 경우 협정적용이 가능합니다.

248. 협정관세 사후적용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 2017-10-11(접수일자)

질의 : 영국령 저지섬(Jersey)에서 생산된 원산지 물품을 프랑스 인증수출자가 Delivery Note에 작성한 원산지 신고서로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이 가능하지 여부

답변 : ○ 영국 왕실령인 저지섬(Jersey)에서 생산된 물품은 한-EU FTA 적용대상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EU역내 인증수출자가 작성한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로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 다만,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 및 협정에 규정한 요건 충족 여부 등은 ‘원산지에 관한 조사’ 결과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49. 협정관세 적용방법

Q : 이탈리아에서 우리나라로 물품을 수입 시 FTA관련 관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017.08.30.)

A : 한-EU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협정관세의 적용대상일 것 ② 원산지가 해당 계약상대국일 것 ③ 협정관세적용을 신청할 것 그리고 ④ 양 당사국간 직접운송될 것 입니다.

250. 협정관세적용을 위한 필요서류

Q : 유럽에서 생산된 제품 수입시 협정관세적용을 위한 필요 서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18.08.23.)

A : EU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이 한-EU FTA 협정적용을 위해서는 ① 동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대상 품목일 것 ② 동 협정에서 규정하는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③ 원산지 제품이 상세하게 기술된 송품장·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 상에 EU역내 소재 수출자(수입물품이 6천유로 초과하는 경우 인증수출자)가 동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신고문안을 기재한 원산지신고서 구비 ④ 직접운송원칙을 충족하는 경우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 상품에 대해 협정관세 적용 신청시 수입자는 원산지증빙서류, 직접운송요건 증빙서류를 갖추고 FTA관세특례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제1호의 협정관세적용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251. 협정문구와 인증번호 위치

한-EU FTA 원산지신고문안을 협정에서 정하는 문구와 인증번호기재 위치가 다르게 기재된 경우(밑줄 친 부분),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되는지?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European Community preferential origin.
Approved exporter's licence number (DE/3450/EA/0329) HZA Giessen

원산지신고문안은 「한-EU FTA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에 관한 의정서」 제15조(일반요건) 및 「동의정서 부속서3」의 양식대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귀사에서 질의한 내용과 같이 원산지신고의 인증번호 기재위치 오류는 원산지를 확인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미한 오류로 판단되므로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산지신고서 작성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원산지조사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52. 협정세율 적용 관련

질의 : ○ 아래의 거래형태에 대한 한-EU FTA 협정세율 적용 가능 여부

□ 거래관계

- ① 제조자(오스트리아 소재, 지사)가 헝가리 소재 본사로 물품 발송 ? ② 수출자(헝가리)가 인보이스에 원산지신고서 작성, 해당 물품을 한국 수입자에게 수출

답변 : 원산지신고서는 「한-EU FTA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에 관한 의정서」 제15조(일반요건) 및 제17조(인증수출자)에 따라 수출당사국의 법령에 의한 인증수출자가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인증수출자가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고 수출품이 협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53. 협정적용 가능 여부

Q : 독일에서 6천유로 초과하는 제품 수입시 협정관세 적용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018.08.23.)

A : EU국가에서 수입하는 물품이 한-EU FTA협정 적용을 위해서는 ① 동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대상 품목일 것 ② 동 협정에서 규정하는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③ 6천유로 초과 원산지상품인 경우에는 해당 원산지상품이 상세하게 기술된 송품장·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 상에 EU역내 소재 인증수출자가 동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신고문안을 기재한 원산지신고서 구비 ④ 직접운송원칙을 충족하는 경우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254. 협정적용 관련

질의 : 한-EU FTA는 발효일 이후 1년 이내에 인증번호 등이 기재된 Invoice를 해외 인증수출자가 소급하여 재발행해 주면, 발효일 이후 수입신고 된 물품에 대하여 소급하여 FTA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EU국 중 일부 국가의 세관에서는 소급발행을 금지하는 경우가 많아 국내 중소 수입업체가 FTA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원산지문구 등이 기재되어 있는 Invoice가 소급하여 재발행되지 않더라도 FTA 소급적용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부

답변 : 한-EU FTA의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한-EU FTA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19조 및 「FTA특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있는 경우에만 협정관세적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동 의정서 제16조제6호의 수입 후 2년 또는 수입당사국의 법령에 명시된 기간 내에 수입당사국에 제시된다는 조건으로 소급하여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55. 협정적용신청서 작성시 수출자 기재방법

Q : 하나의 선적건(B/L)에 각각 다른 인증수출자가 발행 한 두개의 원산지신고서가 있고 그중 한 생산자(인증수출자)가 우리나라와 계약한 수출자인 경우 협정적용신청서의 수출자란 기재 방법 문의드립니다. (2019.07.25.)

A : EU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의 생산자별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고 그 생산자중 한 곳이 우리나라와 계약한 EU역내소재 수출자인 경우 협정적용신청서의 수출자란에는 우리나라와 계약한 수출자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3. 한-미 FTA

1. B/L양수도 거래시 협정관세 적용 가능 여부

Q : 국내 B/L양수도 거래에 따라 원산지증명서의 수입자와 납세의무자가 상이한 경우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2017.10.20.)

A : 협정관세 적용요건*을 충족하고, 최종 구매자에게 판매되는 관련 무역서류의 거래내역을 확인하여 원산지 증명서 상의 물품과 거래 물품과의 동일성이 확인되는 경우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 협정관세의 적용대상일 것, 원산지가 해당 계약상대국일 것, 계약당사국간 직접운송 될 것

2. HS2009.90호의 원산지결정기준

질의 :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여부와 관계없이 제20류내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2009.90호에 해당하는 그 밖의 상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하나의 비당사국의 단일 주스성분 또는 주스성분들이 원액으로 그 상품의 부피를 기준으로 60퍼센트 이하로 구성된 것에 한한다.

A change to any other good of subheading 2009.90 from any other subheading within Chapter 20, whether or not there is also a change from any other chapter, provided that a single juice ingredient, or juice ingredients from a single non-Party, constitute in single strength form not more than 60 percent by volume of the good.

(1) 주스성분이 농축액인 경우 농축액 기준인지, 원액 기준인지

(2) 상품의 부피를 기준으로 할 때 원재료 기준인지, 물이 첨가된 상품 기준인지

답변 : 혼합주스(제2009.90호)에 대한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의 단서조항인 “하나의 비당사국의 단일 주스성분 또는 주스성분들이 원액으로 그 상품의 부피를 기준으로 60퍼센트 이하로 구성된 것에 한한다.”를 적용함에 있어 재료가 ‘농축액’인 경우에는 농축하기 전의 ‘원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부피는 재료가 아닌 상품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계절관세 적용 관련

질의 : 수입자가 감자를 칩용으로 가공하는 제조시설이 없는 경우에도 수입하는 감자를 칩용으로 분류하여 계절관세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와 칩용으로 수입한 경우 사후관리 대상여부

답변 : 귀하께서 질문하신 물품(HS 0701.90호)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6의4에서 정하는 기간에 수입되는 물품에 해당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수입자가 수입물품을 가공하는 제조시설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며, 동 물품은 사후관리 대상물품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4. 곡류 가공품 수입 관세 관련

질의 :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추천을 받지 않고, 미국산 곡류 가공물(HS 1102.90.9000)을 수입시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한 경우 적용되는 관세율 질의

답변 : 미국산 곡류 가공물(HS 1102.90.9000)은 기준 발동물량을 초과하여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특별긴급관세조치가 적용되는 선착순 방식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대상 품목으로서,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순서에 따라 정해진 수량까지는 무관세 또는 협정관세율을 적용하고, 초과물량은 긴급수입제한조치(ASG : Agricultural Safe guard) 관세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추천을 받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상기한 기준에 따라 관세율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5. 골프채 부분품을 중국, 미국에서 수입하여 조립 등 가공한 경우 우리나라 원산지 인정 여부

질의 : 중국, 미국에서 골프채 부분품(9506.39-1000)을 수입 후 한국에서 일부 밀링 및 조립 등의 가공을 통해 골프채 완제품(9506.31-0000)으로 제조 후 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골프채의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 우리나라 원산지 판정기준(수입물품 기준 준용) 적용시 골프채는 골프채 조립공정(HS 9506.39 → 9506.31) 수행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에서 밀링 및 조립 등의 공정을 거쳐 골프채 완제품이 생산된 경우에는 수출시 골프채의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볼 수 있습니다.

6. 국가간 품목분류 상이 시 한-미 FTA 적용 여부 질문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 2012-03-20(회신일자)

질의 : 협정 당사자간 아래의 물품과 같이 양국간 품목분류가 상이할 때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한-미 FTA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한지(수출자는 원산지증명서를 미국 HS번호에 기초하여 발행함)?

- 물품 : 돼지정액희석제

답변 : 한-미 FTA 제6.15조(특혜관세대우 신청)제2항에 따라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HS품목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며, 특혜관세 부여는 수입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입물품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의 HS품목번호에 따라 원산지상품임이 증명되어야 하는 바, 미국 수출자측의 HS품목번호로는 동 FTA에 따른 원산지제품임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수입물품에 대해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관세법 제8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에 따라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신청(동 물품의 미국측 품목분류관련자료 제시)하여 수입물품의 품목분류를 미국 기준에 따른 HS번호(HS3821.00)로 확인받으면, 동 원산지증명서로도 특혜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를 신청(동 물품의 재료명세서 등 관련 자료 제출)하여 원산지제품임을 확인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7. 관세면제 해당여부 질의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5853, 2013-10-18(회신일자)

질의 : ○ 우리나라에서 수리목적으로 미국으로 수출된 물품이 미국에서 1차 수리 후 2차 수리를 위하여 미국에서 다시 독일 등 제3국으로 수출 후 2차 수리가 끝난 다음에 다시 미국으로 반입되어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재반입되는 경우

- 한-미 FTA 협정문 제2.6조와 「FTA관세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제4항에 따라 관세면제 대상물품에 해당되는 지 여부

답변 : ○ FTA협정은 계약당사국간 수출입거래에 대해서만 차별적으로 관세특혜를 부여한다는 점을 고려하고
○ 조세법률주의에 의거, 한-미 FTA협정 및 「FTA관세특례법」상 관세면제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으므로 동건은 관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됨

8. 관세율 할당물량 추천서 관련 질의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 2012-12-24(회신일자)

질의 : ○ WTO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율(W1 5%)을 적용한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 수리 후 한-미 FTA 관세율할당물량 추천서를 발급받은 경우 할당관세율(FUS 0%) 적용 가능 여부

※ [참고] 물품 개요

- 품명 : 대두(Soya Beans), HS 1201.90-9000

- 적용세율 : 한-미 FTA 할당세율(0%)

- 세율구조

· 기본세율 : 3%, WTO 협정세율 : 추천 5%, 미추천 487%, 한-미 FTA 할당 : 추천 0%, 미추천 487%

* 추천기관인 한국농수산물식품 유통공사가 한-미 FTA 관세율할당물량 적용추천서(세율(FUS 6%))가 아닌 시장

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 추천서(세율 W1, 5%)를 발급)

답변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한-미 FTA 할당 물량 적용 추천서는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수입신고 수리 후에는 제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9. 국내 BWT거래시 C/O수입자와 실제 수입자가 상이한 경우 협정관세적용 방법

Q : 국내 BWT거래에서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수입자와 최종 수입자가 상이한 경우 해당 원산지증명서로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2017.04.18.)

A : 한-미 FTA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요건들을 모두 충족한다면 보세창고거래 특성상 원산지증명서상 기재된 최초 수입자와 최종 수입자가 상이하더라도 관련 무역서류를 통해 거래내역 등을 확인하여 원산지증명서상 물품과 실제 거래 물품과의 동일성이 확인된다면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10. 긴급수입제한조치(ASG) 품목 관련, 수입신고 취하시 배정물량 복구 여부

Q : 한-미 FTA에서 긴급수입제한조치(ASG)품목을 수입하여 배정받은 후 수입신고 취소하여 수출국으로 돌려보냈을 경우 취소된 배정물량이 재배정되나요? (2017.05.22.)

A : 한-미 FTA ASG 대상물품 중 선착순 방식이 적용되는 물품이 수입신고 후 반송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수입신고수리 시점에 따라 결정됩니다. ① 수입신고 수리 전 반송시에는 반송에 따라 최초 배정한 물량이 남은 경우 부과물량 도달일 수입신고된 건들에 재배정합니다. ② 수입신고 수리 후 반송시에는 재배정하지 않습니다.

11. 다른 세번의 품목별 원산지기준 적용가능여부

Q : 해당 호의 품목별 원산지기준은 충족하지 못하지만 다른 호의 품목별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원산지상품으로 인정가능한가요?

A : 한-미 FTA에서는 부속서 6-가에 규정된 품목별원산지기준(PSR)을 충족하는 경우 원산지상품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그러나 해당물품의 품목별원산지기준(PSR)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12. 미국산 물품이 네덜란드를 경유시 증빙자료 요건

질의 : 미국산 펌프를 한국으로 운송 도중 네덜란드의 물류센터(보세창고 아님)에 단순 보관하는 경우 직접운송 증빙자료의 요건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답변 : 원산지상품이 비당사국을 경유하는 경우 최초의 운송업자가 전 구간을 책임지고 발행한 통과선하증권 또는 동 상품이 비당사국에서 비당사국 세관통제하에 머물러 있었음을 입증하여 발행한 서류(예: 비가공증명서 등)로 직접운송 충족여부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운송서류의 운송정보 기재란에 출발지(미국), 도착지(한국)가 기재되어 있고, 물품상세란(description)에 경유국의 정보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라면 통과선하증권으로 인정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3. 미국산 물품이 중국 경유시 중국의 재수출증명서가 직접운송 증빙서류 가능 여부

질의 : 미국산 물품을 중국을 경유하여 한국으로 수입하면서, 중국 세관으로부터 재수출증명서(상품이 중국 보세창고에 보관되는 동안 관할 정부 당국의 통제를 받았으며 추가 가공을 거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문구 포함)를 받은 경우 직접 운송 증빙 서류로 이용 가능한가요?

답변 : 중국 세관이 발행한 재수출증명서가 비당사국(중국)에서 세관통제 하에 머물렀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직접운송 입증서류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4. 미국산 물품이 홍콩 경유시 적재항이 홍콩으로 표기된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질의 : 미국 원산지 물품을 항공 운송하는 도중 홍콩에서 환적되어, 운송서류 상 적재항이 홍콩항으로 표기되는 경우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미국-홍콩 및 홍콩-인천 AWB 모두 제출되어야 하는지 여부)

답변 : 비당사국을 경유하는 물품이 동 협정에서 정한 직접운송요건을 충족함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①최초운송업자가 동 상품에 대해 전 구간을 책임지고 발행한 통과선하증권 또는 ②비당사국 경유 시 한-미 FTA에서 정하는 공정 이외의 다른 공정이 없고, 경유국에서 세관당국의 통제하에 머물러 있었음을 확인하여 경유국 세관당국에서 발행한 증명서(예: 비가공증명서)와 수출국에서 수입국까지의 전체 운송구간이 확인 가능한 구간별 운송서류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15. 미국산 제어반을 독일로 수출하여 독일에서 소프트웨어를 입력한 후 수입시 협정관세 적용 여부

질의 : 폐수처리장치 제어반(미국 생산)을 독일로 수출하여 독일에서 제어 소프트웨어를 입력한 후 우리나라로 수입하는 경우 한-미 FTA 적용 신청 가능한가요?

답변 :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물품이 한-미 FTA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물품의 최종 공정은 계약상대국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비당사국에서 제어반에 소프트웨어를 입력한 경우에는 한-미 FTA 협정관세 적용이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16. 미국에서 생산된 메모리폼 베개의 커버가 중국산인 경우 협정관세 적용 여부

질의 : 메모리폼베개를 수입하는데, 메모리폼은 미국에서 생산되었고 베개커버는 중국산인 경우 메모리폼베개가 미국 원산지 제품으로 인정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 베개세트가 섬유 또는 의류의 소매용 세트를 이루는 경우에 중국산 커버의 가격이 전체 베개세트의 관세가격의 1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 가능합니다.(단, 베개세트의 섬유 또는 의류의 소매용 세트 해당 여부 별도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17. 미국 제조라인 전체를 한국에서 수리, 개조 후 미국으로 재수출시 협정 적용 가능 여부

질의 : 미국의 제조라인 전체를 해체하여 한국에서 수리, 개조 후 다시 미국으로 반입하는 사안에서, 한-미 FTA에 따른 국내 일시 수입 면세를 적용 받을 수 있나요?

답변 : 한-미 FTA에서는 미국으로부터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해 우리나라로 일시적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수리 또는 개조의 범위에는 ①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파괴하거나 새로운 물품 또는 상업적으로 다른 물품을 생산하는 작업이나 과정과 ② 미완성 상태의 물품을 완성품으로 생산 또는 조립하는 작업이나 과정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수행되는 작업이 협정에서 정한 수리 또는 개조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협정을 적용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8. 미화 1천달러 미만 제품에 대한 협정세율 적용 방법

질의 : 미화 1000달러 미만 제품에 원산지 표기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 생산자 및 판매자가 발급한 상업송장과 원산지증명서에 HS Code가 기재되어 있다면 협정세율을 적용 가능한가요?

답변 : 한-미 FTA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과세가격 미화 1천 달러 이하 원산지상품의 경우 수입통관 시 원산지 증명서 제출 없이 구매영수증, 현품의 원산지표기 등을 통해 원산지를 확인 후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19. 미화 1천달러 이하인 주류에 표기된 방법에 따른 협정 적용 가능 여부

질의 : 미국에서 구매한 주류 현품 4병 중(1천달러 이하) 1병에는 미국 주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나머지 3병에는 USA라는 국적이 표기되어 있지 않으나 CA라는 지명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 한-미 FTA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 한-미 FTA에서는 미국에서 구매하여 우리나라로 직접 운송된 과세가격이 미화 1천 달러 이하의 원산지상품의 경우 원산지증명서 제출 없이 수입통관 시 구매영수증, 현품의 원산지표기 등을 통해 원산지를 확인 후 협정관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제시한 원산지 표시방법은 해당 물품이 미국에서 생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적절한 표시 방법으로 인정이 곤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 발급번호가 없는 원산지 증명서 등의 협정관세신청서 기재 방법

질의 : 보유한 원산지증명서와 송품장에는 발급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 협정관세적용신청서 상의 제12란(발급·작성번호)에는 어떤 내용을 기재해야 하나요?

답변 : 구비한 원산지증명서와 송품장에 발급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협정관세를 적용신청을 하고자 하는 물품과 일치함을 확인 가능한 무역서류의 발급번호를 기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1. 발전기 구성요소별 신고하던 것을 하나의 기능단위로 신고할 때 협정 적용 방법

질의 : 아래와 같이 발전기 구성요소별로 수입신고하던 것을 하나의 기능단위기계로서 하나의 HS 코드로 분류 가능하다는 관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FTA 협정 신청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각각의 절차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발전기 구성물품 A (기존에 FTA적용) B (FTA 비적용) C (기존에 FTA적용)

답변 : 품목분류 변경에 의해 각각의 구성요소로 수입신고한 것을 하나의 기능단위기계로 정정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하는 경우, 변경된 품목분류와 일치되도록 원산지증명서를 보완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성요소 A와 C는 보완된 원산지증명서로 기존의 협정관세를 적용하고, 구성요소 B는 보완된 원산지증명서로 수입신고일로부터 1년 내에 협정관세를 사후적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2. 보세건설장 조립물품에 대한 적용여부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1244, 2012-03-20

질의 : ○ 다음의 경우 보세건설장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한-미 FTA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한지?

- 일부설비는 미국에서, 일부설비는 중국에서 국내 보세건설장에 반입
- 반입 후 보세건설장에서 하나의 SET물품으로 조립하여 수입통관

답변 : 한-미 FTA 제6.17조(특혜관세대우 신청)제4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은 당사국 영역으로 상품이 단일선적되는 경우 적용하는 것이므로, 미국과 중국에서 각각 따로 국내 보세건설장에 반입되어 조립된 물품에 대해 원산지증명을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관세법 제17조(적용법령)에 따라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외국물품은 사용 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의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한-미 FTA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물품과 법령 적용시점(사용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의 물품과 동일해야 동 협정에 따른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한 바, 미국에서 반입된 설비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는 보세건설장에서 수리되는 물품과 다르므로 특혜관세를 적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3. 분할선적물품의 협정관세 적용여부

질의 : 미국에서 분할선적된 물품이 국내에서 동일한 날짜, 동일한 장소에서 동시에 각각 수입신고. 이를 하나의 완성품으로 보아 완성품의 세번(HS8501.34)로 수입통관
 - 이 경우 완성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이 있다면 각각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대해 한-미 FTA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한지

답변 : 미국으로부터 분할선적 된 수출물품이 우리나라에 반입되는 때에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미합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① 수출국에서 생산되어 선적한 원산지 제품으로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2’에 따른 완성품의 주요특성을 가진 물품일 것
- ② 포장, 운송 등의 편의를 위해 분할해서 수입하는 물품일 것
- ③ 우리나라에서 단순조립 이상의 추가가공이 발생하지 않을 것
- ④ 관세법 제17조(적용법령)에서 정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이 있을 것

24. 분할선적물품의 협정관세 적용 여부 질문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 2012-11-21(회신일자)

질의 : ○ 분할선적된 물품을 완성품으로 수입통관 할 때 완성품에 대해 한-미 FTA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미국에서 원산지 제품을 수차례 분할선적
- 보세건설장에 반입하여 완성품으로 조립(미 수출자가 완성품에 대해 C/O 발급)
- 일부물품은 미국에서, 일부물품은 비당사국에서 선적
- 보세건설장에 반입하여 완성품으로 조립(미 수출자가 완성품에 대해 C/O 발급)
- 완성품 전체에 대해 협정관세 적용여부
- 일부물품은 미국에서, 일부물품은 비당사국에서 선적
- 비당사국 선적물품은 입항지 등에서 수입통관
- 보세건설장에 반입하여 완성품으로 조립(미 수출자가 완성품에 대해 C/O 발급)
- 미국에서 선적된 물품에 대한 완성품에 협정관세 적용여부
- 미국에서 원산지 제품을 수차례 분할선적
 - 완성품의 세번을 적용 받고자 ‘신고수리전 반출’ 신고(미 수출자가 완성품에 대해 C/O 발급)

답변 : 미국으로부터 분할 선적 되어 우리나라로 반입되는 물품이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보세건설장에서 조립된 완성품에 대하여 ‘미합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아 래

- ① 수출국에서 생산되어 선적한 원산지 제품으로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2’에 따른 완성품의 주요특성을 가진 물품일 것
- ② 포장, 운송 등의 편의를 위해 분할해서 수입하는 물품일 것
- ③ 우리나라에서 단순조립 이상의 추가가공이 발생하지 않을 것
- ④ 관세법 제17조(적용법령)에서 정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이 있을 것
- ⑤ 수출국에서 선적된 수출당사국의 원산지제품으로만 우리나라에서 조립될 것

또한 미국에서 미조립상태로 분할선적 되어 「관세법」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을 하는 경우에도 상기의 1~4번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으며, 동 업무처리에 대하여는 ‘수입물품 신고수리전 반출제도 관련 업무처리지침(청 통관기획과-2936, '11.6.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은 체결당사국에서 선적되는 수출물품에 적용되는 것인 바, 미국에서 수출된 원산지 물품과 제3국에서 수출된 비원산지물품이 우리나라의 보세건설장에서 조립된 경우에는 완성품에 대하여는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5. 불인정공정 충족 필요 여부

Q : 돼지를 역내(미국)에서 도축 후 냉동하여 생산된 냉동돼지고기에 대해 불인정공정 여부와 관계없이 품목별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원산지상품으로 인정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018.10.12.)

A : 한-미 FTA의 경우 협정상 불인정공정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품목별 원산지기준(부속서6-가)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제01류의 돼지를 역내(미국)에서 도축 후 냉동하여 생산된 제02류의 냉동돼지고기는 동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며, 동 협정에서 정한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 가능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6. 비당사국 경유물품 직접운송 충족여부

Q : 미국에서 캐나다를 경유하여 한국으로 수입시 발행된 Multimodal Transport복합운송서류에 ① 미국 내에서 물품을 수령하여 출발 ② 경유국을 포함하여 전체 운송경로가 기재 ③ 미국에서 발행된 경우 직접운송 요건을 충족할 수 있나요? (2017.11.06.)

A : 운송서류가 수출국 최초 운송업자가 전 구간의 운송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담보하는 단일의 운송서류를 발급한 경우라면 한-미 FTA 협정 제6.13조(통관 및 환적) 규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7. 비당사국 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증명서 인정 가능 여부

Q : 제3국 발행 송장거래시 비당사국에 소재한 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증명서는 인정가능 한가요? (2019.01.11.)

A : 한-미 FTA 통관관련 검증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역내 생산자로부터 원산지 관련 입증자료를 전달받아 세관에 제출가능하거나, 역내생산자가 동 자료를 직접 세관당국에 제출 가능한 경우 비당사국 수출자도 원산지증명서 발급 가능합니다.

28. 비당사국 수출자 발행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

Q : 독일에 소재한 수출자가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가능한가요? (2019.06.03.)

A : 한-미 FTA 통관관련 검증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역내 생산자로부터 원산지 관련 입증자료를 전달받아 세관에 제출가능하거나, 역내생산자가 동 자료를 직접 세관당국에 제출 가능한 경우 비당사국 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도 인정가능합니다.

29. 비당사국에서 단순가공한 물품의 협정적용가능 여부

Q :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수출한 물품을 중국에서 절단, 포장 작업 후 우리나라로 수입하여 미국으로 수출한 경우 한-미 FTA원산지증명서 발급가능한가요?

A : 한-미 FTA협정에서는 전적으로 한쪽 또는 양당사국 영역에서 생산되고, 동 협정에 따른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원산지상품으로 인정 가능합니다.따라서, 마지막 최종생산이 중국에서 이루어진 경우는 한-미 FTA에서 정한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할 수 없어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곤란합니다.

30. 비당사국에서 소분, 포장작업시, 직접운송요건 충족여부

Q : 미국에서 제조된 낱알상태의 연질캡슐을 벌크상태로 베트남에 선적 후 베트남에서 소분 및 개별 포장작업 후 국내로 수입된 경우 직접운송요건을 충족하나요? (2018.06.18.)

A : 낱알상태의 연질캡슐을 베트남에서 소분 및 개별 포장하는 경우는 한-미 FTA협정에서 정한 직접운송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31 사후적용 관련 질의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 2012-08-01(회신일자)

질의 : 한-미 FTA 사후적용을 위한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전송 시 전산오류가 발생하여 사후환급기간을 경과 하였을 경우 해결방안은 없는지?

답변 : FTA 특례법 제10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의 적용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협정관세 적용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입자(신고인 포함)의 전산 시스템 오류로 인하여 신청서가 협정관세 적용신청기간 이내에 관세청 통관시스템에 전송되지 못한 경우에는 협정관세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32. 상업서류에 작성된 원산지증명서의 인정 여부

질의 : 원산지결정기준을 기재한 원산지증명서의 인정여부

답변 : 미합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은 원산지증명서 양식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증명서에 포함되어야 할 정보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송품장에 협정에서 정한 필수정보를 모두 기재하여 작성한 원산지증명서도 사용할 수 있으며, 또한 원산지결정기준과 같은 정보가 포함된 경우도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33. 생산자발급 원산지확인서를 근거로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원산지소명 의무자

Q : 수출자와 생산자가 상이하며 생산자가 발급한 원산지확인서를 근거로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수출자에게 원산지소명 의무가 있나요? (2018.11.30.)

A : 한-미 FTA에서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자는 해당 상품의 원산지증명에 관한 모든 기록을 보관하고 증명서 사본을 수출 당사국에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수입국의 원산지 검증에 대응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소명의무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자에게 있습니다.

34.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원산지증명서상 수출자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원산지증명서상 수출자

Q :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물품의 생산자와 수출자가 상이한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자는 누구인가요? (2017.02.10.)

A : 한-미 FTA에서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 모두 발급이 가능합니다. 미국 내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해당 상품의 원산지증명에 관한 자료의 보관, 미국 세관의 요청에 원산지증명서 사본을 제출할 수 있으며, 한국 세관의 원산지검증에 대해 원산지증빙자료 등의 제출이 가능하다면 원산지증명서 발행 주체로서 자격을 가지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35. 섬유류 원산지 결정기준 관련

질의 : 한-미 FTA 관련, 아래의 경우 ‘면 재봉사’는 역내재료를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동 재료를 역외산을 사용한 경우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의 ‘최소허용수준’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면사 (HS 5205 역내산), 단추 (HS9606 역내산), 면 재봉사 (HS5204 역외산)
⇒ 면 재봉사가 수출물품 구성요소의 중량비율 1%만 사용됨

답변 : 한-미 FTA 협정문 제4.2조제7항(최소허용수준)과 부속서4-가(섬유 또는 의류상품의 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에 따라 상품(HS 6105)을 생산할 때 사용된 재료중에서 그 상품의 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재료의 중량이 그 상품의 품목분류를 결정하는 구성요소 총 중량의 7% 이내이면 ‘최소허용기준’에 해당하는 것인 바, 귀 법인이 질문한 상품은 한-미 FTA에 따른 원산지상품임을 알려드립니다.

36. 소액물품 관세면제규정

Q : 한-미국 FTA의 소액물품 관세면제규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18.11.20.)

A : 한-미 FTA의 경우 원산지와 관계없이 미국으로부터 특송화물로 반입되는 미화 200불이하의 자가사용물품과 상용견품으로 목록통관 대상물품에 대하여 통관시 부과되는 세액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미 FTA에서는 과세가격이 미화 1천달러 이하의 원산지상품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 제출없이 수입통관시 구매영수증, 현품의 원산지표기 등을 통해 원산지를 확인 후 협정관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입물품을 분할하여 수입하는 등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이 미화 1천달러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수입하는 물품은 제외됩니다.

37. 소액물품 협정관세 적용 가능여부

Q : 미국에서 구매한 미화 1천불 이하의 제품을 한국으로 배송시 현품에 'MADE IN USA' 로 표기된 TAG가 부착되어 있고 구매영수증(인보이스)을 구비한 경우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2017.08.17.)

A : 수입물품 과세가격이 미화 1천 달러 이하의 소액물품인 경우 구매처, 구매영수증, 현품의 원산지 확인 등 간이한 방법으로 원산지를 확인 후 협정관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입물품을 분할하여 수입하는 등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미화 1천 달러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수입하는 물품은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38. 소액물품 협정적용 가능여부

Q : 미화 930불짜리 미국산 타이어를 직구로 구매하는 경우 한-미 FTA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2018.10.25.)

A : 수입물품 과세가격이 미화 1천 달러 이하의 소액물품인 경우 구매영수증, 제품의 원산지표기 등을 통해 소액물품 협정관세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 후 협정관세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입물품을 분할하여 수입하는 등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미화 1천 달러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수입하는 물품은 제외됩니다.

39. 수리 및 개조 해당여부

Q : 항공기 수리 목적으로 비당사국으로 수출되었으나 수리가 불가능하여 미국본사로 보내져서 수리 후 국내로 재반입한 경우 한-미 FTA 제2.6조(수리 또는 개조 후 재반입 되는 상품)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017.04.04.)

A : 한-미 FTA 제2.6조(수리 또는 개조 후 재반입되는 상품)규정은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수출되었다가 다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따라서 비당사국으로 수출되었다가 미국으로 다시 보내져 수리 후 반입되는 경우는 협정문 제2.6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0. 수입원유가 보세구역 내 잔존유와 혼합된 경우 협정 적용 가능 여부

Q : 미국에서 수입되는 원유를 국내 보세구역 내 원유 탱크에 보관시 원유탱크내의 비당사국 잔존유와 혼합될 경우 수입된 원유의 협정관세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2018.05.15.)

A : 미국에서 수입되는 원유가 국내 보세구역 내 원유 탱크에 저장시 탱크내 잔존유와 혼합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이 원산지기준 및 협정에서 정한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FTA관세특례법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9조에 따라 원산지증명서와 선하증권에 기재된 수량에 대해서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계약상대국의 원유가 FTA관세특례법 제2조에서 정한 우리나라 영역에 도달하기 전에 비계약국 원유와 혼합 보관되는 경우에는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41. 수입자발행 원산지증명서 인정여부

Q : 미국에서 생산된 물품을 수입한 후 해당 물품이 미국에서 생산되었음을 미국 제조자로부터 확인한 경우 이를 근거로 수입자가 직접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여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이 가능한가요? (2018.07.27.)

A : 한-미 FTA협정에 따른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원산지기준을 충족한 물품에 대해 작성한 원산지신고서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물품이 동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춘 경우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생산된 물품임을 확인 한 것만으로는 동 물품이 동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입자가 동 협정에 따른 원산지물품임이 확인 되지 않은 물품에 대해 작성한 원산지신고서로는 사후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42. 수입자 보관서류 관련

질의 : 관세청에서 시행한(* 12.3.9) 한-미 FTA운영지침에 수입자 보관서류를 다음과 같이 열거.

1. 원산지증명서(전자문서 포함)
2. 원산지 증빙자료(원산지 확인서, 원산지 소명서 등)
3. 수입신고필증
4. 수입거래 관련 계약서
5.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자료
6. 수입물품의 국제운송 관련 서류
7. 사전심사서 및 사전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
8. 지적재산권거래 관련 계약서

→ 이중 2번. ‘원산지 증빙자료(원산지 확인서, 원산지 소명서 등)’는 시행령에 규정된 바 없음. 동 서류를 보관해야 하는 법적근거 및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무엇인가?

답변 : 귀하께서 질문한 원산지증빙자료(원산지확인서, 원산지소명서 등)는 한-미 FTA 협정관세 적용물품의 원산지를 수입자가 증명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관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원산지를 증명하는 경우에는 국내수입자는 원산지증빙자료의 보관의무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43. 수입자 원산지증명서 서명권자 해당 여부

Q :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입시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 작성하는 경우 수입자가 서명권자에 해당하나요? 또한, 이후 한국의 수입자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와 관련된 사항을 미국 수출자에게 확인하여야 하나요? (2019.04.24.)

A : 한-미 FTA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자는 해당상품에 대한 원산지를 결정·입증할 수 있으며, 원산지증명에 관한 모든 기록을 보관하고 원산지검증의 대상이 되는 자로서, 상기 요건을 충족한다면 수입자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한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에 서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입자가 수입물품의 원산지상품에 해당여부에 대해 확인하지 않거나, 동 상품의 원산지와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여야 하며, 관세당국에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4. 수입통관 완료된 할당물량 물품이 멸실된 경우 다른 수입통관건 대체 가능 여부

질의 : 할당 물량 추천서로 이미 수입통관이 완료된 화물이 멸실된 경우, 기존의 물량을 다른 수입통관 건에 적용 가능한가요?

답변 : 보세창고 보관 중에 화재로 멸실된 수입통관물품은 상기 추천을 근거로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 적용이 완료된 물품으로 동일 추천을 근거로 다른 수입신고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은 불가할 것으로 판단

되며, 상기 멸실 등의 사유에 따른 추천물량의 재배정 여부는 당초 추천을 받은 주무부서 또는 기관을 통해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5. 수지(resin)에 착색제를 첨가한 경우 원산지 결정기준

질의 : 수지(resin)에 착색제를 첨가한 경우에는 혼합 및 배합의 결과가 상품의 원래의 목적 또는 용도와는 다른 물리적·화학적 특성을 가지는 상품이 생산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답변 : 수지(resin)에 착색제를 첨가한 경우에는 혼합 및 배합의 결과가 상품의 원래의 목적 또는 용도와는 다른 물리적·화학적 특성을 가지는 상품이 생산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한-미 FTA 협정 제7부 규칙2(혼합 및 배합 원산지)에 따라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음. 한국측은 한-미 FTA 협정 제7부 규칙2(혼합 및 배합 원산지)에 따른 혼합물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정하지 않고 있음

46. 수출물품의 원산지 관련

질의 : 오스트리아(본사)에서 원자재(Molybdenum tube, Stainless tube)를 받아 Moly와 Stainless재질의 material 을 본딩 한 후 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한-미 FTA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한국으로 발급이 가능한지

답변 : 한-미 FTA의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수출물품과 수출물품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HS품목번호 및 생산공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나, 귀하께서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귀사의 수출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귀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본부세관에서 세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FTA 세관컨설팅’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47. 수출물품의 원산지 결정 관련

질의 : 수출물품(프린터)의 제조에 필요한 부품 전체를 역외산(중국산)부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조립공정 등을 수행한 후 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수출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답변 : 수출물품이 한-미 FTA에서 정하는 원산지상품인지는 동 협정 제6.1조(원산지상품)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귀사가 질의한 바와 같이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가 비역내산 재료인 경우에도 동 협정 부속서 6-가 제2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한-미 FTA에 따른 원산지상품임을 알려드립니다.

* 이 상품군외의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제8443.60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에서 제8443.11호 내지 제8443.5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48. 수출용원재료 원산지확인서 관련

① 부가가치기준 해당물품의 수출용 원재료 원산지확인서 작성시

<질의> 협정상 역내부가가치비율을 산정하는 경우 조정가치(AV)를 적용하여야 하는데, 이때 세금계산서상의 국내공급가액을 조정가치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세금계산서 상의 공급가격이 제조비용·이윤 및 일반경비 등 협정에서 규정한 비용을 포함하였다면, 공급가격을 조정가치로 사용 가능합니다.

<질의> 국내공급가액(세금계산서상 금액)에 대하여 수입상품에 대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결정되는 가치로 환산하기 위하여 추가조정을 해야 한다면, 각 추가조정금액(화물비, 보험료, 포장비 등)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한 비용이 없는 경우에는 어떤 자료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 지?

<답변> 실제로 지급한 비용이 없다면 조정할 필요가 없으며, 기준가격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② 원산지포괄확인서 작성시 월별 판매가가 상이한 경우

<질의> 월별판매가가 달라진다면 1년 단위의 포괄확인서가 아닌 월별로 상이한 원산지확인서를 작성·발급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판매가는 부가가치 비율 산출시 중요한 요소로 그 가격의 변동에 따라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가 좌우되므로, 실제판매가를 적용합니다.사후 정산과정에서 원산지결정기준을 불충족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수출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질의> 월별 판매가가 달라진다 하여도 협정의 원산지결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역내부가가치비율을 충족시킨다면, 1년 단위 포괄확인서를 발급하는 것도 가능한 것 아닌지요?

<답변> 포괄확인서의 발급이 표준원가 등의 적용을 통해 미리 발급되어지는 것이므로 월별 판매가가 변동되어도 역내부가가치비율을 충족시킨다면 1년 단위 포괄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③ 통화환산이 필요한 경우

<질의> 제품생산을 위한 원재료의 가치를 계산할 때, 수입가는 외화이고 국내매입은 원화로 되어 있어 부가가치기준 적용시 원화환산과정이 필요한 데, 이럴 때 외화가격의 원화환산가치는 어떤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답변> 통화환산, 회계 등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GAAP)에 부합하는 일관된 기준에 따라야 하며, 보편적으로 생산자가 판매 또는 구매기록의 목적으로 사용한 환율을 적용합니다.

<질의> 동일 원재료를 일정기간에 걸쳐 나누어 수입하여 환율의 변동이 발생하게 되면 역내국 원료에 의한 부가가치율 또한 달라지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원산지포괄확인서는 작성할 수 없는 것인지요?

<답변> 원산지포괄확인서는 표준원가 혹은 추정원가 등을 적용하여 미리 발행되는 것이므로 동 경우에도 원산지포괄확인서의 작성은 가능하나, 실제생산시점에 실제원가를 적용, 부가가치비율을 재산정하여야 하며, 재산정후 원산지결정기준 ‘불충족시’ 즉시 해당업체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④ 부품등을 구매하여 외주업체에 가공임을 지급하고 완제품을 공급받는 거래형태

<질의> 당사가 생산하는 최종제품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이 부가가치기준에 해당되고, 당해 최종제품에 대한 원산지확인서를 작성하고자 할 때, 가공임을 지급하고 ‘사입’한 ‘모듈’에 대해서는 ‘자가생산된 재료’로 보아 협정 제6장 제6.3조(재료의 가치)다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재료의 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 것인지요?

<답변> ‘자가생산된 재료’라 함은 상품의 생산자에 의해서 생산되고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산지 재료를 말하므로, 상기 모듈은 비록 부품 및 가공임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외주업체가 생산한 것이므로 자가생산된 재료가 아닙니다. 따라서 제6.3조 나호에 따라 재료 가치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질의> 당사가 생산하는 최종제품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이 세번변경기준에 해당되고, 당해 최종제품에 대한 원산지확인서를 작성하고자 할 때, 가공임을 지급하고 ‘사입’한 ‘모듈’에 대해서는 하나의 중간 부분품으로 보아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를 판단해야 하는지, 아니면, 외주 가공업체에 당사가 제공한 원재료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를 모두 판단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답변> 가공임을 지급하고 ‘사입’한 ‘모듈’은 하나의 완제품으로 외주업체에서 수출용원재료 원산지확인서를 발급받아 최종제품의 원산지결정시 동 확인서를 근거로 판단하면 됩니다.

※ 협정문에 대한 유권해석은 외교통상부, 특례법에 대한 해석은 기획재정부 소관이므로 동 질의에 대한 회신은 법적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오직 참고용으로 사용할 수 있음

49. 여행자 휴대품 협정적용 가능 여부

Q : 미국에서 미화 600불 초과 물품을 구매하여 우리나라로 입국시 한-미FTA 특혜관세 적용가능한가요?
(2019.07.30.)

A : 한-미 FTA에서는 미국에서 구매한 과세가격이 미화 1천 달러 이하의 원산지상품의 경우 원산지증명서 제출없이 구매영수증, 현품의 원산지표기 등을 통해 원산지를 확인 후 협정관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미국에서 구매한 물품의 과세가격 미화1천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국에서 구매한 상품이 한-미 FTA에 따른 원산지상품임을 확인 후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는 경우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50. 연구목적 수입물품 협정적용 가능여부

Q : 연구목적 물품을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입시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2018.10.19.)

A : 물품이 연구목적으로 반입되었다 하더라도 한-미FTA협정 적용을 위해서는 ① 한-미 FTA의 협정관세적용 대상 품목이고, ② 한-미 FTA에서 규정하는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③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작성한 원산지 증명서 구비, ④ 직접운송원칙 충족하여 협정관세 적용 할 수 있습니다.

51. 영역해당 여부

Q : 푸에르토리코에서 수입하는 물품은 한-미 FTA 적용 가능한가요? (2019.03.19.)

A : 푸에르토리코에서 생산되어 우리나라로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이 한-미 FTA에서 정한 원산지기준과 다른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동 협정적용이 가능합니다.

52. 운송관련

질의 : 다음과 같은 거래방법과 운송방법으로 한-미 FTA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한지?

○ 거래 및 운송 관계

- ① 싱가포르 소재의 국제석유 거래상인 A사와 미국에 소재한 B사 간에 방카씨유(HS 2710.19)를 구매
- ② 미국에서 싱가포르로 운송하던 중 국내에 소재한 C사와 매매계약 체결
- ③ 미국에서 출항한 본선이 싱가포르항에 입항전 공해상에서 ship to ship 방식으로 환적하여 국내항에 도착

○ 원산지증빙서류 관련

- ① 원산지증명서 : 미국소재 B사가 구매자인 A사에게 발행
- ② 서베이어포트 : 최초운송선박명, 출발지, B/L번호, 수량, 국내로 환적한 선박명 등과 ship to ship 방식으로 환적하였다는 내용 기술(싱가포르 A사가 발행)

답변 : 미합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제품이 귀소의 질의와 같이 공해상에서 환적된 경우 동 협정 제6.13조에 따라 통과·환적물품은 세관당국의 통제하에 있어야 원산지상품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인 바, 질의 물품과 같이 위 사항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53. 원산지 결정기준 표기 관련

질의 : 한-미 FTA에서 원산지증명서에 원산지 결정기준을 필수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

- 필수 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된 원산지증명서에 원산지 결정기준을 “B”로 표시한 경우 원산지 증명서의 효력 인정 여부 질의

답변 : 한-미 FTA 협정 원산지 증명서(권고서식)에서 원산지 결정기준은 필수 기재 사항이 아니며, 따라서 원산지 결정기준을 “B”로 표시한 경우 및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협정에 규정된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한

물품임이 입증된다면 유효한 원산지 증명서로 인정 가능합니다. 다만, 원산지 결정기준을 “B”로 표시한 경우 “B”가 어떠한 원산지 결정기준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입증할 수 있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54. 원산지 기준 표기 해석

Q : 한-미 FTA 협정에서 ‘WO’, ‘PSR’, ‘PE’ 는 무슨 의미인가요? (2019.04.24.)

A : 한-미 FTA에서 정한 원산지기준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WO: 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
- ② PSR: 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되고,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가 협정에서 정한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을 충족하고 협정에서 정한 모든 적용가능한 요건을 충족한 상품
- ③ PE: 원산지재료로만 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경우

55. 원산지 입증서류 관련 질의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 2012-03-27(회신일자)

질의 : 의류제품의 경우, 한-미 FTA의 ‘Yarn Forward rule’ 을 충족하려면 원산지확인서 및 국내제조확인서 중 어떤 서류를 거래단계별로 발급해야 하는지와 생산품이 원산지제품이 되기 위한 조건은?

면사(5205.44) : 국내제조, 폴리에스터사(5509.22) : 중국산, 스판사(5402.44) : 국내제조

답변 : 한-미 FTA에 따른 원산지상품임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로, 비원산지재료를 귀사가 아닌 국내의 다른 업체에서 생산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4에서 정하는 ‘국내제조확인서’ 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또한 귀사 질의물품인 의류(HS 6105)의 원산지 결정기준은 세 번변경(HS 2단위 변경)기준이며, 면사 (HS 5205.44)와 폴리에스터사(HS 5509.22) 그리고 스판사(HS 5402.44)는 역내산을 원재료로 사용해야 합니다.

즉, 원재료에 대한 국내제조사실이 확인되고 역내에서 재단(또는 편성)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되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의류 공급자가 원료(면사)를 구매하여 면직물생산자와 의류생산자에게 임가공을 의뢰하여 생산품인 의류를 공급받아 최종수출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의류생산자가 면사생산자와 면직물생산자에게 ‘국내제조확인서’ 를 공급받아 수출자에게 공급하는 것이며, 최종수출자와 거래하는 의류 공급자가 면사생산자, 면직물생산자 및 의류생산자로부터 ‘국내제조확인서’ 를 공급받아 수출자에게 제공하는 것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56. 원산지제품 관련

질의 : 미국 ○○○ 본사와 다음과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 작성시 거래형태별 1) 증명인의 성명 2)상품의 수입자 3)상품의 수출자 4)상품의 생산자는 누구인지?

사례① ○○○공장에서 울산소재 BWT로 물품 운송 후 진천공장으로 이동 후 한국 ○○○ 진천공장 명의로 수입통관 수행

사례② ○○○ 공장에서 미국소재 물류창고로 물품 운송 후 진천공장으로 선적 후 한국○○○ 진천공장 명의로 수입통관 수행

사례③ ○○○ 싱가포르 지점에서 인보이스를 발행하고, 물품은 ○○○ 공장에서 한국내 기업으로 운송하여 수입통관 수행

사례④ ○○○ 싱가포르 지점에서 인보이스를 발행하고, 물품은 ○○○ 공장에서 미국내 물류창고로 이동한 후, 한국내 기업으로 운송하여 수입통관 수행

답변 : 한-미 FTA에서는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주체를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증명인은 당해 수입물품이 원산지제품인 것과 직접운송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수입국 관세당국의 요청에 따라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무역거래형태와 관계없이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하는 ‘수출자’ 는 FTA 체결 상대국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상품을 발송한 자를 의미하며, ‘수입자’ 는 이를 자국의 영역으로 반입한 자를 말합니다. 또한, 협정문 제6.22조(정의)에 따라 ‘생산자’ 라 함은 당사국의 영역에서 상품의 생산에 종사하는 인(人)을 지칭함을 알려드립니다.

57. 원산지 증명방법 등

(질문1)

- 종전 동일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와 해당 수입물품 카탈로그를 근거로 수입자(민원인)가 원산지를 증명하여 수리 전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지
- ※ 동 업체는 수출자(미국)가 수입물품 통관전까지 원산지증명서를 보내주지 않아 ‘수리 전 협정관세 적용 신청’을 못하고 있고
 - ‘수리 후 협정관세 적용신청’ 하게 되면 세관에서 물품 상세내역과 카탈로그를 요청하고 있어 불편함

(질문 2)

- 미국에서 운송하는 물품이 중국 보세창고를 경유*하여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경우 협정관세 적용 여부
 - 중국 보세창고에서 4개월 이상 보관하다가 수입되는 경우에도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한지
 - * 중국정부에서 발행하는 보세창고 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답변 : 미합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제6.19조(수입 관련 의무)에 따라 수입자가 원산지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해당 수입물품이 원산지상품인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 바, 종전 수입물품의 원산지증명서와 물품의 카탈로그만을 근거로 수입자가 원산지를 증명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같은 협정 제6.13조(통과 및 환적)에 따라 양 당사국의 영역 밖을 경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아래의 서류로 수출국에서 수출한 물품과 동일한 물품이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해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원산지증명서
2. 경유국의 세관당국에서 발행하는 보관증명서
3. 경유국과 우리나라간의 선적서류
4. 수출자(미국)와 수입자의 무역서류 등.

58. 원산지증명서 HS Code 기재 등

질의 :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의 HS Code 기재와 관련해서 원산지결정기준이 세번변경기준으로 동일하지만, 변경 단위가 4단위와 6단위로 다른 경우도 원산지증명서를 인정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한·미 FTA 제6.15조(특혜관세대우 신청) 제2항에 따라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에 HS 품목번호를 기재해야 하며, 특혜관세는 수입 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결정합니다. 따라서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HS 품목번호에 따라 원산지를 증명해야 하는바, 미국 수출자 측의 HS 품목번호로는 한·미 FTA에 따른 원산지제품임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협정관세 적용이 어렵습니다.

‘관세청 한·미 FTA 운영지침’에 따르면, “원산지증명서의 HS 품목번호(HS 6단위)와 수입신고서의 HS 품목번호(HS 6단위)가 다른 경우, 원산지증명서의 물품과 수입신고 물품과의 동일성이 확인되고 수입신고서의 HS 품목번호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에 충족한다면 협정관세 적용 가능”이라고 돼 있으니 참조하기 바랍니다. 다만 관세법 제8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에 따라 품목분류사전심사를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신청(해당 물품의 미국 측 품목분류 관련 자료 제시)해 수입물품의 품목분류를 미국 기준에 따른 HS 품목번호로 확인받으면, 해당 원산지증명서로도 특혜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를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신청(해당 물품의 재료명세서 등 관련 자료 제출)해 원산지제품임을 확인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한편 한·미 FTA 특혜관세는 개인이 전자상거래를 통해 구매한 물품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이 미화 1,000달러 이하의 소액물품인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제출 없이 물품의 구매처(국가), 가격정보 등을 담고 있는 구매영수증 및 제품의 원산지표시 등을 통해 원산지를 간이하게 확인해 협정세율을 적용합니다.

즉 국제우편물(간이통관 대상물품)의 경우 ‘간이통관신청서’에 협정세율적용 여부 항목을 표시하고, 특송화물의 협정관세 적용물품은 ‘일반 수입신고(간이수입신고 배제)’를 하고, 수입신고서 19번란 원산지증명서 항목 X, 46번란 원산지 국가부호 기재, 50번란 FTA 관세율 구분부호를 기재하는 것으로 협정관세적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간이하게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재물품의 원산지는 물품의 구매처(국가), 가격정보 등을 담고 있는 구매영수증 및 제품의 원산지표시 등을 통해 간이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화 400달러 정도 되는 물품이 미국에서 발송되고 송장(구매영수증)과 제품의 원산지(Made in USA)를 확인하면 한·미 FTA 특혜관세를 적용합니다. 참고로 한·미 FTA에서는 원산지와 관계없이 미국으로부터 특송화물로 반입되는 미화 20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물품과 상용건품은 목록통관 대상(관세 면제)으로 운영합니다[한·미 FTA 제7.7조(특송화물) 참조].

여기서 미화 200달러 이하의 기준은 물품가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배송비는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다만 미국발 특송화물로서 200달러 이하라도 ‘목록통관 배제품목’에 해당하거나, 목록통관시스템상 일부 목록통관이 배제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하지 않음을 주의하기 바랍니다(목록통관이 배제되는 물품의 소재 면세기준 금액은 현행 15만원과 같음)

59. 원산지증명서 관련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2009, 2013.8.21

1. 귀사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되는 품명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품목분류상의 품명과 관련하여 충분히 상세하게 기재되어야 하며, 협정관세적용을 신청하는 수입물품과 동일물품인지 확인되어야 합니다.
 - 하지만 제시된 원산지증명서의 품명 및 수량 등의 정보는 수입물품과 일치하지 않아 동일물품으로 판단하기 곤란합니다.
3. 또한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협정관세는 원산지증명서의 수량만큼만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4. 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서 수량 및 단위는 필수항목은 아니며 협정관세적용 신청물품과 동일 물품인지 확인되는 경우에는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0. 원산지증명서 관련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325, 2014.2.10

1. 귀사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귀사에서 가공공정(감압증류 또는 화학반응)을 통해 생산한 윤활기유를 원재료로 윤활유(2710.19)를 생산한 경우(CASE1)에는 한-미 FTA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할 수 있으며
3. 한-미 FTA 제27010.19호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최소허용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품목번호 2207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61. 원산지증명서 관련 질의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2120, 2013.9.4

1. 귀하의 민원 관련입니다.
2. 한-미 FTA 협정에 따른 원산지 증명시 상품의 ‘수출자’는 ‘수출당사국의 수출자’를 의미하므로 수출자를 제3국 업체로 기재한 경우 형식적 요건을 충족할 수 없으며,
3. 동 협정에서 ‘선적자(Shipper)’가 수출업체 이어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협정의 다른 모든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B/L의 ‘선적자’ 국적과 상관없이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62. 원산지증명서 사본보관 관련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 2016-09-08(접수일자)

질의 : ○ 대상협정 : 한-미 FTA

- 미국에서 자율발급된 원산지 증명서의 원본을 분실하고, 사인된 사본만 보관하고 있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여부
- 기존의 원산지 증명서 서명권자가 퇴사하거나 사정이 있어 다시 사인하거나 증명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원산지 증명서가 제조사의 원본대조필 도장 또는 공증 등의 방법으로 원본과 같음을 인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답변 : 1. 귀하의 민원내용은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사본 보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관대상 원산지증명서 서류는 FTA특례법 시행령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수입자에게 원산지증명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사본 보관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63. 원산지증명서 수입자 기재방법

Q :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의 수입자란에 ‘VARIOUS’로 기재된 경우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018.04.18.)

A : FTA협정적용을 위해서는 협정관세적용 물품과 수입신고 물품의 동일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원산지증명서의 수입자란에 ‘Various’라고 기재되어있다면 원산지증명서의 물품과 협정적용하고자 하는 물품의 동일성 여부 확인이 어려워 인정하기 곤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64. 원산지증명서와 수입신고서의 세번이 다른 경우 협정적용 가능여부

Q : 미국에서 수입하는 물품의 세번이 우리나라 수입세번과 상이한 경우 협정적용 가능한가요? (2018.11.16.)

A : 원산지증명서는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상품이 원산지상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원산지증명서와 수입국 세번 상이시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원산지기준으로 수입국 세번의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여야 협정관세를 적용할수 있으며, 원산지증명서의 원산지기준으로 수입신고서 세번의 원산지기준 충족여부 확인이 안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보완 후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65. 원산지증명서의 세번과 수입신고 세번 상이시 협정관세 적용가능여부

Q : 수출국(미국)과 수입국(우리나라) 세번이 상이하며 원산지증명서의 원산지기준은 PE로 기재되어있고 수입신고서 세번의 원산지기준은 CTH인 경우, 한-미 FTA협정 적용이 가능한가요? (2018.08.16.)

A : 원산지증명서의 원산지기준이 ‘PE’로 기재되고, 수입신고서 세번의 원산지기준이 세번변경기준인 경우 수입국 세번의 원산지기준 충족여부가 원산지증명서로 확인이 가능하므로 협정적용이 가능합니다.

66. 원산지증명서의 수출자란에 비당사국 수출자 정보를 기재한 경우 인정가능여부

Q : 제3국 발행 송장 거래시 미국내 생산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였으나, 원산지증명서상 수출자란에 싱가포르 수출자를 기재하고 생산자란에 미국 생산자를 기재한 경우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 가능한가요? 또한, 이 경우 협정적용신청서상 누구를 수출자로 기재하여야 하나요? (2019.07.03.)

A : 제3국 발행 송장 거래 시에도 협정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원산지증명서 작성에 권한 있는 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가 있으면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원산지증명서 수출자란에 제3국의 수출자가 기재되어있더라도 동 증명서상에 한-미 FTA에 따른 거래당사자인 미국내 생산자와 한국 수입자가 명확하게 기재되어있고, 해당물품의 미국내 생산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한 것이 원산지증명서상으로 확인 가능 하다면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가능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협정적용신청서 작성방법

에서는 수출자의 정보는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정보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3국발행 송장거래인 경우에도 협정적용신청서의 수출자란에는 체약상대국(미국)소재 수출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67. 원산지증명서 인정가능여부

Q : 미국에서 제품 수입시 인보이스에 “Made in USA“가 기재되어있는 경우 협정적용 가능한가요? (2019.10.07.)

A : 한-미FTA협정 적용을 위해서는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이

- ① 한-미 FTA 협정관세 적용대상 물품일 것
- ② 동 협정에서 규정하는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 ③ 동 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작성한 원산지증명서 구비
- ④ 직접운송원칙 충족하여 협정관세 적용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산지증명서에는 다음의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① 필요한 경우 연락처 또는 그 밖의 신원확인 정보를 포함하여, 증명인의 성명
- ② 상품의 수입자(아는 경우에 한함)
- ③ 상품의 수출자(생산자와 다른 경우에 한한다)
- ④ 상품의 생산자(아는 경우에 한한다)
- ⑤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따른 품목분류와 품명
- ⑥ 상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증명하는 정보
- ⑦ 증명일, 그리고
- ⑧ 포괄증명의 경우 증명유효기간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에는 협정에서 정한 상기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원산지상품임을 증명하는 정보는 ‘Made in USA’가 아닌 동 협정에 따른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68. 원산지증명서 인정여부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235, 2014.3.4.

1.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제6.15조의 수출자는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위한 항목으로서 수출당사국의 수출자를 의미하는 것인 바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9 서식을 사용하는 경우에 수출자란에 제3국에 소재하는 송장발행인을 기재한 것은 잘못 작성한 것입니다.
3. 하지만 동 협정에서 수출자는 생산자와 다른 경우에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귀사의 질의와 같이 수출당사국의 생산자가 원산지를 증명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제5항의 원산지증명서 기재사항의 일부에 오류 또는 흠이 있으나 원산지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69. 원산지증명서 작성 관련

질의 :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관련, 제3국 송장거래(미국-인도네시아-한국)에서 수출당사국인 미국의 생산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한 경우

- (질문1) 원산지증명서의 수출자가 인도네시아의 업체로 기재되면 원산지증명서의 형식적요건에 충족하는지
- (질문2) C/O에 ‘제3국 발행송장’임을 표시해야 하는지
- (질문3) 상기 거래에서 미국에서 발행된 B/L에 선적자(Shipper)가 인도네시아의 업체가 표시된 경우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한지

답변 : 미합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 증명시 상품의 ‘수출자’는 ‘수출당사국의 수출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 하지만 귀 법인의 질문과 같이 수출당사국의 생산자가 원산지를 증명하고, 원산지증명된 물품과 수입물품과의 동일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 원산지증명서의 ‘수출자’에 ‘제3국 송장발행인’을 기재한 경우에도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으며
- ‘제3국 송장’ 거래인 경우 원산지증명서에 ‘제3국 발행송장’임을 표시하지 않아도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수출당사국의 업체가 물품을 생산하여 수출하고 그 업체가 원산지를 증명한 경우에는
 - 선하증권의 ‘선적자’가 수출당사국의 수출업체가 아닌 제3국 송장발행인이어도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70. 원산지증명서 작성시 ‘수입자’기재 방법

Q : 제3국 발행 송장 거래로 미국의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 발급 당시 수입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원산지증명서상 ‘수입자’ 정보를 필수로 기재하여야 하나요? (2017.02.27.)

A : 「한-미 FTA 협정문 제6.15조 2항」에 의거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해야하는 항목은 아래 8가지입니다. 따라서, 동 규정에 따라 수입자 정보는 알고 있는 경우에 한해 기재하시면 됨을 알려드립니다.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필수기재사항>① 증명인의 성명(필요한 경우 연락처 또는 그 밖의 신원확인 정보 포함)② 상품의 수입자(아는 경우에 한한다.)③ 상품의 수출자(생산자와 다른 경우에 한한다.)④ 상품의 생산자(아는 경우에 한한다.)⑤ 물품의 HS품목번호 및 품명⑥ 상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증명하는 정보⑦ 증명일자⑧ 증명서 유효기간(포괄증명의 경우)

71. 원산지증명서 제출 방법

Q : 한-미 FTA 적용을 위해 원산지증명서는 언제, 누구에게 제출해야하나요? (2019.01.28.)

A : 한-미 FTA에 따른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 수입자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동 협정에 따라 작성한 원산지증명서를 갖추고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협정관세 적용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후 1년 이내에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와 원산지증명서류, 경정청구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협정관세 사후 적용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72. 원산지 포괄증명 관련

질의 : 아래와 같이 증명일자가 포괄증명기간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한지

<사례1> 증명일자가 포괄증명기간의 종료일 이후인 경우

- 포괄증명기간 : 2012.1.1 ~ 2012.12.31., 증명일자 : 2013.2.1.

<사례2> 포괄증명기간 내에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수정하여 재발급하는 경우

- 포괄증명기간 : 2012.1.1 ~ 2012.12.31., 최초 증명일자 : 2012.12.1., 재발급 증명일자 : 2013.2.1
- 재발급 사유 : 형식요건 관련 수정 (예: Fax No, HS code 수정 등)

답변 : 미합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서 포괄원산지증명서의 포괄증명 유효기간 시작일이 증명일자보다 앞서는 경우에 해당 수입물품에 대해 협정관세 적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법인이 질문한 바와 같이, 포괄증명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소급하여 증명한 원산지증명서와 포괄증명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수정하여 다시 증명한 원산지증명서로도 해당 수입물품에 대해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3. 원산지 포괄증명(증명일자 경과) 관련

질의 : 한-미 FTA에서 포괄증명은 ‘서면 또는 전자 증명에 명시된 기간으로서 증명일로부터 12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이내에 동일상품의 복수 선적’에 적용되도록 규정

- 아래와 같이 증명일자가 포괄증명기간 종료이후인 경우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한지

- 포괄증명기간 : 2012.1.1 ~ 2012.12.31., 증명일자 : 2013.2.1

답변 : 미합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서 포괄증명 시작일이 증명일자보다 앞서는 경우에도 해당 수입물품에 대해 협정관세 적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법인이 질문한 바와 같이, 포괄증명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소급하여 증명한 원산지증명서로 해당 수입물품에 대해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4. 원산지 포괄증명서 관련(증명기간)

질의 : 한-미 FTA 원산지포괄증명서가 아래와 같이 기재된 경우,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물품의 범위를 질의
○ 포괄증명기간 : 2013.1.1 ~ 2013.12.31., 작 성 일 자 : 2012.11.15

답변 : 미합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제6.15조의 규정에 따라 수출자가 발급한 포괄원산지증명서의 작성일이 증명기간의 시작일보다 앞서는 경우, 증명기간 안에 선적된 물품은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75. 원산지 확인 관련

질의 : ① C/O 포괄증명기간이 협정발표일인 2012년 3월 15일 이전에 설정된 경우, 물품선적일이 3월 15일 이전이고 신고일이 3월 15일 이후라면 적용 가능한지?
② C/O 상의 포괄증명기간에 단순 오타가 발생한 경우(예: 3/15/2012~3/14/2012) 인정 가능한지?
③ C/O에 해당 물품이 한미 FTA 적용물품이라는 명시적 문구가 없으나 수입자가 한국회사로 명기되어 한국으로 수출되는 물품임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원산지 증명서는 유효한지?
④ C/O에 해당물품이 한미FTA 적용물품이라는 명시적 문구가 없고, 수입자도 특정되지 않은 경우, 해당 원산지 증명서는 유효한지?
⑤ C/O에 증명인의 연락처나 서명이 없으나 수출자가 기재되어 있고 수출자의 DUNS NO 등이 병기되어 있어 증명인의 신용도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원산지 증명서는 유효한지?
⑥ C/O에서 협정6.15조(특혜관세대우 신청)의 8가지 항목을 모두 확인 할 수 있으나 해당물품이 한-미 FTA 적용물품이라는 명시적 문구가 없으며 NAFTA서식을 사용한 경우, 해당 원산지 증명서는 유효한지?
⑦ 원산지 물품과 비원산지 물품이 하나의 C/O에 혼재되어 작성된 경우 해당 원산지 증명서는 유효한지?
⑧ C/O에 PREFERENCE CRITERIA “B”. “NE” 등 타 FTA에서 사용하는 문구가 들어있는 경우 해당 원산지 증명서는 유효한지?

답변 : 한-미 FTA의 경우 포괄원산지증명서의 증명기간 시작일이 협정발효일 이전인 경우에도 유효하나 포괄 증명기간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FTA특례시행규칙 제16조5항에 따라 보정대상에 해당합니다.
한-미 FTA의 원산지증명서에는 증명인의 성명, 연락처, 원산지 상품임을 증명하는 정보(표현) 등 8가지 필수기재 항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한-미FTA는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다른 협정의 서식을 사용하여 원산지증명을 할 수 있으나, 증명인의 성명, 연락처, 원산지 상품임을 증명하는 정보(표현) 등 8가지 필수기재 항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원산지제품과 비원산지제품이 혼재되어 수입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에 원산지제품과 비원산지제품이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 원산지제품에 대해 특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76. 원산지확인(멕시코산 라임) 관련

질의 : 한-미 FTA에서, 멕시코산 라임을 미국으로 수입하여 재포장한 후 한국으로 수입할 경우 원산지 제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답변 : 멕시코 등 제3국산 라임을 미국에서 재포장하는 경우 미국산으로 원산지가 인정되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언급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원산지 위반행위 단속에 활용하도록 담당부서에 통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77. 이사물품의 원산지증명 관련

질의 : 2005년 11월부터 운행하던 자동차(혼다 오디세이)를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 한-미 FTA 협정관세를 적용

받기 위한 원산지 증명방법 및 절차 등 문의

답변 : 한-미 FTA 협정에서는 동 협정 제6.15조에 따라 수출자, 생산자뿐만 아니라 수입자도 자율적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원산지 증명서 양식은 별도의 정형화된 서식 없이 협정에서 정한 필수 기재 사항이 기재된 서류로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 국내법령에 권고서식을 만들어 업체가 쉽게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화 1,000불을 초과하는 물품의 수입자가 한-미 FTA 협정관세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해당물품의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 유효한 원산지증명서에 근거하여 작성한 특혜관세 적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편, 수입자가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상품이 특혜관세 대우의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기록을 수입신고수리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당해 수입물품이 원산지제품인 것과 운송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서류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78. 이사물품인 차량의 협정적용시 구비서류는

질의 : 미국 유학 중에 구입하여 사용하던 차량을 이삿집으로 한국에 들여올 때 관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협정 상 어떤 서류를 구비해야 하나요?

답변 : 미국에서 물품 수입 시 협정적용을 위해서는 ①한-미 FTA에서 정한 원산지기준 충족 ②생산자, 수출자 또는 수입자가 동 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작성한 원산지증명서 구비 ③직접운송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 작성시 당해 수입물품이 원산지제품임을 원산지증명서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하고, 수입물품이 제3국을 경유하여 우리나라로 운송되는 경우, 제3국에서 제조, 가공 등 협정에서 정한 가공 이외의 공정을 거치지 않고 경유국 관세당국의 통제하에 있었다는 증빙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한-미 FTA 협정적용을 위한 원산지증명서는 생산자, 수출자, 수입자가 우리나라로 수입하는 물품이 원산지상품임을 확인 후 다음의 항목들을 기재하여 작성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① 증명인의 성명(필요한 경우 연락처 또는 그 밖의 신원확인 정보 포함)
- ② 상품의 수입자(아는경우에 한한다.)
- ③ 상품의 수출자(생산자와 다른 경우에 한한다.)
- ④ 상품의 생산자(아는 경우에 한한다.)
- ⑤ 물품의 HS품목번호 및 품명
- ⑥ 상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증명하는 정보
- ⑦ 증명일자
- ⑧ 증명서 유효기간(포괄증명의 경우)

79. 이사차량 수입시 협정관세 적용을 위한 구비서류

Q : 미국에서 생산된 차량을 ‘이사차량’으로 반입시 미국산임은 자동차의 VIN NUMBER로 확인 가능한 경우 협정관세 적용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2018.10.31.)

A : 한-미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됩니다. ① 한-미 FTA에서 규정하는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② 미국내에 소재하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작성한 원산지증명서 구비* 수입자도 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작성 가능하나 당해 수입물품이 원산지제품인 것과 운송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서류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③ 직접운송원칙 충족 ④ 협정관세 적용 신청 그러나, 자동차의 VIN Number(차대번호)는 제조국, 제조사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나, 해당물품이 한-미 FTA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 원산지 물품인지 여부의 확인이 곤란하여 원산지증명서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80. 이사차량 수입시 협정관세 적용을 위한 구비서류

Q : 미국에서 생산된 차량을 ‘이사차량’으로 반입시 자동차등록증 상의 ‘VIN CODE’를 근거로 협정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2017.08.30.)

A : 한-미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됩니다. ① 한-미 FTA에서 규정하는

원산지결정기준 충족② 미국내에 소재하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작성한 원산지증명서 구비* 수입자도 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작성 가능합니다. 다만 당해 수입물품이 원산지제품인 것과 운송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서류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③ 직접운송원칙 충족④ 협정관세 적용 신청 자동차의 VIN CODE(차대번호)는 제조국, 제조사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나, 해당물품이 한-미 FTA 상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원산지 물품인지 여부의 확인이 곤란하여 원산지증명서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81. 이산화물차량의 협정 적용 가능 여부

Q : 미국산 자동차가 이산화물 조건을 충족한다면 한-미FTA 협정적용이 가능한가요? (2017.07.10.)

A : 한-미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됩니다.① 한-미 FTA에서 규정하는 원산지결정기준 충족② 미국내에 소재하는 수출자? 생산자가 작성한 원산지증명서 구비* 수입자도 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작성이 가능하나 당해 수입물품이 원산지제품임을 서류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③ 직접운송원칙 충족④ 협정관세 적용 신청

82. 자유무역지역(FTZ) 공정수행시 적용 여부

질의 : 미국에서 국내의 자유무역지역(FTZ)에 반입한 원산지제품(정수기)과 비원산지제품으로 아래와 같은 공정을 수행한 후 재포장된 경우, 재포장된 제품 전체가 원산지상품인지 여부 및 협정관세 적용대상인지 여부

답변 : 한-미 FTA에 따라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협정관세는 계약당사국에서 생산이 완료된 원산지제품이 우리나라의 영역으로 수입되는 때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법인의 질문과 같이 우리나라의 영역으로 수입된 비원산지 제품은 우리나라의 자유무역지역에서 원산지제품과 함께 포장된 경우라도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83. 자유무역지역에서 보수작업한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여부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2481, 2013-10-23

질의 : 국내의 자유무역지역으로 미국산 제품을 반입 후 라벨 부착 등 보수작업을 실시한 경우 한-미 FTA 협정관세 적용 가능 여부 (라벨은 미국에서 제작되어 송부됨)

답변 : 1.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자유무역지역에서 수입될 물품에 대해 보수작업을 하는 경우 관세법 제158조에 따라 외국물품은 수입될 물품의 보수작업의 재료로 사용할 수 없는 바

○ 질의와 같이 외국물품인 라벨을 사용하여 보수작업하는 경우에는 수입물품에 미국과의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84. 자유무역지역에서 보수작업한 물품의 협정관세 적용 여부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241, 2014.2.4.

1.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제품이 우리나라의 자유무역지역에서 내국물품을 사용하여 관세법 제158조에 따른 보수작업이 수행된 경우에는 수입물품의 성질이 변하지 않은 것인 바 원산지 제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질의와 같이 내국물품인 라벨 등의 보수작업 재료를 사용하여 보수작업하는 경우에는 수입물품에 미국과의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이 경우 수입물품의 원산지증명서와 직접운송확인서류 및 재포장에 따라 동일성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가 세관장에게 제출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85. 자유무역지역에서 재포장한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 여부 질의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 2013-02-21(회신일자)

질의 : ○ 미국에서 국내의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한 제품(정수기)에 대해 재포장 공정을 수행한 후 수입신고되는 경우,

- (질문1) 미국에서 반입된 물품(미완성정수기)에 대해 한-미 FTA 협정관세 적용여부

- (질문2) 만약 적용된다면 과세가격은 반입신고가격인지, 최종 수입물품가격을 안분계산한 가격인지

※ 종전 재포장된 물품 전체에 대해 FTA협정관세 적용이 불가함을 회신하자, 원산지가 미국인 물품(미국에서 반입된 미완성 정수기)에 대해 협정관세적용여부를 질의

답변 : 과세물건이 수출당사국인 미합중국 원산지제품인 경우에는 동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는 관세법 제16조(과세물건 확정 시)와 제17조(적용법령)에 따라 수입신고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대해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것이며, 같은 법 제50조(세율 적용의 우선순위)에 따라 그 과세물건에 적용할 세율이 정해지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86. 재수입물품의 협정적용 가능여부

Q :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 미국으로 수출한 물품이 추가가공없이 그대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경우 협정관세적용이 가능한가요? (2018.06.28.)

A : 자유무역협정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법률에서는 협정관세는 계약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철폐하거나 세율을 연차적으로 인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므로 원산지가 한국인 수입물품은 한-미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87. 제0910.30호의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Q : 제0910.90-000호의 물품을 수입 후 세척, 삶기, 건조, 분쇄, 분리, 포장의 작업을 수행하여 동일 소호의 제품으로 제조한 경우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나요? (2018.03.28.)

A : 파쇄, 분쇄, 분말화 되지 않은 HS 0910.30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파쇄, 분쇄, 분말화 되는 제조공정을 거쳐 동일한 소호의 파쇄, 분쇄, 분말화 된 물품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한-미 FTA협정에서 정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합니다.

88. 제1901.20호의 원산지기준 해석방법

Q : 제1901.20호의 원산지기준에서 괄호안의 제외 세번 해석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19.08.12.)

<제1901.20호의 원산지기준>

1. 버터지방의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25%를 초과하는 것(소매용이 아닌 것으로 한정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1006호의 것과 제1102.90호, 제1103.19호, 제1103.20호, 제1104.30호의 쌀 제품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4류의 비원산지 낙농품을 함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

2.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1006호의 것과 제1102.90호, 제1103.19호, 제1104.19호, 제1104.29호 및 제1104.30호의 쌀 제품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A : 한-미 FTA 제1901.20호의 원산지기준 중 기타의 원산지기준은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1006호의 것과 제1102.90호, 제1103.19호, 제1103.20호, 제1104.30호의 쌀 제품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이며,이는 다른 류에 해당하는 원재료는 비원산지재료를 사용할 수 있으나, 괄호안에 해당하는 세번의 원재료는 원산지재료를 사용하여야만 동 세번의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89. 제 3901호 내지 3915호의 원산지 기준

한-미 FTA 제 3901호 내지 제3915호의 원산지결정기준의 단서조항 ‘제3901호 내지 제3915호에 해당하는 원산지폴리머 중량이 전체 폴리머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라는 의미는 원료로 사용되는 전체 폴리머 중에서 제3901호 내지 제3915호의 역내산 원산지폴리머 함량이 50%이상을 구성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역내산(미국산과 국내산) 폴리머만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한 경우 원산지기준에 충족됨을 알려드립니다.

90. 제3901호 내지 제3915호의 원산지기준 해석

Q : 제3901호 내지 제3915호의 원산지기준에서 단서조항의 해석방법 문의드립니다. (2019.06.03.)

<제3901호 내지 제3915호의 원산지기준>다른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3901호 내지 제3915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제3901호 내지 제3915호에 해당하는 원산지 구성중합체가 중량으로 전체 구성중합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A : 한-미 FTA 제3901호 내지 제3915호의 원산지기준 단서조항은 동 호의 제품을 생산할 때 재료로 제3901호 내지 제3915호에 해당하는 구성중합체가 사용된 경우에는 ‘제품 생산에 사용된 전체 구성중합체의 중량에서 HS3901호~HS3915호에 해당하는 원산지 구성중합체의 중량이 50%이상이어야 한다.’ 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91. 제3906.90호의 원산지결정기준 해석

Q : 제3906.90호 제품생산에 제3901호 내지 제3915호에 해당하는 원재료가 사용되지 않는 경우 단서조항 적용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2018.03.09.)

[hs 3906.90호의원산지결정기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3901호부터 제3915호까지의 원산지 물품인 폴리머가 폴리머 전체 중량의 50%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A : 한-미 FTA 원산지 결정기준의 제3906.90호의 단서조항인 ‘다만, 제3901호부터 제3915호까지의 원산지 물품인 폴리머가 폴리머 전체 중량의 50%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는 제3906.90호의 제품을 생산할 때 원재료로 제3901호부터 제3915호에 해당하는 구성중합체가 사용된 경우 단서조항이 적용됩니다.

92. 제3907호의 원산지결정기준 해석

Q : 제3907호의 원산지결정기준 ‘다만’ 이하의 단서조항의 해석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18.10.11.)

<제3907호의 원산지결정기준>

다른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3901호부터 제3915호까지의 원산지물품인 폴리머가 폴리머 전체 중량의 50%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A : 제3907호의 원산지 기준 중 단서조항은 제3907호의 제품생산에 사용된 전체폴리머의 중량 중 제3901호부터 제3915호까지의 원산지 폴리머의 중량이 50%이상이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 가능합니다.

93. 제5903.90호 원산지기준 해석 방법

Q : 제5903.90호의 경우 원산지기준에서 단서조항은 어떻게 해석하여야 하나요? (2019.06.07.)

<제5903.90호의 원산지기준>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11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8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7호부터 제5408까지 및 제5512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A : 제5903호의 제품생산에 단서조항에 규정된 세번의 원재료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원산지재료를 사용하여야

원산지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94. 제6104.12호 원산지 결정기준

한-미 FTA에서 정한 섬유·의류의 원산지결정기준은 협정문 부속서 4-가(섬유 또는 의류에 대한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에 규정되어 있으며, HS6104.42(여자 또는 소녀용의 드레스)의 원산지결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6104.4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② 다만, 아래의 호 또는 소호로부터의 변경은 제외함

제5106호 ~ 제5113호, 제5204호 ~ 제5212호, 제5307호 ~ 제5308호, 제5310호 ~ 제5311호, 제5401호 ~ 제5402호, 제5403.20호, 제5403.33호 ~ 제5403.39호, 제5403.42호 ~ 제5408호, 제5508호 ~ 제5516호, 제6001호 ~ 제6006호

③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 즉, 제품 생산시 61류 이외의 류에서 6104.42호로 변경되어야 하며, ②항에 규정된 재료를 사용한 것은 인정되지 않으며, 재단(또는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원산지제품으로 인정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②항에 규정된 재료인 5106호 ~ 5113호는 양모사, 섬수모사, 조수모사 및 식물로서, 동 재료는 원산지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는 뜻이므로 동 재료와 관련하여서는 'Yarn Forward Rule'이 적용되는 것이며, ②항에 규정된 재료가 아닌 재료(예: 50류의 견사 및 견직물)는 비원산지재료를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95. 제7308.90호의 원산지결정기준 해석

Q : 제7308.90호의 원산지결정기준 해석시 제7216호의 형강이 한국산이어야 하나요? (2018.10.31.)

<제7308.90호 원산지결정기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7216호의 형강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공정을 거쳐 생산된 것은 제외한다. 가. 개별적 또는 복합적으로 수행된 드릴링, 천공, 닳칭, 절단, 캠버링 또는 스위핑공정 나. 혼합구조물을 위한 부착공정 또는 용접공정 다. 취급목적을 위한 부착공정 라. 에치형강(H형강) 또는 아이형강(I형강)의 양 플랜지 안쪽 면 사이의 크기보다 크지아니한 것에 한한다. 마. 도료, 아연도금 또는 기타 방법의 도정공정, 또는 바. 기동용으로 적합한 물품 제작을 위하여 개별적으로 또는 드릴링, 천공, 닳칭 또는 절단 공정과 결합하여 보강제 없이 단순한 받침용 강판을 추가하는 공정

A : 제7308.90호의 제품생산시 비원산지재료인 제7216호의 형강을 사용할 수 있으나, 제7216호의 비원산지 형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7308.90호에 규정된 공정이 수행된다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가능합니다.

96. 제8411.81호의 원산지기준의 해석 방법

Q : 제8411.81호의 원산지기준 해석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17.02.10.)

<제8411.11 내지 82호의 원산지결정기준> 이 상품군 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11.11호 내지 제8411.8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A : 제8411.81호의 원산지결정기준은 'HS8411.81호를 제외한 다른 소호의 물품에서 HS8411.81호로 변경된 것'으로 6단위 세번변경기준 해석됩니다.

97. 제8414.80호의 원산지기준의 해석 방법 제8414.80호의 원산지기준의 해석 방법

Q : 제8414.80호의 원산지기준 해석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17.02.10.)

<제8414.10 내지 80호의 원산지결정기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14.10호 내지 제8414.80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A : 제8414.80호의 원산지결정기준은 'HS8414호를 제외한 다른 호의 물품에서 HS8414.80호로 변경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98. 제8483.50호의 원산지결정기준 해석

Q : 제8483.50호의 원산지결정기준 해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17.06.26.)

<제8483.50호 원산지결정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품목번호 8482.10부터 8482.80까지, 8482.99, 8483.10부터 8483.40까지, 8483.60 및 8483.90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2. 품목번호 8482.10부터 8482.80까지, 8482.99, 8483.10부터 8483.40까지, 8483.60 또는 8483.90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집적법의 경우 40%, 공제법의 경우 5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A : HS 8483.50호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원산지결정기준(1)은 비원산지재료에 대해 6단위 세번변경이 이루어질 것, 다만 특정 세번*으로 분류된 재료는 원산지재료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 8482.10~8482.80, 8482.99, 8483.10~8483.40, 8483.60, 8483.90 원산지결정기준(2)는 (1)에서 원산지재료로 사용하도록 규정된 특정 세번이 원산지가 아닌 비원산지 재료로서 제품생산에 사용될 경우 상품의 조정 가치(AV)에 포함된 모든 원산지재료의 가치를 기초로 한 방법(집적법)에 따른 역내가치포함 비율이 40% 이상 또는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를 기초로 한 방법(공제법)에 따른 역내가치포함 비율 50% 이상일 것을 의미합니다.

99. 제3국 경유물품 관련

질의 : 아래 'Licence' 가 한-미 FTA 운송원칙을 충족하는 유효한 서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운송과정 : 미국(생산·제조) → 싱가포르(○○○) → 한국(○○○)

답변 : 한-미 FTA에서 상품이 비당사국을 경유한 경우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공정(하역, 재선적, 보존 및 운송 공정)만이 있었음과 경유국에서 세관당국의 통제하에 머물러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귀사가 문의한 서류는 싱가포르의 보세창고에 대한 싱가포르 세관당국의 Licence로 추정되는 바, 동 서류를 포함하여 아래와 같은 서류 등으로 수출국에서 수출한 물품과 동일한 물품이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동 서류 등 귀사가 제출하는 서류의 진위여부와 정확성 등에 관한 사항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원산지에 관한 조사' 업무가 수행될 때 확인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① [미국 → 싱가포르] 선하증권, 송품장, C/O(미국 수출자 발행)
- ② [싱가포르] 보세창고의 반출입증명서 또는 비조작증명서
- ③ [싱가포르 → 한국] 선하증권, 송품장 등 선적서류. 끝.

100. 제3국 경유물품 관련

질의 : 아래 서류가 한-미 FTA 운송원칙을 충족하는 서류인지

* 운송과정 : 미국(생산·제조) → 캐나다 → 한국

캐나다 지역을 통과하는 경우 보세상태로 운송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수출자와 운송인이 작성하여 캐나다세관에 제출하는 서류

답변 : 한-미 FTA에서 상품이 비당사국을 경유한 경우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공정(하역, 재선적, 보존 및 운송 공정)만이 있었음과 경유국에서 세관당국의 통제하에 머물러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귀사의 설명과 같이 귀사가 제출한 서류가 수출국(미국)에서 경유국(캐나다)을 통과할 때 보세운송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인 경우, 동 서류와 원산지증명서 및 경유국(캐나다)과 우리나라와의 선하증권, 송품장 등의 선적서류로 수

출국에서 수출한 물품과 동일한 물품이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 협정에 따른 협정 관세 적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동 서류 등 귀사가 제출하는 서류의 진위여부와 정확성 등에 관한 사항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원산지에 관한 조사’ 업무가 수행될 때 확인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01. 제3국 경유물품이 운송원칙을 충족하는 서류인지

한-미 FTA에서 상품이 비당사국을 경유한 경우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공정(하역, 재선적, 보존 및 운송공정)만이 있었음과 경유국에서 세관당국의 통제하에 머물러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귀사가 제시한 서류와 수입물품에 동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를 적용하기 위해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수입신고서류로 수출국에서 수출한 원산지제품과 동일한 물품이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동 서류 등 귀사가 제출하는 서류의 진위여부와 정확성 등에 관한 사항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원산지에 관한 조사’ 업무가 수행될 때 확인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02. 제3국 경유물품 입증관련

질의 : (1) 중국을 경유하여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한-미 FTA 제6.13조(통과 및 환적) 규정을 아래의 서류로 입증할 수 있는지

- ① [미국 → 중국] 선하증권, 송품장, C/O(미국 수출자 발행)
- ② [중국] 물류센터(보세창고)의 반출입증명서
- ③ [중국 → 한국] 선하증권, 송품장 등 선적서류

(2) 경유국의 세관통제하에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무엇인지

답변 : 한-미 FTA에서 비당사국을 경유하여 물품이 수입되는 경우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공정만이 수행되었음과 경유국에서 세관당국의 통제하에 머물러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하는 바, 귀 법인이 문의한 아래의 서류로 미국에서 수출한 물품과 동일한 물품이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 협정에 따른 협정 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 ① [미국 → 중국] 선하증권, 송품장, C/O(미국 수출자 발행)
- ② [중국] 물류센터(보세창고)의 반출입증명서
- ③ [중국 → 한국] 선하증권, 송품장 등 선적서류

또한 경유국의 세관통제하에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는 경유국의 세관당국이 발행하는 환적증명서(싱가폴의 경우 Certificate of non-manipulation), 보세창고에서 발행하는 보관증명서 등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03. 제3국 경유 수입물품 관련

질의 : 한-미 FTA 관련, 제3국의 물류창고에 보관하였던 물품을 우리나라로 수입하는 경우, 협정관세 적용여부 및 운송원칙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

답변 : 한-미 FTA 제6.13조(통과 및 환적)에 따라 비당사국에서 보관하던 원산지상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협정에서 정하는 아래의 사항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산지제품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 상품이 하역·재선적 또는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거나 당사국의 영역으로 운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공정 이외에, 양 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이후의 생산이나 그 밖의 어떠한 공정도 거치는 경우
- 그 상품이 비당사국의 영역에서 세관당국의 통제하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는 경우
이 때 경유국 세관당국에서 ‘단순경유’임을 확인하여 발행한 서류 등으로 상기 사항이 입증되고, 원산

지증명서와 무역운송서류(선하증권 등)에 의해 수출국에서 수출한 물품과 동일한 물품이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104. 제3국 발행 송장거래시 B/L상 송하인

Q : 제3국 발행 송장거래에서 미국에서 발행한 B/L에 일본 업체가 ‘SHIPPER’로 기재된 경우 협정관세 적용 가능한가요? (2017.04.07.)

A : B/L상 ‘SHIPPER’는 ‘화물을 선박으로 운송하는 자’를 의미하며 한-미 FTA에서는 ‘SHIPPER’가 계약상대국의 ‘수출자’이어야 하는지는 규정하고 않으므로 협정의 다른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B/L의 ‘SHIPPER’국적과 상관없이 물품을 수출하거나 생산한 자가 수출당사국 업체이고 동 업체가 원산지를 증명하는 경우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105. 제3국 발행 송장거래시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 여부

Q : 제3국 발행 송장 거래에서 미국에 소재한 생산자가 원산지증명서의 수출자란에 싱가포르 수출자를 기재하고 생산자란에 미국 생산자를 기재하여 작성 및 서명한 경우 한-미FTA에 따른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가능한가요? (2018.09.11.)

A : 제3국 발행 송장 거래 시에도 협정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원산지증명서 작성에 권한 있는 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가 있으면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원산지증명서 수출자란에 제3국의 수출자가 기재되어있더라도 동 증명서상에 한-미 FTA에 따른 거래당사자인 미국내 생산자와 우리나라 수입자가 명확하게 기재되어있고, 해당물품의 미국내 생산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한 것이 원산지증명서상으로 확인 가능하다면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가능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06. 제3국 발행 송장 거래에서 부가가치 계산에 적용되는 조정가격 산정방법

Q : 제3국 발행 송장 거래에서 부가가치기준 계산시 조정가격을 제3국(수출국)에서 발생한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해야하는지 또는 계약상대국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019.10.21.)

A : 제3국발행송장거래의 경우에도 한-미 FTA 역내가가치포함비율 계산을 위한 조정가치 산정시에는 제3국에서 발생한 조정가치가 아닌 계약상대국 영역내에서 발생한 조정가치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107. 제3국 발행 송품장상 수출당사국의 수출자 정보 기재 여부

Q : 제3국 발행 송품장에 수출당사국의 수출자 정보를 기재해야 하나요? (2017.10.25.)

A : 제3국 발행 송장 거래 시에도 협정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원산지증명서 작성에 권한 있는 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가 있으면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제3국 발행 송장에 ‘원산지증명서 작성자 정보’ 기재 여부는 송품장 작성자가 스스로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108. 제3국송장 거래 및 통과, 환적운송 관련

질의 : 거래관계 : 미국(수출자) → 홍콩(중개인) → 한국 (수입자)

- 운송관계 : 미국(출항) → 중국(보세구역장치) → 한국(입항)

- 통과·환적 입증서류 : 중국 심천세관의 반출입서류 사본

- 원산지증명서 : 미국 생산자가 발행

⇒ 상기 무역관계에서 협정상

- ① 수출자·선적자의 당사자요건 해당여부 ② 환적요건 해당여부 및 통과·환적 입증서류 인정여부 ③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여부

답변 : 한-미 EU FTA 제1.4조(정의) ‘영역’ 조항 및 제2.1조(적용범위)에 따라 미국의 기업이 수출한 물품을 협정 비당사국에서 송품장이 다시 발행되는 무역거래를 통해 한국의 기업이 수입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며, 이 경우 질의와 같이 수출국인 미국에 소재하는 수출자나 생산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는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됩니다. 또한 동 협정 제6.13조(통과 및 환적)에 따라 수출물품이 수입국으로 직접운송되지 않더라도 협정에서 정하는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원산지제품으로 인정됩니다.

그 상품이 하역·재선적 또는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거나 당사국의 영역으로 운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공정 이외에, 양 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이후의 생산이나 그 밖의 어떠한 공정도 거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서류

그 상품이 비당사국의 영역에서 세관당국의 통제하에 머물러 있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따라서 귀사의 질의와 같이 미국에서 수출한 물품을 중국 자유무역지역 보세창고에서 보관하였다가 우리나라로 그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중국의 세관에서 발행하는 반출입서류(원본), 수출국인 미국의 생산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 및 무역운송서류(선하증권 등)에 의해 미국에서 수출한 물품과 동일한 물품이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109. 제3국에서 수리한 물품의 협정관세적용 가능 여부

Q : 우리나라에서 수리목적으로 미국으로 수출하였으나 미국에서 수리하지 못하고 제3국에서 수리 후 미국을 통해 우리나라로 재수입되는 경우한-미FTA 제2.6조(수리 또는 개조 후 재반입되는 상품)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017.11.06.)

A : 한-미 FTA 제2.6조는 계약상대국에서 수리 또는 개조 후 재반입되는 상품에 대한 관세 면제 규정으로서 제3국에서 수리 후 미국을 통해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경우에는 한-미 FTA 제2.6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10. 제3국에서 수입통관된 물품의 협정관세 적용가능여부

Q : 미국에서 선적된 물품이 중국(경유지)에서 수입통관하여 창고에 보관되었다가 우리나라로 송부되는 경우 한-미 FTA 협정이 적용가능한가요? (2018.11.29.)

A : 미국에서 선적된 물품이 중국에서 수입통관되었다가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경우 협정관세 적용이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111. 제3국이 수입자로 기재된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

Q : 미국(수출국)에서 싱가포르(경유국)를 경유하여 우리나라(수입국)로 수입시 원산지증명서의 수입자란에 싱가포르 업체가 기재된 경우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되나요? (2018.01.25.)

A : 한-미 FTA 협정에서는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요기재 항목을 모두 기재한 경우라면 해당 원산지증명서를 인정하고 있으며, 수입자 항목은 아는 경우에 한해 작성하며 모르는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아도 유효합니다. 다만, 작성하는 경우에는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수입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한-미 FTA에서 수입자는 ‘계약상대국의 물품을 자국영역으로 수입하여 해당 물품의 FTA 특혜관세를 세관당국에 신청할 수 있는 자’를 의미하므로, 원산지증명서의 수입자 란에는 대한민국의 수입자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112. 중고자동차 협정관세 적용 관련

질의 : 한-미 FTA 관련, 중고자동차 수입 시 면세되는 세금은 어떤 것인지?

답변 : 한-미 FTA 협정을 통하여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품목별로 협정세율과 원산지 결정기준이 달라집니다. 또한 질의하신 물품이 관세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산지 결정기준 및 직접운송 요건 등 관련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113. 직구한 1천불 이하 맥주에 Torrance, CA 라고 표기된 경우 협정적용 가능 여부

질의 : 미국에서 맥주를 직구하였는데 1000\$ 이하이고 물품에 Torrance, CA 라고 표시된 경우 원산지증명서 제출 없이 협정 적용 가능한가요?

답변 : “Torrance, CA” 는 국가명이 아닌 행정구역명을 표시한 것으로 보이며, 동 지침에서 정하는 미국에서 생산된 것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인정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원산지 확인을 위해서는 구매영수증 등 추가적인 입증서류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4. 직접운송 충족여부

미국이 원산지인 물품이 제3국의 보세창고에 보관된 후 다시 한국으로 운송된 경우 한-미 FTA 제6.13(통과 및 환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협정관세 적용 가능, 환적증명서(Certificate of non-manipulation)의 발행과 관련된 사항은 싱가포르 관세당국이 판단해야 할 사항임. 연결 원산지증명서(Back -to back preferential C/O)는 한-미 FTA에서 채택하고 있지 않으므로 인정되지 않음

115. 직접운송 충족여부

Q : 멕시코에서 멕시코산 제품 선적 후 출발→ 미국을 경유하여 미국에서 협정적용을 받기위한 미국산 제품을 선적하여 → 우리나라로 운송된 경우 직접운송요건을 충족가능한가요? (2017.04.17.)

A : 한-미 FTA 원산지 제품이 비당사국의 영역을 통과하거나 환적이 발생하는 경우 협정문 제6.13조(통과 및 환적) 규정에 따라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원산지 제품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① 양 당사국 영역 밖에서 하역? 재선적,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거나 당사국의 영역으로 운송하기 위한 공정 이외에 작업을 거치지 않았을 것과 ② 비당사국 영역에서 세관당국의 통제 하에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원산지 제품이 비당사국을 경유하지 않고 미국을 출발하여 우리나라로 직접운송 되는 경우라면 전체 운송경로가 기재된 단일의 운송서류로 운송요건 충족여부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16. 참치 캔 협정관세적용 질의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 2017-05-18(접수일자)

질의 : 미국 행정관할지역인 아메리칸 사모아 인근 태평양 해역에서 어획한 참치원어를 아메리칸 사모아에 위치한 공장에서 참치 캔과 파우치 제품을 생산하여 한국으로 수입 시 협정관세 적용가능 여부

답변 : ○ 한-미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어야 합니다.

○ 동 협정은 ‘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 되고 협정에서 규정한 그 밖의 모든 적용 가능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원산지 상품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어느 한 쪽 당사국에 등록되거나 등기되고 그 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한 선박에 의해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밖의 바다에서 어획된 참치는 완전생산품으로 판단됩니다.

○ 그러나 한-미 FTA상 미국 영역이 아닌 아메리칸 사모아*에서 참치 캔과 파우치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전적으로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상품이 아니므로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협정문 제1.4조(정의) 규정에 의거 아메리칸 사모아는 협정대상 영역이 아님.

117. 최소기준 충족여부

한-미 FTA 제4.2조(원산지 규정 및 관련 사안)제7항(최소허용기준)에서 최소허용기준은 ‘품목분류를 결정하는 구성요소의 생산에 사용된 섬유원료 또는 원사’의 총 중량이 구성요소의 총 중량의 7%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상품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품목분류를 결정하는 생산은 ‘양말’ 이므로, 양말 켄레가 하나의 팩킹으로 수출되는 경우 역내산 원재료가 사용된 양말 2켄레는 원산지제품이며, 최소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비역내산 원재료가 사용된 양말 1켄레는 원산지제품으로 볼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18. 최소허용기준 및 원산지소명서 작성방법 관련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235, 2014.3.4

1.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제6.15조의 ‘수출자’는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위한 항목으로서 ‘수출당사국의 수출자’를 의미하는 것인 바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9 서식을 사용하는 경우에 ‘수출자’란에 제3국에 소재하는 송장발행인을 기재한 것은 잘못 작성한 것입니다.
3. 하지만 동 협정에서 ‘수출자’는 ‘생산자’와 다른 경우에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귀사의 질의와 같이 수출당사국의 ‘생산자’가 원산지를 증명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제5항의 원산지증명서 기재사항의 일부에 오류 또는 흠이 있으나 원산지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119. 최소허용기준(미소기준)적용 가능 여부

Q : 제5401.10호의 원산지결정기준에서 제외세번에 대해 미소기준 적용이 가능한가요? (2019.10.15.)

A : 품목별 원산지 기준에서 제외되도록 명시된 세번에 해당하는 물품은 원산지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나,한-미 FTA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제외세번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가 사용된 경우 최소허용기준(미소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120. 최소허용수준 적용가능여부

Q : 품목별원산지기준 중 특정세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세번변경기준인 경우 제외세번에 대해 협정 제6.6조(최소허용수준) 적용이 가능한가요? (2017.08.31.)

A : 한-미 FTA의 품목별 원산지기준이 특정 세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세번변경기준인 경우 ‘협정 부속서 6-나(최소허용수준에 대한 예외)’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특정 제외 세번이 원산지가 아닌 경우 미소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121. 포괄원산지 관련

질의 : 한-미 FTA 원산지포괄증명서 관련 ‘증명일’을 ‘발급일’ 기준이 아닌 ‘포괄증명기간’을 기준으로 작성하여도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한지?

답변 : 한-미 FTA 원산지포괄증명서의 적용여부에 대해서는 발급일과 상관없이 포괄증명기간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포괄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 이전에 우리나라로 수입된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여부 및 해당 원산지증명의 유효성 여부는 원산지검증절차에 따라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22. 포괄원산지증명서 적용 관련

질의 : 한-미 FTA 원산지포괄증명서가 아래와 같이 기재된 경우, 증명일자 이후의 포괄증명기간에 미국에서 선적된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여부

- 포괄증명기간 : 2012.1.1. ~ 2012.12.31, 증 명 일 자 : 2012.4.17., 선 적 일 자 : 2012.4.29

답변 : 한-미 FTA 제6.15조(특혜관세대우의 신청) 제4조 나항에서 포괄원산지증명은 ‘증명일로부터 12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이내에 복수선적되는 동일상품’에 적용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귀 법인의 질문과 같이 원산지포괄증명기간의 시작일이 증명일보다 앞서는 원산지증명서로 협정관세적용을 신청한 경우에 협정관세를 우선 적용 할 수 있으나 해당 원산지증명의 유효성 여부는 원산지조사 등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23.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관련

질의 : 한-미 FTA 61류(편물제 의류)의 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 관련 질의
- 부속서 4-가(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o 상기 품목을 생산할 때 5204호, 5401호의 역외산 재봉사를 사용
(생산하는 의류 총 중량의 7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음)
- 이 경우 최소허용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답변 : 한-미 FTA 협정문 제4.2조제7항(최소허용수준)과 부속서4-가(섬유 또는 의류상품의 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에 따라, 아래의 상품을 생산할 때 비원산지 재료인 재봉사(5204호 또는 5401호)가 사용된 경우에는 사용된 비원산지재료의 중량이 제품구성요소 총 중량의 7%이내이면 ‘최소허용기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HS 번호] 6104.41-6104.49, 6105-6106, 6109-6111, 6113-6117.
따라서 이와 같이 생산된 상품은 동 FTA에서 정하는 원산지상품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124.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제7부 관련

질의 : 한-미 FTA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제7부(플라스틱·고무 제품)의 ‘주1’과 ‘주2’에 대한 해석
주1. 제7부의 규칙1 내지 규칙5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이 부의 류 또는 호에 해당하는 상품은 그러한 규칙에서 달리 명시된 것을 제외하고 원산지상품으로 취급된다.
주2. 주1에도 불구하고, 상품이 이 부의 원산지 기준에 명시된 적용가능한 세번변경기준 또는 적용가능한 역내부가가치를 충족할 경우 원산지 상품이다.
‘주1’과 ‘주2’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원산지 상품인지, 아니면 ‘주1’의 기준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주2’의 기준을 충족해도 원산지 상품인지?

답변 : 한-미 FTA 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 제7부의 ‘주2’의 내용은 ‘주1’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개별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에서 정하는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한다는 의미이며, HS3907호의 원산지결정기준 단서조항인 ‘다만, 제3901호 내지 제3915호에 해당하는 원산지 구성중합체가 중량으로 전체 구성중합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라는 것은, 동 제품을 생산할 때 재료로 구성중합체가 사용된 경우, ‘전체 구성중합체의 중량에서 HS3901~3915호 원산지 구성중합체의 중량이 50%이상이어야 한다’는 뜻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125. 품목분류 관련

질의 : 한-미 FTA 관련, 수출입자가 사용하는 HS CODE가 상이한 경우(수출자 : 8708.99, 수입자 : 8708.80) 원산지증명서 작성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한 관세평가분류원을 통하여 품목분류 확인을 받으면 사후 검증 시 근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지?

답변 : 협정관세 적용여부는 수입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계약상대국과 우리나라의 품목분류 기준이 다른 경우, 원산지증명서의 HS는 수입국의 분류기준으로 기재되어야만 계약상대국에서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관세법 제8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에 따라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신청하여 품목분류 확인을 받으면 사후 검증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26. 품목분류 변경 물품의 사후적용 신청 기한

질의 : 품목분류 변경으로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을 하려는데 그 기한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답변 : 세관장이 수입자가 신고한 품목분류와 다른 품목분류를 적용하여 「관세법」 제38조의3제6항 또는 제39조제2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납세고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45일)에 협정관세 사후적용이 가능합니다.

127. 품목분류 상이 관련

질의 : 한-미 FTA 관련 수출입자가 사용하는 HS CODE가 상이한 경우 원산지 관리는 양국 중 어떤 세 번의 원산지결정기준을 따라 해야 하는지?

답변 :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수출입자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한-미 FTA 협정 제7.10조(사전심사결정)에 따라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권한 있는 당국으로부터 미리 결정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특혜관세의 적용여부는 수입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결정되므로 미국 관세청의 품목분류결정에 따라 원산지관리를 하는 것이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128. 품목분류 상이 관련

질의 : 한-미 FTA 관련 수출입자가 사용하는 HS CODE가 상이한 경우(수출자 : 8479.89/ 수입자 : 8708.29)원산지 관리는 양국 중 어떤 세번에 따라 해야 하는지 여부

답변 :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수출입자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한-미 FTA 협정 제7.10조(사전심사결정)에 따라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권한 있는 당국으로부터 미리 결정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특혜관세의 적용여부는 수입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결정되므로 미국 관세청의 품목분류결정에 따라 원산지관리를 하는 것이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129. 품목분류 상이할 경우

질의 : 한·미 FTA 관련, 수출입자가 사용하는 HS CODE가 상이한 경우(수출자: 8517.62/ 수입자: 8537.10)의 원산지관리는 양국 중 어떤 세번에 따라 해야 하는지?

답변 :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수출입자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한-미 FTA 협정 제7.10조(사전심사결정)에 따라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권한 있는 당국으로부터 미리 결정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특혜관세의 적용여부는 수입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결정되므로 미국 관세청의 품목분류결정에 따라 원산지관리를 하는 것이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130. 한국산 물품 수입시 협정관세 적용 여부

Q : 미국에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에 원산지국가가 'KR' 로 기재된 경우 해당 원산지증명서로 협정적용이 가능한가요? (2019.05.16.)

A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서는 협정관세는 체약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수입시에는 협정관세 적용을 할 수 없습니다.

131. 한-미 FTA의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적용 대상

질의 : 한-미 FTA에서도 한-호주 FTA에서도 마찬가지로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적용되기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근거하여 운송 중인 상품은 긴급수입제한조치 적용 면제인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은 EU, 호주, 뉴질랜드, 영국과의 협정에 따라 EU, 호주, 뉴질랜드, 영국을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로서 특별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전에 계약이 체결되어 운송 중인 물품을 특별긴급관세조치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며,
 - 한-미 FTA 협정은 이러한 특별긴급관세조치의 제외 또는 면제 규정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32. 할당받은 물품을 제외한 나머지 비할당 물품의 반송 여부

질의 : 당일 수입신고 분 중 할당받은 물품만 협정 적용을 받고 나머지(할당물량 초과분)는 반송 또는 폐기 가능한가요?

답변 : 관세율할당물품 수입신고 시 수입물량 중 관세율할당을 배정받지 못한 일부 물량을 반송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물품이 관세법령 등에 따른 반송요건에 부합한다면 반송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33. 해외직구 1천달러 미만의 와인에 'Made in California'로 표기시 협정 적용 가능 여부

질의 : 해외 직구로 구매한 1천달러 미만의 미국산 와인에 'Made in California'라고 표기된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협정 적용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 “Made in California”는 국가명이 아닌 행정구역 명(미국 캘리포니아 주(州))를 원산지로 표시한 것으로서, 대외무역법령상의 적정한 원산지표시로는 인정되지 않으나, 해외직구한 와인이 원산지표시 면제가 가능한 자가소비용 물품에 해당된다면 상기의 원산지표시로서 미국산임을 입증하여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34. 협정관세 적용가능 여부(한-미, EU)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 2017-05-25(접수일자)

질의 : ○ (질의사항)

- ① (거래형태1) 보세구역 반입 후 하역 및 재포장 작업을 하여 국내 수입 시 한-미, EU FTA 협정관세적용 가능여부
- ② (거래형태1) 보세구역 반입하고 일정기간(최대3개월) 보관 후 수입자가 정해지고 수입 시 한-미, EU FTA 협정관세적용 가능여부
- ③ (거래형태1,2) 물품의 운송과정에서 미국/EU→비당사국→한국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원산지 및 직접운송 충족요건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
- ④ (거래형태1,2) 한-미, EU FTA 직접운송 요건 충족여부

답변 : ○ (질의①) FTA 협정관세적용 요건을 충족* 하고 해당 벌크 화물이 우리나라 보세구역 내에서 드럼(drum) 또는 ISO탱크로 재포장 되는 경우 재포장 전·후 물품의 동일성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협정관세적용이 가능합니다.

* FTA특례법 제6조(협정관세 적용요건) ①협정대상품목, ②원산지상품, ③협정관세적용신청

- (질의②) 보세구역에 일시보관 후 최종 구매자가 확정되어 보세창고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최종 구매자에게 판매되는 관련 무역서류의 거래내역을 확인하여 원산지증명서 상의 물품과 거래 물품과의 동일성이 확인되는 경우 협정관세적용이 가능합니다.
- (질의③) 운송경로는 계약상대국(미국, EU)으로부터 우리나라로 직접 운송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미국/ EU 수출자가 수출한 물품에 대해 협정 비당사국에서 송품장이 다시 발행되는 거래형태가 가능하므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제3국에서 송품장이 재발행 되어도 물품의 원산지 지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질의④) 거래형태 1, 2 모두 해당물품이 비당사국 경유 없이 계약상대국(미국, EU)으로부터 우리나라로 직접 운송되므로 운송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35. 협정적용 방법

Q : 미국에서 제품 수입시 한-미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받기 위한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17.03.21.)

A : 수입물품에 대하여 한-미국 FTA의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협정관세의 적용대상일 것 ②원산지가 해당 체약상대국일 것 그리고 ③협정관세적용을 신청할 것입니다. 따라서 ① 해당물품의 협정관세 적용대상 여부를 협정문 부속서 나(대한민국 관세양허표)에서 확인 후 양허품목에 해당하는 경우 ②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등으로 부터 HS품목번호별 해당 물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증명하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으시고 ③ 협정에서 정한 직접운송요건 충족하는 경우 수입신고 시 협정관세적용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136. 협정적용 신청서 작성시 원산지증명서 발급번호 기재 방법

Q : 제3국 발행 송장거래로 미국에서 포괄원산지증명서 발급시 증명서 발급번호없이 발급한 경우 협정적용신청서 상 원산지증명서 발급번호란에 제3국에서 발행한 송장번호를 기재할 수 있나요? (2019.07.25.)

A : 협정적용신청서의 원산지증명서 발급번호 기재란은 자율발급인 경우 해당 서류 번호를 기재하고, 해당 서류 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송품장 번호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국발행송장거래로 체약상대국에서 발급한 송품장 번호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3국발행 송장번호를 기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4. 한-중 FTA

1. C/O의 유효성 여부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 2016-06-10(접수일자)

질의 : ○ 원산지증명서 제8번란 작성과 관련하여

- ① 모델·규격만을 란을 달리하여 기재한 경우
- ② 대표 품명(인보이스 품명과 다름)과 모델·규격만을 기재한 경우
- ③ 인보이스 품명과 모델·규격만을 기재한 경우 ⇒ C/O의 유효성 여부

답변 : 1. 귀하의 민원내용은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작성’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제6란에는 연번을 기재하며 최대 20개까지 기재 가능하며 제8란에는 송장 물품명세 및 상품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의 물품명세와 연계할 수 있도록 충분히 자세하게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므로 인보이스 품명과 연계하여 작성해야 되며 HS코드가 같더라도 모델·규격이 다른 경우 란을 달리하여 작성해야 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원산지에 관한 조사’ 결과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규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3조

2. Certificate of Processing의 유효성

Q : 중국 수출업체가 유럽에서 조달받은 부품을 조립하여 우리나라로 수출시 Certificate of Processing을 발급한 경우 협정적용 가능한가요? (2019.06.11.)

A : 한-중 FTA에 따른 특혜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결정기준과 기타 다른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중국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를 구비하고 있어야합니다. 따라서, Certificate of Processing으로는 한-중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3. 1국 2협정의 경우 협정관세 사후적용 가능 여부

Q :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고 APTA 적용하여 수입통관한 경우 한-중 FTA 사후적용이 가능한가요? (2018.12.04.)

A :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고 APTA특혜관세를 적용한 경우 수입 시 적용 받은 협정관세를 취소하고 세액 수정 등을 한 후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한-중FTA 특혜관세 사후적용 신청이 가능합니다.

4. 1국 2협정의 경우 협정관세 사후적용 가능 여부

Q : APTA를 적용하여 수입신고된 물품을 한-중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이 가능한가요? (2018.12.03.)

A : 수입신고시 APTA특혜관세를 적용받은 경우 유효한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등 협정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한다면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한-중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이 가능합니다.

5. 경유국에서 발급한 B/L의 통과선하증권 인정 가능여부

Q : 중국에서 홍콩을 경유하여 우리나라로 물품 수입시 경유국에서 발급한 B/L도 인정가능한가요? (2019.04.08.)

A : 한-중 FTA를 적용받고자 하는 원산지물품이 홍콩을 경유하여 우리나라로 운송되는 경우, 운송서류가 경유국에서 발급되었다 하더라도 인수장소, 선적항, 도착항이 명확하게 기재되어있고, B/L에 기재된 물품에 대해 최초 운송업자가 전구간에 대해 책임지고 발행한 경유라면 통과선하증권으로 인정가능합니다.

6. 누적기준에서 ‘결합’의 의미는

질의 : 중국산 원재료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고순도작업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한 후 수출할 때 재료 누적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데, 누적 기준 중, 해당 재료가 ‘결합’되어야 한다는 의미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답변 : 한-중 FTA 협정 상, ‘한 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 또는 재료가 다른 쪽 당사국에서 상품에 결합되는 경우, 그렇게 결합된 상품 또는 재료는 다른 쪽 당사국에서의 원산지 상품 또는 재료로 간주’ 됩니다(한-중 FTA 협정 제3.6조).

- 상기 “상품에 결합”은 재료와의 단순한 결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상대국의 원산지 상품 또는 재료를 상품 생산국의 원산지재료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상품생산국에서 불인정공정 이상의 공정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7. 누적적용 방법

Q : 중국에서 한국산 재료를 사용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누적적용을 위해서 한국산 재료가 중국에 수입될 때 협정관세적용을 신청해야하나요? (2017.02.15.)

A : 한국산 재료를 수입하여 중국에서 완제품을 생산할 경우 해당 재료가 협정에서 규정한 원산지결정기준 및 다른 조건들을 모두 충족한다면, 수입 시 동 재료가 협정관세적용을 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누적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산지결정기준 및 협정에 규정한 요건 충족 여부 등은 ‘원산지에 관한 조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 다수의 생산자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기재 관련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 2018-01-12(접수일자)

질의 : <사실관계>

- 수출자와 생산자가 상이, 다수의 생산자로 부터 물품을 공급 받아 한 개의 포장단위로 수출하고자 함.
- 제조자가 다수인 경우 수출신고 시 ①제조자 미상으로 신고하거나 ②대표 제조자 1명만 신고함.

<질의사항>

- ① (제조자 미상으로 신고) 동일 HS세번 상품에 대해 생산자별 란을 구분하여 수출신고 → 원산지증명서도 생산자별 란을 구분하여 발급 가능 여부
- ② (대표제조자 1명만 신고) 동일 HS세번 상품에 대해 생산자별 란을 구분하여 수출신고 → 원산지증명서도 생산자별 란을 구분하여 발급 가능 여부
- ③ (대표제조자 1명만 신고) 동일 HS세번 상품에 대해 생산자별 란을 구분 없이 모두 1란에 수출신고 → 원산지증명서를 대표제조자 1명만 기재하여 발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답변 : ○ 원산지증명서는 협정에 정하는 대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 생산자가 다수인 경우 상품을 생산자별 구분하여 기재하거나 합쳐서 하나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동 협정 규정에 따라 생산자와 수출자가 상이한 경우 원산지증명서 제2란(생산자)에는 생산자의 법적 이름과 주소를 기재해야 하며, 생산자가 다수인 경우 추가적인 생산자의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아울러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기를 원하는 경우 ‘요청하는 경우 제공가능’ 이라고 기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9. 대량원재료를 보세창고에 반입후 분할통관하는 경우 총중량 기재된 CO 인정 여부

질의 : 중국산 원재료를 대량으로 수입하여 부산 보세창고에서 보관하는 도중에 발주요청에 따라 분할하여 수입 통관하는 경우 총 중량이 기재된 FTA CO로 통관이 가능한가요?

답변 : 하나의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물품을 국내 보세창고에 보관 후 분할하여 수입신고 하는 경우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과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물품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면 원산지증명서를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10. 동일물품에 대하여 2개의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된 경우 협정적용 가능여부

Q : 원산지증명서 제5란에 비당사국 수출자의 정보가 미기재되어 발급이 되어 중국관세당국에 원산지증명서 정정발급신청을 요청하였으나, 정정이 불가능하여 다른 수출자의 명의로 새로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한-중 FTA 협정이 적용 가능한가요? (2018.03.15.)

A : 한-중 FTA에는 최초 원산지증명서가 도난, 분실 또는 사고로 인한 멸실된 경우로서, 이전에 발급된 원산지증명서가 더 이상 사용되지 않음이 입증된 경우에 한정하여, 원산지증명서 원본의 진정등본이 발급 가능합니다. 따라서, 동일물품에 대해서는 하나의 원본 원산지증명서만 발급가능하며, 다른 수출대리인에 의해 두개의 원본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11. 보세공장 반입물품을 제품과세시 협정적용 가능 여부

Q : 중국으로부터 ALUMINIUM COIL(HS7606.11)을 보세공장에 반입후ALUMINIUM BILLET(HS7601.20)으로 가공하여 제품과세로 수입통관하는 경우 한-중 FTA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2018.07.24.)

A : 중국에서 생산된 물품을 우리나라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제조, 가공 후 제품과세로 수입신고 하는 경우에는 협정관세적용이 곤란합니다.

12. 보세공장 사용신고물품의 원상태 국내 수입 시 협정세율 적용 여부

질의 : 보세공장에 반입 이후, 사용신고 당시 FTA 협정 적용 신청을 하였는데, 부득이하게 원상태 그대로 국내로 수입하게 된 경우에도 협정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나요?

답변 : 사용신고를 하고 보세공장에 반입한 후 제품생산 중단 등의 사유로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를 원상태로 수입하는 경우, 한-중 FTA 협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우리나라 도착 시 물품과 협정적용 하고자 하는 물품의 동일성이 확인되는 경우에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질의물품에 대한 협정 관세 적용신청은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신청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13. 부속품, 예비부품 및 공구의 원산지 규정

Q : 본품과 부속품이 1건의 송품장으로 함께 수출되는 경우 원산지판정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17.05.17.)

A : 한-중 FTA의 부속품, 예비부품 및 공구의 원산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본체의 원산지결정기준이 세번변경기준인 경우
 - ㉠ 수입 시 상품과 함께 인도되고 제공
 - ㉡ 부속품 등이 상품과 같이 분류되고 그 상품과 별도 송품장이 발부되지 아니할 것
 - ㉢ 부속품 등의 수량과 가치가 그 상품에 대하여 통상적인 수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의 원산지 판정 시 부속품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 ② 본체의 원산지결정기준이 부가가치기준인 경우 본체의 원산지 판정 시 부속품 각각의 원산지에 따라 본체의 재료비에 계상되어야 합니다.

14. 비당사국 경유물품의 직접운송 충족 여부

Q : 중국에서 홍콩을 경유하여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경우 중국에서 홍콩으로 운송시 발행된 재화청단과 홍콩에서 한국으로 운송시 발행된 B/L의 컨테이너 번호와 Seal No.가 일치하는 경우 직접운송 요건이 충족되나요? (2017.11.10.)

A : 컨테이너 번호와 실(seal) 번호가 모든 운송과정에서 변경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일련의 운송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 동 협정의 직접운송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운송 요건을 충족하고, 유효한 원산지증명서 제출하는 경우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 및 협정에 규정한 요건 충족 여부 등은 ‘원산지에 관한 조사’ 결과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15. 비당사국 발행 통과선하증권의 적용여부

Q : 수출당사국(중국)이 아닌 비당사국(홍콩)에서 발행된 통과선하증권으로 한-중 FTA 직접운송요건을 충족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018.02.07.)

A : 운송서류가 비당사국에서 발행되었다하더라도 최초의 운송업자가 전 구간을 책임지고 발행하고 수출국에서부터 수입국까지 전체 운송경로 정보, 화물 품목 및 수량 등의 상세한 선적정보를 포함한 단일 통과선하증권이라면 한-중 FTA 직접운송 충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6. 비당사국에서 선적된 물품의 직접운송 충족가능여부

Q : 전자상거래로 구매한 물품이 홍콩에서 우리나라로 운송된 경우 한-중FTA 직접운송요건을 충족가능한가요? (2018.03.22.)

A : 한-중 FTA협정 적용을 받기 위한 원산지 상품은 당사국간에 직접 운송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홍콩에서 발송된 경우 한-중 FTA협정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17. 비당사국에서 최종포장작업이 이루어진 경우 협정관세 적용 가능 여부

Q : 중국에서 생산된 물품을 일본에서 포장작업 후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경우 협정적용이 가능한가요?
(2019.03.11.)

A : 한-중 FTA협정에서는 전적으로 수출당사국에서 생산되고, 동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가능하며, 원산지상품이라하더라도 양 당사국간 직접운송 된 경우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일본에서 최종포장작업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한-중 FTA 협정관세 적용을 할 수 없습니다.

18. 비당사국 운영자가 상품에 대한 송장을 발급시 원산지 증명서 기재 방법

질의 : 중국 제품을 중국에서 출고 및 선적하는데, 거래는 일본 업체와 진행하고 있고 대금도 일본에 지불하고 있는 경우(인보이스도 일본업체가 발행) 원산지증명서 제1란 및 제2란에는 중국 업체를 적고, 일본업체는 어디에 기재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 비당사국 운영자가 상품에 대한 송장을 발급하는 경우, 비당사국 운영자의 법적 이름과 국가를 원산지 증명서의 제5란(비고)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19. 생산지원비의 협정관세 적용가능여부

Q : 수입물품의 생산지원비에 대해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2017.12.22.)

A : 관세법 제30조 규정에 따라 생산지원비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므로 당해 수입물품 전체에 대해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생산지원으로 생산된 모든 수입물품이 동 협정규정에 따라 원산지로 충족된 경우에만 생산지원비 전액에 대해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20. 설비를 해체상태로 수출하여 상대국에서 조립시 HS 통칙 제2호 적용 가능 여부

질의 : A사는 일부 자재를 자체 생산하고 일부는 구매한 뒤에 조립하여 최종 완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설비'이다 보니 분해한 형태로 중국에 수출하여 A사 직원들이 직접 상대국에서 조립을 하는데 수출신고서 및 원산지증명서 상 HS코드를 완제품 코드로 발급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HS 통칙2호).

답변 :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 따라 완성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미조립 상태의 물품도 완성된 물품으로 분류되며, 완제품이 분류되는 호의 원산지 결정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미조립상태의 부분품이 국내에서 협정에서 정한 불인정공정이상의 공정 수행으로 생산되어야 합니다.

21. 세번변경으로 기존 협정 불가시 다른 협정 적용 여부

질의 : 세번이 변경되어 기존의 협적 적용이 불가한데, 다른 협정으로 특혜를 받으려는 경우 관련 절차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답변 : 동일 국가의 원산지물품이 2개 이상의 협정적용이 가능한 경우, 세율차 등의 사유로 수입 시 이미 적용 받은 협정관세를 취소하고 다른 협정의 특혜관세 사후적용이 가능하며, 이미 적용된 협정관세를 배제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세액을 납부할 때는 FTA특례법 제36조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2. 세번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세번이 변경된 경우 수정신고 여부

질의 : 이전에 한-중 FTA에 따라 0%의 협정 세율 적용을 받고 들어온 품목에 품목분류 사전심사결과에 따라 세번이 변경된 경우, 수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답변 : 품목분류 오류로 인해 신고 납부한 세액에 부족함이 있는 경우에는 정확한 품목분류번호로 수정신고를

하고 부족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입 시 협정관세적용을 받은 경우 수입신고 시 제출한 원산지 증명서에 기재된 원산지기준으로 변경된 세번의 원산지기준을 충족함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수정신고 시에도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23. 수리물품 재수입시 협정 적용 가능 여부

Q : 한-중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아 수입한 물품을 중국으로 다시 보내서 수리 후 우리나라로 수입시 협정 적용 가능한가요? (2019.09.24.)

A : 한-중 FTA에서는 수리 후 재반입 되는 물품의 경우라도 동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기준과 기타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여야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24. 수입당사국에 소재한 제3자가 송장을 발행하는 경우 원산지 증명서 기재 방법

질의 : 국내 구매자 A는 판매자 B로부터 중국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였는데(상업송장은 B가 발행) FTA CO 제5란에 B의 명칭을 기재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 수입당사국과 동일한 국가에 소재하는 제3자가 발행한 송품장은 비당사국 송장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산지증명서 제5란에 비당사국송장발행자의 정보를 기재하지 않아도 됨을 알려드립니다.

25. 수출자정보가 추가 기재된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

Q : 제3국 발행 송장거래에 해당하지 않지만, 원산지증명서 제5란(비고)란에 수출자의 정보가 추가로 기재된 경우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가능한가요? (2017.11.10.)

A : 원산지증명서는 협정에서 규정한대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원산지증명서 필수기재 사항이 모두 기재된 상태에서 수출자 정보가 별도란에 추가 기재되었다는 사유만으로 협정관세를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수출자 정보가 별도 기재된 사유에 대한 소명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한-중 FTA의 경우 CO-PASS(관세청 원산지증명서 자료교환 시스템)를 통해 중국 발급기관에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6. 여러 개의 인보이스로 하나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원산지증명서 작성방법

Q : 여러개의 인보이스를 하나의 원산지증명서로 발급시 일부 인보이스 번호는 원산지증명서의 제12란(송장번호 및 일자)에 기재하고 나머지는 다른 란에 기재한 경우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 가능한가요? (2018.10.22.)

A : 한-중 FTA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작성시 송품장번호는 제12란(송장번호 및 일자)에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여러개의 송품장으로 하나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 제12번란에 모든 송품장 번호를 기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의 다른 란에 기재하여도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7. 용도세율 적용물품의 협정관세 사후 적용 신청 여부

질의 : 용도세율 적용 대상인 모터사이클용 타이어를 수입하는데, 수입신고 시 용도세율을 적용하고 이후에 FTA 협정 사후 적용을 신청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 FTA 협정관세 적용 시 용도세율 대상이 되는 경우 관세법 제83조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 전에 용도세율 적용신청을 하여야 하므로 협정관세 사후적용신청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8. 원산지결정기준 해석(제 8462.10호)

Q : 제8462호 제품 수출자가 컴퓨터 수치제어 시스템(CNC)의 원재료 구매와 컴퓨터 수치제어 시스템을 직접 제조하는 경우 제8462호의 원산지기준의 단서조항이 적용되나요? (2018.01.17.)

[HS 8462호 원산지결정 기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하고, 컴퓨터 수치제어(CNC) 시스템은 제8537호 또는 제9032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원산지물품인 것으로 한정한다.

A : 제8462.10호의 원산지결정기준은 ‘4단위 세번변경 + 역내부가가치 50% 이상. 다만, 컴퓨터 수치제어 시스템인 제8537호 또는 제9032호는 원산지 재료의 사용’으로 해석됩니다. 수출자가 컴퓨터 수치제어 시스템을 직접 생산하는 경우라도 자가 생산된 컴퓨터 수치제어 시스템이 동 협정에 따른 원산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9. 원산지기준 기재 방법

Q : 품목별 원산지기준이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인 경우 원산지증명서 제10란(원산지기준)에 “WP”로 기재할 수 있는지 아니면 반드시 “WO”로 기재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017.05.10.)

A : 원산지결정기준 표기는 협정 및 관련법령에서 규정한대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한-중 FTA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이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이므로 원산지결정기준 표기는 “WO”로 기재해야 합니다.

30. 원산지물품과 비원산지물품 혼재시 원산지증명서 물품수량 기재방법

Q : 원산지물품과 비원산지물품을 동시 선적하여 체약상대국(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입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되어야할 수량은 어떻게 되나요? (2018.04.23.)

A : 원산지증명서는 체약당사국(중국)에서 생산되어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기준 및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발급이 가능하며, 원산지증명서에는 위 기준을 충족하는 선적수량만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31. 원산지상품과 비원산지상품 혼재시 원산지증명서에 기재 가능한 수량

Q : B/L, Invoice, Packing List에 기재된 수량 100kg이며, 수입통관시 한-중 FTA 협정적용 가능 수량 30kg인 경우 원산지증명서 제8란(포장의 수량 및 종류)에 기재되어야 하는 수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18.05.30.)

A : 원산지증명서는 체약당사국(중국)에서 생산되어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기준 및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발급이 가능하며, 원산지증명서에는 위 기준을 충족하는 수량만(사례의 경우 30kg)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32.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대리인 범주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 2016-09-26(접수일자)

질의 : ○ 실제 수출행위를 행하는 수출자로부터 C/O발급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만을 수출자 대리인으로 보아 C/O발행이 가능한 것인지

○ 수출자의 대리인뿐만 아니라 실제 수출 권한은 없으나 물품 제조행위를 행하는 제조자로부터 C/O발급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도 수출자 대리인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 민원인 주장 : 중국 발급기관에서 제조자 또는 제조자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도 한-중 FTA C/O를 발급하고 있다고 함

답변 : 1. 귀 법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는 동 협정 제3.15조에 따라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책임 하에 그의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수출 당사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발급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생산자의 대리인도 증명서 발급 신청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은 공식적으로 통보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3. 원산지증명서 발급하여 수입된 물품의 국내거래시 원산지확인서 발급 가능여부

Q : 중국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받아 수입된 물품을 국내에서 공급시 원산지확인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2018.08.27.)

A : 원산지확인서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물품의 원산지를 입증하는 내국 원산지증명서로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물품 공급자가 제공하는 국내법령에 의거 규정된 서식입니다. 한-중 FTA에 따라 중국산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고 수입된 물품을 국내에서 다른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원산지확인서상 자유무역협정명칭은 ‘한-중’, 원산지기준 충족여부를 ‘충족’, 원산지를 ‘중국(CN)’으로 기재하여 발급 가능합니다.

34. 원산지증명서 세번과 수입신고 세번 상이시 BOM으로 원산지기준 충족여부 확인가능여부

Q :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세번과 우리나라 수입세번이 상이하고 수입세번의 원산지기준이 세번변경기준인 경우 BOM으로 원산지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2018.08.15.)

A : 협정관세 적용을 위해서는 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로 원산지기준 충족여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수입신고서 세번의 원산지기준이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원산지기준으로 충족여부가 확인된 경우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35. 원산지증명서 수출자 기재란 작성방법

Q : 원산지증명서 제1란 수출자 기재란에 실제 수출자(인보이스 발행자)가 아닌 대외무역사업자(수출신고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등의 대행자)가 기재된 경우 인정가능한가요? (2017.02.28.)

A : 대외무역사업자(수출대행자)가 원산지증명서상 수출자로 기재된 원산지증명서도 인정가능하며, 원산지증명서 제1란 수출자란에 수출대행자가 기재되고, 제13란에 수출대행자가 서명하였다면 협정관세적용이 가능합니다.

36. 원산지증명서와 수입신고서의 세번이 상이한 경우 협정적용 가능여부

Q : 원산지증명서의 세번과 우리나라 수입신고 세번이 상이하고 원산지신고서상 원산지결정기준이 RVC50, 수입신고서의 원산지결정기준은 CTH인 경우 협정 적용 가능한가요? (2019.04.09.)

A : 원산지증명서는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상품이 원산지상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수출국과 수입국 세번 상이시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원산지기준으로 수입국 세번의 원산지기준이 충족하여야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산지증명서의 원산지기준은 RVC50이고, 우리나라 세번의 원산지기준은 CTH로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원산지기준으로는 우리나라 세번의 원산지기준 충족여부 확인이 곤란합니다. 따라서, 품목번호 해석상이 등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보완 후 협정적용이 가능합니다.

37. 원산지증명서와 수입신고서의 세번이 상이한 경우 협정적용 가능여부

Q : 원산지증명서와 수입신고서의 4단위 세번이 동일하고 원산지증명서의 원산지기준이 CTH, 수입신고서의 세번이 CTH인 경우 협정적용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018.10.18.)

A : 원산지증명서는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상품이 원산지상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수출국과 수입국 세번이 상이시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원산지기준으로 수입국 세번의 원산지기준이 충족하여야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4단위 세번이 동일하고, 원산지증명서상 원산지기준은 CTH, 수입신고서상 HS의 원산지

기준은 CTH인 경우는 원산지증명서로 수입국 HS로도 원산지기준 충족함이 확인되므로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38. 원산지증명서의 대리인 발급 가능 여부

Q : 원산지증명서를 수출자의 대리인이 발행하는 경우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 가능한가요? (2018.05.23.)

A : 한-중 FTA에서는 원산지증명서를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대리인이 발급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9. 원산지증명서의 발행일이 1년 경과시 유효한 원산지 증명서 인정 여부

질의 : 보유중인 원산지증명서의 발행일이 사후적용 신청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지만 입항일부터 신청일까지의 기간을 제외하면 1년을 경과하지 않을 때 협정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원산지증명서 발급일로부터 1년입니다. 협정관세 사후적용신청 시에는 유효기간 이내의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여야 하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서는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계산시에는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경우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날의 다음날부터 협정관세 적용 신청한 날까지의 기간은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산지증명서 발급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협정관세 사후적용신청을 하는 경우라도 위 규정에 따라 계산한 결과 원산지증명서가 유효기간 이내인 경우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 가능합니다.

40. 원산지증명서의 분할사용 가능 여부

Q : 1개의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된 물품들이 동시선적되었으나 2개의 B/L로 발급된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분할 사용하여 한-중 FTA협정관세적 용이 가능한가요? (2018.03.09.)

A : 원산지증명서는 운송서류(B/L) 또는 송품장(Invoice)단위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선복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분할 선적한 경우에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1. 원산지증명서의 생산자와 실제생산자가 상이한 경우 인정가능여부

Q : 원산지증명서와 실제 ‘생산자’가 불일치하게 기재된 경우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2017.08.17.)

A : 일반적으로 원산지증명서는 협정에서 규정한 대로 작성되어야 하며, 따라서 원산지증명서의 제2란(생산자)에는 실제 생산자의 법적 이름과 주소를 기재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42. 원산지증명서의 세번과 수입신고 세번 상이시 협정관세 적용가능여부

Q : 원산지증명서와 수입신고 세번이 상이한 경우 원산지증명서의 원산지기준이 PSR로 기재되어있고 수입신고서 세번의 원산지기준이 CTH인 경우 협정적용이 가능한가요?*원산지증명서 세번의 원산지기준:CTH or RVC30 (2018.08.17.)

A : 수입신고서의 원산지기준 CTH이고, 원산지증명서에 원산지기준이 PSR(RVC30 or CTH)로 기재된 경우에는 해당물품의 원산지를 부가가치기준으로 충족하였는지 세번변경기준으로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원산지증명서로 수입신고 세번의 원산지기준 충족여부 확인이 되지 않아 원산지증명서 보완후 협정관세 적용 신청 가능합니다

43. 원산지증명서의 세번과 수입신고 세번 상이시 협정관세 적용가능여부

Q : 원산지증명서와 수입신고서의 4단위세번은 동일하나,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세번의 원산지기준은 CTH, 수입신고서의 세번의 원산지기준이 CTSH인 경우 협정적용이 가능한가요?예시) C/O세번: 8419.90(CTH) / 수입신고서 세번: 8419.40(CTSH) (2018.08.16.)

A : 원산지신고서와 수입신고 세번의 4단위가 동일하고, 원산지증명서의 원산지기준은 CTH, 수입신고서 세번의 원산지기준은 CTSH인 경우는 원산지증명서로 수입국 세번의 원산지기준을 충족함이 확인되므로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 합니다.

44. 원산지증명서의 세번과 수입신고 세번 상이시 협정관세 적용가능여부

Q : 원산지증명서와 수입신고서의 4단위 세번이 상이하고 각각 세번의 원산지기준이 4단위 세번변경기준인 경우 협정관세적용이 가능한가요? (2018.08.14.)

A : 원산지증명서와 수입신고서의 4단위 세번이 상이하고 각각의 원산지 기준이 4단위 세번변경기준인 경우는 수입신고서의 세번으로 원산지기준 충족여부확인이 곤란합니다. 따라서, 품목분류번호 해석상이에 대한 지침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보완 후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45. 원산지증명서의 세번과 수입세번이 상이한 경우 협정관세 적용 가능 여부

Q : 중국에 수입하는 물품의 세번이 우리나라 수입신고 세번과 상이한 경우 협정관세 적용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2018.08.24.)

A : 원산지증명서는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상품이 원산지상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세번(HS)의 원산지기준으로 수입국 세번(HS)의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여야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으며, 원산지증명서의 세번의 원산지기준으로 수입신고서 세번의 원산지기준 충족여부 확인이 곤란하거나 불가한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보완 후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46. 원산지증명서의 세번과 수입세번이 상이한 경우 협정 적용 가능 여부

질의 : FTA CO의 세번과 수입신고 세번이 상이하지만 두 세번의 원산지결정기준이 동일하며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협정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 원산지증명서는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상품이 원산지상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수출국과 수입국 세번 상이시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원산지기준으로 수입국 세번의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여야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47. 원산지증명서의 세번과 수입신고 세번 상이시 협정관세 적용가능여부

Q : 원산지증명서와 수입신고서의 세번이 상이하고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세번의 원산지기준은 WP이며 수입신고서상의 세번이 CTSH인 경우 협정적용이 가능한가요? (2018.09.07.)

A : 원산지증명서는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상품이 원산지상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원산지증명서와 수입국 세번이 상이시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원산지기준으로 수입국 세번의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여야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산지증명서의 원산지기준이 'WP' 로 기재되고, 수입신고서 세번의 원산지기준이 세번변경기준인 경우 수입국 세번의 원산지기준 충족여부가 원산지증명서로 확인이 가능하므로 협정적용이 가능합니다.

48. 원산지증명서의 세번과 우리나라 수입세번이 상이한 경우 협정관세 적용 가능 여부

Q :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입하는 물품이 원산지증명서상 세번과 수입신고서의 세번이 상이하고 원산지증명서와 수입신고서의 원산지기준이 세번변경기준인 경우 협정 적용이 가능한가요? (2019.05.10.)

A : 원산지증명서는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상품이 원산지상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수출국과 수입국 세번상이시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원산지기준으로 수입국 세번의 원산지기준이 충족하여야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세번의 원산지기준으로 우리나라 세번의 원산지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우리나라 세번으로 원산지기준 충족여부를 확인 후 우리나라 세번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협정적용이 가능합니다.

49. 원산지증명서의 수출대리인 발급 가능여부

Q : 수출대행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인정가능한가요? (2018.05.31.)

A : 한-중 FTA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책임 하에 그의 권한을 부여 받은 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해당 상품이 이 장의 요건들을 충족한다는 조건하에 국내법률에 따라 수출 당사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발급됩니다. 따라서, 원산지증명서가 수출자의 책임하에 권한을 부여 받은 대리인의 신청에 의해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라면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0. 원산지증명서의 원산지기준 기재 방법

Q :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물품의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은 “세번변경기준(PSR)” 이나, 중국 수출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원,부재료를 중국에서 생산했기 때문에 “원산지재료 생산(WP)”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준 경우 해당 원산지증명서로 협정 적용이 가능한가요? (2017.07.11.)

A : 원산지증명서는 협정에서 정한 규정대로 작성되어야 하며 협정에 의거, 원산지증명서 제10란(원산지기준)의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WO: 협정 제3.4조 및 부속서3-가(품목별원산지기준)에 따라 계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경우WP: 계약당사국의 영역에서 협정 제3장에 부합하는 원산지재료로만 생산된 경우PSR: 계약당사국의 영역에서 비원산지재료를 사용하여 세번변경, 역내부가가치비율, 특정공정요건 또는 부속서3-가에 명시된 그 밖의 요건을 충족하여 생산된 경우OP: 협정 제3.3조(특정상품의 취급)을 적용받는 경우따라서 품목별 원산지기준이 세번변경(PSR)이어도 협정에서 규정한 원산지재료로만 최종제품이 생산된 경우라면 원산지기준을 “WP” 로 기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51. 원산지증명서의 원산지기준 작성방법

Q : PSR이 완전생산기준(WO)인 상품의 경우 C/O상 제10란(원산지 기준)의 기재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17.06.07.)

A : 원산지증명서의 원산지기준 기재시에는 기재요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재됨을 알려드립니다. ① 제3.4조에 따른 완전생산물품이거나, PSR기준상 완전생산기준을 충족한 경우는 ‘WO’ 로 기재② 원산지재료로만 생산된 경우 ‘WP’ 로 기재③ 그 외 나머지는 PSR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PSR’ 로 기재

52. 원산지증명서의 필수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 인정가능여부

Q : 원산지증명서에 소급발급문구가 누락된 경우 또는 제3국송장 정보가 미기재된 경우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2019.04.29.)

A : 한-중 FTA에서는 협정적용 신청시 원산지증명서에 사소한 오류등이 있는 경우 5일이상 30일 이하의 기간 내에 원산지증명서를 정정하여야 하며, 원산지증명서가 협정에서 규정된 바와 다르게 발급된 경우에는 특혜관세 적용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3국발행송장정보, 소급발급문구 등이 누락된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를 정정하여 협정관세적용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53. 원산지증명서 을지 사용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 2017-07-04(접수일자)

질의 : <사실관계> 한-중 FTA는 원산지증명서 을지(Attachment)에 규정이 없으나, 중국의 발급기관인 무역촉진위원회(CCPIT)에서 원산지증명서 두 번째 장 이후부터 을지(Attachment) 형식으로 발급이 되고 있음

<질의> 을지(Attachment)가 발행된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 여부

답변 : 협정문 부속서 3-다 원산지증명서 작성방법에는 을지(Attachment) 작성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관세청 CO-PASS(원산지자료교환시스템)를 통해 중국 발급기관이 발행한 원산지증명서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인정 가능합니다.

54. 원산지증명서 작성 관련 질의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 2016-08-01(접수일자)

질의 : ○ C/O 1번란에는 대리인의 이름이, 13번란에는 대리인의 서명

⇒ 한-중 FTA 중국 발행 원산지증명서 처리 지침(2016.07.13)과 관련하여 동 C/O가 유효한 원산지 증명서로 인정되어 사후검증에서도 문제되지 않는지

답변 : 1. 귀하의 민원내용은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상 수출자 기재’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산지증명서는 협정에서 규정한 내용과 같이 작성되어야 합니다.
 - 그러함에도 관세청에서는 지난 7.13일부터 “한-중 FTA 중국 발행 원산지증명서 처리지침”과 “중국 발행 원산지증명서 확인방법 추가안내”를 통하여 한-중간 시범운영되고 있는 원산지자료교환시스템(EODES) 등 세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 중국측에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로 확인되는 경우 한-중 FTA협정관세를 적용해 주고 있습니다.
 - 그러나 C/O발급여부가 조회 안 되는 경우 등 C/O에 대한 추가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와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청하여 특혜관세 적용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원산지 검증은 합리적 의식이 있는 등 사안에 따라 검증 부서에서 판단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원산지에 관한 조사’ 결과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관련규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3조

55. 원산지증명서 작성시 제3국발행 송장거래 정보 기재방법

Q : 제3국발행 송장거래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비당사국 운영자의 정보를 제5란(비고)이 아닌 다른 란에 기재한 경우 인정가능한가요? (2018.09.14.)

A : 비당사국 운영자가 상품에 대한 송장을 발급하는 경우, 비당사국 운영자의 법적이름과 국가가 원산지증명서의 제5번란(비고)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다만, 비당사국운영자의 정보(비당사국운영자의 법적이름과 국가명)를 원산지증명서의 정해진 란이 아닌 다른 란에 기재한 경우라도 그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하였다면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원산지증명서는 원칙적으로 협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작성되어야 합니다.

56. 원산지증명서 제출면제규정 적용 방법

Q : 한-중FTA의 원산지제출면제를 적용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2018.05.29.)

A : 한-중 FTA 협정에서 정한 소액물품의 경우 수입통관 당시 해당물품에 대해서 구매영수증, 제품의 원산지

표기 등을 통해 원산지를 간이하게 확인 후 협정관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57. 원산지증명서 제출면제규정 해당 여부

Q : 한-중 FTA협정상 원산지증명서 제출의무 면제규정에서 사인간, 상업적 목적을 불문하고 미화 700달러 초과하지 않는 원산지상품의 탁송품인 경우는 원산지증명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나요? (2018.05.28.)

A : 한-중 FTA협정에서는 물품의 상업성 여부, 수입형태와 관계없이 원산지 증명서 제출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분할 수입되지 않는 과세가격 미화 700달러 이하의 원산지물품이라면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58.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물품의 협정관세 사후적용 가능 여부

Q : 과세가격 미화 70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 원산지증명서 제출 의무 면제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 없이 협정관세 사후적용이 가능한가요? (2017.06.23.)

A : 미화 700달러 이하의 소액물품의 경우 수입통관 당시 해당물품에 대해서 구매영수증 및 제품의 원산지 표기 등을 통해 원산지를 간이하게 확인 후 협정관세를 적용하고 있어 통관 당시 필요한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수입통관이 완료된 후에는 해당물품의 동일성 등에 대한 입증이 곤란하여,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여야 협정관세 사후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9. 원산지 증명자료 관련 질의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 2017-12-21(접수일자)

질의 : <사실관계>

- (재수입물품) 의류완성품(제61류 ~ 제62류), 원산지기준: CC
- 중국의 임가공 업체에 공급하는 원부자재가 완성품(61류, 62류) 세번이 될 수 없어 반드시 CC가 발생하므로 원산지가 충족함

<질의>

- ① 상기와 같은 원부자재와 완성품이 명확히 품목이 분류되는 경우에도 모든 완성품, 원부자재에 대한 품목분류 근거를 원산지검증자료로 관리해야 하는지 여부
- ② 사후검증 대비, 중국 임가공 제조자 및 국내 수입자가 준비해야하는 서류

답변 : ○ 원산지의 확인, 협정관세의 적용 등에 필요한 원산지증빙서류 등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수입자가 보관해야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원산지증명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사본

나. 수입신고필증

다. 수입거래 관련 계약서

라. 지식재산권 거래 관련 계약서

마.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자료

바. 수입물품의 국제운송 관련 서류

사. 사전심사서 사본 및 사전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사전심사서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 [근거규정] FTA특례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 또한 세번변경기준의 판단은 원재료와 완성품의 정확한 품목분류가 중요하므로 관련 자료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다만, 중국으로 수출하는 원재료와 수입하는 완성품의 품목분류가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라면 동 물품들의 수출입신고필증 등의 서류로 HS세번에 대한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아울러 동 협정은 중국 생산자 또는 수출자가 보관해야 하는 서류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밖의 수출당사국의 국내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중국 관세당국에 문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가. 상품의 구매, 비용, 가치와 그에 대한 지불
- 나.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중립재를 포함한 모든 재료의 구매, 비용, 가치와 그에 대한 지불
- 다. 수출되었던 형태로의 상품의 생산, 그리고
- 라. 각 당사국의 법과 규정이 요구하는 그 밖의 그러한 서류

60. 원재료의 세번이 계약상대국의 세번과 상이한 경우 원산지기준 판정시 적용되는 원재료 세번

Q :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 완제품의 세번은 중국과 우리나라의 세번이 동일하지만 원재료의 세번은 중국과 우리나라의 세번이 서로 상이한 경우 해당 수출물품(완제품)의 원산지기준 판정시 원재료의 세번을 중국 세번으로 하여 판정 가능한가요? (2018.09.04.)

A : 협정에 따른 원산지기준 판정시 원재료의 세번은 우리나라 세번을 우선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61. 임가공 물품의 수입시 원산지 증명 발급 가능 여부

질의 : 중국에 배터리셀을 임가공 의뢰하여 한국에서 보낸 재료로 조립한 뒤 한국으로 수입하는 경우 임가공비에 대해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 해외임가공물품 수입시 수입물품이 한-중FTA에서 정한 원산지기준과 기타 다른 요건을 충족하여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한 경우라면 임가공 물품 생산에 소요된 제반비용, 왕복운임비 등도 협정관세 적용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중국에서 이루어지는 생산이 완성품의 생산을 위한 단순한 조립에 그치는 경우에는 중국산으로 인정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2. 제3국 경유시 당사국발행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

Q : 중국에서 생산된 물품이 홍콩을 경유하여 한국으로 수입되는 경우 중국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는 유효한가요? (2018.12.03.)

A : 중국에서 생산되어 비당사국(홍콩)을 경유하여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경우라도 해당물품이 한-중 FTA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된 경우라면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 가능합니다. 다만, 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이 비당사국을 경유하여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경우에는 동 협정에 따른 직접운송요건 충족 여부확인이 필요합니다.

63. 제3국 발행 송장 거래시 비당사국 정보 기재 여부

Q : 제3국 발행 송장 거래에서 원산지증명서에 비당사국 정보(회사명, 국가 등)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 가능한가요? (2019.07.31)

A :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작성방법에 따라 비당사국에서 송장이 발행된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제5란에 비당사국 송장발행 회사의 정보를 기재하여야 하며, 동 협정 제3.21조에서는 원산지증명서와 세관 서면 신고서간 불일치 같은 사소한 불일치 및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정정된 원산지증명서를 수입 관세당국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당사국송장거래이지만 원산지증명서에 비당사국송장발행회사의 정보가 미기재된 경우 동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정정할 필요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4. 제3국 발행 송장 거래시 원산지증명서 발급

Q : 제3국 송장 무역거래인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은 누가 할 수 있나요? (2018.02.21.)

A : 한-중FTA협정에서는 제3국송장 발행에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있으나, 협정문 제3.21조 및 부속서3-다

에 따라 중국소재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을 하여야 하며, 원산지증명서 제5(비고)란에 비당사국 운영자(3국송장 발행자)의 법적이름과 국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물품이 중국에서 선적되어 우리나라로 직접운송 요건을 충족함을 입증하는 운송서류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65. 제3국 발행 송장거래시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송장번호

Q : 비당사국에서 송장이 발행된 경우, 원산지증명서상 송장번호 및 일자 기재란(제12란)에 3국 발행 송장번호와 수출당사국 송장번호 중 어느 것을 기재해야하나요? (2018.05.28.)

A : 비당사국발행 송장거래의 경우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제12란(송장번호 및 날짜)에는 비당사국 발행 송장번호와 날짜를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비당사국 송장번호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한해 수출당사국에서 발급된 송장번호 및 날짜를 기재 가능합니다.

66. 제3국 발행송장 정보가 기재되지 않은 원산지증명서의 인정 가능 여부

Q : 원산지증명서에 제3국 송장발행 운영인의 법적이름과 국가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해당 원산지증명서로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2017.03.21.)

A : 한-중 FTA 협정문 제3.25조에 따라 원산지 증명서가 제3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이행 절차)의 요건들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협정문 관련규정에 따라, 제3국 송장발행 원산지증명서의 비당사국 운영인의 법적이름과 국가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동 원산지 증명서상 오류에 대해 정정된 원산지증명서의 제출이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67. 제3국 Invoice발행 원산지증명서 유효여부

○ 한·아세안 FTA에서 제3국 발행 원산지증명서 발행시 제3국에서 복수의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한국 소재 수입자에게 최종적으로 송품장을 제출한 회사명과 국가명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FTA원산지증명서 확인 및 특혜관세 적용지침(청 자유무역이행과-190, 07.11.2)

○ 한·아세안 협정에서 규정한 제3국 발행 원산지증명서에 국내 수입자에게 최종 송품장을 제출하는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명(국가명 포함)이 기재된 경우, 협정관세 적용대상 물품(원산지증명서상 물품)과 실제 거래 물품과의 동일성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원산지 증명서의 효력이 인정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68. 중계거래 무역시 원산지 증명서에 중계인의 정보없는 경우 유효 여부

질의 : 중계거래로 무역이 이루어지는 경우, 원산지증명서에 중계인의 정보가 표시되지 않아도 유효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 원산지증명서에는 수입국(한국)의 수입자(수하인) 정보를 기재하고 협정관세신청서에는 원산지증명서의 수입자 정보를 기재함을 알려드립니다.

69. 중고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Q : 국내생산자로부터 구매한 물품을 사용 후 수출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 할 수 있나요? (2018.01.03.)

A : 한-중 FTA에서는 원산지증명서 발급대상물품을 신품으로만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중고물품에 대해서도 동 협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70. 중국에서 수입하는 화공약품의 중국에서 수출시 HS와 수입시 HS가 상이한 경우

질의 : 중국에서 수입하는 화학약품의 세번이 중국에서 수출할 때와 한국에서 수입할 때 일치하지 않아서 FTA 협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 해결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 원산지증명서는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상품이 원산지상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수출국과 수입국 세 번 상이 시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원산지기준으로 수입국 세번의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여야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협정적용이 곤란하며, 수입국 세번으로 원산지기준 충족여부 확인 후 수입국 세번으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한 경우에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71. 중국에서 조립된 물품을 국내로 수입한 후 다시 중국 판매시 한국산 가능 여부

질의 : 중국에서 조립이 완료된 자동차 headlamp를 국내로 보내 판매용으로 포장한 후 다시 중국으로 판매할 때 한국산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 중국에서 수입한 완제품을 우리나라에서 소매포장 후 중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72. 직접운송요건 입증방법

Q : 중국에서 홍콩을 경유하여 우리나라로 수입시 직접운송요건 입증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19.02.26.)

A : 한-중 FTA를 적용받고자 하는 원산지상품이 홍콩을 경유하는 경우 수출국에서 수입까지 전체운송경로 정보(출발지, 경유지, 도착지)가 기재되고, 최초운송인이 모든 구간의 운송에 대해 책임을 지는 단일통과선하증권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운송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입증가능합니다. 통과선하증권이 없는 경우에는 「한-중 FTA 홍콩 경유 화물에 대한 비가공증명서 발급 기준」에 따라 직접운송 증빙자료를 구비하는 경우 직접운송요건 충족여부를 입증가능합니다.

73. 직접운송 입증서류 관련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598, 2016.3.7)

1. 귀 법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중 FTA협정상 홍콩을 경유하여 수입되는 물품의 경우 경유국 세관당국의 통제하에 있음을 증빙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중국에서 홍콩까지의 운송서류와 홍콩 내에서 세관통제하에 있음을 증빙하는 서류, 홍콩에서 한국까지의 운송서류를 제시해야 됨을 알려드립니다.

74. 코로나 19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지연 발급 문의

질의 : 코로나19로 인해 중국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 폐쇄되면서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나중에 사후적용 신청 시 원산지증명서가 갖춰야 할 요건과 신청 절차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답변 : 원산지증명서는 예외적*으로 불가항력 등의 경우에 선적일부터 1년 이내 발급될 수 있으며, 소급발급의 경우 원산지 증명서에 소급발급 문구(예: "ISSUED RETROACTIVELY")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 (원칙) 선적 전 또는 선적 시 또는 선적일 후 7근무일 이내에 발급
또한, 수입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사후적용(납부한 관세의 환급)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원산지증명서, 보정신청에 필요한 서류 또는 경정청구서를 통관지세관장에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5. 통과선하증권 인정 가능 여부

Q : House B/L이 통과선하증권으로 인정가능한가요? (2019.04.11.)

A : B/L상에 선적항·경유지·도착항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B/L에 기재된 물품에 대해 운송인이 전운송구간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고 발행한 경우라면 포워더가 발행한 House B/L도 직접운송증빙을 위한 통과선하증권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76. 통과선하증권의 인정범위

Q : 통과선하증권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2018.08.03.)

A : 단일 통과선하증권이란 수출국에서 수입국까지 전체 운송경로 정보(출발지, 경유지, 도착지), 화물 품목 및 수량 등의 상세한 선적정보를 담고 있는 선하증권으로서, 특정운송인이 모든 구간의 운송에 대해 책임을 지는 단일의 선하증권(Air waybill포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단일의 운송서류에 화물의 전체 운송경로 정보가 기재되어있고, 운송인이 화물에 대해 모든 운송구간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확인 가능한 경우라면 통과선하증권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77. 품목분류 통칙 제2호 적용 물품의 FTA CO 인정 여부

질의 : 품목분류 통칙 제2호가목에 따라 미조립 상태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 FTA CO를 발급 받은 경우 해당 CO로 협정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 협정관세의 적용을 위해서는 수입신고 물품과 원산지증명서상 물품이 동일해야 합니다. 품목분류 통칙 제2호 가목은 미조립으로 제시된 상태에서 완성품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완성품으로 분류한다는 원칙으로, 수출국에서 미조립 상태로 제시되는 물품이 상기 통칙에 따라 완성품으로 분류되어 동 완성품에 해당하는 원산지증명서를 토대로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수출국에서 완성품으로 분류한 물품과 수입국에서 이후 공정을 거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78.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TRQs) 적용 방법

Q : 한-중 FTA 관세율할당(TRQs)물량인 ‘오징어젓갈’에 대해 협정관세 적용을 받기 위한 방법 문의드립니다. (2017.04.21.)

A : 한-중 FTA 관세율할당(TRQs) 물량인 ‘오징어젓갈’에 대해 협정관세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로부터 HSK 1605.54-2091(조미오징어)에 대한 추천서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으려면 그 추천서를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세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79. 홍콩 경유 수입물품의 적출국, 환적국 기재 방법

질의 : 중국 선적 물품을 홍콩 경유하여 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서 및 협정관세신청서에 어느 국가를 적출국, 환적국으로 기재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 수입신고서에는 환적국의 정보를 기재하지 않으며 “중국”을 적출국으로 기재하고, 협정관세 신청서에 적출국과 환적국 정보를 모두 기재하는데 적출국은 중국, 환적국(항)은 홍콩으로 기재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80. 홍콩 경유하는 수출물품의 목적항이 홍콩으로 기재된 AWB기반 원산지 증명서 발급

질의 : 홍콩을 경유하여 중국에 물품을 수출하고 있는데, 목적항이 홍콩으로 기재된 AWB를 기반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 운송조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발급되는 선적서류의 목적지가 중간 경유국(홍콩)이 기재되어있다 하더라도 실제 물품의 최종목적지가 중국이고, 해당 물품이 한-중 FTA에서 정한 원산지기준과 기타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동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시 원산지증명서의 최종 목적항을 중국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하고자 하는 물품의 최종목적지가 중국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1. 홍콩 경유 화물의 경우 B/L상 선적일이 홍콩인지 중국인지

질의 : 중국-홍콩-한국 경로로 수입되는 화물의 B/L에는 선적일이 경유지인 홍콩의 선적일로 표기가 됩니다. 한-중 FTA CO 소급발급을 받으려면 선적 후 7일 이내에 받아야 하는데 이때의 선적일이 경유지에서의 선적일인지 최초 출항지에서의 선적일인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 상품이 비당사국(예: 홍콩)을 경유할 때 비당사국 관세당국이 제공하는 증빙서류(예: 홍콩세관이 발행하는 비조작증명서)가 수입국의 관세당국에 제출되면 당사국 간에 직접운송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이때 선적일은 최초 출항지 중국에서의 선적일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원산지증명서는 최초 출항지인 중국에서의 선적일 후 7근무일 이내에 발급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82. 홍콩 업체가 중국산 물품을 중국에서 선적하면서 동 업체가 운송서류 발급시 협정적용 가능 여부

질의 : 홍콩에 본사를 둔 수출업체 A사를 통해 중국산 물품을 중국에서 선적, 수입하는 과정에서 홍콩의 A업체가 운송서류를 발행을 하고 있는 경우 해당 서류를 기반으로 협정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 한-중 FTA 협정 상, 제3국에서 B/L이 발행되는 경우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작성 요령은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으나, 제시된 B/L이 홍콩의 당사자 명의로 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을 중국에서 선적한 것을 나타내고 있다면 협정상 직접운송 원칙을 준수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아래와 같은 협정관세 적용 요건에 따라 협정 관세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아 래 -

- ①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적용 대상 물품일 것
- ② FTA협정에서 규정하는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 ③ 원산지증명서 구비
- ④ 직접운송원칙 충족
- ⑤ 협정관세 적용 신청

83. 홍콩 지정장소 명칭의 인정여부

Q : ‘홍콩경유 화물에 대한 비가공증명서 발급기준’ 지침에서 제시된 지정장소 중 하나인 ‘Kwai Tsing Container Terminals(1~9)’ 와 관련하여 3번 터미널의 경우 명칭이 ‘Kwai Chung Container Terminal’ 로 기재되어 사용된 경우 동 지침에서 인정하는 지정장소인지 문의드립니다. (2017.07.26.)

A : ‘Kwai Chung Container Terminal’ 과 관세청 ‘비가공증명서 발급기준(17.4.10)’ 에서 규정된 ‘Kwai Tsing Container Terminals(1~9)’ 의 명칭은 홍콩에서 둘 다 사용하는 명칭임을 알려드립니다.

84. 협정관세 적용 가능 여부 질의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 2017-02-03(접수일자)

질의 : □ 대상협정 : 한-중 FTA

□ 인보이스 발행과정 : 중국 → 홍콩 → 일본 → 한국

○ 최초 판매자(생산자) : 중국, 제2차 수출자 : 홍콩, 최종 수출자 : 일본

<거래 관계 >

이때, 계약상대국과의 원산지 전자자료교환시스템(EODES)을 통해 원산지증명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원본의 제출이 생략이 가능합니다.

4. FOB VALUE 환율 선택 관련

한-ASEAN FTA 부가가치기준 계산시 베트남에서 생산한 물품에 소요된 원재료의 가격결정시 적용하는 환율은 수출당사국이 사용하는 방식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도록 정해져 있습니다.(한-ASEAN FTA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부속서3 제4조 2항), 따라서 협정상 환율 결정방법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출당사국의 국내법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므로, 수출당사국인 베트남 관세당국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5. WO-AK 인정여부

한-아세안 FTA 협정에서 가구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WO-AK 100* %로 기재한 경우 원산지 증명서 인정 가능 여부 질의

-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 또는 생산된 물품
(Wholly Obtained or Produced in the territory of the exporting Party)
- 계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 또는 생산된 물품
(Wholly Obtained or Produced in the territory of any Party)

한-아세안 FTA 협정에서 가구의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은 “FOB 기준 역내 부가가치가 60% 이상”이며, 표기방법은 RVC 60%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수출당사국의 완전 생산물품이 아닌 경우 협정 규정에 따라 역내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원산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한-아세안 FTA 협정 제7조(누적) 등 계약국을 원산지로 하는 재료의 누적을 허용하는 FTA 원산지제도의 목적상 “WO-AK 100%”로 기재한 원산지증명서도 인정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WO-AK 100%”는 협정에서 정한 가구의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및 기재방법이 아니므로 향후에는 협정의 원산지 결정기준과 기재방법에 일치되게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6. 1국 2협정의 경우 협정관세 사후적용 가능 여부

Q :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고 한-베트남 협정관세를 적용하여 수입통관한 경우 한-아세안 FTA사후적용이 가능한가요? (2018.12.04.)

A :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고 한-베트남 FTA특혜관세를 적용한 경우 수입 시 적용 받은 협정 관세를 취소하고 세액 수정 등을 한 후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한-아세안 FTA 특혜관세 사후적용 신청이 가능합니다.

7. 관세평가 이슈(무상물품)로 수입국 신고가격과 원산지증명서 상의 금액이 불일치한 경우에도 유효한 원산지 증명서로 보아 협정세율 적용 가능 여부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 2016-05-17(접수일자)

질의 : ○ 대상협정 : 한-아세안 FTA
○ 아세안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수입
○ C/O상 부가가치기준으로 발급되어 FOB 금액(\$ 10,000)이 기재
○ 수입신고 시에는 무상물품이라 관세평가에 따라 \$10,000이 아닌 \$ 15,000으로 신고해야 함
(질의) 관세평가 이슈(무상물품)로 수입국 신고가격과 원산지증명서 상의 금액이 불일치한 경우에도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보아 협정세율 적용 가능 여부

답변 : 1. 귀하의 민원내용은 ‘한-아세안 FTA협정상 FOB금액 기재’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아세안 FTA 협정상 “FOB”라 함은 생산자로부터 해외 최종 선적항 또는 선적지까지의 운송비를 포함한 상품의 본선 인도 가격을 말합니다.

- 그러므로 원산지증명서상 “FOB” 금액은 수입신고시 기재하는 과세가격 평가금액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증명서가 한-아세안 FTA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원산지에 관한 조사’ 결과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규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3조

8. 국내 BWT거래시 협정관세 적용가능여부

Q : 태국으로부터 수입한 물품을 국내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후 그 중 일부만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태국으로부터 발급받은 AK Form으로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2019.01.15.)

A :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한 물품 중 일부를 원상태 그대로 수입신고 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의 물품과 수입신고 물품이 동일하고, 협정에서 정한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9. 국내에서 회수한 폐고철 스크랩의 원산지 결정

‘국내에서 회수한 폐고철 스크랩’과 ‘사내 자사 생성 고철’은 한-ASEAN 자유무역협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역내국의 영역에서 수집된 물품으로서 수집되기 전의 목적으로는 사용이 끝난 물품으로서 원재료 회수용으로 적합한 물품’ 또는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수행된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및 부스러기로서 원재료회수용으로 적합한 물품’으로 판단되는 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완전생산물품’으로 원산지를 인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0. 누적적용 가능여부

Q :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 베트남으로 수출한 한국산 재료로 베트남에서 완제품을 생산하여 우리나라로 재수출할 경우 누적적용 가능한가요? (2018.02.08.)

A : 한-아세안 FTA는 재료누적을 규정하고 있어 한국산 원재료가 베트남 생산자가 생산하는 최종재의 재료로 사용되고 최종재 생산시 역내 충분가공이 이루어진다면 베트남 원산지 재료로 간주되어 누적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1. 다수의 제조자가 생산한물품 수출시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

Q : 다수의 제조자로부터 물품을 구매하여 한건으로 수출신고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도 한건으로 발급 가능한가요? (2019.03.27.)

A : 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5조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신고를 기준으로 작성하거나 발급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다수의 제조자가 생산한 물품을 구매하여 하나의 수출신고서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신고 기준으로 하나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12. 라벨의 원산지 상품 결정요인 여부

한-아세안 FTA 협정상 6206호의 원산지결정기준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6206호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이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재단 및 봉제된 것에 한한다”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로 수입하는 의류에 부착되는 라벨은 우리나라 법령(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부착하는 것으로, 생산된 의류제품의 안쪽에 작은 크기로 부착하는 것으로 이는 원산지상품을 결정하는 요인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13. 미소기준 적용 가능 여부

Q : 제1901.90호의 원산지기준 중 단서조항에 미소기준 적용이 가능한가요? (2019.10.21.)

<제1901.90호의 원산지결정기준>

- ①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1901.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제0401호에서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 및 제10류 및 제11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어느 당사국에서든 원산지 상품인 것에 한한다.
- ② FOB가격이 40% 이상인 것. 다만, 제0401호에서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 및 제10류 및 제11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어느 당사국에서든 원산지 상품인 것에 한한다.

A : 한-아세안 FTA의 최소허용수준은 품목별 원산지기준이 세번변경기준인 경우 사용된 비원산지재료의 세번이 완제품세번으로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아 품목별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비원산지재료의 사용을 최소수준으로 허용하여 원산지상품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그러나 제1901.90호의 원산지기준 중 단서조항은 세번변경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최소허용수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4. 미얀마 물품이 싱가포르 경유시 선적항 등이 미얀마로 표기된 경우 운송서류 인정 여부

질의 : 미얀마의 LCL 화물이 중간에 싱가포르를 거쳐 국내에 수입이 되는데 B/L의 Place of receipt와 선적항이 모두 미얀마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 직접운송 증빙서류로 이용 가능한가요?

답변 : 미얀마에서 수출된 물품이 싱가포르를 경유하는 경우에 질문에 제시된 사실만으로는 상기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최초의 운송업자가 전구간(수출당사국에서 경유국을 포함하여 수입당사국까지)에 대해 책임지기로 하고 수출당사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 또는 비당사국에서 머물러 있는 상태 등을 증명하여 비당사국 관세당국에서 발행한 서류(예: 경유국 관세당국 발행 비가공증명서) 등으로 직접운송 요건이 입증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15. 보세공장반입 원재료를 가공없이 반출시 협정적용 가능여부 및 신청시기

Q : 보세공장에 반입하기 위해 사용신고한 원재료를 제조·가공 없이 원상태로 수입통관을 할 때, 협정적용 가능여부와 적용신청 시기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2018.04.20.)

A : 관세법 제186조에 따라 보세공장에서 사용하기 위해 반입한 물품이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27조에 따라 제품생산 중단 등의 사유로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를 원상태로 국내 수입하는 경우, 한-아세안 FTA에서 정한 요건들을 충족하고 우리나라 도착시 물품과 협정적용 하고자 하는 물품의 동일성이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보세공장 반출물품 수입신고시 협정관세 적용신청은 FTA관세특례법 제8조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16. 부가가치기준 계산시 FOB가격 산정방법

Q : 수출물품의 국내생산자가 원산지결정기준(RVC40)을 수출자의 수출가격을 근거로 하여 원산지확인서발급이 가능한가요? (2018.06.11.)

A : 한-아세안 FTA협정에서는 역내가치포함비율(RVC)산정시에는 수출가격이 아닌 본선인도가격(FOB)으로 계산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본선인도가격(FOB)은 생산자로부터 해외 최종 선적항 또는 선적지까지의 운송비를 포함한 상품의 가격입니다. 수출자가 생산자에게 수출시의 FOB가격을 제공하여준다면 생산자는 그 가격으로 수출물품에 대한 역내가치포함비율(RVC)을 계산하여 해당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17. 부가가치기준시 원산지증명서 작성방법

Q : 원산지증명서의 제8란(원산지기준)에 부가가치기준 기재시 실제 부가가치기준이 아닌 원산지기준을 기재하여도 되나요? (2019.02.20.)

A : 원산지상품의 원산지기준이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원산지증명서 제8란(원산지기준)에는 원산지기준 충족에 필요한 “RVC”를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며, 실제 RVC를 기재하여도 인정가능 합니다.

18. 부가가치비율 계산시 직접법과 공제법 선택사용 가능 여부

Q : 역내부가가치비율 계산시 직접법과 공제법을 선택할 수 있나요? (2019.05.07.)

A : 한-아세안FTA에 따른 역내부가가치비율 산정시에는 공제법과 직접법 중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선택하여 산정할 수 있으며, 동일한 회계연도 동안에는 선택된 방법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19. 비당사국 생산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가능여부

Q :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물품을 그대로 아세안 국가로 수출하는 경우 한-아세안 FTA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2018.06.29.)

A : 한-아세안 FTA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수출당사국내에서 생산되어 동 협정에 따른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발급 가능합니다. 따라서, 중국에서 생산된 물품에 대해서는 한-아세안 FTA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20. 비당사국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가능여부

Q :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수출된 물품을 일본에서 다시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경우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2018.08.01.)

A : FTA 원산지증명서는 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간의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따라서 비당사국(일본)으로 수출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한-아세안 FTA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21. 선적일로부터 3일 이후에 발급된 원산지 증명서에 소급문구가 없는 경우 특혜적용이 가능한지?

- 한-아세안 FTA 부록 1 제7조 제1항은 원산지증명서가 수출시 또는 수출직후에 곧 바로 발급받아야 함을 규정하고 있고
- 제7조 제4항은 뜻하지 아니한 실수, 누락 또는 기타 타당한 사유로 곧바로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급발급(Issued retroactively)”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소급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
- 제10차 한-아세안 FTA 이행위원회(‘09.10)에서 상기 “수출직후(Soon thereafter)”의 의미를 선적일로부터 3일 이내로 해석하기로 합의
- * 선적일 4일 이후 부터 1년까지는 원산지증명서에 반드시 “소급발급(Issued retroactively)” 문구를 기재하고 발급받아야 함

22. 선적일 후 발급된 B/L 인정가능 여부

Q : B/L이 물품선적후에 발급된 경우 한-아세안 FTA에 따른 직접운송 증빙자료로서 인정 가능한가요? (2019.02.21.)

A : 한-아세안 FTA협정의 경우 B/L이 수출당사국에서 발행되고, B/L상에 선적항·경유지·도착항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B/L에 기재된 물품에 대해 운송인이 전운송구간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고 발행한 경우라면 사후에 발급된 경우라도 직접운송증빙을 위한 통과선하증권으로 인정가능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3. 세번변경기준인 경우 원산지증명서상 FOB가격 기재 여부

Q : 원산지증명서(AK CO) 발급 시 원산지기준이 CTH인 경우에도 ‘제9란’에 ‘FOB가격’ 기재하여야 하나요? (2017.10.10.)

A : 한-아세안 FTA 협정 부록1 제5조(원산지증명서 발급)에 따라, 원산지증명서(AK 서식)는 역내가치포함비율 기준이 적용되는 때에만 제9란에 FOB가치를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4. 소급발급 문구 기재 방법

Q : 우리나라의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소급발급’ 문구를 ‘제12란’에 기재하고 있는 반면, 상대국에서 ‘제4란’에 기재하여 발급하는 경우 유효성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17.03.27.)

A : 한-아세안 FTA에서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출물품에 대하여 선적한 후 1년 이내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선적 후 발급하였음을 나타내는 문구(“ISSUED RETROACTIVELY”)를 표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원산지증명서 어느 부분에 작성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동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산지증명서 제4란에 작성되었다는 것만으로 원산지증명서의 효력을 부인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25. 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에 서명 또는 인장이 없을 경우 인정 여부

질의 : 인도네시아 수출자에게서 수취한 CO에는 수출자의 서명 또는 발행기관의 인장이 없는데 유효한 CO로 인정 가능한가요?

답변 : 한-인도네시아간 EODES” 구축에 따라 한-인도네시아간 전자적 원산지정보교환(EODES)이 시행되더라도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와 수입자의 C/O 원본 보관의무는 이전과 같이 한-아세안 FTA 협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즉, 특혜관세대우의 신청을 위해서 수입자는 요구 받는 경우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수입국 당사국에 제출하여야 하므로 해당 원본을 보관하고 있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관대상이 되는 원산지증명서 원본에는 발급기관의 직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6. 수출자와 생산자가 상이한 경우 원산지신고서 수출자 기재 방법

Q : 수출자와 생산자가 상이한 경우 생산자가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시 제1란(수출자 상호 등)에 수출자를 기재하고 제11란(수출자 신고)에는 생산자를 기재한 경우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 가능한가요? (2017.02.21.)

A :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는 당사국 영역에 소재하는 생산자 및/또는 수출자 또는 그로부터 권한을 받은 대리인이 발급신청할 수 있으며, 원산지증명서의 제11란의 수출자는 제조업자 또는 생산자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산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였다면 원산지증명서의 제11란의 수출자 신고란은 생산자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27. 수출국으로 재수출시 연결원산지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

Q : 필리핀(A)-한국(B)-필리핀(C)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필리핀 A사가 발행한 AK FORM을 근거로 한국에서 연결원산지증명서(Back-TO-Back C/O) 발급가능한가요? (2018.02.02.)

A : 원산지증명서 서식,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등은 한-아세안 FTA 협정문 및 협정당사국(한국, 아세안 10개국)간 합의한 내용에 따라 이뤄져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상대국으로부터 특혜 배제될 수 있습니다. 한-아세안 FTA 연결원산지증명서는 최초 수출국과 다른 국가로 수출하는 경우 중간경유국에서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로 우리나라에서 최초 수출국으로 다시 수출하려는 경우에는 연결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28. 수탁가공물품의 가공비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

Q : 수탁가공 수입물품의 가공비에 대해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2018.10.11.)

A : 한-아세안 FTA에서는 협정에 따른 원산지기준과 다른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품에 대해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수탁가공물품이라도 협정에 따른 원산지 상품이라면 동 물품에 대해서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나, 가공비에 대해서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29. 아세안회원 국가가 아닌 제3국의 업체가 송품장을 발급한 경우 원산지 증명서 기재요령은?

- 상업장이 제3국에 소재하는 기업 또는 그 기업의 계산으로 수출자에 의하여 발급된 경우에도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원산지증명서를 인정함
- 물품의 수출자는 원산지증명서 13번란에 “제3국 발행송장 대상”임을 명시하고(√ 표시), 송장을 발행하는 회사의 명칭과 국적과 같은 정보를 7번란에 기재하면 인정됨

30. 양도된 원산지증명서 인정가능여부

Q : 우리나라에서 원산지증명서를 양도할 경우에 최종구매자(양수인)가 협정관세 적용 가능한가요? (2018.01.17.)

A : 계약상대국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소지하고 협정에서 규정하는 직접운송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협정 관세 적용가능이 가능합니다. 다만, 다수의 거래를 통해 거래당사자가 변경된 경우, 원산지증명서상 물품과 수입물품의 동일성 여부가 관련 무역서류 등을 통해 확인되어야 합니다.

31. 역내가치포함비율 계산관련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2780, 2013.11.27

1.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아세안회원국과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3(원산지규정) 제1조에서 ‘FOB’는 ‘생산자로부터 해외 최종 선적항 또는 선적지까지의 운송비를 포함한 상품의 본선 인도 가격’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 싱가포르 수출자가 우리나라의 수입자에게 판매한 금액의 본선 인도가격이 FOB금액에 해당한다고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32. 역외가공 인정여부 관련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2118, 2013.9.4

1. 귀하의 민원 관련입니다.
2. 어떤 물품이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물품 생산이 모두 계약국 역내에서 중단없이 수행되어야 하므로 아세안 국가에서의 역외가공은 인정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33. 연결원산지증명서 관련 질의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 2017-12-12(접수일자)

질의 : <사실관계>

- 싱가포르 무역업체인 B사가 인도네시아 수출자인 A사로부터 주석을 구매 후 싱가포르 보세창고에 보관하면서 구매자를 물색 중 최종 구매자가 확정되면 한국수입자인 C사로 재판매

<질의>

- 인도네시아에서 발급된 C/O를 근거로 싱가포르에서 발행한 연결원산지 증명서(Back-to-Back C/O)와 싱가포르에서 선적되어 한국으로 반입되는 운송서류로 통과선하증권 없이 직접운송 충족 및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 : ○ 한-아세안 FTA 제7조제2항(연결원산지증명서 발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중간 경유 당사국의 발급기관은 수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연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동 협정에서 규정한 요건에 따라 유효하게 발급된 연결 원산지증명서로 협정관세적용 신청이 가능하며 직접운송 충족과 관련해서는 통과선하증권의 제출은 필요하지 않으나 경유국에서 발급된 운송서류 등은 구비해야 합니다.
아울러 원산지결정기준 및 협정에 규정한 요건 충족 여부 등은 ‘원산지에 관한 조사’ 결과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관련규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7)

34. 연결원산지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

Q : 말레이시아에서 수출되어 싱가포르 보세창고에 보관 중인 물품을 한국으로 수입하는 경우 말레이시아에서 발행된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싱가포르에서 연결원산지증명서(Back to Back CO) 발급가능한가요? (2017.07.18.)

A : 협정당사국인 경유국에서의 연결원산지증명서는 협정 제7조(연결원산지증명서 발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경유국에서 발행될 수 있습니다.

35. 연결원산지증명서 발행 시기 및 제출서류

Q : 한-아세안 FTA 협정에 따른 연결원산지증명서 발급시 수입통관 후 발급 가능 여부 및 제출서류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2018.04.23.)

A : 한-아세안 FTA에서는 연결원산지증명서는 최초수출당사국이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경유하는 수출당사국에 의해 발행되는 원산지증명서로 보세상태 또는 수입신고 수리 후와 관계없이 경유국에서 발행될 수 있으나, 최초 원산지증명서상의 물품과 연결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물품이 동일하여야 하고 수입신고 수리후 연결원산지증명서 발급시에는 중간경유국에서 추가가공이 없는 경우 발급 가능하며,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증명서 발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연결원산지증명서 발급시에는 경유국에서의 수입자와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하는 수출자가 동일해야 하며, 이 경우 최초의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36. 연결원산지증명서 발급시 직접운송 증빙자료 필요 여부

Q : 연결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한 경우 직접운송과 관련하여 통과선하증권 및 제3국 비가공증명서 또한 구비해야 하나요? (2017.07.18.)

A : 한-아세안 FTA 협정 제7조 규정에 따라 발급된 연결원산지증명서는 통과선하증권 및 비가공증명서의 제출은 필요하지 않으나 경유국에서 발급된 운송서류 등은 구비해야 합니다.

37. 연결원산지 증명서의 유효성

Q : 인도네시아에서 싱가포르를 경유하여 한국으로 수입시인도네시아에서 발급된 C/O를 근거로 싱가포르에서 발행한 연결원산지 증명서(Back-to-Back C/O)로 한-아세안 FTA협정관세 적용가능한가요? (2019.06.07.)

A : 한-아세안 FTA 제7조제2항(연결원산지증명서 발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중간 경유 당사국의 발급기관은 수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연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동 협정에서 규정한 요건에 따

라 유효하게 발급된 연결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한 경우 협정관세적용 신청이 가능합니다.

38. 연결원산지증명서 직접운송 충족 가능 여부

Q : 인도네시아에서 싱가포르를 경유하여 우리나라로 수입시 인도네시아에서 발급된 C/O를 근거로 싱가포르에서 발행한 연결원산지증명서(Back-to-Back C/O)로 통과선하증권과 비가공증명서 없이 직접운송 충족이 가능한가요? (2017.12.15.)

A : 한-아세안 FTA 제7조제2항(연결원산지증명서 발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중간 경유 당사국의 발급기관은 수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연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 협정에서 규정한 요건에 따라 유효하게 발급된 연결 원산지증명서로 협정관세적용 신청이 가능하며 직접운송 충족과 관련해서는 통과선하증권의 제출은 필요하지 않으나 경유국에서 발급된 운송서류 등은 구비해야 합니다.

39. 완전생산기준 경우 원산지증명서 작성방법

Q : 원산지기준이 WO인데 원산지증명서의 제9란(총중량 또는 기타 수량 및 가격)에 FOB가격을 기재한 경우 인정 가능한가요? (2019.02.22.)

A : 한-아세안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작성시 원산지증명서의 제9란에 FOB가격은 원산지기준이 부가가치 기준인 경우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산지기준이 완전생산기준인 경우 원산지증명서에 FOB가격을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 가능합니다.

40.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물품의 범위

- 한-아세안 FTA에 의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은 각 국가의 지정된 발급기관이 자국의 FTA 이행법령 및 FTA 규정에 따라 발급하는 것으로 베트남의 경우도 동일합니다.
- 우리세관은 원칙적으로 수입 통관시 베트남 발급기관에 의해 정당하게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인정하나, 적용된 원산지결정기준이 협정과 다른 경우에는 보정 및 반려 등의 절차를 통해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물품의 범위는 한-아세안 FTA 부속서 3 제3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 물품에 대해서는 완전생산기준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41. 운송 관련

질의 : 인도네시아에서 우리나라(보세구역)에 도착후, 일본에 판매할 목적으로 운송하였다가 다시 반송한 물품에 대해

- 한-ASEAN FTA의 직접운송 충족 여부

※ 부산항 입항시점에 일본에서 발주가 오자, 부산항 보세구역에서 바로 재선적하여 일본으로 운송
- 일본(보세창고)에서 보관하던 중 결제가 지연되자 다시 부산으로 운송
일본세관 통제하에 있었음을 증빙하는 서류 : 요코하마 세관에서 발행한 비조작증명서
(Non-Mamipulation Certificate)

답변 : 아세안회원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제품이 우리나라에 도착되어 보세구역에 보관하던 중 협정 비당사국으로 판매하기 위해 운송되었다가 다시 우리나라로 반입된 경우에는 동 협정 부속서3 제9조(직접운송)에서 정하고 있는 운송형태로 볼 수 없으므로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42. 원산지 결정기준

- 한-아세안 FTA HS6205(의류) 물품은 특정공정(재단 및 봉제)이 계약당사국에서 수행되어야 함
 - 동 물품은 ‘최소인정기준’에 따라 총중량의 10%이하의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할 수 있음
 - 최소인정기준(총중량의 10% 이하)에 해당되는 재료*도 특정공정(재단 및 봉제)이 수행되어야 하는 건지
 - * 물품 생산에 사용되는 CUFF 및 포켓
 - ※ 질의 물품은 HS 6205 (남성용이나 소년용 셔츠)로서 원산지가 베트남인 직물을 재단·봉제하여 의류를 생산하고 있으나, 중국에서 재단한 CUFF 및 포켓(전체물품 총중량의 2%)을 사용하고 있음

한-아세안 FTA HS 6205의 원산지결정기준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계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에 한정한다.

한-아세안 FTA 원산지인정 최소기준 (제10조 최소허용수준)

품목번호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에 해당하는 물품 중 그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중량이 그 물품의 총중량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물품은 비원산지재료의 품목번호와 그 물품의 품목번호가 달라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한다.

아세안회원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서 부속서3(원산지규정) 제10조(최소허용수준)에 따라 HS 제6205호의 물품을 생산할 때는 상품의 총 중량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할 있습니다.

하지만 동 물품을 생산할 때 아래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하는 때에는 제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직물을 재단하고 봉제하는 작업은 계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수행되어야 합니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계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에 한정한다. 따라서 귀소의 질의와 같이 중국에서 재단한 포켓 등을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기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43. 원산지 결정기준 관련

질의 : 종전 프랑스, 일본(또는 네덜란드)이 원산지인 재료로 싱가포르에서 제조한 HS1806.20물품을 수입하면서, 해당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중의 하나인 CTH(HS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여 한-ASEAN FTA를 적용받았음. 이 경우 재료의 원산지가 뉴질랜드, 네덜란드로 바뀌어도 상기 원산지결정기준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 : 한-ASEAN FTA에서 HS1806.20의 물품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품목분류표상 4단위 이상의 세번변경이 발생하는 경우(CTH)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HS1806.20의 물품은 해당물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재료의 원산지가 뉴질랜드 또는 네덜란드이더라도 수출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CTH)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동 FTA에 따른 원산지제품으로 인정됨을 알려드립니다.

44. 원산지결정기준 기재방법

Q :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이 “RVC 40%이상 or CTH” 이고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에 해당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을 CTC로 표기 가능한가요? (2018.07.05.)

A : 원산지증명서는 협정에서 정한 규정대로 작성되어야 하며, 원산지증명서상 원산지기준 표기는 해당 물품이 원산지상품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증명서 작성방법에 따른 원산지기준 표기방법(CTH)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45. 원산지 결정기준 표기

질의하신 물품은 한-ASEAN FTA 협정문 부속서3 부록1(원산지 규정을 위한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 “원산지 증명서 서식 및 작성요령(Overleaf Note)”에 따라 “CTC + Specific Process”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한-ASEAN FTA 발효이후 상당한 기간 ‘Specific Processes’로 표기한 것을 명시하여 인정하여 온 바, 향후 체결당사자간 합의 될 때까지는 이와 같이 표기도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수출국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기업애로해소를 위해 우리청에서 확인하여 해결토록 진행할 계획이며, 향후 그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수출자도 “CTC + Specific Processes” 로 기재하여야 하며, 원산지증명서 발급시스템은 빠른 시일내에 개선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46. 원산지기준 기재 방법

Q : 원산지기준이 가공공정 기준일 경우 원산지증명서에 specific process의 약자인 ‘SP’ 로 기재할 수 있나요? (2019.10.29.)

A : 원산지상품의 원산지기준이 특별공정기준인 경우 원산지증명서의 원산지기준 기재란에 ‘specific process’ 또는 ‘SP’ 모두 기재 가능합니다.

47. 원산지 물품과 비원산지 물품이 하나의 C/O에 혼재되어 작성된 경우 해당 원산지 증명서는 유효한지?

○ 원산지제품과 비원산지제품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어 확인 가능하면 해당 원산지증명서는 유효함<2012.8.1>

48. 원산지상품 해당여부

Q : 베트남에서 역외산 견과류를 슬라이스 등의 작업 후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경우 원산지상품으로 인정가능한가요?* 최종수출물품의 세번: 제0802호 (2018.03.06.)

A : 한-아세안 FTA 협정문 부속서3 부록2(품목별 원산지기준)에 따르면, 품목번호 제0802(기타의 견과류) 제품은 “수출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여야 원산지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역외산 견과류로 베트남에서 생산한 경우 한-아세안 FTA에서 정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49. 원산지증명서 관련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2704, 2013.11.15

1.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아세안회원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제3국 송장거래 물품의 경우,
 - 제3국의 수출거래와 관련된 무역서류의 물품과 최초 수출국에서 발행된 무역서류(선하증권, 원산지증명서 등)의 물품과 동일한 물품인 것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3. 귀하께서 제출하신 서류는 ‘선명·품명·중량·수하인’ 등의 항목이 제3국의 수출거래와 관련되어 발행된 선하증권의 내용과 수출국에서 발행된 서류의 내용이 동일하나
 - 반복적으로 수출입하는 물품 등의 경우에는 동일물품으로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는 바,
 - 수출자와 제3국 송장발행인과의 계약서 또는 송품장등의 서류등 동일물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50. 원산지증명서 관련

귀사가 09.11.27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 관련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문1) 인도네시아산 물품(tin ingot)을 싱가포르로 수출하면서 송품장은 말레이시아 소재 업체가 발행할 경우 원산지증명서 요건

<답> 송품장이 제3국인(말레이시아)에 의하여 발행된 경우 원산지증명서 제13란에 “제3국 송장”임을 표기하고, 제7란에 송장 발행 회사명 및 국가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한-아세안 FTA 부속서 3 부록 1 제21조)

문2) 상기 인도네시아산 물품을 싱가포르 업체가 수입한 후 다시 한국 으로 수출하는 경우 “연결 원산지증명

서” 발급 요건

<답> “연결원산지증명서”을 발급 받으려면 인도네시아에서 발급된 “정당한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싱가포르 발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하고, 인도네시아로부터 물품을 싱가포르로 수입하는 자와 그 물품을 한국으로 다시 수출하는 자가 동일인이어야 합니다.(한-아세안 FTA 부록 1 제7조).

51.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간

Q :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19.06.28.)

A : 한-아세안 FTA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선적전, 선적시, 선적직후(선적일로부터 3근무일이내)에 발급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부득이한 사유로 선적전, 선적시, 선적직후에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급발급““문구를 기재하여 선적일로부터 1년이내에 소급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수출신고수리필증 사본,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원산지확인서(최종물품의 원산지확인서로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원산지소명서, 원산지소명서 기재내용 입증자료 등

52. 원산지증명서 발급기한

질의 :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기한을 현재의 3일에서 2일로 단축할 수 있는지?

답변 : FTA특례법시행규칙 제6조는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기간을 신청을 받은 날부터 현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10일 이내, 그 외의 경우에는 3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증명서발급기관(세관, 대한상공회의소)은 대부분 발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1일 이내에 발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에 필요한 첨부서류 제출과 현지 확인을 생략할 수 있어 더욱 신속하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3. 원산지증명서 발급여부 관련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392, 2014.2.19

1.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2. 렌즈의 생산에 사용되는 원재료 모두 국내에서 ‘생산’이 이루어진 원산지 재료이며
3. 수출 후 베트남에서 조립 공정만으로 렌즈를 완성하는 경우에는 미조립 상태로 수출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 규정된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 완성품 세번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4. 원산지증명서상 FOB 금액과 송품장상의 금액이 상이할 경우

질의 :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시, 원산지증명서상의 FOB 금액과 송품장상의 금액이 상이할 경우, 원산지결정기준에 관계없이 적용은 배제되는지?

답변 :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원산지증명서와 송품장의 금액이 다른 이유가 원산지증명서의 오류로 인한 것이라면 「FTA 특례법 시행규칙」 제16조제5항에 따라 세관장은 그 증명서를 제출한 자에게 5일 이상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55. 원산지증명서상 FOB금액과 Invoice 금액과 차이가 있는 경우 원산지증명서 유효성 여부

- 원산지증명서는 정확한 품목분류와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고, 협정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작성되어 해당 발급기관에서 발급된 경우에 한하여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될 수 있음
-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제9번 란의 FOB금액은 동 물품의 송품장 가격과 비교하여 원산지결정기준(부가가치 기준)의 충족여부를 확인하는 기준 금액으로 활용되고 있음.

- 다만, 해당 물품의 품목분류가 정확하고 원산지 결정기준을 판단하는데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경우, FOB금액의 불일치로 인하여 원산지 증명서의 효력이 무효화 될 수 없음

56. 원산지증명서상 FOB금액과 인보이스 금액과 차이가 있는 경우 원산지증명서 유효성 여부

-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제9번 란의 FOB 금액은 동 물품의 송품장 가격과 비교하여 원산지결정기준(부가가치 기준)의 충족여부를 확인하는 기준 금액으로 활용되며, FOB금액의 불일치로 인하여 원산지증명서의 효력이 무효화 될 수 없음<2010.5.25.>

[이유]

- 해당물품의 품목분류가 정확하고 원산지 결정기준을 판단하는데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경우, FOB금액의 불일치로 인하여 원산지증명서의 효력이 무효화 될 수 없음
 - ▶ 한-아세안 FTA 제12조
 1. 물품의 원산지에 대한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경우,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내용과 수입절차상 수입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의 경미한 차이가 물품과 사실상 일치한다면, 그 경미한 차이로 인해 원산지증명서의 효력을 사실상 무효화해서는 아니 된다.

57. 원산지증명서상 수출자 관련

1.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 적용에 있어서 원산지증명서상의 수출자와 선하증권상의 수출자는 원칙적으로 동일한 자이어야 합니다.
2. 다만, 중개무역 등의 사유로 원산지증명서상의 수출자와 선하증권상의 수출자가 다른 경우에는 수입자가 그 사유를 충분히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협정관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58. 원산지증명서 상 표기되지 않은 구성품(미국產 프로브)의 협정세율 적용 가부

수원세관 통관지원과-2476(' 09.12.18)호 질의에 대하여 불임과 같이 회신합니다.

☐ 질의자·일자 : 수원세관('09.12.21)

☐ 사실관계

- 말레이시아 A사는 오실로스코프(HS : 9030.20-1010)를 생산, 미국에서 제조된 프로브(HS : 9030.90-9090)와 함께 세트 포장하여 한국으로 수출
- 말레이시아 통상부는 프로브를 제외한 오실로스코프만 기재된 원산지증명서 발급
- 한국 B사는 말레이시아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오실로스코프는 협정관세, 프로브는 기본관세 적용 신청

☐ 쟁점(질의)

- 원산지증명서 상 표기되지 않은 구성품(미국產 프로브)의 협정세율 적용 가부?

☐ 관련규정

- 한·아세안 FTA 부록1 제4조 3항(원산지증명서의 발급)
 - 물품의 품명, 수량 및 중량, 포장의 표시 및 번호, 포장의 수량 및 종류는 기재된 바와 같이 수출물품과 일치하여야 함
-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⑦번 항목
 - 포장의 수량 및 종류, 품명(적절한 경우 수량 기재 및 수입국의 HS 번호 포함)을 기재하도록 규정

☐ 검토의견

- 원산지증명서 상의 물품과 신고물품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특혜관세 적용 가능

59. 원산지증명서상 제3국 송장 기재시 제3국에 수입국도 포함되는지

- 한-아세안에서 제3국이라 함은 수입당사국 또는 수출당사국이 아닌 당사국 및 비당사국을 말하므로 수입국은 제3국에 해당하지 않으며 제3국 발행송장에도 해당하지 않음

60. 원산지증명서 수입자 정보 기재방법

Q :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의 제2란(수하인)에 To Order으로 기재된 경우 인정 가능한가요? (2019.03.14)

A : 한-아세안 FTA 협정적용을 위한 원산지증명서는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증명서 작성방법에 따라 정확하게 발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원산지증명서에 제2란에 수입자의 정보가 정확하게 기재되지 않고 'TO ORDER' 로 기재된 경우에는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61. 원산지증명 서식 관련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245, 2014.2.4

1.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2014.1.1.일부터 개정되어 시행되었으나
 - 동 협정에 따른 이행위원회에서 기존의 원산지증명서도 시행일부터 6개월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합의한 바 있습니다.
 - 따라서 2014년 6월까지의 기존의 서식을 사용하여 발급된 경우에도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보아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2. 원산지증명서에 원산지결정기준 표기방법

Q : 수입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이 '2단위 세번변경기준(채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 한 경우에 한정)' 인 경우 원산지증명서에 'CTC + Specific Processes'로 기재된 경우 인정가능한가요? (2018.01.10.)

A : 수입물품의 원산지기준이 2단위 세번변경기준과 가공공정기준(채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이 결합된 결합기준인 경우 원산지증명서에 'CTC + Specific Processes' 로 표기되어있다면 인정가능합니다.

63.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적용범위 안내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830, 2014.4.9

1. 「아세안회원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 운영절차 개정사항 통보」와 관련입니다.
 - * 관련 공문 :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2906, 2013.12.13.
2. '14.1.1자로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이 ' 발급일로부터 1년(종전 6월)으로 개정 시행되었으나, 일선 현장에서 '시행일 이전 발급분'에 대한 유효기간을 적용함에 있어 일부 혼선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범위를 알려드리니 업무에 착오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 ☐ 시행일('14.1.1) 이전 발급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년
 - 근거 : 개정 「한-아세안 포괄적 경제협력협정 상품무역협정 원산지증명 운영절차(OCP)」 제10조 및 「FTA특례법 시행령」 제9조의2 등
 - ☐ 적용 예시
 - '13.10.1.자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 만료일 : ' 14.9.30.

64. 원산지증명서 유효성 관련

가. 질의요지

-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상 FOB금액과 인보이스 금액과 차이가 있는 경우 원산지증명서 유효성 여부

나. 회신내용

- 원산지증명서는 정확한 품목분류와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고, 협정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작성되어 해당 발급기관에서 발급된 경우에 한하여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제9번란의 FOB금액은 동 물품의 송품장 가격과 비교하여 원산지결정기준(부가가치 기준)의 충족여부를 확인하는 기준 금액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물품의 품목분류가 정확하고 원산지 결정기준을 판단하는데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경우, FOB금액의 불일치로 인하여 원산지증명서의 효력이 무효화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동 증명서의 작성 요령중 ‘Gross weight or other quantity and Value’ 문구의 해석은 “총중량(또는 기타수량) 및 본선인도 가격”임을 알려드립니다.

65. 원산지증명서 유효성 여부

가. 질의

-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제9번란에 인보이스 번호와 일자를 기재해야 하나, 수출자의 거래관행*에 의거 증명서 발행일자가 인보이스 발행일자보다 늦게 기재된 경우 동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 여부
* 수출자는 인보이스 발행일자를 관행상 선적 예정일자를 기재

나. 답변

- 한-아세안 FTA 협정문 부록1「원산지 규정을 위한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 제4조제3호 라호의 규정을 보면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물품의 품명, 수량 및 중량, 포장의 표시 및 번호, 포장의 수량 및 종류 등 신청서류 기재내용과 수출물품이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귀하께서 질의한 사안은 기업간 거래 관행이 아닌 실제로 인보이스가 발행된 날을 기준으로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하여야 하고, 수출자 및 생산자가 원산지증명서의 오류가 있음을 안 경우에는 FTA특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원산지 증빙서류 수정통보 절차를 거쳐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동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 여부는 거래관계 등 사실을 확인한 후 이상이 있는 경우 FTA특례법 제13조의 원산지검증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66. 원산지증명서의 경미한 하자 인정가능 여부

Q : 단순오타자 등 경미한 하자가 있는 원산지증명서는 인정가능 한가요? (2018.01.17.)

A : 원산지증명서 등 원산지증빙서류에 오타 등 경미한 오류가 있으나 물품의 원산지 등 실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해당 서류의 효력 전체가 부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소, 품명 등의 단순한 오타자와 같은 경우 경미한 하자로 볼 수 있으나, 원산지증명서의 경미한 하자를 명시적으로 열거하기는 어려우며 사안별 구체적 서류를 통해 합리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67. 원산지증명서의 기재내용

Q : 농산물 및 가공농산물 수출시 원산지증명서에 어떤 내용이 기재되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018.05.25.)

A : 한-아세안 FTA 협정적용을 위한 원산지증명서(AK Form)에는 송하인, 수하인, 운송수단, 품명, 원산지결정

기준, HS번호 등 총 13가지 항목의 기재사항이 있으며, FTA관세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에 동 원산지증명서 서식과 작성요령이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8. 원산지증명서의 원산지기준 기재 방법

Q : 원산지기준이 세번변경기준과 가공공정기준의 결합기준인 경우 “CTC+SP”로 기재시 인정 가능한가요? (2019.04.29.)

A : 원산지상품의 원산지기준이 세번변경기준과 특별공정의 결합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 제8란(원산지기준)에는 ‘CTC+Specific Processes’를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나, ‘CTC+SP’를 기재하더라도 인정 가능합니다.

69. 원산지증명서의 원산지기준(부가가치기준) 기재 방법

Q : 원산지증명서의 제8란(원산지기준)에 부가가치기준 작성시 원산지기준충족에 필요한 원산지기준을 기재하여야 하는지 실제 부가가치기준을 작성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018.10.18.)

A : 원산지상품의 원산지기준이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 제8란(원산지기준)에는 원산지기준 충족에 필요한 “RVC”를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제 RVC를 기재하여도 인정가능 함을 알려드립니다.

70. 원산지증명서의 원산지기준 작성방법

Q : 품목별원산지기준이 2단위세번변경기준과 가공공정기준의 결합기준인 경우, 원산지증명서 작성시 원산지기준 기재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19.10.18.)

<제6210.20-2000호의 원산지기준>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계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으로 한정

A : 원산지상품의 원산지기준이 2단위 세번변경기준과 특별공정의 결합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 제8란(원산지기준)에는 ‘CTC+SP’ 또는 CC+SP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71. 원산지증명서의 의류 원산지기준 기재방법

1. 질의 사항

-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의 제8란 원산지기준 작성시, 특정공정에 해당하는 ‘기타 의류(HS 6114.30-1000)’의 경우 ‘Specific Process’라고 표기해도 FTA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2. 질의 회신

-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는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문 부속서3의 부록1 ‘원산지증명서 서식 및 작성요령(Overleaf Note)’에 따라 기재되어야 합니다.
- 동 요령에 따라 한-아세안 FTA 특정공정 기준에 해당하는 ‘기타 의류(HS 6114.30- 1000)’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 제8란 원산지기준란에 ‘Specific Processes’로 기재한 경우,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 또한, 동 사안에서 언급된 세번에 해당하는 물품의 한-아세안 FTA상 품목별 원산지기준을 참조하여 ‘CTC+Specific Processes’ 또는 ‘CC+Specific Processes’로 기재한 경우에도 실질적인 내용이 동일하므로 이 경우에도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72. 원산지증명서 인정 여부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231, 2014.2.4

1.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FOB금액’ 란에는 ‘정형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규칙’에 따른 본선인도조건의 수출물품 금액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수탁가공물품의 경우 원부자재금액과 가공비를 합산한 금액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3. 귀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인도네시아에서 수출하는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이 역내가치포함비율기준이 아닌 경우에는 ‘FOB금액’ 란의 기재를 생략하도록 한 동 협정의 원산지증명 운영절차가 2014.1.1.일부터 개정되어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3. 원산지증명서 작성 관련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2702, 2013.11.15

1. 부산세관 통관지원2과-2901(2013.10.31)호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아세안회원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관세품목번호 제61류의 물품을 원산지증명서 제8번란(원산지결정기준)에 기재하는 방법에 대하여는
 -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증명서의 확인 및 특혜관세 적용지침」(청 자유무역협정이행과-190, 2007.11.23)에서 ‘Specific Processes’ 로 표기해야 하는 물품을 ‘CC+cutting’, ‘CC+sewing’ 으로 기재하는 경우도 실질적인 내용이 동일하므로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하고 있으며
 - 동 협정 발효이후 상당한 기간 ‘Specific Processes’ 와 ‘CTC+Specific Processes’ 로 표기한 것을 명시하여 인정하여 온 바,
 - 상기와 같이 기재된 경우 모두 유효한 원산지 증명서로 보아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74. 원산지증명서 작성 관련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187, 2014.1.24

1. 아세안회원국과의 원산지증명서는 지난 제8차 한-아세안 포괄적 경제협력협정 이행위원회에서 서식을 개정하여 올해부터 사용하기로 합의(‘13.6.27) 되어 현재 원산지증명서는 개정서식을 사용하고 있으나
2. 상기 개정서식 사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운영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 (1) 태국왕국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으로 수출하는 물품의 원산지증명서
 - 개정서식 ⑨란(총중량 또는 기타수량 및 가격)의 ‘FOB금액’ 이 표시되도록 원산지증명서 발급시스템 변경
 - ※ 종전 개정서식으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도 세관에서 재발급시에는 ‘FOB금액’ 이 표시되도록 변경되며, 향후 별도 통보시까지 변경된 서식으로 발행됨
 - (2) 아세안회원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의 원산지증명서
 - ‘14년6월까지 개정전 원산지증명서와 개정 원산지증명서 모두 사용 가능(발급일 기준)

75. 원산지증명서 작성 관련 질의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 2012-07-09(회신일자)

질의 : 한-아세안 FTA 관련 제3국 무역시 원산지증명서상(AK Form)에 기재되어야 하는 수출자, FOB 가격(9번란)은?

답변 : 우리나라에서 아세안국가로 수출되는 물품에 대한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는 한-아세안 FTA 부록 1의 “원산지 규정을 위한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와” 「자유무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3에 따른 [별지 제6호의5 서식]의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기재요령 따라 작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한-아세안 FTA 적용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 아세안회원국으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는 제3국에서 송장이 발행되는 경우에도 우리나라 수출자의 수출가격(FOB기준)이 기재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76. 원산지증명서 적용가능 여부

귀사가 질의한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적용가능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 : 한-ASEAN FTA 원산지증명서 제1란(수출자)에 수출자가 아닌 제조자를 기재하여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로 한-ASEAN FTA 특혜관세 적용 신청이 가능한 지 여부

회신 : 한-ASEAN FTA 협정문 부록1(원산지 규정을 위한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원산지증명서 작성방법을 보면, 제1란(수출자)에는 반드시 수출자를 기재(제11란의 수출자는 제조자 및 생산자를 포함할 수 있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건 질의 원산지증명서는 제1란(수출자)에 수출자가 아닌 제조자를 기재하고 있어 한-ASEAN FTA 협정문과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본 원산지증명서를 가지고는 한-ASEAN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77. 원산지증명서 제1란(수출자)에 수출자가 아닌 제조자를 기재하여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로 한-아세안 FTA 특혜관세 적용 신청이 가능한지?

○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작성요령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특혜관세 적용불가

[이유]

○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작성요령 제1란에는 반드시 수출자를 기재하여야 함

78. 원산지증명 운영절차 개정사항 안내

- 제8차 한-아세안 포괄적 경제협력협정 이행위원회('13.6.27)에서 채택되어 2014.1.1자에 개정기로 결정된 “한-아세안 포괄적 경제협력협정상품무역협정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OCP)가 개정되어 공포“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 아 래 -

(1) 원산지증명서 서식 일부개정

- ‘FOB 금액’ 란은 역내가치포함비율 기준이 적용되는 때에만 작성. 다만, 캄보디아 또는 미얀마로 또는 동국가에서 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는 개정일로부터 2년의 과도기간 동안에는 원산지기준에 관계없이 FOB가치를 작성해야 함
 - 다수 품목을 기재할 수 있도록 원산지증명서 을지(乙紙)를 신설
- ※ 붙임 문서 참조

(2)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이 현행 발급일로부터 6개월에서 발급일로부터 12개월로 개정

(3) 원산지증명서의 오류수정을 위한 원산지증명서 재발급을 허용

(4) 수출 당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시기를 수출물품 선적 전, 선적 시 또는 선적 직후(선적일로부터 3근무일 이내)에 발급되는 것으로 개정

- ※ 붙임 1.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갑지)
2.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을지)

79. 인도네시아 물품을 싱가포르에서 송장 발행시 가격 결정

질의 : 거래관계가 아래와 같을 때, 원산지증명서의 제9란(송장 FOB) 기재시 참조해야 하는 송장과, 역내부가가치 계산을 위해 참조해야 하는 송장(FOB)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인도네시아 수출자(A), 싱가포르 송장발행자(B), 싱가포르 회사의 한국 지사(C), 한국의 수입자(D) - A에서 B에 발행한 송장 - B에서 C에 발행한 송장 - C에서 D에 발행한 송장

답변 : 제9란에는 인도네시아 A사 또는 싱가포르 B가 발행한 송장의 FOB 가격이 기재될 수 있으나, 역내부가가치(RVC) 계산을 위한 FOB 가격은 상기 인도네시아 A사가 싱가포르 B사에 발행한 송장 상의 FOB 가격입니다.

80. 인도네시아 물품이 싱가포르 수입자 앞으로 발행된 증명서를 토대로 연결원산지증명서 발급된 경우 구비서류

질의 : 인도네시아 원산지 물품에 대해 싱가포르 수입자 앞으로 발행된 증명서를 토대로 싱가포르에서 한국 수입자 앞으로 최종 연결원산지증명서(back-to-back)를 발급할 경우, 아래의 서류 외에 구비해야 할 서류가 무엇인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 1. 싱가포르 발행 back to back 증명서
2. 싱가포르-한국 직접운송 증빙서류
3.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등 기타 서류

한-아세안 FTA 협정 상 연결원산지증명서는 최초 수출 당사국이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경유하는 수출 당사국에 의하여 발행되는 원산지증명서로서 중간 경유 당사국의 발급기관은 물품이 그 영역을 통과하는 동안 수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연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결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협정의 부록 원산지증명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다 음 =

- ① 정당한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제출할 것
- ② 중간 경유 당사국의 수입자와 중간 경유 당사국에서 연결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수출자가 동일할 것
- ③ 제14조에 규정된 검증절차가 적용될 것

상기 조건에 따라 경유국에서 발급된 연결원산지증명서라면 경유국에서의 상품이 조작되지 않았음(직접운송)을 확인하는 서류로 인정될 수 있으며 동 서류와 귀하가 제시하는 다른 서류를 근거로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 적용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81. 인증수출자 갱신시 부가가치 기준에서 세번변경기준으로 변경 갱신 가능 여부

질의 : 인증수출자 갱신을 하려는데 부가가치 기준의 품목 인증수출자자격에서 세번변경기준 품목으로 변경 갱신이 가능한가요?

답변 : 품목별인증을 받은 품목이 원산지기준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신규로 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아야합니다.

82. 자유무역지역 생산물품의 한-아세안 FTA 적용 여부

질의 : 자유무역지역에 원산지제품을 원재료로 반입한 후 가공처리한 물품의 협정관세 적용여부

답변 : 한-아세안 FTA 부속서3(원산지 규정) 제2조(원산지 기준)에 의거 수입물품이 협정관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수출국의 영역에서 생산되어야 하는 바, 자유무역지역에 원산지제품을 원재료로 반입한 후 가공처리한 물품은 동 협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83. 적용 관련 질의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 2012-06-21(회신일자)

질의 :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시, 원산지증명서상의 FOB 금액과 송품장상의 금액이 상이할 경우, 원산지결정기준에 관계없이 적용은 배제되는지?

답변 :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원산지증명서와 송품장의 금액이 다른 이유가 원산지증명서의 오류로 인한 것이라면 「FTA 특례법 시행규칙」 제16조제5항에 따라 세관장은 그 증명서를 제출한 자에게 5일 이상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84. 적용 관련 질의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 2012-11-20(회신일자)

질의 :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시, 원산지증명서와 수입신고서상의 품목분류가 상이하나 원산지결정기준이 동일한 경우 특혜적용이 가능한지?

답변 :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원산지증명서와 송품장의 금액이 다른 이유가 원산지증명서의 오류로 인한 것이라면 「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5항에 따라 세관장은 5일 이상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85. 적용대상

질의 : 인도産이나 중국産 참깨를 한·ASEAN FTA 대상국(베트남, 태국 등)으로 가져와 볶음참깨분말(기타 가공품 제2008.19- 9000)로 가공해 수입해도 한·ASEAN FTA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원산지가 ‘인도’ 나 ‘중국’ 인 참깨를 한·ASEAN FTA 대상국(베트남, 태국 등)으로 가져와 볶음참깨분말로 가공해 수입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근거로 한·ASEAN FTA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수입물품인 볶음참깨분말의 한·ASEAN FTA 원산지결정기준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0802.31호, 제0802.32호, 제0802. 40호 및 제0802.90호에 해당하는 재료는 계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다만 제0802.31호, 제0802.32호, 제0802. 40호 및 제0802.90호에 해당하는 재료는 계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따라서 비역내산(인도産, 중국産)인 참깨를 한·ASEAN FTA 협정국(베트남, 태국 등)에서 가공해 볶음참깨분말로 만든 경우 원산지기준의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을 충족해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합니다(참깨는 제0802.31~90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계약당사국에서 완전 생산한 것일 필요가 없음.).

또한 비역내산(인도産, 중국産)인 참깨를 한·ASEAN FTA 협정국(베트남, 태국 등)에서 가공해 볶음참깨분말로 만들 때 40%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경우에도 위 원산지기준의 부가가치기준(RVC 40% 이상)을 충족해 한·ASEAN FTA 특혜관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선택기준 적용).

다만 위 답변 내용은 질의에서 제시한 볶음참깨분말이 품목번호 제2008.19-9000호에 분류됨을 전제로 한 것이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ASEAN FTA 대상국(베트남, 태국 등)으로부터 우리나라로 직접 운송되고,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증명서를 갖추어야 합니다.

86. 적용절차

대성 제 2010-03호로 질의한 「FTA원산지증명서에 의한 관세징수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 1> 99.9% 은괴(7106.91-1000)의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은 0%이므로, ① 태국에서 직접운송되고, ② 한·아세안 FTA 협정에서 정한 양식의 원산지증명서(원산지결정기준, HS, 인장, 서명 등이 적절하게 기재)를 발급받으면 0%의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질의 2> 협정문 원산지 부속서 부록1 원산지 규정을 위한 원산지증명서 운영절차 제7조 제1항에 “원산지증명서는 수출물품이 수출 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원산지로 인정될 수 있는 때에는 수출시 또는 수출 직후 곧 발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수출시마다 발급되어야 하며, 같은 제품이라도 이미 사용된 원산지증명서는 반복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질의 3> 우리나라의 경우 증명서 발급 처리기간은 통상 신청일로부터 3일(현지 확인의 경우 10일)이나, 체결

상대국의 경우에는 해당국의 규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질의 4> 우리나라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FTA 특례법 시행령 제3조의 2에 따라 일선 세관 및 대한상공회의소로 정해져 있습니다.

87. 제2202.90호의 원산지결정기준

Q : 태국에서 제2202.90호 물품 생산 시 베트남에서 완전생산된 제1211.20호의 원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제2202.90호 원산지기준의 단서조항을 충족가능한가요? (2019.02.11.)

<제2202.90호의 원산지결정기준>

40%이상의 역내부가가치 발생. 다만, 제1211.20호 및 제1302.19호에 해당하는 재료는 계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

A : 한-아세안 FTA의 제2202.90호의 원산지기준 중 단서조항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제1211.20호 및 제1302.19호에 해당하는 재료는 한-아세안 FTA 회원국에서 완전생산 되어야합니다. 따라서, 태국에서 수출되는 제2202.90호의 생산에 사용되는 원재료인 제1211.20호가 한-아세안 회원국인 베트남에서 완전생산 된 경우는 제2202.90호의 원산지기준의 단서조항을 충족합니다.

88. 제6206호 원산지 결정기준

한-아세안 FTA 협정상 6206호의 원산지결정기준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6206호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이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재단 및 봉제된 것에 한한다” 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로 수입하는 의류에 부착되는 라벨은 우리나라 법령(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부착하는 것으로, 생산된 의류제품의 안쪽에 작은 크기로 부착하는 것으로 이는 원산지상품을 결정하는 요인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89. 제8529.90호의 원산지결정기준 해석 방법

Q : 제8529.90호의 제품생산시 동일 소호의 원재료를 사용하여 최종제품을 생산한 경우 원산지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지 문의드립니다. (2017.03.03.)

<제8529.90호의 원산지결정기준>같은 소호 내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8529.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

A : 동일한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를 사용하여 최종 제품을 생산할 경우에도 원산지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아세안 협정문 원산지 규정」 제8조(불인정 공정) 규정에 의거 불인정 공정 이상의 공정을 반드시 수행해야만 최종 제품이 원산지 자격을 갖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90. 제3국 경유 물품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 2008-08-04(회신일자)

질의 : <질의 1>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된 의류가 미국 상표권자의 회사 방침에 따라 미국의 로스앤젤레스를 거쳐(단순경유) 한국으로 운송될 경우, 한-아세안 FTA 부속서3 제9조 제2항 가호에서 규정한 “그 경유가 지리적 이유로 또는 오직 운송 요건에만 관련된 고려에 의하여 정당화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2> 제3국을 경유하였을 경우 우리나라 세관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답변 : <질의 1에 대한 회신>

- 원칙적으로 수입물품이 한-아세안 FTA 특례관세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수출 당사국과 수입당사국 영역간에 직접운송되어야 하나,
- 예외적으로 제3국을 경유하여 운송되더라도, 다음을 조건으로 직접운송으로 간주될 수 있음(한-아세안

FTA 부속서 3 제9조 제2항)

- ① 그 경유가 지리적 이유로 또는 오직 운송 요건에만 관련된 고려에 의하여 정당화될 것
 - ② 그 상품이 경유국에서 거래 또는 소비되지 아니하였을 것, 그리고
 - ③ 그 상품이 하역, 재선적 또는 그 상품을 좋은 상태로 유지하는데 요구되는 공정 외의 어떠한 공정도 거치지 아니하였을 것
- ①의 지리적 이유라 함은 당사국이 내륙국 등으로 항구 등이 없어 제3국을 경유하지 않으면 수출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며, ②운송요건이라 함은 수출시 최종 수입국이 결정되고 선적하였으나, 운송편(선박, 항공기)의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제3국을 경유해야 하는 경우를 말함
 - 따라서, 귀사와 같이 “미국 상표권자의 방침에 의한 경유”는 운송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질의 2에 대한 회신>

- 제3국 경유물품의 원산지 결정시에는 다음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합니다.
 1. 계약상대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하기까지의 선하증권 등 운송서류
 2. 제3국에서 추가적 생산 또는 작업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당해 물품이 제3국 관세당국의 통제 또는 감독 하에 있었음을 해당 관세당국이 확인한 증명서
- * 수입항까지 국제운송에 필요한 하역·선적·포장에 필요한 작업이나 물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는데 필요한 작업은 제외

91. 제3국 경유물품 FTA 협정관세 적용 여부 관련

아미10-7호로 질의한 「제3국 경유시 FTA적용 기준」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 질의 1 관련하여 「협정문 원산지 부속서 3 원산지규정 제9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면 제3국을 경유하더라도 협정적용이 가능하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 협정문 원산지 부속서 부록1 원산지 규정을 위한 원산지 증명서 운영절차 제19조?에 따라 원산지물품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 ☐ 질의 2 관련하여, 「한·아세안 협정문 원산지 부속서 부록1 원산지 규정을 위한 원산지증명서 운영절차 제7조」에 따라 경유국인 싱가포르에서 「연결원산지증명서(Back To Back C/O)」를 발급하면 협정적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근거>

- 한·아세안 협정문 원산지 부속서 3 원산지규정 제9조(직접운송)
- 한·아세안 협정문 원산지 부속서 부록1 「원산지 규정을 위한 원산지증명서 운영절차 제19조」

92. 제3국 경유물품의 한-아세안 및 최빈국 특혜관세 적용 여부

질의 : 싱가포르 보세구역에서 여러 원산국의 물품을 집하한 후 여러 원산국의 물품을 혼재하여 한국으로 운송하는 경우,
- 싱가포르 세관에서 발행하는 서류(Non-Manipulation Certification)로 한-ASEAN FTA 및 최빈국특혜관세 적용 가능 여부 첨부

답변 : 한-ASEAN FTA에서 제3국을 경유하여 운송하는 물품은 다음의 모든 조건에 맞는 경우에는 직접운송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첫째, 지리적 또는 운송상의 이유로 경유할 것
 - 둘째, 경유국에서 거래 또는 소비되지 않아야 함
 - 셋째, 그 상품이 하역, 재선적 또는 그 상품을 좋은 상태로 유지하는데 요구되는 공정 외의 어떠한 공정도 거치지 않아야 함
- 또한 이 경우 수출당사국에서 발행된 통과선하증권, 원산지증명서 원본, 물품의 상업송장과 그 밖에 증빙서류를 수입국의 세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싱가포르 세관에서 발행한 서류(Non-Manipulation Certification)는 상기 조건 중 둘째 조건과 셋째 조건을 증빙하는 서류로 인정할 수 있으나, 그 밖에 다른 조건에 맞는 경우에만 해당물품에 대하여 동 FTA 적용이 가능합니다.
- 또한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도 ‘지리적 또는 운송상의 이유로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단순경유

하는 경우로서 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환적되었거나 일시적으로 장치된 경우’에 직접운송된 것으로 인정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싱가포르 세관에서 발행한 서류는 ‘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환적되었거나 일시적으로 장치된 것’임을 증빙하는 서류로 인정할 수 있으나, 그 밖에 다른 조건에 맞는 경우에만 해당물품에 대한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93. 제3국 경유하여 수입하는 경우 직접운송 요건 충족 여부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 2016-01-12(접수일자)

질의 : □ 한-아세안 FTA협정상 제3국 경유하여 수입하는 경우 직접운송 요건 충족 여부

- (질의1) 통과선하증권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지
- (질의2) 통과선하증권 미제출시 세관 통제 입증서류 제출로 직접운송 요건 충족 여부
- (질의3) 통과선하증권만 제출하면 인정되고 비조작증명서는 세관장이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구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는지 여부

답변 : 1. 귀 법인의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2. 한-아세안 FTA협정상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 수출당사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은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세관통제하에 있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해야 됨을 알려드립니다.

94. 제3국 발행 송장 거래 가능 여부

Q : 태국에서 생산된 물품을 체코에 소재한 수출자와 우리나라 수입자간 계약에 따라 수입시 한-아세안 FTA 협정 적용이 가능한가요? (2017.09.04.)

A : 3국 송장발행의 경우에도 원산지증명서가 인정되므로, 체코에 소재하는 업체를 제3국 수출자로 하는 거래는 가능합니다. 다만, 원산지증명서에 “제3국 발행송장 대상”임을 명시하고 발행회사, 국적 등 정보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태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은 태국으로부터 우리나라로 직접 운송되는 경우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95. 제3국 발행 송장거래시 협정적용 가능 여부

Q : 제3국 발행 송장거래시 수입신고서의 수출자와 원산지증명서의 수출자가 상이한 경우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2017.09.14.)

A : 원산지증명서와 수입신고서의 수출자는 동일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한-아세안 FTA 협정은 제3국 송장발행의 경우에도 원산지증명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산지증명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제3국 발행 송장 거래임이 확인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와 수입신고서상 수출자가 상이하여도 협정관세적용이 가능하므로 원산지증명서에 “제3국 발행송장 대상”임을 명시하고 발행회사, 국적 등의 정보가 기재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96. 제3국 발행 송장의 경우 원산지증명서에 제3국 수출자 발행 송장번호 기재가능여부

Q : 제3국 송장이 발급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 제10란(송장번호 및 발급일자)에 제3국 수출자가 발급한 송장번호와 발급일자를 기재하여도 되나요? (2018.01.09.)

A : 한-아세안 FTA의 원산지증명서 제10번란에는 계약당사국의 수출자가 발행한 송장번호가 기재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제3국 송장이 발행된 경우에는 관련 무역서류에 의하여 제3국 무역거래임과 원산지증명서상 물품과 실제 거래 물품과의 동일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제3국 수출자가 발행한 송장번호가 기재된 경우에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97. 제3국 발행송장 정보없는 원산지증명서의 유효 여부

질의 : 제3국 발행송장 정보가 없는 원산지증명서도 한-아세안 협정 적용 신청 시 유효한가요?

답변 : 한-아세안 협정에서는 “상업송장이 제3국에 소재하는 회사 또는 그 회사의 계정으로 수출자에 의하여 발급된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에 “제3국 발행송장 대상” 임을 명시하고 송장을 발행하는 회사의 명칭 및 국적과 같은 정보를 기재”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3국에서 상업송장이 발행된 경우에는 상기 “제3국 발행송장” 정보가 명기된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협정적용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98. 제3국 송장관련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2782, 2013.11.27

1.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아세안회원국과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3(원산지규정) 제21조에서 상업송장이 제3국에 소재하는 기업에서 발급된 경우와 제3국에 소재하는 기업의 계산으로 수출자에 의해 발급된 경우 원산지증명서에 ‘제3국 발행송장 대상’ 임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협정 당사자가 아닌 제3국에 소재하는 기업의 계산으로 아세안회원국의 수출자가 상업송장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에 ‘제3국 발행송장 대상’ 임을 명시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99. 제3국 송장 관련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1216, 2015.5.6

1. 귀사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아세안회원국과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3(원산지규정) 제21조에 의하여 상업송장이 제3국에 소재하는 기업에서 발급된 경우에도 귀사에서 제시한 거래관계가 맞고, 원산지증명서 작성 및 거래관계 및 증빙을 입증한다면 해당 원산지증명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귀사가 제시한 서류의 진위여부와 정확성 등에 관한 사항은 「관세법」 제233조에 따른 ‘원산지에 관한 조사’ 업무가 수행될 때 확인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00. 제3국 송장 기재대상 여부

귀사가 질의한 FTA 특혜 원산지증명서상 제3국 송장 기재 대상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

- ① 한-ASEAN FTA 원산지증명서상 “제3국 송장” 기재시 제3국에 수입국도 포함되는지 여부
- ② 송장을 수입국 소재 기업이 발급한 경우도 원산지증명서에 제3국 송장으로 기재 후 한-ASEAN FTA 특혜관세 적용 신청이 가능한 지 여부

나. 회신내용

<질의 ①>

-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부속서 3(원산지규정) 제1조(정의)에 “제3국” 이라 함은 ‘수입당사국 또는 수출당사국이 아닌 당사국 및 비당사국을 말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귀사가 수입자인 본 건 질의에 있어서 수입국 소재 기업이 발급한 송장은 “수입국” 이 “제3국” 의 정의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한-ASEAN FTA 협정 부록 1(원산지규정을 위한 원산지증명 운영절차) 제21조의 “제3국 발행송장” 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질의 ②>

- 한-ASEAN FTA 협정에는 제3국(수출국과 수입국을 제외한 당사국과 비당사국) 소재 기업이 발급한 송장에 근거한 원산지증명서 뿐만 아니라 수출국과 수입국 소재 기업이 발급한 송장에 근거한 원산지증명서도 수

리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이 경우의 원산지증명서 기재방식에 관하여 협정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추후 진행될 한-ASEAN FTA 이행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논의를 거친 후 그 결과를 회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101. 중고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

Q : 국내에서 중고자동차를 구매한 수출자가 필리핀으로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에도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2017.05.19.)

A : 한-아세안 FTA상 원산지증명서 발급 대상물품을 신품으로만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한-아세안 FTA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중고품에 대해서도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은 ① 중고자동차의 생산자가 아래 구비서류를 갖추어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세관, 상공회의소)에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을 하거나 ② 수출자가 중고자동차를 공급하는 자로부터 원산지확인서를 수취한 후 아래 구비서류를 갖추어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①수출신고필증 사본, ②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③원산지확인서(최종물품에 대한 원산지확인서로서 해당 물품의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④원산지소명서(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생산자는 원산지소명서 직접 제출 가능) ⑤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증명서 발급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102. 직접운송원칙 관련

□ 질의서

- ① 한-아세안 FTA의 직접운송과 관련하여 당 사무소 통관 업체의 문의가 있어 검토한바 업체의 유권해석 요청이 있어 귀청에 질의합니다.
- ② 인도네시아의 수출자와 국내 수입업체와의 무역계약에 의하여 인도네시아로부터 인도네시아산 원유수입 시 체선료 비용의 절감을 위하여 원유를 싱가포르 해상의 FLOATING STORAGE에 일시저장 후 다시 선적하여 국내로 수입될 경우 한-아세안 FTA 특혜관세를 받을 수 있는지요?
 - B/L은 인도네시아에서 선적 시 먼저 발행되고 싱가포르 해상의 FLOATING STORAGE에 저장 후 선적될 때 다시 한번 발행됩니다.
 - 특혜관세 적용 여부에 따라 계약 내용을 정해야하고 또한 계약을 조속히 해야할 사정이오니 가능하면 빠른 유권해석을 부탁드립니다.
- ③. 위 내용과 관련하여
 - 1) FTA 특례법 제9조(원산지결정기준)2항 2호의 ‘일시적장치’가 운송목적이어야 하는지요?
 - 2) 운송 목적이어야 한다면 상기와 같이 체선료 비용 절감을 위한 제3국에서의 일시장치가 ‘운송목적’에 해당되는지요?

□ 답변서

- ① 원칙적으로 수입물품이 한-아세안 FTA 특혜관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수출 당사국과 수입 당사국 영역간에 직접운송되어야 하나,
 - ② 예외적으로 제3국을 경유하여 운송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한 경우 직접운송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한-아세안 FTA 부속서 3 제9조제2항)
 - 가. 그 경유가 지리적 이유로 또는 오직 운송요건에만 관련된 고려에 의하여 정당화될 것
 - 나. 그 상품이 경유국에서 거래 또는 소비되지 아니하였을 것, 그리고
 - 다. 그 상품이 하역, 재선적 또는 그 상품을 좋은 상태로 유지하는데 요구되는 공정 외의 어떠한 공정도 거치지 아니하였을 것
- ⇒ 가의 지리적 이유라 함은 당사국이 내륙국 등으로 항구 등이 없어 제3국을 경유하지 않으면 수출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며, 운송요건이라 함은 예를 들면 직접 운행하는 선편이 없는 등의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제3국을 경유해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③ 따라서, 체선료 비용 절감을 위하여 제3국을 경유하는 것은 운송목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03. 직접운송원칙 관련 질의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 2009-10-21(회신일자)

- 질의 : 1. 한·아세안 FTA의 직접운송과 관련하여 당 사무소 통관 업체의 문의가 있어 검토한바 업체의 유권해석 요청이 있어 귀청에 질의합니다.
2. 인도네시아의 수출자와 국내 수입업체와의 무역계약에 의하여 인도네시아로부터 인도네시아산 원유수입 시 체선료 비용의 절감을 위하여 원유를 싱가포르 해상의 FLOATING STORAGE에 일시저장 후 다시 선적하여 국내로 수입될 경우 한·아세안 FTA 특혜관세를 받을 수 있는지요?
- B/L은 인도네시아에서 선적 시 먼저 발행되고 싱가포르 해상의 FLOATING STORAGE에 저장 후 선적될 때 다시 한번 발행됩니다.
 - 특혜관세 적용 여부에 따라 계약 내용을 정해야하고 또한 계약을 조속히 해야할 사정이오니 가능하면 빠른 유권해석을 부탁드립니다.
3. 위 내용과 관련하여
- 1) FTA 특례법 제9조(원산지결정기준)2항 2호의 ‘일시적장치’가 운송목적이어야 하는지요?
 - 2) 운송 목적이어야 한다면 상기와 같이 체선료 비용 절감을 위한 제3국에서의 일시장치가 ‘운송목적’에 해당되는지요?

- 답변 : 1. 관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 원칙적으로 수입물품이 한·아세안 FTA 특혜관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수출 당사국과 수입 당사국 영역간에 직접운송되어야 하나,
3. 예외적으로 제3국을 경유하여 운송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한 경우 직접운송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한·아세안 FTA 부속서 3 제9조제2항)
- 가. 그 경유가 지리적 이유로 또는 오직 운송요건에만 관련된 고려에 의하여 정당화될 것
 - 나. 그 상품이 경유국에서 거래 또는 소비되지 아니하였을 것, 그리고
 - 다. 그 상품이 하역, 재선적 또는 그 상품을 좋은 상태로 유지하는데 요구되는 공정 외의 어떠한 공정도 거치지 아니하였을 것
- ⇒ 가의 지리적 이유라 함은 당사국이 내륙국 등으로 항구 등이 없어 제3국을 경유하지 않으면 수출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며, 운송요건이라 함은 예를 들면 직접 운행하는 선편이 없는 등의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제3국을 경유해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4. 따라서, 체선료 비용 절감을 위하여 제3국을 경유하는 것은 운송목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04. 계약당사국 정의 관련

- 질의 : 한-아세안 FTA 협정에서 “계약당사국”의 정의 등 질의
- (1) “계약당사국”이란 수출당사국 한 국가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세안 국가 전체를 의미하는 것인지 질의
 - (2) 누적기준 적용시 “a Party”의 의미
 - (3) WO-AK(어느 당사국 영역에서 완전 획득 또는 생산된 물품)에서 “any Party”라 함은 수출 혹은 수입 당사국을 의미하는지, 아세안 회원국 중 한 국가만 해당되는지 질의

- 답변 : 한-아세안 FTA 협정에서 “계약당사국”의 정의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다만, “당사국(Party)”이란 대한민국 또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을 의미하며, “당사국들(Parties)”이란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들을 집합적으로 의미합니다.
- 또한 한-아세안 FTA 협정 제7조 누적 규정에서 “a Party”란 대한민국 또는 아세안 회원국 중 특정하지 아니한 어느 하나의 당사국을 의미하며,
- 마지막으로 WO-AK 적용시 “any Party”란 특정하지 아니한 당사국을 의미합니다.

105. 최소허용기준 적용 가능 여부

Q : 제2103.90-9090호의 원산지결정기준에서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세번(제7류 및 제9류)에도 미소기준 적용이

가능한가요? (2017.03.27.)

<제2103.90-9090호의 원산지결정기준>

제2103.90.9090호의 기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7류 및 제9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계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나.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다만, 제7류 및 제9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계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A : ‘한-아세안 FTA 제10조(최소허용수준)제1항’에 따르면 ‘최소허용수준’은 세번변경기준에 한해 적용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2103.90호의 품목별원산지기준 중 단서조항은 세번변경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미소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06. 최종 송품장 발행국이 수입국인 한국일 경우에도 제3국 발행 송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한·아세안 FTA 협정 제1조 정의에 따라 “제3국”은 수입당사국 또는 수출당사국이 아닌 당사국 또는 비당사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한 바와 같이 수입당사국 내 제3자가 발행한 송품장은 제3국 송장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107. 태국의 개정 FTA 원산지증명서 불인정 사례 및 대응방안 전파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151, 2014.1.21

1. 한-아세안 포괄적 경제협력협정 상품무역협정 원산지증명 운영절차(OCP) 개정발효(‘14.1.1일부터)에 따라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상 'FOB금액'란은 역내가치 포함비율 기준이 적용되는 때에만 기재해야 합니다.
2. 다만, 태국의 경우 반정부 시위사태로 개정 원산지증명서 서식 등이 반영된 국내 개정 고시 시행 지연으로 우리나라에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불인정함에 따라 개정고시 시행전까지 우리나라 세관-상공회의소에서 종전 원산지증명서 서식으로 발급된 것도 통관시 ‘통관후 FTA 신청을 하겠다는 의사를 수입신고서에 기재’하면 통관 후 환급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관세사 및 수출업체 등에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8. 통과선하증권 인정 가능 여부

Q : 태국에서 말레이시아를 경유하여 한국으로 수입하는 경우 운송서류에 출발지가 말레이시아, 도착지가 우리나라로 기재된 경우 통과선하증권으로 인정가능한가요? (2019.07.01.)

A : 통과선하증권은 송하인이 운송화물을 목적지까지 운송하면서 다른 선박회사의 선박을 이용하거나 해운과 육운을 교대로 이용한 경우 최초의 운송업자가 전구간의 운송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하고 발행하는 선하증권입니다. 운송서류의 운송구간이 말레이시아(출발지)에서 우리나라(도착지)로 기재된 경우 해당 운송장으로 운송주선인이 책임지는 구간은 말레이시아에서 우리나라이므로 한-아세안 FTA의 직접운송 증빙을 위한 통과선하증권으로 인정하기 곤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09. 통과선하증권 인정여부

Q : 수출당사국에서 발행된 B/L의 운송경로 기재란에 경유국 정보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Description란에 전체운송경로(선적항, 경유지, 도착항)이 기재된 경우 통과선하증권으로 인정가능한가요? (2019.06.05.)

A : B/L이 수출당사국에서 발행되고, B/L상에 선적항·경유지·도착항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B/L에 기재된 물품에 대해 운송인이 전 운송구간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고 발행한 경우 직접운송증빙을 위한 통과선하증권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B/L이 수출당사국에서 발행되고 B/L의 운송경로 기재란에 선적지(수출당사국)와 도착지(수입당사국)가 기재되어있고 Description란에 기재된 내용으로 물품의 전체운송경로 확인이 가능하다면 운송경로기재란에 경유지가 기재되어있지 않더라도 통과선하증권으로 인정가능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110. 통과선하증권의 사후 발급시 인정 여부

Q : 수입신고당시 통과선하증권이 발급되지 않고 사후에 통과선하증권이 발급된 경우 직접운송요건 증빙 서류로 인정 가능한가요? (2018.10.19.)

A : 한-아세안 FTA협정의 경우는 B/L이 수출당사국에서 발행되고, B/L상에 선적항·경유지·도착항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B/L에 기재된 물품에 대해 운송인이 전운송구간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고 발행한 경우라면 사후에 발급된 경우라도 직접운송증빙을 위한 통과선하증권으로 인정가능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111. 통과선하증권의 인정여부

Q : B/L에 “Through Bill of Lading” 문구가 기재된 경우 통과선하증권으로 인정 가능한가요? (2018.07.24)

A : 한-아세안 FTA협정의 경우는 B/L이 수출당사국에서 발행되고, B/L상에 선적항·경유지·도착항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B/L에 기재된 물품에 대해 운송인이 전운송구간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고 발행한 경우라면 통과선하증권으로 인정가능합니다.그러나 단지 B/L에 기재된 Through Bill of Lading 문구만으로는 통과선하증권으로 인정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합니다.

112. 특정공정(재단 및 봉제) 입증 가능한지 여부

질의 : 다음과 같은 거래관계 및 생산질차를 통해 생산된 물품에 대하여 발행한 원산지(포괄)확인서로 특정공정(재단 및 봉제) 입증 가능한지 여부

- ① ○○○는 김천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재단 및 봉제 작업을 국내 ‘A’ 사에게 임가공 의뢰
- ② A사는 작업 완료 후 원산지확인서를 김천공장에게 발급
- ③ 김천공장에서 마무리 공정 수행 후 원산지확인서를 본사에게 발급

※ 임가공계약은 본사와 ‘A’사간에 체결되어 있음

※ [참고] 물품 개요

- 품명 : KLEENGUARD, HS 6210.10

- 한-아세안 FTA 원산지결정기준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계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에 한정한다.

답변 : 임가공계약당사자와 원산지확인서상의 거래당사자가 반드시 일치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관련서류로 공급물품의 동일성이 확인된다면 사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113. 특혜세율 적용관련 질의 회신

1. 질의 사항

- 싱가포르에서 Reprogram된 자동차 자동조절장치의 한-아세안 FTA원산지증명서를 싱가포르 세관으로부터 발급받은 경우, 재수입되는 물품의 Reprogramming charge에 대한 FTA 특혜세율 적용 여부

2. 질의 회신

-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07-62호, ‘07.12.20) 제5-8조에 따르면, 수리 또는 가공한 후 재수입되는 물품의 과세가격은 당초 수출된 물품의 가격 뿐 아니라 수리 또는 가공에 소요된 비용 및 기타 제비용을 포함한 가격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재수입되는 물품이 협정관세 적용 요건을 구비한 경우, 당초 수출된 물품에 대하여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 적용신청을 위해 과세기술상 수입신고란을 분리한 경우에도 해외임가공물품등의 감세 적용대상이 아닌 수리(가공)비용 등에 대해서는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114. 포장용기의 원산지 판정

Q : 인도네시아로부터 제품 수입시 제품을 운반하기 위해 사용되는 드럼(포장용기)의 원산지 판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19.02.28.)

A : 한-아세안 FTA의 상품의 운송을 위한 포장용기의 경우 상품의 원산지판정시 동 포장용기는 제외하고 상품에 대한 원산지만 판정하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15. 폐기물 등 원산지 결정

Q : 한-아세안 FTA에서 '당사국' 영역의 범위와 대두유(콩기름)을 아르헨티나에서 수입하여 제조(정제)시 발생하는 폐기물을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원산지를 한국으로 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017.06.22.)

A : 한-아세안 FTA 제1.2조(정의)에 의거, 당사국은 대한민국 또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대두유를 수입하여 우리나라에서 제조한 후 발생한 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상 규정된 폐유인 경우 동 협정문 제3조(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에 의거 한국에서 완전생산된 한국산으로 간주됩니다.

116.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이 동시충족 요건인 경우 (4단위 변경 + 재단, 봉제 공정) 원산지증명서상 원산지 결정기준 표시는?

-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는 한-아세안 FTA 협정문 부속서 3의 부록 1(원산지 규정을 위한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 “원산지증명서 서식 및 작성요령(Overleaf Note)”에 따라 작성되어야 함
따라서 원산지증명서 제8란(원산지기준)에 “CTC+Specific Process”와 같이 기재되어야 함
* Specific Process 또는 약자인 SP만 기재할 경우 인정되지 않음

117. 품목분류 상이

질의 :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시, 원산지증명서와 수입신고서상의 품목분류가 상이하나 원산지 결정기준이 동일한 경우 특혜적용이 가능한지?

답변 :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원산지증명서와 송품장의 금액이 다른 이유가 원산지증명서의 오류로 인한 것이라면 「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5항에 따라 세관장은 5일 이상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118. 한국산 미역을 태국에서 임가공 한 뒤 재수입시 협정 등 적용

질의 : 한국산 미역을 태국에 수출하여 임가공(미역 줄기 분리 및 절단 가공 등) 한 뒤, 한국으로 재수입하는 경우 관세법에 따른 재수입 면세 또는 한-아세안 협정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나요?

답변 : 관세법상 해외임가공 감세대상 해당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바, 수출입물품의 세번은 동일하나, 일차제품의 특성상 수출입물품의 동일성을 확인하기가 곤란하여 관세법 제101조의 해외임가공 감세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현품확인 및 관련서류 등을 검토하여 최종 감면적용 여부에 대한 결정은 세관장이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FTA 적용 가능 여부와 관련하여, 미역의 세번(제1212.21호)의 한-아세안 FTA에 따른 품목별원산지기준은 ‘수출당사국 영역 내에서 완전 생산된 것’으로, 원산지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수출당사국인 태국에서 완전 생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생산되어 태국에서 가공한 경우에는 질의 세번의 품목별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우리나라로 수입 시 협정관세 적용이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119. 한도수량내 협정관세 적용물품의 협정관세 사후적용 가능 여부

Q :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 적용물품에 대해 수입신고 이전에 추천서를 발급받아 구비하였으나 C/O를 구비하지 못하여 수입신고시 협정관세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사후에 협정관세 적용신청과 추천서를 제출로 FTA 적용가능한가요? (2017.08.08.)

A :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추천서를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협정관세 사후적용신청 시 추천서를 제출하는 경우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을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120. 해외임가공물품의 원산지 판정

Q : 우리나라에서 양식한 미역을 베트남으로 수출 후 베트남에서 가공하여 우리나라에 재수출하는 경우-베트남에서 가공한 미역(제1212.21호)의 원산지를 한-아세안FTA에 따라 베트남으로 간주할 수 있나요? (2019.7.29.)

A : 제1212.21호의 한-아세안 FTA에 따른 품목별원산지기준은 ‘수출당사국영역내에서 완전생산된 것’입니다. 따라서, 베트남에서 수입하고자 하는 제품이 한-아세안 FTA에 따른 원산지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수출당사국인 베트남에서 완전 생산되어야 하며, 한국에서 생산되어 베트남에서 가공한 경우에는 품목별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베트남산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6. 한-베트남 FTA

1. FOB가격 산정방법

Q : 생산자가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수출자의 FOB가격을 사용하여 원산지기준(RVC) 충족여부를 판정할 수 있나요? (2019.03.08.)

A : 한-베트남 FTA 제3.26조에 의거 FOB가격이란 생산자로부터 수출국의 최종 선적 항구 또는 장소까지 드는 운송비용을 포함한 상품의 본선인도가격의 가치입니다. 따라서 수출자가 생산자에게 수출시의 FOB가격을 제공하여준다면 생산자는 그 가격으로 수출물품에 대한 역내가치포함비율(RVC)을 계산할 수 있으며, 이를 근거로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2. 1국 2협정의 적용 수입물품의 협정관세 사후적용 가능 여부

Q : 최초 물품 수입시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로 협정관세 적용하여 통관을 한 후 동일 물품에 대하여 한-베트남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한 경우 한-베트남 FTA 협정 사후 적용이 가능한가요? (2018.06.19.)

A : 1국의 원산지물품이 2개 이상의 FTA 협정적용이 가능한 경우, 세율차 등의 사유로 수입 시 적용 받은 협정관세를 취소 후 다른 협정의 특혜관세 사후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수입신고시 적용받았던 협정세율을 기본세율로 보정 또는 수정신고 후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이내에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원산지증빙서류 및 보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 또는 경정청구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한-베트남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신청이 가능합니다.

3. 무상거래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여부

Q : 샘플물품(무상거래)이 원산지기준을 충족한다면 한-베트남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이 가능한가요? (2018.08.01.)

A : 당해물품이 한-베트남 FTA협정에 따른 협정적용대상품목이고 동 협정에 따른 원산지기준 및 기타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샘플물품이라도 동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4. 베트남에서 원단 날염 공정 후 수입하는 경우 수리 또는 개조물품에 해당 여부

Q : 우리나라에서 베트남으로 원단(HS6006.32-0000호)을 일시 수출 후 베트남에서 단순 날염(HS 6006.34-0000호)하여 우리나라로 재수입한 경우 협정에서 정한 수리 또는 개조에 포함되어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2018.05.31.)

A : 날염하지 않은 원단(HS 6006.32호)을 베트남으로 수출 후 날염(HS 6006.34호)하여 수입하는 경우 수출시 물품과 수입시 물품의 세번이 변경되므로본질적 특성이 파괴되거나, 새로운 상품으로 생산된 것으로 보아 한-베트남 FTA에서 규정하는 수리 또는 개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5. 비당사국에서 수입한 물품을 베트남으로 수출시 원산지증명서 발급가능여부

Q :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입한 물품을 수입한 상태 그대로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경우 한-베트남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2019.04.23.)

A : 우리나라 수출물품이 FTA 체약국에서 FTA특혜관세대우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각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그러나, 미국에서 수입한 물품을 그대로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경우는 한-베트남 FTA에 따른 원산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6. 수리 또는 개조물품의 협정적용

Q : 한-베트남 FTA 협정에 따른 수리 또는 개조되는 물품의 대상범위와 수리비용에 대해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018.10.05.)

A : 한-베트남 FTA의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해 우리나라에서 베트남으로 일시적으로 수출된 후 재반입되는 상품이 아래의 가공 또는 공정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동 협정에 따라 관세가 면제됩니다.

가. 상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파괴하거나 새로운 또는 상업적으로 다른 상품을 만드는 것, 또는 나. 미완성 상품을 완성 상품으로 변형하는 것 원산지증명서는 협정에 따른 원산지기준과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원산지상품에 대해 발급이 가능하며, 수리비는 원산지증명서 발급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7. 우리나라와 세번이 다른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법은

질의 : 우리나라와 협정국(베트남) 세번이 각각 상이한데, 협정국의 세번이 기재된 원산지증명서 발행이 가능한가요?

답변 : 원칙적으로는 우리나라 세번과 협정상대국 세번의 원산지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협정상대국 세번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한-베트남 FTA의 경우에 우리나라 수출 세번과 베트남 수입세번이 상이하면 공식서류로 베트남 수입 세번을 확인하고, 동 세번에 해당하는 원산지기준이 충족됨을 확인하여 베트남 수입 세번으로도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8. 원산지증명서 소급발급 문구 기재여부

Q : 원산지증명서 소급발급시 소급발급문구를 기재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018.01.17.)

A : 협정관세 적용을 위해서는 협정에서 규정한대로 원산지증명서가 작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원산지증명서가 소급발행되는 경우에는 한-베트남 FTA 제3.14조와 FTA특례법 고시 제28조 및 [별표3]에 따라 “ISSUED RETROACTIVELY”로 기재하여 발행되어야 합니다.

9. 원산지증명서와 수입신고서의 세번이 상이한 경우 협정 적용 가능 여부

질의 : 원산지증명서와 수입신고서의 세번이 상이한 경우 한-베트남 협정 적용이 가능한가요? *원산지신고서 (레몬그라스 2008.99 -9000), 수입신고서(1211.90-9010)

답변 : 원산지증명서와 수입신고서의 세번이 상이하더라도 원산지결정기준 기재란에 ‘WO’로 기재되어 있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협정관세 적용요건을 충족한다면 한-베트남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10. 원산지증명서의 원산지기준 기재 방법

Q : 원산지기준이 4단위 세번변경기준인 경우 ‘CTC’가 기재된 원산지증명서는 인정가능한가요? (2019.07.19.)

A : 한-베트남 FTA 원산지증명서 작성방법에서는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중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CTC’로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품이 4단위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한 경우 원산지증명서에 ‘CTC’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11. 원산지증명서 재발급시 기재 문구

Q : 원산지증명서 출력오류로 재발급시 “CERTIFIED TRUE COPY” 기재되어 발급되었습니다. 이 경우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가능한가요? (2019.07.12.)

A : 한-베트남 FTA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은 자가 도난·분실·훼손 등의 사유로 원산지증명서를 재발급 받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의 12번란에 “CERTIFIED TRUE COPY”를 기재하여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의 12번란에 “CERTIFIED TRUE COPY”가 기재되어 발급되었다면, 동 협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게 발급된 것입니다.

12. 위탁가공수입물품 수리 또는 개조 포함 여부

Q : 우리나라에서 장갑(제6116.92호)을 생산하여 베트남으로 수출 후 베트남에서 장갑을 코팅(제6116.10호)하여 우리나라로 재수출하는 경우 수리 또는 개조에 포함되어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2019.04.15.)

A : 면으로 만든 장갑(HS 6006.92호)을 베트남으로 수출하여 베트남에서 코팅작업 후 수입한 것으로 수출시 물품과 수입시 물품의 세번이 변경되어, 동 협정 및 동 시행규칙에서 정한 본질적 특성이 파괴되거나, 새로운 상품으로 생산된 것으로 수리 또는 개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3. 임가공비 협정관세 적용 가능여부

Q :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원재료로 베트남에서 완제품을 생산 후 우리나라로 재수입하는 경우, 재수입시 해당 완제품의 임가공비에 대하여 FTA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2018.01.25.)

A : 한-베트남 FTA상 베트남에서 임가공 후 재수입되는 물품이 협정과 법령에서 정한 협정관세 적용요건(원산지증명서 구비, 직접운송 등)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한-베트남 FTA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14. 제2008.19호 원산지결정기준 해석

Q : 제2008.19호 원산지결정기준에서 제외세번인 제8류는 완전생산되어야 하나요? <제2008.19호의 원산지결정기준>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8류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2019.02.28.)

A : 베트남 FTA의 제2008.19호의 원산지기준 중 단서조항은 제8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원산지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 가능합니다.

15. 제2106.90호의 원산지결정기준 해석

Q : HS 2106.90에 대한 품목별 원산지기준의 단서조항이 세번변경기준에도 적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018.01.19.)
[제 2106.90호 원산지결정기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계약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다만, 소호 제1211.20호, 제1212.20호 및 제1302.19호에 해당하는 재료는 계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경우에 한정한다.

A : 한-베트남 FTA 부속서 3가(품목별 원산지 규정)에 따라 제2106.90호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은 ①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또는 ②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다만, 제1211.20호, 제1212.20호 및 제1302.19호에 해당하는 재료는 계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에 한정한다.’로 해석합니다. 따라서, 제2106.90호의 단서규정은 부가가치기준(RVC)에만 적용됩니다.

16. 제6110.12호의 원산지 결정기준에서 링킹공정이 포함되는지

질의 : 제6110.12호의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에서 재단 및 봉제에 링킹(Linking, 같은 것끼리 루프를 연결하여 꿰매는 것) 공정이 포함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 (제6110.12호 원산지결정기준)

2단위 세번변경기준(계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경우에 한한다) 또는 계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한-베트남 FTA 제6110.12호의 원산지기준 중 봉제에는 링킹봉제기에 의한 링킹 공정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동 협정 제6110.12호의 원산지기준 중 재단 및 봉제의 가공방식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봉제공정 외에도 재단공정도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17. 중복적용 관련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599, 2016.3.7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베트남 FTA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한·베트남 FTA 협정관세 적용 신청(경정청구)이 가능합니다.
3. 다만, 처음 협정관세 적용신청한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 적용신청이 유효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18. 품목별 원산지기준에서 중간재 규정의 적용 여부

질의 : 품목별원산지기준에서 부가가치기준뿐 아니라 세번변경기준이나 가공공정기준인 경우에도 중간재 규정이 적용 가능한가요?

답변 : 한-베트남 FTA 중간재는 모든 원산지결정기준에 적용가능하며, 동 협정에서는 중간재 사용을 위한 지정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7. 한-EFTA FTA

1. B/L에 원산지신고문안을 기재한 경우 원산지신고서 인정 여부

Q : 제3국 발행 송장거래에서 선사가 발행한 B/L에 원산지신고문안 기재한 경우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로 인정

가능한가요? (2017.04.11.)

A : 선사에서 발행한 B/L은 원산지신고서를 작성가능한 상업서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BWT거래시 비당사국수입자에게 발행된 원산지신고서 유효성

Q : EFTA산 물품이 비당사국 창고로 운송되어 일정기간 보관 후 각 해외지사의 주문에 따라 재포장하여 각국으로 운송된 경우, EFTA소재 수출자가 비당사국 수입자에게 발행한 원산지신고서로 협정관세 적용가능한가요? (2018.06.20.)

A : 원산지신고서는 계약당사국 간 특혜관세를 적용받기위해 원산지상품에 대해 발급하는 원산지증빙서류입니다. 따라서, EFTA 소재 수출자(생산자)가 비당사국 수입자에게 발행한 원산지신고서는 한-EFTA에서 정한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로 인정하기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3. 노르웨이산 연어를 덴마크에서 내장제거 및 포장후 수입시 원산지 적용 방법

질의 : 노르웨이산 연어를 덴마크의 노르웨이 업체의 가공 공장에서 내장제거 및 포장을 하여 한국으로 수출할 때 원산지가 어느 국가로 판정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 노르웨이와 덴마크 간 수송비용을 포함하여, 당해 노르웨이 영역 밖에서 축적된 비용 뿐만 아니라 노르웨이 영역 밖에서 추가된 모든 재료의 가격(추가가격)이 수출된 연어의 공장도 가격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면 노르웨이를 원산지로 인정받아 한-EFTA 협정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4. 보세판매장 반입물품의 수입시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

Q : 2014년에 스위스에서 우리나라의 보세판매장으로 반입한 물품을 수입신고하려는 경우 '14년도에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로 '18년도 현재 협정 적용신청이 가능한가요? (2018.10.18.)

A : 보세판매장에 반입한 물품이 미판매 등의 사유로 국내수입하는 경우 한-EFTA FTA에서 정한 원산지기준과 기타 모든 요건을 충족하고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물품(우리나라 도착시 물품)과 특혜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물품이 동일성이 확인 가능한 경우 협정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 계산시에는 수입항에 도착한 다음날부터 협정관세 적용신청한 날까지의 기간을 제외하고 계산한 결과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이내인 경우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5. 비당사국에서 라벨링 작업 수행한 경우 협정적용 가능 여부

Q : 스위스에서 생산한 제품을 비당사국인 네덜란드 보세구역에서 한글 라벨링 작업 후 수입하는 경우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2017.04.25.)

A : 한-EFTA 협정은 계약당사국 간 직접운송되는 상품에만 특혜대우가 적용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비당사국을 경유할 경우에는 그 상품이 하역, 재선적, 탁송품의 분리, 또는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하여 마련된 작업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당사국에서의 재라벨링 작업은 위에 제시한 허용 가능한 작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협정관세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6. 비인증수출자의 원산지증명서 작성가능여부

Q : 한-EFTA FTA협정에 따른 원산지신고서 작성시 신고문안에 인증수출자 번호가 기재되어있지 않아도 협정 적용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018.08.08.)

A : 한-EFTA 협정에 따른 원산지신고서는 수출 관세당국의 요청시, 원산지신고서 사본 및 동 신고서가 적용

되는 각 상품의 원산지 지위를 입증할 수 있는 수출자라면 인증수출자가 아니더라도 원산지신고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다만,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는 자가 인증수출자가 아닌 경우에는 수출자의 서명, 서명인의 성명을 명확하게 함께 기재하여야 합니다.

7. 수입신고 관련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 2009-05-21(회신일자)

질의 : 한-EFTA FTA 관련 질의

답변 : 1. 귀 법인 관련 수입물품은 한-EFTA FTA 발효일(2006.9.1)이후에 수입신고(2006.9.13) 되었으므로 동 협정에 의한 특혜관세 적용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수입신고 당시 협정관세 사후적용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FTA 관세특례법 부칙 제7조에 따라 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다만,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유효한 원산지증빙서류 구비 등 동 협정 및 관련 국내법령에서 규정한 제반 인적·물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8. 스위스산 물품이 벨기에 등을 경유할 경우 직접운송 증빙자료 구비 요건

질의 : 스위스산 물품을 내륙 운송한 뒤 벨기에 등 인접 국가의 항구로 운송하여 한국으로 반입하는 경우, 직접운송 증빙 자료 요건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답변 : 비당사국을 경유할 경우, 경유국 세관의 감시 하에 필요한 작업만 수행해야 하며, 동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적절한 증거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EFTA국가 물품이 EU국가 운송 시 발급되는 TI 서류는 경유국 내에서 세관감시하에 있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로 인정가능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9. 원산지물품과 비원산지물품 혼재시 원산지증명서 유효성

Q : 원산지제품과 비원산지제품이 하나의 원산지신고서에 혼재된 경우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로 인정 가능한가요? (2017.07.19.)

A : 원산지와 비원산지 제품이 하나의 송품장에 혼재되어 각각의 원산지를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는 경우 한-EFTA협정에서 규정하는 다른 요건을 모든 충족하는 경우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10. 원산지신고서 인정 여부

<질의 1> 스위스에서 OEM으로 제조되어 독일 밀레사에 납품된 스위스산 커피메이커 제품의 한-EFTA FTA 특혜관세 적용 여부 ※ 스위스 제조자(Eugster/Frismag AG)

<질의 2> 밀레 커피메이커의 원산지를 가늠할 수 있는 서류를 한-EFTA FTA 원산지신고서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1에 대한 회신>

- 한-EFTA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선 대상 물품이 EFTA 회원국(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과 우리나라 영역간에 직접운송되어야 하며, 협정의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 상품에 대하여 수출자가 발행하는 송장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에 협정상 규정된 불임의 원산지신고 문안을 작성·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귀사가 수입하는 스위스산 커피메이커는 EFTA 회원국이 아닌 독일에서 한국으로 운송되어 직접운송원칙에 위배되며, 스위스 수출자가 아닌 독일 수출자가 송장을 발행하므로 한-EFTA FTA 특혜관세적용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원산지신고서 문안>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zation No ...)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preferential origin.”
....., 3)

(Place and date)

.....,

(Signature of the exporter; in addition the name of the person signing the declaration has to be indicated in clear script)
.....,

<질의 2에 대한 회신>

- 한-EFTA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EFTA 회원국 소재 수출자가 상업송장 등에 상기 문안을 작성·제출하여야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로 인정되며, 단순히 원산지가 Invoice 또는 전기용품안전인증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는 한-EFTA FTA 원산지신고서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11. 원산지증명서 관련

가. 질의

- 노르웨이산 니켈판을 스위스 소재 중개인을 통하여 수입하면서 노르웨이 세관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에 한-EFTA FTA신고 문안에 노르웨이 수출자가 인증수출자 번호를 기재하고 서명
 - 단, 노르웨이 세관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에는 BWT물품으로 수화인과 송품장번호는 기재되어 있지 않고 화물 개수, 중량, 수량만 기재
- 질의1,2)
 - 노르웨이 세관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에 한-EFTA FTA협정문에서 규정한 원산지 신고문안과 서명이 있는 경우 적절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되는지 여부와 유효한 증명서가 아닌 경우 적절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 질의3)
 - 향후 노르웨이 수출자가 선적서류중 PACKING LIST에 한-EFTA FTA 규정에 적합한 원산지 신고를 할 경우 적절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단, 이 경우에 거래의 특성상 구매자가 확정되지 않아 수하인과 송품장 번호가 기재되지 않음)

나. 회신내용

- 한-EFTA FTA 협정문 제조에 의하면 원산지증명서는 상업서류 등에 협정에서 정한 신고문안과 동 체결 당사국 소재지 수출자 서명 등이 있는 경우에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됩니다.
- 세관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도 상업서류로 포함되고, 동 협정의 규정에 의거 원산지 신고문안과 노르웨이 소재 수출자의 주소 및 서명이 기재되어 있으며, 수량·중량이 일치하는 등 거래특성을 감안할 때 원산지증명서상 거래물품과 실제 수입물품이 동일한 물품으로 인정되어 동 증명서는 유효한 원산지증명서임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포장명세서(Packing List)에 원산지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신고문안 및 협정 당사국에 소재한 수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서명이 기재되어야 하고, 품명, 수량, 선박명, 항차 등이 기재되어 거래물품과 실제 물품의 동일성을 확인이 가능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12. 제3국 경유

질의 : 다음 거래관계의 경우 협정관세 적용 여부

- ○○○(스위스) → ○○○(독일) → ○○○(○○○○ 독일법인) → ○○○(한국)로 순차 판매됨

- 운송은 스위스에서 한국을 목적지로 출발한 후 독일의 보세창고를 경유하여 우리나라로 운송됨

답변 : 한-EFTA FTA는 양 체약 당사자 간 직접 거래되지 않은 탁송품이 운송 도중 제3국 보세구역에 일시 장 치된 경우에도 원산지의정서 제14조(직접운송)를 충족하는 때에는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13. 제3국 경유관련

☐ 질의자, 일자 : 서울세관('09.12.17)

☐ 사실관계

- 스위스 A사는 화학약품을 생산,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보세구역)으로 운송하고, A사의 본사인 독일 B사 는 한국으로 선적·수출
- 수입자인 한국 C사는 물품대금을 B사의 아시아 판매법인인 싱가포르 D사에 지급하고, D사는 다시 독일 B 사에 지급
- 한국 C사는 스위스 A사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와 스위스 세관에서 발급한 ‘제3국 단순경유 확인서’ 를 근거로 협정관세 신청

☐ 쟁점

1) 체약당사국 거주자간 거래 해당 여부? 2) 운송 요건 충족 여부?

☐ 관련규정

- 수출자 : 상품 수출 당사국 영역에 소재하는 수출자(부속서 1 제1조)
- 운송요건 : 한국과 EFTA 국가간 직접운송 원칙. 다만, 경유국 세관의 감시하에 하역·재선적 등 특정작업 이외의 작업을 하지 않았을 경우 직접 운송으로 간주(부속서 1 제14조)

☐ 검토의견

- FTA 당사국이 아닌 독일의 회사가 수출하였으므로 특혜관세 적용 불가
- * 만약, 본건 물품이 체약당사국에서 수출되어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단순히 경유 하였더라도 ‘단순경유 입 증서류’는 경유국에서 발급된 것이어야 함(FTA 관세특례 고시 제3-5-1조 제1항 제2호)

14. 제3국 경유물품의 직접운송 요건 증빙서류

Q : 스위스에서 네덜란드 경유하여 우리나라로 수입시 직접운송증빙자료로 인정가능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2019.04.09.)

A : 한-EFTA 협정 제14조(직접운송) 규정에 의거 비당사국을 경유할 경우, 경유국 세관의 감시하에 협정에서 정한 공정만 수행해야 하며, 동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해 전체운송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운송서류 또는 상기요건을 충족하였음을 확인하여 경유국 세관에서 발행한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15. 제3국 경유물품의 특혜적용 가능 여부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 2016-04-24(접수일자)

질의 : 스위스에서 생산된 물품을 독일로 운송하여 보관중, 독일 세관의 감시하에 분리작업, 재포장 등을 거쳐 우리나라로 수출할 경우 한-EFTA FTA 특혜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사실관계]

제조자 : A사(스위스 소재), 경유지 : B창고(독일 소재), 수입자 : C사(한국 소재)

운송형태 : 스위스 → 독일 창고(세관 감시하 분리, 재포장 등*) → 한국

* 민원인 주장

답변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EFTA 직접운송 원칙은 비당사국인 독일에서 탁송품의 분리, 재포장 작업이 세관의 감시하에 수행되 었음이 서류로 입증되고 재포장 작업은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선적 또는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

기 위한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충족함을 알려드립니다.

3. 참고로 정확한 해석은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관련서류 등이 제시될 때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6. 직접운송 관련

가. 한-EFTA FTA협정문(이하 “협정문”) 제1조 다호 ‘탁송품’은 수출자로부터 선적과 관련된 하나의 운송 서류에 의하여 다루어지는 상품을 말하고 있어, 동 질의건의 경우 여러 나라에서 주문한 물품을 스위스에서 취합하여 일괄 배송하고 중국소재 보세구역에 보관한 후, 다시 재분류되어 선적되는 과정에서 인보이스 등이 새로 발급되므로, 협정에서 정한 탁송품의 기준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나. 또한, 협정문 제1조 너호 ‘수출자’는 상품이 수출되는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면서 그 상품을 수출하는 인으로 정의하고 있고, 협정문 제 15조(원산지신고서)에는 수출자가 협정에 의한 요건에 맞게 작성하게 되어 있어, 동 거래의 경우 제3국(홍콩)에 소재한 지사에서 인보이스가 작성되었고, 인보이스 헤더부분에 스위스 본사로 유지되고, 스위스 본사에서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나, 거래당사자의 요건 및 원산지신고서의 당사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실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 아울러 협정문 제14조 직접운송의 요건에는 제3국의 지리적 위치를 제한하지 않고, 하역, 재선적, 탁송품의 분리, 또는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하여 마련된 작업의 범위는 한정하고 있는바, 중국 소재 보세창고에서 재분류되고 선적되는 과정에서 수행되는 작업 내용의 확인이 불가능하고, 판매를 위한 보관 등은 직접운송을 충족하는 기준으로 인정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동 거래가 직접운송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스위스 본사에서 단일한 탁송품으로 운송되고(수출신고 당시 수입국 및 수입자 명시) 수출자가 발행한 인보이스 등 상업서류에 협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원산지신고서가 작성되어야 합니다. 또한 동 물품이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에는 하역, 재선적, 탁송품의 분리, 또는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한 범위내의 작업만 수행되어야 하고, 경유하는 기간 동안 관세당국의 통제 또는 감독하에 있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17. 직접운송 적용 여부

가. 질의내역

- 스위스에서 오(誤)선적된 물품이 미국 공항 내에 반입되어 통관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한국으로 선적 될 경우, 직접운송 충족요건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 미국 세관의 증빙서류(TRANSPORTATION ENTRY AND MANIFEST OF GOODS SUBJECTS TO CBP INSPECTION AND PERMIT)를 첨부함

나. 회신내용

- 한-EFTA FTA 협정문 제14조(직접운송) 규정에 따르면,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협정 체결국간 직접 운송이 원칙이고, 하역, 재선적, 탁송품의 분리 또는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하여 마련된 작업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잘못 선적되어 제3국으로 운송된 경우라 하더라도 협정에서 정한 작업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경유국 세관의 감시하에 있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 FTA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단, 첨부한 미국세관 서류의 인정 여부는 담당 세관장이 FTA특례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사실 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18. 최소허용수준 적용가능여부

Q : 세번변경기준에서 제외되도록 규정한 세번의 재료사용시 미소기준을 적용가능한가요? (2019.03.04.)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8538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은 것

A : 세번변경기준에서 제외되도록 명시된 세번에 해당하는 물품은 원산지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나, 한-EFTA FTA 제5조 규정에 의거 제외세번에 해당하는 물품이 비원산지재료라 하더라도 최소허용기준(미소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19. 협정발효전 수입신고

1. 귀 법인 관련 수입물품은 한-EFTA FTA 발효일('06.9.1)이후에 수입신고('06.9.13) 되었으므로 동 협정에 의한 특혜관세 적용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수입신고 당시 협정관세 사후적용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FTA 관세특례법 부칙 제7조에 따라 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다만,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류 구비 등 동 협정 및 관련 국내법령에서 규정한 제반 인적·물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8. 한-인도 CEPA

1. 누적기준 등 관련

질의 : ① 완전생산품에 대한 누적적용 가능 여부

② 국산 원면(fabric)을 이용하여 인도에서 재단, 봉제 후 최종 의류 완제품을 생산하였을 경우 가공공정기준 적용 가능 여부

답변 : 한-인도 CEPA 제3.3조의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의 의미는 어느 하나의 당사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누적기준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한-인도 CEPA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 국내산 직물(fabric)을 사용하여 인도에서 재단, 봉제공정을 수행한 의류는 역내산 제품으로 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부가가치기준 계산시 FOB가격 산정방법

Q : 원산지결정기준이 CTSH+RVC35일 경우 부가가치기준을 산정하기 위해서 생산자가격과 수출자가격 중 어떤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나요? (2018.03.26.)

A : 한-인도 CEPA협정에서는 역내가치포함비율(RVC)산정시 본선인도가격(FOB)으로 계산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선인도가격(FOB)은 수입자가 수출자(고객사)에게 실제지급 또는 지급할 가격(수출자의 이윤포함)으로 최종 선적항 또는 선적지까지 운송비를 포함한 가격이며, 수출자가 수출시의 FOB가격을 제공하여준다면 그 가격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RVC)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3. 미조립물품 수출시 원산지증명서 세번 기재방법

Q : 제8476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단순 운송상의 이유로 미조립상태로 운송되고 수출신고시 ‘HS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에 따라 완성품 세번(HS 8479)으로 수출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완성품 세번으로 발급이 가능한가요? (2017.02.22.)

A : 한-인도 CEPA 협정문 제3장(원산지규정)의 제3.16조(해석 및 적용)에 의거, 세번분류는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에 기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HS해석에 관한 통칙2’의 규정에 따라 최종 수

출품의 세번이 미조립품이 아닌 완성품 세번으로 적정하게 분류되었다면 해당 완성품 세번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4. 수집한 폐기물의 완전생산기준 입증자료

질의 : 공장이나 아파트 등에서 수집한 폐기물을 수출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완전생산기준 입증자료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답변 : 당사국 영역에서 수집된 물품으로서 더 이상 본래 목적을 수행할 수 없고 복원 또는 수리될 수 없으며 부품 또는 원재료의 처분이나, 회수 또는 재활용 목적으로만 적당한 물품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서 수집된 폐기물의 완전생산 여부의 확인이 가능하며, 고물상이 폐기물을 수집한 개인, 아파트, 공장으로부터 상기 입증 자료를 입수하여 이를 근거로 작성한 원산지확인서를 원산지증빙서류로서 수출자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5. 스크랩으로 생산한 제품의 완전생산기준 충족 여부

Q : 철판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철스크랩으로 수출물품 생산시 완전생산기준을 충족할 수 있나요? (2019.06.03.)

A : 한-인도 CEPA 제3.3조에서는 당사국영역에서 생산으로부터 얻어진 스크랩은 완전생산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다른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스크랩은 완전생산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해당 스크랩만으로 제품을 생산한 경우 동 협정의 완전생산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6. 완전생산된 의류에 폴리백 등 소매포장시 원산지 인정 여부

질의 : 완전생산된 의류를 폴리백으로 소매용 포장을 하고 종이택(부속품)을 붙이는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 가능한가요?

답변 : (소매포장재 관련) 한-인도 CEPA의 경우 포장재와 해당물품이 동일 HS세번으로 분류되고, 해당 물품이 완전생산기준을 충족한 원산지 상품이라면 포장재를 원산지로 간주하여 원산지 판정 시 고려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라벨 관련) 또한, 상기 완전생산기준을 충족하는 의류에 소비자에게 상품 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부착된 역외산 라벨(종이택)은 완제품의 원산지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7. 우리나라 수출물품을 경유지인 인도에서 분할 하역시 원산지 증명서 인정 여부

질의 :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물품을 UAE(목적국)로 운송하던 중 일부 물품을 인도에서 분할 하역한 경우, 원산지증명서 (소급)발행이 가능한가요?

답변 : 선적물품의 일부를 최종 목적국이 아닌 다른 국가(협정상대국)에 하역·인도하게 되어, 수출신고내용과 원산지증명서 기재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관련 무역서류를 통해 해당내용이 확인되고 수출신고물품과 원산지 증명서에 기재된 물품의 동일성이 확인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8. 원산지결정기준 관련

질의 : 인도산 의류 수입시 라벨, 가격 태그(Tags) 등이 역내국 또는 타국에서 생산지원된 경우, 어느 범위까지 완전생산기준 또는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이 인정되는지

- ① 라벨, 태그 등 미미한 수준의 국산 부자재 사용
 - 수출국인 인도에서 ‘완전생산기준’으로 C/O를 발급
 - ‘완전생산기준’으로 인정되는 라벨 등의 종류
- ② 라벨, 태그 등 미미한 수준의 제3국산 부자재 사용
 - 수출국인 인도에서 ‘완전생산기준’으로 C/O를 발급
 - ‘완전생산기준’으로 인정되는 라벨 등의 종류

- ③ 라벨, 텍 등 미미한 수준의 국산 부자재 사용
 - 수출국인 인도에서 ‘완전생산기준’으로 C/O를 발급
 - 부자재가 완제품 의류에 부착되는 경우(직물제 라벨)와 부착되지 않고 소비자가 착용시 제거하는 경우(가격택)와 같이 의류에 부착되는지 여부에 따라 ‘완전생산기준’에 영향을 미치는지
- ④ 라벨, 텍 등 미미한 수준의 국산 부자재 사용
 - 수출국인 인도에서 ‘가공공정기준(비원산국 원사로부터의 생산)’으로 C/O를 발급
 - ‘완전생산기준’으로 인정되는 라벨 등의 종류

답변 : 인도와의 협정에 따른 의류제품(HS 61류 ~ 63류)을 생산할 때 사용된 라벨, 텍 등은 상품의 품목분류를 결정하는 구성요소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가 아니므로 다른 재료들이 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비원산지 원사로부터의 생산)을 충족하는 경우 원산지제품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동 협정에 따른 ‘완전생산기준’이 적용되는 물품은 상품의 생산이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되어야 하는 바, 라벨과 텍 등도 수출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되어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9. 원산지증명서 관련

질의 : 수출이후 수입자가 변경된 경우 협정관세 적용 여부

답변 : 한-인도 CEPA에서 원산지증명서상 ‘수입자’란은 수출국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확인된 수입자를 기재하는 것이므로, 수출이후 수입자가 변경되거나 확정됨에 따라 수입자가 달라지는 경우 원산지증명서의 수입자를 정정하지 않더라도 상업송장 등 관련 자료로 그 변경에 따른 사실관계와 물품의 동일성이 확인된다면 해당 수입물품에 대해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0.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

Q : 인도에서 제품 수입시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2018.07.13.)

A : 한-인도 CEPA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①동 협정에 따른 원산지기준을 충족한 물품에 대해 ②수출자 또는 수출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③동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증명서 양식에 원산지증명서 작성 방법에 따라 작성한 원산지증명서를 ④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인도수출검사위원회(Export Inspection Council), 섬유위원회(Textile Committee), 수산물수출개발위원회(Marine Products Export Development Authority))에 발급신청 하여야 합니다.

11. 원산지증명서상 생산자 기재 생략 가능여부

Q :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의 생산자란은 선택(optional)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원산지증명서 생산자란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2018.08.31.)

A : 한-인도CEPA에서는 원산지증명서의 기재내용과 상품의 수입 절차를 수행할 목적으로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제출한 서류의 기재내용 간에 경미한 차이가 발견되더라도 그 원산지증명서가 해당 상품과 사실상 일치한다면 원산지증명서를 사실상 무효화해서는 아니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입되는 물품과 원산지증명서상의 물품의 동일성이 확인되는 경우 증명서에 선택적(optional) 기재사항인 생산자 정보가 누락되어 있더라도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2. 원산지증명서에 QR코드가 있는데 인장 등이 있어야 하는 지

질의 : 발급받은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에는 QR코드가 있고 해당 코드로 조회도 되는데 발급기관의 인장 및 서명이 같이 기재되어야 유효한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 인도측이 원산지증명서 전자신청·발급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을 일부 변경하고 그 내용을 지난 2020. 3.2 우리측에 통보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번호 체계가 변경되고

QR 코드 날인 방식이 도입되었습니다. 인도측이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는 상기 QR 코드를 스캔하거나 인도측 원산지증명서 발급 확인 시스템(<https://coo.dgft.gov.in>)에 접속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번호로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니 협정관세 적용 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 원산지 증명서에 역내가치 포함비율 기재시 기재 방법

질의 : 원산지증명서 제10란에 역내가치포함비율을 기재할 때 협정의 원산지결정기준에 기재된 명문 %를 기재해야 하는지 아니면 실제 충족한 %를 기재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 작성 지침에 따르면 역내가치포함비율은 원산지 충족을 위해 필요한 “RVC X%” 로 기재하면 되지만,

- 동 지침은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기 위한 참조의 목적으로만 사용” 되며
- 같은 협정 제4.7조에서도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제출한 서류의 기재내용 간에 경미한 차이가 발견되더라도 그 원산지증명서가 해당 상품과 사실상 일치한다면 원산지증명서를 사실상 무효화해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해당 상품이 협정에 따라 실제로 충족하고 있는 “RVC X%” 가 기재된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이 인정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4. 원산지증명서와 수입신고서의 세번이 상이한 경우 협정적용 가능여부

Q : 인도에서 우리나라로 수입하는 물품의 4단위 세번이 상이하나 원산지증명서의 원산지기준과 수입신고 세번의 원산지기준이 모두 CTS+RVC35인 경우 협정 적용이 가능한가요? (2019.08.09.)

A : 원산지증명서는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상품이 원산지상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수출국과 수입국 세번이 상이시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원산지기준으로 수입국 세번의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여야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산지기준이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의 결합기준인 경우에는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협정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원산지증명서 세번의 원산지기준으로는 우리나라 수입신고 세번의 원산지기준 중 세번변경기준에 대한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우리나라 세번으로 원산지증명서 보완 후 협정적용이 가능합니다.

15. 원산지증명서의 원산지기준 기재 방법

Q : 제7202.92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품목별 원산지기준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이나 실제 원산지증명서상 원산지기준이 ‘ CTS + RVC50% ’ 으로 상이하게 기재된 경우 해당 원산지증명서는 유효한가요? (2017.06.27.)

A : HS7202.92호는 협정문 부속서 3-가에 규정된 품목별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원산지상품으로 간주되는 상품입니다. 따라서 원산지증명서 작성방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의 원산지기준을 ‘CTH’ 로 기재해야 하며 협정과 다르게 작성된 원산지증명서는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16. 원산지증명서 제3국 송장란에 회사정보 기재 방법

질의 : 거래관계가 아래와 같을 때, 원산지증명서 “제3국 송장” 란에 어느 회사 정보를 기재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1. 인도 제조업체 A 2. 홍콩 대행자(홍콩 대리점) B 3. 홍콩 대행자(D에게 최종적으로 인보이스 발행) C 4. 수입자 D

답변 : “제3국의 운영인이 송장을 발행하는 경우, “제3국 송장” 란에 (√)로 표시하고 송장을 발행한 회사 또는 운영인의 이름·주소 및 국가 등의 정보를 제14란에 표기” 합니다. 사례에서 원산지증명서 발행 주체인 인도 A사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송장을 발행한 홍콩 B사가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되어야 할 제3국의 회사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7. 의류 원산지 결정기준

한인도 CEPA 협정 제3장(원산지 규정) 부속서 3-가(품목별원산지규정) 제2부(품목별원산지규정)에서 제61류~제63류(의류 제품)은 “비원산지 원사로부터 생산”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동 협정 제3장(원산지 규정) 제3-8조, 제1항 나목의 규정은 “필요한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 가능한 것이므로, 다른 원산지결정기준이 적용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부착하는 라벨은 생산된 의류제품의 안쪽에 작은 크기로 부착하는 것으로 이는 원산지상품을 결정하는 요인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18. 의류 원산지 결정기준 관련

질의 : 한-인도 CEPA 협정상 의류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CC+RVC* %로 기재한 경우에도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

* HS 2단위 세번이 변경되고 역내부가가치 기준이 일정 % 이상

답변 : 한-인도 CEPA 협정상 의류제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은 ‘비원산지 원사로부터 생산’이고, 원산지 결정기준 기재방법은 “Others”이며, 원산지증명서는 협정에서 규정한 원산지 결정기준과 그 기재방법에 합치되어야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하므로 원산지증명서에 협정상의 원산지 결정기준과는 다른 기준이 기재된 경우에는 협정관세 적용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19. 의류 원산지 결정기준 표기법 관련

질의 : □ 한-인도 FTA에서 의류(61류~63류)의 원산지 결정기준 표기법

(1) 의류의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인 “비원산지 원사로부터 생산”의 경우 다음 중 어떠한 방법으로 표기해야 하는지 질의

- ① 가공공정 기준에 따라 “SP” *로 기재
- ② 재료 및 공정을 포함하여 포괄적인 의미의 “Others”로 기재
- ③ “SP”*와 “Others” 중 선택 기재 또는 모두 기재

* SP(Specific Processes) : 특정공정을 수행한 국가를 원산지로 결정

- (민원인 주장) “비원산지 원사로부터 생산”이란 역외산 원사를 이용하여 체약국 내에서 제직, 편직부터 재단, 봉제 공정까지 수행함을 의미
- 따라서 한-인도 FTA 협정상 의류의 원산지 결정기준 표기법은 “SP”가 적정함

(2) “원산지 원사로부터 생산”된 의류의 경우 다음 중 어떠한 방법으로 표기해야 하는지 질의

- ① 가공공정 기준에 따라 “SP”로 기재
- ② 재료 및 공정을 포함하여 포괄적인 의미의 “Others”로 기재
- ③ “SP”와 “Others” 중 선택 기재 또는 모두 기재

답변 : FTA 협정이나 관련 법령에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에 대한 기재방법이 하나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며,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증명서 작성 요령에 맞게 원산지 결정기준을 기재하면 됩니다.

한-인도 FTA 협정에서 의류의 품목별 원산지 기준인 “비원산지 원사로부터 생산”은 의류의 생산에 필요한 재료에 대해 규정한 것이며, 또한 제직, 편직, 재단 등 의류의 가공 공정에 대한 규정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Others”와 “SP”로 기재하는 것 모두 가능하며, 타국산 재료가 일부 포함된 인도산 원사로부터 생산된 의류의 경우에도 협정에 규정된 바 없으므로 마찬가지로 마찬가지임을 알려 드립니다.

20. 인도에서 발급된 원산지 증명서에 QR코드만 있을 경우 인정 여부

질의 : 인도에서 발급하는 CO에 날인, 서명 없이 QR코드만 표기되어 있는데 협정 적용에 문제 없는 것인지를 문의 드립니다.

답변 : 인도 측이 원산지증명서 전자신청·발급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을 일부 변경하고 그 내용을 지난 3.2 우리측에 통보하였습니다. *<https://coo.dgft.gov.in>
구체적으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번호 체계가 변경되고 QR 코드 날인 방식이 도입되었습니다. 인도 측 원산지증명서의 진위여부는 상기 시스템에 접속해 발급번호로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협정관세 적용 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 중계무역 관련

질의 : 중계무역이 아래와 같이 발생하는 경우, 한-인도 CEPA C/O 발급 신청 시 「제3국 송장」란에 한국 기업을 기재할 수 없는지?

- 한-인도 CEPA C/O 서식에 따르면 중계무역의 경우 “제3국 송장”란에 송장을 발행한 업체정보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다중 중계무역의 경우 어느 송품장 정보를 기재하는지에 대한 규정은 없음
 - 상공회의소에서는 상기 사례와 같이 최종송품장 발행국이 계약당사국인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중이나 형식상 오류*가 있으므로, 향후 관세청의 유권해석 결과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
- * 해당란은 제3국에서 발행한 송품장(Third Country Invoicing) 정보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계약당사국에서 발행한 송품장 정보를 기재하는 경우 오류로 간주

답변 : 인도와의 협정 부속서 4-나 ‘원산지증명서의 작성을 지침’에는 송품장 발행자가 수출당사국에 소재하는 경우에 그 송품장 정보를 제3국 송장란에 기재할 수 있는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출당사국에 소재하는 자가 발행한 송품장 정보를 제3국 송장란에 기재하더라도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원산지증명서의 인정 여부는 수입국의 관세당국이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22.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관련

질의 : 여성용 드레스(Women's Dress, 6204.42) 및 여성용블라우스(Women's Blouse, 6206.42)를 구성하는 원재료 중 라벨 이외의 모든 재료가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였을 때, 동 재료에 최소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원산지제품으로 판단가능한지?

- <관련규정> ○ 한-인도 CEPA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61.01~63.10)
비원산지 원사로부터 생산된 것(Manufacture From Non-Originating Yarn)

답변 : 질의하신 여성용 드레스(Women's Dress, 6204.42) 및 여성용 블라우스(Women's Blouse, 6206.42)에 부착되는 라벨은 품목분류 구성요소에 해당되지 아니므로 라벨을 제외한 다른 재료들이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원산지 제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협정 제3.8조 최소허용수준은 원산지결정기준이 세번변경기준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질의한 제품과 같이 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이 “비원산지 원사로부터 생산된 것”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23. 품목별 원산지기준 HS

Q : 인도에서 수입하는 물품의 세번이 현재 HS2017에 존재하지 않습니다.이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2018.11.12.)

A : 한-인도 CEPA의 경우 품목별 원산지기준 HS Cdod는 현재 HS2007입니다.따라서 동 물품의 HS2007에 해당하는 세번의 품목별원산지기준으로 원산지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고 원산지증명서도 HS2007기준에 해당하는 세번을 기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24. 한국산 물품에 제3국 송장발행의 경우 증명서 제11란 기재 방법

질의 : 한국산 물품에 대해 독일의 중간거래자(제3국 송장 발행자)가 인보이스를 발행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 제11란에 한국의 수출자 인보이스 정보를 적어야 하는지, 제3국 송장 정보를 적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 한-인도 CEPA 또는 국내 FTA 특례법 규정에서 3국 송장 거래의 경우에 원산지증명서 11번 란에 어떤 인보이스의 번호와 일자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원산지증명서에 원산지 물품에 대한 정보를 충실하게 기재하기 위하여 한국의 수출자가 발행한 인보이스 정보를 기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5. 한국산 원단으로 인도에서 생산된 의류 수입시 협정 인정 여부

질의 : 한국산 원단을 인도의 업체에 제공하고, 인도에서 생산된 의류를 다시 한국으로 수입하는 경우, 한국산 원단의 원산지증명서가 특혜 적용할 때 유효한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 한-인도 CEPA 제3.7조(누적)에서는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나온 원산지 재료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상품의 생산에 결합되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이 원산지로 간주되며, 동 협정에서 원산지재료란 동 협정의 원산지규정을 충족한 원산지자격을 인정받은 재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인도 CEPA 누적적용을 위한 증빙은 동 협정에 따라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되어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로 가능합니다.

9. 한-호주 FTA

1. 견적송장과 상업송장이 번호만 다른 경우 원산지 증명서 인정 여부

질의 : 견적송장(proforma invoice) 번호로 기관발급 CO를 발급 받았고, 추후에 상업송장이 발급되는 경우(견적 송장과 상업송장의 번호 상이하나 다른 정보는 모두 동일) 해당 CO가 유효한 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 견적송장(Proforma Invoice)의 식별번호가 기재된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었고, 추후 상업송장이 발급되어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식별번호가 상업송장의 것과 다르지만, 견적송장과는 일치하고, 상업송장의 모든 내용이 동일하며 통관시 견적송장과 상업송장이 모두 구비가 가능하다면 해당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협정 관세 적용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Q : 협정 제6.7조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7호의 규정에서 '운송중'이라는 근거는 어떤 서류로 증명가능한가요? (2017.07.21.)

A : 한-호주 FTA 협정 제6.7조는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적용되기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근거하여 운송중인 상품은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적용으로부터 면제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에서 운송중인 상품이란 운송서류의 선적일을 기준으로 판단함을 알려드립니다.

3. 비당사국의 영역에서 재포장이나 재라벨링을 거친 경우 협정 적용 인정 여부

질의 : 비당사국의 영역에서 재포장이나 재라벨링을 거치더라도 협정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 원산지 상품이 비당사국 영역에서 재포장, 재라벨링 공정을 거치더라도 직접운송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경유국에서 상기 재라벨링 또는 재포장 외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은 다음 중의 자료로서 입증할 수 있으며 특혜관세 신청 시에 해당 서류의 직접운송 입증 여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 -

1. 계약상대국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하기까지의 전체 운송경로를 입증할 수 있는 선하증권 등 운송서류 일체
2. 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추가적인 가공 또는 작업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서류
3. 원산지가 아닌 국가의 관세당국의 통제 또는 감독 하에 있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4. 원산지증명서 내 제3국 발행 송장 관련 일부 누락 경우

Q : 원산지증명서의 제3국 발행 송장 정보가 누락된 경우에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2018.04.05.)

A : 한-호주 FTA협정에서는 비당사국 발행 송장거래를 인정하고 있으며, 원산지증명서 작성방법에서 비당사국 발행송장 거래시에는 원산지증명서 비고(9번)란에 비당사국 발행 송장임을 기재 할 수 있으며, 이 란의 기재는 선택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산지증명서에 비당사국 발행 송장임을 기재하지 않았다 하여 협정관세적용이 배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비당사국 발행 송장거래의 경우 가급적 원산지증명서 비고(9번)란에 비당사국 발행 송장거래임을 기재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5. 원산지증명서 수출자 기재란 작성방법

Q : 한-호주 FTA 원산지증명서의 수출자 기재란에 주소와 이메일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 가능한가요? (2019.01.07.)

A : 원산지증명서의 수출자 기재란에 수출자의 법적이름과 주소가 명확하게 기재되어있고, 다른서류에 의해 수출자의 정확한 정보가 확인 가능하다면 원산지증명서에 이메일과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하더라도 인정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원산지증명서 발급시에 협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6. 원산지증명서 제출면제 기준

Q : 미화 1천달러 이하의 물품은 상업용 물품 여부와 관계없이 원산지증명서 제출면제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019.06.26.)

A : 호주로부터 우리나라로 수입하는 원산지상품의 경우 상업용 여부와 관계없이 미화 1천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없이 현품의 원산지표시와 구매영수증 등을 확인 후 간이한 방법으로 협정적용이 가능합니다.

7. 적용 조건 및 원산지증명서 작성 주체

Q : 한-호주 FTA 특혜관세 적용을 받기 위한 조건 및 원산지증명서 작성 주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19.06.26.)

A : 호주로부터 우리나라로 수입하는 상품이 한-호주 FTA 적용을 위해서는 ① 동 협정에서 정한 협정관세 적용 대상 물품일 것, ② 동 협정에서 규정하는 원산지기준 충족, ③ 한-호주 FTA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 또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신청에 의해 호주상공회의소, 호주산업협회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 구비 ④ 직접운송원칙을 충족하는 경우 협정관세를 적용 할 수 있습니다. 한-호주 FTA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 그리고 호주의 경우에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신청에 의해 호주상공회의소, 호주산업협회에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8. 중고물품 협정관세 적용 가능 여부

Q : 호주로부터 중고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협정관세 적용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17.08.31.)

A : 한-호주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협정관세의 적용 대상일 것 ② 원산지가 해당 계약상대국일 것 ③ 양 당사국간 직접운송 될 것 그리고 ④ 협정관세적용을 신청할 것입니다. 따라서 당해물품이 상기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호주를 원산지로 하는 제품이라면 호주에 소재하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작성한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9. 특별긴급관세 적용조치일 기준

Q : 한-호주 FTA의 ASG 적용조치일은 물량이 소진되는 날인가요?또한, ASG 적용 조치일 선적분은 협정적용이 가능한가요? (2018.11.08.)

A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특정 농림축수산물에 대한 특별 긴급관세는 이미 협정에서 정한 물량을 초과하면 그 농림축수산물에 대해 양허한 세율을 초과하여 관세를 부과합니다. 따라서 특별긴급관세조치일은 기준발동물량을 초과한 날이 되며 특별긴급관세조치일에 선적된 물량도 특별긴급관세 부과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10. 특별긴급관세 적용조치일 기준

Q : 특별긴급관세조치일에 선적한 물품에 대하여 특별긴급관세가 부과되나요? (2017.10.16.)

A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특정 농림축수산물에 대한 특별 긴급관세는 이미 협정에서 정해진 물량을 초과하여 수입되는지 여부로서 부과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특별긴급관세조치일은 기준발동물량을 초과한 날이 되며 특별긴급관세조치일에 선적된 물량도 특별긴급관세 부과 대상입니다.

11. 호주 상공회의서 발급 증명서 서식의 인정 여부

질의 : 호주 상공회의소(ACCI)에서 발급받은 증명서 서식이 일반적인 서식과 달라도 유효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 원산지증명서는 협정에서 정한 서식에 작성되어야 하며, 협정에서 정한 서식과 상이한 서식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경우는 협정적용이 곤란합니다. 귀하가 호주 상공회의소로부터 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는 한-호주 FTA에서 정한 원산지증명서 서식과 상이하여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이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10. 한-영 FTA

1. 6천 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비원산지 제품 포함 여부

질의 : 한-영 협정 “전체 가격이 6,000유로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원산지 제품을 포함하는 하나 이상의 포장으로 구성되는 탁송화물의 수출자는 인증수출자가 아니어도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는 규정에서 6,000유로가 원산지 제품의 물품가격을 뜻하는 것인지, 비원산지 제품의 가격을 포함한 단일 탁송화물의 전체 물품가격을 뜻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 6,000유로는 원산지 제품의 가격에만 해당한다고 규정하며(영문 협정문을 (“originating products whose total value does not exceed 6,000 euros” 통해 6,000유로가 원산지 상품에만 해당함을 명확하게 확인 가능함) 우리청 한-영 FTA 이행 지침(’ 20.11월)에도 “비원산지 제품의 가격은 6,000유로에 산입하지 않음” 이라고 안내되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덴마크 업체가 영국 당국에서 인증받은 번호로 협정 적용 가능한지

질의 : 덴마크(EU 인증수출자) 업체가 영국 관세당국으로부터 인증수출자 번호를 부여 받아 한-영 FTA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 한-영 또는 한-EU 협정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신고서의 작성은 수출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수출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인증수출자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원산지신고서에는 관세당국으로부터 부여받은 인증수출자번호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덴마크 수출자가 영국 관세당국에 의해 인증수출자 지위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본사의 전산시스템에서 발행되던 원산지증명서를 별도로 발행할 경우 인정 여부

질의 : 저희는 영국산 엔진 완제품을 수입하는 업체로, 일반적으로 저희 본사의 전산시스템 상에서 인보이스 및 패킹리스트가 발행이 되면 인증수출자번호 기재하여 제출해왔는데 현재 전산프로그램이 부득이하게 업데이트 진행중이라 정상화될 때까지 별도의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여도 무방한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 수출입금액이 6천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인증수출자만이 한-영 FTA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동 금액 이하인 경우 비인증수출자도 작성 가능),

- 상기 (인증)수출자는 해당 제품이 확인될 수 있도록 충분히 상세하게 그 제품을 기술하는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 상에 원산지신고 문안을 타자로 치거나 스탬프로 찍거나 인쇄함으로써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상기 원산지신고서 작성은 귀하가 제시한 시스템을 통하지 않고도 상기 조건에 맞게(예시: 별도로 작성된 인보이스 등에 타자로 원산지신고 문안을 쳐서 원산지신고서를 작성)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 영국산 물품이 EU회원국을 경유하여 수입될 경우 협정적용 여부

질의 : 영국산 물품이 EU 회원국을 경유하여 한국에서 보세창고도거래를 통해 수입되는 경우,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 한-영 FTA 특혜대우는 양 당사자간 또는 EU를 경유하여 직접적으로 운송되는 원산지 제품에만 적용됩니다. EU를 경유하여 당사국 간 직접적으로 운송되는 원산지 제품에 대한 특혜대우는 협정 발효일로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그 이후에는 다른 영역(비당사국 영역)을 통해 운송되는 경우로서 협정 13조 2항에 따른 직접운송 관련 증거가 제시되어야 특혜대우가 가능합니다.

-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EU를 경유하여 수출되는 제품, 또는 영국에서 EU를 경유하여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원산지 제품에 대한 직접운송 인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① 제품이 경유하는 EU 국가의 세관 통제하에 있어야 하며, 해당 경유국에서 수입통관 되는 경우 직접운송 불인정
- ② 경유하는 EU 국가에서 탁송품의 분리, 라벨링 또는 마킹 등의 작업이 허용될 수 있음
- ③ 수입국 세관의 요구 시 상기 ①, ② 요건 및 협정에서 정한 직접운송 요건이 충족됨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따라서, 질문에서 제시된 보세창고도거래(BWT 거래)가 상기 기준에 부합한다면 해당 제품은 한-영 FTA 제13조의 직접운송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5. 영국산 물품이 네덜란드를 경유시 혼입하여 수입될 경우 직접운송 충족 여부

질의 : 영국산 물품이 네덜란드로 수출되어 (네덜란드) 세관 관할 보세창고에서 네덜란드산 물품과 혼재된 후 단일탁송화물로 수출된 경우, 직접운송원칙 충족 여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답변 : 한-영 FTA에서는 협정 발효 후 3년간 영국산 원산지상품이 EU국가의 세관통제하에서 탁송품의 분리, 라벨링 작업등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영국에서 선적한 영국산 물품이 EU국가에서 EU산 물품과 혼재하여 우리나라로 운송되는 경우 원산지상품이 EU국가에서 세관통제하에 있었으며, 탁송품의 재포장 이외의 다른 작업이 없음을 입증한다면 직접운송요건 충족 가능합니다.

6. 영국생산 물품을 덴마크 수출자로부터 수입시 한-영 FTA 적용 여부

질의 : 영국 생산 물품을 덴마크 수출자(인증수출자)로부터 수입해 왔는데 2021. 1. 1.부터 기존 원산지신고문안과 다소 다르게 작성된 경우, 해당 원산지신고서로 한-영 FTA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 영국 관세당국으로부터 부여받은 인증수출자 번호(아래 번호체계 참조)가 기재된 원산지신고서에 근거하여 6천유로 초과되는 원산지 상품에 대한 한-영 FTA 적용이 가능하며, 다른 EU 국가의 관세당국으로부터

부여받은 인증수출자 번호로는 한-영 FTA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한-영 FTA가 발효된 이후에는 영국 관세당국으로부터 부여받은 인증수출자 번호가 기재된 원산지신고서로 한-EU FTA를 적용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영국의 인증수출자 번호 체계》

(번호체계) 국가코드(2)/인증번호(5)/인증연도(2) (예시) GB 12345/21

11. 한-터키 FTA

1. 대 터키 아세테이트 직물 수출시 원산지신고서 발급과 관련한 유의사항 안내

서울세관 자유무역협정1과-129(2015.01.15.)

한-터키 FTA의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직물(특히, HS5408호의 아세테이트 직물) 수출시 원산지신고서 발급과 관련해서 아래와 같이 유의사항을 안내합니다.

가. HS5408호 직물(특히, 아세테이트 직물)의 한-터키 FTA 원산지 결정기준은 원칙적으로 “역내(한국 또는 터키)에서 생산된 사(絲)를 사용하여 직물을 생산하는 경우에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 토록 규정하고 있음

나. 역외에서 생산된 사를 사용하여 HS5408호 직물(특히, 아세테이트 직물)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HS5408호 직물은 실질적으로 한-터키 FTA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이러한 경우 원산지 신고서 발급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다. 다만, HS5408호 직물은 연간 200Metric tons 물량까지는 역외산 ‘사’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원산지를 충족할 수 있으므로 해당 규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한국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2. 수입신고 후 발행된 비가공증명서로 협정적용가능 여부

Q : 터키에서 싱가포르 경유 후 우리나라 도착한 물품에 대하여 싱가포르에서 출항하기 전 비조작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출항 후 우리나라 도착 전까지 발급되지 않은 경우, 수입신고 이후 발급된 비가공증명서로 협정관세 사후적용신청이 가능한가요? (2018.07.02.)

A : 비가공증명서가 경유국에서 협정적용 신청물품에 대해 비당사국 관세당국에 의해 적법하게 발급된 것임이 확인 가능하다면 출항 후 발급되었다 하더라도 한-터키 FTA에서 정한 직접운송 충족여부 확인자료로 인정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원산지국가명 기재방법

Q : 원산지 신고문안에 원산지국가명을 형용사형인 Turkish로 표기된 경우 인정가능한가요? (2018.09.07.)

A : 한-터키 FTA 운영지침에서는 원산지국가를 국가명 또는 ISO코드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터키 FTA에서 정한 원산지신고문안을 정확하게 기재하였다면, 원산지국가 기재란에 형용사형(Turkish)을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터키산 물품을 말레이시아에서 환적하면서 컨테이너 번호와 Seal 번호가 변경된 경우 증빙은

질의 : 터키산 물품을 국내로 운송 도중 말레이시아에서 환적하면서 컨테이너 번호와 Seal번호가 변경된 경우 통관하증권만으로 직접 운송을 증빙할 수 있나요?

답변 : 비당사국에서 환적 시 컨테이너번호와 셀 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귀하가 구비한 통과선하증권 외에 비당사국에서 협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직접 운송 충족 여부는 구체적 서류를 통해 통관지 세관에서 최종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5. 협정관세 적용방법

Q : 터키에서 우리나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협정관세 적용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17.06.22.)

A : 터키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이 ① 협정관세의 적용대상일 것 ② 원산지가 해당 체약상대국일 것 그리고③ 터키 수출자가 협정에 따라 발급한 원산지신고서 구비 ④ 협정에서 정한 직접운송요건 충족하는 경우 협정 관세 적용신청이 가능합니다.

12. 한-캐나다 FTA

1. 건강기능식품의 비원산지 원료가 6% 정도인 경우 최소허용기준 적용 대상 여부

질의 : 제2106.09-9000호에 분류되는 건강기능식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은 아래와 같을 때, 생산에 투입되는 제 1302.19호 비원산지 원료가 완제품 공장도가격 대비 6% 가량인 경우 최소허용기준 적용 대상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 (제1302.19호 원산지결정기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1211.20호 및 제1302.19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상품과 6단위 세번이 동일한 비원산지재료가 사용되지 않았다면, 품목별원산지기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세번의 비원산지재료 사용시 미소기준 적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 경유화물의 직접운송 요건 충족서류

Q : 캐나다(수출국)에서 송부되어 대만 또는 홍콩(경유국)의 보세창고반입 및 보관 후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경우 직접운송 요건 충족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2018.04.02.)

A : 동 물품이 한-캐나다 FTA협정에 규정된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고, 캐나다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한 경우 동 협정 제3.16조(통과 및 환적) 요건 충족을 입증하기 위한 다음의 서류를 제시하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상품의 수입 전 운송경로와 모든 선적 및 환적지점을 나타내는 선하증권 또는 화물운송장 그리고 나. 상품이 비당사국 영역을 경유하여 운송되는 경우, 비당사국에 있는 동안 세관의 통제하에 있었음을 그 관세행정기관에 나타내는 세관 통제 서류 사본

3. 비당사국물품의 협정적용 가능여부

Q : 미국산 차량을 캐나다에서 구매 후 우리나라로 반입한 경우 한-캐나다 FTA 협정적용이 가능한가요? (2018.11.27.)

A : 한-캐나다 FTA협정적용을 위해서는 ① 동 협정에서 규정하는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② 동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증명서 서식에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작성한 원산지증명서 구비 ③ 직접운송원칙을 충족하는 경우 협정관세를 적용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캐나다에서 반입하는 차량이 캐나다를 원산지로 하는 제품인 경우 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가 구비되고, 양 당사국간 직접운송되는 경우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생산된 차량은 한-캐나다 FTA 협정적용이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4. 소액물품 관세면제규정

Q : 한-캐나다 FTA의 소액물품 관세면제규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18.11.20.)

A : 한-캐나다 FTA의 경우 원산지와 관계없이 캐나다로부터 특송화물로 반입되는 미화 150불이하의 자가사용

물품과 상용견품으로 목록통관 대상물품에 대하여 통관시 부과되는 세액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품의 가격이 미화 1천달러 이하의 원산지상품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 제출없이 수입통관시 구매영수증, 현품의 원산지표기 등을 통해 원산지를 확인 후 협정관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입물품을 분할하여 수입하는 등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이 미화 1천달러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수입하는 물품은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5. 캐나다 생산자가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미국수출자를 기재한 경우 원산지증명서 인정 여부

질의 : 캐나다의 생산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면서 수출자란에 미국 수출자를 기재하고(제3국 송장발행 거래) 생산자란에 캐나다를 기재한 경우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 가능한가요?

답변 : 한-캐나다 FTA 협정에서는 자국 영역의 수출자가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하고 서명하며, 자국 영역의 수출자가 그 상품의 생산자가 아닌 경우, 그 수출자가 다음에 근거하여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하고 서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1)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었다는 수출자의 인지
 - 2)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었다는 생산자의 서면 진술서에 대한 수출자의 합리적인 신뢰, 또는
 - 3) 생산자가 수출자에게 자발적으로 제공한, 그 상품을 위하여 작성하고 서명한 원산지 증명서
- 따라서, 원산지증명서는 자국 영역에 소재한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3. 한-싱가포르 FTA

1. 수리비 등에 협정관세 적용여부

가. 질의

- ① 미국산 부상*을 싱가포르로 수출하고 다시 수리하여 한국으로 반입할 때 수리비 등에 대한 FTA특혜관세 적용가능 여부

* 유리장섬유 방사하는 장치

- ② 싱가포르에서 부상을 수입할 경우 FTA협정관세 적용여부

- ③ 싱가포르에서 수입한 부상을 싱가포르로 재수출하고, 수리후 국내로 다시 수입할 때 수리비, LOSS비용, 왕복운송비에 대하여 FTA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나. 회신내용

- 질의 ①의 경우에는 원산지가 불분명하여 FTA 특혜관세 적용대상이 아니며, ②, ③의 경우에는협정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해당 물품이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고 적정한 원산지증명서가 제시되는 경우 FTA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 원산지증명서 소급발급 문구

Q : 싱가포르에서 원산지증명서 소급발급시 소급발급문구를 “ISSUED RETROSPECTIVELY” 로 날인하여 발급한 경우 날인된 소급문구는 적정한가요? (2019.02.25.)

A : 한-싱가포르 FTA에서는 원산지증명서가 수출시 또는 그 직후에 발급되지 않은 경우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급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산지증명서를 소급하여 발급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되어야 하는 소급발급 문구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산지증명서가 소급하여 발급된 경우 “ISSUED RETROACTIVELY” 와 “ISSUED RETROSPECTIVELY” 모두 인정가능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원산지증명서의 원산지기준 작성방법

- Q : 원산지기준이 결합기준(부가가치기준과 세번변경기준)인 경우 싱가포르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시 원산지기준 기재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19.03.07.)
- A : 원산지기준이 세번변경기준과 역내부가가치기준의 결합기준인 경우, 싱가포르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시에 원산지증명서의 원산지기준은 “D” 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14. 한-페루 FTA

1. 비당사국에서 수입통관된 물품을 우리나라로 수입시 협정관세 적용 가능 여부

- Q : 페루산제품을 미국에서 수입통관 후 추가 가공 없이 그대로 한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 한-페루 FTA 협정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017.09.06.)
- A : 페루산제품이 미국에서 수입통관절차를 거쳐 미국으로 수입된 후 다시 우리나라로 재수출되는 경우는 직접운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 참기름의 수입물량 제한 등은

- 질의 : 참기름(1515.50-0000)은 수입 물량에 제한이 없는지, 만약 농산물유통공사의 추천서가 있다면 수입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 답변 : ' 21년 기준, 페루산 숙주용 녹두(0713.31-9000)와 간녹두(2005.51-1000)의 협정관세율은 0%, 참기름(1515.50-0000)의 경우 과세가격의 196.8% 또는 중량(Kg) 당 3,768원 중 고액에 해당하는 관세가 부과됩니다. 상기 3개 품목 중 숙주용 녹두의 경우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대상이었으나 2021년부터 긴급관세 발동물량이 폐지되어 수입물량에 제한이 없으며, 나머지 품목은 협정 발효일부터 관련 수입물량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페루 FTA의 경우 협정관세 적용을 위한 관세율 할당 또는 관련 추천 제도를 협정에서 정하지 않으므로 협정관세 적용을 위하여 농산물유통공사의 추천서를 구비할 필요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 한-페루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증명 발급관련 개정사항 안내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2702, 2014.11.25

1.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이행과-1051호('14.11.24) 관련입니다.
2. 페루의 대외무역 싱글윈도우(Single Window)도입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스템이 개정('14.7.1.자)되어 아래와 같은 변경사항이 통지되었기 안내하오니 각 세관장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동 사항을 관내 수출입기업에도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1) 원산지증명서 발급번호 형식
- 연도 4자리(YYYY) - 17 - 일련번호 7자리
- (예시)

2	0	1	4	-	1	7	-	0	0	1	7	8	6	3
---	---	---	---	---	---	---	---	---	---	---	---	---	---	---

- (2) 수출자 신고일자(12번란)와 원산지증명일자(13번란)는 인쇄 또는 스탬프 처리
- (3) 1번란 · 13번란에 포함되는 내용 이외의 추가적인 사항은 주석(Remarks)란에 기술
- (4) 1명 이상의 제조업자가 만든 물품이 원산지증명서에 포함될 때, 추가 제조업자 리스트는 첨부물(annex)에 다음 정보를 포함하여 기재
- 품목(Item) 번호, ID번호 또는 조세인식번호, 법인명, 주소(국가포함), HS 관세율 분류

15. 한-뉴질랜드 FTA

1. 냉동육용 협정세율 적용에 관한 질의 회신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1690, 2016.7.7)

1. 부산세관 수입과-587(' 16.2.26)호와 관련입니다.
2. 한·뉴질랜드 FTA 한국 관세양허표 상의 녹용 전지(HSK 0507.90-1110)의 가공처리 범위는 “단순히 이물 질·털 등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한 상태”를 의미함을 통보합니다.
3. 아울러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각 사안별로 세관장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예 시 -

「사슴 뿔 → 녹용을 절각 → 절각면을 위로 세워 혈액을 밑으로 이동시킴 → 냉동처리 → 한국 수입」의 경우 “기타”에 해당됨

2. 산 동물의 원산지기준 충족여부

Q : 호주에서 출생 후 뉴질랜드에서 사육된 말을 수입시 협정관세적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019.10.29.)

A : 한-뉴질랜드 FTA에서는 살아있는 동물의 경우에는 체약당사국영역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경우 원산지상품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뉴질랜드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말을 구매하는 경우

- ①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수출물품의 원산지기준을 확인하여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와
- ②직접운송요건 충족여부 확인 서류를 구비하여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호주에서 출생 후 뉴질랜드에서 사육된 말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뉴질랜드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16. 한-칠레 FTA

1. 원산지 결정기준 관련

해당물품과 그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가 같은 호 또는 소호에 분류되는 경우 원산지 결정기준

한-칠레 FTA 원산지규정 제4.2조 ‘라’ 목(2)에서는 역내 생산제품이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상품의 호가 상품자체 및 그 부품에 대해 규정하고 구체적으로 기술하며 더 이상 소호로 분류되지 않거나 상품의 소호가 상품 자체 및 그 부품에 대해 규정하고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기준에 부합하는 경우라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사항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8 ‘나’ 목 2)항 나)호에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물품과 그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가 같은 호 또는 소호에 분류되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의해 원산지제품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이는 원산지확인서 작성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2.. 원산지증명서 기재방법

Q : 원산지결정기준이 다음과 같을 경우 원산지증명서의 제7란 기재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19.10.04.)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의 경우 45% 또는 집적법의 경우 30%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A :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의 원산지기준이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의 결합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의 제6란에는 “B”를 기재하고, 원산지증명서의 제7란에는 공제법의 방법으로 부가가치계산을

한 경우에는 “BD” 를 직접법의 방법으로 부가가치를 계산한 경우에는 “BU”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17. 한-콜롬비아 FTA

1. 수출자와 생산자가 상호만 다른 같은 회사일 경우 제8란 기재 방법

질의 : 수출자와 생산자가 상호만 다를 뿐 같은 회사인 경우, 제8란에 YES로 작성해도 원산지증명서가 유효한가요?

답변 : 원산지증명서는 협정에서 정한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한-콜롬비아 FTA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생산자와 수출자가 상이한 경우 원산지증명서 제8란에 “No” 를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① 원산지증명서의 다른 란에 기재된 수출자와 생산자 정보를 통해 생산자와 수출자가 상이함이 확인 가능한 경우 또는 ② 동일법인임이 관련 무역서류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면 제8란에 “No” 를 기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인정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콜롬비아 산 커피 농축액을 파나마에서 단순 환적한 경우 구비서류

질의 : 콜롬비아 산 커피 농축액(원산지: 콜롬비아)를 FCL 화물로 해상 수입 시 파나마에서 단순 환적한 이후 부산항으로 도착했을 때 통과선하증권만 있으면 비가공증명서는 구비하지 않아도 되나요?

답변 : 운송서류상에 선적항·경유지·도착항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운송서류에 기재된 물품에 대해 운송인이 전운송구간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고 발행한 운송서류(통과선하증권)를 구비하는 경우 직접운송요건을 충족함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18. RCEP

1. RCEP 발효 전 회원국으로부터 수입한 원재료로 생산한 물품의 RCEP 원산지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

질의 : RCEP 발효 전 RCEP 회원국으로부터 수입한 원재료로 생산한 물품의 RCEP 원산지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답변 : 「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에서 원산지발급을 위한 증명서류의 유효기간을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협정 발효 전에 RCEP 회원국으로부터 구매한 원재료로 생산한 물품이 협정의 기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해당 물품에 대한 RCEP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원산지포괄확인서의 원산지포괄확인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원산지확인서를 신규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2. RCEP 원산지상품에 대한 연결 원산지증명 활용방법

질의 : RCEP 원산지상품에 대한 연결 원산지증명 활용방법 문의드립니다.

답변 : RCEP 회원국에서 생산된 제2장 및 제3장의 요건을 충족하는 원산지상품에 대해 ① 역내 중간 역내국에서 RCEP 제3.19조의 연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이를 근거로 우리나라에서 RCEP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거나, ② 우리나라에서 연결 원산지증명을 작성·발급할 수 있습니다.

②의 경우(우리나라에서 연결 원산지증명을 작성·발급) 활용방법은 ‘연결 원산지증명 작성·발급 업무집행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RCEP 원산지증명서 제11번란(원산지국가)에 국가명이 모두 대문자로 기재된 RCEP 원산지증명서 유효성 인정 여부

질의 : RCEP 원산지증명서 제11번란(원산지국가)에 국가명이 모두 대문자로 기재된 RCEP 원산지증명서는 유효성이 인정되나요?

답변 : 국가명을 모두 대문자로 기재한 경우 협정 3.26조의 상품의 원산지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소한 오류에 해당하므로 협정에 규정된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해당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협정관세 적용 신청이 가능하나, 통관애로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협정에 규정된 작성 방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구비 하시길 권고드립니다.

4. RCEP 회원국으로부터 물품을 우리나라로 수입하여 RCEP 회원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RCEP 특혜세율 적용방법

질의 : RCEP 회원국으로부터 물품을 우리나라로 수입하여 RCEP 회원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RCEP 특혜세율 적용방법 문의드립니다.

답변 : ① 우리나라에서 추가가공을 거치는 경우, 협정 제3.4조(누적)에 따라 RCEP 원산지증명서를 신규 발급 합니다. 다만 이 경우 누적 대상 원재료 수입 시 적용하는 협정과 별도로 누적 대상 원재료에 대한 RCEP 원산지증명이 필요합니다.

② 우리나라에서 물류, 보존, 운송 상 필요한 공정 외에 추가가공을 거치지 않는 경우, 협정 제3.19조(연결 원산지 증명)에 따라 원 수출국에서 발급한 원본 원산지증명서에 기초하여 우리나라에서 RCEP 연결 원산지 증명서 발급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중간 경유 수출자인 우리나라 수출자에게 제2.6조(관세 차별)에 따른 원산지 국가 판단 의무가 발생합니다.

5. 개별 FTA 원산지증명서가 RCEP 누적 입증서류 가능 여부

질의 : 개별 FTA 원산지증명서가 RCEP 누적 입증서류가 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 RCEP 제3.2조 및 제3.4조에 따라 다른 RCEP 회원국에서 원산지 지위를 획득한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원산지 재료의 누적을 인정할 수 있으며, 최종상품에 사용된 상품 또는 재료의 유효한 원산지증명을 갖춘 경우 누적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개별 FTA 원산지증명서로도 해당 원재료가 RCEP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역내산 재료임을 입증 할 수 있다면 누적 증빙자료가 될 수 있으나, 안정적인 특혜적용을 위해 누적 대상 재료에 대해 RCEP 원산지 증명 확보를 권고 드립니다.

누적 입증서류에 대한 RCEP 회원국 간 추가 합의가 있을 경우, FTA 포털 공지사항에 게시 예정입니다.

6.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작성한 자율발급 원산지신고서 인정 여부

질의 : RCEP 회원국 인증수출자가 아닌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작성한 자율발급 원산지신고서 인정 여부

답변 : RCEP 제3.16조에 따르면 RCEP 회원국의 원산지증명방식으로 ①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 ②인증수출자에 의한 원산지신고서, ③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한 원산지신고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부 RCEP 국가는 현재 규정된 세 가지의 원산지증명 방식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자유무역 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 및 인증수출자에 의한 원산지신고서만 유효한 원산지증명 방식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수입자는 상대국의 인증수출자가 아닌 수출자가 발행하는 원산지신고서를 활용하여 RCEP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7. 제2.6조(관세차별) 제6항의 적용방법

질의 : RCEP 제2.6조(관세차별) 제6항의 적용방법 문의드립니다.

답변 : RCEP 제2.6조제6항은 수입자가 동조 제1항에 따른 수출당사국 또는 제4항에 따른 원산지 재료 중 최고 가치를 기여한 당사국에 적용되는 관세가 아닌 다른 회원국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선택할 수 있는 조문으로,

①가호에 따라 원산지 재료에 기여한 당사국에 적용되는 관세 중 최고 세율 또는 ②나호에 따라 모든 RCEP 회원국에 적용되는 관세 중 최고 세율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8. 제3자 송장 발행 시 원산지증명서 작성방법

질의 : 제3자 송장 발행 시 원산지증명서 작성방법 문의드립니다.

답변 :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해 송장이 발급된 경우, 제17란의 ‘Third-Party invoicing’에 체크하고 제14란에는 송장을 발행한 회사의 이름과 국가명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19. 2개 FTA 적용

1. 분할운송시 협정관세 적용여부 등(한-EU, 한-미 FTA)

질의 : ① 하나의 기능단위기계를 운송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분할운송하는 경우 한-EU, 한-미 FTA 협정관세 적용여부

- (1) 동일선박 / 동일항차의 여러 B/L로 수입하는 경우
- (2) 다른선박 / 다른항차의 여러 B/L로 수입하는 경우

② 수출물품과 원재료의 원산지결정기준이 아래의 같은 경우 한-EU, 한-미 FTA 협정의 중간재(또는 자가생산재료)로 지정하여 원산지제품으로 판정할 수 있는지 여부

※ 한-칠레 FTA에서는 부가가치기준에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상기 협정에서는 언급이 없음

<답변①>

-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자유무역협정] 동 협정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20조에 따라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에 대한 원산지신고서에 근거하여 협정관세 적용 가능
- [미합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 동 협정에 따른 원산지제품은 아래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협정관세 적용 가능
 1. 수출국에서 생산되어 선적한 원산지 제품으로서 ‘관세? 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2’에 따른 완성물품의 주요특성을 가진 미완성제품일 것
 2. 포장, 운송 등의 편의를 위해 분할해서 수입하는 물품일 것
 3. 우리나라에서 단순조립 이상의 추가가공이 발생하지 않을 것
 4. 관세법 제17조(적용법령)에서 정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이 있을 것

<답변②>

-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자유무역협정] 동 협정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5조에 따라
 - 원산지제품이 다른 제품의 생산에 재료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 원산지제품 전체가 원산지재료임
- [미합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 동 협정 제6.22조에 따라 자가생산재료는 원산지재료임
- 따라서 수출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이 세번변경기준인 경우 원산지재료는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않아도 수출물품은 원산지제품이 되는 것이며, 수출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이 부가가치기준인 경우에는 원산재료의 가치 전체를 원산지재료비로 계산할 수 있음.

2. 동일상품 장기간 반복 수입시 원산지 포괄증명서 반복 사용 가능 여부(한-뉴질랜드, 캐나다, 호주, 콜롬비아 FTA)

질의 : 한국과 뉴질랜드, 캐나다, 콜롬비아, 호주 간 FTA에서는 동일 상품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 원산지포괄증명 제도를 이용하여 최초 원산지증명서를 반복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 뉴질랜드, 캐나다, 콜롬비아, 호주와의 FTA에서는 원산지포괄증명은 동일상품의 복수수입 시 적용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산지포괄증명은 원산지포괄증명기간에 해당상품이 수입당사국에 수입신고 된 경우 적용가능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수입 통관후 다른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아 재적용 가능 여부(한-아세안, 한-베트남 FTA)

질의 : 한-아세안 협정 적용하여 수입 통관하였으나 세율이 더 낮은 한-베트남 FTA CO를 수출자에게서 발급 받아 한-베트남 협정을 재적용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 해당 사항에서는 관세법 제38조의2 또는 제38조의3 규정에 따라 보정·수정 등 절차를 통해 이미 적용 받은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 후 다른 협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베트남에서 원산지상품 수입 시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를 적용 받았으나, 세율 차·품목분류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유효한 한-베트남 FTA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였다면 상기 안내한 협정관세 사후적용 절차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한-베트남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신청이 가능합니다.

* 참고 : 이미 적용된 협정관세를 배제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세액을 납부할 때에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가산세규정을 준용합니다.

4. 싱가포르에서 수입할 경우 협정 적용 여부(한-싱가포르, 한-아세안 FTA)

질의 : 싱가포르 브랜드 공식 홈페이지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 어떤 협정이 적용되고, 관세가 면제(혹은 부과)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 싱가포르로부터 수입하는 원산지상품은 한-싱가포르 FTA와 한-아세안 FTA 적용이 가능합니다. 싱가포르로부터 수입하는 상품이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분할 수입되지 않는 한, ①한-싱가포르 FTA의 경우 총 관세가격 미화 1,000달러 이하, ②한-아세안 FTA의 경우 FOB기준 미화 200달러 이하의 원산지물품이라면 해당물품의 구매영수증, 제품의 원산지표기 등을 통해 간이한 방법으로 원산지를 확인 후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5. 완제품 생산과정에서 생산된 반제품의 중간재 지정 가능 여부(한-아세안, 한-베트남 FTA)

질의 : 완제품 생산 과정에서 생산되는 반제품이, 따로 판매된 실적이나 다른 조건이 없어도 중간재 지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 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 중간재는 최종제품 생산과정에서 생산되고, 독립된 품목분류가 가능한 원산지재료라면 중간재로 사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6. 원산지결정기준 해석(한-베트남, 한-인도 FTA)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 2018-01-22(접수일자)

질의 : ① 한-베트남 FTA, 제2106.90호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 해석

* 2106.9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소호 제1211.20호, 제1212.20호 및 제1302.19호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경우에 한정한다.)

CTH; or RVC(40), provided that materials of Subheading 1211.20, 1212.20 and 1302.19 are WO

⇒ (갑론)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가치포함비율 40% + 소호 제1211.20호, 제1212.20호 및 제1302.19호 완전생산기준’

⇒ (을론) ‘4단위 세번변경기준 + 소호 제1211.20호, 제1212.20호 및 제1302.19호 완전생산기준’ 또는 ‘역 내부가치포함비율 40% + 소호 제1211.20호, 제1212.20호 및 제1302.19호 완전생산기준’

② 한-인도 FTA, 제1211.20호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 해석

* 1211.20 - 제12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수출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Manufacture in which all the material of Chapter 12 used are wholly obtained.

○ 홍삼테블릿(HS 1211.20-2220)의 주원료인 홍삼(HS1211.22-1319)은 완전생산기준을 충족하나, 나머지 원재료인 전분이 HS 1108호인 경우

⇒ (갑론) 제1211.20호의 원재료 중 제12류에 해당되는 모든 재료는 완전생산을 충족하여야 하나, 그 외의 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완전생산기준을 고려할 필요가 없음

⇒ (을론) “제12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 라고 표현한 것은 원재료를 한정한 것이 아니라 제12류의 완제품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완제품 자체가 완전생산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답변 : ○ 한-베트남 FTA 부속서 3가(품목별 원산지 규정)에 따라 제2106.90호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또는 ‘40% 이상의 역내부가가가치가 발생한 것. 다만, 제1211.20호, 제1212.20호 및 제1302.19호에 해당하는 재료는 계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에 한정한다.’로 해석합니다.

- 따라서,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 생산된 것’에는 단서규정의 ‘제1211.20호, 제1212.20호 및 제1302.19호에 해당하는 재료는 계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에 한정한다.’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 한-인도 CEPA 부속서 3가(품목별 원산지 기준)에 따라 제1211.20호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 중 모든 사용재료는 제12류에 해당하는 물품만 해당됩니다.

- 따라서, 홍삼 테블릿(HS 1211.20-2220)의 재료 중 홍삼(HS 제1211.22)은 수출당사국에서 완전생산을 충족하여야 하나, 그 외 제12류에 해당되지 않는 전분(HS 제1108호)은 완전생산기준을 고려할 필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7. 원산지신고서 국가명 기재방법(한-터키, 한-EFTA FTA)

Q : 한-터키, 한-EFTA 원산지신고문안상 국가명 기재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19.04.15.)

A : 한-EFTA, 한-터키 FTA에서 정한 원산지신고문안에 작성하는 원산지국가명은 협정문에 있는 당사국명, 당사국의 ISO 코드, 당사국의 형용사적 표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가명이 기재된 경우 인정가능 합니다.

8. 원산지증명서의 수입자에 은행이 기재되어 있고 송장 등에는 수입자가 기재된 경우 유효 여부(한-아세안, 한-베트남 FTA)

질의 : 원산지증명서의 수입자란에 은행이 기입되어 있고, 상업송장, 선하증권에는 수입자명이 기입되어 있는 경우 해당 원산지증명서는 유효한가요?

답변 : 원산지증명서의 수입자는 송품장에서 확인 가능한 실제 수입자를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원산지증명서에 수입자가 아닌 자를 기재한 경우라도 수입신고시 제출되는 무역서류 등을 통해 협정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물품과 원산지증명서의 물품이 동일함과 원산지증명서의 실제 수입자 확인이 가능하다면 원산지증명서가 무효화 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9. 원산지표시 및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여부 등(한-EU, 한- FTA)

질의 : 아래와 같이 원료를 투입하여 화학반응을 수반하는 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여 수출하는 경우 한-

- 미 FTA와 한-EU FTA 원산지제품 충족여부
- 완제품(HS 2907.29-0000 : 페놀과 페놀알코올)
 - 완제품 1톤 생산비용 : US \$4,379/MT
 - 원료물질가격 + 생산비용 = US \$11,617.33/MT
 - 완제품 수출가격 : 12,460/MT

답변 : ☐ 물품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사항

1.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국내생산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대외무역법시행령 제61조 제3항에 의하여 실질적 변형(HS 6단위 변경)을 가하여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활동을 한 국가가 원산지가 됩니다.
 - 따라서, 질의물품은 실질적 변형(HS 6단위 변경)이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화학적 반응에 따라 물품의 본질적 특성이 부여되었다면 원산지는 한국이 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참고로, 질의물품(HS2907)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 및 별표8에 의하여 원산지 표시대상 물품이 아니므로 수출입시 대외무역법령에 의한 원산지 표시 의무는 없습니다.

2. 또한 위와 같은 수출물품의 원산지 판정기준이 수입국의 원산지 판정기준과 다른 경우에는 수입국의 원산지 판정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판정할 수 있습니다.
 - ※ 기타 원산지표시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관세청 특수통관과(042-481-764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제품에 관한 사항

-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에 충족하는지를 판정하기 위해서는 사용된 재료가 해당 협정에서 정하는 원산지결정기준에 충족하는 원산지재료인지를 알아야 하며
 -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에 충족하는지를 판정하기 위해서는 수출하는 제품의 협정에서 정하는 공장도 가격을 알아야 합니다.
 - 다만, 미합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서 HS2907호의 물품은 계약당사국의 영역에서 화학반응을 거쳐 생산된 경우에는 원산지제품으로 인정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하지만 귀하께서 질의한 내용으로는 사용된 재료가 동 협정에 따른 원산지재료인지와 협정에서 정하는 공장도가격이 얼마인지를 알 수 없어 판단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상기 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자료가 제출하는 경우,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0. 주스생산 공정 중 특수기계 이용하여 탄소주입시 불인정 공정 해당 여부(한-아세안, 한-베트남 FTA)

질의 : 탄산과실주스를 생산하는 공정 중에 특수한 기계를 이용하여 이산화탄소를 주입하는 공정이 있는데 불인정공정에 해당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 탄산과실주스의 CO2 주입 공정이 특수한 기계를 사용한 경우라면 상기 두 협정 상 불인정 공정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11. 중국에서 수입하는 물품의 원산지증명방법(한-중 FTA, APTA 협정)

Q : 중국에서 전기이륜차 수입시 APTA 협정 및 한-중 FTA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18.08.30.)

A : 한-중 FTA에 따른 원산지증명은 동 협정에 따른 원산지기준 및 다른 요건들을 충족하는 상품에 대해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수출당사국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의해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로 가능합니다. APTA에 따른 원산지증명은 동 협정에 따른 원산지기준 및 다른 요건들을 충족하는 상품에 대해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신청에 따라 수출참가국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의해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로 가능합니다.

12. 통과선하증권 인정가능 여부(한-미, 한-호주 FTA)

Q : 미국 또는 호주에서 비당사국을 경유하여 우리나라로 수입시 B/L상 '선적지: 미국 또는 호주'와 '도착지: 한국'을 기재하고 description란에 환적정보를 기재한 경우 비가공증명서 없이 직접운송 증빙 가능한가요? (2019.07.01.)

A : 한-미국FTA, 한-호주 FTA의 경우 원산지상품이 비당사국을 경유하는 경우 최초의 운송업자가 전 구간을 책임지고 발행한 통과선하증권 또는 동 상품이 비당사국에서 비당사국 세관통제하에 머물러 있었음을 입증하여 발행한 서류(예: 비가공증명서 등)로 직접운송 충족여부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운송서류의 운송정보 기재란에 출발지(미국 또는 호주), 도착지(부산)이 기재되어 있고, 물품상세란(Description)에 경유국의 정보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라면 통과선하증권으로 인정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3. 협정관세 적용 가능 여부 관련(한-호주, 한-캐나다 FTA)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159, 2015.1.16

□ 질의 내용

- (질의 1) 한-호주 FTA 협정 발효 전에 반입된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증명서를 사후 발급받는 경우 한-호주 FTA 협정가능 여부
- (질의 2) 한-캐나다 FTA 협정 발효 전에 선적된 물품을 발효 후에 수입신고할 경우 협정관세 적용 가능 여부
- (질의 3) 한-캐나다 FTA 협정상 원산지 증명서의 서식과 발효 전에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증명서 제출 방법

□ 검토 의견

- 한-호주 FTA 발효 전에 반입된 물품의 협정관세 적용여부에 대한 검토(질의 1)
 - FTA 특례법 시행령 부칙 제2조(일반적 적용례)에 따라 발효일 이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 적용 가능하며
 - 한-호주 FTA 협정문 제3.15조, 제3.18조에 따라 협정 발효 전에 서명되거나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도 인정하고 있으며, 수입통관 후 1년 또는 수입국의 법과 규정에 명시된 기간까지 사후 환급 신청 가능
- 질의 2에 대한 검토
 - FTA특례법 시행령 부칙 제2조(일반적 적용례)에 따라 발효일 이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 적용 가능
- 질의 3에 대한 검토
 - 한-캐나다 FTA 원산지 증명서의 서식은 FTA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 13]에 규정
 -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서명일로부터 2년이며, 협정발효 전에 서명되거나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발효 전에 선적된 물품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협정관세 신청 가능
 - * 한-캐나다 FTA 협정 제4.1조

□ 회신문서

- 한-호주, 한-캐나다 FTA발효 전에 반입된 물품도 발효일 이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하여 한-호주, 한-캐나다 FTA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하며, 발효 전에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발효 후 수입신고하는 경우 협정관세 적용 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한편, 원산지증명서 서식은 FTA특례법 시행규칙 제9조의12(별지 제6호의13 서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규정

FTA특례법 시행령 부칙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한-호주 FTA 협정문 제3.15조 원산지증명서	
7. 이 협정이 발효한 날 또는 그 이후 당사국의 영역 내로 수입되는 모든 원산지 상품에 대하여 각 당사국은 발효일 전에 작성되고 서명된 원산지 증명서를 수락한다.	하여

한-호주 FTA 협정문 제3.18조 수입 이후 특혜관세 대우의 신청 각 당사국은, 상품이 그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입될 때 원산지 상품 자격을 갖춘 경우, 그 상품의 수입자는 상품이 수입된 날 후 최소 1년 또는 수입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명시된 보다 더 긴 기간 이내에, 수입 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에 다음을 제시하는 경우, 상품에 특혜관세대우가 부여되지 아니한 결과로 납부한 모든 초과 관세의 환급을 신청하도록 규정한다.
한-캐나다 FTA 협정문 제4.1조 원산지 증명서 1. 양 당사국은 한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다른 쪽 당사국 영역으로 수출되는 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원산지 증명서를 이 협정의 발효일까지 마련한다. 이 원산지 증명서는 양 당사국의 합의에 따라 수정될 수 있다. 7. 이 협정의 발효일 또는 그 이후 당사국의 영역 내로 수입되는 원산지 상품에 대하여, 각 당사국은 수출자 또는 수입자가 이 협정의 발효일 이전에 작성하고 서명한 원산지 증명서를 인정한다.

20. APTA 협정

1. 공장자동화 감면물품 APTA 특혜관세 적용여부는?

- APTA 등 협정세율의 적용은 신고당시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 제출과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여부 등을 검토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수입신고 물품이 APTA 협정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고 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하였다면 협정세율 적용 가능

2. 국내 보세구역 반입 후 B/L을 양도하는 경우 APTA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적정한 C/O 기재방법

- * APTA 협정은 원산지증명서상 수하인란에 송품장상의 수입자를 기재하도록 규정
수입신고 전에 선하증권이 양도된 경우 원산지증명서의 수하인과 선하증권 양도 전에 발행된 송품장의 수하인이 일치하는 경우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세율의 적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3. 누적적용을 위한 비양허품목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기

Q : 특혜적용이 아닌 누적적용을 목적으로 APTA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3근무일이 지난 후에도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이 가능한가요? (2019.04.10.)

A :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증명 및 검증 운영절차」 제4조에서 원산지증명서는 수출국의 발행당국이 수출 시점 또는 선적일로부터 3근무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혜관세적용 목적이 아닌 누적기준 적용을 위해 원산지증명서 발급시에는 수출시점 또는 선적일로부터 3근무일 이후에도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이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누적적용을 위해 비양허품목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

Q : 체약상대국에서 누적적용을 위해 양허대상품목이 아닌 품목(원재료)에도 APTA원산지증명서 발급가능한가요? (2019.04.10.)

A : APTA 원산지증명서는 APTA 양허표상 특혜 품목(최종상품)에 대해 발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상품에 대한 누적이 입증 목적으로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규정(부속서 2)」 제1조에 따른 원산지기준을 충족한 물품에 대해서도 APTA 원산지증명서가 발행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5. 본선인도 가격

APTA 협정 부속서 II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규정) 제3조에 명시된 ‘생산품 또는 획득품의 본선

인도가격'은 해당 생산품의 가치를 기준으로 원산지를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바, 문의하신 내용처럼 최종 수출자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부가가치비율을 산정하는 것은 이에 맞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6. 비당사국 경유물품 직접운송 충족여부

Q : 중국(수출국)에서 홍콩(경유국)을 거쳐 우리나라(수입국)으로 수입되는 경유물품에 대하여 전제 운송경로가 기재된 B/L이 수출참가국(중국)에서 발행된 경우 통과선하증권으로 인정가능한가요? (2018.05.28.)

A : 수출참가국에서 발행된 운송서류에 수출국에서 수입국까지 전체운송경로가 기재되어 있고 운송서류에 기재된 물품에 대해 운송인이 전운송구간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고 발행한 경우라면 통과선하증권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7. 비당사국 경유시 증빙자료

Q : 비당사국 경유시 직접운송 증빙자료로 인정 가능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2019.06.07.)

A : 원산지상품이 비당사국 경유시 직접운송 충족여부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의 경우 그 증빙자료로 통과선하증권 또는 경유국에서 원산지상품이 머물러 있는 상태를 증명하여 경유국 관세당국에서 발행한 서류로 직접운송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8. 사후 협정관세 적용 여부

귀하가 질의하신 품목(HS:3506.91)은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부속서 I에 열거된 중국측 관세양허품목이며 양허세율은 7%(기본세율 10%에 특혜폭 30% 적용)입니다. 다만, 중국에서 귀사가 생산한 접착제를 同 세번으로 분류하는지 여부는 중국 세관당국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음, 이미 수출된 물품에 대한 사후 관세혜택 적용 여부를 검토한 바, 동 협정에 의한 물품의 원산지증명 및 검증 운영절차 제5조는 특혜대우를 받기위해 수입신고시 세관당국에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제출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신고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전 수출 건에 대해서는 특혜대우 소급적용이 어려움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선적후 발급한 APTA 원산지증명서 인정여부?

○ APTA 등 일반특혜관세 적용신청시 원산지증명서가 선적후 발행하였다 하더라도 수입신고시에 제출되고, 협정·법령에서 정한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면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함

10. 세번변경기준의 누적적용 가능여부

Q : 품목별 원산지기준이 세번변경기준인 경우 누적적용이 가능한가요? (2019.01.16.)

A : 세번변경기준이 적용가능 하도록 추가된 품목에 대해서도 APTA 제6조에 규정된 누적기준을 적용하여 원산지기준 충족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11. 소급문구 인정 여부

질의 : APTA 협정에 따른 원산지 증명서가 선적일로부터 3근무일을 경과하여 발급된 경우 ‘ISSUED RETROACTIVELY’ 라는 소급문구가 기재되었다면, 특혜관세가 적용되는지?

답변 :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가 수출 시점 또는 선적일로부터 3근무일을 초과하여

발행된 경우에도 「관세법 시행령」 제236조제4항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원산지증명서의 정확성 및 진위여부에 의심이 있는 경우 수입신고가 수리된 후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기관에 확인을 요청하여 유효성여부를 판단함을 알려드립니다.

12. 원산지증명서 관련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1935, 2014-08-14

질의 : ○ 중국 천진세관으로부터(14년 7월29일) 통보받기로 한 APTA원산지 증명서 상에 물품의 총 금액이 표기되어야만 특혜관세를 적용시켜주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중국 수입자로부터 전달받음

○ 민원인이 확인한 바로는 총금액 표기 같은 변경사항은 우리나라와 협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음

○ 이에 따라 APTA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인 우리나라 세관에서 원산지증명서 상에 물품의 총 금액은 필수 표기사항이 아니며, APTA협정 상 원산지증명서 양식이 변경된 바가 없다는 내용의 공문 회신 요청

답변 :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제7조(원산지증명서) 규정에 따라 특혜양허를 받고자 하는 상품은 수출 참가국 정부에 의해 지정된 기관에 의해 원산지증명서가 발행되어야 합니다.

○ 또한, 동 협정의 원산지증명서 견본 및 원산지증명서 작성요령에는 물품의 총 금액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13. 원산지증명서 관련 질의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 2012-10-09(회신일자)

질의 : APTA 협정에 따른 원산지 증명서가 선적일로부터 3근무일을 경과하여 발급된 경우 ‘ISSUED RETROACTIVELY’ 라는 소급문구가 기재되었다면, 특혜관세가 적용되는지?

답변 :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가 수출 시점 또는 선적일로부터 3근무일을 초과하여 발행된 경우에도 「관세법 시행령」 제236조제4항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원산지증명서의 정확성 및 진위여부에 의심이 있는 경우 수입신고가 수리된 후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기관에 확인을 요청하여 유효성여부를 판단함을 알려드립니다.

14. 원산지증명서 원산지기준 작성방법

Q : APTA 원산지증명서에 부가가치기준으로 원산지기준 기재시 “B와 실제부가가치기준“이 아닌 “B“로만 기재한 경우 인정가능한가요? (2018.11.01.)

A : 원산지증명서의 원산지기준은 원산지증명서 작성방법에 따라 기재하여야 하며 그 기재내용이 원산지증명서 작성방법과 다른 경우에는 협정적용이 곤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15. 원산지증명서 인정여부 관련

1. 경민 110600301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하여 귀사가 제출한 자료에 근거하여 APTA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 여부를 검토한 바, 원산지증명서의 INVOICE 번호 및 일자 기재란에 Firm offer sheet 번호인 GF0002를 오류 기재하였고, 발행일자도 '11.4.12일이 아닌 '11.5.26일로 기재하였으며, 수출자(제조사)도 원산지증명서상의 수출자와 상이하여 사실관계에 의한 동일성 확인이 곤란합니다.

3. 이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수정절차 등을 거치지 않은 동 원산지증명서로는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6. 원산지증명서 품명 표기 관련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2024, 2013.8.22

1. 귀하의 민원 관련입니다.
2. APTA 협정의 원산지증명서 작성요령에 의거 원산지증명서의 품명과 송품장에 기재된 생산품의 품명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유효성이 인정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17. 일반특혜관세 사후적용가능 여부

Q : 수입신고시 APTA 특혜관세를 적용신청 하지 못한 경우 수입신고 이후 특혜관세 적용 신청 가능한가요?
(2018.06.29.)

A : APTA의 경우 수입신고전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았으나 분실등의 사유로 수입신고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 수입신고전에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여,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발급일로부터 1년)내에 특혜관세 사후적용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8. 제3자 또는 제4자간 무역거래에서의 APTA 특혜관세 적용여부?

- 원산지 증명서상 수출자와 송품장상 수출자가 상이하게 기재된 상품이라 하더라도 협정상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고 직접운송원칙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특혜관세 적용 가능. 원산지증명서 등 수입신고시 제출하는 서류로 일련의 무역관계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함

19. 중국산 물품이 홍콩경유시 직접운송 원칙 예외인정 여부?

- 지리적·운송 상의 이유로 비원산국인 홍콩을 경유하였을 경우에는 경유국내에서 교역이나, 추가가공 없이 단순 경유하는 경우에는 적용 가능. 다만, 홍콩에서 교역이나 소비가 이루어졌는지 또는 추가가공이 행하여졌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 후 판단

20. 중국 생산 물품을 국내 수입시 제3국 발행 송품장 연정 여부

질의 : APTA 협정과 관련하여, 중국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한국으로 직접 운송하는데, 인보이스는 제3국(싱가포르)에서 발행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APTA 협정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에서는 제3국발행송장거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제2란(수입자)에 주문용(to order)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21. 직접운송관련 AWB 인정범위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2161, 2013.9.9

1. 귀사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귀사가 질의한 APTA 직접운송원칙 충족을 위해 단순경유사실 증빙서류로 인정되는 AWB (항공화물 운송장)는
 - ① 수출국에서 발행되었고,
 - ② ‘최초 수출국 운송업자(운송주선인 포함)가 전 구간의 운송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담보하는 하나의 운송서류로 발급’ 되었을 때 인정 가능하며, 증빙서류에 대한 사실, 조건충족 여부 등은 사안별로 세관장이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22. 직접운송 입증서류 관련 질의

질의 : ○ 대상협정 : APTA

- 운송경로 : 중국 → 홍콩 → 한국(해상운송/LCL화물)
- 홍콩을 경유하나, 단순 환적이 이루어짐에 따라 수출 당사국에서 발행한 통과 선하증권 외에 홍콩 세관에서 발행한 비가공증명서(NMC)를 구비하고 있음(C/O, 상업송장)
- * 홍콩 세관에서 “APTA 적용 대상에 대하여 비가공증명서를 발행할 권한이 없으며, 한-중 FTA 적용 건에 한하여 비가공증명서를 발행해줄 수 있다”고 주장

< 질의사항 >

- ① 홍콩 경유 화물의 경우 홍콩세관에서 APTA적용건에 대해 비가공증명서를 발행하지 않는지 여부
- ② 비가공증명서를 대신하여 직접운송원칙을 충족할 수 있는 대체 서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답변 : 1. 귀하의 민원내용은 ‘APTA 직접운송과 관련된 증빙서류’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홍콩세관에서 발행하는 비가공증명서는 한-중 FTA에 근거하여 한-홍 세관당국간 협의에 따라 발행되는 것으로 APTA적용 물품에 대하여는 비가공증명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아울러 APTA에 따라 비참가국을 경유하여 운송된 물품의 경우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되며 수출참가국에서 발행된 통과 선하증권과 홍콩 세관당국에서 발행하는 화물반출입내역서 등 세관통제 및 추가가공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보충서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 ① 수출참가국에서 발행된 통과 선하증권 ② 수출참가국의 발행 당국이 발행한 원산지증명서 ③ 해당 물품과 관련된 상업 송품장 원본 ④ 기타 보충 서류
- 다만 「관세법」 제233조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 결과에 따라 협정에서 규정한 요건을 불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3. 포장용기의 원산지 결정 방법

Q : 우리나라의 완전생산품인 마른김을 비원산지 포장재로 포장하는 경우 원산지결정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17.03.27.)

A : APTA 협정문 제6조(포장의 취급)의 규정은 소매용 포장재로 사용된 재료는 최종 생산품과 함께 전체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최종 생산품이 완전생산품이면 소매용 포장재 역시 완전생산품을 구성하는 일부로 간주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마른김이 완전생산품이라면 소매 포장을 위하여 사용된 포장용 재료는 최종 생산품의 전체를 구성하는 것으로 전체를 완전생산품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24. 핸드캐리 반입물품 APTA 협정관세 적용 여부 질의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 2016-08-01(접수일자)

질의 : ○ 긴급한 자재를 중국 현지에서 물품을 인수하여 항공을 통해 핸드캐리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직접 입국

- 세관에 유치신고 후 유치증 신고번호로 일반 수입신고 진행
- 동 물품에 대해 송장 등 거래서류와 C/O를 첨부하는 경우 APTA협정관세 적용 가능 여부 및 직접운송 요건 충족 여부

답변 : 1. 귀 법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APTA 규정상 협정에서 규정한 원산지 상품, 직접운송 충족 등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휴대 반입한 물품에 대하여도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3. 동 건의 경우 휴대 반입 물품이 중국에서 구매된 사실이 관련 서류 등으로 확인되고 휴대 반입 사실이 중국에서 탑승한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4. 다만 ‘원산지에 관한 조사’ 결과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규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7조

25. 협정세율의 사후적용 관련 질문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 2011-12-29(회신일자)

질의 : APTA 사후 협정관세 적용 여부

답변 : 관세법 제23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6조 제1항에 규정에 의하면 협정 등에 의하여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시 당해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원산지증명서 제출시기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수입신고시 특혜관세를 신청하지 않고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동 사안은 협정관세 적용이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21. 최빈개도국 특혜

1. 개발도상국간의 양허관세 제3국 송장 인정여부

관세법」 및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에서는 수출자를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송품장, 선하증권 등 관련 무역서류에 의하여 3자간 무역거래가 인정되는 때에는, 제3국에 소재하는 자가 수출자인 경우에도 특혜적용 대상물품에 대하여 세계무역기구협정개발도상국간의 양허관세 적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 경유지의 보세구역에서 검사받는 경우 최빈국 특혜적용시 필요한 서류

질의 : 우리나라로 운송 도중 두바이(경유지)의 보세구역에서 검사 절차를 걸치는 경우(환적) 최빈국 특혜를 적용 받으려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를 적용 받고자 하는 물품이 비당사국을 경유하여 우리나라로 운송되는 경우 ①운송서류상에 선적항·경유지·도착항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운송서류에 기재된 물품에 대해 운송인이 전운송구간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고 발행한 운송서류(통과선하증권) 또는 ②비당사국 관세당국에서 동 물품이 관세법에서 정한 공정(하역, 재선적, 보존공정)이외의 공정이 없었음을 확인하고 발행한 증명서(예:비가공증명서 등)로 직접운송요건을 충족함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직접운송 증빙자료 외에 수출참가국에서 발급기관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 상업 송품장 원본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국산원재료 원산지 결정기준

다음과 같은 거래관계가 발생시 제품에 투입된 ‘한국산 원재료’의 원산지결정기준 및 원산지증명방법 질의

한국에서 수출한 원재료가 한국산임을 입증하는 서류는 대외무역법 제37조(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또는 관세법 제232조의2(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등)에 따라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로 가능하나, 이 경우에 제품에 투입된 한국산 원재료는 관세법 시행규칙 제74조(일반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다만, 한국산 원재료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의 인정여부는 미얀마의 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4. 다른 원산지증명서 양식사용시 최빈국 특혜 적용관련 민원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 2013-09-17(회신일자)

질의 : ○ 민원인은 '11.4월부터 '13.3월까지 최빈국에서 앞담배(HS 2401.20) 수입시 최빈국 특혜용 원산지증명서가 아닌 GSP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 최빈국 특혜관세 적용 받음.

<질문 1> 이 경우 GSP양식(Form A)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것이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

우’에 해당되어 특혜관세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질문 2> 본청 검증지시('13.5.16) 이전의 수입물품에 대한 특혜관세 적용을 소급하여 배제가 가능한지 여부

<질문 3> 관세법 제233조에 따라 수출국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혜관세 적용 배제가 가능한지 여부

답변 : 1) 귀사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2)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규정」(대통령령)에 의하여 2000년 1월이후 현재까지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최빈개발도상국 특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3) 관세법에 따라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물품을 수입하는 자가 해당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상대국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확인 없이도 편익관세를 배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비당사국 경유시 직접운송 증빙자료 인정 여부

Q : 방글라데시에서 싱가포르를 경유하여 우리나라로 수입시 B/L에 선적항, 경유지, 도착항이 모두 기재한 경우 최빈특혜 직접운송 증빙자료로 인정 가능한가요? (2019.10.25.)

A :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서는 최빈개발도상국으로부터 원산지상품을 우리나라로 수입하는 경우 직접운송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선하증권, 수출참가국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 상업송품장 원본, 그 밖의 직접운송요건을 증명하는 보충서류로 입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B/L상에 물품의 수취장소·선적항·경유지·도착항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B/L에 기재된 물품에 대해 운송인이 전운송구간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고 발행된 통과선하증권을 구비한 경우라면 직접운송요건을 충족함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6. 원산지 결정기준

가. 방글라데시에서 최종생산한 물품에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물품이 원재료로 사용될 경우 우리나라 물품을 역내산(방글라데시)으로 인정여부

<답변> 원산지가 ‘한국산’인 원재료가격은 부가가치기준에 의한 가격결정시 역내산으로 인정(공여규정 제 5조②)

나. 원재료의 가격산정시 기타 부자재까지 포함여부

<답변> 사용원재료가 모두 포함되므로 기타 부자재도 포함됨.

다. 최종제품의 가격이 15\$이고, 한국산 원재료 가격이 12\$, 방글라데시산이 1\$인 경우 원산지기준 표시방법

<답변> 최빈국 원산지증명서 8번란의 B뒤에는 비원산지 및 원산지 미상의 원재료 가격을 수출물품의 본선 인도가격에 대한 백분율로 기재하여야 하나 귀하가 비원산지 가격 등을 제시하지 않아 정확한 표시는 어려움.

* 귀하가 제시한 가격비율이라면 원산지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됨.

라. 원산지증명서 8번란에 “B 5%” 등 B 50%미만시 무관세 혜택 가능여부

<답변> 방글라데시에서 수입하는 물품이 특혜대상물품에 해당하며 최빈국 원산지증명서의 8번란이 B 50%이하일 경우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함.

7. 원산지증명서 발급시기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 2013-05-27(회신일자)

질의 : ○ 우리나라에서 최빈국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미얀마로부터 수취하는 원산지증명서가 수출물품 선적 후 발급되고 있음
○ 이 경우 선적 후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 여부 질의

답변 : 1. 귀 법인의 민원 관련입니다.

2. 최빈국 특혜용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당해 원산지증명서가 선적 후 발행되었다 하더라도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제출되고, 협정·법령에서 정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8. 원산지증명서 서식

Q : 수단 상공회의소에서 보내준 최빈국특혜용 원산지증명서 서식이 우리나라에서 정한 서식과 다른 경우 최빈국특혜 관세 적용가능 여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2018.03.20.)

A : 최빈개발도상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및 관세청고시(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특혜관세를 적용하므로, 특혜관세적용 신청시에는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고시 별지 제17호의6서식 “영문 원산지증명서” 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원산지증명서 서식이 상이한 경우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적용이 곤란합니다.

9. 원산지증명서 선적후 발급시 소급발급 문구 기재 여부

질의 : 방글라데시산 물품을 국내에 수입하는데 원산지증명서가 선적 후에 발급되는 경우, 소급발급문구를 기재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를 위해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는 선적 후에 발급되더라도 소급발급문구를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로,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는 수입신고 시에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10. 원산지증명서에 송장번호, 발행일자가 오류 기재되고, 수출자도 원산지증명서 상 수출자와 상이한 경우 유효성 여부

위호와 관련으로 귀사가 제출한 자료에 근거하여 APTA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 여부를 검토한 바, 원산지증명서의 INVOICE 번호 및 일자 기재란에 Firm offer sheet 번호인 GF0002를 오류 기재하였고, 발행일자도 '11.4.12일이 아닌 '11.5.26일로 기재하였으며, 수출자(제조사)도 원산지증명서상의 수출자와 상이하여 사실관계에 의한 동일성 확인이 곤란합니다.

이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수정절차 등을 거치지 않은 동 원산지증명서로는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1. 제3국 경유시 직접운송 충족 입증자료

Q : 탄자니아로부터 골드바를 Handcarry baggage로 우리나라로 반입시 탄자니아에서 우리나라까지 직항이 없어 경유지를 경유해야 하는 경우 직접운송 충족여부를 입증 할 수 있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2018.11.28.)

A : 최빈국에 대한 특혜관세의 직접운송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지리적 또는 운송상의 이유로 단순 경유한 것. 2. 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관세당국의 통제하에 보세 구역에 장치된 것. 3. 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하역, 재선적 또는 그 밖에 정상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작업 외의 추가적인 작업을 하지 아니한 것.

또한, 비당사국을 경유하는 경우 직접운송 충족여부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선하증권(항공화물 운송장(AWB)을 포함한다). 2. 수출참가국의 발급 기관이 발급한 원산지증명서. 3. 해당 물품과 관련된 상업 송품장 원본. 4. 그 밖에 「관세법 시행규칙」 제76조제1호(직접운송 충족요

건)를 증명하는 보충 서류(다만, 직접운송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세관장이 요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탄자니아 출국시 관세당국이 발급한 골드바 반출 확인 자료, 경유국에서 보세구역 내에서만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탄자니아에서 우리나라까지 입국까지의 전체 운송경로 확인 자료, 경유국(환송지)에서 골드바에 대해 확인한 자료 등으로 최빈개도국 특혜관세 직접운송요건 충족여부를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2. 제3국 송장 인정여부 질의

질의 : - (거래관계) 수출자-이디오피아(최빈개발도상국), 수입자(일본) 실수입자(한국, ○○○(주)) *제3자무역 형태 -(운송형태) 이디오피아(수출국) → 한국(최종목적지)

답변 :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관세특혜적용관련 3자간 무역거래에 있어서 원산지 증명서상 수입자란에 제3국의 중계인이 기재된 경우 송품장, 선하증권(B/L) 등 관련 무역서류에 의하여 3자간무역거래가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원산지 증명서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빈개발도상국에서 우리나라로 운송된 상품이 원산지 요건과 직접운송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해당 사실관계 여부에 관하여는 통관지세관에서 확인함을 알려드립니다.

13. 최빈개발도상국의 특혜관세 사후적용 신청조건

질의 : 최빈개발도상국의 특혜관세 사후적용 신청 조건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답변 : 관세법에 따른 일반특혜(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포함)를 수입신고 시에 적용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입신고 전에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한 경우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발급일로부터 1년) 내에 특혜관세 사후적용신청이 가능하며,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내에 우리나라에 해당물품이 도착하였으나, 수입신고를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내에 하지 못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계산시 해당물품의 입항일부터 수입신고일까지의 기간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내에 수입신고를 한 경우는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제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타 수입신고 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경우라도 해당 수입건의 수입신고 시 특혜관세 적용신청을 하지 않고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특혜관세 사후적용신청이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14. 특혜관세 적용과 관련한 민원 회신

최빈국 특혜관세를 적용받으려면,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규정」에 의거 최빈개발도상국, 특혜품목 및 원산지규정에 합치되어야 하며, 이러한 사실의 충족여부는 원산지증명서 및 상업송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합니다. 귀사에서 제출한 Yemen LNG Company사 천연가스 도입관련 원산지증명서상 10번 항목 (Invoice No and Date)에 B/L 번호와 발행일자를 잘못 기재한 바, 정당한 절차에 따라 원본 원산지증명서에 실제 인보이스 번호 및 일자로 수정하여야 수입신고시 특혜관세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발행된 원산지증명서의 2번 수입자 항목이 귀사가 아닌 BG LNG TRADING사(영국)로 잘못 기재되어 특혜관세를 적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회신 _ 항목별

I. 거래당사자 요건

[Q1]

페사는 직접 수입하여 판매하는 거래 외에 국내고객사에 Offer를 발행하고 고객사가 직접 수입하는 거래가 있음



[Q-1]

- 이 경우 Selling entity(판매자)가 AA Singapore로 되어 있으면 제3국 송장에 해당하는지
 - 판매자 : AA Singapore
 - 생산자 및 선적자 : AA Malaysia
 - 송장발행 : AA Malaysia

[Answer]

- 제3국 송장여부는 수입신고시 제출되는 송장상 표기되어 있는 화주로 결정되어야 하며, 제출된 송장에는 판매자가 화주로 표기되어 있음
- 민원인이 제출한 송장을 근거로 검토해 보면, 동 송장이 말레이시아에서 발행되었다는 근거가 없어, Selling entity(판매자)를 화주로 인정할 수 밖에 없음

[Q1-2]

Invoice/Packing list/HWAB상에는 정확히 기재되어 있으나 원산지증명서 상에 type로 인해 27.88kg이 28kg으로 반올림으로 기재되었거나, 사소한 type error 등으로 제품명이 상이하게 나온 경우 원산지증명서의 효력을 잃게 되는지

[Answer]

중량 반올림은 경미한 하자로 인정될 수 있으나 제품명의 상이함은 통상 경미한 하자로 보기 어려움

[Why]

- AK-FTA 통관규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원산지에 대한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 경미한 하자에 의한 C/O의 효력은 부인되지 아니함
- 경미한 하자는 오타(type)가 대표적이며, 원산지와 관계없는 형식적인 사항으로 수입 신고시 세관직원이 invoice 등에 객관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C/O의 효력이 인정됨

[관련규정]

- 한-아세안 FTA 제12조
 1. 물품의 원산지에 대한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경우,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내용과 수입절차상 수입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의 경미한 차이가 물품과 사실상 일치한다면, 그 경미한 차이로 인해 원산지증명서의 효력을 사실상 무효화해서는 아니 된다.

[Q1-3]

원산지증명서는 같은 제품이라도 매 선적 건별로 새로 발급을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같은 제품의 경우 이미 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 사용이 가능한지

[Answer]

C/O는 수출시마다 발급되어야 하며, 같은 제품이라도 이미 사용된 원산지증명서는 사용할 수 없음

[Why]

- AK-FTA 통관규정 제7조 제1항에 “원산지증명서는 수출물품이 수출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원산지로 인정될 수 있는 때에는 수출시 또는 수출 직후 발급되어야 한다” 고 규정
- 따라서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시마다 발급되어야 하며, 같은 제품이라도 이미 사용된 원산지증명서는 사용할 수 없음

[관련규정]

- 한-아세안 FTA 부속서3 부록1 제7조
 1. 원산지증명서는 부속서 3의 의미 내에서 수출물품이 수출당사국 영역내에서 원산지로 인정될 수 있는 때에는 수출시 또는 수출 직후 곧 발급되어야 한다.
 4. 뜻하지 아니한 실수, 누락 또는 기타 타당한 사유로 인해 원산지증명서가 수출시 또는 수출 직후에 곧 발급되지 아니한 예외적인 경우,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급발급”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급 발급할 수 있다.

[Q2]

원산지증명서상의 수출자와 선하증권상의 수출자가 다른 경우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 적용 여부

[Answer]

중개무역 등의 사유로 원산지증명서상의 수출자와 선하증권상의 수출자가 다른 경우에는 수입자가 그 사유를 충분히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협정관세가 적용될 수 있음

[Why]

-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 적용에 있어서 원산지증명서상의 수출자와 선하증권상의 수출자는 원칙적으로 동일한 자이어야 한다.
- 중개무역 등의 사유로 원산지증명서상 수출자와 선하증권상 수출자가 다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협정관세 적용 가능

[참고]

- 중개무역(仲介貿易)의 정의
 - 수출국과 수입국간의 무역거래에 제3국의 무역업자가 개입하여 화물을 이동시키고 대금결제의 당사자가 되는 무역 형태로서
 - 제3국의 무역업자는 중개역할을 하고 중개수수료를 취득하는 간접무역의 한 형태이며, 삼국간 무역이라고도 함
 - 일반적으로 물품은 수출국과 수입국간에 직접 운송됨

[Q3-1]

스위스에서 OEM으로 제조되어 독일 밀레사에 납품된 스위스산 커피메이커 제품의 한-EFTA FTA 특혜관세 적용 여부

※ 스위스 제조자(Eugster/Frismag AG)

[Answer]

스위스 수출자가 아닌 독일 수출자가 송장을 발행하고, 한-EFTA 회원국이 아닌 독일에서 한국으로 운송되어 직접운송원칙에 위배되므로 한-EFTA FTA 특혜관세 적용 대상이 될 수 없음

[Why]

- 한-EFTA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대상 물품이 EFTA 회원국(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과 우리나라 영역간에 직접운송되어야 하며
- 협정의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상품에 대하여 수출자가 발행하는 송장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에 협정상 규정된 원산지 신고문안을 작성·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함

[관련규정]

○ 한-EFTA FTA 제15조(원산지신고서)

1. 수입당사국에서의 특혜관세대우 목적상, 당사국의 수출자는 대한민국 또는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이 원산지로 간주되고 이 부속서의 그 밖의 요건을 충족하는 상품에 대하여 부록 3에 규정된 원산지신고서 양식의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원산지신고서는 상품에 대하여 충분히 세부적으로 기술하여 해당 상품임을 확인할 수 있고, 수출자, 수출자의 주소 및 전화번호가 확인되는 송장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3. 제16조(인증수출자)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원산지신고서는 읽기 쉽고 영구적인 양식으로 영어로 작성되고 수출자의 본 서명을 포함한다.

[Q3-2]

커피메이커의 원산지를 가늠할 수 있는 서류(전기용품안전인증서 등)를 한-EFTA FTA 원산지 신고서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Answer]

단순히 원산지가 Invoice 또는 전기용품안전인증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는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를 인정받을 수 없음<2008.8.8.>

[Why]

한-EFTA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수출자가 발행하는 송장 등 상업서류에 협정상 규정된 원산지신고 문안을 작성·서명하여 제출해야 함

[관련규정]

○ 원산지신고서의 문안<한-EFTA FTA 부속서1의 부록3>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zation NO ‘세관인증번호’ ①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제품의 원산지② preferential origin.”

‘장소 및 일시’ ③

수출자의 서명, 서명인의 성명을 명확하게 기입할 것 ④

(특기사항) ⑤

- ① 인증수출자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 인증번호 기재, 인증수출자에 의하여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공란으로 남겨둠
- ② 상품의 원산지 기재(대한민국,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또는 스위스), ISO-알파-2단위 코드의 사용이 허용됨(KR, IS, NO 또는 CH)
- ③ 해당 정보가 서류에 포함된 경우 생략 가능
- ④ 인증수출자의 서명(서명인의 성명 포함)은 요구되지 아니함
- ⑤ 부속서1 부록4(영역원칙의 면제 등)가 적용되는 경우 기재

[Q4-1]

인도네시아산 물품(tin ingot)을 싱가포르로 수출하면서 송품장은 말레이시아 소재 업체가 발행할 경우 원산지증명서 기재 요령

[Answer]

원산지증명서 제13란에 “제3국 송장”임을 표기하고, 제7란에 송장 발행 회사명 및 국가명을 기재

[Why]

송품장이 제3국인(말레이시아)에 의하여 발행된 경우, 한-아세안 FTA 부속서3 부록1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C/O에 기재

[관련규정]

○ 한-아세안 FTA 부속서3 부록1 제21조

1. 상업송장이 제3국에 소재하는 기업 또는 그 기업의 계산으로 수출자에 의하여 발급된 경우에도, 수입당사국의 관세당국은 원산지증명서를 수리할 수 있다. 다만, 그 물품이 부속서3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2. 물품의 수출자는 원산지증명서에 “제3국 발행송장 대상”임을 명시하고 송장을 발행하는 회사의 명칭 및 국적과 같은 정보를 기재하여야 한다.

※ 수출당사국이 아닌 제3국에서 송품장이 발급된 경우 원산지증명서 13번의 “제3국 송품장(Third country invoicing)”란에 “√” 표시를 한다. 이 경우 제7란에는 송장을 발행한 회사의 상호 및 국가명을 적는다

[Q4-2]

상기 인도네시아산 물품을 싱가포르 업체가 수입한 후 다시 한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연결 원산지증명서” 발급 요건

[Answer]

인도네시아에서 발급된 “정당한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싱가포르 발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하고, 인도네시아로부터 물품을 싱가포르로 수입하는 자와 그 물품을 한국으로 다시 수출하는 자가 동일인이어야 함 <2009.12.>

[Why]

“연결 원산지증명서”라 함은 최초 수출당사국이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경유하는 수출당사국에 의하여 발행되는 원산지증명서를 말함

[관련규정]

○ 한-아세안 FTA 부속서3 부록1 제7조

2. 중간 경유 당사국의 발급기관은 물품이 그 영역을 통과하는 동안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연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가. 정당한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제출할 것
 - 나. 중간 경유 당사국의 수입자와 중간 경유 당사국에서 연결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수출자가 동일할 것
 - 다. 제14조에 규정된 검증절차가 적용될 것

[Q5]

수출업무 대행사 명의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Answer]

대리인 명의의 원산지증명서는 발급될 수 없음 <2010.2.>

[Why]

-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제도를 규정한 한-싱가포르 FTA,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는 각 협정의 규정에 의거 원산지증명서의 원활한 발급을 위하여 위임규정을 두고 있음
- 각 협정에 따라 서면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위임하였을 경우 위임받은 범위내에서 원산지증명서의 신청 업무만 대리 가능

[관련규정]

○ 한-아세안 FTA 부속서3 부록1 제4조(원산지증명서의 발급)

1. 물품의 생산자 그리고 또는 수출자, 또는 그로부터 권한을 받은 대리인은 당사국의 국내법령에 따라 물품의 원산지에 대한 수출전 검사를 발급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2. 생산자, 수출자 또는 그로부터 권한 받은 대리인은 수출물품이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적합한 관련서류와 함께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당사국의 국내법령에 부합되게 신청하여야 한다.
- FTA특례법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조(원산지증명서 신청인)
법 제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해당 협정에서 정하는 자와 그 자로부터 권한을 서면으로 위임받은 자가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Q6]

송품장 등 상업서류가 비당사국에서 다시 발행된 경우 EU 역내 수출자가 원산지신고서를 작성, 제출시 협정관세 적용 여부

[Answer]

협정에서 정한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송품장 등의 상업서류가 비당사국에서 다시 발행되는 경우에도 EU 역내의 수출자가 작성한 유효한 원산지신고서가 세관에 제출되는 경우에는 동 협정 적용 가능<2011.8.>

[Why]

- 한-EU FTA에서는 유럽연합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제품이 우리나라로 수입될 때 EU 역내의 수출자가 송품장 등 상업서류에 작성·발급한 원산지신고서에 의해 원산지 제품임을 증명하는 것임
- 또한, 제3국 송장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비당사국에서 송품장이 발급된다 하더라도 거래당사자인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될 수 있음

[관련규정]

- 한-EU FTA 제15조(일반 요건)
 1.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제품이 유럽연합당사자로 수입될 때, 그리고 유럽연합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제품이 대한민국으로 수입될 때, 이후 “원산지신고서”라 지칭되는 신고서에 근거하여 이 협정의 특혜관세 대우의 혜택을 받는다.
- 한-EU FTA 제16조(원산지신고서 작성 조건)
 1. 이 의정서의 제15조제1항에 언급된 원산지신고서는 다음에 의해 작성될 수 있다.
 - 가. 제17조의 의미상 인증수출자, 또는
 - 나. 전체가격이 6,000유로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원산지제품을 포함하는 하나 이상의 포장으로 구성되는 탁송화물의 수출자

[Q6]

- 한-아세안 FTA에서 제3국 발행 원산지증명서 발행시 제3국에서 복수의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 국내 수입자에게 최종 송장을 제출하는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명(국가명 포함)이 기재된 경우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 여부

[Answer]

한국 소재 수입자에게 최종적으로 송품장을 제출한 회사명과 국가명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 인정 불가 <2010.3.>

[Why]

- 상기와 같은 경우에는 협정관세 적용대상 물품(원산지증명서상 물품)과 실제 거래물품과의 동일성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원산지증명서의 효력이 인정될 수 없으며
- 한국 소재 수입자에게 최종적으로 송품장을 제출한 회사명과 국가명을 기재하여야 함

[Q8]

EU 역내 수출자가 아닌 비당사국에서 재발행한 송장에 원산지 신고 문안이 기재된 경우 유효성 여부

[Answer]

EU 역내 수출자가 아닌 비당사국에 소재하는 자가 재발행한 송장에 원산지 신고 문안이 기재된 경우에는 유효성 인정 불가 <2011.8.>

[Why]

- 한-EU FTA 제15조(일반요건) 및 제16조(원산지신고서 작성 조건)에 따라 원산지신고서는 수출자가 송품장 등 상업서류에 작성하여야 함
- 따라서 비당사국에서 송품장이 다시 발행되는 무역거래인 경우에도 EU 역내 수출자가 해당 수출거래와 관련된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함

[관련규정]

○ 한-EU FTA 제15조(일반요건)

1.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제품이 유럽연합당사자로 수입될 때, 그리고 유럽연합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제품이 대한민국으로 수입될 때, 이후 “원산지신고서”라 지칭되는 신고서에 근거하여 이 협정의 특혜관세 대우의 혜택을 받는다. 원산지신고는 해당 제품이 확인될 수 있도록 충분히 상세하게 그 제품을 기술하는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상에 수출자에 의해 행해진다.

[Q9]

수출 이후 수입자가 변경된 경우 한-인도 CEPA 협정관세 적용 여부

[Answer]

원산지증명서의 수입자를 정정하지 않더라도 상업송장 등 관련 자료로 그 변경에 따른 사실관계와 물품의 동일성이 확인된다면 해당 수입물품에 대해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음 <2008.8.8.>

[Why]

한-인도 CEPA에서 원산지증명서상 ‘수입자’란은 수출국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확인된 수입자를 기재하는 것임

[Q10]

○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제3국 송장 인정여부” 질의

- 거래관계 : 수출자-이디오피아(최빈개발도상국), 수입자(일본) 실수입자(한국, 지에스씨인터내셔널(주))

*제3자 무역형태

- 운송형태 : 이디오피아(수출국) → 한국(최종목적지)

[Answer]

관련 무역서류에 의하여 3자간 무역거래가 인정되는 때에는 원산지증명서 인정 가능 <2012.3.14.>

[Why]

3자간 무역거래에 있어서 C/O상 수입자란에 제3국의 중계인이 기재된 경우 송품장, 선하증권(B/L) 등 관련 무역서류에 의하여 3자간 무역거래가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원산지 증명서 인정 가능

[관련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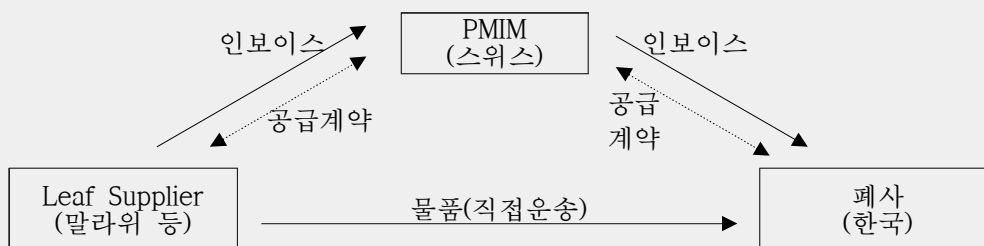
○ 기재부 다자관세협력과-1049(2011.12.30.)

“최빈국 특혜관세 적용관련 3자간 무역거래에 있어서 원산지증명서상 수입자란에 제3국의 중계인이 기재된 경우 송품장, 선하증권 등 관련 무역서류에 의하여 3자간 무역거래가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원산지 증명서도 인정 가능”

[Q11]

○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제3국 송장 인정여부” 질의

- 송장이 최초에 최빈국 수출자와 제3국(스위스)에 소재하는 자간의 공급계약에 따라 발행되고, 제3국에 소재하는 자와 폐사의 공급계약에 따라 다시 발행됨
- 물품은 수출국에서 우리나라로 직접운송됨



[Answ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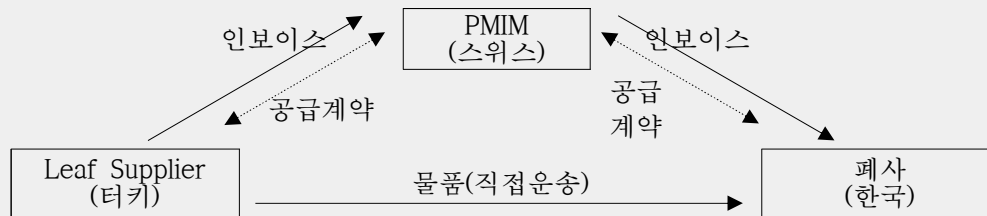
송품장, 선하증권 등 관련 무역서류에 의하여 3자간 무역거래가 인정되는 때에는, 제3국에 소재하는 자가 수출자인 경우에도 특혜 적용 대상물품에 대하여 최빈 개발도상국 특혜관세 적용 가능 <2012.8.24.>

[Why]

-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대통령령) 제3조(특혜대상 물품 및 세율), 제5조(원산지규정) 및 관세법시행규칙 제76조 등에서 최빈국 특혜관세 적용 물품 · 원산지규정 · 직접운송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거래당사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따라서 제3국에 소재하는 자가 수출자인 경우에도 최빈개발도상국 특혜관세 적용 관련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특혜관세 적용 가능

[Q12]

- WTO 개발도상국간 양허관세(TNDC) “제3국 송장 인정여부” 질의
 - 송장이 최초에 개도국 수출자(터키)와 제3국(스위스)에 소재하는 자간의 공급계약에 따라 발행되고, 제3국에 소재하는 자와 폐사의 공급계약에 따라 다시 발행됨
 - 물품은 수출국에서 우리나라로 직접운송됨



[Answer]

송품장, 선하증권 등 관련 무역서류에 의하여 3자간 무역거래가 인정되는 때에는, 제3국에 소재하는 자가 수출자인 경우에도 특혜 적용 대상물품에 대하여 세계무역기구협정개발도상국간 양허관세 적용 가능 <2012.9.6.>

[Why]

-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대통령령) 제3조(세계무역기구협정개발도상국간의 양허관세(TNDC)) 및 관세법시행규칙 제76조 등에서 TNDC 적용국가 · 원산지결정기준 · 직접운송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거래당사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따라서 제3국에 소재하는 자가 수출자인 경우에도 송품장, 선하증권 등 관련 무역서류에 의하여 3자간 무역거래가 인정되는 때에는 특혜관세 적용 가능

[Q13]

한-EU FTA에서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수출자의 정의 및 범위

[Answer]

- 한-EU FTA에서는 ‘수출자’의 정의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수출자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하여는 수출당사국의 관세당국에서 결정하여야 할 사항
- 다만, 물품의 매매계약자인 수출자가 작성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2011.10.18.>

[Why]

- 한-EU FTA에서는 수출자의 정의에 대한 규정이 없으나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일반적 해석으로 수출자란 상품이 수출되는 당사국의 영역에서 ‘소재’하면서 그 상품을 수출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
- 원산지증명서 발급 또는 발급신청의 주체로서 관련 자료의 보관의무를 부담하며, 세관당국이 그 진정성에 대한 검증을 수행할 때 피검증자로서 자료 제출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함
- 따라서 원산지신고서는 생산자 또는 단순한 선적 · 발송행위를 하는 자는 작성할 수 없으며, 물품의 매매계약자인 수출자가 작성하여야 함

[Q14]

- 한-미 FTA 제3국 송장거래 및 통과 · 환적운송 관련
 - 거래관계 : 미국(수출자) → 홍콩(중개인) → 한국(수입자)

- 운송관계 : 미국(출항) → 중국(보세구역장치) → 한국(입항)
- 통과·환적 입증서류 : 중국 심천세관의 반출입서류 사본
- 원산지증명서 : 미국 생산자가 발행
- 상기 무역관계에서 협정상 수출자·선적자의 당사자 요건 해당여부와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 여부

[Answer]

- 미국의 기업이 수출한 물품을 협정 비당사국에서 송품장이 다시 발행되는 무역거래를 통해 한국의 기업이 수입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며
- 수출국인 미국에 소재하는 수출자나 생산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는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됨
- 경유국 세관에서 발행하는 반출입 서류(원본), 수출국인 미국의 생산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 및 무역운송 서류(선하증권 등)에 의해 미국에서 수출한 물품과 동일한 물품이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협정관세 적용 가능 <2012.3.29.>

[Why]

- 한-미 FTA 제1.4조(정의) ‘영역’ 조항 및 제2.1조(적용범위)에 따라 제3국 발행 송장 무역거래를 통해 수입하는 경우에도 적용
- 이 경우 수출국인 미국에 소재하는 생산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는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됨
- 수출물품이 수입국으로 직접운송되지 않더라도 협정에서 정하는 사항을 모두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원산지제품으로 인정됨

[Q15]

한-EU FTA에서 제3국에서 송품장이 다시 발행되는 무역형태의 경우, EU 역내 수출자가 발행하는 서류인 Customs Origin Declaration에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인정 여부

[Answer]

- EU측 수출자가 발행한 상업서류인 Customs Origin Declaration에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한 경우 협정관세 적용 가능
- 다만, 이 경우 송품장과 해당 원산지신고서에는 충분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어 두 서류에 기재된 물품의 동일성이 명확하게 확인되어야 함. <2012.3.>

[Why]

- 한-EU FTA 제15조(일반요건) 및 제16조(원산지신고서 작성 조건)에 따라 원산지신고서는 수출자가 송품장 등 상업서류에 작성
- 따라서 협정당사국이 아닌 제3국에서 송장이 다시 발행되는 무역거래에서도 EU측 수출자가 발행한 상업서류인 Customs Origin Declaration에 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동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 가능

[Q16]

다음과 같은 제3국 송장발행 무역거래 시 아일랜드(수출자)와 이탈리아(제조사)의 인증번호 중 어떤 것을 사용해서 사후적용을 신청해야 하는지?

<무역거래 관계 및 선적서류 발행>

① 송품장 : AA 아일랜드(수출자) → AA (호주, 인보이스 발행) → (주)○○○

② 운송 : AA 이탈리아(제조사, Packing 발행) → (주)○○○

* B/L상 Shipper : AA 이탈리아, 인보이스 발행 : AA (호주), Packing 발행 : AA 이탈리아 (AA 이탈리아는 수출자이지만 서류발행은 없고, Packing상에 Buyer로 표기되어 있음)

[Answ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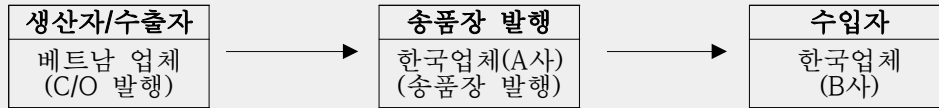
- 제3국에서 발행된 송장과 새로 발행하는 원산지증명서상의 동일성이 충분히 가능하다면 수출자(이탈리아, 아일랜드 둘 다 가능)가 관련 상업서류에 발행한 원산지 증명서는 유효함
- 다만, 제3국에서 발행한 송품장과 해당 원산지신고서에는 충분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어 두 서류에 기재된 물품의 동일성이 확보되어야 함 <2012.7.>

[Why]

- 한-EU FTA 제15조(일반요건), 제16조(원산지신고서 작성 조건) 및 제17조(인증수출자)에 따라 원산지신고서는 수출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EU 역내 수출자가 당해 물품의 수출과 관련된 상업서류에 작성해야 함
- 또한, 협정당사국이 아닌 제3국에서 송품장이 발행되는 무역거래에서 EU 역내 수출자가 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동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 가능

[Q17]

한-아세안 FTA에서 최종 송품장 발행국이 수입국인 한국일 경우에도 제3국 발행 송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Answer]

수입당사국 내 제3자가 발행한 송품장은 제3국 송장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원산지증명서상의 13번 송장 항목에 표시하지 않음 <2012.12.>

[Why]

한-아세안 FTA 협정 제1조 정의에 따라 “제3국” 이라 함은 수입당사국 또는 수출당사국이 아닌 당사국 또는 비당사국을 의미하므로, 수입국과 동일한 국가에서 제3자가 발행한 송품장은 제3국 송장으로 볼 수 없음

[관련규정]

- 한-아세안 FTA 제1조 정의
“당사국들” 이라 함은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들을 집합적으로 말한다.
“당사국” 이라 함은 대한민국 또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을 말한다.

[Q18]

중개무역이 아래와 같이 발생하는 경우, 한-인도 CEPA C/O 발급 신청시 ‘제3국 송장’ 란에 한국 기업을 기재할 수 없는지?



[Answ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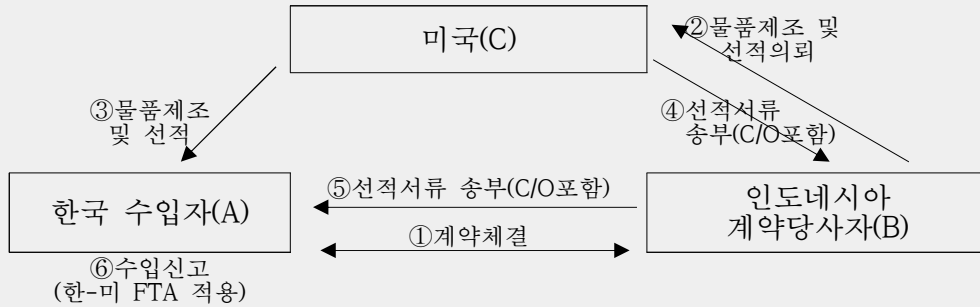
- 수출당사국에 소재하는 자가 발행한 송품장 정보를 제3국 송장 란에 기재하더라도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원산지증명서의 인정 여부는 수입국의 관세당국이 판단할 사항임 <2013.2.>

[Why]

- 제3국 송품장이 다수 존재하는 경우에는 어느 송품장의 정보를 기재해야 하는 지에 대한 규정은 없음. 다만, 수입물품과의 동일성 파악을 위해 최종 송품장 정보를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
- 제3국 송품장 규정은 수출당사국이 아닌 국가에 소재하는 자를 통해 거래되는 경우 최종 송품장 발행지 정보를 기재하도록 하여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 최종송품장 발행자의 제3국 소재 해당여부는 C/O 발급 신청을 거부할 오류사항으로 볼 수 없음

[Q19]

제3국 송장거래(미국-인도네시아-한국)에서 수출당사국인 미국의 생산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한 경우
<거래관계도>



[Q19-1]

원산지증명서의 수출자가 인도네시아의 업체로 기재되면 원산지증명서의 형식적 요건에 충족하는지

[Answer]

- 수출당사국의 생산자가 원산지를 증명하고, 원산지 증명된 물품과 수입물품과의 동일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 원산지증명서의 ‘수출자’에 ‘제3국 송장 발행인’을 기재한 경우에도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Why]

-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상품의 수출자(생산자와 다른 경우)’를 기재하도록 규정(제6.15조 2항)
- 여기서 ‘수출자’가 반드시 ‘계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라고 명시한 규정은 없지만 ‘계약상대국의 수출자’를 의미하므로 C/O의 ‘수출자’는 수출국인 ‘미국’의 업체가 기재되어야 함

[Q19-2]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에 ‘제3국 발행 송장’임을 명시해야 하는지

[Answer]

제3국 송장 거래인 경우 원산지증명서에 ‘제3국 발행 송장’임을 표시하지 않아도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음

[Why]

- C/O의 ‘수출자’는 생산자와 다른 경우 기재하는 것이며, 생산자인 미국업체가 C/O를 발행하고 동 업체가 수출한 경우 기재하지 않아도 됨
- 즉 C/O에 제3국 송장 발행인을 기재한 경우 추가적으로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협정관세 적용은 가능

[Q19-3]

상기 거래에서 미국에서 발행된 B/L에 선적자(Shipper)가 인도네시아의 업체로 표시된 경우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한지

[Answer]

수출당사국의 업체가 물품을 생산하여 수출하고 그 업체가 원산지를 증명한 경우에는 선하증권의 ‘선적자’가 수출당사국의 수출업체가 아닌 제3국 송장 발행인이어도 협정관세 적용 가능 <2013.2.28.>

[Why]

B/L의 ‘선적자’는 ‘화물을 선박으로 송부하는 자’를 의미하며, 한-미 FTA에서 ‘선적자’가 계약당사국의 수출업체이어야 하는지는 규정하지 않고 있음

[Q20]

아래의 경우 제3국 송장발행으로 볼 수 있는지?

- 1)수 출 자 : 태국의 ○○PRECISION(THAILAND) CO.,LTD
- 2)적 출 국 : 태국에서 한국으로 수출(직접운송 충족)
- 3)송장발행 : ○○PRECISION(THAILAND)이 일본의 ○○회사를 대신해서 발행한다는 문구가 표기
※송장 문구 : ○○PRECISION(THAILAND) CO.,LTD ON BEHALF OF ○○PRECISION INC
- 4)대금송금 : ○○PRECISION INC(일본회사)로 송금

[Answer]

협정당사자가 아닌 제3국에 소재하는 기업의 계산으로 아세안회원국의 수출자가 상업송장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에 ‘제3국 발행송장 대상’임을 명시해야 함 <2013.11.>

[Why]

□ 한-아세안 FTA의 제3국 송장의 정의

- 협정에서 제3국은 수출입당사국이 아닌 국가를 말하며, 송장이 아래의 방식으로 발급된 경우로 정의
 - 1) 제3국에 소재하는 기업에 의하여 발급된 경우
 - 2) 제3국에 소재하는 기업의 계산으로(for the account) 수출자에 의하여 발급된 경우
- 즉, 일본기업의 계산으로 태국 수출자에 의해 C/O가 발급된 경우에는 송장이 일본에서 발행되는 것으로 보고 있음
- 따라서 일본회사의 계산으로 태국 수출자에 의하여 발급된 경우에는 제3국 발행 송장에 해당

[관련규정]

- 한-아세안 FTA 부속서3(원산지규정) 제1조(정의)
“제3국”이라 함은 수입당사국 또는 수출당사국이 아닌 당사국 또는 비당사국을 말한다.
- 한-아세안 FTA 부속서3(원산지규정) 제21조
 - 1. 상업송장이 제3국에 소재하는 기업 또는 그 기업의 계산으로 수출자에 의하여 발급된 경우에도 수입당사국의 관세당국은 원산지증명서를 수리할 수 있다. 다만, 그 물품이 부속서 3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2. 물품의 수출자는 원산지증명서에 “제3국 발행송장 대상”임을 명시하고, 송장을 발행하는 회사의 명칭 및 국적과 같은 정보를 기재하여야 한다.
- 한-아세안 FTA 부속서3(원산지규정) 원산지증명서 작성요령
 - 9. 제3국 송장 : 제3국에 의해 송장이 발행되는 경우, “제3국 송장”란에 (✓)로 표시한다. 그리고 송장을 발행한 회사의 이름 및 국가 정보는 제7란에 기재한다.

II. 운송요건(직접운송원칙)

[Q21]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된 의류가 미국 상표권자의 회사 방침에 따라 미국의 로스엔젤레스를 거쳐(단순경유) 한국으로 운송될 경우

[Q21-1]

한-아세안 FTA 부속서3 제9조 제2항 가호에서 규정한 “그 경유가 지리적 이유로 또는 오직 운송 요건에만 관련된 고려에 의하여 정당화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Answer]

- 원칙적으로 수입물품이 한-아세안 FTA 특혜관세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수출당사국과 수입당사국 영역간에 직접운송되어야 하나
- 예외적으로 제3국을 경유하여 운송되더라도 다음을 조건으로 직접운송으로 간주될 수 있음(한-아세안 FTA 부속서 3 제9조 제2항)
 - ① 그 경유가 지리적 이유로 또는 오직 운송 요건에만 관련된 고려에 의하여 정당화 될 것
 - ② 그 상품이 경유국에서 거래 또는 소비되지 아니하였을 것
 - ③ 그 상품이 하역, 재선적 또는 그 상품을 좋은 상태로 유지하는데 요구되는 공정 외의 어떠한 공정도 거치지 아니하였을 것
- 따라서 “미국 상표권자의 방침에 의한 경유”는 상기 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Why]

- 지리적 이유라 함은 당사국이 내륙국 등으로 항구 등이 없어 제3국을 경유하지 않으면 수출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며
- 운송요건이라 함은 수출시 최종 수입국이 결정되고, 선적하였으나 운송편(선박, 항공기)의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제3국을 경유해야 하는 경우를 말함.

[Q21-2]

제3국을 경유하였을 경우 우리나라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Answer]

제3국 경유물품의 원산지결정시에는 다음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함

- ① 계약상대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하기까지의 선하증권 등 운송서류
 - ② 제3국에서 추가적 생산 또는 작업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당해 물품이 제3국 관세당국의 통제 또는 감독 하에 있었음을 해당 관세당국이 확인한 증명서
- * 수입항까지 국제운송에 필요한 하역, 선적, 포장에 필요한 작업이나 물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는데 필요한 작업은 제외 <2008.8.>

[관련규정]

- 한-아세안 FTA 부속서 3 제9조(직접운송)
- 1. 특혜관세대우는 이 부속서의 요건을 충족하고 수출당사국과 수입당사국 영역간에 직접 운송된 상품에 적용된다.
-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품이 수출당사국 및 수입당사국 영역이 아닌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경유하는 제3국을 경유하여 운송되더라도 다음을 조건으로 직접운송된 것으로 간주한다.
 - 가. 그 경유가 지리적 이유로 또는 오직 운송요건에만 관련된 고려에 의하여 정당화 될 것
 - 나. 그 상품이 경유국에서 거래 또는 소비되지 아니하였을 것. 그리고
 - 다. 그 상품이 하역, 재선적 또는 그 상품을 좋은 상태로 유지하는데 요구되는 공정외의 어떠한 공정도 거치지 아니하였을 것

[Q22]

스위스에서 오(誤)선적된 물품이 미국 공항 내에 반입되어 통관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한국으로 선적될 경우, 직접운송 충족요건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 미국 세관의 증빙서류

TRANSPORTATION ENTRY AND MANIFEST OF GOODS SUBJECTS TO CBP INSPECTION AND PERMIT
첨부

[Answer]

- 잘못 선적되어 제3국으로 운송된 경우라 하더라도 협정에서 정한 작업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경유국 세관의 감시하에 있었음을 입증하는 경우 FTA 협정관세 적용 가능
- 다만, 첨부한 미국세관 서류의 인정 여부는 담당 세관장이 FTA 특례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2010.6.25.>

[Why]

- 한-EFTA FTA 협정문 제14조(직접운송) 규정에 따르면,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협정 체결국간 직접 운송이 원칙이고
- 하역, 재선적, 탁송품의 분리 또는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하여 마련된 작업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제3국 경유 허용

[관련규정]

- 한-EFTA FTA 제14조 직접운송
- 1. 이 협정상 규정된 특혜대우는 이 부속서의 요건을 충족하고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 간 직접운송되는 상품에만 적용한다. 그러나 그 상품이 하역, 재선적, 탁송품의 분리 또는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하여 마련된 작업을 제외한 작업을 거치지 아니할 경우, 비당사국의 영역을 경유하여 운송될 수 있다. 그 기간 동안 그 상품은 경유국 세관의 감시 하에 있어야 한다.

[Q23]

여러나라에서 주문한 물품을 스위스(본사)에서 취합하여 일괄 배송하고 중국소재 보세구역에 보관한 후, 다시 재분류되어 한국으로 선적되는 경우 한-EFTA FTA 직접운송원칙 충족 여부

[Answer]

- 여러나라에서 주문한 물품을 스위스에서 취합하여 일괄 배송하고 중국소재 보세구역에 보관한 후 다시 재분류되어 선적되는 과정에서 송장 등이 새로 발급되므로 협정에서 정한 탁송품의 기준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 중국 소재 보세창고에서 재분류되고 선적되는 과정에서 수행되는 작업 내용의 확인이 불가능하고 판매를 위한 보관 등은 직접운송을 충족하는 기준으로 인정될 수 없음 <2010.6.>

[Why]

- 한-EFTA FTA 협정문 제1조 다호에서 ‘탁송품’은 수출자로부터 선적과 관련된 하나의 운송서류에 의하여 다루어지는 상품을 말함
-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에는 하역, 재선적, 탁송품의 분리 또는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한 범위 내의 작업만 수행되어야 하고, 경유하는 기간 동안 관세당국의 통제 또는 감독 하에 있어야 함

[관련규정]

- 한-EFTA FTA 제1조 정의

“탁송품”이라 함은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에게 일제히 송부된 상품이거나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으로의 선적과 관련된 하나의 운송서류에 의하여 다루어지는 상품 또는 그러한 운송서류가 없는 경우 하나의 송장에 의하여 다루어지는 상품을 말한다.

[Q24]

- 인도네시아 수출업자가 구매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3국인 싱가포르 보세구역으로 운송 후 보관 중인 물품을 우리나라 수입자가 수입하면서
- 물품대금을 인도네시아 수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아니하고 싱가포르 현지법인을 거쳐 지급하는 경우 직접운송원칙 충족 여부 및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 적용 가능 여부

[Answer]

한-아세안 FTA 협정상의 “직접운송”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협정관세 적용 대상이 아님 <2010.10>

[Why]

- 한-아세안 FTA 협정문에는 수입물품이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직접 운송되지 않고 제3국을 경유하여 운송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고
- 다만, 부속서 3(원산지규정) 제9조(직접운송) 제2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제3국 경유를 허용
- 인도네시아 수출자가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거래에 대비하기 위하여 제3국인 싱가포르 보세구역으로 운송한 것은 지리적 이유 또는 오직 운송요건에 관련된 경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 거래형태 및 대금지급 형태 등을 볼 때 인도네시아 수출자가 제3국인 경유국에서 국내수입자의 현지법인과 거래한 것으로 보이므로 경유국 거래, 소비 금지 조항 또한 충족했다고 볼 수 없음

[Q25]

수확시기에 맞춰 물품을 구입하여 제3국에 보관하였다가 판매되어 운송하는 경우 직접운송 해당 여부(한-EU FTA)

[Answer]

수확시기에 맞춰 물품을 구입하여 제3국에 보관하였다가 판매되어 운송하는 경우 직접운송원칙 불충족 <2011.5.>

[Why]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에게 일시에 송부되었거나 단일운송서류 또는 단일 송품장에 의한 단일 탁송화물에 대해 제한적으로 제3국 경유를 인정하며, 제3국에서 자유로운 유통을 위한 반출을 금지함

[Q26]

한-미 FTA 관련, 대만을 경유하여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비당사국 영역에서 세관 통제하에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아래의 서류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 민원인 제출서류 : 出口報單(保稅倉 貨物出口)
- 민원인은 우리나라의 반송수출 신고필증에 해당되는 서류라고 주장

[Answer]

비당사국 영역에서 세관 통제 하에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볼 수 없음

<2012.4>

[Why]

민원인이 제출한 서류(대만의 출구보단-보세창화물출구)는 그 서류의 용도와 발급 주체가 불분명하여 해당 물품이 동 규정을 충족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음

[Q27]

제3국 소재 창고에 보관하기 위하여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 여부

[Answer]

제3국에 소재한 창고에 보관하기 위하여 제3국을 경유한 경우 협정관세 적용대상이 아님 <2011.6.>

[Why]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에게 일시에 송부되었거나 단일운송서류 또는 단일 송품장에 의한 단일 탁송화물에 대해 제한적으로 제3국 경유를 인정하며, 제3국에서 자유로운 유통을 위한 반출을 금지함

[관련규정]

- 한-EU FTA 제1조 정의
탁송화물이란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에게 일시에 송부된 제품이거나,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으로서의 선적에 대한 단일 운송서류에 의하여 또는 그러한 서류가 없는 경우 단일의 송품장에 의하여 다루어지는 제품을 말한다.
- 한-EU FTA 제13조 직접운송
1. 이 협정에 규정된 특혜대우는 이 의정서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양 당사자간 직접적으로 운송되는 제품에만 적용된다. 그러나 단일 탁송화물을 구성하는 제품은 상황이 발생하면 다른 영역에서 환적 또는 일시적으로 창고 보관되어 그 다른 영역을 통해 운송될 수 있다. 다만, 그 제품이 통과 또는 창고 보관하는 국가에서 자유로운 유통을 위해 반출되지 아니해야 하고, 하역, 재선적 또는 제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해 고안된 모든 공정 외의 공정을 거치지 아니해야 한다.

[Q28]

- 싱가포르 보세구역에서 여러 원산국의 물품을 집하한 후 여러 원산국의 물품을 혼재하여 한국으로 운송하는 경우
- 싱가포르 세관에서 발행하는 서류(Non Manipulation Certification)로 한-아세안 FTA 및 최빈국 특혜관세 적용 가능 여부

[Answer]

제3국을 지리적 또는 운송상의 이유로 경유하였음을 입증할 수 없어 협정관세 적용 불가 <2012.2.>

[Why]

- 싱가포르 세관에서 발행한 서류는 제3국에서 거래 금지, 하역, 재선적 또는 그 상품을 좋은 상태로 유지하는데 요구되는 공정 외의 공정 금지 요건은 입증할 수 있으나
- 지리적 또는 운송상의 이유로 제3국을 경유하였음을 입증할 수 없음

[Q29]

한-EU FTA에서 비당사국을 환적하는 경우 운송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부담하고 있는 선박업체가 발행한 증명서를 “수출 당사자에서 경유국을 통한 통과를 다루고 있는 단일 운송서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Answer]

- 수출국으로부터 수입국까지 운송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부담하고 있는 선사가 발행한 증명서도 “단일 운송서류” 인정 가능
- 다만, 해당 수입물품과 제시된 증명서상에 기술되어 있는 물품과의 동일성 확인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2011.10.>

[Why]

- 한-EU FTA 에서는 단일 탁송화물이 상황이 발생하면 다른 영역에서 환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아래의 서류를 협정관세 적용 신청시 세관에 제출해야 함
 - ① 직접운송이 불가능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② 제3국에서 원산지 제품의 환적과 관련된 상황 증거서류
 - ③ 수출당사자에서 경유국을 통한 통과를 다루고 있는 단일 운송서류

[관련규정]

- 한-EU FTA 제13조 직접운송
- 2. 제1항에 규정된 조건이 충족되었다는 증거는 수입당사자에 적용 가능한 절차에 따라 관세당국에 다음을 제출하여 제공된다.
 - 가. 제3국에서 원산지제품의 환적 또는 보관과 관련된 상황의 증거
 - 나. 수출당사자에서 경유국을 통한 통과를 다루고 있는 단일 운송서류, 또는
 - 다. 경유국의 관세당국이 발행한 다음의 증명서
 - 1) 제품의 정확한 설명을 제공하는 것
 - 2) 제품의 하역 및 재선적 일자, 그리고 적용 가능한 경우, 선박명 또는 사용된 운송수단을 기재하는 것, 그리고
 - 3) 제품이 경유국에 머물러 있는 그 상태를 증명하는 것

[Q30]

스위스에서 사용중인 설비를 네덜란드 수출자가 한국으로 수출시 한-EU FTA 적용 여부

[Answer]

직접운송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대상이 아님 <2012.5.>

[Why]

이태리, 영국, 독일 등에서 제조한 물품을 스위스에서 사용한 후 다시 우리나라로 수출되는 물품은 한-EU FTA의 직접 운송 규정을 충족하지 못함

[관련규정]

- 한-EFTA FTA 제14조 직접운송
- 1. 이 협정상 규정된 특혜대우는 이 부속서의 요건을 충족하고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 직접운송되는 상품에만 적용한다. 그러나 그 상품이 하역, 재선적, 탁송품의 분리 또는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하여 마련된 작업을 제외한 작업을 거치지 아니할 경우, 비당사국의 영역을 경유하여 운송될 수 있다. 그 기간 동안 그 상품은 경유국 세관의 감시 하에 있어야 한다.

[Q31]

한-미 FTA 관련, 제3국의 물류창고에 보관하였던 물품을 우리나라로 수입하는 경우, 협정관세 적용여부 및 운송원칙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

[Answer]

- 한-미 FTA 제6.13조(통과 및 환적)에 따라 비당사국에서 보관하던 원산지상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협정에서 정하는 아래의 사항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산지제품으로 인정하도록 규정
 - ① 그 상품이 하역, 재선적 또는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거나 당사국의 영역으로 운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공정 이외에, 양 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이후의 생산이나 그 밖의 어떠한 공정도 거치는 경우
 - ② 그 상품이 비당사국의 영역에서 세관당국의 통제 하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는 경우

- 이 때 경유국 세관당국에서 ‘단순경유’ 임을 확인하여 발행한 서류 등으로 상기 사항이 입증되고 원산지 증명서와 무역운송서류(선하증권 등)에 의해 수출국에서 수출한 물품과 동일한 물품이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함 <2012.5.>

[Why]

- 한-미 FTA의 경우 직접운송 요건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반드시 수출 당시 수출당사국에서 수입당사국을 최종목적지로 하여 발송될 필요가 없고
- 수입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출당사국에서 수출하여 제3국 보세구역에 장치하였다가 구매자가 나타나면 그 때 계약하여 수입당사국으로 운송한 경우에도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 가능

[Q32]

국내에서 제조된 물품이 제3국(홍콩)에서 수입통관되어, 추가 가공없이 원상태로 보관되었다가, 다시 국내로 재수입되는 경우에도 원산지(한국산) 물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 여부

[Answer]

국내에서 제조된 물품이 홍콩에서 수입통관 후 국내로 재반입 된 경우에는 원산지가 우리나라로 인정되지 않음 <2012.7.>

[Why]

- FTA 특례법 제9조2항(원산지결정기준)에 따라, 원산지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하여 운송되거나 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선적된 경우에는 그 물품을 원산지 제품으로 보지 않음
- 따라서, 국내에서 제조된 물품이 홍콩에서 수입통관된 후 우리나라로 재반입 된 경우에는 상대국에서 추가 가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도 한국산 물품으로 인정될 수 없음

[관련규정]

- FTA 특례법 제9조제2항
- ②제1항에 따라 원산지로 결정된 경우에도 해당 물품이 생산 · 가공 또는 제조된 이후에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하여 운송되거나 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선적된 경우에는 그 물품의 원산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협정에서 다르게 정하는 경우
 2. 해당 물품이 원산지가 아닌 국가의 보세구역에서 운송목적으로 환적되었거나 일시적으로 장치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Q33]

아래 Licence가 한-미 FTA 운송원칙을 충족하는 유효한 서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운송과정 : 미국(생산 · 제조) → 싱가포르(Warehouse) → 한국(기흥모터스)

[Answer]

- 상기 서류는 싱가포르의 보세창고에 대한 싱가포르 세관당국의 Licence로 추정되는 바, 동 서류를 포함하여 아래와 같은 서류 등으로 수출국에서 수출한 물품과 동일한 물품이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동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 가능
 - ① [미국 → 싱가포르] 선하증권, 송품장, C/O(미국 수출자 발행)
 - ② [싱가포르] 보세창고의 반출입증명서 또는 비조작증명서
 - ③ [싱가포르 → 한국] 선하증권, 송품장 등 선적서류 <2012.8.>

[Why]

- 한-미 FTA에서 비당사국을 경유한 경우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공정(하역, 잭선적, 보존, 운송공정)만이 있었음과 경유국에서 세관당국의 통제 하에 머물러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함
- 민원인이 제시한 서류는 경유국(싱가포르)의 보세창고업자에 대한 싱가포르 세관당국의 Licence로 추정되며
- 동 서류와 동 보세창고에 대한 반출입 서류가 제시되면 “비당사국의 영역에서 세관당국의 통제 하에 머물러 있음”을 입증한다고 판단됨

[관련규정]

○ 한-미 FTA 제6.13조 통과, 환적

각 당사국은 다음의 경우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다.

- 가. 그 상품이 하역, 재선적 또는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거나 당사국의 영역으로 운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공정 이외에, 양 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이후의 생산이나 그밖의 어떠한 공정이라도 거치는 경우, 또는
- 나. 그 상품이 비당사국의 영역에서 세관당국의 통제하에 머물러 있지 아니한 경우

[Q34]

아래 서류가 한-미 FTA 운송원칙을 충족하는 서류인지

* 운송과정 : 미국(생산·제조) → 캐나다 → 한국

※ A&A Form에 대한 민원인의 설명 자료

- 캐나다 지역을 통과하는 경우 보세상태로 운송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수출자와 운송인이 작성하여 캐나다 세관에 제출하는 서류

[Answer]

- 상기 서류가 수출국(미국)에서 경유국(캐나다)을 통과할 때 보세운송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인 경우
- 동 서류와 원산지 증명서 및 경유국(캐나다)과 우리나라와의 선하증권, 송품장 등의 선적서류로 수출국에서 수출한 물품과 동일한 물품이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동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 가능 <2012.8.>

[Why]

- 한-미 FTA에서 상품이 비당사국을 경유한 경우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공정(하역, 재선적, 보존 및 운송공정)만이 있었음과 경유국에서 세관당국의 통제 하에 머물러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함
- 민원인이 제시한 서류는 경유국(캐나다)을 통과할 때 사용되는 (보세)운송 서류로 추정됨
- 다만, 동 서류 등 귀사가 제출하는 서류의 진위여부와 정확성 등에 관한 사항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원산지에 관한 조사’ 업무가 수행될 때 확인되는 것임

[Q35]

한-EU FTA 관련 수출 당시 수입국 및 구매자가 정해진 상품이 독일 출발 시(Hamburg) → 싱가포르 보세창고로 이동 → 한국 부산항 도착

[Q35-1]

한-EU FTA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한지?

[Answer]

직접운송원칙을 충족하였음을 서류로 입증하는 경우에는 협정관세 적용 가능

[Why]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협정관세 적용 가능

- ① 단일 탁송화물을 구성하는 제품이 부득이한 사유로 자유로운 유통을 위해 반출되지 않고
- ② 하역, 재선적 또는 양호한 상태로 물품을 보존하기 위한 공정 이외의 공정을 거치지 아니하였음이 서류로 입증되고
- ③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 제품이 원산지증명서와 함께 제출된다면 협정관세 적용 가능

[Q35-2]

싱가포르 보세창고에서 한 달 이상 보관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Answer]

경유국에서의 보관기간은 제한하고 있지 않음

[Why]

‘일시적으로 창고보관’ 되는 기간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한 달 이상 보관되는 경우에도 협정에서 정한 직접운송 원칙을 충족하고 이를 관련 서류로 입증할 수 있다면 협정관세 적용 가능

[Q3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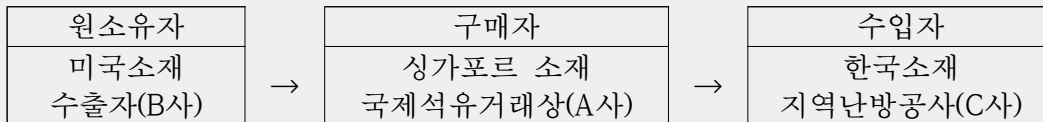
단순경유(환적)의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는?

[Answer]

입증서류는 계약상대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하기까지의 선하증권 등 운송 서류 및 경유국의 보세구역에서 환적 또는 일시 장치되었음을 해당 국가의 세관 등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증명서(예 : 경유지 보세구역 입출고내역서, 보세구역 장치확인서, 비조작 증명서 등)를 말함 <2012.9.>

[Q36]

다음과 같은 거래방법과 운송방법으로 한-미 FTA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한지?



○ 거래 및 운송관계

- ① 싱가포르 소재의 국제석유 거래상인 A사와 미국에 소재한 B사 간에 방카씨유(HS2710.19)를 구매
 - ② 미국에서 싱가포르로 운송하던 중 국내에 소재한 C사와 매매계약 체결
 - ③ 미국에서 출항한 본선이 싱가포르항에 입항전 공해상에서 ship to ship 방식으로 환적하여 국내항에 도착
- 원산지증빙서류 관련
- ① 원산지증명서 : 미국소재 B사가 구매자인 A사에게 발행
 - ② 서베이어레포트 : 최초 운송선박명, 출발지, B/L 번호, 수량, 국내로 환적한 선박명 등과 ship to ship 방식으로 환적하였다는 내용 기술(싱가포르 A사가 발행)

[Answer]

한-미 FTA 협정 제6.13조에 따라 통과 · 환적물품은 세관당국의 통제 하에 있어야 원산지상품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인 바, 이를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없음 <2012.11.>

[Why]

① 특례법의 ‘운송’ 규정 위반 여부

- 특례법에서는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하여 운송되거나 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선적된 경우는 금지
 - FTA 특례법 제9조(원산지 결정기준) 제2항
 - 한-미 FTA 협정에 따른 ‘영역’이란 항국의 국내법 및 국제법에 의하여 주권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영해를 의미
 - 공해상에서 선박을 바꾸어 운송된 경우, 공해*는 ‘원산지가 아닌 국가’가 아니므로 특례법상의 ‘운송’ 규정에 부합
 - * 영해와 내수에 포함되지 않는 바다의 모든 부분. 공해의 자유에는 공해가 어떠한 국가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본래의 공해의 자유, 귀속에서의 자유와 공해 사용의 자유가 포함된다(출처 : 공해에 관한 협약)
 - 다만, 직접운송되지 않고 공해상에서 환적작업이 있었으므로 ‘공해’를 통해서만 운송되었음이 입증되어야 함
 - 따라서 미국→공해 間, 공해→한국 間 운송서류 필요

② 협정의 ‘영역밖에서 허용하는 작업’ 해당 여부

- 협정에서 통과 · 환적 물품은 양 당사국 영역 밖에서 하역, 재선적, 보존, 운송을 위한 공정만 허용
 - 동 물품은 공해상에서 ship to ship 방식으로 환적된 것이므로 협정에서 허용하는 작업인 ‘하역’, ‘재선적’에 해당
 - 다만, 동 작업만 있었음이 객관적인 서류로 입증되어야 하는데, 싱가포르 거래상(A사)이 작성한 서류를 입증자료로 볼 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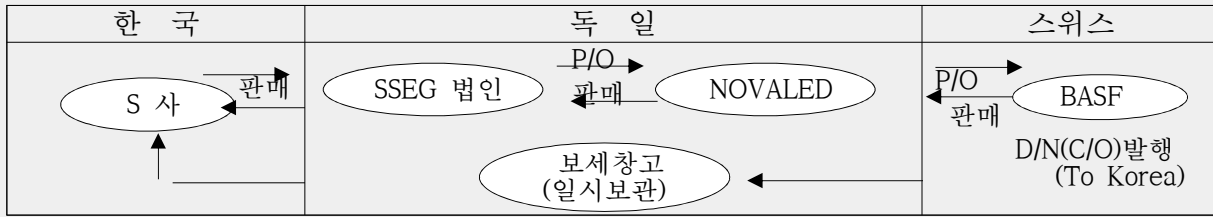
③ 협정의 ‘세관당국의 통제 하에 있지 않은 경우’ 해당 여부

- 협정에서는 통과 · 환적물품이 ‘비당사국의 영역에서 세관당국의 통제 하에 머물러 있지 않은 경우’ 원산지 제품이 아닌 것으로 규정
 - 동 규정은 통과 · 환적물품은 세관당국의 통제 하에 있어야만 원산지제품으로 인정한다는 취지로 해석
 - 따라서 동 건과 같이 세관당국의 통제 하에 있을 수 없는 운송형태에 따른 제품은 원산지제품으로 인정할 수 없음

[Q37]

다음 거래관계의 경우 한-EFTA FTA 협정관세 적용 여부

- BASF(스위스) → NOVALED(독일) → SSEG(S사 독일법인) → S사(한국)로 순차판매됨
- 운송은 스위스에서 한국을 목적지로 출발한 후 독일의 보세창고를 경유하여 우리나라로 운송됨



[Answ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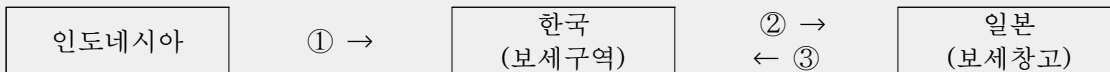
한-EFTA FTA는 양 계약 당사자 간 직접 거래되지 않은 탁송품이 운송 도중 제3국 보세구역에 일시 장치된 경우에도 원산지증명서 제14조(직접운송)을 충족하는 때에는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함 <2013.1.>

[Why]

- 제3국인 독일 소재 보세창고에서 하역, 재선적 이외의 작업이 없었으며, 독일 세관당국의 통제하에 있던 사실이 비조작증명서*에 의해 입증되므로 직접운송 원칙을 충족
- * 보세구역에서 환적 또는 일시 장치되었음을 세관 등 권한있는 기관이 확인한 증명서
-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하여 작성될 수 있으며 해당 원산지증명서는 스위스 소재 BASF社가 Delivery Note 상에 작성
- 따라서 제3국에서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계약당사국에 소재하는 수출자가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한 경우 유효한 원산지증명서임

[Q38]

인도네시아에서 우리나라(보세구역)에 도착 후, 일본에 판매할 목적으로 운송하였다가 다시 반송한 물품에 대한 한-아세안 FTA 직접운송 충족 여부



② 부산항 입항시점에 일본에서 발주가 오자, 부산항 보세구역에서 바로 재선적하여 일본으로 운송

③ 일본(보세창고)에서 보관하던 중 결제가 지연되자 다시 부산으로 운송

* 일본세관 통제하에 있었음을 증빙하는 서류 : 요코하마 세관에서 발행한 비조작증명서(Non-Manipulation Certificate)

[Answer]

- 한-아세안 FTA에 따른 원산지제품이 우리나라에 도착되어 보세구역에 보관하던 중 협정 비당사국으로 판매하기 위해 운송되었다가 다시 우리나라로 반입된 경우에는
- 동 협정 부속서3 제9조(직접운송)에서 정하고 있는 운송형태로 볼 수 없으므로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없음 <2013.2.>

[Why]

- 한-아세안 FTA 협정에서 허용하는 운송방법은 아래 2가지로 한정
- ① 수출당사국과 수입당사국 영역간에 직접 운송
- ② 다음 모든 조건으로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
 - 가. 지리적 이유 또는 오직 운송 요건인 경우
 - 나. 경유국에서 거래 또는 소비되지 아니하였을 것
 - 다. 하역, 재선적 또는 보존공정 외의 어떠한 공정도 거치지 않았을 것
- 즉, 우리나라에 도착한 후 다시 비당사국을 경유하여 운송하는 방법은 허용하고 있지 않으며, 또한 지리적 · 운송상의 이유에 한정하여 제3국 경유가 허용되는 바, 동 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Q39]

아래 구매 유형별 국내 수입통관시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여부

<CASE 1> 영국 무역회사가 원유를 한국 석유공사에게 수출판매하고 한국 석유공사가 그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B/L양수도 한 경우

<CASE 2> EU 생산원유를 2이상의 업체가 공동선적한 경우

<CASE 3> EU에서 선적한 원유의 국내운송 중 수에즈운하(이집트)를 경유하면서 운하를 통과하기 위해 일부 물량을 해당 선박에서 하역한 후 재선적하여 운하를 통과하게 됨

① 200만 B cargo의 경우 수에즈운하의 일부 수심이 낮은 구간 통과를 위해 약 50만 B을 하역한 후 통과 완료후 재선적 함

- EU에서 발행된 B/L과는 별도로 재선적하는 항만(Terminal)에서 발행한 B/L이 있는 경우 FTA 협정세율 적용 여부

② 이집트 Sidi Kerir Terminal(지중해) ⇒ 이집트 Ain Sukhna Terminal(홍해)

* 재선적시 Ain Sukhna에서 B/L발행

[Answer]

<CASE 1>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증명서 요건 등 제반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협정관세 적용 가능

[Why]

○ C/O의 수입자와 수입신고서의 납세의무자가 일치해야 하는지

① [한-EU FTA] ‘수입자’에 대한 규정 없음

② [FTA특례법] ‘수입자’는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자’를 말함

③ [관세법] 수입물품을 수입신고전에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이 납세의무자가 됨

⇒ 따라서 보세구역에서 B/L양수도의 방법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그 양수인이 수입신고할 수 있으며, 협정관세 적용 가능

[Answer]

<CASE 2> 수출국에서 여러 업체가 공동선적한 경우에는 각각의 원산지증명서와 선하증권으로 원산지를 확인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음

[Why]

○ 혼합 보관된 원유의 원산지 확인 방법

① [한-EU FTA, FTA특례법령] 해당 규정 없음

② [FTA특례고시] 액체화물(원유, 곡물 등)이 하나의 저장시설에 혼합 보관된 경우 원산지증명서와 선하증권으로 원산지를 확인

⇒ 따라서 EU 생산 원유를 2이상의 업체가 공동선적한 경우에도 각각의 원산지증명서와 선하증권으로 원산지를 확인하여 협정관세 적용 가능

[Answer]

<CASE 3> 제시한 B/L은 수에즈운하의 재선적 항만에서 발행한 것으로 운하통과를 증빙하는 자료로 볼 수 있는 바, 협정관세 적용 가능 <2013.3.29.>

[Why]

○ 수에즈 운하 통과를 위해 원유를 일시 하역하였다가 다시 재선적하는 것이므로 허용되는 작업에 해당하며, 제시한 B/L은 수에즈운하의 재선적 항만에서 발행한 것으로 운하 통과를 증빙하는 자료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원산지증명서, 송품장 및 EU로 부터 우리나라까지의 B/L과 제시한 B/L을 통해 동일물품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협정관세 적용 가능

[Q40]

○ A전자(주)가 중국(광조우)에서 생산한 물품을 홍콩을 경유하여 수입하면서 APTA에 따른 특혜관세를 신청하여 통관

○ 제출한 APTA 원산지증명서의 4란(운송수단 및 경로)에 제3국인 홍콩을 경유한 사실을 표기하지 않았고, 수입시에 직적운송요건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음

[Q40-1]

제3국(홍콩) 경유사실 미표기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 여부

[Answer]

원산지증명서 4란이 작성요령에 따라 기재되지 않았어도 유효(특혜관세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Why]

원산지증명서가 중국정부에서 지정한 기관에 의해 발행되었고, 수입신고시 아국 세관에 제출하여 입증(수리)되었으므로 홍콩경유 사실을 표기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유효성을 부인할 수 없음

[Q40-2]

수입신고시 직접운송요건 입증서류 제출 의무

[Answer]

- 직접운송요건 입증 확인자료는 세관장이 제출하게 한 때로 수입신고 수리 이후에도 가능
- 다만, 경유국(홍콩)에서 직접운송의 원칙 충족여부는 세관의 사실 확인에 의해 판단되어질 것임 <2013.5.>

[Why]

특혜관세 적용을 위해 수입신고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원산지증명서”이며, 직접운송원칙 입증서류는 세관장이 요청한 때 제출

[Q41]

APTA 관련 수출참가국인 중국에서 생산된 물품을 중국 → 홍콩까지 트럭으로 운송하여 비참가국인 홍콩에서 항공기로 환적 후 한국으로 운송시 직접운송 입증서류 인정범위 문의

<질문> 항공기를 반입시 근본적으로 APTA 확인기준 규칙 제8조제3항제1호의 통과선하증권(선박운송서류) 발행이 불가하므로 재화청단(清單)*등 기타 서류로 代替제출 가능 여부

* 중국→홍콩 내륙운송시 해당차량에 대해 발급하는 서류(적하목록)로 중국 지방교통국 및 세관에 사전 등록된 차량에 한해 운송을 허용하며, 중국·홍콩 공통서식 임

[Answer]

- 통과선하증권이 발행되지 않는 경우(예 : 항공운송)에 단순경유사실 증빙서류는 수출국에서 발행된 통과 선하증권과 같이
- 항공화물운송장이 ‘최초 수출국 운송업자(운송주선인 포함)가 전 구간의 운송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담보’ 하는 하나의 운송서류로 발급된 경우에 인정 가능
- 재화청단과 홍콩발행 항공화물운송장은 단순경유사실 증빙서류로 인정 곤란
- 증빙서류에 대한 사실여부, 조건 충족 여부 및 이에 따른 직접운송원칙 충족여부 등은 사안별로 세관장이 판단할 사항 <201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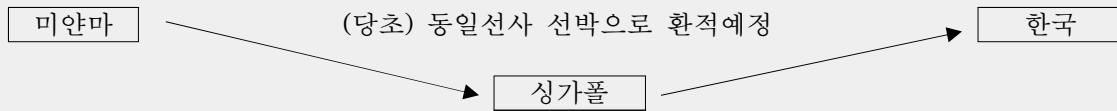
[Why]

- APTA에서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 수입자는 특혜관세대우 신청시 수출당사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을 반드시 제출해야 함
- 홍콩 국경 도착시 제출하는 재화청단과 홍콩발행 항공화물운송장은 수출국 운송인이 쉼구간을 보장하는 통과선하증권 형태가 아님

[관련규정]

- <기획재정부 민원질의 회신, ‘13.7.22>
 - APTA 원산지확인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제3항에서 정한 서류 모두 제출해야 함
 - 다만, 통과선하증권이 발행되지 않는 경우(예 : 항공운송) 단순경유사실 증빙서류도 원산지규정 제5조를 준수하였음을 증빙하는 보충서류로 제출되어 질 수 있으나
 - 동 서류에 대한 사실여부, 조건충족 여부 및 이에 따른 직접운송원칙 충족여부 등은 과세관청이 판단할 사항

[Q42]



(변경) 수입화주 요청으로 긴급운송을 위해 타 선사 선박으로 환적

- 당초 미얀마-한국간 직항 선박노선이 없어 동일선사 선박으로 제3국에서 환적하여 한국으로 운송할 예정이었으나 수입화주가 빠른 운송을 요청하여 제3국에서 타 선사의 선박으로 환적하여 운송함
- <질문> 아래 서류를 제출하면 한-아세안 FTA 운송요건에 충족하는지?
 - 가. 미얀마→한국 간 선하증권, 싱가포르→한국 간 선하증권
 - * 미얀마→싱가폴→한국 간 통과선하증권은 없음
 - 나. 싱가포르 세관 발행 비조작증명서(미얀마→한국 간 선하증권번호 기재)

[Answer]

-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부록1(원산지규정을 위한 원산지증명 운영 절차) 제9조(제출) 및 제19조에서 수입자는 특혜관세대우 신청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
 - ① 수출당사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
 - ② 원산지증명서 원본
 - ③ 물품의 상업송장 원본의 부분
 - ④ 그 밖에 직접운송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증빙서류
- 따라서 상기의 서류가 모두 제출되는 경우 수입물품에 대해 동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를 적용 <2013.5.>

[Why]

- 직항노선이 없는 운송상의 이유로 3국을 경유하였으며, 제3국에서 단순환적만 있었으므로 직접운송 요건은 충족
- 그러나 협정상 필수 제출서류인 ‘통과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직접운송 요건에 충족하지 않음

[Q43]

APTA 직접운송 적용관련, 제3국(홍콩)을 단순경유하여 항공운송으로 수입시 AWB(항공화물운송장) 샘플 3건에 대하여 ‘통과선하증권’으로 인정 가능한지 여부

<질문> AWB Case 3건별 APTA 직접운송 입증서류로 인정 가능여부

	Case 1 AWB	Case 2 AWB
출발 공항	홍콩(심천 인수)	좌 동
취급 정보	인수장소-중국 심천	좌 동
발급 장소	홍 콩	홍 콩
운송대리점 주소	홍 콩	홍 콩
AWB No	PLISZA300175 * SZ는 중국 심천	PLIHKA305714 * HK는 홍콩

[Answer]

- APTA 직접운송원칙 충족을 위해 단순경유사실 증빙서류로 인정되는 AWB(항공화물운송장)는
 - ① 수출국에서 발행되었고, ② ‘최초 수출국 운송업자(운송주선인 포함)가 전 구간의 운송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담보하는 하나의 운송서류로 발급’ 되었을 때 인정 가능하며
- 증빙서류에 대한 사실, 조건충족 여부 등은 사안별로 세관장이 판단할 사항인 <2013.9.>

[Why]

- 항공운송시 단순경유사실 증빙서류로 인정되는 AWB(항공화물 운송장)는 ① 수출국에서 발행되었고, ② ‘최초 수출국 운송업자(운송주선인 포함)가 전 구간의 운송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담보하는 하나의 운송 서류로 발급’ 되는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함
- <Case 1>
 - 운송대리점 주소란 및 발급장소란에 ‘HONG KONG’표기로 있어 홍콩에서 발급되었음
 - 따라서 수출참가국(중국) 발급조건 불충족으로 단순경유사실 증빙서류로 인정 곤란

○ <Case 1>

- House B/L No 체계(PLIHK305714)로 홍콩에서 발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AWB 발급장소, 운송대리점 주소란도 모두 'HONG KONG'으로 증빙서류로 인정 곤란
- (검토의견) 질의한 케이스 모두 수출국이 아닌 제3국(홍콩)에서 AWB가 발행되어 단순경유사실 증빙서류로 인정할 수 없음

[관련규정]

- APTA 직접운송 원칙 입증서류 지침, '13.7.24
- 항공운송시 단순경유사실 증빙서류는 AWB가 ① 수출국에서 발행되었고, ② '최초 수출국 운송업자(운송주선인 포함)가 전 구간의 운송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담보하는 하나의 운송서류로 발급' 되었을 때 인정 가능
- 동 서류에 대한 사실여부, 조건충족 여부 및 이에 따른 직접운송 원칙 충족여부 등은 세관장이 판단할 사항

Ⅲ. 전시물품

[Q44]

- **교역은 이태리의 수출자와 거래계약이 완료된 자동 Bending 기계 1세트를 수입함에 있어 중국에서 동 기계를 일주일간 보세전시장에 전시
- 이태리에서 수출된 기계를 중국 보세전시장에서 전시한 후 한국으로 수입하는 경우 한-EU FTA 특혜관세 적용 여부

[Answer]

- 한-EU FTA 협정상 전시물품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전시물품이 한-EU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수입자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서류로 입증하여야 함
- ① 제품이 단일 탁송화물이고 관세당국의 통제하에 전시에 사용될 것
- ② 수출국에서 계약이 완료된 물품이 제3국 전시회에 참가한 다음 수입될 것
- ③ 비당사국 경유시 한-EU FTA 협정의 직접운송 인정요건을 충족할 것
 - 제품이 통과 또는 창고 보관하는 국가에서 자유로운 유통을 위해 반출되지 아니할 것
 - 하역, 재선적 또는 제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해 고안된 모든 공정 외의 공정을 거치지 아니할 것 <2013.5.>

[Why]

□ 전시물품의 협정별 특혜관세 적용 여부

- 전시물품은 계약완료 시점에 따라 아래와 같이 2가지로 구분하여 협정관세 적용 여부 검토 필요
- (1) 수출국에서 계약이 완료된 물품이 제3국 전시회에 참가한 다음 수입되는 경우
 - 전시물품은 제3국에서 일시보관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모든 FTA에서 제3국에서 상품 일시보관은 허용
 - 또한, 관세법에서도 관세당국의 통제를 조건으로 전시회 등 행사에 전시하기 위한 제3국 경유를 인정
 - ① [EU, EFTA] 단일 탁송화물이면 적용 가능
 - ② [인도] 인도의 경우에도 적용 가능
 - ③ [아세안, 터키] 별도 규정이 있으므로 적용 가능
 - ④ [미국, 칠레] 직접운송원칙이 없으므로 적용 가능
- (2) 전시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이 제3국 전시회에서 계약 체결되어 수입되는 경우
 - [아세안, 인도, 페루] 경유국에서의 '거래'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적용 불가. 다만, 아세안은 전시에 대한 별도 규정이 있으므로 적용 가능
 - [EU, 터키] 창고 보관하는 국가에서 자유로운 유통을 위해 반출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은 경유국에서의 '거래'를 금지하는 규정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적용 불가. 다만, 터키는 전시에 대한 별도 규정이 있으므로 적용 가능
 - [미국, 칠레] 직접운송 원칙이 없으므로 적용 가능

Ⅳ. 원산지 증명 요건

[Q45]

“E-mail로 송부받은 원산지증명서”가 원본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Answer]

“E-mail로 송부받은 원산지증명서”는 원본으로 인정되지 않음 <2009.4>

[Why]

E-mail 또는 FAX로 송부된 원산지증명서는 어떠한 형식으로도 원본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세관장의 원산지증명서 제출요구가 있는 경우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공정무역과-692(2007.2.27.)>

[Q46]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상 FOB 금액과 인보이스 금액과 차이가 있는 경우 원산지증명서 유효성 여부

[Answer]

-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제9번 란의 FOB 금액은 동 물품의 송품장 가격과 비교하여 원산지결정기준(부가가치 기준)의 충족여부를 확인하는 기준으로 활용되며
- FOB 금액과의 불일치로 인하여 원산지증명서의 효력이 무효화 될 수 없음 <2010.5.>

[Why]

해당물품의 품목분류가 정확하고 원산지 결정기준을 판단하는데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경우, FOB 금액의 불일치로 인하여 원산지증명서의 효력이 무효화 될 수 없음

[Q47]

- 노르웨이산 니켈관을 스위스 소재 중개인을 통하여 수입하면서 노르웨이 세관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에 한-EFTA FTA 신고문안에 노르웨이 수출자가 인증수출자 번호를 기재하고 서명
- 단, 노르웨이 세관에서 발행한 C/O에는 BWT 물품으로 수화인과 송품장번호는 기재되어 있지 않고 화물개수, 중량, 수량만 기재

[Q47-1]

노르웨이 세관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에 한-EFTA FTA 협정문에서 규정한 원산지 신고문안과 서명이 있는 경우 적법한 C/O로 인정되는지 여부와 유효한 증명서가 아닌 경우 적정한 C/O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Answer]

원산지증명서상 거래물품과 실제 수입물품이 동일한 물품으로 인정되므로 유효한 원산지증명서임

[Why]

세관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도 상업서류로 포함되고, 원산지 신고문안과 노르웨이 소재 수출자의 주소 및 서명이 기재되어 있으며, 수량·중량이 일치하는 등 C/O상 거래물품과 실제 수입물품의 동일성이 인정됨

[Q47-2]

노르웨이 수출자가 선적서류 중 Packing List에 원산지신고를 할 경우 적정한 C/O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단, 이 경우에 거래의 특성상 구매자가 확정되지 않아 수하인과 송품장 번호가 기재되지 않음)

[Answer]

포장명세서(Packing List)에 원산지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거래물품과 실제물품의 동일성을 확인이 가능해야 협정관세 적용 가능 <2010.5.>

[Why]

원산지 신고문안 및 협정 당사국에 소재한 수출자의 성명, 주소 및 서명이 기재되어야 하고, 물품, 수량, 선박명 등이 기재되어 동일성 확인이 가능해야 함

[관련규정]

○ 원산지신고서의 문안<한-EFTA FTA 부속서1의 부록3>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zation NO ‘세관인증번호’ ①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제품의 원산지② preferential origin.”

‘장소 및 일시’ ③

수출자의 서명, 서명인의 성명을 명확하게 기입할 것 ④

(특기사항) ⑤

- ① 인증수출자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 인증번호 기재, 인증수출자에 의하여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공란으로 남겨둠
- ② 상품의 원산지 기재(대한민국,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또는 스위스), ISO-알파-2단위 코드의 사용이 허용된(KR, IS, NO 또는 CH)
- ③ 해당 정보가 서류에 포함된 경우 생략 가능
- ④ 인증수출자의 서명(서명인의 성명 포함)은 요구되지 아니함
- ⑤ 부속서1 부록4(영역원칙의 면제 등)가 적용되는 경우 기재

[Q48]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제9번 란에 인보이스 번호와 일자를 기재해야 하나, 수출자의 거래관행*에 의거 증명서 발행일자가 인보이스 발행일자보다 늦게 기재된 경우 동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 여부

* 수출자는 인보이스 발행일자를 관행상 선적 예정일자를 기재

[Answer]

- 기업간 거래 관행이 아닌 실제로 인보이스가 발행된 날을 기준으로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하여야 하고
- 수출자 및 생산자가 원산지증명서의 오류가 있음을 안 경우에는 FTA특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원산지 증명서류 수정통보 절차를 거쳐야 함
- 아울러 동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 여부는 거래관계 등 사실을 확인한 후 이상이 있는 경우 FTA특례법 제13조의 원산지검증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2010.6.>

[Why]

한-아세안 FTA 협정문 부록1 「원산지 규정을 위한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 제4조 제3호 라호에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물품의 품명, 수량 및 중량, 포장의 표시 및 번호, 포장의 수량 및 종류 등 신청서류 기재내용과 수출물품이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규정

[관련규정]

○ 한-아세안 FTA 부록 1 제4조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3. 발급기관은 원산지증명서의 매 신청마다, 그 권한과 능력의 최선을 다하여, 당사국의 국내법령에 따라 적절한 검사를 수행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장하여야 한다.

라. 물품의 품명, 수량 및 중량, 포장의 표시 및 번호, 포장의 수량 및 종류는 기재된 바와 같이 수출물품과 일치한다는 사실

[Q49-1]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상 “제3국 송장” 기재시 제3국에 수입국도 포함되는지 여부

[Answer]

“수입국” 이 “제3국” 의 정의에 부합되지 아니하므로 “제3국 발행 송장” 에 해당되지 아니함

[Why]

협정 제1조(정의)에 “제3국” 이라 함은 ‘수입당사국 또는 수출당사국이 아닌 당사국 및 비당사국을 말한다’ 라고 명시

[Q49-2]

송장을 수입국 소재 기업이 발행한 경우도 원산지증명서와 제3국 송장으로 기재 후 한-아세안 FTA 특혜관세 적용 신청이 가능한 지 여부

[Answer]

수입국 소재 기업이 발급한 송장에 근거한 원산지증명서도 수리 가능함 <2010.9.>

[Why]

협정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수입국 소재 기업이 발급한 송장에 근거한 원산지증명서도 인정됨

[Q50]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제1란(수출자)에 수출자가 아닌 제조자를 기재하여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로 한-아세안 FTA 특혜관세 적용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Answer]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작성요령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한-아세안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없음 <2010.10.>

[Why]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작성요령 제1란(수출자)에는 반드시 수출자를 기재(제11란의 수출자는 제조자 및 생산자를 포함할 수 있음)하여야 함

[Q51]

수입신고서상 수출자와 C/O상 수출자가 상이할 경우 당해 C/O가 유효한지 여부

[Answer]

수출자가 아닌 생산자, 제조자 등이 수출자로 되어 있는 원산지증명서는 FTA 특혜신청을 함에 있어 유효하다고 볼 수 없음 <2011.1.>

[Why]

통상 “수출자”라 함은 국제 무역거래에 있어 수입자의 거래계약 당사자로서 거래대금의 결제 상대방이며, 각 FTA 협정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산지 검증시 원산지에 대한 입증책임과 기록유지 등의 의무가 있음

[Q52]

원산지증명서의 ‘수입자’란에 “TO THE ORDER OF KOREA EXCHANGE BANK”라고 기재된 경우 유효성 여부

[Answer]

원산지증명서의 효력을 부인할 만한 사유는 아님 <2011.4.>

[Why]

거래관계에 따른 무역서류(B/L, invoice, L/C)의 증빙으로 ‘수입자’와 ‘납세의무자’를 확인할 수 있다면 원산지증명서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음

[Q53]

원산지가 협정당사국인 물품과 당사국이 아닌 물품이 혼재된 경우 원산지신고서 유효성 여부

[Answer]

원산지신고서 마지막에 원산지신고서 문안이 한번 기재된 것은 유효한 원산지 신고서로 인정하기 곤란함 <2011.6.>

[Why]

한-EU FTA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원산지신고 문안은 해당 제품이 원산지 제품임을 기재하는 것이므로 원산지 제품이 구분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함

[Q54]

최빈국 특혜 원산지증명서에 송장번호, 발행일자가 오류 기재되고, 수출자도 원산지증명서상 수출자와 상이한 경우 유효성 여부

[Answer]

원산지증명서상의 물품과 수입신고 물품의 동일성 확인이 곤란하며, 원산지증명서 수정절차 등을 거치지 않은 동 원산지증명서로는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없음 <2008.8.8.>

[Why]

- 원산지증명서의 INVOICE 번호 및 일자 기재란에 Firm offer sheet 번호인 GF0002를 오류 기재하였고, 발행 일자도 ‘11.4.12일이 아닌’ 11.5.26일로 기재하였으며
- 수출자(제조사)도 원산지증명서상의 수출자와 상이하여 사실관계에 의한 동일성 확인이 곤란함

[Q55]

한-EU FTA 에서 송품장과 별도로 다른 서류에 원산지 신고문안을 작성된 경우 유효성 여부

[Answer]

- 인도증서 등 상업서류에 협정에서 정한 것과 일치되게 작성된 경우 협정관세 적용 가능
- 다만, 송품장과 별도로 작성된 원산지 신고서에는 충분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어 두 서류에 기재된 물품의 동일성이 확인되어야 함 <201.8.>

[Why]

상업서류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원산지물품내역이 충분히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고, 수출자가 협정에서 정한대로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여 발급한 경우에는 협정관세 적용 가능

[Q56]

독일의 수출자가 네덜란드 원산지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독일의 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 신고서의 유효성 여부

[Answer]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신고문안이 기재된 경우 협정관세 적용 가능 <2011.9.>

[Why]

한-EU FTA 에서는 EU지역 수출자가 EU원산지 제품을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이 되는 것이므로, 독일의 수출자가 네덜란드 원산지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도 협정관세 적용 가능함

[Q57]

한-EU FTA에서 송품장 및 상업서류가 비당사국에서 다시 발행된 경우 협정관세 적용 여부

[Answer]

- 무역거래 관행상 비당사국에서 송품장이 다시 발행되는 경우에도 동 협정 적용은 가능하지만
- 이 경우에도 EU 역내 수출자가 해당 수출거래와 관련된 상업서류에 작성한 원산지신고서가 세관에 제출되어야만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함 <2011.8.>

[Why]

한-EU FTA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15조(일반요건) 및 제16조(원산지신고서 작성조건)에 따라 원산지신고서는 EU 역내 수출자가 수출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상업서류에 작성하도록 규정

[Q58]

한-EU FTA 관련 원산지 신고문안의 원산지 표기로 ‘CE’의 인정 여부

[Answer]

‘CE’표기는 FTA에서 원산지 신고문안에 표기하여야 하는 원산지는 협정 각 당사자를 기재하여야 함
<2012.1>

[Why]

한-EU FTA에서 원산지 신고문안에 표기하여야 하는 원산지는 협정 각 당사자를 기재하여야 함

[Q59]

한-EU FTA 원산지신고서로 송품장이 아닌 다른 서류*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발행한 서류로서 MEMORANDUM OF SHIPMENT, ADVANCE INVOICE

[Answer]

송품장이 아닌 다른 상업서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물품내역이 충분히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고 수출자가 원산지 신고문안 등 동 협정에서 정한대로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여 발급한 경우에는 협정관세 적용 가능<2012.1.>

[Why]

한-EU FTA 제15조(일반요건)에 따라 원산지 신고는 그 제품을 기술하는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 서류 상에 작성하여야 함

[Q60]

한-EU FTA 원산지 신고문안을 협정에서 정하는 문구 이외에 다른 문구가 포함된 경우, 유효한 원산지 증명서류로 인정되는지 여부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this document(Customs authorization NO DE/0000/EA/0000)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no preferential goods are marked with at COO-country of origin), these products are of EU preferential origin. 이하 생략

[Answer]

한-EU FTA에 따른 원산지제품인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면 유효성 인정 가능 <2012.2.>

[Why]

- 원산지신고서에 원산지신고문안이 협정에서 정하는 대로 작성되고 보다 세부적으로 원산지를 표현하기 위한 문구가 작성되어 있는 경우
- 한-EU FTA에 따른 원산지 제품인 것을 확인할 수 있을 때에는 유효한 원산지 신고서로 인정될 수 있음

[관련규정]

○ 한-EU FTA 제24조 불일치 및 형식적 오류

원산지 증명에서 타자오류와 같은 명백한 형식적 오류는, 이러한 오류가 이 서류에 기재된 내용의 정확성에 대하여 의심을 야기할 만한 정도가 아닌 경우, 이 서류가 거부되는 원인이 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

[Q61]

한-EU FTA에서 제3국 송장거래의 경우, B/L상 Shipper에 아래와 같이 작성되어 있는 경우 동 FTA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사례1] (B/L상 Shipper) 제3국 송장발행자 명의만 기재

[사례2] (B/L상 Shipper) 제3국 송장발행자와 EU 역내 업체 병기

* (작성례) 제3국 송장발행자 Represented by EU 역내 업체

Alcon Pharmaceuticals LTD. Route des Arsenaux 41-POB 61 1701 Fribourg Switzerland
Represented by : Alcon Convreur NV, Rijksweg 14,2870 Puurs-Belgium

[Answer]

- 유형 1의 경우 해당물품의 원산지신고 문구가 EU 역내의 수출자가 작성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예 : EU역내 업체가 우리나라의 수입자에게 발행한 포장명세서, 인도증서 등)에 기재되어야만 수입물품에 대

- 해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 유형 2의 경우에도 ‘Represented by’의 의미가 모호하므로 EU 역내 업체가 수출자인지 판단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함 <2012.2.>

[Why]

- 한-EU FTA 제15조(일반요건)에 따라 원산지가 EU인 상품이 우리나라로 수입될 때 EU 역내 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에 의해 특혜관세 적용
- 무역거래 관행상 송품장이 비당사국에서 다시 발행되는 경우에도 원산지신고서는 수출당사국의 수출자가 작성하여야 함(한-EU FTA 제27조)

[Q62]

원산지제품과 비원산지 제품이 하나의 송품장에 혼재된 경우, 송품장의 품명 옆에 ISO 국가부호(DE, TW) 또는 비원산지 제품임을 구분하는 표시 (“**” : non preferential origin)를 사용한 경우 적절한 표시방법으로 인정 여부

POS	QUANTITY	ARTICLE NO	PRICE	AMOUNT	EUR
56	100	601.13.220			
		DESCRIPTION OF GOODS			
		OVA-WARDR. RAIL. CHR	144.72	144.72	**
59	40.2	423.37.59			
		SOFT-ROLLER	654.19	130.04	DE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Customs authorization NO DE/5850/EA/0769)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EC preferential origin.					
* Origin of the goods with mark					
** non preferential origin					

[Answer]

- 원산지신고서에 비원산지 제품에 대하여는 이를 구분하는 표시(“**”)를 사용한 것임을 기재하였고, 이에 따라 비원산지제품의 품명 옆에 그 표시를 한 것은 ‘달리 명확하게 표시’되었다고 볼 수 있음
- 하지만 물품명 옆에 단순히 ISO 국가부호를 기재한 경우 그 부호를 한-EU FTA에 따른 원산지제품인지를 증명한 것으로 명확하게 표시되었다고 볼 수 없음 <2012.3.>

[Why]

원산지신고서는 송품장 등 상업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물품이 특혜 원산지 제품임을 신고하는 것이며, 특혜 원산지 제품이 아닌 물품이 있는 경우 달리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규정

[Q63]

한-EU FTA 관련 수리 후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할 때, 아래의 사항

[Q63-1]

송품장, 포장명세서 이외에 수출자가 별도로 작성한 서류 가능 여부

[Answer]

송품장이나 포장명세서 이외의 다른 상업서류를 사용하여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는 것은 가능 <2012.1.>

[Why]

원산지신고는 해당제품이 확인될 수 있도록 충분히 상세하게 그 제품을 기술하는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 상에 작성하는 것임

[Q64]

원산지증명서를 송품장별로 각각 따로 작성하지 않고, 다수건의 송품장을 하나의 원산지증명서로 작성 가능 여부

[Answer]

여러 건의 송품장상의 물품을 하나의 상업서류에 작성한 원산지신고서는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로 볼 수 없음

<2012.4.>

[Why]

원산지신고서는 물품을 수출할 때 그 제품에 대해 작성하는 것임

[Q65]

한-EU FTA 관련, 원산지신고서를 포장명세서(Packing List)에 소급하여 발행하는 경우, 최초 발행일자가 없고 소급 발행일자만 있는 경우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로 인정되는 지

[Answer]

최초의 상업서류 발급일자가 없는 경우에도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로 인정 가능 <2012.4.>

[Why]

원산지신고서에는 작성일자를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최초의 상업서류 발급일자와 수출 후 작성되는 원산지신고서 작성일자가 반드시 병기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

[Q66]

‘인증수출자’가 한-EU FTA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때, 원산지신고문안에 서명만 있고 성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특혜관세 적용 여부

[Answer]

‘인증수출자’는 원산지신고서에 서명과 성명 기재를 생략할 수 있음 <2012.4.>

[Why]

수출국의 법령에 따라 ‘자신임이 확인되는 원산지 신고서에 대해 본인에 의해 수기로 서명된 것처럼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서면약속을 수출 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제공한 인증수출자’는 원산지신고서에 서명과 성명 기재를 생략할 수 있음

[Q67]

- 한-미 FTA에서는 수입자도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수입자가 원산지 상품인 것과 운송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서류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함
- 수입축산물에는 아래의 서류로 그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CC)과 운송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미국 농산부산하 국립검역원발행 검역증
 - 지역상공회의소에서 발행하는 원산지증명서
 - 미국으로부터 직접운송서류(B/L)
- 그러나 일부 세관에서는 수입자가 원산지를 증명하는 시점에서 생산자의 원재료 구매자료, 가격자료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여 일부 수입자는 원산지증명서 작성을 못하고 있음
- 상기 3가지 서류로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지침을 시달하여 줄 것

[Answer]

- 한-미 FTA 제6.15조(특혜관세 대우 신청)에 따라 수입자도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현재 ‘수리 전 협정관세 적용신청’에 대하여 세관에서는 원산지증명서의 형식적 요건만을 심사하고 있음
- 미국 농산부 산하 국립검역원 발행 검역증 등의 서류가 수입물품의 원산지상품임을 입증하는 서류로 인정되는 지는 ‘원산지검증’시 확인 <2012.5.>

[Why]

수입 전에 수입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사항 등에 의문이 있는 경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거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민원인이 요구하는 지침을 시달할 필요는 없음

[Q68]

한-EU FTA 원산지 신고문안을 협정에서 정하는 문구와 인증번호 기재 위치가 다르게 기재된 경우,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되는지

<사례 1> The Exporter(authorized exporter authorization-number DE/8750/EA/0042)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EU(Germany) preferential origin

<사례 2>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European Community preferential origin. Approved exporter's licence number (DE/3450/EA/0329) HZA Giessen

[Answer]

- 원산지신고문안이 협정에서 정하는 대로 작성되고 인증번호 기재위치가 상이한 경우, 동 FTA에 따른 원산지 제품인 것을 확인할 수 있을 때에는 유효한 원산지 신고서로 인정될 수 있음
- 다만, 원산지신고서 작성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원산지조사 대상이 될 수 있음 <2012.5.>

[Why]

원산지신고서 문안에 인증번호 기재 위치 오류는 원산지를 확인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미한(형식적) 오류로 판단됨

[관련규정]

- 한-EU FTA 제24조 불일치 및 형식적 오류
원산지증명서에서 타자오류와 같은 명백한 형식적 오류는, 이러한 오류가 이 서류에 기재된 내용의 정확성에 대하여 의심을 야기할 만한 정도가 아닌 경우, 이 서류가 거부되는 원인이 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

[Q69]

한-아세아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시, 원산지증명서상의 FOB 금액과 송품장상의 금액이 상이할 경우, 원산지결정기준에 관계없이 적용은 배제되는지?

[Answer]

원산지증명서와 송품장의 금액이 다른 이유가 원산지증명서의 오류로 인한 것이라면 「FTA 특례법 시행규칙」 제16조제5항에 따라 세관장은 그 증명서를 제출한 자에게 5일 이상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함 <2012.6.>

[Why]

원산지증명서의 FOB 금액과 송품장상의 금액이 다른 경우는 「FTA 특례법 시행규칙」 제16조제5항제2호의 원산지증명서의 오류 또는 흠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보정요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원칙

[관련규정]

- FTA 특례법 시행규칙 제16조(자료제출자 및 자료제출 기한)
⑤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원산지증명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일 이상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원산지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산지증명서가 영 제2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원산지증명서의 기재사항의 일부가 누락되었거나 오류 또는 흠이 있는 경우

[Q70]

한-EU FTA 적용시, 제조자(스페인)와 수출자(독일, 인증번호 소유)가 다른 경우 원산지증명은 누가 해야 하는지?

[Answer]

한-EU FTA 제16조(원산지신고서 작성 조건)에 따라 원산지신고서는 독일 수출자가 작성해야 하며 전체가격이 6,0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증수출자만 발행할 수 있음 <2012.7.>

[Why]

원산지신고서는 인증수출자(전체가격 6,000유로 초과) 또는 EU 국내 법령에 따른 수출자가 원산지 물품 수출과 관련된 상업서류에 작성 가능

[Q71]

한-아세안 FTA 관련 제3국 무역시 원산지증명서상(AK Form)에 기재되어야 하는 수출자, FOB 가격(9번란)은?

[Answer]

한-아세안 FTA 적용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 아세안회원국으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는 제3국에서 송장이 발행되는 경우에도 우리나라 수출자의 수출가격(FOB 기준)이 기재되어야 함 <2012.7.>

[Why]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는 한-아세안 FTA 부록1의 “원산지 규정을 위한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3에 따른 [별지 제6호의5 서식]의 원산지 증명서의 서식 기재요령에 따라 작성되어야 함

[Q72]

- 이탈리아 도매업체로부터 의류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독일에 있는 배송대행업체를 이용하여 물품을 받아도 한-EU FTA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 또한 인보이스에 상품별로 생산지가 적혀있는 경우 이를 원산지 증명서로 사용이 가능한지?

[Answer]

- 한-EU FTA 제13조(직접운송)요건을 충족하므로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바, 송품장에 원산지신고문안과 수출자의 서명이 있다면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로 인정 가능
- 또한, 여러나라에서 생산된 제품들이 함께 기재되어 있는 송품장도 상품별로 원산지가 구분 기재된 경우에는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로 인정될 수 있음 <2012.6.>

[Why]

- 한-EU FTA 특혜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동 협정 제13조(직접운송)에 따라 단일 탁송화물이 EU역내에서 우리나라로 직접 운송되고
- 제16조(원산지 신고서 작성조건)에 맞게 작성된 원산지신고서가 제출되어야 하며 수출금액이 6,0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인증수출자만이 협정에서정한 원산지신고서 작성 가능

[Q73-1]

한-미 FTA에서 원산지증명서 포괄증명기간이 협정발표일인 2012년 3월 15일 이전에 설정된 경우, 물품선적일이 3월 15일 이전이고 신고일이 3월 15일 이후라면 적용 가능한지?

[Answer]

포괄원산지증명서의 증명기간 시작일이 협정발효일 이전인 경우에도 유효하나 포괄증명기간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FTA특례법 시행규칙 제16조 제5항에 따라 보정대상에 해당

[Why]

한-미 FTA 협정에서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시기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Q73-2]

C/O에 해당 물품이 한-미 FTA 적용물품이라는 명시적 문구가 없으나 수입자가 한국회사로 명기되어 한국으로 수출되는 물품임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원산지 증명서는 유효한지?

[Q73-3]

C/O에 해당물품이 한-미FTA 적용물품이라는 명시적 문구가 없고, 수입자도 특정되지 않은 경우, 해당 원산지증명서는 유효한지?

[Q73-4]

C/O에서 협정 6.15조(특혜관세 대우 신청)의 8가지 항목을 모두 확인할 수 있으나 해당물품이 한-미 FTA 적용물품이라는 명시적 문구가 없으며 NAFTA 서식을 사용한 경우, 해당 원산지증명서는 유효한지?

[Q73-5]

C/O에 PREFERENCE CRITERIA “A“, “NE“ 등 타 FTA에서 사용하는 문구가 들어있는 경우 해당 원산지증명서는 유효한지?

[Answer]

- 한-미 FTA는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다른 협정의 서식을 사용하여 원산지증명을 할 수 있으나
- 증명인의 성명, 연락처, 원산지 상품임을 증명하는 정보(표현) 등 8가지 필수기재 항목이 기재되어야 함

[Why]

원산지증명서 내에 협정에서 정한 8가지 필수기재 항목(상품이 한-미 FTA에 따른 원산지 상품임을 증명하는 정보 포함)이 기재된 원산지증명서만 유효

[Q73-6]

C/O에 증명인의 연락처나 서명이 없으나 수출자가 기재되어 있고 수출자의 DUNS NO 등이 병기되어 있어 증명인의 신용도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원산지 증명서는 유효한지?

[Answer]

증명인의 성명, 연락처는 필수 기재사항임

[Why]

수출자의 DUNS NO(수출자의 신용도평가 번호) 등은 원산지증명과 관련하여 적절한 정보사항으로 볼 수 없음

[Q73-7]

원산지 물품과 비원산지 물품이 하나의 C/O에 혼재되어 작성된 경우 해당 원산지 증명서는 유효한지?

[Answer]

원산지 제품과 비원산지 제품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어 확인 가능하면 해당 원산지 증명서는 유효함 <2012.8.>

[Q74]

원산지신고문안의 원산지 표기를 “EU“의 형용사형인 ” European“으로 기재한 경우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되는 지 여부

[Answer]

원산지표기가 당사국의 형용사형으로 표기된 경우에도 동 FTA에 따른 원산지제품인 것을 확인할 수 있을 때에는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로 인정 <2012.8.>

[Why]

한-EU FTA 원산지신고문안 확인업무 처리지침(‘11.9.21)에 따라 당사국의 형용사 표기도 인정

[Q75]

한-아세안 FTA에서 특정공정을 수행한 경우 C/O에 원산지 결정기준을 ‘CTC+SP’로 표시한 경우 인정 여부

[Answer]

‘CTC+SP’ 라는 표기는 인정될 수 없음 <2011.6>

[Why]

협정은 부속서3 부록1(원산지 규정을 위한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 “원산지 증명서 서식 및 작성요령(Overleaf Note)” 에 따라 “CTC+Specific Process”로 작성되어야 함

[Q76]

- 2011.7.31. 독일에서 냉동돼지고기를 수입하였고 2011.7.15.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었으나 2012.7. 14. 까 지 수입통관하지 못하여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의 재발급을 요청함
- 재발행한 원산지증명서로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재발행한 원산지증명서의 효력이 유효 하다면 재발행된 날로부터 다시 1년간 효력이 유효한지 여부

[Answer]

- 기 발행된 원산지증명서로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수 있음
- 다만, 「FTA 특례법 시행령」 부칙 제3조의 원산지증명서에 관한 특례에 해당하는 물품은 협정 발효일로 부터 12개월 이내에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해야 함 <2012.8.>

[Why]

- 「FTA 특례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지나 기 전에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경우
-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다음 날부터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날까지의 기간을 제외하여 계산

[관련규정]

- FTA 특례법 시행령 제10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 ⑤법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라 수입자가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당시에 갖추어야 할 원산지증명서는 수입신고일을 기준으로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제외하여 계산한다.
 1.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경우 :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다음 날부터 해당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날까지의 기간

[Q77]

수입신고시 란별로 각각 구분하여 아래와 같이 CKD(Complete Knock-Down) 상태로 신고수리된 물품에 대 하여 원산지증명서가 SKD(Semi Knock-Down) 상태로 증명된 경우 협정관세 적용 여부

송품장	수입신고	원산지증명서
UHF - 02 - 02060000	HS : 4016.99-0000 품명 : Rubber Blanking	3040 CKD KIT
UHF - 02 - 07221100		
UHF - 02 - 07231100		
UHF - 02 - 07240000		
UHF - 36 - 50340080	HS : 7318.15-2000	
UHF - 36 - 50340160	품명 : Steel Bolts	

[Answer]

-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2’에 따라 세관장에게 제시된 상태를 기준으로 완전하고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닌 경우에는 완전하고 완성된 물품으로 분류하는 것이므로
- 수입신고 수리된 내역이 이와 맞지 않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정정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품목분류된 수 입물품과 원산지증명서의 물품이 동일한 경우 협정관세 적용 가능 <2012.8.>

[Why]

- 수입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은 원산지 증명된 제품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원산지증명서의 물품과 수입신고 수리된 물품과 다른 물품인 경우에는 원산지결정기준이 다르므로 현재 상태로는 적용 불가
- 원산지 자격단위는 HS품목분류 원칙에 따라 분류되는 제품이며, CKD 또는 SKD의 물품은 세관장에게 제시된 상태를 기준으로 완전하고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닌 경우에는 완전하고 완성된 물품으로 분류
- 따라서 품목분류 원칙에 따라 수입신고서를 정정하여야 하며, 정정한 수입신고수리필증의 물품과 원산지증 명서의 물품과 동일한 경우 협정관세 적용 가능

[참고]

- 한-EU FTA 협정문 원산지 규정 제7조(원산지 자격 단위)
 - 1. 이 의정서의 규정의 적용을 위한 자격 단위는 HS의 상품분류 체계를 사용하여 분류를 결정하는 경우 기본 단위로 간주되는 제품이다. 따라서
 - 가. 물품의 집단 또는 집합으로 구성된 제품이 HS 상에서 단일의 호로 분류되어 있을 때, 그 전체가 자격의 단위를 구성한다.
-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2-가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해당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며, 미조립 또는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물품도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이 통칙에 따라 완전 또는 완성된 것으로 분류되는 물품을 포함한다)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Q78]

- 인보이스 상 Seller는 W.L. GORE&ASSOCIATES(HK)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질 인보이스 발행자는 W.L. GORE&ASSOCIATES, GmbH(독일)로서 해당 서류에 Consignor로 병기하여 원산지증명서 발행(발행 장소 및 서명권자의 서명 포함)
- 이러한 경우 상업서류 상 Seller로 제3국 수출자가 기재된 원산지증명서는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인?

생산자·수출자		제3국 수출자명이 기재된 송품장 및 원산지신고서 발행		수입자
W.L. GORE&ASSOCIATES, GmbH 독일 소재 인증수출자 송품장에 Consignor로 기재	→	대금결제처인 W.L. GORE&ASSOCIATES(HK)를 인보이스, P/L등 상업서류에 'Seller'로 기재하여 원산지신고서 발행	→	(주)고어코리아

[Answer]

독일 소재 인증수출자가 작성한 송품장의 'Seller'란에 EU 회원국이 아닌 제3국에 소재하는 자가 기재된 경우에도 상업서류에 의해 수출자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유효한 원산지 신고서로 인정 가능 <2012.9.>

[Why]

한-EU FTA에 따른 원산지신고서는 계약당사국에 소재하는 수출자(물품 가격이 6,0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인증수출자)가 발행

[Q79]

다음과 같은 거래방법과 원산지신고서 작성방법으로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여부

☐ 거래관계

①제조사(포르투갈)가 독일 소재 회사에 수출 → ②독일 소재 회사는 홍콩 소재 회사에 수출 → ③홍콩 소재 회사가 한국 수입자에게 수출

☐ 운송형태

독일소재 수출자가 한국 수입자에게 직접 운송하고 한국의 수입자를 수취인으로 하는 B/L이 발행됨

☐ 원산지신고서 작성

독일소재 수출자(인증수출자)가 포장명세서 또는 Delivery Note로 발급 예정

생산자/수출자		제3국 송장 발행		수입자
생산자 : 포르투갈 수출자 : 독일(인증수출자) → P/L 또는 Delivery Note에 원산지신고서 작성	→	3국 소재 수출자 : 홍콩 (인보이스 발행)	→	한국

[Answer]

계약당사국인 독일에 소재하는 인증수출자가 직접 우리나라 수입자에게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 수출물품을 운송하고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 가능 <2012.9.>

[Why]

계약당사국이 아닌 홍콩에 소재하는 자와 우리나라 수입자가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수출자는 독일 소재 기업이고, 인증수출자인 독일 소재 기업이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였으며, 직접운송 원칙 충족

[Q80]

미국과 EU에서 수입하는 승마용 말(HS Code : 01019.90)에 대하여 한-미/한-EU FTA 특혜적용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말 여권으로 원산지증명이 가능한지?

[Answer]

- 협정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FTA 특례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세관장에게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해야 하며
- 말 여권은 적정한 원산지증빙서류에 해당하지 않음 <2012.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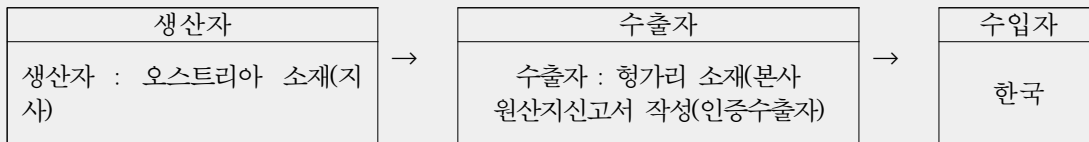
[Why]

협정관세 적용시 한-EU FTA 제15조(일반요건) 및 제16조(원산지신고서 작성조건), 한-미 FTA 제6.15조(특혜관세대우 신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작성된 원산지증빙서류만이 유효함

[Q81]

아래의 거래형태에 대한 한-EU FTA 협정세율 적용 가능 여부

- ① 제조자(오스트리아 소재, 지사)가 헝가리 소재 본사로 물품 발송 →
- ② 수출자(헝가리)가 인보이스에 원산지신고서 작성, 해당 물품을 한국 수입자에게 수출



[Answer]

인증수출자인 헝가리(본사)가 오스트리아(지사)에서 제조한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신고서 작성 가능 <2012.11.>

[Why]

- 원산지신고서는 한-EU FTA 제15조(일반요건) 및 제17조(인증수출자)에 따라 수출당사국의 법령에 적합한 수출자가 작성하는 것이므로
- 인증수출자가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고 수출물품이 협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협정관세 적용 가능

[Q82]

- EU에서 수입했던 6,000유로 이하의 원산지제품을 수리를 목적으로 재수출했다가 다시 재수입되는 경우
 - 수리비를 탁송화물 전체가격에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 및 인증받지 않은 수출자가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지
- ※ [예시] 물품가액 : 5,000유로, 수리비 : 1,500유로

[Answer]

수리 후 재수입하는 물품의 경우 수리비를 포함한 물품금액이 해당 탁송화물의 전체 가격인 바, 물품금액과 수리비를 합산한 금액이 6,000유로를 초과한 경우에는 인증수출자만 원산지신고서 작성 가능 <2012.12.>

[Why]

- 한-EU FTA 협정에서는 ‘탁송화물의 전체가격’이 6,000유로 이하인 경우 인증수출자가 아니어도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음
- 탁송화물이란 아래의 물품을 말함
 - ① 수출자가 수하인에게 일시에 송부한 물품
 - ②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에게 선적에 대한 단일의 운송서류(운송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송품장)에 의해 취급되는 물품
- 따라서 수리된 물품이 탁송화물이며, 물품이 수리되어 해당 물품의 가치가 증가된 것이므로 수리비는 탁송

화물의 전체가격에 포함되어야 함

[Q83]

- 아래의 거래형태에 대한 한-EU FTA 협정세율 적용 가능 여부
 - ①벨기에 업체(인증수출자)와 국내기업간에 수출계약 체결
 - ②벨기에 업체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에서 생산된 물품을 구매하여 한국으로 직접 운송
- 원산지신고서 작성
인증수출자인 벨기에 업체가 발행한 인보이스에 원산지신고문안을 기재하여 원산지 신고서 작성

[Answer]

유럽연합 역내에서 생산한 물품에 대해 역내의 다른 당사국에 소재하는 인증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는 한-EU FTA 15조의 원산지신고서 작성조건과 부합하므로 협정관세 적용 가능 <2013.1.>

[Why]

- 원산지신고서는 수출당사자의 법과 규정 및 협정에 충족하는 제품을 수출하는 수출자(인증수출자)만이 작성 가능
- 수출자와 생산자의 일치 여부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신고서 작성 조건*을 충족하면 가능
 - *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는 수출자는 관세당국의 요청에 따라 해당 제품의 원산지 지위와 협정의 다른 요건 충족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Q74]

- 한-미 FTA 원산지포괄증명서가 아래와 같이 기재된 경우,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물품의 범위 질의
- 포괄증명기간 : 2013.1.1. ~ 2013.12.31.
 - 작성일자 : 2012.11.15

[Answer]

미합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제6.15조의 규정에 따라 수출자가 발급한 포괄원산지증명서의 작성일이 증명기간의 시작일보다 앞서는 경우, 증명기간 안에 선적된 물품은 특혜관세 적용 가능 <2013.1.>

[Why]

- 한-미 FTA는 포괄증명방식을 ‘서면 또는 전자증명에 명시된 기간으로서 증명일로부터 12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이내에 동일 상품의 복수 선적’으로 규정
 - * 포괄증명기간이 12개월 이내이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됨
- 따라서 수출자 발행 포괄원산지증명서는 증명기간 안에 선적된 물품에 대해 특혜관세 적용 가능

[관련규정]

- | |
|---|
| ○ <FTA 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의 포괄원산지증명서의 정의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선적되거나 수입신고되는 동종동질의 물품에 대하여 발급 또는 작성일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최초의 원산지증명서를 반복하여 사용하는 것 |
|---|

[Q85]

한-EU FTA 원산지신고문안을 협정에서 정하는 문구와 다르게 기재된 경우(밑줄 친 부분),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되는지?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u>this product is of European Community preferential origin</u>
--

* 협정에서 정한 these products are를 단수품목에 대한 원산지신고서임을 감안하여 this product is로 기재

[Answer]

these products are 대신 this product is를 기재한 것은 협정 제24조의 경미한 오류로 판단되므로 유효한 원산지신고임 <2013.2.>

[Why]

한-EU FTA 협정 제24조(불일치 및 형식적 오류)는 오류가 원산지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의 정확성에 대하여 의심을 야기할 만한 정도가 아닌 경우 원산지신고서를 거부하지 않도록 규정

[관련규정]

- 한-EU FTA 제24조 불일치 및 형식적 오류
원산지증명에서 타자오류와 같은 명백한 형식적 오류는, 이러한 오류가 서류에 기재된 내용의 정확성에 대하여 의심을 야기할 만한 정도가 아닌 경우, 이 서류가 거부되는 원인이 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

[Q86]

한-미 FTA에서 상업서류에 작성된 원산지증명서와 원산지 결정기준을 기재한 원산지증명서의 인정 여부

[Answer]

송품장에 협정에서 정한 필수정보를 모두 기재하여 작성한 원산지증명서도 사용할 수 있으며, 또한 원산지결정기준과 같은 정보가 포함된 경우도 유효함 <2013.2.>

[Why]

- 한-미 FTA에서 원산지 증명서의 작성 양식은 별도로 정하지 않고 원산지증명서에 포함되어야 할 정보만 규정
- 원산지결정기준은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해야할 필수 정보는 아니나, 필수 정보만 기재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기재되어도 관계없음

[Q84]

국내 보세구역 반입 후 B/L을 양도하는 경우 APTA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적정한 C/O 기재방법?

* APTA 협정은 C/O상 수하인란에 송품장상의 수입자를 기재하도록 함

[Answ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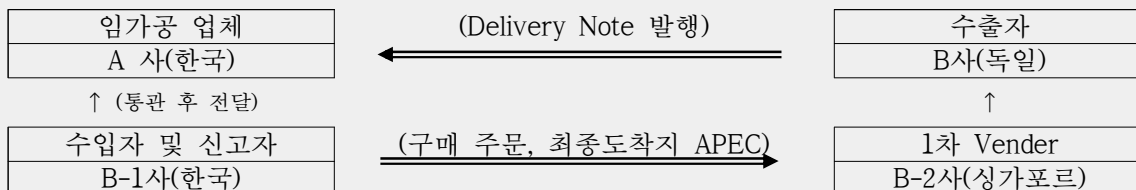
원산지증명서의 수하인과 선하증권 양도 전에 발행된 송품장의 수하인이 일치하는 경우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세율 적용 가능 <2013.2.>

[Why]

수입신고 전 선하증권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이 수입화주가 되며, 일반적으로 송품장상의 수하인이 변경되지 않고 수입신고서의 수입자만 변경됨

[Q87]

- 수출자가 수입자가 아닌 임가공업체에게 원산지 신고문구가 기재된 인도증서 (Delivery Note)를 발행할 경우 특혜 원산지증명서로의 효력여부 질의
 - B/L, Invoice 및 Delivery Note에 기재된 Purchase Order No, 품명, 수량 등으로 원산지 물품의 동일성 입증 가능
 - 수입자는 임가공업체에 외부로부터 원료를 구매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수입물품의 경우 내부 Process 간소화를 위해 수입통관 후 바로 부두에서 임가공업체에 전달



[Answer]

원산지 신고문구가 기재된 인도증서를 수입자가 아닌 최종도착지로 발행한 경우 선적서류 등을 통하여 물품의 동일성이 입증되면 특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 가능 <2013.3.>

[Why]

- 한-EU FTA 협정에서 원산지 신고서의 발행대상을 수입자로 한정된 명시적인 규정은 없음
- 인도증서를 구매주문서상의 최종도착지로 발행한 경우 인도증서와 B/L 송품장에 기재된 내용(수하인)간의 차이는 원산지증명을 무효화할 정도의 중대한 차이는 아님

[Q88]

- 한-미 FTA에서 종전 동일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와 해당 수입물품 카탈로그를 근거로 수입자(민원인)가 원산지를 증명하여 수리 전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 동 업체는 수출자(미국)가 수입물품 통관 전까지 원산지증명서를 보내 주지 않아 ‘수리 전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못하고 있고
- ‘수리 후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게 되면 세관에서 물품 상세내역과 카탈로그를 요청하고 있어 불편함

[Answer]

종전 수입물품의 원산지증명서와 물품의 카탈로그만을 근거로 수입자가 원산지를 증명할 수 없음 <2013.3.>

[Why]

- 한-미 FTA에서는 수입자도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수입자는 아래 사항에 대해 증명할 수 있어야 함
 - ① 원산지상품 규정에 충족한다는 것(제6.1조)
 - ② 통과 및 환적 규정에 충족한다는 것(제6.13조)
- 즉, 해당 수입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에 충족되게 생산되었는지를 입증할 수 있어야 수입자가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음
- 하지만 종전 동일물품의 원산지증명서와 카탈로그는 해당 수입물품의 원산지 입증자료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서류를 근거로 수입자가 원산지를 증명할 수 없음

[Q89]

- 기존의 한-EU FTA 협정세율을 적용하는 송장 양식과 일부 상이한 경우 한-EU FTA 적용 가능 여부
 - 첫 장에 이태리의 인증수출자(ARMONIA)가 수입자(INBETWEEN)에게 발행한 인보이스 첨부(신고문안, 인증번호, 원산지 기재)
 - 구성품목이 다양하여 수출자에게 물품을 공급한 업체(CHERVO)가 발행한 상세 인보이스 첨부(품명, 원산지, 단가, 수량 등 기재)

[Answer]

생산자가 발행한 상세 인보이스가 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신고서에 첨부된 경우에는 선적서류상의 품명, 규격, 수량 등을 통해 물품의 동일성이 입증되어야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함 <2013.3.>

[Why]

- 한-EU FTA 협정에서 원산지 신고는 해당 제품이 확인될 수 있도록 충분히 상세하게 그 제품을 기술하는 상업서류에 행하도록 규정
- 수출자는 구성품목이 다양하여 원산지 신고문안이 기재된 송장에 각각의 물품을 확인할 수 있도록 생산자가 수출자에게 발행한 상세 인보이스를 첨부한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수출자가 발생한 인보이스에는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등이 명확하지 않아 생산자가 발행한 인보이스상의 물품과 동일성 여부 확인 곤란
- 이 경우 구매주문서, 선적서류상의 품명, 규격, 수량 등을 통해 물품의 동일성이 입증되어야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

[Q98]

- 한-미 FTA에서 원산지증명서에 원산지 결정기준을 필수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는 지 여부
- 필수 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된 원산지증명서에 원산지 결정기준을 “B”로 표시한 경우 원산지증명서의 효력 인정 여부

[Answer]

- 한-미 FTA 협정 원산지증명서(권고서식)에서 원산지 결정기준은 필수 기재사항이 아니며
- 원산지 결정기준을 “B”로 표시한 경우 및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유효한 원산지 증명서로 인정 가능 <2013.4.>

[Why]

- 원산지 결정기준은 필수 기재사항이 아니므로 원산지 결정기준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협정에 규정된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한 물품이면 특혜관세 적용 가능
- 다만, 원산지 결정기준을 “B”로 표시한 경우 ” B“가 어떠한 원산지 결정기준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입증할 수 있어야 함

[Q90-1]

수입자가 원산지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C/O 사본 제출 스탬프를 날인하도록 한 규정이 강행규정으로서 위반시 처벌되는지 여부

<원산지증명서 사본제출 스탬프>

본 사본이 원본과 다를 경우 관세법 등 관련법령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고 있으며, 세관에서 요구시 원본을 제출하겠습니다.

수입자 ○○○ 서명

[Answer]

수입자가 원산지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원산지증명서 사본 제출 스탬프를 날인하도록 한 규정은 강행규정임

[Why]

- 원산지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나 수입자의 편의를 위해 사본제출 스탬프를 날인한 것을 조건으로 사본 제출도 인정
- 따라서 수입자의 스탬프 “날인”은 수입자가 원본을 제출하지 않고 사본으로 특혜관세 적용을 받기 위한 요건임

[Q90-2]

원산지증명서 사본을 보관하는 경우에도 사본 제출 스탬프를 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하는지 여부

[Answer]

- 수입자가 사본을 보관할 때 스탬프를 날인할 지 여부는 수입자가 판단할 사항이나 수입자는 반드시 원본을 확인한 후 사본을 보관하여야 함
- 아울러 세관에서 원산지증명서를 요청한 경우에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사본 제출시에는 원본과 일치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스탬프를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2013.4.12.>

[관련규정]

○ FTA 특례법 제10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

①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는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자는 신청할 때에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세관장이 요구하면 제출하여야 한다.

○ FTA특례고시 제30조(원산지증빙서류 제출요구)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자에게 원산지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수입신고서와 협정관세적용신청서의 원산지가 다른 물품
2. 품명과 원산지기준이 적절하지 않은 물품
3. 제3국 선적물품 등 직접운송 미충족 우려물품
4. 물품의 특성, 수출국의 산업구조 등을 고려하여 원산지증빙서류 제출대상 품목으로 관세청장이 지정한 물품
5. 그 밖에 원산지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② 세관장이 제1항에 따라 원산지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5

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완요구서를 수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서류제출 변경 요구
2. 원산지증빙서류 제출 요구

③ 수입자는 제2항에 따른 보완요구서를 통지받은 때에는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른 기간에 수입신고서에 원산지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류제출 방식으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자는 세관장이 특별한 사유로 원본을 요구한 경우가 아니면 원산지증명서 사본에 별표5의 원산지증명서 사본 제출 스탬프를 날인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원산지증명서 사본 제출을 허용한 협정의 경우에는 스탬프 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Q91]

우리나라에서 최빈국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미얀마로부터 수취하는 원산지증명서가 수출물품 선적 후 발급되고 있는 데 이 경우 선적 후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 여부 질의

[Answer]

최빈국 특혜용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당해 원산지증명서가 선적 후 발행되었다 하더라도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제출되고, 협정 및 법령에서 정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특혜관세 적용 가능 <2013.5.>

[Why]

- 우리나라 국내 법령에는 최빈국 특혜용 원산지증명서의 제출시기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발급시기에 대한 규정은 없음
- 따라서 최빈국 특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시기는 그 유효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아님

[관련규정]

- 선적 후 발급된 원산지증명서 처리 지침(공정무역과-2738, 2007.7.11)
원산지증명서가 선적 후에 발행되었다 하더라도 수입신고시 제출되고 협정 · 법령에서 정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면 특혜관세 적용 가능

[Q92]

원산지 신고문안을 아래와 같이 작성한 경우 원산지 신고서의 유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질의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sation NO FR 000690/0048 **issued by the Main Customs office of Brest - 29 229**)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EU preferential origin **community**

[Answer]

- 한-EU FTA 원산지신고문안 확인업무 처리지침에 의거 원산지표기가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으면, 다른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인정
- 따라서 인증번호와 원산지 표기가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으면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로 인정될 수 있음
- 다만, 원산지신고서 작성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원산지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음 <2013.5.>

[Why]

- 인증수출자 번호체계*가 맞게 기재되어 있고, 인증번호 뒤에 인증한 세관의 명칭을 기재한 원산지신고서는 유효성이 있음
* FR 000690/0048 : 국가(2), 세관부호(6), 인증번호(4)
- 또한, community라는 문구가 사용되었으나 제품의 원산지는 'EU'로 명확하게 표기되어 있으므로 원산지 신고서의 유효성이 인정됨

[Q93]

수출자로부터 아래와 같은 원산지신고 문안이 기재된 송장을 수취한 경우 인증수출자번호의 유효성 여부 질의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sation NO GB 16163/13①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UK' ② preferential origin

[Answer]

- 송장상의 원산지 신고문안은 협정문과 일치하며, 인증수출자 번호체계도 영국의 번호 체계와 일치하므로 협정관세 적용 가능
- 다만, 인증수출자번호의 유효성 여부는 FTA 특례법 제13조에 따른 ‘원산지에 관한 조사’ 업무가 수행된 이후에야 확정되는 것임 <2013.7.>

[Why]

- 영국 인증수출자 번호체계는 국가(2)/인증번호(5)/인증연도(2)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GB 16163/13은 이와 일치함
- 원산지가 영국인 제품에 대한 ‘UK’표기(협정문상 표기된 약어)는 유효한 원산지 표기로 인정됨

[Q94]

한-아세안 FTA 적용시 선적일로부터 3일 이후에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에 소급문구가 없는 경우 경미한 하자에 해당하여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Answ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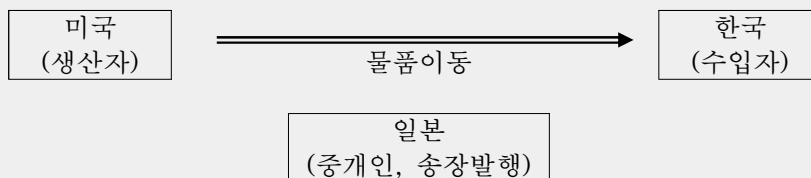
- 선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소급문구”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나
- 선적일로부터 4일 이후부터 1년까지는 원산지증명서에 반드시 “소급문구(Issued retroactively)”를 기재하고 발급받아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 특혜관세 적용 대상이 될 수 없음 <2010.11.>

[Why]

- 제10차 한-아세안 FTA 이행위원회(09.10)에서는 상기 “수출 직후(Soon thereafter)”의 의미를 선적일로부터 3일 이내로 해석하기로 함
- “FTA 원산지증명서 확인 및 특혜관세 적용지침(자유무역협정이행과-190호,07.11.2)에서 원산지증명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하자란 오타 등과 같은 단순한 오류로써 누구나 보아도 원산지 충족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는 제한적인 것으로 해석하여야 함

[Q95]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관련, 제3국 송장거래(미국-일본-한국)에서 수출당사국인 미국의 생산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한 경우



[Q95-1]

원산지증명서의 수출자가 일본의 업체로 기재되면 원산지증명서의 형식적 요건에 충족하는지

[Answer]

원산지증명서에 수출자를 제3국 업체로 기재한 경우 형식적 요건을 충족할 수 없음

[Why]

- 한-미 FTA 협정에 따른 원산지 증명서 ‘상품의 수출자(생산자와 다른 경우)’를 기재하도록 규정(제6.15.조 2항)
- 여기서 ‘수출자’가 반드시 ‘계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라고 명시한 규정은 없지만 ‘계약상대국의 수출자’를 의미
- 따라서 C/O의 ‘수출자’는 수출국인 ‘미국’의 업체가 기재되어야 하며, 상기 사례와 같이 생산자인 미국업체가 C/O를 발행하고, 동 업체가 수출한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아도 됨

[Q95-2]

상기 거래에서 미국에서 발행된 B/L에 선적자(Shipper)가 일본의 업체로 표시된 경우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한지

[Answer]

협정의 다른 모든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B/L의 ‘선적자’ 국적과 상관없이 협정관세 적용 가능 <2013.9.>

[Why]

- B/L의 ‘선적자(Shipper)’는 ‘화물을 선박으로 송부하는 자’를 의미하며 한-미 FTA에서는 ‘선적자’가 계약당사국의 수출업체이어야 하는지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즉, B/L의 ‘선적자’ 국적과 상관없이 물품을 수출하거나 생산한 자가 수출당사국 업체이고 그 업체가 원산지를 증명한 경우 협정관세 적용 가능

[Q96]

민원인은 ‘11.4월부터’ 13.3월까지 최빈국에서 앞담배(HS2401.20) 수입시 최빈국 특혜용 원산지증명서가 아닌 GSP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 최빈국 특혜관세 적용 받음

[Q96-1]

GSP양식(Form A)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것이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특혜관세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Q96-2]

수입물품에 대한 특혜관세 적용을 소급하여 배제가 가능한지 여부

[Answer]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규정」(대통령령)에 의하여 2000년 1월 이후 현재까지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최빈개발도상국 특혜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2013.9>

[Why]

- 특혜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시에 당해물품의 원산지 증명서를 세관장에게 제출(관세법시행령 § 236①)
- 최빈국 특혜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별지서식(국문)의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대통령령,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규정 § 5④)
- 관세양허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시에 해당 서식의 특혜용 원산지증명서(최빈국 C/O : 별지 제1호 서식, 영문*)를 제출하여야 함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 2-1①)
* 대통령령 별지서식(국문)을 고시에서 영문서식으로 제공
- 관련 법령에서 일관되게 최빈국 특혜용 C/O양식을 규정하고 있고, 민원업체도 일부 물품 수입시는 사용하였으며, 타 업체는 모두 해당 C/O 양식을 사용하므로 소급배제 가능

[Q96-3]

관세법 제233조에 따라 수출국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혜관세 적용 배제가 가능한지 여부

[Answer]

관세법에 따라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물품을 수입하는 자가 해당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상대국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확인없이도 편의관세를 배제할 수 있음 <2013.9.>

[Why]

관세법 제232조제2항에 의거 원산지증명서 확인요청 없이도 특혜관세 적용 배제 가능

[Q97]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의 품명, 수량과 송품장 품명, 수량이 다른 경우 수입물품에 협정관세 적용 여부

인보이스 작성 예시(규격 상세 부분)

STYLE	DESCRIPTION	COMPOSITION	HS CODE	수량	TOTAL
H122	WOMEN JACKET	98% WO 2%EA	6204.31	200	402 EA
H234	WOMEN JACKET	98% WO 2%EA	6204.31	120	
H345	WOMEN JACKET	98% WO 2%EA	6204.31	40	
H567	WOMEN JACKET	98% WO 2%EA	6204.31	42	
A123	WOMEN PANT	52% WO 48%PL	6204.61	100	400 EA
A456	WOMEN PANT	52% WO 48%PL	6204.61	250	
A789	WOMEN PANT	52% WO 48%PL	6204.61	50	
D123	WOMEN DRESS	94% VI 6%EA	6104.44	100	280 EA
D456	WOMEN DRESS	90% VI 10%EA	6104.44	180	

원산지 포괄증명을 위한 권고서식 작성 예시(규격 상세 부분)

Serial No (연번)	Description of Goods(품명 · 규 격)	Quantity & Unit (수량 및 단위)	HS No. (품목번호 HS 6단위)	Preference Criterion (원산지 결정 기 준)	Country of Origin (원산지 국가)
	Women's APPAREL	320 EA	6204.31		U.S.A
		300 EA	6204.61		U.S.A
		280 EA	6104.44		U.S.A

[Q97-1]

해당 원산지 증명서로 협정관세 적용이 불가하다면 송품장의 품명대로 원산지증명서의 품명을 맞춰야 하는지

[Answer]

- C/O상 품명이 HS품목분류표의 품명과 다른 경우에도 송품장의 물품과 동일 물품인지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상세하게 기재되는 경우 인정 가능
- 그러나 제시된 원산지증명서의 품명 및 수량 등의 정보는 수입물품과 일치하지 않아 동일물품으로 판단하기 곤란함

[Why]

- 원산지증명서의 품명은 원칙적으로 HS 품목분류표에 따른 ‘품명’을 기재해야 함
- C/O에 기재된 ‘품명’은 협정관세 적용 신청하는 수입물품과 수입신고 내역 및 수입신고시 첨부서류와의 동일물품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임
- 동 건은 송품장에는 Women Jacket, Women Dress, Women Pants로 상세히 표기되어 있으나, 원산지증명서에는 Women's Apparel로 광범위한 품명이 표기되어 있으며, 각각의 수량도 일치하지 않고 스타일 번호도 없어 동일물품으로 판단하기 곤란

[Q97-2]

송품장의 수량보다 원산지증명서의 수량이 적은 경우 원산지증명서의 수량만큼만 협정관세를 적용해야 하는지

[Answer]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협정관세는 원산지증명서의 수량만큼만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음

[Why]

협정관세는 법령에 따라 원산지 증명된 물품에 적용하는 것임

[Q97-3]

원산지포괄증명의 경우 수량 및 단위는 생략해도 되는 것인지

[Answer]

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다른 원산지증명의 경우 수량 및 단위는 필수항목은 아니며 협정관세 적용 신청물품과 동일상품인지 확인되는 경우에는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음 <2013.8.>

[Q98]

한-아세안 FTA에서 수출자가 원산지확인서를 제공받은 원재료와 제공받지 못한 원재료로 구성되는 미조립 완제품을 수출함에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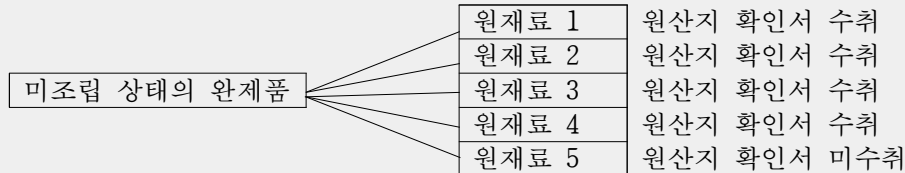
(질의1) 완제품을 구성하는 모든 원재료를 가공하지 않고, 미조립상태로 수출시 C/O 발급 여부

* 수출시 통칙 2-(가)에 따라 완성물품 세번으로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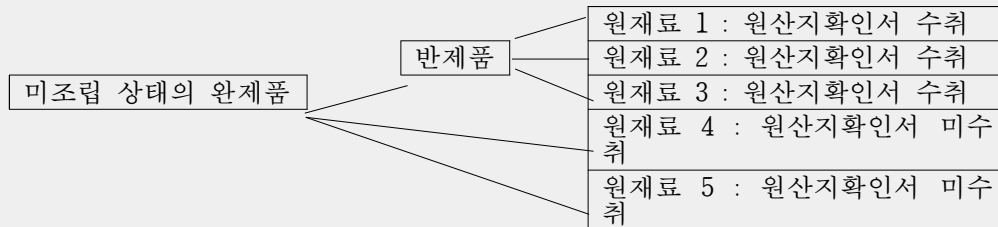
(질의2) 완제품을 구성하는 원재료 중 일부를 가공하여 반제품*을 생산 다른 원재료와 함께 미조립 상태로 수출시 C/O 발급 여부

* 원산지확인서를 제공받은 국내산 원재료로 가공(완제품과 HS부호 동일)

<사례 1>



<사례 2>



[Answer]

- 질의한 물품 모두 완성품을 만들기 위한 가공이 없이 원재료 상태로 구성되어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완성품의 원산지 결정기준 적용이 불가함
- 따라서, 한-아세안 FTA 제2조 규정에 의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음 <2013.10.>

[Why]

- 미조립 상태의 완제품은 각각의 원재료 또는 반제품별로 원산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임
- 그러나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가목에 따라 완성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 완성된 물품으로 분류
- 통칙 제2호가목에서 미조립상태로 제시되는 물품은 조립 작업만이 연관됨을 전제로하여 다음의 경우에 적용됨(CKD, SKD 거래)
 - ① 단순한 조립만으로 완제품이 되는 것
 - 나사·볼트·너트 등 간단한 고정장치로 조립되는 것
 - 리벳팅이나 용접에 의하여 고정 또는 조립되는 것
 - ② 조립방법의 복잡성은 고려하지 않음. 다만, 완성된 형태로 만들기 위해 더 이상의 작업을 거칠 필요가 없어야 함
- 질의1, 2 모두 완성품을 만들기 위한 가공이 거의 없이 원재료 상태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없고
 - 각각의 원재료 또는 반제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해야 하며, 완성품의 원산지 결정기준 적용 불가
- 한편, 완성된 물품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도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우선 당사국에서 ‘생산’이 이루어져야 함
 - 원산지확인서 미수취 원재료는 비원산지재료이며, 완제품이 미조립 상태로 수출되므로 국내에서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원산지 기준 충족 불가

[Q99]

상업거래 물품에 대해 FTA 원산지신고문안이 수기로 작성된 경우 아래와 같이 대소문자가 혼용되어 작성되어 있어도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한지

[Answer]

해당물품의 송품장, 포장명세서, 선하증권 등의 관련 무역서류로 원산지신고서의 물품이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 의정서 제24조에 따라 원산지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의 정확성에 의심을 야기할 만한 정도가 아닌 명백한 형식적 오류로 볼 수 있음 <2013.11>

[Why]

- 상기 지침상 ‘원산지 신고문안을 수기로 작성하면서 소문자로 작성한 경우에도 명백한 형식적 오류로 볼 수 있다고 예시로 들고 있음
- 동 건 질의는 수기로 작성하면서 대·소문자를 혼용하여 작성하였으나 신고문안이 협정상의 문안과 같으며, 또한 신고문안과 같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작성됨
- 따라서 동 원산지신고 문안이 작성된 상업서류를 근거로 하여 협정관세 적용 가능

[관련규정]

○ 한-EU FTA 여행자휴대품 원산지증명서 확인업무 처리에 관한 지침(2013.7.19.)

※ ‘명백한 형식적 오류’의 예시

- ① 단어의 철자를 잘못 작성한 경우
(예) ‘these products’를 ‘these produtcs’로 작성한 경우
- ② 협정문에서 정한 단어 이외의 단어를 사용한 경우
(예) ‘these products’를 ‘these goods’로 작성한 경우
‘these products are’를 ‘these product is’로 작성한 경우
- ③ 단어 순서 또는 항목 위치가 바뀌어 작성된 경우
(예) 인증수출자번호 제품의 원산지를 다른 위치에 기재한 경우
- ④ 협정에서 정하는 원산지 신고문안을 수기로 작성하면서 소문자로 작성하는 경우
- ⑤ 원산지신고문안을 설명하기 위한 설명문구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예) ‘(customs authorisation No)’, ‘(Place and Date)’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Q100-1]

유럽 본사(Parker)는 룩셈부르크에 소재하고 있으며 영국, 독일 등 EU역내 여러 곳에 제조공장을 보유

- 수입자는 각 공장과 무역계약을 체결하여 각 제조공장에서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형태
- 유럽 본사는 룩셈부르크 세관에서 단일 인증수출자로 인증을 받고 각 공장에서도 수출시 동 번호를 사용하도록 조치
- 상기의 경우 각 공장에서 단일 인증수출자 인증번호를 사용해도 FTA 협정관세 적용에 문제가 없는지

[Answer]

수출국에서 적법하게 인증수출자로 인증된 경우에는 수출자가 작성하는 원산지신고서를 근거로 해당 수입물품에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음

[Why]

- ☐ EU역내 각 제조공장에서 수출하면서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때 단일인증 수출자 인증번호를 사용할 수 있는지
 - 협정에서 인증수출자는 수출당사자의 관세당국에서 수출당사자의 법령 규정에 따라 인증하도록 규정
 - * 한-EU FTA 원산지규정 제17조(인증수출자)
 - 따라서 단일 인증수출자 인증번호를 사용할 수 있는 지는 수출국의 법령에 따라 결정
- ☐ 단일인증번호를 사용한 경우 협정관세 적용여부
 - 6천유로 초과물품의 경우 원산지신고서에 인증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협정관세 적용 불가
 - 하지만 인증수출자 번호는 수출국의 규정에 따라 부여되는 것이므로 인증번호가 올바른지는 수입국에서 알 수 없음
 - 따라서 단일인증번호를 기재한 경우에도 인증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면 협정관세 적용은 가능하나, 원산지 신고서의 진위여부와 정확성 등에 관한 사항은 ‘원산지에 관한 조사’ 업무가 수행될 때 확인되는 것임

[Q100-2]

유럽 본사의 회계업무는 스위스 지점에서 담당하여 상업송장은 스위스에서 발행되며, 포장명세서는 각 공장에서 발행

- EU역내 각 공장에서 발행하는 포장명세서에 원산지신고문안을 작성하는 경우 FTA협정관세 적용에 관

계가 없는지

[Answer]

제3국에서 상업송장이 발행되는 무역거래의 경우에는 수출국에서 해당 물품의 수출과 관련되어 발행된 상업서류인 포장명세서를 원산지신고서로 사용할 수 있음 <2013.11.>

[Why]

□ 제3국 송장발행의 경우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는 서류

- 협정에서 원산지신고서는 수출물품이 확인되는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 상에 수출자에 의해 작성되도록 규정

* 한-EU FTA 원산지규정 제15조(일반요건)

- 원산지 신고서는 수출당사자인 EU측의 수출자가 해당 물품의 수출거래와 관련된 상업서류에 작성해야 됨
- 따라서 제3국에서 송장이 발행되는 무역형태의 경우 EU측에서 해당 물품의 수출과 관련된 상업서류인 포장명세서를 원산지신고서로 사용할 수 있음

V. 원산지 결정 기준

[Q112]

다음과 같은 쟁점물품(CCTV 카메라)의 원산지결정과 관련하여 질의

구성요소		품목번호	제조	가격(\$)	비고(거래형태 등)
CCTV 카메라(①+②)		8525	한국삼성	37	- 최종 수출물품 - 수출가격 : EX-W - 최종수출자 : 한국 삼성
	①Main PCB Assy (③+④+⑤)	8529	한국A사	8	- A사가 ③~⑤조립후 삼성에 공급 - 임가공비 : \$8 [(재료비(\$4+\$2)+가공비(\$2))]
	③ IC	8542	한국B사	4	- B사 제조후 A사에 납품 - ③~④ : 한국산 확인
	④ Diode	8541			
	⑤ PCB	8534	일본	7	- 삼성이 수입하여 A사에 무상공급 - ⑤ : 일본산
	② Barrel Assy (⑥+⑦+⑧)	8529	한국K사	10	- K사가 ⑥~⑧ 조립후 삼성에 공급 - 임가공비 \$10
	⑥ 1ST Lens	9001	일본	3	- ⑥~⑧은 한국삼성이 일본에서 수입후 K사에 무상 공급 - ⑥~⑧ : 일본산
	⑦ 2ST Lens	9001		2	
	⑧ Cover	3926		4	
노무비+경비+이윤				3	

[Q112-1]

한-EU FTA 협정에 따라 상기 쟁점물품의 원산지 판정시 “Main PCB Assy(①)와 Barrel Assy(②)를 중간재로 볼 수 있는지?

[Q112-2]

질의 1의 결과가 중간재로 볼 경우 Roll-up 방식에 따라 원산지 판정시 ①과 ②의 원산지는?

[Answer]

- 한-EU FTA 협정에는 “중간재” 정의 규정은 없으나 원산지규정 Article 5.1 가호에서 Roll-up 원칙의 적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Main PCB Assy(①)”와 “Barrel Assy(②)”도 Roll-up 원칙 적용 가능
- “Main PCB Assy(①)”와 “Barrel Assy(②)”를 Roll-up 원칙을 적용하여 판단할 경우 “한국산 “ 지위 획득

[Why]

- 원산지규정 Article 5.1 가호에서 “비원산지 재료가 충분히 작업 또는 가공을 거쳐 원산지 제품이 되어, 그 제품이 그 이후 다른 제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경우, 그 제품에 포함된 비원산지재료는 고려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Roll-up원칙 적용 가능

[Q112-3]

한-EU FTA 협정에서 중간재 범위를 자가생산품만 한정하는지, 아니면 역내생산품까지도 포함되는지

[Answer]

한-EU FTA 협정은 역내생산품일 경우도 적용 가능 <2010.11.3.>

[Why]

한-EU FTA 협정은 Roll-up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 적용조건으로 자가생산품일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역내생산품일 경우도 적용 가능

[Q113]

「HS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매용 세트물품”으로 분류된 상품의 경우 원산지 결정기준은 어떻게 적용하여야 하는지 질의

[Answer]

1. 협정문에 세트물품 규정이 없는 경우(칠레, 싱가포르, 아세안, 인도)
「HS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분류된 세트물품 세번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을 적용하여 원산지 충족여부를 판단
2. 협정문에 세트물품 규정이 있는 경우(EFTA, EU, 미국, 페루)
세트구성품 각각의 세번에 해당하는 원산지 결정기준의 충족여부를 판단하며, 다만 특정 구성품이 비원산지 물품으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이 구성품의 가격이 총 세트물품 가격의 일정수준 이하라면 예외적으로 그 세트물품 전체를 원산지물품으로 간주 <2010.12.>

[Why]

<FTA 협정 세트물품 규정 비교>

구분	EFTA, EU, 터키	미국		페루	칠레, 아세안, 싱가포르, 인도
		일반품목	섬유류		
세트물품 예외 인정여부	○	○	○	○	×
비원산지물품 허용한도	공장도 가격의 15% 이하	FOB 가격의 15% 이하	FOB 가격의 10% 이하	FOB 가격의 15% 이하	×
근거규정	제9조 (EFTA, EU)	제6.9조	제4.2조 제8항	제3.9조	×

[Q114]

한-EU FTA 의류(61류)의 원산지 결정기준 중 “절단을 포함한 편직 및 제조”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EU FTA 제6206호 원산지 결정기준>

제61류	의류와 그 부속품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게질 편물 의 것에 한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2. 편성(니팅) 및 절단을 포함한 완성공정을 거친 생산(모양(폼)으로 절단되었거나 직접 모양(폼)을 갖춘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게질 편물의 두조각 이상을 맞추어 제조한 것) ※ 이 부의 주석 6과 주석7 참조
------	--	--

[Answer]

- “절단을 포함한 편직 및 제조”란 편직을 하여 형성을 위해 절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절단을 하여 제조(조립)하여야 하는 것이며
- 편직을 하여 바로 제조하는 경우에는 절단공정이 생략되므로 동 공정없이 제조하여야 한다는 의미임 <2011.5.>

[Why]

한-EU FTA 의류(61류)의 원산지결정기준 중 “절단을 포함한 편직 및 제조”란 “직물을 편직하여 제조하여야 한다”는 뜻임

[Q115]

- 한-아세안 FTA 협정 제6206호 원산지 결정기준과 관련하여 라벨(Label)이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여부 확인시 고려 대상인지 여부
- 한-인도 CEPA 의류제품(제61류~제63류)의 원산지 결정기준과 관련하여 라벨(Label)이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확인시 고려대상인지 여부

<한-아세안 FTA 제6206호 원산지 결정기준>

6206	여자 또는 소녀용의 브라우스 셔츠 및 셔츠 브라우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에 한정한다.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

<한-인도 CEPA 의류 원산지 결정기준>

61류	의류와 그 부속품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인 것만 해당한다)	비원산지 원사로부터 생산된 것
-----	--	------------------

[Answer]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로 수입하는 의류에 부착되는 라벨은 원산지상품을 결정하는 요인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2011.6.>

[Why]

우리나라로 수입하는 의류에 부착되는 라벨은 우리나라 법령(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생산된 의류제품의 안쪽에 작은 크기로 부착하는 것으로 원산지 상품을 결정하는 요인은 아님

[Q116]

ITEM : 남성용 모직 코트(HS Code 6201.11-0000)

- 한국에서 원부자재를 방글라데시로 선적하여 방글라데시에서 봉제한 후 다시 한국으로 재수입하는 경우
-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제5조제2항에 대하여 질의

[Q116-1]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물품은 방글라데시 산으로 인정되는지

[Q116-2]

일반적으로 원단은 원자재, 기타 단추·지퍼 등은 부자재로 구분하는데 규정에서 지정한 원재료는 원자재인 원단만 포함하는 건지, 기타 부자재까지 모두 포함하는 것인지

[Q116-3]

최빈국 C/O의 8번 Origin criterion란에 “B 5%“ or “B 10%” 등 1%-50% 미만의 비율의 C/O도 무관세 혜택 가능한가요?

[Answer]

- 원산지가 ‘한국산’ 인 원재료 가격은 부가가치 기준에 의한 가격결정시 역내산으로 인정(공여규정 제5조②)
- 사용 원재료가 모두 포함되므로 기타 부자재도 포함
- 방글라데시에서 수입하는 물품이 특혜 대상물품에 해당하며 최빈국 원산지증명서의 8번란이 B 60% 미만일 경우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함 <2011.9.>

[Why]

<최빈국 원산지 결정기준>

관세율	원산지 기준	증명발급
R	- 원산국 부가가치 40%	기관발급

* 부가가치율 계산시 수출국의 FOB 가격을 기준으로 함

* 수입원재료 가격에는 원산지가 미상인 물품을 포함(단, 우리나라 물품인 경우는 원재료 가격서 제외)

<원산지증명서상 원산지결정기준 기재방법>

A : 완전생산기준 적용물품

B : 부가가치기준 60% 적용물품

- B 뒤에는 타국산 원재료 비율을 기재 : 예) B 40%

[Q117]

회사에서는 회계상 재고관리 기법으로 선입선출법을 쓰고 있는데 FTA 원산지 판단을 위하여 총 평균법 등 기존 회계상의 재고관리기법과 다른 방법을 쓰는 경우, 문제가 되는지?

[Answer]

대체가능물품에 대한 재고관리기법으로 해당 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재고물품 관리법과 다른 방법을 쓰는 것도 가능 <2011.9>

[Why]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대체가능물품의 원산지결정을 위한 재고물품관리법은 대체가능물품의 원산지 결정을 위해 사용되는 것임

[Q118]

제5903호 제품 생산에 비원산지 재료인 50-63류 이외의 재료가 사용되는 경우, 한-EU FTA 주석 6.2를 적용할 수 있는지 질의

<한-EU FTA 제5903호 원산지 결정기준>

5903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제5902호에 해당하는 직물류를 제외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사로부터 생산된 것 2. 날염작업과 이에 수반하는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마무리 공정 (정련, 표백, 머어서라이징, 열처리, 기모, 캘린더링, 방축가공, 영구 마감처리, 데커타이징, 침투, 보수 및 별링과 같은 것을 말한다)을 한 것. 다만, 날염되지 아니한 비원산지 직물의 가격이 그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47.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
------	--	---

<주석 6.2>

주석 6.3을 저해함이 없이, 제50류에서 제63류까지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재료는, 그 재료가 직물을 포함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직물제품의 생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Answer]

제5903호 제품 생산에 비원산지 재료인 50류-63류 이외의 재료가 사용되는 경우, 한-EU FTA 주석 6.2 적용 가능 <2011.9.>

[Why]

한-EU FTA 부속서1 주석 3.5에 “목록의 규정이 제품이 특정 재료로부터 생산되어야 한다고 명시하는 경우, 그 조건은 고유의 특성 때문에 그 규정을 충족할 수 없는 다른 재료의 사용을 명백히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석 6.2 적용 가능

[Q119]

한-칠레 FTA에서 해당물품과 그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가 같은 호 또는 소호에 분류되는 경우 원산지 결정기준은 무엇인지

[Answer]

한-칠레 FTA 원산지규정 제4.2조 라목에 의거 세번변경기준의 적용을 배제하고,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함 <2011.10.>

[Why]

- 한-칠레 FTA는 재료와 제품의 세번이 동일한 물품과 미조립 또는 분해된 상태로 수입되었으나
- HS 통칙에 의하여 완성된 물품으로 분류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세번변경 기준의 적용을 배제하고 부가가치 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

[관련규정]

○ 한-칠레 FTA 제4.2조

1. 이 장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상품은 다음과 같은 경우 당사국의 영역이 원산지이다.

라. 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의 제61류 내지 제63류에 규정된 상품을 제외하고, 상품이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내에서만 생산되었으나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하나 이상이 다음의 이유로 인하여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1) 상품이 조립되지 않았거나 분해된 형태로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입되었으나 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의 일반해석규칙의 제2(a)조에 따라 조립상품으로 분류됨, 또는

(2) 상품의 호가 상품 자체 및 그 부품에 대해 규정하고 구체적으로 기술하며 더 이상 소호로 분류되지 않거나, 또는 상품의 소호가 상품 자체 및 그 부품에 대해 규정하고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음.

다만, 이러한 경우 제4.3조에 따라 산정된 상품의 역내가치포함 비율이 공제법이 사용된 경우 45퍼센트 이상이거나 직접법이 사용된 경우 30퍼센트 이상이고 이 장의 모든 다른 적용가능한 요건들을 충족시켜야 한다.

[Q120]

한-미 FTA 제6104.12호 원산지결정기준 해석에 있어서 5106호-5113호는 사용될 수 없는 것인지

6104	여자 또는 소녀용의 슈트·양상블·재킷·블레이저·드레스·스커트·치마바지·긴바지·가슴받이와 땀땀이 있는 바지·승마용바지 및 짧은 바지(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하며, 수영복을 제외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품목번호 5106부터 5113까지, 5204부터 5212까지, 5307부터 5308까지, 5310부터 5311까지, 5401부터 5402까지, 5403.20, 5403.33부터 5403.39까지, 5403.42부터 5408까지, 5508부터 5516까지 및 6001부터 6006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에 한정한다.
6104.12	면제의 것	1. 채약당사국에서 재단[또는 편성(knit to shape)]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것 2. 보이는 안감이 제61류의 주 1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것

[Answer]

- 5106-5113호는 양모사, 섬수모사, 조수모사 및 직물로서, 해당 재료는 원산지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는 뜻이므로
- 해당 재료와 관련하여서는 ‘Yarn Forward Rule’ 이 적용되는 것이며, “제외한다” 라고 규정된 것이 아닌 재료(예 : 50류의 견사 및 견직물)는 비원산지재료를 사용할 수 있음 <2011.12>

[Why]

- 제6104.12호 생산시 61류 이외의 류에서 6104.12호로 변경되어야 하며
- ‘제외한다’ 라고 규정된 비원산지재료를 사용한 것은 인정되지 않고(최소허용 기준은 적용 가능), 재단(또는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원산지제품으로 인정됨

[Q121]

국내에서 회수한 ‘폐고철 스크랩’ 과 ‘사내 자사 생성 고철’ 이 완전생산품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Answer]

국내에서 회수한 ‘폐고철 스크랩’ 과 ‘사내 자사 생성 고철’ 은 완전생산물품으로 인정될 수 있음 <2011.12.>

[Why]

- ‘역내국의 영역에서 수집된 물품으로서 수집되기 전의 목적으로는 사용이 끝난 물품으로서 원재료 회수용으로 적합한 물품
- 또는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수행된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및 부스러기로서 원재료 회수용으로 적합한 물품’ 으로 판단됨

[관련규정]

- 폐물·부스러기·고물·재생품
- ① FTA협정별로 규정방식 및 용어에 약간씩 차이가 있으나,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폐물, 부스러기 또는 원재료 회수용으로 수집된 중고품은 비원산지재료 사용 여부 등을 불문하고 공통적으로 완전생산품으로 인정
- ② EFTA·아세안·인도와와의 FTA에서는 원재료 회수용 수집물품의 경우 ‘복원 또는 수리될 수 없어야 한

다' 는 요건을 추가

③ 미국과의 FTA에서는 재생상품을 포함시키고 있음

* 재생상품 : 중고품을 개별 부품으로 해체하여 정상 작용할 수 있도록 세척·검사·테스트 등을 거쳐서 나온 부품 형태의 재료

[Q74]

협정상 불인정공정인 '단순절단'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원재료 : 역외산 코일(HS : 7222.50)

② 절단작업 : 절단기를 이용하여 일정한 폭으로 절단

리코일 작업 : 절단된 코일을 리코일

③ 완성제품 : 코일 (HS : 7226.92)

[Answer]

- '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코일)'의 제조공정은 원재료인 '폭이 600mm이상인 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HS : 7222.50)을 절단기를 이용해 절단하는 것으로
- 특별한 기술(일정한 폭으로 절단하여 리코일하는 기술)이 요구되는 기계를 사용하고 있는 바, 불인정공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2012.2.>

[Why]

한-EFTA, 한-아세안, 한-인도, 한-EU, 한-페루 FTA에서는 해당 물품을 생산하는 경우 특별한 기술이나 특별히 제작 또는 설치된 기계·장비 또는 기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일반적인 작업인 경우 불인정공정인 '단순한 작업'으로 규정

[Q123]

한-EU FTA에서 누적기준 적용시 유럽연합 전체를 하나의 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Answer]

한-EU FTA 제3조(원산지 누적) 적용시 '유럽연합' 전체를 하나의 당사자로 적용할 수 있음 <2011.10.>

[Why]

한-EU FTA 협정문 '서문'에 한쪽 당사자는 대한민국으로, 다른 쪽 당사자는 EU 27개국과 유럽 연합으로 구성

[Q124]

한-미 FTA에서 멕시코산 라임을 미국으로 수입하여 재포장한 후 한국으로 수입할 경우 원산지제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Answer]

멕시코 등 제3국산 라임을 미국에서 재포장하는 경우 미국산으로 원산지가 인정되지 않음 <2012.7.>

[Why]

멕시코는 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당사자가 아니며, 미국에서 단순히 물품을 재포장 하는 것은 원산지를 부여하기에 충분한 가공이 아니므로 미국산으로 원산지가 인정될 수 없음

[Q125]

양말 3켤레를 하나의 라벨로 패키징하여 수출하는 경우 양말 3켤레중 1켤레에 비역내산 원재료(원사)가 최소 허용기준(중량의 7% 이내)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원산지제품이 다음의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3가지 양말의 HS 번호는 동일하며, 송품장에는 3켤레에 대한 단가만 있고, 각각의 양말에 대한 개별적인 단가는 없음)

① 3켤레 전부가 원산지제품으로 인정받지 못함

② 1켤레만 원산지제품으로 인정받지 못함

③ 3켤레를 하나의 수출제품으로 보아 전체가 원산지제품임

[Answer]

역내산 원재료가 사용된 양말 2켤레는 원산지제품이며, 최소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비역내산 원재료가 사용된 양말 1켤레는 원산지제품으로 볼 수 없음 <2012.3.>

[Why]

- 한-미 FTA 제4.2조 제7항(최소허용기준)에서 최소허용기준은 ‘품목분류를 결정하는 구성요소의 생산에 사용된 섬유원료 또는 원사’의 총 중량이 구성요소의 총 중량의 7% 이내인 경우에는 원산지상품으로 간주
- 따라서 품목분류를 결정하는 생산은 ‘양말’로 보아야 함(양말 3결레를 하나의 단위로 볼 수 없음)

[Q126-1]

의류제품의 경우, 한-미 FTA의 ‘yarn forward rule’을 충족하려면 원산지확인서 및 국내제조확인서 중 어떤 서류를 거래단계별로 발급해야 하는지와 생산품이 원산지제품이 되기 위한 조건은?

원재료		생산품
면사(5205.44) : 국내제조	⇒	의류(HS 6105)
폴리에스터사(5509.22) : 중국산		
스판사(5402.44) : 국내제조		

<제6105호 원산지 결정기준>

6105	남자 또는 소년용의 셔츠(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품목번호 5106부터 5113까지, 5204부터 5212까지, 5307부터 5308까지, 5310부터 5311까지, 5401부터 5402까지, 5403.20, 5403.33부터 5403.39까지, 5403.42부터 5408까지, 5508부터 5516까지 및 6001부터 6006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계약당사국에서 재단[또는 편성(knit to shape)]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것에 한한다.
------	--	--

[Answ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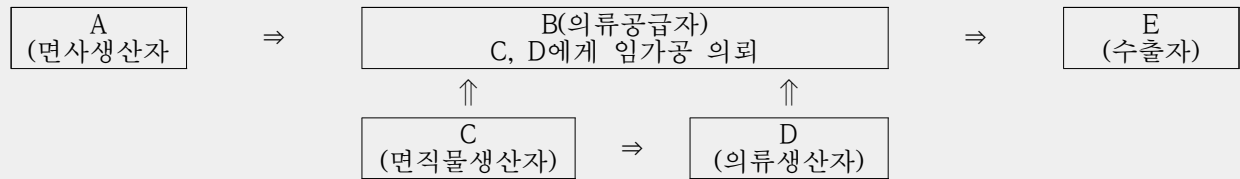
- 비원산지 재료를 국내의 다른 업체에서 생산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는 국내제조확인서를 사용
- 다만, 면사(HS 5205.44)와 폴리에스터사(HS 5509.22), 스판사(HS 5402.44)는 역내산 원재료를 사용하여야 함

[Why]

국내제조확인서로 원재료에 대한 국내 제조사실이 확인되고 역내에서 재단[또는 편성(knit to shape)]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결합공정이 수행되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할 수 있음

[Q126-2]

- 의류 공급자(B)가 면사 생산자(A)로부터 면사를 받아 면직물 생산자(C)에 제공하고 그 면직물을 의류생산자(D)에 납품한 후
- 의류생산자(D)가 의류공급자(B)에게 면제 의류 완성품을 납품하는 거래 형태의 경우, 국내제조확인서의 제공경로는?



[Answer]

국내제조확인서는 다음과 같은 경로로 제공

- ① 의류생산자(D)가 면사생산자(A)와 면직물생산자(C)에게 ‘국내제조확인서’를 공급받아 수출자에게 제공
- ② 최종수출자와 거래하는 의류공급자(B)가 면사생산자(A), 면직물생산자(C) 및 의류생산자(D)로부터 ‘국내제조확인서’를 공급받아 수출자에게 제공 <2012.3.>

[Why]

국내제조확인서는 재료 생산 혹은 공급자가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요청에 따라 재료의 국내 제조 사실을 확인하여 발행하는 서류임

[Q127]

한-EU FFTA 관련, 아래의 물품은 원산지 결정기준이 2가지인데, 그 중 ①번에 따라 원산지제품이 된 경우에도 동 협정 원산지규정 부속서 2-가(공통규정) 제5항에서 규정한 증빙서류를 수입국세관당국에 제출해야

하는 것인지?

○ HS 번호 : 5408.22, 5408.32 인조필라멘트사의 직물(염색한 것)

5408	재생 또는 반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제5405호의 재료로 직조한 직물을 포함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부터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가. 코이어사 나. 천연섬유 다. 인조스테이플 섬유(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한 것을 제외한다) 라.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마. 종이 ② 날염작업과 이에 수반하는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마무리 공정(정련, 표백, 머어서라이징, 열처리, 기모, 캘린더링, 방축가공, 영구마감처리, 데커타이징, 침투, 보수 및 별 링과 같은 것을 말한다)을 한 것. 다만, 날염되지 아니한 비원산지 직물의 가격이 그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47.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

<부속서 2-가(공통규정) 제5항>

원산지증명이 염색된 직물(제5408.22호 및 제5408.32호)에 대하여 작성되는 경우, 그 원산지증명을 염색되기 전 사용된 직물이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다는 증빙서류가 동반되어야 한다.

[Answer]

두 가지 원산지결정기준 중에서 ①번에 따라 원산지 제품이 된 경우에는 부속서 2-가(공통규정) 제5항에서 정하는 증빙서류가 필요하지 않음 <2012.3.>

[Why]

-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부속서 2-가* 공통규정 제5항에서 규정하는 것은 염색에 사용된 직물이 비원산지 재료인 경우 그 직물의 가격이 수출물품(염색직물) 공장도 가격의 47.5%이하 이어야 원산지 제품이 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임
- * 생산된 제품이 원산지 지위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비원산지 재료에 수행되도록 요구되는 작업 또는 가공 목록에 대한 부가규정
- 즉, 원산지결정기준 ①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염색되기 전의 직물이 원산지 재료이므로 그 직물의 가치가 수출물품 공장도 가격의 50%이하 이어야 하는 것은 아님

[Q128]

한-아세안 FTA 관련, 아래의 물품에 대해 세트물품 전체로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또는 개별기기 단위로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 물품명 : 4D PLEX System(바람, 번개, 향기 비눗방울 등 특수효과를 발생시켜 영화의 현실감을 제공하는 시스템)
○ 물품 구성
- 4D Chair : 바람, 진동 등을 느끼도록 움직이는 의자
- Fan : 영화에 맞춰 바람효과를 느끼게 하는 기기
- Strobe : 영화에 맞춰 번개효과를 느끼게 하는 기기
- Bubble Machine : 비눗방울을 분사하는 기기
- Fog Machine : 연기를 분사하는 기기
- Scent Machine : 화약냄새, 꽃냄새 등 향기를 분사하는 기기
- Control System : 4D Chair와 개별기기를 제어하는 기기

※ 동 물품에 대해 관세평가분류원은 여러 기기가 조합된 복합시스템으로 보아 전체물품에 대해 9508.90-000으로 품목번호 결정

[Answer]

- 4D PLEX System 전체를 하나의 물품으로 수출할 때에는 그 물품에 대해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는 것이며
- 개별 구성기기(4D Chair, Fan, Strobe 등)를 각각의 물품으로 수출할 때에는 각각의 물품에 대해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는 것임 <2012.3.>

[Why]

원산지증명서는 「FTA특례법」 제2조(정의)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2(원산지증명서)에 따라 수출입하는 당해물

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발급하는 것임

[Q129]

한-미 FTA 61류(편물제 의류)의 원산지결정 기준 중 세번변경기준에서 제외되는 재료(즉, 역내산 재료를 사용해야 하는 재료)가 최소허용수준으로 사용된 경우 원산지상품인지 여부

<제6104.41호 원산지 결정기준>

6104.4	드레스	
6104.41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품목번호 5106부터 5113까지, 5204부터 5212까지, 5307부터 5308까지, 5310부터 5311까지, 5401부터 5402까지, 5403.20, 5403.33부터 5403.39까지, 5403.42부터 5408까지, 5508부터 5516까지 및 6001부터 6006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체약당사국에서 재단[또는 편성(knit to shape)]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것에 한정한다.

[Answer]

세번변경기준에서 제외되는 재료가 최소허용수준으로 사용된 경우 원산지상품임 <2012.4.>

[Why]

- 최소허용수준은 부속서 4-가(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에서 정하는 PSR을 충족하지 못해도, 충족하지 못한 그 재료의 총 중량이 제품을 구성하는 요소의 총 중량 7% 이내인 경우 원산지상품으로 간주됨을 의미
- 즉, 상품(6104.41호) 생산에 비원산지 재료(제5204 또는 5401호)가 사용된 경우에는 사용된 비원산지재료의 중량이 제품구성요소 총 중량의 7% 이내이면 최소허용수준에 해당하므로 그 상품(드레스)은 원산지상품으로 판정됨

[Q130]

한-인도 CEPA 원산지 결정기준 관련 질의

[Q130-1]

완전생산품에 대한 누적적용 가능 여부

[Answer]

완전생산품의 의미는 어느 하나의 당사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이므로 누적기준은 적용되지 않음

[Why]

한-인도 CEPA 제3.3조(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물품)에 따라 수출당사국 영역 내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을 원산지 상품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누적조항 적용 불가

[Q130-2]

국산 원면(fabric)을 이용하여 인도에서 재단, 봉제 후 최종 의류 완제품을 생산하였을 경우 가공공정기준 적용 가능 여부

[Answer]

한-인도 CEPA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국내산 직물(fabric)을 사용하여 인도에서 재단, 봉제 공정을 수행한 의류는 역내산 제품으로 볼 수 있음 <2012.7.>

[Why]

제3.7조(누적조항)에서는 가공누적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는 국산 직물(fabric)을 사용하여 인도에서 재단, 봉제공정을 수행한 의류는 역내산 제품으로 볼 수 있음

[Q131]

한-EU FTA HS 7228.20호의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관련 질의

<제7228호 원산지 결정기준>

7228	기타 합금강의 기타의 봉, 기타 합금강의 형강, 합금강 또는 비합금강의 중공 드릴봉	제7206호, 제7207호, 제7218호 또는 제7224호의 잉곳, 기타 일차형상 또는 반제품으로부터 생산된 것
------	--	--

<질의업체 가공 프로세스>

※ 7228.20 제품의 제조가공 프로세스

일차재료(7202, 7205) → 제조가공 → 반제품(7206, 7207) → 제조가공 → 완제품(7228)

[Q131-1]

BOM상 투입원재료에 7201호~7205호의 원재료만 있는 경우 원산지 판정은?

[Answer]

- BOM상 원재료가 7201~7205호인 경우에도 해당물품의 제조공정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 반제품(HS 7206, 7207호)이 원산지 재료임을 확인할 수 있으면 최종생산품인 HS7228호의 물품은 원산지 상품으로 판정할 수 있음

[Why]

- 질의물품(HS 7228)의 품목별원산지기준은 비원산지재료를 사용하여 수출물품을 생산한 경우 원산지를 판정하는 기준임
- 즉, 비원산지 1차재료(7202, 7205호)를 사용하여 반제품인(7206, 7207호)을 생산한 경우, 그 반제품이 협정에서 정한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면 그 반제품은 원산지재료로 판정할 수 있음

[Q131-2]

제7228호의 물품을 생산할 때, 첨가제로 사용되는 물품(75류, 76류)에 대한 원산지는 최종제품의 원산지 판정시 고려해야 하는지?

[Answer]

협정 제10조(중립제)에 따라 HS 7228호의 물품을 생산할 때 첨가제로 사용되는 물품은 그 제품의 최종구성품에 투입되는 경우에는 원산지 결정시 고려해야 함 <2012.4.>

[Why]

한-EU FTA 원산지규정 제10조(중립제)에 따라 제품의 최종 구성품에 투입되기 위한 것이 아닌 물품은 원산지 결정시 고려할 필요가 없으나, 제품의 최종구성품에 투입되는 경우에는 원산지 결정시 고려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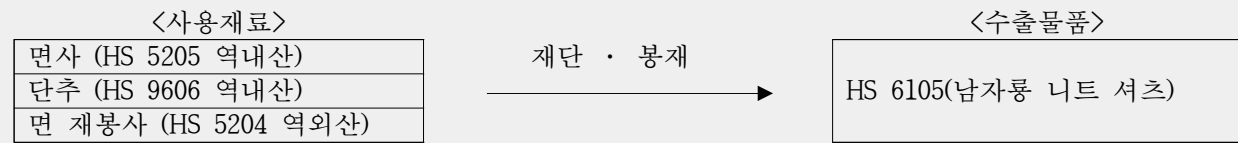
[관련규정]

- 한-EU FTA 부속서1 3.2
목록의 규정은 요구된 작업 또는 가공의 최소한의 양을 나타내며, 더 많은 작업 또는 가공의수행은 또한 원산지 지위를 부여한다. 반대로, 더 적은 작업 또는 가공의 수행은 원산지를 부여할 수 없다, 따라서 규정이 비원산지재료가 생산의 특정단계에서 사용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경우, 그러한 재료의 사용은 생산의 더 이전 단계에 허용되며, 그러한 재료의 사용은 더 늦은 단계에서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 한-EU FTA 제10조 중립제
제품이 원산지 제품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었을 수 있으나, 그 제품의 최종 구성품에 투입되지 아니하거나 투입되기 위한 것이 아닌 상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것은 필요하지 아니하다.
- 한-EU FTA 주해
6. 제10조의 목적상, 중립제는 예를 들어, 다음을 포함한다.
가. 에너지 및 연료
나. 설비 및 장비
다. 기계 및 도구, 그리고
라. 제품의 최종 구성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들어가도록 의도되지 아니하는 상품

[Q132]

한-미 FTA 관련, 아래의 경우 ‘면 재봉사’는 역내산 재료를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동 재료를 역외

산을 사용한 경우 한-미 FTA 원산지결정 ‘최소허용수준’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 면 재봉사가 수출물품 구성요소의 중량비율 1%만 사용됨
 <제6105호의 원산지 결정기준> [CC + 역내원재료사용기준 + 재단 · 봉제]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6105호 내지 제6106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5106부터 5113까지, 5204부터 5212까지, 5307부터 5308까지, 5310부터 5311까지, 5401부터 5402까지, 5403.20, 5403.33부터 5403.39까지, 5403.42부터 5408까지, 5508부터 5516까지 및 6001부터 6006까지의 것은 제외한다)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결합되어야 한다.

[Answer]

상품(HS 6105)를 생산할 때 사용된 재료 중에서 그 상품의 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재료의 중량이 그 상품의 품목분류를 결정하는 구성요소 총 중량의 7% 이내이면 ‘최소허용기준’에 해당하는 것인 바, 질문한 상품은 한-미 FTA에 따른 원산지 상품임 <2012.4.>

[Why]

- 협정 제4.2조 제7항(최소허용수준)은 부속서 4-가(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에서 정하는 PSR을 충족하지 못해도
- 충족하지 못한 그 재료의 총 중량이 제품을 구성하는 요소의 총 중량 7% 이내인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됨을 의미

[Q133]

한-미 FTA에서 제61류의 편물제 의류를 생산할 때, 5204호, 5401호의 역외산 재봉사를 사용한 경우 최소허용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생산하는 의류 총 중량의 7%를 초과하지 않음)

HS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6104.41 - 6104.4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6104.41호 내지 제6104.4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5106부터 5113까지, 5204부터 5212까지, 5307부터 5308까지, 5310부터 5311까지, 5401부터 5402까지, 5403.20, 5403.33부터 5403.39까지, 5403.42부터 5408까지, 5508부터 5516까지 및 6001부터 6006까지의 것은 제외한다)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결합되어야 한다.

[Answer]

- 다음의 상품을 생산할 때 비원산지재료인 재봉사(5204호 또는 5401호)가 사용된 경우에는 그 사용된 비원산지재료의 중량이 제품 구성요소 총 중량의 7% 이내이면 ‘최소허용기준’에 해당하는 것임
 - (HS 번호) 6104.41-6104.49, 6105-6106, 6109-6111, 6113-6117
- 따라서 이와 같이 생산된 상품은 동 FTA에서 정하는 원산지상품으로 판단됨 <2012.5.>

[Why]

- 협정 제4.2조 제7항(최소허용수준)은 부속서 4-가(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에서 정하는 PSR을 충족하지 못해도
- 충족하지 못한 그 재료의 총 중량이 제품을 구성하는 요소의 총 중량 7% 이내인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됨을 의미

[Q134]

한-미 FTA 품목별 원산지결정 기준 제7부(플라스틱 · 고무 제품)의 원산지 결정기준관련 질의

[Q134-1]

아래 ‘주1’ 과 ‘주2’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원산지 상품인지, 아니면 ‘주’의 기준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주2’의 기준을 충족하면 원산지 상품인지?

주1 : 제7부의 규칙 1 내지 규칙 5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이 부의 류 또는 호에 해당하는 상품은 그

러한 규칙에서 달리 명시된 것을 제외하고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된다.
 주2 : 주1에도 불구하고, 상품이 이 부의 원산지 기준에 명시된 적용가능한 세번변경기준 는 적용가능한 역내부가가치를 충족할 경우 원산지 상품이다

[Answer]

‘주2’의 내용은 ‘주1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개별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에서 정하는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한다는 의미

[Why]

- 제7부의 ‘주1’의 내용은 제7부의 규칙(화학반응, 혼합 및 배합, 정제, 입자크기의 변화, 이성체 분리)을 충족하는 공정이 수행된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한다는 의미
- 제7부의 ‘주2’ 내용은 ‘주1’에서 정한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도 HS 4단위 또는 6단위에서 정하는 PSR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한다는 의미
- 따라서 동 사항은 ‘주1’의 기준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주2’의 기준을 충족해도 원산지 상품임

[Q134-2]

한-미 FTA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HS 3907호의 ‘다만, ~한한다’라는 문장의 해석이

- ① 원재료를 칭하는 것인지, 완제품을 칭한다면 제3901호 내지 제3915호의 원재료를 꼭 사용해야 하는 것인지?
 - ② 완제품을 칭하는 것인지, 완제품을 칭한다면 구성하는 원재료의 원산지가 전체의 50% 이상이어야 하는지?
- <한-미 FTA 제3907호 원산지 결정기준>

3907	아세탈 수지·기타 폴리에테르와 에폭시 수지·폴리카보네이트·알키티수지·폴리아틸에스테르 및 기타 폴리에스테르(일차 제품의 것에 한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 3901호에서부터 제3915호 까지의 원산지 물품인 폴리머가 폴리머 전체 중량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	---	---

[Answer]

제3907호 물품을 생산할 때 재료로 구성중합체가 사용된 경우, ‘전체 구성 중합체의 중량에서 HS 3901-3915호 원산지 구성중합체의 중량이 50% 이상이어야 한다’는 뜻으로 판단됨 <2012.5.>

[Why]

상기 원산지결정 기준은 제품을 생산할 때 원재료로 구성중합체가 사용되지 않은 경우와 사용된 경우로 구분할 수 있음

- (1) 구성중합체가 사용되지 않은 경우 : 세번변경기준(CTH)만 적용
- (2) 구성중합체가 사용된 경우 : 아래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 가. 세번변경기준(CTH)
 - 나. 사용된 전체 구성중합체의 중량에서 HS 3901-3915호의 원산지 구성중합체의 중량이 50% 이상이어야 함

[Q135]

- 한-인도 CEPA에서 여성용 드레스(Women's Dress, 6204.52) 및 여성용 블라우스 (Women's Blouse, 6206.42)를 구성하는 원재료 중
- 라벨 이외의 모든 재료가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였을 때, 동 재료에 최소허용 기준을 적용하여 원산지 제품으로 판단 가능한지?

<한-인도 CEPA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6101-6310)>

비원산지 원사로부터 생산된 것(Manufacture from Non-Originating Yarn)

[Answer]

- 라벨을 제외한 다른 재료들이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원산지 제품으로 볼 수 있음
- 최소허용기준은 원산지 결정기준이 “비원산지 원사로부터 생산된 것”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2012.6.>

[Why]

- 라벨은 여성용 드레스(Women's Dress, 6204.52) 및 여성용 블라우스(Women's Blouse, 6206.42)의 품목분류

구성요소에 해당하지 않음

- 협정 제3.8조 최소허용수준은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비원산지 재료가 있는 경우에 적용됨

[Q136]

한-EU FTA 적용 시, 주석 6.1과 관련하여 안감과 심감은 100% 한국산만을 사용해야 의류(61류)의 원산지결정기준을 만족할 수 있는 것인지?

<한-EU FTA 협정문 부속서1 주석 6.1>

목록에서 이 주석에 대한 참조가 있는 경우, 해당 완성된 제품에 대하여 목록의 제3열에 규정된 규정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방직재료(안감과 심감은 제외)가 사용될 수 있다. 다만, 그 방직재료가 그 제품의 호와 다른 호에 분류되고, 그 방직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8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Answer]

- 안감과 심감의 제조에 반드시 역내산 방직재료만 사용하라는 의미가 아니며
- 비원산지재료가 사용된 안감과 심감은 협정의 부속서2에 규정된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한 경우는 역내산 재료로 인정됨 <2012.7>

[Why]

- 한-EU FTA 주석6.1은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방직재료라고 하더라도 완성된 제품의 호와 다른 호에 분류되고, 그 가치가 제품의 공장도 가격 8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될 수 있다는 원산지결정기준의 예외를 규정한 것이나, 안감과 심감에는 적용되지 않음
- 따라서 안감과 심감에 비원산지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지 않음

[Q137]

한-미 FTA의 혼합물 규정에 따라 수지(resin)에 착색제를 첨가하는 경우 한-미 FTA특혜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Answer]

- 수지(resin)에 착색제를 첨가한 경우에는 한-미 FTA 협정 제7부 규칙2(혼합 및 배합 원산지)에 따라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 한국측은 한-미 FTA 협정 제7부 규칙3(혼합 및 배합 원산지)에 따른 혼합물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정하고 있지 않음 <2012.7>

[Why]

- 수지(resin)에 착색제를 첨가한 것은 혼합 및 배합의 결과로 상품의 원래의 목적 또는 용도와는 다른 중요한 물리적·화학적 특성을 가지는 상품이 생산되었다고 볼 수 없음

[관련규정]

○ 한-미 FTA 제7부

주 1 :

이 부에 해당하는 물품이 다음의 주3부터 주7까지 중 어느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한다. 다만, 그 기준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주 5 : 혼합 및 배합

품목번호 제39류 및 제40류에 해당하는 물품은 채약당사국의 영역에서 미리 결정된 명세서에 따라 의도되고 비율이 관리되어 재료를 혼합·배합(분산을 포함한다)한 경우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다만, 그 혼합·배합결과 그 물품의 목적과 용도와 관련하여 투입 재료와는 다른 중요한 물리·화학적 특성을 지닌 것에 한정한다.

[Q138]

한-미 FTA HS 2009.90호의 원산지결정 기준에 대한 해석

- ① 주스 성분이 농축액인 경우 농축액 기준인지, 원액기준인지
- ② 상품의 부피를 기준으로 할 때 원재료 기준인지, 물이 첨가된 상품 기준인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제20류 내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2009.90호에 해당하는 그 밖의 상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하나의 비당사국의 단일 주스성분 또는 주스 성분들이 원액으로 그 상품의 부피를 기준으로 60퍼센트 이하로 구성된 것에 한한다.

[Answer]

제2009.90호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주스성분이 ‘농축액’인 경우에는 농축하기 전의 ‘원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부피는 재료가 아닌 상품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2012.7.>

[Why]

- 제2009.90호의 원산지 결정기준은 ‘혼합주스’를 생산할 때 다른 류로부터의 세번변경이 없어도 20류 내의 다른 소호로부터의 세번변경이 있으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한다는 뜻임
- 다만, 역외산 주스성분(들)의 부피가 원액기준으로 상품(Good) 부피의 60% 이하이어야 한다는 의미임
- ‘농축액(Concentrate)’은 주스용액에서 수분을 제거한 것으로 원액의 부피보다 현저하게 적어지게 됨
- 동 협정에서도 ‘농축주수’인 경우 ‘농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바, 동 기준에서 ‘원액기준’으로 정한 것을 ‘농축액’ 기준으로 볼 수 없음. 따라서 재료가 ‘농축액’인 경우 농축하기 전의 ‘원액’ 기준임
- 또한, ‘재료(material)의 부피’로 규정되지 않고 ‘상품(Good)의 부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품인 혼합 주스의 부피가 기준으로 해석됨

[참고]

- 한-미 FTA 제2106호(농축주스)의 원산지 결정기준
A change to concentrated juice of any single fruit or vegetable fortified with vitamins or minerals of subheading 2106.90 from any other chapter, except from heading 08.05 or 20.09 or subheading 2202.90

[Q139-1]

한-EU FTA에서 소매용 포장용기도 원산지 판정시 고려해야 하는지?

[Answer]

소매용 포장용기가 관세통계통합분류표 통칙 제5호에 따라 내용물과 함께 분류되는 경우에는 상품의 원산지 결정에 포함되며, 상품이 원산지 물품인 경우 소매용 포장용기도 원산지 물품으로 간주됨

[Why]

내용물품의 원산지기준이 세번변경기준인 경우에는 소매용 포장용기를 제외하고 원산지를 결정하며, 부가가치 기준인 경우에는 소매용 포장용기도 각각 원산지를 확인하여 내용물의 원산지를 결정

[Q139-2]

FTA 특레고시의 원산지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를 한-칠레 FTA 원산지 신고서로 대체 가능한지?

[Answer]

원산지신고서는 「한-칠레 FTA 통일규칙」 제3조에 따른 서식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원산지 확인서로 대체 불가 <2012.7.>

[Why]

한-칠레 FTA 협정 적용을 받기 위한 수출자의 원산지증명서는 원산지신고서(통보서)를 근거로 작성(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되어야 하며, 원산지신고서(통보서)는 통일규칙 제3조(원산지신고서)에 따라 작성되어야 함

[Q140]

아래의 물품을 생산할 때 한-미 FTA PSR ‘제20류 주’ 적용과 관련하여 원재료 ‘팔’은 묶아서 조제

저장처리한 것은 아님(주요 공정은 ‘찜(steam)’ 것임). 이 경우에도 ‘팥’이 역내산 이어야 하는지

- 제품 : 농산물 통조림(팥 통조림) <HS Code> 2005.51
- 용도 : 팥빙수용 및 간식용
- 성분 및 배합비율 : 팥 : 50%, 설탕 : 30%, 밤 : 5.89%, 물엿 : 3%, 전분 : 0.08%, 정제식염 : 0.02%, 구연산 : 0.01%

<한-미 FTA 제20류 주>

냉동하거나, 물·간수 또는 천연 주스에 넣어 포장(캔포장 포함)하거나, 또는 건조상태 또는 기름에 넣어 볶아서 조제 또는 저장 처리한(냉동, 포장 또는 볶음의 부수적인 공정을 포함한다) 제2001호 내지 제2008호에 해당하는 과일·견과류 및 채소 조제품은 신선 상품이 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인 경우에만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된다.

[Answer]

‘제20류 주’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제 또는 저장 처리한 물품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용되는 신선상품이 영역 내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이어야 하는 것은 아님 <2012.7.>

[Why]

- 상기 제품은 HS 2005.51호 물품이며, 원재료를 증기에 찌서(steam) 생산하는 것이며, 생산된 제품인 통조림을 살균(가열살균)한 다음 상온으로 열을 식히는 것으로 냉동한 제품도 아님
- 따라서 볶아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것이 아니며, 냉동한 제품도 아니므로 사용되는 신선상품이 영역 내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이어야 하는 것은 아님

[Q141]

수출물품(프린터)의 제조에 필요한 부품 전체를 역외산(중국산) 부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조립공정 등을 수행한 후 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수출물품이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부품 내역>

수입물품(역외산)		국내 공장	수출 물품
품 목	HS 번호		
Cartridge-Toner	8443.99-1000	- A'ssy 조립 - Printer Test 등 - 안전규격 인증	Printer (HS : 8443.31)
HDD-Unit	8471.70-2020		
ELA Unit-Main	8443.99-1000		
MEA-Cover Front	8443.99-1000		
.....			
.....		조립, 시험 공정	
.....			
총 490 Unit			

<제8443.31호 원산지 결정기준>

1. 상품군 외의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제8443.60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에서 제8443.11호 내지 제8443.5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관계없이 제8443.60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43.11호 내지 제8443.5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아래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Answer]

생산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가 비역내산 재료인 경우에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한-미 FTA에 따른 원산지 상품임 <2012.8.>

[Why]

- 한-미 FTA에서 해당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은 소호변경기준(CTSH)
 - * 제외되는 HS번호 : 8443.11호 ~ 8443.59호와 8443.60호
- 따라서 제품생산에 필요한 부품 전체가 ‘역외산’이라도 제외되는 HS번호 이외의 HS번호에서 수출물품의

HS번호로 변경되었으면 원산지 제품임

[Q142]

한-미 FTA 제3901호 내지 제3915호 원산지 결정기준 문의

[Q142-1]

총 폴리머 함량이 중량의 50%라는 의미의 해석

- ①역내산 폴리머 함량이 완제품 폴리머 중 중량의 50%
 - ②원료로 쓰이는 폴리머 함량 내 역내산 폴리머가 전체 원료 폴리머 중량의 50%
- <제3901호 ~ 제3915호 원산지 결정기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3901호에서부터 제3915호 까지의 원산지 물품인 폴리머가 폴리머 전체 중량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Answer]

원료로 사용되는 전체 폴리머 중에서 제3901호 내지 제3915호의 역내산 원산지 폴리머 함량이 50% 이상을 구성하여야 한다는 의미임

[Why]

- “다만. 제3901호 내지 제3915호에 해당하는 원산지 폴리머 중량이 전체 폴리머의 50%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라는 의미는
- 원료로 사용되는 전체 폴리머 중에서 제3901호 내지 제3915호의 역내산 원산지 폴리머 함량이 50% 이상을 구성하여야 한다는 의미임

[Q142-2]

아래의 예와 같이 미국산 폴리머를 사용할 겨우, 역내산으로 누적 인정되어 폴리머 50% 이상 사용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Product	Quantity		HS Code	Remarks
Finish Products	1,000	kg	3908.10-1000	
Raw Material 1	350	kg	3908.10-1000	Korean origin
Raw Material 2	200	kg	3903.90-9000	USA origin with C/O
Raw Material 3	400	kg	70	
Raw Material 4	50	kg	34	

[Answer]

역내산 폴리머만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한 경우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2012.9.>

[Why]

원재료로 사용된 폴리머 중 역내산(미국산과 국내산) 폴리머가 100% 사용되었으므로 폴리머 50% 이상 사용기준에 부합함

[Q143]

하나의 기능단위기계를 운송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분할 운송하는 경우 한-EU 및 한-미 FTA 협정관세 적용 여부

- (1) 동일선박 / 동일항차의 여러 B/L로 수입하는 경우
- (2) 다른선박 / 다른항차의 여러 B/L로 수입하는 경우

[Answer]

- [한-EU FTA] 동 협정 ‘제20조(분할수입)’ 에 따라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에 대한 원산지신고서에 근거하여 협정관세 적용 가능
- [한-미 FTA] 동 협정에 따른 원산지제품은 아래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협정관세 적용 가능
 - ① 수출국에서 생산되어 선적한 원산지 제품으로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2’에 따른 완성물품의 주요특성을 가진 미완성제품일 것
 - ② 포장·운송 등의 편의를 위해 분할해서 수입하는 물품일 것

- ③ 우리나라에서 단순조립 이상의 추가 가공이 발생하지 않을 것
- ④ 관세법 제147조(적용법령)에서 정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이 있을 것

[Why]

(1) 한-EU FTA

- ‘기능단위기계’의 ‘분할선적’ 허용 여부
 - 협정 원산지의정서 제20조(분할수입)에서 HS 제16부 물품의 분할수입을 허용
 - ‘기능단위기계’는 HS 제84류·제85류 물품으로 이에 해당
- ‘분할선적’ 물품의 협정관세 적용여부
 - 협정 원산지규정 제20조(분할수입)는 품목분류 통칙의 의미 내에서 적용
 - 분할 운송물품이 수입국 세관당국에 제시될 때 완전(완성)된 물품의 원산지 증명이 있으면 협정관세 적용 가능

(2) 한-미 FTA

- ‘분할선적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이 허용되는지 여부
 - 협정상 원산지증명은 ‘단일선적’ 또는 ‘복수선적’ 물품에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 규정에서 사용된 ‘단일선적’은 ‘복수선적’과 대비되어 사용된 것으로 분할선적을 금지하는 것은 아님
 - 즉, ‘분할선적물품’에 대해 원산지증명을 금지하고 있지 않으므로 허용되는 것으로 판단
 - 따라서 ‘분할선적물품’의 통관에 관한 사항은 국내법령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 타당
- ‘분할선적된 기능단위기계’의 협정관세 적용 여부
 - 기능단위기계는 품목분류 원칙에 의해 HS 제16부로 분류되는 물품으로 운송상의 이유로 분할선적된 경우
 - 관세법 제17조(적용법령)에 따른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이 있으므로 협정관세 적용 가능

[참고]

- 분할선적 물품의 정의
수출국의 선적시점에서 이미 완성품의 특성을 갖추었으나 거대중량 등의 사유로 하나의 운송수단에 적재할 수 없는 물품을 2개 이상의 운송수단 또는 수회에 걸쳐서 분할하여 선적하는 물품

[Q144]

수출물품과 원재료의 원산지결정기준이 아래와 같은 경우 한-EU, 한-미 FTA 협정의 중간재(또는 자가생산자료)로 지정하여 원산지제품으로 판정할 수 있는지 여부

※ 한-칠레 FTA에서는 부가가치기준에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상기 협정에서는 언급이 없음

구분	1차 투입재료	2차 투입재료	수출물품
사례 ①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	세번변경기준
사례 ②	부가가치 기준	부가가치 기준	부가가치기준

[Answer]

- [한-EU FTA] 동 협정 제5조에 따라 원산지제품이 다른 제품의 생산에 재료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 원산지제품 전체가 원산지재료임
- [한-미 FTA] 동 협정 제6.22조에 따라 자가생산재료는 원산지재료임 <2012.11.>

[Why]

(1) 한-EU FTA

- 수출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이 세번변경기준인 경우
 - 사용된 재료가 원산지재료이면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않아도 수출물품은 원산지제품이 되는 것
- 수출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이 부가가치기준인 경우
 - 비원산지재료에 사용된 비원산지재료의 가치만 비원산지재료의 가치로 계산할 수 있음

(2) 한-미 FTA

- 수출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이 세번변경기준인 경우
 - ‘자가생산재료’는 원산지재료이므로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않아도 수출물품은 원산지제품이 되는 것
- 수출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이 부가가치 기준인 경우
 - ‘자가생산재료’의 가치 전체를 원산지재료비로 계산할 수 있음

[관련규정]

- 한-EU FTA 제5조 <충분하게 작업 또는 가공된 제품>
- 1. 제2조나호의 목적상, 완전하게 획득되지 아니한 제품은 부속서 2의 목록 또는 부속서2-가에 규정된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충분하게 작업 또는 가공된 것으로 간주된다. 그 조건은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서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에 수행되어야 하는 작업 또는 가공을 나타내며, 그러한 재료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따라서
 - 가. 비원산지 재료가 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을 거쳐 원산지 제품이 되어, 그 제품이 그 이후 다른 제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경우, 그 제품에 포함된 비원산지 재료는 고려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 나. 비원산지 및 원산지 재료가 가공을 거쳐 비원산지 제품이 되어, 그 제품이 그 이후 다른 제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경우, 그 제품에 포함된 비원산지 재료만이 고려된다.
- 한-EU FTA 주해 3, 4
- 3. 제5조 제1항 나호의 목적상, 비원산지재료의 가치는 비원산지재료를 생산하는데 사용된 자가생산된 원산지재료를 포함한 원산지재료의 가치를 제품의 공장도 가격에서 공제함으로써 획득될 수 있다.
- 4. 자가 생산된 원산지재료의 가치는 재료의 생산으로 초래된 모든 비용과 무역의 일반 과정에서 추가된 이윤과 동등한 이윤 금액을 포함한다.

[Q145]

아래와 같은 국내에서 회수한 중고품의 원산지결정기준(완전생산기준) 해당여부 질의

자동차 폐차장에서 재활용을 위하여 구입한 중고 자동차 부품(Used Alternator와 Start Motor)을 완전 분해 재사용할 수 있는 부품을 선별, 선별된 부품을 재가공하여 새로운 부품으로 제조, 재제조 부품과 일부 새로 구입한 부품을 조립하여 중고부품과 동일한 제품 생산

[Answer]

재사용 목적으로 수집된 중고자동차 부품은 완전하게 획득된 제품에 해당되지 않음 <2013.1.>

[Why]

- 협정에서는 당사자 내에서 수집된 것으로 원재료 회수용으로만 또는 폐기물 용도로만 적합한 중고 물품을 완전하게 획득한 제품으로 규정하고
- 재료의 정의를 ‘제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원료, 원재료, 구성요소 또는 부품 등을 말한다’ 라고 규정
- 따라서 중고자동차 부품(part)을 회수하여 재제조하는 때에는 원재료 회수용(the recovery of raw material)으로 볼 수 없음

[Q146]

인도산 의류 수입시 라벨, 가격 태그(Tags) 등이 역내국 또는 타국에서 생산지원된 경우, 어느 범위까지 완전생산기준 또는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이 인정되는지

* 라벨 등의 종류

- ①메인라벨 : 의류 갈라(목 부위) 중앙에 상표 등이 기재되어 있는 라벨
- ②케어라벨 : 메인라벨의 주위나 옆구리 부분에 원산지표시, 세탁표시 등이 기재되어 있는 라벨
- ③품공법라벨 : 국내 법령(품질공법을 준수하기 위한 의무기재 내용이 표시되어 있는 라벨
- ④메인라벨 : 케어라벨+품공법라벨:1개의 라벨내에 ①-③ 내용이 복합적으로 표시되어 있는 라벨
- ⑤가격태그(Tags) : 소비자 가격, 바코드 등 수입물품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지제 Tag

사례 1	* 라벨, 태그 등 미미한 수준의 국산 부자재 사용 * 수출국인 인도에서 ‘완전생산기준’ 으로 C/O를 발급 * ‘완전생산기준’ 으로 인정되는 라벨 등의 종류
사례 2	* 라벨, 태그 등 미미한 수준의 제3국산 부자재 사용 * 수출국인 인도에서 ‘완전생산기준’ 으로 C/O를 발급 * ‘완전생산기준’ 으로 인정되는 라벨 등의 종류
사례 3	* 라벨, 태그 등 미미한 수준의 국산 부자재 사용 * 수출국인 인도에서 ‘완전생산기준’ 으로 C/O를 발급 * 부자재가 완제품 의류에 부착되는 경우(직물제 라벨)와 부착되지 않고 소비자가 착용시 제거하는 경우(가격태그)와 같이 의류에 부착되는지 여부에 따라 ‘완전생산기준’ 에 영향을 미치는지
사례 4	* 라벨, 태그 등 미미한 수준의 국산 부자재 사용 * 수출국인 인도에서 ‘가공공정기준(비원산지국 원사로부터의 생산’ 으로 C/O를 발급 * ‘완전생산기준’ 으로 인정되는 라벨 등의 종류

[Answer]

- 의류제품(HS 61류-63류)을 생산할 때 사용된 라벨, 태그 등은 품목분류를 결정하는 구성요소의 생산에 사용

- 되는 재료가 아니므로 다른 제품들이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원산지제품에 해당됨
- 하지만 동 협정에 따른 ‘완전생산기준’ 이 적용되는 물품은 상품의 생산이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되어야 하는 바, 라벨과 택 등도 수출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되어야 하는 것임 <2013.2.12>

[Why]

(1) 한-인도 CEPA 규정 검토

- 수출물품(의류)의 원산지결정기준이 완전생산기준인 경우
 - 상품이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되어야 하며, 생산을 상품을 획득하는 방법을 말하고, 상품은 모든 물품 또는 재료를 포함
 - 따라서 라벨과 택도 수출당사국에서 완전 생산되어야 함
 - 수출물품(의류)의 원산지결정기준이 가공공정기준인 경우
 - 의류제품이 ‘비원산지 원사’로부터 생산되어야 함
 - 라벨과 택이 부착되지 않은 상태도 ‘의류제품’으로 분류
 - 따라서 ‘의류제품’ 이외의 재료인 라벨, 택은 반드시 ‘비원산지 원사’로부터 생산되지 않아도 무방
- * 제61류-제63류 의류 제품 : 61.01-63.10 비원산지 원사로부터 생산

(2) 타 FTA 관련 조항 검토

- EFTA, EU FTA에서는 원산지 자격단위를 ‘HS상품분류 체계를 사용하여 분류되는 기본단위’로 규정
 - 즉, HS분류에 맞는 생산이 발생하면 ‘원산지상품’이 되는 것으로, 라벨, 택 등 HS분류와 관련없는 재료는 원산지판정시 고려대상이 아님
 - 따라서 비원산지재료를 사용해도 됨
- 미국·칠레·싱가포르 FTA에서는 섬유 또는 의류 제품에 ‘최소허용기준’을 적용할 때 ‘상품의 세번을 결정하는 구성요소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를 그 구성요소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적용
 - 즉, 상품의 세번을 결정하는 구성요소의 생산과 무관한 재료는 원산지 재료인지 아닌지 고려대상이 아님
 - 따라서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해도 됨

[Q147]

- 비합금 알루미늄과 합금용 원재료를 용해하여 합금알루미늄 빌렛트를 생산한 후
- 열처리공정을 거쳐 합금알루미늄 빌렛트(HS7601호, 수출물품)를 생산한 경우 HS7601호의 원산지 결정기준(가공공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수출물품 생산공정>

원재료	비합금 알루미늄 (HS7601.10 : 역외산) 합금용 원재료 (Mn, Fe, Cu : 역외산)
↓	
용해 공정	합금을 위해 용광로에서 용해
↓	
1차 생산	합금알루미늄 빌렛트(균질화가 안된 상태)
↓	
열처리 공정	원재료의 균질화를 위해 400° C 가열
↓	
생산 완료	합금알루미늄 빌렛트(HS7601.20, 수출물품)

<제7601호 원산지 결정기준>

특례법 시행규칙	비합금 알루미늄 또는 알루미늄 웨이스트와 스크랩을 열 또는 전해처리하여 생산된 것
협정문 (영문)	Manufacture by thermal or electrolytic treatment from unalloyed aluminium or waste and scrap of aluminium

[Answer]

비합금 알루미늄을 재료로 사용하여 열처리공정을 거쳐 수출물품인 합금알루미늄 빌렛트가 생산된 것인 바, 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에 충족하는 원산지제품임 <2013.2.>

[Why]

- (1) 원재료(비합금알루미늄)에 열처리공정을 직접 수행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열처리

공정이 수행되면 되는지 여부

○ 합금알루미늄의 일반적인 생산공정은 다음의 어느 하나임

▶ 원재료 → 용해공정 → 생산완료

▶ 원재료 → 용해공정 → 균질화공정 → 생산완료

- 즉, 용해공정이 끝난 반제품인 합금알루미늄 빌렛트에 균질화공정(열처리 공정)이 수행되는 것이 일반적임

- 따라서 비합금알루미늄을 재료로 하여 합금알루미늄 빌렛트를 생산하면서 열처리공정이 수행되면 PSR을 충족

○ 협정상의 용어사용례 검토

- 협정상 'from'이 사용된 경우 원재료가 수출물품으로 생산되는 것을 의미, 즉, 반드시 해당 원재료에 해당 공정이 수행되어야만 하는 것으로 협정상의 문구를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은 무리

- 따라서 비합금알루미늄에 직접 열처리공정이 수행되어야만 PSR을 충족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음

○ 생산공정과 원산지결정기준 비교 검토

- HS7601호(알루미늄 껍)는 '합금하지 아니한 알루미늄'과 '알루미늄 합금(빌렛트)'이 분류됨

HS 7601호(알루미늄 껍)의 원산지결정기준(PSR)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비합금 알루미늄 또는 알루미늄 웨이스트와 스크랩을 열 또는 전해 처리하여 생산된 것

[HS 7601호의 물품에 적용할 수 있는 PSR]

HS NO	품명	사용되는 원재료(HS NO)	적용가능 PSR
7601.10	비합금 알루미늄	알루미늄 광 (2606호)	1호
		알루미늄 웨이스트와 스크랩(7602호)	1호
7601.20	합금 알루미늄 빌렛트	비합금 알루미늄 (7601호)	2호
		합금 알루미늄 (7601호)	없음
		알루미늄 웨이스트와 스크랩 (7602호)	1호, 2호

- 즉, 합금알루미늄을 원료로 열 또는 전해 처리하여 합금알루미늄 빌렛트가 생산된 경우에는 원산지제품이 될 수 없음

- 따라서 비합금알루미늄을 원료로 합금알루미늄 빌렛트를 생산하는 경우에도 원산지제품이 될 수 없는 문제 발생

- 상기 PSR 2호는 비합금으로부터 생산되면서 해당공정이 수행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정으로 판단 됨

- 질의물품은 용해공정이 끝난 반제품인 합금알루미늄 빌렛트에 균질화공정(열처리공정)이 수행되는 것으로

- 반드시 비합금알루미늄에 직접 열처리공정이 수행되어야만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음

⇒ 따라서 원재료를 사용하여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공정에서 열처리 공정이 수행되는 경우 원산지제품으로 볼 수 있음

[Q148]

한-인도 CEPA 협정상 의류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CC+RVC* %로 기재한 경우에도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

* HS 2단위 세번이 변경되고 역내부가가치 기준이 일정 % 이상

[Answer]

원산지증명서에 협정상의 원산지 결정기준과는 다른 기준이 기재된 경우에는 협정관세 적용이 불가능함 <2013.2.>

[Why]

○ 한-인도 CEPA에서 원산지증명서는 제4.4조(원산지증명서의 발급) 1 나 의 규정과 합치되게 작성되어야 함

○ 의류제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은 '비원산지 원사로부터 생산' 이므로 원산지 결정기준 기재 방법은 "Others"임

[Q149]

다음과 같은 거래관계 발생시 제품에 투입된 '한국산 원재료'의 원산지 결정기준 및 원산지증명방법 질의

한국 원재료 수출	→	미얀마 (한국산+미얀마산+제3국산)재료를 사용하여 완성품 생산	→ 최빈국 C/O 발행	한국 완성품 수입
-----------------	---	--	--------------------	--------------

[Answer]

- 한국에서 수출한 원재료가 한국산임을 입증하는 서류는 대외무역법 제37조(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또는 관세법 제232조의2(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등)에 따라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로 가능하나
- 이 경우에 제품에 투입된 한국산 원재료는 관세법 시행규칙 제74조(일반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다만, 한국산 원재료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의 인정여부는 미얀마의 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이 판단할 사항임 <2013.2.>

[Why]

- 한국에서 수출한 원재료의 원산지 증명방법
 - 한국산 원재료에 대하여는 대외무역법 제37조(조약, 국제법규 및 교역상대자의 요청에 의한 원산지증명서) 및 관세법 제232조의2(관세를 양허 받을 수 있는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에 따라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로 입증 가능
- 한국에서 수출한 원재료의 원산지 결정기준
 -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는 「관세법」에 근거하므로 원산지결정기준도 관세법 제229조(원산지확인기준)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74조(일반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Q150]

한-아세안 FTA 협정에서 가구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WO-AK 100%로 기재한 경우 원산지증명서 인정 가능 여부 질의

<WO와 WO-AK 비교>

WO	WO-AK
○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 또는 생산된 물품 (Wholly obtained or produced in the territory of the exporting Party) ○ 한-아세안 FTA 협정 제2조 1항의 완전생산 기준	○ 계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 또는 생산된 물품 (Wholly obtained or produced in the territory of any Party) ○ 한-아세안 FTA 협정 제조의 품목별 원산지 기준

[Answer]

- 한-아세안 FTA 협정 제7조(누적) 등 계약국을 원산지로 하는 재료의 누적을 허용하는 FTA 원산지제도의 목적상 “WO-AK 100%”로 기재한 원산지 증명서도 인정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향후 협정의 원산지 결정기준과 기재방법에 일치되게 받아야 함 <2013.3.>

[Why]

- WO-AK 기준은 모든 물품에 적용 가능한지 여부
 - 한-아세안 FTA 협정상 WO-AK 기준은 품목별 원산지 기준으로 개별 품목에 한정하여 적용되며, HS 품목 번호별로 규정
- RVC가 아닌 WO-AK 100%로 기재한 원산지증명서 인정여부
 - 가구(HS 9403)의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은 “FOB 기준 역내 부가가치 60% 이상”이며, 표기방법은 RVC 60%임
 - 협정 제7조(누적) 규정에 의거 계약국에서 발생한 생산과정 투입요소는 자국에서 투입한 것과 합산 가능
 - 따라서, 계약국의 원산지상품이 최종재의 재료로 사용되어 모든 부가가치가 역내에서 창출된 것을 의미하므로 인정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Q151]

아래와 같이 원료를 투입하여 화학반응을 수반하는 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여 수출하는 경우 한-미 FTA와 한-EU FTA 원산지 제품 충족 여부

- 완제품(HS 2907.29-0000) : 페놀과 페놀알코올
- 완제품 1톤 생산비용 : US\$ 4,379/MT
- 원료물질가격 + 생산비용 = US\$ 11,617.33/MT
- 완제품 수출가격 : 12,460/MT
- 원료 투입 목록

원료성분	원산지	HS NO	Proportion (kg/mt)	Price (CIF \$/kg)	완제품1톤당 원료가격(US\$)	가격대비
T-BUOH	KR	2901.29-0000	825	0.916	755.70	10.44%
M-Cresol	US	2907.12-1000	992	6.071	6,022.43	83.20%
N-Butylaldehyde	KR	2912.19-3000	236	1.950	460.20	6.36%
원료물질 합계					7,238.33	100%

※ 한-미 FTA HS 2907호의 원산지결정기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한-미 FTA HS 제6부(28류 ~ 38류)의 원산지결정기준

<제6부의 주석3 : 화학반응>

이 부에 해당하는 물품(제3823호의 것은 제외한다)이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화학반응을 거쳐 생산된 경우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이 부에서 '화학반응'이란 분자내 결합이 깨지고 새로운 분자내 결합 생성에 의하거나 분자내 원자의 공간배열을 변경함으로써 새로운 구조를 가진 분자가 되는 공정(생화학 공정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사항들은 원산지 상품 여부를 결정하는 목적상, 화학반응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가. 물 또는 다른 용제에 용해된 것

나. 용제(용매물을 포함한다)의 제거, 또는

다. 결정수의 첨가 또는 제거

※ 한-EU FTA HS 2907호의 원산지결정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그러나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재료의 가치가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2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음.

2. 해당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Answer]

-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에 충족하는지를 판정하기 위해서는 사용된 재료가 해당 협정에서 정하는 원산지결정기준에 충족하는 원산지 재료인지를 알아야하며
 -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에 충족하는지를 판정하기 위해서는 수출하는 제품의 협정에서 정하는 공장도가격을 알아야 함
 - 다만, 미합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서 HS 2907호의 물품은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화학반응을 거쳐 생산된 경우에는 원산지제품으로 인정하도록 규정
- 하지만 질의한 내용으로는 사용된 재료가 동 협정에 따른 원산지재료인지와 협정에서 정하는 공장도가격이 얼마인지를 알 수 없어 판단할 수 없으며, 상기 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자료가 제출되는 경우 다시 검토 필요 <2013.3.>

[Why]

(1)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 검토

①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사용된 모든 재료가 원산지재료이므로 원산지제품으로 인정

② 이 부에 해당하는 물품(제3823호의 것은 제외한다)이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화학반응을 거쳐 생산된 경우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 화학반응을 거쳐 생산된 경우 사용된 재료가 원산지재료인지와 상관없이 원산지제품으로 인정되는 바, 원산지제품으로 인정

(2) 한-EU FTA 원산지결정기준 검토

①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2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제품도 사용될 수 있다.

○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비원산지재료 가격이 공장도가격의 20%미만이어야 하는데

- 비원산지재료(M-Cresol)의 가격이 51.84%에 해당되어 불충족

* (US \$6,022.43) / (US \$11,617.33)

②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모든 비원산지재료 가격이 공장도가격의 50%미만이어야 하는데
 - 비원산지재료(M-Cresol)의 가격이 51.84%에 해당되어 불충족
 - * (US \$6,022.43) / (US \$11,617.33)
- ⇒ 하지만 민원인의 제출서류에는 사용된 재료가 동 협정에 따른 원산지재료인지와 공장도가격이 얼마인지가 누락되어 있어 판단할 수 없음

[Q152]

한-인도 CEPA에서 의류(제61류-63류)의 원산지 결정기준 표기법 관련 질의

[Q152-1]

의류의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인 “비원산지 원사로부터 생산”의 경우 다음 중 어떠한 방법으로 표기해야 하는지

- ① 가공공정 기준에 따라 “SP”로 기재
- ② 재료 및 공정을 포함하여 포괄적인 의미의 “Others”로 기재
- ③ “SP”와 ” Others “ 중 선택 기재 또는 모두 기재

[Q152-2]

“원산지 원사로부터 생산”된 의류의 경우 다음 중 어떠한 방법으로 표기해야 하는지 질의

- ① 가공공정 기준에 따라 “SP”로 기재
- ② 재료 및 공정을 포함하여 포괄적인 의미의 “Others”로 기재
- ③ “SP”와 ” Others “ 중 선택 기재 또는 모두 기재

[Answer]

- 원산지 결정기준은 협정에서 정한 C/O 작성요령에 맞게 기재하면 됨
- “Others”와 “SP”로 기재하는 것 모두 가능하며, 타국산 재료가 일부 포함된 인도산 원사로부터 생산된 의류의 경우에도 협정에 규정된 바 없으므로 마찬가지로 함 <2013.3.>

[Why]

- 비원산지 원사로부터 생산된 의류의 원산지결정기준 표기법
 - “비원산지 원사로부터 생산”이란 의류의 생산에 필요한 재료에 대해 규정한 것일 뿐만 아니라
 - 제직, 편직, 재단 등 의류의 가공공정에 대한 규정으로도 볼 수 있으므로 Others와 SP로 모두 기재 가능
- 한-인도 CEPA 협정에서 타국산 재료가 일부 포함된 인도산 원사로부터 생산된 의류의 원산지결정기준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Others”와 “SP”로 모두 기재 가능

[Q153]

- 한-EU FTA에서 신발의 갑피와 안창 또는 기타 바닥이 부착된 재료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생산되는 경우 원산지제품에 해당되지 않음(상단부와 바닥부가 분리되어 수입되어야 함)

<한-EU FTA 제64류 신발의 원산지결정기준>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 생산. 다만, 제6406호의 안창 또는 기타 바닥에 부착된 갑피의 조립으로부터의 생산은 제외

- 부티(Bootie) 작업 또는 보니스(Bonis) 작업이 끝난 갑피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신발을 제조(갑피와 바닥을 조립)하는 경우 한-EU FTA에 따른 원산지제품으로 볼 수 있는지
 - * 부티(Bootie) 작업 : 방수신발을 만들기 위한 공법. 방수가 되는 Lining을 버선모양으로 제작한 후 신발 갑피와 재봉하여 갑피를 완성
 - * 보니스(Bonis) 작업 : 부직포나 Mesh를 갑피와 함께 제조하는 공법

[Answer]

- ‘부티작업’에 따른 역외산 갑피를 재료로 사용한 경우에는 동 협정에 따른 원산지제품에 해당
- ‘보니스작업’에 따른 역외산 갑피를 재료로 사용한 경우에는 동 협정에 따른 원산지제품에 해당되지 않음 <2013.3.>

[Why]

- 상단부(갑피)와 바닥부(안창 또는 기타 바닥)가 분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부티 작업	갑피에 부착되는 방수 고어텍스에 바닥부분이 있음 → 바닥부분이 안창 또는 기타 바닥에 해당되는지
보니스 작업	갑피의 하단부에 부직포나 Mesh가 부착되어 있음 → 바닥부분이 안창 또는 기타 바닥에 해당되는지

① 부티 작업

- 부티작업으로 갑피에 부착되는 방수 고어텍스(버선모양)는 신발안쪽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것으로, 구조적으로는 일부 바닥부분이 있으나 주요기능이 방수를 위한 것이며, 갑피 안쪽을 보호하는 기능을 동시에 수행
 - 또한, 신발 제조를 위해서는 부티작업 바닥부 이외에 일반적인 바닥부(안창, 중창, 미도솔, 아웃솔)가 모두 접착됨
 - 방수 고어텍스가 붙은 갑피는 품목분류상 ‘갑피’ (HSK 6406.10-1000)에 해당되는 바, 갑피의 일부분으로 볼 수 있음
- ⇒ 따라서 안창 또는 기타 바닥이 부착된 갑피에 해당되지 않음

② 보니스 작업

- 보니스작업으로 갑피의 하단부에 부착되는 부지포 등 갑피 제조시 갑피의 원재료를 절약할 목적이지만 보니스작업 바닥부는 신발의 바닥부에만 위치하며, 주요기능이 갑피 안쪽을 보호하는 것은 아님
 - 부티작업 고어텍스가 있는 경우 갑피 안쪽이 보호되므로 직물로 보호할 필요가 없으나, 보니스 작업은 갑피 안쪽을 직물로 보호해야 함
 - 또한, 신발 제조를 위해 바닥부를 구성하는 중창이 사용되지 않음(보니스작업 바닥부가 중창없이 미드솔과 접착됨)
- ⇒ 따라서 비록 일반적인 바닥부는 아니지만 기타 바닥이 부착된 갑피에 해당

[Q154]

- 한-아세안 FTA HS 6205(의류) 물품은 특정공정(재단 및 봉제)이 체결당사국에서 수행되어야 함. 동 물품은 ‘최소허용기준’에 따라 총중량의 10%이하의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할 수 있음
- 최소인정기준(총중량의 10% 이하)에 해당되는 재료*도 특정공정(재단 및 봉제)이 수행되어야 하는 것인지
 - * 물품 생산에 사용되는 CUFF 및 포켓
- 질의 물품은 HS 6205(남성용이나 소년용 셔츠)로서 원산지가 베트남인 직물을 재단, 봉제하여 의류를 생산하고 있으나, 중국에서 재단한 CUFF 및 포켓(전체물품 총중량의 2%)를 사용하고 있음

<한-아세안 FTA 제6205호의 원산지결정기준>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체결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에 한정한다.

[Answer]

중국에서 재단한 포켓 등을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기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할 수 없음 <2013.4.>

[Why]

- 한-아세안 FTA HS 6205의 원산지결정기준은 아래의 모든 사항이 필요한 조합기준임
 - ①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② 체결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에 한정한다.
- 즉, 제품(의류)의 생산에 사용되는 직물을 재단하고 봉제하는 작업은 역내에서 수행되어야 함
- 따라서 역외산 재료를 10%이하로 사용하더라도 제품 생산시 필요한 재단공정과 봉제공정은 역내에서 수행되어야 함

[Q155]

- A사는 티타늄 피를 수입하여 티타늄 판·시트로 가공하고, B사는 이를 티타늄 관으로 제조해 수출자인 한국 C사에 공급

※ 한국스미켄북산(주)는 최종 수출물품 생산자인 신한금속이 발급한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보유하고 있음 <제조공정도>

수입기초원자재		⇒	중간원자재 가공		⇒	최종 수출품 제조		⇒	수출자
품명	HS NO		품명	HS NO		품명	HS NO		
티타늄피	8108.20		티타늄판·시트	8108.90		티타늄관	8108.90		C사
			A 사			B 사			

[Q155-1]

수출물품인 티타늄 관(Tube)이 수입 원자재인 티타늄 피와 4단위 품목번호가 같더라도 한-EU FTA 제81류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 인지

<한-EU FTA 제81류의 원산지결정기준> 모든 호의 재료로부의 생산

[Answer]

한-EU FTA 제81류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함

[Why]

-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모든 호(들)의 재료가 (제품과 동일한 상품명 및 호의 재료까지도) 사용될 수 있음(한-EU FTA 부속서 1 주석 3.3)
- 따라서 수출물품과 수입된 원자재의 4단위 품목번호가 같더라도 국내에서 수출물품을 생산한 경우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Q155-2]

티타늄 관을 제조하는 공정이 한-EU FTA 불인정공정에 해당하는지

[Answer]

불충분 공정에 해당하지 않는 공정과정을 거친 것으로 판단됨 <2013.4.>

[Why]

- 한-EU FTA 불충분 공정에서 “단순한” 이란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히 생산되거나 설치된 특별한 기술, 기계, 도구 또는 장비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활동으로 규정
- 티타늄은 강도가 높은데 비해 가벼워 해당 규격별로 절단하고, 원형으로 조관하기 위한 특별한 기술과 기계가 필요하므로 불충분 공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 티타늄은 고강도, 경량의 경금속으로 철보다 60% 가볍고 알루미늄보다 1.5배 무거움

[Q157]

국내 A 업체는 5237.10호* 물품을 제조하여 납품하며, 동 물품 제조시 8538호의 비원산지재료(판매가격 대비 2%)를 사용

* 제8537호 : 전기 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패널·콘솔·책상·캐비넷 및 기타의 기반(base) / 제8538호 제8535호~8537호 전용 부분품

[Q157-1]

제8537호의 원산지결정기준 중 ‘제8538호의 것은 제외한다’ 라는 규정의 해석에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

- ① 미소기준 미적용(비원산지재료인 제8538호가 1%라도 사용되면 원산지지기준 불충족)
- ② 미소기준 적용(비원산지 재료인 제8538호가 사용되더라도 일정기준 이하이면 원산지 재료로 인정)

[제8537호 원산지결정기준(한-칠레, 싱가포르, EFTA)]

8537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8538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한-칠레	한-싱가포르	한-EFTA
	2. 제8528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의 경우 45% 또는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2. 해당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Answer]

한-칠레 FTA 제4.6조, 한-싱가포르 FTA 4.10조, 한-EFTA FTA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제8538호의 물품이 비원산지재료라 하더라도 최소허용기준(미소기준)이 적용될 수 있음

⇒ 다만,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최대가치가 최소허용기준의 적용으로 인해 각 협정의 품목별 기준에 규정된 부가가치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함

[Why]

- 품목별 기준이 세번변경기준인 경우 제외되도록 규정된 재료는 원칙적으로 원산지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나, 사용된 비원산지재료가 당해 물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미미한 경우 원산지물품으로 인정
- 따라서 비원산지재료인 제8538호의 물품이 제8537호의 생산에 사용된 경우에도 미소기준 충족시 원산지물품으로 인정 가능

[Q157-2]

원산지소명서 작성방법

- ① 미소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16번 세번변경기준 충족여부를 “예” 또는 “아니요” 중 어느 것으로 표기해야 하는지 여부
- ② 부가가치기준 충족시 부가가치비율은 품목별 원산지 기준의 한도를 적는 것인 지, 아니면 실제 부가가치를 적는 것인지 여부

[Answer]

- 미소기준 적용시 원산지소명서는 다음과 같이 표기
 - 16번 세번변경기준 충족여부 : “예” 표기
 - 19번 최소기준 적용여부 : “예” 표기(세부내역은 별지에 작성 첨부)
- 부가가치 기준을 충족한 경우 17번에 “예” 표기하고, 물품 생산과정에서 실제 발생한 부가가치 비율을 기재 <2013.7.>

[Why]

최소허용기준은 세번변경기준에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것임

[Q158]

한-EU, 한-터키, 한-미 FTA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에서 “제외한다”는 표현이 아닌 “사용될 수 없다” 등의 표현이 사용된 경우 최소허용기준의 적용 여부 질의

협정	품목번호	품명	원산지 인정 요건
EU 터키	1501	돈지(라드를 포함한다)와 가금지(제0209호 또는 1503호의 것을 제외한다)	제0203호 또는 제0206호의 돼지의 육 또는 식용 설육, 또는 제0207호의 가금류의 육과 식용 설육으로부터의 생산. 그러나, 제0506호의 뼈는 사용될 수 없음 .(However bones of heading 0506 may not be used)
	7308	철강제의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을 제외한다)과 구조물의 부분품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그러나, 제7301호의 용접된 형제는 사용될 수 없음 .
미 국	2103.20	토마토 케첩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103.2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제2103.20호에 해당하는 토마토 케첩은 제2002.90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 상품을 포함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provided that tomato ketchup of heading 2103.20 does not contain non originating goods from subheading 2002.90)

[Answer]

- 한-EU, 한-터키 FTA의 경우 제5조 제2항에 따라 최소허용기준 적용 가능
- 한-미 FTA의 경우 부속서 6-나의 규정에 따라 최소허용기준 적용 불가 <2013.8.>

[Why]

- ① 한-EU, 한-터키
 - 한-EU, 한-터키의 경우 최소허용기준의 적용 대상을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는 물품으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 품목별 원산지기준에 따라 제품의 생산에 사용될 수 없는 비원산지재료라 하더라도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용될 수 있다고 규정

제5조 충분하게 작업 또는 가공된 제품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속서 2의 목록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제품의 생산에 사용되어서는 아니 되는 비원산지 재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될 수 있다**. 다만,

가. 비원산지 재료의 총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나. 비원산지 재료의 최대 가치에 대하여 부속서 2의 목록에 제시된 비율이 이 항의 적용으로 인해 초과되지 아니한다.

(2) 한-미

- 농수산물(제1류-제24류)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재료는 해당물품과 6단위 세번이 다른 경우에만 최소허용기준이 적용됨
- 따라서 제2103.20호(토마토케첩)의 생산에 6단위 세번이 다른 비원산지재료(제2002.90호, 토마토 반죽)가 사용된 경우 품목별 기준에 명시하지 않아도 최소허용기준은 적용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원산지재료인 제2002.90호(토마토 반죽)를 포함하지 않도록 한 것은 최소허용기준을 배제하기 위함이며
- 부속서 6-나(최소허용기준 적용 제외 품목과 함께 품목별 원산지 기준에 규정된 경우에도 상기한 농수산물의 최소허용기준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 제2103.20호의 생산에 비원산지재료인 제2002.90호가 사용된 경우에는 서로 6단위 세번이 다르더라도 원산지 기준 불충족

부속서 6-나(최소허용기준 적용 제외 품목)

제6.6조(최소허용수준)는 다음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카. 가호 내지 차호의 최소허용기준 적용제외 품목과 부속서 6-가의 품목별 원산지 규정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비원산지 재료가 원산지가 결정되고 있는 상품과 다른 소호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한,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 제1류 내지 제24류에 분류된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

[Q159]

주물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원재료로 국내 철강업체에서 발생하는 철스크랩(고철)을 수집하여 사용

[Q159-1]

이 경우 철스크랩이 각 협정의 완전생산기준에 충족하는지

[Answer]

국내 철강업체의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스크랩이 원재료 회수용으로 적합한 경우 해당 물품은 각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생산기준 충족

[Why]

- 협정별 완전생산기준 해당조건 요약

FTA 종류	완전생산기준 해당 여부
미국, 칠레, 페루, 싱가포르, EU, 터키, 아세안	채약당사국 영역에서 생산할 때 발생하는 스크랩은 완전생산기준에 해당
EFTA	채약상대국 영역에서 생산할 때 발생하는 스크랩은 원재료 회수용인 경우 완전생산기준에 해당
인도	수출당사국 영역에서 생산할 때 발생하는 스크랩은 원재료 회수용인 경우 완전생산기준에 해당

- 따라서 국내 철강업체에서 발생하는 철 스크랩으로서 원재료 회수용에 해당하는 물품은 모든 협정에서 완전생산기준에 해당

[Q159-2]

완전생산기준에 충족한다면 고철 공급자로부터 원산지확인서를 제공받지 않아도 되는지

[Answer]

물품을 공급하는 자가 완전생산기준에 충족한다는 원산지확인서를 작성·제공하여야 함 <2013.9.>

[Why]

- 원산지확인서는 재료공급자가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제공하는 서류임
- 예를 들어, 채약당사국 영역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스크랩인 것을 재료공급자가 확인해야 완전생산기준에 충족한다고 입증되는 것이므로 재료공급자로부터 원산지확인서를 제공받아야 함

[Q160]

다음과 같이 아세안 국가에서 일부 가공을 한 후 국내로 재수입하여 다른 FTA 협정국에 수출시 협정관세

적용여부

한국	①	아세안 국가	②	한국	③	FTA 체결국
6116.93(장갑)	→	6116.10(장갑코팅)	→	재수입	→	EU·미국 등에 수출

① 국내에서 제조한 원산지상품인 장갑을 아세안 국가에 수출

② 아세안 국가에서 장갑을 코팅한 후 국내로 재수입

③ 국내로 재수입한 장갑을 다른 FTA 협정국가로 수출

※ 아세안 국가에서 수행된 공정은 불인정(불충분) 공정에 해당하여 한국으로 재수입시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받지 못함

[Answer]

어떤 물품이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물품 생산이 모두 체약국 역내에서 중단 없이 수행되어야 하므로 아세안 국가에서의 역외가공은 인정될 수 없음 <2013.9.>

[Why]

- 아세안 국가에서 일부 가공을 한 후 다른 FTA 협정국가에 수출하는 경우 아세안 국가는 각 협정에 의한 “당사국” 이 아님
- 따라서 직접운송원칙 등 협정 등에서 정한 원산지 요건을 충족할 수 없으므로 협정관세 적용 불가

[Q162]

원산지물품을 우리나라가 아닌 지역에서 일부 마무리 공정을 작업한 경우 한-EU 및 한-아세안 FTA 원산지 물품 여부

한국	역외산 생사를 수입하여 장갑(마무리 작업前)을 생산
↓	
베트남	장갑 마무리 작업(Overlock, 코팅, 스크린 인쇄작업*)을 수행
↓	
한국	수출을 위한 재포장작업 후 또는 수입물품 원상태로 수출
↓	
수출	EU or 아세안

* Overlock 작업 : 편직된 장갑을 뒤집어서 손목 끝부분에 고무줄을 넣어 고정을 시키고 손목에 탄력을 주게하는 공정

* 코팅 작업 : 장갑표면에 코팅액을 입히는 공정

* 스크린 인쇄작업 : 장갑표면에 로고 등을 인쇄하는 작업

[Answer]

-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제2조에 따라 수출물품은 수출 당사자내에서 중단없이 생산되어야 원산지제품에 해당되므로
- 질문하신 바와 같이 수출물품을 생산하면서 일부공정을 다른 국가에서 수행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제품으로 볼 수 없음 <2013.10.1.>

[Why]

□ 수출국이 아닌 지역에서 일부 공정이 수행된 경우 원산지 결정

- [한-아세안 FTA] '수출국의 영역내에서 완전획득되거나 생산되지 아니한 상품'은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해야 원산지제품이 되며(협정 원산지규정 제2조)
 - 원산지지위를 획득하는 조건은 수출국에서 중단없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수출국의 영역이 아닌 지역에서 일부 공정이 수행된 경우에는 원산지제품으로 볼 수 없음

□ 한-아세안 FTA '누적' 조항 적용에 따른 원산지 결정

- 원산지 상품이 다른 당사국에서 재료로 사용된 경우에는 최종재의 작업 또는 공정이 발생한 당사국이 원산지가 됨

※ 한-아세안 FTA에서는 재료누적은 가능하나, 상품 또는 공정에 대한 누적은 불가

- 즉, 최종작업국이 원산지가 되려면 재료로 사용되어야 하며 원산지가 될 만한 충분한 공정이 있어야 함

□ 재료로 사용된 것인지 여부

- '재료'는 생산과정에서 사용되는 원료(ingredients), 원재료(raw materials), 부품(parts), 부분품(components), 하

위 조립품(sub-assemblies)이 포함됨(협정 원산지규정 제1조)

○ 일반적으로 품목분류에서 ‘부분품’이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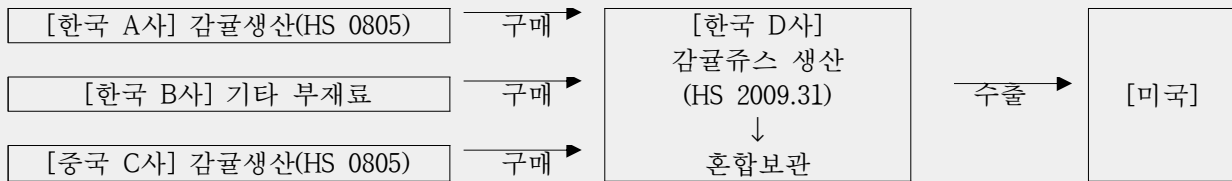
- 1) 그 자체만으로는 특정용도에 사용할 수 없고
- 2) 다른 물품에 결합되어 사용하고
- 3) 물품에 반드시 필요한 구성요소이며
- 4) 물품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작용에 필요한 것으로서
- 5) 부분품으로서만 사용하는 것이 인정되는 물품

○ 마무리 공정 작업 前의 장갑은 다른 물품에 결합되어 사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재료에 사용된다고 볼 수 없음

○ 즉, ‘재료누적’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원산지가 ‘베트남’인 물품으로 볼 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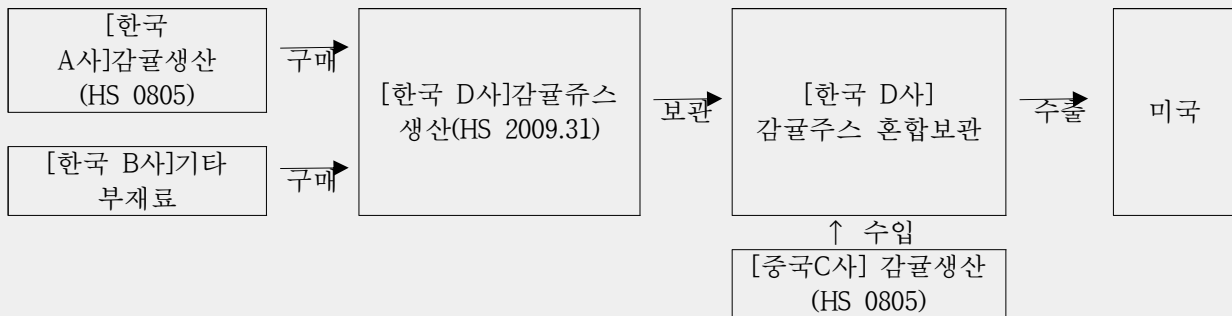
[Q163]

원산지물품(또는 재료)와 비원산지물품(또는 재료)를 혼합하여 보관하는 경우 한-미 FTA 원산지물품 여부
<사례 1>



※ 한국 D사는 중국산 감귤과 한국산 감귤을 혼합하여 보관(회계연도 동안 선입선출법으로 재고관리)한 후 착즙 등의 생산을 통해 냉동농축 감귤주스를 생산하여 미국으로 수출

<사례 2>



※ 한국 D사는 한국산 원재료로 냉동농축감귤주스를 생산한 후 중국에서 수입한 냉동농축감귤주스와 혼합하여 보관(회계연도 동안 선입선출법으로 재고관리)하다가 미국으로 수출

◆ 한-미 FTA 2009.31의 원산지결정기준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0805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Answer]

- 대체가능물품이 원산지물품(재료)과 비원산지물품(재료)가 물리적으로 구분하여 관리되지 않는 경우에는
-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6.7조 및 동 규칙 제11조에 따라 선입선출법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원산지물품(재료)에 해당하는 부분은 원산지물품으로 결정할 수 있음 <2013.10.1.>

[Why]

□ 한- FTA 대체가능물품 해당여부

- ‘대체가능물품’이란 원산지물품과 비원산지물품이 상업적으로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가지고 상호 대체사용이 가능한 물품(재료 포함한다)을 말함(규칙 § 2)
- <사례1>과 같이 한국산 감귤과 중국산 감귤을 재료로 사용하여 생산한 물품이 동일한 품질과 특성을 가진 1개의 물품으로 생산되어 판매되는 경우에는 대체가능재료에 해당
- <사례2>와 같이 한국산 감귤주스와 중국산 감귤주스를 혼합보관하다가 동일한 품질과 특성을 가진 1개의 물품으로 판매되는 경우에는 대체가능물품에 해당

□ 한-미 FTA 대체가능물품의 원산지 판정방법

- ‘대체가능물품’은 당사국에 의하여 인정되는 평균법, 후입선출법 또는 선입선출법과 같은 재고관리기법을 사용한 경우 ‘원산지상품’으로 인정할 수 있음(협정 제6.7조 대체가능 상품 및 재료)
- 시행규칙 [별표11]에서 ‘대체가능물품’ 중 원산지물품(재료)과 비원산지물품(재료)가 물리적으로 구분하여 관리되지 않는 경우
 -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또는 평균법의 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Q164]

아래 공정으로 생산되는 Aluminium Slab이 한-EU FTA의 원산지제품에 해당하는지와 Aluminium Slab 생산비를 모두 원산지재료비로 볼 수 있는지

재료	(역외산) 비합금 알루미늄 Ingot (HS 7601)	(역외산) 폐 알루미늄 캔 (HS 7602)	(국내회수) 폐알루미늄 캔(HS 7602)
1차 공정	[1차공정] 전기로(용해, 주조, 열처리 공정) Aluminium Slab (HS 7601) ※ 동 물품을 판매 또는 수출도 하며, 2차공정 재료로도 사용		
2차 공정	[2차공정] 냉간·열간압연, 탈지, 소둔, 교정, 절단 공정 Aluminium Sheet(HS 7606.11)		

※ 한-EU FTA 원산지 결정기준

760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비합금 알루미늄 또는 알루미늄 웨이스트와 스크랩을 열 또는 전해처리하여 생산된 것
7604 7605 7606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해당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 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Q164-1]

Aluminium Slab(7601.10)이 HS 7601호의 원산지결정기준 중에서 ‘비합금 알루미늄 또는 알루미늄 웨이스트와 스크랩을 열 또는 전해 처리하여 생산된 경우’에 해당되는지

[Answer]

비합금 알루미늄(Ingot)과 알루미늄 스크랩(폐 알루미늄 캔)을 재료로 사용하여 열처리공정으로 생산된 경우에는 원산지제품에 해당함

[Why]

- 한-EU FTA에서 Aluminium Slab(7601.10)은 비합금 알루미늄 또는 알루미늄 웨이스트와 스크랩을 재료로 하여
 - 열처리 공정 또는 전해처리 공정의 방식으로 생산한 경우 원산지 제품임
- 질의 물품은 비합금 알루미늄(Ingot)과 알루미늄 스크랩(폐 알루미늄 캔)을 재료로 사용하였으며 전기로에서 열처리공정으로 생산하였으므로
 - 동 협정에 따른 원산지제품에 해당

[Q164-2]

Aluminium Sheet(7606.11)의 부가가치를 계산할 때 Aluminium Slab 생산비를 모두 원산지 재료비로 계산할 수 있는지

[Answer]

알루미늄 슬랩(Aluminium Slab)의 가치를 원산지재료의 가치로 산정할 수 있음 <2013.10.15.>

[Why]

- 1차 공정에 따라 생산된 Aluminium Slab(HS 7601.10)이 최종생산품 Aluminium Sheet(HS 7606.11)의 생산에 사용된 경우
 - Aluminium Slab이 ‘1차공정’에 따라 원산지 지위를 획득한 것이므로 원산지재료가 사용된 것임
 - ‘1차공정’에 따라 생산된 Aluminium Slab은 Aluminium Sheet와는 별도로 생산 및 재고가 관리되어 판매(내수 및 수출)되는 물품
- 따라서 Aluminium Slab이 원산지재료이므로 Aluminium Slab의 생산에 비원산지 재료가 사용되었더라도
 - 그 비원산지 재료비는 재료의 가치를 합산할 때 비원산지 재료비로 볼 수 없는 바
 - Aluminium Slab 생산비를 모두 원산지재료비로 계산할 수 있음

[관련규정]

- 한-EU FTA 제5조 <충분하게 작업 또는 가공된 제품>
- 1. 제2조나호의 목적상, 완전하게 획득되지 아니한 제품은 부속서 2의 목록 또는 부속서 2-가에 규정된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충분하게 작업 또는 가공된 것으로 간주된다. 그 조건은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서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에 수행되어야 하는 작업 또는 가공을 나타내며, 그러한 재료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따라서
- 가. 비원산지 재료가 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을 거쳐 원산지 제품이 되어, 그 제품이 그 이후 다른 제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경우, 그 제품에 포함된 비원산지 재료는 고려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 나. 비원산지 및 원산지 재료가 가공을 거쳐 비원산지 제품이 되어, 그 제품이 그 이후 다른 제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경우, 그 제품에 포함된 비원산지 재료만이 고려된다.

Ⅶ. 원산지 인증 수출자 제도

[Q165]

영국의 수출자가 프랑스에서 생산한 물품을 프랑스에서 수출시 협정관세 적용 여부

[Answer]

한-EU FTA에서 영국의 수출자가 프랑스에서 생산한 물품을 프랑스에서 수출하는 경우에도 협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용 가능 <2011.6.>

[Why]

영국의 수출자가 인증수출자이고 직접운송 등 협정에서 정한 다른 기준을 충족하며 인증수출자가 작성한 유효한 원산지신고서가 제출되면 협정관세 적용 가능

[관련규정]

- 한-EU FTA 제15조(일반요건)
- 1.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제품이 유럽연합 당사자로 수입될 때, 그리고 유럽연합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제품이 대한민국으로 수입될 때, 이후 “원산지 신고서”라 지칭되는 신고서에 근거하여 이 협정의 특혜관세대우의 혜택을 받는다. 원산지 신고는 해당 제품이 확인될 수 있도록 충분히 상세하게 그 제품을 기술하는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상에 **수출자에 의해 행해진다**. 원산지 신고서의 문안은 부속서 3에 기술되어 있다.
- 한-EU FTA 제16조(원산지신고서 작성조건)
- 1. 이 의정서의 제15조제1항에 언급된 원산지 신고서는 다음에 의해 작성될 수 있다.
- 가. 제17조의 의미상 인증수출자, 또는
- 나. 전체 가격이 6,000유로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원산지 제품을 포함하는 하나 이상의 포장으로 구성되는 탁송화물의 수출자

[Q166]

- 본사에서 여러 사업장(공장)을 총괄하고, 공장에서 생산하는 물품을 본사 명의로 본사의 책임하에 수출하는 경우 누가 인증수출자로 지정을 받아야 하는지
- 그리고 본사의 원산지관리전담자가 다른 사업장의 원산지 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지

[Answer]

- 본사 명의로 본사의 책임 하에 무역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본사가 인증수출자이어야 함
- 인증수출자 지정요건에 따라 원산지관리전담자는 인증수출자별로 지정·운영하여야 하며, 다만, 특정 사업장이 다수 사업장을 통제하여 실질적으로 원재료 및 완성품의 원산지 관리를 수행하고 있다고 입증되는 경우 가능 <2011.9.>

[Why]

6,000유로를 초과하는 탁송 수출화물에 대해서는 인증수출자만이 원산지신고서 작성 가능

[Q167]

네델란드 수출자가 벨기에의 인증수출자번호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Answer]

- 네델란드 수출자가 벨기에의 인증수출자번호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수출당사국의 관세당국에서 판단할 사항인 바
- 동 협정 제27조(원산지 증명의 검증)에서 정한 원산지 검증의 결과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사항임
- 따라서 협정에서 정한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협정관세 적용은 가능하나, 원산지에 관한 조사 결과에 따라 협정관세가 배제될 수 있음 <2012.1.>

[Wh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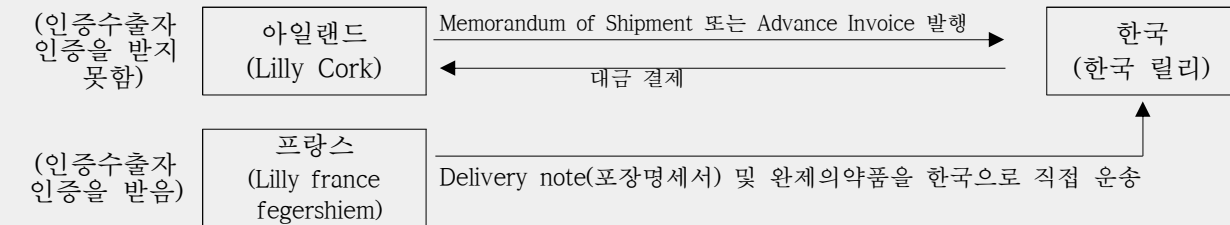
한-EU FTA 제15조(일반요건), 제16조(원산지신고서 작성 조건) 및 제17조(인증수출자)에 따라 원산지신고서는 수출 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수출자가 작성하는 것임

[관련규정]

- 한-EU FTA 제16조(원산지신고서 작성 조건)
- 3.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하는 수출자는, 국내 법령에 따른 공급자 또는 생산자의 진술서를 포함하여 해당 제품의 원산지 지위와 이 의정서의 다른 요건의 충족을 증명하는 모든 적절한 서류를 수출 당사자의 관세당국이 요청하는 경우 언제든지 제출할 준비가 되어야 한다.
- 한-EU FTA 제17조(인증수출자)
- 1. 수출 당사자의 관세당국은 수출 당사자의 각 법과 규정의 적절한 조건에 따라 해당 제품의 가치와 관계 없이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하도록 이 협정에 따라 제품을 수출하는 수출자(이하 “인증수출자”라 한다)에게 인증할 수 있다. 그러한 인증을 구하는 수출자는 제품의 원산지 지위와 이 의정서의 그 밖의 요건의 충족을 검증하는 데 필요한 모든 보증을 관세당국이 만족할 정도로 제공해야 한다.

[Q168-1]

한-EU FTA 관련 아래와 같은 수출거래에서 프랑스의 업체가 인증수출자인지 여부



원재료 및 부형제등을 수입 또는 공급받아 완제의약품 제조

한국틸리는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완제 의약품을 수입하고 있는 업체이며, 아일랜드의 Lilly Cork는 Memorandum of Shipment 또는 Advance Invoice 발행 및 대금결제에 관여하며, 프랑스의 Lilly France Fegershiem는 완제의약품을 생산하여 Delivery note 와 함께 한국으로 직접 수출하는 거래입니다.

[Answer]

프랑스의 수출자가 인증수출자인지 여부는 프랑스 세관당국에 문의할 사항

[Why]

한-EU FTA에서 “인증수출자”는 수출 당사자의 법과 규정에 따르는 것인 바, 프랑스의 수출자가 인증수출자인지 여부는 프랑스 세관당국에 문의할 사항임

[Q168-2]

- 상기 거래에서 프랑스의 수출자가 인증수출자라면, 원산지신고서를 다음의 어느 서류에 작성해야 하는지
- ① 아일랜드 업체에서 작성한 서류에 프랑스 업체의 인증수출자번호가 기입된 원산지 신고문안을 작성
 - ② 프랑스 업체에서 작성한 서류에 프랑스 업체의 인증수출자번호가 기입된 원산지 신고문안을 작성

[Answ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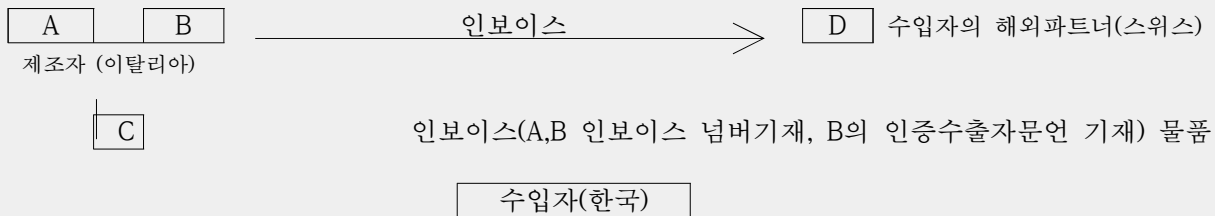
- 인증수출자가 발행한 서류가 아닌, 그 물품의 수출과 관련되어 수출당사자 역내의 다른 업체에서 발행한 상업서류 상에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여도 가능
- 다만, 다른 업체에서 발행한 상업서류에 ‘인증수출자’가 원산지 신고문안을 작성하는 경우 작성장소와 작성일자가 해당 원산지신고서에 기재되어야 함 <2012.4.>

[Why]

- 한-EU FTA에서 원산지신고는 당해물품의 수출과 관련된 상업서류에 인증수출자가 작성하여야 함
- 이 경우 그 상업서류를 발행한 업체와 원산지신고문안을 작성하는 업체가 동일해야 함을 협정에서 규정한 바 없음
- 따라서 어느 업체에서 발행한 서류인지는 고려사항이 아니며, 원산지 신고문안을 ‘인증수출자’인 프랑스 업체가 작성하면 됨

[Q170]

다음과 같은 거래 형태의 경우에 있어서 ‘B(인증수출자)’의 물건에 대하여 한-EU FTA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 * A,B : 제조자(이탈리아)
- * C : 오퍼상(이탈리아, 한국으로 배송·B/L 발행)
- * D : 수입자의 해외파트너로 대금지급처(스위스, 인보이스 발행)

[Answer]

EU 회원국 제조자가 생산한 물품에 대해 EU회원국이 아닌 제3국에 소재하는 자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는 유효한 신고서로 인정될 수 없음 <2012.9.>

[Why]

- 한-EU FTA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17조(인증수출자)에 따라 수출 당사자의 각 법과 규정 및 협정에 충족하는 제품을 수출하는 수출자(인증수출자)만이 원산지 신고서 작성 가능(탁송화물의 전체 가격이 6,0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 또한, 수출자라 함은 FTA 체결 상대국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자이어야 하고 제3국의 수출자는 원산지신고서 작성 권한 및 입증책임이 없으므로 제3국에서 작성한 송품장에 원산지신고문안이 기재되어도 원산지증명서류로 인정되지 않음

[Q172]

EU역내의 보세창고(Warehouse)에서 작성한 원산지신고서의 적정성 여부

- 인보이스 상 Exporter : 싱가포르 소재 업체
- 선하증권 상 Shipper : 스위스 소재 업체
- 선적지 : 폴란드(보세창고 소재지)
- 원산지신고서 : 포장명세서 상에 작성(발송인 : 스위스)

[Answer]

원산지신고서의 작성자가 EU역내 수출자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자유무역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없음 <2013.1.>

[Why]

- 한-EU FTA 협정에 따라 제3국 무역거래가 발생한 경우에도 원산지신고서는 EU역내 소재 수출자만이 작성 가능

- 민원인이 제출한 원산지 신고서는 Packing List 상에 작성되었으나, 작성 주체가 명확하지 않고 폴란드 주 소지의 업체는 보세창고로만 표기되어 있음
- 또한 송품장, 인도증서 등의 관련서류를 통해 폴란드 업체를 수출자로 확인하기 어려움

[Q173]

관세청 지침과 상이*한 스페인 인증수출자 번호체계의 정확성 문의

* 관세청 지침상의 인증번호(4자리)/민원인 제출서류 상의 인증번호(2자리)

관세청 지침 : 스페인(Spain) ES/28/0001/98 국가(2)/지역코드(2)/인증번호(4)/인증연도(2)

스페인 공급자 : ES/08/409/12

[Answer]

상기 인증번호 체계는 EU가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를 채택하고 있는 협정에서 사용하는 인증번호로 「우리나라와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자유무역협정」의 원산지신고서에 사용하는 인증번호 체계가 아님 <2013.2.>

[Why]

민원인이 제출한 인증서는 EU가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EUR. 1)*를 채택한 FTA 체결국과 사용하는 인증서임

* Movement Certificate EUR.1은 「Ministry of Economy」가 발급하는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이며 EU가 칠레, 멕시코, 남아프리카 등의 국가와 체결한 FTA에서 인보이스 방식과 병행하여 사용하고 있음

[Q174]

품목별 인증수출자 인증서 양식에서 「품명」*란을 삭제한 인증서 개정 요청

* 슬로바키아 세관에서 품목별 인증수출자 인증서와 송품장에 기재된 품명이 상이하다는 이유로 협정 적용 거부

[Answer]

-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는 한-EU FTA 및 FTA 특례법에 따라 시행하는 제도로서 HS6단위 기준으로 원산지를 충족하는 물품에 인증을 부여하는 등 제도의 목적상 「품명」란은 필요하다고 판단됨
- 다만, 아국 제도에 대해 상대국에서 오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EU측 관세당국과 긴밀히 협력하는 등 최선을 다할 것임 <2013.2.>

[Why]

- 품목별 인증수출자 인증서에는 인증받은 품목번호(HS6단위)에 해당하는 대표품목을 기재하며, 송품장에는 대표품명이 아닌 계약 당사자 간 거래물품명을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
 - 따라서 인증서와 송품장 상의 품명상이는 협정관세를 배제할 오류사항으로 볼 수 없음
- 인증서 상의 「품명」란 삭제 여부
 - 현재 품목별 인증수출자 인증서에는 인증품목의 「적용대상 협정, 품명, 품목번호, 원산지 결정기준, 원산지」를 기재하여 발급
 - 품목별 인증수출자는 HS6단위 기준으로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에 인증을 부여하므로 「품명」은 인증서의 주요 정보임

[Q175]

한-EU FTA 관련 EU역내 수출자(국가)와 생산자(국가)가 다른 아래와 같은 경우 원산지신고서의 유효성에 대해 질의

- 수출물품 생산과 선적은 프랑스 생산자가 진행
- 수입자와 매매계약 및 송품장 발행은 이태리 수출자가 진행

[Q175-1]

프랑스 생산자가 발행한 선적서류에 프랑스 인증수출자번호를 포함한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유효한지

[Q175-2]

이태리 수출자가 발행한 송품장에 이태리 인증수출자번호를 포함한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유효한지

[Q175-3]

EU역내의 거래당사자로서 수출자와 생산자가 아니어도 물품 선적 및 발송행위를 하는 자가 인증수출자로 인증받아 해당업체가 발행하는 선적서류에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한지

[Answer]

유럽연합당사자측에서 6천유로를 초과하는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당사자의 규정에 의거 인증받은 인증수출자만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음 <2013.5.>

[Why]

- 한-EU FTA에서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자의 범위
 - 6천유로를 초과하는 물품의 경우 수출당사자의 규정에 따라 인증받은 인증수출자가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원산지신고서 작성 가능
-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수출자의 범위
 - 동 FTA에서는 ‘수출자’가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수출’의 정의는 규정이 없으며
 - 「FTA특례법」에서도 ‘수출’에 대한 규정은 없음
 - 「관세법」 제2조(정의)에서 ‘수출’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아래의 경우 모두 수출자로 볼 수 있음
 - 수출신고자(수출신고서의 수출화주)
 - 수출계약을 체결한 자(Invoice의 Exporter)
 - 수출물품 선적자(B/L의 Shipper)
 - 하지만 ‘수출자’에 대해 FTA협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EU측의 원산지신고서 작성 권한이 있는 수출자에 대해서는 수출국에서 판단할 사항

[참고]

-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조(신고의 시기)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수출신고 하도록’ 규정하여 ‘수출신고서’의 ‘수출화주’가 수출자에 해당

[Q176]

한-EU FTA 발효(‘11.7.1) 이전 EU수출자가 취득한 인증수출자번호의 유효성 여부에 대해 질의

1996 최초 인증획득	‘11.7.1 발효	’ 12.1.1 인증추가(EU)
	협정관세 사후 적용	

[Q176-1]

한-EU FTA발효 후 기존 인증에 대해 별도로 한-EU FTA인증 추가, 갱신 등의 절차를 거쳐야만 유효한지 여부

[Answ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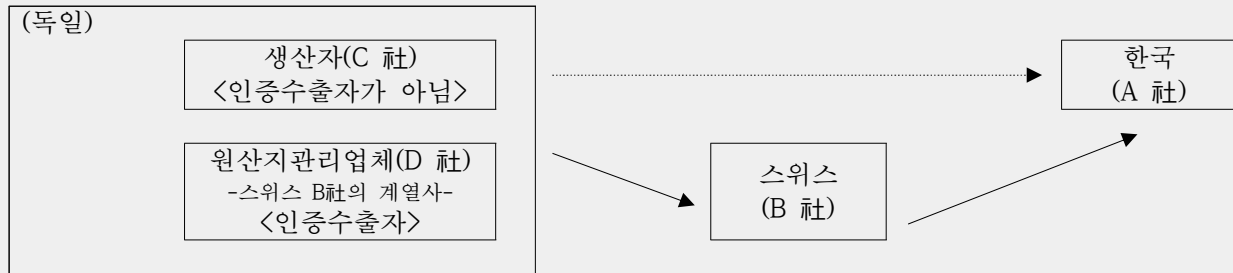
한-EU FTA 발효 이전(‘11.7.1) 취득한 기존 인증에 대해 인증 추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는 한-EU FTA 제17조(인증수출자)에 의거 수출당사국의 국내법에 따라 결정될 사안 <2013.7.>

[Why]

- 인증수출자 제도는 수출당사국의 관세당국이 국내법에 규정된 요건 등을 충족하는 수출자에게 인증(번호)을 부여하는 것임
- 따라서 기존 인증이 있는 경우 한-EU FTA에 적용되는 인증이 추가로 필요한지 여부는 수출당사국의 국내법에 따라 결정
- 다만, 협정관세 사후적용 심사시에는 인증번호 체계의 적정여부 등 원산지신고서의 형식적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며
 - *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신청 심사업무 운영지침(‘11.9.1)
- 인증번호의 진위 여부 및 유효성 여부는 FTA특례법 제13조에 따른 ‘원산지에 관한 조사’ 업무가 수행한 이후에야 확정됨

[Q176-2]

○ 거래 형태



- ▶ 한국의 수입자(A社)는 스위스(B社)와 매매계약을 체결
 - 스위스(B社)는 제3국 송장을 발행
- ▶ 물품은 독일(C社)가 생산하여 한국으로 송부
 - 독일(C社)는 포장명세서를 발행
- ▶ 독일 C社의 원산지관리는 D社(스위스 B社의 계열사)가 수행
 - D社는 인증수출자이지만 선적서류에 나타나지 않음
- 독일 생산자(C社)가 발행하는 포장명세서에 원산지신고문안을 작성할 때, D社의 인증수출자번호를 기재하는 경우
 - 해당 원산지신고서로 수입물품에 한-EU FTA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Answer]

질문과 같이 단순히 생산물품의 원산지를 관리하는 업체는 해당 물품 수출거래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없음 <2013.9.>

[Why]

- ☐ 한-EU FTA 원산지신고서 작성 요건
 - 원산지신고서는 수출자가 해당 제품이 확인될 수 있도록 충분히 상세하게 그 제품을 기술하는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 상에 작성하도록 규정(원산지규정 제15조)
 - 또한 탁송화물 전체 가격이 6천유로를 초과하는 물품은 인증수출자가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도록 규정(원산지규정 제16조)
 - 따라서 원산지신고서는 수출당사자인 EU측의 수출자가 해당 물품의 수출거래와 관련된 상업서류에 작성해야 함
- ☐ ‘수출자’ 해당 여부 판단
 - 질문에서 D社는 단순히 생산업체의 원산지를 관리하는 업체로서 해당 물품의 수출거래와는 관련이 없음
 - 따라서 D社가 원산지신고문안을 작성할 수는 없음

[Q177-1]

아래의 경우 한-EU FTA 제3국 발행송장 여부

- 수출자와 선적지는 독일, 송장은 프랑스에서 발행
- 원산지신고서는 송장(프랑스 발행)에 작성
 - 인증수출자번호는 독일 인증번호를 기재
- 프랑스와 독일은 동일 계열회사

[Q177-2]

질의1에서 제3국 발행송장으로 보지 않는다면

- 프랑스 발행 상업송장에 독일 인증수출자번호를 기재하고 독일 업체가 서명한 경우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한지
- 독일이 인증수출자이므로 수출자 서명 생략이 가능한지

[Answer]

-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서는 ‘제3국 발행송장’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동 협정에서 당사자를 ‘유럽연합’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독일과 프랑스는 하나의 당사자로 볼 수 있음
- 동 원산지신고서의 수입물품에 대해 수입자가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협정관세 적용은 가능하며
- 해당 원산지신고서의 진위여부와 정확성에 대한 확인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

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원산지조사시 수출당사자 관세당국에 요청하여 확인하는 것임 <2013.11.>

[Why]

□ 한-EU FTA 원산지신고서 작성 방법

- 협정에서 한쪽 당사자는 대한민국이며 다른 쪽 당사자는 유럽연합회원국과 유럽연합이므로 유럽연합 내의 각각의 국가는 하나의 당사자에 해당
 - 따라서 ‘제3국 발행송장’에는 해당하지 않음
- 프랑스의 수출자가 수출거래에 따른 상업송장을 발행하고 동 서류에 독일업체의 인증수출자번호를 기재하고 독일업체가 서명할 수 있는지는
 - 해당물품의 수출국인 프랑스와 독일의 법령에 따르는 것
- 또한 수출자의 서명도 수출당사국에 서면약속을 제공한 경우 생략할 수 있는 바 수출국의 법령에 따르는 것
- 수입국 세관은 원산지증명서류의 진위여부 및 정확성은 원산지검증시 해당 수출국의 세관에 동 사항을 요청하여 확인함

[관련규정]

○ 한-EU FTA 서문

한쪽 당사자인 대한민국(이하 “대한민국”이라 한다)과 다른 쪽 당사자로서 유럽연합조약 및 유럽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의 당사자(이하 “유럽연합 회원국”이라 한다)인 벨기에 왕국 ~~ 영국과 **유럽연합**

○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제16조(원산지 신고서 작성 조건)

5. 원산지 신고서에는 수출자의 원본 서명이 수기로 작성된다. 그러나, 제17조의 의미상 인증수출자는, 자신임이 확인되는 원산지 신고서에 대해 본인에 의해 수기로 서명된 것처럼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서면 약속을 수출 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제공한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신고서에 서명하도록 요구받지 아니한다.

○ FTA관세특례법 제13조(원산지에 관한 조사)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체약상대국에서 수입된 물품과 관련하여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원산지증명서류의 진위 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관한 확인을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요청할 수 있다.

VII. 협정세율 적용

[Q178]

한-미 FTA 사후적용을 위한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전송 시 전산오류가 발생하여 사후환급기간을 경과하였을 경우 해결방안은 없는지?

[Answer]

수입자(신고인 포함)의 전산 시스템 오류로 인하여 신청서가 협정관세 적용신청 기간 이내에 관세청 통관시스템에 전송되지 못한 경우에는 협정관세 적용을 받을 수 없음 <2012.8.>

[Why]

수입신고 수리 후에 협정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FTA 특례법 제10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 적용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함

[Q180]

이미 수출된 물품에 대한 사후 관세혜택 적용 여부(APTA)

[Answer]

수입신고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전 수출 건에 대해서는 APTA 특혜대우 소급 적용이 어려움 <2011.9.>

[Why]

APTA 협정에 의한 물품의 원산지증명 및 검증 운영절차 제5조는 특혜대우를 받기 위해 수입신고시 세관당국

에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제출할 것을 규정

[관련규정]

○ APTA에 의한 물품의 원산지증명 및 검증 운영절차

제5조 원산지증명서 제출

(1)특혜대우를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 원본이 해당 상품이 수입신고되는 시점에 세관 당국에 제출되어야 한다.

[Q181]

○ 한-EU FTA 협정은 수리 후 협정관세 적용 신청기간이 수입후 2년 또는 수입당사자의 법령에 명시된 기간으로 규정(선택적으로 규정)

- 협정에 따르면 수입 후 2년이 가능한데도 국내법에서 1년으로 규정한 것은 수입자에게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한 것

- 협정에 따라 수입 후 2년 이내에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Answer]

수리 후 협정관세 적용 신청기간을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으로 규정한 것은 한-EU FTA 제16조에 따라 수입당사국에서 법령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 <2012.12.>

[Why]

「FTA 특례법」에서는 2가지 중 1가지를 선택하여 수입당사자의 법령에 명시된 기간을 선택하여 1년으로 한 것은 협정과 국내법이 상충되는 것이 아님

[관련규정]

○ 한-EU FTA 제16조(원산지신고서 작성조건)

6. 원산지 신고서는 수출자에 의해 관련된 제품이 수출될 때, 또는 원산지 신고서가 관련된 제품의 수입 후 2년 또는 수입 당사자의 법령에 명시된 기간 내에 수입 당사자에서 제시된다는 조건으로 수출 후 작성될 수 있다.

[Q182]

○ EU측 수출자의 파업으로 인해 원산지증명서가 수리 후 협정관세 적용 신청기간(수리일로부터 1년)이 지나서 발급된 경우, 협정관세 적용 가능 여부

○ 한-EU FTA 협정에서 원산지증명서는 유효기간안에 사용되는 경우 수입국에서 특혜관세 대우를 신청할 수 있고

- 예외적인 상황으로 인해 마감일까지 제출하지 못한 경우 수입당사자의 법에 따라 특혜관세 적용 가능

<질의 사례>

· 수입신고 수리일 : 2011.7.25., 2011.8.9.

· EU측 수출자 파업기간 : 2012.4월 - 9월

· EU측 수출자 인증 취득일자 : 2011.11.9.

<한-EU FTA 제18조 원산지증명의 효력>

1. 원산지 증명은 수출 당사자에서 발급된 날부터 12개월 동안 유효하며, 특혜관세대우는 수입 당사자의 관세당국에 그 기간 내에 요청된다.

2. 제1항에 명시된 제출 마감일 후 수입 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제출된 원산지 증명은, 예외 적인 상황으로 인해 정해진 마감일까지 이들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수입 당사자의 각 법과 규정에 따라 특혜관세대우의 목적상 수리될 수 있다.

[Answer]

파업이 발생한 기간을 제외하더라도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던 상황이므로 수리 후 협정관세적용 신청기간을 연장할 수 없음 <2012.12.>

[Why]

□ 협정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상황’에 대한 적용 법령

- 동 협정에서는 ‘예외적인 상황’에 대한 규정 없음
 - 「FTA 특례법」에도 동 규정은 없는 바, 「관세법」을 적용해야 함
 - 「관세법」과 동법 시행령에서는 아래의 경우 관세법에 따른 신청, 제출 등의 기간을 1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

<관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① 천재지변
- ② 전쟁·화재 등 재해나 도난으로 인하여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 ③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 ④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 ⑤ 그 밖에 세관장이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하지만 관세법 시행령에서는 ‘납부기한’에 대해서만 연장절차를 규정하고 있어, 동 질의 건은 준용 불가
- 따라서 협정상 규정된 ‘예외적인 상황’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야 함

□ 협정상 ‘예외적인 상황’ 해당 여부

- 동 질의 건에서 EU측 수출자는 ‘11년 11월에 인증수출자가 되었으며 파업이 발생하는 ’ 12년 4월까지 5개월의 기간이 있었던 상황
 - 따라서 파업이 발생했다 해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 있었으므로 ‘예외적인 상황’으로 볼 수 없음

VIII. 수리비, 왕복 운임

[Q183]

해외임가공 물품 등의 감세 적용 신청을 위해 수입신고 란을 분리한 경우 수리비, 왕복운임, 임가공비의 FTA 협정관세 적용 여부

[Answer]

해외임가공 물품 등의 감세 적용신청을 위해 과세기술상 수입신고 란을 분리한 경우에도 해외임가공 물품 등의 감세 적용 대상이 아닌 수리(가공)비용 및 왕복운임에 대해서도 협정관세 적용 가능 <2010.4.>

[Why]

-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09.8.20) 제5-8조에 따르면, 수리 또는 가공 후 재수입되는 물품의 과세가격은 당초 수출된 물품의 가격 뿐 아니라 수리 또는 가공에 소요된 비용 및 기타 제비용을 포함한 가격을 의미
- FTA 특례법 제5조 규정에 의해 FTA 협정 관세가 기본세율보다 낮은 경우 협정관세가 우선하여 적용

[Q184-1]

미국산 부싱*을 싱가포르로 수출하고 다시 수리하여 한국으로 반입할 때 수리비 등에 대한 FTA 특혜관세 적용가능 여부

* 유리장섬유 방사하는 장치

[Q184-2]

싱가포르에서 부싱을 수입할 경우 FTA 협정관세 적용 여부

[Q184-3]

싱가포르에서 수입한 부싱을 싱가포르로 재수출하고, 수리후 국내로 다시 수입할 때 수리비, Loss 비용, 왕복운송비에 대하여 FTA 특혜관세 적용 가능한지

[Answer]

- ①의 경우에는 원산지가 불분명하여 FTA 특혜관세 적용대상이 아니며
- ②, ③의 경우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해당 물품이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고 적정한 원산지 증명서가 제시되는 경우 FTA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함 <2010.7.>

[Why]

-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09.8.20) 제5-8조에 따르면, 수리 또는 가공 후 재수입되는 물품의 과세가격은 당초 수출된 물품의 가격 뿐 아니라 수리 또는 가공에 소요된 비용 및 기타 제비용을 포함한 가격을 의미
- 따라서 재수입되는 물품이 협정관세 적용 요건을 갖춘 경우 수리(가공)비용 및 왕복운임에 대해서도 협정 관세 적용 가능

[Q185]

- 한-미 FTA 협정에 의거 자국 영역에서 다른 당사국 영역으로 일시적으로 수출된 후 자국 영역으로 재 반입되는 상품은 원산지와 관계없이 관세 면제
- 이 경우 수리 후 재수입되는 물품의 수리비 및 왕복운임 관세 면제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
 - ① 재수입되는 물품과 수리비 및 왕복운임까지 관세가 면제되는지
 - ② 재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만 관세가 면제되고, 수리비 및 왕복운임은 과세대상인지 여부

[Answer]

- 수리 후 재수입되는 물품의 과세가격은 당초 수출된 물품의 가격뿐만 아니라 수리에 소요된 비용 및 기타 제비용을 포함하므로
- 한-미 FTA 협정 및 법령에서 정하는 수리·제조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수리비용 및 왕복운임까지 모두 관세가 면제됨 <2013.5.>

[Why]

- 칠레·페루·미국과의 협정
 -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상품은 원산지와 관계없이 관세를 면제
 - 수리 후 재수입되는 물품의 과세가격은 당초 수출된 물품의 가격뿐만 아니라 수리에 소요된 비용 및 기타 제비용을 포함
- ☞ 수리비, 왕복운임을 포함한 물품의 가치가 과세가격임
 - 따라서 협정 및 법령에서 정하는 수리 및 개조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으면 원산지에 관계없이 수리비 및 왕복운임 모두 면제
- 기타 협정
 - 한-EU등 기타 협정에서는 수리·개조 후 재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 규정이 없으므로 재수입되는 물품 과 수리비, 왕복운임 모두 관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 따라서 물품의 원산지와 협정관세 적용요건 충족여부 및 관세법상 감면 대상인지 여부에 따라 적용 세율 및 면제 여부 결정

[관련규정]

- 한-미 FTA 제2.6조(수리 또는 개조 후 재반입되는 상품)
 1. 어떠한 당사국도, 다음의 경우에 관계없이,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하여 자국 영역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 일시적으로 수출된 후 자국 영역으로 재반입되는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의 원산지와 관계없이 관세를 적용할 수 없다.
 - 가.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하여 그 상품을 수출한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리 또는 개조가 이루어 질 수 있는지 여부, 또는
 - 나. 수리 또는 개조가 그 상품의 가치를 증가시켰는지 여부
 2. 어떠한 당사국도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 부터 일시적으로 반입된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의 원산지와 관계없이 관세를 적용할 수 없다.
 3. 이 조의 목적상, “수리 또는 개조”는 다음의 작업이나 공정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가. 상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파괴하거나 새로운 또는 상업적으로 다른 상품을 만드는 것, 또는
 - 나. 미완성 상품을 완성 상품으로 변형하는 것
- FTA 특례법 시행규칙 제11조(관세가 면제되는 일시수입물품 등)
 - ④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칠레·페루·미합중국·호주·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라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하여 해당 계약상대국으로 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물품으로 한다.
 - ⑤ 제1항제6호 및 제4항에서 “수리 또는 개조”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파괴하거나 새로운 물품 또는 상업적으로 다른 물품을 생산하는 작업이나 과정
 2. 미완성 상태의 물품을 완성품으로 생산 또는 조립하는 작업이나 과정

IX. 보세건설장, 자유무역지역

[Q186]

- 한-EU FTA에서 EU 역내 수출자가 비당사국 수출자에게 판매한 후 비당사국 수출자가 다시 우리나라에 판매한 물품으로서
- EU 역내에서 협정발효일 이전에 직접운송되어 우리나라의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물품을 우리나라의 수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협정관세 적용 여부

[Answer]

- 자유무역지역 사용, 소비신고서 제출하였던 원산지신고서 사본과 운송서류 등 직접운송 서류와 함께
- EU측 수출자가 작성, 발급한 원산지신고서에 기재된 물품과 수입신고되는 물품과의 동일성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가 수입신고서 제출되면 협정관세 적용 가능 <2011.8.>

[Why]

- 원산지신고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2개월이나,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의 수입항 도착한 다음날부터는 유효기간에 산입하지 않으므로
- 당해물품이 원산지신고서 유효기간 안에 우리나라의 수입항에 도착하였다면 협정관세 적용 가능
- 따라서 협정발효일 이전에 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된 물품은 직접운송 증빙서류와 함께 소급하여 작성된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하면 협정관세 적용 가능

[Q187]

한-아세안 FTA에서 자유무역지역에 원산지제품을 원재료로 반입한 후 가공처리한 물품의 협정관세 적용 여부

[Answer]

자유무역지역에 원산지제품을 원재료로 반입한 후 가공처리한 물품에 대하여는 협정관세 적용 불가 <2011.8.>

[Why]

한-아세안 FTA 부속서3(원산지 규정) 제2조(원산지 기준)에 의거 수입물품이 협정관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수출국의 영역에서 생산되어야 함

[Q188]

보세건설장에 원산지제품을 반입, 사용하여 건설공사가 완료된 경우 그 완료된 물품에 협정관세 적용 여부

[Answer]

한-EU FTA에 따른 원산지신고서에 근거한 원산지제품과 보세건설장에서 건설공사 완료 이후 수입신고 수리되는 물품과는 다른 물품이므로 동 원산지신고서에 근거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없음 <2011.9.>

[Why]

- 보세건설장은 산업시설의 건설에 사용되는 외국물품인 기계류 설비품이나 공사용 장비를 장치·사용하여 건설공사를 하는 것으로
- 관세법 제192조(사용 전 수입신고)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 한 물품을 사용하여 건설공사가 완료된 때에 건설공사 완료보고를 한 이후, 완료된 제품에 대해 수입신고 수리되는 것임

[Q189]

다음의 경우 보세건설장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한-미 FTA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한지

- 일부설비는 미국에서, 일부설비는 중국에서 국내 보세건설장에 반입
- 반입 후 보세건설장에 하나의 SET 물품으로 조립하여 수입통관

[Answer]

- 미국과 중국에서 각각 따로 국내 보세건설장에 반입하여 조립된 물품에 대해 원산지증명을 할 수 없으며
- 미국에서 반입된 설비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는 보세건설장에서 수리되는 물품과 다르므로 특혜관세를 적용

할 수 없음 <2012.3.>

[Why]

- 한-미 FTA 제6.17조(특혜관세대우 신청) 제4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은 당사국 영역으로 상품이 단일 선적되는 경우 적용
- 또한 관세법 제17조(적용법령)에 따라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외국물품은 사용 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의 법령을 적용
- 따라서 한-미 FTA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물품과 법령 적용시점의 물품과 동일해야 동 협정에 따른 특혜관세 적용 가능

[Q190]

보세건설장 반입설비에 대한 한-EU FTA 적용과 관련하여 아래의 수입신고 방법이 적정한지 여부 및 협정관세 적용여부

- ① 반입설비를 보세건설장으로 보세운송하여 수입통관 후 건설에 사용하는 방법
(수입신고서의 항 수입신고방법 : 보세건설장에서의 수입신고(G))
- ② 반입설비를 당사 보세창고로 보세운송하여 수입통관 후 보세건설장에 반입하여 사용하는 방법
- ③ 반입설비를 입항지 보세구역에서 수입통관 후 보세건설장에 반입하여 사용하는 방법

[Answer]

상기 수입신고방법은 모두 적정하며, 동 수입신고방법에 의한 수입물품과 한-EU FTA에서 정하는 원산지신고서의 물품과 동일한 경우에는 협정관세 적용 가능 <2012.3.>

[Why]

- 보세건설장에서는 산업시설의 건설에 사용되는 외국물품인 기계류 설비품이나 공사용 장비를 장치·사용하여 건설공사를 할 수 있음
- 관세법 통칙 191-0...1.호에 따라 보세건설장에는 산업시설 건설에 사용되는 외국물품인 기계류 설비품과 공사용 장비, 사무소 등 부대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물품 등을 반입할 수 있음
- 관세법 제183조(보세창고)에 따라 보세창고에는 외국물품이나 통관을 하려는 물품과 내국물품을 장치할 수 있음
- 상기 수입신고 방법은 모두 적정하며, 동 수입신고방법에 의한 수입물품과 한-EU FTA 원산지신고서의 물품과 동일한 경우에는 협정관세 적용 가능

[Q191]

미국에서 국내의 자유무역지역(FTZ)에 반입한 원산지제품(정수기)과 비원산지제품으로 아래와 같은 공정을 수행한 후 재포장된 경우, 재포장된 제품 전체가 원산지 제품인지 여부 및 협정관세 적용 대상인지 여부

FTZ 반입 물품			⇒	FTZ내 공정	⇒	수입신고
품 명	HS NO	원산지				
(미완성)정수기	8421.21	미국	⇒	1. 정수기 박스 개봉, Label 부착 2. 재포장 3. 박스에 Label 부착	⇒	재포장된 정수기를 수입신고
Faucet(수도꼭지)	8421.99	영국				
Power Adapter	8504.40	중국				
Lit Pack(매뉴얼)	4901.99	미국				

<자유무역지역 수행 공정>

- ① 미국에서 반입된 정수기 박스 개봉 후 정수기에 상품 Label 부착
- ② 영국, 중국에서 반입되어 있던 Faucet, Power Adapter, Lit Box를 박스에 넣어 재포장
- ③ 포장박스에 Label 부착
- ④ 국내로 수입신고

[Answer]

우리나라의 영역으로 수입된 비원산지 제품은 우리나라의 자유무역지역에서 원산지 제품과 함께 포장된 경우라도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없음 <2012.8.>

[Why]

협정관세 적용 대상물품은 계약당사국에서 수출되어 우리나라의 영역으로 수입된 원산지제품에 적용하는 것이

므로 미국에서 수출되지 않은 물품은 특혜관세 적용 불가

[Q194]

보세공장 반입물품에 대해 ‘사용신고’ 후에 제품 생산 중단 등의 사유로 사용하지 않은 원상태로 수입하는 경우

[Q194-1]

FTA 관세특례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수리 전 협정관세 적용’ 신청을 보세공장 사용신고시 해야 하는지 수입신고시 해야 하는지

[Answer]

- 관세법 제186조에 따라 보세공장에서 사용하기 위해 반입한 물품을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27조에 따라 제품생산 중단 등의 사유로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인 잉여물품이 발생하여 원상태로 국내로 수입하는 경우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적용신청은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신청하여야 함 <2013.11>

[Why]

□ 보세공장 반입물품을 원상태로 수입할 수 있는지

- 보세공장에서 사용하기 위해 외국물품을 반입한 후,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상태로 국내로 수입하는 경우는 2가지
 - (1) 국내로 수입된 물품의 하자보수용
 - ※ 보세공장운영에 관한 고시 제14조(국외가공 등 원재료 원상태 반출) : 국내로 수입된 물품의 하자보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보세공장에 반입신고 또는 사용신고된 원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재료의 원상태 수입을 허용할 수 있다.
 - (2) 제품생산 중단 등의 사유로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인 잉여물품이 발생한 경우
 - ※ 보세공장운영에 관한 고시 제27조(수출·수입 또는 국외반출의 신고) : 보세공장에서 생산한 제품과 잉여물품 중 국내로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은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따라서 제품생산 중단 등의 사유로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인 잉여물품이 발생한 경우에는
 - 보세공장에 반입한 물품 원상태로 국내로 수입할 수 있음

[Q194-2]

FTA관세특례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수리 후 협정관세 적용신청’은 보세공장 사용신고 후 1년 이내에 할 수 있는 것인지 수입신고 수리 후 1년 이내에 할 수 있는 것인지

[Answer]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음 <2013.11.>

[Why]

□ 보세공장 반입물품의 국내 수입통관시 수입신고 수리시점

- 관세법상 ‘수입’은 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경우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 보세공장 ‘사용신고’한 물품의 경우에도 해당물품을 보세공장에서 사용하지 않고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보세공장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것이 ‘수입’에 해당
 - ※ 관세법 제186조에 따른 ‘보세공장 사용신고’는 보세공장에 반입된 물품을 사용하기 전에 세관장에게 신고하는 것
- 즉 보세공장 사용신고 물품이 보세공장에서 사용되지 않고 국내로 수입되는 경우에는 보세공장으로부터 반입하는 때가 ‘수입’하는 때이므로
 - 해당 물품을 국내로 수입하면서 수입신고하는 시점에서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는 것이며
 -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수 있음

X. 분할 수입, 분할 선적

[Q195]

한-EU FTA 관련 분할수입 신고시 협정세율 적용 신청을 하지 않고 수입신고 수리전 반출 승인을 받고 반출한 물품도 완제품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협정에서 정하는 C/O를 첨부하여 협정세율 적용신청을 할 수 있는지?

[Answer]

부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이 아닌 제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가 제출되는 경우 사후적용 신청 가능 <2012.7.>

[Why]

한-EU FTA에서 분할 수입의 경우에는 부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이 아닌 제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관련규정]

- 한-EU FTA 제20조(분할수입)
HS 통칙 2(a)의 의미에서 HS 제16부 및 제17부 또는 제7308호 및 제9406호에 해당하는 분해되거나 미조립된 제품이 분할 수입되는 경우, 그 제품에 대한 단일 원산지 증명이 첫 번째 분할 수입시 관세당국에 제출된다.
- 한-EU FTA 제7조(원산지 자격 단위)
1. 이 의정서의 규정의 적용을 위한 자격 단위는 HS의 상품분류체계를 사용하여 분류를 결정하는 경우 기본 단위로 간주되는 제품이다. 따라서
가. 물품의 집단 또는 집합으로 구성된 제품이 HS 상에서 단일의 호로 분류되어 있을 때, 그 전체가 자격의 단위를 구성한다. 그리고
나. 탁송화물이 HS의 동일한 호에 분류된 많은 동일한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 이 의정서의 규정을 적용할 때 각 제품이 개별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Q196]

분할선적된 물품을 완제품으로 수입통관 할 때 완제품에 대해 한-미 FTA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사례 1	- 미국에서 원산지 제품을 수차례 분할 선적 - 보세건설장에 반입하여 완제품으로 조립 (미 수출자가 완제품에 대해 C/O 발급)
사례 2	- 일부물품은 미국에서, 일부 물품은 비당사국에서 선적 - 보세건설장에 반입하여 완제품으로 조립 (미 수출자가 완제품에 대해 C/O 발급) - 완제품 전체에 대해 협정관세 적용여부
사례 3	- 일부물품은 미국에서, 일부 물품은 비당사국에서 선적 - 비당사국 선적물품은 입항지 등에서 수입통관 - 보세건설장에 반입하여 완제품으로 조립 (미 수출자가 완제품에 대해 C/O 발급) - 미국에서 선적된 물품에 대한 완제품에 협정관세 적용여부
사례 4	- 미국에서 원산지 제품을 수차례 분할 선적 - 완제품의 세번을 적용받고자 ‘신고수리전 반출’ 신고 (미 수출자가 완제품에 대해 C/O 발급)

[Answer]

- <사례1, 2> 미국으로부터 분할선적되어 우리나라로 반입되는 물품이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보세건설장에서 조립된 완제품에 대하여 협정관세 적용 가능
 - ① 수출국에서 생산되어 선적한 원산지제품으로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2’에 따른 완제품의 주요특성을 가진 물품일 것
 - ② 포장, 운송 등의 편의를 위해 분할해서 수입하는 물품일 것
 - ③ 우리나라에서 단순 조립 이상의 추가가공이 발행하지 않을 것
 - ④ 관세법 제17조(적용법령)에서 정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이 있을 것
 - ⑤ 수출국에서 선적된 수출당사국의 원산지제품으로만 우리나라에서 조립될 것

- <사례3> 미국에서 수출된 원산지물품과 제3국에서 수출된 비원산지물품이 보세건설장에 조립된 경우 완성품에 대하여는 협정관세 적용 불가
- <사례4> 미국에서 미조립상태로 분할선적 되어 관세법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을 하는 경우에도 상기 1~4번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협정관세 적용 가능 <2012.11.>

[Why]

- (1) 분할선적한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이 허용되는지 여부
 - 협정상 원산지증명은 단일선적 또는 복수선적 물품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 규정에서 사용된 단일선적은 복수선적과 대비되어 사용된 것으로, 분할 선적을 금지하는 규정은 아님
 - 즉, 분할선적물품에 대해 원산지증명을 금지하고 있지 않으므로 허용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분할선적물품의 통관에 관한 사항은 국내법령에 따라 적용함이 타당
- (2) 한국에서 조립된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여부
 - 협정상 미국 원산지상품(재료)이 한국에서 상품에 결합(incorporated)된 경우 원산지는 한국이 되는 것으로 규정
 - 또한 원산지가 한국이 되면 협정관세 적용은 불가
 - 하지만 동 규정은 원산지재료가 상품의 생산에 투입된 경우에도 원산지 제품이 될 수 있음을 명시하는 규정인 바, 분할선적되어 한국에서 조립된 물품에 적용될 수 없음
 - 또한 협정상 조립(assembling)도 생산으로 규정하고 있어, 동 물품의 생산국이 한국이 될 수도 있음
 - 하지만 분할선적물품은 수출선적시점에서 이미 원산지제품의 특성을 갖춘 물품(원산지가 ‘미국’인 제품)인 바
 - 단순히 한국에서 조립되었다는 이유로 생산국을 ‘한국’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원산지를 미국으로 봄이 타당)

<수입신고수리전 반출 적용 요건(통관기획과 지침 ‘11.5월)>

1. 완성품 세번으로 분류될 수 있는 물품(HS 통칙 2(가))
2. 포장, 운송 등의 편의를 위해 분할해서 수입하는 물품
3. 수입통관 후 단순조립(연결, 리벳, 용접 등) 이상의 추가가공을 필요로 하지 않는 물품
4. 단일계약에 의해 1개국에서 동일수출자로부터 수입하는 물품(2개국 이상의 국가 또는 회사에서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

- (3) 수출당사국이 아닌 물품과 조립된 경우 협정관세 적용여부
 - 원산지증명은 수출국에서 생산되어 선적하는 원산지제품에 대해 하는 것
 - 즉, 수출이 완료되어 다른 당사국에 반입된 이후 다른 물품과 조립된 완성품에 대하여는 증명할 수 없음
 - 또한 한국에서 한국산 물품과 조립되는 경우에도 수출물품이 아닌 물품이 혼합되는 것이므로 적용 불가

[Q197]

- 미국에서 분할선적된 물품이 국내에서 동일한 날짜, 동일한 장소에서 동시에 각각 수입신고, 이를 하나의 완성품으로 보아 완성품의 세번(HS8501.34)로 수입통관
- 이 경우 완성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이 있다면 각각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대해 한-미 FTA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한지

[Answer]

- 미국으로부터 분할선적 된 수출물품이 우리나라에 반입되는 때에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한-미 FTA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음
 - ① 수출국에서 생산되어 선적한 원산지제품으로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2’에 따른 완성품의 주요특성을 가진 물품일 것
 - ② 포장, 운송 등의 편의를 위해 분할해서 수입하는 물품일 것
 - ③ 우리나라에서 단순 조립 이상의 추가가공이 발행하지 않을 것
 - ④ 관세법 제17조(적용법령)에서 정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이 있을 것 <2012.11.>

[Why]

- 협정상 원산지증명은 단일선적 또는 복수선적 물품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 규정에서 사용된 단일선적은 복수선적과 대비되어 사용된 것으로, 분할 선적을 금지하는 규정은 아님
- 즉, 분할선적물품에 대해 원산지증명을 금지하고 있지 않으므로 허용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분할선적물품의 통관에 관한 사항은 국내법령에 따라 적용함이 타당
- 따라서 관세법 제17조(적용법령)에 따른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이 있으면 협정관세 적용 가능

[Q198]

한-아세안 FTA 관련, 1건의 원산지증명서의 물품이 항공기의 공간부족으로 2차례로 나누어서 운송됨

- ① 1차로 도착된 화물의 긴급통관을 위해 적하목록을 정정하고 우선 도착된 화물만 수입통관함
- ② 이후 2차로 나머지 화물이 도착하여 수입통관함

[Q198-1]

협정문과 FTA특례법규에 원산지증명서는 1회에 한하여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지?

[Answer]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부록1(원산지 규정을 위한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 제7조에서 원산지증명서는 매 수출 때마다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신고 기준으로 발급하여야 함 <2012.11>

[Why]

□ 협정상 원산지증명서 발행에 관한 규정

-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시 또는 수출직후 곧 발급하도록 규정
 - 즉, 미 수출시 마다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이므로 수출선적되는 단위인 B/L단위로 발급하는 것이 원칙
 - 국내법규에서는 수출신고기준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원칙. 단, 분할적재하는 경우에는 B/L별로 발급도 가능
 - FTA특례고시 제2-1-3조(원산지증명서의 구분 및 기준)

[Q198-2]

FTA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Answer]

선복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분할 선적된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를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음 <2013.5.>

[Why]

□ ‘선복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분할선적한 경우’ 적용 여부

- 동 협정, FTA 특례법 및 관세법에 원산지증명 물품의 분할선적과 분할수입에 대한 규정은 없음
- 국내법규에서는 원산지증명서는 동일 B/L건에 한하여 사용하도록 규정하면서 선복부족 등의 경우에는 분할 사용을 허용
 - *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1조(원산지 증명서)
- 따라서 국내법규를 참고하여 선복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분할선적된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분할사용 가능

[관련규정]

- FTA 특례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① 이 법은 「관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9조(원산지증명서의 제출 등)
 - ⑦ 원산지증명서는 같은 B/L건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선복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분할 선적한 경우에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XI. 품목번호 상이

[Q199]

한-미 FTA 관련, 수출입자가 사용하는 HS Code가 상이한 경우 원산지 관리는 양국 중 어떤 세번에 따라 해야 하는지?

[Answer]

특혜관세의 적용여부는 수입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결정되므로 미국 관세청의 품목분류 결정에 따라 원산지 관리를 하는 것이 유효함 <2012.6.>

[Why]

한-미 FTA 협정 적용시 품목분류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동 협정문 제7.10조(사전심사결정) 또는 FTA 특례법 시행령 제19조(원산지 등에 관한 사전심사)에 따라 사전심사*를 통하여 정확한 품목분류 확인 가능

* 한국 :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 미국 : 미국 관세청(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Advance Rulings」

[Q200]

한-EU FTA 관련 송품장에 기재된 HS번호와 수입신고시 HS번호가 다른 경우 협정관세 적용 여부

[Answer]

송품장(원산지신고서)에 기재된 품목분류번호와 수입신고하는 품목분류번호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도 협정관세 적용 가능 <2011.10.>

[Why]

원산지신고서에는 품목분류번호(HS번호)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출자가 작성한 송품장에 기재된 품목분류번호는 협정관세 적용시 고려사항에 해당하지 않음

[Q201]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시, 원산지증명서와 수입신고서상의 품목분류가 상이하나 원산지결정기준이 동일한 경우 특혜적용이 가능한지

[Answer]

원산지증명서와 송품장의 HS가 다른 이유가 원산지증명서의 오류로 인한 것이라면 「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제5항에 따라 세관장은 5일 이상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 <2012.11.>

[Why]

- 협정관세 사후적용 시에는 FTA 특례법 시행규칙 제16조 제5항 제2호의 원산지증명서의 오류 또는 흠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보정 요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
- 단, 협정관세 적용 요건 충족 여부 확인이 어렵거나 시일이 소요된 경우*에는 우선 세액보정 또는 경정처분하되,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제출서류 일체를 FTA검증부서에 인계(청 원산지담당관 '11.8.30)
- * 품명·HS 불일치, FOB 가격 불일치, 제3국 송장 : 연결원산지 증명서 표기 누락, 진정등본·소급발급 문구 누락 등

XII. 소액물품 등 기타

1. FTA 소액물품

[Q202]

한-EU FTA에서 여행자 휴대품 간이통관시 구매영수증에 판매자의 서명이 누락된 경우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Answer]

- 관세청은 여행자의 편의를 위하여 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증명서 대신 판매자 서명이 기재된 구매영수증을 제출하는 경우에도 특혜관세를 적용하고 있음
- 따라서 판매자의 서명이 누락된 구매영수증은 적정한 원산지 증명서로 인정될 수 없음 <2012.7.>

[Why]

- 한-EU FTA 제16조(원산지 신고서 작성 조건) 및 제21조(원산지증명서 면제)에 따라 여행자 개인 수하물이 미화 1,000달러 이하의 경우 원산지신고서 제출없이도 원산지 제품으로 인정되나
- 미화 1,000달러 초과 물품은 수출자의 원본 서명이 수기로 작성된 원산지 신고서가 제출되어야 하며 수출

- 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서면약속을 제출한 인증수출자에 한해 서면 면제 가능
- 여행자 휴대품에 대하여는 신속한 여행자 통관을 위하여 구매영수증(원산지신고문안, 판매자 서면 기재) 및 원산지표시 등의 확인을 통해 협정세율 적용 가능토록 FTA 소매물품의 협정세율 적용 지침 마련(FTA 집행기획담당관, '11.6.30)

[Q203]

여행자휴대품 통관 시 한-EU, 한-미 FTA 협정에 따라 미화 1,000달러 이하의 제품은 무관세 통관이 가능한지?

[Answer]

- 미화 1,000불 이하의 여행자휴대품에 협정관세율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면제함
- 이 경우 협정관세율 적용방법은 전체 구매가격에서 여행자 면제한도 600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협정세율을 적용 <2012.10.>

[Why]

- 한-EU, 한-미 FTA 모두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면세규정은 없음. 다만, 미화 1,000불 이하 여행자 휴대품은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 이 경우 한-EU FTA는 비상업용에 해당하는 물품에 한해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면제하나, 한-미 FTA는 상업용을 구분하지 않고 면제

[Q204]

- 민원인은 프랑스 파리에서 가방을 구매하여 현지 매점 직원이 영수증 뒷면에 스탬프로 찍은 원산지 신고문안을 제출
- 인천공항세관에서 한-EU FTAS 협정문에 규정된 원산지 신고문안과 일치하지 않아 FTA 특혜관세 적용 불허
- *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와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의 순서 불일치, 주어 (these products), preferential 없음

[Answer]

원산지 신고문안의 주요 내용이 순서가 불일치하고, “these products“와 “preferential“ 등 주요 단어가 빠져 해당 제품이 EU 특혜원산지 제품인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로 인정될 수 없음 <2013.7.>

[Why]

- 한-EU FTA 원산지 신고문안의 형식적 요건과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협정문에서 정한 바와 일치하여야 함
- 상기 오류는 타자 오류와 같은 명백한 형식적 오류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유효한 원산지 신고서로 인정될 수 없음

[Q205]

- 현재 유럽 매장에서 가방을 구매하고, 원산지 신고 스탬프를 요청하더라도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 한-EU FTA 시행 초기 스탬프를 찍어 줬으나, '12년 末부터 거의 찍어주지 않고 있으며, 스탬프를 찍어주는 매장은 극히 일부라고 함
- 원산지가 유럽으로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는데도 판매자로부터 제공받지 못한 원산지신고서가 없다는 이유로 FTA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불공정한 것이 아닌지
- 또한, 판매장에서 원산지 신고 스탬프 제공을 거절하는 경우 해결책은 없는지

[Answer]

- EU를 원산지로 하는 미화 1,000불 초과물품에 대한 FTA 협정관세는 한-EU FTA 제15조 규정에 의한 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신고서에 근거하여 적용
- 따라서, 수출자로부터 원산지신고서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 협정관세 적용은 불가함 <2013.7.>

[Why]

□ 원산지표시로 한-EU FTA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 미화 1,000불을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 원산지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한-EU FTA를 체결한 체약국간 합의된

사항으로

- 미화 1,000불 초과 물품은 원산지 표시와는 별개로 원산지를 증명하기 위해 송품장 등 상업서류에 원산지 신고를 하여야 함
- 다만, 여행자 휴대품에 대해서는 기존의 휴대품 통관절차를 적용하되, 원산지 확인을 위한 간이한 절차로 구매영수증 내에 원산지신고문안 및 판매자 서명을 기재할 것을 요구

□ 판매자로부터 원산지 신고서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 해결책은 없는지

- EU를 원산지로 하는 미화 1,000불 초과물품에 대한 FTA협정관세는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제15조 규정에 의한 ‘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신고서’에 근거하여 적용하는 것임
- 따라서, 수출자로부터 원산지신고서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 협정관세 적용은 불가함

[Q207]

수출자 개인이 송품장에 작성한 원산지 신고문안을 한-EU FTA 협정에 규정된 원산지신고서를 인정 가능한지 여부

<사례 1> 유럽 현지인이 백화점에서 핸드백을 구매한 후, 국내 친지에게 국제우편으로 발송하면서 송품장에 원산지 신고문안 작성

<사례 2> 국내구매자가 국내 전자상거래업체에 구매대행을 의뢰한 후, 전자상거래업체의 유럽 현지 지인이 물품을 구매하여 국제우편으로 발송하면서 송품장에 원산지 신고문안 작성

[Answer]

유럽 현지에서 물품을 구매한 현지인은 거래 당사자인 수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발행된 송장도 동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업서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 없음 <2013.9.>

[Why]

□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수출자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

- ‘수출자’의 정의에 대하여는 한-EU FTA 협정, FTA 관세특례법, 관세법 모두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 수출자를 사업자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물품의 국제적인 이동이 있는 경우 개인도 수출자에 해당할 수 있음
- 다만, FTA 거래에서 수출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주체로서 원산지증빙서류 등 보관의무, 자료 제출 의무를 부담

□ 특수관계에 있는 유럽 현지인이 수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국내 구매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유럽 현지인 등은 판매자로서 또는 판매자를 대리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발송한 것이 아니며
- 거래 당사자가 아닌 단순히 국내 구매자의 이익을 위하여 물품 구매와 배송 및 인도 등을 대리하는 것에 불과함
- 따라서 유럽 현지인 등은 수출자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그 실질은 구매대리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
- 구매대리 행위가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이루어지고, 배송 및 인도를 위한 물품의 국가간 이동이 발생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산지신고서 작성 불가

○ 구매대리인 정의<두산백과>

상거래에서 구매자를 대리하여 상품을 구매하는 자. 통상적으로 구매자와 장기간 관계를 유지하는 자로 상품을 구입·인수·검사하여 창고에 보관하며, 구매자에게 제품을 선적해 보내는 역할을 한다.

○ 구매대리인 정의<관세평가협정 제8조>

구매대리인이란 구매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급자를 물색하고, 구매 관련사항을 전달하며, 샘플을 수집하고, 보험·운송·보관 및 인도 등을 알선하는 자를 말한다

□ 사인간 거래에서 발행된 송장이 상업서류에 해당되는지 여부

- 국제우편으로 발송된 핸드백과 Coffee Maker는 그 성격과 수량(1개)으로 보아 개인적인 용도의 물품임
- 따라서 상업적인 수입이 아닌 사인간의 거래에서 유럽 현지인 등이 발행한 송장은 단순한 물품 명세서 및 계산서에 불과하고,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업서류에는 해당되지 아니함

2. 원산지 증빙서류

[Q208]

한-미 FTA 협정상 부가가치비율 산정 및 원산지확인서 작성 관련 질의

[Q208-1]

한-미 FTA 협정상 역내 부가가치비율을 산정하는 경우 조정가치(AV)를 적용하여야 하는데, 세금계산서상의 국내공급가액을 조정가치로 사용할 수 있는지

[Answer]

공급가격을 조정가치로 사용 가능

[Why]

세금계산서 상의 공급가격이 제조비용·이윤 및 일반경비 등 협정에서 규정한 비용을 포함하였다면, 공급가격을 조정가치로 사용 가능

[Q208-2]

국내공급가액(세금계산서상 금액)에 대하여 수입상품에 대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결정되는 가치로 환산하기 위하여 추가조정을 해야 한다면, 각 추가조정 금액(화물비, 보험료, 포장비 등)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한 비용이 없는 경우에는 어떤 자료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Answer]

실제로 지급한 비용이 없다면 조정할 필요가 없으며, 기준가격표는 존재하지 않음

[Q208-3]

월별 판매가가 달라진다면 1년 단위의 포괄확인서가 아닌 월별로 상이한 원산지확인서를 작성·발급하여야 하는지? 지급한 비용이 없는 경우에는 어떤 자료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Answer]

실제 판매가를 적용하며, 사후 정산과정에서 원산지결정기준을 불충족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수출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함

[Why]

판매가는 부가가치 비율 산출시 중요한 요소로 그 가격의 변동에 따라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여부가 좌우됨

[Q208-4]

월별 판매가가 달라진다 하여도 협정의 원산지 결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역내부가가치비율을 충족시킨다면, 1년 단위 포괄확인서를 발급하는 것도 가능한 것 아닌지?

[Answer]

1년 단위 포괄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음

[Why]

포괄확인서의 발급이 표준원가 등의 적용을 통해 미리 발급되어지는 것이므로 월별 판매가가 변동되어도 역내 부가가치비율을 충족시킨다면 1년 단위 포괄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음

[Q208-5]

제품생산을 위한 원재료의 가치를 계산할 때, 수입가는 외화이고 국내 매입은 원화로 되어있어 부가가치기준 적용시 원화 환산과정이 필요한 데, 이럴 때 외화가격의 원화 환산가치는 어떤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Answer]

통화환산, 회계 등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GAAP)에 부합하는 일관된 기준에 따라야 하며, 보편적으로 생산자가 판매 또는 구매기록의 목적으로 사용한 환율을 적용

[Q208-6]

동일 원재료를 일정기간에 걸쳐 나누어 수입하여 환율의 변동이 발생하게 되면 역내국 원료에 의한 부가가치 비율 또한 달라지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원산지포괄확인서는 작성할 수 없는 것이지요?

[Answer]

원산지포괄확인서의 작성은 가능하나, 실제 생산시점에 실제원가를 적용, 부가가치비율을 재산정하여야 하며, 재산정후 원산지결정기준 ‘불충족시’ 즉시 해당업체에 통보하여야 함

[Why]

원산지포괄확인서는 표준원가 혹은 추정원가 등을 적용하여 미리 발행되는 것임

[Q208-7]

- 당사가 생산하는 최종제품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이 부가가치기준에 해당되고, 당해 최종제품에 대한 원산지확인서를 작성하고자 할 때
- 가공임을 지급하고 ‘사입’한 ‘모듈’에 대해서는 ‘자가생산된 재료’로 보아 협정 제6장 제6.3조(재료의 가치) 다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재료의 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 것이지요?

[Answer]

상기 모듈은 비록 부품 및 가공임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외주업체가 생산한 것이므로 자가 생산된 재료가 아님. 따라서 제6.3조 나호에 따라 재료 가치를 산정하여야 함 <2009.8.>

[Why]

‘자가생산된 재료’라 함은 상품의 생산자에 의해서 생산되고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산지 재료를 말함

[Q209]

한-EU FTA 원산지증명된 수입물품을 다른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원산지(포괄)확인서 작성방법 질의

[Answer]

- ④번란(적용대상협정)은 ‘한-EU’
- ⑧번란(원산지기준충족여부)는 ‘충족’
- ⑨번란(원산지)은 ‘EU’
- ⑦번란(원산지결정기준)은 알지 못하는 경우 공란으로 기재
- ⑩번란(원산지포괄확인기간)은 공급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등 원산지(포괄)확인서에 기재되는 항목의 내용이 모두 같은 경우에만 기재 가능 <2011.12.>

[Why]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원산지(포괄)확인서 작성방법에 따라 기재

[Q210]

국내제조확인서 작성방법에 대한 질의

[Q210-1]

특정업종(화학 및 석유 등)에 국한없이 모든 업종에서 국내제조확인서 사용이 가능한 지

[Answer]

국내제조확인서는 사용 범위를 특정 업종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음

[Why]

「FTA 특례 시행규칙」 제6조의4(수출용 원재료의 국내제조확인서)에 따라 국내제조확인서는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를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해당 물품의 국내제조 사실을 확인해주는 서류임

[Q210-2]

세번변경 기준 또는 공정누적 기준에 국한없이 국내제조확인서를 사용하여 확인한 국내부가가치 부분을 최종 수출물품의 원산지 판정시 역내산 재료비 가치로 간주하여 합산 반영할 수 있는지?

[Answer]

최종 수출물품의 원산지 판정시 역내산 재료비로 반영할 수 있음 <2012.6>

[Why]

원산지 인정을 받지 못한 원재료에 대하여 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부분 또는 특정공정을 수행한 사실을 확인하여 최종물품의 원산지 결정시 반영할 수 있음

[Q211-1]

원산지포괄확인서를 기존에 공급한 물품에 대해 사후에 소급하여 발급할 수 있는지

※ [예] 공급일 : '12.1.1 ~' 12.6.30, 작성일 : '12.10.1

[Q211-2]

단수원산지 확인서의 경우에도 사후발급이 가능한지?

[Answ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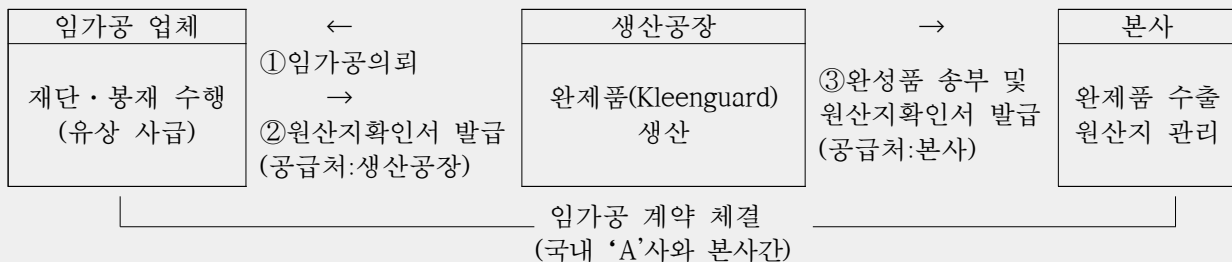
- 원산지 포괄확인서의 경우 포괄확인기간이 '작성일로부터 12개월의 기간' 이라 하더라도 사후에 작성하여 제공할 수 있음
- 단수원산지확인서도 사후에 작성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2012.7.>

[Why]

- 원산지확인서는 물품공급자가 공급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여 공급받는 자(생산자, 수출자)에게 제공하는 서류이며, 원산지포괄확인서는 동일한 자에게 장기간 공급하는 경우 제공하는 서류임(포괄확인기간은 최장 12개월)
- 즉, 원산지확인서는 원산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이며, 반드시 동 서류로 원산지를 확인하는 것은 아님
- ※ 원산지확인서는 원산지소명서의 기재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원산지확인서류의 일종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공급자가 원산지확인서가 아닌 다른 종류의 원산지확인서를 제공하여도 무방하며
- 특례법 시행규칙에서 포괄확인기간을 '공급일로부터 12개월'로 규정하고 있어도 이를 사후작성이 불가능한 것으로 볼 수 없는 바, 원산지포괄확인서는 기존에 공급했던 물품에 대하여도 사후에 작성될 수 있음
- 단수원산지확인서도 법령에서 사후에 작성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아니함

[Q212]

다음과 같은 거래관계 및 생산절차를 통해 생산된 물품에 대하여 발행한 원산지(포괄)확인서로 특정공정(재단 및 봉제) 입증이 가능한 지 여부



- ①본사는 생산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재단 및 봉제 작업을 국내 업체에게 가공의뢰
- ②임가공업체는 작업 완료 후 원산지확인서를 생산공장에게 발급
- ③생산공장에서 마무리 공정 수행 후 원산지확인서를 본사에게 발급
- ※ 임가공 계약은 본사와 임가공업체간에 체결되어 있음

※ [참고] 물품 개요

- 품명 : KLEENGUARD, HS 6210.10
- 한-아세안 FTA 결정 기준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계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에 한한다.

[Answer]

임가공 계약 당사자와 원산지확인서상의 거래당사자가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관련서류로 공급물품의 동일성이 확인된다면 사용이 가능함

<2013.2.>

[Why]

- 원산지확인서는 물품의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원산지를 확인해 주는 서류로서 공급단계마다 발행하는 것이 원칙임
- 따라서 임가공 계약 당사자와 다른 자에게 물품을 공급한 경우 임가공 계약서와 관계없이 실제 물품을 공급받는 자에게 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하는 것이 타당

[Q213]

공급자로부터 이미 발급받은 원산지확인서를 사후에 공급자가 재발급한 경우 유효성 여부

[Answer]

기 수취한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재발급하는 경우 재발급일 당시의 원산지관리자가 서명한 원산지(포괄)확인서는 유효한 원산지(포괄)확인서로 인정될 수 있음

<2011.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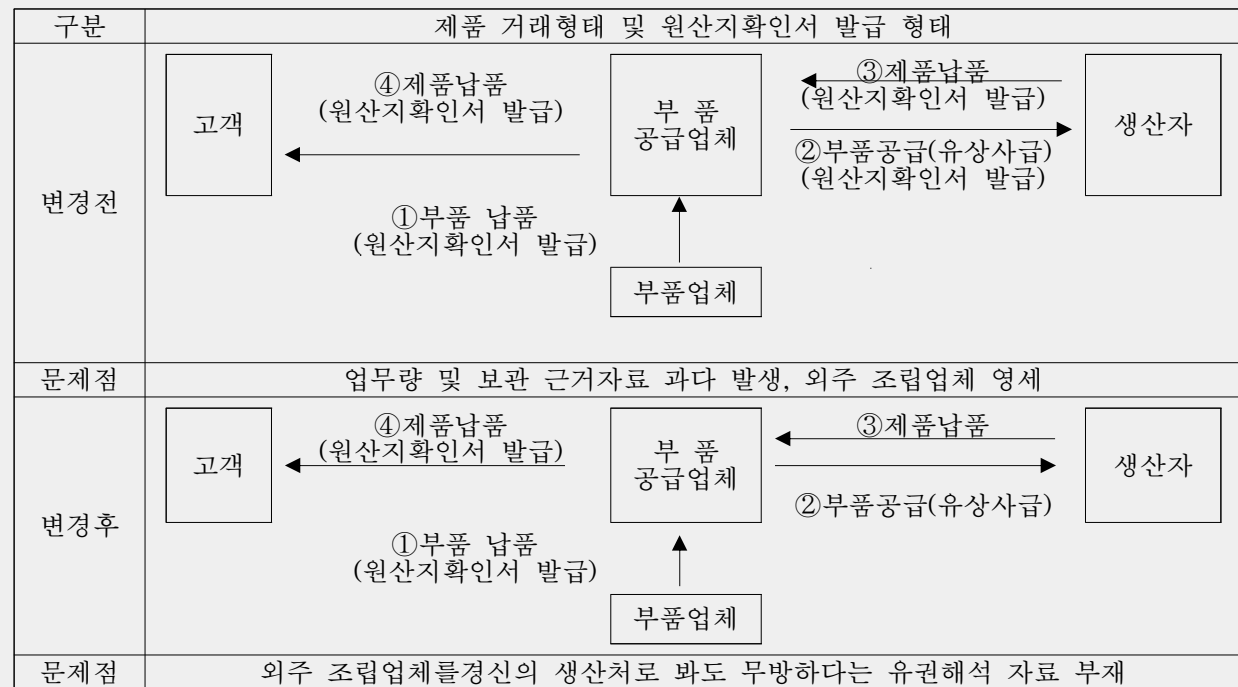
[Why]

FTA 특례법 등 국내 법령에서 원산지(포괄)확인서의 재발급을 금지하고 있지 아니함

[Q214]

부품 전체를 공급받아 제품 생산 후 납품하는 경우*, 생산자(외주조립업체)를 부품공급자의 생산처로 볼 수 있는가?(원산지확인서를 작성·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 부품을 공급하는 공급자가 제품의 전반적인 관리(설계, 도면, 설계변경, 이력관리 등)를 진행하고 생산자는 공급자의 제품만 생산하는 관계



[Answer]

- 원산지확인서를 작성, 제공한 생산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현지조사 등 세관의 원산지조사를 받을 의무가 있음
- 따라서 생산자가 작성, 제공한 원산지확인서가 없더라도 물품을 공급받은 귀사가 그 물품의 원산지를 직접 입증할 수 있고 현지 조사 등 세관의 원산지조사를 모두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생산자가 반드시 원산지확인서를 작성,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님 <2013.4.>

[Why]

□ 원산지확인서 작성자의 의무

- 원산지확인서는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나 물품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공할 수 있는 서류로서 원산지증빙서류*의 일종으로 볼 수 있음
- * 원산지증빙서류는 수출입물품의 원산지증명서와 그 밖에 원산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정보 등을 말함
- 즉 ‘원산지확인서’는 공급하는 물품이 해당 협정에 따른 원산지 물품임을 작성자가 확인하여 작성하는 서류이므로
 - 작성자는 그 물품의 생산과 관련된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원산지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세관당국의 원산지조사도 받을 수 있어야 함
- 따라서 생산자가 원산지 확인서 등 원산지입증서류를 작성, 제공하지 않은 경우 생산자는 협정 및 법에 따른 의무가 없음

□ 원산지확인서를 반드시 작성, 제공해야 하는지

- 원산지확인서는 법령에서 물품을 공급하는 자가 반드시 작성, 제공해야 하는 서류는 아님
- 즉, 부품공급자와 생산자(외주 조립업체)가 다른 업체인 경우, 원산지확인서 없이도 그 물품의 원산지를 입증할 수 있고 세관의 원산지조사를 받을 수 있다면 원산지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됨
- 따라서 부품을 공급하는 공급자가 제품품의 전반적인 관리를 진행하고 생산자는 공급자의 제품만 생산하는 관계인 경우
 - 생산자가 원산지확인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생산자가 그 입증책임과 원산지조사를 받을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며
 - 생산자가 원산지확인서를 작성하지 않고 부품공급자의 자료만 있는 경우 해당 서류를 보유하고 있는 자가 그 책임을 부담하는 것

[Q215-1]

원산지가 프랑스인 제품을 우리나라 업체가 수입하여 그 물품을 원상태로 EU의 다른 나라로 수출하는 경우 그 수입국에서 한-EU FTA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Q215-2]

질의 1의 경우, 우리나라 업체가 수입하여 국내 다른 업체에게 납품하는 경우 원산지 확인서의 아래 항목에 대한 작성방법과 원산지확인서를 역외산으로 발급하는 것이 타당한지

- 5번(적용대상 협정), 8번(원산지기준 충족여부)

[Answer]

- 원산지가 프랑스인 제품을 우리나라 업체가 수입하여 그 물품을 원상태로 EU의 다른 나라로 수출하는 경우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대상이 아님
- 원산지확인서 5번란(적용대상협정)은 ‘한-EU’로, 8번란(원산지기준 충족여부)은 충족하는 경우에는 ‘충족’란에 미충족인 경우에는 ‘미충족’란에 “✓” 표시하면 됨 <2012.7.>

[Wh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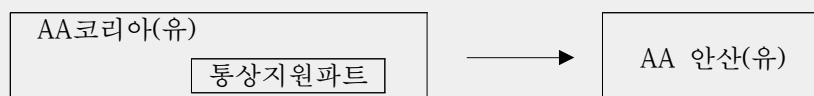
-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수입국가에서 판단할 사항이나,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대상은 아님
- 원산지확인서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 생산자 등이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재료 또는 최종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한 서류로서
- 역외산으로 발급하는 것에 대하여는 법령에서 별도로 금지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역외산으로 발급하는 것도 가능

[Q216]

원산지증명서, 원산지확인서의 서명권자 및 원산지소명서 작성방법 질의

[Q216-1]

각각 다른 법인이지만 대표자는 동일한 경우, 타법인 소속 직원이 원산지증명서, 원산지확인서 등의 서명권자가 될 수 있는지



- ※ 양사는 외국계 현지법인으로 대표자는 동일인임, AA코리아(유)의 통상지원파트에서 AA안산(유)의 원산지관리업무를 수행

[Answer]

원산지증명서와 원산지확인서는 해당 법인에서 작성하는 것이므로 타 법인 소속직원은 해당 서류의 서명권자가 될 수 없음

[Why]

- 원산지증명서는 해당물품을 수출하는 자가 발급을 신청하도록 규정(규칙 § 6①)되어 있으며
 - 자율증명의 경우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 서명하도록 규정(법 § 9조의2①)
 - 또한 원산지확인서와 국내제조 확인서는 물품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작성하는 서류(규칙 § 6조의3①)
- 법인은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며(민법 § 33),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 바(민법 § 34)
 - 법인은 각 법인별로 법인격이 있는 것
- 따라서 원산지증명서와 원산지확인서는 해당 법인에서 작성하는 것이므로
 - 타 법인 소속직원이 서류의 서명권자가 될 수 없음

[Q216-2]

- 원산지소명서의 ‘원산지인정요건 검토’ 항목 작성방법
 - 원산지결정기준이 조합기준인 경우 원산지소명서의 ‘원산지인정 요건 검토’ 항목은 아래 방법중 어느 것인지

방법1			방법2		
16. 세번변경기준 충족여부	예 ☒	아니오 ☐	16. 세번변경기준 충족여부	예 ☐	아니오 ☐
17. 부가가치기준 충족여부	예 ☒	아니오 ☐	17. 부가가치기준 충족여부	예 ☐	아니오 ☐
18.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 기준 동시 적용품목	예 ☐	아니오 ☐	18.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 기준 동시 적용품목	예 ☒	아니오 ☐

- 조합기준의 경우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것이므로 방법1과 같이 작성해야 하는지, 아니면 방법2와 같이 작성해야 하는지

[Answer]

원산지결정기준이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 동시 적용 품목인 경우 원산지소명서의 18번란의 ‘예’에 확인표시를 하고 17번란에 부가가치비율을 기재하는 것임 <2013.10.>

[Why]

- 원산지소명서의 ‘원산지인정요건 검토’ 항목 작성방법
 - 원산지결정기준이 세번변경기준인 경우

16. 세번변경기준	예 ☒	아니오 ☐
------------	---------------------------------------	------------------------------

- 원산지결정기준이 부가가치기준인 경우

17. 부가가치기준 충족여부	예 ☒	아니오 ☐	(부가가치비율 : 45%)
-----------------	---------------------------------------	------------------------------	----------------

- 원산지결정기준이 조합기준(세번변경기준 + 부가가치기준)인 경우

17. 부가가치기준 충족여부	예 ☐	아니오 ☐	(부가가치비율 : 45%)
18.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 기준 동시 적용품목	예 ☒	아니오 ☐	

[Q217]

원산지확인서 작성시 아래의 원산지결정기준을 기재하는 부호로 적당한 것은?

FTA종류	HS NO	PSR
한-칠레	7220	제7219호부터 제7330호까지 이외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1) CTH (ex from heading 7219-7220)
- 2) SP

FTA종류	HS NO	PSR
한-아세안	72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7219호의 것을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1) CTH (ex from heading 7219)
- 2) SP

FTA종류	HS NO	PSR
한-EU, 한-터키	7220	제7218호의 잉곳, 기타 일차형상 또는 반제품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1) SP
- 2) 기타 관세청에서 인정하는 표기방법은?

※ [참고] HS 7220호(폭이 600mm 미만인 스테인레스 평판압연제품)
 HS 7219호(폭이 600mm 이상인 스테인레스 평판압연제품)
 HS 7218호(스테인레스 강(잉곳 or 일차제품인 것)과 스테인레스의 반제품)

[Answer]

FTA 특례법 시행규칙 제6조의3에 따른 별지 제2호 서식인 ‘원산지(포괄)확인서’의 7번란(원산지결정기준)
 ‘은 동 서식 기재요령에 따라 아래의 기재방법(1)과 같이 작성
 ○ 또한 보다 자세하게 작성하기 위해 아래의 기재방법(2)와 같이 작성할 수도 있음

협정 및 원산지 결정기준	기재 방법	
	(1)	(2)
칠레와의 협정에 따른 HS7220호의 원산지결정기준인 ‘제7219호부터 제7220호까지 이외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CTH(ex from 7219~7220)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HS7220.11호의 원산지결정기준인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7219호의 것을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CTH	CTH(ex from 7219)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 및 터키와의 협정에 따른 HS7220호의 원산지결정기준인 ‘제7218호의 잉곳, 기타 일차형상 또는 반제품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CTH(from ingots or other primary forms or semi- finished materials of 7218)

<2013.11.>

[Why]

- ☐ 원산지확인서의 법적 성질
 - 원산지확인서는 원산지증빙서류의 일종으로 재료 또는 최종물품 생산자 등이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한 서류로서
 - 원산지확인서 작성자가 작성사항에 대해 원산지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
- ☐ 원산지확인서 작성방법
 - FTA관세특례법 시행규칙에서 원산지결정기준 표기방법은 간단한 표로 되어 있으며 ‘이 표에서 정한 방법으로 적습니다’ 라고 규정
 - SP는 ‘주요공정기준’으로 원산지결정기준에 특정공정이 명시된 경우가 이에 해당
 - 동 건은 특정공정이 명시되지 않은 바 ‘SP’는 맞지 않음
 - 상기 기준은 특정한 세번에서 특정한 세번으로 변경하는 것이 원산지 결정기준이므로 CTH로 기재함이 타당
 - 다만,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CTH(ex from heading 7219)’와 같은 방법으로 기재하는 것도 무방

[관련규정]

- FTA 특례법 시행규칙 제6조의3(원산지확인서)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는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재료 또는 최종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한 서류를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 FTA 특례법 제2조(정의)
 5. “원산지증빙서류”란 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 간의 수출입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원산지증명서”라 한다)와 그 밖에 원산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정보 등을 말한다.

3. 기타 사항

[Q218]

국내거래된 재료의 FTA 원산지 판정을 위한 물품의 가격 계상기준이 “FOB” 및 “EX-works”인 경우 당해 거래와 관련된 운송비용 계상방법

[Answer]

- 가격계상 기준이 본선인도가격인 경우
 - 당사자간의 거래가격에 당해 거래와 관련된 운송비용이 포함된 경우 그 거래가격이 본선인도가격이고 운송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당해 거래와 관련된 운송비용을 포함한 가격이 본선인도가격임
- 가격계상기준이 공장도 거래가격인 경우
 - 제조자에게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운송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그 가격이 공장도 거래가격이 되고, 운송비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운송비용을 공제한 가격이 공장도 거래가격임 <2010.10.>

[Why]

<협정별 상품가격 계상 기준>

FTA	기준가격	공제요소	근거
칠레	조정가격	국제운송 관련 모든 비용	제4.1조
미국	조정가치	국제운송 관련 모든 비용	제6.22조
싱가포르	관세가격	-	제4.1조
EFTA·EU·터키	공장도 가격	환급 내국세	제1조
아세안	FOB	-	제1조
인도	FOB	-	제3.4조
페루	FOB	-	제3.3조

[Q219]

FTA 특례법 제17조 제1항의 “동종, 동질물품”의 해석에 관한 질의

<FTA 특례법 제17조>

- ① 세관장은 제13조에 따른 원산지 조사를 하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조사대상자가 추가로 수입하는 동종·동질의 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보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류 대상은 해당 조사대상 물품의 동일한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한정한다.

[Answer]

“동종, 동질 물품”은 관세법시행령 제25조(동종, 동질 물품의 범위)에 규정된 바와 같이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물리적 특성, 품질 등이 동일한 물품임 <2011.1.>

[Why]

FTA 특례법 제3조에 따라 관세법 준용

<FTA 특례법 제3조>

- ① 이 법은 「관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Q220]

비원산지 재료에 포함된 원산지재료비의 계상 방법 질의

[Answer]

- 한-칠레, 한-싱가포르, 한-미 FTA에서는 상기 원산지재료비를 차감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고
- 한-EU FTA에서는 비원산지제품에 포함된 비원산지재료만을 고려하여 정하게 되어 있으며
- 한-인도 CEPA에서도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을 산정할 때 비원산지재료에 포함된 원산지재료의 비용을 공제할 수 있음

- 한-EFTA, 한-아세안 FTA에서는 부가가치기준 적용시 비원산지 재료는 수입시 과세가격 등으로 가격을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비원산지재료에 포함된 원산지 재료비는 필요한 경우 공제할 수 있음 <2011.8.>

[Why]

- 칠레, 싱가포르, 미국, 인도와의 FTA
 - 비원산지 재료에 포함된 원산지재료비 차감 가능
- EFTA, EU, 터키와의 FTA
 - 비원산지재료비는 수입시 과세가격(CIF) 또는 당사국내에서 지급한 최초의 확인 가능한 가격
 - 또한, 비원산지재료가 가공을 거쳐 비원산지 제품이 되어, 그 제품이 그 이후 다른 제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경우 그 제품에 포함된 비원산지 재료만을 고려함
- 아세안과의 FTA
 - 비원산지재료비는 CIF 가격 또는 상품 생산국에서 최초로 확인 가능한 가격

[Q221]

송품장에 EXW, FOB, CIF 등 무역거래상 사용되는 인도조건에 따른 가격이 구분되어 표시되어 있는 경우 어떤 것이 한-EU FTA '탁송화물' 가격인지

[Answer]

- 한-EU FTA에서 '탁송화물의 전체가격'은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에게 일시에 송부된 물품의 송품장에 표시된 가격임
- 다만, 송품장에 EXW, FOB, CIF 등 무역거래상 사용되는 인도조건에 따른 가격이 구분되어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EXW 조건에 따른 가격으로 판단됨 <2011.10.>

[Why]

한-EU FTA에서 '탁송화물의 전체가격'은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에게 일시에 송부된 물품의 송품장에 표시된 가격을 의미

[Q222]

한-EU FTA 관련 탁송화물의 가격 산정과 관련하여 수출자가 각각 다른 경우 탁송화물의 전체가격은 어떻게 산출하는지

[Answer]

수출자가 각각 다른 경우에는 각 수출자별로 탁송화물의 전체가격을 산정하는 것으로 판단됨 <2011.9.>

[Why]

- 한-EU FTA에서 탁송화물은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에게 일시에 송부된 제품이거나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에게 선적에 대한 단일 운송서류(또는 단일 송품장)에 의해 다루어 지는 제품을 말함
- 탁송화물의 총가격은 단일의 운송서류(운송서류가 없는 경우 송품장)에 의하여 단일 수출자로부터 단일 수하인에게 송부된 물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함
- 이 경우 단일 수출자로부터 단일 수하인에게 동시에 송부된 물품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동시에 송부된 물품 가격의 합계를 말함

[Q223]

- 국내거래된 수출용원재료의 원산지 판정시 물품의 가격 계상기준이 "FOB"인 경우 당해 거래와 관련된 운송비용 계상방법
 - 즉, 운송비용을 최종수출자가 부담하는 조건의 거래관계에 있어 본선인도가격(FOB)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Answer]

- 상기와 같은 거래관계에 있어서는 그 거래가격에 운송비용이 당연히 포함되지 않았을 것이므로
- 수출용원재료 원산지확인서 발급을 위한 본선인도가격(FOB)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그 거래가격에 최종수출자가 당해거래와 관련하여 지출한 운송비용을 더하여 본선인도가격을 계산하여야 함 <2010.12.>

[Why]

- 국내거래된 수출용원재료의 FTA 원산지판정에 있어 물품의 가격 계상기준이 본선인도가격(FOB,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인 경우
- 당사자간의 거래가격에 당해 거래와 관련된 운송비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이 본선인도가격이고, 운송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에 당해 거래와 관련된 운송비용을 더한 가격이 본선인도가격이 됨

[Q224]

한-EU FTA 공장도가격을 해석함에 있어 환급되는 내국세의 공제방법

- ① 공장도가격에서 공제하는 것인지
- ② 아니면 제품생산에 소요된 재료비에서 공제하는 것인지

[Answer]

‘수출될 때 환급되거나 환급되어야 할 내국세’는 공장도가격에서 공제하는 것임 <2012.4.>

[Why]

공장도가격과 재료의 가치는 협정과 FTA특례법 시행규칙의 정의에 따라 산출하는 것임

[관련규정]

- 한-EU FTA 제1조(정의)
 - 바. 공장도 가격이란 최종 작업 또는 가공이 수행된 당사자 내 생산자 공장에서 인도되는 제품에 대해 그 생산자에게 지급되었거나 지급되어야 할 가격을 말한다. 다만, 그 가격은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를 포함하고, 그 **획득된 제품이 수출될 때 환급되거나 환급되어야 할 모든 내국세를 공제한다.**
 - 사.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란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수입당시의 관세가격, 또는 이를 알지 못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유럽연합 당사자 내에서 또는 대한민국 내에서 그 재료에 대하여 지급된 최초의 확인 가능한 가격을 말한다.
 - 아. 원산지 재료의 가치란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적용된 사호에 정의되어 있는 원산지 재료의 가치를 말한다.
- FTA 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정의)
 11. “공장도가격”이라 함은 물품을 생산공장에서 반출하는 때에 해당 물품의 생산자에게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하는 가격으로서 그 물품이 수출될 때 환급되는 내국세를 공제한 가격을 말한다.

[Q225]

- WTO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율(W1 5%)을 적용한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수리 후 한-미 FTA 관세율할당물량 추천서를 발급받은 경우 할당관세율(FUS 0%) 적용 가능 여부
- 추천기관인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가 한-미 FTA 관세율할당물량 적용추천서(세율 : FUS 0%)가 아닌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 추천서(세율 W1, 5%)를 발급
 - ※ [참고] 물품 개요
 - 품명 : 대두(Soya Beans, HS 1201.90-9000)
 - 적용세율 : 한-미 FTA 할당세율(0%)
 - 세율구조
 - 기본세율 : 3%
 - WTO 협정세율 : 추천 5%, 미추천 487%
 - 한-미 FTA 할당 : 추천 0%, 미추천 487%

[Answer]

FTA 특례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한-미 FTA 할당물량 적용추천서는 수입신고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수입신고 수리 후에는 제출할 수 없음 <2012.12.>

[Why]

- 수입신고 수리 이후 추천서를 정정하여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
 - 할당세율 적용추천서는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제출해야 하는 강행규정으로 수리된 이후 정정 제출 불가
- 추천기관 직원의 업무실수로 인하여 납세의무자가 과다한 세금을 납부한 경우, 구제방법이 있는지 여부

- 추천서 발급 오류는 추천기관과 추천신청인간의 문제로 한-미 FTA 할당관세 사후적용의 이유가 될 수는 없음

[Q226]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추천을 받지 않고 미국산 곡류 가공물(HS 1102.90-9000)을 수입시 한-미 FTA 원산지 증명서를 첨부한 경우 적용되는 관세율 질의

[Answer]

- 미국산 곡류 가공물(HS 1102.90-90000)에 대한 관세는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순서에 따라 정해진 수량까지는 무관세 또는 협정관세율을 적용하고, 초과물량은 긴급수입제한조치(ASG : Agricultural Safe guard) 관세율을 적용
- 따라서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추천을 받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상기한 기준에 따라 관세율이 적용됨 <2013.2.>

[Why]

- 미국산 곡류 가공물(HS 1102.90-90000)은 기준 발동물량*을 초과하여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특별긴급관세조치가 적용되는 선착순 방식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ASG : Agricultural Safe guard) 대상 품목으로서
* 85 MT이하 0%, 85 MT 초과 136 MT 이하 40%, 136 MT 초과 766%

· 이행 1-4년차	[중간 기준물량 이하] 무관세
	[주 기준물량 이하] 중간 특별긴급관세율
	[주 기준물량 초과] 주 특별긴급관세율
<한-미 FTA 3.3조 부속서 3-가 농업 긴급수입제한 조치>	

-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순서에 따라 정해진 수량까지는 무관세 또는 협정관세율을 적용하고 초과물량은 ASG 관세율 적용

[Q227]

- 물품을 생산하여 공급하는 업체가 내수판매물품에 대해 원산지확인서를 작성하는 경우 한-EU FTA ‘공장도가격’ 산정방법
- (현재 내수판매물품의 ‘공장도가격’ 산정방법) 내수판매물품과 수출판매물품이 혼재되어 운송되고 있으며, 물품판매시 국내운송비를 포함해서 대금을 수취하는 상황
- 총 판매물품의 운송비가 국내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하여 일괄 적용

[Q227-1]

수출판매물품과 내수판매물품 중에서 원산지확인서를 작성하는 내수판매물품의 운송비를 따로 분리해야 하는지

[Q227-2]

내수판매물품도 개별 판매물품의 운송비를 따로 산출해야 하는지

[Q227-3]

가격 산정방법이 바뀌는 경우, 종전에 작성, 제공한 원산지확인서를 수정하여 소급발급해야 하는지

[Answer]

- ‘공장도가격’은 개별물품의 인도가격으로 산정해야 하며
- 수출자는 귀사가 작성, 제공한 원산지확인서를 기초로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는 것이므로 ‘공장도가격’을 다시 산정하여 원산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물품을 공급받은 자에게 원산지확인서를 다시 작성, 제공해야 함 <2013.2.>

[Why]

- ☐ 운송비를 각각 산출하여 ‘공장도가격’을 산정해야 하는지
 - 협정에서 ‘공장도가격’은 ‘생산공장에서 인도될 당시에 실제 지급되었거나 지급되어야 할 가격’으로 규정하고, ‘공장도가격’을 산정할 때 관세평가협정이나 회계원칙을 적용할 수 없음
 - ※ 대체가능물품의 재고물품 관리에는 회계원칙을 적용하며, 재료의 가치 산정시에는 관세평가협정 적용

- 따라서 ‘공장도가격’은 개별물품의 인도가격으로 산정해야 함
- 종전 작성한 원산지확인서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소급해서 다시 작성해야 하는지
 - 원산지확인서는 물품공급자가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한 서류이며, 제공받은 자는 원산지확인서를 기초로 원산지증명서를 작성
 -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한 후 원산지에 관한 내용에 오류가 있는 때에는 세관장과 수입자에게 수정통보하여야 함
 - ※ FTA 특례법 제11조(원산지증명서류의 수정 통보)
 - 즉, ‘공장도 가격’을 다시 산정하여 원산지가 변경된 경우 다시 원산지확인서를 작성, 제공하지 않으면 수출자는 원산지증명서의 수정통보를 할 수 없으므로 종전 작성한 원산지확인서의 원산지가 변경된 경우 다시 작성, 제공해야 함

[Q228]

한-아세안 FTA 협정에서 ‘채약당사국’의 정의를 질의

[Q228-1]

‘채약당사국’이란 수출당사국 한 국가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세안 국가 전체를 의미하는 것인지

[Answer]

한-아세안 FTA 협정에서 ‘채약당사국’의 정의는 규정되어 있지 않음

[Why]

‘당사국(Party)’이란 대한민국 또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을 의미하며, ‘당사국들(Parties)’이란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들을 집합적으로 의미

[Q228-2]

누적기준 적용시 “a Party”의 의미

[Answer]

대한민국 또는 아세안 회원국 중 특정하지 아니한 어느 하나의 당사국을 의미

[Why]

한-아세안 FTA는 한쪽 당사국(아세안)이 여러 국가로 구성된 경우이므로 품목별 기준 등에서 다국 누적을 배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국 누적이 인정됨

[Q228-3]

WO-AK(어느 당사국 영역에서 완전 획득 또는 생산된 물품)에서 “any Party”라 함은 수출 혹은 수입당사국을 의미하는지, 아세안 회원국 중 한 국가만 해당되는지

[Answer]

WO-AK 적용시 “any Party”란 특정하지 아니한 당사국을 의미 <2013.3.>

[Why]

“Wholly Obtained or Produced in the territory of any Party”에서 any Party란 특정하지 아니한 당사국인 대한민국 또는 아세안 회원국을 지칭

[Q229]

- 해외(FTA 체결국)에서 생산되어 국내에 유통되는 OEM* 생산제품 중 우리나라 브랜드를 부착한 경우 FTA 협정상 국내산으로 인정되는지
- *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 : 생산자가 물품을 주문한 회사의 상표를 물품에 부착하는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을 말함

[Answer]

OEM 생산제품의 원산지는 국내 회사의 상표가 부착되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각각의 FTA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라 결정 <2013.3.>

[Why]

- 우리나라와 FFTA가 체결된 국가에서 생산된 OEM 생산제품의 원산지는 국내 회사의 상표가 부착되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각각의 FTA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결정기준에 따라 결정
-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도 원산지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운송요건 등 원산지요건을 충족해야 FTA 협정관세 적용 가능

[Q231]

미확정된 ‘원산지 조사결과 통지’에 대한 ‘이의제기’ 가능여부 질의

- 세관장이 수입자에 대한 원산지조사 후 수출자에 대한 국제검증 등이 필요한 경우 수입자에게 통지하게 되는데, 수입자가 그 통지에 대해 이의제기 할 수 있는 지 여부
 - ※ FTA 관세특례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세관장은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원산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
 - ※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검증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관세청 훈령 제1495호(‘12.9.20))」 제10조(검증수행방식)에 따라 원산지검증은 국내 검증을 우선하되 국내 검증만으로 원산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등 필요한 경우 한하여 국제검증을 수행
- 세관장은 수입자에 대한 원산지조사를 마치면 조사결과와 그에 따른 결정내용을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FTA특례법 제13조제2항)
 -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는 조사대상자는 조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FTA특례법 제13조제7항 및 제8항)
 - 따라서 수입자 조사결과 원산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조사결과와 결정내용을 통지해야 하는데, 이 경우에도 수입자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지

[Answer]

- 「FTA 특례법률」 제13조 제7항에 따라 세관장이 조사결과와 그에 따른 결정내용을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는 것은 조사결과 원산지가 결정된 경우에 하는 것임
- 따라서 수입자에 대해 원산지를 조사한 결과 원산지를 확정할 수 없어서 추가적으로 수출자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
- 세관장은 동 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수입자에게 통지하는 것인 바, 동 조 제8항에 따라 수입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님 <2013.7.>

[Why]

- ‘수입자 조사’가 끝났으나 원산지가 확정되지 않아 세관장이 국제검증을 추가로 진행하는 경우에도 조사결과를 통지해야 하는지
 - 원산지 조사는 다음 순서로 진행
 - ① 수입자조사(서면조사) ② 수입자조사(현지조사) ③ 계약상대국 수출자·생산자 조사(서면조사) ④ 계약상대국 수출자·생산자 조사(현지조사)
 - 세관장은 원산지조사를 마치면 조사결과와 결정내용을 다음의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FTA특례법 제13조제7항)
 - ① 조사대상자(계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가 생산 또는 수출한 물품을 수입한 자를 포함) ② 계약상대국의 관세당국
 - 동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조사를 마치면’이라는 의미는 ‘원산지가 판정되어 조사가 확정’된 경우를 말하므로 원산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수입자에게 조사결과와 그 결정내용을 통지할 대상이 아님
 - 하지만 FTA특례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세관장이 수출자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조사를 할 때에는 수입자 및 계약상대국 관세당국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FTA특례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세관장이 수입자에게 통지한 내용에 대해 수입자가 이의제기 할 수 있는지 여부
 - 세관장이 원산지조사와 관련하여 수입자에게 통지하는 경우는 아래의 2가지
 - ① [법 § 13⑥]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수출자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조사를 하는 경우
 - ② [법 § 13⑦]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원산지조사를 마친 경우
 - 동 법 제13조 제8항에서 조사대상자가 이의제기할 수 있는 경우는 [법 § 13⑦]에 따른 통지에 대해서만 가능
 - 따라서 [법 § 13⑥]에 따른 통지에 대해서는 이의제기 할 수 없음

[Q232-2]

원산지 관련 내용을 최근 5년간 2회이상 반복적으로 거짓으로 작성한다고 할 때, 최근 5년이라 함은 최초 서류작성 및 수입통관을 잘못된 날부터 시작하는 것인지 아니면 서울세관에서 관련규정에 대한 질문을 받은 날부터 시작하는 것인지

[Answer]

FTA특례법 제13조에 따라 미리 ‘원산지조사를 통지한 날’ 부터 최근 5년간 2회 이상인 경우에 해당됨

[Why]

- ☐ FTA 특례법에서 정한 ‘최근 5년간’ 은 언제 시점부터 기산하는 것인지
- 최근 5년간 2회 이상 원산지증빙서류를 거짓 또는 잘못 작성한 경우에 협정관세 적용제한자로 지정할 수 있음
 - 협정관세적용제한은 원산지조사의 결과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세관장이 ‘원산지조사를 시작한 날’ 부터 기산함이 타당. 따라서 ‘원산지 조사 통지일’ 로부터 기산하여야 함

[Q232-3]

원산지 오류에 대한 문제는 5년이 지나면 더 이상 소급적용을 하지 않는 것인지

[Answ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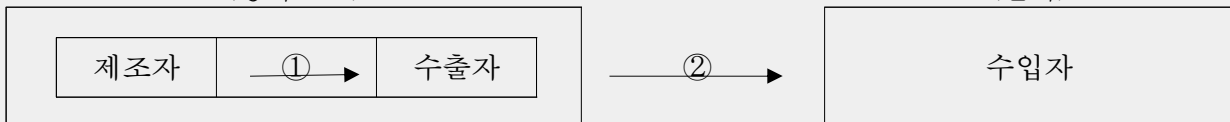
- ‘원산지조사’ 에 따른 세액부과는 협정관세적용신청일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으나
- 관세법 제2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내에 경정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임 <2013.8.>

[Why]

- ☐ FTA특례법에서 정한 최근 ‘5년간’ 은 언제 시점부터 기산하는 것인지
- 최근 5년간 2회 이상 원산지증빙서류를 거짓 또는 잘못 작성한 경우에 협정관세 적용제한자로 지정할 수 있음
 - 협정관세적용제한은 원산지조사의 결과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세관장이 ‘원산지조사를 시작한 날’ 부터 기산함이 타당
 - 따라서 ‘원산지 조사 통지일’ 로부터 기산하여야 함
 - ☐ 원산지 오류에 대한 문제는 5년이 지나면 더 이상 소급적용을 하지 않는 것인지
 - 원산지조사에 따른 세액부과는 협정관세 적용 신청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으나
 - 관세법 제2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내에 경정 등 처분을 할 수 있음
 - 따라서 원칙적으로 협정관세 적용 신청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소급적용 되지 않음

[Q233]

싱가포르 수출자가 싱가포르 제조자에게 물품을 구입하고 추가가공없이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경우
(싱가포르) (한국)



- 역내가치포함비율 계산시 FOB 금액은 다음 중 어느 금액을 사용해야 하는지
 - ① 제조자가 수출자에게 판매한 금액
 - ② 수출자가 한국의 수입자에게 판매한 금액 $RVC = VOM / FOB \times 100 \%$

[Answer]

- 싱가포르 수출자가 우리나라의 수입자에게 판매한 금액의 본선인도가격이 FOB 금액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2013.11.>

[Why]

- ☐ 한-아세안 FTA에서 FOB 금액
- 동 협정 원산지규정에서 ‘FOB’ 는 ‘생산자로부터 해외 최종 선적항 또는 선적지까지의 운송비를 포함한 상품의 본선 인도 가격’ 으로 규정

- * FOB = EXW + 선적항(선적지) 까지의 운송비
- 따라서 싱가포르 수출자가 우리나라로 판매한 금액의 본선인도가격이 협정상 FOB 금액임

[관련규정]

- 한-아세안 FTA 부속서3(원산지규정) 제1조(정의)
“FOB”라 함은 생산자로부터 해외 최종 선적항 또는 선적지까지의 운송비를 포함한 상품의 본선인도 가격을 말한다.
FOB means the free-on-board value of a good, inclusive of the cost of transport from the producer to the port or site of final shipment abroad;

※ 기획재정부 질의 답변

[Q1]

‘수출자’가 홍콩 소재업체인 경우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 여부

[Answer]

- FTA 협정에서 ‘수출자’는 상품이 수출되는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면서 그 상품을 수출하는 자연인/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수출자’가 홍콩소재 업체(EGM HK)인 경우 한-EU FTA의 거래당사자가 아니므로 협정관세 적용 불가
<기재부 양자관세협력과-86(2011.2.10.)>

[Q2]

제3국에서 발행된 송품장에 의한 특혜관세 적용여부

[Answer]

-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및 WTO협정 개발도상국간의 양허관세와 관련하여
- 생산국과 제3국간 구매계약에 의해 생산국에서 생산된 잎담배가 제3국에 운송되어 보세구역에 보관된 후 별도의 구매계약 및 대금결제통해 제3국에서 우리나라로 잎담배가 수입되는 경우
- 동 거래는 현행 관세법 시행규칙 제76조 등의 직접운송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함
<기재부 다자관세협력과-724(2011.8.18.)>

[Q3]

원산지증명서상 수출자와 송품장상 수출자가 상이한 경우 최빈국 특혜관세 적용여부

[Answer]

- 최빈개도국 특혜원산지증명서와 관련하여 동일국내 수출자와 제조자가 상이하여 원산지증명서상 수출자와 송품장상 수출자가 상이한 경우에도 해당물품이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특혜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음
- 아울러, 3자간 무역에서의 최빈개도국 특혜원산지증명서 적용과 관련하여 원산지증명서상 수출자 성명과 송품장의 수출자 성명이 상이하더라도 해당물품이 원산지요건을 실질적으로 충족하고, 직접운송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특혜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음
<기재부 다자관세협력과-506(2011.5.13.)>

[Q4]

한-EU FTA 공장도가격(Ex-works) 정의에 대한 질의

[Answer]

한-EU FTA의 공장도가격(Ex-works) 정의 조항에 따라 공장도 가격에서 공제할 내국세에는 물품 수출시 환급되는 관세와 수출품의 가격원가에 포함되지 않은 부가가치세는 해당되지 않음

<기재부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69(2011.5.25.)>

[Q5]

최빈개도국 특혜관세 적용을 위해 제출한 원산지증명서가 지정양식과 기재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특혜 적용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Answer]

- 귀사가 질의한 바와 같이 당초 수입신고시 최빈개도국 특혜관세 적용을 신청하였고, 생산국명 및 제조자 등을 통해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 수입신고 당시 원산지증명서에 품명, 수량, 원산지기준 등 규정상 요구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원산지증명서를 동일한 기재내용으로 지정된 양식에 맞추어 재발급 받아 세관에 제출한 경우에 특혜관세 적용 가능
- 3자간 무역거래에 있어서 원산지증명서상 수입자란에 제3국의 중계인이 기재된 경우 송품장(invoice), 선하증권(B/L) 등 관련 무역서류에 의하여 3자간 무역거래가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원산지증명서를 인정할 수 있음
- 귀 질의와 같이 수출국에서 완전생산된 제품이 수출국에서 우리나라에 직접 운송된 경우 원산지증명서상 송품장(invoice) 번호를 기재하는 란에 선하증권(B/L) 번호가 기재되었더라도 수입자가 제출하는 증빙서류에 의해 거래내역 및 관련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음
- 상기 사항과 관련하여 사실관계 여부에 관하여는 과세관청에서 확인할 사항임
<기재부 다자관세협력과-1046(2011.12.30.)>

[Q6]

한-EU FTA 직접운송원칙에 대한 질의

[Answer]

- 홍콩에서 수입통관이 이루어진 물품을 국내로 수입하는 경우 한-EU FTA 협정문 중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13조 ‘직접운송’ 규정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협정관세 적용을 받을 수 없음
- 영국으로부터 직접 수입하는 경우 당해 물품에 대한 협정당사국의 수출자로부터 원산지신고서를 발급받아 수입국 세관에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면 협정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음
- 협정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관련규정은 한-EU FTA 협정문 중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의 각 조항 및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재부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147(2011.6.24.)>

[Q7]

별지에 작성한 원산지신고서의 한-EU FTA 특혜관세 적용 여부

[Answer]

별지에 작성한 원산지신고서는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제16조」에 의거, 유효한 원산지신고서가 아님
<기재부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467(2011.12.12.)>

[Q8]

한-EU FTA 직접운송원칙에 대한 질의

[Answer]

- 생산국(최초 수출국 : 인도)이 한-인도 CEPA 비당사국인 경유국(중간수출국 : 말레이시아)과 거래한 물품이 수입국(한국)에 재판매된 경우 한-인도 CEPA의 직접운송원칙(제3.15조) 충족여부와 관련하여 한-인도 CEPA 계약 상대국인 인도측과의 협의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함
- 생산국(최초수출국 : 인도네시아, 태국)과 경유국(중간수출국 : 말레이시아)이 모두 아세안 회원국인 경우, 한-아세안 FTA 협정문의 연결원산지증명서 규정(상품협정 부속서3 부록 1 제1조·7조)에 의해 FTA 특혜관세 적용 가능
- 생산국(최초수출국 : 그리스)과 경유국(중간수출국 : 벨기에)이 모두 EU 회원국인 경우, 한-EU FTA 협정문(제1.2조)에 의해 EU 회원국 전체를 하나의 당사국으로 볼 수 있어 FTA 특혜관세 적용 가능
<기재부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616(2011.10.5.)>

[Q9]

한-EU FTA 관련 제3국에서 분할 선적된 물품이 단일 운송화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Answer]

- 한-EU FTA 원산지의정서에 따라 제3국 경유(환적 또는 임시 보관)는 단일 운송화물에 한하여 허용되는 바
 - 제3국에서 분할선적된 동 질의물품은 단일 운송화물에 해당하지 않아 직접운송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며, 제3국에서의 임시보관 허용시 보관기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이 없음
- <기재부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487(2011.12.12.)>

※ 관세사 보수교육시 질의답변_관세청 FTA집행기획담당관

□ 한-EU FTA 관련 수산물의 완전생산기준 충족여부 법령 해석(2015.8.19.)

1. 배경

- 체약당사국의 영해 밖에서 체약당사국의 선박을 이용하여 포획한 수산물에 대하여 체약당사국내에서 비당사국 가공선박에서 추가가공된 물품이 완전생산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규정 : 한-EU FTA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4조(완전하게 획득된 제품)

1. 제2조 가호의 목적상, 다음은 당사자 내에서 완전하게 획득된 것으로 간주된다.

 - 가. ~ 라. (기재 생략)
 - 마. 1) 당사자의 내수 또는 영해 내에서 수행된 어로에 의하여 획득된 제품
 - 2) (기재 생략)
 - 바. 당사자의 영해 밖의 바다에서 당사자의 선박에 의하여 잡힌 어획물 및 그 밖의 제품
 - 사. 바호에 언급된 제품으로만 당사자의 가공선박에서 만들어진 제품
 - 아. ~ 차. (기재 생략)
 - 카. 이 항에 언급된 제품으로만 당사자 내에서 생산된 제품

3. 쟁점

갑론 : “가~카호” 까지 어느 하나만 충족하면 원산지제품으로 인정되며, “바호”와 “카호”를 연계 적용하여 완전하게 획득된 제품으로 인정

을론 : 가공선박이 특게 되어 있는 사호를 적용하여야 하며, 당사자의 가공선박이 아니므로 완전하게 획득된 제품으로 인정할 수 없음

4. 결론 : 갑론

- 협정상 제1호의 각 호는 독립적인 호로 해석
- 비당사국 가공선박과 관련해서는
 - 내수 또는 영해내에서 획득한 제품의 경우에도 선박의 국적여부 불문
 - 당사자의 가공선박 제한은 영해 밖에서 직접처리하고 가공하는 경우로 해석됨
 - 또한 당사자 내(영토와 영해)에서 생산되면 비당사자 가공선박에서 가공되어도 인정

□ EU 측 인증수출자 확인 방법

1. 배경

- EU측 수출자가 부정확한 인증번호 기재 등으로 우리나라 수입자가 특혜관세 배제 또는 추정

2. 현황

- 수입자는 인증번호의 진실성을 확인할 객관적 방법이 없어 개별적으로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하나 유효성 확인에 제한적이며 여전히 신뢰성 의문
- ① EU에서 통보한 각 국가별 인증번호체계를 확인하고, EORI·VAT 번호로 기재된 경우 오류로 판단
 - * EORI(Economic Operators Registration and Identification Number) : 우리나라의 사업자등록증 번호와 유사한 것으로 상품의 수출입에 관련된 모든 경제주체가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하는 번호를 말함

- * VAT : EU에서 부가가치세의 추심과 송금에 사용하는 고유 식별번호
- ② 인증수출자에게 인증서(사본)를 요구

3. 개선방안

- ‘15.11.4~5 개최 예정인 제4차 한-EU FTA 관세위원회에서 인증수출자 조회시스템 조기구축을 안전화 추진(인증국가, 인증유효기간, 인증 적용 가능국가 정보조회 요청)

● 한-EU FTA 원산지신고서

※ 원산지신고문안 예시 : 영어 본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sation No ‘인증수출자번호’ ①)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is products are of ‘제품의 원산지’ ② preferential origin.

‘장소 및 일자’ ③
수출자 또는 신고서 작성자의 성명 및 서명④

- 원산지 신고문안은 협정문에서 정한 바와 일치해야 함
- ①란은 ‘customs authorisation No’ 없이 ‘인증번호’ 만 기재해도 인정
(예) ~~ document (BE 74) declares that, ~~
- ③란은 해당서류에 표기되어 있는 경우, 생략 가능
※ 상업송장에 발행일자가 표시되어 있으면 생략 가능
상업송장 발행일자와 원산지신고서 작성일자가 다른 경우에는 기재
- ④란은 인증수출자가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한 경우, 생략 가능

《한-EU FTA 원산지신고서 작성방법》

작성주체	- 원산지신고서는 수출자가 작성해야 함 - 탁송화물의 전체가격이 6천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인증수출자만 작성 가능
작성언어	- 협정에 규정된 언어본 중 하나를 사용하여 작성
작성서류	-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다른 상업서류에 작성
작성방법	- 타자로 치거나(typing) 스탬프로 찍거나(stamping) 인쇄하거나(printing) 수기로(handwritten) 작성될 수 있음 - 수기로 작성되는 경우 잉크를 사용하여 대문자로 작성
서명	- 수출자의 원본서명이 수기로 작성되어야 함 - 인증수출자는 서명 생략 가능

※ 원산지신고문안의 ‘원산지표기’ 인정범위

- 협정문에 있는 당사자명
(예)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THE EUROPEAN UNION
-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가명 (예)Greece, England, Scotland, Wales
- 당사자 국가의 ISO 코드 (예) GR, GB, DE, IT
- ‘EU’표기, ‘EC’ 및 ‘European Community’ 표기
- 원산지가 영국인 제품 : ‘UK’ 표기(협정문상 표기된 약어)
- 당사국의 형용사 표기 (예) Danish, German, Italian, French

※ 한-EU FTA 원산지신고서의 ‘명백한 형식적 오류’의 예시

- ① 단어의 철자를 잘못 작성한 경우
(예) ‘these products’를 ‘these produtcs’로 작성한 경우
- ② 협정문에서 정한 단어 이외의 단어를 사용한 경우
(예) ‘these products’를 ‘these goods’로 작성한 경우
‘these products are’를 ‘this product is’로 작성한 경우
- ③ 단어 순서 또는 항목 위치가 바뀌어 작성된 경우
(예) 인증수출자번호·제품의 원산지를 다른 위치에 기재한 경우
- ④ 원산지신고문안을 수기로 작성하면서 소문자로 작성한 경우
- ⑤ 원산지신고문안을 설명하기 위한 설명문구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예) ‘(customs authorisation No.)’, ‘(Place and Date)’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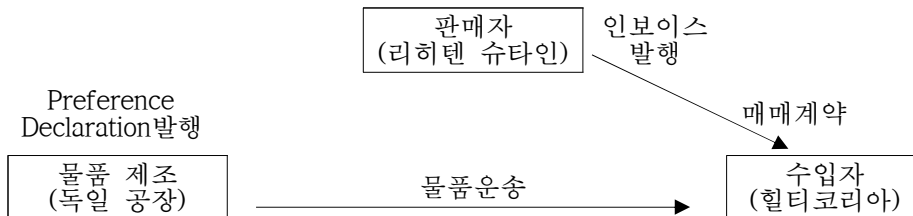
※ 한-EU FTA 스페인의 인증수출자번호 처리지침('13.11.12)

- 스페인 관세당국에서 자국 인증수출자 제도에 관한 정보 제공('13.9.25)
 - 스페인 인증수출자 지정서에 ‘한국’ 이 특혜대상국가로 기재되지 않은 경우라도 인증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신고서는 유효함
 - 스페인은 신규 협정 체결시 매년 인증수출자 지위를 새로 갱신하지 않으며, 신규 협정 발효시 인증수출자 지위 지속 사용 가능
 - * 인증서에 동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
- 스페인은 EU 타 국가와 달리 신규 협정 발효시에도 기존의 인증수출자 번호 사용 가능하며, 특혜 수출 대상국가에 ‘한국’ 이 포함되지 않은 인증서도 유효함
 - * 번호 체계 : ES(국가명) / 28(지역코드) / 0001(인증번호) / 98(인증연도)

※ [참고] 한-EU FTA 원산지신고문안 인정여부 사례

1. 질의 내용

- 수입계약은 리히텐슈타인에 소재한 업체와 한국업체간 체결, 인보이스는 리히텐슈타인 본사에서 발행
- 독일 공장에서 인증수출자가 원산지 문구를 기재한 Preference Declaration를 발행
 - * Preference Declaration에는 인보이스 번호, 제품번호, 수량, 원산지문구가 기재되어 있음
- 독일 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신고서 Preference Declaration인 한-EU FTA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신고서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검토 의견

- 한-EU FTA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에 관한 의정서’ 제15조(일반요건) 및 제16조(원산지신고서 작성 조건)에 따라 원산지신고서는 수출자가 송품장 등 상업서류에 작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한-EU FTA 협정상 상업서류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원산지 물품내역이 충분히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고, 수출자가 협정에서 정한대로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여 발급한 경우에는 협정관세 적용 가능
 - ※ 일반적으로 수출입거래에서 ‘상업서류’란 해당 수출입거래에 따른 계약상 의무의 이행 및 대금청구의 목적으로 수출입자 또는 관련기관에서 발행하는 서류라 할 수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 지식경제 용어 사전
 상업서류란 D/P·D/A 거래에서 수출자가 선적한 후 수입자를 위하여 수입자 소재지의 은행 앞으로 송부한 서류를 말하며, 신용장 거래의 경우 선적서류를 의미한다. 상업서류에는 상업송장, 운송서류, 보험서류, 포장명세서, 영사송장, 통관송장, 원산지증명서, 검사증명서 등이 있다.

- 제시된 Preference Declaration은 EU측 수출자가 발행한 것으로 거래품목의 상품명, 규격, 수량 등이 기재된 서류로서 Packing List와 유사한 상업서류의 하나로 판단
- 따라서 동 서류에 원산지신고문구 및 EU 인증수출자 번호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 정당한 원산지신고서로 인정할 수 있음

⇒ B/L 및 제3국 발행 송장상에 원산지 신고문안을 작성하여 제출시 불인정
 (B/L에는 품명, 규격, 수량 등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

※ [참고] 한-EU FTA 원산지신고문안 인정여부 관련 질의

1. 질의 내용

- 원산지 신고문안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신고문안이 적정한지 여부
 - 1) 띄어쓰기가 되어 있지 않은 인증수출자 번호
 - 2) 원산지신고서 상 추가된 문구의 유효성 여부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sation No. GB15083/11)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by an ASTERISK(*) this products are of EU preferential origin“

2. 검토 의견

- 인증수출자 인증번호 체계의 유효성 여부
 - 인증수출자 번호란에 ‘GB15083’이 예시와 같이 띄어쓰기가 되어 있지 않으나, EU측에서 통지된 인증번호 체계와는 다르지 않으므로, 유효한 것으로 판단
- 원산지신고문안의 적정성 여부
 -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 신고문안에는 없는 ‘ by an ASTERISK(*)’가 추가적으로 표기되어 협정상 규정하고 있는 신고문안과는 불일치
 - * by an ASTERISK : 별표
 - 그러나, ‘by an ASTERISK(*)’를 제외하고는 한-EU FTA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에 관한 의정서’ 제15조(일반요건) 및 동 의정서 부속서3(원산지신고서 문안)에 따라 실질적인 원산지표시는 동일한 문구로 작성되어 있으며
 - 또한 수입통관절차를 원활하게 하기위해 원산지신고문안이 협정에서 정하는 대로 작성되고 그 외의 문구가 추가로 적혀있는 때에 원산지제품임을 확인하는데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로 인정하고 있음
- 따라서 원산지신고서에 원산지신고문안이 협정에서 정하는 대로 작성되고 보다 세부적으로 원산지를 표현하기 위한 문구가 추가되어 있는 경우, 동 협정에 따른 원산지제품인 것을 확인할 수 있을 때에는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로 인정될 수 있음

□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2015.9.21. 개정)

1. 목적

- 농림축산물 생산자인 농어민 등이 자유무역협정 원산지확인서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여 FTA 활용을 통한 수출을 지원하기 위함

2. 근거

- FTA 특례법 시행규칙 제6조의3 제4항

3. 원산지(포괄)확인서로 인정되는 서류(서식1-5) 및 품목(별표1)

- 발급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15개 수협(강진, 군산, 목포 등)

서류명	발급 근거	서식
①친환경 농산물 인증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유기식품의 인증)	서식1
②농산물우수관리 인증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	서식2
③농산물 이력추적관리등록증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4조(이력추적 관리)	서식3
④지리적표시 등록증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지리적표시의 등록)	서식4
⑤물김 수매확인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2조(매매방법)	서식5

□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계산방법

1. 쟁점 내용

- 한-아세안 FTA 상 수입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후 소급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을 계산할 때에 입항일 다음 날부터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날까지의 기간 제외 여부

2. 관련규정 : FTA 관세특례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제11조(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등)

- ② 제1항에 따라 수입자가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당시에 갖추어야 할 제1항제1호의 원산지증빙서류 중 원산지증명서는 수입신고일 또는 협정관세 적용 신청일을 기준으로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제외하여 계산한다.

1.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경우: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다음 날부터 해당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날까지의 기간

3. 세부내용

- 갑론 :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계산시 선입항 후발급 건은 기간의 정지 불인정

- FTA 관세특례법령에 대한 해석 및 일반규정인 관세법령의 유사규정을 살펴볼 때 수입항 도착전에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만 ‘기간의 정지’ 적용 타당
 - **올론** :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계산시 선입항 후발급건도 기간의 정지 인정
 -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규정의 경우 FTA 관세특례법령에 대한 해석 및 협정문의 규정을 살펴볼 때 선입항 후발급 원산지증명서도 ‘기간의 정지’ 적용을 배제할 수 없음
4. 관세청 의견 : 갑론

□ 한-캐나다 및 한-EU 수출자 요건 확인 철저

1. 쟁점 내용
 - 한-캐나다 FTA의 경우 미국의 영역내에 있는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거나 한-EU의 경우 수출신고자와 무역거래 당사자가 다를 시 누가 수출자인지 여부
2. 관련 규정
 - 한-캐나다 FTA 제4.21조(정의)
 - 수출자란 당사국 영역 내에 있는 수출자 및 이 장에 따라 상품의 수출에 관하여 그 당사국 영역 내에 기록을 유지하는 것이 요구되는 수출자
 - 한-EU FTA : 수출자에 대한 정의가 없음(※ EU 관세법 정의를 준용)
 - 다만, EU 관세법 시행령 제788조 제1항에 수출자는 ‘수출신고를 하고 상품의 소유자이거나 유사한 처분권을 가진 자’로 규정되어 있음
3. 협정관세 신청시 확인사항
 - 한-캐나다 FTA : 수출자가 캐나다 영역내에 있는지 여부
 - 한-EU FTA : 수출자 요건 확인시 수출신고와 상품의 소유(처분권한 보유) 여부 확인

□ 한-아세안, APTA 및 한-EFTA 직접운송 인정관련 유의사항 안내

1. (대상) 한-아세안 FTA 및 APTA 통관선하증권, 한-EFTA 탁송품의 분리 인정여부
2. 관련규정
 -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 운영절차 제19조, APTA 원산지 확인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 한-EFTA 제14조
3. 유의사항
 - 한-아세안 FTA, APTA
 - 통관선하증권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항공운송)에도 최초 수출국 운송업자(운송주선업 포함)가 전 구간의 운송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담보하는 하나의 운송서류로 발급시 인정
 - * 중간에 B/L이 끊어지면(재발급 등) 안됨
 - 한-EFTA FTA
 - EFTA 국가로부터 최종 목적지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비당사국에서 보관된 후 일부가 분리되어 우리나라로 운송되는 경우 직접운송으로 인정
 - (예시) 스위스에서 최종목적지가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로 비당사국(네델란드)으로 운송된 후비당사국에서 탁송품이 분리되어 한국으로 운송 시 직접운송으로 인정

지시 및 지침

I. FTA 공통

1.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심사 간소화 지침 통보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756, 2014-03-311

1. 우리청은 수출입기업이 원산지증명 및 FTA 특혜적용 분야에서 불편을 느끼던 부분을 발굴하여 과감한 규제개혁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해당 고시 개정 소요시간 등을 감안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민원불편을 해소하고자 불임과 같이 사전업무처리 지침('14.4.1시행)을 제정 통보하니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임 :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심사 간소화 지침 1부.

(FTA 집행과, '14.3.27)

우리 청은 그동안 수출입기업이 원산지증명 및 FTA 특혜적용 분야에서 불편을 느끼던 부분을 발굴, 과감하게 규제개혁을 추진중에 있으며, 관련 법령 등을 개정하기에 앞서 민원불편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해소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업무처리 지침을 알려드리니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 수출업체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심사 생략 확대

현행	개선
☐ 심사생략 대상(특례고시 제11조 관련) 1. 인증수출자(인증받은 물품과 동일한 경우에 한함) <추가> <추가>	1. <좌동> 2. 법규준수도 우수업체 :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AEO) AA 등급 이상 3. 최근 1년 이내 원산지조사 결과 이상없음으로 확인된 업체

※ 시스템 반영시까지 세관장이 자율적으로 심사생략 등을 통해 신속 발급 지원

2. 수입신고 수리 전 간소화로 FTA 특혜통관 절차 개선

현행	개선
☐ 신청서류 수입신고 수리 전 심사(특례고시 제29조 관련) 4.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운송원칙 충족 여부	4.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직접운송 관련 서류 구비 여부

※ 통관단계에서는 형식적 요건 말 심사함으로써 신속통관 지원

3. 수입신고 수리 전 협정관세의 적정 여부 심사대상 축소

현행	개선
☐ 수리 전 심사대상(특례고시 제39조 관련) 2. 협정관세 적용보류 대상자가 수입하는 물품	2. <삭제>

4. 시행일 : '14.4.1

2.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서류 제출 생략 지침 시달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 2010-12-08(제정일자)

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5호에는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원산지확인서류는 증명서발급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매 신청시마다 동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수출기업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부담 해소 및 집행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제출 서류인 원산지확인서류의 제출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지침을 시달하니 2010.12.13.부터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절차)제1항제5호의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원산지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물품이 발급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의 물품과 동종동질 물품이면서 수출국이 동일한 경우
- 원산지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실질적 내용이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물품의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것과 발급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의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 경우
-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인이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시 1. ~ 2. 요건에 해당됨을 확인할 수 있는 원산지증명서의 Reference No.를 제출하는 경우. 끝.

3.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취하제도 시행 지침 시달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 2011-06-28(등록일자)

-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이후 신청인이 중복신청 등 업무미숙에 의한 신청오류로 발급신청 취하를 원하는 경우 이를 신청할 수 있도록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취하신청’ 제도를 2011.7.1.(금)부터 시행하고자 하오니
- 각 발급기관장께서는 동 제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신청인 등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한상공회의소장께서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시스템을 개선(시스템 개선전까지는 서류신청으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원산지증명서 발급 취하승인(신청)서 1부. 끝.

원산지증명서 발급 취하승인(신청)서

(처리기간 : 즉시)

①발급신청번호				발급신청일자	
②신청인	구 분	[]생산자	[]수출자	[]관세사	[]기타 ()
	상호(대표자)				사업자번호
③ 원산지인증수출자	[]비해당	[]해당	[인증번호 :]		
④적용FTA협정	한- FTA				
⑤수출자	상호(대표자)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E-Mail
⑥생산자	상호(대표자)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E-Mail
⑦수입자	상호				대표자
	주소(국가)				전화번호
⑧취하 신청 일자					
⑨취하 신청 사유					

위 내용과 같이 원산지증명서 발급 취하를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업체명 [대표자명]

(서명 또는 인)

○○세관장(○○상공회의소 회장) 귀하

4. FTA 원산지 증명서 확인 및 특혜관세 적용 지침 시달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 2007-11-23(등록일자)

- FTA의 확대에 따라 각 협정별 원산지증명서 양식, 기재요령 등이 상이하고, 기재요령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원산지 증명서의 인정 범위에 대하여 집행기관 간 차이가 발생하여 협정관세 적용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실정입니다.

2. 이에 따라, 일선세관, 관세사 등 업계의 의견수렴(9.18~9.28)를 거치고, 본청(FTA이행과, 원산지심사과), 본부 세관 통관·심사분야의 FTA 전문가 및 관세사와 함께 지침안 검토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10.29, 월)하여 첨부와 같이 지침을 시달하오니, 각급 세관장께서는 관내 무역업계와 내부직원에게 대해 철저히 교육하는 등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관세사회에서는 동 지침에 대해 관세사 등 업계에 전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후 FTA 협정관세 적용 관련 개선사항 등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FTA이행과 e-mail (fta@customs.go.kr)을 통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 지침은 관세청 FTA 포털(www.fta.customs.go.kr) 공지사항에도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4. 본 지침은 홍보 및 교육기간을 고려하여 2007년 11월 12일자로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붙임: FTA 원산지 증명서 확인 및 특혜관세 적용 지침 1부

FTA 원산지 증명서 확인 및 특혜관세 적용 지침

I. 지침배경

- FTA 협정관세 적용을 위한 협정관세 적용 방식이 법령규정과 일치하지 않거나, 일선 세관별로 차이가 발생
- 특히, 한-아세안 FTA 발효 이후 기재요령과 일치하지 않는 원산지증명서(C/O)의 효력인정 범위에 대해 일선세관 간 집행이 상이하여 민원인 및 일선 세관의 혼란이 발생
- 이에 따라, 협정관세적용 및 C/O 효력 인정여부에 대한 통일적인 세부지침을 마련하기 위함

II. 관련 규정

- 대한민국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한-칠레 특례법’) 시행령 별표, 관세법 제244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249조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특례법’) 제2조 1항 5호, 제8조 내지 13조, 제16조
- 특례법 시행령 제2조, 제9조 내지 18조, 제22조, 제22조의 2
- 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 내지 10조, 제12조, 제13조, 제16조 내지 25조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사무처리 고시(이하 ‘특레고시’) 제3장 및 제4장
-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I(이하 ‘한-EFTA 원산지규정’), 부속서 I의 부록 3(원산지신고서)
-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및 대한민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에 따른 상품무역협정 부속서 3(이하 ‘AK-FTA 원산지 규정’), 부속서 3의 부록 1(이하 ‘AK-FTA 통관 규정’), AK-FTA 통관규정의 첨부(attachment, 원산지증명서 양식 및 기재요령)

III.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기재 및 확인 요령

□ 수출자 확인 요령(특레고시 별지 제 9호 서식 13번 항목)

- 기재 요령

⑬수출자	○ 체결상대국의 수출자 관련사항 기재	(기재예시)
- 상호	- 원산지증명서상의 회사명을 기재	- ABC Corporation
- 성명	- 원산지증명서상의 대표자 성명을 기재	- JOELLE LAU
- 주소	- 원산지증명서상의 주소지를 기재	- 55 Newton Road #10 Revenue House Singapore
- 사업자등록번호	- 원산지증명서상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	- 123-456-78910

- 현황 및 문제점

- 협정관세 적용신청서는 특레법 제10조 규정에 의해 협정관세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며, 협정 및 특레법의 규율을 받으므로 통상적인 수출자와 다른 개념임

- 동 수출자 기재란에 무역거래 관행, 제3자 발행 송장(invoice) 등에 의해 계약상대국이 아닌 제3국의 ‘수출자’를 기재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수출자에 대한 통일적인 해석 지침이 필요

○ **특례법 및 협정 규정에 의한 수출자의 의미**

- FTA에서 수출자라 함은 ‘C/O 발급(신청)의 책임이 있고, 협정에서 정한 자료보관의 의무를 지며, 원산지 검증의 대상이 되는 인(人)’을 의미
- 누가 수출자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원산지 입증책임과 수입국 세관당국의 검증 가능성으로 협정관세 적용 신청서 상의 수출자는 이 두가지 요소를 충족하는 사람이 되어야 함
- 특례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은 조사대상자(수출자포함)의 부도·폐업·소재 불명 등의 사유로 원산지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협정관세를 배제토록 명문화 하고 있음

<FTA 에서의 수출자의 개념>

- “수출자”라 함은 상품이 수출되는 계약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면서 그 상품을 수출하는 인을 말함 (한·EFTA 원산지 규정 및 AK-FTA 통관규정 제1조)
- 다만, 협정에 수출자 정의가 없다고 하여도 하기와 같은 이유로 수출자는 동일하게 정의 되는 것으로 봄
- 수출자는 통상적인 거래계약당사자, 수입신고서의 해외공급자와는 다른 개념으로 협정 및 특례법은 원산지와 관련하여 수출자를 규정
- 수출자는 C/O 발급 또는 발급신청의 주체로서 C/O발급 권한 또는 발급신청 권한이 없는 인(人)은 수출자가 되지 아니함(특례법 시행규칙 제6조, 한·EFTA 원산지 규정 15조 및 AK-FTA 통관규정 제4조 등)
- 수출자는 자료보관의무를 부담하므로, 자료보관 의무 대상자가 아닌 제3국에 소재하는 인(人)은 수출자에 포함되지 아니함(특례법 제12조, 한·EFTA 원산지 규정 제21조 등 협정은 자료보관 의무자는 ‘exporter’로 규정)
- 수출자는 수입국 또는 수출국의 검증대상으로 비당사국에 소재하는 인(人)은 협정에서 검증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수출자에서 제외(특례법 제13조, 한·EFTA 원산지 규정 제24조 4항, AK-FTA 통관규정 제14조 및 15조 등)
- ※ 인(人)은 자연인 또는 법인을 모두 포함

○ **수출자 확인 서류 및 기재(확인) 요령**

- 수출자는 반드시 C/O 또는 원산지 신고서(원산지증빙서류)에서 확인
- 상호와 성명은 수출자와 동일성이 확인되는 조건하에서 동일하게 기재 가능
- 사업자 등록 번호는 계약 상대국의 tax_ID number로 같음하며, 이를 수입자가 모를 경우 생략 가능

○ **협정관세 적용 신청서 13번 항목(수출자) 기재요류 처리요령**

- 협정관세 적용 신청서의 수출자가 당해 협정관세 적용물품의 계약 상대국이 아닌 제3국 인(人)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

⇒ 수입신고 수리 전 : 보완요구 또는 (미 보완시)협정관세 적용신청서 반려

⇒ 수입신고 수리 후 : 원산지증명서를 제출받아 원산지증명서상의 수출자 요건을 심사

□ **C/O 발급 번호 중복 처리 요령(특레고시 별지 제 9호 서식 18번 항목)**

○ **작성요령**

- 원산지 증명서의 일련번호를 기재(수입자가 알고 있는 경우에 한함)
- 다만, 사전심사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심사서 발행번호를 기재

○ **현황 및 문제점**

- 기관발급 C/O의 경우에는 고유의 일련번호가 있으므로 이를 기재하면 되나, 자율발급은 일련번호가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혼란이 발생
- 증명서 발급 번호가 중복되는 경우 처리 지침이 명확하지 않아 수입자와 세관간 다툼이 발생

○ **협정관세 적용 신청서 18번 항목(발급번호) 기재 및 중복처리 요령**

<자율발급 C/O의 경우> : 한-EFTA

- 한-EFTA 등 별도의 발급번호가 없으므로, 원산지 신고서가 기재된 송장 번호 또는 포장명세서의 번호 등을 기재(세관인증번호가 아님)

<기관발급 C/O의 경우> : 한-싱가포르, 한-아세안 FTA

- 기관발급 C/O는 고유의 발급 번호가 있으므로 중복되어 있는 경우, 진위여부 조회 요청을 하여야 함
⇒ 수입신고 수리전 :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반려
⇒ 수입신고 수리후 : C/O 진위여부 조회 등 원산지조사절차 개시
- C/O 진위여부 조회 요청시 수입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진위여부 조회 사유를 포함하도록 하고, fax 등 반드시 통보 근거를 남기도록 조치 (통보양식은 별도로 없음)

□ 직접운송 요건 확인 요령

○ 직접 운송 원칙 관련 규정

- 원산지물품(originating goods)의 경우에도 계약상대국이 아닌 국가를 경유하여 운송되거나 선적된 경우에 계약상대국을 그 물품의 원산지로 인정하지 아니 함
- 다만, 협정에서 달리 정하거나, 당해 물품이 계약상대국이 아닌 국가의 보세구역에서 운송 상의 목적으로 환적되었거나 일시적으로 장치되었음이 인정되는 때에는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특례법 제9조 2항)
- ※ 협정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는 한-EFTA 원산지 규정 제14조, AK-FTA 원산지 규정 제9조, AK-FTA 통관 규정 제19조 참조

○ 직접운송의 의미

- 직접운송 요건은 원산지 물품이라 하더라도 당사국간 직접 운송되지 않으면 원산지가 부인되는 것으로 다만, 환적이나 일시 장치의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됨
-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동일성여부 등이 수입국에 의해 확인되지 않으므로* 원산지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규정임
- * 제3국은 협정 또는 국내법령에 의해 수입국에서 조사권한이 없으며, 이에 따라 제3국에서 내수 통관되는 경우에는 이유를 불문하고 원산지가 부인됨
- 직접운송 규정은 원산지 충족요건 확인에 관한 절차적인 규정이 아니라 실체적인 규정이므로 동 원칙의 위반은 물품의 원산지 자체가 부인

○ 직접운송 규정의 확인 요령

가. 제3국 경유시 보세구역 또는 일시장치의 입증 책임

- 특례법 제9조 2항은 환적되었거나 일시적으로 장치되었음이 인정되는 때 라고 규정하여 원산지 물품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 이와 관련, 한-칠레 FTA 통일규칙 제11조 (a), 한-싱가포르 FTA 제5.9조 (c), 한-EFTA 원산지규정 제14조 2항, AK-FTA 통관규정 제19조에서는 이를 명백히 하고 있음

나.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 확인 요령

[단순환적 또는 일시장치의 경우]

- 1차적으로 운송회사가 발행한 운송서류(B/L, 화물운송장 등)에 의해 최초 출항지와 최종 목적국(한국)이 계약상대국으로 확인되면 인정
- 운송서류의 적출국이 계약당사국이 아닌 경우
 - i) 일차적으로 컨테이너 봉인 번호 등 계약상대국으로부터 운송된 물품과 동일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직접운송 요건 충족으로 인정
 - ii) i)에 의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단순경유를 입증할 수 있는 공적인 입증서류(예 : 경유국 세관당국이 발행한 보세구역 반출입 신고서류 또는 보관증, 단순경유 원산지증명서 등)를 추가로 징구하여 확인
- * 다만, 특례고시 제3-5-1조 제2항 2호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국이 내륙지국가(예 : 스위스연방)로서 ①

선하증권 또는 화물운송장상의 수출자가 원산지증빙서류상의 수출자로 기재되어 있고, ②적출항이 계약상대국의 인접국가 항구 또는 공항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③도착항이 우리나라의 항구 또는 공항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인정

IV. 한·칠레 FTA

□ 입항전 수입신고 허용여부(포도)

○ 현황 및 문제점

- 계절관세 적용을 받는 신선포도(HSK 0806.10.0000)의 경우 매년 11월1일부터 다음해 4월 30일까지 한·칠레 FTA 협정관세(Y1)가 적용
- 이에 따라,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관세법 제244조(입항전수입신고)를 원용하여 물품은 5월 1일 이후에 도착하나, 수입신고는 4월30일 이전에 신고한 경우 협정관세 적용 여부에 대해 다툼이 발생

○ 입항전 수입신고시 협정관세 적용 여부(HSK 0806.10.0000에 한함)

- 한·칠레 특례법에는 입항전 수입신고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관세법 규정*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여부를 판단
- * 한·칠레 특례법 제23조(이 법과 관세법 및 협정과의 관계) 1항
- 관세법 시행령 제249조 3항 1호 후단 규정에 의하면, 당해 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날부터 높은 세율이 적용되도록 입법예고가 된 물품**에 대해서는 입항전 수입신고가 제한됨
- 한·칠레 FTA의 **년도별 협정세율**은 한·칠레 특례법 시행령 공포일인 **2004년 3월 22일에 입법예고**가 되었다 할 것임
- 따라서, **계절관세 품목에 해당하는 포도의 경우** 입항전 수입신고 제한 규정에 해당되므로 **입항전 수입신고시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없음**

V. 한-EFTA FTA

□ 원산지 신고서 공통사항

○ 기본 원칙(한-EFTA 원산지 규정 제15조)

- 원산지 신고서는 원산지 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협정에 규정된 신고서 문안만이 원산지 신고서로서 효력을 가짐
- 원산지 신고서는 ‘원산지 상품’에 대하여 작성되어야 하므로 협정관세 적용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특정 물품내역이 기재되어야 하며, 각각 개별 수출건에 대해 각각의 원산지 신고서가 작성 되어야 함
- 원산지 신고서 문안은 물품을 세부적이고 명확히 설명하고 있는 상업서류*에 작성 가능하며, 동 상업서류는 반드시 ‘수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가 기재되고 계약 당사국에서 발행되어야 함
- * 송품장(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운송서류(B/L) 등

○ 원산지 신고서의 인정 범위

- 무역거래 관행상 상업서류가 제3국에서 발행되는 경우도, 원산지 신고서가 기재된 상업서류는 ‘수출자’*가 발행한 상업서류만 유효**함
- * “수출자”라 함은 상품이 수출되는 계약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면서 그 상품을 수출하는 인(人)
- ** (예)송품장이 제3국에서 발행되었을 경우, 동 송품장에 원산지 신고서를 기재할 수 없으며, 수출자 발행한 상업서류(예 : 포장명세서)에 원산지 신고서 문안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양 서류간 물품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적법한 것으로 인정
- 제3국에서 발행된 상업서류 관련 아래와 같은 경우는 인정되지 아니함
- ① 제3국 발행 상업서류에 제3국인이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
- ② 제3국 발행 상업서류에 계약당사국 수출자가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
- ③ 백지에 원산지 신고서 문안을 수출자가 기재하고, 제3국 발행 송장, packing list 등 상업서류의 참조번호

기재

- ④ 백지에 원산지 신고서 문안만을 수출자가 작성하며 물품에 대한 설명이 신고서 상에 나타나지 않음

○ 제3국 발행 상업서류에 원산지 신고서가 기재된 경우의 처리요령

- ①, ②, ③, ④번 경우에 원산지 신고서의 효력은 부인
 - 다만, 본 사안은 협정해석에 관한 명확한 이행지침이 없었고, 평균적인 상식을 가진 세관공무원 조차도 이해하기 어려웠던 점을 감안하여 본 지침이 시행될 때까지 위 사안과 같이 수입신고 된 건에 대해서는 EFTA 국가에 검증을 요청하여 처리
 - 본 지침 시행일 이후에는 수입신고 수리전에 확인된 경우에는 협정관세적용 신청을 반려
- ①, ②, ③, ④번 경우, 원산지 신고서 효력이 부인되는 이유

가. ①, ④번의 경우

- ①번의 경우, 권한 없는 자에 의한 원산지 신고서 발급으로 원산지 신고서의 효력 부인
- ④번의 경우, 원산지 상품에 대해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한-EFTA 원산지규정 제15조 1항)하여야 함에도, 원산지 신고서와 협정관세가 적용된 물품간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효력 부인

나. ②, ③번의 경우

- 송장 등 상업서류에 신고서 문안이 작성 되는 경우, 동 상업서류는 수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가 기록·확인되는 것 이어야 함(한-EFTA 원산지규정 제15조 2항)
- * ... commercial document identifying the exporter, his address and telephone number, ...(수출자 등이 상업서류의 일부로 확인(기재되어 있는)되는 document)
- 제3국에서 발행된 상업서류는 협정규정에 의한 계약상대국의 수출자가 동 상업서류상 확인되지 않으므로 원산지 신고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됨
- 또한, 백지의 원산지 신고서에 제3국에서 발행된 상업서류의 참조번호를 기재하여도 동 상업서류는 계약상대국의 수출자에 관한 사항이 기록·확인되지 않으므로 원산지 신고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됨

□ 각 항목별 원산지신고서 확인 요령

체약당사국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 발행 C/O의 처리 문제

- 한-EFTA 원산지 규정 제15조 및 부록3에 규정된 원산지 신고서만이 유효하며, 세관 또는 상의 발행 C/O는 협정 및 특례법 상 근거가 없으므로 인정 불가
- 다만, 세관 또는 상의 발급 C/O도 한-EFTA 원산지 규정 부록3의 원산지 신고서문안이 동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식 상에 기재되고, 구체적인 원산지 물품의 상세한 설명, 수출자의 서명 등 기타 요건이 만족하는 경우 인정

국가 코드 적용 요령

- 원칙
 - 해당 국가의 국명(Iceland, Norwegian, Swiss or Korea) 또는 ISO 알파 2단위 부호 기재
 - 다만, 리히텐슈타인은 스위스로 표기
- 허용 가능 표기
 - 국가명을 명확히 알 수 있는 것은 허용
 - 예) Swiss를 Switzerland로 표기 하는 경우
 - 리히텐슈타인은 스위스 또는 LI 또는 Lichtenstein 모두 허용

장소 및 신고 일자 확인 요령

- 장소명은 원산지 신고서의 발급 국가의 지역명이어야 하며, 체약당사국이 아닌 제3국의 지명이 기재된 경우 원산지 신고서의 효력은 부인됨

수출자의 서명 확인 요령

- 세관인증번호가 없는 경우, 수출자의 서명은 필수 기재사항으로 서명이 없는 경우 원산지 신고서는 반려
- 상업서류에 기재된 원산지 신고서의 경우, 상업서류의 서명과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불일치 할 경우, 원산지 신고서는 반려

Ⅶ. 한·아세안 FTA

□ 공통사항

- AK-FTA 통관규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원산지에 대한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 경미한 하자에 의한 C/O의 효력은 부인되지 않음
- 경미한 하자는 오타 typo가 대표적이며, 원산지와 관계없는 형식적인 사항으로 invoice 등에 의해 객관적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C/O의 효력을 인정
- 원산지 증명서는 ‘원산지 물품’임을 증명하는 서류이므로 다음의 C/O인정 요령을 제외하고는 원산지 관계없는 항목은 경미한 하자로 보아 C/O의 효력 인정

□ 각 항목별 원산지 증명서 인정 요령

가. 7번 상품명, 포장 수량 및 HS

포장수량이 C/O기재 사항과 상이한 경우

- C/O에 기재된 포장수량만큼 C/O가 보증을 하고 있으므로 C/O를 기준으로 협정관세 적용 수량을 판단
- 포장 개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된 물량에 대해서는 실행세율을 적용하고, 초과된 수량에 대해 별도 C/O를 제출하는 경우 또는 수입신고 수량과 일치 하는 C/O를 제출에 한하여 협정관세 적용*
- * 수입신고 수리후 협정관세 적용 신청에도 동일하게 적용
- 원산지 증명서는 1회 선적분(one single consignment)에 대해 작성되기 때문에 미달된 수량에 대해서는 추가 사용이 불가

HS가 물품과 상이하거나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원칙 : 수입국(한국)의 HS를 기재하고 품명(description)과 세번이 일치
- HS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의 처리 방법
- 통관부서에서 HS 미기재가 확인된 경우, 보완요구 또는 (미 보완시)협정관세 적용신청서 반려
- HS가 우리측 적용 세 번과 다른 경우 처리 방법

<HS 10단위가 다른 경우>

- 원산지 결정기준은 6단위 이상에서 규정하기 때문에 6단위까지 오류가 없는 경우 C/O 효력 인정

<HS 2,4,6단위가 다른 경우>

- HS 2,4,6단위에서는 원산지 결정기준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C/O에 기재된 원산지 결정 기준과 품명에 따른 결정기준에 따라 판단

- ① C/O상의 원산지 결정기준과 품명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이 동일할 경우, 통관단계에서 확인된 경우는 협정세율 적용 후 통관
- ② C/O상의 세번과 품명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이 서로 다른 경우, 통관단계에서 확인된 경우는 협정세율 적용 후 통관하고, 사후심사부서에서는 원산지 검증절차 개시

제3국 발행 송장 내역 기재

- 원칙 : 제3국에서 송장을 발행한 회사의 국가정보 및 이름 기재
- 제3국에서 복수의 송장이 발행되는 경우
 - 제3국에서 복수의 거래*가 이루어져 복수의 송장이 발급되는 경우에는 한국에 제출되는 최종 송장을 발급한 국가의 국가정보 회사를 기재
 - * 베트남-싱가포르-홍콩-한국과 같이 제3국에서 다단계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 제3국에서 발행한 송장의 회사와 국가정보 등이 미기재 되어 있는 경우
 - 통관단계에서 확인된 경우 보완요구 또는 협정관세 적용 신청서를 반려하고, 사후심사단계에서는 원산지 검증절차 개시

나. 8번 원산지 결정 기준

원산지 결정 기준 미기재 또는 기재 오류

- 원칙 : AK-FTA 원산지증명서 양식 및 기재요령 참조
- 원산지 결정 기준은 C/O의 핵심 사항으로 통관단계에서 확인된 경우에는 C/O의 효력을 부인하고 보완요구 또는 협정관세 적용 신청서를 반려
- 사후 심사 단계에서 원산지 검증 절차 개시
- ※ 원산지 결정 기준을 다른 방법으로 표기된 경우의 처리 기준
 - CTC로 표기해야 되는 품목을 CTH 또는 CC 라고 표기한 경우는 실질적인 내용이 동일하므로 C/O 인정
 - “Specific Process”라고 표기 해야 되는 물품을 ” 재단/봉제 “와 같이 특정 공정을 기재(“CC+cutting“ 또는 “CC+sewing“ 등)하는 경우도 실질적인 내용은 동일하므로 인정

다. 9번 총중량 또는 수량 및 가격

중량단위가 상이하거나 실제 중량과 C/O 중량이 다른 경우

※ VI.한·아세안 FTA의 C/O인정요령 중 ‘가’ 항목의 포장수량의 경우에 준하여 처리

가격 미기재의 경우

- 부가가치 기준 적용 품목은 제1차적으로 FOB 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보완요구 또는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반려
- 제3국 발행 송장의 경우 수출국(아세안 회원국)에서 최초 발행된 송품장의 가격이 기재되어야 하며, 최초 발행된 송품장상의 가격이 아닐 경우 최초 수출자와 제3국인 간의 관련 송장 또는 거래계약서 등을 징구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자료 미제출시 특례법 제16조에 따라 처리

라. 10번 송장번호와 일자

C/O상의 송장번호와 수입자 제출의 송장 번호가 상이할 경우

- 원칙 : 수출국에서 최초 발행한 송장번호 기재
 - 증명서 발급 기관은 자국에서 제출된 서류에 근거하여 C/O를 발급하며, 송장가격에 따라 부가가치 비율이 달라짐
 - 원산지 물품인지의 여부는 수출국에서 최종 결정되고 제3국 당사자와 수입자간의 거래가격에 의해 원산지가 왜곡되어서는 않됨

- 허용 되는 경우
 - C/O의 품명, 중량 등 기재내역과 제출된 송장간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 가능

마. 12번 증명

- C/O 발급기관은 명칭, 주소, 견본 서명 및 견본 관인을 아세안 사무국을 통하여 모든 당사국에 제공 하고, 동 목록에 포함되지 아니한 공무원에 의하여 발급된 C/O는 관세당국에 의하여 인정되지 않음(협정 부록1 제2조)

C/O의 발급자 서명이 확인 되지 않는 경우

- 원칙 : 불인정
- C/O발급 담당자의 인사이동 등에 의해 C/O 발급자 서명이 확인 되지 않는 경우, 실행세율로 통관하고 본 청 원산지심사과에 C/O의 진위여부조회를 요청할 것

인장이 다른 경우

- 원칙 : 불인정
- 처리 요령
 - 통관 단계에서 확인된 경우 협정관세 적용 신청서를 반려
 - 사후심사 부서에서 확인된 경우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협정 부록1 제5조, 특례법 영 제22조의2 및 특례고시 제4-3-9조에 따라 원산지증명서에 적용배제 사유를 표기하고, 대상물품·적용배제 이유 및 법적근거를 기재한 서류와 수입자가 제출한 C/O(원본)을 원산지심사과에 제출

증명발급지 또는 발급년월일이 미기재 된 경우

- 통관단계에서는 보완요구 또는 협정관세 적용 신청서 반려
- 사후심사부서에서는 본청에 C/O 진위여부 조회를 요청하여 처리

바. 13번 제3국 송장, 연결 원산지증명서

제3국 송장, 또는 연결원산지 증명서 표시가 되어 있지 않는 경우

- 원칙
 - 제3국 발행 송장은 “Third Country Invoicing” 항목에 (√)로 표시하고 제7란에 송장을 발행한 회사의 이름 및 국가 정보를 기재
 - 연결원산지 증명서는 원산지와 원산지 증명서 발급국가가 다른 경우로 “Back-to-Back CO”항목에 (√)로 표시
- 해당란에 체크가 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도 단순 착오라는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C/O효력 인정
 - (예)제7란에 제3국 송장 발행인의 국적, 회사정보 등이 기재되어 있으면 인정하고, C/O 발급국가와 원산지가 다른 경우에도 Back-to-Back C/O임을 확인 할 수 있으므로 인정

□ 임가공 물품의 임가공비의 협정관세 적용 여부

- 현황
 - FTA 체결국에서 해외임가공 후 수입시, 원부자재는 FTA특례법과 무관하게 관세법 제101조에 의하여 수입시 해외 임가공 면세를 받음

- 다만, 왕복운임 및 임가공비 등에 대해서는 FTA 특례법상 별도의 규정이 없어 면세 여부에 대해 논란이 발생

○ 임가공 물품 임가공비의 협정관세 적용 여부

- 관세법 제14조 규정에 의해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고, 수입물품은 해외에서 부가가치가 증가된 부분(임가공비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임가공에 의해 최종적으로 수입된 물품의 가치가 과세표준이 됨
- 이 때 적용할 세율은 FTA특례법 제5조 규정에 의해 FTA협정관세가 기본세율보다 낮은 경우 협정관세가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과세기술상 수입신고란을 분리하더라도 당해 수입물품 전체에 대해 협정관세가 적용
- 당해 수입물품의 협정관세 적용 후*, 감면대상 물품(원부자재)에 해당되면 관세법 규정에 의해 추가로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임가공비 등은 감면 대상이 아니므로 협정세율만을 적용받게 됨
- ※ 다만 임가공 물품이더라도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원산지 증명서 등)을 만족해야 함

5. FTA 특례법령 개정에 따른 협정관세 사후적용(소급) 업무처리 지침 통보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 2009-01-21(등록 일자)

1. 협정관세 사후적용 의사표시 요건 폐지 및 한·싱가포르 FTA 발효일 이후 수입된 물품부터 소급적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FTA 관세특례법률」이 2009.1.26.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2. 협정관세의 소급적용과 관련하여 대상 및 신청기간, 원산지증명서 인정범위 등을 명확히 하여 불임과 같이 업무처리지침을 통보하니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FTA특례법령 개정에 따른 협정관세 사후적용(소급) 업무처리 지침 1부

FTA특례법령 개정에 따른 협정관세 사후적용(소급) 업무처리 지침

원산지심사과(2009.1.26.)

□ 지침 배경

- 협정관세 사후적용 의사표시 요건 폐지 및 한·싱가포르 FTA 발효일 이후 수입된 물품부터 소급적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 「FTA관세특례법률」(법률 제9271호, 2008. 12.26)이 2009.1.26.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협정관세의 소급적용과 관련하여 대상 및 신청기간을 명확히 하여 일선세관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 법령 개정 내용

- 사후적용 의사표시요건 폐지(현행 제10조제3항 후단 삭제)

현 행	개 정
수입신고 수리 후 협정관세적용을 신청하려는 자는 수입신고서에 의사표시를 하여야 함.	의사표시 요건 폐지

- 협정관세 적용신청 특례(개정 부칙 제7조)
 - 제10조제3항의 개정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한·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 발효일(2006.3.2.) 이후에 수입 신고된 물품은 개정 법률의 시행일에 수입신고된 것으로 간주

□ 소급적용 대상 협정

- 한·싱가포르, 한-EFTA,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 소급적용 신청 기간

- 개정 법률의 시행일로부터 1년(2009.1.26. ~ 2010.1.25.)

□ 소급적용 대상

- 2006.3.2. 이후에 우리나라로 수입된 물품으로,
 - ① 수입신고 당시 사후적용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 협정관세를 적용 받지 못한 물품
 - ② 사후적용 의사표시는 하였으나 경정청구기간 안에 협정관세를 적용 받지 않은 물품
 - ③ 사후적용 의사표시와 관련하여 보정·수정·경정되어 협정관세를 적용 받지 못한 물품
 ※ 협정관세 사후적용 의사표시와 무관하게 보정·수정·경정한 경우(예 :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경과, 협정대상품목 착오, 원산지증명서 미제출 등)는 제외됨에 유의

□ 원산지증명서 인정범위

- 과거 수입신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원산지증명서를 갖추어 협정관세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인정됨.
 - 다만, 과거 수입신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간을 제외하여 계산한 결과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일 경우에는 인정됨.
 - ①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경우에는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다음날부터 해당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날까지의 기간」
 -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따른 운송지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다음날부터 소멸된 날까지의 기간」
- ※ 개정 「FTA 특례법 시행령」 제10조제5항 적용

6. FTA 특례법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420호) 개정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661, 2014-03-18

‘14.3.14자로 FTA 관세 특례법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일선현장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업무처리 지침을 통보하오니 각급 기관(부서)에서는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 시행규칙 제6조(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절차) 제2항 관련

- 증명서 발급기관이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정보 및 국내제조확인서 제출을 요구

종전	개정
증명서 발급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증명서 발급기관이 제출된 서류로 해당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각 증명서발급기관(세관, 자유무역지역관리원, 상공회의소·대한상공회의소)은 원산지 결정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에 따라, 불필요하게 추가자료를 요구하지 않도록 유의하는 등 개정 취지에 따라 민원불편 해소에 적극 협조

□ 시행규칙 제16조의2(수입신고수리 전 협정관세의 적정여부 심사물품) 관련

- 수입신고 수리 전 심사대상

종전	개정
2호, 영 제26조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보류 대상자가 수입하는 물품	< 삭 제 >

→ 각 세관은 협정관세 적용보류 대상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정여부를 수입신고수리 전 단계인 통관담당부서에서 심사하지 아니하고, 수입신고수리 후 단계인 심사담당부서에서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신속통관을 적극 지원

7. FTA 특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 2015-05-20(제정일자)

FTA 관세 특례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15.5.18자로 시행됨에 따라 일선현장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업무처리 지침을 통보하오니 각급 기관에서는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실(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개선관련

- 비원산지재료 내역은 첨부서류(원산지소명서)로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삭제

2. 시행규칙 별표6(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개정관련

- 한.아세안 FTA 부속서3의 부록2가 개정되어 품목별 원산지 기준이 HS 2007에서 HS 2012로 전환됨에 따라 이를 반영
- => '15.5.18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 다만, '15.5.17 이전에 HS 2007에 의해 유효

하게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도 인정

3. 시행규칙 제6조의3(원산지확인서) 제4항 및 제5항 신설관련

-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에게 원산지 확인서 제공의 편의를 위하여 관세청장이 관련 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농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증, 수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증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서류를 원산지확인서로 인정. 고시

=> '국산 농산물의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증빙서류 인정관련 처리지침'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인증서(104개 품목), 농산물 우수관리인증서(76개 품목) 및 친환경 농산물 인증서 (301개 품목)는 원산지확인서로 인정

4. 시행규칙 제7조(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및 제7조의2(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개정관련

- 품목별,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완화 및 인증유효기간 연장

- 업체별 인증수출자 : 서류보관의무 기간 : 5년 -> 2년 : 보정기간 : 5일~10일
: 유효기간 : 3년 -> 5년

-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 서류보관의무 기간 : 5년 -> 2년
: 보정기간 : 5일~10일 : 유효기간 : 2년 -> 5년

=> ○ '15.5.18. 이후 인증 신청분부터 적용. 다만, 인증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원산지 인증수출자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유효기간을 5년으로 일괄 연장조치할 예정이며, 관할세관에서는 유효기간이 연장된 인증서 재교부

○ '15. 5. 18. 현재 인증유효기간 연장신청 중인 경우 연장승인시 유효기간을 5년으로 지정. 끝.

8. FTA 활용관련 민원상담지침 안내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760, 2014-04-01

1. 우리청에서는 FTA 활용률을 제고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다양한 FTA 활용 지원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중소기업들이 원산지증명서 발급요령 등 기본적인 FTA 활용에 대해 상담문의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향후 주요 FTA 민원상담기관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2. 이의 일환으로, 다수 민원문의가 발생한 ‘우리나라와 협정상대국과의 HS번호 상이 시 원산지증명서 발급요령’에 대해 그간 우리청이 지침으로 시행·운영하고 있는 사항을 불임과 안내하오니 FTA 관련 민원인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민원 상담 시 적극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상담기관의 FTA 상담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주요 민원질의 사례를 모아 상담기관용 홍보매뉴얼(“FTA 이행지침 안내 20선“)을 조만간 배포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FTA이행과 관련하여 자주 중복되는 민원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통일된 지침을 신속히 송부할 계획이오니 우리청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불임 1. 품목분류 상이 관련 민원처리 지침 1부.

2. FTA 민원상담 홍보 대상기관 1부. 끝.

품목분류 상이 시 처리지침

□ 우리나라와 협정상대국과의 HS번호 상이시 원산지증명서 발급요령

- FTA 특혜원산지증명서 발급시에 우리나라와 수입국간 품목분류가 달리 운영되고 있는 경우 수입신고필증 등 수입국의 HS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서류*를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관세청 또는 상공회의소)에 제출하면 수입국의 HS번호를 기재하여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수입신고필증, 품목번호 확인서, 사전심사결정서(advance ruling) 등 수입당사국 정부의 당해 품목에 대한 공식적 의견서 중 하나를 제시하면 됩니다.

-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의 경우(미국, EU 등)에도 동 원칙이 적용되어 HS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갖춘 경우 사후검증이 실시되더라도 허위 원산지증명서 작성 등에 대한 벌칙이 적용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나라와 협정상대국과의 HS번호 상이시 인증수출자 인증 요령

- 품목별 인증수출자 인증은 우리나라의 HS6단위를 기준으로 인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입국의 HS번호가 상이한 경우에 수입국의 HS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인증여부가 부합되는 경우 수입국의 HS번호로 추가 인증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기타 HS번호 상이에 대한 중소기업 우려에 대한 홍보

- 수출물품에 대한 간이정액 환급을 받고 있는 기업의 경우 원산지증명서상의 HS번호와 관계없이 수출신고상의 HS번호에 따라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출신고서와 원산지증명서의 HS번호는 다를 수 있으니 업무에 착오가 없도록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9. HS 상이시 처리지침 관련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597, 2016-03-07

1. 귀 법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자유무역협정 및 일반특혜관세 원산지증명서의 특혜관세적용업무 처리방법('14.11.10)은 지침 시달일 이후 특혜관세 적용 신청분에 적용되며 동 지침이후 발효된 FTA에도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3. 다만,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원산지에 관한 조사 결과에 따라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직접운송 등 협정에서 규정한 요건을 불충족하는 경우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0.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 적용 기준에 관한 운영지침

원산지지원담당관(2018-09-03)

1. FTA협정세율 적용배제시 성실한 납세의무자에게 적용할 「FTA관세법령상 “정당한 사유” 적용 기준에 관한 운영지침」을 붙임과 같이 제정·통보합니다.
2. 아울러 각 세관장은 동 지침을 시행일(9.3) 현재 면제신청 심사 중인 건부터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FTA관세법령상 “정당한 사유” 적용 기준에 관한 운영지침」 1부. 끝.

FTA관세법령상 “정당한 사유” 적용 기준에 관한 운영지침

제정 2018. 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관세법’) 시행령」 제47조제3항제3호에 따라 세관장이 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에 대한 적용기준을 규정함으로써 그 면제에 관한 법적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여 성실한 납세자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당한 사유”란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는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사유를 말한다.
2. “협정관세 적용제한 사유”란 「FTA관세법」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항에 따른 사유를 말한다.

제2장 가산세 면제여부 심사시 정당한 사유의 적용 기준

제3조(가산세 부과) 세관장은 부적정한 협정관세 적용의 원인 또는 협정관세의 적용제한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가산세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1. 부적정한 협정관세 적용 또는 협정관세 적용제한 사유가 수입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경우
2. 부적정한 협정관세 적용 또는 협정관세 적용제한 사유가 수입자의 법령에 대한 무지 또는 착오에 의한

경우

3. 부적정한 협정관세 적용 또는 협정관세 적용제한 사유가 수입자의 사실관계에 대한 착오 또는 오인에 의한 경우
4. 부적정한 협정관세 적용 또는 협정관세 적용제한 사유와 관련하여 수입자가 가산세를 면제받을 목적으로 계약상대국 수출자 또는 생산자 등과 공모한 경우
5. 수입자가 협정관세 적용신청 이전 또는 이후에 협정관세 적용 제한 사유나 오류 등을 인지하고도 수정신고 등을 하지 않은 경우
6. 수입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확인서)인 경우
7. 「FTA관세법」 제35제1항제1호와 관련하여 수입자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요구한 자료를 같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여 협정관세 적용이 제한된 경우
8. 「FTA관세법」 제35제1항제4호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수입자에 대한 서면 또는 현지조사 결과 제출한 자료에 제7조에 따른 원산지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하여 협정관세 적용이 제한된 경우
9. 「FTA관세법」 제35제1항제6호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를 신청한 수입자가 사전심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료를 고의로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 또는 사전심사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협정관세 적용이 제한된 경우
10. 「FTA관세법」 제35제1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제1호와 관련하여 조사를 받는 수입자의 부도·폐업·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원산지 조사가 불가능하여 원산지 정확성을 확인할 수 없어 협정관세 적용이 제한된 경우
11. 「FTA관세법」 제35제1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제2호와 관련하여 조사를 받는 수입자가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 원산지 정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협정관세 적용이 제한된 경우
12.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여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4조(원칙적 가산세 면제) ① 세관장은 부적정한 협정적용 또는 협정관세 적용제한 사유가 제3조의 가산세 부과·징수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FTA관세법」 제35조제1항제2호와 관련하여 계약상대국 수출자 또는 생산자(이하 “계약상대국 수출자 등”)가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서면조사에 기획재정부령에 정하는 기간 내에 회신하지 아니하여 협정관세 적용이 제한된 경우
2. 「FTA관세법」 제35조제1항제4호와 관련하여 계약상대국 수출자 등이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서면 또는 현지조사 결과 제출한 자료에 원산지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하여 협정관세 적용이 제한된 경우
3. 「FTA관세법」 제35조제1항제5호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계약상대국 관세당국에 원산지 확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회신 내용에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하여 협정관세 적용이 제한된 경우
4. 「FTA관세법」 제35조제1항제2호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계약상대국 수출자 등에 대한 현지조사 동의 요청에 대해 같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기간 내에 동의여부를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동의하지 아니하여 협정관세 적용이 제한된 경우
5. 「FTA관세법」 제35조제1항제3호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현지조사시 계약상대국 수출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원산지증빙서류의 확인에 필요한 장부 또는 관련 자료에 대한 세관공무원의 접근 거부 또는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증빙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하여 협정관세 적용이 제한된 경우
6. 「FTA관세법」 제35조제1항제1호와 관련하여 계약상대국 수출자 등이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요구한 자료를 같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여 협정관세 적용이 제한된 경우
7. 「FTA관세법」 제35제1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제1호와 관련하여 조사를 받는 계약상대국 수출자 등의 부도·폐업·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원산지 조사가 불가능하여 원산지 정확성을 확인할 수 없어 협정관세 적용이 제한된 경우
8. 「FTA관세법」 제35제1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제2호와 관련하여 조사를 받는 계약상대국 수출자 등이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 원산지 정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협정관세 적용이 제한된 경우
9.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여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세관장은 가산세 면제사유가 제1항 각 호인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조건부 가산세 면제대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수입자와 계약상대국 수출자 등이 「관세법」 상의 특수관계인 경우

2. 「한-미 FTA」와 같이 협정에 협정관세 적용과 관련한 수입자의 의무사항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제5조(조건부 가산세 면제) ① 세관장은 부적정한 협정적용 또는 협정관세 적용 제한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자의 의무이행 여부 등을 심사하여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FTA관세법」 제35조제1항제4호와 관련하여 체약상대국 수출자 등에 대해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서면 또는 현지조사 결과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어 협정관세 적용이 제한된 경우
2. 「FTA관세법」 제35조제1항제5호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어 협정관세 적용이 제한된 경우
3. 「FTA관세법」 제35제1항제1호와 관련하여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등이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요구한 자료를 거짓으로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여 협정관세 적용이 제한된 경우
4. 「FTA관세법」 제35제1항제4호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수입자에 대한 서면 또는 현지조사 결과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어 협정관세 적용이 제한된 경우
5. 「FTA관세법」 제35조제1항제7호와 관련하여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의 거부·제한 사유로 인해 협정관세 적용이 제한된 경우
6.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여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세관장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수입자 의무 이행 여부를 심사하여 가산세 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수출자 등의 유효한 인증수출자 해당 여부 또는 적법한 권한이 있는 자에 의한 원산지증명서(신고서) 발행 여부 확인 등 거래당사자와 관련된 사항
2. 협정관세 적용물품의 품목분류 적정성 확인 등 협정별 양허품목 해당여부와 관련된 사항
3. 원산지증명서(신고서)의 FOB 가격, 원산지(기준) 오류나 계약서류, 상업서류 등 수입자가 확인 가능한 무역서류의 특이사항 확인 등 원산지 기준과 관련된 사항
4. 협정 및 법령에 따른 적법한 기재 또는 유효기간 경과 여부 확인 등 원산지증명서(신고서)의 형식적 요건과 관련된 사항
5. 제3국 경유 등 직접운송 의심 물품에 대한 경유지 세관 또는 선사 등을 통한 확인 및 협정 또는 법령이 정하는 증빙서류의 적정 제출 여부 확인 등 직접운송과 관련된 사항
6. 기타 협정 또는 FTA관세법령에 기재된 수입자 의무 이행과 관련된 사항

③ 세관장은 제2항의 수입자 의무 이행여부를 제6조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제6조(심사기준 등) ① 수입자의 의무는 원칙적으로 협정적용 신청시까지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협정 및 법령에 협정적용 이후에도 수입자의 의무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협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동일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등에게 동일 수입업체가 반복 수입하는 동일 물품과 관련된 수입자 의무는 최초 특혜적용 신청시까지 이행하여야 한다.

③ 수입자는 제5조제2항의 모든 의무 사항을 이행할 필요는 없으나, 특혜관세 적용 제한사유와 직접 관련된 의무사항 등은 이행하여야 한다.

④ 2개 이상 사유로 특혜관세 적용이 제한된 경우에는 제한 사유별로 가산세 면제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⑤ 수입자의 의무이행 여부는 수입자가 체약상대국 수출자 등에게 송부한 전산메일 또는 수출자 등의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8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적용례) 이 지침은 시행일 가산세 면제 심사 중인 건부터 적용한다.

제3조(신청절차 등) 가산세 면제의 신청 기한, 방법, 심사절차 등은 「FTA관세법령상 가산세 면제에 관한 지침(‘17.7.5)」을 준용한다.

11. 국산 농산물의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증빙서류 인정관련 처리 지침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 2015-03-03(제정일자)

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한 '원산지증빙서류'적용과 관련하여 불입과 같이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증빙서류 처리지침'을 '15.3.5일 부터 시행함을 알

려드립니다.

2. 아울러, 동 서류의 영문서류에 HS품목번호와 영문품목명이 포함되어 발급되므로 각 세관장께서도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업무, 인증수출자 인증업무 및 원산지조사업무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내 농산물 또는 가공식품 수출자와 생산자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증빙서류 처리 지침 1부. 끝.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증빙서류 처리 지침

(제정 2015. 3. 5.)

☐ 목 적

- 국산 농산물의 자유무역협정 원산지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하여 농산물의 자유무역협정 활용을 통한 수출을 지원하기 위함

☐ 원산지증빙서류로 인정하는 서류명

- 발급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법령에 의해 위임·위탁받은 자 포함)
- 서류명

서 류 명	발 급 근 거
①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유기식품등의 인증)
②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
③ 농산물 이력추적관리등록증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4조(이력추적관리)

☐ 업무처리 방법

- 원산지증명서 발급,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 원산지조사 등 업무수행시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상기 서류를 원산지증빙서류*로 인정처리
-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로 인정처리.

<예시>

◇ (종전) 농산물에 대한 FTA 원산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농지원부, 경작사실증명서, 매매증빙서류 등 3~5개의 증빙서류 요구
◇ (개선)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 등은 인증서류만 제출받아 원산지 확인

☐ 관세청장 인정 원산지증빙서류 3종 및 유효성 확인(조회)방법

- 관세청장 인정 원산지증빙서류 3종 및 품목별 인증현황(붙임1)
- 영문인증서 양식(붙임2), 인증농가 조회방법(붙임3)

☐ 시행일자 : 2015. 3. 5.(목)

12. 관세법 시행령 개정(원산지증명 제출기한의 예외 신설)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 2015-02-11(제정일자)

- 관세법 시행령 제236조(원산지증명서의 제출 등) 개정(대통령령 제26089호, 2015.2.26)에 따라 원할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업무처리 지침을 통보

- 아 래 -

1. 적용대상 : 관세법 제73조 및 제76조에 의한 국제협력관세(GSTP, APTA), 일반특혜관세(수예), 최빈국특혜관세

2. 업무처리방법

가. 특혜관세 적용 시 수입신고 전 원산지증명서 발급 여부를 확인 후 분실 등의 사유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리 후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내에 사후 신청 가능하며, 제출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 발행된 원산지증명서는 특혜 적용 가능

나. 사후 신청시에는 원산지증명서 또는 부분과 경정청구서를 제출하면 특혜 관세 적용 가능. (부분 :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 확인한 사본)

13. 관세사의 FTA 컨설팅 활성화 방안 통보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 2009-08-21(등록일자)

1. 한·인도 CEPA, 한·EU FTA 등 거대경제권으로의 동시다발적 FTA 확산에 따른 우리기업의 FTA를 활용한 비즈니스 전략 수립, 협정체결국 세관의 원산지검증에 대한 조력 등 새로운 FTA 컨설팅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FTA 전문지식(원산지규정, 관세평가, 품목분류 등)이 풍부한 관세사를 FTA 전문 컨설턴트로 육성함으로써, 78,000여 개에 달하는 우리 중소 수출기업들이 FTA를 新 수출성장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기업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3. 지난 7월 30일 청장님께 보고한 「관세사의 FTA 컨설팅 활성화 방안」을 통보하오니, 본청에서 마련한 대책이 원활히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해주시기 바라며, 향후 세관별 기업 지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관세사의 FTA 컨설팅 활성화 방안 1부<게재생략>

14. 보세건설장 건설물품에 대한 FTA 협정관세 적용지침 통보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718, 2017-03-10

보세건설장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보세건설장 건설물품에 대한 FTA 협정관세 적용지침」을 붙임과 같이 통보합니다.

※ 서울세관 질의(자유무역협정2과1-121호, '17.1.13) 회신은 동 지침으로 갈음

붙임 : 보세건설장 건설물품에 대한 FTA 협정관세 적용지침 1부. 끝.

보세건설장 건설물품에 대한 FTA 협정관세 적용 지침

1. 목적

- 보세건설장 건설물품에 대한 효율적 특혜적용을 위한

2. 처리방법

과세단위 (완성물품) 구성	수입신고 수리 및 C/O 제출 유형
(유형1)	
부분품1 (EU산)	① 과세단위인 완성품으로 수입신고 수리되고, 해당 완성품에 대한 C/O를 제출한 경우
부분품2 (EU산)	② 과세단위인 완성품으로 수입신고 수리되고, 완성품을 구성하는 부분품에 대한 C/O를 모두 제출한 경우
부분품3 (EU산)	③ 부분품으로 수입신고 수리되고, 해당 부분품 C/O를 제출한 경우
(유형2)	④ 일부 물품(부분품1)은 사용전신고와 별도로 통관하여 내국물품화하고, FTA협정 당사국으로부터 반입되어 사용 전 수입신고된 물품(부분품2, 부분품3)이 완성품으로 수입신고 수리되고 당해 완성품(부분품2+ 부분품3)에 대한 C/O를 제출하거나 당해 완성품의 모든 부분품에 대한 C/O를 제출한 경우

부분품1 (중국산/ 국내산 등) 부분품2 (EU산) 부분품3 (EU산)	- 다만, HS 해석통칙 2(가)에 따라 완성품으로 분류될 수 있어 완성품(과세단위)로 신고한 경우에 한함
	⑤ 부분품으로 수입신고 수리되고, 해당 부분품 C/O를 제출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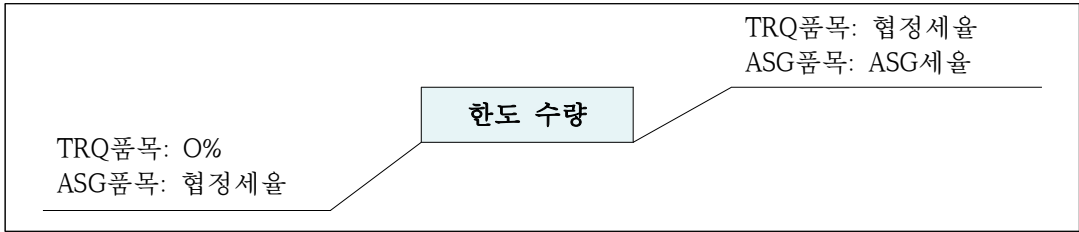
- ☐ 아래와 같이 수입신고수리되고, FTA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FTA 협정관세 적용 가능
- * (유형1) : 동일 FTA협정 당사국으로부터 반입된 물품으로만 완성품 구성
 - * (유형2) : 여러 FTA협정 당사국, 비당사국으로부터 반입된 물품 및 국내산 물품 등으로 완성품 구성
3. 시행시기: '17. 3. 13.(월)부터

15. 부족한 관세액이 없는 경우 「FTA특례법」 제36조에 따른 가산세 부과에 관한 지침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2019-08-16)

1. 대법원 2015두56120(선고 2018.11.29.), 2016두53180(선고 2018.11.29.)와 관련입니다.
 2. 최근 대법원에서는 FTA협정관세가 배제된 수입신고건에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특례법)」의 가산세 조항 신설 전 「관세법」 제42조에 따라 부과된 가산세에 대해 “관세 가산세는 본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부족한 관세액’이 없는 이상 가산세 납부의무만 따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3. 따라서 FTA협정관세를 적용한 수입신고건에 수정·경정 사유로 세액이 증액되어 부족한 관세를 징수하고 「FTA특례법」 제36조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이후 관세의 납세의무의 소멸 또는 관세의 감액이 발생한 경우, 세관장은 소멸된 관세액 또는 감액된 관세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환급할 수 있습니다.
- ※ 경정청구 당시 「FTA특례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수입신고건일 것. FTA협정관세를 적용한 수입신고건에 부과된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및 제47조의4에 따른 가산세도 동 지침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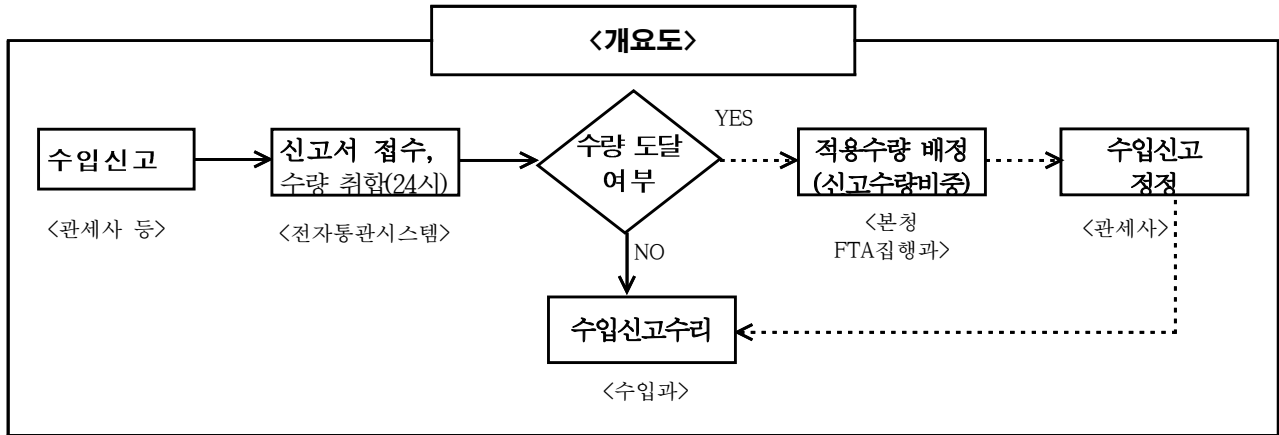
16. 선착순 방식 수량별 차등협정관세 적용물품 수입통관처리 지침
[관세청 FTA집행기획관실, 2016. 12. 30. 제정]
[관세청 FTA집행기획관실, 2017. 3. 10. 개정]

1. 목적
 - ☐ FTA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 시행('16.12.27)에 따라 적용 수량에 도달한 날의 잔량배정 기준을 “수입 신고수리된 수량” 에서 “수입신고된 수량” 으로 변경(고시 제4조 ~ 제7조)
 - ⇒ 선착순 방식 수량별 차등 협정관세 적용물품에 대한 원활한 수입통관 업무 처리 및 특혜부여의 적정성 확보



2. 대상협정 및 물품
 - 선착순 방식 수량별 차등협정관세 적용품목

3. 업무처리 방법



1) 협정별 차등협정세율 적용 한도수량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① 전자통관시스템 게시판 또는 수입통관시스템→원산지관리→FTA물품별 통관수량 통계에서 적용 한도수량을 확인

○ 수입신고 된 수량을 신고 당일 24시에 취합하여 전자통관시스템 게시판*에 차등협정세율 적용 수입신고 내역을 공지토록 조치(전산실)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게시판→업무별 게시판→FTA(매일 업무 시작전까지)

<전자통관시스템 게시판 화면 >

No	첨부	제목	게시자	게시시작일	조회	추천
6386		수량별 차등협정세율 품목 수입신고내역(1월1)	FTA담당자	2017-1-2	98	0
6378		FTA 원산지조사 사용자 매뉴얼 (1)	FTA담당자1	2016-06-15	66	0
5519		FTA 원산지조사 통관서류 및 CO발보 통관여 필요한 코드 목록	FTA담당자1	2016-05-04	68	0
5174		인용수출자 서명할수 시 입력하는 인용번호 체계(단위) 변경 요청	이선정	2016-04-27	66	0

<수입통관시스템 화면>

구분	품명	HS부호	기준물량(M/T)	자감물량(M/T)	수입물량(M/T)	잔여수량(M/T)	사용률(%)	물량초과일자	수리물량(M/T)
TRQ	납지	0303.34-0000 0303.39-0000	2,248.00	0.00	0.00	2,248.00	0.00		
계			2,248.00	0.00	0.00	2,248.00	0.00	-	

- ② 잔여수량과 사용율(%)를 확인하여 수입신고(차등협정세율 적용신청)한 수량*을 수입신고일 다음 날 수리*
 * 전자통관시스템에서 당일 신고수량이 허용된 경우, 당일 신고수량 가능

2) 협정별 차등협정세율 적용 한도수량에 도달한 경우

- ① 시스템(전산실)에서 적용수량 도달 통보*(→ 청 FTA 및 통관기획과)
 * 대상품목별 남은 적용수량과 수입신고 수량 및 수입신고서 내역
 ② 한도수량 도달일 다음날, 남은 적용수량을 수입신고 수량에 비례하여 배정 통보*(→세관)
 * 본청 FTA집행과에서 배정하여 각 세관 수입과에 신고 다음날 통보(엑셀문서)
 ③ 수입과는 배정수량 및 수입신고서 정정을 해당 관세사에게 요청
 ④ 수입신고서 정정신청이 접수되면 수입과 담당자는 신고수리

4. 수입신고시점과 수리시점의 수량차이 발생 등으로 인한 재배정 방법

- 1) 신고오류 등의 이유로 ‘신고시점’ 과 ‘수리시점’ 의 수량이 바뀌는 경우
 * HS 변경에 따른 차등협정관세 적용 대상물품의 수량 변동 등
 ① 신고정정으로 수량이 감소한 경우
 - 도달일 수입신고 건에 대해 수리시점 수량을 기준으로 재배정
 - 재배정 이후에도 적용수량이 남아있는 경우 도달일 이후 최초일 수입신고건에 대해 배정
 ② 신고정정으로 수량이 증가한 경우
 - 증가한 분에 대해 적용수량 배정하지 않음
 2) 신고취하·반송으로 ‘신고시점’ 과 ‘수리시점’ 의 수량이 바뀌는 경우
 ① ‘신고취하·반송 후 수량’ 이 ‘최초 배정 수량’ 보다 많거나 같은 경우
 - 신고취하·반송신고건에 대해 최초 배정수량 유지
 ② ‘신고취하·반송 후 수량’ 이 ‘최초 배정수량’ 보다 적은 경우
 - 신고취하·반송신고건에 대해 ‘신고취하·반송 후 수량’ 만큼 재배정
 - 위 재배정 후 남은 적용수량은 도달일 수입신고 건에 대해 우선 배정
 3) 수입신고 수리 후 신고수량이 바뀌는 경우 : 재배정 안함
 * 변경사유 : 수리후 분석에 따른 HS변경, 원산지조사 등에 따른 원산지 불인정 등
 ※ 상세 배정방법 : 붙임 참조

5. 시행시기: '17. 3. 10.부터.

붙임

수입신고시점과 수리시점의 수량차이 발생 등으로 인한 재배정 방법

1. 수입신고오류 등의 이유로 ‘신고시점’ 과 ‘수리시점’ 수량이 바뀌는 경우

1) 신고정정으로 수량이 감소한 경우 : 재배정

도달일 수입신고		적용수량 (240 M/T) 배정		신고정정 (수량감소)		적용수량 재배정																														
A : 100 MT B : 150 MT C : 50 MT TOTAL : 300	⇒	<table><tr><th></th><th>TRQ 물량</th><th>협정 세율 물량</th></tr><tr><td>A</td><td>80¹⁾</td><td>20</td></tr><tr><td>B</td><td>120</td><td>30</td></tr><tr><td>C</td><td>40</td><td>10</td></tr><tr><td>계</td><td>240</td><td>60</td></tr></table> 1) 적용수량 X A/(A+B+C)		TRQ 물량	협정 세율 물량	A	80 ¹⁾	20	B	120	30	C	40	10	계	240	60	⇒	A건 100 → 80MT A : 80 MT B : 150 MT C : 50 MT TOTAL : 280	⇒ 신고 수 리 ⇒	<table><tr><th></th><th>TRQ 물량</th><th>협정 세율 물량</th></tr><tr><td>A</td><td>68.6</td><td>11.4</td></tr><tr><td>B</td><td>128.6</td><td>21.4</td></tr><tr><td>C</td><td>42.8</td><td>7.2</td></tr><tr><td>계</td><td>240</td><td>40</td></tr></table>		TRQ 물량	협정 세율 물량	A	68.6	11.4	B	128.6	21.4	C	42.8	7.2	계	240	40
	TRQ 물량	협정 세율 물량																																		
A	80 ¹⁾	20																																		
B	120	30																																		
C	40	10																																		
계	240	60																																		
	TRQ 물량	협정 세율 물량																																		
A	68.6	11.4																																		
B	128.6	21.4																																		
C	42.8	7.2																																		
계	240	40																																		

2) 신고정정으로 수량이 증가한 경우 : 재배정 안함

도달일 수입신고		적용수량 (240M/T) 배정		신고정정 (수량증가)		적용수량 재배정 X																														
A : 100 MT B : 150 MT C : 50 MT TOTAL : 300	⇒	<table><tr><th></th><th>TRQ 물량</th><th>협정 세율 물량</th></tr><tr><td>A</td><td>80</td><td>20</td></tr><tr><td>B</td><td>120</td><td>30</td></tr><tr><td>C</td><td>40</td><td>10</td></tr><tr><td>계</td><td>240</td><td>60</td></tr></table>		TRQ 물량	협정 세율 물량	A	80	20	B	120	30	C	40	10	계	240	60	⇒	A건 100 → 120M/T A : 120 MT B : 150 MT C : 50 MT TOTAL : 320	⇒ 신고 수 리 ⇒	<table><tr><th></th><th>TRQ 물량</th><th>협정 세율 물량</th></tr><tr><td>A</td><td>80</td><td>40</td></tr><tr><td>B</td><td>120</td><td>30</td></tr><tr><td>C</td><td>40</td><td>10</td></tr><tr><td>계</td><td>240</td><td>80</td></tr></table> ※ A 증가분에 대해 TRQ 배정안함		TRQ 물량	협정 세율 물량	A	80	40	B	120	30	C	40	10	계	240	80
	TRQ 물량	협정 세율 물량																																		
A	80	20																																		
B	120	30																																		
C	40	10																																		
계	240	60																																		
	TRQ 물량	협정 세율 물량																																		
A	80	40																																		
B	120	30																																		
C	40	10																																		
계	240	80																																		

2. 신고취하·반송으로 ‘신고시점’과 ‘수리시점’ 수량이 바뀌는 경우

1) 신고취하·반송 후 수량이 최초 배정 수량보다 많거나 같은 경우 : 최초 배정한 적용수량 유지

도달일 수입신고		적용수량 (240M/T) 최초배정		(일부)반송		재배정시																														
A : 100 MT B : 150 MT C : 50 MT TOTAL : 300	⇒	<table><tr><th></th><th>TRQ 물량</th><th>협정 세율 물량</th></tr><tr><td>A</td><td>80</td><td>20</td></tr><tr><td>B</td><td>120</td><td>30</td></tr><tr><td>C</td><td>40</td><td>10</td></tr><tr><td>계</td><td>240</td><td>60</td></tr></table>		TRQ 물량	협정 세율 물량	A	80	20	B	120	30	C	40	10	계	240	60	⇒	A건 중 20M/T 반송 A : 80 MT B : 150 MT C : 50 MT TOTAL : 280	⇒ 신고 수 리 ⇒	<table><tr><th></th><th>TRQ 물량</th><th>협정 세율 물량</th></tr><tr><td>A</td><td>80</td><td>0</td></tr><tr><td>B</td><td>120</td><td>30</td></tr><tr><td>C</td><td>40</td><td>10</td></tr><tr><td>계</td><td>240</td><td>40</td></tr></table> ※ A의 TRQ 적용 수량 유지		TRQ 물량	협정 세율 물량	A	80	0	B	120	30	C	40	10	계	240	40
	TRQ 물량	협정 세율 물량																																		
A	80	20																																		
B	120	30																																		
C	40	10																																		
계	240	60																																		
	TRQ 물량	협정 세율 물량																																		
A	80	0																																		
B	120	30																																		
C	40	10																																		
계	240	40																																		

2) 신고취하·반송 후 수량이 최초 배정 수량보다 적은 경우 : 재배정

도달일 수입신고		적용수량 (240M/T) 최초배정		전량 반송		재배정시																																				
A : 100 MT B : 150 MT C : 50 MT TOTAL : 300	⇒	<table><tr><th></th><th>TRQ 물량</th><th>협정 세율 물량</th></tr><tr><td>A</td><td>80</td><td>20</td></tr><tr><td>B</td><td>120</td><td>30</td></tr><tr><td>C</td><td>40</td><td>10</td></tr><tr><td>계</td><td>240</td><td>60</td></tr></table>		TRQ 물량	협정 세율 물량	A	80	20	B	120	30	C	40	10	계	240	60	⇒	A건 100 MT 반송 A : 0 MT B : 150 MT C : 50 MT TOTAL : 200	⇒ 신고 수 리 ⇒	<table><tr><th></th><th>TRQ 물량</th><th>협정 세율 물량</th></tr><tr><td>A</td><td>0</td><td>0</td></tr><tr><td>B</td><td>150</td><td>0</td></tr><tr><td>C</td><td>50</td><td>0</td></tr><tr><td>E</td><td>20</td><td>10</td></tr><tr><td>D</td><td>20</td><td>10</td></tr><tr><td>계</td><td>240</td><td>20</td></tr></table> ※ E, D - 도달일 다음 최초일 수입신고건		TRQ 물량	협정 세율 물량	A	0	0	B	150	0	C	50	0	E	20	10	D	20	10	계	240	20
	TRQ 물량	협정 세율 물량																																								
A	80	20																																								
B	120	30																																								
C	40	10																																								
계	240	60																																								
	TRQ 물량	협정 세율 물량																																								
A	0	0																																								
B	150	0																																								
C	50	0																																								
E	20	10																																								
D	20	10																																								
계	240	20																																								

3. 수입신고 수리 후 신고수량이 바뀌는 경우 : 재배정 안함

17. 수리 후 협정관세 적용신청 시 원산지증명서 원본 처리에 관한 지침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694, 2015-03-06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5조(수리 후 협정관세 적용 신청)제1항제2호에 규정된 “원산지증명서 원본” 처리에 관한 지침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적정하게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수리 후 협정관세 적용 시 세관장은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확인 후 신청인에게 다시 돌려주고 원본대조필 사본을 보관 (원산지포괄증명 기간이 있는 원산지증명서에 한함)

□ 배경 :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세관에 제출해 버리면 원산지포괄증명 유효기간 이내 복수 수입에 대해 반복 사용을 할 수 없는 문제점 보완

□ 해당 FTA : 한-호주 FTA, 한-캐나다 FTA

※ 한-미 FTA는 협정문 제6.19조제5항에 의거 사본을 인정토록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나 위 FTA는 원본 및 사본 등에 관한 규정이 없어 원본을 제출할 수 밖에 없는 문제점 개선. 끝.

18. 업체별 인증 전환 유도를 위한 심사 지침 시달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 2013-05-23(제정일자)

1. 금년은 한-EU FTA 발효 2년째로 급증하고 있는 EU 원산지 검증에 대비, 기업의 원산지 관리능력 배양 및 인증수출자 신뢰도 제고 등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2. 이에 따라 기존 품목별 인증수출자를 업체별 인증수출자로 전환하기 위한 심사 지침을 붙임1과 같이 시달 하오니 전산처리 등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아울러 당월의 업체별 인증 전환 실적을 매월 말일까지 붙임2 양식으로 제출(메모보고, 실적 없는 경우 “없음”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업체별 인증전환 유도를 위한 심사 지침 1부
2. 업체별 인증전환 실적 보고 양식 1부 끝.

업체별 인증 전환 유도를 위한 심사 지침

< FTA 집행기획담당관실 / ' 13. 5. 20. >

I 현황 및 필요성

- ‘13. 4월 기준 전체 인증업체(6,058개) 중 업체별 인증수출자는 423개, 품목별 인증수출자는 5,635개로 품목별 인증수출자가 93% 차지
- 품목별 인증은 HS 6단위로 인증되므로 검증시 세관직원의 책임성 문제가 제기 될 수 있고, HS코드·품목명에 상이가 있을 경우 상대국과 마찰 발생으로 검증 등의 문제 발생

II 업체별 인증시 애로사항

□ 모든 FTA 협정별 원산지 증명능력 검토

- (심사범위) 특정 FTA만 활용하는 업체도 발효 중인 모든 FTA에 대하여 자료 제출 및 준비가 필요해 업체가 상당한 부담감을 가짐
 - 한-인도 CEPA의 경우 부가가치기준에 대한 판정이 필수이므로 인도 수출이 없는 업체도 부가가치기준 자료를 준비해야 함

□ 전산시스템 도입에 대한 부담감 및 관심 부족

- (부담감) 한 품목의 원산지관리도 어려운 영세한 품목별 인증업체는 전산시스템 도입에 대해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있으며,

- (관심부족) FTA-PASS를 무료로 보급하고 있으나, 업체 담당자의 업무 부담 가중과 관심 부족으로 업체별 인증 전환에 어려움이 있음

III 업체별 인증 전환 유도를 위한 심사 지침

□ FTA 특례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1호의 원산지 증명능력 심사시

- (심사범위) 인증수출자와 관련 있는 협정의(EU·아세안·싱가포르·인도·EFTA·페루) 원산지 관리능력을 심사
 - 해당업체가 현재 수출 중이거나 수출 예정인 협정의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관리능력 심사
 - * 모든 협정내용을 대상으로 심사하지 말고 인증수출자가 수출하는 FTA협정의 원산지결정기준만 고려하여 원산지 관리능력을 심사할 것

□ 유의사항 사전안내 및 처리방법

- (사전안내) 원산지 관리능력에 대한 심사범위와 인증을 받더라도 원산지 판정은 업체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것임을 사전 안내
 - 즉, 인증을 받은 업체 책임하에 원산지 기준 충족여부를 판단하며, 원산지 기준 충족 물품에 대해서만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해야 함
- (전산처리) 인증수출자 번호는 사업자별로 하나만 보유해야 하므로 업체별 인증 전환시 사전 안내를 거친 후 업체별 인증과 동시에 기존 품목별 인증 취소 병행*
 - 기존 품목별 인증업체가 업체별 인증을 추가로 받은 경우에도 업체별 인증 전환과 마찬가지로 기존 품목별 인증 취소 병행*
 - * 품목별 인증수출자 번호체계 개편지침 [FTA 집행기획담당관-147('12.1.9)] 既 시행

<붙임 1>

□ 인증수출자 지정현황('13년 4월)

1) 인증수출자 지정실적

(단위: 기업수)

구 분	' 11년 對EU		' 12년 對EU		' 13. 1~4월 對EU		합계 對EU	
업체별	294	294	106	106	23	23	423	423
품목별	4,018	3,718	1,211	1,167	406	331	5,635	5,216
합계	4,312	4,012	1,317	1,273	429	354	6,058	5,639

2) 세관별 지정실적

(단위: 기업수)

구 분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평택	합계
업체별 (對EU)	220 (220)	53 (53)	79 (79)	49 (49)	12 (12)	10 (10)	423 (423)
품목별 (對EU)	2,652 (2,493)	818 (747)	1,120 (1,030)	704 (636)	194 (188)	147 (122)	5,635 (5,216)
합계 (對EU)	2,872 (2,713)	871 (800)	1,199 (1,109)	753 (685)	206 (200)	157 (132)	6,058 (5,639)

□ 업체별 인증 전환 성과지표 목표값

(단위: 건수)

서울세관	부산세관	인천세관	대구세관	광주세관	평택세관	합계
------	------	------	------	------	------	----

FTA4과	FTA과	FTA1과	FTA과	통관지원과	통관지원과	
82	30	42	22	8	6	190

<붙임 2>

업체별 인증수출자 전환 지원방안

□ 인증요건 비교

구분	업체별 인증수출자	품목별 인증수출자
전산시스템/원산지기준	·수출(생산)물품의 원산지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또는 업무매뉴얼 보유	·수출(생산)물품이 수출국과의 FTA에 따른 원산지 기준 충족(HS 6단위)
원산지관리 전담자	·원산지 증명능력을 갖춘 원산지관리 전담자(외부 전문가 포함)를 지정, 운영하여야 함 ☞ 교육점수 합이 20점 이상	☞ 교육점수 합이 10점 이상
서류보관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비치·관리	
법규준수	·최근 2년간 원산지조사 미거부 ·최근 5년간 서류보관의무 미위반 ·최근 2년간 부정확 방법으로 C/O 미신청	없음

□ 지원방안

- 시스템 요건 : 무료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 보급
 - <http://www.ftapass.or.kr/> ☎ 031-600-0770(국제원산지정보원)
 - e-mail : fta-pass@origin.or.kr
- 원산지전담자 요건
 - 사이버 강의(10점) : 관세청, 산업부, 원산지 정보원
 - 원산지관리사 교육(16점) / 원산지관리사 취득(요건 충족)
 - FTA 교육(시간당 2점) :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교육 이수
 - FTA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 : 최근 2년간 건당 1점(최대 15점)
 - 컨설팅 실적 : 건당 5점(최대 15점)

19.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FTA 협정관세 적용업무 처리 지침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과) * 21. 6. 29. 제정

I. 목 적

- 본 지침은 여행자 휴대품의 FTA 원산지증명서 확인 및 협정관세 적용과 관련한 세부 처리사항을 명확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II. 적용 대상

-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4조제2항에 따른 여행자 휴대품 중 여행자가 협정상대국에서 구매한 협정상대국 원산지 물품

III. 업무처리 지침

1. 협정관세 신청 및 적용 절차

가.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세관 신고사항 “2. FTA 협정국가의 원산지물품으로 특혜관세를 적용받으려는 물품”란의 “있음”에 체크하여 세관장에게 제출(※붙임 작성요령 참조)

* 관세법 시행규칙 제49조의2 각 호에 따른 별지 제42호 및 별지 제43호 서식

나.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면제되는 여행자 휴대품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의 제출이 요구되지 아니하나, 세관장은 신청 내용과 원산지의 정확성 담보를 위해 해당 물품의 구매영수증 또는 현품의 원산지표시 등을 확인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음

* 여행자가 협정상대국에서 구입한 원산지 물품의 총 가격을 기준으로 함
 <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면제되는 여행자 휴대품의 범위 >

협정	적용대상	협정	적용대상
EU, EFTA, 영국, 미국, 캐나다, 칠레, 싱가포르, 페루, 호주, 뉴질랜드, 콜롬비아, 터키, 인도	미화 1천달러 이하	중국	미화 700달러 이하
		베트남	미화 600달러 이하
		아세안	미화 200달러 이하

다.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면제되는 여행자 휴대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협정에서 규정한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여 협정관세 적용 가능

라. EU, 영국, EFTA 및 터키와의 협정에 대해서는 「2. EU, 영국, EFTA 및 터키와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규정한 각 목의 서류를 원산지증명서로 간주

마. 구매영수증 또는 원산지증명서는 세관장이 진위성 여부 확인 등의 목적으로 원본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타 전자적 방법 등*으로 제출 할 수 있음

* 원본을 휴대전화 등으로 촬영·캡처한 이미지 파일 또는 모바일 휴대품 신고 앱(웹)으로 신고하는 경우 등

바. 세관장은 구매영수증 또는 원산지증명서의 진위성과 신뢰성이 의심되는 경우(아래 내용) 원본을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으며, 원산지조사 등을 의뢰하거나,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할 수 있음

< 구매영수증 또는 원산지증명서의 진위성이 의심되는 경우(예시) >

1. 협정 상대국이 아닌 국가에서 작성·발급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2. 서류에 기재된 내용(판매자·작성자·판매일자·상품명·가격·서명 등)을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3. 기재된 날짜와 여행자의 일정 등으로 볼 때 해당 물품의 구매영수증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4. 여행가이드 또는 여행자 등 권한이 없는 자가 직접 원산지신고문안을 작성하거나 서명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5. 서류와 현품과의 동일성 여부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6. 타인의 구매영수증 또는 원산지증명서를 도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7. 구매영수증 또는 원산지증명서 전체가 아닌 일부만 촬영하여 제출한 경우
8. 전자적인 편집·가공 등으로 서류의 진위성·신뢰성이 의심되는 경우
9. 그 밖에 서류의 진위성과 신뢰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여행자가 부정특혜를 신청한 것으로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2. EU, 영국, EFTA 및 터키와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가. 해당 물품이 확인될 수 있도록 충분히 상세하게 그 제품을 기술하는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문안(아래 내용)과 작성자 성명 및 서명 등이 기재된 것

※ 단, EU 및 영국과의 협정은 원산지 물품의 전체 가격이 6천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협정상대국의 인증 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만 인정

< EU·영국·EFTA·터키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신고문안 >

나. 협정상대국에서 발급된 구매영수증의 전면 또는 후면에 원산지신고문안과 수기서명을 기재한 것

다. 구매영수증의 크기가 작아 원산지신고문안 등이 기재될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용지에 원산지신고문안과 서명을 기재한 것. 단, 「2-1. 별도용지에 기재한 원산지증명서 인정기준」에 부합해야 함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sation No ...¹⁾)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²⁾ preferential origin.

(장소 및 일자)³⁾

(작성자의 서명 및 신고서에 서명하는 인의 이름을 명확히 기재)⁴⁾

<작성요령 >

- 1) 원산지신고서가 인증수출자에 의해 작성되는 경우 인증수출자 번호 기재, 인증수출자에 의해 작성되지 않는 경우 괄호안의 단어를 생략하거나 빈 칸으로 둠. 다만, 터키와의 협정의 경우에는 괄호 및 괄호 안의 내용을 기재하지 아니함
- 2) 제품의 원산지를 기재
 - 협정문에 있는 당사국명, 당사국의 ISO 코드, 당사국의 형용사 표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당사국의 명칭 등
- 3) 해당 정보가 그 서류 자체에 포함된 경우 기재 생략 가능
- 4) 인증수출자가 작성한 경우에는 '서명' 및 '서명하는 인의 이름' 기재 생략 가능

< 인정가능한 원산지증명서 예시 >

상업서류 증명 사례		구매영수증 증명 사례																																											
Invoice Invoice No. 13/000000227 Your Customer- No. 10114 Your VAT Registration Your Fax No. Your Reference Date 09.07.2013 Page 1 of 2 Order No. 13/000000211 Date 04.07.2013 Contact person Phone No. Shipment method CIF Busan Port, Korea Astracon <table border="1"> <thead> <tr> <th>Pos.</th> <th>Description</th> <th>Quantity</th> <th>Unit</th> <th>Unit Price</th> <th>Unit of M</th> </tr> </thead> <tbody> <tr> <td>1</td> <td>Lot No. 13-001</td> <td>750</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200107</td> <td>750 kg</td> <td></td> <td></td> <td>Eur</td> </tr> <tr> <td></td> <td colspan="5">® E 12 - 25 kg</td> </tr> <tr> <td></td> <td>Value FOB</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Value freight</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Value insurance</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Delivery Date: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EU preferential origin. JONADAN.K		Pos.	Description	Quantity	Unit	Unit Price	Unit of M	1	Lot No. 13-001	750					200107	750 kg			Eur		® E 12 - 25 kg						Value FOB	€					Value freight	€					Value insurance	€				*** CUSTOMER RECEIPT *** Holland No: 100/4293 Op: Effina Till: 15.05.16 18:23 TILL 2 ** IMMEDIATE NON-CASH ** ITA 120330335951549356950 Refund: 1,295.00 22.00 161.50 EUR ITA 12033034488549361337 Refund: 590.00 22.00 73.50 EUR SUBTOTAL EUR Cheques 235.00 EUR Card No. We acknowledge receipt of the Global Blue Form(s) which will be processed to the credit card indicated on the Form(s). Immediate Refund to a credit card account is made within five (5) days of receipt of a Form. Processing time for any involved credit card company or bank is excluded. Please note that your Form(s) will be double checked by our processing centre. We thank you for using our Tax Free service and wish you a good trip.	
Pos.	Description	Quantity	Unit	Unit Price	Unit of M																																								
1	Lot No. 13-001	750																																											
	200107	750 kg			Eur																																								
	® E 12 - 25 kg																																												
	Value FOB	€																																											
	Value freight	€																																											
	Value insurance	€																																											

사. 원산지신고문안 등 기재사항에 오류가 있으나 세관장이 경미한 형식적 오류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 인정

< 경미한 형식적 오류의 예시 >

1. 단어의 철자를 잘못 작성한 경우
(예시) 'these products' 를 'these produtcs' 로 작성한 경우
2. 협정에서 정한 단어 이외의 단어를 사용한 경우
(예시) 'these products' 를 'these goods' 로 작성한 경우
'these products are' 를 'this product is' 로 작성한 경우
3. 단어 순서 또는 항목 위치가 바뀌어 작성된 경우

(예시) 인증수출자번호·제품의 원산지를 다른 위치에 기재한 경우

4. 협정에서 정하는 원산지신고문안을 소문자로 수기 작성한 경우

5. 원산지신고문안의 각주 또는 설명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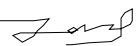
(예시) ‘(customs authorisation No.)’, ‘(Place and Date)’ 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2-1. 별도용지에 기재한 원산지증명서 인정기준

가. 인정 요건

- 1) A4용지와 같은 별지에 원산지신고문안이 인쇄, 타자로 치거나 스탬프 또는 수기(잉크 등 영구적 방법)로 기재되어야 함
- 2) 구매영수증은 접착제 또는 스테이플러로 별지에 부착(고정)
- 3) 작성일자, 작성자 이름 및 서명이 영수증과 별지 간 동일해야 함
* 구매영수증에 날짜가 있는 경우 별지에는 작성일자 기재 생략 가능
- 4) 작성자의 이름과 서명이 간인(접인)형태로 구매영수증과 별지에 걸쳐 수기로 작성(기재)되어야 함

< 별지용지 작성 예시 >

<A4 용지 등 별지>	
구매영수증 판매점 명칭, 주소 등 자동출력 **구매내역** ◇ 판매일자 및 시간..... ◇ 상품명(모델명)..... ◇ 구입가격.....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EU” preferential origin. * 작성일자(구매영수증과 동일한 경우 생략 가능) ↓ <인쇄, 타자, 스탬프로 찍거나 수기(대문자)로 기재>
	☆ <u>작성자 이름 및 서명: 간인(접인)형태</u> JONADAN, 

나.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한 경우

- 1) 작성자의 이름 및 서명이 간인(접인)형태는 아니나, 작성자 이름이 명확하고 구매영수증과 별지에 기재된 서명이 모두 동일한 경우
- 2) 스탬프로 날인된 원산지신고문안이 구매영수증과 별지에 걸쳐 있고 작성자의 이름과 서명이 별지에 기재된 경우
- 3) 1) 또는 2)에 준하는 경우로서 세관장이 제출된 원산지증명서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다. 불인정 대상

- 1) 구매영수증에는 서명만을 기재하고, 나머지 사항을 모두 별지에 작성한 경우
- 2) 원산지신고문안, 작성자 이름 및 서명을 모두 별지에 작성하고, 별지에 단순히 구매영수증을 부착한 경우
- 3) 「1. 협정관세 적용 절차」 바목에 해당하는 경우

< 불인정 되는 원산지증명서 예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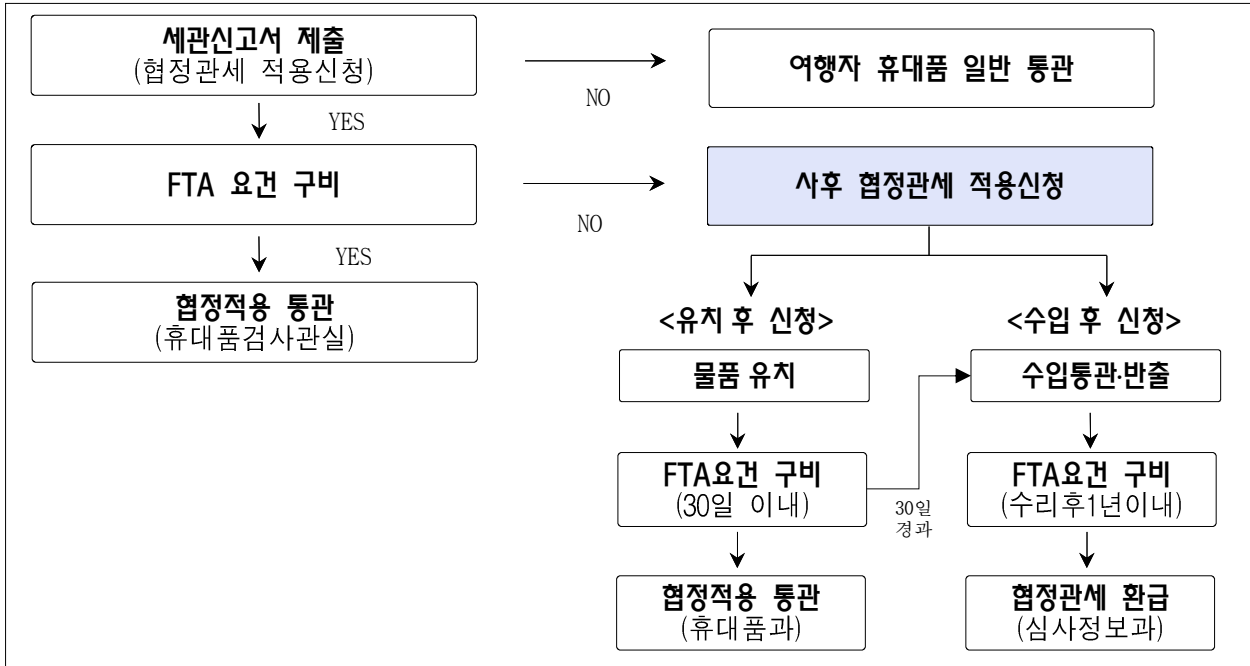
별지 작성 사례	원산지신고문안이 아닌 경우
* 별지에 원산지신고문안과 서명만 기재된 경우	* 협정상의 원산지신고문안이 아닌 다른 내용 기재된 경우

3. 협정관세 사후적용 방법

가. 여행자 휴대품 신고 시 협정관세 적용에 필요한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하였거나 그 밖의 사유로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일반 수입신고로 전환한 후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FTA관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나. 여행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유치한 후 유치기간 내 구매영수증, 원산지증명서 등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 협정관세 적용 신청 가능

〈여행자 휴대품 사후 협정관세 신청 및 적용절차〉



IV. 시행일자

- ☐ 이 지침은 2021. 7. 1. 부터 시행함
- ☐ 「한-EU FTA 여행자 휴대품 원산지증명서 확인업무 처리 지침」(관세청 FTA집행기획관실, 2016. 9. 1. 제정)은 본 지침 시행에 따라 폐지함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FTA 협정관세 적용 신청 방법

- ◇ 모든 입국자는 관세법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세관공무원이 지정하는 경우에는 휴대품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 가족여행인 경우에는 1명이 대표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 신고서 작성 전에 반드시 뒷면의 유의사항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명			
생년월일		여권번호 (외국인에 한함)	
직업		여행기간	일
여행목적	☐ 여행 ☐ 사업 ☐ 친지방문 ☐ 공무 ☐ 기타		
항공편명		동반가족수	명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방문했던 국가(총 개국) 1. 2. 3.			
국내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 ()		

- 아래 질문의 해당 ☐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1. 해외(국내의 면세점 포함)에서 취득 (구입, 기증, 선물 포함)한 면세범위 초과 물품(뒷면 1 참조) [총 금액 : 약] * 면세범위 초과 물품을 자진신고하시면 관세의 30%(15만원 한도)가 감면됩니다.	있음	없음
2. FTA 협정국가의 원산지 물품으로 특혜관세를 적용받으려는 물품	☒	☐
3. 미화로 환산하여 \$10,000을 초과하는 지급 수단(원화·달러화 등 법정통화, 자기앞수표, 여행지수표 및 그 밖의 유가증권) [총금액 : 약]	있음	없음
4. 총포류, 도검류, 마약류 및 헌법질서 · 공공의 안녕질서 · 풍속을 해치는 물품 등 반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물품(뒷면 2 참조)	있음	없음
5. 동물, 식물, 육가공품 등 검역대상물품 또는 가축전염병발생국의 축산농가 방문 * 축산농가 방문지는 검역본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있음	없음
6. 판매용 물품, 업무용 물품(샘플 등), 다른 사람의 부탁으로 반입한 물품, 예치 또는 일시수출입물품	있음	없음

본인은 이 신고서를 사실대로 성실하게 작성하였습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 술·담배·향수(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체 반입량을 적습니다)

술	()병, 총 ()L, 금액 US \$()		
담배	()갑(20개비 기준)	향수	()mL

품 명	수(중)량	금 액

술	담배	향수
1병 (1L 이하로서 US \$400 이하)	200개비	60mL

US \$600 이하
(자가 사용, 선물용, 신변용품 등으로 한정합니다)
* 다만, 농림축산물, 한약재 등은 10만원 이하로 한정하며
품목별로 수량 또는 중량에 제한이 있습니다.

- ☞ 총포(모의총포)·도검 등 무기류, 실탄 및 화약류, 방사성물질, 감청설비 등
- ☞ 메트암페타민·아편·헤로인·대마 등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
- ☞ 헌법질서·공공의 안녕질서·풍속을 해치는 물품 및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 ☞ 위조(가짜)상품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위조지폐 및 위·변조된 유가증권
- ☞ 음담, 사탕, 독음, 악어 가죽, 상아 등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 및 관련 제품

살아있는 동물(반려견 등) 및 수산동물(물고기 등), 고기, 육포, 소시지, 햄, 치즈 등 육가공품
 흙, 호두, 장뇌삼, 송이, 망고 · 오렌지 · 체리 등 생과일, 견과류 및 채소류

- 성명은 여권의 한글 또는 영문명으로 적으시기 바랍니다.
- 신고 대상 물품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신고 또는 대리반입하는 경우 「관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물품 물치, 가산세 부과(납부세액의 40%, 2년 이내 2회를 초과할 경우에는 60%), 통고처분 및 해당 물품 몰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FTA 협정 등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물품은 특혜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다만 사후에 특혜관세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일반 수입신고가 필요합니다.
-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세관공무원 또는 1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지침에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은 각각 “RCEP”, “한-아세안 FTA”,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지칭함

I. 목 적

- ☐ 이 지침은 우리나라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의 연결 원산지증명 작성·발급과 관련한 업무처리 절차를 명확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II. 적용 대상

- ☐ 계약상대국으로부터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계약상대국으로 재수출되는 물품에 대해 RCEP 제3.19조에 따른 연결 원산지증명을 작성·발급하거나, 한-아세안 FTA 부속서3 부록1 제1조 및 제7조제2항에 따른 연결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 이 지침을 적용

III. RCEP 연결 원산지증명 작성·발급

1. 유의사항

가. RCEP 제3.19조에 따른 연결 원산지증명 작성·발급 요건은 아래와 같음

< RCEP 연결 원산지증명 작성·발급 요건 >

- ① 최초 수출국에서 발급한 RCEP 원산지증명의 유효한 원본 제시
- ② 연결 원산지증명의 유효기간은 원본 원산지증명의 유효기간 이내
- ③ 연결 원산지증명은 협정 부속서 3-나에 따른 원본 원산지증명의 정보 포함
- ④ 재포장 또는 하역, 재선적, 보관, 탁송물의 분리나 수입당사국의 법, 규정, 절차, 행정적 결정 및 정책에 따라 요구되는 경우로 한정된 라벨링 같은 물류 활동 또는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거나 상품을 수입당사국에 운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모든 공정을 제외하고, 연결 원산지증명을 사용하여 재수출될 탁송물은 중간 경유 당사국에서 추가 가공을 거치지 않을 것
- ⑤ 분할 수출 선적되는 경우, 그 분할 수출 수량은 원산지증명 원본의 전체 수량을 대신하여 제시되고, 분할 선적에 따라 재수출된 전체 수량은 원산지증명 원본의 전체 수량을 초과하지 않을 것
- ⑥ 연결 원산지증명에 원본 원산지증명의 발급일 및 발급 번호 포함

나. 최초 수출국에서 작성·발급된 원산지증명 원본*(이하 “원본 원산지증명”이라 한다)의 작성·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만 연결 원산지증명이 작성·발급될 수 있음. 이 경우 기간을 계산할 때에 시행령 제4조제5항이 또는 제5조제2항이 적용되지 않음

* RCEP 제3.16조제1항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원산지증명

다. 연결 원산지증명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하 “대상물품”이라 한다)은 국내에서 수입통관 될 수 있음. 이 경우 대상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 여부는 연결 원산지증명 작성·발급 시 고려하지 않음

라. 대상물품이 국내에서 추가 가공 되거나, 사용·소비된 경우에는 연결 원산지증명을 작성·발급할 수 없음

마. 대상물품은 국내에서 양·수도될 수 있음. 이 경우 대상물품을 최종적으로 양수받은 수출자는 원본 원산지증명과 함께 양·수도 입증서류를 갖추고 양수받은 대상물품의 범위 내에서만 연결 원산지증명을 발급 신청·작성하여야 함

바. 원본 원산지증명의 물품을 분할 수출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증명방식을 사용하거나 동일한 발급기관에 발급을 신청하여야 함

* (예시) 원본 원산지증명의 물품을 A에게 양도하는 경우, A, B는 각각 자신이 양수받은 물품의 범위 내에서 연결 원산지증명을 하나의 세관상자에 발급 신청 또는 인증수출자로서 자율 발급

사. 대상물품이 최종 수입국에서 RCEP 제2.6조에 따른 관세차별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연결 원산지증명을 받

급 신청·작성하는 자가 RCEP 원산지국가를 입증하여야 함

* 최종 수입국의 RCEP 부속서 I 양허표의 부록 적용 물품이거나 원산지재료로만 생산(PE)되어 최종 수입국에서 관세차별을 적용받는 물품

아. 연결 원산지증명을 발급 신청·작성한 자, 대상물품을 국내에서 양·수도한 자는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서류 보관 및 제출 의무를 가지며, RCEP 제3.24조 및 법 제4장에 따른 원산지검증과 법 제44조 등에 따른 처벌의 대상임

2. [기관발급] 연결 원산지증명서 발급

가. 연결 원산지증명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의 장(이하 “발급기관장”이라 한다)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와 함께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1) 원본 원산지증명. 다만, 발급기관장이 별도로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래 형태의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음
〈연결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제출 가능한 원본 원산지증명의 형태〉

▶(서면본) 다음 중 하나의 것

① 아래 스탬프를 날인한 사본

본 사본이 원본과 다를 경우 관세법 등 관련법령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고 있으며, 세관에서 요구시 원본을 제출하겠습니다.

수입자 ○○○ (서명)

② 전자적 형태(Digital Format)로 발급받은 파일(PDF 등)을 인쇄한 것

③ 종이 원본을 스캔하여 이미지화한 파일(PDF, JPEG 등)을 인쇄한 것

▶(전자본) 다음 중 하나의 것

① 전자적 형태(Digital Format)로 발급받은 파일(PDF 등)

② 종이 원본을 스캔하여 이미지화한 파일(PDF, JPEG 등)

2)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제출서류. 다만, 보세구역에 보관된 물품이 체약상대국으로 반출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반송신고필증 사본으로 갈음

* 수출신고의 수리필증 사본 또는 이를 갈음하는 각 목의 서류

**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3) 수입한 물품과 재수출하는 물품 간 동일성 증빙 서류

가)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수입신고의 수리필증 사본. 다만, 보세구역에 보관된 물품이 체약상대국으로 반출되는 경우에는 보세구역 반입신고서 및 이에 준하는 서류로 대신할 수 있음

나)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국제운송서류 사본

※ 다만, 2) 서류의 수출관리 부호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가) [72번] 외국물품을 수입통관 후 원상태로 수출

나) [78번] 외국으로부터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으로 다시 반송 신고되는 물품(단, 중계무역 수출 제외)

다) [79번] 중계무역수출

라) [93번] 수입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여 반출하는 물품

4) 이 지침 1. 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물품의 국내 양·수도 사실과 거래 수량(중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이 지침 1. 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RCEP 원산지국가 입증서류*

* 최초 수출국의 수출자·생산자가 작성한 해당 물품의 자재명세서(BOM), 제조공정도, 송품장 사본 등

나. 연결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첨부서류 제출 생략 혜택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에 대한 증명서발급기관의 심사방법에 관한 지침」(관세청, '21.6.29.)에 따른 자동심사를 적용하지 않음

다. 발급기관장은 연결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 대상물품의 RCEP 제3.19조에 따른 요건 충족 여부 등을 심사하되, 원본 원산지증명의 물품과 연결 원산지증명 발급 신청된 물품의 동일성* 여부

를 중점적으로 확인

* 품명, 규격, 수량, 중량, HS 품목번호 등

라. 그 밖에 연결 원산지증명서 발급과 관련한 발급기한, 소급발급, 보정, 현지확인, 재발급 및 정정발급 등 제반 절차는 시행규칙 제10조제3항부터 제11항까지를 따름

3. [자율증명] 연결 원산지신고서 작성

가. RCEP 연결 원산지신고서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산지인증수출자에 의해 작성될 수 있음

- 1) 시행령 제7조제1호에 따른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 2) 시행령 제7조제2호에 따른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다만, RCEP에 대해 인증받은 품목(HS6단위 기준)으로 한정

나. 원산지인증수출자는 이 지침 2. 가.에 규정한 증빙서류에 기초하여 연결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함

다.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관리 등 연결 원산지신고서의 작성과 관련한 그 밖에 절차는 규칙 제14조에 따름

Ⅳ. 한-아세안 FTA 연결 원산지증명서 발급

1. 유의사항

가. 한-아세안 FTA 부속서3 부록1 제7조제2항에 따른 연결 원산지증명서 발급 요건은 아래와 같음

< 한-아세안 FTA 연결 원산지증명서 발급 요건 >

- ① (최초 수출국에서 발급한) 정당한 원산지증명서 원본 제출
 - ② 중간 경유 당사국의 수입자와 중간 경유 당사국에서 연결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수출자가 동일

나. 대상물품이 국내에서 양·수도 되거나, 추가 가공 또는 사용·소비된 경우에는 연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음

다. 연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서류 보관 및 제출 의무를 가지며, 한-아세안 FTA 부속서3 부록1 제14조, 제15조 및 법 제4장에 따른 원산지검증과 법 제44조 등에 따른 처벌의 대상임

라. Ⅲ. 1. 나. 또는 다.의 유의사항은 한-아세안 FTA 연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때에도 준용함

2. 연결 원산지증명서 발급

가. 신청인은 발급기관장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와 함께 Ⅲ. 2. 가. 1)부터 3)까지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나. 발급기관장은 연결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이 대상물품을 수입하였는지 여부, 원본 원산지증명의 물품과 연결 원산지증명 발급 신청된 물품의 동일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

* 품명, 규격, 수량, 중량, HS 품목번호 등

다. 그 밖에 연결 원산지증명서 발급과 관련한 절차는 Ⅲ. 2. 라.를 준용

Ⅴ. 시행일자

□ 이 지침은 '22. 5. 18. 부터 작성·발급 신청되는 연결 원산지증명에 대해 적용함. 다만, 이 지침 시행 전에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는 시행규칙 제10조제8항 및 제11항에 따라 정정발급 또는 재발급하는 경우에도 적용함

21.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운영에 관한 지침 개정안 송부

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기획재정부령 제219호, 2011.6.30.)과 관련입니다.
2. 시행규칙 개정내용의 관세행정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지침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운영에 관한 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시달하오니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운영에 관한 지침 1부.
2. 원산지인증수출자 지침 신규대조표 1부. 끝.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 개정 요약서

1. 지침명 :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
2. 개정 이유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 11.7.1 시행)됨에 따라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지침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3. 주요 개정내용
 - 원산지인증수출자 지정 요건 완화
 - 수출기업의 원산지증명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산지증명 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처벌 이력 관련 요건 등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지정요건에서 제외
 -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 유효기간 조정
 - 종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법규준수도에 따라 인증유효기간을 달리할 수 있도록 정함
4. 규제대상 여부 : 신설·강화되는 규제 없음
5. 시행일 : 2011년 7월 7일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

I.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개요

1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개요

- ☐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란?
-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또는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함
 - FTA 체결국가가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도입
- ☐ 인증수출자의 종류 및 인증기간

구분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혜택범위	모든 협정, 모든 품목	인증받은 협정별, HS 6단위
인증유효기간	3년	2년 (법규준수도에 따라 차등적용 가능)
인증기관	6개 본부세관(서울,부산,인천,인천공항,대구,광주) 및 평택직할세관	
인증기준	협정상대국별 원산지증명능력 및 법규준수도	HS 6단위별 원산지증명능력

□ 관련 규정

- 한-EU 협정문 원산지의정서 제17조(인증수출자) 및 제16조(원산지 신고서 작성 조건)
 - 수출입금액(협정상 ‘전체가격’)이 6,0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인증수출자만이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신고서 작성 가능
- 한-EFTA FTA 협정문 제2부 제4절 제16조(인증수출자)
 - 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의 수출자 서명을 생략
- FTA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특례법) 시행령 제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업체별 인증수출자) 및 제7조의 2(품목별 인증수출자), 제8조의2(협정에 의한 원산지자율증명절차)
- FTA특례고시 제2-4-7조(인증신청 특례)~제2-4-11조(인증취소 및 청문)

2

인증수출자의 협정별 혜택(협정에 따라 상이)

협 정	인증 前	인증 後
한·EU	- 6,000유로 이하의 수출물품에 대하여만 원산지신고서 작성 가능	- 6,000유로 초과 물품을 수출할 경우 인증수출자에 한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 가능(특혜관세 적용 가능)
한·아세안 한·싱가포르 한·인도	○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시 첨부서류 제출 1. 수출신고필증 사본 2.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3. 원산지소명서 4. 원산지확인서(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5. 그 밖의 원산지 증빙자료 ○ 현지확인(필요한 경우)	○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시 첨부서류 제출 생략 ○ 현지확인 생략 가능
한·EFTA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로(통상 Invoice 신고시) 수출자의 서명 필요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로(통상 Invoice 신고시) 수출자의 서명 생략
기타	동 제도 미 적용	

* 한-EU FTA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은 인보이스 등 상업서류의 원산지신고문안에 인증수출자 번호를 기재하고 수출자가 서명하는 원산지신고서의 형태임

3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연혁

□ 제도연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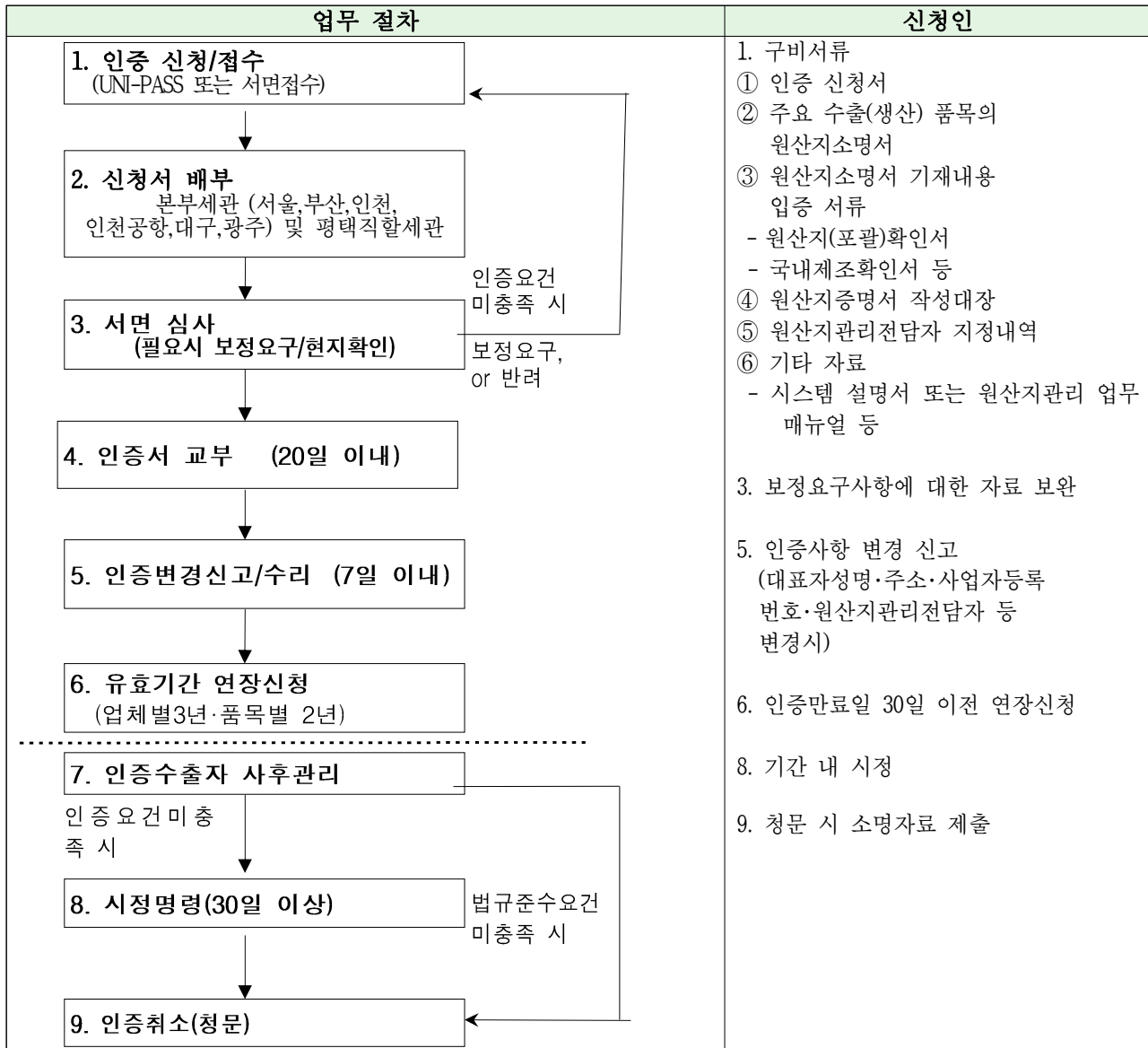
- (‘07.6.1) 한-아세안 FTA 발효시 생산공장보유업체 지정제도를 만들어 생산공장을 보유하고 일정요건을 갖춘 수출자(생산자)에 대하여 원산지 발급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 시행
- (‘08.7.15) 생산공장보유업체 지정제도의 요건을 완화하여 인증수출자 제도로 명칭을 개편하고 모델, 규격별 인증제도 운영
- (‘10.4.1) 기존의 모델, 규격별 인증제도 이용이 적고, 향후 발효예정인한-EU FTA에 새롭게 도입되는 인증수출자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 인증수출자 제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HS 6단위의 포괄적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와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로 이원화하여 업체별 인증이 어려운 기업이 품목별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

□ 각 제도별 비교

구분	생산공장보유업체 제도 (‘07. 6.1 시행)	종전 인증수출자제도 (‘08. 7. 15 개정)	개정 인증수출자 제도 (‘10. 4. 1 개정시행)
요건	- 생산시설 소유 및 임대자로	- 원산지결정기준 충족하는	- 원산지 증명능력 보유

구분	생산공장보유업체 제도 ('07. 6.1 시행)	중전 인증수출자제도 ('08. 7. 15 개정)	개정 인증수출자 제도 ('10. 4. 1 개정시행)
	원산지결정기준 충족하는 생산자 - 최근 2년간 수출 50건 이상, 연평균 100만불 이상 - 최근 2년간 관세법 및 FTA특례법 미위반자 - 전년도 C/O발급실적 20건이상, 발급요류 비율 5%이하	생산자 또는 수출자 - C/O 작성대장 비치관리, 원산지전담관리자 지정 - 최근 2년간 관세법 및 FTA특례법 미위반자 - 최근 2년간 속임수, 부정에 의한 C/O 미 발급자 - 최근 2년간 5회이상 C/O 미 반려자	(전산시스템 보유) - C/O 작성대장 비치관리, 원산지전담관리자 지정 - 최근 2년간 관세법 및 FTA특례법 미위반자 - 최근 2년간 속임수, 부정에 의한 C/O 미 발급자 - 최근 2년간 5회이상 C/O 미 반려자
인증물품	- HS 6단위(모델·규격별)	- 모델·규격별	- (업체별) 모든 물품 - (품목별) HS 6단위
현장확인	- 공장을 방문하여 수출품 생산여부 확인	- 필요시 현장확인	- 필요시 현장확인

II. 인증 업무 흐름도



Ⅲ.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심사 기준(요약)

- 1) **(Process)** 수출 또는 생산물품의 원산지관리를 위해 다음의 기능 또는 절차를 포함한 **전산시스템 또는 업무매뉴얼**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 ① 수출제품 및 원재료의 품목분류번호 및 원산지 관리
 - ② 생산(수출)물품에 적용되는 협정별 원산지기준 관리
 - ③ 정확한 원산지 판정 - 주요 생산(수출)물품 선별·검증
 - ④ 원산지 증빙자료 관리
- 2) **(Specialist)** 원산지 증명능력을 갖춘 원산지관리 전담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외부의 원산지 전문가 지정 가능)
 * 외부의 원산지전문가는 통상 관세사를 말함(FTA특례법 제13조 제9항)
- 3) **(서류보관)**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 4) **(법규준수)** 다음에 해당하는 처벌 이력 등이 없어야 한다.
- ① 최근 2년간 원산지 조사(법 제13조제2항)를 거부한 사실이 없는 자
 - ② 최근 5년간 수출자의 서류보관의무(영 제13조제1항제2호)를 위반한 사실이 없는 자(보관요구를 받고 시정한 경우 제외)
 - ③ 최근 2년간 속임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신청한 사실이 없는 자

1

인증심사 기준 및 확인 방법

1) (Process) 원산지관리 전산시스템 또는 업무매뉴얼

주요 내용	세부 확인 내용	확인방법
① 원재료 관리	- 원재료의 품목분류번호 관리 - 원재료의 원산지 관리 - 원산지확인서·국내제조확인서 등 원산지확인서류 확보 - 주요 원재료 공급업체의 관리 - 주요 원재료 공급업체 선정기준 및 리스트 - 원재료 공급업체 대상 원산지 교육 현황 및 계획 (외부 위탁교육 가능)	시스템 설명서, 업무매뉴얼, 사전 검증 결과보고서 및 의견서
② 원산지 기준 관리	- 해당품목의 상대국 품목분류번호 관리 - 해당품목의 협정별 원산지 기준 관리 - 품목분류, 원산지기준 추가·변경 시 반영 기능	
③ 원산지 판정의 정확성 (주요 수출·생산품을 선별하여 확인)	- 주요 수출품목의 생산공정 확인 - 회사가 실존하고, 해당 품목의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불인정공정 해당 여부 - 생산자로부터 최종수출물품을 공급받아 수출하는 경우 원산지확인서를 제출받았는지 여부 및 원산지확인서가 정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 원산지소명서 작성능력 확인 ① 프로세스 적정여부 확인 ② 주요 수출(생산)품목(5개 이내)에 대해 서류확인 - 원산지소명서 각 항목이 모두 기재되었는지 여부 - 원산지확인서·국내제조확인서 등 원산지확인서류가 정확하게 작성되고, 원산지소명서와 일치하는지 여부 - 원재료의 협정별·품목별 원산지기준이 정확한지 여부 - 수출품의 협정별·품목별 원산지기준이 정확한지 여부 - (부가가치 기준 적용품목의 경우) 각 협정에서 정한 재료비 가감요소가 정확하게 반영되었는지 여부 - 원산지 최종 판정결과가 정확한지 여부	제품 생산공정 설명서, 원산지확인서, 사전검증결과보고서 및 의견서 ①프로세스적정여부 (시스템 설명서, 업무매뉴얼, 사전 검증결과보고서 및 의견서) ②서류작성적정여부 (품목별 소명서 및 소명자료, 사전검증결과보고서 및 의견서)
④ 원산지 증빙자료 관리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출자가 보관하여야할 서류의 보관(전자서류, 스캔 가능)	시스템 설명서, 업무매뉴얼, 사전 검증

주요 내용	세부 확인 내용	확인방법
(검증 대비)	- 계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제공한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서류 - 수출신고필증, 거래 관련 계약서 - 당해물품 및 원재료의 생산 또는 구입 관련 증빙서류 - 원가계산서·원재료내역서 및 공정명세서 - 당해물품 및 원재료의 출납·재고관리 대장 등	결과보고서 및 의견서

2) (Specialist) 원산지관리전담자 지정·운영

주요 내용	세부 확인 내용	확인방법																		
① (내부)원산지관리 전담자 지정	○ FTA 특례고시 제2-4-7조제2항에 따른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자격증을 갖춘 경우(갖춘 경우 심사생략)	해당 자격증																		
	○ 자격증이 없는 경우, 다음 항목의 총합이 20점 이상 - 인증신청일 기준 최근 2년간 원산지증명서 발급실적(기관발급에 한함) : 건당 1점(최대 15점) - 원산지 교육 이수(관세청, 민간협회, 사내교육 등) : 시간당 2점	교육이수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 민간실시 교육은〔별표〕 교육기관 인정기준에 따라 인증담당자가 교육자료 등 검토·확인하여 점수 부여																			
	<table><tr><th>인정 과목</th><th>인정 내용</th><th>점수</th></tr><tr><td>FTA법령</td><td>·FTA 협정문 중 원산지규정 ·FTA 관세특례법·고시</td><td>시간당 2점 (최대 4점)</td></tr><tr><td>원산지 결정기준</td><td>·원산지결정기준 이론 ·결정기준 판정 연습</td><td>시간당 2점 (최대 6점)</td></tr><tr><td>품목분류</td><td>·품목분류 이론 ·산업별 품목분류 사례</td><td>시간당 2점 (최대 6점)</td></tr><tr><td>인증수출자</td><td>·인증수출자 제도 ·인증수출자 지정 실무</td><td>시간당 2점 (최대 6점)</td></tr><tr><td>원산지 관리실무</td><td>·증명서·소명자료 작성 실무 ·업무매뉴얼 작성·사례 실무 ·전산관리 시스템 실무</td><td>시간당 2점 (최대 6점)</td></tr></table>		인정 과목	인정 내용	점수	FTA법령	·FTA 협정문 중 원산지규정 ·FTA 관세특례법·고시	시간당 2점 (최대 4점)	원산지 결정기준	·원산지결정기준 이론 ·결정기준 판정 연습	시간당 2점 (최대 6점)	품목분류	·품목분류 이론 ·산업별 품목분류 사례	시간당 2점 (최대 6점)	인증수출자	·인증수출자 제도 ·인증수출자 지정 실무	시간당 2점 (최대 6점)	원산지 관리실무	·증명서·소명자료 작성 실무 ·업무매뉴얼 작성·사례 실무 ·전산관리 시스템 실무	시간당 2점 (최대 6점)
	인정 과목		인정 내용	점수																
	FTA법령		·FTA 협정문 중 원산지규정 ·FTA 관세특례법·고시	시간당 2점 (최대 4점)																
	원산지 결정기준		·원산지결정기준 이론 ·결정기준 판정 연습	시간당 2점 (최대 6점)																
	품목분류		·품목분류 이론 ·산업별 품목분류 사례	시간당 2점 (최대 6점)																
	인증수출자		·인증수출자 제도 ·인증수출자 지정 실무	시간당 2점 (최대 6점)																
	원산지 관리실무		·증명서·소명자료 작성 실무 ·업무매뉴얼 작성·사례 실무 ·전산관리 시스템 실무	시간당 2점 (최대 6점)																
- 관세, 상품학, FTA 등 관련 학위 및 자격증 소지자 : 5점(관세업무 담당 관세사번호사: 20점)																				
- 관세청 또는 전문기관*으로부터 FTA 컨설팅 실적 : 건당 5점(최대 15점)																				
* 관세사, 회계법인, 컨설팅 법인 등																				
- FTA관련 업무 전담 경력 (1년이내 2점, 2년이내 3점, 3년이내 4점, 3년이상 5점)																				
○ 지정대상 : 관세사·번호사(특례법 제13조 제9항) 등	원산지관리계약서 등																			
- (외부)전문가 지정시, 인증후 관리여부 사후관리																				
② (외부)전문가지정																				

3) (서류보관)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비치·관리여부 확인

주요내용	세부 확인 내용	확인방법
①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비치·관리 및 서명권자 지정 여부(기관발급 포함) * FTA특례고시 별지 제3호 원산지증명서 서명 카드 * FTA특례고시 별지 제5호 원산지증명서 작성 대장 (전산 파일 제출 가능)	C/O 작성대장, 사전검증결과보고서 및 의견서

4) (법규준수) 처벌이력 등 확인

주요내용	확인 방법
① 최근 2년간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한 사실 확인	본부세관 심사총괄과 공문 확인 등
② 최근 5년간 영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서류의 보관의무(보관요구를 받고 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위반한 사실이 없는 자	처벌 이력 전산 조회 등
④ 최근 2년간 속임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신청한 사실이 없는 자	처벌 이력 전산 조회 등

5) (현지실사) 주요 체크 포인트

구분	세부 확인 내용	확인방법
① 수출(생산)기업 방문 시	○ 역내 충분가공 생산조건 충족여부 및 주요 생산공정 ○ 원산지확인서, 국내제조확인서 등 원산지확인서류 확보 및 관리 실태 ○ 주요 원재료 공급업체에 대한 교육 실태 - 주기, 대상, 강사, 교육 콘텐츠 등	
② 원재료공급업체 방문 시	○ 역내 충분가공 생산조건 충족여부 및 주요 생산공정 ○ 원산지확인서류 작성·제공·관리 실태	

2

인증 신청 시 제출서류

1.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2. 수출 또는 생산하는 주요 품목의 원산지소명서 (5개 이내)
3. 원산지확인서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4. 원산지 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원산지확인서류
 - 원산지(포괄)확인서
 - 국내제조확인서
 - 회사소개책자, 제품생산공정 설명서 등

* 단, 생산자가 기업비밀 등의 사유로 수출자에게 원산지확인서 등을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직접 제출 허용

** 이 경우 제출된 자료는 대외 취급 주의 (FTA특례법 제 20조 참조)

5. 기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 (전산시스템 보유 시) 시스템 설명서 또는 사용자 매뉴얼
 - * 전산시스템에서 구현되지 않은 기능에 대한 원산지 관리 업무매뉴얼
 - (전산시스템 미보유 시) 원산지관리 업무매뉴얼
 - 서명카드, 원산지증명서작성대장, 원산지관리전담자 증빙서류 등

6. 원산지인증수출자 약약서 (별지 제30호 서식)

- 시행규칙 제8조의2에 따라 원산지인증수출자 약약서를 제출하여야 한·EU FTA 원산지신고서에 수출자의 서명 생략 가능

◆ 관련사항 문의처

- 본부세관 및 직할세관 인증심사부서
 - 서울세관 02-510-1562 - 인천세관 032-452-3160
 - 부산세관 051-620-6631 - 대구세관 053-664-5251
 - 광주세관 062-975-8044 - 평택세관 031-8054-7044
- 관세청 FTA포탈 홈페이지 <http://fta.customs.go.kr>

3

각종 제출 및 첨부서류의 보완 요구

- FTA특례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 및 FTA특례고시 제2-4-8조에 따라 제출 받은 서류가 미비하거나 원산지 결정기준의 충족여부를 심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5일 이상 10일 이내에 보정을 요구하거나, 현지 확인할 수 있음
 - * 보정기간은 심사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함

- 보정요구서 양식 : 별지 제 29호 서식에 따라 보정하여야 할 사항, 보정을 요구하는 이유 및 보정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신청업체에게 통보(서면통보)
- 신청인이 특별한 사유없이 지정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증신청을 반려
- 심사결과 인증요건을 충족 시, 규칙 별지 제4호 서식의 인증서 교부 후 원산지 발급기관에 통보

4 유효기간 연장

- 원산지인증수출자 유효기간 : 3년
- 유효기간 연장은 인증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세관장에게 규칙 별지 제3호에 따라 신청
- 신청자가 인증 요건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면 그 인증 유효기간을 3년간 연장
- 인증유효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세청장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통보

5 인증수출자 사후관리

가. 원산지인증수출자의 포괄적 인증에 따른 협정의 원활한 이행 및 체결상대국 세관의 원산지 검증에 대비 원산지 발급 내역 등에 대한 사후관리 필요

나. (원칙)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는 때에는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인증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되, 확인 대상 및 시기는 자체 계획에 따라 결정

※ 인증수출자 위험관리 및 현지확인 기준·절차는 별도 하달 예정

- ◆ 국제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변동 등 인증물품의 원산지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발생한 경우
- ◆ 인증물품의 생산공정이 변경된 경우
- ◆ 인증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이 변경된 경우
- ◆ 위험관리 분석결과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위험관리 대상업체로 선정된 경우
- ◆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사항 변경에 관한 정·정보를 입수한 경우
- ◆ 원산지관리전담자로 지정된 외부원산지전문가가 당해 업체에 대한 원산지 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다. (확인방법) FTA특례 고시 제4장 제2절에서 정한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절차 규정 준용

6 시정명령 및 인증취소(청문)

가. 시정명령의 의의

- 인증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정명령을 통해 인증취소 전에 자율적으로 요건을 보완할 수 있도록 기회 부여

나. 시정명령 요건(규칙 제7조제9항)

- 업체별 인증수출자가 수출 또는 생산하는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시스템 또는 능력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
- 업체별 인증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비치·관리하지 않거나 원산지관리전담자를 지정·운영하지 않는 경우

다. 시정명령 기간 : 30일 이상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라. 인증 취소(규칙 제7조제9항·제10항)

- (요건) 시정명령을 받고 정해진 기간 이내 시정하지 않는 경우, 또는 규칙 제7조제1항제2호의2·제2호의3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추지 못할 경우
- (절차) 취소 전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며, 청문예정 10일 전까지 해당 원산지인증수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

IV.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1 인증심사 기준 및 확인 방법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심사 기준(요약)	
1) (원산지기준 충족) 수출 또는 생산물품(HS 6단위)이 수출국과의 FTA에 따른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2) (Specialist) 원산지 증명능력을 갖춘 원산지관리 전담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외부의 원산지전문가 지정 가능)	
3) (서류보관)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1) 수출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여부 확인

주요내용	세부 확인 내용	확인방법
① 신청서에 기재된 HS 6단위 물품의 대표품목5개 이내를 선정하여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확인(사전검증시 확인한 협정·HS6단위 생략가능)	○ 생산공정 확인 - 회사가 실존하고, 해당 품목의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불인정 생산공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생산자로부터 최종수출물품을 공급받아 수출하는 경우 원산지확인서를 제출받았는지 여부 및 원산지확인서가 정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 원산지소명서 작성능력 확인 - 주요 수출(생산)품목 5개 이내 선정 - 원산지소명서 각 항목이 모두 기재되었는지 여부 - 원산지확인서가 정확하게 작성되고, 원산지소명서와 일치하는지 여부 - 원재료의 협정별·품목별 원산지기준이 정확한지 여부 - 수출품의 협정별·품목별 원산지기준이 정확한지 여부 - (부가가치 기준 적용품목의 경우) 각 협정에서 정한 재료비 가감요소가 정확하게 반영되었는지 여부 - 원산지 최종 판정결과가 정확한지 여부	원산지소명서, 원산지확인서, 국내제조확인서, 사전검증결과보고서 및 의견서 제품생산공정설명서 등

2) (Specialist) 원산지관리전담자 지정·운영

3) (서류보관)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비치·관리여부 확인

주요내용	세부 확인 내용	확인방법
①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비치·관리 및 서명권자 지정 여부(기관발급 포함) * FTA특례고시 별지 제3호 원산지증명서 서명 카드 * FTA특례고시 별지 제5호 원산지증명서 작성 대장 (전산 자료로 제출 가능)	C/O 작성대장, 사전검증결과보고서 및 의견서

4) (현지실사) 주요 체크 포인트

구분	세부 확인 내용	확인방법
① 수출(생산)기업 방문 시	○ 역내 충분가공 생산 충족여부 및 주요 생산공정 ○ 원산지확인서, 국내제조확인서 등 원산지확인서류 확보 및 관리 실태 ○ 주요 원재료 공급업체에 대한 교육 실태 - 주기, 대상, 강사, 교육 콘텐츠 등	
② 원재료공급업체 방문 시	○ 역내 충분가공 생산 충족여부 및 주요 생산공정 ○ 원산지확인서류 작성·제공·관리 실태	

2 인증 신청 시 제출 서류

주요 내용	세부 확인 내용	확인방법																	
① (내부)원산지관리 전담자 지정	○ FTA 특례고시 제2-4-7조제2항에 따른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자격증을 갖춘 경우(갖춘 경우 심사생략)	해당 자격증																	
	○ 자격증이 없는 경우 다음 점수 총합이 10점 이상 - 원산지관리담당자용 업무매뉴얼 : 5점 * 업체 원산지 관리 업무 프로세스를 기술 - 인증신청일 기준 최근 2년간 원산지증명서 발급실적(기관발급에 한함) : 건당 1점(최대 5점) - 원산지 교육 이수(관세청, 민간협회, 사내교육 등) : 시간당 2점 * 민간실시 교육은 [별표] 교육기관 인정기준에 따라 인증심사 담당자가 관련자료 검토·확인하여 점수 부여 <table border="1"> <thead> <tr> <th>인정 과목</th><th>인정 내용</th><th>점수</th></tr> </thead> <tbody> <tr> <td>FTA법령</td><td>·FTA 협정문 중 원산지규정 ·FTA 관세특례법·고시</td><td>시간당 2점 (최대 4점)</td></tr> <tr> <td>원산지 결정기준</td><td>·원산지결정기준 이론 ·결정기준 판정 연습</td><td>시간당 2점 (최대 6점)</td></tr> <tr> <td>품목분류</td><td>·품목분류 이론 ·산업별 품목분류 사례</td><td>시간당 2점 (최대 6점)</td></tr> <tr> <td>인증수출자</td><td>·인증수출자 제도 ·인증수출자 지정 실무</td><td>시간당 2점 (최대 6점)</td></tr> <tr> <td>원산지 관리실무</td><td>·증명서·소명자료 작성 실무 ·업무매뉴얼 작성·사례 실무 ·전산관리 시스템 실무</td><td>시간당 2점 (최대 6점)</td></tr> </tbody> </table> - 관세, 상품학, FTA 등 관련 학위 및 자격증 소지자 : 5점(관세업무 담당 변호사관세사: 10점) - 관세청 또는 전문기관*의 FTA 컨설팅 실적 : 건당 5점 * 관세사, 회계법인, 컨설팅 법인 등 - FTA관련 업무 전담 경력 (1년 이내 2점, 2년 이내 3점, 3년 이내 4점, 3년 이상 5점)	인정 과목	인정 내용	점수	FTA법령	·FTA 협정문 중 원산지규정 ·FTA 관세특례법·고시	시간당 2점 (최대 4점)	원산지 결정기준	·원산지결정기준 이론 ·결정기준 판정 연습	시간당 2점 (최대 6점)	품목분류	·품목분류 이론 ·산업별 품목분류 사례	시간당 2점 (최대 6점)	인증수출자	·인증수출자 제도 ·인증수출자 지정 실무	시간당 2점 (최대 6점)	원산지 관리실무	·증명서·소명자료 작성 실무 ·업무매뉴얼 작성·사례 실무 ·전산관리 시스템 실무	시간당 2점 (최대 6점)
인정 과목	인정 내용	점수																	
FTA법령	·FTA 협정문 중 원산지규정 ·FTA 관세특례법·고시	시간당 2점 (최대 4점)																	
원산지 결정기준	·원산지결정기준 이론 ·결정기준 판정 연습	시간당 2점 (최대 6점)																	
품목분류	·품목분류 이론 ·산업별 품목분류 사례	시간당 2점 (최대 6점)																	
인증수출자	·인증수출자 제도 ·인증수출자 지정 실무	시간당 2점 (최대 6점)																	
원산지 관리실무	·증명서·소명자료 작성 실무 ·업무매뉴얼 작성·사례 실무 ·전산관리 시스템 실무	시간당 2점 (최대 6점)																	
② (외부)전문가지정	○ 지정대상 : 관세사·변호사(특례법 제13조 제9항) 등 - (외부)전문가 지정시, 인증후 관리여부 사후관리	원산지관리계 약서 등																	

1.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 2 서식)
2. 수출 또는 생산하는 주요 품목의 원산지소명서 (5개 이내)
3. 원산지확인서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4. 원산지 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원산지확인서류
 - 원산지(포괄)확인서
 - 국내제조확인서
 - 회사소개책자, 제품생산공정 설명서 등
- * 단, 생산자가 기업비밀 등의 사유로 수출자에게 원산지확인서 등을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직접 제출 허용
- ** 이 경우 제출된 자료는 대외 취급 주의 (FTA특례법 제 20조 참조)
4. 기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 서명카드, 증명서 작성대장, 원산지관리전담자 증빙서류 등
5. 원산지인증수출자 약약서 (별지 제 30호 서식)
 - 시행규칙 제8조의2에 따라 원산지인증수출자 약약서를 제출하여야 한·EU FTA 원산지신고서에 수출자의 서명 생략 가능

3 각종 제출 및 첨부서류의 보완 요구

- FTA특례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 및 FTA특례고시 제2-4-8조에 따라
제출 받은 서류가 미비하거나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여부를 심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5일 이상 10일 이내에 보정을 요구하거나, 현지 확인할 수 있음

* 보정기간은 심사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함

- 보정요구서 양식 : 별지 제 29호 서식에 따라 보정하여야 할 사항, 보정을 요구하는 이유 및 보정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신청업체에게 통보(서면통보)
- 신청인이 특별한 사유없이 지정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증신청을 반려
- 심사결과 인증요건을 충족 시, 규칙 별지 제4호 서식의 인증서 교부 후 원산지 발급기관에 통보

4 유효기간 연장

- 원산지인증수출자 유효기간 : 2년
 - * 다만, 최근 2년간 원산지조사를 거부한 사실이 있거나 원산지 증빙서류 보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인증유효기간을 달리 할 수 있음
- 유효기간 연장은 인증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세관장에게 규칙 별지 제3호에 따라 신청
- 신청자가 인증 요건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면 그 인증 유효기간을 2년간 연장
- 인증유효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세청장 및 원산지 증명서발급 기관에 통보

5 인증수출자 사후관리

가. 원산지인증수출자의 포괄적 인증에 따른 협정의 원활한 이행 및 체결상대국 세관의 원산지 검증에 대비 원산지 발급 내역 등에 대한 사후관리 필요

나. (원칙)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는 때에는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인증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되, 확인 대상 및 확인 시기는 자체 계획에 따라 결정

※ 인증수출자 위험관리 및 현지확인 기준·절차는 별도 하달 예정

- ◆ 국제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변동 등 인증물품의 원산지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발생한 경우
- ◆ 인증물품의 생산공정이 변경된 경우
- ◆ 인증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이 변경된 경우
- ◆ 위험관리 분석결과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위험관리 대상업체로 선정된 경우
- ◆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사항 변경에 관한 정·첩보를 입수한 경우
- ◆ 원산지관리전담자로 지정된 외부원산지전문가가 당해 업체에 대한 원산지 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다. (확인방법) FTA특례고시 제4장 제2정에서 정한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절차 규정 준용

6 시정명령 및 인증취소(청문)

가. 시정명령의 의의

- 인증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정명령을 통해 인증취소 전에 자율적으로 요건을 보완할 수 있도록 기회 부여

나. 시정명령 요건(시행규칙 제7조의2 제5항)

- 품목별 인증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비치·관리하지 않거나 원산지관리전담자를 지정·운영하지 않는 경우

다. 시정명령 기간 : 30일 이상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라. 인증 취소(시행규칙 제7조의2 제4항·제5항)

- (요건) 시정명령을 받고 정해진 기간 이내 시정하지 않는 경우, 또는 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추지 못할 경우
- (절차) 취소 전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며, 청문예정 10일 전까지 해당 원산지인증수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

[별 표]

원산지 교육기관 및 과목 인정 요건 (민간부문)

구 분		인 정 기 준
기본 요건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 FTA 또는 수출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중 일 것 - 원산지관리의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교수 자격	전문 지식	○ 아래 내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관세행정 분야에서 3년이상 근무한 자 - 관세사 ·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FTA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자
	업무 경력	○ 아래 내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관세행정 중 FTA업무 부서에서 1년이상 근무한 자 - 최근 2년내 3개업체 이상의 FTA 컨설팅을 수행한 자
교육내용		○ 아래 과목을 3개 이상 포함하여 커리큘럼을 편성할 것 - (원산지규정) FTA 협정, FTA 관세특례법, FTA고시 - (인증수출자) 제도 개요 및 구비서류 작성 등 인증실무 - (품목분류) HS 통칙 · 품목분류 · 업종별 분류사례 실무 - (원산지결정기준)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및 판정실무 - (원산지관리실무)원산지증명서,소명서,업무매뉴얼 작성 등

22. 원산지인증수출자 유효기간 만료전 사전안내 시행 지침 시달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2222, 2014-09-24

1.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3-76호) 제16조제1항에서 ‘관할세관장은 인증유효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원산지인증수출자에게 인증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안내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 현재 세관장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인증수출자에게 자율적으로 인증유효기간 연장신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2. 인증수출자의 유효기간 만료 도래 전에 세관장이 연장신청을 안내하지 않아 기한 내 유효기간을 갱신하지 못해서 인증이 취소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여 수출기업의 자유무역협정 특혜관세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 각 세관장은 향후 반드시 인증유효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우편, 전자우편 또는 유선 등의 방법으로 원산지인증수출자에게 인증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23.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시 ‘교육 이수실적’ 처리방법에 대한 지침 시달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 2012-10-26(제정일자)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2-20호)」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시 내부 원산지관리전담자의 ‘자유무역협정교육 이수실적’ 처리방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침을 시달합니다.

아 래

1. 관세청과 세관에서 운영하는 ‘자유무역협정교육’
 - 가. 관세청 주관 「자유무역협정사이버강의」와 「e-원산지 아카데미」 수료자에게는 10점 부여
 - 나. 관세청과 세관에서 운영하는 ‘자유무역협정교육’ 수료자에게는 교육시간당 2점 부여
2. 그 밖의 ‘자유무역협정교육’ : 동 고시에서 [별표3]에서 정하는 ‘자유무역협정 관련 교육이수 인정기준’에 따라 인증업무를 담당하는 세관장이 해당 교육자료 등을 검토·확인하여 점수 부여

24.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외부 원산지전문가’ 인정범위에 대한 지침 시달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 2012-10-14(제정일자)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가 2012.10.10(수)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 고시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외부 원산지전문가’ 인정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붙임과 같이 지침을 시달합니다.
붙임 :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외부 원산지전문가’ 인정범위에 대한 지침 1부.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별표2]에 따른 ‘외부 원산지전문가’ 인정범위

1. 지침배경

- 공인회계사가 관세사의 배타적 고유직무를 침해하지 않도록 외부 원산지전문가 인정범위를 명확히 하여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업무’ 집행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

2. 관련규정

- 「관세사법」 제2조 및 제3조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3조제9항
-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2]

3.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시 공인회계사의 ‘외부 원산지전문가’ 인정범위

- 관세사와 공동으로 ‘외부 원산지전문가’로 원산지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외부 원산지전문가’로 인정. 다만, 세 번·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4. 시행일 : 2012.10.15.(월)

25. 원산지증명서 상시발급 운영 지침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과) ' 21. 6. 29. 제정

I. 목 적

- 본 지침은 「관세법」 제3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5조에 따라 세관의 개청시간 외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및 심사 절차에 대한 세부 처리사항을 명확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II. 적용 대상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관세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출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
- 「관세법」 제232조의2제1항 및 「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이하 “원산지 고시”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라 관세 양허대상 수출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

※ 기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신청인이 재발급 신청하거나, 정정발급 신청하여 발급심사 하는 경우도 적용 대상에 포함

III. 업무처리 지침

1. 임시개청 신청 및 심사 절차

가.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희망하는 날의 직전 개청일까지 세관장에게 임시개청을 신청

* (신청방법) 관세청 UNI-PASS → 전자신고 → 신고서 작성 → 공통 →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임시개

청 신청서」 작성

나. 신청인은 임시개청을 신청한 시간에 맞춰 세관장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

다. 세관장은 관련 법령 및 고시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와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발급 승인 여부 결정(당일 처리 원칙)

라. 세관장은 다목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가 미비하여 보정이 필요하거나, FTA관세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 및 원산지 고시 제23조에 따른 현지확인 대상의 경우에는 발급 신청을 받은 날에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음

마. 세관장은 원산지증명서 발급 등 제반 절차가 완료되면 전자통관시스템에 임시개청 결과 등록

* 다만, 신청인이 임시개청 신청한 건이라도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에 대한 증명서 발급기관의 심사방법에 관한 지침」에 따라 자동심사 처리된 경우에는 임시개청 결과등록 불요

바. 신청인은 임시개청 결과가 등록된 건에 대해 수수료 납부

2. 임시개청 수수료

가. (부과산식) 수출신고와 동일한 임시개청 수수료 적용

* (기본 수수료) 평일 1,000원, 휴일 3,000원

(시간당 수수료) 00시 ~ 06:00 : 1,750원, 06시 ~ 18시 : 750원, 18시 ~ 22시 : 1,200원, 22시 ~ 24시 : 1,750원

다. (부과기준) 동일 신청인이 다수 건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해 1건으로 임시개청을 신청하는 경우 1건으로 인정하여 수수료 부과

IV. 시행일자

☐ 이 지침은 2021. 7. 1. 부터 시행함

26. 원산지증명서 전자본 발급 안내

< ' 23. 1. 17,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 >

☐ 목 적

○ 원산지증명서 전자본 발급을 지원하여 기업의 FTA 활용 편의 제고

☐ 발급 대상

○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하는 아래 협정의 원산지증명서

협정	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아세안 FTA	한-싱가포르 FTA
수출 목적국 (시행일)	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베트남·싱가포르 ·말레이시아·브루나이(' 22.9.1.), 인도네시아(' 23.1.2.)	인도네시아 (' 23.1.1.)	싱가포르 (' 23.1.18.)	싱가포르 (' 23.1.18.)

☐ 발급 방법

-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인은 발급이 승인된 경우 전자본을 PDF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음(붙임 참조)
- 원산지증명서 종이본 발급은 전자본 발급 여부와 무관하게 현행과 동일(1회 출력 원칙)하게 적용

☐ 유의 사항

- 발급 신청인은 해당 수입국에서 특혜 신청 시 원산지증명서 전자본 제출을 허용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원산지증명서 전자본 제출을 허용하는 국가라도 상황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종이본(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환산지체발보	81588-22-000005X	전송구분	최초
기본정보			
발급기관	국가기준	신청일자	2022-07-05
신청제(건)관	서울세관	신청자수	0
환산지증명서 출력 - Chrome 주소 요약 10.132.203.241:8080/csp/myc/trifadme... details/coPrintGuide.do?procId=51558832000005X&printAgent=05cy... 환산지증명서 출력 - 출력 전 반드시 출력 프린터의 환경설정을 "컬러 인쇄"로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 환산지증명서는 앞면과 뒷면(OVERLEAF NOTES)이 광면으로 인쇄되어야 하며, 앞면은 원본과 사본에 각 1회만 발급 가능합니다. ※ 예시) 앞면 출력 1회 클릭 후 다시 클릭시 원본(Original)의 앞면이 2부 출력되는 것이 아니라 원본(Original) 앞면 1부, 사본(Triplicate) 앞면 1부씩 출력 - 환산지증명서를 잘못 출력할 경우 환산지증명서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하오니 아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미리보기"로 출력하고자 하는 환산지증명서의 앞면이 총 몇 쪽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뒷면출력"으로 환산지증명서의 뒷면(OVERLEAF NOTES)을 아우있게 여러장 출력합니다. 1) 뒷면인쇄 최소 필요 장수: 테스트용 + 앞면 페이지수 × 2 (한·인도는 × 3) 2) 합정별로 뒷면(OVERLEAF NOTES) 내용은 상이하도 뒷면 출력은 최소 제한이 없습니다. - 뒷면(OVERLEAF NOTES) 출력결과 앞면이 인쇄되도록 프린터의 용지함에 넣으십시오. "테스트출력"으로 앞·뒷면이 모두 한 장으로 정상 출력 되는지 확인하신 후 "앞면출력, 버튼으로 환산지증명서의 Original, Triplicate, Quadruplicate(한·인도)를 차례로 출력합니다. 1) "앞면출력, 버튼으로 환산지증명서 시 Original, 2번째 클릭 시 Triplicate, 3번째 클릭 시 Quadruplicate(한·인도)가 순서대로 출력됩니다. 2) 앞면출력 출력 부호 아래와 같습니다. - 한·아세안: 한·싱가포르, 한·중국, 한·베트남 : Original, Triplicate - 한·미국 : Original, Triplicate, Quadruplicate - 한·대우 : Original 3) Duplicate는 세관보관용으로 출력되지 않습니다. PDF저장 미리보기 뒷면출력 테스트출력 앞면출력 닫기 *FTA 활용지원 및 해외통관에도 발생 시 관할 본부세관 수출입업자접점센터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인정보			
		신청인명	mycadmin
		신청인상호	영와이비관리자
결과정보		CO발급일자	2022-07-18
		결과코드	04:승인 통보
발급정보		재검발급일자	2022-08-30
		외검발급일자	2022-08-30
담당자정보		연락처	053-230-5194
목록		인쇄 재발급 정정발급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센터

무역인증안내
원산지증명서
기타무역인증
ATA카드네
마이페이지
고객지원

[HOME](#) > [마이페이지](#) > 증명

마이페이지

증명서 발급 현황 >

발급 처리 현황

신청서 작성 목록

카드네 발급 현황 2

결제관리 2

정보관리 2

웹 인증 현황

접수번호(Application No.)
001-22-0000521R

*** 공지사항 (발급)**

- 일반 **A4용지** 사용, **컬러 프린터** 이용
- '원본' 1회만 출력(**재출력 불가**)
- 원본과 사본은 다른 모형을 사용하고 있어, 사본이 정상 출력되더라도 원본은 출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원본 출력 전에 반드시 원본 확인용으로 출력상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한-아세안 FTA, 한-중국 FTA, 한-베트남 FTA, APTA(아시아태평양), RCEP 반드시 원산지증명서 뒷면에 "OVERLEAF" 인쇄
- 한-인도 CEPA의 경우 원산지증명서 뒷면에 "OVERLEAF"를 인쇄할 수 있습니다.
- 최근 인도 원산지관리 강화 규정에 개정된 후 "OVERLEAF"를 출력하지 않은 경우 원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 주의사항을 따르지 않을 경우, 통관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시 : 통관 장애, 관세특혜 미적용)
- 발급된 서류의 기재사항 변경을 위해 **정정신청**하시는 경우에도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 단, '수수료결제 대기중'인 상태에서도 정정신청할 수 있습니다.

증명서 종류	접수일시 (Application Date)	발급일시 (심사기준)	처리상태 (Status)	인쇄 (Print)
RCEP 원산지증명서 [rcep_cs_test]	2022-08-29 16:32	2022-09-01 00:00	발급완료 (Accept) 원본신청 1매 원본출력 0매 원본다운로드 0회	원본 사본 원본 확인용 원본 PDF 신청서 보관용 OVERLEAF

전자본
발급 시
원본 PDF
를

〈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과 〉
, 21. 11. 30. 제정

- 366 -

☐ 본 지침은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원양어획물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 시 직접운송 인정 기준을 명확화하여 기업의 FTA 활용 편의를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II. 적용 대상

☐ 협정상대국(수출당사국) 영해 밖(公海 또는 비당사국 영해 등)에서 어획한 수산물 또는 동 제품으로만 협정상대국(당사국)의 가공선박에서 제조한 생산물(이하 “협정관세 적용대상 원양어획물”이라 한다). 다만, 협정관세 적용대상 원양어획물은 해당 협정의 원산지결정기준(완전생산기준으로 한정한다)을 충족해야 함

III. 업무처리 지침

- 1) 협정관세 적용대상 원양어획물의 조업(어획) 또는 가공이 발생한 협정상대국(수출당사국) 국적의 선박은 협정상대국(수출당사국)의 영역으로 인정함
- 2) 협정상대국(수출당사국) 선박에서 조업 또는 가공된 협정관세 적용 대상 원양어획물이 비당사국 영역을 일시 경유(단순환적 포함)하더라도 해당 협정에서 정한 직접운송 예외 인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직접운송된 것으로 간주함
- 3) 직접운송 예외 인정 요건 충족 여부 확인 등을 위한 전체 운송경로 및 세관 통제(비가공) 여부 입증 등의 절차는 해당하는 협정을 따름

※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직접운송 확인방법」(관세청 지침, ' 20.7.17) 참조

IV. 시행일자

☐ 이 지침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함

28. 자유무역지역 보관 물품의 원산지증명서 작성·발급 업무 처리 지침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과
' 23. 4. 3. 제정

‘이 지침에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같은 법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는 각각 ‘법’, ‘영’, ‘규칙’, ‘고시’라 지칭함

I. 목 적

☐ 이 지침은 자유무역지역에서 국외로 반출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작성·발급 업무처리 절차를 명확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II. 적용 대상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비거주자등이 국외반출을 목적으로 자유무역지역에 보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零稅率) 적용을 받는 물품에 대해 법 제11조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작성·발급하는 때에 이 지침을 적용함

III. 원산지증명서 작성·발급 절차

1. 기관발급 신청·심사

가.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 또는 생산자는 이 지침 적용 대상 물품에 대해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의 장(이하 “발급기관장”이라 한다)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음

나.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 또는 생산자가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발급기관장에게 규칙 제10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에 따른 서류와 함께 아래의 증빙서류를 제출

- 1) 자유무역지역 내국물품 반입신고서(「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3호의3 서식)
- 2) 생산자와 비거주자등간의 송품장, 거래계약서 등 거래 증빙서류
- 3)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가 비거주자등의 물품에 대한 보관·국외반출 등 취급 권한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4)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21조제2항제1호(반입내역) 및 제2호(반출내역)에 따른 재고기록 등 반출입 물품간의 동일성 확인을 위해 발급기관장이 제출을 요구하는 그 밖의 서류

다. 상기 Ⅲ. 1. 나. 1)부터 3)까지의 서류가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최초로 발급 신청하는 때에 제출하고 이후에는 최초 원산지증명서 발급번호와 기존에 제출된 서류의 명칭·일련번호 등을 “비고”란에 기재하여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증빙서류 예시〉

- ① 자유무역지역에 반입 신고한 물품을 분할하여 순차적으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 Ⅲ. 1. 나. 1)의 서류
- ② 생산자와 비거주자등간 단일한 거래 계약을 체결한 물품을 분할하여 순차적으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 Ⅲ. 1. 나. 2)의 서류
- ③ 비거주자등의 모든 물품에 대한 취급 권한을 가진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이 지속적으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 Ⅲ. 1. 나. 3)의 서류

라. 발급기관장은 고시 제32조제1항에 따른 심사 이외에, 이 지침 Ⅲ. 1. 나.에 따라 제출된 서류로 자유무역지역에 반출입 신고된 물품 간 동일성 여부* 등을 확인

* 품명, 규격, 수량, 중량, 품목번호 등

마. 그 밖에 원산지증명서 발급과 관련한 발급기한, 소급발급, 보정, 현지확인, 재발급 및 정정발급 등 절차는 규칙 제10조제3항부터 제12항까지를 따름

2. 자율증명 절차

가.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 또는 생산자가 이 지침 적용 대상 물품에 대해 규칙 제14조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자율적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 Ⅲ. 1. 나.의 증빙서류에 기초하여야 함

나.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관리 등 원산지증명서의 작성과 관련한 그 밖의 절차는 규칙 제14조에 따름

3. 유의사항

☐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신청·작성한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 또는 생산자는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원산지증빙서류를 보관, 제출해야 하며, 법 제4장에 따른 원산지검증과 법 제44조 등에 따른 처벌의 대상임

Ⅳ. 시행일자

☐ 이 지침은 2023년 4월 3일부터 작성·발급 신청되는 원산지증명서에 대해 적용함

29. 인증수출자 인증번호 변경업무 처리지침 시달

자유무역협정 집행기획담당관, 2010-03-31(등록일자)

2010.4.1부터 시행되는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증번호 변경업무 처리지침을 아래와 같이 시달하오니, 각 담당자께서는 동 지침에 따라 인증번호를 변경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붙임 양식에 의거 4.7(수)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기존 인증한 인증수출자를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변경(별도 신청절차 및 심사없이 기존 인증번호를 변경하여 대표번호 와 관리번호를 부여, 붙임자료 참고)
2. 해당 업체에게 인증수출자 개편 내용, 혜택, 변경된 인증번호 및 인증기간 등을 통보

붙임 : 가. 인증수출자 인증번호 변경업무 처리지침 1부
나. 인증번호 변경내역 결과보고 양식 1부<계재생략>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 개선에 따른 인증번호 변경 처리지침

(2010.3.31, FTA이행팀)

□ 2010.4.1 인증수출자 제도 개편으로 업체별, 품목별 인증수출자로 구분됨에 따라 기존 인증번호의 변경 필요

<기존 인증번호 체계> < 000(3자리) - 00(2자리) - 000000(6자리) > (세관부호) (연도) (일련번호) (한 개의 업체가 여러 품목의 인증을 받은 경우 다른 번호 부여)		
---	--	--

□ 인증 번호체계 변경 방법

- 원활한 FTA이행을 위하여 기존 인증번호체계를 유지하고 원산지증명서 신청·발급시 한 개의 대표번호로 변경
 - * 품목별 인증수출자 번호가 품목별로 다를 경우 상대국 세관의 혼동 우려
 - * 업체별 인증수출자 : 일련번호 1로 시작, 품목별은 2로 시작하여 구분
- 인증수출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인증번호 조회 및 사후 관리에 활용

구분	업체별 인증수출자	품목별 인증수출자
대표번호	000-00-100000(11자리)	000-00-200000(11자리)
관리번호	000-00-100000-00(13자리) (업체 관리번호)	000-00-200000-000000(17자리) (품목관리번호 HS6단위)
부여방법	00전자 수원공장 000-10-100001-01 00전자 창원공장 000-10-100001-02 00전자 성남공장 000-10-100001-03 (00전자 대표번호 : 000-10-100001) * 대표번호 : 업체명 관리번호 : 사업자등록번호로 관리	부산세관 00실업 HS 8462.10호를 변경하는 경우 → 030-10-2000001-846210를 부여 (00실업 대표번호 : 030-10-200001)

* 업체별 인증수출자에서 품목별 인증수출자로 변경될 경우 관할 세관으로 신청(HS6단위)하고 해당 세관에 서는 업체별 인증신청시 제출한 자료를 활용

□ 수정방법 : 담당자가 직접 인증 심사화면에서 수정

30. 인증수출자 인증업무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 업무 처리지침 시달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 2011-04-17(등록일자)

품목별 인증수출자 인증업무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업무와 관련된 처리 지침을 아래와 같이 시달합니다.

- 아 래 -

- 품목별 인증수출자 인증업무 처리시 우리나라의 품목번호와 수입국의 품목번호가 다른 경우,
 - 우리나라의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품목번호(HS 6단위)로 인증하되 수입국에서 품목번호를 달리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수입국의 세관당국에서 발행한 ‘품목번호 확인서’, ‘수입신고필증’ 등으로 확인되고 동 품목번호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이 인증된 품목과 같거나 인증수출자가 제출한 서류로 부합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추가로 인증 처리할 수 있음
- 원산지증명서 발급업무 처리시 현지확인 장소가 관할구역 이외 이거나 원거리인 경우,
 - 원산지증명서 발급 세관은 현지확인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에게 현지확인을 의뢰할 수 있으며, 현지확인을 수행한 세관은 그 결과를 의뢰한 세관에 통보할 것. 끝.

31. 자유무역협정 기업지원 업체정보 보호에 관한 지침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1225, 2016-05-12(제정일자)

- (배경) 기업지원의 중요성은 커지는 반면, 기업들은 지원을 받기 위해 제공한 정보들이 검증에 사용할 것을 우려(기업지원 신청 회피)
- (방향) 기업지원시 취득한 정보를 검증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지침 제정 ⇨ 업체의 우려를 해소하고 기업지원을 활성화

자유무역협정 기업지원 업체정보 보호에 관한 지침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실, 2016. 5. 16.)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기업지원 과정에서 취득한 업체정보를 기업지원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업체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1. 업체명, 주소,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등 업체를 알아볼 수 있는 정보
2. 「관세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정보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비공개 대상정보

제3조(업체정보 이용) 세관공무원은 FTA 컨설팅·상담 및 FTA-PASS 보급 등 기업지원 목적으로 취득한 업체정보를 기업지원 목적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원산지 검증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업체정보 제공) 세관공무원은 기업지원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체정보를 세관공무원이 아닌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5조(업체정보 관리) 세관공무원은 적절한 보안조치를 통하여 업체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본 지침은 2016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32. 자유무역협정 및 일반특혜관세 원산지증명서의 특혜관세적용업무 처리방법 시달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 2014-11-06(제정일자)

1. 2014년도 현재 우리나라는 9개 협정·47개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협정관세, 개발도상국간 특혜무역제도의 양허관세(GSTP),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양허관세(APTA), 세계무역기구협정 개발도상국간의 양허관세(TNDC) 및 최빈개발도상국 일반특혜관세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특혜관세 대상 수입비중이 35%에 이르고 있습니다.
2. 상기 특혜관세의 경우 수출국에서 발급·작성되는 원산지증명서상의 HS품목번호와 수입국인 우리나라에서의 HS품목번호가 다른 경우 또는 원산지증명서상 품명과 송품장의 품명이 다른 경우가 있어 특혜관세 적용업무 처리시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바, 그 간의 관련지침을 통합하여 불임과 같이 업무처리방법을 시달합니다.
3. 각 세관장은 불임1 내용에 대해 직원교육 등을 실시하고 관내 신고인 등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세관의 협정관세적용업무 담당부서장은 불임2와 같이 처리실적을 매월 10일까지 본청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불임 1. 자유무역협정 및 일반특혜관세 원산지증명서의 특혜관세적용업무 처리방법 1부.

2. 원산지증명서 HS상이사례 수입실적 보고(통보)서식 1부. 끝.

자유무역협정 및 일반특혜관세 원산지증명서의 특혜관세적용업무 처리방법

1. 수출국에서 발급·작성되는 원산지증명서의 HS품목번호와 수입물품의 HS품목번호가 다른 경우 특혜관세 적용업무 처리 방법

① ‘HS품목번호’가 원산지증명서의 필수항목이 아닌 경우

※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한-EU FTA),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한-EFTA FTA), 터키와의 협정, 페루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신고서

- ‘HS품목번호’가 원산지증명항목이 아니므로 원산지증명서상 ‘HS품목번호’와 무관하게 특혜관세 적용처리

② ‘HS품목번호’가 원산지증명서의 필수항목인 경우

※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미국과의 협정, 칠레와의 협정, 인도와의 협정, 싱가포르와의 협정, 페루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 원산지증명서의 HS품목번호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이 수입신고서의 HS품목번호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에 충족하는 경우 특혜관세 적용처리
- 원산지증명서의 HS품목번호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이 수입신고서의 HS품목번호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와 충족하는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특혜관세 적용처리 후 수입자 주소지 관할구역 원산지검증 담당부서로 검증의뢰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국제원산지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검증의뢰

(적용예시)

원산지증명서의 HS품목번호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수입물품의 HS품목번호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처 리 방 법
완전생산기준	완전생산기준 또는 역내가치발생기준 또는 세번변경기준	·수출국에서 완전생산된 물품이므로 원 산지제품에 해당 ⇒ 특혜관세 적용
역내가치발생기준 40%	역내가치발생기준 35%	·역내가치기준 35%를 초과하므로 원 산지제품에 해당 ⇒ 특혜관세 적용
역내가치발생기준 40%	(선택기준) 역내가치발생기준 40% 또는 세번변경기준	·역내가치기준 또는 세번변경기준 중 어 느 하나의 기준을 충족하면 원산지제 품에 해당 ⇒ 특혜관세 적용
역내가치발생기준 40%	(조합기준) 역내가치발생기준 40% 및 세번변경기준	·세번변경기준 충족여부 확인 불가 ⇒ 특혜관세 적용 → 검증의뢰
세번변경기준	세번변경기준	
역내가치발생기준 30%	역내가치발생기준 40%	·수입국 원산지결정기준 불충족 ⇒ 특혜관세 적용 → 검증의뢰
세번변경기준	완전생산기준	

③ 원산지결정기준에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

※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양허관세(APTA), 최빈개발도상국 일반특혜관세, 개발도상국간 특혜무역제도의 양허관세(GSTP), 세계무역기구협정 개발도상국간의 양허관세(TNDC)에 따라 완전생산기준이나 역내가치발생기준을 충족하는 물품

- 역내가치발생기준에 충족하면 원산지제품에 해당하므로 ‘HS품목번호’가 다른 경우에도 특혜관세 적용처리

2. 원산지증명서상 품명과 송품장의 품명이 다른 경우 특혜관세 적용업무 처리 방법

- ‘품명’은 물품의 동일성을 확인하기 위한 중요한 정보로서 원칙적으로 원산지증명서의 ‘품명’과 송품장의 ‘품명’은 동일해야 하지만
- 일반적으로 무역관행상 사용되는 ‘품명’과 HS품목분류상의 ‘품명’이 다른 경우에도 물품의 동일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특혜관세 적용처리

(적용예시)

원산지증명서의 품명	송품장의 품명	처리방법
machinery parts	Bolt, nut	특혜관세 적용

※ 시행일 : 지침시달일 이후 특혜관세적용 신청 분부터 시행. 끝.

※ 붙임2

《FTA원산지증명서 HS상이사례 수입실적 보고서》

(기간 : ####년 ##월)

세관명	과명	수입신고번호	란번호	적용협정	원산지증명서 내용		수입신고 내용		품명	처리방법
					HS번호	PSR	HS번호	PSR		

(작성례)

(기간 : 2014년 11월)

세관명	과명	수입신고번호	란번호	적용협정	원산지증명서 내용		수입신고 내용		품명	처리방법
					HS번호	PSR	HS번호	PSR		
서울	수입	12345-67-89012	001	미국	1234567890	CTH	1234567890	RVC 30%	car	검증의뢰
부산	심사정보	52345-67-89015	002	아세안	1234567890	CTH	1234567890	RVC 30%	car	

<작성방법>

- ※ 적용협정 : 미국, EU, 칠레, 페루, 아세안, EFTA, 터키, 싱가포르, 인도
- ※ 품명 : 원산지증명서상의 품명 기재
- ※ 처리방법 : 검증의뢰 한 경우 ‘검증의뢰’로 기재
- ※ 엑셀로 작성하여 공문으로 보고할 것 (실적이 없는 경우 ‘실적없음’으로 보고)

33.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개선 지침 통보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2144, 2013-09-05(제정일자)

- 최근 아세안회원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우리 기업이 수출한 물품에 대해 인도네시아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증명서가 동 협정에서 정하는 바와 다르게 발급되었음을 이유로 협정관세를 배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동 협정 부속서3(원산지규정) 부록1(원산지 규정을 위한 원산지증명 운영절차)의 원산지증명서 작성요령 제4항*에 따르면,
 - * 원산지증명서 작성요령 제4항 : 발송하는 모든 물품은 각 개별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른 크기 물품 또는 예비부품을 송부하는 때도 그러하다
- 수출물품의 각 품목별로 원산지기준이 원산지증명서에 표기되어야 하지만, 현재 증명서 발급기관에서 발행되는 원산지증명서에는 품목번호(HS)별로 원산지기준이 표기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향후 수출물품에 대해 자유무역협정을 적용하는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발급하여 주시기 바라며,

-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인이 수출신고서 기재내용과 동일하게 발급 신청하더라도 하나의 품목번호(HS)에 물품이 여러 가지인 경우 각 물품별로 아래와 같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수출품목이 다수일 경우 품목번호(HS)별 기재 → 물품별 기재

- 품목번호(HS)가 동일한 품목이라도 물품이 다른 경우 품명, 규격, 품목번호(HS), 원산지기준을 각 물품별로 기재. 끝.

34. 중소기업의 FTA 활용지원을 위한 예산컨설팅 사업 운영 지침 시행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 2012-05-09(제정일자)

1. FTA 예산 컨설팅의 체계적인 사업운영과 중소기업청과의 부처 간 협력사업 대상 업체들에 대한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운영지침을 마련,시행코자 하오며

2. 아울러 중기청 1차 지원사업의 해당 기업별 신청서 등 참고서류는 각 세관별로 별도 송부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중소기업의 FTA 활용지원을 위한 예산컨설팅 사업」 운영 지침 1부.

「중소기업의 FTA 활용 지원을 위한 컨설팅 사업」 운영 지침

I. 검토 배경

☐ 중소기업의 FTA 활용 지원을 위한 컨설팅 사업이 세관별로 통일적으로 집행되도록 컨설턴트 관리, 사후관리 등의 세부 기준 마련

☐ 특히, 우리청의 컨설팅 사업과 중소기업청 지원 사업이 부처 간 협력 사업*으로 진행되면서 중기청으로부터 배정받은 업체에 대한 컨설팅 실시의 명확한 기준이 필요

* 중기청은 원산지증명시스템 구축 희망 기업 모집, 「FTA-PASS」 구축 우리청은 「FTA-PASS」 활용 관련 컨설팅 실시

II. 추진 내용

1.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접수받은 업체 컨설팅

1. 중기청 원산지증명시스템 구축 지원 사업 진행 경과

☐ 「FTA원산지증명시스템 구축 지원 사업」 1차 공고를 통해 119개 중소기업의 신청을 접수(2.1 ~ 29)받아 대상 기업을 우리청에 통보(3.22)

☐ 同 사업 2차 공고를 통해 추가 접수(4.2 ~ 27)를 완료하였으며, 신청 기업 검토 후 우리청에 추가로 통보 할 예정

2. 우리청 컨설팅 사업과 연계

☐ 지원대상 기업이 중기청에 신청한 지원 유형*에 따라 우리청의 컨설팅 지원 내용이 달라짐

* 중기청은 1차, 2차 사업 공고 시, ①단순 컨설팅형 ②PC형 FTA-PASS ③서버 일체형 시스템으로 지원 유형을 세분화

< 중소기업청 사업 >

A형) FTA 단순 컨설팅

B형) PC형 FTA-PASS 보급

C형) 서버 일체* FTA-PASS 구축

< 우리청 사업 >

i) 기업이 FTA-PASS 활용을 희망 시
‘FTA-PASS 컨설팅’ 실시
ii) 비희망시, ‘세관 직접 컨설팅’ 제공

‘FTA-PASS 컨설팅’ 실시

* PC간 중계기를 설치하여 기업내 인트라넷으로 FTA-PASS를 사용하도록 구현

- ☐ A형) FTA 단순 컨설팅은 “FTA-PASS 보급 활성화” 라는 우리청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FTA-PASS와 연계되지 않는 경우, 예산 집행 불가
 - 기업의 희망의사를 신속히 재조사하여 FTA-PASS를 사용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해 컨설턴트에 의한 ‘FTA-PASS 활용 컨설팅’ 제공
 - FTA-PASS 사용이 필요치 않은 기업은 FTA 활용 매뉴얼을 내용으로 ‘세관 직원의 방문컨설팅’ 제공
- ☐ 중소기업청 사업에서 B, C형 지원을 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우리청의 ‘FTA-PASS 활용 컨설팅’ 을 제공

3. 컨설팅 운영 프로세스

- ① (본청) 중소기업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업체(신청서 포함)를 소재지별 관할 세관에 배정
- ② (세관) 대상 업체에 대해 컨설턴트 선정, 컨설팅 결과 점검 및 대금 지급 등을 총괄하고 종료 후 본청에 보고
- ③ (본청) 세관의 컨설팅 결과를 보고받아 중기청에 통보

4. FTA 컨설턴트 풀(Pool) 구성·관리

- ☐ (구성) 중소기업청 사업을 통해 접수받은 수출 기업의 희망 컨설턴트가 자격 요건*을 갖추 경우, 세관의 컨설턴트 풀에 통합하여 관리
 - * ①관세사는 관세청장에게 등록한 관세사 및 ②우리청 FTA-PASS 실무 교육 이수
- ☐ (컨설턴트 배정)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신청받은 업체*의 경우, 중기청에 신청 시 기업 의사를 모두 반영하여 희망 컨설턴트를 우선 배정
 - * 우리청의 컨설턴트 심사 기준 준용 등이 未반영된 중기청 1차 공고 신청업체에 한함

2. 컨설팅 종료 후 사후관리 방안

- ☐ 컨설턴트에게 대금을 지급한 이후 한 달 이내에 컨설팅을 받은 기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컨설팅 만족도 조사 실시
 - ☞ 붙임 2. 사후 만족도 조사 서식 참조
 - 컨설팅의 충실도, FTA-PASS 활용 여부 및 시스템 사용 시 애로사항, 未활용 사유 등을 파악
 - 同 자료를 향후 사업 결과 종합 보고 및 예산 설명 자료로 관리
- ☐ 만족도 조사 결과, FTA-PASS를 未활용 기업에 대해서는 원산지정보원 內 ‘FTA-PASS 사후관리팀*’ 에 통보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함
 - * FTA-PASS 활용을 지원하는 ‘FTA-PASS 사후관리(POST-CARE)’ 추진(‘12년 상반기 운영 예정)

Ⅲ. 행정 사항

- ☐ 同 지침 시행 : 5. 8(화), 중기청 재조사결과 보고 : 5.16(수)
- ☐ 「FTA-PASS」 컨설팅 사업 담당자 실무회의 개최 : 5. 15(화)
- ☐ FTA-PASS 컨설팅 非희망업체 중기청 통보 : 5. 18(금)

35. 중소기업의 자유무역협정 활용촉진을 위한 통합지침 시달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 2011-05-04(등록일자)

- 1. 한-EU FTA발효에 대비하여 원산지 확인서 발급·유통에 관한 제도를 규범화하고 중소기업 지원절차를 마련하여 붙임과 같이 통합지침을 11.5.9일부터 시행하고자 하오니 각 세관장께서는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아울러 동 지침은 관할지역내 기업들의 FTA활용률 제고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여 주시고, 시행중 개선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본청에 의견을 개진하여 동 지침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중소기업의 자유무역협정 활용촉진을 위한 통합지침 1 부. 끝.

중소기업의 자유무역협정 활용촉진을 위한 통합지침

관세청 FTA집행기획관실, 2011. 5. 4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특례법” 이라 한

다), 관세법, 관세사법에서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유무역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 활용이 미진한 중소기업의 협정 활용을 지원하고 원산지 관리능력을 구비하지 못한 원재료공급자의 원산지 관리를 지원하여 협정 활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출자”라 함은 물품을 수출신고 하는 자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의 책임이 있고 협정에서 정한 자료보관의 의무를 지며 원산지 검증의 대상이 되는 자를 말한다.
2. “최종제품 생산자”라 함은 수출자에게 수출물품을 공급하고 원산지소명서 또는 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하는 자를 말한다.
3. “원재료 공급자”라 함은 최종제품 생산자 또는 다른 원재료 공급자에게 원재료를 공급하고 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하는 자를 말한다.
4. “생산자”라 함은 최종제품 생산자 또는 원재료 공급자를 말한다.
5. “원산지소명서”라 함은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의 기초자료로 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 서식을 말한다.
6. “원산지확인서”라 함은 수출물품 또는 수출물품을 구성하는 원재료의 원산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로 생산자가 발급하며 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을 말한다.
7. “원산지 증빙서류”라 함은 재료명세서, 원산지확인서, 원산지소명서 등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6. “관세사”라 함은 관세사법에 의한 관세사·관세법인을 말한다.
7. “협정활용률”이라 함은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다.

$$\text{협정활용률} = \frac{\text{특혜관세를 적용받는 수출금액}}{\text{특혜관세 대상품목의 수출금액}} \times 100$$

제2장 협정활용을 위한 기업 준비사항

제3조 (생산자 관련사항) ① 생산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비해야 한다.

1. 생산물품에 대한 재료명세서 작성과 생산물품 및 원재료에 대한 품목분류
2. 원재료를 공급한 다른 원재료공급자로부터 받은 원산지확인서. 다만, 원재료를 공급받은 자가 원산지소명서 등 원산지확인서를 증명하기 위한 자료에 대하여 원재료를 공급하는 자로부터 제출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3. 생산공정도. 다만, 생산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기 위한 생산공정도에 한 한다.

② 생산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세관장 또는 관세사에게 조력을 요청할 수 있다.

1. 생산물품과 재료명세서에 있는 원재료의 품목분류에 대한 정보
2. 원재료공급자로부터 받은 원산지확인서 항목의 적정성
3.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원산지 등에 관한 사전심사 신청서의 작성 방법 및 그 신청 절차
4. 원산지 증빙서류 보관 방법 및 절차

③ 생산자는 다른 생산자로 부터 원재료를 공급받은 경우에 해당 생산자에게 원산지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생산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원산지확인서 등을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생산자가 그 서류의 정확성을 세관장으로부터 확인 받고자 하는 때에는 원산지 증빙서류 확인신청서(이하 “확인신청서”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고 확인대상서류와 그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생산자가 생산물품에 대한 원산지, 품목분류, 원재료의 원산지 등에 관하여 판정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⑥ 생산자가 제5항에 따라 관세평가분류원장으로부터 생산물품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의 충족여부에 대한 사전심사서(이하 “원산지 사전심사서”라 한다)를 발급 받은 경우 그 사전심사서는 원산지확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원산지확인서로 사용할 수 있다.

⑦ 최종제품생산자는 수출자가 원산지소명서의 제출을 요청하는 때에는 그 서류를 작성하여 수출자에게 제출한다. 다만, 영업비밀 보호 등의 사유로 수출자에게 원산지소명서를 제출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으며 세관장은 원산지소명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그 정확성 여부를 수출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원산지소명서의 내용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⑧ 생산자는 다른 생산자가 원산지확인서의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자 상호연락처 및 발급하지 않은 사유 등을 관할세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⑨ 생산자는 원산지확인서 등 원산지 증빙서류를 협정에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제4조 (수출자 관련사항) ① 수출자 관련사항은 제3조 제1항에서 제5항까지, 제8항 및 제9항을 준용한다.

② 수출자는 생산자로부터 발급받은 원산지확인서 등을 참고하여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소명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수출자가 원산지 사전심사서를 발급 받고 그 사전심사서에 근거하여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신청서와 원산지 사전심사서 외에 다른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관세사 조력사항) ① 관세사는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력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서 제5호까지의 사항은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부터 서면위임을 받은 경우에 한 한다.

1. 재료명세서에 있는 원재료에 대한 품목분류
 2. 생산자 또는 수출자로부터 받은 자료를 근거로 하여 원산지확인서 작성 대행
 3. 생산자로부터 요청받은 확인신청서 작성 대행
 4.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원산지 증빙서류 보관 대행
 5. 수출자로부터 요청받은 업체별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연장) 신청서 (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연장) 신청서 (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 서식) 작성 대행
- ② 제1항제4호에서 정한 원산지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있는 관세사가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수출통관사 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3조제2항을 준용한다.
- ③ 제1항제4호에 따라 원산지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있는 관세사는 협정에서 정한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세사는 원산지 증빙서류를 마이크로필름, 광학디스크 등 전산매체에 보관할 수 있다.

제3장 협정 활용 지원을 위한 세관장 지원 사항

제6조 (지원대상 기업선정) ① 세관장은 관할지역내에 있는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협정의 활용에 대한 실태를 분석한다. 이 경우 협정의 활용률에 관한 기초자료는 관세청 자유무역협정 집행기획관실에서 제공하고 협정의 활용률은 세관장이 산출한다.

②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컨설팅을 받을 대상기업을 선정하되 해당 기업의 수출입을 대행하고 있는 관세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세사의 참여여부를 확인한 후 참여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관세사와 공동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실태 분석에 의한 경우

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컨설팅 대상 기업을 선정한 경우에는 기업관리카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관리(전산프로그램에 의한 관리를 포함)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이 기업관리카드를 작성하는 때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라 한다)와 기업의 실태, 현황 등에 대한 의견교환을 통하여 이를 작성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기업에 대하여 협정의 활용에 대한 안내문(별지 제3호 서식)을 발송한다.

⑥ 세관장은 관할구역 내에서 활용률이 저조한 기업에 대해 교육 및 컨설팅 계획 등 협정의 활용률 제고방안을 수립하여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컨설팅 절차) ① 세관장은 컨설팅 대상기업을 선정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비한다.

1. 해당 기업의 수출입 실적 등 실태 분석

2. 해당 기업의 컨설팅, 교육 이수 여부에 대한 확인과 원산지 관리 실태 파악
3. 컨설팅 일정 확인 및 해당기업에 대한 컨설팅 실시 예정 공문 발송
4. 거래 관세사의 참여여부 확인을 위한 공문발송

- ② 세관장은 해당 기업을 방문하여 컨설팅을 실시한다. 이 경우 2인 1조로 현장방문을 원칙으로 하되 기업 규모, 컨설팅의 난이도 등에 따라 컨설팅 수행을 위한 담당 인원 및 컨설팅 장소를 해당기업과 협의하여 조정한다.
- ③ 세관장은 컨설팅을 실시한 후에는 해당 컨설팅에 대한 결과보고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한다.
- ④ 세관장은 컨설팅을 제공한 기업의 컨설팅 결과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되 그 활용률이 저조한 기업에 대해서는 실태분석 및 행정지도를 실시한 후 기업관리카드에 점검내용을 기록한다.
- ⑤ 세관장은 해당기업의 생산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협정의 활용에 필요한 원산지 전문지식 등 적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⑥ 세관장은 해당 기업의 원산지 서명카드, 원산지증명서 발급대장 등 서류보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교육하고 해당 기업의 요청이 있는 경우 상대국의 품목분류 번호와 통관절차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 한다.

제8조 (컨설팅 내용) 세관장은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컨설팅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재료명세서 작성, 제조공정도 등의 비치여부와 기장(記帳)의 정확성 확인
2. 원재료와 생산제품에 대한 품목분류의 정확성 여부 검토 또는 확인방법 안내
3. 원가 및 부가가치 비율의 산정방법 안내 또는 확인
4. 생산 또는 수출물품에 대한 협정별 원산지 결정기준 및 확인방법 안내
5. 해당 기업이 작성하거나 발급받은 원산지 확인서 등의 정확성 확인
6. 원산지 확인을 위하여 관련된 생산자에게 원산지확인서 등의 요청
7. 원산지 관리 매뉴얼 또는 원산지 관리시스템의 운영여부 확인
8. 원산지관리 전담자 지정여부
9. 원산지 증빙 서류 관리상태

제9조(확인신청서 처리 방법 등) ① 세관장이 제3조제4항에 따른 확인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에는 확인신청서와 확인받고자 하는 서류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하고 그 내용이 특례법령에서 정한 작성양식, 원산지 결정기준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에 별표 제1호의 「확인필」을 날인한다.

-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확인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물품의 원산지 확인과 관련된 생산자에게 원산지확인서 등 원산지증빙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세관장은 제3조제8항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원산지확인서 발급 신고센터」를 자체 실정에 맞게 운영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 대한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운영일지(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 (협정활용 실무교육) ① 세관장은 관할구역에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협정 활용을 할 수 있는 실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 ② 세관장은 교육기간·과정·장소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그 운영실적 보고서(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반기별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③ 세관장은 교육을 실시한 후에 그 수료자를 대상으로 설문서(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하고 교육 효과와 개선사항 등을 파악하여 향후 교육에 활용한다.
- ④ 세관장은 교육에 참석한 기업을 기업관리카드에 기록하고 협정을 활용하는 정도 등을 점검하고 수준별 교육에 활용하고 관리한다.
- ⑤ 세관장은 교육 실시현황 등을 반기별로 정리하고 그 결과를 운영 실적에 기재하여 관세청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지자체 등과 협력사항

제11조 (지자체 등과 협력) ① 세관장은 관할기업을 대상으로 협정의 활용에 관한 교육·컨설팅·시범사업 등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지자체와 상호양해각서(MOU)를 체결하거나 협정을 담당하는 부서와 협력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지자체의 협정을 담당하는 부서가 기업에 대한 수출 정보 등을 요청한 경우에는 단순 경미한 정보는 자체적으로 제공하고, 수출금액 등 기업의 영업비밀과 관련된 정보는 관세청장과 협의한 후 제공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지자체, 민간무역관련기관 등과 공동으로 특정 산업에 대한 개별 성공사례를 발굴하여 홍보한다.

제12조 (지역별 시범사업 실시) ① 세관장은 관내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산업군별 수출입 현황, 협정활용률 등을 분석하여 분기별로 특정 업종을 선정하여 협정의 활용에 관한 시범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이 시범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목표를 설정하고 생산물품에 대한 원산지 관리방안을 교육하여 대상기업이 협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시범사업이 종료된 후에는 시범사업 결과보고서(별지 제8호 서식)를 작성하여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과 태 료

제13조 (과태료) 제8조제1항제6호 또는 제9조제2항에 따라 세관장의 원산지 확인을 위한 자료를 요청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제출을 하지 아니한 자는 특례법 제24조(과태료)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6장 보 칙

제14조 (실적관리 및 보고체계 유지) 세관장은 동 지침과 관련한 추진실적 및 지역별로 협정의 활용률을 관리하고, 동 지침에 따른 보고는 매월 5일까지(분기별 보고는 다음 분기 5일까지) 그 결과를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 본 지침은 2011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36.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직접운송 확인방법

□ 목 적

- FTA 협정관세 대상 상품이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 협정관세 적용 요건으로 요구되는 **운송경로, 세관통제 및 비조작 등의 직접운송요건 확인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함**

□ 수입물품 직접운송요건 확인방법

【기본원칙】

원칙적으로 직접운송요건 확인은 수입신고수리 후에 하되, 예외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아래 방법에 따라 전체 운송경로, 세관통제, 비조작 여부 등의 직접운송 요건을 확인

- (협정우선 적용) 개별 협정과 국내법령에서 요구하는 직접운송요건과 입증서류가 다른 경우 협정을 우선하여 적용

※ 협정과 국내규정에서 요구하는 직접운송 입증서류(첨부1 참조)

- (입증서류 요구기준) 제3국 장기간 보관 또는 컨테이너 개폐 등으로 물품 조작 위험이 높은 경우에 한하여 직접운

송 입증서류 요구

- 제3국 단순 경유와 같이 비당사국에서 물품의 조작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입증서류 요구하지 않음

* (예) 제3국 경유 전후에 컨테이너 봉인 번호가 동일한 경우

- (전체 운송경로 확인방법) 협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일 운송서류 또는 복합 운송서류로 전체 운송경로를 확인
 - 단일 운송서류: 출발지에서 운송인이 출발지, 경유지, 도착지 정보를 모두 기재한 단일의 통과선하증권 등
 - 복합 운송서류: 단독으로 또는 같이 제시되었을 때 물품이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이동하는 전체 운송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운송서류로서 항공화물운송장, 육상운송증, 선하증권, 복합(결합)운송 문서 등이 있으며 이에 한정되지 않음

〈협정별 전체 운송경로 확인방법 (예시)〉

전체 운송경로 확인방법	해당 협정
단일 운송서류로 확인	인도, 베트남, 중미, EU, 터키, APTA
복합(결합) 운송서류로 확인	중국, 아세안, 페루, 칠레
입증서류를 정하지 않음	싱가포르, EFTA, 콜롬비아,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미국

- (세관통제 및 비조작 여부 확인방법) 협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통제 또는 비조작 여부를 확인
 - 세관통제 또는 비조작 확인서류: 세관의 비조작증명서, 재수출증명서, 보세구역반출입증 등이 있으며 이에 한정되지 않음

〈협정별 세관통제 또는 비조작증명 확인방법 (예시)〉

세관통제 또는 비조작증명 확인방법	해당 협정
세관 또는 권한있는 다른 기관 발행 서류	중국, 인도, 싱가포르, 중미, 페루, EU, 터키, 콜롬비아
수입자가 제출하는 정보 또는 상업서류로 확인	싱가포르
입증서류를 정하지 않음	아세안, 베트남, 칠레, EFTA,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미국, APTA

※ 첨부 1: 협정과 국내규정에서 요구하는 직접운송 입증서류

첨부 2: 실무에서 활용 가능한 직접운송 입증 서류(예시)

첨부 3: 직접운송 관련 대법원 판례

첨부 4: 직접운송 관련 주요 민원 회신 사례

첨부1 협정과 국내규정에서 요구하는 직접운송 입증서류

Ⅰ 협정에서 요구하는 직접운송 요건 및 입증서류

구분	협정	비당사국 경유 요건				비당사국 경유시 직접운송 입증서류		
		세관통제	사유	불인정	인정 (공통) 하역, 재선적, 상품보존 및 운송필요공정	전체운송경로	세관 통제	비조작
FTA 특혜	중국	○	지리·운송	거래·소비	운송 상의 이 유로 인한 화 물의 분리, 일시보관	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 또는 전체운송경로가 포함 된 복합(결합) 운송서류 등 (통과·환적 또는 보관·컨테이 너 적출 시)	관세당국 또는 권한있 는 기관 발행 서류 (보관·컨테이너 적출 時)	
	인도	○		거래·소비		선하증권 또는 화물운송장	세관통제 서류	
	아세안		지리·운송	거래·소비		통과선하증권*	직접운송을 증빙하는 서류	

구분	협정	비당사국 경유 요건				비당사국 경유시 직접운송 입증서류		
		세관통제	사유	불인정	인정 (공통) 하역,재선적, 상품보존 및 운송필요공정	전체운송경로	세관 통제	비조작
	베트남		지리·운송	거래·소비		통과선하증권	직접운송을 서류	증빙하는
	싱가포르	○			상자포장, 포장 재포장		세관 문서 사본	수입자가 제출하는 정보 또는 상업서류
	중미	○			재포장	단일운송서류, 통과운송서류	관세당국 또는 권한 있는 기관 서류	수입국 세관을 만족시키 는 서류
	페루	○		거래·교역	재포장	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 복합 (결합)운송서류 등 (경유·환적 또는 보관 時)	관세당국 또는 권한 있는 기관 서류(보관時)	
	칠레	○			상자포장, 포장 재포장	송장, 선하증권, 화물운송장 등		
	EU	○				단일운송서류	관세당국 발행 서류	환적 또는 보관 상황 증거
	터키	○				단일운송서류	관세당국 발행 서류	환적 또는 보관 상황 증거
	EFTA	○			탁송품 분리, 파 이프라인 운송	요청 시 수입국 법령에 따름		
	콜롬비아	○		거래·소비	운송 상의 이유 로 인한 분리		관세당국 발행 서류	환적 또는 보관 상황 증거
	뉴질랜드	○			보관, 운송 상의 이유로 인한 분리	적절한 서류		
	호주	○			재포장, 재라벨 링, 운송 상의 이유로 인한 분리, 보관			
	캐나다	○		거래·소비	운송 상의 이유 로 인한 분리			
	미국	○						
일반 특혜	APTA		지리·운송	교역·소비	하역, 재선적 및 보전 필요 공정	통과선하증권	직접운송을 서류	증빙하는

㉔ 국내규정에서 요구하는 직접운송 요건 및 입증서류

구분	협정	비당사국 경유 요건				대표적인 직접운송 입증서류		
		세관통제	사유	불인정	인정	전체운송경로	세관 통제	비조작
FTA 특혜		○	운송		운송, 하역, 선적, 포장 및 보전 필 요 공정	선하증권 등 운송서류 일체	세관통제 입증서류	비조작 입증서 류
일반 특혜	APT A	○	지리· 운송		하역, 재선적 및 보전 필요 공정	택일		

첨부2 실무에서 활용 가능한 직접운송 입증 서류(예시)

구분	유형	예시
1	전체 운송경로	- (통과)선하증권 - 항공운송장 - 육상운송증 - 복합(결합) 운송서류
2	세관 통제	- 세관발행 비조작증명서 - 세관발행 재수출확인증
3	비조작	- 세관발행 보세구역 반출입확인증 - 기타 협정에서 정한 직접운송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3 직접운송 관련 대법원 판례
(2016두57809, 2019.1.17.)

- (쟁점) APTA 협정 적용에 **통과선하증권**이 필수 서류인지 여부
- (판결요지)
 - (관련 법령)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8조는 직접운송 입증 서류로서 ‘수출참가국에서 발행된 통과 선하증권’ (1호), ‘수출참가국의 발행당국이 발행한 원산지증명서’ (2호), ‘해당 물품과 관련된 상업 송품장 원본’ (3호), ‘제2항을 준수하였음을 증명하는 보충 서류’ (4호)를 들고 있음
 - (대법원 판단) 상기 규칙 제8조는 직접운송 증명서류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신빙성을 높게 보는 대표적인 증명서류들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를 제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신빙성 있는 자료로 대체할 수 있음
 - ‘수출참가국에서 발행된 통과 선하증권’을 발급받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신빙성 있는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직접운송 간주 요건의 충족을 증명할 수 있고, 단지 위 ‘통과 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형식적인 이유만으로 직접운송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단정하여 협정세율 적용을 부인할 수는 없음
- (시사점) 본 판결은 APTA 협정과 관련된 것이나 다른 FTA 협정에서도 신빙성 있는 자료로서 직접운송 입증 가능

첨부4 직접운송 관련 주요 민원 회신 사례

1 (‘ 20.5.18)	【한-EU】 스웨덴에서 트럭으로 프랑스로 운송 후 미국(찰스톤)에서 다음 각 경우의 과정을 거쳐 한국으로 운송할 때 직접 운송 인정 여부 ① 미국에 도착한 후 수입통관 없이 즉시 반출 ② 미국에 도착한 후 수입통관하여 수출통관(관세환급)
○ 비당사국인 미국을 경유하는 단일탁송화물은 미국에서 자유로운 유통을 위해 반출되지 않으며, 협정에서 정한 공정(하역, 재선적, 보존 공정) 이외의 공정을 거치지 않아야 합니다. 이 경우에 직접운송충족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다음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제3국에서 원산지 제품의 환적 또는 보관과 관련된 상황의 증거 나. 수출 당사자에서 경유국을 통한 통과를 다루고 있는 단일 운송서류, 또는 다. 경유국의 관세당국이 발행한 다음의 증명서 1)제품의 정확한 설명을 제공하는 것 2)제품의 하역 및 재선적 일자, 그리고 적용 가능한 경우, 선박명 또는 사용된 다른 운송수단을 기재하는 것, 그리고 3)제품이 경유국에 머물러 있는 그 상태를 증명하는 것	

2 (' 20.4.22)	【한-아세안】 내륙 국가인 라오스에서 출발한 상품이 태국까지 내륙운송된 후 환적되어 우리나라에 도착한 경우 직접운송 입증 방법 ○ 직접운송 충족여부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음 - 1. 수출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 2. 원산지증명서 3. 상품의 상업송장 원본의 사본, 그리고 4. 그 밖에 부속서3의 제9조(직접운송)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증거인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그 서류 ○ 상기 통과선하증권은 “수출당사국에서 수입당사국으로 이동하는 전체 운송여정을 담고 있는 모든 운송서류” 임
-------------------	--

3 (' 20.4.23)	【한-EFTA】 스위스에서 출발, 비당사국인 독일 경유하여 우리나라로 수입시 직접운송 입증 방법(EU T1서류로 입증 가능 여부) ○ 비당사국을 경유할 경우, 전체 운송경로를 확인 할 수 있는 운송서류 또는 비당사국 세관의 감시 하에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유국 세관의 적절한 증빙서류를 구비한 경우 직접운송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 귀하가 예시한 EU 지역에서 발행되는 환적증명서(T1)는 EU 회원국 관세영역에서 비회원국 상품의 이동을 허용하는 서류로서 한-EFTA 협정 상 EU 회원국을 경유하는 EFTA 상품의 직접운송 증빙서류로 활용 가능할 것임
-------------------	--

4 (' 20.4.16)	【한-미】 예정에 없던 중국에서의 환적을 하게 되어 통과선하증권의 발행 없이 “미국 → 중국 → 한국”의 경로로 운송되는 미국산 물품이 한-미 FTA 협정을 적용받기 위한 요건 ○ 한-미국 FTA 협정은 원산지상품이 비당사국을 경유하는 경우 그 상품이 하역·재선적 또는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거나 당사국의 영역으로 운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공정 이외에, 양 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이후의 생산이나 그 밖의 어떠한 공정이라도 거치지 않고 그 상품이 비당사국의 영역에서 세관당국의 통제하에 머물러 있는 경우에는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귀하가 예시한 다음의 서류 등은 그 내용에 따라 한-미 FTA 협정과 국내 규정에서 요구하는 직접운송 입증서류로서의 인정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 음 - ① 선박회사의 “부산항 미기항 및 스케줄 지연 안내” 서한 ② 컨테이너가 청도항에서 양륙·환적되어 부산항으로 운송될 예정이라는 선박회사의 서한 ③ 물품을 적재한 선박회사의 컨테이너 트래킹 정보(뉴욕항 적재·출항 → 청도항 환적 → 부산항 입항·양륙 과정에서 화물이동상황에 대한 상세정보) ※ 청도항에서 환적되어 부산항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출발 당시의 컨테이너 번호와 봉인번호도 변경되지 아니하였음
-------------------	---

5 (' 20.3.19)	【최빈국】 미얀마에서 생산한 물품을 싱가포르를 경유하여 우리나라로 운송하는 경우 “The cargo will be via Singapore.” 라는 문구가 기재된 선하증권으로 특혜관세 적용 가능한지 여부 ○ 최빈특혜를 받고자 하는 물품이 비당사국을 경유하여 우리나라로 운송되는 경우 ①수출당사국에서 발행된 운송서류상에 선적항·경유지·도착항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운송서류에 기재된 물품에 대해 운송인이 전운송구간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고 발행한 운송서류(통과선하증권) 또는 ②비당사국 관세당국에서 동 물품이 관세법에서 정한 공정(하역, 재선적, 보존공정)이외의 공정이 없었음을 확인하고 발행한 증명서(예:비가공증명서 등)로 직접운송요건을 충족함을 입증할 수 있음 ○ 귀하가 예시한 선하증권 상의 기재사항(“The cargo will be via Singapore.”)은 경유지의 표시 방법이 될 수 있음
-------------------	---

6 (' 19.11.15)	【한-중】 중국에서 발행된 B/L에 물품 수령지(중국), 선적항(홍콩), 도착항(한국) 기재된 경우 직접운송요건 충족 가능여부
--------------------	---

- 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이 홍콩을 경유하여 우리나라로 운송되는 경우 수출국에서부터 수입국까지 전체 운송경로 정보(출발지, 경유지, 도착지), 화물 품목 및 수량 등의 상세한 선적정보가 기재되어있고 최초의 운송인이 모든 구간의 운송에 대해 책임지고 발행한 통과선하증권을 구비하였다면 비가공증명서 등의 서류 없이 직접운송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음

【한-중 FTA 협정 상 직접운송 입증서류】

- (통과 또는 환적시) 수출 당사국에서부터 수입당사국까지의 전체 운송경로가 포함된 복합운송이나 결합운송 서류
- (보관 또는 컨테이너 적출시) 수출 당사국에서부터 수입 당사국까지의 전체운송경로가 포함된 운송서류와 비당사국 관세당국의 증빙서류

37. 품목분류번호 해석 상이 등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

제정 2016. 6. 23.
개정 2017. 6. 12.
개정 2018. 7. 9.
개정 2020. 8. 4.

I. 목 적

- 본 지침은 자유무역협정(FTA) 집행 및 일반특혜관세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와 협정상대국의 품목분류번호(이하 “HS번호”라 한다)가 다르거나 원산지증명서의 품명과 송품장의 품명이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대한 처리절차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음

II. 업무처리 지침

1. 협정상대국과 수출물품의 HS번호가 다를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법 및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요령

가.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

- 1) 협정상대국의 HS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서류를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 제출할 경우 협정상대국의 HS번호를 기재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 가능(2020.8.4. 개정)
- 2) 위 1)에서 규정한 공식서류는 당해품목에 대한 협정상대국 정부의 공식적 의견서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 가) 수입신고필증
 - 나) 품목번호 확인서
 - 다) 사전심사결정서(advance ruling)
 - 라) 협정상대국 관세·품목분류표에 명확하게 규정된 품목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정보
 - 마) 기타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3) 위 1)에서 규정한 공식서류의 제출 관련, 동일한 HS번호의 물품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초 발급신청 시에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그 이후에는 최초 C/O 발급번호를 기재*하여 증빙서류 제출 생략 가능. 다만, 동일물품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서류제출 필요 (2017.6.12. 신설)

* (세관) ‘메모’ 란, (상공회의소) ‘발급기관 전달사항’ 란

<예시>

동 물품은 2017년 0월 0일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발급번호: 0000-00-00000000, 발급코드: 0000-0000) 시 상대국 HS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서류를 제출한 물품과 동일한 HS번호의 물품이므로 증빙서류의 제출을 생략함

- 4) 위 1)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와 협정상대국의 HS번호로 원산지 결정기준이 충족되어야 함. 다만, 협정상대국 HS번호의 원산지결정기준만 충족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되, 수출자는 협정상대국에서 HS번호를 수출국 HS번호로 변경하여 원산지검증 요청 시 원산지결정

기준 불충족 위험이 있어 주의 필요(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는 협정상대국 HS번호로만 원산지결정기준이 충족되면 가능)(2018.7.9. 신설)

나.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요령

- 1) “1-가-2)”에서 정한 서류로 HS번호가 다름이 확인되고 우리나라 HS번호로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품목에 대해 협정상대국 HS번호의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고 협정상대국 HS번호로 추가 인증 처리(2020.8.4. 개정)
2. 협정상대국에서 발급·작성되는 원산지증명서의 HS번호와 수입신고서의 HS번호가 다른 경우 협정(특혜)관세 적용업무 처리 요령 (2020.8.4. 개정)

가. ‘HS번호’가 원산지증명서의 필수항목이 아닌 경우

- 1) ‘HS번호’가 원산지증명항목이 아니므로 원산지증명서상의 ‘HS번호’와 무관하게 협정관세 적용
- 2) 관련협정
 - 가)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한-EU FTA)
 - 나)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한-EFTA FTA)
 - 다) 터키와의 협정(한-터키 FTA)
 - 라) <삭 제>(2018.7.9.)

나. ‘HS번호’가 원산지증명서의 필수항목인 경우

- 1) 원산지증명서의 HS번호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이 수입신고서의 HS번호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협정(특혜)관세 적용(2020.8.4. 개정)
- 2) 관련협정
 - 가)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한-아세안 FTA)
 - 나) 미국과의 협정(한-미 FTA)
 - 다) 칠레와의 협정(한-칠레 FTA)
 - 라) 인도와의 협정(한-인도 CEPA)
 - 마) 싱가포르와의 협정(한-싱가포르 FTA)
 - 바) 중국과의 협정(한-중 FTA)
 - 사) 베트남과의 협정(한-베트남 FTA)
 - 아) 페루와의 협정(한-페루 FTA)
 - 자) 뉴질랜드와의 협정(한-뉴질랜드 FTA)
 - 차) 호주와의 협정(한-호주 FTA)
 - 카) 캐나다와의 협정(한-캐나다 FTA)
 - 타) 콜롬비아와의 협정(한-콜롬비아 FTA)
 - 파) 중미와의 협정(한-중미 FTA 다만, 협정 발효일부터 적용한다.) (2018.7.9. 신설)
 - 하)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2018.7.9. 신설)

3) 다음의 경우 사안별로 판단하여 협정(특혜)관세 적용 등 처리(2020.8.4. 개정)

- 가) 원산지증명서 HS번호의 원산지결정기준이 수입신고서 HS번호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 협정(특혜)관세 적용 (2018.7.9., 2020.8.4. 개정)
(적용예시)

원산지증명서 HS번호의 원산지결정기준	수입신고서 HS번호의 원산지결정기준	판 단 근 거
완전생산기준	완전생산기준 또는 역내가치발생기준 또는 세번변경기준	·수출국에서 완전생산된 물품이므로 원 산지제품에 해당

역내가치발생기준 40%	역내가치발생기준 35%	·역내가치기준 35%를 초과하므로 원산지제품에 해당
역내가치발생기준 40%	(선택기준) 역내가치발생기준 40% 또는 세번변경기준	·역내가치기준 또는 세번변경기준 중 어느 하나의 기준을 충족하면 원산지제품에 해당

나) 원산지증명서 HS번호의 원산지결정기준이 수입신고서 HS번호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충족여부 확인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원산지증명서 보완 후 협정(특혜)관세 적용. 다만, 세관장이 협정상대국 발급기관의 정정발급 거부 등으로 원산지증명서의 보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특혜)관세 적용 처리 후 수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원산지조사 부서에 원산지조사 의뢰 (2018.7.9. 신설, 2020.8.4. 개정)

(적용예시)

원산지증명서 HS번호의 원산지결정기준	수입신고서 HS번호의 원산지결정기준	판 단 근 거
역내가치발생기준 40%	(조합기준) 역내가치발생기준 40% 및 세번변경기준	·세번변경기준 충족여부 확인 불가
세번변경기준	세번변경기준	
역내가치발생기준 30%	역내가치발생기준 40%	·수입국 원산지결정기준 불충족
세번변경기준	완전생산기준	

다. 원산지결정기준에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1) 역내가치발생기준을 충족하면 원산지제품에 해당하므로 ‘HS번호’가 다른 경우에도 특혜관세 적용처리

2) 적용 대상

가) <삭 제>(2018.7.9.)

나) 최빈개발도상국 일반특혜관세

다) 개발도상국간 특혜무역제도의 양허관세(GSTP)

라) 세계무역기구협정 개발도상국간의 양허관세(TNDC)

3. 원산지증명서의 품명과 송품장의 품명이 다른 경우 협정(특혜)관세 적용업무 처리 요령(2020.8.4. 개정)

가. ‘품명’은 물품의 동일성을 확인하기 위한 중요한 정보로서 원칙적으로 원산지증명서와 송품장의 ‘품명’은 동일해야 함

나. 위 가.에도 불구하고 무역관행상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품명’과 원산지증명서의 ‘품명’이 다른 경우에도 동일한 물품임이 확인 된다면 협정(특혜)관세 적용처리(2020.8.4. 개정)

(적용예시)

원산지증명서의 품명	송품장의 품명	처리방법
machinery parts	Bolt, nut	협정(특혜)관세 적용

Ⅲ. 시행일자 : 2020. 8. 4.

38. 품목분류번호 해석 상이 등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 해석 기준 통보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2348, 2020.10.30)

1. 관련 지침

○ 품목분류번호 해석 상이 등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1774(2020.8.4. 시행)

2. 상기 지침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우리나라와 협정 상대국 간 HS 번호 해석이 상이한 경우 신청인이 발급기관에 제출하는 협정 상대국의 HS 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서류의 범위에 해당 수출물품이 협정 상대국 관세·품목분류표에 규정된 품목임이 입증되는 해당 국가 정부기관 홈페이지 등록정보 등도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39. 협정관세 사후적용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실) ' 21. 3. 18. 제정

이 지침에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는 각각 ‘FTA관세법’, ‘FTA관세법 시행령’, ‘FTA관세법 시행규칙’, 및 ‘FTA 특례고시’라 지칭한다.

I. 목 적

- ☐ 본 지침은 FTA관세법 제9조에서 규정한 협정관세 사후적용 업무 등의 집행과 관련한 처리절차를 명확히 하는데 목적이 있음

II. 적용 대상

- ☐ FTA관세법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자가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았으나, 협정관세 적용요건 위반, 원산지증빙서류의 오류, HS번호 등 협정관세 적용 내역의 변경으로 인해 협정관세 적용을 재신청하거나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의 정정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물품

III. 업무처리 지침

1. 일반원칙

- ☐ 협정관세를 적용받았으나 원산지증빙서류 미소지 등 협정관세 적용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세액의 보정·수정 등을 통해 부족세액을 납부한 수입자는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지 못한 수입자’로 볼 수 있음
- ☐ 세관장은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수입물품에 대해 보정·수정·경정 등 관세법 제38조의2 또는 제38조의3의 규정에 따른 세액의 정정과 관련한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원산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내역이 변경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수입자에게 FTA관세법 제16조에 따라 원산지증빙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협정관세 적용신청서를 정정하도록 안내할 수 있음

2. 협정관세 적용의 재신청 : 세액의 정정으로 협정관세 적용 신청이 취소되어,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

가. 적용대상 사례

- 1) 수입자가 유효한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지 아니하고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여 적용받은 경우

* (예시1) 협정관세 적용신청 시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았거나, 수입자가 이를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

* (예시2) 협정관세 적용신청 시 해당하는 협정상의 원산지증명서가 아닌 다른 원산지증명서를 소지한 경우

- 2) 이미 적용받은 협정이 아닌 다른 협정으로 협정관세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

* (예시) 베트남에서 수입된 물품에 대해 한-아세안 FTA에 따른 협정관세를 적용받았으나, 이를 취소하고 한-베트남 FTA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 3) 1) 또는 2)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수입자가 부족세액을 납부하여 적용받은 협정관세를 취소하고 다시 협정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나. 협정관세 사후적용 절차

- 1) 수입자는 관세법 제38조의2 또는 제38조의3의 규정에 따른 보정·수정·경정 등의 절차를 통해 부족세액과 함께 FTA관세법 제36조에 따른 가산세를 납부
- 2) 수입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적용받고자 하는 협정의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를 갖추어 FTA관세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관장은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처리
- 3) 협정관세 사후적용에 따라 납부할 관세가 없거나, 관세의 감액이 발생하는 경우 수입자는 이에 해당하는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음

3.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의 정정 등

- 3-1.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여 적용받았으나 원산지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내역의 변경 등으로 협정관세 적용신청서를 정정하는 경우

가. 적용대상 사례

- 1) 수입자가 원산지증빙서류 또는 협정관세 적용신청 내역의 오류를 계약상대국의 수출자나 세관장에게 통보받거나, 이를 확인하고 보정·수정·경정 등의 절차를 통해 부족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 2) 수입자가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의 기재사항 중 수입자, 수출자 및 생산자의 정보에 해당하는 내용이 변경되었음을 알고 FTA관세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라 세관장에게 변경사항을 통보하는 경우
- 3)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물품에 대해 세관장이 수입자가 신고한 HS번호와 다른 HS번호를 적용한 결과, 원산지증명서 HS번호의 원산지결정기준이 변경된 HS번호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세율차 발생 여부 무관)

* (예시) 수입신고 시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물품이 수리 후 분석대상으로 지정되어 분석한 결과 수입신고한 HS번호와 다른 HS번호로 결정되는 경우

※ 변경된 HS번호로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HS번호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확인 방법은 「품목분류번호 해석 상이 등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 20. 8. 4. 개정)」 참조

나. 협정관세 적용신청 내역 변경 신청 및 심사 절차

- 1) 협정관세 적용신청 내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수입자는 FTA특례고시 별지 제1호 서식의 협정관세 적용신청 정정 신청서(전자문서)와 함께 원산지증명서를 포함한 관련 증빙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
- 2) 세관장은 제출받은 서류를 심사*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수입물품이 해당 협정, 법령 등에서 정한 협정관세 적용 요건을 충족함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정관세 적용신청 정정을 승인

* FTA특례고시 제11조 ~ 제13조, 제18조 및 제19조 규정을 준용

- 3) 세관장은 협정관세 적용신청 정정신청서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수입자에게 제출받은 원산지증명서가 FTA관세법 시행규칙 제21조제5항에 따른 보완 요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일 이상 4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함

<FTA관세법 시행규칙 제21조제5항에 따른 보완요구 대상 원산지증명서 >

1. 인증수출자의 인증번호가 계약상대국으로부터 통보받은 인증수출자 번호체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2. 원산지증명서 작성자의 주소가 계약상대국이 아닌 다른 국가로 기재된 경우
3.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수입신고 내역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4. 원산지증명서의 기재사항이 협정 및 법에서 정한 기재방법과 상이한 경우

4) 세관장은 수입자가 제출한 자료로 원산지 등 해당 협정과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거나, 수입자가 세관장의 자료제출 및 보완요구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거나, 관할세관 원산지조사 부서에 검증의뢰 할 수 있음

5) 세액의 변경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38조의2 또는 제38조의3의 규정에 따른 보정·수정·경정 등의 절차를 준용

3-2.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물품의 수입신고 내역 등이 변경되더라도 수입물품의 원산지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가. 적용대상 사례

1) 수입자가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물품에 대해 세관장이 신고한 HS번호와 다른 HS번호를 적용하였으나, 수입물품의 원산지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세율차 발생 여부 무관)

* (예시)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수입물품에 대해 HS번호 6단위 이하가 변경되어 적용되는 협정관세율이 달라지는 경우

※ 변경된 HS번호로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HS번호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확인 방법은 「품목분류번호 해석 상이 등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 20. 8. 4. 개정)」 참조

2) 수입신고 내역의 변경, 원산지증명서의 기재 오류 등이 해당물품의 원산지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임이 송품장 등의 무역서류로서 확인되는 경우

* (예시1) 수입신고서의 품명, 규격, 과세가격 등이 변경되었으나, 물품의 원산지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 (예시2) 원산지증명서의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이 “CC” 로 기재되어 있으나, 협정에서 정하는 해당 물품의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이 “CTH” 인 경우

나. 처리 절차

1) 세관장은 수입물품의 원산지 지위에 합리적 의심이 없는 경우 수입자에게 원산지증빙서류 또는 협정관세 적용신청 정정신청서등의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함

2) 세액의 변경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38조의2 또는 제38조의3의 규정에 따른 보정·수정·경정 등의 절차를 준용

IV. 시행일자

□ 이 지침은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대상 해석과 관련한 회신 공문(기획재정부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92(* 21.3.4.)호)이 시행된 날 이후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결정·경정 포함)하는 수입물품에 대해 적용함

□ 「자유무역협정관세 재적용 처리 방법」(* 14.11.5.), 「자유무역협정관세 적용 관련 업무처리 지침」(* 15.6.25.), 「1국 2개 협정 적용 수입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사후적용 업무처리 지침」(* 18.8.14.)은 본 지침의 시행에 따라 폐지함

2. 한-EU FTA

1..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집행 지침 수정 시달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 2011-07-20(등록일자)

1.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1170(' 11.6.28)호와 관련입니다.
2.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집행 지침 내용 중 원산지신고서 인정범위와 관련하여 한-EU FTA 수석대표간 추가로 합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붙임과 같이 수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각 세관장께서는 상기 내용을 관내 수입자와 수입신고인 등에게 안내하시고 본부세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집행 지침 수정내용 1부.

2.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집행 지침(수정본) 1부. 끝.

한-EU FTA 집행에 관한 지침 수정내용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실)

현	행	수	정
2.4. 원산지 신고서의 인정 범위	2.4. 원산지 신고서의 인정 범위	2.4. 원산지 신고서의 인정 범위	2.4. 원산지 신고서의 인정 범위
① 해당물품 수출 당시에 인증수출자만 원산지신고서 작성 가능	① 해당물품 수출 당시에 인증수출자만 원산지신고서 작성 가능	① 해당물품 수출 당시에 인증수출자가 아니어도 원산지신고서 작성당시에 인증수출자이면 소급하여 작성·발급한 해당 원산지신고서도 유효	① 해당물품 수출 당시에 인증수출자가 아니어도 원산지신고서 작성당시에 인증수출자이면 소급하여 작성·발급한 해당 원산지신고서도 유효
- 수출 이후에 인증수출자로 지정된 경우, 지정일 이전에 수출한 물품에 대해 작성한 원산지신고서는 인정 불가	- 수출 이후에 인증수출자로 지정된 경우, 지정일 이전에 수출한 물품에 대해 작성한 원산지신고서는 인정 불가	※ FTA특례법에 따른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간(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내에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은 후 발급한 원산지신고서를 첨부	※ FTA특례법에 따른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간(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내에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은 후 발급한 원산지신고서를 첨부
※ EU측 인증수출자 지정일자는 의심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	※ EU측 인증수출자 지정일자는 의심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		
②~④ 기재생략	②~④ 기재생략	②~④ (현행과 같음)	②~④ (현행과 같음)

한-EU FTA 집행에 관한 지침

이 지침에서 ‘한-EU FTA’는 ‘협정’이라 하고, ‘한-EU FTA 협정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는 ‘한-EU FTA 원산지의정서’라 하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은 ‘FTA특례법’이라 함

1. 한-EU FTA 협정 집행 일반 사항

1.1. 인증수출자가 발급하는 원산지신고서

- 수출입금액(협정상 ‘전체가격’)이 6,0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인증수출자만이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신고서 작성 가능
- 6,000유로 초과여부는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에게 일시에 송부된 물품 또는 단일의 운송서류에 의하여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에게 송부된 물품가액을 기준으로 판단
- 운송서류가 없을 경우에는 송품장의 물품가액에 의하여 판단

- (원칙) 송품장의 물품가액 기준
- (예외) 단일탁송화물에 여러 송품장이 발행된 경우 운송서류에 표시된 물품가액 기준

[참조]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제16조 원산지신고서 작성 조건, 제1조 정의

- ※ EU 각 국가통화의 6,000유로 해당금액은 별도 게시
- 그 외의 경우에는 관세법 제18조(과세환율)를 적용

1.2. 인증수출자가 원산지의정서 부속서 2-가(원산지결정기준 부가규정)에 따라 발급하는 원산지신고서

※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부속서 2-가(원산지결정기준 부가규정)에 따른 물품은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 동 의정서 부속서 2(원산지결정기준)에서 정한 원산지기준과 다른 원산지기준에 의해 역내산으로 인정되는 물품으로, 물품별로 정해진 수출쿼터가 있으며 유럽집행위원회에 의해 선착순으로 운영됨

- 이 물품을 수출할 경우 인증수출자는 부속서3에 규정된 원산지신고서 문안에 아래의 문구를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함

“Derogation-Annex II(a) of Protocol...”

[참조]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부속서 2-가, 부속서 3

1.3. 인증수출자가 아닌 업체가 발급하는 원산지신고서

- 인증수출자가 아닌 업체는 6,000유로 이하의 수출물품에 대하여만 원산지신고서 작성가능
 - 이 경우 원산지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인증수출자번호는 생략되거나 빈칸으로 남겨두어도 되지만, ‘원산지’ 표기와 수기로 작성된 원본서명은 반드시 있어야 함

※ 인증수출자는 원산지신고서에 원본서명 생략 가능

[참조]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제16조 제5항

2. 수입물품 특혜통관 관련 사항

2.1. 협정발효 적용시점 : 협정발효일 오전 0시 신고분부터 적용

2.2. 협정발효일에 적용되는 경과규정

① 발효일 이후에 수입신고(협정관세적용신청)한 물품은 협정관세 적용 가능

- 협정에서 정한 서류*를 구비하여 협정관세 적용 수입통관 가능

※ 직접운송 입증서류, 소급하여 작성된 원산지신고서

- 기본세율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수입한 이후,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하여도 적용 가능

※ 협정발효일에 운송중에 있거나 보세구역에 반입되어 있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신고서의 유효기간은 발효일부터 12개월만에 유의

- 사후신청 가능기간 기산일이 협정과 FTA특례법과 다름

● [협정] 협정발효일부터 12개월내에 원산지신고서 등을 제출해야 함

● [특례법]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까지 협정관세사후신청 가능

☞ 경과규정 대상물품을 협정발효일 이후에 수입통관한 경우 증빙서류는 발효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세관에 제출해야만 유효

(예) 보세구역반입일 2011.6.27 발효일 2011.7.1 수입신고수리일 2011.7.15 인 경우 : 2012.6.30까지 세관에 접수된 증빙서류(원산지신고서 등)만 유효

② 인증수출자가 소급하여 작성한 원산지신고서가 있어야 적용 가능

- 경과규정 해당물품에 대하여는 원산지신고서를 소급발급할 당시에 인증수출자이면 적용 가능

※ 경과규정 해당물품이 아닌 경우(협정발효일의 다음날부터 운송된 물품)에는 동 지침 2.4조 ①항을 적용

- 원산지신고서는 발효일 이후에 소급발행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발효일 전에 작성한 원산지신고서는 인정 불가

- 원산지신고서 소급발행 방법은 제한이 없으나, 소급하여 발행된 원산지신고서임이 명백히 확인되도록 작성되어야 함

※ (예) 최초 발행된 송장에 원산지신고문구(작성일자 명기)를 추가 기재 발행, 원산지신고문구를 기재한

[참조]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제34조 통과 또는 보관중인 상품에 대한 경과규정, FTA특례법 시행령 제11조

2.3. 직접운송의 적용 범위

- ① 원산지 제품이라 해도 양 당사자간 직접적으로 운송되어야 협정관세 적용 가능
 - EU역내 국가이면 수출국과 선적국(출항국)이 다르더라도 EU역내에서 우리나라로 직접운송 된 경우에는 적용 대상
- ② 협정당사국 이외의 지역(역외 영역)을 경유하는 경우
 - 단일 탁송화물을 구성하는 제품이 부득이한 사유로 환적 또는 일시장치되는 경우 역외 영역을 경유해도 적용 가능, 하지만 이 경우 자유로운 유통을 위해 반출되지 않아야 하며 하역, 재선적 또는 양호한 상태로 물품을 보존하기 위한 공정을 수행한 경우에만 인정

[참조]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제13조(직접운송), 제1조 정의(탁송화물), FTA특례법 제9조 제2항

2.4. 원산지 신고서의 인정 범위

- ① 해당물품 수출 당시에 인증수출자가 아니었어도 원산지신고서 작성당시에 인증수출자이면 소급하여 작성·발급한 해당 원산지신고서도 유효
 - ※ FTA특례법에 따른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간(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내에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은 후 발급한 원산지신고서를 첨부
- ② 무역거래 관행상 송품장 등의 상업서류가 비당사국에서 다시 발행되는 경우에도 원산지신고서는 EU역내의 수출자*가 작성한 상업서류만 유효
 - * 6,000유로 초과 수출물품은 인증수출자만 발행 가능
 - 협정관세적용 신청시 EU역내 (인증)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적용 가능
- ③ EU역내에 있는 한 EU역내에서 수출물품의 생산국가와 수출자의 국가가 다르더라도 인증수출자가 수출하면 적용 가능
 - ※ (예) 독일 수출자가 원산지가 영국인 물품을 수출하여도 적용 가능
- ④ 원산지신고서 사본인정 여부
 - 원산지신고서는 세관에 원본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재 수입신고시 상업서류의 사본제출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사본을 제출하여도 협정관세 적용 가능
 - 이 경우 FTA특례고시 별표 6의 원산지증명서 사본 제출 스탬프를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 ※ 원산지신고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곤란하거나 물품의 원산지가 불명확한 경우 등 원본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원본을 제출받아 확인
 - 하지만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하는 경우에는 FTA특례고시 제3-3-2조에 따라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2.5. 원산지신고서 작성 관련 사항

- ① 단일탁송화물에 원산지 제품과 비원산지 제품이 혼재되어 수입된 경우, 원산지 제품의 가격이 6,0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증수출자만이 원산지신고서 발행 가능
 - ※ 비원산지 제품의 가격은 6,000유로에 산입하지 않음
- ② 원산지신고서에는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신고서 문안이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함
 - ※ 단순히 원산지, 인증수출자번호만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적용 불가
 - 원산지신고서는 송품장 등 상업서류*에 기재하여야 하며, 따로 작성된 원산지신고서는 적용 불가
 - * 송품장, 포장명세서, 선하증권, 인도증서 등
- ③ 협정에 표기되어 있는 언어별 원산지신고서 문안은 수출국가가 반드시 자국언어로 표기하라는 의미가 아니므로 협정에 표기되어 있는 문구를 사용하면 협정 적용 가능

※ (예) 프랑스 수출자가 영어 신고문안을 사용하여도 적용 가능

[참조]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부속서 3 원산지 신고서 문안

- ④ 수출물품의 원산지가 EU역내 다수인 경우의 원산지신고서
 - 원산지가 EU역내 여러 국가인 물품을 인증수출자가 수출하는 경우, 원산지신고서 문안의 원산지란에 'EU' 또는 'EC'로 기재하거나 각각의 원산지를 기재하면 적용 가능
- ⑤ 원산지 제품과 비원산지 제품이 혼재되어 수입되는 경우의 원산지신고서
 - 비원산지 제품이 달리 명확하게 표시되어 원산지 제품과 비원산지 제품을 확인할 수 있으면 협정관세 적용 가능

2.6. 원산지신고문안에 작성하는 원산지 표기

* [붙임 1] 한-EU FTA 협정 당사자 목록 참조

- ① 원산지신고문안에 작성하는 원산지표기 인정범위
 - 협정문에 있는 당사자명 (예)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가명 (예) GREECE
 - 당사자 국가의 ISO 코드 (예) IT
 - 'EU'표기, 'EC' 및 'European Community' 표기
 - 원산지가 영국인 제품 : 'UK' 표기 (협정문상 표기된 약어)
 - EU측 각 당사자 언어 협정문에 표현된 'EU' 표기
 - ※ (예) ·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말타 : 'UE' 표기
 -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 'ES' 표기
 - 그리스 : 'EE' 표기
 - 불가리아 : 'EC' 표기
- ② 안도라 공국을 원산지로 하는 제품(HS 25류 ~ 97류)과 산마리노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제품도 인정
 - ※ 안도라공국 : ANDORRA (ISO 코드 : AD)
 - 산마리노공화국 : SAN MARINO (ISO 코드 : SM)

[참조]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공동선언

- ③ '유럽연합당사자(EU)' 에는 세우타 및 멜리야 (Ceuta and Melilia)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세우타 및 멜리야 원산지 제품이 포함되었을 경우 'EU' 로 표기하는 것은 인정불가
 - 이 경우 'Ceuta and Melilia' 표기도 인정불가, 'CM'표기만 인정

[참조]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제31조 의정서의 적용

2.7. EU회원국의 인증수출자 번호 체계도

* [붙임 2] 한-EU FTA 협정 당사자 목록 참조

- EU회원국의 인증수출자 번호 체계도를 참조하여 번호체계가 불명확한 경우 관련자료를 제출받아 심사
 - 관련자료 심사 후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검증실시

2.8. 보세공장, 자유무역지역에서 수입하는 물품

- ① 보세공장 등 보세구역 및 자유무역지역에서 가공되어 국내로 수입되는 물품은 관세법 제189조 원료과세 해당물품인 경우 협정관세 적용 가능
 - 제품과세 물품은 동일성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적용 불가
- ② 자유무역지역과 보세구역(LME, BWT보관창고 등)에 장기간 보관하였더라도, 협정에서 정한 다른 기준을 충족하고 보관물품과 수입신고물품의 동일성이 확인되는 경우 그 물품의 입항일자가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이내이면 적용 가능
 - ※ 한-EU FTA에서 원산지증명은 발급일로부터 12개월동안 유효하지만 우리나라의 수입항에 도착일부터 협정관세 적용 신청일까지는 기간계산에서 제외

[참조]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제18조 제1항, FTA특례법 시행령 제10조 제5항

2.9. 수량별 차등협정관세 적용품목(TRQ 품목*) 관련 사항

* [붙임 3] 수량별 차등협정관세 적용품목(Tariff-Rate Quotas) 참조

- ① 선착순방식 관세율할당 품목 :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순서에 따라 정해진 수량까지는 무관세, 초과물량은 협정에 정해진 양허유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품목
※ [품명] 넙치(0303-39-0000), [이행1년차 In-Quota 수량] 800M/T
- 실제반입되는 수량이 수입신고수량과 같은 수량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서류제출대상으로 운영
※ 동 물품의 수입통관 집행에 관한 내용은 별도 지침 참조[별도지침1]
- ② 수입권 공매방식 품목과 수입권 배분방식 품목 : 주무부 장관의 위임을 받은 기관(추천대행기관)의 추천을 받은 후 해당 추천서를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품목
※ • 전자적 방식에 따른 ‘한·유럽 자유무역협정 관세율할당물량 적용 추천서(전산용)’는 Single-Window 시스템으로 확인
• 전산용 추천서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

[참조] 한-EU FTA 제2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 부록 2-가-1(대한민국), FTA특례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2.10 농림축산물 긴급수입제한조치 대상품목* 관련 사항

* [붙임 4] 농림축산물 긴급수입제한조치 대상품목 참조

- 농림축산물 긴급수입제한조치 대상품목은 기준발동물량을 초과하여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유럽연합 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가 적용되는 물품
- 기준발동물량을 초과하여 수입된 날의 다음날부터는 특별긴급관세조치가 시행되지만, 동 조치가 시행되기 전에 계약이 체결되어 운송중에 있는 물품은 제외됨
※ 동일 계약상의 물품이라 하더라도 운송중에 있지 않은 물품은 특별긴급관세조치 적용
- 특별긴급관세조치 시행일부터 수입신고되는 물품은 서류제출대상으로 운영 (※조치시행일에 FTA포탈 등에 해당사실 게시)
- 운송서류 등을 통해 출항일을 확인하여 조치시행일 이후에 운송되기 시작한 물품에 대하여 특별긴급관세 적용

[참조] 한-EU FTA 제3.6조 농업긴급수입제한조치

2.11. 협정관세적용신청서 확인 관련 사항

- 원산지가 EU당사국내 어느 한 국가가 아닌 경우 ‘⑩원산지’란에 ‘EU’로 입력 (※ 통관시스템 반영 시 별도 통보)
- ‘⑩원산지’가 EU당사국인 경우 ‘⑤원산지인증수출자’를 필수입력항목으로 변경

3. 수출물품 통관관련 사항

3.1. 수출신고서식 개정 사항 확인

- ① 수출자가 원산지신고서를 자율발급하는 경우 수출신고서에 발급여부(수출신고 후 발급하는 경우에는 발급의사)를 표시하도록 수출신고서 개정
- EU지역으로 수출되는 물품의 수출신고서는 ‘자율발급’ 표기 여부 확인

[별도지침1]

선착순방식 수량별 차등 협정관세품목 집행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 제2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 부록 2-가-1(대한민국)에서 선착순방식으로 운영하는 물품에 대한 집행절차를 규정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지침은 관세법 제154조에서 정한 보세구역에 장치한 이후 수입신고되는 물품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선착순 방식 관세율 할당물품의 통관절차) 한도수량에 도달하는 날의 전날까지는 선착순으로 수입신고 하는 물품에 적용한다.

제4조(한도수량 도달일의 잔여수량배분) ①한도수량에 도달한 날에 수입신고된 물품은 잔여수량을 그날에 수입신고된 수량(수입신고수리된 수량에 한한다)에 비례하여 각각 배분한다.

②제1항에 따라 배분한 이후에도 잔여수량이 있는 경우 한도수량도달일의 다음날 순서대로 제1항의 방식에 따라 배분한다.

제5조(배분에 따른 세액보정) 통관지세관장은 배분되어 조정된 수량을 수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수입자는 관세법 제38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세액을 보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산이자는 동조 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제6조(잔여수량의 게시) 제4조에 따른 배분절차가 완료되는 날까지 품목별 총수량·사용수량과 잔여수량을 관세청 홈페이지(FTA포탈) 등을 통해 게시한다.

※ [붙임 1] 한-EU FTA 협정 당사자 목록

구분	당사자 명	ISO 코드
대한민국	THE REPUBLIC OF KOREA	KR
	THE KINGDOM OF BELGIUM	BE
	THE REPUBLIC OF BULGARIA	BG
	THE CZECH REPUBLIC	CZ
	THE KINGDOM OF DENMARK	DK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DE
	THE REPUBLIC OF ESTONIA	EE
	IRELAND	IE
	THE HELLENIC REPUBLIC	GR
	THE KINGDOM OF SPAIN	ES
	THE FRENCH REPUBLIC	FR
	THE ITALIAN REPUBLIC	IT
유럽연합	THE REPUBLIC OF CYPRUS	CY
	THE REPUBLIC OF LATVIA	LV
	THE REPUBLIC OF LITHUANIA	LT
	THE GRAND DUCHY OF LUXEMBURG	LU
회원국	THE REPUBLIC OF HUNGARY	HU
	MALTA	MT
	THE KINGDOM OF THE NETHERLANDS	NL
	THE REPUBLIC OF AUSTRIA	AT
	THE REPUBLIC OF POLAND	PL
	THE PORTUGUESE REPUBLIC	PT
	ROMANIA	RO
	THE REPUBLIC OF SLOVENIA	SI
	THE SLOVAK REPUBLIC	SK
	THE REPUBLIC OF FINLAND	FI
	THE KINGDOM OF SWEDEN	SE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GB
	THE EUROPEAN UNION	

※ 안도라공국(ANDORRA, AD), 산마리노공화국(SAN MARINO, SM)

※ 세우타 및 멜리야(Ceuta and Meilia, CM)

[붙임 2] EU 회원국 인증수출자 번호 체계 : 부록 참조

□ 인증번호체계 : 국가명(/) 세관번호(/) 일련번호 등으로 구성

○ ‘/’ 가 예시에 사용된 경우 코드의 일부로 인정

※ [붙임 3] 이하 기재 생략

2. 철도복합운송 제품의 한-EU FTA 직접운송 증명에 관한 지침

I. 적용대상

- ☐ 철도를 이용한 국제복합운송* 제품으로서, 한-EU FTA 계약당사국이 아닌 여러 국가를 거쳐 환매, 환적 또는 일시적으로 창고 보관되었다가 수입된 제품 (이하 ‘철도복합운송 제품’ 이라 함)

* 두 가지 이상의 종류가 다른 운송수단 조합에 의해 이루어지는 국제운송

II. 철도복합운송 제품의 직접운송 증명 방법

- ☐ 「한-EU FTA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13조제1항의 요건 충족 확인을 위해 동조 제2항 각목의 서류 중 하나를 제출할 때, 나목의 ‘단일 운송서류’는 다음의 서류를 포함

- 수출국, 수입국 또는 경유국의 복합운송주선인이 전체 운송구간에 대해 책임을 지고 발행한 복합운송증권
 - 출발지, 경유지(단순 환매를 위한 경유지는 생략 가능), 목적지가 기재되고, 컨테이너번호와 컨테이너 봉인(Seal)번호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
- 컨테이너번호 또는 컨테이너 봉인(Seal)번호가 변경된 경우, 상기의 복합운송증권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 구비
 - 변경이 발생한 경유국에서 발행된 변경 사유와 변경시 관세당국의 관할 하에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III. 시행일: 2019.12.31.

3. 크로아티아공화국의 유럽연합당사자 추가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지침 시달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 2014-05-21(제정일자)

1.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자유무역협정 당사국으로 크로아티아공화국이 추가되는 절차가 완료되어 2014년 5월 26일(월)부터 발효될 예정입니다.
2. 크로아티아공화국은 2013년 7월 1일에 유럽연합에 가입되었으며 동일 이후 수입신고된 물품으로서 동 협정에 따른 원산지제품에 대해서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붙임’ 과 같이 지침을 시달하오니 각 세관장은 2013년 7월 1일 이후 상기 물품을 수입한 관할구역내 수입업체에게 우편, 전자 우편 등으로 협정관세적용신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라며, 직원교육 등 협정관세 적용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크로아티아의 유럽연합당사자 추가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지침 1부.

크로아티아공화국의 유럽연합당사자 추가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지침

- ☐ 발효일 : 2014.5.26.(월)

* 2014.3.25 한-EU간 크로아티아 가입 추가의정서 서명
2014.4.29 동 의정서 국회 본회의 통과
2014.5.16 국내절차 완료 통보(접수일 기준)
2014.5.26 통보받은날의 10일 후부터 발효(잠정적용)

- ☐ 크로아티아가 원산지인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방법

① 2013.7.1일 이후부터 발효일 전일까지 수입신고된 물품

- [대상물품] 2013.7.1일 이후 기본관세율 등 ‘한-EU FTA’ 관세율 보다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어 수입신

고수리된 물품

- [신청방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협정관세사후신청’
- [신청기한] 해당 물품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세관] 수입물품 통관지 세관
- [원산지신고서 인정요건] 크로아티아 수출자가 2013.7.1일 이후 작성한 원산지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

탁송화물의 전체가격이 6천유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증수출자에 의한 원산지신고서 작성 등 그 밖의 요건은 한-EU FTA의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

② 발효(잠정적용)일 이후 수입신고되는 물품

- 현재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신청방법과 같음

□ 크로아티아의 인증수출자 번호체계

- 국가부호(2자리,HR)/세관부호(2자리)/인증수출자번호(3자리)/연도(2자리)
※ (예시) HR/10/001/13

□ 크로아티아 원산지 부호 : HR

- 협정관세적용신청서의 ⑧란 ‘원산지부호’에 ‘HR’ 또는 ‘EU’를 기재

□ 유로화로 표시된 금액에 상당하는 크로아티아 자국 통화상의 금액

- 2014년 수입신고된 물품에 대해서는 “붙임1” 참조*
- * 붙임1 : 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실-2500호. ’ 13.10.24일
- 2013.7.1일부터 2013.12.31일까지 수입신고된 물품에 대해서는 “붙임2” 참조*

붙임 1 2014년 EU회원국 자국통화상의 금액 기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에 관한 의정서’ 제25조(유로화로 표시된 금액)에 따라 2014년에 적용되는 ‘유로화로 표시된 금액에 상당하는 유럽연합 회원국의 자국 통화상의 금액’

Country	Currency	Invoice Declaration	Traveller's Personal Luggage	Small Packages
		6,000 EUR	1,200 EUR	500 EUR
Bulgaria	Bulgarian lev	11,700	2,300	1,000
Croatia	Croatian kuna	45,800	9,160	3,820
Czech Republic	Czech koruna	150,000	30,000	12,500
Denmark	Danish krone	45,600	9,000	3,800
Hungary	Hungarian forint	1,769,000	354,000	147,000
Lithuania	Lithuanian litas	21,000	4,100	1,700
Poland	Polish zloty	28,000	5,600	2,400
Romania	Romanian Leu	27,100	5,400	2,300
Sweden	Swedish krona	64,000	12,800	5,300
United Kingdom	Pound sterling	5,700	1,140	470

※ 관련규정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3 제2항

붙임 2 2013년 EU회원국 자국통화상의 금액 기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에 관한 의정서’ 제25조(유로화로 표시된 금액)에 따라 2013년에 적용되는 ‘유로화로 표시된 금액에 상당하는 유럽연합 회원국의 자국 통화상의 금액’

Country	Currency	Invoice Declaration	Traveller's Personal Luggage	Small Packages
		6,000 EUR	1,200 EUR	500 EUR
Bulgaria	Bulgarian lev	11,700	2,300	1,000
Croatia (As of 01/07/2013)	Croatian kuna	45,000	9,000	3,700
Czech Republic	Czech koruna	150,000	30,000	12,500
Denmark	Danish krone	45,600	9,000	3,800
Hungary	Hungarian forint	1,769,000	354,000	147,000
Latvia	Latvian lat	4,200	840	350
Lithuania	Lithuanian litas	21,000	4,100	1,700
Poland	Polish zloty	28,000	5,600	2,400
Romania	Romanian Leu	27,100	5,400	2,300
Sweden	Swedish krona	64,000	12,800	5,300
United Kingdom	Pound sterling	5,700	1,140	470

※ 관련규정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3 제2항

4. 한-EU FTA 원산지신고문안 확인업무처리 지침 수정 시달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 2011-09-21(등록일자)

1. 청 자유무역집행기획담당관-1170(2011.7.12.)호와 관련입니다.
2. 한-EU FTA 협정관세적용 신청업무와 관련하여 EU측 수출자가 작성하는 원산지신고서의 원산지신고문안 확인업무 처리지침을 붙임과 같이 수정·보완하여 시달하오니 차질없이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수정·보완 내용 -

- ① 원산지신고문안의 형식적 요건 관련 확인 사항
 - ② 원산지신고문안의 ‘원산지표기’ 인정범위 추가(당사국 형용사표기)
 - ③ 원산지제품과 비원산지제품이 혼재된 경우 확인 사항
- 붙임 : 한-EU FTA 원산지신고문안 확인업무 처리지침 1부.

한-EU FTA 원산지신고문안 확인업무 처리 지침

1. 원산지신고문안의 형식적 요건 관련 확인 사항

※ 원산지신고문안 예시 : 영어 본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sation No ‘인증수출자 번호’ ①)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제품의 원산지’ ② preferential origin.

‘장소 및 일자’ ③
수출자 또는 신고서 작성자의 성명 및 서명 ④

- 원산지신고문안은 협정문에서 정한 바와 일치해야 함
- ①란은 ‘customs authorisation No’ 없이 ‘인증번호’ 만 기재해도 인정 (예) ~ ~ ~ document (BE 74) declares that, ~ ~ ~
- ③란은 해당 서류에 표기되어 있는 경우, 생략 가능
 - ※ - 상업송장에 발행일자가 표시되어 있으면 생략 가능
 - 상업송장 발행일자와 원산지신고서 작성일자가 다른 경우에는 기재
- ④란은 인증수출자가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한 경우, 생략 가능

○ 원산지신고문안이 수기로 작성되는 경우, 잉크를 사용하여 대문자로 작성

2. 원산지신고문안의 ‘제품의 원산지표기’ 관련 사항

(1) 원산지신고문안의 ‘원산지표기’ 인정범위

- 협정문에 있는 당사자명 (예)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THE EUROPEAN UNION
-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가명 (예) Greece, England, Scotland, Wales
- 당사자 국가의 ISO 코드 (예) GR, GB, DE, IT
- ‘EU’ 표기, ‘EC’ 및 ‘European Community’ 표기
- 원산지가 영국인 제품 : ‘UK’ 표기 (협정문상 표기된 약어)
- 당사국의 형용사 표기 (예) Danish, German, Italian, French
- EU측 각 당사자 언어 협정문에 표현된 ‘EU’ 표기

언 어 종 류	‘EU’ 표기 (원어)	약어표기
스 페 인	Unión Europea	‘UE’
프 랑 스	l'Union européenne	
이 탈 리 아	dell'Unione europea	
폴 란 드	Unii Europejskiej	
포 르 투 갈	União Europeia	
루 마 니 아	Uniunii Europene	
말 타	tal-Unjoni Ewropea	
라 트 비 아	Eiropas Savienības	‘ES’
리투아니아	Europos Sąjungos	
그 리 스	Ευρωπαϊκής Ένωσης	‘EE’
불 가 리 아	Европейския съюз	‘EC’

(2) 원산지표기 이외에 다른 문구가 추가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 ‘원산지표기’가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으면, 다른 문구가 추가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인정 (예) EEC/Germany, Europe/FR/EU

(3) 원산지제품과 비원산지제품이 하나의 원산지신고서에 혼재된 경우

- ②란 ‘제품의 원산지’에는 원산지제품의 원산지를 표기, 비원산지 제품은 구분될 수 있도록 해당서류에 달리 명확하게 표기

※ 구분표기하는 방법은 제한 없음

5.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부속서1의 주석6 적용 지침

< ’ 23. 6. 19., 원산지검증과 >

1. 목적

- ☐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부속서 2의 목록 규정 중 제62류의 참조 조항인 부속서1 주석6 및 FTA관세법 시행규칙 별표 6제11부의 주석7 가목의 적용

2. 적용 대상

- ☐ 안감이 부착된 제62류의 의류

3. 적용기준

- ☐ 실의 원산지는 관계없으며, 안감은 최종제품(제62류)의 일부이므로 제62류의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면 됨

4. 적용방법

- ☐ 안감이 부착된 제62류 의류 원산지기준 충족여부 확인시

- 동 의류 생산에 사용된 방직재료가 모두 제62류의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주석6은 적용하지 않음
- 동 의류 생산에 사용된 방직 재료 중 일부가 제62류의 원산지기준을 불충족하는 경우 : 주석6에 따라 최소허용 기준 적용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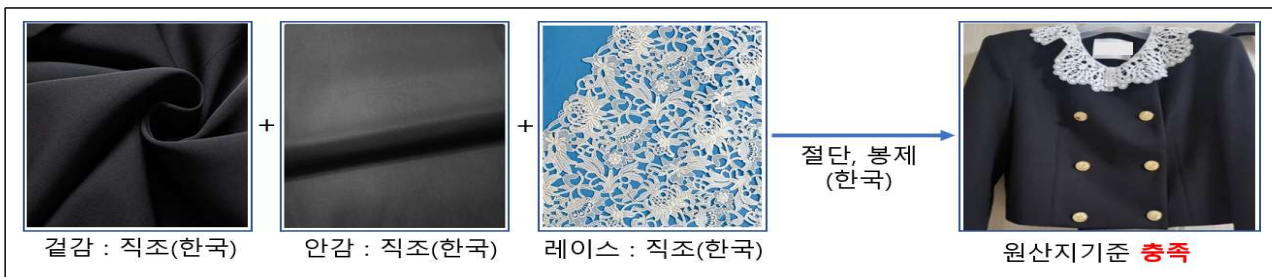
* 방직 재료가 동 의류와 다른 호에 분류되고, 방직재료의 가치가 동 의류 공장도가격의 8%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

- 다만, 안감이 제62류의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석6에 따른 최소허용기준 적용하지 않음

참고1 한-EU FTA 제62류 의류의 원산지 지위 결정 적용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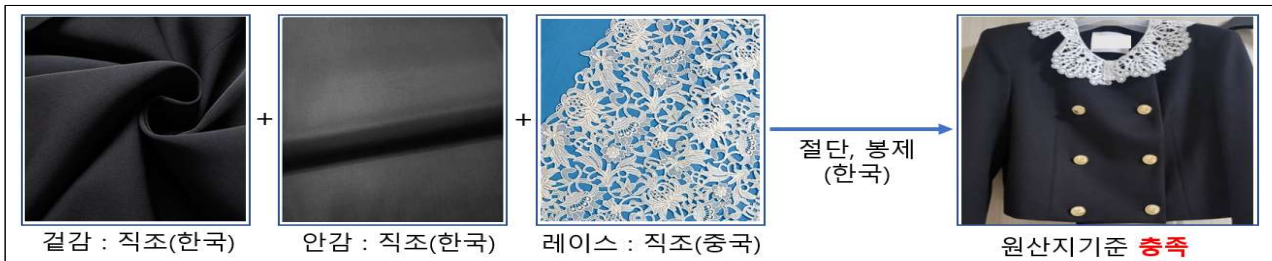
□ 적용 예시

1) 사용된 방직재료 모두 한국에서 직조, 절단 및 봉제과정을 거쳐 의류 생산 → 제62류의 원산지기준 충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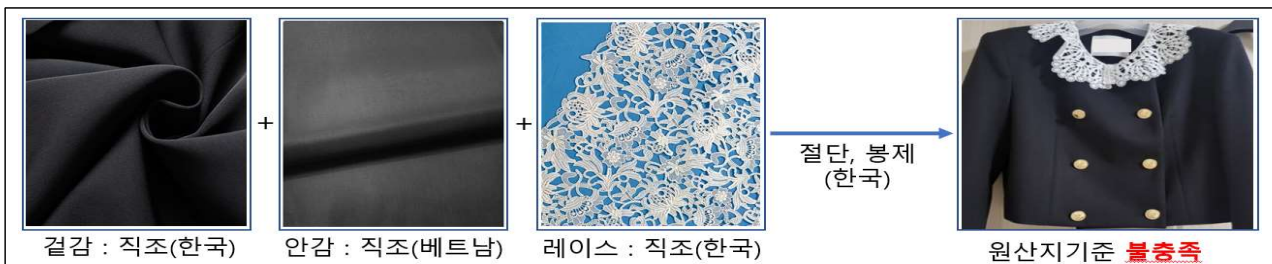
2) 한국에서 직조된 겉감과 안감, 중국에서 직조된 레이스로 한국에서 절단 및 봉제과정을 거쳐 의류 생산(단, 레이스의 가치는 의류 공장도 가격의 8%를 초과하지 않음)

→ 사용된 방직재료 중 레이스는 역내에서 직조공정을 거치지 않았으나 주석6에 따라 최소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62류의 원산지기준 충족



3) 한국에서 직조된 겉감과 레이스, 베트남에서 직조된 안감으로 한국에서 절단 및 봉제과정을 거쳐 의류 생산

→ 사용된 방직재료 중 안감은 역내에서 직조공정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제62류의 원산지기준 불충족(주석6에 따라 안감은 최소허용기준 미적용)



※ 사례 1), 2), 3) 모두 실의 원산지는 고려하지 않아도 됨

참고2 관련 규정

□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부속서 2의 목록

(제62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제조과정(절단을 포함한다)을 수반한 직조공정을 거친 것
 - 2.~4. 이하 생략
- ※ 주석6을 참조

□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부속서1 주석6

(주석6) 6.1. 목록에서 이 주석에 대한 참조가 있는 경우, 해당 완성된 제품에 대하여 목록의 제3항에 규정된 규정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방직 재료(안감과 심감은 예외)가 사용될 수 있다. 다만, 그 방직 재료가 그 제품의 호와 다른 호에 분류되고, 그 방직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치의 8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FTA관세특례법 시행규칙 별표6의 제11부의 주석7의 가목

(주석7) 이 부에서 ‘이 부의 주석7 참조인 경우 아래 각목에 해당하는 비원산지 재료가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용될 수 있다.

- 가. 비원산지인 방직재료(안감과 심감은 제외한다)가 그 제품의 호가 다른 호에 분류되고, 그 방직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8%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그 방직재료

6. 한-EU FTA 원산지표기 및 인증수출자 번호체계 확인업무 처리 지침 시달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 2011-07-12(등록일자)

1. 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1170(' 11.6.28)호와 관련입니다.
2. 한-EU FTA 수입통관업무 처리시 원산지신고서의 원산지신고문안에 기재하는 ‘원산지’ 표기와 ‘인증수출자 번호’ 확인업무 처리지침을 붙임과 같이 시달하오니
3. 각 세관장께서는 붙임 지침 내용중 ‘원산지표기 인정범위’에 대하여는 관내 수입자와 수입신고인 등에게 안내하시고 각 본부세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한-EU FTA 원산지표기 및 인증수출자 번호체계 확인업무 처리 지침 1부. 끝.

한-EU FTA 원산지표기 및 인증수출자 번호체계 확인업무 처리 지침

1. 원산지신고문안에 기재되는 원산지표기 확인업무 처리

○ 원산지신고문안에 기재되는 원산지표기 인정범위

<현행 인정범위>

- 협정문에 있는 당사자명 (예)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가명 (예)GREECE
- 당사자 국가의 ISO 코드 (예)IT
- ‘EU’ 표기, ‘EC’ 표기

<추가 인정범위>

- ‘European Community’ 표기
- 원산지가 영국인 제품 : ‘UK’ 표기 (협정문상 표기된 약어)
- EU측 각 당사자 언어 협정문에 표현된 ‘EU’ 표기

- ※ (예) ·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말타 : ‘UE’ 표기
-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 ‘ES’ 표기
 - 그리스 : ‘EE’ 표기
 - 불가리아 : ‘EC’ 표기

※ 한-EU FTA 적용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증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번역본을 요구할 수 있음

며, ‘수출입물품이 동 협정에서 정한 사항을 충족한다’는 취지의 수입자 진술서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한-EU FTA 원산지 규정 제19조), 수출입 통관업무 집행시 확인할 수 없는 언어로 표현된 경우 번역본을 제출받아 확인 처리

2. 인증수출자번호체계 확인업무 처리

○ 인증수출자 번호체계가 지침*내용과 상이한 경우

*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집행 지침.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1170호, 2011.6.28)

- ① 수입통관부서는 ‘인증수출자 인증서(사본)’을 요구하여 확인
- 확인결과 한-EU FTA에 적용되지 않는 인증수출자 번호로 확인된 경우 협정관세 적용 금지

- ② 수입자가 인증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인증서 확인 결과
한-EU FTA에 적용되는 ‘인증수출자 번호체계’ 인지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 우선 협정관세 적용통관 후 사후검증 절차 진행

※ 상기 건에 대하여는 先 통관 후 검증실시 대상임을 수입자에게 안내

- ② 인증번호체계가 지침내용과 다른 경우(상기 ①·②항) 수입통관부서는 본부세관 FTA 원산지 검증업무 담당부서에 보고

※ 매주 금요일에 본부세관 FTA과로 취합보고(주단위 보고. 붙임1서식)

- ③ 본부세관 FTA업무부서는 인증수출자 확인 여부를 자체심사

※ FTA특례법 시행규칙 제16조 제5항에 따른 보정요구

※ 자체심사 기간 : 접수일로부터 14일(필요시 연장가능)

- 심사기간내에 유효한 인증수출자로 확인된 경우 심사종료

※ 심사종료 후 본청 원산지지원과로 사후보고

- 그 외의 경우 본청 원산지지원과로 보고

- ④ 본청 원산지지원과는 유효한 인증수출자로 확인되지 않는 건에 대해 원산지검증실시

3. 시행일 : 공문발송일부터 시행

※ [붙임 2] EU 회원국 인증수출자 번호 체계 : 부록 참조

7. 한-EU FTA 품목별 인증수출자 「조건부 인증제도 시행지침」 변경 시달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 2011-05-26(등록일자)

1. 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550(‘11.5.26)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로 시달한 조건부 인증제도 업무처리 지침이 붙임과 같이 변경되었기 재시달하오니 시행에 착오없기 바랍니다.

붙임 : 인증확대를 위한 「조건부 인증제도 시행 지침」 1부. 끝.

인증확대를 위한 「先가인증·後본인증」 시행방안

<FTA집행기획관, ’11.5.>

I 추진배경 및 현황

- 한-EU FTA 잠정발효(‘11.7.1 예정)가 임박하였음에도 인증 기업수는 976개(4,333개 中 23%, ‘11.5.20일 기준)에 불과

- 인증 필요성에 대한 홍보 및 교육, 컨설팅 등 우리청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증 확대폭이 크지 않음에 따라
 - FTA 발효 초기에 우리 기업이 선제적으로 FTA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특단의 인증확대 대책」필요

Ⅱ 인증수출자 지정 저조 원인

- (기업의 소극적 자세) 원산지관리 비용 부담 및 원산지 세무조사를 회피하려는 중소기업의 경우 FTA 활용에 소극적이며
 - 한-EU FTA 未발효로 인증의 시급성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특혜관세 혜택이 크지 않은 기업은 인증신청 자체에 미온적
- (인증요건 불충족) 원재료의 수입산 비중이 높거나 해외 생산시설을 보유한 기업은 원산지기준 충족을 위한
 - 원재료 수입선 변경 및 해외에서 수행하던 생산공정의 국내이전 등에 상당한 준비기간 소요
- (원산지입증 곤란) 수출자·생산자의 相異 또는 다단계 생산구조 등의 경우 원재료 공급업체의 원산지입증 관련 협조가 필요하나
 - 협력업체의 원산지관리에 대한 유인 부재 및 원산지입증 자료 제공 기피 등으로 인해 원산지확인서 제공 등 협조 미흡

Ⅲ 인증확대 방안

기 본 방 향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區分하여 인증획득 지원 『중소기업』의 신속한 인증확대를 위한 대책 마련
------------------	---

- 대 기 업 : 자율관리와 협력업체 지원
 - 대기업의 인증확대는 기업자율에 맡기되, 협력관계에 있는 중소기업과 원산지관리 「MOU」 권고 등을 통하여 동반 인증신청 유도
 - 대기업 또는 최종 생산자 요청시 협력업체에 대한 FTA 활용 및 인증수출자 관련 교육 지원
- 중소기업 : 세관의 적극적인 현장 지원

◇ 인증신청 유도를 위한 기업지원 사업(홍보·교육·컨설팅 등) 지속
◇ 단기적 인증확대를 위한 직접적 지원대책 마련·시행

- [인증 未신청 기업] 전국 47개 세관이 직접 선정 後 인증지원
 - 세관에서 대상기업을 찾아 인증 쏠과정을 지원·관리
 - 행정능력이 취약한 업체는 인증요건·절차 간소화 등 지속적 추진
 - 광역지방자치단체·지방상공회의소 등과 함께 범정부적 차원에서 중소기업이 FTA 세테크를 받도록 유도
- [인증신청 기업] 先조건부인증·後본인증을 限時 추진
 - 「실질」요건(수출물품의 원산지기준 충족)만 심사하여 조건부 인증
 - 「형식」요건은 사후 제출·보완 허용 (사후심사 後 본인증)

<인 증 목 표>
◇ 수출액 기준 「인증비율」 ⇨ 연내 『80~90%』 달성
◇ 수출기업수 기준 「인증비율」 ⇨ 연내 『50~60%』 확대

※ 붙임 : 인증확대를 위한「조건부 인증 제도」시행 지침

인증확대를 위한「조건부 인증제도」시행 지침

◇ **한-EU FTA 발효 임박에 따라 對EU 수출기업 대상으로 「조건부인증 제도」를 아래와 같이 도입 시행함**

- 아 래 -

□ (기간) ' 11. 5. 27 ~ 6.30 (한-EU FTA 잠정발효 前)

□ (대상) 한-EU FTA 「품목별 인증수출자」

□ (신청) 「조건부 인증」 시 최소 구비서류

- ①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조건부인증 신청서”
 - ② 인증신청 품목별(HS 6단위) 원산지소명서
 - ③ 원산지 확인서
 - ④ 화약서(요건 미보완시 인증 철회 및 FTA 특혜수출에 대한 책임 인지)
- ※ UNI-PASS 에서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조건부인증 신청 또는 서면 신청

□ (심사) 先조건부인증·後본인증

- 조건부인증 신청시, 「실질」요건(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에 대해서만 심사하여 조건부인증서 부여
 - * [실질요건] 수출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형식요건] 원산지관리전담자 지정·원산지증명서작성대장·서명카드 비치 관리 등
 - 「실질」요건을 제외한 모든 「형식」요건은 조건부인증 후 90일 內 “本인증” 신청시 사후보완 및 제출하여 심사
 - 本인증 신청에 대한 세관의 심사기간(최장 20일)은 사후보완 및 서류 제출 기간 90일에 포함되지 아니함
 - 本인증 심사시 신청서류 및 내용상 미비점에 대한 보정요구는 가능하나, 서류제출 만료일(90일) 이후 보정은 허용되지 않음
 - 보정 기간은 서류 제출 기간(90일)에 포함되며, 기간 만료후 보정 불가 사실을 주지시키고 本인증 신청前 요건확인 자료에 대한 세관의 사전심사 활용을 권고
 - 本인증 심사는 기존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 심사 규정을 준용
- (상담 및 컨설팅) 조건부인증 신청시, 사후보완 내용 및 조건(기한 및 철회 등)·주의사항(요건 미보완시 조치 등) 안내
- 업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인증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및 준비서류 등에 관한 컨설팅 제공
 - ※ 업체의 준비가 미흡한 경우, 심사자 자체 판단에 의해 구체적 상담·컨설팅 제공

< 한-EU FTA 조건부 인증수출자 심사방법 >

구 분	세부 심사 내용	심사 단계
조건부인증 신청서류 등	○ 품목별 인증수출자 “조건부 인증 신청서” ○ 해당 수출물품(HS 6단위)의 품목번호 및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원산지소명서·확인서 등 입증서류 제출) ○ 조건부 인증수출자 화약서	조건부인증 신청서 심사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비치·관리 ○ 서명권자 지정 여부	90일내 보완
원산지관리 전담자	○ (내부) 원산지관리 전담자 지정·운영 - 전문자격증 또는 교육점수 보유 등 ○ (외부) 관세사 등 외부 전문가 지정·운영 현황	90일내 보완
법규 준수	○ 최근 2년간 원산지조사 거부사실 여부 ○ 최근 5년간 원산지증빙서류 보관의무 위반사실 여부	심사 생략

※ 필요시 현지실사 (수출기업 및 원재료 공급업체의 생산공정, 서류 작성·보관실태 등 확인)

- ☐ (본인증) 조건부 인증일로부터 90일 이내 형식요건에 대한 서류 보완·제출시, 심사 후 품목별 인증수출자 “本” 인증서 교부
- ☐ (효력) 한-EU FTA 품목별(정식) 인증과 동일한 효력 부여
- ☐ (인증 철회) 기한내 서류 미보완 또는 본인증 요건 불충족시 인증수출자 지정 철회 및 既 발급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수정통보 지시
 - 특히 고의로 해태하는 경우 철회일로부터 향후 6개월간 ‘再’ 인증 불가
- ☐ (시행일) : ’ 11. 5. 27(금)

첨 부 : [별지 제 1호 서식] 한-EU FTA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조건부인증 신청서
[별지 제 2호 서식] 한-EU FTA 품목별 조건부 인증수출자 인증서
[별지 제 3호 서식] 한-EU FTA 품목별 조건부 인증수출자 협약서

3. 한-영 FTA

1.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발효에 따른 운영지침

1. 이 지침에서 ‘한-영 FTA 협정’은 ‘협정’,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는 ‘의정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는 각각 ‘특례법’, ‘시행령’, ‘시행규칙’, ‘특례고시’라 지칭함
2. 이 지침은 ’ 23. 12. 21. 시행하며, 향후 당사국간 이행협상 결과 등을 반영한 개정·추가·변경사항이 관세청 FTA포털사이트를 통해 공지될 수 있음

1. 한-영 FTA 개요

적용범위

- ☐ [발효] ‘21. 1. 1. 발효
- ☐ [당사국] 대한민국과 영국

2. 목적·일반정의

- ☐ [목적] 양 당사국간 상품, 서비스 무역 및 투자의 자유화, 지식재산권의 보호, 교역장벽 제거를 통한 국제무역 발전에 기여
- ☐ [법령언급] 협정에서 참조한 대한민국 또는 유럽연합 법령은 이 협정 발효일에 개정 또는 대체된 법령에 대한 언급으로 간주
 - 다만, 그러한 개정 또는 대체가 양 당사국간 시장접근 감소, 무역장벽을 강화하지 아니하여야 함

3.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

- ☐ [목적] 이 협정 및 1994년도 GATT 제24조에 합치되게 과도기간에 걸쳐 점진적이고 상호적으로 상품무역을 자유화(제2.1조)
- ☐ [관세] 모든 관세 또는 상품 수입 및 이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모든 형태의 추가세, 추가금, 부과금을 포함

(제2.3조)

○ 제외 대상

가. 동종의 국내 상품에 대하여, 또는 그 상품으로부터 수입 상품의 전체 또는 부분이 제조되거나 생산된 물품에 대하여, 제2.8조에 합치되게 부과되는 내국세에 상당하는 부과금

나. 제3장(무역구제)에 합치되게 당사국의 법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

다. 제2.10조에 합치되게 당사국의 법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 또는 그 밖의 부과금

라.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에 포함된 「농업에 관한 협정」 제5조에 합치되게 당사국의 법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

□ [상품분류] 양 당사국간 상품분류는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의 통일시스템」(이하 “HS”라 한다)에 합치되게 해석된 각 당사국의 관세품목분류표에서 규정한 분류(제2.4조)

□ [관세철폐] 협정 부속서 2-가에 포함된 자국의 양허표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제2.5조)

○ 협정 발효 3년 후 일방 당사국의 요청 시 양 당사국은 품목별 관세철폐 일정의 가속화 및 범위 확대 검토를 위해 협의

4. 양허 현황

□ [개요] 한-EU FTA와 동일한 수준의 관세양허를 양국에 적용

○ 한-EU FTA 양허표를 그대로 적용하되, 한-영 FTA의 관세인하 시작시점을 한-EU FTA 발효시점인 2011. 7. 1.로 규정

《 한-영 FTA 관세인하 스케줄 》

연 차	적용기간	연 차	적용기간
1년차	‘11.7.1. ~ ‘12.6.30.	2년차	‘12.7.1. ~ ‘13.6.30.
〈 중 략 〉			
9년차	‘19.7.1. ~ ‘20.6.30.	10년차	‘20.7.1. ~ ‘21.6.30.
〈 중 략 〉			
19년차	‘29.7.1. ~ ‘30.6.30.	20년차	‘30.7.1. ~ ‘31.6.30.

○ (수입) 영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전체 품목의 94.6%에 부과되는 관세 즉시 철폐

○ (수출) 영국으로 수출되는 전체 품목 중 쌀(EU기준 39개 세번)을 제외한 전체 품목의 99.6%에 부과되는 관세 즉시 철폐

□ [농산물] 주요 민감품목에 대하여 양허제외, 현행관세 유지, 계절관세,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ASG) 등 예외 조치 적용

○ (계절관세) 우리나라 수확, 유통기간에 수입되는 물품에 부과

- (대상품목) 신선 포도(5.1 ~ 10.15.), 오렌지(9.1. ~ 2월말일)

○ (ASG) 기준발동물량을 초과하여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특정 농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부과

* Agricultural Safeguard : 농업 긴급수입제한

- (대상품목) 쇠고기, 돼지고기, 사과, 설탕, 인삼, 맥아 및 맥주맥, 발효주정, 변성전분, 감자전분 등 9개 품목

II. 원산지 규정

1. 용어의 정의 (의정서 1조)

- ☐ [생산] 재배, 어로, 사육, 수렵, 조립 또는 특정 공정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작업이나 가공
- ☐ [재료] 제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원료, 원재료, 구성요소 또는 부품 등
- ☐ [제품] 그 제품이 추후 다른 생산공정에서 재료로 사용되기 위한 것이더라도 생산되고 있는 제품
- ☐ [상품] 재료, 제품 또는 물품
- ☐ [관세가격] 관세평가협정에 따라 결정되는 가격
- ☐ [공장도 가격] 최종 작업 또는 가공이 수행된 당사국 내 생산자 공장에서 인도되는 제품에 대해 그 생산자에게 지급되었거나 지급되어야 할 가격. 다만, 그 가격은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를 포함하고, 그 획득된 제품이 수출될 때 환급되거나 환급되어야 할 모든 내국세를 공제
- ☐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수입당시의 관세가격, 또는 이를 알지 못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영국 내에서 또는 대한민국 내에서 그 재료에 대하여 지급된 최초의 확인 가능한 가격
- ☐ [원산지 재료의 가치] 원산지 재료의 가치란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적용된 사호에 정의되어 있는 원산지 재료의 가치
- ☐ [류, 호 및 소호] 이 의정서에서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 또는 ‘HS’라 지칭된 통일 상품명 및 부호 체계를 구성하는 상품분류체계에서 사용된 류(2단위), 호(4단위) 및 소호(6단위)
- ☐ [분류된] 특정 류, 호 및 소호에 따른 제품 또는 재료의 분류
- ☐ [탁송화물]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에게 일시에 송부된 제품이거나,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으로의 선적에 대한 단일의 운송서류에 의하여, 또는 그러한 서류가 없는 경우 단일의 송품장에 의하여, 다루어지는 제품
- ☐ [HS] 발효 중인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로 그 일반해석 규칙과 법적 주석을 포함
- ☐ [영역] 영해를 포함
- ☐ [EU] 유럽연합(세우타 및 멜리야 제외)
- ☐ [영국] 대영제국과 북아일랜드

2. 원산지 상품

☐ 관련 규정

- 의정서 제2부(제2조 ~ 제12조) 및 규칙 제4조제17호 및 별표 15의3 영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 일반 원칙 (의정서 제2조)

- 특혜관세 대우의 목적상 다음 제품은 당사국이 원산지로 간주

《 원산지 제품의 정의 》

- ① (완전생산) 당사국 내에서 완전히 획득된 제품(의정서 제4조)
- ② (충분 작업 또는 가공) 당사국 내에서 완전히 획득되지 아니한 재료를 결합하여 해당 당사국 내

에서 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을 거쳐 획득한 제품

③ (원산지 재료로만 생산) 당사국 내에서 원산지 재료로만 획득된 제품

□ 누적기준 (의정서 제3조)

- (EU산 누적) 원산지 인정 요건(의정서 제2조) 적용 시, EU의 재료 또는 EU에서 수행된 공정에 대해서도 누적 인정

※ EU를 원산지로 하는 재료, EU에서 거친 작업 또는 가공의 누적 인정은 협정 발효일로부터 5년간 한시적 허용(∼'25년말까지 적용)

* 원산지 의정서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각주 1 개정('23.12.20.)

- (재료누적) 다른 계약당사국 또는 EU를 원산지로 하는 재료를 사용하여 불인정공정(의정서 제6조) 이상의 작업·가공을 거쳐 당사국에서 제품을 생산한 경우 그 제품 생산국을 해당 재료의 원산지로 간주

- (공정누적) EU에서 작업 또는 가공이 수행된 제품에 대해 당사국 내에서 불인정공정(의정서 제6조) 이상의 후속 작업·가공을 거친 경우 EU에서 수행된 공정을 당사국의 것으로 간주

※ 공정누적은 EU에서 수행된 공정(작업·가공)에만 적용됨을 유의

- (원산지기준) 영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물품 또는 우리나라에서 영국으로 수출되는 물품의 생산에 EU산 재료가 사용된 경우 해당 재료가 한-영 FTA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해야 역내산 인정

- (원산지확인) 영국으로 수출되는 한국산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EU산 재료의 역내산 판정(누적 적용)을 위해 EU에 소재한 재료의 공급자가 작성한 한-EU FTA 원산지신고서* 활용 가능

* 국내 수입 시 관세양허 실익이 없는 경우라도 재료의 원산지 입증에 위해 필요

※ 영국 관세당국도 EU에서 작성된 원산지신고서에 근거하여 EU산 재료의 원산지 지위(한-영 FTA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 검증 예정

□ 완전하게 획득된 제품 (의정서 제4조)

- 다음은 당사국 내에서 완전 획득된 것으로 간주

《 완전생산 제품 》

- ① 당사국의 영역의 토양 또는 해저로부터 추출된 광물성 제품
- ② 당사국 내에서 재배되고 수확된 식물성 제품
- ③ 당사국 내에서 출생되고 사육된 살아있는 동물
- ④ 당사국 내에서 사육된 살아있는 동물로부터의 제품
- ⑤ 당사국의 육지 영역에서 수렵, 밋사냥, 또는 당사국의 내수 또는 영해 내에서 수행된 어로에 의하여 획득된 제품
- ⑥ 당사국 내에서 태어나고 자란 어류, 갑각류 또는 연체류의 양식 제품
- ⑦ 당사국의 영해 밖의 바다에서 당사국의 선박에 의하여 잡힌 어획물 및 그 밖의 제품 및 해당 제품만으로 당사국의 가공선박에서 만들어진 제품
- ⑧ 당사국의 영해 밖 해양 토양 및 하부토양에서 추출된 제품. 다만, 당사국은 그 토양 또는 하부토양을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여야 함
- ⑨ 당사국 내에서 수집된 것으로 원재료 회수용으로만 또는 폐기물 용도로만 적합한 중고 물품
- ⑩ 당사국 내에서 수행된 생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및 부스러기
- ⑪ 이 항에 언급된 제품으로만 당사국 내에서 생산된 제품

《 ‘당사국의 선박’ 및 ‘당사국의 가공선박’ 적용 범위 》

- ① 대한민국 또는 영국에 등록된 것

- ② 대한민국 또는 영국의 국기를 게양하여 항해하는 것
- ③ 다음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것
- 1) 대한민국 또는 영국의 국민에 의해 적어도 50퍼센트가 소유되는 경우
 - 2) 다음의 회사에 의해 소유되는 경우
 - 가) 그 본점과 주영업소가 대한민국 또는 영국에 있는 회사, 그리고
 - 나) 대한민국 또는 영국, 대한민국 또는 영국의 공공기관, 또는 대한민국 또는 영국의 국민에 의해 적어도 50퍼센트가 소유되는 회사

□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제품 (의정서 5조)

-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완전생산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이 의정서 부속서2의 목록 및 규칙 별표15의3의 제4호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충분하게 작업 또는 가공된 것으로 간주하여 원산지 지위 인정
- (연간 쿼터적용 완화된 원산지결정기준) 우리나라 원산지가 인정되는 아래 물품이 영국에 수출 시 부속서 2-가 및 규칙 별표15의3의 제5호에 따라 연간 일정수량 한도(선착순)로 완화된 원산지결정기준 적용

《 연간 쿼터적용 예외물량 대상 품목 》

품목	완화된 원산지결정기준	대한민국에서 영국으로의 연간 수출 쿼터
[제1604.20호] 그 밖의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어류 - 제품의 중량당 최소한 40%가 어류로 구성되고, 연육의 주요 원료로 명태 종(테라그라 찰코그라마)이 사용되는 어묵 조제품	제3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참고) 연간 쿼터 미적용 시 원산지결정기준 제1류의 동물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3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계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연간 쿼터 : 100 M/T
[제5408호] 재생·반(半)합성 필라멘트사의 직물(제5405호의 재료로 직조한 직물을 포함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 1. 인조필라멘트사로부터 생산된 것 2. 염색작업과 이에 수반하는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마무리 공정(정련, 표백, 머어서라이징, 열처리, 기모, 캘린더링, 방축가공, 영구마감처리, 데커타이징, 침투, 보수 및 벌링과 같은 것을 말한다)을 한 것. 다만, 염색되지 않은 비원산지 직물의 가격이 그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참고) 연간 쿼터 미적용 시 원산지결정기준 1. 고무사를 넣은 것 : 단사로부터 생산된 것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상품과 관련된 특별조건인 경우 이 부의 주석 6 참조 2. 기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2-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부터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가. 코이어사 나. 천연섬유 다.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한 것을 제외한다) 라.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마. 종이	연간 쿼터 : 1,068,320 SME

	2-2. 날염작업과 이에 수반하는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마무리 공정(정련, 표백, 머어서라이징, 열처리, 기모, 캘린더링, 방축가공, 영구마감처리, 데커타이징, 침투, 보수 및 별링과 같은 것을 말한다)을 한 것. 다만, 날염되지 않은 비원산지 직물의 가격이 그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47.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상품과 관련된 특별조건인 경우 이 부의 주석 6 참조	
--	---	--

○ (비원산지 재료의 적용) ① 비원산지 재료가 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을 거쳐 원산지 지위를 획득한 이후 다른 제품의 생산에 사용 시, 그 물품에 포함된 비원산지 재료는 고려하지 않음

② 비원산지 재료와 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가공하였으나 원산지 지위를 획득하지 못한 제품이 다른 제품의 생산에 사용 시, 비원산지 물품에 포함된 비원산지 재료만 고려됨

※ 원산지 요건은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제품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 및 이에 수반되는 작업·가공에 대하여 적용

○ (최소 허용기준) 당사국에서 불인정공정 이상의 공정이 수행된 경우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이 해당 제품 공장도 가격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더라도 사용 가능

※ (섬유류 예외) HS제50류 ~ 63류에 해당하는 제품은 의정서 부속서1(주석 4~6)에 규정된 별도의 최소 허용기준 적용

□ 불인정 공정 (의정서 6조)

○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및 최소 허용기준이 충족되는 제품이라도 체약당사국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작업 또는 공정만을 거쳐서 생산된 경우에는 원산지 지위 불인정

《 불인정 공정 》

- ① 운송되고 보관되는 동안 제품이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보장하는 보존 공정
- ② 포장상태의 변경, 포장의 해체 및 조립
- ③ 세탁, 세척, 그리고 먼지, 녹, 기름, 페인트 또는 그 밖의 막의 제거
- ④ 섬유류의 다림질 또는 압착
- ⑤ 단순한 페인팅 및 광택 공정
- ⑥ 곡물 및 쌀의 탈각, 부분 또는 전체 표백, 연마 및 도정
- ⑦ 당류 착색이나 착향 또는 각설탕 공정, 결정당의 부분 또는 전체 제분
- ⑧ 과일, 견과류 및 채소에 대한 탈피, 씨 제거 및 탈각
- ⑨ 연마, 단순 분쇄 또는 단순 절단
- ⑩ 감별, 체질, 선별, 분류, 등급화 또는 매칭(물품 세트의 구성을 포함한다)
- ⑪ 병, 캔, 플라스크, 가방, 케이스 또는 상자에 단순히 넣기, 카드 또는 판에 붙이는 것, 그리고 그 밖의 모든 단순 포장 공정
- ⑫ 마크, 라벨, 로고 및 그 밖의 유사한 구별 표시를 제품 또는 제품의 포장에 부착하거나 인쇄하는 것
- ⑬ 다른 종류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제품의 단순한 혼합, 모든 재료와 설탕의 혼합
- ⑭ 완전한 물품을 구성하는 부품의 단순한 조립 또는 제품의 부품으로의 분해
- ⑮ 시험 또는 측정
- ⑯ ① ~ ⑮까지 명시된 공정의 조합
- ⑰ 동물의 도살

□ 원산지 자격 단위 (의정서 제7조)

○ 물품의 집단 또는 집합으로 구성된 제품이 단일한 HS품목번호로 분류되는 경우 그 제품 전체를 자격단위

로 규정

- 탁송화물이 동일한 HS품목번호로 분류되는 다수의 동일한 제품으로 구성되는 경우 각 제품은 개별적으로 의정서 적용

☐ 부속품 등의 원산지 결정 (의정서 제8조 및 규칙 별표 15의3 제2호자목)

- 일반 장비의 일부로서 그 가격에 포함되거나 송품장이 별도로 발급되지 아니하고 물품과 함께 인도된 부속품, 예비부품 및 공구는 해당 물품과 일체로 간주

☐ 세트물품의 원산지 결정 (의정서 제9조 및 규칙 별표 15의3 제2호사목)

- HS 통칙 제3호에 따른 세트물품은 세트를 구성하는 모든 제품이 원산지 물품이고 그 세트물품과 모든 구성 제품이 의정서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원산지 제품으로 간주
- 다만, 세트물품이 원산지 제품과 비원산지 제품으로 구성된 경우로서 비원산지 제품의 가격이 그 세트물품의 공장도가격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지 않는 때에는 그 세트물품 전체를 원산지 제품으로 간주

☐ 간접재료의 원산지 결정 (의정서 제10조 및 규칙 별표 15의3 제2호마목)

- 제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지 않는 재료(간접재료)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원산지결정을 위한 고려대상에서 제외

《 간접재료 》

- ① 연료 및 에너지
- ② 설비 및 장비(그 유지에 사용되는 예비부분품과 그 재료를 포함)
- ③ 기계 및 도구
- ④ 제품의 최종 구성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들어가도록 의도되지 않는 물품

☐ 대체가능물품 (의정서 제11조 및 규칙 별표 15의3 제2호바목)

- (원칙) 동일하고 대체 가능한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 재료가 생산에 사용 시 재료의 원산지에 따라 물리적으로 구분 보관해야 함
- (예외) 재료 구분 보관에 따른 비용적·기술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생산자가 지정하는 아래의 “재고물품관리법” 사용이 가능하나, 재료가 물리적으로 구분되어 원산지 지위를 부여받는 경우보다 더 많은 원산지 지위를 부여받아서 아니됨

《 재고물품관리법 》

- ① **(개별법)** 제품의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를 구분하여 각 재료의 원산지에 따라 그 제품의 원산지 결정
- ② **(선입선출법)** 입고한 재료 중 먼저 입고한 재료가 먼저 출고된 것으로 보아 먼저 입고된 재료의 원산지를 기준으로 그 제품의 원산지 결정
- ③ **(후입선출법)** 입고한 재료 중 가장 최근에 입고한 재료가 먼저 출고된 것으로 보아 최근에 입고된 재료의 원산지를 기준으로 그 제품의 원산지 결정
- ④ **(평균법)** 보관 중인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의 구성비율을 기준으로 그 제품의 원산지를 결정. 이 경우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의 구성비율 계산은 보관(기초재고를 포함한다) 또는 취득한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의 취득가격이나 수량 등을 기준으로 적용
- ⑤ ① ~ ④ 외에 제품이 생산된 계약당사국에서 일반적으로 일정되는 회계원칙 적용

☐ 부가가치비율 계산 (규칙 별표 15의3 제2호다목)

-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및 연간 쿼터적용 예외물량에서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

$$\text{▶ 부가가치비율(MC)} = \frac{\text{비원산지재료의 가격 (VNM)}}{\text{물품의 공장도가격 (EXW)}} \times 100$$

□ 재료가격의 결정기준 (규칙 별표 15의3 제2호라목)

- (원칙)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은 사용된 비원산지재료의 수입 당시의 과세가격을 적용
- (예외) 수입 당시의 과세가격을 알지 못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당사국에서 그 비원산지재료에 대하여 지급된 최초의 확인 가능한 가격 적용

□ 포장용품 및 용기의 원산지결정 (규칙 별표 15의3 제2호차목)

- HS 통칙 제5호에 따라 내용물과 함께 분류되는 포장용품 및 용기는 그 제품의 원산지결정에 포함되며, 제품이 원산지 제품인 경우 그 포장용품 및 용기도 원산지 제품으로 간주

4. 영역요건

□ 영역원칙 (의정서 제12조 및 규칙 별표 15의3 제2호아목)

- (원칙) 누적기준(의정서 제3조) 및 역외가공(의정서 제12조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산지 지위를 획득하는 모든 조건은 당사국 내에서 중단 없이 충족되어야 함
- (재수입 물품) 원산지 물품이 당사국에서 당사국이 아닌 국가로 수출되었다가 해당 당사국으로 재수입된 경우에는 아래 요건이 충족됨을 세관장에게 입증해야 원산지 지위 인정

《 재수입 물품의 원산지 인정 》

- ① 수출된 물품과 동일한 상태로 재수입될 것
- ② 재수입된 물품이 계약당사국이 아닌 국가에 있거나 수출되어 있는 동안 그 물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는데 필요한 작업 또는 공정 이상을 거치지 않을 것

□ 직접운송 (의정서 제13조)

- (원칙) 협정상의 특혜대우는 양 당사국 간 또는 EU를 경유하여 직접적으로 운송되는 제품에만 적용 가능
 - 영국산 제품이라도 선적국(출항국)이 영국이 아닌 EU 회원국인 경우 영국 - 해당 EU 회원국간의 운송경로 등을 입증해야 함

※ EU를 경유하는 원산지제품의 직접운송 인정은 협정 발효일로부터 5년간 한시적 허용(∼ ‘25년말까지 적용)

* 원산지 의정서 제13조제1항 각주 2 개정(’ 23.12.20.)

- (예외) 운송중인 제품은 비당사국에서 환적 또는 일시적 창고보관 가능하나, 자유로운 유통을 위해 반출(수입통관 등)되지 아니해야 하며, 하역, 재선적 또는 제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한 공정 이외의 공정이 수행된 경우 직접운송 불인정
- (입증서류) 상기 조건이 충족됨을 입증하기 위하여, 협정관세 적용 시 수입당사국 세관에 아래의 서류(의정서 제13조제2항) 제출

《 경유화물에 대한 직접운송 입증서류 》

- ① 제3국에서 원산지 제품의 환적 또는 보관과 관련된 상황의 증거

- ② 수출 당사국에서 경유국을 통한 통과를 다루고 있는 단일 운송서류, 또는
- ③ 경유국의 관세당국이 발행한 다음의 증명서
 - 1) 제품의 정확한 설명을 제공하는 것
 - 2) 제품의 하역 및 재선적 일자, 그리고 적용 가능한 경우, 선박명 또는 사용된 다른 운송수단을 기재하는 것, 그리고
 - 3) 제품이 경유국에 머물러 있는 그 상태를 증명하는 것

○ (EU 경유 화물) 우리나라에서 EU를 경유하여 영국으로 수출되는 물품, 또는 영국에서 EU를 경유하여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물품이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직접운송 인정

《 EU 경유 화물에 대한 직접운송 인정 기준 》

- ① 물품이 경유하는 EU 국가의 세관 통제하에 있어야 하며, 해당 경유국에서 수입통관 되는 경우 직접운송 불인정
- ② 경유하는 EU 국가에서 탁송품의 분리, 라벨링 또는 마킹 등의 작업이 허용될 수 있음
- ③ 수입국 세관의 요구 시 상기 ①, ② 요건 및 협정에서 정한 직접운송 요건이 충족됨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영국을 경유하는 EU산 또는 한국산 물품에 대해 한-EU FTA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상기의 완화된 요건이 적용되지 않음에 유의

III. 원산지증명 절차

원산지 신고서

□ 작성방법 (의정서 제15조 및 부속서3, 규칙 제15조7항 및 별표 20의2)

- 원산지신고서는 충분히 상세하게 그 제품을 기술하는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 상에 부속서 3에 규정된 문안을 타자로 치거나 스탬프로 찍거나 인쇄하여 작성

《 원산지신고서 문안 》

상업서류에 기재할 신고문안 (영어본)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sation No ...¹⁾)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²⁾ preferential origin. ³⁾ (Place and date) ⁴⁾ (Signature of the exporter, in addition the name of the person signing the declaration has to be indicated in clear script)
국문본	이 서류(세관인증번호...¹⁾)의 적용대상이 되는 제품의 수출자는, 달리 명확하게 표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제품은...²⁾의 특혜원산지 제품임을 신고한다.

- (6천유로 초과 물품) 인증수출자만이 원산지신고서 작성 가능

※ 영국 통화로 환산한 6천유로 상당금액은 FTA포털에 별도 게시

- 6천유로 초과여부는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에게 일시에 송부된 물품 또는 단일의 운송서류에 의하여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에게 송부된 물품가액을 기준으로 판단

- 운송서류가 없을 경우에는 송품장의 물품가액에 의하여 판단

- (원칙) 송품장의 물품가액 기준

- (예외) 단일탁송화물에 여러 송품장이 발행된 경우 운송서류에 표시된 물품가액 기준

○ (6천유로 이하 물품) 인증수출자 또는 탁송화물의 수출자가 원산지신고서 작성 가능

- 원산지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인증수출자번호는 생략되거나 빈칸으로 남겨두어도 되지만, ‘원산지’ 표기와 수기로 작성된 ‘서명’은 반드시 있어야 함

☐ 연간 쿼터적용 예외물량 적용 물품(의정서 부속서 2-가)

○ 우리나라에서 영국으로 수출 시 일정수량 한도(선착순)로 완화된 원산지결정기준 적용 부속서 2-가 적용 품목은 원산지신고서 작성 시 아래의 문구를 포함

“Derogation - Annex II(a) of Protocol...”

☐ 원산지신고서 유효기간(의정서 제18조, 시행령 제5조)

○ (원칙) 원산지신고서의 유효기간은 발급된 날로부터 12개월

○ (제외기간) 영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물품의 경우 아래 기간을 유효기간 계산 시 제외함

- (유효기간 경과 전 물품이 수입항 도착)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날의 다음날부터 해당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신청일 까지의 기간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따른 운송지연 등)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소멸된 날까지의 기간

☐ 원산지증명의 면제(의정서 제21조)

○ (대상) 사인 간 소포로 송부되었거나 여행자 휴대품으로 반입된 미화 1천불 이하(우리나라 수입기준)의 비상업적 물품

※ 우편물로 송부 시 원산지신고서는 우편물 세관신고서 등으로 대체

2. 원산지 신고서 작성 유의사항

☐ 원산지신고서의 형식 요건

○ 송품장 등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서 문안이 기재되어야 하며, 다른 서류에 따로 작성된 원산지신고서로 협정관세 적용 불가

○ 영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된 물품에 대한 원산지신고문안에 작성되는 원산지는 ‘영국산’ 임이 인정되는 표기로 한정되며, ‘EU*’ 및 ‘EU 회원국 부호’ 등은 사용 불가

* European Union, EC, European Community, UE, ES 등

《 원산지신고서에 작성하는 원산지표기 인정범위 》

① 협정문에 있는 당사자명 (예) United Kingdom, Great Britain 등

②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가명 (예) England, Scotland, Wales 등

③ 당사국의 ISO코드 또는 협정문상 약어 (예) GB, UK 등

☐ 인증수출자 소급 적용

- 탁송화물 전체가격이 6천유로 초과 시 해당 물품 수출 당시 인증수출자가 아니었다라도, 원산지신고서 작성 시점에 인증수출자인 경우에는 소급 작성한 원산지신고서도 유효성 인정

☐ 하나의 원산지신고서에 원산지 제품과 비원산지 제품 혼재

- 단일 탁송화물을 구성하는 원산지 제품의 전체가격이 6천유로 초과 시 인증수출자만이 원산지신고서 작성 가능

※ 비원산지 제품의 가격은 6천유로 계산 시 포함하지 아니함

- ‘제품의 원산지’란에는 원산지제품의 원산지를 표기하고, 비원산지 제품은 해당 상업서류에 명확하게 구분하여 표기

IV. 협정관세 적용

적용 개요

☐ 적용시점

- 협정 발효일 오전 8시* 이후에 세관장에게 수입신고서가 접수된 건부터 적용(협정 발효 前 한-영 FTA로 협정관세 적용 신청 불가)
* EU 본부가 있는 벨기에 시간 0시(한국시간 -8, 써머타임 시 -7시간)

※ 한-영 FTA 발효 전 수입신고가 접수된 물품은 한-EU FTA 사후적용 신청(특례법 제9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적용) 가능함

☐ 적용대상

- (협정) 협정 제2장(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 부속서 2-가의 대한민국 양허표에 해당하는 물품
- (국내법) 특례법 시행령 제2조제18항(별표 17의3)의 영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에 해당하는 물품

2. 수량별 차등협정관세 (TRQ)

☐ [적용] 주무부 장관의 위임을 받은 기관(추천대행기관)의 추천을 받은 후 해당 추천서를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

☐ [대상품목] 2개 품목(HSK기준 6개)으로, 협정 부록 2-가-1에 따름

《 수량별 차등협정관세 적용 대상품목 》

구분	품명	HS부호	추천기관
1	맥아 및 맥주맥	제1003.00.1000호, 제1107.10.0000호	한국농식품유통공사
2	보조사료	제2309.90.2010호, 제2309.90.2020호, 제2309.90.2099호, 제2309.90.9000호	한국단미사료협회, 한국대용유사료협회

3.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ASG)

☐ [적용] 기준발동물량을 초과*하여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영국을 원산지로 하는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 긴급관세’ 조치

* 기준발동물량 초과 여부 FTA 포털에서 확인 가능

- 특별긴급관세 조치 시행 전에 계약이 체결되어 운송중에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 ※ 동일 계약상 물품이라 하더라도 조치 시행일 이후 운송되기 시작한 물품은 특별긴급관세 적용대상 (운송서류의 출항일 등 확인)

□ [대상] 총 9개 품목(HSK기준 27개)협정 부속서3 및 시행령 별표 24조의2에 규정

《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대상 품목 》

구분	품명	HS부호
1	신선, 냉장 및 냉동 쇠고기	제0201.10.0000호, 제0201.20.1000호, 제0201.20.9000호, 제0201.30.0000호, 제0202.10.0000호, 제0202.20.1000호, 제0202.20.9000호, 제0202.30.0000호
2	돼지고기	제0203.19.1000호, 제0203.19.9000호
3	사과	제0808.10.0000호
4	맥아 및 맥주보리	제1003.10.1000호, 제1003.90.1000호, 제1107.10.0000호
5	감자전분	제1108.13.0000호
6	인삼	제1211.20.2210호, 제1211.20.2220호, 제1211.20.2290호, 제1302.19.1210호, 제1302.19.1220호, 제1302.19.1290호
7	설탕	제1701.99.0000호
8	주정	제2207.10.9010호
9	텍스트린	제3505.10.4010호, 제3505.10.4090호, 제3505.10.5010호, 제3505.10.5090호

4. 협정관세 적용 유의사항

□ 영국의 인증수출자 번호 체계

- (적용) 영국에서 한국으로 수입되는 6천유로 초과 물품의 원산지 신고서 작성 시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는 인증수출자 번호 체계
- (번호체계) 영국 관세당국이 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아래의 번호체계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해 협정관세 적용 신청 가능

< 영국의 인증수출자 번호 체계 >

(번호체계) 국가코드(2) / 인증번호(5) / 인증연도(2) (예시) GB 12345/21

- 한-영 FTA가 발효되기 전에 영국 관세당국에 의해 부여받은 인증수출자 번호는 한-영 FTA에도 유효하게 사용 가능하며, 한-영 FTA 발효 전·후 인증수출자 인증번호 체계 변동 없음
- ※ 다만, 인증수출자 지위는 수출 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부여되므로 영국에서 부여된 개별 인증수출자 번호의 유효성 여부는 영국의 수출자, 영국 관세당국 등을 통해 직접 확인해야 함

◆ 참고자료 (영국 정부 지침, UK government guidance) : Trade with South Korea from 1 January 2021
<https://www.gov.uk/guidance/summary-of-uk-south-korea-trade-agreement#rules-of-origin>.

□ 협정관세적용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 협정관세적용신청서(규칙 별제 1호 서식) ㉗번란 관세율구분코드를 ‘FGB1 ~ FGB9’ 로 입력한 경우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㉘번란 ‘원산지’ 를 ‘GB’ 로 입력하지 않으면 협정관세 적용신청 접수 불가

□ 보세공장에서 수입되는 물품

- 보세공장에서 가공되어 국내로 수입되는 물품은 관세법 제189조 원료과세 해당물품인 경우 협정관세 적용 가능

5. 사전 심사

□ 사전심사 절차(의정서 제6.6조 및 법 제31조)

- (방법) 사전심사 받고자 하는 물품을 수입신고 하기 전까지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신청 가능
- (신청인) 수입자, 계약상대국 수출자 및 생산자와 그 대리인
- (신청대상) 품목분류, 원산지, 당사국이 결정하는 그 밖의 사안

FTA 특례법령에 따른 사전심사 절차

단계	세부단계	주 체	주요 내용
신청	사전심사 신청	신청인	▶ 서류제출(신청서, 심사요청관련서류) ▶ 수수료(3만원)
접수	신청서류 확인	접수부서	▶ 해당부서가 아닌 경우 담당부서로 이송
	사전심사 접수	주관부서	▶ 담당부서가 2개 이상인 경우, 접수부서가 주관부서로서 해당부서에 심사사항 통보 ▶ 사전심사 신청대장 기록, 수수료 수납
검토 결정	신청내용 심사·검토	주관부서	▶ 신청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법정처리
		심사부서	▶ 담당부서가 2개 이상인 경우, 사전심사담당 부서는 결과를 주관부서로 통보(만료 7일전까지)
	반려 및 보정	주관부서	▶ 반려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반려 ▶ 보정 : 5일 이상의 기간
	위원회 상정·검토	주관부서 심사부서	▶ 위원회 상정 : 심사부서에서 결정이 곤란하다고 판단
통지 공표	사전심사서 통지	주관부서	▶ 사전심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
	심사결과 인터넷 공표	주관부서	▶ FTA 포털 사전심사 공표시스템에 사전심사 결과 등재
사후 관리	이의제기	신청인	▶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 이의제기 기간 :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주관부서	▶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30일, 보정:20일
	사전심사 변경	신청인 주관부서	▶ 사실관계, 상황변경 등의 경우 사전 심사내용 변경·철회

참고 1

한-영 FTA 관세율 구분 부호

부호	설명
FGB1	- 하나의 품목번호에 1개의 협정세율이 적용되는 물품 - 하나의 품목번호에 서로 다른 협정세율이 있는 것 중 최고세율 적용물품
FGB2 FGB3 FGB4 FGB5 FGB6 FGB7	- 하나의 품목번호에 서로 다른 협정세율이 있는 경우 최고세율인 FGB1을 제외하고 세율이 높은 순으로 FGB2부터 FGB7까지 순차적으로 부여
FGB8	- 추천이 필요한 물품 중 추천을 받은 물품
FGB9	- 긴급수입제한조치 품목 중 발동 수준을 초과한 물품

한국어 본

“이 서류(세관인증번호...¹⁾)의 적용대상이 되는 제품의 수출자는, 달리 명확하게 표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제품은...²⁾의 특혜원산지 제품임을 신고한다.”

영어 본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sation No ...⁽¹⁾)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²⁾preferential origin.

3)

(장소 및 일자)

4)

(수출자의 서명 및 신고서에 서명하는 인의 이름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함)

- 1) 원산지 신고서가 인증수출자에 의해 작성되는 경우 인증수출자의 인증번호가 이란에 기재되어야 한다. 원산지 신고서가 인증수출자에 의해 작성되지 아니하는 경우 괄호 안의 단어는 생략되거나 빈칸으로 남겨둔다.
- 2) 제품의 원산지가 표시되어야 한다.
- 3) 그 정보가 문서 자체에 포함되는 경우 이 표시는 생략될 수 있다.
- 4) 수출자의 서명이 요구되지 아니하는 경우, 서명의 면제는 서명자의 이름이 면제된다는 것을 또한 의미한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4의2]

영국을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제30조제1항제8호 관련)

1. 신선, 냉장 및 냉동 쇠고기

-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품목번호 : 제0201.10.0000호, 제0201.20.1000호, 제0201.20.9000호, 제0201.30.0000호, 제0202.10.0000호, 제0202.20.1000호, 제0202.20.9000호 및 제0202.30.0000호

이행연도	2019.7.1. ~ 2020.6.30.	2020.7.1. ~ 2021.6.30.	2021.7.1. ~ 2022.6.30.	2022.7.1. ~ 2023.6.30.	2023.7.1. ~ 2024.6.30.
기준발동물량 (메트릭톤)	467	476	486	496	506
특별긴급관세율(%)	30.0	30.0	30.0	24.0	24.0
이행연도	2024.7.1. ~ 2025.6.30.	2025.7.1. ~ 2026.6.30.	2026.7.1. ~ 2027.6.30.	2027.7.1. ~ 2028.6.30.	
기준발동물량 (메트릭톤)	516	526	537	해당없음	
특별긴급관세율(%)	24.0	24.0	24.0	0	

※ [참고] ※ 한-영 FTA 협정 부속서3의 이행 9년차란 2019.7.1일을 시작으로 12개월을 말하며, 10년차부터의 이행연도는 매년 7월1일부터 12개월을 말한다.

2. 돼지고기

-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품목번호 : 제0203.19.1000호 및 제0203.19.9000호

이행연도	2019.7.1. ~ 2020.6.30.	2020.7.1. ~ 2021.6.30.	2021.7.1. ~ 2022.6.30.	2022.7.1. ~ 2023.6.30.
기준발동물량 (메트릭톤)	3	3	3	해당없음
특별긴급관세율(%)	13.5	12.4	11.3	0

3. 사과

-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품목번호 : 제0808.10.0000호

이행연도	2019.7.1. ~ 2020.6.30.	2020.7.1. ~ 2021.6.30.	2021.7.1. ~ 2022.6.30.	2022.7.1. ~ 2023.6.30.	2023.7.1. ~ 2024.6.30.
기준발동물량 (메트릭톤)	48	49	50	51	52
특별긴급관세율(%)	33.8	33.8	33.8	27	27
이행연도	2024.7.1. ~ 2025.6.30.	2025.7.1. ~ 2026.6.30.	2026.7.1. ~ 2027.6.30.	2027.7.1. ~ 2028.6.30.	2028.7.1. ~ 2029.6.30.
기준발동물량 (메트릭톤)	53	54	55	56	57
특별긴급관세율(%)	27	27	27	22.5	22.5
이행연도	2029.7.1. ~ 2030.6.30.	2030.7.1. ~ 2031.6.30.	2031.7.1. ~ 2032.6.30.	2032.7.1. ~ 2033.6.30.	2033.7.1. ~ 2034.6.30.
기준발동물량 (메트릭톤)	58	59	61	62	63
특별긴급관세율(%)	22.5	22.5	22.5	22.5	22.5
이행연도	2034.7.1. ~ 2035.6.30.	2035.7.1. ~ 2036.6.30.			
기준발동물량 (메트릭톤)	64	해당없음			
특별긴급관세율(%)	22.5	0			

※ 비고: 기준발동물량은 모든 종류의 사과의 총수입물량을 기준으로 하며, 2022년 7월 1일부터 2035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의 특별긴급관세율은 후지사과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4. 맥아 및 맥주보리

○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품목번호 : 제1003.10.1000호, 제1003.90.1000호 및 제1107.10.0000호

이행연도	2019.7.1. ~ 2020.6.30.	2020.7.1. ~ 2021.6.30.	2021.7.1. ~ 2022.6.30.	2022.7.1. ~ 2023.6.30.	2023.7.1. ~ 2024.6.30.
기준발동물량 (메트릭톤)	1,746	1,780	1,816	1,852	1,889
특별긴급관세율(%)					
제1003.10.1000호	338.0	315.0	291.0	268.0	244.0
제1003.90.1000호					
제1107.10.0000호	199.0	190.0	181.0	139.0	127.0
이행연도	2024.7.1. ~ 2025.6.30.	2025.7.1. ~ 2026.6.30.	2026.7.1. ~ 2027.6.30.	2027.7.1. ~ 2028.6.30.	
기준발동물량 (메트릭톤)	1,927	1,966	2,005	해당없음	
특별긴급관세율(%)					
제1003.10.1000호	221.0	197.0	174.0	0	
제1003.90.1000호					
제1107.10.0000호	115.0	103.0	91.5	0	

5. 감자전분

○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품목번호 : 제1108.13.0000호

이행연도	2019.7.1. ~ 2020.6.30.	2020.7.1. ~ 2021.6.30.	2021.7.1. ~ 2022.6.30.	2022.7.1. ~ 2023.6.30.	2023.7.1. ~ 2024.6.30.
기준발동물량 (메트릭톤)	43	44	45	46	47
특별긴급관세율(%)	336.0	321.0	306.0	235.0	215.0
이행연도	2024.7.1. ~ 2025.6.30.	2025.7.1. ~ 2026.6.30.	2026.7.1. ~ 2027.6.30.	2027.7.1. ~ 2028.6.30.	
기준발동물량 (메트릭톤)	48	49	50	해당없음	
특별긴급관세율(%)	195.0	175.0	155.0	0	

6. 인삼

○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품목번호 : 제1211.20.2210호, 제1211.20.2220호,

제1211.20.2290호, 제1302.19.1210호, 제1302.19.1220호 및 제1302.19.1290호

이행연도	2019.7.1. ~ 2020.6.30.	2020.7.1. ~ 2021.6.30.	2021.7.1. ~ 2022.6.30.	2022.7.1. ~ 2023.6.30.	2023.7.1. ~ 2024.6.30.
기준발동물량 (메트릭톤)	20	21	21	21	22
특별긴급관세율(%)	754.3	754.3	754.3	754.3	754.3
이행연도	2024.7.1. ~ 2025.6.30.	2025.7.1. ~ 2026.6.30.	2026.7.1. ~ 2027.6.30.	2027.7.1. ~ 2028.6.30.	2028.7.1. ~ 2029.6.30.
기준발동물량 (메트릭톤)	22	23	23	24	24
특별긴급관세율(%)	754.3	754.3	754.3	566.0	566.0
이행연도	2029.7.1. ~ 2030.6.30.	2030.7.1. ~ 2031.6.30.			
기준발동물량 (메트릭톤)	25	해당없음			
특별긴급관세율(%)	566.0	0			

7. 설탕

○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품목번호 : 제1701.99.0000호

이행연도	2019.7.1. ~ 2020.6.30.	2020.7.1. ~ 2021.6.30.	2021.7.1. ~ 2022.6.30.	2022.7.1. ~ 2023.6.30.	2023.7.1. ~ 2024.6.30.
기준발동물량 (메트릭톤)	4	4	4	4	4
특별긴급관세율(%)	50.0	50.0	50.0	50.0	50.0
이행연도	2024.7.1. ~ 2025.6.30.	2025.7.1. ~ 2026.6.30.	2026.7.1. ~ 2027.6.30.	2027.7.1. ~ 2028.6.30.	2028.7.1. ~ 2029.6.30.
기준발동물량 (메트릭톤)	5	5	5	5	5
특별긴급관세율(%)	50.0	50.0	50.0	37.5	37.5
이행연도	2029.7.1. ~ 2030.6.30.	2030.7.1. ~ 2031.6.30.	2031.7.1. ~ 2032.6.30.	2032.7.1. ~ 2033.6.30.	
기준발동물량 (메트릭톤)	5	5	5	해당없음	
특별긴급관세율(%)	37.5	37.5	37.5	0	

8. 주정

○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품목번호 : 제2207.10.9010호

이행연도	2019.7.1. ~ 2020.6.30.	2020.7.1. ~ 2021.6.30.	2021.7.1. ~ 2022.6.30.	2022.7.1. ~ 2023.6.30.	2023.7.1. ~ 2024.6.30.
기준발동물량 (메트릭톤)	6	7	7	7	7
특별긴급관세율(%)	199.0	191.0	182.0	139.0	127.0
이행연도	2024.7.1. ~ 2025.6.30.	2025.7.1. ~ 2026.6.30.	2026.7.1. ~ 2027.6.30.	2027.7.1. ~ 2028.6.30.	
기준발동물량 (메트릭톤)	7	7	7	해당없음	
특별긴급관세율(%)	116.0	104.0	91.8	0	

9. 텍스트린

○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품목번호 : 제3505.10.4010호, 제3505.10.4090호,
제3505.10.5010호 및 제3505.10.5090호

이행연도	2019.7.1. ~ 2020.6.30.	2020.7.1. ~ 2021.6.30.	2021.7.1. ~ 2022.6.30.	2022.7.1. ~ 2023.6.30.	2023.7.1. ~ 2024.6.30.
기준발동물량 (메트릭톤)	435	444	452	461	471
특별긴급관세율(%)	260.0	244.0	228.0	152.0	131.0
이행연도	2024.7.1. ~ 2025.6.30.				
기준발동물량 (메트릭톤)	해당없음				
특별긴급관세율(%)	0				

2. 한-영 FTA 발효 관련 질의응답(Q&A) 자료

(관세청 FTA집행기획담당관실, ' 20. 11. 30.)

(1) 한-영 FTA 발효 시점은?

- 영-EU간 전환기간이 종료되어 영국에 대해 한-EU FTA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시점에 한-영 FTA가 발효됨
* EU 집행위원회 소재 브뤼셀 시간 기준 '21.1.1. 자정 발효 예정 (한국시간 오전 8시)
- 따라서, 한-영 FTA 발효 당일 오전 08시 前까지 세관에 수입신고가 접수된 영국산 물품은 한-EU FTA가 적용되나, 08시부터는 한-영 FTA만 적용 가능함에 유의

(2) 한-영 FTA 발효 시 프랑스, 독일 등 EU 관세당국으로부터 부여받은 인증수출자 번호로 한-영 FTA 적용이 가능한지? 또는 영국 관세당국으로부터 부여받은 인증수출자 번호로 한-EU FTA 적용이 가능한지?

- 한-영 FTA 발효 시 영국 관세당국으로부터 부여받은 인증수출자 번호(아래 번호체계 참조)가 기재된 원산지신고서에 근거하여 6천유로 초과 물품에 대한 한-영 FTA 적용이 가능하며,
- 다른 EU 국가의 관세당국으로부터 부여받은 인증수출자 번호로는 한-영 FTA를 적용받을 수 없음에 유의
- 또한, 한-영 FTA가 발효된 이후에는 영국 관세당국으로부터 부여받은 인증수출자 번호가 기재된 원산지신고서로 한-EU FTA를 적용받을 수 없음

《 영국의 인증수출자 번호 체계 》

(번호체계) 국가코드(2) / 인증번호(5) / 인증연도(2) (예시) GB 12345/21

(3) 독일산 물품을 '20년 12월 중 영국에서 선적하여 ' 21.1월 중순 우리나라에서 수입신고하는 경우 한-영 FTA 또는 한-EU FTA 적용이 가능한지?

- 한-영 FTA는 우리나라와 영국간 체결된 협정으로서 당사국간 수출입되는 원산지 제품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동 협정에서 EU는 비당사국이므로 EU산 물품은 한-영 FTA 적용 대상이 아님
- 영국을 경유하는 EU산 물품이 한-EU FTA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협정에 따른 원산지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예시) EU에 소재한 인증수출자에 의해 작성된 원산지신고서 및 비당사국 경유 화물에 대한 직접운송 증서, 증여부 입증서류 구비 등

(4) 영국에서 네덜란드로 선적된 영국산 물품을 한국으로 수출할 때 네덜란드 관세당국으로부터 인증수출자 지위를 부여받은 네덜란드에 소재한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을 하는 경우 한-EU FTA 또는 한-영 FTA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 한-영 FTA가 발효된 이후에 우리나라로 수입된 영국산 물품에 대해서는 한-EU FTA를 적용할 수 없음

- EU를 경유하는 영국산 물품의 한-영 FTA 적용을 위해서는 수출당사국인 영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인증 수출자 지위를 부여받은 영국의 수출자에 의해 원산지신고서가 작성하여야 하며, 해당 물품이 한-영 FTA에 따른 직접운송 요건을 충족해야 함

(5) 한-영 FTA가 발효되기 전에 수입신고된 물품에 대하여 한-EU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이 가능한지?

- 한-영 FTA가 발효되기 전에 우리나라 세관에 수입신고가 접수된 물품은 한-EU FTA를 적용하여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음

(6) ' 20.12월에 영국산 물품이 ' 21.1.1 08시 이후 우리나라에 도착하여 수입신고가 된다면 협정이 발효되기 전에 작성된 원산지신고서로 한-영 FTA 또는 한-EU FTA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 경과규정에 따라 협정 발효일에 통과 중이거나, 양 당사국 내에 있거나, 세관 보세창고에 임시 보관 중이거나 자유지역 내에 있는 물품은 한-영 FTA 적용(협정관세 수리 전 적용 또는 사후적용)이 가능함
- 다만, 한-영 FTA 발효 이후 소급 작성되었음이 확인되는 원산지신고서와 직접운송 증빙서류를 협정 발효 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아울러, 영국이 한-EU FTA를 적용받는 시점에 기 선적되어 운송중인 물품이라도 우리나라에 수입신고 되는 시점이 한-영 FTA 발효 이후인 경우에는 한-EU FTA를 적용받을 수 없음

(7) 독일산 및 영국산 물품이 혼재된 후 독일에서 선적되어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경우 원산지신고서 작성방법은? (현행 독일의 인증수출자가 작성한 하나의 상업서류로 영국산 및 독일산 물품 모두 원산지 증명)

- 독일의 인증수출자는 EU산 물품에 대해서만 원산지증명이 가능하며, 영국산 물품은 영국에 소재하고 영국 관세당국으로부터 인증 지위를 부여받은 인증수출자에 의해 원산지증명이 이루어져야 함
- 독일에서 발행된 상업송장은 한-영 FTA 적용 시 제3국 송장으로 간주되며, 제3국에서 발행된 상업서류에 원산지를 증명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신고문안과 함께 작성일자, 장소, 서명, 서명하는 인의 성명을 기재하는 등 해당 원산지증명의 주체가 당사국(영국)에 소재한 수출자임이 서류상으로 확인될 수 있어야 함
- 아울러 하나의 원산지신고서로 사용된 상업서류에 원산지 물품과 비원산지 물품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해당 서류에 협정관세 적용 대상이 아닌 비원산지 물품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표기하여야 함

(8) 한-영 FTA 적용 시 EU산 재료 및 공정에 대한 누적이 한시적(협정 발효일 이후 3년간)으로 가능한데, EU산 물품에 대해 한-EU FTA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영국산 재료 및 공정을 누적할 수 있는지?

- 한-영 FTA 발효 이후 영국은 한-EU FTA에서 비당사국으로 간주되므로, EU산 물품에 대한 영국산 재료 또는 공정의 누적 적용이 불가함
-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최종 생산된 제품을 한-EU FTA를 적용하여 EU 국가로 수출하는 경우에도 영국산 재료의 사용 또는 영국에서 거친 공정에 대해서는 누적 적용이 불가함

(9) EU를 경유하는 영국산 물품에 대하여 완화된 직접운송 요건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 한-영 FTA에서는 EU를 경유하는 물품에 대한 직접운송을 3년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명확한 인정 기준 마련을 위해 양국 관세당국간 협의 중에 있음
- 다만, 영국산 물품이라도 선적서류상의 선적국(출항국)이 영국이 아닌 EU 회원국인 경우 현행과 달리 영국 - 해당 EU 회원국간의 운송경로 등을 수입자가 입증해야 함
- 참고로 영국측에서는 EU를 경유하여 운송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탁송화물의 분리가 허용될 수 있으나, 경유국에서 수입통관된 물품에 대해서는 직접운송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으로서,
- EU를 경유하는 물품이라 할지라도 직접운송의 입증을 위해 경유국 세관의 통제를 벗어나지 않았음을 입

증하는 서류가 수입국의 관세당국에 제출되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됨

- 관세청은 영국 관세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EU 경유 화물에 대한 직접운송 인정기준이 마련되는 경우 이를 별도로 공지할 예정임

(10) EU산 물품이 영국을 경유하여 우리나라로 수입되거나, 영국산 물품이 EU가 아닌 비당사국을 경유하여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경우에도 완화된 직접운송 규정이 적용되는지?

- 한-영 FTA가 발효된 이후에는, 영국을 경유하는 EU산 물품을 당사국간 직접 운송되는 물품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한-EU FTA에서 정하고 있는 비당사국을 경유하는 물품에 대한 직접운송 인정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단일 탁송화물을 구성하는 물품*이 비당사국에서 환적 또는 창고보관 되는 경우에는 경유국에서 자유로운 유통을 위해 반출(수입통관)되지 아니해야 하며, 하역, 재선적 또는 제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한 공정 이외의 작업이 비당사국에서 수행된 경우에는 직접운송으로 인정되지 아니함

* 단일한 수출자로부터 단일한 수하인에게 일시에 송부된 물품이거나, 단일의 운송서류 또는 단일의 송품장이 발행된 물품

- 비당사국에서 환적 또는 일시적 창고보관 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탁송화물의 분리가 허용되지 아니하며, 직접운송을 입증하기 위해 수입 당사국(우리나라) 세관에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비당사국 경유화물에 대한 직접운송 입증서류 》

- ① 제3국에서 원산지 제품의 환적 또는 보관과 관련된 상황의 증거
- ② 수출 당사국에서 경유국을 통한 통과를 다루고 있는 단일 운송서류, 또는
- ③ 경유국의 관세당국이 발행한 다음의 증명서
 - 1) 제품의 정확한 설명을 제공하는 것
 - 2) 제품의 하역 및 재선적 일자, 그리고 적용 가능한 경우, 선박명 또는 사용된 다른 운송수단을 기재하는 것, 그리고
 - 3) 제품이 경유국에 머물러 있는 그 상태를 증명하는 것

- 아울러, 영국산 물품이 EU가 아닌 비당사국을 경유하여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경우에도 상기와 같이 직접운송 충족 여부를 입증해야 함

(11) 한-EU FTA 품목별 인증수출자는 한-영 FTA 추가 인증을 위한 신청서를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하는데 업체별 인증수출자의 경우 별도로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 업체별 인증수출자는 해당 인증의 유효기간 내에서 영국으로 수출하는 물품이 협정상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세관장에게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원산지증명을 할 수 있음

(12) 한-EU FTA 품목별 인증수출자가 인증받은 물품에 대해 한-영 FTA 인증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은?

- ‘한-영 FTA 인증수출자 추가지정 신청서’를 관할세관 인증수출자 업무 담당부서에 서면, 우편,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 20.12.30.까지 제출해야 함

《 세관별 인증수출자 업무 담당 부서 》

세관	담당부서	세관	담당부서
인천세관	자유무역협정1과	서울세관	자유무역협정4과
부산세관	자유무역협정과	대구세관	자유무역협정과
광주세관	통관지원과	평택세관	통관지원과

(13) 한-영 FTA 인증을 신규로 신청하거나, 기존 한-EU FTA 인증 품목에 대해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 인증서

가 발급되는 시점 및 인증의 유효기간은?

- 인증 신청된 물품에 대하여 발효 이전에 인증심사가 종료된 경우라도 인증의 효력은 한-영 FTA가 발효된 이후부터 인정* 가능함

* 한-영 FTA 인증서 발급일자도 한-영 FTA 발효일 이후 날짜로 기재됨

- 한-EU FTA 인증을 받은 품목에 대해 한-영 FTA 인증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 한-EU FTA 인증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유효하며, 신규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5년간 유효기간 부여

(14) 전자상거래로 구매한 미화 1천불 이하 물품이 영국에서 특송화물 또는 국제우편물로 수입되는 경우 세관에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한-영 FTA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 한-영 FTA는 한-EU FTA와 마찬가지로 사인 간에(private person to private person) 소포로 송부되었거나 여행자 휴대품으로 반입된 미화 1천불 이하(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물품 기준)의 비상업적 물품에 한하여 원산지증명의 제출이 면제됨

- 따라서 전자상거래로 구매한 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신고문안이 적절하게 기재된 해당 물품의 상업서류, 영수증, 우편물 세관신고서 등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영 FTA를 적용받을 수 있음

(15) 영국에서 전자상거래로 구매한 물품의 원산지가 이탈리아 또는 프랑스산인 경우 한-영 FTA 또는 한-EU FTA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 EU 국가 등 원산지가 영국이 아닌 물품에 대해서는 한-영 FTA를 적용받을 수 없음

- 영국에서 발송된 EU산 물품에 대해 한-EU FTA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EU 국가에 소재한 수출자에 의해 작성된 원산지신고서와 한-EU FTA에서 정한 직접운송 요건이 충족됨을 입증하는 서류(QA 10번 참조)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16) ' 21.1.1. 08시 이전 통관우체국에 도착한 국제우편물에 대해 한-영 FTA 발효 이후에 해당 물품의 수취인이 간이통관 신청을 하는 경우 적용받을 수 있는 협정은?

- 일반수입신고 대상이 아닌 우편으로 수입되는 물품(간이통관 대상 물품)은 과세물건 확정시기가 관세법 제16조에 따라 '통관우체국에 도착한 때' 이므로, 한-영 FTA가 발효되기 이전에 통관우체국에 도착한 국제우편물에 대해서는 한-EU FTA가 적용됨(협정 발효 이후 통관우체국에 도착한 물품은 한-영 FTA 적용 대상임)

3. 한-영 FTA 발효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 유의사항 안내

○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2639(2020.12.9.)와 관련입니다.

○ 2021.1.1. 발효 예정인 한-영 FTA의 원활한 이행과 협정관세 적용 수입신고 오류방지를 위하여 관세청이 통지한 영국산 및 EU산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영국산 및 EU산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 유의사항

○ 한-영 FTA는 ' 21.1.1. 08시에 발효되므로, 발효 당일 08시 이전에는 영국산 물품이라도 한-EU FTA(관세율구분부호 FEU1 ~ FEU9)로 수입신고 하여야 함. 다만, 원활한 통관을 위해 한-EU FTA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가급적 ' 20.12.31.까지 수입신고 할 것을 권고

○ 한-영 FTA 발효된 이후에는 원산지가 영국이 아니거나, 영국 관세당국이 부여하지 아니한 인증수출자 번호에 근거하여 원산지를 증명한 경우 한-영 FTA를 적용(관세율구분부호 FGB1 ~ FGB9)받아 수입통관

할 수 없으나,

- 한-영 FTA가 발효되기 전에 수입신고가 접수된 물품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다른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사후적용)이 가능함
- 한-영 FTA 발효 이후에는 EU산 물품이 영국을 경유하여 우리나라로 수입되거나, 영국산 물품이 EU를 경유하여 수입되는 경우 수입자가 직접운송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세관장이 요구하는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경과규정에 따라 한-영 FTA 발효일에 통과중이거나, 양 당사국 내에 있거나, 세관 보세창고에 임시 보관 중이거나 자유지역 내에 있는 물품은 한-영 FTA를 적용받을 수 있음
- 이 경우, 한-영 FTA가 발효된 이후에 소급하여 작성되었음이 확인되는 원산지신고서와 직접운송 증빙서류를 협정 발효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한-영 FTA 발효 및 이행과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한-영 FTA 발효에 따른 운영지침(붙임1)’ 및 ‘한-영 FTA 관련 질의응답(QA) 자료(붙임2)’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안내사항은 관세청 FTA포털을 통해 공지할 예정임

※ 붙임 자료 ⇨ 첨부파일 참조

※ 문의 :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 ☎ 042-481-3206. 끝.

4.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개정에 관한 교환각서안

(영국측 제안 각서)

주대한민국 그레이트 브리튼 및 북아일랜드 연합왕국 대사관(“영국대사관” 또는 “주한영국대사관”)은 대한민국 외교부에 경의를 표하며, 2019년 8월 22일 런던 에서 서명된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협정”)을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영국대사관은 또한 동 협정 제15.5조의2에 따라 동 협정의 현행 조건을 기반으로 하는 협상에 대한 양국 정부 간의 최근 논의와 동 협상의 일환으로서 동 협정의 원산지 규정을 개선하고자 하는 양국 정부 간의 약속을 언급합니다.

동 협정 제15.5조와, 나아가 그레이트 브리튼 및 북아일랜드 연합왕국(“연합왕국” 또는 “영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영국 기업통상부와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 간 진행되어온 논의에 따라, 영국대사관은 동 협정의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의정서”)에 대한 다음의 개정사항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동 의정서 제3조(원산지 누적), 제1항과 제2항의 각주 1을 다음으로 대체한다. “제3조에 규정된 EU와의 누적은 양 당사국이 기한을 연장하기로 별도로 합의하지 않는 한 이 협정의 발효부터 5년 후에는 적용이 중단될 것이다. 양 당사국은 앞으로도 대한민국과 영국 간 무역을 촉진하는 상호 호혜적이고 기업 친화적인 원산지 규정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이를 위해 노력한다.”
2. 동 의정서 제13조(직접 운송), 제1항의 각주 2를 다음으로 대체한다.
“제3조 각주1에서 언급된 검토 기간에 맞게, “또는 EU를 경유하여”는 양 당사국이 기한을 연장하기로 별도로 합의하지 않는 한 이 협정의 발효부터 5년 후에 제13조제1항에서 삭제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대한민국 정부가 앞서 언급한 제안을 수락할 수 있다면, 영국대사관은 나아가 이 각서가 대한민국의 회답각서와 함께 동 협정을 개정하는 합의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영국대사관은 동 협정 제15.5조에 따라 동 협정을 개정하는 합의가 각국의 적용 가능한 법적 요건 및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국과 대한민국 간에 서면 통보 교환 중 더 늦은 통보일 또는 별도로 합의되는 날에 발효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주한영국대사관은 이 기회를 빌려 대한민국 외교부에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주한영국대사관
(일자)

대한민국 외교부

(한국측 회답 각서)

대한민국 외교부는 주대한민국 그레이트 브리튼 및 북아일랜드 연합왕국 대사관(“영국대사관” 또는 “주한영국대사관”)에 경의를 표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의 X월 XX일자 영국대사관 제안 각서 XX-XX의 접수를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주대한민국 그레이트 브리튼 및 북아일랜드 연합왕국 대사관(“영국대사관” 또는 “주한영국대사관”)은 대한민국 외교부에 경의를 표하며, 2019년 8월 22일 런던에서 서명된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협정”)을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영국대사관은 또한 동 협정 제15.5조의2에 따라 동 협정의 현행 조건을 기반으로 하는 협상에 대한 양국 정부 간의 최근 논의와 동 협상의 일환으로서 동 협정의 원산지 규정을 개선하고자 하는 양국 정부 간의 약속을 언급합니다.

동 협정 제15.5조와, 나아가 그레이트 브리튼 및 북아일랜드 연합왕국(“연합왕국” 또는 “영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영국 기업통상부와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 간 진행되어온 논의에 따라, 영국대사관은 동 협정의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의정서”)에 대한 다음의 개정사항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동 의정서 제3조(원산지 누적), 제1항과 제2항의 각주 1을 다음으로 대체한다. “제3조에 규정된 EU와의 누적은 양 당사국이 기한을 연장하기로 별도로 합의하지 않는 한 이 협정의 발효부터 5년 후에는 적용이 중단될 것이다. 양 당사국은 앞으로도 대한민국과 영국 간 무역을 촉진하는 상호 호혜적이고 기업 친화적인 원산지 규정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이를 위해 노력한다.”
2. 동 의정서 제13조(직접 운송), 제1항의 각주 2를 다음으로 대체한다.
“제3조 각주 1에서 언급된 검토 기간에 맞게, “또는 EU를 경유하여”는 양 당사국이 기한을 연장하기로 별도로 합의하지 않는 한 이 협정의 발효부터 5년 후에 제13조제1항에서 삭제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대한민국 정부가 앞서 언급한 제안을 수락할 수 있다면, 영국대사관은 나아가 이 각서가 대한민국의 회답 각서와 함께 동 협정을 개정하는 합의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영국대사관은 동 협정 제15.5조에 따라 동 협정을 개정하는 합의가 각국의 적용 가능한 법적 요건 및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국과 대한민국 간에 서면 통보 교환 중 더 늦은 통보일 또는 별도로 합의되는 날에 발효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주한영국대사관은 이 기회를 빌려 대한민국 외교부에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외교부는 나아가 동 제안을 수락하는 영광을 가지며, 영국대사관의 제안 각서와 이 회답 각서가 동 협정을 개정하는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하는 것을 확인하는 바입니다. 동 합의는 각국의 적용 가능한 법적 요건 및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확인하는 대한민국과 영국 간에 서면 통보 교환 중 더 늦은 통보일 또는 별도로 합의되는 날에 발효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외교부는 이 기회를 빌려 영국대사관에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외교부
(일자)
영국대사관

4. 한-미 FTA

1.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운영지침 시달

자유무역협정 집행기 획담당관, 2012-03-12(제정일자)

1. 2012.3.15일부터 발효예정인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관세행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시달합니다.
2. 각 세관장은 동 협정과 지침내용을 확인하시고 직원 교육실시, 홈페이지 게시 및 관련업계 공지 등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본부세관장 및 직할세관장은 동 지침 ④ ‘수입물품 원산지증명서의 형식요건 사전확인’ 업무를 운영할 처리담당을 아래 표와 같이 보고하시기 바라며, 동 사항을 각 세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운영지침 1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발효에 따른 운영지침

이 지침에서 ‘한-미 FTA 협정’은 ‘협정’이라 하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 해당 고시는 각각 ‘특례법’, ‘특례법 시행령’, ‘특례법 시행규칙’, ‘특례고시’라고 지칭함

※ 동 지침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는 날에 시행함

1. 한-미 FTA 일반 사항

1. 협정적용 영역

- ☐ 대한민국 : (원산지 부호 KR)
☐ 미합중국

지 역	원산지부호
미국 50개주, 콜롬비아 특별구(워싱턴 D.C)	US
푸에르토리코(PUERTO RICO)	PR

※ 관, 사이판 등 그밖에 미국의 자치령은 협정적용 대상이 아님

※ 협정문 제1.4조(정의)

2. 원산지 증명방식 : 자율발급

- ☐ [발급 주체]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
 - 수입자도 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작성 가능
 다만, 당해 수입물품이 원산지제품인 것과 운송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서류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함

※ 협정문 제6.15조(특혜관세대우 신청) 1항 가호

※ 협정문 제6.19조(수입관련 의무) 4항 아호

☐ [발급 형식] 서면 또는 전자증명

☐ 원산지증명서 서식

-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9서식에 따른 권고서식(붙임1). 또는,
- 협정에서 정한 필수항목을 기재한 서류

《※ 원산지증명서 기재항목 [협정문 제6.15조 제2항]》

- ① 증명인의 성명(필요한 경우 연락처 또는 그 밖의 신원확인 정보 포함)
- ② 상품의 수입자(아는 경우에 한한다.)
- ③ 상품의 수출자(생산자와 다른 경우에 한한다.)
- ④ 상품의 생산자(아는 경우에 한한다.)
- ⑤ 물품의 HS품목번호 및 품명
- ⑥ 상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증명하는 정보
- ⑦ 증명일자
- ⑧ 증명서 유효기간(포괄증명의 경우)

※ 협정문에서 정한 필수항목 이외의 정보를 기재하여도 적용 가능

- ◆ 송품장 등 상업서류에 기재하거나 별도의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해도 적용 가능

※ 항목별 설명

①항 관련	◆ ‘성명’, ‘주소’, ‘전화번호’, ‘e-mail 주소’ 등을 기재 - ‘성명’ 이외 동 원산지증명서와 관련되어 연락가능한 정보(예: E-mail, 전화번호)를 기재
③~④ 항 관련	◆ ‘수출자’는 ‘생산자’와 다른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 - ‘수출자’와 ‘생산자’ 중 하나의 항목은 반드시 기재
⑤항 관련	◆ HS2002기준에 의한 HS품목번호 기재 ※ 국내 수출자는 HS2002기준에 의한 품목번호임을 명시 (예시) 9503.10 (HS 2002) ※ 수입물품은 HS2012기준으로 작성된 경우에도 적용 가능 ◆ 원산지증명서의 HS품목번호(HS 6단위)와 수입신고서의 HS품목번호(HS 6단위)가 다른 경우, 원산지증명서의 물품과 수입신고 물품과의 동일성이 확인되고 수입신고서의 HS품목번호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에 충족한다면 협정관세 적용 가능
⑥항 관련	◆ 상품이 동 FTA에 따른 원산지 상품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기재 (예시) “I certify that the goods originate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Parties and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ose goods in the Korea-United State of America Free Trade Agreement.” (예시) “These Goods are of KOREA Preferential origin in the Korea-United State of America Free Trade Agreement”
⑦항 관련	◆ 작성자의 서명은 필수항목이 아님
⑧항 관련	◆ “원산지포괄증명”이란 반복되어 선적되는 동일물품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작성)일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최초의 원산지증명서를 반복하여 사용하는 것

3. HS2012 도입에 따른 작성방법

☐ [필요성] 제5차 HS협약 개정안(HS2012)이 ‘12.1.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한-미 FTA는 ‘HS2002’ 기준으로 협상 타결

- HS2012기준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양국 세관당국간에 협의중에 있으며,
- 그 전에는 임시로 “연계표(HS2012 ↔ HS2002)”를 참고하여 적용

※ 기획재정부(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에서 시달

☐ [관련법령] FTA특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시 행 령 : 특혜세율(양허표) 규정(HS2012기준)
- 시행규칙 : 원산지결정기준 규정(HS2002기준)

⇒ 세율과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연계표 활용 필요

※ 현재 기발효 FTA(EU 등)도 “연계표(HS2012 ↔ HS2007)”로 운영 중

- 관세율(HS2012기준), 원산지결정기준(HS2007기준)

☐ [HS품목번호 작성방법] 원산지증명서, 협정관세적용신청서, 수입신고서 상 기재방법

서 류 명	품목번호 작성기준
원산지증명서, 협정관세적용신청서	HS2002
수출입신고서	HS2012

4. 원산지 증명의 면제

☐ 수입물품 과세가격이 미화 1천 달러 이하의 소액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 증명 면제

- 상업용 여부와 관계없이 미화 1천달러 이하의 여행자휴대품, 우편물, 특송물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 면제*

* 구매영수증, 제품의 원산지 표기 등을 통해 원산지를 간이하게 확인 후 협정 적용

-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증명서발급이 면제되지 않음

- ① 당사국 법의 준수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
- ② 수입물품이 사전에 계획된 일련의 수입의 일부분으로 활용되는 경우

※ 협정문 제6.16조(증명 또는 그 밖의 정보의 면제)

5. 원산지 증명의 유효기간

- ☐ 원산지 증명서는 발급한 날로부터 4년 동안 유효
- ☐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따라 운송이 지연된 경우에는 증명서의 효력을 인정함*

※ 협정문 제6.15조(특혜관세대우 신청)

※ 특례법 시행령 10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5항

6. 원산지증명서 발급시기

- ☐ 한-미 FTA에서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시기에 대한 제한 없음
 - 따라서 수출당사국에서 수출물품의 선적이 완료된 후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경우도 적용 가능
 - ※ [예] (선적일) 2012.1.15일, (C/O작성일) 2012.1.30일 → 유효
 - 다만,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내에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여야 함

7. 협정발효 적용시점(경과규정)

- ☐ 수입물품에 대한 협정발효 적용시점
 - 협정발효일 이후(2012년 3월 15일)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
 - ※ 개정 FTA특례법시행령 부칙(제23336호) 제2조(일반적적용례)
 - 협정발효일 이전에 작성된 원산지증명서도 적용 가능
 - ※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이 4년이므로, 수입신고일 또는 수입항도착일로부터 4년전에 작성된 원산지증명서까지 적용대상
 - (예) 수입항도착일 : 2012.3.15일 [2008.3.16일 이후 작성된 원산지증명서는 유효]
- ☐ 수출물품에 대한 협정발효 적용시점
 - 협정발효일 이후(2012년 3월 15일) 미국 세관당국에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

II. 수입자 관련 사항

《한-미 FTA 관세율 종류》

세 율 종 류	협정문 조항	특례법령 근거 조항	
		법	시행령
기 본 세 율	부속서 2-나	법 제4조	영 제3조 제9항
할 당 관 세	부속서 2-나-1		영 제4조
덤핑방지관세	10.7조	법 제5조의2	영 제4조의7
상 계 관 세			영 제4조의8
긴 급 관 세	10.1조 ~ 10.4조	법 제6조	영 제8조의12
섬유·의류 긴급관세	4.1조		영 제8조의13
자동차 긴급관세	서한문 제4절		영 제8조의14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	3.3조 부속서 3-가	법 제7조의3	영 제8조의17

8. 운송원칙(제3국 통과 및 환적 물품)

- ☐ 비당사국(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신청인이 서류로 입증하여야 함

《한-미 FTA에서 정하는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

- ① 비당사국에서 하역·재선적 또는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공정 이외의 공정을 거치는 경우
- ② 비당사국의 영역에서 세관당국의 통제하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는 경우

※ 다만, 현행 특례고시 제3-5-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선하증권 등 운송서류로 명백하게 확인되면 협정관세 적용 가능

※ 협정문 제6.13조 통과 및 환적

9. 수입신고 수리 전 협정관세적용 신청

* [붙임 2] 협정관세적용신청서 참조

- ☐ 수입자는 해당 수입물품의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 유효한 원산지증명서에 근거하여 특혜관세 적용을 신청하여야 함
- FTA특레고시 제3-3-2조(수입신고수리전 협정관세적용신청) 준용

※ 협정문 제6.19조(수입 관련 의무)

- 협정관세적용신청서 작성시(FTA특레고시 별지 제9호 서식) ⑨번란(원산지증명서 발급주체)를 정확하게 표시
* 1:기관, 2:자율(수출자), 3:자율(생산자), 4:자율(수입자)
- ☐ 세관에서 수입통관 심사시 원산지증명서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신고건은 원산지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
※ FTA특레고시 별표6에 따른 원본임을 확인하는 서명이 있는 사본 제출도 가능

[참고] FTA특레고시 [별표 6] 원산지증명서 사본제출 스탬프

본 사본이 원본과 다를 경우 관세법 등 관련법령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고 있으며, 세관에서 요구시 원본을 제출하겠습니다.
수입자 000 서명

10. 수입신고 수리 후 협정관세적용 신청

- ☐ 수입 당시 원산지 상품이었으나 특혜관세적용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 적용 신청 가능
- 이 경우 협정관세적용신청서에 원산지증명서* 및 세관이 요구하는 그 밖의 문서를 제시해야 함
* 동 협정에서는 수리후 협정관세적용신청시 원산지증명서 사본 인정

※ 협정문 제6.19조(수입 관련 의무) 제5항

11. 수입자의 자료보관(FTA특레법 시행령 제13조)

- ☐ 서류보관기간 :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5년
- ☐ 수입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

- 원산지증명서(전자문서 포함)
- 원산지증빙자료 (원산지확인서, 원산지소명서 등)
- 수입신고필증
- 수입거래 관련 계약서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 수입물품의 국제운송 관련 서류
- 사전심사서 및 사전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
(사전심사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한함)
- 지적재산권거래 관련 계약서

12. 수량별 차등협정관세 적용품목(TRQ 품목*) 관련 사항

* [붙임 3] 수량별 차등협정관세 적용품목(Tariff-Rate Quotas) 참조

① [선착순방식 TRQ 품목]

-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순서에 따라 정해진 수량까지는 무관세, 초과물량은 협정에 정해진 양허유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품목

품 명	1년차 적용물량(M/T)
넙치(0303-34-0000, 0303-39-0000)	1,530
명태(0303-67-0000, 0303-69-9000)	4,000
민어(0303-89-9091)	1,000

- 실제반입되는 수량이 수입신고수량과 같은 수량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선택적으로 서류제출대상으로 운영
※ 송품장, 선하증권 등을 확인하여 동일 수량인지 확인할 것

- ☐ 미합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제2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 부록 2-가-1(대한민국)에서 선착순방식으로 운영 하는 물품에 대한 운영방법

1. (대상) 보세구역에 장치한 이후 수입신고되는 물품을 대상으로 운영
2. (통관절차)
 - 한도수량에 도달하는 날의 전날까지는 선착순으로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적용
 - 한도수량에 도달한 날에 수입신고된 물품은 잔여수량을 그날에 수입신고된 수량(수입신고수리된 수량에 한한다)에 비례하여 각각 배분
 - 배분한 이후에도 잔여수량이 있는 경우 한도수량도달일의 다음날 순서대로 배분
3. (배분에 따른 세액보정)
 - 통관지세관장 : 배분되어 조정된 수량을 수입자에게 통지
 - 수입자 : 관세법 제38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세액을 보정
 - * 가산이자 는 없음(동조 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
4. (잔여수량의 게시) 배분절차가 완료되는 날까지 품목별 총수량·사용수량과 잔여수량을 관세청 FTA포탈(fta.customs.go.kr)을 통해 게시

- 운영방법은 한-EU FTA 선착순방식 수량별 차등 협정관세품목 방식과 같음(※ FTA 특레고시 제5장으로 신설 예정)

② [수입권 추천* 방식 TRQ 품목]

- * 수입권 공매방식 품목과 수입권 배분방식 품목
- 주무부 장관의 위임을 받은 기관(추천대행기관*)의 추천을 받은 후 해당 추천서를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품목
 - *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유가공협회 등 총7개 대행기관
 - ※ [주의사항] 협정에서 규정한 원산지증명서를 가지고 협정에서 정하는 물량을 추천기간에서 추천받아야 함 (주의) WTO 일반특혜C/O로 FTA협정관세 적용 불가
 - ※ • 전자적 방식에 따른 ‘한·미 자유무역협정 관세율할당물량 적용 추천서(전산용)’는 ‘세관장확인대상 요건확인 시스템’으로 확인
 - 전산용 추천서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

[참조] 한-미 FTA 제2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 부록 2-나-1(대한민국), FTA특례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13.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대상품목(ASG)* 관련 사항

* ASG : Agricultural Safeguard

* [붙임 4]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대상품목 참조

□ 농림축산물 긴급수입제한조치 대상품목은 기준발동물량을 초과하여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미국을 원산지로 하는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가 적용되는 물품

① [선착순방식 농업긴급수입제한조치 품목]

-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순서에 따라 정해진 수량까지는 무관세 또는 협정관세를 적용, 초과물량은 ASG관세율을 적용하는 품목

가. 유형1 : [기준물량 이하] 협정관세율, [기준물량 초과] ASG

나. 유형2 : [기준물량 이하] 무관세, [기준물량 초과] ASG

다. 유형3 :

◆ 이행 1~4년차	[중간 기준물량 이하] 무관세 [주 기준물량 이하] 중간특별긴급관세율 [주 기준물량 초과] 주 특별긴급관세율
◆ 이행 5년차 이후	[주 기준물량 이하] 무관세 [주 기준물량 초과] 주 특별긴급관세율

라. 유형4 : [기준발동물량 내 무관세물량] 무관세

[기준물량이하] 협정관세율

[기준물량초과] ASG

- 운영방법 : 선착순방식 TRQ품목 운영방법과 같음

② [관세율할당 품목과 결합된 농업긴급수입제한조치 품목]

- 협정에서 정한 기준물량은 추천에 의한 할당관세율을 적용, 기준물량 초과물량은 ASG관세율을 적용하는 품목

마. 유형5 : [기준물량이하] TRQ무관세 [기준물량 초과] ASG

[참조] 한-미 FTA 제3.3조 농업긴급수입제한조치

※ 유형별 대상품목

○ 유형1

- ▶ [기준물량이하] 협정관세율
[기준물량 초과] ASG

쇠고기	0201.10.0000, 0201.20.1000, 0201.20.9000 0201.30.0000, 0202.10.0000, 0202.20.1000, 0202.20.9000, 0202.30.0000
돼지고기	0203.19.1000, 0203.19.9000
양파	0703.10.1000, 0712.20.0000
마늘	0703.20.1000, 0703.20.9000, 0711.90.1000, 0712.90.1000
고추	0709.60.1000, 0709.60.9000, 0711.90.5091, 0904.21.0000, 0904.22.0000
사과	0808.10.0000
녹차	0902.10.0000, 0902.20.0000
생강	0910.11.1000, 0910.12.1000, 0910.11.2000, 0910.12.2000, 0910.11.9000, 0910.12.9000
낙화생	1202.30.1000, 1202.41.0000, 1202.30.2000, 1202.42.0000
참깨	1207.40.0000
인삼	1211.20.1110, 1211.20.1190, 1211.20.1210, 1211.20.1290, 1211.20.1310, 1211.20.1390, 1211.20.2210, 1211.20.2220, 1211.20.2290, 1211.20.9100, 1211.20.9200, 1211.20.9900, 1302.19.1210, 1302.19.1220, 1302.19.1290
참기름	1515.50.0000
설탕	1701.91.0000, 1701.99.0000

○ 유형2

- ▶ [기준물량이하] 무관세
[기준물량 초과] ASG

기타 뿌리 및 괴경류	0714.30.9000, 0714.40.9000, 0714.50.9000, 0714.90.9090
감자의 분, 조분, 분말, 플레이크, 입 및 펠리트	1105.10.0000, 1105.20.0000

○ 유형3

- ▶ 이행 1 ~ 4년차 : [중간기준물량이하] 무관세

[주기기준물량 이하] 중간특별긴급관세율

[주기기준물량 초과] 주 특별긴급관세율

- ▶ 이행 5년차 이후 : [주기기준물량 이하] 무관세

[주기기준물량 초과] 주 특별긴급관세율

콩류	0713.31.9000, 0713.32.9000
고구마	0714.20.1000, 0714.20.2000, 0714.20.3000, 0714.20.9000
팥콘	1005.90.2000
옥수수	1005.90.9000
메밀	1008.10.0000, 1008.40.0000, 1008.50.0000, 1008.60.0000, 1008.90.0000
곡류, 곡물의 분쇄물, 가공곡물	1102.90.9000, 1103.20.9000, 1104.19.9000, 1104.29.1000, 1104.29.9000
주정	2207.10.9010

○ 유형4

- ▶ [기준발동물량 내 무관세물량] 무관세

[기준물량 이하] 협정관세율

[기준물량 초과] ASG

감자 전분	1108.13.0000
매니옥 전분	1108.14.1000, 1108.14.9000
고구마 전분	1108.19.1000
기타 전분	1108.19.9000

○ 유형5

- ▶ [기준물량 이하] TRQ무관세
[기준물량 초과] ASG

맥아 및 맥주맥	1003.10.1000, 1003.90.1000, 1107.10.0000
보리	1003.10.2000, 1003.90.2000, 1003.10.3000, 1003.90.3000
옥수수 전분	1108.12.1000, 1108.12.9000
텍스트린	3505.10.4010, 3505.10.4090, 3505.10.5010, 3505.10.5090

※ 참고자료

《한-미 FTA 관세율 구분부호》

FUS1	- 하나의 품목번호에 1개의 협정세율이 적용되는 물품 - 하나의 품목번호에 수개의 다른 협정세율이 있는 것 중 최고세율 물품
FUS2	- 하나의 품목번호에 여러 개의 다른 협정세율이 있는 것 중 최고세율인 FUS1을 제외하고 높은 순으로 FUS2, FUS3, FUS4를 순차적으로 부여
FUS3	
FUS4	
FUS5	- 수입쿼터 선착순 방식을 적용하는 물품 중 수입쿼터 물량 내의 물품
FUS6	- 추천이 필요한 물품 중 추천을 받은 물품
FUS7	- 긴급수입제한 조치 품목 중 중간기준물량을 초과한 물품
FUS8	- 긴급수입제한 조치 품목 중 주기기준물량을 초과한 물품 - 긴급수입제한 조치 품목 기준물량을 초과한 물품(1단계 발동품목)
FUS9	- 향후 적용될 새로운 관세율 등록을 위한 잔여부호

《TRQ, ASG품목 관세율 구분부호》

○ TRQ 선착순방식

물 량	관세율부호
최초물량 ~ 무관세물량	FUS 5
무관세물량 초과물량	FUS 1

○ TRQ 수입권 추천방식

물 량	관세율부호
추천물량	FUS 6
그 밖의 물량	FUS 1

○ ASG 유형1

물 량	관세율부호
[기준물량 이하] 협정관세율	FUS 1 ~ 4
[기준물량 초과] 특별긴급관세율	FUS 8

○ ASG 유형2

물 량	관세율부호
[기준물량 이하] 무관세	FUS 2 ~ 4
[기준물량 초과] 특별긴급관세율	FUS 8

○ ASG 유형3

▶ 이행 1 ~ 4년차

물 량	관세율부호
[중간 기준물량 이하] 무관세	FUS 3 ~ 4
[주 기준물량 이하] 중간 특별긴급관세율	FUS 7
[주 기준물량 초과] 주 특별긴급관세율	FUS 8

▶ 이행 5년차 이후

물 량	관세율부호
[기준물량 이하] 무관세	FUS 2 ~ 4
[기준물량 초과] 특별긴급관세율	FUS 8

○ ASG 유형4

물 량	관세율부호
[기준발동물량 내 무관세물량] 무관세	FUS 5
[기준물량이하] 협정관세율	FUS 1 ~ 4
[기준물량 초과] 특별긴급관세율	FUS 8

○ ASG 유형5

물 량	관세율부호
[기준물량 이하] TRQ무관세	FUS 6
[기준물량 초과] 특별긴급관세율	FUS 8

14. 계절관세 적용품목의 수입통관

- 한-미 FTA 계절관세 해당 물품 : 감자, 오렌지, 포도
- 적용기준 : 수입신고일자
- 다만, 세율이 인상될 예정인 물품은 우리나라에 도착된 후에 수입신고하여야 하는 바, 계절관세 적용기간(높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기간)에 입항하는 물품은 도착된 후에 수입신고하여야 함

《한-미 FTA 계절관세 품목》

HS No	품 명	적용 기간 (2012년도)	
		관세율	적 용 조 건
0701.90-0000	감자(신선, 냉장한 것)- 칩용	0	1월 ~ 4월, 12월 수입되는 물품
		304	5월 ~ 11월 수입되는 물품
0805.10-0000	오렌지	0	1월 ~ 2월, 9월 ~ 12월 수입되는 물품 중 2,500메트릭톤 이하의 물품
		50	1월 ~ 2월, 9월 ~ 12월 수입되는 물품 중 2,500메트릭톤을 초과하는 물품
		30	3월 ~ 8월 수입되는 물품
0806.10-0000	포도(신선한 것)	24	1월 ~ 4월, 10/16일 ~ 12월 수입되는 물품
		42.3	5월 ~ 10/15일 수입되는 물품

Ⅲ. 수출자 관련 사항

15. 수출자의 자료보관(FTA특례법 시행령 제13조)

- ☐ 서류보관기간 :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5년
- ☐ 수출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

- 계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제공한 원산지증명서 사본
- 원산지증빙 자료(원산지확인서, 원산지소명서 등)
-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서류 사본
- 수출신고필증
-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
- 수출거래 관련 계약서
- 해당 물품 및 원재료의 생산 또는 구입 관련 증빙 서류
- 원가계산서, 원재료 내역서 및 공정명세서
- 해당 물품 및 원재료의 출납·재고관리대장

16. 생산자의 자료보관(FTA특례법 시행령 제13조)

- ☐ 서류보관기간 : 원산지증빙서류 작성일로부터 5년
- ☐ 생산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

- 수출자 또는 계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해당 물품의 원산지 증명을 위해 작성·제공한 서류
- 원산지증빙 자료(원산지확인서, 원산지소명서 등)
- 수출자와 체결한 물품공급 계약서
-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
- 해당 물품 및 원재료의 생산 또는 구입 관련 증빙 서류
- 원가계산서, 원재료 내역서 및 공정명세서
- 해당 물품 및 원재료의 출납·재고관리대장

17. 원산지증빙서류 허위 발급시 처벌조항

- ☐ 원산지증빙서류를 속임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발급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FTA특례법 제22조제2항)

- ☐ 원산지증명서 등 원산지증빙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발급한 수출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FTA특례법 제22조제3항)

18. ‘국내제조확인서’ 관련 사항

*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를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해당 물품을 국내에서 특정공정을 수행하여 제조한 사실을 확인해 주는 서류(FTA특례법 시행규칙 제6조의4 및 별지 제2호의2서식 [붙임 5] 참고)

- ☐ (목적) 생산공정의 역내 누적을 입증하는 서류

-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증빙자료로 활용

- ☐ (효과) 생산공정 누적규정*을 활용하면 ‘비역내산 원재료인 원면을 사용한 면직물도 FTA 특혜적용 가능’

* 물품이 역내국에서 하나 이상의 생산자에 의해 생산된 경우 前단계 생산자가 수행한 공정을 최종 생산자가 수행한 것으로 간주(※ 협정문 제6.5조(누적))

<생산자 국내제조확인서 제도 도입 전/후 비교>

공정	브라질산 원면 (HS 5201)	→	한국에서 A사 면사제조 (HS 5205)	→	한국에서 B사가 면직물 제조 (HS 5208)	→	미국에 수출
원산지 결정기준			CC*		CTH** (5205호에서의 변경은 제외)		
① 국내제조 확인제도 미도입	브라질산		브라질산		원산지 미충족		특혜수출 不可
② 국내제조 확인제도 도입	브라질산		원산지 충족(CTH기준, 5201→5208) B업체가 A업체 생산공정을 누적				특혜수출 可能

* 2단위 세번변경기준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단, 5205호에서의 변경은 제외됨

① A사가 만든 면사 : 브라질산 (5201→5205로 2단위가 변경되지 않음)
B사가 만든 면직물 : 브라질산 (5205→5208로 4단위가 변경되었으나 5205호에서의 변경이므로 불인정)

② A,B사가 만든 면직물 : 한국산 (5201→5208로 4단위가 변경되었고 5205호에서의 변경이 아님)

IV. 한-미 FTA 원산지 검증

19. 일반물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 : 직접검증

(1) 수입당사국의 직접검증 방법(한-미 FTA 제6.18조 제1항)

- ☐ 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서면으로 정보요청/질의
- ☐ 원산지증명과 관련된 기록(협정 제6.17조제1항에 언급된 기록) 검토 또는 상품생산에 사용된 시설을 시찰하기 위하여 다른 쪽 당사국 영역에 소재하는 수출자·생산자의 사업장 방문
- ☐ 수입당사국과 수출당사국이 합의하는 다른 절차(향후 양 세관당국간에 협의할 예정)

(2) 직접검증 결과에 따른 사후조치(한-미 FTA 제6.18조 제2항·제4항·제6항)

- ☐ (특혜관세 적용배제) 다음의 경우 특혜관세 대우를 배제
- 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원산지를 입증하는 정보 또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 수입당사국의 사업장 방문에 수출자·생산자가 기록 또는 시설에 대한 접근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 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원산지상품이라는 허위 또는 근거 없는 신고나 증명을 제출하였음을 당사국이 적발한 경우
 - 수입자가 제6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의 요건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 ☐ (특혜관세 적용중지) 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허위·근거 없는 신고·증명이 적발된 경우, 원산지를 준수하고 있다고 결정할 때까지 진술·신고·증명되는 동일상품*에 대하여 특혜관세적용 중지가능
- * 원산지자격을 부여하는, 원산지 규정과 관련한 모든 측면에서 동일한 상품
- ☐ (수입자 처벌예외) 다음의 경우 특혜관세 대우에 대한 유효하지 아니한 신청을 하였음을 이유로 수입자 처벌불가
- 수입자가 신청을 함에 있어 과실·중과실 또는 사기행위에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납부하여야 할 모든 관세를 납부한 경우
 - 수입자가 신청이 유효하지 아니함을 인지하여 신속하고 자발적으로 그 신청을 정정하고 납부하여야 할 모

든 관세를 납부하는 경우

- ☐ (수출자 등 처벌예외)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증명을 제공받은 모든인에게 증명이 부정확하다는 것을 서면으로 자발적으로 통보한 경우 부정확한 증명을 이유로 벌칙부과 불가

20. 섬유·의류에 대한 원산지 검증

(1) 수출당사국에 의한 간접검증

- ☐ 수출당사국에 수입물품 원산지에 대한 검증 요청(한-미 FTA 제4.3조 제3항)

- 수출당사국은 수입당사국에서 원산지가 정확하다는 것을 결정할 수 있도록 검증을 수행
- 수출당사국은 해당물품에 대해 수입자가 협정관세적용을 신청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검증수행 가능
- 수출당사국은 자체적인 발의에 의해서도 검증 수행 가능

- ☐ 수출당사국에 수출자·생산자·운송인 등에 대한 검증을 요청

- 수입당사국은 수출국내에 섬유·의류무역과 관련한 불법행위에 대해 합리적 의심이 드는 경우 수출당사국에 검증 요청

※ 한-미 FTA 제4.3조 제5항

- 수출당사국은 수입당사국에서 다음의 사항을 결정할 수 있도록 검증을 수행
 - 검증대상자가 섬유·의류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적용 가능한 통관조치를 준수했는지 여부
 - 검증대상자가 수출 생산한 섬유·의류 원산지의 정확성 여부
- 합리적 의심(resonable suspicion) : 다음 사실정보 및 요소에 기초한 원산지 위반 의심

· 섬유·의류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적용 가능한 통관조치에 대한 기업의 우회
· 섬유·의류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국제협정에 관한 조치의 위반을 용이하게 하거나 그러한 협정에 따라 어느 한 쪽 당사자에게 발생하는 권리 또는 혜택의 무효화 또는 침해를 달리 용이하게 할 행위의 존재
· 수출입자가 수입을 규율하는 법 등의 위반전력
· 제조자·생산자 또는 운송인이 수입을 규율하는 법 등의 위반전력
· 특정제품 분야에서 상품의 운반에 관련한 일부 또는 모든인이 수입을 규율하는 당사국의 법 등의 위반전력
· 기타 양당사국이 합의하는 그 밖의 정보

(2) 수입당사국과 수출당사국의 공동 현지검증(한-미 FTA 제4.3조제6항)

- ☐ 수입당사국과 수출당사국이 공동으로 수출국의 수출자·생산자를 공동 검증

- 수입당사국은 수출자·생산자 등에게 사전통보 불허

- ☐ 방문 시점에 현장방문 동의요청, 동의 불허시 협정관세 배제

(3) 검증 결과에 따른 사후조치(한-미 FTA 제4.3조제10항·제11항)

- ☐ (특혜관세 적용중지) 수입당사국은 검증진행 동안 자국법에 따라 특혜관대우의 적용 중지가능

- ☐ (특혜관세 적용배제) 수입당사국이 검증요청한 이후 12월 이내에 수출당사국의 ①회신이 없거나 ② ‘원산지를 불인정하는’ 회신이 온 경우 수입당사국은 특혜관세를 부인하는 것을 포함하여 자국법에 합치되게 적절한 조치 가능

- ☐ (명단공표) 수입당사국은 자국법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신원을 공개할 수 있음

- 협정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와 섬유·의류 상품의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통관조치를 회피한 자
- 섬유·의류를 생산하거나 생산능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한 자

V. 기타 집행사항

21. 관세면제대상 일시 수출입물품

- ☐ 원산지와 관계없이 다음 물품에 대해서는 무관세 일시반입을 허용

《특례법 시행규칙 제11조의 4》

가. 일시입국하는 사람이 직접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별도로 수입하는 언론장비, 텔레비전 방송용 장비, 소프트웨어, 방송·영화촬영 장비 등 영업활동, 거래 또는 직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장비

나.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상품

다. 상업용 견본품, 광고용 필름 및 기록물

라. 운동경기용 물품

- 해당물품의 일시반입 기간은 일시입국자의 최초출국일 또는 1년이며, 연장 가능 [※ 관세법 제97조,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10-3조(재반출면제기간) 참조]

- 해당물품의 일시반입 요건은 특례법 시행규칙*을 준용

* 특례법 시행규칙 제11조의 2 제2항

② 제1항에 해당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칠레의 국민 또는 칠레에 거주하는 자에 의하여 수입될 것
2. 해당 물품을 수입한 자의 직업활동에 필요한 범위에서 사용되거나 직접적인 감독하에서 사용될 것
3. 우리나라에서 판매 또는 임대되지 아니할 것
4. 재수출될 때까지 다른 물품과의 식별이 가능할 것
5. 사용목적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합리적인 수량 이내일 것

- 재수출 대상인 경우, 감면관세액의 110% 이내에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음

□ 수리 또는 가공*을 위해서 우리나라와 미국간 수입되는 다음 물품에 대해서는 그 상품의 원산지와 관계없이 관세 면제

①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수리 또는 가공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수출되었다가 다시 수입하는 물품

② 우리나라에서 수리 또는 가공한 후 다시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미국에서 일시적으로 수입하는 물품

* 수리·가공을 초과하는 범위 -[참조]협정 제 2.6조(수리 또는 개조 후 재반입되는 상품)

√ 본질적 특성을 파괴하거나 새로운 또는 상업적으로 다른 상품을 만드는 것

√ 미완성 상품을 완성 상품으로 변형하는 것

- 물품의 관세면제대상물품 인정 여부는 특례법 시행규칙*을 준용

* 특례법 시행규칙 제11조 제3항

③ 제1항 각 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수리 또는 가공하기 위하여 수입 또는 수출된 물품과 수리 또는 가공 후 수출 또는 수입되는 물품의 품목번호[「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통합품목분류표”라 한다)에 따른 10단위의 품목번호를 말한다]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물품은 관세면제대상물품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참조)한-미 FTA에 따른 관세감면 규정 요약》

시행규칙 제11조의4		감면부호
①항	1호. 일시 입국하는 사람이 직접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별도로 수입하는 언론장비, 텔레비전 방송용 장비, 소프트웨어, 방송·영화 촬영 장비 등 영업활동, 거래 또는 직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장비	EF81111411
	2호.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물품	EF81111412
	3호. 상업용 견본품, 광고용 필름 및 기록물	EF81111413
	4호. 운동경기용 물품	EF81111414
③항	1호. 우리나라에서 미합중국으로 수리 또는 가공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수출되었다가 다시 수입하는 물품	EF81211441
	2호. 우리나라에서 수리 또는 가공한 후 다시 수출하기 위하여 미합중국에서 일시적으로 수입하는 물품	EF81111442

[참조] 협정문 제2.5조 상품의 일시 반입

제2.6조 수리 또는 개조 후 재반입되는 상품

제2.7조 무시할만한 가치의 상업용 견본품과 인쇄된 광고물의 무관세 반입

22. 특송물품의 면세 기준 및 통관절차

□ 원산지와 관계없이 미국으로부터 특송화물로 반입되는 미화 20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물품과 상용건품은 목록통관 대상(관세면세)으로 운영

구 분		현 행	미국발 특송화물 (자가사용물품, 상용건품)
신고 방법	목록통관	미화 100불 이하	[물품가액] 미화 200불 이하 ※ 목록통관대상인 경우 200불 까지 관세면세
	간이신고	미화 100 ~ 2,000불	미화 200 ~ 2,000불
	일반수입신고	미화 2,000불 초과	미화 2,000불 초과
소액면세 기준금액		15만원	15만원*

* 미국발 특송화물도 목록통관에서 배제되는 물품의 소액면세기준금액은 현행과 동일(15만원)

※ 그 밖에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규정 해당물품에 대한 합산과세 등 특송물품의 통관에 관한 사항은 현행과 동일

※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예정(청 특수통관과)

《※(참조)한-미 FTA 목록통관 관련 “특송고시”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4-1조(신고구분) ① 특송물품에 대한 통관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운영한다. 1. 목록통관특송물품 : 미화 100불 이하 2. 간이신고특송물품 : 미화 100~2,000불 3. 일반수입신고특송물품 : 미화 2,000불 초과 ② 생략	제4-1조(신고구분) ① _____ _____ 1. 목록통관특송물품 : 미화 100불 이하 (다만, 미국발 특송화물은 미화 200불 이하로 한다.)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참조] 협정문 제7.7조(특송화물)

23. 수입물품의 원산지결정 등에 관한 사전심사

☐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원산지결정 등에 관한 사전심사를 요청할 수 있음 (FTA특례법 제14조)

- 신청인 :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
- 신청방법 : 서류제출(사전심사신청서, 심사에 필요한 서류)
 - * 담당부서가 2개 이상인 경우 : 주요 심사요청사항 담당부서로 제출
- 처리절차

단계	세부단계	주 체	주요 내용
신청	사전심사 신청	신청인	▶ 서류제출(신청서, 심사요청관련서류) ▶ 수수료(3만원)
접수	신청서류 확인	접수부서	▶ 해당부서가 아닌 경우 담당부서로 이송
	사전심사 접수	주관부서	▶ 담당부서가 2개 이상인 경우, 접수부서가 주관부서로서 해당부서에 심사사항 통보 ▶ 사전심사 신청대장 기록, 수수료 수납
검토 결정	신청내용 심사·검토	주관부서	▶ 신청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법정처리
		심사부서	▶ 담당부서가 2개 이상인 경우, 사전심사담당 부서는 결과를 주관부서로 통보(만료 7일전까지)
	반려 및 보정	주관부서	▶ 반려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반려 ▶ 보정 : 5일 이상의 기간
	위원회 상정·검토	주관부서 심사부서	▶ 위원회 상정 : 심사부서에서 결정이 곤란하다고 판단 (예:원산지확인위원회)
통지 공표	사전심사서 통지	주관부서	▶ 사전심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
	심사결과 인터넷 공표	주관부서	▶ 한-미 FTA의 경우 FTA 포털 사전심사 공표시스템에 사전심사 결과 등재
사후 관리	이의제기	신청인	▶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 이의제기 기간 :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주관부서	▶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30일 ▶ 보정요구 가능 : 20일 이내
	사전심사 변경	신청인 주관부서	▶ 사실관계, 상황변경 등의 경우 사전심사내용 변경·철회

☐ 한-미 FTA는 기존 FTA 사전심사 대상 외에 관세감면 등의 업무도 사전심사 대상으로 포함

* 한-미 FTA 협정문 제7.10조, FTA 특례법 개정안 제19조 4항 내지 6항

※ 추가된 대상업무(관세환급·감면, 원산지 표시 등)에 대한 사전심사는 한-미 FTA 수입물품에만 적용
《원산지 등 사전심사 대상업무》

현행	한-미 FTA
① 당해물품 및 재료의 원산지에 관한 사항 ② 당해물품 및 재료의 품목분류·가격 또는 원가결정에 관한 사항 ③ 당해물품의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의 산정에 관한 사항 ④ 그 밖에 협정관세의 적용 또는 관세면제에 대한 기초가 되는 사항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항	① 좌 동 ② 좌 동 ③ 좌 동 ④ 좌 동 ⑤ 당해물품의 관세의 환급·감면에 관한 사항 ⑥ 당해물품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사항 ⑦ 수량별 차등협정관세(쿼터, 관세율 할당) 적용에 관한 사항

《원산지 등 사전심사 업무별 담당부서》

사전심사 대상	담당부서	
	현행	한-미 FTA 발효 후
당해물품 및 재료의 원산지에 관한 사항	관세평가분류원	관세평가분류원
당해물품 및 재료의 품목분류·가격 또는 원가결정에 관한 사항	관세평가분류원	관세평가분류원
당해물품의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의 산정에 관한 사항	관세평가분류원	관세평가분류원
관세환급, 납기연장에 관한 사항	-	관세청 세원심사과
관세감면의 적용여부	-	관세청 통관기획과
원산지국가 표시	-	관세청 특수통관과
상품이 쿼터나 관세율할당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	관세청 세원심사과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그 밖의 사안	-	각 담당부서

※ 붙임 6 : 사전심사신청서, 사전심사서 참조

24. 수입물품 원산지증명서의 형식요건 사전확인 제도

□ 수입물품의 원산지증명서 형식적 요건이 맞는지를 수입신고 전에 간편하게 확인하는 제도

※ 수입통관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신청인이 제시한 원산지증명서가 협정에서 정한 형식요건에 맞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수입물품의 원산지결정 부합여부 등 실체적요건을 확인하는 것은 아님

○ 원산지증명서 형식요건이 협정에서 정하는 바와 부합한다고 확인되면 수입통관시 원산지증명서의 형식요건 심사 생략

- 신청인 : 수입(예정)자, 수입신고인
- 대상업무 : 수입물품의 원산지증명서가 한-미 FTA에서 정하는 형식요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업무
- 담당부서 : 수입통관예정지를 관할하는 본부(직할) 직할세관장 자유무역협정업무 담당부서
- 처리방법

형식요건에 맞는 경우	부합([별표 1] 날인)
형식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	사용불가([별표 2] 날인)

* 형식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줄 것

- 처리절차

단계	세부단계	주체	주요 내용
신청	원산지증명서 형식요건 확인 신청	신청인	▶ 신청방법 : Fax, E-mail ▶ 제출서류(신청서, 심사요청관련서류) ▶ 수수료 : 없음
접수·심사	신청서류 접수심사	담당부서	▶ 신청서류 확인 ▶ 확인신청 접수대장(붙임 8) 기록 ▶ 협정내용에 맞는지 심사
처리	신청인에게 확인결과 회신	담당부서	▶ 처리방법(부합, 사용불가)에 따른 별표 스탬프 날인 ▶ 신청인이 요청한 회신방법(Fax, E-mail)에 따라 회신 ※ 처리기간 : 3일

2.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포괄증명물품의 협정관세 적용지침 시달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1963, 2014-08-19

1. 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1228(' 12.6.19)호와 관련입니다.

2.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포괄증명물품의 협정관세 적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시달하오니 각 세관장은 교육실시 등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① 원산지포괄증명서 포괄증명기간의 시작일은 원산지포괄증명서의 발급일자보다 수 있으므로 포괄증명기간의 시작일 이후에 소급 발급되거나 포괄증명기간의 시작일보다 먼저 발급된 원산지포괄증명서는 인정되며 해당 수입물품은 협정관세 적용 대상
(예시) <표1> 아래 참조

② 원산지포괄증명은 동일상품을 복수 선적할 때 적용하는 것이므로 원산지포괄증명기간에 협정채약상대방인 수출국(미국)에서 선적된 물품에 적용

- 포괄증명기간에 선적된 물품이 아닌 경우 보정을 요구하여 처리하되, 증빙이 되지 않는 경우 협정관세 적용 배제

* 포괄증명기간에 선적되지 않은 물품에 대하여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5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의 보정을 요구하여 처리

(예시) <표2> 아래 참조

③ ‘한-미 FTA 원산지포괄증명 협정관세 적용 지침(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1228(' 12.6.19)호)’에 따라 원산지 검증의뢰된 건에 대한 처리방법

- (원칙) 검증대상에서 제외

- (예외) 원산지위반 가능성이 있는 물품에 한하여 검증실시

※ 이 지침은 2014.9.22(월)부터 협정관세적용을 신청하는 물품부터 적용하며 이 지침 시행에 따라 ‘한-미 FTA 원산지포괄증명 협정관세 적용 지침(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1228 (' 12.6.19)호)’은 폐지함.

<표1>				
구 분	원산지포괄 증명기간	증명일자	협정관세 적용여부	
(사례1) 소급발급 되는 경우	2014.1.1 ~ 2014.12.31	2014.4.1 또는 2015.2.1	적용	
(사례2) 먼저 발급되 는 경우	2014.1.1 ~ 2014.12.31	2013.12.1일	적용	
<표2>				
구 분	원산지포괄 증명기간	선적일자	수입신고 일자	협정관세 적용여부
(사례1) 포괄증명기간에 선적된 경우	2014.1.1 ~ 2014.12.31	2014.12.15	2015.1.15	적용
(사례2) 포괄증명기간에 선적되지 않은 경우	2014.1.1 ~ 2014.12.31	2013.12.15	2014.1.15	적용배제

3. 한-미 FTA 발효 대비 FTA 사전심사업무처리 지침 시행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 2012-02-29(제정일자)

오는 3.15일 발효되는 한-미 FTA의 사전심사 대상 확대에 대비하여 원활한 FTA 이행과 우리 기업의 FTA 활용제고를 위해 불임과 같이 심사 담당부서 지정, 접수·검토 및 결과통지 등을 담은 「FTA 사전심사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코자 하오니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끝.

※ 불임 : FTA 사전심사 업무처리 지침 1부.

FTA 사전심사 업무처리 지침

I. FTA 사전심사 개요

1. FTA 사전심사의 의의

- ☐ 수입물품에 대해 FTA 협정관세 적용의 기초가 되는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여부 등을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관세당국에 요청하는 제도

* FTA 특례법 제14조(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 제1항

2. 현행 사전심사제도 운영절차

- ☐ (신청자·신청시기) 수입자, 계약상대국의 수출자 및 생산자와 그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고,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 전에 신청해야함

* FTA 특례법 제14조(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 제1항

- ☐ (심사기관) 관세평가분류원(FTA 특례법 시행령 제28조의3(권한의 위임))

- ☐ (신청대상) ① 당해물품 및 재료의 원산지에 관한 사항

② 당해물품 및 재료의 품목분류·가격 또는 원가결정에 관한 사항

③ 당해물품의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의 산정에 관한 사항

④ 그 밖에 협정관세의 적용 또는 관세면제에 대한 기초가 되는 사항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항

* FTA 특례법 시행령 제19조(원산지 등에 관한 사전심사) 제1항

- ☐ (신청서류) ① 사전심사 신청서 ② 거래계약서·원가계산서·원재료내역서·공정명세서 등 신청내용에 대한 심사 필요 서류

* FTA 특례법 시행령 제19조(원산지 등에 관한 사전심사) 제2항

- ☐ (수수료) 품목당 3만원(FTA 특례법 시행규칙 제21조(사전심사) 제2항)

3. 한-미 FTA 발효 시 변경사항 : 신청대상·심사부서 확대

- ☐ (신청대상 확대) 한-미 FTA는 기존 사전심사 대상 외에 관세감면, 환급, 원산지표시, 수량별 차등협정관세 적용에 관한 사항을 추가적인 사전심사 대상으로 포함

* 한-미 FTA 협정문 제7.10조, FTA 특례법 개정안 제19조 4항 내지 6항

- 다만 추가된 대상(관세환급·감면, 원산지 표시 등)에 대한 사전심사는 미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만 적용됨

* (예) 對EU 수입물품의 경우, 관세감면에 관한 사항에 대한 사전심사 신청을 할 수 없음

현행	한-미 FTA 발효 후
1. 당해물품 및 재료의 원산지에 관한 사항	1. 좌 동
2. 당해물품 및 재료의 품목분류·가격 또는 원가결정에 관한 사항	2. 좌 동
3. 당해물품의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의 산정에 관한 사항	3. 좌 동
4. 그 밖에 협정관세의 적용 또는 관세면제에 대한 기초가 되는 사항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항	4. 좌 동
	5. 당해물품의 관세의 환급·감면에 관한 사항
	6. 당해물품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사항
	7. 수량별 차등협정관세(쿼터, 관세율 할당) 적용에 관한 사항

- ☐ (심사부서 확대) 추가된 사전심사 대상에 대해서는 실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각 업무부서에서 확대된 사전심사 접수·운영

* FTA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 제28조의4(권한의 위임)의 단서조항 신설

사전심사 대상	담당부서	
	현행	한-미 FTA 발효 후
당해물품 및 재료의 원산지에 관한 사항	관세평가분류원	관세평가분류원
당해물품 및 재료의 품목분류·가격 또는 원가결정에 관한 사항	관세평가분류원	관세평가분류원
당해물품의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의 산정에 관한 사항	관세평가분류원	관세평가분류원
관세환급, 납기연장에 관한 사항	-	관세청 세원심사과

사전심사 대상	담당부서	
	현 행	한-미 FTA 발효 후
관세감면의 적용여부	-	관세청 통관기획과
원산지국가 표시	-	관세청 특수통관과
상품이 쿼터나 관세율할당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	관세청 세원심사과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그 밖의 사안	-	각 담당부서

<원산지 등 사전심사 업무별 담당부서>

II. FTA 사전심사 업무처리 절차도

- ☐ 신 청 인 :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
- ☐ 대상·시기 : 수입물품을 수입신고 前
- ☐ 신청방법 : 서류제출(사전심사신청서, 심사에 필요한 서류)
* 담당부서가 2개 이상인 경우 최초 접수한 부서에서 결과를 취합하여 통지·공표
- ☐ 처리절차 : 기재 생략

III. FTA 사전심사 업무처리 절차

1. 신청 단계
 - ☐ (신청인 및 대상·시기) FTA 사전심사는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고,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신청해야 함
 - ☐ (신청방법) 서류제출(사전심사신청서, 심사에 필요한 서류)
* 담당부서가 2개 이상인 경우 : 최초 접수부서가 주관부서로서 결과 취합·통지·공표

2. 접수 단계

- ☐ 사전심사 신청을 받은 관세평가분류원 및 본청 각 업무부서에서는 접수단계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해야 함
 - ① (사전심사 신청대상 여부) 동 사안이 FTA 특례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규정된 사전심사 신청대상인지 여부 확인
 - ② (신청 가능한 FTA인지 여부) 아국이 체결한 FTA 중 한-EFTA, 한-아세안 FTA 적용을 위한 사전심사는 신청 불가
* 신청 대상 : 칠레, 싱가포르, 인도, EU, 페루, 미국 // 신청 비대상 : EFTA, 아세안
 - ③ 법정 신청서 양식 사용(붙임1 참조) 및 기재항목 적정 여부

기재항목	심사사항	적정성 확인
1. 신청인	신청자격 여부	○ 수입자, 계약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 ※ 우리나라의 관세사는 신청자격이 있음
2. 수입자	신청자격 여부	○ 우리나라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법인 - 주소란의 국가 또는 도시 이름 확인 - 전화번호(Fax번호) 지역번호 확인
3. 수출자 또는 생산자	신청자격 여부	○ 계약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 - 주소란의 국가 또는 도시 이름 확인 - 전화번호(Fax번호) 지역번호 확인
4. 신청물품	대상물품 확정	○ 기재항목 누락 및 오류여부 확인
5. 원재료 내역(필요시)	재료 원산지 적정	○ 기재항목 누락 및 오류여부 확인
6. 사전심사 신청내용	심사대상 확정	○ ①~⑦ 중 선택항목이 있는지 확인
7. 물품의 법적지위	생송(반려대상) 확인	○ ①~④ 중 선택항목이 있는지 확인
기타사항	기재항목 누락	○ 서명누락 등 기재항목 누락 확인

- ④ (증빙서류 구비여부) 신청내용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구비서류를 갖추었는지 확인
* (예) 원산지 확인 : 물품설명서, 제품사양서, BOM, 결정요약서
HS Code, 가격확인 : 물품설명서, 제품사양서, 원가계산서
부가가치 확인 : 공정명세서, BOM, 원가계산서
- ⑤ (사전심사 신청서 이송) 신청인이 심사대상과 관련없는 부서로 신청한 경우 해당사안을 담당하는 부서로 이송(2P 참조)
* (예) 신청인이 관세환급 관련 사안을 통관기획과로 신청하였을 경우 세원심사과로 이송
- ⑥ 사전심사 신청대장 기록 및 수수료 납부여부 확인
- (대장기록) 사전심사 신청이 적합하게 접수된 경우 담당자는 사전심사 신청대장(붙임3 참조)에 신청사항을 기록

- (수수료 고지·납부확인) 주관부서 담당자는 사전심사 신청자에게 법정 수수료 3만원을 고지하고, 수수료 납부 여부 등 확인·관리

〈수수료 고지절차〉

- ① 사전심사를 접수한 업무국 담당자는 운영지원과 세외수입담당자에게 수수료 고지서 출력을 공문으로 요청
- ② 업무국 담당자가 수수료 고지서를 신청자에게 통지
- ③ 신청자가 국고수납은행에 수수료 수납
- ④ 수수료 수납여부는 운영지원과 세외수입담당자가 확인

3. 검토·결정 단계

- ☐ (검토·결정) 주관부서는 사전심사 처리기간* 7일 전까지 해당 사안에 대해 검토하여야 함
 - *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담당부서가 2개 이상인 경우는 접수부서(주관부서)가 다른 부서의 심사 결과를 통보받아 사전심사 결과를 취합 후 통지함
- ☐ (보정·반려) 필요시 보정을 요구하거나 반려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반려처리
 - ① (보정요구) 실제 심사단계에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보정요구 가능
 - i) 보정할 사항 ii) 보정요구 이유 iii) 보정기간 iv) 기타 필요한 사항
 - 단 협정에서 별도의 보정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 * 한-칠레 FTA는 최소 30일로 규정(대한민국정부와 칠레공화국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의 해석, 적용 및 운영에 관한 통일규칙 제9조 제6항 가목)
 - 보정기간은 사전심사 기간(신청일로부터 90일)에 포함되지 않음
 - 신청인이 보정에 필요한 기간과 사유를 명시한 문서로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고려하여 보정기간을 다시 정하여야 함
 - ② (사전심사 신청서 반려) 다음과 같은 경우는 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 i) 당해 신청이 수입신고 후에 신청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
 - ii) FTA 사전심사 신청대상이 아닌 경우
 - iii) 신청 가능한 FTA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iv) 신청 자격이 없는 신청인이 신청한 경우
 - v) 보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vi) 당해 물품과 동일한 물품에 대해 원산지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 vii) 사전심사 신청내용과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이의신청 등의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 (원산지확인위원회 상정)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관세법 시행령 제236조의4(원산지확인위원회)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 확인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
 - ① 전례가 없는 사항 등의 사유로 사전심사 담당부서에서 원산지를 결정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② 동일물품에 대한 이전의 원산지 결정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4. 통지·공표 단계

- ☐ (통지) 신청사항에 대한 사전심사 결과를 신청인에게 사전심사서 양식(붙임4 참조)에 따라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함
 - (통지 방법) 등기우편 발송을 원칙으로 함
- ☐ (정보통신망에 게시) 담당자는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전심사의 주요내용을 아래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FTA 포털에 게시하여야 함
 - 다만 추가된 사전심사 결과 공표는 한-미 FTA에만 적용됨

〈FTA 포털 입력 화면 양식〉

구 분	입력/조회화면	기 재 요 령
승인번호	2012-FUS-과부호-001	· [본청] 과부호 · [분류원] 기관부호
품 명		· 표준품명
HS 번호	5678.22-9000	· HSK 2012 부호
사전심사 요청사항	품목분류, 관세평가, 관세환급, 납기연장, 관세감면, 원산지결정, 수리·개조 재반입 감면, 원산지표시, 쿼터 또는 관세율할당, 기타	· 해당사항만 선택기재
사전심사 신청내용 및	[분야 : 품목분류] - 신청내용 : - 결정내용 :	· 해당사항만 조회

구 분	입력/조회화면	기 재 요 령
결정내용	[분야 : 관세평가] - 신청내용 - 결정내용	
주관부서	관세청 세원심사과	· 주관부서

※ 사전심사업무 주관부서에 입력권한 부여(FTA집행과는 입력, 수정권한)

※ 물품사진 첨부 가능

5. 사후관리 단계 : 이의제기 및 사전심사서 내용의 변경 등

- ☐ (이의제기) 사전심사 결과에 대해 신청인은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
- (신청서류) 이의제기 신청인은 이의신청서(붙임2 참조), 이의제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및 사전심사서의 사본을 제출해야 함
 - (처리기간) 이의제기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정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함
 - (이의제기에 대한 보정요구) 이의제기 내용이나 절차가 적합하지 않거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요구를 할 수 있음
 - 보정사항이 경미한 때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음
 - 보정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함
 - i) 보정할 사항 ii) 보정을 요구하는 이유
 - iii) 보정할 기간 iv) 그 밖의 필요한 사항
 - 이의제기시 보정기간(20일 이내의 기간)은 심사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 ☐ (사전심사 내용의 변경) 주관부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사실관계 또는 상황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심사 내용을 변경 또는 철회 할 수 있음
- 또한 사전심사서를 교부받은 자가 다음과 같이 사실관계 또는 상황의 변경 등이 발생하였음을 알게 되어 사전심사 수정통보서(붙임5 참조) 및 첨부서류*를 제출한 경우 사전심사서의 내용을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음
 - * 사전심사서 원본, 변경 내용을 입증하는 증빙서류
 - i) 사전심사서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 또는 상황이 변경된 경우
 - ii) 협정 또는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당해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이 변경되거나 원산지 결정의 기초가 되는 품목분류 등이 변경된 경우
 - iii) 사전심사 대상물품 또는 재료의 품목분류, 부가가치비율의 산정 등에 착오가 있는 경우
 - iv) 신청인이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사전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사전심사에 중대한 착오가 있는 경우
 - v) 사전심사의 신청내용과 동일한 사안에 대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또는 소송제기 등을 받은 권한 있는 기관 또는 법원의 최종결정 또는 판결이 당해 사전심사의 내용과 다르게 된 경우
 - (사전심사 변경 통지) 담당자가 사전심사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그 변경 내용을 신청인, 수입자 및 통관지세관장에게 통지하여야 함
 - i) 사전심사서 변경 이유 및 법적근거
 - ii) 사전심사서 변경내용 적용일
 - iii)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수입물품 목록 중 세액수정 대상 수입물품 목록
 - iv) 사전심사서 변경 적용유예 신청절차 및 법적근거
 - * 수입자는 사전심사서 변경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관지세관장에게 세액정정, 세액보정신청 또는 수정신고를 하여야 함
- ☐ (사전심사서 변경 적용 유예신청) 수입자가 변경된 사전심사서의 내용을 적용받는 경우 손해가 발생할 것임을 입증하는 때에는 협정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변경전 사전심사서의 내용을 적용할 수 있음
- (대상) 한-칠레, 한-싱가포르 FTA
 - (신청기간) 사전심사서의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 * 단, 사전심사서 변경내용의 통지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사전심사서의 내용이 변경된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
 - (신청서류) ① 사전심사서 변경적용 유예승인(신청)서(붙임6 참조) 2부
 - ② 손해발생내역 기재서류 및 증빙자료
 - ③ 수입거래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 (심사기간) 신청일부 7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통지해야 함

○ 적용 유예기간

- i) 한-싱가포르 FTA : 사전심사서가 변경된 날부터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 ii) 한-칠레 FTA : 사전심사서가 변경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4.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처리 지침 시달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 2012-03-20(제정일자)

1.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1075(2012.3.12.)호와 관련입니다.
 2. 한-미 FTA발효에 따라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증명서 확인업무와 미합중국으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작성업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붙임과 같이 처리지침을 추가 시달합니다.
 3. 각 세관장은 동 지침내용을 확인하시고 직원 교육실시, 홈페이지 게시 등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라며, 특히 동 지침 내용 중 ‘미국으로 상품을 수출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 기재 방법’은 관할구역내 對美 수출기업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확인 및 작성업무 처리 지침 1부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확인 및 작성업무 처리 지침

①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형식요건 인정범위

- ① 협정에서 정하는 필수항목은 반드시 기재되어야 적용 가능
 - 필수항목 이외의 정보라도 잘못된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와 한-미 FTA가 아닌 다른 종류의 원산지 증명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용 불가
- ② HS품목번호와 PSR(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기재사항의 일치여부
 - 특례법 시행규칙에 따른 권고서식의 경우 : WO, PSR, PE는 원산지증명인이 판단하는 사항이므로 형식 요건 판단시 고려사항이 아님
 - PSR을 CTH, RVC 등으로 기재한 경우 : 해당 HS품목번호와 PSR이 협정에서 정하는 바와 맞아야 적용 가능
 - ※ 2개의 정보가 상호 맞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 불가
- ③ HS품목번호와 품명의 일치여부
 - HS품목번호에 따른 거래품명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2개의 정보가 상호 맞지 않는 경우에도 적용 가능
 - ※ 수입신고되는 품명과 원산지증명서의 품명과의 일치여부는 통관·심사부서에서 확인할 사항
- ④ ‘필요한 경우 연락처 또는 그 밖의 신원확인 정보를 포함하여 증명인의 성명’을 기재하는 항목에는 증명인의 성명과 연락처가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적용 가능
 - 성명과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없는 경우 유효하지 않은 원산지증명서이므로 적용 불가
- ⑤ ‘원산지 상품임을 증명하는 정보’ 인정범위
 - 원산지증명서에 원산지 국가명이 표시되어 있거나, 동 FTA에서 정하는 원산지제품임을 기재한 경우 적용 가능
 - ※ 다만, 원산지 국가명만이 표시된 경우 원산지를 증명하는 수출자나 생산자가 한-미 FTA에 따른 원산지제품임을 기재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므로 수입통관이후 원산지 검증시 특혜관세가 배제될 수 있음을 신청인에게 안내

② 수입자가 자율적으로 원산지를 증명하는 경우 처리 방법

- ①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붙임1]에 따른 의무사항이 있음을 신청인에게 안내
 - ※ 안내 방법 : 구두, 안내문 발송 또는 원산지증명서에 스탬프 날인 등
(안내 문구 예시)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상품이 특혜관세대우의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기록과 증명서 발급대장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하고 서명권자를 지정관리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FTA특례법에 의하여 협정관세 적용배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② ‘수입자’가 원산지 자율증명하는 경우 ‘생산자’ 기재 여부
 - 수입자가 원산지를 증명하는 경우, 동 협정 제6.1조, 제6.17조 및 제6.18조에 따라 수입물품의 생산에 관한 사항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므로, ‘수입자’가 원산지 증명하는 경우에는 ‘생산자’를 표기하여야 함
 - ※ 다만, 특별한 사유 등으로 ‘수입자’가 ‘생산자’를 알지 못하여도 그 수입물품의 생산에 관한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함

③ 제3국 발행 송장거래시 특혜관세 적용 여부

- 무역거래 관행상 송품장 등의 상업서류가 비당사국에서 다시 발행되는 경우, 협정당사자 영역내의 권한 있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자*가 작성한 원산지증명서가 있으면 적용 가능
- *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

④ 원산지포괄증명의 포괄기간 인정 범위

- 포괄증명은 증명일로부터 12개월의 범위 내에 선적된 물품에 적용
- 증명일 이전의 포괄기간이 기재된 원산지증명서는 적용 불가

⑤ 원산지증명서에 발급번호가 없는 경우 협정관세적용신청서 항 ‘발급번호’ 기재 방법

- 해당 수입물품의 송품장 발급번호를 기재
- 송품장에 발급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발급일자를 기재
- ※ 같은 날짜에 발급번호가 중복되는 경우 뒤쪽에 일련번호 기재

⑥ 미국으로 상품을 수출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 기재 방법

- ① HS품목번호 : HS2002와 HS2012에 따른 품목번호를 병기
(예시) 560110(HS2002), 961900(HS2012)
- ② 단일선적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송품장번호를 기재
- ③ 원산지상품임을 증명하는 정보 기재 문구

I certify that:

The information on this document is true and accurate and I assume the responsibility for proving such representations. I understand that I am liable for any false statements or material omissions made on or in connection with this document;

I agree to maintain and present upon request, documentation necessary to support these representations;

The goods comply with all requirements for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specified for those goods in the United States-Korea Free Trade Agreement; and

This document consists of _____ pages, including all attachments.

Signature:

Title:

Phone Number:

Email Address:

Date:

※ [붙임2] ‘US CBP 원산지증명서 작성방법’ 참조

※ 붙임 1 : 원산지자율증명 수입자의 의무사항

1. ‘물품 수입자’ 관련 의무 사항

- 특례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서류를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함

2. ‘원산지증명서 발급자’ 관련 의무 사항

① 동 협정에 따른 원산지 증명인으로서의 의무 사항

- 원산지를 증명하는 그 상품이 특혜관세대우의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기록*을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함

* 동 협정 제6.1조(원산지상품) 및 제6.13조(통과 및 환적)에 따라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기록과 제6.17조(기록유지요건)제1항에 따라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모든 기록

② 특례법령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의무 사항

- 원산지증명서의 기재사항 및 기재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름

1. 당해 물품의 수출자·수출자명·수입자명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을 것
2.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이 비치되어 발급내역이 관리되고, 원산지증명서에 서명할 자가 지정되어 있으며, 그 서명할 자가 서명하여 발급할 것

※ 적용규정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원산지증명서류) 제3항

- 수입자는 서명권자를 지정·관리하기 위하여 ‘원산지증명서 서명카드*’를 비치하여야 하며,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동 지침 별지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관리** 하여야 함

- | |
|---------------------------------|
| 1호. 작성번호 및 작성일자 |
| 2호. 수입신고 번호 및 수리일자 |
| 3호. 품명·품목번호·수량·금액 및 원산지 |
| 4호. 생산자 또는 공급자 |
| 5호. 수출자 및 수출국명 |
| 6호. 당해 물품에 적용된 협정의 명칭 및 원산지결정기준 |

* 준용규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2-3-1조 (원산지증명서 작성·서명자 등)

** 준용규정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자율증명절차)

(별지 서식)

※ 작성요령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참조

5. 한-미 FTA 원산지포괄증명협정관세 적용 지침 시달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 2012-06-19(제정일자)

1. 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1228(2012.3.20.)호와 관련입니다.
2. 한-미 FTA에 따라 수출자나 생산자가 증명한 원산지포괄증명 수입물품에 대해 국내 수입자가 협정관세를 적용함에 있어 그 적용여부와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는 등 집행상 혼란이 지속적으로 있는 바,
3. 협정관세 적용업무를 안정적으로 처리하여 자유무역협정을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불임과 같이 ‘한-미 FTA 원산지포괄증명 협정관세 적용 지침’을 시달하오니, 각 세관장은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임 : 한-미 FTA 원산지포괄증명 협정관세 적용 지침 1부

한-미 FTA 원산지포괄증명 협정관세 적용 지침

□ 한-미 FTA 원산지포괄증명서의 포괄증명 시작일이 증명일자보다 앞서는 경우와 포괄증명기간에 선적되지 않은 물품에 대해서는

- 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신청업무 처리시
 - 협정관세 적용 후 관할 FTA원산지조사업무 담당부서로 인계
- ②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운영지침」(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1075 (2012.3.12.))에 따른 ‘수입물품 원산지증명서의 형식요건 사전확인’ 업무 처리시
 - ‘사용불가’ 스탬프 사용 금지(협정관세적용 신청 허용 후 검증)
- ③ 향후 미국측과 협의하여 유효성 인정여부를 시달할 예정인 바, 시달 전까지 동 사항에 대한 원산지조사업무는 본청(원산지지원담당관실)과 사전협의할 것

6. 한-미 자유무역협정 통관원칙에 따른 원산지검증 업무지침

원산지지원담당관(2018-11-14)

1. 한-미 FTA 개정 협상 결과 양측 통상장관이 원산지검증 관련 쟁점에 대해 합의한 「한-미 자유무역협정 통관원칙」이 발효되어 그 이행을 위해 불임과 같이 원산지검증 업무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2. 각 세관에서는 동 지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 주시기 바라며, 관내 신고인·수입업체 등에게 적극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통관원칙에 따른 원산지검증 업무지침

관세청 원산지지원담당관실, ‘18. 11. 14.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미 양국이 2018년 9월 24일 합의한 불임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통관원칙(Customs Principles under the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의 8개 항목에 대한 이행원칙을 정함으로써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원활한 쌍방이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수출입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원산지증명서 효력) 세관장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수출자, 생산자의 주소나 소재지가 역외(域外, 협정 제1.4조의 ‘영역’ 외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라는 사유로 원산지증명서를 불인정하지 아니한다.

제4조(검증대상 선별) 세관장은 협정관세를 적용받아 수입된 물품의 원산지 지위에 관한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원산지검증에 착수하여야 하며, 물품의 원산지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원산지검증 기간) ① 세관장은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5조에도 불구하고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수출입물품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기간 중 먼저 도달하는 날 이내에 협정 제6.18조제5항에 따른 최종 결정을 수입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1. 수입자가 원산지조사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2개월

2. 협정 제6.18조제4항에 따른 예비결정내용 제공 후 추가정보 제출이 완료된 날로부터 90일. 다만, 추가정보 제공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입자가 예비결정내용을 제공받은 날로부터 30일이 경과된 날을 추가정보 제출이 완료된 날로 간주

② 세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청 승인 하에 원산지검증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미국 관세당국과의 협정 해석상 이견으로 검증이 지연되는 경우

2. 쟁점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선행 사건의 불복 진행 경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품목분류 등에 관하여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4. 원산지조사 처분 심의회 개최가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기간연장이 필요한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기간 계산은 「민법」에 따른다.

제6조(수입자 대상 원산지증빙서류 제출요청) 세관장은 훈령 제50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수입자에게 영 제10조제1항제1호 외의 자료에 대해서는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영 제10조제1항제2호 마목부터 아목까지의 자료 등 물품의 실질적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역외 수출자, 생산자 대상 원산지증빙서류 제출요청) ① 세관장은 주소나 소재지가 역외인 수출자(이하 ‘역외 수출자’라 한다)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발급자에게 다음 각 호의 원산지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역외 수출자가 역내 생산자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제출하거나, 역외 수출자의 요청을 받은 역내 생산자가 세관장에게 자료를 직접 제출하는 것도 허용한다.

1. 영 제10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서 정하는 서류

2. 훈령 별표 2의 원산지조사 표준 요구자료 목록표 중 원산지 확인에 필요한 서류

3. 훈령 별지 제32호 서식의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이하 ‘답변서’라 한다)

② 세관장은 주소나 소재지가 역외인 생산자(이하 ‘역외 생산자’라 한다)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발급자에게 물품의 생산이 역내에서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역외 생산자가 역내 생산자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제출하거나, 역외 생산자의 요청을 받은 역내 생산자가 세관장에게 자료를 직접 제출하는 것도 허용한다.

제8조(제출서류의 보완) ① 세관장은 제출받은 원산지증명서, 답변서, 기타 문서의 기재사항에 사소한 오류 또는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는 5일 이상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료의 제출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추가로 필요한 자료의 종류와 범위를 명확히 밝히고 5일 이상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협정관세 적용배제) 세관장은 제7조의 역외 수출자 또는 역외 생산자가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자료로는 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역내 생산자에 대한 추가 조사 없이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제10조(원산지 사전심사) ①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원산지 사전심사 신청에 대하여는 사전심사서로 통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산지 사전심사 신청 및 통지 등에 관하여는 법 제31조 및 제32조, 영 제37조부터 제40조, 규칙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1조(법령 등 적용원칙) 이 지침에서 정한 한-미 FTA 원산지검증에 관한 사항은 훈령에도 불구하고 이 지침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12조(다른 지침 적용제외)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검증에는 「원산지증명서 오류에 대한 원산지 조사 처리 지침(원산지지원담당관실, 2017. 3. 6.)」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지침은 2018년 9월 24일 이후의 수출입신고건과 원산지검증에 착수하는 수출입신고건(2018년 9월 24일 기준 원산지검증이 진행 중인 수출입신고건 포함)에 대하여 적용한다.

(붙임 1)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통관원칙(국문)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통관원칙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은 다음 원칙을 확인한다.

- ① 특혜관세 대우를 신청하기 위하여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하여 제공된 원산지증명서 또는 수입자의 지식에 의존하는, 협정에 따라 규정된 ‘인지기반’ 자율증명 제도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함
- ② 소재나 주소와 관계없이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하여 원산지증명서가 작성되도록 허용함
- ③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증명서, 질문지 또는 그 밖의 문서의 사소한 오류나 불일치를 별 척 없이 정정할 수 있도록 허용함. 그러한 사소한 오류나 불일치의 경우,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정정된 증명서, 질문지 또는 그 밖의 문서의 사본을 관세당국에 제공할 수 있도록 근로일 기준 5일 이상의 기간을 허용함
- ④ 원산지 검증¹⁾은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대한 정보 요청을 통하여 수입 당사국에 의하여 수행됨을 보장함
 - 1)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원칙은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대한 감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⑤ 원산지 검증은 관세당국이 상품의 원산지 지위를 의심하는 경우에만, 저위험 상품의 이동을 원활하게 하는 위험 관리 원칙에 기초하여 수행될 것임을 재확인함
- ⑥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의 질문에 대하여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한 서면 요청이 있는 경우, 구두 조언보다는 서면 사전심사 결정서를 제공함
- ⑦ 원산지 검증을 통하여 수행되는 정보요청은 검증되는 특정 상품을 명확히 적시하고,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의 정보로 제한되고, 원산지를 증명하기 위하여 제공되어야 할 특정 정보에 대하여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명확한 지침을 제공할 것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증대함
- ⑧ 원산지 검증을 가능한 한 신속하게 하여, 결정을 내리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령 한 후 90일 이내, 그리고 검증 개시 이후 12월 이내에 완료하도록 노력하고, 예외적인 경우 그 기간의 연장을 허용함

(붙임 2)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통관원칙(영문)

Customs Principles under the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

The United States and Korea confirm the following principles:

- ① Reaffirm the commitment to the “knowledge-based” self-certification system prescribed under the Agreement, which relies on importer knowledge or a certification of origin provided by an importer, exporter, or producer to make a claim of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 ② Allow a certification of origin to be completed by an exporter or producer regardless of its location or address.
- ③ Allow an importer, exporter, or producer to correct minor errors or discrepancies in the certification, questionnaire, or other documents, with no penalty for making such corrections. In the case of such minor errors or discrepancies, allow an importer, exporter, or producer a period of not less than five working days to provide to the customs authority a copy of the corrected certification, questionnaire, or other document.
- ④ Ensure that verifications of origin¹⁾ are conducted by the importing Party through information requests to the importer, exporter, or producer.
 - 1) For greater certainty, these principles do not apply to audits of an exporter or producer.
- ⑤ Reaffirm that verifications of origin will be conducted only if the customs authority has doubts as to a good’s originating status, and based on risk management principles that facilitate the movement of low-risk

goods.

⑥ Provide written advance rulings, upon written request by the importer, exporter, or producer, to questions of whether a good is originating, rather than answering such questions through verbal advice.

⑦ Increase efforts to ensure that information requests conducted through a verification of origin will clearly identify the specific goods being verified, will be limited in scope to information necessary to determine whether the goods are originating, and will provide clear guidance to importers, exporters, or producers with regard to specific information that must be provided in order to prove origin.

⑧ Endeavor to conclude verifications of origin as expeditiously as possible and no later than 90 days after receiving the information necessary to make a determination, and no later than twelve months after the initiation of the verification, allowing extensions of the period in exceptional cases.

7. 파나마 해상 환적 물품 한-미 FTA 적용 시 직접운송 입증 방법

〈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과 >
' 23. 7. 19. 제정

I. 목 적

- ☐ 본 지침은 파나마에서 해상 환적되어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미국산 액체화물(원유액화가스 등)의 협정관세 적용 시 직접운송 인정 기준을 명확화하여 기업의 FTA 활용 편의를 제고하는 그 목적이 있음

II. 적용 대상

- ☐ (협정)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미 FTA”)
- ☐ (물품) 미국에서 선적되어 파나마 운하를 통과한 후 파나마 영해에서 해상 환적되어 우리나라로 반입되는 미국산 액체화물로서 한-미 FTA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는 물품(이하 “미국산 액체화물”이라 한다)

III. 직접운송 입증 서류

- ☐ (운송경로) 단독으로 또는 함께 제시되었을 때 미국산 액체화물이 수출국인 미국에서 수입국인 우리나라로 이동하는 전체 운송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운송서류(선하증권 등)

* (예시) 미국에서 파나마로의 운송서류 + 파나마에서 우리나라로의 운송서류

- ☐ (비가공 및 세관 통제) 미국산 액체화물이 파나마 영해에서 해상 환적되었음이 확인되는 파나마 항만청(Panama Maritime Authority)에서 발급한 ‘해상 환적 작업 감독 확인서’ (STS Operations Supervision Report)

IV. 시행일자

- ☐ 이 지침은 2023년 7월 19일부터 시행함. 다만, 이 지침 시행 전에 발급된 ‘해상 환적 작업 감독 확인서’도 유효성 인정



AUTORIDAD MARÍTIMA DE PANAMÁ
(PANAMA MARITIME AUTHORITY)
DIRECCIÓN GENERAL DE PUERTOS E INDUSTRIAS MARÍTIMAS AUXILIARES
(GENERAL DIRECTORATE OF PORTS AND ANCILLARY MARITIME INDUSTRIES)
DEPARTAMENTO DE CONTROL Y PREVENCIÓN DE LA CONTAMINACIÓN
(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 DEPARTMENT)



INFORME DE SUPERVISIÓN DE OPERACIONES BUQUE A BUQUE
(SHIP TO SHIP OPERATIONS SUPERVISION REPORT)

Nombre de la Nave: _____ Número de identificación OMI de la nave: _____
(Vessel's Name) (I.M.O. No.)

Señal de llamada: _____
(Call Sign)

Lugar de Transferencia: Panamá-Balboa ☐ Panamá Pacífico (Offshore) ☐
(Place of Transfer) Panamá-Cristóbal ☐ Otro (Others): _____ ☐

Nombre y Número de Teléfono de la Agencia Naviera: _____
(Name and Telephone Number of Agency)

Nombre del Piloto: _____
(Pilot's Name)

I. Documentos Iniciales Requeridos:
(Required Initials Documents):

- | | |
|---|--|
| 1. ☐ Particularidades del Buque/ (Vessel's Particulars) | 6. ☐ Copia del Conocimiento de Embarque/ (Bill Of Lading)* |
| 2. ☐ Lista de Tripulantes/ (Crew List) | 7. ☐ Ficha Técnica del Producto/ (Material Safety Data Sheet)* |
| 3. ☐ Lista de Contactos de Panamá/ (Port Contact Sheet of Panama) | 8. ☐ Tres Últimos Productos Descargado/ (Last Three Cargos) |
| 4. ☐ Certificado Internacional de Prevención de la Contaminación por Hidrocarburos/ (I.O.P.P.C.) | 9. ☐ Plan de Operaciones de Carga y Lastre/ (Loading/ Unloading & Ballast Operation Plan) |
| 5. ☐ Últimos Certificados de Disposición de Desechos/ (Last Waste Disposal Certificates) | 10. ☐ Reporte Inicial de la Transferencia / (Ullage Report Before Transferring O.B.Q.) |

II. Documentos Finales Requeridos:
(Required Final Documents):

- | | |
|---|--|
| 11. ☐ Lista de Comprobación de Transferencia/ (Ship To Ship Transfer/ Check List)* | 14. ☐ Reporte Final de la Transferencia/ (Ullage Report After Transferring) |
| 12. ☐ Estado de Hechos de la Transferencia/ (Statement of Facts) | 15. ☐ Otros/ (Others): _____ |
| 13. ☐ Historial de Bombeo/ (Pumping Record) | |

III. Información de Carga / Descarga :
(Loading / Unloading Information):

Producto (Cargo)	Carga/ Descarga (Loading /Unloading)		Antes de la Transferencia TM (Before Transferring MT)	Después de la Transferencia TM (After Transferring MT)	Total Transferido TM (Total Transferred MT)	Posición (Lat. / Long.) (Position)	Hora (Time)
	L	U				Initial:	
						Final:	
	L	U				Initial:	
						Final:	
	L	U				Initial:	
						Final:	
	L	U				Initial:	
						Final:	

Observaciones (Remarks): _____

Fecha (Date): _____

Notas Generales:

6. (Copia del Conocimiento de Embarque) / Bill Of Lading (Copy) *	14. (Reporte Final de la Transferencia)/ Ullage Report After Transferring *
7. (Ficha Técnica del Producto) / Material Safety Data Sheet (MSDS) *	Ambos ullages deben ser solicitados al surveyor si lo hay y al buque.
Ambos se solicitan únicamente al buque que entrega.	11. (Lista de Comprobación de Transferencia)/ Ship To Ship Transfer Check List *
10. (Reporte Inicial de Transferencia) / O.B.Q. / Ullage Report Before transferring *	Deben solicitar el check list completo.

Nombre del Oficial de Contaminación (Firma y Sello)
(Pollution Officer's Name/ Signature /Stamp)

Nombre del Capitán (Firma y Sello)
(Master's Name / Signature / Stamp)

5. 한-중 FTA

1.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1. 일반 사항

1. 협정적용 영역

한국	중국
협정은 한국이 주권을 행사하는 육지, 해양 및 상공, 그리고 한국이 국제법과 그 국내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해의 외측한계에 인접하고 그 한계 밖에 있는 해저 및 하부토양을 포함한 해양지역에 적용함	협정은 육지, 내수, 영해 및 상공을 포함한 중국의 전체 관세영역, 그리고 중국이 그 안에서 국제법과 그 국내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중국의 영해 밖의 지역에 적용됨

- 홍콩, 마카오는 중국과 별도의 관세영역이므로 홍콩 또는 마카오에서 생산되어 수입되는 상품은 협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음

2. 관세 인하 또는 철폐

☐ 협정적용 대상

- 관세의 인하 또는 철폐는 협정 부속서 2-가의 자국 양허표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에 대하여 적용

《 원산지 상품 》

가. 상품이 전적으로 당사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되는 경우

나. 상품이 원산지 재료로만 전적으로 당사국에서 생산되는 경우

다. 상품이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전적으로 당사국에서 생산되고 품목별 원산지규정(부속서 3-가)에 합치되는 경우

그리고 그 상품은 협정 제3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이행절차)의 그 밖의 적용가능한 규정을 충족해야 함

《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 》

- 대상품목 : HS6단위 310개 품목(부속서 3-나)

- 인정지역 : 개성공단

- 인정기준 : 우리나라에서 개성공단으로 재료를 반출·가공한 후 중국으로 수출을 위해 재수입한 상품으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비원산지 재료의 총가치가 원산지 지위를 신청하는 최종 상품의 본선인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나. 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을 가공하는데 사용된 재료의 총가치의 60% 이상일 것

☐ 양허표 확인

- 한국에서 중국으로 수출시 : 중국 관세 양허표 확인
- 중국에서 한국으로 수입시 : 한국 관세 양허표 확인

<한-중 FTA 상품양허 유형>

양허유형	내 용
0	협정 발효일 즉시 관세철폐
5	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철폐 (이행 5년차 1월 1일 무관세)
10	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10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철폐 (이행 10년차 1월 1일 무관세)
10-A	이행 9년차 1월 1일을 시작으로 매년 균등철폐

	(이행 10년차 1월 1일 무관세)
15	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1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철폐 (이행 15년차 1월 1일 무관세)
15-A	이행 11년차 1월 1일을 시작으로 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철폐 (이행 15년차 1월 1일 무관세)
20	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20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철폐 (이행 20년차 1월 1일 무관세)
20-A	이행 11년차 1월 1일을 시작으로 10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철폐 (이행 20년차 1월 1일 무관세)
20-B	이행 13년차 1월 1일을 시작으로 8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철폐 (이행 20년차 1월 1일 무관세)
PR-1	협정 발효일 즉시 기준세율의 1퍼센트를 인하 (기준세율의 99% 유지)
PR-8	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기준세율의 8퍼센트를 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인하(이행 5년차 1월 1일부터 기준세율의 92% 유지)
PR-10	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기준세율의 10퍼센트를 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인하(이행 5년차 1월 1일부터 기준세율의 90% 유지)
PR-15	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기준세율의 15퍼센트를 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인하(이행 5년차 1월 1일부터 기준세율의 85% 유지)
PR-20	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기준세율의 20퍼센트를 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인하(이행 5년차 1월 1일부터 기준세율의 80% 유지)
PR-30	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기준세율의 30퍼센트를 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인하(이행 5년차 1월 1일부터 기준세율의 70% 유지)
PR-35	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기준세율의 35퍼센트를 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인하(이행 5년차 1월 1일부터 기준세율의 65% 유지)
PR-50	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기준세율의 50퍼센트를 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인하(이행 5년차 1월 1일부터 기준세율의 50% 유지)
PR-130	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관세율 130%로 10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인하(이행 10년차 1월 1일부터 종가세 130% 유지)
TRQ	일정물량에 한해 무관세로 수입하되, 나머지는 기준관세율 유지
E	기준관세율 유지

II. 원산지 증명

1. 증명방식 : 기관발급

☐ [발급 기관] 수출 당사국의 권한 있는 기관

- 한국 : 세관, 상공회의소·대한상공회의소
-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경우 세관에서 발급

- 중국 : 중국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 중국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발급 원산지증명서는 “원산지증명서 전자적 대조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

▶ 도메인 : www.chinaorigin.gov.cn

▶ 확인방법 : 세관별 원산지검증부서에 既 공문 시달(FTA협력담당관-189, '15.1.21)

☐ [발급 형식] 수기 또는 전자적으로 서명·날인

- 원산지 증명서 원본은 1부만 인쇄되어야 함

2.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 [신청권자]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책임하에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

☐ [제출서류]

《특례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및 제2항》

1. 수출신고 수리필증 사본(증명서 발급기관이 수출사실 등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생략 가능)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 가. 자유무역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의 경우 국외반출신고서 사본
 - 나.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경우에는 보세운송 신고서 사본
 - 다. 우편물·탁송품 및 별송품의 경우에는 영수증·선하증권 사본 또는 그 밖에 계약상대국으로 수출하였거나 수출할 것임을 나타내는 서류
2.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3. 원산지확인서(최종물품에 대한 원산지확인서로서 해당 물품의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4. 원산지소명서. 다만,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생산자는 원산지소명서를 증명서발급기관에 직접 제출할 수 있음
5.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정보 및 국내제조확인서(증명서발급기관이 요청시에 한하며,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생산자는 해당 서류를 증명서발급기관에 직접 제출할 수 있음)

3. 원산지증명서 발급시기

☐ 선적전, 선적시 또는 선적일부터 7근무일 이내

○ 선적일 포함하지 않음(within 7 workingdays after shipment)

☐ 선적전, 선적시 또는 선적일부터 7근무일 이내에 발급되지 않은 경우

○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에 “ISSUED RETROACTIVELY” 기재(5번란)하여 소급발급 가능

☐ 분실, 도난 또는 멸실의 경우 “CERTIFIED TRUE COPY of the original Certificate of Origin number dated”를 기재(5번란)하여 진정등본 발급*

○ 既발급된 원본이 사용되지 않음이 입증되어야 함

4.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 원산지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함

5. 원산지증명서 서식 및 작성요령

☐ 원산지증명서 서식 : 부록 참조

☐ 작성요령

○ 1개의 원산지증명서에 20개 품목을 초과할 수 없음(“을지” 없음)

- 20개 품목을 초과하는 경우 새로운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출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20개 품목 단위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을 하여야 함

○ 항목별 작성요령 : 부록 참조

※ 원산지증명서 “작성요령”은 원산지증명서 작성을 위한 참고용으로 원산지증명서 뒷면에 기재되거나 인쇄될 필요가 없으며, 당사국의 공식언어로 인쇄하거나 기재할 수도 있음

Ⅲ. 협정관세 적용

1. 협정발효 적용시점(경과규정)

☐ 수입물품에 대한 협정발효 적용시점

- 협정발효일 이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

□ 경과규정

- (대상) 협정 발효일에 통과중이거나 세관 보세창고에 임시 보관중인 상품
- (요건) 협정의 발효일부터 3개월 이내에 직접운송 입증서류와 소급하여 작성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협정 제3.26조(통과 또는 보관중인 상품에 대한 경과 규정)

2. 수입신고 수리 전 협정관세적용 신청

□ 수입자는 해당 수입물품의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 유효한 원산지증명서에 근거하여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함

- 원산지증명서 원본 소지
- 한-중 FTA用 협정관세적용신청서 작성
 - 기존 협정관세적용신청서 외에 양국간 「전자적 원산지 정보 교환 시스템 구축」*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 신청시 원산지증명서와 수입신고서 항목을 연계(맵핑)시키는 “별지” 작성
 - 적용시기 : 관세청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구축 후 따로 정하는 날
※ 그 전까지 현행 협정관세적용관세 적용신청서 활용

* 원산지증명서상 정보가 「전자적 원산지 정보교환 시스템」을 통해 각 당사국의 세관당국간에 교환되는 경우, 각 세관당국은 수입시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을 수 있음

○ 수입신고서에 협정관세율과 관세율 구분부호를 기재
《관세율 구분 부호》

부 호	내 용
FCN1	- 하나의 품목번호에 1개의 협정세율이 적용되는 물품 - 하나의 품목번호에 여러 개의 다른 협정세율이 있는 것 중 최고세율 물품
FCN2 FCN3 FCN4	- 하나의 품목번호에 여러 개의 다른 협정세율이 있는 것 중 최고세율인 FCN1을 제외하고 높은 세율 순으로 FCN2, FCN3, FCN4를 순차적으로 부여
FCN5	- 수입쿼터 선착순 방식을 적용하는 물품 중 수입쿼터 물량내의 물품
FCN6	- 추천이 필요한 물품 중 추천을 받은 물품

- 세관당국 요청시 원산지증명서 및 그 밖의 증빙서류 제출
 - 세관장이 특별한 사유로 원본을 요청한 경우가 아니면 원산지증명서에 사본제출 스탬프를 날인하여 제출할 수 있음

< 원산지증명서 사본제출 스탬프 >

본 사본이 원본과 다를 경우 관세법 등 관련법령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고 있으며, 세관에서 요구시 원본을 제출하겠습니다.

수입자 ○○○ 서명

- ※ 협정 제3.17조(특혜관세대우의 신청)
- ※ 협정 제3.27조(전자적 원산지 정보교환 시스템)
- ※ 특례고시 제28조, 제30조③ 별표5

3. 수입신고 수리 후 협정관세적용 신청

□ 수입 당시 원산지 상품이었으나 특혜관세 적용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 적용 신청

○ 협정관세적용신청서에 원산지증명서 원본, 수입·납세신고정정신청서 및 세관장이 요구하는 그 밖의 증빙 서류 제출

- ※ 협정 제3.18조(수입 이후 특혜관세대우)
 ※ 특례고시 제35조

4.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 수입물품 과세가격이 미화 700달러 이하의 소액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증명서 제출의무 면제*
 * 구매영수증, 제품의 원산지 표기 등을 통해 원산지를 간이하게 확인 후 협정 적용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면제되지 않음
- ① 당사국 법의 준수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
 - ② 수입물품이 일련의 수입의 일부분을 구성한다고 입증되는 경우

5. 수량별 차등협정관세 적용(TRQ)

☐ [선착순방식 TRQ 품목]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순서에 따라 정해진 수량(적용수량)까지는 무관세, 초과물량은 기준관세를 유지

가. (대상) 보세구역에 장치한 이후 수입신고되는 물품 대상

나. (통관절차)

- ① 적용수량에 도달하는 전날까지는 선착순으로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적용하며, 그 적용수량은 해당 수입 신고가 수리될 때의 수량으로 함
- ② 적용수량에 도달한 날에 수입신고된 물품은 남은 잔여수량을 수입신고수리된 수량에 비례하여 각각 배분
- ③ “②”에 따라 배분한 이후에도 잔여수량이 있는 경우 적용수량에 도달한 날의 다음날 순서대로 “②”와 같이 배분

다. 배분에 따른 세액보정

- 통관지세관장 : 배분되어 조정된 수량을 수입자에게 통지
 - 수입자 : 관세법 제38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세액 보정
- ※ 가산이자 없음(동조 제5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

<선착순방식 TRQ 대상 품목>

번호	HSK 2012	품목	연간 물량 (메트릭톤)
1	0303440000	눈다랑어[터너스오베서스(Thunnus obesus)](냉동)	270
2	1605592090	소라(기타, 조제/저장처리)	7
3	1605639000	해파리(기타, 조제/저장처리)	4

☐ [수입권 추천방식 TRQ 품목] 주무부 장관의 위임을 받은 기관의 추천을 받은 후 해당 추천서를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품목으로서 선착순 방식이 아닌 것

<한-중 FTA TRQ 품목별 운영방식>

번호	HSK 2012	품목	연간 물량 (메트릭톤)	추천대행기관	운영방식
1	0301999020	복어(활어)	140	한국수산물무역협회	수입권 배분
2	0301999070	미꾸라지(활어)	3,200	한국수산물무역협회	수입권 공매
3	0302899040	아귀(신선/냉장)	17	한국수산물무역협회	수입권 배분
4	0303440000	눈다랑어[터너스오베서스(Thunnus obesus)](냉동)	270	-	선착순
5	0303899060	아귀(냉동)	1,900	한국수산물무역협회	수입권 공매
6	0307511000	낙지(살아있는 것, 신선한 것 또는 냉장한 것)	6,100	한국수산물무역협회	수입권 공매

번호	HSK 2012	품목	연간 물량 (메트릭톤)	추천대행기관	운영방식
7	0307591020	낙지(기타)	19,400	한국수산물무역협회	수입권 공매
8	0307714000	바지락(살아있는 것, 신선한 것 또는 냉장한 것)	15,800	한국수산물무역협회	수입권 공매
9	0307791030	바지락(냉동)	330	한국수산물무역협회	수입권 배분
10	0307793020	바지락(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	290	한국수산물무역협회	수입권 배분
11	0713329000	팥(기타)	3,000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수입권 공매
12	1107100000	맥아(볶지 않은 것)	5,000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수입권 배분 (선착순)
13	1108191000	그 밖의 전분(고구마로 만든 것)	5,000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수입권 배분 (선착순)
14	1201903000	대두(콩나물용)*	3,000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수입권 공매
15	1201909000	대두(기타)*	7,000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수입권 공매
16	1207400000	참깨	24,000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수입권 공매
17	1605542091	조미오징어	980	한국수산물무역협회	수입권 공매
18	1605542099	오징어(기타, 조제 또는 저장처리)	1,300	한국수산물무역협회	수입권 배분
19	1605592090	소라(기타, 조제/저장처리)	7	-	선착순
20	1605639000	해파리(기타, 조제/저장처리)	4	-	선착순
21	2308009000	식물성 물질 및 식물성 웨이스트, 식물성 박류 및 부산물(기타)	38,000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 한국벼섯생산자연협회	수입권 배분 (선착순)

* 주: HSK1201903000 및 1201909000에 대한 관세율할당은 식용대두(IP)로 한정

- ① IP대두란 95% 이상의 단일종 대두를 포함하고 이물질을 1%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 선적분의 대두를 말함
 ② IP대두는 벌크 선적될 수 없으며 포대나 컨테이너로 선적됨

6.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대상품목(ASG) 관련 사항

* ASG : Agricultural Safeguard

☐ 농림축산물 긴급수입제한조치 대상품목은 기준발동물량을 초과하여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특별긴급관세 조치가 적용되나 다음의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대상품목 “별첨”)

“별첨” 특별법시행령 제8조의18

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농림축산물 중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물품(제10조의4제2항 관련)

품목번호	품 명	협정상 단계별 양허유형
0102211000	젓소	0
0102212000	육우(肉牛)	0
0102219000	기타	0
0102310000	번식용	0
0102901000	번식용	0
0103100000	번식용	0
0105111000	번식용	0

0105941000	번식용	0
0511100000	소의 정액	0
0511992010	돼지의 정액	0
0511993010	소의 것	0
0511993020	돼지의 것	0
1209911010	양과 종자	0
1209911090	기타	0
1209912000	무 종자	0
1209919000	기타	0
1209993000	담배 종자	0
1209999000	기타	0
0506902000	뿔가루	15
0511999010	잠종(蠶種)	15
0602201000	사과나무	15
0602202000	배나무	15
0602203000	복숭아나무	15
0602909030	뽕나무	15
1002100000	종자	15
1008211000	조	15
0602206000	꿀나무	20
1004100000	종자	20
1007100000	종자	20
2301101000	육이나 설육(屑肉)의 고운 가루 · 거친 가루 · 펠릿(pellet)	20
2306901000	참깨에서 나온 것	20
2309901091	대용유(代用乳)	20
2309902010	무기물 혹은 광물질(mineral)을 주로 한 것(미량 광물질을 주로 한 것은 제외한다)	20
2309902020	향미제(香味劑)를 주로 한 것	20
2309902099	기타	20
2309909090	기타	20
3505103000	배소전분	20

3505201000	전분 글루(glue)	20
3505202000	텍스트린 글루(glue)	20
3505209000	기타	20

※ 협정상 단계별 양허유형이 “0”인 물품은 협정 발효일에 무세가 적용되고, 단계별 양허유형이 “15”인 물품은 협정 발효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한 해의 1월 1일부터 무세가 적용되며, 단계별 양허유형이 “20”인 물품은 협정 발효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한 해의 1월1일부터 무세가 적용됨.

IV. 직접운송

☐ 당사국의 원산지상품은 당사국 간 직접 운송되어야 함

☐ 직접운송으로 간주

○ 상품이 비당사국을 경유하여 운송되더라도 다음을 조건으로 직접운송으로 간주

- ① 지리적 또는 전적으로 운송상의 이유일 것
- ② 비당사국에서 거래 또는 소비되지 않을 것
- ③ 상품이 하역, 운송상의 이유로 한 화물의 분리, 재선적 또는 그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모든 공정외의 공정을 비당사국에서 거치지 않을 것

○ 상품이 비당사국에서 일시보관되는 경우, 그 상품은 세관통제하에 머물러 있어야 하며, 상품의 반입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단, 불가항력의 경우 최장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 직접운송 입증서류

○ (통과 또는 환적의 경우) 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 또는 수출 당사국에서부터 수입 당사국까지의 전체 운송경로가 포함된 복합운송이나 합병운송 서류

○ (보관 또는 컨테이너 개장의 경우) 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 또는 수출 당사국에서부터 수입 당사국까지의 전체 운송경로가 포함된 복합운송이나 합병운송 서류와 비당사국 세관당국이 제공하는 보충서류

※ 비가공증명서 발행

- ① 발급기관 : (중국⇒한국) 홍콩세관, (한국⇒중국) 홍콩세관, China Inspection
- ② 발급신청 : 홍콩 도착 1일전까지 비가공증명서 발급 신청

《한-중 FTA 직접운송 비가공증명서 발급 예시》

종류	내용	비가공 증명유무
Mode 1	통과선하증권 발행, 동일 운송수단내 보관	불필요
Mode 2	통과선하증권 발행, 운송수단 변경	불필요
Mode 3	통과선하증권 미발행 , 운송수단 변경(컨테이너 또는 벌크) * 홍콩도착일로부터 7일 이내 환적의 경우	불필요
Mode 4	통과선하증권 미발행 , 보관(컨테이너 또는 벌크) * 홍콩도착일로부터 7일 초과 3개월 이내	필요
Mode 5	홍콩내 컨테이너 적출입, 재포장 등 작업	필요

※ 통과선하증권 : 최초의 운송업자가 수출국에서 수입국까지의 전구간의 운송(운송경로 기재)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하고 발행하는 선하증권

- ▶홍콩에서의 환적·보관 가능 화물터미널은 다음에 한함
- ①Kwai Ching Container Terminals(1~9), ②River Trade Terminal, ③Super Terminal One, ④Express Centre, ⑤Cathay Pacific Cargo Terminal, ⑥Asia Airfreight Terminal, DHL Central Asia Hub
- ▶어떤 경우라도 컨테이너 개장, 컨테이너 Seal 파손시 비가공증명서 필요
- ▶수입국 세관은 직접운송 여부에 의심이 있을 경우 추가입증자료 요구할 수 있음

V. 기록유지

☐ 수출자, 생산자,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원산지증빙서류를 3년간 보관*

○ 수입자는 자국법에 따라 5년간 보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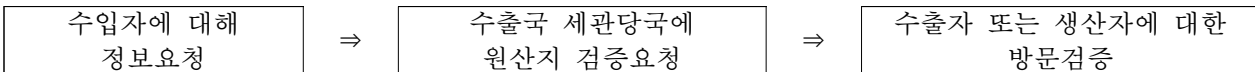
※ 협정 제3.20조 기록유지요건

※ 보관대상 서류 및 기간 : 특례법 제12조 및 특례법시행령 제13조 참고

- 특례법 제12조 :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는 원산지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

VI. 원산지검증 및 협정관세 적용 배제

☐ 원산지조사의 방법 : 先간접조사, 後현지조사



- 수입자는 정보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내 회신
- 수출국 세관당국은 수입국 세관당국의 검증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6개월내에 검증결과 및 증빙서류 제공
- 수입국 세관당국은 방문검증 요청 30일전까지 방문검증 통보
- 수출국 세관당국은 방문검증 동의 여부를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내에 수입국 세관당국에 통보
- 방문검증은 수출국 세관당국의 동행하에 수행
- 실제 방문에서 최종판정까지의 방문검증 절차는 6개월 내에 수행

☐ 협정관세 적용 배제

- 수입자가 수입국 세관당국의 정보요청을 접수한날부터 1개월 이내에 회신하지 못하는 경우
- 수출국 세관당국이 간접검증의 결과를 6개월 내에 제공하지 못한 경우
- 간접검증 또는 방문검증의 결과가 상품의 원산지 지위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포함하지 못하는 경우
- 수출국 세관당국이 수입국 세관당국의 방문검증 요청을 거절하거나 30일 이내에 회신하지 못하는 경우
- 상품이 협정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가 협정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원산지증명서가 협정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VII. 기타 집행사항

1. 관세면제대상 일시 수출입물품 등

☐ 원산지와 관계없이 다음 물품에 대해서는 무관세 일시반입 허용

《특례법 시행규칙 제11조①》

1. 언론장비, 텔레비전 방송용 장비, 소프트웨어, 방송·영화 촬영 장비 등 일시 입국하는 사람의 영업활동, 거래 또는 직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2.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물품(구성부품, 보조기구와 부속품을 포함한다)
3. 운용경기용 물품(시범용 및 훈련용 물품을 포함한다)
4. 상용견품

《특례법 시행규칙 제11조⑥》

1. 상용견품(견품 이외의 용도로 판매되거나 사용되기에 부적합하도록 천공, 절단 등 견품화 처리가 된 물품 또는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금액 이하인 물품으로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2. 인쇄광고물(소책자, 전단지, 상품목록 및 단체 발간 연감 등 품목번호 제49류에 분류되는 것으로서 물품 또는 용역의 판매를 촉진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무료로 제공되는 물품에 한정)

□ 무관세 일시반입 조건

- 가. 상품이 다른 쪽 당사국의 국민 또는 거주자에 의해서만 또는 그 개인적인 감독 하에서만 그 인의 영업 활동, 거래, 직업 또는 스포츠를 수행하는데 사용될 것
나. 그 상품이 자국 영역에 있을 동안 판매되거나 임대되지 아니할 것
다. 그 상품이 다른 경우라면 반입 또는 최종 수입 시에 부담하게 될 부과금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액 수로서 그 상품의 수출 시에 반환될 수 있는 채권이나 담보의 공탁을 수반할 것
라. 그 상품이 수출될 때 식별이 가능할 것
마. 그 상품이 “가”에 언급된 인의 출국 시 또는 그 당사국이 설정할 수 있는 일시 반입의 목적에 관련된 그 밖의 기간 내에 또는 6개월 이내에 수출될 것. 다만, 연장되는 경우에는 제외
바. 그 상품이 의도된 사용을 위한 합리적인 수량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사. 그 상품이 자국 국내법에 따라 당사국 영역 내로 달리 반입가능할 것

※ 협정 제2.6조(상품의 일시 반입) ③항

2. 수입물품의 원산지결정 등에 관한 사전심사

□ 신청대상

- 품목분류
- 상품의 원산지

□ 신청권자

- 수입자, 수출자 또는 그 당사국의 영역 내에 있는 그 밖의 모든 신청자

□ 처리절차 : 기재 생략

2.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수출자 관련 업무 처리 지침 안내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784, 2016.3.25)

1.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중국측 발행 원산지증명서 제1란(수출자)과 제13란(수출자 서명)에 실제수출자가 아닌 수출대행자(대외무역사업자) 등을 기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세관에 업무 처리 지침을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수출입업체 등에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협정에서 정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 여부 확인

- 원칙적으로 C/O 1란, 13란은 실제수출자가 기재되어야 함
- 다만, 부득이한 경우 실제수출자 외에 수출대행자(대외무역사업자 등)의 병기도 허용

3. 한-중 FTA 중국 발행 원산지증명서 제8란(품명) 기재사항 처리 지침 시달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2060, 2016-08-17

1. 관련근거

- 「한-중 FTA」 제3.15조(원산지증명서) 및 부속서 3-다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 제8조 및 제9조

2. 중국에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제8란(품명)의 기재사항에 대한 처리 지침을 아래와 같이 시달하오니, 동 지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원칙) 제8란(품명)은 모델·규격별로 작성되어야 함

□ (예외) 원산지증명서와 송품장의 품명·수량·총중량·송품장 번호 등이 일치하여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면 제8

란(품명)이 모델·규격별로 작성되지 않아도 예외적으로 인정처리
☐ (소급적용) 지침 시행 전에 작성된 원산지증명서도 소급 적용

4. 한-중 FTA 중국 발행 원산지증명서 처리 지침 통보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1750, 2016-07-13

1. 관련근거
 - 「한-중 FTA」 제3.15조(원산지증명서) 및 부속서 3-다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 제8조 및 제9조
2. 한-중 FTA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중국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의 처리지침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16. 7. 13(수)부터 시행하오니, 각 세관에서는 동 지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관내 수출입업체 및 관세사 등에게도 동 지침을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한-중 FTA 중국발행 원산지증명서 처리지침 1부. 끝.

한-중 FTA 중국 발행 원산지증명서 처리 지침

1. 목적

- 중국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의 효율적인 특혜심사를 위함
- * 근거: 「FTA관세특례법」 제8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

2. 처리방법

- ☐ 한-중 원산지자료교환시스템(EODES)를 통해 원산지증명서 진본여부와 세부내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특혜 적용(원칙)
 - ※ FTA관세특례법 제9조에 따른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 수입 C/S에서 「서류제출」로 선별되었더라도, 원산지자료교환 시스템(EODES)에서 확인 가능하면 P/L 처리 가능
- ☐ 원산지자료교환시스템(EODES)에서 C/O 조회가 안 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와 증빙서류(필요한 범위 내)의 제출을 요청*
 - *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5조(수입신고시 제출서류), 제25조(보완요구)
- 원산지증빙서류의 종류는 다음과 같음

☆ 거래계약서, 송품장, 포장명세서, 직접운송서류(B/L, AWB, 비가공증명서 등) ☆ 대외무역사업자와의 위임장 또는 계약서 ☆ 중국 해관에 신고한 수출내역서 사본
--

- 협정관세적용신청 내역, 원산지증명서, 원산지증빙서류가 일치하거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으면 특혜관세를 적용
- ☐ 추가확인이 필요한 경우 특혜적용하고 원산지 검증을 의뢰
- ☐ FTA관세특례법 제16조제2항의 기간 이내에 자료제출을 못한 경우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특혜배제

3. 시행시기: '16. 7. 13(수)부터

- ☐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수출자 관련 업무처리 지침('16.3.24.)” 은 폐지

□ 수입신고서 심사화면

수입신고번호* 12345-16-100000M 조회 Tip

※ 수입신고서 조회가 완료되었습니다.

공통사항 **품목사항(1단)** [P/L신고]

전체 1건 | 페이지당 10 조회 필터

란	HS부호	신고품명	순중량	유통 이력	C/S결과	감면 분납	요건 확인	
		거래품명	수량	상표명	원산지	합정 관세	관세를 구분	전제접기
001	8211.91-0000 [검사분석이력]	TABLE KNIVES KNIFE SET	1,264 KG 3,000 U	N	S 정CS결... CN-4-Y-D	N Y(제출)	Y(요건) FCN1 (6.4%)	접기

TOP 란 출력 분석의뢰 심사결과 검사변경 감면분납 원산지표시서정명령 합정세율

HS부호 (해외시장가격) 8211.91-0000 사레 [세관장 확인대상] 신고품명 TABLE KNIVES
거래품명 KNIFE SET
표준품명코드
상표코드 ZZZZ 사후평가대상 선택 사후확인기관
상표명 침해정보 유통이력관리 N 서류첨부 N 전부일력

번호	모델-규격	성분	중/수량	단가(EUR)	금액(EUR)
001-01	MODEL NO 111111		3,000(PC)		

과세가격미화	과세가격원화	세종	구분	세율	감면율	세액	감면분납부호	감면액/세종
		관세	FCN1	6.4%	0 %			0
특수세액계산	0	내국세		0%				
합계출발	3,000 U	교육세		%		0		
총 중량수량	3,000	농특세		%		0		

□ EODES 매핑화면

알림사항 SCM정보 품목 **업무공간** 정보공간 닫기 X W2_imp1 결합등록 결합유무

공통사항 **품목사항** **원산지매핑내역**

전체 1건 | 페이지당 10 필터 +행추가 행수정 행복사 행삭제

수입 신고	원산지 증명서					
란번호*	규격*	발급번호*	일련번호*	사용수량*	단위*	
001	01	K111-11-1111	1	3,000	SET	중국 CO조회

4세대 국가관세통합정보망 - Windows Internet Explorer

한-중FTA 수입 CO정보 조회[UI-FTA-0304-056Q]

공통사항

CO번호/발급일자	K111-11-1111 / 2016-06-29	발급기관	
수출자	CHINA KNIFE LTD. 111 AA ROAD, SHANGHAI, P.R.CHINA		
수입자	To be provided To be provided		
생산자	To be provided To be provided		
선기명		출발일자(선적일자)	2016-07-01
적재항		목적항	
Invoice	111-11-1111		

품목사항

전체 1건 | 페이지당 10

행	물품명세	HS부호	원산지결정기준	수량(단위)	포장수(종류)
1	MODEL NO 111111	8211.91-0000	PSR	3,000(006)	108,PACKAGES

5. 중국발 홍콩 경유 수입 화물에 대한 비가공증명서 발급 기준

<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 >

1. 서 류 명: 비가공증명서(Certificate of Non-manipulation)

2. 발급기관: 홍콩세관

3. 대상물품: 중국에서 홍콩을 경유하여 한국으로 수입되는 물품 중 이 지침 4.의 대상협정에 대해 협정(특혜) 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물품

4. 대상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중 FTA), 「역내포괄적경제 동반자협정」,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

5. 발급기준: 유형별로 순차적 적용(I → II → III → IV)

내 용	유형	화물종류	보관 유무	발급여부
전체 운송구간에 대한 단일 통과선하증권(Single Through Bill of Lading) ¹ 이 발급되는 화물	I	컨테이너 및 벌크화물	보관 유무 불문	불필요
전체 운송구간에 대한 단일 통과선하증권이 발급되지 않는 화물	II	컨테이너 화물 ²	보관 유무 불문	불필요
	III	벌크화물 ³	홍콩내 미보관	불필요
			홍콩내 지정된 장소에서 일시보관 ⁴	불필요
- 홍콩에서 재포장 등으로 품명, 포장수량, 중량이 변경되는 화물 - 컨테이너 적·출입된 화물 ⁵	IV	컨테이너 및 벌크화물	홍콩내 보관	필요
			보관 유무 불문	필요

1. “단일 통과선하증권(Single Through Bill of Lading)”이란 수출국에서부터 수입국까지 전체 운송경로 정보(출발지, 경유지, 도착지), 화물 품목 및 수량⁶ 등의 상세한 선적정보를 담고 있는 선하증권으로서, 특정 운송인이 모든 구간의 운송에 대해 책임을 지는 단일의 선하증권(Air Waybill 포함)을 의미한다.

2. 컨테이너 번호와 실(seal) 번호가 모든 운송과정에서 변경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일련의 운송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 “일련의 운송서류”란 물품의 모든 운송과정을 증명하는 운송서류의 결함을 의미함
- (예시) 중국에서 한국으로의 운송과정이 재화청단(중국→홍콩) 및 선하증권(홍콩→한국)에 의해 입증되는 경우 재화청단 및 선하증권이 일련의 운송서류에 해당

3. 물품의 품명, 포장수량 및 중량이 모든 운송과정에서 변경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일련의 운송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4. 다음의 지정된 장소에서 7일 이내의 보관에 한정한다.

① Kwai Tsing Container Terminals(1~9), ② Tuen Mun River Trade Terminal, ③ Super Terminal One, ④ The Hong Kong International Airport Express Centre, ⑤ Cathay Pacific Cargo Terminal, ⑥ Asia Airfreight Terminal, ⑦ DHL Central Asia Hub

5. 대상협정이 한-중 FTA인 경우에는 “컨테이너 적출된 화물”로 적용할 수 있다.

6. 발급절차 등: 홍콩세관 홈페이지(<https://www.customs.gov.hk>) 참조

* [경로] Home > Trade Facilitation > Free Trade Agreement Transhipment Facilitation Scheme(FTA Scheme)

7. 시행일: 이 지침은 2022. 5. 10일부터 시행함. 다만, 이 지침 시행 전에 홍콩세관에서 발급한 비가공증명서도 유효성 인정

※ 이 지침 시행에 따라 「한-중 FTA 홍콩 경유 화물에 대한 비가공증명서 발급 기준」(’17. 4. 7. 개정) 및 「홍콩 해관 APTA 중국발 경유 화물에 대한 비가공증명서 발급 기준」(’19. 7. 4. 제정)은 폐지함

6. 한-아세안 FTA

1. 한-아세안 FTA 집행에 관한 지침 시달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 2007-06-07(제정일자)

- 6월 1일부터 발효되는 한·아세안 FTA는 거대경제권과의 첫 번째 FTA로서 관세철폐 방식 및 원산지 증명 제도 등 기존의 협정과 다른 절차·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생산공장 보유업체 지정제도」가 새로이 시행됩니다.
 - 또한, FTA 시행초기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 아닌 상공회의소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협정관세를 신청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일부 운영상 혼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불임과 같이 “한·아세안 FTA 집행에 관한 지침”을 시달하오니, 관내 무역업체와 내부직원에게 대해 철저히 교육하는 등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각 세관장은 6.1~6.10일까지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실적, 생산공장 보유업체 지정신청 건수 및 집행상 특이사항을 아래 양식에 맞춰 6.13(수)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불임 : 한·아세안 FTA 집행에 관한 지침 1부

한·아세안 FTA 집행에 관한 지침

I. 한·아세안 FTA 협정 일반

1. 협정 발효 국가의 확인

- 아세안 10개국 중 태국은 상품협정 서명을 하지 않아 특혜관세 적용 대상국가에서 제외되며, 각 국가별로 발효 일자*에 차이가 있으므로 수출입시 주의를 요함.
- * 6.1일 발효되는 국가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미얀마 5개국이며, 필리핀, 브루나이, 라오스, 캄보디아 4개국은 추후 발효될 예정임
- 한-아세안 FTA 상품무역협정 발효국 통보(공정무역과-2101호, '07. 5.30) 공문 참조

2. 한·싱가포르 FTA와 한·아세안 FTA는 선택 적용 가능

- 싱가포르는 두 협정에서 모두 가입해 있으므로 업체가 유리한 협정을 선택적으로 사용 가능
(예) TV 수신기는 한·싱에서는 양허제외이지만, 한·아세안에서는 양허대상임
- 원산지증명서는 선택 적용한 협정에서 규정한 양식을 사용하여야 함

II. 특혜통관 신청 확인 사항

3. 한·아세안 FTA 특혜관세 신청 절차 확인

- 협정관세 적용신청은 수입신고 수리 전 협정관세적용신청과 수입신고 수리 후 협정관세 적용신청 두 가지가 있음
 - 수리 전 협정관세적용신청 : 수입자가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원산지증명서를 소지하고 협정관세적용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세관장에게 적용을 신청
 - 수리 후 협정관세적용신청 :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원산지증명서를 갖추지 못한 수입자가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수리 후 협정관세를 적용받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통관한 후 1년내에 원산지증명서를 갖추고 협정관세적용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세관장에게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
- * 의사표시 방법 : 수입신고서 18번 항목을 “B”로 기재하고 동시에 적용받고자 하는 협정관세를 및 관세를 구분부호를 관세사기제란에 기재

4.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를 구분부호 확인

- 한·아세안 FTA에 적용할 협정관세를 구분부호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

관세율 구분부호	적용 대상	비고
FTA1	- 하나의 품목번호에 1개의 협정세율이 적용되는 물품 - 하나의 품목번호에 서로 다른 협정세율이 있는 것 중 최고세율 적용물품	
FTA2 FTA3	- 하나의 품목번호에 서로 다른 협정세율이 있는 것 중 최고세율인 FTA1을 제외하고 높은 세율순으로 FTA2, FTA3를 순차 적용	

FTA4	- 추천을 받은 물품	
------	-------------	--

5. 관세할당(TRQ) 품목 협정관세추천 여부 확인

- 관세할당(TRQ) 품목은 일정 물량(In-quota)까지는 특혜관세가 부과되며, 이를 초과(Out-quota)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현행세율이 부과됨
- 특혜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주무부장관(농림부, 해양수산부)의 위임을 받은 기관의 추천을 받은 후 당해 추천서를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세관장에 제출하여야 함 (FTA특례법 시행령 제4조)

<농림부 소관사항>

품목구분	HS번호	품명	연간 협정관세적용물량	협정관세 적용세율	협정관세적용물량배정 방식	협정관세 추천대행기관
강낭콩	0713-33-1000 0713-33-9000	강낭콩(종자용) 강낭콩(기타)	5톤 1,995톤	0%	실수요자배정 수입권공매	국립종자관리소 농수산물유통공사
매니옥	0714-10-1000 0714-10-2010 0714-10-2090 0714-10-3000 0714-10-4000	매니옥(신선) 매니옥칩(건조) 매니옥(칩-펠리트 이외/건조) 매니옥(냉장) 매니옥(냉동)	25,000톤	20%	실수요자배정	대한주류공업협회
매니옥 전분	1108-14-1000 1108-14-9000	매니옥(카사바)전분(식품용) 매니옥(카사바)전분(기타)	9,600톤	9%	실수요자배정	한국제지공업연합회

<해양수산부 소관사항>

협정관세적용품명	HS번호	연간협정관세 적용물량(톤)	협정관세 적용세율(%)	협정관세적용 물량배정방식	협정관세 추천대행기관
새우와 보리새우(새우살, 냉동)	0306-13-1000	5,000	0	지정기관배정	한국수산물수출입조합
새우와 보리새우(기타, 냉동)	0306-13-9000				
새우, 보리새우(산 것, 신선 또는 냉장한 것)	0306-23-1000	300	0	지정기관배정	한국수산물수출입조합
갑오징어(냉동)	0307-49-1010	2,000	0	지정기관배정	한국수산물수출입조합
새우와 보리새우(기타,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것)	1605-20-9090	2,000	0	지정기관배정	한국수산물수출입조합

6.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및 서명자 확인

- 아세안 국가는 한-아세안 FTA 특혜관세용 원산지증명서(Form AK)를 국가기관(세관 또는 통상부 등)에서 발급하므로 특혜관세적용신청서 또는 원산지증명서(서류제출인 경우)의 「기관명 및 종류」와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직인 및 발급권자의 서명* 확인
- * 직인 및 서명이 상이한 경우에는 공정무역과로 진위여부 요청할 것.
- 한-싱가포르 FTA 발효 당시 싱가포르 상공회의소 발급 원산지증명서에 의해 특혜관세를 신청하여 사후에 문제가 된 사례가 다수 발생

<각 국가별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국가	발급기관	발급기관(영문)
브루나이	외교통상부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캄보디아	상무부	Ministry of Commerce
인도네시아	통상부	Ministry of Trade
라오스	상무부	Ministry of Industry and Commerce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	Ministry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
미얀마	상무부	Ministry of Commerce
필리핀	세관	Bureau of Customs
싱가포르	세관	Singapore Customs
베트남	통상부	Ministry of Trade

7. 원산지증명서의 특례 확인

- 한-아세안 FTA 협정 발효 이전(6.1일)*에 아세안에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도 6.1일 이후 수입신고된 물품은 특혜관세를 받을 수 있음
- * 다만, 협정 발효이전 3개월(3.1일 이후 발급 분)에 한함
- 통관단계에서 원산지증명서 사본제출시 이를 허용하되 원산지증명서 사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부관부로 기재하여 사본제출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할 것
- 특혜원산지증명서 사본처리 지침(공정무역과-882호, 2007.3.13.) 참조

본 사본이 원본과 다를 경우 관세법 등 관련법령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고 있으며, 세관에
서 요구시 원본을 제출하겠습니다.

수입자 : 000 서명

III. 원산지증명서 발급 등

8. 인터넷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

-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은 인터넷 방식으로 가능하며 발급시 구비서류 및 원산지기준*에 충족여부 등을 확인한 후 처리
 - 원산지기준은 한·아세안 FTA 협정 제5조(원산지 규정)와 그 부속서3 및 FTA특례법 시행규칙 별표 3을 확인하고, 특히 우리나라에서 아세안 회원국으로 수출되는 물품에 대하여 역내부가가치 비율을 계산하는 때에는 공제법(Build-down)만을 적용함.
 -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 등 교육 자료 참조
-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자 정정내역은 현재 베트남에서 개최되고 있는 제4차 한·아세안 원산지 이행위원회 협상에서 아세안측에 통보할 예정임

9. 대한상의 현지확인 요청에 따른 보고 절차

- 대한상의는 FTA특례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에 따라서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인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요청함.
- 세관장은 요청받은 사실을 즉시 관세청장에게 보고하고, 요청 받은 날부터 7일(공휴일·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 제외) 이내에 현지확인을 완료하고 원산지인정요건 충족여부 및 그 증빙서류를 대한상공회의소 장 및 관세청장에게 송부(보고)할 것.

IV. 생산공장 보유업체 지정제도

10. 생산공장 보유업체 지정절차 절차

- 수출물품을 직접 생산하는 업체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비용을 절감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원산지 결정 기준의 충족여부에 대한 엄격한 확인을 통하여 원산지증명 제도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향후 진행될 FTA협상에서 협상력 제고 “생산공장 보유업체 지정제도” 도입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 간소화
- 생산공장 보유업체 지정 요건심사, 생산공장 보유업체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구비서류 및 심사 간소화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것
- “생산공장 보유업체 지정” 기준 확인
 -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 수출물품을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을 갖춘 업체로서
 - 최근 2년간 FTA특례법령 및 관세법령의 위반사실이 없고
 - 최근 2년간 연평균 100만 불 이상 또는 50건 이상의 수출실적이 있는 자
 - 전년도 원산지증명서 발급실적이 20건 이상으로서, 발급신청 오류 비율이 5% 이하인 자(2008. 1. 1. 이후 지정신청 자부터 적용)
- 생산공장 보유업체에 대한 혜택
 -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시 발급신청서 이외의 구비서류 제출 및 심사를 간소화로, 특히, 인터넷을 통한 발급 신청시 편리
 - 일반적인 원산지증명서 발급시에는 발급신청서 외에 원산지결정기준별 원산지 확인서류(부품구입증명서, 공정명세서 또는 노무비, 경비 등의 확인자료)를 제출받아 심사를 한 후 발급
- 생산공장 보유업체 지정 절차 및 사후 관리
 - 지정신청 → 세관장 → 요건심사(세관장) → 보고(관세청) → 지정(관세청장) → 지정통보(세관장) → 지정통보(해당업체)
 - 세관장은 생산공장이 FTA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서류심사 후, 2달 이내에 생산시설 구비여부를 현장확인
 - 매2년 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 적정여부 및 생산공장 지정요건 유지여부 확인

2. 아세안회원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증명서 개정서식 사용관련 지침 시달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 2014-01-24(제정일자)

1. 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실-2906호(2013.12.13)와 관련입니다.

2. 아세안회원국과의 원산지증명서는 지난 제8차 한-아세안 포괄적 경제협력협정 이행위원회에서 서식을 개정하여 올해부터 사용하기로 합의(' 13.6.27.)되어 현재 원산지증명서는 개정서식을 사용하고 있으나

3. 상기 개정서식 사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운영됨을 알려드리오니 각 세관장은 동 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관내 수출입기업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태국왕국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으로 수출하는 물품의 원산지증명서

- 개정서식 ⑨란(총중량 또는 기타수량 및 가격)의 'FOB금액'이 표시되도록 원산지증명서 발급시스템 변경

※ 종전 개정서식으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도 세관에서 재발급시에는 'FOB금액'이 표시되도록 변경되며, 향후 별도 통보시까지 변경된 서식으로 발행됨

(2) 아세안회원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의 원산지증명서

- ' 14.6월까지 개정전 원산지증명서와 개정 원산지증명서 모두 사용 가능(발급일 기준). 끝.

3. 아세안회원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개정에 따른 처리지침 시행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1234, 2014-05-29

1. 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2906(' 13.12.13) 및 -384(' 14.4.9)호와 관련입니다.

2. 아세안회원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발급일로부터 1년' (종전 6월)으로 변경됨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제2항제1호가 '14. 1. 1.자로 개정되어 시행되었으나

3. 시행일 전에 수입신고수리된 물품도 같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협정관세사후적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지침을 시달합니다.

- 아 래 -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제2항제1호 개정에 따라 2013.12.31일 이전에 발급된 아세안회원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도 1년으로 연장

○ 따라서 시행일 이전 수입신고수리된 물품의 경우에도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신청일 현재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같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협정관세 사후적용신청 가능

※ 적용예시 : 2013.6.15일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물품으로서 2013.6.17일에 수입신고수리된 물품은 2014.6.15일까지 협정관세 사후적용신청 가능. 끝.

4. 캄보디아, 한·아세안 FTA 상품무역협정 발효 및 이행개시 통보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 2008-10-31(등록일자)

1. 기획재정부 양자관세협력과-458(2008.10.31.)호 「캄보디아 한·아세안 FTA 상품무역협정 발효 통보」와 관련입니다.

2. 캄보디아 정부가 한·아세안 FTA 상품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국내절차를 완료하여 2008.11.1부터 공식 발효 및 이행을 개시할 예정임을 통보하오니

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조 단서 규정에 따라 2008.11.1부터 캄보디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고, 업체에 동 사실을 홍보하는 등 한·아세안 FTA 상품무역협정의 원활한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한-아세안 FTA 이행협상 합의사항 시행지침 송부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 2010-10-07(제정일자)

1. 기획재정부 양자관세협력과-623(2010.9.30.) ‘한-아세안 FTA 이행협상 합의사항 시행지침 송부’ 관련입니다.
2. 한-아세안 FTA 이행협상에서 합의된 협정문 규정 해석 사안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일선 세관에서는 착오 없이 시행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가. 원산지 증명서 발급 관련 ‘soon thereafter’의 의미한-아세안 FTA 상품협정 부속서3의 부록1 ‘원산지 규정을 위한 원산지 증명 운영 절차’ 제7조 제1항(A certificate of Origin shall be issued at the time of exportation or soon thereafter)의 ‘soon thereafter’의 의미는 ‘선적 후 3일 이내’를 말함
- 나. 직접경상경비(direct overhead cost)의 의미한-아세안 FTA 상품협정 부속서 3 ‘원산지 규정’ 제4조의 역 내가치포함비율 계산과 관련하여 집적법의 직접경상경비(direct overhead cost)는 판매비와 관리비를 제외한 물품 생산과 직접 관련된 비용만을 포함(the direct overhead cost would only include cost of overhead directly associated with the manufacturing process, not including sales, general and administrative expenses.)
- 다. 원산지 증명서에 기재하는 HS 코드 단위한-아세안 FTA 상품협정에 첨부된 양식 ‘원산지 증명서’의 제7란에 기재하는 HS 코드는 6단위까지 기재하면 됨.

6. 한·아세안 FTA 발표에 따른 한국원산지증명서 불인정사례 전파 시달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 2007-10-24(등록일자)

주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대사관-5731(2007.10.19.)호로 한-아세안 FTA 특혜관세적용 관련, 우리나라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한원산지증명서 불인정 사례 발생과 관련한 보고내용을 아래와 같이 전파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 주요 내용

- 최근 베트남 일선 세관들이 한·아세안 FTA에 의거하여 우리나라 상공회의소들이 발행한 원산지 증명서를 수용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 중인 것으로 관찰됨
- 베트남 세관총국은 동 FTA에서 우리측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으로 지정된 우리 상공회의소들의 인장 및 서명 관련 자료를 전달받지 못했다고 주장
 - 이들 전달받지 못한 일선 세관은 한·아세안 FTA에 따른 신규 원산지 증명서를 수용할 근거가 없으며, 관세율도 일반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
- 베트남 산업무역부의 수출입정책관리국은 아세안 사무국으로부터 전달받은 우리측 인장 및 서명 관련자료들을 2007.10.9일에 세관총국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됨
 - 2007.10월말 이후에야 이 자료들이 일선 세관들로 전파될 것으로 전망
- 한·아세안 상품분류 FTA가 한·베트남간에 발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산지증명서 미수용으로 인해 일반 관세율이 계속 적용되어 양국간 수출입 기업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발생

7. 한-아세안 FTA 연결원산지증명서 확인업무 지침

관세청 FTA집행기획관실, 2017. 3. 14. 제정

☐ 연결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산정 기준

- 최초 수출국 C/O 발급일로부터 유효기간 산정

☐ 기재 방법

- 연결원산지증명서 7번란(포장·품명·규격란)에 ‘최초 수출국 원산지증명서 발급일자 및 발급번호’ 기재

☐ 7번란에 미기재된 경우 처리방법

- C/O 발급시
 - C/O 발급 담당자는 신청인에게 C/O 7번란에 최초 수출국 원산지증명서 발급일자 및 번호를 기재토록 조치* 후 발급
 - * 원산지증명서 입·출력 시스템 개선 완료
- 협정관세 적용심사시

- (원칙) C/O 7번란에 최초 수출국 C/O 발급번호 및 발급일자 기재 필요
- (예외) 한-아세안 FTA 협정 개정전까지는 기재되지 않은 C/O도 사용 가능하며,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도 유효기간 기산일은 최초 수출국 C/O 발행일 기준
- ※ 미기재 또는 기재된 정보가 불확실한 경우 원산지증명서 등 요구 가능 (FTA 특례고시 제12조 · 제19조)

□ 시행일 : 2017. 3. 14(화)

- 시행일부터 발급한 연결원산지증명서부터 적용

8.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유의사항 시달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 2009-07-08(등록일자)

1. 한·아세안 FTA에서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출물품을 선적한 후 1년 이내에 원산지증명서의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선적 후에 발급하였음을 나타내는 문구(Issued Retroactively)를 표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부록1 제7조제4호).
2. 그러나 선적 후 발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표기하지 않은 증명서가 발급되는 사례가 있어 아세안 국가 세관 수입통관시 마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3. 각 발급기관장께서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시에 선적일자를 철저히 확인하여 필요시 “Issued Retroactively” 문구가 표기될 수 있도록 직원 교육 및 감독을 강화하여 주시고,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업체에도 널리 홍보하여 신청시 착오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가격 기재 방법 안내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386(2021.2.10.)

1. 지난 제7차 한-아세안 FTA 이행위원회에서 제3국 송장이 발행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되는 가격(원산지결정기준이 역내가치포함비율인 경우에 기재)을 “국내수출자의 거래가격” 또는 “최종 수출국의 FOB 가격” 중에서 수출자가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 합의한 바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인이 발급기관에 제출한 제3국 발생 송장 등 관련 무역서류로서 최종 수출국의 FOB 가격과 실제 거래 물품과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격을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수 있음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끝.

7. 한-EFTA, 칠레 FTA

1. 한-EFTA, 칠레 FTA 등 원산지증명서 확인 및 특혜관세 적용 지침

※ 지시지침 공통사항 <5. FTA 원산지 증명서 확인 및 특혜관세 적용 지침 시달> 참조

2. 한·EFTA FTA 계약상대국 인증수출자 인증번호 체계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 2018-01-12

1.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한-EFTA FTA) 부속서 I 제16조에 따른 인증수출자(Approved Exporter)는 한-EFTA FTA 부속서 I 부록 3에 의한 원산지신고서 작성시 본인의 성명 및 서명 기재가 생략되고, 그 대신 세관인증번호(Customs Authorization NO)란에 인증수출자 인증번호를 기재하면 됩니다.
2. 이와 관련하여 한-EFTA FTA 계약상대국의 인증수출자 인증번호 체계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한-EFTA FTA 협정관세 적용시 참고하시고 또한 무역업체 및 관세사에도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EFTA FTA 계약상대국 인증수출자 인증번호 체계

국가	인증수출자번호 체계	예시
아이슬란드	등록번호(4자리)-IS인증년도(2자리)	0023-IS10
노르웨이	국가명(2자리)/인증년도(2자리)-등록번호(9자리)	NO/16-123456789
스위스 및 리히텐슈타인	인증번호(3자리 또는 4자리 또는 5자리) /인증년도(4자리)	123 또는 123/1998 1234 또는 1234/1998 12345 또는 12345/1998

8. 한-뉴질랜드 FTA

1. 대한민국과 뉴질랜드간의 자유무역협정

1. 협정적용 영역

대한민국(원산지 부호 KR)	뉴질랜드(원산지 부호 NZ)
한국 주권하의 육지, 해양 및 상공, 그리고 한국이 국제법과 그 국내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해의 외측한계에 인접하고 그 한계 밖에 있는 해저 및 하부 토양을 포함한 해양지역	뉴질랜드의 영역과 뉴질랜드가 국제법에 따라 천연 자원과 관련하여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는 배타적 경제수역, 해저 및 하층토 (토켈라우 제외)

※ 협정문 제1.5조(정의)

2. 관세 철폐

☐ 협정적용 대상

- 관세 철폐는 협정 부속서 2-가의 자국 양허표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에 대하여 적용

※ 협정문 제2.4조(관세 철폐) 제2항

☐ 양허표 내용

- 한국에서 뉴질랜드로 수출시 : 뉴질랜드 관세 양허표 확인
- 뉴질랜드에서 한국으로 수입시 : 한국 관세 양허표 확인

※ 부속서-2가(관세 철폐)

<한-뉴질랜드 FTA 상품양허 유형>

양허유형	내 용
0	협정 발효일 즉시 관세철폐
3	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3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철폐 (이행 3년차 1월 1일 무관세)
5	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철폐 (이행 5년차 1월 1일 무관세)
6	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6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철폐 (이행 6년차 1월 1일 무관세)
7	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7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철폐 (이행 7년차 1월 1일 무관세)
12	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12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철폐 (이행 12년차 1월 1일 무관세)
13	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13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철폐 (이행 13년차 1월 1일 무관세)
15	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1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철폐 (이행 15년차 1월 1일 무관세)

17	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17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철폐 (이행 17년차 1월 1일 무관세)
18	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18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철폐 (이행 18년차 1월 1일 무관세)
20	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20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철폐 (이행 20년차 1월 1일 무관세)
B	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10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50퍼센트 인하, 그 이후부터 그 관세율 유지
S-1	- 12.1일 ~ 4.30 : 무관세 - 5.1일 ~ 11.30 :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1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철폐(이행 15 년차 1월 1일부터 무관세)
S-2	- 6.1일 ~ 11.30 : 기준관세율 - 12.1일 ~ 5.31 : 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 철폐(이행 5년차 1월 1일 무관세)
E	기준관세율 유지
X	협정상 관세에 관한 어떠한 의무도 적용되지 않음

* “이행 1년차”란 협정이 발효되는 연도

* 이행 2년차 부터는 해당연도의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

II. 원산지 기준

☐ 원산지 상품(협정문 3.2조)

이 협정의 목적상, 상품이 이 장의 모든 적용 가능한 요건을 충족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된다.

가. 당사국에서 상품이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되는 경우

나. 품목별 원산지 규정(부속서 3-가)에 명시된 세번 변경, 역내가치포함비율(제3.4조), 또는 그 밖의 요건에 합치하는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상품이 전적으로 생산되는 경우

다. 상품이 전적으로 원산지 재료로만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되는 경우

☐ 원산지 요건충족 기준으로서 협정문에서는 원산지 일반 기준을, 부속서에서는 개별 품목에 대한 품목별 원산지 기준(PSR : Product Specific Rules)을 규정

- 일반 기준 : 완전생산 기준, 실질적 변형기준(세번변경 또는 부가가치 기준) 등을 규정
- 품목별 원산지기준(PSR) : HS 6단위 5,052개('07년 기준)

☐ 완전 생산기준(3.3조) : 당사국 영역에서 채취되거나 추출된 광물과 그 밖의 천연자원 등 11개 항목

☐ 역내가치비율(RVC: Regional Value Content)(협정문 제3.4조)

- 공제법, 집적법 중 선택

☐ 누적기준(3.6조)

- 타 당사국의 상품이 당사국 영역에서 상품에 결합된 경우, 상품에 결합이 일어난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
- 하나 이상의 생산자에 의해 어느 한쪽 또는 양당사국 내에서 생산된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

☐ 최소허용수준(3.7조)

- 비원산지 재료가 해당 품목의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모든 비원산지 재료 가치가 상품가치의 10% 이하로 사용된 경우에는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

- 제50류-제63류(섬유 및 의류) 대해서는 세번변경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모든 비원산지 재료가치가 상품 가치의 10% 이하인 경우 또는 비원산지 재료의 총중량이 상품 중량의 10%이하인 경우에도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

□ 불인정 공정(3.14조)

- 가. 운송되고 보관되는 동안 제품이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보장하는 보존 공정
- 나. 포장의 변경, 포장물의 해체 및 조립
- 다. 병·캔·플라스틱·가방·케이스·상자에 단순히 넣기, 카드 또는 판에 붙이기, 그리고 그 밖의 모든 단순한 포장 공정
- 라. 세탁, 세척, 먼지·녹·기름·페인트 또는 그 밖의 막의 제거
- 마. 연마, 단순 분쇄 또는 파쇄 또는 단순 절단
- 바. 마크, 라벨, 로고 및 그 밖의 유사한 구별 표시를 제품 또는 제품의 포장에 부착하거나 인쇄하는 것, 또는
- 사. 완전한 물품을 구성하기 위하여 물품의 부품을 단순히 조립하거나 상품을 부품으로 분해하는 것

Ⅲ. 원산지증명

1. 원산지 증명방식 : 자율발급

□ [발급 주체] 수출자, 생산자

- 수출자가 상품의 생산자가 아닌 경우 수출자의 원산지 신고서 발급 조건
 - 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었다는 수출자의 인지
 - 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었다는 생산자의 서면 진술에 대한 수출자의 합리적인 신뢰
 - 생산자가 수출자에게 자발적으로 제공한, 그 상품에 관하여 작성하고 서명한 원산지 신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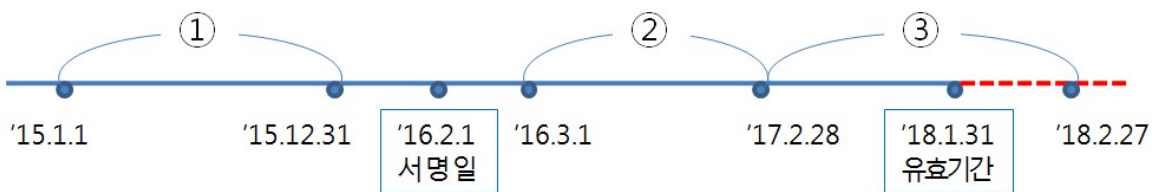
※ 협정문 제3.19조(원산지의 증명) 5항 가호, 나호, 다호

□ [발급시기] 제한 없음

□ [원산지 신고 방식] 단일 방식 또는 포괄 원산지 신고서

- 하나 이상의 상품의 단일 수입
- 포괄 원산지 신고서
 - 최초 신고일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 명시된 기간 이내에 이루어진 다른 쪽 당사국 영역으로의 동일상품의 복수 수입(※ 포괄증명기간 내에 수입되는 것을 기준)
 - 포괄기간은 C/O의 서명일보다 앞설 수 있으나 C/O의 유효기간(서명일로부터 2년)을 초과하여 동 기간을 명시할 수 없음

< 포괄증명기간 예시 >



⇒ ①, ② 포괄증명 가능, ③ 포괄증명 불가능

2. 원산지 신고서 유효기간

☐ 원산지신고서는 서명일로부터 2년간 유효함

3. 원산지 신고서 작성방법 및 서식

☐ [원산지 신고] 송품장 방식 및 권고서식

○ 원산지 신고서는 8가지 요소 반드시 포함(협정 제3.19조)

① 증명인의 성명·연락처	② 수입자(아는 경우)	③ 수출자(생산자와 다른 경우)	④ 생산자(아는 경우)
⑤ 6단위 HS	⑥ 원산지규정	⑦ 원산지신고일자	⑧ 포괄기간(포괄증명인 경우)

○ 권고서식 : 협정 부속서 “3-다(예시 1, 2)” 사용 권장

- [예시 1] 수출자, 생산자가 수출송장 또는 상품과 관련된 그 밖의 서류(송품장 등)에 영어로 작성

상업서류에 기재할 문안	I.....¹⁾ being the²⁾ hereby declare that the goods enumerated on this invoice are originating from³⁾ in that they comply with the provisions of Chapter 3 (Rules of Origin and Origin Procedures) of the Korea-New Zealand Free Trade Agreement. Observations: ⁴⁾ Signature _____ Date: _____⁵⁾
---------------------	---

작성방법	위 원산지신고 문안을 송품장 또는 물품과 관련된 그 밖의 서류(이하 “송품장 등”)에 영문으로 다음과 같이 작성 1) 작성자(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성명 및 직책을 기재. 필요한 경우, 신원확인 정보를 얻기 위한 상세 연락처를 포함할 수 있음 2) 수출자(exporter), 생산자(producer) 또는 생산 및 수출자(producer and exporter) 중 택일하여 기재 3) 해당 물품의 원산지국가(the Republic of Korea 또는 New Zealand)를 기재 4) 비고(Observations)란은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재. 다만, 송품장 등에 이미 그러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음 가. 물품의 수입자(아는 경우에 한한다) 나. 물품의 수출자(생산자와 다른경우에 한한다) 다. 물품의 생산자(아는 경우에 한한다) 라.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 Code)에 따른 6단위 세번 및 상품명 마. 해당 물품이 충족하는 원산지 기준 바. 원산지신고 일자 사. 협정 제3.19조제7항나호의 규정에 따른 포괄신고의 경우에는 원산지신고가 증명하는 포괄기간 5) 서명한 일자를 기재
-------------	---

○ [예시 2] 수출자 또는 생산자(이하 ‘작성자’)가 원산지 신고서를 송품장 등에 기재방식이 아닌 신고서 방식으로 작성하고자 할 경우 : 부록 참조

4. HS 코드 기재

☐ 한-뉴질랜드 FTA 협정문은 ‘HS 2007’ 기준으로 협상 타결

- ☐ [관련법령] FTA 관세특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시 행 령 : 협정관세율(양허표) 규정 (HSK 2015기준)
 - 시행규칙 : 원산지결정기준 규정 (HS 2007기준)

☐ [HS코드 기재] 원산지신고서, 협정관세적용신청서, 수입신고서 上 기재방법

서 류 명	품목번호 작성기준
원산지 신고서,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HS 2007
수출입신고서	HSK 2015

IV. 협정관세 적용

1. 협정 적용시점

☐ 수출입물품에 대한 협정발효 적용 시점

- 협정발효일 이후 수출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
- 협정이 발효한 날 또는 그 이후 당사국의 영역 내로 수입되는 모든 원산지 상품에 대하여 협정 발효 전에 작성되고 서명된 원산지 신고서도 인정 가능

2. 특혜관세대우 신청

☐ 수입자 요건

- 수입자가 수입 시점에 특혜관세대우 신청 가능
- 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었다는 서면 신고를 할 것
- 신고 당시 원산지 증명을 소지할 것
- 수입 당사국 관세행정기관의 요청에 대하여, 원산지 신고서 사본 및 국내법과 규정에 따라 상품 수입에 관련된 그러한 그 밖의 서류를 제공할 것
 - * 수입자는 원산지 신고서가 정확하지 아니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수입 신고서를 정정하고 모든 관세를 납부

☐ 수입 이후 특혜관세 신청

- 원산지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특혜관세 사후신청 가능
 - 협정관세적용 신청서에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었다는 원산지 신고서 및 세관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시

※ 협정문 제3.18조(특혜관세대우의 신청)

3. 원산지 신고서 제출 면제

☐ 과세가격이 미화 1,000 달러 또는 수입 당사국 통화로 이에 상당하는 금액

* 구매영수증, 제품의 원산지 표기 등을 통해 원산지를 간이하게 확인 후 협정 적용

- (예외) 원산지 신고서 요건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거나 주선되었다고 합리적으로 간주될 수 있는 일련의 수입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

※ 협정문 제3.20조(원산지 신고서 면제)

4. 수량별 차등협정관세 적용품목(TRQ 품목) 관련 사항

☐ [선착순방식 TRQ 품목]

-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순서에 따라 정해진 수량까지는 무관세, 초과물량은 기준세율 유지

품 명	1년차 적용물량(M/T)	관세율(%)	
		할당물량	초과물량
홍합 [1605.90-9040(HS 2007), 1605.53-9000(HS 2012)]	800(선착순) 800(추천방식)	0	20

- 1년차 쿼터내 물량 1,600톤의 50%는 선착순 방식, 나머지 50%는 추천방식으로 운영
- 16년차 이후 16년차 물량 동일하게 유지

이행년차	1	2	3	4	5	6	7	8
물량	1,600	1,701	1,808	1,922	2,043	2,172	2,308	2,454

이행년차	9	10	11	12	13	14	15	16
물량	2,608	2,773	2,947	3,133	3,331	3,540	3,763	3,999

- 실제반입되는 수량이 수입신고수량과 같은 수량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선택적으로 서류제출대상으로 운영
※ 송품장, 선하증권 등을 확인하여 동일 수량인지 확인

- 선착순 방식 TRQ 운영방법(FTA 관세특례법, FTA 특례고시 제4장)

1. (대상) 보세구역에 장치한 이후 수입신고되는 물품을 대상으로 운영 2. (통관절차) - 한도수량에 도달하는 날의 전날까지는 선착순으로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적용 - 한도수량에 도달한 날에 수입신고된 물품은 잔여수량을 그날에 수입신고된 수량(수입신고수리된 수량에 한한다)에 비례하여 각각 배분 - 배분한 이후에도 잔여수량이 있는 경우 한도수량도달일의 다음날 순서대로 배분 3. (배분에 따른 세액보정) - 통관지세관장 : 배분되어 조정된 수량을 수입자에게 통지 - 수입자 : 관세법 제38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세액을 보정 ※ 가산이자는 없음(동조 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 4. (잔여수량의 게시) 배분절차가 완료되는 날까지 품목별 총수량·사용수량과 잔여수량을 관세청 FTA포탈(FTA.CUSTOMS.GO.KR)을 통해 게시 5. 다만 할당물량이 소진되었음을 알리기 전에 계약이 체결되었고 운송 중인 제품에 대해서는 할당물량내 관세율을 적용 * 동 사항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관련기관 협의 내용에 따라 변경 가능

□ [수입권 추천*방식 TRQ 품목]

* [붙임 1] 수량별 차등협정관세 적용품목(Tariff-Rate Quotas) 참조

- 주무부 장관의 위임을 받은 기관(추천대행기관)의 추천을 받은 후 해당 추천서를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
- 농축산물 : 수입권 공매방식과 수입권 배분방식 병행*
*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낙농육우협회 등 총 2개 대행기관
- 수산물(홍합) : 수입권 공매방식(※ 한국수산물무역협회)

5.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대상품목(ASG)* 관련 사항

* ASG : Agricultural Safeguard

- 농림축산물 긴급수입제한조치 대상품목은 기준발동물량을 초과하여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뉴질랜드를 원산지로서 하는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가 적용되는 물품

뉴질랜드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협정문 부속서 2-나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1. 쇠고기(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품목번호 0201.10.0000, 0201.20.1000, 0201.20.9000, 0201.30.0000, 0202.10.0000, 0202.20.1000, 0202.20.9000 및 0202.30.0000)

이행년도	1	2	3	4	5	6
기준발동물량 (메트릭톤)	37,000	37,740	38,495	39,265	40,050	40,851
특별긴급관세율(%)	40.0	40.0	40.0	40.0	40.0	30.0
이행년도	7	8	9	10	11	12
기준발동물량 (메트릭톤)	41,668	42,501	43,351	44,218	45,103	46,005
특별긴급관세율(%)	30.0	30.0	30.0	30.0	24.0	24.0
이행년도	13	14	15	16		
기준발동물량 (메트릭톤)	46,925	47,863	48,821	해당없음		
특별긴급관세율(%)	24.0	24.0	24.0	0.0		

- 농업긴급수입제한조치가 적용되기 전에 체결된 계약에 근거하여 운송중인 상품은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적용으로부터 면제됨. 다만, 이 물량은 차기연도 동안 해당상품의 수입물량으로 계산될 수 있음

6. 계절관세 적용품목

- 한-뉴질랜드 FTA 계절관세 해당 물품 : 감자, 호박류
- 적용기준 : 수입신고일자
- 다만, 세율이 인상될 예정인 물품은 우리나라에 도착된 후에 수입신고하여야 하는 바, 계절관세 적용기간(높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기간)에 입항하는 물품은 도착된 후에 수입신고하여야 함

《한-뉴질랜드 FTA 계절관세 품목》

HS No	품 명	적용 기간 (이행 1년차)		비고
		관세율(%)	적 용 조 건	
0701.90-0000	감자(칩용)	0	12월~4월 수입되는 물품	무관세
		283.7	5월~11월 수입되는 물품	15단계 균등철폐
0709.93-3000	호박류 (쿠쿠르비타종)	21.6	12월~5월 수입되는 물품	5단계 균등철폐
		27	6월~11월 수입되는 물품	기준세율유지
0709.99-9000	호박류(쿠쿠르비타종 제외)	21.6	12월~5월 수입되는 물품	5단계 균등철폐
		27	6월~11월 수입되는 물품	기준세율유지

V. 기록보관

1. 수출자의 기록보관

- ☐ 서류보관기간 : 원산지 신고서 서명일 후 5년 또는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5년 중 더 긴 기간
☐ 수출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FTA특례법 시행령 제13조)

- 계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제공한 원산지증명서 사본
- 원산지증빙 자료 (원산지확인서, 원산지소명서 등)
-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서류 사본
- 수출신고필증
-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
- 수출거래 관련 계약서
- 해당 물품 및 원재료의 생산 또는 구입 관련 증빙 서류
- 원가계산서, 원재료 내역서 및 공정명세서
- 해당 물품 및 원재료의 출납·재고관리대장
- 생산자가 원산지 증명을 위하여 작성한 후 수출자에게 제공한 서류

2. 생산자의 기록보관

☐ 서류보관기간 : 원산지 신고서 서명일 후 5년 또는 원산지증빙서류 작성일로부터 5년 중 더 긴 기간

☐ 생산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FTA특례법 시행령 제13조)

- 수출자 또는 계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해당 물품의 원산지 증명을 위해 작성·제공한 서류
- 원산지증빙 자료 (원산지확인서, 원산지소명서 등)
- 수출자와 체결한 물품공급 계약서
-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
- 해당 물품 및 원재료의 생산 또는 구입 관련 증빙 서류
- 원가계산서, 원재료 내역서 및 공정명세서
- 해당 물품 및 원재료의 출납·재고관리대장
- 재료생산자가 해당 재료의 원산지 증명을 위하여 작성한 후 생산자에게 제공한 서류

3. 수입자의 기록보관

☐ 그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입된 상품에 대하여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하는 수입자는, 상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당사국이 요구할 수 있는 원산지 신고서 사본을 포함한 그러한 서류를 상품 수입일 후 5년 동안 보관

Ⅶ. 수출관련 의무

☐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서명한 당사국 영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잘못되거나 허위인 원산지 신고서 또는 그 밖의 어떠한 잘못되거나 허위인 증거를 제공했다고 믿을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원산지 신고서의 정확성 또는 유효성에 영향을 미칠 모든 변경사항을 수입자와 수입 및 수출 당사국 관세행정기관에 가능한 빨리 통지

※ 한-뉴질랜드 FTA 제3.23조 수출에 관한 의무

Ⅶ. 직접운송

☐ 원산지 상품은 비당사국 영역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수입 당사국으로 직접 운송되어야 함

☐ 비당사국(제3국)을 경유하여 운송되는 상품 중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지위를 인정하지 않음

- ① 그 상품이 하역, 일시적 보관, 운송상의 이유로 인한 화물 분리, 재선적 또는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거나 수입 당사국 영역으로 운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공정 외에, 양 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어떠한 그 이후의 생산이나 그 밖의 공정을 거치는 경우, 또는

- ② 그 상품이 비당사국의 영역에서 세관당국의 통제에서 벗어난 경우

※ 협정문 제3.16조 직접 운송

※ 협정문 제3.26조 직접 운송 - 준수

Ⅷ. 원산지 검증 및 협정관세 적용 배제

1. 원산지 검증 방법 : 서면조사, 현지조사

☐ 수입자에게 서면으로 추가적인 정보 요청

- 추가 정보에 대한 서면 요청에 대하여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기간 내에 응답

☐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서면으로 추가적인 정보 요청

- 추가 정보에 대한 서면 요청에 대하여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기간 내에 응답

- ☐ 시설 및 상품의 생산과정을 시찰하고 원산지 관련 기록을 검토를 위해, 다른 쪽 당사국 영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사업장에 대한 방문(수출 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이 동행)
 - 방문할 사업장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 그리고 다른 쪽 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에 방문 수행 의사에 대한 서면통보
 - 방문할 사업장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서면동의 필요

2. 원산지검증 결과에 따른 사후조치

☐ (특혜관세 적용배제) 다음의 경우 특혜관세 대우를 배제

- 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수입국의 추가 정보에 대한 서면 요청에 대하여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기간 내에 응답하지 않는 경우 특혜관세 적용 배제 가능
- 검증 방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 동의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특혜관세 적용 배제 가능
- 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원산지상품이라는 허위 또는 근거 없는 신고나 증명을 제출하였음을 당사국이 적발한 경우
- 특혜관세대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특혜관세 적용중지) 관세행정기관이 동일한 상품이 특혜관세대우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고 결정했을 경우, 상품이 협정에서 규정하는 것을 준수한다는 것이 증명되기 전까지, 그 상품의 이후 수입에 대하여 수입자에게 특혜관세 대우를 중지 가능

☐ (결과 통보) 검증 방문을 수행하는 당사국은 검증의 대상이 되는 상품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 및 수입자에게 해당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서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대한 서면 결정을 제공

☐ (결과 통보에 대한 정보 제공)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제7항에 따라 서면 결정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상품의 특혜관세대우의 자격에 대한 의견 또는 추가적인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

☐ (검증 기간) 수입 당사국은 검증 과정의 시작으로부터 1년 이내에 수출 당사국에게 서면으로 상품의 원산지 결정에 대한 결과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정이 내려진 법적 근거 및 조사결과 통보

3. 특혜관세대우의 거부

- 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협정상 규정된 요건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IX. 기타 집행사항

1. 관세면제대상 일시 수출입물품

☐ 원산지와 관계없이 다음 물품에 대해서는 무관세 일시반입을 허용(협정 제2.5조)

가. 수입 당사국의 법에 따라 일시입국의 자격을 갖춘 인의 영업활동, 거래 또는 직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서, 언론매체 또는 텔레비전을 위한 장비, 소프트웨어, 그리고 방송 및 영화촬영 장비를 포함하는 전문 장비

나.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상품

다. 상업용 견본품, 광고용 필름 및 기록물

라. 스포츠용으로 반입되는 상품

- 해당물품의 일시반입 요건

1. 뉴질랜드의 국민 또는 뉴질랜드 거주자에 의하여서만 또는 그 개인적인 감독 하에서만 영업 활동·거래·직업 또는 스포츠를 수행하는 데 사용될 것
2. 우리나라에서 판매, 임대, 처분, 양도되지 아니할 것
3. 국제 관세 협약에 따른 담보를 수반할 것
4. 재수출될 때까지 다른 물품과의 식별이 가능할 것
5. 일시 반입의 목적에 관련된 그 밖의 기간 내에 또는 1년 이내에 수출될 것. 다만, 연장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합리적인 수량을 초과하지 아니하게 반입될 것
7. 자국 국내법에 따라 그 당사국 영역 내로 달리 반입 가능할 것

○ 감면관세액의 100%이내에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음

※ 협정문 제25조 상품의 일시 반입

□ 무시할만한 가치의 상업용 견본품 등 무관세 반입(담배 제외)

○ 상용견본, 인쇄광고물, FTA 관세특례법 시행령 제28조의4(특송물품 미화 100달러 이하)에 따라 수입신고 생략 물품

※ 협정문 제27조 무시할만한가치의 상업용견본품과인쇄된 광고물의무관세반입

※ 협정문 제48조 특송화물

2. 수리 또는 개조물품

□ 원산지와 관계없이 관세 면제

○ 수리 또는 개조*을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뉴질랜드로 일시적으로 수출된 후 재반입되는 상품은 원산지와 관계없이 관세 면제

* 수리·가공을 초과하는 범위 - [참조]협정 제 2.6조(수리 또는 개조후 재반입되는 상품)

- ✓ 본질적 특성을 파괴하거나 새로운 또는 상업적으로 다른 상품을 만드는 것
- ✓ 미완성 상품을 완성 상품으로 변형하는 것

○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해 당사국 영역으로 일시적 반입 상품

※ 협정문 제26조 수리 또는 개조 후 재반입되는 상품

3. 수입물품의 원산지결정 등에 관한 사전심사

□ 수입신고 前 사전심사 요청

○ 신청인 : 수입자,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 내에 있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

○ 신청대상 : 품목분류,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 양 당사국이 합의 할 수 있는 그 밖의 사안

○ 사전심사서의 발급 : 품목분류(40일), 원산지(90일)

○ 효력발생 : 결정서가 발급된 날 또는 사전심사서에 명시된 다른 날

○ 유효기간 : 3년

□ 사전심사결과 수정, 철회

- 가. 심사가 잘못된 사실이나 법에 기초하였던 경우
- 나. 제공된 정보가 허위이거나 부정확한 경우
- 다. 협정에 합치하는 국내법상 변경사항이 생기는 경우
- 라. 심사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사실 또는 상황에 변화가 생기는 경우

* 심사가 부정확한 정보 또는 허위의 정보에 기초한 경우 사전심사 결과 소급 수정, 철회

☐ 처리절차(특례법 14조) : 기재 생략

9. 한-베트남 FTA

1. 대한민국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1. 상품양허

1. 양허 현황

☐ 한-아세안 FTA 품목에 한-베트남 FTA 추가 자유화

※ 수입액 기준 : (우리) 94.7%, (베트남측) 92.4%, 품목수 기준 : (우리) 95.4%, (베트남측) 89.9%

[공산품]

- 우리는 한-베트남 FTA를 통해 한-아세안 FTA에서 관세철폐되지 않고 관세를 유지하고 있는 235개에 대해 추가 시장 개방
- ※ 한-아세안 FTA에서 공산품 대다수를 일반품목으로 양허(2010년 관세철폐완료)
- ※ 전통 민감품목인 초산에틸(HS 2915.31.0000)만 미양허
- 베트남은 한-아세안 FTA에서 상대적으로 개방도가 낮았던 주요 공산품에 대해 한-베트남 FTA를 통해 추가 시장 개방
- ※ 섬유·직물외에도 가전·화장품·자동차부품 등의 관세철폐

[농산물]

- 베트남은 대다수 품목은 2016년, 여타품목은 2018년에 관세철폐
- 우리는 민감도가 낮거나 한-아세안 FTA 민감품목 위주로 추가 개방

2. 협정적용 영역(제1.5조)

☐ 대한민국 : (원산지 부호 KR)

- 한국 주권 하의 육지, 해양 및 상공, 그리고 한국이 국제법과 그 국내 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해의 외측한계에 인접하고 그 한계 밖에 있는 해저 및 하부토양을 포함한 해양 지역

☐ 베트남 : (원산지 부호 VN)

- 베트남이 주권,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하는 본토와 섬을 포함한 영토, 내수, 영해 및 영역 위의 상공, 대륙붕,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의 천연자원을 포함한 영해 밖에 있는 해양 지역

3. 관세 인하 또는 철폐

☐ 협정적용 대상

- 관세의 인하 또는 철폐는 협정 부속서 2-가의 자국 양허표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에 대하여 적용

※ 협정문 제2.3조(관세 인하 또는 철폐) 제1항

□ 협정 적용시점 : 협정발효일 오전 0시 신고분부터 적용

4. 상품양허 유형

양허유형	내 용
Y-1	협정 발효일 즉시 관세철폐
Y-3	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3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철폐 (이행 3년차 1월 1일 무관세)
Y-5	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철폐 (이행 5년차 1월 1일 무관세)
Y-7	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7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철폐 (이행 7년차 1월 1일 무관세)
Y-8	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8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철폐 (이행 8년차 1월 1일 무관세)
Y-10	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10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철폐 (이행 10년차 1월 1일 무관세)
Y-15	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1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철폐 (이행 15년차 1월 1일 무관세)
S-1	‘16.1.1전 기준관세율 유지, ‘16.1.1일부터 0 ~ 5%로 인하
S-2	‘21.1.1전 기준관세율 유지 ‘21.1.1부터 0 ~ 5%로 인하
S-3	‘17.1.1전 기준관세율 유지 ‘17.1.1부터 ‘ 21.1.1.기준관세율의 20% 인하된 세율 ‘ 21.1.1.부터 0 ~ 5%로 인하
A	‘21.1.1전 기준관세율 유지 ‘21.1.1.부터 50%이하로 인하
B-1	‘16.1.1전 기준관세율 유지, ‘16.1.1일부터 한-아세안 FTA 실행관세율의 20%이상 인하
B-2	‘21.1.1전 기준관세율 유지 ‘21.1.1부터 한-아세안 FTA 실행관세율의 20%이상 인하
C	‘16.1.1전 기준관세율 유지, ‘16.1.1일부터 한-아세안 FTA 실행관세율의 50%이상 인하
E	기준관세율 유지
R	협정상 관세에 관한 어떤 의무도 적용되지 않음

* 협정상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가 한국-동남아시아국가연합 자유무역협정상 동일 상품에 대한 관세와 다른 경우, 더 낮은 관세가 협정상 원산지 상품에 적용

※ 부속서 2가(관세 인하 또는 철폐) 일반 주해

II. 원산지 증명

1. 일반 정의

- 생산자란 당사국의 영역에서 상품의 생산활동을 수행하는 자
- 수출자란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며 상품을 수출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
- 수입자란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며 상품을 수입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
- 생산이란 상품의 재배, 채굴, 수확, 사육, 번식, 추출, 채집, 수집, 포획, 어로, 덧사냥, 수렵, 제조, 가공 또는 조립을 포함한 상품의 획득 방법
- 재료란 생산과정에 사용되는 원료, 원재료, 부품, 구성품 및 하위 조립품을 포함
- 비원산지 상품이란 이 장에 따라 원산지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상품 또는 재료
- 운송을 위한 포장재료와 용기란 운송 동안 상품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상품을 말하며, 소매를 위하여 사용되는 재료 또는 용기와는 다름

- 동일하고 대체 가능한 상품 또는 재료란 동종이고 상업적으로 동질이며, 동일한 기술적 및 물리적 특성을 보유하고, 일단 최종 상품에 결합되는 경우 원산지 목적상 어떤 표시 등에 의하더라도 서로 구별될 수 없는 상품 또는 재료

2. 증명방식 : 기관발급

☐ [발급 기관] 수출 당사국의 권한 있는 기관

- 한국 : 세관, 상공회의소·대한상공회의소
-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경우 세관에서 발급
- 베트남 : 산업무역부

☐ [발급 형식] 수기 또는 전자적으로 서명·인장 인쇄

- 원산지 증명서 원본은 1부, 사본 2부로 구성
- 원본은 수입자, 제 2사본은 수출국 보관, 제 3사본은 생산자 또는 수출자 보관

3.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 [신청권자] 수출자, 생산자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

☐ [제출서류]

《특례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및 제2항》

- 수출신고 수리필증 사본(증명서 발급기관이 수출사실 등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생략 가능)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 가. 자유무역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의 경우 국외반출신고서 사본
 - 나.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경우에는 보세운송 신고서 사본
 - 다. 우편물·탁송품 및 별송품의 경우에는 영수증·선하증권 사본 또는 그 밖에 계약상대국으로 수출 하였거나 수출할 것임을 나타내는 서류
-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 원산지확인서(최종물품에 대한 원산지확인서로서 해당 물품의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 원산지소명서. 다만,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생산자는 원산지소명서를 증명서발급기관에 직접 제출할 수 있음
-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정보 및 국내제조확인서(증명서발급기관이 요청시에 한하며,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생산자는 해당 서류를 증명서발급기관에 직접 제출할 수 있음)

※ 협정 제3.14조(원산지 증명서)

※ 특례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및 제2항

4. 원산지증명서 발급시기

☐ 선적전, 선적일 또는 선적일부터 3근무일 이내

- 3근무일은 선적일을 포함

☐ 선적전, 선적일 또는 선적일부터 3근무일 이내에 발급되지 않은 경우

-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에 “ISSUED RETROACTIVELY” 기재하여 소급발급 가능

☐ 진정 등본

- 분실, 도난 또는 멸실의 경우 수출당사국에 보관중인 수출서류를 근거로 진정등본("CERTIFIED TRUE COPY", 12번란) 문구가 기재된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가능

- 원본의 발급일자 기재, 진정등본은 원산지증명서 원본의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 발급

※ 협정 제3.15조(원산지 증명서)

5.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 ☐ 원산지증명서는 발급일 다음날부터 1년간 유효

6. 제3국 송장

- ☐ 제3국 송장 발행을 인정하며 원산지증명서 제13란(비고)에 “비당사국 송장” 기록하고 송장을 발급하는 회사의 이름과 국가 정보를 명시

7. 원산지증명서 서식 및 작성요령

- ☐ 원산지증명서 서식 : 부록 참조
- ☐ 작성요령
 - 항목별 작성요령 : 부록 참조
 - 다수 품목의 경우 추가 면 사용 가능 : 부록 참조

III. 협정관세 적용

1. 협정발효 적용시점(경과규정)

- ☐ 수입물품에 대한 협정발효 적용시점
 - 협정발효일 이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
- ☐ 경과규정
 - (대상) 협정 발효일에 통과중이거나 세관 보세창고에 임시 보관중이거나 자유지역내에 있는 상품
 - (요건) 협정의 발효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직접운송 입증서류와 소급하여 작성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

※ 협정 제3.24조(통과 또는 보관중인 상품에 대한 경과 규정)

2. 특혜관세대우 신청

- ☐ 수입자 요건
 - 수입서류에서 상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신고할 것
 - 원산지 증명서를 소지할 것
 -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의 요청시, 원산지 증명서, 송장, 수출 당사국의 영역에서 발행된 통과선하증권과 수입 당사국의 국내 법과 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그 밖의 서류와 같은 증빙서류를 제출할 것
- ☐ 수입 이후 특혜관세 신청
 - 원산지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① 원산지증명서 ② 수입 당사국이 요구할 수 있는 그 밖의 모든 서류를 제시하는 경우 특혜관세 사후신청 가능

※ 협정 제3.16조(특혜관세대우의 신청)

《관세율 구분 부호》

부 호	내 용
FVN1	- 하나의 품목번호에 1개의 협정세율이 적용되는 물품 - 하나의 품목번호에 여러 개의 다른 협정세율이 있는 것 중 최고세율 물품
FVN2	- 하나의 품목번호에 여러 개의 다른 협정세율이 있는 것 중 최고세율인 FVN1을 제외하고 높은 세율 순으로 FVN2, FVN3을 순차적으로 부여
FVN4	- 추천이 필요한 물품 중 추천을 받은 물품

3.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 수입물품 과세가격이 본선인도가격조건(FOB) 기준 미화 600달러 이하의 소액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증명서 제출의무 면제*

* 구매영수증, 제품의 원산지 표기 등을 통해 원산지를 간이하게 확인 후 협정 적용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면제되지 않음

- ① 당사국 법의 준수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
- ② 수입물품이 일련의 수입의 일부분을 구성한다고 입증되는 경우

4. 수량별 차등협정관세 적용(TRQ)

☐ [선착순방식 TRQ 품목] 해당 품목없음

☐ [수입권 추천방식 TRQ 품목] 주무부 장관의 위임을 받은 기관의 추천을 받은 후 해당 추천서를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품목으로서 선착순 방식이 아닌 것

※ 협정에서 규정한 원산지증명서를 가지고 협정에서 정하는 물량을 추천기관에서 추천받아야 함

- 대상품목 : 새우
- HS코드 : 0306161090, 0306169090, 0306171090, 0306179090, 0306261000, 0306271000 및 1605219000.
- 쿼터 물량 : 1년 10,000톤, 2년 11,000톤, 3년 12,100톤, 4년 13,310톤, 5년 14,641톤, 6년 15,000톤
* 이행 6년차 이후, 쿼터 물량은 15,000톤
- 물량 초과시 기준관세율 적용

IV. 직접운송

☐ 당사국의 원산지상품은 당사국 간 직접 운송되어야 함

☐ 직접운송으로 간주

○ 상품이 비당사국을 경유하여 운송되더라도 다음을 조건으로 직접운송으로 간주

- ① 지리적 또는 전적으로 운송상의 이유일 것
- ② 비당사국에서 거래 또는 소비되지 않을 것
- ③ 상품이 하역 및 재선적 또는 그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공정 외의 어떠한 공정도 거치지 아니할 것

☐ 제3국 경유시 제출서류

- 수출 당사국의 영역에서 발급된 통과선하증권
- 원산지 증명서
- 상품에 대한 상업송장 원본의 사본, 그리고
- 제3.8조(직접운송)의 요건을 준수하였다는 증거로서 그 밖의 관련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그 서류

V. 기록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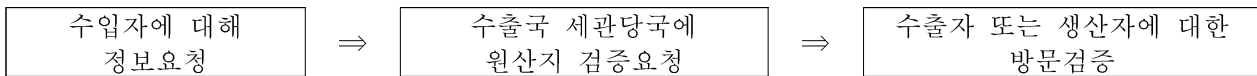
□ 원산지증빙서류 보관기간

- 수입자 : 자국법에 따름(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5년)
- 수출자, 생산자 : 원산지증명서 발급일로부터 5년

* 보관대상 서류 및 기간 : 특례법 제12조 및 특례법시행령 제13조 참고
 * 협정 제3.18조 기록유지요건

V. 원산지검증 및 협정관세 적용 배제

□ 원산지조사의 방법 : 先간접조사, 後현지조사



- 검증사유 : 무작위 또는 합리적 의심(서류 진정성, 원산지 정보의 정확성)
- 수출 세관당국은 검증요청을 접수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내 회신
- 6개월내 미회신 : 특혜 배제 가능
- 수출 당사국 검증 기간과 수입국의 원산지 충족여부 결정기간을 포함하여 10월이내 완료
- 수입국 세관당국은 방문검증 서면통보(생산자·수출자, 수입자, 당사국의 발급기관, 당사국 세관)
- 30일 이내 생산자 또는 수출자 서면동의 없는 경우 특혜 배제 가능
- 검증 당사국은 서면 결정서 제공
- 실제 방문에서 최종판정까지의 방문검증 절차는 6개월 내에 수행

VI. 기타 집행사항

1. 관세면제대상 일시 수출입물품 등

□ 원산지와 관계없이 다음 물품에 대해서는 무관세 일시반입 허용

《특례법 시행규칙 제11조①》

1. 언론장비, 텔레비전 방송용 장비, 소프트웨어, 방송·영화 촬영 장비 등 일시 입국하는 사람의 영업활동, 거래 또는 직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2.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물품(구성부품, 보조기구와 부속품을 포함한다)
3. 운용경기용 물품(시범용 및 훈련용 물품을 포함한다)
4. 상용견품
5. 광고용 필름 및 기록물(물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거나 임대하기 위하여 그 성질·작동 등을 보여 주는 시연용 영상 또는 음향 기록매체로서 일반대중을 위한 방송용은 제외한다.)

《특례법 시행규칙 제11조⑥》

1. 상용견품(견품 이외의 용도로 판매되거나 사용되기에 부적합하도록 천공, 절단 등 견품화 처리가 된 물품 또는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금액 이하인 물품으로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2. 인쇄광고물(소책자, 전단지, 상품목록 및 단체 발간 연감 등 품목번호 제49류에 분류되는 것으로서 물품 또는 용역의 판매를 촉진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무료로 제공되는 물품에 한정)

☐ 무관세 일시반입 조건(※ 협정 제2.5조(상품의 일시 반입) ③항)

가. 상품이 다른 쪽 당사국의 국민 또는 거주자에 의해서만 또는 그 개인적인 감독 하에서만 그 인의 영업 활동, 거래, 직업 또는 스포츠를 수행하는데 사용될 것
나. 그 상품이 자국 영역에 있을 동안 판매되거나 임대되지 아니할 것
다. 그 상품이 다른 경우라면 반입 또는 최종 수입 시에 부담하게 될 부과금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액 수로서 그 상품의 수출 시에 반환될 수 있는 채권이나 담보의 공탁을 수반할 것
라. 그 상품이 수출될 때 식별이 가능할 것
마. 그 상품이 “가”에 언급된 인의 출국 시 또는 그 당사국이 설정할 수 있는 일시 반입의 목적에 관련된 그 밖의 기간 내에 수출될 것
바. 그 상품이 의도된 사용을 위한 합리적인 수량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사. 그 상품이 자국 국내법에 따라 당사국 영역 내로 달리 반입가능할 것

2. 수리 또는 개조물품

☐ 원산지와 관계없이 관세 면제

- 수리 또는 개조*을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베트남으로 일시적으로 수출된 후 재반입되는 상품은 원산지와 관계없이 관세 면제

* 수리·가공을 초과하는 범위 -[참조]협정 제 2.6조(수리 또는 개조후 재반입되는 상품)

√ 본질적 특성을 파괴하거나 새로운 또는 상업적으로 다른 상품을 만드는 것
√ 미완성 상품을 완성 상품으로 변형하는 것

-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해 당사국 영역으로 일시적 반입 상품

3. 수입물품의 원산지결정 등에 관한 사전심사

☐ 신청대상

- 품목분류
- 관세평가기준의 적용
-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사안

☐ 신청권자

- 수입자,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 내에 있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

☐ 처리절차 : 기재 생략

2. 베트남측 FTA 특혜적용(원산지증명서 제출) 절차 변경에 따른 재 안내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3239, 2016-10-20

1.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2498('16.10.14.)호와 관련입니다.

2. 베트남의 FTA 적용 지침*에 따라 한-베트남 FTA 원산지증명서(Form VK)를 제외한 원산지증명서는 수입신고시에 원본을 제출해야 함을 위 호의 문서로 안내한 바 있습니다.(* 베트남 재정부 지침 12802/BTC-TCHQ, '16.9.14)

3. 그러나, 2016. 10. 4 베트남 재정부는 모든 FTA 원산지증명서에 대해 수입신고일 이후 30일 이내에 제출이 가능하도록 수정지침*을 발표한 바, 아래와 같이 주요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각 본부세관에서는 세관 담당자, CRM고객 및 수출기업 등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베트남 재정부 지침 13959/BTC-TCHQ, '16.10.4)

- 아 래 -

☐ 베트남 지침 수정 전·후 비교

개정 전	개정 후
☐ C/O 제출기한 ○ (원칙) 수입신고 시 C/O 원본제출	☐ CO 제출기한 ○ (원칙) 수입신고 시 C/O 원본제출 ○ (완화) 수입신고서에 C/O사후제출 기재 → 수입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
☐ 한-베트남 C/O 제출기한 ○ 수입신고 시 또는 수입신고 후 1년 이내에 원본제출 가능 * 수입신고서에 C/O 사후제출을 기재할 것	☐ 한-베트남 C/O 제출기한 ○ (현행과 동일)

☐ 베트남 수정 지침 내용(13959/BTC-TCHQ)

◇ 수입자가 FTA특혜를 받기 위해서는 수입신고시 C/O 원본 제출 의무
 ○ 수입신고시점은 세관에 수입신고한 때부터 물품 반출 전까지를 의미

◇ 수입신고시 C/O가 없는 경우, 수입자는 수입신고서에 C/O사후제출을 기재하고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 C/O제출 가능
 ○ 수입자는 MFN세율로 신고하고 관세를 납부→ 이후 C/O제출시 환급처리

◇ 양 지침 모두 9월14일 이후 수입신고분부터 적용

붙임: 1. 베트남 FTA적용 지침 수정 지침_13959/BTC-TCHQ(베트남어)
 2. 베트남 FTA적용 지침 수정 지침_13959/BTC-TCHQ(국문)
 3. 베트남 FTA적용 지침 수정 지침_13959/BTC-TCHQ(영어). 끝.

10. 한-인도 CEPA

1. 한-인도 CEPA 설명

☐ 원산지 결정기준

가. 완전생산기준 : 인도 또는 한국의 영역에서 완전히 생산된 물품

- 광산물, 농산물, 산동물(출생+사육), 수산물(양식 포함)
-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웨이스트 및 스크랩 등
- 원재료 회수용 또는 재활용 목적의 폐기물

* 주의품목

- 공해상 어획물 : 선박기준(등록+기국)
- 공해상 해저채취 자원 : 탐사권리 기준

나. 2개국 이상 관여물품 : 실질변형기준

- 역외 원재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물품은 역내에서 충분한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경우에 한하여 원산지 인정
- 주로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결합한 기준

다. 결정기준 내용

- 기초농산물(1-14류) : 주요 원재료 역내 완전생산 요건
- 섬유제품(50-60류) : CTH + RVC 40%
- 의류제품(61-63류) : 역내산 원단사용 기준
- 일반가공품 : CTSN + RVC 35%

- 기타가공품 : 소주, 석유화합물, 철강, 자동차 등 955개 품목(HS6단위) 개별 품목별 기준(PSR) 적용

라 부가가치 계산(공제법)

$$RVC = \text{수출제품가격(FOB)} - \text{비원산재료가격(VNOM)/수출제품가격(FOB)}$$

※ 직접법 : 없음

마. 누적기준 : 상대국 원산지 재료를 사용한 경우 역내산으로 인정

바. 최소기준 :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역외산 재료비가 10%이하일 경우 예외적으로 원산지 인정, 단, 섬유 및 의류제품은 중량기준 7%이하이며, 기초농산물(1-14류)는 최소기준 적용 제외

사. 대체사용 재료 : 제조과정에서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를 혼용할 경우 재고관리기법을 사용하여 원산지 결정

아. 원산지불인정 공정

- 경미한 가공공정만을 거친 경우에는 원산지기준을 충족해도 원산지 불인정

투입원료	생산공정	생산제품
소(0102)	도축	쇠고기(0201)
활어(0301)	냉동	냉동어류(0303)
밀(1001)	제분	밀가루(1101)
화강암(2516)	분쇄	자갈(2517)
페니실린(3003)	포장	소매용페니실린(3004)
물(2201)/설탕(1701)	혼합	음료수(2202)
원목(4403)	절단	제재목(4407)
안경테(9003)/안경렌즈(9001)	조립	안경(9004)

□ 원산지 증명

가. 원산지증명 방식 : 당사국에서 정하는 기관에서 발급

※ 발효 5년 후 자율증명방식 도입 협의

나. 증명서 발급절차

(발급신청) 수출자나 생산자 수출시 또는 선적후 7일 이내 신청

(원산지심사) 원산지 적정여부 심사, 제조업체 사전검증

(증명서 교부) 전자적 방식 교부 가능(4부)

다. 소급발급 :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 - “Issued Retroactively” 표기

라. 원산지증명서 재발급

- 도난, 분실 또는 멸실의 경우 그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기관에 서면으로 신청, 원본 원산지증명서 발급 일자 기재요
- 원본 원산지증명서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 가능
- “Certified True Copy” 표기

마. 원산지증명서의 효력

- 수출당사국에서 발급한 날로부터 12개월 유효하고, 그 기간내에 수입 당사국 관세당국에 특혜관세대우 신청 - 단, 천재지변 또는 유효기간 경과 전에 수입항에 도착된 경우 예외 가능

바. 단일 원산지증명서 사용

- 단일 선적품으로 한번 또는 그 이상의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는 경우
- 복수 선적품으로 한번의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는 경우

사. 제3자 발행 송장 원산지증명서

- 매매송장이 제3국에 소재하는 운영인에 의하여 또는 그 운영인의 계산으로 수출자에 의하여 발급된 경우 그 상품이 원산지기준을 충족한다면 수입당사국 관세당국은 원산지증명서를 수리할 수 있음
- 상품의 수출자는 원산지증명서에 “제3국 송장발행” 임과 송장을 발행하는 운영인의 이름, 주소 및 국가 정보 기재

□ 원산지 결정기준 기재 방법

원산지 기준	기재요령(영문)
가.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물품	
나. HS상 6단위 이상의 세번변경이 발생하고, 역내부가가치비율이 35%이상 되는 물품	CTSH + RVC 3 5 %
다.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 (1)세번변경기준 충족 물품 (2)일정 역내부가가치비율 충족 물품 (3)세번변경 혹은 부가가치비율 충족 물품 (4)세번변경과 역내부가가치비율 동시 충족 물품 (5)특정공정을 수행한 물품 (6) 기타	CC/CTH/CTSH RVC xx% CC/CTH/CTSH or RVC xx% CC/CTH/CTSH+RVC xx% SP 0thers
라.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	OP

□ KIN-CEPA 원산지증명서

- 원산지증명서 양식 및 발급주체를 반드시 숙지
- 협정에서 규정한 원산지기준은 서로 상이하므로 한-인도 CEPA에서 규정한 원산지증명서가 아닌 경우 협정세율 적용 불가
- 원산지증명서 발급 기관

한 국	세관(47개), 상공회의소(67개)
인 도	인도수출검사위원회 (Export Inspection Council)

□ 원산지증명서 관련 유의사항

- 작성 양식 ■ 언어 ■ C/O바탕색 : A4 백지, KIN-CEPA 양식에 영어로 작성
 - 중-아세안, AFTA의 C/O는 원본 연보라(light-violet), 부분은 오렌지색 바탕
- 원산지 결정 기준 확인
 - 품목별 원산지 기준과 C/O상의 원산지 결정기준이 다른 경우 마찰이 발생
 - 역내부가가치기준인 경우 원산지충족을 위해 필요한 부가치비율 표기
(예: “RVC 35%”), 세번변경기준인 경우 2단위(CC), 4단위(CTH), 6단위(CTSH) 표기, 개성공단 물품은 “OP” 로 표기
- 제3국 송장(invoice) 발행
 - C/O 해당란에 체크하고, 제3자의 이름, 주소, 국가 정보 기재
 - C/O 상의 FOB가격은 C/O 발행국의 FOB가격을 기재
- HS는 6단위 기재

<HS가 우리측 세번과 다른 경우 처리방법>

- 6단위 미만(10단위)에서 다른 경우 원산지결정기준은 6단위 이상에서 규정하므로, 6단위까지 오류가 없는 경우 C/O 효력 인정
- 6단위 이상(2,4,6단위)에서 다른 경우 원산지기준이 달라지므로 C/O상의 원산지기준과 품명에 따른 원산지기준이 동일할 경우 인정

○ OVERLEAF NOTE(원산지증명서 뒷면 기재요령)

-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기재요령이 인쇄되지 않아도 유효성 인정
- ※ 아세안의 경우 증명서 이면에 overleaf note가 인쇄되지 않으면 불인정

○ C/O의 견본 서명 및 인장 확인

- C/O의 발급기관 명칭, 주소, 이름, 견본서명 및 관인 당사국에 신속 통지, 동 목록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에 의해 발급된 C/O는 불인정

□ KIN-CEPA 특혜관세 적용절차

○ 특혜사후신청

- 수입신고시 원산지증명서 미비 등으로 특혜관세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 수입통관 후 1년까지 사후 신청 가능 (유효한 원산지증명서 제출 필요)

○ 적용신청

- 수입신고시 특혜관세 적용신청 및 원산지 신고
- 세관장 요구시 원산지증명서 제출
- 원산지증명서 오류 보정제도 도입(30일 내 보정기회 부여)

○ 기록보관 의무

-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 발급기관은 원산지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 (전자문서방식 보관도 허용)

□ KIN-CEPA 원산지 검증

[1단계] 간접검증

○ 수출국 발급기관에서 원산지 적정여부 확인

- ※ 한국은 세관에서 검증
- 회신기간 : 3개월 (한-아세안 2개월)
- 수출국에서 미회신시 특혜관세 적용배제

[2단계] 직접검증

- 수출국 검증내용이 부실할 경우 수입국 세관이 수출자/생산자를 대상으로 원산지 직접조사
- 조사 거부시 특혜관세 적용배제

* 직접검증은 서면조사(증빙서류 제출요구, 질문서 발송), 방문조사(조사대상자의 서면동의 필요)를 통해 이루어짐

◇ KIN-CEPA 특혜관세 적용배제

1. 원산지기준 미충족
2. 수출자, 생산자 및 수입자 증빙서류 미보관
3. 수출자, 생산자 및 수입자의 증빙서류 미제출
4. 수출자/생산자의 원산지 현지검증 방해
5. 수출자, 생산자 및 수입자의 원산지 반복허위신고

□ 품목분류 상호협의 및 사전심사 제도 도입

○ 품목분류 상호 협의

- 양국간 품목분류 마찰이 있는 경우 세관당국간 상호협의 할 수 있는 근거 마련(FTA 최초도입)
- 상대국의 자의적인 품목분류를 견제함으로써 우리 수출기업의 권익보호 가능

- FTA 관세특례법 : 관세상호협약제도(법 제18조)

○ 사전 심사

- 수입자, 상대국 생산자, 수출자가 상품 수입전 수입국 관세당국에 사전심사 신청
- 품목분류, 원산지결정, 상품가격산정

2.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추가지정에 따른 관련 업무처리 지침 통보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2402, 2016.9.30)

1. 인도측(상공부)이 기존의 인도수출검사위원회(EIC) 외에 해산물수출개발청(MPEDA) 및 인도섬유협회(Textiles Committee)를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으로 추가로 지정*하였음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 (지정일자) 해산물수출개발청 : ' 14.5.15, 인도섬유협회 : ' 16.3.30.

2. 이에 따라 현재까지 한·인도 CEPA 협정에 따른 인도측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인도수출검사위원회(EIC), 해산물수출개발청(MPEDA), 인도섬유협회(Textiles Committee) 3곳이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각 세관장께서는 한·인도 CEPA협정관세 적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여 주시고, 수출입업체 및 관세사 등에게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인도측에서 지정일 이후 발급된 C/O가 협정관세 사후적용 기간 내에 있는 등 유효한 C/O일 경우에는 특혜 적용

11. 한-중미 FTA

1.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간의 자유무역협정 발효에 따른 운영지침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실, 2019.10.01.

이 지침에서 ‘한-중미 FTA 협정’은 ‘협정’이라 하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 해당 고시는 각각 ‘특례법’, ‘특례법 시행령’, ‘특례법 시행규칙’, ‘특례고시’라고 지칭함

※ 동 지침은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는 날에 시행함

1. 한-중미 FTA 개요

1. 적용범위

□ [대상] 한국과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및 파나마 간에 개별적으로 간주되어 적용되며,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및 파나마 간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 [협정발효] 온두라스, 니카라과와 2019. 10. 1. 오전 0시부터 적용

-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파나마와는 국내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서면으로 우리측에 통보한 날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 발효

2. 용어의 정의

□ [당사국들] 한쪽 당사국인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및 파나마 공화국(이하 “중미 공화국들”이라 한다)과 다른 쪽 당사국인 대한민국

- [당사국] 이 협정의 효력이 있는 모든 국가

□ [국민] 당사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연인

- 한국의 경우 「국적법」, 코스타리카·엘살바도르·온두라스·니카라과·파나마의 경우 각 공화국의 「헌법」에

서 정의하고 있는 각 국의 국민

□ [당사국 상품] 국내 상품 또는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상품을 말하며, 그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을 포함

□ [원산지] 제3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에 규정된 원산지 규정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

□ [관세] 모든 관세 또는 다른 쪽 당사국의 수입에 부과되거나 이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모든 형태의 추가세 또는 추가금을 포함하여 그러한 수입에 부과되거나 이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모든 종류의 부과금을 포함

○ [제외항목] 다음의 항목은 관세에서 제외

가. 1994년도 GATT 제3조제2항 또는 양 당사국이 당사자인 후속 협정에 합치되게 부과되는 내국세에 상당하는 부과금

나. 당사국의 법에 따라 그리고 제7장(무역구제)에 합치되게 적용되는 반덤핑, 상계 또는 긴급수입제한 관세다. 제공된 서비스의 비용에 상응하는 것으로서 수입과 관련된 수수료 또는 그 밖의 부과금

라.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에 포함된 「농업에 관한 협정」상 행해진 모든 농업긴급수입제한조치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

□ [특혜관세대우] 원산지 상품에 대하여 적용가능한 관세율

□ [영역]

한국	한국이 주권을 행사하는 육지, 해양 및 상공, 그리고 한국이 국제법과 자국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해의 외측한계에 인접하고 그 한계 밖에 있는 해저 및 하부토양을 포함한 해양지역
코스타리카 니카라과	자국의 국내 법규와 국제법에 따른 자국의 영역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파나마	자국 주권하의 육지, 해양 및 상공, 그리고 자국이 국제법과 그 국내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 및 관할권을 행사하는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

3. 양허 현황

□ 코스타리카

○ 한국과 코스타리카 양측 모두 품목수 및 수입액 기준 자유화율 95%를 상회하는 높은 수준의 시장 자유화 달성

○ 품목수 기준, 우리측은 전체 품목의 95.6%(11,707개), 코스타리카측은 전체 품목의 95.2%(6,637개)에 대한 관세를 19년내로 철폐

○ 수입액 기준, 우리측은 對코스타리카 수입의 100%(2.8억불), 코스타리카측은 對한국 수입의 98%(3.1억불)에 대한 관세를 19년내로 철폐

< 전체 품목 양허수준 (산업통상자원부) >

양허 유형	우리 양허[對코스타리카]				코스타리카 양허			
	품목수	비중 (%)	수입액(USD) '12~' 14 평 균	비중 (%)	품목수	비중 (%)	수입액(USD) '12~' 14 평 균	비중 (%)
즉철(A)	9,805	80.1	277,356,074	97.8	4,755	68.2	289,440,235	91.9
유관세	7,849	64.1	23,174,642	8.2	4,614	66.2	246,012,530	78.1
무관세	1,956	16	254,181,432	89.6	141	2	43,427,705	13.8
3년(B)	155	1.3	3,631,817	1.3	15	0.2	3,791	0
5년(C)	592	4.8	1,319,091	0.5	464	6.7	4,008,906	1.3
5년내 철폐	10,552	86.2	282,306,982	99.5	5,234	75.1	293,452,931	93.2
7년(D)	135	1.1	898,758	0.3	6	0.1	77	0

10년(E)	402	3.3	487,658	0.2	1,052	15.1	9,514,375	3
10년내 철폐	11,089	90.6	283,693,398	100	6,292	90.2	302,967,383	96.2
12년(F)	435	3.6	0	0	3	0	0	0
15년(G)	138	1.1	174	0	329	4.7	5,582,206	1.8
16년(H)	44	0.4	1,009	0	12	0.2	0	0
19년(I)	1	0	0	0	1	0	0	0
전체 자유화율	11,707	95.6	283,694,581	100	6,637	95.2	308,549,589	98
양허제외(X)	520	4.2	152	0	337	4.8	6,438,041	2
협정배제(Y)	16	0.1	0	0	0	0	0	0
총합계	12,243	100	283,694,733	100	6,974	100	314,987,630	100

* 품목수 : (우리나라) HSK 2015 10단위 기준, (코스타리카) SAC 2015 8단위 기준

** 수입액 : 2012-2014 3개년 평균

□ 엘살바도르

- 한국과 엘살바도르 양측 모두 품목수 및 수입액 기준 자유화율 95%를 상회하는 높은 수준의 시장 자유화 달성
- 품목수 기준, 우리측은 전체 품목의 95.5%(11,688개), 엘살바도르측은 전체 품목의 95.1%(6,634개)에 대한 관세를 16년내로 철폐
- 수입액 기준, 우리측은 對엘살바도르 수입의 100%(37백만불), 엘살바도르측은 對한국 수입의 98.1%(1.7억 불)에 대한 관세를 16년내로 철폐

< 전체 품목 양허수준 (산업통상자원부) >

양허 유형	우리 양허 [對엘살바도르]				엘살바도르 양허			
	품목수	비중(%)	수입액(USD) '12~' 14 평균	비중(%)	품목수	비중(%)	수입액(USD) '12~' 14 평균	비중(%)
즉철(A)	9,808	80.1	35,104,244	93.3	3,635	52.1	117,160,726	67.2
유관세	7,852	64.1	20,614,351	54.8	297	4.2	4,041,793	2.3
무관세	1,956	16	14,489,893	38.6	3,338	47.9	113,118,933	64.9
3년(B)	178	1.5	1,959,397	5.2	21	0.3	4,865,378	2.8
5년(C)	574	4.7	497,871	1.3	715	10.3	2,351,940	1.3
5년내 철폐	10,560	86.3	37,561,512	99.8	4,371	62.7	124,378,044	71.3
7년(D)	132	1.1	0	0	50	0.7	7,771,852	4.5
9년 비선형(J1)	0	0	0	0	7	0.1	17,190,175	9.9
10년(E)	389	3.2	71,468	0.2	1,746	25	1,688,916	1
10년 비선형(E1)	0	0	0	0	65	0.9	19,216,345	11
10년내 철폐	11,081	90.5	37,632,980	100	6,239	89.5	170,245,332	97.7
12년(F)	430	3.5	0	0	55	0.8	634,508	0.4
15년(G)	145	1.2	0	0	338	4.8	174,067	0.1
16년(H)	32	0.3	24	0	0	0	0	0
전체 자유화율	11,688	95.5	37,633,004	100	6,634	95.1	171,053,919	98.1
양허제외(X)	538	4.4	18	0	340	4.9	3,268,017	1.9
양허제외(X)+TRQ	1	0	0	0	0	0	0	0
협정배제(Y)	16	0.1	0	0	0	0	0	0
총합계	12,243	100	37,633,022	100	6,974	100	174,321,936	100

* 품목수 : (우리나라) HSK 2015 10단위 기준, (엘살바도르) SAC 2015 8단위 기준

□ 온두라스

- 한국과 온두라스 양측 모두 품목수 기준 자유화율 95%, 수입액 기준 자유화율 90%를 상회하는 높은 수준의 시장 자유화 달성

- 품목수 기준, 우리측은 전체 품목의 95.5%(11,693개), 온두라스측은 전체 품목의 95.6%(6,667개)에 대한 관세를 19년내로 철폐
- 수입액 기준, 우리측은 對온두라스 수입의 98.7%(62백만불), 온두라스측은 對한국 수입의 93.2%(74백만불)에 대한 관세를 19년내로 철폐

< 전체 품목 양허수준 (산업통상자원부) >

양허 유형	우리양허[對온두라스]				온두라스 양허			
	품목수	비 중 (%)	수입액(USD) '12~' 14 평균	비중(%)	품목수	비 중 (%)	수입액(USD) '12~' 14 평균	비중(%)
즉철(A)	9,811	80.1	60,825,998	96.4	4,481	64.3	22,352,259	27.9
유관세	7,855	64.2	36,922,183	58.5	1,125	16.1	5,388,631	6.7
무관세	1,956	16	23,903,815	37.9	3,356	48.1	16,963,629	21.2
3년(B)	156	1.3	1,363,564	2.2	0	0	0	0
5년(C)	585	4.8	45,925	0.1	649	9.3	4,303,713	5.4
5년내 철폐	10,552	86.2	62,235,487	98.6	5,130	73.6	26,655,973	33.3
7년(D)	129	1.1	26,931	0	0	0	0	0
8년(K)	0	0	0	0	40	0.6	42,358,844	52.9
9년(J)	1	0	0	0	0	0	0	0
10년(E)	392	3.2	3,268	0	1,191	17.1	4,926,162	6.2
10년내 철폐	11,074	90.5	62,265,686	98.7	6,361	91.2	73,940,978	92.4
12년(F)	438	3.6	8	0	0	0	0	0
15년(G)	142	1.2	0	0	302	4.3	614,781	0.8
16년(H)	38	0.3	0	0	4	0.1	10,984	0
19년(I)+TRQ	1	0	0	0	0	0	0	0
자유화율	11,693	95.5	62,265,694	98.7	6,667	95.6	74,566,744	93.2
양허제외(X)	534	4.4	829,762	1.3	307	4.4	5,431,484	6.8
협정배제(Y)	16	0.1	0	0	0	0	0	0
총합계	12,243	100	63,095,456	100	6,974	100	79,998,228	100

* 품목수 : (우리나라) HSK 2015 10단위 기준, (온두라스) SAC 2015 8단위 기준

□ 니카라과

- 한국과 니카라과 양측 모두 품목수 및 수입액 기준 자유화율 95%를 상회하는 높은 수준의 시장 자유화 달성
- 품목수 기준, 우리측은 전체 품목의 95.9%(11,735개), 니카라과측은 전체 품목의 95.9%(6,691개)에 대한 관세를 19년내로 철폐
- 수입액 기준, 우리측은 對니카라과 수입의 100%(29백만불), 니카라과측은 對한국 수입의 99.1%(80백만불)에 대한 관세를 19년내로 철폐

< 전체 품목 양허수준 (산업통상자원부) >

양허 유형	우리양허[對니카라과]				니카라과 양허			
	품목수	비 중 (%)	수입액(USD) '12~' 14 평균	비중(%)	품목수	비 중 (%)	수입액(USD) '12~' 14 평균	비중(%)
즉철(A)	9,795	80	27,878,588	95.7	3,731	53.5	25,089,488	31
유관세	7,839	64	8,914,846	30.6	342	4.9	372,276	0.5
무관세	1,956	16	18,963,742	65.1	3,389	48.6	24,717,213	30.5
3년(B)	170	1.4	266,565	0.9	15	0.2	5,059	0
5년(C)	589	4.8	188,342	0.6	761	10.9	7,246,043	9
5년내 철폐	10,554	86.2	28,333,495	97.3	4,507	64.6	32,340,590	40
7년(D)	131	1.1	61	0	129	1.8	36,559,573	45.2

10년(E)	410	3.3	135,744	0.5	1,612	23.1	10,451,420	12.9
10년내철폐	11,095	90.6	28,469,300	97.8	6,248	89.6	79,351,584	98.1
12년(F)	438	3.6	0	0	18	0.3	8,340	0
15년(G)	137	1.1	3,999	0	373	5.3	723,073	0.9
16년(H)	62	0.5	0	0	50	0.7	93,969	0.1
19년(I)	2	0	0	0	2	0	0	0
19년(D)+TRQ	1	0	649,234	2.2	0	0	0	0
자유화율	11,735	95.9	29,122,533	100	6,691	95.9	80,176,966	99.1
양허제외(X)	492	4	10	0	283	4.1	739,026	0.9
협정배제(Y)	16	0.1	0	0	0	0	0	0
총합계	12,243	100	29,122,543	100	6,974	100	80,915,992	100

* 품목수 : (우리나라) HSK 2015 10단위 기준, (니카라과) SAC 2015 8단위 기준

□ 파나마

- 한국과 파나마 양측 모두 품목수 및 수입액 기준 자유화율 95%를 상회하는 높은 수준의 시장 자유화 달성
- 품목수 기준, 우리측은 전체 품목의 95.6%(11,707개), 파나마측은 전체 품목의 95.3%(8,416개)에 대한 관세를 19년내로 철폐
- 수입액 기준, 우리측은 對파나마 수입의 99.5%(5.3억불), 파나마측은 對한국 수입의 99.3%(3.9억불)에 대한 관세를 19년내로 철폐

< 전체 품목 양허수준 (산업통상자원부) >

양허 유형	우리양허[對파나마]				파나마 양허			
	품목수	비 중 (%)	수입액(USD) ' 12~' 14 평균	비중(%)	품목수	비 중 (%)	수입액(USD) ' 12~' 14 평균	비중(%)
즉철(A)	9,795	80	462,080,715	86.3	5,350	60.6	330,419,994	83.8
유관세	7,839	64	2,326,400	0.4	1,570	17.8	40,972,747	10.4
무관세	1,956	16	459,754,315	85.9	3,780	42.8	289,447,247	73.4
3년(B)	172	1.4	15,768,027	2.9	47	0.5	523,508	0.1
5년(C)	608	5	52,548,472	9.8	1,403	15.9	7,600,735	1.9
5년내철폐	10,575	86.4	530,397,214	99	6,800	77	338,544,236	85.9
7년(D)	131	1.1	256,172	0	27	0.3	632,815	0.2
10년(E)	408	3.3	1,385,661	0.3	1,201	13.6	49,812,981	12.6
10년내철폐	11,114	90.8	532,039,047	99.3	8,028	90.9	388,990,032	98.7
12년(F)	435	3.6	0	0	8	0.1	0	0
15년(G)	123	1	0	0	372	4.2	52,390	0
16년(H)	32	0.3	0	0	8	0.1	2,278,307	0.6
19년(I)	2	0	0	0	0	0	0	0
19년(D)+TRQ	1	0	791,022	0.1	0	0	0	0
전체 자유화율	11,707	95.6	532,830,069	99.5	8,416	95.3	391,320,729	99.3
양허제외(X)	520	4.2	2,689,999	0.5	415	4.7	2,896,985	0.7
협정배제(Y)	16	0.1	0	0	0	0	0	0
총합계	12,243	100	535,520,068	100	8,831	100	394,217,713	100

* 품목수 : (우리나라) HSK 2015 10단위 기준, (파나마) SAC 2015 8단위 기준

II. 국가별 협정관세율

1. 양허품목 및 협정관세율

□ 한·중미 협정 제2.4조(부속서 2-나) 및 특례법 시행령 제2조제17항(별표 17의2)의 각 국가별 양허표에 해당하는 물품

2. 관세율 할당(부록 2-나-1)

☐ [품목] 그 밖의 새우류(0306.17-9090)

- 한국수산물무역협회에서 추천을 받은 후 해당 추천서를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

☐ [국가별 할당량]

- [엘살바도르] 무관세 물량은 연간 100MT이며, 100MT를 초과하는 수입물량은 최혜국 세율 적용
- [온두라스] 무관세 물량은 연간 600MT이며, 600MT를 초과하는 수입물량은 단계별 양허유형 I를 적용
- [니카라과] 무관세 물량은 연간 500MT이며, 500MT를 초과하는 수입물량은 단계별 양허유형 I를 적용
- [파나마] 무관세 물량은 연간 200MT이며, 200MT를 초과하는 수입물량은 단계별 양허유형 I를 적용
- * 단계별 양허유형 I로 규정된 경우,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19단계에 걸쳐 매년 관세가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19년차 1월 1일부터 무관세 적용

III. 관세가 면제되는 특별 제도

1. 일시수입물품의 관세면제 (제2.6조)

☐ 대상 품목 (원산지와 관계없이 무관세 일시반입 허용)

- 국내법에 따라 일시입국의 자격을 갖춘 사람의 영업활동, 거래 또는 직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서, 언론매체 또는 텔레비전을 위한 장비, 소프트웨어, 그리고 방송 및 영화촬영 장비를 포함하는 전문장비
-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상품
- 상업용 견본품과 광고용 필름 및 기록물
- 스포츠용으로 반입되는 상품

☐ 적용 조건

- 그 상품이 다른 쪽 당사국의 국민 또는 거주자에 의해서만 또는 그 개인적인 감독 하에서만 영업활동, 거래, 직업 또는 스포츠를 수행하는데 사용될 것
- 그 상품이 대한민국에서 판매 또는 임대되지 아니할 것
- 그 상품에 면제되는 부과금을 초과하지 않는 액수의 담보 제공
- 그 상품이 수출될 때 식별이 가능할 것
- 그 상품의 사용자의 출국 시 또는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내에 다시 수출될 것(1년 추가연장 가능)
- 상품의 사용 목적에 합리적인 수량 이내
- 국내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영역 내로 반입가능한 상품일 것

2. 수리 또는 개조 후 재반입 상품의 관세면제 (제2.7조)

☐ 대상 품목 (원산지와 관계없이 무관세)

-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하여 자국 영역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 일시적으로 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물품
- 대한민국에서 수리 또는 개조가 가능한지, 수리 또는 개조가 그 상품의 가치를 증가시켰는지는 고려하지 않고 적용
-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반입된 상품

☐ ‘수리 또는 개조’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작업이나 공정

- 상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파괴하거나 새로운 또는 상업적으로 다른 상품을 만드는 것
- 미완성 상품을 완성 상품으로 변형하는 것

3. 상업용 견본품 및 인쇄된 광고물의 관세면제 (제2.8조)

☐ 대상 품목 (원산지와 관계없이 무관세)

- 상업용 견본품으로서 무시할만한 가치의 것, 그리고 인쇄된 광고물

☐ 적용 조건

- 견본품은 다른 쪽 당사국이나 비당사국의 상품, 또는 다른 쪽 당사국이나 비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제공되는 서비스의 주문을 권유하기 위해서만 수입될 것
- 광고물은 포장단위로 수입되고 각 포장이 1부를 초과하지 않으며 광고물 및 포장이 탁송물의 일부를 구성하지 아니할 것

4. 특송화물 (제4.8조)

☐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미화 150불 이하의 특송화물은 수입신고 생략 및 관세 면제

IV. 원산지 규정 및 절차

정의 (제3.28조)

- ☐ [수출자]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며 상품을 수출하는 자
- ☐ [생산자] 당사국의 영역에서 상품의 생산에 종사하는 자
- ☐ [수입자]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며 상품을 수입하는 자
- ☐ [본선인도가격] 운송수단과 관계없이, 해외 최종 선적 항구 또는 장소까지 드는 운송비용을 포함한 상품의 본선인도가격
- ☐ [상품] 모든 제품, 생산품, 물품 또는 재료
- ☐ [생산] 상품의 재배·사육·추출·채집·수집·채굴·수확·어로·딛사냥·수렵·제조·가공 또는 조립
- ☐ [재료] 부품, 원료, 원재료, 부분품 또는 조각을 포함하여 다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상품
- ☐ [원산지 재료] 협정 제3.1조에 따른 원산지 재료의 자격을 갖춘 재료
- ☐ [비원산지 상품 또는 재료] 협정 제3장에 따라 원산지 상품 또는 재료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상품 또는 재료
- ☐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 수입, 경비, 비용, 자산 및 부채의 기록, 정보의 공개, 재무제표의 작성에 대하여 당사국의 영역에서 인정된 컨센서스 또는 실질적이고 권위있는 지지

2. 원산지 상품

☐ 일반 원칙 (제3.1조)

- 협정 제3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의 모든 적용 가능한 요건을 충족하는 다음의 상품
 - ① (완전생산상품) 전적으로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경우
 - ② (원산지 재료로만 생산된 상품) 원산지 재료로만 전적으로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경우
 - ③ (품목별 원산지규정 충족 상품) 협정 부속서 3-가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면서,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전적으로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경우

☐ 완전생산상품 (제3.2조)

- 협정 제3.2조에 따라 전적으로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은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
 - ① 당사국의 영역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살아있는 동물
 - ② 당사국의 영역에서 가호에 언급된 살아있는 동물로부터 획득한 상품
 - ③ 당사국의 영토, 내수 또는 영해 내에서 수행된 수렵, 딛사냥, 어로, 양식, 채집 또는 포획으로부터 획득된 상품
 - ④ 당사국에 등록되거나 등기되고 그 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한 선박에 의하여 당사국 영해 밖의 수역, 해저 또는 하부토양에서 획득한 어로 상품 및 그 밖의 수산물
 - ⑤ 당사국에 등록되거나 등기되고 그 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한 가공선박에서 라호에 언급된 상품만을 사용하여 생산되거나 가공된 상품
 - ⑥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배 및 수확, 수집 또는 채집된 식물과 식물 생산품
 - ⑦ 당사국의 토양, 수역, 해저 또는 해저 하부로부터 추출된 광물과 그 밖의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물질

- ⑧ 당사국의 영해 밖의 해저 또는 해저 하부로부터 당사국 또는 당사국의 인에 의하여 채취 또는 추출된 상품. 다만, 그 당사국이 그러한 수역, 해저 또는 하부토양을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경우에 한정한다.
- ⑨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행된 제조 공정에서 얻어진 폐기물 및 부스러기 또는 당사국 영역에서 수집된 중고품의 원재료 회수용으로만 적합한 폐기물 및 부스러기
- ⑩ ① ~ ⑨의 상품으로만 생산된 상품

☐ 원산지 재료로만 생산된 상품 (제3.1조나목)

- 협정 제3.1조나목에 따라 원산지 재료로만 전적으로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

☐ 품목별 원산지기준 충족 상품

(1) 역내가치포함비율(RVC) 기준 (제3.3조)

- 협정 부속서 3-가에서 역내가치포함비율 요건을 명시하는 경우, 역내가치포함비율은 다음의 방법 중 하나에 따라 산정

$$\begin{aligned} \text{▶ 공제법(RVC)} &= \frac{\text{본선인도가격(FOB)} - \text{비원산지재료가치(VNM)}}{\text{본선인도가격(FOB)}} \times 100 \\ \text{▶ 집적법(RVC)} &= \frac{\text{원산지재료가치(VOM)}}{\text{본선인도가격(FOB)}} \times 100 \end{aligned}$$

*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

- ① 수입된 재료의 경우, 재료 수입 시 운임보험료 포함 가격
- ② 획득된 재료의 경우, 화물비·보험료·포장비 및 공급자의 창고로부터 생산자의 소재지로 그 재료를 운송하는데 발생한 그 밖의 비용을 고려하지 아니하는 거래 가치
- ③ 자가생산된 재료 또는 상품의 생산자와 재료의 판매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일반적인 비용을 포함하여 재료의 생산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의 총합(통상적인 거래과정에서 부가되는 이윤액 추가 가능)

- 이 조에 언급된 가치는 관세평가협정에 따라 결정

(2) 세번변경기준 (부속서 3-가 제1부)

- 협정 부속서 3-가에서 세번변경 요건을 명시하는 경우, 세번변경은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세번변경의 요건은 비원산지 재료에만 적용하며,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세번이 변경되어야 충족
 -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고, 해당 류, 호 또는 소호에서 특정 품목번호(HS)를 제외하도록 규정한 경우, 그 특정 품목번호에 해당하는 재료는 원산지 재료이어야 함

☐ 불인정 공정 수행 물품 (제3.5조)

- 아래 공정 또는 공정들의 조합만을 수행한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불인정 (원산지 재료로만 생산된 상품에는 적용되지 않음)

- ① 운송되고 보관되는 동안 물품이 양호한 상태로 보존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공정
- ② 포장상태의 변경, 포장의 해체 또는 조립
- ③ 세척, 세탁, 먼지·녹·기름·페인트 또는 그 밖의 막의 제거
- ④ 방직용 섬유의 다림질 또는 압착(壓着) 작업
- ⑤ 단순한 페인트칠 및 광택 공정
- ⑥ 곡물 및 쌀의 탈각(脫殼), 부분 또는 전체의 표백, 연마 및 도정 작업
- ⑦ 병, 강통(cans), 휴대용 병(flasks), 가방, 케이스 또는 상자에 단순히 물품을 넣는 작업과 카드 또는 판에 붙이는 것, 그리고 그 밖의 모든 단순한 포장 작업
- ⑧ 다른 종류인지에 관계없이 물품의 단순한 혼합

- ⑨ 완성품을 구성하기 위한 부분품의 단순한 조립 또는 물품을 부분품으로 분해하는 작업
- ⑩ 동물의 도살
- ⑪ 건조, 염장(또는 염수장), 냉장 또는 냉동
- ⑫ 물품 또는 그 포장에 마크, 라벨, 로고 및 이와 유사한 그 밖의 구별표시물을 부착하는 작업
- ⑬ 과일, 견과류 및 채소의 탈피(脫皮), 씨 제거 및 탈각
- ⑭ 연마, 단순한 분쇄 또는 단순한 절단
- ⑮ 감별(shifting), 체질(screening), 선별(sorting), 분류, 등급화(grading)
- ⑯ ① ~ ⑮까지 규정된 공정의 둘 이상의 조합

* [단순한] 특별한 기술이나 그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히 생산되거나 설치된 기계, 기기 또는 장비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활동

** [단순한 혼합] 특별한 기술이나 그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히 생산되거나 설치된 기계, 기기 또는 장비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활동. 다만, 화학반응은 불포함

3. 원산지 결정의 보충적 기준

☐ 중간재(Roll-up) 기준 (제3.4조)

- 중간재란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마호에 따라 원산지 재료와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생산된 상품으로서 다른 상품의 생산에 재료로 사용되는 상품
- 원산지 상품이 다른 상품의 생산에 재료로 사용되는 경우, 다른 상품의 원산지를 결정할 때 재료가 된 원산지 상품의 비원산지 재료는 고려하지 않음 (모두 원산지 재료로 취급)

☐ 누적 기준 (제3.6조)

- 어느 하나의 계약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이나 재료가 다른 계약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최종재의 재료로 사용되는 경우, 그 상품이나 재료는 최종재의 작업 또는 가공이 발생한 계약당사국을 원산지로 간주
- 누적은 동일한 품목별 원산지규정을 가진 계약당사국 간에만 적용되며, 협정이 발효되지 않은 계약당사국의 상품 또는 재료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

☐ 최소허용기준 (제3.7조)

- 제1류부터 제24류까지 및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의 상품을 제외하고 부속서 3-가에 따른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품
 - 해당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고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않은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이 그 상품의 본선인도 가격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
- 부속서 3-가에 따른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15류부터 제24류까지에 해당하는 상품
 -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가 그 상품과 다른 6단위 품목번호에 분류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 해당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고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않은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그 상품의 본선인도 가격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
- 부속서 3-가에 따른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에 해당하는 상품
 - 해당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고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않은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중량이 그 상품 중량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

☐ 대체가능 상품 또는 재료 (제3.8조)

○ 대체가능 상품 또는 재료란 상업적 목적으로 호환 가능하고 그 특성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상품 또는 재료를 의미하며, 원산지상품인 대체가능 상품 또는 재료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따라 구별

- 대체가능 상품 또는 재료의 물리적 분리
- 생산이 이루어지는 당사국의 일반적 회계원칙 또는 달리 인정되는 재고관리기법 (평균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 세트 상품 (제3.9조)

- 모든 구성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
- 구성 상품에 비원산지 상품이 포함된 경우, 비원산지 상품의 가치가 전체 세트상품 총 가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지 않으면 그 전체 세트상품을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

□ 부속품, 예비부품 및 공구 (제3.10조)

- 상품과 함께 인도된 부속품, 예비부품 또는 공구는 그 상품과 별도의 송장이 발부되지 않고, 가격 및 수량으로 보아 그 상품의 통상적인 부속품 등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원산지 결정
- 상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이 세번변경기준일 경우에는 부속품의 원산지는 고려되지 않음
- 상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이 역내가치포함비율기준일 경우에는 부속품은 상품의 역내가치비율 계산 시 원산지 또는 비원산지 재료로 산정

□ 소매용 포장재료 및 용기(제3.11조, 해당 상품과 함께 분류되는 경우)

- 완전생산상품, 원산지재료로만 생산된 상품,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는 상품의 경우, 해당 상품의 원산지를 결정할 때 포장재료 및 용기의 원산지는 고려하지 아니함
- 역내가치비율기준이 적용되는 상품의 경우, 포장재료 및 용기의 가격을 해당 상품의 원산지 결정 시 산정

□ 수송을 위한 포장재료 및 용기 (제3.12조)

- 운송 중인 상품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된 포장재료 및 용기는 상품의 원산지를 결정할 때 고려하지 아니함

□ 간접재료 (제3.13조)

- 간접재료란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지만 그 상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지 않고 그 상품의 일부를 구성하지도 않는 재료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재료의 원산지는 그 상품의 원산지를 결정할 때 고려하지 아니함

- ① 연료, 에너지, 촉매제 및 용제
 - ② 물품의 시험 또는 검사에 사용되는 설비·장치 및 보급품
 - ③ 장갑·안경·신발·의류·안전장비 및 보급품
 - ④ 공구, 금형 및 주형
 - ⑤ 설비 및 건물의 유지에 사용되는 예비부품과 재료
 - ⑥ 생산에 사용되거나 설비 및 건물의 운영에 사용되는 윤활제·그리스·혼합물과 그 밖의 재료
 - ⑦ 물품에 결합되지는 아니하나 그 물품 생산의 일부로 사용되었음이 합리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그 밖의 물품

4. 영역적 원칙

□ 직접 운송 (제3.14조)

- 비당사국 영역을 경유하여 운송되는 상품은 다음 사항을 모두 증명

- 비당사국 영역에서 관세당국의 통제하에 있을 것
- 비당사국 영역에서 하역 및 재선적, 재포장 또는 그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공정 이외의 어떠한 공정도 거치지 아니할 것
- 상기 조건의 충족여부는 수입국 세관에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제출하여 확인
 - 수출 당사국으로부터 경유국을 통한 통과를 다루고 있는 단일 운송서류
 - 경유국으로부터 수입당사국까지의 통과를 다루고 있는 운송서류와 다음을 포함하고 있는 경유국 관세당국에서 발급한 증명서
 - 1) 제품의 정확한 설명
 - 2) 제품의 하역 및 재선적 일자, 그리고 적용 가능한 경우, 선박명 또는 사용된 다른 운송수단
 - 3) 제품이 경유국에 머물러 있는 그 상태

☐ 역외가공 (제3.15조)

- 한국에서 수출되고 그 이후 한국에 재수입된 재료로 부속서 3-나에 따라 당사국들이 지정한 지역에서 작업 또는 가공이 이루어진 특정 상품은 원산지상품으로 간주

☐ 상품의 재수출 (제3.16조)

- 이 협정의 비당사국에서 들어오고 그 이후 재수출당사국의 영역 내에 위치한 자유지역에서 다른 쪽 당사국으로 재수출되는 상품의 원산지 지위를 그 비당사국과 다른 쪽 당사국 간에 발효 중인 무역협정에 따라 결정할 때, 당사국은 재수출당사국에서 발행한 재수출증명서를 인정
- 재수출증명서는 그 상품이 당사국의 자유지역 내에서 관세당국의 통제와 감시하에 머무르며 원산지 지위를 변화시키는 변형공정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 발행되며, 수행된 공정이 명시되어야 함

5. 원산지증명 방식 (제3.17조)

☐ [발급 방식] 자율발급

- 영어로 작성되며, 인쇄본 또는 당사국들이 합의하는 전자본을 포함한 그 밖의 매체로 작성

☐ [발급 주체]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작성하고 서명

- 자국 영역의 수출자가 그 상품의 생산자가 아닌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근거하여 원산지증명서 작성·서명
 -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었다는 수출자의 인지
 -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었다는 생산자의 서면 진술에 대한 수출자의 합리적인 신뢰
 - 생산자가 수출자에게 자발적으로 제공한, 그 상품을 위하여 작성하고 서명한 원산지증명서

☐ [원산지증명서의 적용] 하나 이상 상품의 단일 선적 또는 원산지증명서에 명시된 기간(1년 이내) 내에 동일 수입자에 대한 동일 상품의 복수선적

- 포괄원산지증명 시 원산지증명서의 포괄증명기간의 시작일은 해당 원산지증명서가 서명된 날보다 빠를 수 있음

☐ [원산지증명서 면제] 과세가격이 미화 1천 달러(수입 당사국의 통화로 이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인 상품 (제3.18조)

- 수입당사국이 그 수입이 당사국의 특혜관세대우 신청 법령의 준수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지거나 계획된 것으로 간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

☐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서명일로부터 1년 (제3.19조)

☐ [원산지증명서 서식] (FTA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2)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2서식] <신설 2019. 2. 8.>

중미 공화국들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앞쪽)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S OF CENTRAL AMERICA					
1. Exporter' s Name and Address: Telephone: Fax (optional): E-Mail:		2. Blanket Period: YYYY MM DD YYYY MM DD From: _ _ _ _ / _ _ / _ _ / To: _ _ _ _ / _ _ / _ _ /			
3. Producer' s Name and Address: Telephone: E-Mail:		4. Importer' s Name and Address: Telephone: Fax (optional): E-Mail:			
5. Description of Good(s)	6. HS Tariff Classificat ion#	7. Origin Criterion	8. Producer	9. RVC	10. Country of Origin
11. Remarks:					
I certify that: - The information in this document is true and accurate and I assume the responsibility for proving such representations. I understand that I am liable for any false statements or material omissions made on or in connection with this document. - I agree to maintain, and present upon request, documentation necessary to support this Certificate, and to inform, in writing, all persons to whom the Certificate was given of any changes that would affect the accuracy or validity of this Certificate. - The goods originate in the territory of one Party and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ose goods in the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s of Central America. This Certificate consists of _____ pages, including all attachments.					
12. Authorized signature:			Company:		
Name:			Title:		
YYYY MM DD Date: _ _ _ _ / _ _ / _ _ /			Telephone: Fax(optional):		

210mm×297mm[백상지(80g/㎡)]

작성 방법

- 제1란: 수출자의 법적 이름, 주소(도시 및 국가를 포함한다), 전화번호, 팩스번호(선택) 및 이메일 주소를 적습니다.
- 제2란: 이 증명서가 제5란의 물품과 동일한 물품의 복수 선적에 적용될 경우 1년을 넘지 않는 포괄증명기간을 적습니다. "FROM"은 증명서가 포괄증명물품에 적용 가능하게 되는 날이며(이 증명서가 서명된 날보다 빠를 수 있습니다), "TO"는 포괄증명기간이 종료되는 날입니다. 이 증명서를 근거로 협정관세 적용의 신청이 이루어지는 물품의 선적은 두 날짜 사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제3란: 생산자의 법적 이름, 주소(도시 및 국가를 포함한다),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를 적습니다. 둘 이상의 생산자가 증명서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VARIOUS"로 적고, 제5란의 증명물품과 관련된 모든 생산자의 법적 이름, 주소(도시 및 국가를 포함한다),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가 적힌 생산자 목록을 첨부합니다. 수출자가 생산자에 대한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AVAILABLE TO CUSTOMS UPON REQUEST"로 적습니다.
- 제4란: 수입자의 법적 이름, 주소(도시 및 국가를 포함한다), 전화번호, 팩스번호(선택) 및 이메일 주소를 적습니다.
- 제5란: 각 물품에 대한 상세한 품명을 적습니다. 품명은 송품장 및 HS(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상의 품명과 연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세부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 증명서가 물품의 단일 선적에 적용될 경우에는 상업송장에 기재된 송장번호를 적고, 이를 알 수 없는 경우 배송주문번호, 구매주문번호 또는 물품을 식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번호 등을 적습니다. 다만, 그 물품에 대하여 수출 당사국의 영역 밖에 소재하는 인에 의하여 송장이 발부된 경우, 이전 정보의 포함은 선택사항입니다.
- 제6란: 제5란의 각 물품에 대하여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 세번 6단위까지 적습니다.
- 제7란: 제5란에 기술된 각 물품에 대하여 아래 기준(A부터 D까지) 중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를 적습니다(택일한다). 원산지 규정은 제3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과 부속서 3-가(품목별 원산지 규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재문구	원산지 기준
A	협정 제3.1조에 언급된 바와 같이 한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전적으로 생산된" 경우
B	협정 제3.1조에 언급된 바와 같이 전적으로 원산지 재료로만 한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경우
C	협정 제3.1조에 언급된 바와 같이 전적으로 한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되고, 부속서 3-가(품목별 원산지 규정)에 규정된 세부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
D	협정 제3.15조(역외가공)의 적용을 받는 경우

- 제8란: 제5란의 각 물품에 대하여 본인이 생산자인 경우 "YES"를 적습니다. 본인이 생산자가 아닌 경우, "NO"를 적고 이 증명서의 작성 근거를 아래 표에 따라 적습니다.

기재문구	증명서 작성 근거
(1)	물품이 원산지 물품 자격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본인의 인지
(2)	물품이 원산지 물품 자격을 갖추었다는 생산자의 서면 진술(원산지증명서는 제외한다)에 대한 본인의 신뢰
(3)	생산자가 수출자에게 자발적으로 제공한, 그 물품을 위해 작성되고 서명된 원산지증명서

- 제9란: 제5란의 각 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으로 역내부가가치포함비율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 역내부가가치포함비율이 공제법에 의해 계산되었다면 "BD", 집적법에 의해 계산되었다면 "BU"를 적습니다. [참조: 협정 제3.3조(역내부가가치포함비율(RVC))]
- 제10란: 모든 원산지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국가의 이름을 적습니다: 한국(KR), 코스타리카(CR), 엘살바도르(SV), 온두라스(HN), 니카라과(NI), 파나마(PA).
- 제11란: 제5란의 각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또는 재료가치에 대한 사전심사 또는 심사를 받은 경우 등 이 증명서에 관하여 추가 사항이 있는 경우에 발급 당국, 참조 번호 및 발급 날짜를 적습니다. 또한, 제3.6조(누적), 제3.7조(최소허용수준), 제3.8조(대체가능 상품 또는 재료) 또는 제3.9조(세트)가 적용되는 경우, 또는 그 물품에 대하여 제3국에서 송장이 발부된 경우, 이 란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 제12란: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작성, 서명하고, 날짜를 적어야 합니다. 날짜는 이 증명서가 작성되고 서명된 날이어야 합니다.
- 참조: 이 작성방법은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하기 위한 참고용으로만 사용되므로, 뒤쪽에 기재되거나 인쇄될 필요는 없습니다.

V. 원산지 검증 및 사후조치

1. 원산지검증 방식 (제3.24조)

☐ [검증방법] 자료제출요구, 간접검증과 직접검증 모두 가능

- 수입자에게 서면으로 추가 정보 요청
- 계약상대국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서면으로 추가 정보 요청
- 수출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원산지검증 지원 요청
- 수출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의 공무원이 동행하여 수출자 또는 생산자 방문조사

※ 국가별 검증의 권한 있는 당국 (제3.28조)

한국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기획재정부*	재정부 관세총국	재정부 관세총국	협정 운영 및 교섭 총국 및 관세수익국	세관총국	국가세관 당국

* 기획재정부는 관세청을 관세실무를 담당하는 권한 있는 당국으로 각 당사국들에 공지

☐ [간접검증]

- 수입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원산지증명서(사본 가능) 및 요청사유를 수출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제공
- 수출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조사결과와 증빙서류를 수입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회신

- ① 원산지증명서가 진본인지 여부
 - ② 해당 상품의 원산지기준 충족여부와 제3장의 요건 충족여부
 - ③ 원산지 상품인 경우 원산지 지위 취득에 관한 세부적인 설명

- 150일 이내에 회신이 없거나 회신결과에 충분한 정보가 포함 되지 않은 경우 수입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특혜배제 가능

☐ [방문검증]

- 수입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상대국 수출자(또는 생산자) 및 수출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방문조사 서면통보하고,
- 서면통보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대국 수출자(또는 생산자)가 서면으로 동의하여야 방문검증 가능
- 방문조사에 동의하지 않거나, 기간 내에 서면동의서를 회신하지 않으면 특혜배제 가능
-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수입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방문조사 연기 신청이 가능하며, 연기된 방문은 제안된 방문검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함
- 검증 개시 후 1년 이내에 수입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수입자 및 수출자(또는 생산자)에게 특혜적용 여부에 대한 서면결정서 송부 (90일 연장 가능)

☐ [자료제출]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는 서면요청서의 접수일로부터 30일 내에 자료 제출

- 미제출시 서면통보와 더불어 30일의 추가자료제출 기간 부여 후 특혜관세대우 배제

☐ [자료보관 기간] (제3.22조)

- (수출자·생산자) 원산지증명서 발급일로부터 5년
- (수입자) 상품의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5년
- 디지털·전자·광학·자기 또는 서면의 형태 등으로 자료보관 가능

2. 특혜 적용 배제 (제3.25조)

□ [원칙] 제3장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특혜관세대우 적용을 위한 요건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 [불일치 및 형식적 오류] (제3.23조)

- 원산지증명서가 판독이 불가능하거나, 오류·누락·삭제·말소·수정이 있거나, 행간에 기재된 사항이 있거나, 제 3.17조에 따라 작성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입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45일 이내 수입자에게 새 증명서를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1회 부여
- 원산지증명서의 정확성에 의심을 야기하는 수준이 아닌 맞춤법 오류 및 타자 오류만으로 원산지증명서의 거부 금지

□ [비당사국 송장] 비당사국에 소재하는 회사 또는 수출자가 송장을 발급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원산지증명서 거부 금지 (제3.27조)

3. 사전 심사 (제4.11조)

- 상품이 수입되기 전에 다음 사항에 대해 사전심사 요청 가능
 - (신청인) 수입자, 계약상대국 수출자 또는 생산자
 - (대상) 품목분류, 관세평가기준의 적용, 원산지 상품 여부,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사안
 - (기간) 국내법에 따라 신청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결정
 - * 관세당국이 요청을 접수한 후 120일 또는 자국의 법규에 정한 그보다 짧은 기간

<FTA 특례법상 사전심사 신청절차>

단계	세부단계	주 체	주요 내용
신청	사전심사 신청	신 청 인	▶ 서류제출(신청서, 심사요청관련서류) ▶ 수수료(3만원)
접수	신청서류 확인	접수부서	▶ 해당부서가 아닌 경우 담당부서로 이송
	사전심사 접수	주관부서	▶ 담당부서가 2개 이상인 경우, 접수부서가 주관부서로 서 해당부서에 심사사항 통보 ▶ 사전심사 신청대장 기록, 수수료 수납
검토 결정	신청내용 심사·검토	주관부서	▶ 신청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법정처리
		심사부서	▶ 담당부서가 2개 이상인 경우, 사전심사담당 부서는 결과를 주관부서로 통보(만료7일전까지)
	반려 및 보정	주관부서	▶ 반려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반려 ▶ 보정 : 5일 이상의 기간
	위원회 상정·검토	주관부서 심사부서	▶ 위원회 상정 : 심사부서에서 결정이 곤란하다고 판단
통지 공표	사전심사서 통지	주관부서	▶ 사전심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
	심사결과 인터넷 공표	주관부서	▶ FTA 포털 사전심사 공표시스템에 사전심사 결과 등재
사후 관리	이의제기	신 청 인	▶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 이의제기 기간 :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주관부서	▶ 처리기간 : 접수일부터 30일, 보정:20일
	사전심사 변경	신 청 인 주관부서	▶ 사실관계, 상황변경 등의 경우 사전 심사내용 변경·철회

내용	부호	설명
한-중미 (코스타리카)	FCECR1	- 하나의 품목번호에 1개의 협정세율이 적용되는 물품 - 하나의 품목번호에 서로 다른 협정세율이 있는 것 중 최고세율 적용물품
	FCECR2	하나의 품목번호에 서로 다른 협정세율이 있는 것 중 최고세율인 FCR1을 제외하고 높은 세율 순으로 FCR2부터 FCR6까지 순차 적용
	FCECR3	
	FCECR4	
	FCECR5	
	FCECR6	
한-중미 (엘살바도르)	FCESV1	- 하나의 품목번호에 1개의 협정세율이 적용되는 물품 - 하나의 품목번호에 서로 다른 협정세율이 있는 것 중 최고세율 적용물품
	FCESV2	하나의 품목번호에 서로 다른 협정세율이 있는 것 중 최고세율인 FES1을 제외하고 높은 세율 순으로 FES2부터 FES6까지 순차 적용
	FCESV3	
	FCESV4	
	FCESV5	
	FCESV6	
	FCESV7	- 추천이 필요한 물품 중 추천을 받은 물품
한-중미 (온두라스)	FCEHN1	- 하나의 품목번호에 1개의 협정세율이 적용되는 물품 - 하나의 품목번호에 서로 다른 협정세율이 있는 것 중 최고세율 적용물품
	FCEHN2	하나의 품목번호에 서로 다른 협정세율이 있는 것 중 최고세율인 FHN1을 제외하고 높은 세율 순으로 FHN2부터 FHN6까지 순차 적용
	FCEHN3	
	FCEHN4	
	FCEHN5	
	FCEHN6	
	FCEHN7	- 추천이 필요한 물품 중 추천을 받은 물품
한-중미 (니카라과)	FCENI1	- 하나의 품목번호에 1개의 협정세율이 적용되는 물품 - 하나의 품목번호에 서로 다른 협정세율이 있는 것 중 최고세율 적용물품
	FCENI2	하나의 품목번호에 서로 다른 협정세율이 있는 것 중 최고세율인 FNI1을 제외하고 높은 세율 순으로 FNI2부터 FNI6까지 순차 적용
	FCENI3	
	FCENI4	
	FCENI5	
	FCENI6	
	FCENI7	- 추천이 필요한 물품 중 추천을 받은 물품
한-중미 (파나마)	FCEPA1	- 하나의 품목번호에 1개의 협정세율이 적용되는 물품 - 하나의 품목번호에 서로 다른 협정세율이 있는 것 중 최고세율 적용물품
	FCEPA2	하나의 품목번호에 서로 다른 협정세율이 있는 것 중 최고세율인 FPA1을 제외하고 높은 세율 순으로 FPA2, FPA3, FPA4, FPA5, FPA6, FPA8까지 순차 적용
	FCEPA3	
	FCEPA4	
	FCEPA5	
	FCEPA6	
	FCEPA8	
	FCEPA7	- 추천이 필요한 물품 중 추천을 받은 물품

12. 한-칠레 FTA

1. 한-칠레 FTA 지침은 공통사항 참조

2. 칠레 사전판정(Advanced Ruling) 고시 번역 배포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 2009-07-08(등록일자)

1. 한·칠레 FTA에서는 수입자, 계약상대국의 수출자 및 생산자가 수출입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여부 등을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사전판정(Advanced Ruling)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칠레로 물품을 수출하는 우리기업이 동 제도를 활용한다면, 칠레 세관과의 통관 마찰을 줄이고 사후 원산지검증에 따른 위험도 줄일 수 있습니다.
 3. 관세청에서는 對칠레 수출기업의 FTA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칠레 관세청의 사전판정 고시(NO 9422, 2008.12.29)를 번역하여 배포하오니 관련 업체가 이용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적 판단은 원문기준임.
- 붙임 : 칠레 사전판정 고시 번역본 1부<게재생략>

3. 한·칠레 FTA 부속서4 개정 교환각서 발효관련 원산지증명서 작성방법 안내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1668, 2017.6.30

1.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부속서4(원산지규정) 개정 교환각서」가 2017.7.1. 부터 발효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한·칠레 원산지증명서 작성방법을 안내합니다.
- 아 래
- 수출자는 한·칠레 FTA 원산지증명서 5번란 품목번호(HS No) 및 6번란 원산지결정기준(Preference Criterion)을 HS 2012 기준으로 작성할 것

※ 개정 「부속서 4(원산지규정)」 참조하여 작성

4. 한·칠레 FTA 원산지증명서에 관한 유의사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 2004-04-01(등록일자)

1. 관세행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2004.4.1.부로 시행되는 한·칠레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제도는 수출자가 양국의 합의된 양식으로 작성·서명하는 자율발급제도이며 수출자에 대하여 세관의 원산지검증 협력의무, 자료보관 의무(5년) 및 협정관세적용정지자 지정대상 등 자율에 따른 책임을 부여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3. 따라서 수입물품의 경우, 원산지증명서 작성 수출자는 반드시 칠레에 거주하고 칠레당국의 고유납세번호(Rol Unico Tributario)를 부여받은 수출자이어야 하므로 제3국에 거주하는 수입계약상 수출자는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 또한 송품장이 비원산지국에서 작성될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10번 항목(Remarks)에 송품장 작성자의 이름, 회사명, 주소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4. 이에 따라 칠레 이외의 거주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작성·교부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 허위발급으로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며, 수입자는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될 수 있으므로 동 유의사항을 관련 업체에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한-칠레 FTA 협정관세 적용을 위해 4.1일 협정 발효 이전에 작성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기관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이거나 한-칠레 FTA 협정 통일 양식(고시 별지 9호 서식)과 상이한 원산지증명서라면, 한-칠레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도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한·칠레 FTA 특례법령 폐지에 따른FTA 협정대상물품 업무처리지침 시달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 2010-02-26(등록일자)

1. 자유무역협정팀-495(2010.2.26.)호와 관련입니다.
2. 한·칠레 FTA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제출하던 것을 협정관세적용신청서 제출로 간소화하였습니다. 단, 신고인의 전산시스템 사정으로 협정관세적용신청서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종전방식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기한 2010. 3. 5.(금)까지)

13. 한-캐나다 FTA

1. 한-캐나다 FTA 지침

1. 양허 현황

☐ 대다수 품목에 대해 협정발효 후 10년 이내에 관세철폐

- ※ 품목수 기준 : (우리) 97.5%, (캐나다측) 97.5%
- 수입액 기준 : (우리) 98.4%, (캐나다측) 98.7%

[공산품]

- 5년 이내에 대다수 공산품에 대한 관세철폐
- ※ 캐나다는 5년내 품목수 기준 99.6%, 수입액 기준 98.7%에 해당하는 공산품 철폐
- ※ 우리는 10년내 품목수 기준 99.1%, 수입액 기준 99.7%에 해당하는 공산품 철폐

[농산물]

- 캐나다는 품목수 기준 86.7%, 수입액 기준 99.9%를 5년내 철폐 우리는 농산물 분야의 민감성을 반영하여, TRQ, ASG, 계절관세, 장기 관세철폐기간 설정 등 다양한 예외적 수단을 확보

2. 협정관세 종류

☐ 계절관세 적용품목

- 계절관세 해당 물품 : 감자(칩용)
- 적용기준 : 수입신고일자
- 다만, 세율이 인상될 예정인 물품은 우리나라에 도착된 후에 수입 신고하여야 하는 바, 계절관세 적용기간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기간)에 입항하는 물품은 도착된 후에 수입신고하여야 함

< 한-캐나다 FTA 계절관세 품목 >

HSK	품 명	관세율	적용기간
0701.90-0000	감자(신선, 냉장한 것)	0%	12월~4월 수입되는 물품
	- 칩용	304%	5월~11월 수입되는 물품

☐ 수입권 추천방식 TRQ 품목

- 주무부 장관의 위임을 받은 기관(추천대행기관*)의 추천을 받은 후 해당 추천서를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품목
 - 천연꿀, 보리, 감자분, 맥아, 식용대두(IP대두), 사료용 근채류, 보조사료(7개 품목)
 - 수입권 공매방식 품목과 수입권 배분방식 품목으로 구분
 - *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단미사료협회 등 총 5개 대행기관
- 전자적 방식에 따른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 관세율할당물량 적용 추천서는 전산으로 확인
 - * 전산용 추천서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

☐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 대상품목

- 농림축산물 긴급수입제한조치 대상품목은 기준발동물량을 초과하여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캐나다를 원산지’로 하는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가 적용되는 물품
-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 적용 대상 물품
 - 쇠고기, 돼지고기, 사과, 배, 보리, 감자분, 팥 등(7개 품목)

<특별긴급관세 대상물품에 대한 운영방법>

☐ 캐나다와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2-바’에 따라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를 적용할 물품의 운영방법 1. (대상) 보세구역에 장치한 이후 수입신고되는 물품을 대상으로 운영 ※ 수입신고시 세율구분코드 - 한도내 물량 : FCA1 - 중간기준 초과 물량 : FCA7
--

- 주기준 초과 물량 : FCA8

2. (통관절차)

- 한도수량에 도달하는 날의 전날까지는 선착순으로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적용
- 한도수량에 도달한 날에 수입신고된 물품은 잔여수량을 그날에 수입신고된 수량(수입신고수리된 수량에 한한다)에 비례하여 각각 배분
- 배분한 이후에도 잔여수량이 있는 경우 한도수량도달일의 다음날 순서대로 배분

3. (배분에 따른 세액보정)

- 통관지 세관장 : 배분되어 조정된 수량을 수입자에게 통지
- 수입자 : 관세법 제38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세액을 보정 가산이자는 없음(같은 조 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

4. (잔여수량의 게시) 배분절차가 완료되는 날까지 품목별 총수량·사용 수량과 잔여수량을 관세청 FTA포탈(FTA.customs.go.kr)을 통해 게시

3. 협정관세 적용절차

☐ 협정적용 영역 (제1.9조)

○ 대한민국 : (원산지 부호 KR)

- 우리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영해 및 영공과 국제법 및 국내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이 행사되는 영해의 외측 한계선에 인접하거나 외측한계선 밖(협정에서 정하는 경우만 해당 한다)의 해저·해저층을 포함한 해양지역

○ 캐나다 : (원산지 부호 CA)

- 캐나다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영공·내수 및 영해, 국제법과 캐나다의 국내법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

☐ 협정발효 적용시점 : 협정발효일('15.1.1) 오전 0시 신고분부터 적용

☐ 협정발효 경과 규정(FTA특례법 시행령 부칙)

- 발효 전에 작성·서명된 원산지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그 서명일부터 2년

☐ 특혜관세 신청절차(제4.2조)

- 원산지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 당시에 특혜관세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특혜관세 사후신청 가능
- 수입통관 후 1년 또는 수입국의 법과 규정에 명시된 기간까지 사후환급 신청 가능

☐ 특혜관세대우 거부(제4.7조)

- 수입 당사국은 다음의 경우 법과 규정에 따라 특혜관세대우 신청을 거부하거나 자국법에 따라 미납된 관세를 징수
- 가. 상품이 협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 나.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협정에서 정한 모든 관련 요건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 운송 원칙 : 통과 및 환적(제3.16조)

- 비당사국 영역을 통과하여 운송되는 물품은 다음이 충족되어야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

- ① 상품이 하역, 운송상 이유로 인한 분리, 개선적 또는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모든 공정 이외에 그 비당사국의 영역에서 어떠한 추가 생산이나 그 밖의 공정을 거치지 아니한다는 것
- ② 상품이 한쪽 또는 양 당사국 영역 밖에서 세관 통제하에 있어야 함
- ③ 상품이 그 비당사국의 영역에서 거래 또는 소비되지 아니하여야 함

☐ 수리 또는 개조 후 재반입되는 상품(제2.6조)

-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하여 자국 영역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 으로 일시적으로 수출된 후 자국 영역으로 재반입되는 상품에 대하여 원산지와 관계없이 무관세 적용

- 수리 또는 개조 후 재반입되는 상품에 대한 무관세 적용의 예외
 - 캐나다 해상법에 따라 등록된 HS 제89류 15개 세번에 대해서는 캐나다 양허표에 따른 관세율 부과 가능
 - ※ (대상품목) 89011010, 89011090, 89012010, 89012090, 89019091, 89019099, 89020010, 89040000, 89051000, 89052010, 89052020, 89059010, 89059090, 89069091, 89069099

☐ 상업용 견본품과 인쇄된 광고물(2.5조)

-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수입되는 무시할만한 가치의 상업용 견본품과 인쇄된 광고물에 대하여 원산지에 관계없이 무관세 반입을 허용

가. 견본품이 다른 쪽 당사국이나 비당사국의 상품, 또는 다른 쪽 당사국이나 비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제공되는 서비스의 주문을 권유하기 위해서만 수입될 것

나. 광고물이 포장단위로 수입되고 각 포장이 1부를 초과하지 않고 광고물 및 포장이 탁송물의 일부를 구성하지 아니할 것

4. 원산지 결정기준

☐ 원산지 상품(제3.1조)

- 상품이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된 경우
- 상품이 협정 제 3.3조에 따른 충분한 생산을 거친 경우 또는, 그 상품이 원산지 재료로만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전적으로 생산된 경우
- 그 상품이 원산지규정에 따른 그 밖의 모든 적용 가능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완전생산기준(제3.2조)

-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채취되거나 추출된 광물과 그밖의 천연자원 등 협정 제3.2조에 규정
- EEZ에서 어획한 수산물의 경우 기국주의 원칙 적용(당사국에 등록·등기되고 그 국가의 국기를 게양할 자격이 있는 선박의 국적을 따름)

☐ 충분생산 기준(제3.3조)

- 양국 영역에서 품목별원산지기준의 조건과 여타 원산지조건을 충족 하는 경우 충분한 생산을 거쳤다고 간주
- 일반원칙으로 최종재와 중간재가 동일한 HS 6단위이나, 더 이상 6단위로 분류되지 않는 동일한 4단위로 분류되는 경우, 일정 부가가치 기준을 충족시키면(역외산재료 55% 이하) 원산지로 인정
- ※ 단, 농산물(1류~21류), 플라스틱 일차제품, 섬유·의류는 제외

☐ 실질적 변형기준(제3.4조)

-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더라도 실질적 변형(세번변경 및 부가가치 기준)이 이루어진 경우 원산지로 인정하되, PSR에서 구체적으로 규정

가. 세번변경기준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상품을 생산함에 있어 일정한 세번변경을 거친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

나. 부가가치기준

- ① 거래가격/공장도가격 또는 순원가를 기준으로 역외산 재료 사용 비율의 상한선을 규정(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에 따라 세부기준 적용)
- ② 순원가를 이용한 계산법과 집적법은 자동차에 한해 적용

$$\text{역내가치포함비율(RVC)} = \frac{\text{원산지재료가치(VOM)}}{\text{거래가격(공장도가격)}} \times 100$$

☐ 중간재(roll-up)기준(제3.5.1조)

- 비원산지 재료가 충분한 생산(공정)을 거치는 경우 원산지상품으로 간주하며, 이후 동 상품이 중간재로서 다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경우, 비원산지 재료 가치 비율은 고려되지 않음

☐ 누적기준(제3.7조)

- 하나 이상의 생산자에 의해 어느 한쪽 또는 양당사국 내에서 생산된 경우,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가 충분한 생산(공정)을 거치고 여타 원산지 조건을 충족하면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

☐ 최소허용기준(제3.8조)

- 비원산지 재료가 해당 품목의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모든 비원산지 재료가가치 상품 가치의 10%이하인 경우 원산지 상품 인정
- 제50 ~ 제63류(섬유 및 의류)에 대해서는 상품 또는 부분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원사의 총중량이 상품 중량의 10% 이하로 사용되는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
- 제1류 ~ 제21류에 대해서는 비원산지 재료가 상품과 다른 소호(HS 6단위)로 분류되지 않는 한, 미소기준 적용에서 배제

☐ 대체가능 재료 및 상품(제3.9조)

- 대체 사용가능한 재료 및 상품의 원산지 판정 특례를 인정
 - 대체가능한 재료 및 상품을 사용하여 생산한 상품에 대해 원산지 판정의 간소화 및 무역편의 증진을 위해 재고관리법에 따라 원산지를 판정

☐ 간접 재료(제3.14조)

- 상품의 생산, 시험, 또는 검사에 사용되었으나, 완제품에 포함되지 않거나, 상품의 생산과 연계된 설비·건물의 유지 또는 설비의 운영에 사용된 간접재료는 원산지 결정시 고려하지 않음

☐ 영역원칙(제3.15조)

- 원산지 지위를 획득하기 위한 조건은 한쪽 또는 양 당사국 영역에서 중단없이 충족되어야 함

☐ 품목별 원산지 기준(PSR)

- 주요 품목별 원산지결정 기준

품 목	원산지 결정기준
자동차	- 미국산 자동차 부품에 대한 상호누적 인정을 허용한 부가가치 기준에 합의(집적법 35%, 역외산재료 55% 이하, 순원가에 의한 역외산재료 65%이하 중에서 선택)
기계, 전자기기	- 대부분 6단위 또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 - 제품에 따라 선택적 부가가치(역외산재료 55%이하)기준 사용
철강, 철강제품	- 철강 : 4단위 세번변경기준 - 철강제품: 대부분 4단위 또는 6단위 세번변경기준, 일부품목은 선택적부가가치(역외산재료 55%이하)기준 사용
고무	-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도입하면서 일부 품목의 경우 선택적 부가가치 기준(역외산재료 65%이하) 사용
섬유, 의류	- 세번변경기준과 염색·날염공정 인정 등 완화된 기준 합의
농수산물	- 대부분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하며, 신선농수산물(제1류~제14류)의 경우, 완전생산기준에 근접한 원산지기준(2단위 세번변경기준) 적용 ※ 육류의 경우, 닭고기를 제외하고 도축을 통해 원산지 지위를 부여하도록 허용(한-미 FTA와 동일)

5. 원산지증명 방식(제4.1조)

☐ 발급방식 : 자율발급

☐ 발급주체 : 수출자, 생산자

- 수출자가 상품의 생산자가 아닌 경우 아래에 근거하여 원산지 증명서 작성·서명

- ① 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었다는 수출자의 인지
- ② 생산자의 서면 진술서에 대한 수출자의 합리적인 신뢰

③ 생산자가 수출자에게 자발적으로 제공한, 그 상품을 위하여 작성 하고 서명한 원산지 증명서

☐ 원산지 증명서의 유효기간

- 서명일로부터 2년
- 협정 발효 전에 서명되거나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도 인정 가능

☐ 포괄원산지증명 유효기간

- 포괄증명의 시작일부터 종료일 (From ~ To)
 - 증명일은 서명일보다 앞설 수 있음
- 포괄증명기간 : 12개월(포괄증명기간 내에 수입되는 것을 기준)

☐ 소액물품 원산지증명서 면제(제4.3조)

- 수입물품 과세가격이 미화 1천 달러 이하의 소액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 증명 면제
 -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증명서발급이 면제되지 않음

- ① 당사국 법의 준수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
- ② 소액수입이 사전에 계획된 일련의 수입의 일부분으로 활용되는 경우

6. 수입물품의 원산지결정 등에 관한 사전심사(제4.7조)

☐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원산지결정 등에 관한 사전심사를 요청할 수 있음

- 신청인 :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
- 대상업무 : 품목분류, 관세평가기준의 적용,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사안
- 효력 발생 : 결정서가 발급된 날 또는 사전심사결정에 명시된 다른 날
- 효력 유효기간 : 5년
- ※ 처리절차는 한-미 FTA 집행 지침 참조

7. 원산지 검증, 서류보관의무

☐ [검증방식]

- 수입국 세관당국이 수출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 등에 대해 서면 조사 또는 검증방문을 통해 원산지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는 직접 검증 방식
- 검증 방문을 수행하기 전에, 당사국은 자국의 관세행정기관을 통하여 방문수행 의사에 대한 서면통보를 전달
 - 방문할 사업장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
 - 다른쪽 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
 - 요청시, 방문을 제안하는 당사국 영역 내의 당사국 대사관
- 30일 이내에 검증방문 요청에 대한 서면 동의 필요

가. 통보서를 발급한 관세행정기관의 신원

나. 방문할 사업장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이름

다. 검증방문 예정일자 및 장소

라. 검증 대상인 상품에 대한 구체적인 참조를 포함하여, 예정된 검증 방문의 목적과 범위

마. 검증 방문을 수행하는 공무원의 이름과 직위

바. 검증 방문을 위한 법적 권한

-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방문검증에 동행할 참관인 지정 가능

○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1회에 한해 최대 60일까지 방문검증 연기 가능하며, 수입국은 이러한 연기를 이유로 특혜관세 배제 불가

○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30일 이내에 방문검증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특혜관세 배제

□ 수출자, 생산자 자료보관 사항(제4.5조)

○ 서류보관기간 : 서명된 날로부터 5년

○ 수출자, 생산자 보관 서류 : 원산지 상품이라는 것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모든 기록

<FTA특례법상 보관 서류>

수 출 자	생 산 자
- 계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제공한 원산지증명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사본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사본 - 수출신고필증 - 당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입신고 필증(수출자의 명의로 수입신고한 경우에 한한다) - 수출거래 관련 계약서 - 당해 물품 및 원재료의 생산 또는 구입 관련 증빙서류 - 원가계산서·원재료내역서 및 공정명세서 - 당해 물품 및 원재료의 출납·재고관리대장 - 생산자[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를 공급하거나 생산한 자(이하 “재료생산자”라 한다)를 포함한다]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 증명을 위하여 작성한 후 수출자에게 제공한 서류	- 수출자 또는 계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당해 물품의 원산지의 증명을 위하여 작성·제공한 서류 - 수출자와의 물품공급 계약서 - 제2호 다목 및 마목 내지 사목의 규정에 따른 서류 - 재료생산자가 해당재료의 원산지 증명을 위하여 작성한 후 생산자에게 제공한 서류

□ 수입자 자료보관 사항

○ 서류보관기간 : 수입일로부터 5년

○ 수입자 보관 서류 : 원산지 상품이라는 것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모든 기록

- 원산지증명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사본. 다만, 협정에 따라 수입자의 증명 또는 인지에 기초하여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는 경우로서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수입물품이 협정 관세의 적용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 수입신고필증, 수입거래 관련 계약서, 지식재산권거래 관련 계약서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수입물품의 국제운송 관련 서류
- 사전심사서 사본 및 사전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사전심사서를 교부 받은 경우에 한한다).

14. 한-콜롬비아 FTA

1. 대한민국과 콜롬비아 공화국간의 자유무역협정 발효에 따른 운영지침 통보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1757, 2016-07-13(등록일자)

1. 2016. 7. 15.(금)에 발효되는 「대한민국과 콜롬비아 공화국간의 자유무역협정」의 관세행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시달합니다.
2. 각 세관장은 동 협정과 지침내용을 확인하여 직원교육 실시, 홈페이지 게시 및 관련업계 공지 등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과 콜롬비아 공화국간의 자유무역협정 발효에 따른 운영지침

※ 동 지침은 '대한민국과 콜롬비아 공화국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는 날에 시행함

□ [협정발효] '2016. 7. 15. 오전 0시부터 적용

1. 용어의 정의

- ☐ [기업] 회사·신탁·파트너십·단속소유기업·합작투자·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조직을 포함하며 영리목적 여부, 민간이나 정부소유·지배여부와 관계없이 적용 가능한 법에 따라 구성되거나 조직된 모든 실체
- 당사국의 기업은 당사국의 법에 따라 구성되거나 조직된 기업
- ☐ [국민]
- (한국) 「국적법」상 한국의 국민
 - (콜롬비아) 콜롬비아 헌법 제96조에 따라, 출생 또는 귀화에 의한 콜롬비아인
- ☐ [당사국 상품] 국내 상품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그러한 상품을 말하며, 그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을 포함
- ☐ [원산지] 제3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에 규정된 원산지 규정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
- ☐ [특혜관세대우] 원산지 상품에 대하여 적용가능한 관세율(한·콜 협정)
- ☐ [영역]

한 국	콜롬비아
한국이 주권을 행사하는 육지·해양 및 상공, 그리고 한국이 한국의 법과 국제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하는 영해의 외측한계에 인접하고 그 한계 밖에 있는 해저 및 하부토양을 포함한 해양지역	대륙 및 섬으로 된 콜롬비아의 영토, 콜롬비아의 상공과 해양 및 해저, 그리고 콜롬비아가 콜롬비아 헌법, 콜롬비아의 법 및 적용가능한 국제조약을 포함한 국제법에 따라 주권,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하는 그 밖의 요소

2. 협정 관세율

- ☐ 양허품목
- 한·콜롬비아 협정 제2.3조(부속서 2-가) 및 FTA관세특례법 제2조제11항(별표 12)에 해당하는 물품
- ☐ 계절관세 적용품목
- 품목: 신선포도(0806.10-0000)
 - 적용기준: 수입신고일자
 - 세율이 인상될 예정인 물품은 우리나라에 도착한 후에 수입신고하여야 하는 바, 계절관세 적용기간(높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기간)에 입항하는 물품은 도착된 후에 수입신고 하여야 함

<한-콜롬비아 FTA 계절관세 품목>

HSK	품명	관세율	적용 기간
0806.10-0000	신선 포도	45%	5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반입되는 상품
		16년 균등 철폐	11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반입되는 상품

☐ 수입권 추천방식 TRQ 품목

- 주무부 장관이 위임한 기관에서 추천을 받은 후 해당 추천서를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
- 해당품목: 탈지분유(0402.10) 및 전지분유(0402.21)
- * 제0402101010호, 제0402101090호, 제0402109000호, 제0402211000호, 그리고 제0402219000호
- 쿼터물량: 연간 총 100미터톤 이하(무관세 수입)
- 농수산물식품유통공사가 할당을 운영하며, 분기별 공매를 통해 쿼터 내 물량 배분

☐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 대상 품목

-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은 쇠고기(HS 0201.30, 0202.30)와 만다린(HS 0805.20-9000)

<기준 발동 물량 및 특별긴급관세율>

품목	HSK	기준발동물량(특별긴급관세율)			
		‘16년	‘17년	‘18년	‘19년
쇠고기 (20년 철폐)	0201.30-0000 0202.30-0000	9,900톤 (40%)	10,098톤 (40%)	10,299톤 (40%)	10,505톤 (40%)
만다린 (21년 철폐)	0805.20-9000	7,223톤 (144%)	7,367톤 (144%)	7,514톤 (144%)	7,665톤 (144%)

특별긴급관세 대상물품 운영 방법

- ① (대상) 보세구역에 장치한 이후 수입신고되는 물품
 - 한도 내 물량: FCO1 ~ FCO5
 - 한도 초과 물량: FCO7
- ② 통관절차
 - 기준수량에 도달하는 날의 전날까지는 **선착순방식**으로 수입신고
 - 한도수량에 도달한 날에 수입신고된 물품은 잔여수량을 그날에 수입 신고된 수량(수입신고수리된 수량에 한한다)에 비례하여 각각 배분
- ③ 잔여수량의 게시: 배분절차가 완료되는 날까지 품목별 총수량·사용수량과 잔여수량을 관세청 FTA포탈(fta.customs.go.kr)을 통해 게시

3. 일시수입물품의 관세면제

☐ 대상 품목(원산지과 관계없이 무관세 일시반입 허용)

- 언론매체 또는 텔레비전을 위한 장비, 소프트웨어, 그리고 방송 및 영화촬영 장비 등 일시 입국하는 사람의 영업활동, 거래 또는 직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장비
-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상품
- 상업용 견본품과 광고용 필름 및 기록물
- 스포츠용으로 반입되는 상품

☐ 적용 조건

- 콜롬비아 국민 또는 거주자의 영업, 거래, 직업 또는 스포츠 활동을 수행하는데 사용될 것
- 대한민국에서 판매 또는 임대되지 아니할 것
- 재수출될 때까지 다른 물품과의 식별이 가능할 것
- 관세 등이 면제되는 세액(100분의 100) 상당의 담보 제공
- 사용 목적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수량 이내
-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내에 재수출될 것(1년 추가연장 가능)

4. 수리 또는 개조 후 재반입 상품

☐ 대상 품목

-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하여 콜롬비아로 일시적으로 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물품으로 아래 사항은 고려하지 아니함
 - 한국산 또는 콜롬비아산 상품인지 여부
 - 대한민국에서 수리 또는 개조가 가능한지 여부
 - 수리 또는 개조가 그 상품의 가치를 증가시켰는지 여부

☐ ‘수리 또는 개조’의 범위에서 제외

- 상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파괴하거나 새로운 또는 상업적으로 다른 상품을 만드는 것, 또는
- 미완성 상품을 완성품으로 생산 또는 조립하는 작업이나 과정

5. 특송화물

☐ 콜롬비아로부터 수입하는 미화 100불 이하의 특송화물은 수입신고 생략 및 관세 면제

6. 상업용 견본품 및 인쇄된 광고물

- ☐ 상업용 견본품(無가치), 인쇄된 광고물은 무관세 반입
- 원산지와 관계없이 관세가 적용되지 않음
 - 견본품은 다른 쪽 당사국이나 비당사국의 상품, 또는 다른 쪽 당사국이나 비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제공되는 서비스의 주문을 권유하기 위해서만 수입될 것
 - 광고물이 포장단위로 수입되고 각 포장이 1부를 초과하지 않고 광고물 및 포장이 탁송물의 일부를 구성하지 아니할 것

III. 원산지 규정 및 절차

1. 원산지 상품

☐ 일반 원칙

- 상품이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된 경우
- 상품이 협정 부속서 3-가에 규정된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또는
- 상품이 전적으로 원산지재료로만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경우, 그리고
- 상품이 협정 제3장에 따른 그 밖의 모든 적용 가능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완전생산기준

- ①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추출되거나 채취된 광물과 그 밖의 천연자원
- ②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배 및 수확된 식물성 상품
- ③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출생·사육된 살아있는 동물
- ④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출생·사육된 살아있는 동물로부터 획득된 상품
- ⑤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토에서 수렵 또는 낚시양에 의하거나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행된 어로 또는 양식에 의해 획득된 상품

단, 비당사국의 선박에 의해 양 당사국의 영역 내의 바다에서 잡힌 어획물 및 그 밖의 상품은 완전하게 획득하거나 생산된 것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 ⑥ 한쪽 당사국에 등록되거나 등기되고 그 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할 자격이 있는 선박에 의하여 양 당사국의 영역 밖의 바다, 해저, 해상 또는 하층토에서 잡힌 어류, 패류 및 그 밖의 해양생물
- ⑦ 제6호에 언급된 어류, 패류 또는 그 밖의 해양생물로부터 가공선박에서 생산된 상품. 다만, 가공선박은 당사국에 등기되고 당사국 국기를 게양한 선박
- ⑧ 어류·패류 및 그 밖의 해양생물을 제외하고,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밖의 해저, 해상 또는 하층토에서 당사국 또는 당사국의 인에 의하여 채취되거나 추출된 상품. 다만, 그 당사국 또는 그 당사국의 인은 그러한 해저, 해상 또는 하층토를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함
- ⑨ 우주에서 취득된 상품. 다만, 당사국 또는 당사국의 인에 의하여 획득되고 비 당사국의 영역에서 가공되지 아니하여야 함
- ⑩ 폐기물 및 부스러기로서 원재료 회수용으로 적합한 것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 또는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집된 중고품

- ⑪ 이 조에서 언급된 상품 또는 그 파생품만으로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전적으로 생산된 상품

☐ 역내가치포함비율

- 공제법(RVC)= $\frac{\text{조종가치(AV)} - \text{비원산지재료가치(VNM)}}{\text{조정가치(AV)}} \times 100$
- 집적법(RVC)= $\frac{\text{원산지재료가치(VOM)}}{\text{조정가치(AV)}} \times 100$

$$\text{순원가법(NC)} = \frac{\text{순원가(NC)} - \text{비원산지재료가치(VNM)}}{\text{순원가(NC)}} \times 100$$

- 자동차 상품(제 8701호 내지 8705호(자동차) 및 제 8706호(샤시))에만 적용되며, 평균법 사용 가능

순원가란 해당 생산자가 생산한 모든 물품의 총원가에서 판매촉진비, 마케팅비, 판매 후 서비스비, 로알티, 운송·포장비, 비허용 이자비(생산자가 소재하는 계약당사국의 중앙정부가 발행한 비슷한 만기의 국제수익률에 1만분의 700을 더하여 계산한 값을 초과하는 이자비용을 말한다)를 차감한 비용을 말한다.

☐ 세번변경 기준

- 한·콜롬비아 협정 부속서 3-가 및 FTA관세특례법 시행규칙 별표 제10의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세번변경기준은 비원산지재료에만 적용하며, 그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재료의 세번이 변경되어야 충족
- 원산지결정기준으로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고, 해당 류, 호 또는 소호에서 특정 품목번호를 제외하도록 규정한 경우, 그 특정 품목번호에 해당하는 재료는 원산지재료이어야 함

☐ 중간재(Roll-up) 기준

“중간재”란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를 사용하여 생산된 물품으로서 다른 물품의 생산에 재료로 사용되는 물품을 말한다

- 원산지상품이 다른 상품의 생산에 재료로 사용되는 경우, 다른 상품의 원산지를 결정할 때 재료가 된 원산지상품의 비원산지 재료는 고려하지 않음(모두 원산지재료로 취급)
- 비원산지 상품이 다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경우, 다른 상품의 원산지를 결정할 때 재료가 된 비원산지상품의 비원산지 재료만 고려

☐ 누적 기준

- (재료누적)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이나 재료가 다른 쪽 당사국 영역에서 상품에 결합된 경우, 다른 쪽 당사국 원산지로 간주

① 한국산 상품(재료) → ②콜롬비아로 수출(특혜적용) → ③콜롬비아에서 가공·생산·결합 → ④ 한국 수입: 콜롬비아산 상품으로 간주

- (공정누적) 상품이 하나 이상의 생산자에 의해 한쪽 또는 양 당사국 내에서 생산된 경우, 비원산지 재료가 충분한 생산(공정)을 거치고 원산지 조건을 충족하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

☐ 최소허용기준

-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품이나, 그 생산에 사용되었으며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조정가치의 10%이하일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
- 제1류 ~ 제24류에 해당하는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재료는 해당 상품의 소호(HS6단위)와 다른 소호에 분류될 때만 적용
- 제1501호 ~ 제1508 또는 제1511호 ~ 제1515호로 분류되는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제15류의 비원산지재료는 미소기준 적용 불가
- 제50류 ~ 제63류(섬유 및 의류)로 분류되는 상품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섬유 또는 원사의 총중량이 최종 상품 중량의 10%이하일 경우에는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

☐ 대체가능 상품

- 대체 사용가능한 상품의 원산지 판정 특례 인정
 - 대체 상품은 상품이 물리적으로 분리 또는
 - 당사국의 일반적 회계원칙 또는 달리 인정되는 재고관리기법(평균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에 따라 구별되어야 함

☐ 부속품, 예비부품 및 공구

- 상품과 함께 인도된 부속품, 예비부품 또는 공구는 별도의 송장이 발부되지 않아야 하며, 원산지는
 - 세번변경기준일 경우에는 고려되지 않음
 - 부가가치기준일 경우에는 원산지 또는 비원산지재료로 산정

☐ 세트 상품

- 포장재료 및 용기를 포함한 모든 구성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어야 함
 - 비원산지 구성 상품이 포함된 경우, 비원산지 상품의 가치가 전체 세트상품의 조정가치의 15% 이하일 때는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

☐ 불인정 공정

- 아래 공정 또는 공정들의 조합을 수행한 경우 원산지상품 불인정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① 운송되고 보관되는 동안 상품이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하는 보존공정② 포장의 변경 또는 포장물의 해체 또는 조립③ 세탁, 세척, 먼지·녹·기름·페인트 또는 그 밖의 막의 제거④ 방직용 섬유·다림질 또는 압착⑤ 단순한 페인팅 및 광택 공정⑥ 곡물 및 쌀의 탈각, 부분 또는 전체 표백, 연마 및 도정⑦ 병·캔·플라스틱·가방·케이스·상자에 단순히 넣기, 카드 또는 판에 붙이기, 그리고 그 밖의 모든 단순한 포장 공정⑧ 상품 또는 그 포장에 마크, 라벨, 로고 및 이와 유사한 구별표시의 부착⑨ 제품의 단순한 혼합, 모든 재료와 설탕의 혼합, 당류 착색이나 착향 또는 각사탕 공정, 결정당의 부분 또는 전체 제분⑩ 부품의 단순한 조립 또는 상품의 부품으로의 분해⑪ 동물의 도살⑫ 과일, 견과류 및 채소에 대한 탈피, 씨 제거 및 탈각⑬ 연마, 단순 분쇄 또는 단순 절단⑭ 감별, 체질, 선별, 분류, 등급화 또는 매칭(물품 세트 구성 포함) |
|--|

2. 직접 운송 및 영역원칙

☐ 직접 운송

- 비당사국 영역을 통해 운송되는 상품은 다음 사항이 모두 증명되어야만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① 하역, 운송 이유로 한 분리, 재선적 또는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정 이외에, 비당사국의 영역에서 어떠한 추가 생산이나 공정도 거치지 않아야 함② 비 당사국 영역에서 세관 통제 하에 머물러 있어야 함③ 비 당사국 영역에서 거래 또는 소비되지 않아야 함 |
|--|

- 수입국 세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아래 서류를 제출해야 함
 - 비당사국 영역에서의 상품의 환적 또는 보관 관련 증거 또는,
 - 비당사국 관세당국*에서 발급한 서류(비가공증명서 등)
 - * 세관 외에도 권한 있는 당국을 포함

☐ 영역 원칙

- 당사국에서 비당사국으로 수출된 원산지 상품이 재반입되는 경우 비원산지 상품으로 간주
 - 다만, ① 재반입 상품이 수출된 상품과 동일하고 ② 수출된 동안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것 외에 어떠한 공정도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

- 개성공단물품에서 생산된 물품은 부속서 3-나에 따름
 - * 100개 품목(섬유, 기계, 전기·전자제품, 시계 등)
- 비원산지 총 투입가치가 최종상품 FOB의 40% 이하일 것

3. 원산지증명 방식

☐ [발급 방식] 자율발급

☐ [발급 주체]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작성하고 서명함

- 자국 영역의 수출자가 상품의 생산자가 아닌 경우 다음에 근거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작성·서명

- ① 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췄다는 수출자의 인지 또는
- ② 생산자가 제공한 원산지증명서 또는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었다는 서면 신고서

☐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서명일 후 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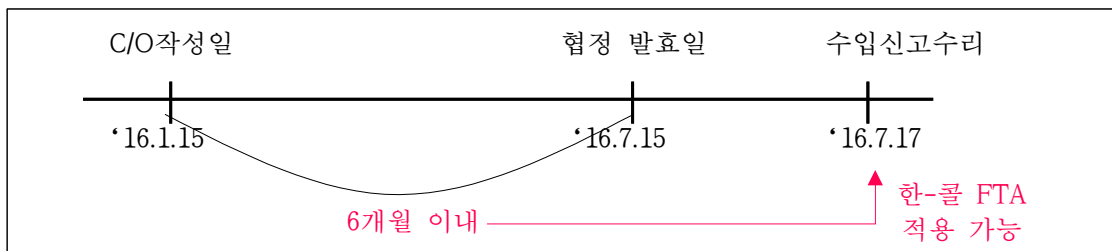
☐ [포괄 원산지증명기간] 원산지증명서에 명시된 기간(12개월 이내)

- 포괄증명의 시작일은 서명일보다 앞설 수 있으며, 포괄증명기간 내에 수입되어야 함

☐ [원산지증명서 면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이 미화 1천 달러이하인 경우

☐ [협정발효일 이전에 작성한 원산지증명서] 원산지상품의 수입신고서가 협정의 발효일 또는 그 이후에 작성된 경우, 협정 발효일 전 6개월 이내에 작성·서명된 C/O는 인정

〈협정발효일 이전에 작성한 원산지증명서 사례〉



☐ 원산지증명서 서식 : 부록 참조

IV. 원산지 검증 및 사후조치

1. 원산지검증 방식

☐ [검증방법] 자료제출요구, 간접검증과 직접검증 모두 가능

- 수입자에게 서면으로 추가 정보 요청
- 계약상대국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서면 정보 요청
- 수출국 관세당국에 간접검증 요청
- 수출국 세관직원과 동행하여 수출자 또는 생산자 방문조사
 - 수출국 세관직원은 방문조사 시 참관인

☐ [자료제출]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는 30일 내에 자료 제출 의무

- 미 제출시 서면통보와 더불어 30일의 추가자료제출 기간 부여
 - 2차례의 자료제출 기간 경과 시 특혜적용 배제

☐ [간접검증]

- 수입국 세관은 C/O(사본 가능) 및 요청사유를 수출국 세관에 제공

○ 수출국 세관은 조사결과와 증빙서류를 수입국 세관에 회신

- ① 원산지증명서가 진본인지 여부
② 해당 상품의 원산지기준 충족여부와 제3장의 요건 충족여부
③ 원산지 상품인 경우 원산지 지위 취득에 관한 세부적인 설명

○ 150일 이내에 회신이 없거나 회신결과에 충분한 정보가 포함 되지 않은 경우 수입국 세관은 특혜배제 가능

☐ [방문검증]

- 수입국 세관은 상대국 수출자(또는 생산자) 및 수출국 세관에 방문조사 서면통보하고,
- 서면통보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상대국 수출자(또는 생산자)가 서면으로 동의하여야 방문검증 가능
 - 방문조사에 동의하지 않거나, 기간 내에 서면동의서를 회신하지 않으면 특혜배제 가능
 - 통지 받은 후 15일 이내에 1회에 한해 방문조사 연기 신청 가능(최초 통보일부터 60일 이내)하며, 수입국·수출국 세관에 통보
- 검증 방문 종료 후, 수입국 세관은 수출자(또는 생산자)에게 특혜적용 여부에 대한 서면결정서 송부

☐ [자료보관 기간]

- (수출자·생산자) 원산지증명서 발급일 후 5년
- (수입자) 상품의 수입신고수리일 후 5년
- 디지털 · 전자 · 광학 · 자기 또는 서면의 형태 등으로 자료보관 가능

☐ [비당사국 송장] 비당사국에 소재하는 회사 또는 수출자가 송장을 발급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원산지증명서 거부 금지

2. 특혜 적용 배제

☐ 제3장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특혜관세대우 적용을 위한 요건을 미준수한 경우

3. 용어의 정의

☐ [수출자]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며 상품을 수출하는 자

☐ [생산자] 당사국의 영역에서 상품의 생산에 종사하는 자

☐ [수입자]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며 상품을 수입하는 자

☐ [조정가치] 관세평가협정에 따라 결정된 상품의 본선인도 가격의 가치, 본선인도가격 가치가 없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관세평가협정에 따라 결정된 가치

☐ [양식] 수생생물*을 알·치어·작은 물고기 및 유생동물 같은 종자로부터 기르는 것
* 어류·연체동물·갑각류·그 밖의 수생 무척추동물 및 수생식물

☐ [CIF] 상품이 수입항구에서 운송수단으로부터 하역될 때, 지정된 목적 항구까지 상품을 운송하는데 필요한 상품, 보험 및 화물비용을 포함하여, 상품에 대하여 수출자에게 실제로 지불하였거나 지불해야하는 가격(관세평가협정에 따라 평가)

☐ [FOB] 상품이 지정된 수출 항구에서 운송선에 적재될 때, 상품의 비용 및 운송선에 상품을 적재하는 데 필요한 모든 비용을 포함하여, 상품 수출자에게 실제로 지불되거나 지불가능한 가격(관세평가협정에 따라 평가)

☐ [상품] 모든 제품, 생산품, 물품 또는 재료를 말한다.

☐ [간접재료]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나, 상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지 아니하고 그 일부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물품

- ① 연료 및 에너지
 - ② 공구, 금형 및 주형
 - ③ 설비 및 건물의 유지에 사용되는 예비부품 및 재료
 - ④ 생산에 사용되거나 설비 및 건물의 운영에 사용되는 윤활제·그리스·혼합물 및 그 밖의 재료
 - ⑤ 장갑, 안경, 신발, 의류, 안전장비 및 보급품
 - ⑥ 상품의 시험 또는 검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설비·장치 및 보급품
 - ⑦ 촉매제 및 용제
 - ⑧ 상품에 결합되지는 않으나 그 상품 생산에 일부로 사용되었음이 입증될 수 있는 그 밖의 상품

- ☐ [생산] 상품의 재배·채굴·수확·어로·번식·사육·덫사냥·수렵·제조 또는 조립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작업 또는 가공
- ☐ [재료] 부품 또는 원료를 포함하여 다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상품
- ☐ [자가생산재료] 상품의 생산자에 의하여 생산되고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 ☐ [순원가] 총비용에서 총비용에 포함되어 있는 판촉·마케팅 및 판매후 서비스 비용, 로열티, 운송 및 포장비용, 그리고 비허용 이자비용을 차감한 것
- ☐ [비원산지 상품 또는 재료] 원산지상품 또는 재료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상품 또는 재료

4. 사전 심사

- ☐ 상품이 수입되기 전에 다음 사항에 대해 사전심사 요청 가능
 - (신청인) 수입자, 상대국 수출자 또는 생산자
 - (대상업무) 품목분류, 관세평가기준의 적용, 원산지 상품여부,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사안
 - (기간) 신청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결정
- <FTA 특례법상 사전심사 신청절차>
- ※ 기재 생략

☐ 협정관세율 구분부호별 적용물품 예시

부호	설명	적용물품(예)	비 고
FCO1	- 하나의 품목번호에 1개의 협정세율이 적용되는 물품 - 하나의 품목번호에 서로 다른 협정세율이 있는 것 중 최고세율 적용물품	HSK 0101.21-1000(말): 0%	기본세율: 8%
FCO2	하나의 품목번호에 여러 개의 다른 협정세율이 있는 것 중 최고세율인 FCO1을 제외하고 높은 세율 순으로 FCO2, FCO3, FCO4, FCO5 순차적으로 부여	HSK 0305.72-9000(어류 머리)	기본세율: 20%
FCO3		- 혼제한 청어 : 0%	
FCO4		- 건조한 청어 : 16%	
FCO5		- 건조한 조기 : 17.1%	
		- 건조한 멸치 : 18%	
		향후 적용될 새로운 관세율 등록을 위한 잔여부호	
FCO6	추천이 필요한 물품 중 추천을 받은 물품	HSK 0402.10-1010(탈지분유) - 적용물량(100MT) 이내, 추천 有	미추천시 FCO1
FCO7	긴급수입제한조치 품목 중 기준물량을 초과한 물품	HSK 0201.30-0000(소고기) 40%(기준발동물량 초과시)	미초과시 FCO1

15. 한-터키 FTA

1. 대한민국과 터키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운영지침 시달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 2013-04-10(제정일자)

1. 2013.5.1일부터 발효예정인 「대한민국과 터키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관세행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시달합니다.
2. 각 세관장은 동 협정과 지침내용을 확인하시고 직원 교육실시, 홈페이지 게시 및 관련업계 공지 등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대한민국과 터키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운영지침 1부.

「대한민국과 터키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발효에 따른 운영지침

이 지침에서 「터키와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은 ‘협정’이라 하고, 동 협정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에 관한 의정서」는 ‘원산지의정서’라 하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은 각각 ‘특례법’, ‘특례법 시행령’, ‘특례법 시행규칙’이라 하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는 ‘특례고시’라고 함

※ 동 지침은 협정이 발효되는 날에 시행함

1. 협정적용 영역

- 대한민국 : (원산지 부호 KR)
 - 한국 주권하의 육지, 해양 및 상공, 그리고 한국이 국제법과 그 국내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해의 외측한계에 인접하고 그 한계 밖에 있는 해저 및 하부토양을 포함한 해양 지역
- 터키공화국 : (원산지 부호 TR)
 - 영토, 내수, 영해 및 그 상공, 그리고 국제법에 따라 생물이나 무생물 천연자원의 탐사, 개발 및 보존을 목적으로 터키가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해양지역

※ 협정 제1.3조(일반정의)

2. 원산지증명 방식

☐ [수출자 자율발급방식] 해당 제품이 확인될 수 있도록 충분히 상세하게 그 제품을 기술하는 송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 상에 수출자가 원산지신고서 문안을 작성

- ※ 원산지의정서 제16조(원산지 신고서), 제17조(원산지 신고서 작성 조건)
- ※ 원산지의정서 부속서 3(원산지 신고서 문안)

☐ 원산지 신고서의 유효기간 : 수출 당사국에서 발급된 날부터 12개월

※ 원산지의정서 제18조(특혜관세대우 신청과 원산지 신고서의 제출)

☐ 원산지 신고서 면제 대상물품과 면제 기준

- 사인 간 소포로 송부되는 물품과 여행자의 개인 수화물의 경우 아래의 금액 이하의 물품은 원산지신고서가 면제됨
 - 터키로 수입되는 경우 : (소포) 500유로, (여행자 개인수화물) 1,200유로
 - 한국으로 수입되는 경우 : 미화 1,000달러
- ※ 송품장이나 구매영수증 등에 표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미화 이외의 통화로 표시된 경우 관세법 제18조에 따른 과세환율로 환산한 금액

※ 원산지의정서 제20조(원산지 신고서의 면제)

☐ 무역거래 관행상 송품장이 비당사국에서 다시 발행되는 경우에도 원산지신고서는 수출당사국의 수출자가 작성하여야 함

※ 원산지의정서 제27조(제3국 송장)

☐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이 적용될 수 있는 HS 제16부 및 제17부 또는 제7308호 및 제9406호의 물품은 분할 수입되는 경우에도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에 대한 단일 원산지신고서로 협정관세 적용 가능

※ 원산지의정서 제19조(분할 수입)

3. 원산지신고서 관련사항

☐ 원산지신고서 문안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① preferential origin.

.....②

(Place and date)

.....③

(Signature of the exporter, in addition the name of the person signing the declaration has to be indicated in clear script)

- ◆ ①란 : ‘제품의 원산지를 작성 (예 : KR, KOREA, TR, TURKEY)
- ◆ ②란 : ‘원산지신고서 작성장소와 작성일자’ 를 작성
 - ※ 해당 서류에 장소와 일자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작성생략 가능(해당서류에 장소와 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다른 경우에는 작성해야 함)
- ◆ ③란 : ‘수출자의 서명과 신고서에 서명하는 인의 이름’ 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함

☐ 원산지신고서 작성 관련 사항

- 원산지 신고서 문안을 영어로 타자로 치거나 스탬프로 찍거나 인쇄함으로써 작성하며, 원산지신고서가 수기로 작성되는 경우에는 잉크를 사용하여 대문자로 작성
- 원산지 신고서에는 수출자의 원본 서명이 수기로 작성되어야 함
- 원산지제품과 비원산지제품이 하나의 원산지신고서에 혼재된 경우
 - ‘제품의 원산지’ 표기란에는 원산지제품의 원산지를 표기, 비원산지 제품은 구분될 수 있도록 해당서류에 달리 명확하게 표기
 - ※ 구분표기하는 방법은 제한 없음

☐ 원산지신고서 사본인정 여부

- 원산지신고서는 세관에 원본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재 수입신고서 상업서류의 사본제출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사본을 제출하여도 협정관세 적용 가능
 - 이 경우 ‘특레고시’ 별표 6의 원산지증명서 사본 제출 스탬프를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 ※ 원산지신고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곤란하거나 물품의 원산지가 불명확한 경우 등 원본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원본을 제출받아 확인
- ‘수리후 협정관세적용’ 을 신청하는 때에는 ‘특레고시’ 제3-3-2조에 따라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 원산지의정서 제16조(원산지 신고서), 제17조(원산지 신고서 작성 조건)

※ 원산지의정서 부속서 3(원산지 신고서 문안)

4. 직접운송 원칙

- ☐ 협정 양 당사국간 직접운송되는 제품에만 적용되나, 단일 탁송물*을 구성하는 제품은 상황이 발생하면 다른 영역에서 환적 또는 일시적으로 창고보관되어 그 다른 영역을 통해 운송될 수 있음
 - 다만, 그 제품이 통과 또는 창고보관되는 국가에서 자유로운 유통을 위해 반출되지 아니해야 하고, 하역, 재선적 또는 제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해 고안된 모든 공정 외의 공정을 거치지 아니해야 함
 - * ‘탁송물’ 이란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에게 일시에 송부된 제품이거나,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으로서의 선적에 대한 단일의 운송서류에 의하여, 또는 그러한 서류가 없는 경우 단일의 송장에 의하여, 다루어지는 제품을 말함

※ 원산지의정서 제13조(직접운송), 제1조(정의)

☐ 비당사국 전시물품도 협정관세 적용 대상

- 비당사국의 영역에서 전시를 위하여 발송되고 전시 후에 어느 한쪽 당사국으로의 수입을 위하여 판매된 원산지 제품은 수입시 협정관세 적용 대상
 - 다만,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이 관세당국이 만족할 수 있도록 입증되어야 함
 - 가. 수출자가 그 제품을 어느 한쪽 당사국으로부터 전시회가 개최된 국가로 운송하고, 그 제품을 그 국가에서 전시한 사실

- 나. 수출자가 어느 한쪽 당사국의 인에게 그 제품을 판매 또는 달리 처분한 사실
 다. 제품이 전시회 기간 중 또는 전시회 직후에 전시를 위하여 발송된 상태로 운송된 사실, 그리고
 라. 제품이 전시를 위하여 운송된 후 전시회에서 전시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사실

※ 원산지의정서 제14조(전시)

5. 협정발효 적용시점

- ☐ 협정발효일 오전 0시 신고분부터 적용
☐ 협정발효일에 적용되는 경과규정
- 발효일 이후에 수입신고한 물품은 협정관세적용 가능
 - 협정에서 정한 서류*를 구비하여 협정관세 적용 수입통관 가능
 - ※ 직접운송 입증서류, 소급하여 작성된 원산지신고서
 - 기본세율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수입한 이후,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수리 후 협정관세적용을 신청할 수 있음

※ 협정발효일에 운송중에 있거나 보세구역에 반입되어 수입통관되지 않은 상태의 물품에 대한 원산지신고서의 유효 기간은 발효일부터 12개월임에 유의

- ‘수리후 협정관세적용 신청기간’ 이 협정과 FTA특례법과 다름

- [협 정] 협정발효일부터 12개월내에 협정관세적용을 신청해야 함
- [특례법]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까지 협정관세적용을 신청해야 함

☞ 경과규정 대상물품을 협정발효일 이후에 수입통관한 경우 증빙서류는 발효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수리 후 협정관세적용신청’ 을 하고 세관에 증빙서류(원산지신고서 등)를 제출하여야 함

(예) 보세구역반입일 2013.4.27일, 협정발효일 2013.5.1일, 수입신고수리일 2013.5.15일 인 경우
 : 2014.4.30일까지 ‘수리 후 협정관세적용신청’ 을 하고 세관에 증빙서류(원산지신고서 등)를 제출하여야 함

※ 원산지의정서 제32조(통과 또는 보관 중인 상품에 대한 경과 규정)

6. 수입물품의 원산지결정 등에 관한 사전심사

- ☐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원산지결정 등에 관한 사전심사를 요청할 수 있음 (FTA특례법 제14조)
- 신청인 :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
 - 신청방법 : 서류제출 (사전심사신청서, 심사에 필요한 서류)
 - ※ 담당부서가 2개 이상인 경우 : 주요 심사요청사항 담당부서로 제출
 - 처리절차 : 기재 생략

☐ 터키와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사전심사 대상은 아래와 같음

《원산지 등 사전심사 대상업무》

- ① 당해물품 및 재료의 원산지에 관한 사항
- ② 당해물품 및 재료의 품목분류·가격 또는 원가결정에 관한 사항
- ③ 당해물품의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의 산정에 관한 사항
- ④ 그 밖에 협정관세의 적용 또는 관세면제에 대한 기초가 되는 사항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항
- ⑤ 당해물품의 관세의 환급·감면에 관한 사항
- ⑥ 당해물품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사항

《원산지 등 사전심사 업무별 담당부서》

사전심사 대상	담당부서
당해물품 및 재료의 원산지에 관한 사항	관세평가분류원
당해물품 및 재료의 품목분류·가격 또는 원가결정에 관한 사항	
당해물품의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의 산정에 관한 사항	
관세환급, 납기연장에 관한 사항	관세청 세원심사과
관세감면의 적용여부	관세청 통관기획과
원산지국가 표시	관세청 특수통관과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그 밖의 사안	각 담당부서
---------------------	--------

※ 붙임 3 : 사전심사신청서, 사전심사서 참조

※ 협정 제3.8조(사전심사결정)

7. ‘원산지의정서 부속서 2-가’ 에서 정하는 물품

- ☐ 원산지의정서 부속서 2-가(Annex II(a))에서 정하는 물품은 선착순으로 수출입하는 물품에 대해 완화된 원산지결정기준이 적용
- 원산지를 증명하는 수출자가 원산지신고서에 아래의 문구를 포함하여 원산지신고문안을 작성해야 함

Derogation - Annex II(a) of the Protocol on Rules of Origin and Origin Procedures

○ 대상물품 및 원산지결정기준

HS	상품명	비원산지 재료에 수행된 원산지 지위를 부여하는 작업 또는 가공	연간 쿼터
5205	면사(면의 함유량이 85퍼센트인 것에 한하며, 재봉사와 소매용의 것은 제외한다)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또는 코움 또는 기타의 방적준비 처리한 것은 제외한다)로부터의 생산	200 메트릭톤
5408	인조필라멘트사의 직물	인조필라멘트사로부터의 생산 또는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마무리 공정(정련, 표백, 머어서라이징, 열처리, 기모, 캘린더링, 방축가공, 영구마감처리, 증기처리, 침투, 보수 및 별링과 같은 것을 말한다)이 동반되는 염색작업. 다만, 염색되기 전 사용된 직물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해야 함.	200 메트릭톤
5510	재생 또는 반합성스테이플 섬유사(재봉사 및 소매용의 것은 제외한다)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또는 코움 또는 기타의 방적준비 처리한 것은 제외한다)로부터의 생산	200 메트릭톤

☐ 수입물품에 대한 운영방법

☐ 터키와의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의정서 ‘부속서 2-가’ 에 따라 선착순방식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완화된 원산지 결정기준이 적용되는 물품의 운영방법 1. (대상) 보세구역에 장치한 이후 수입신고되는 물품을 대상으로 운영 ※ 수입신고시 세율구분코드 : FTR5 2. (통관절차) - 한도수량에 도달하는 날의 전날까지는 선착순으로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적용 - 한도수량에 도달한 날에 수입신고된 물품은 잔여수량을 그날에 수입신고된 수량(수입신고수리된 수량에 한한다)에 비례하여 각각 배분 - 배분한 이후에도 잔여수량이 있는 경우 한도수량도달일의 다음날 순서대로 배분 3. (배분에 따른 세액보정) - 통관지세관장 : 배분되어 조정된 수량을 수입자에게 통지 - 수입자 : 관세법 제38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세액을 보정 ※ 가산이자 없음(같은 조 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 4. (잔여수량의 게시) 배분절차가 완료되는 날까지 품목별 총수량·사용수량과 잔여수량을 관세청 FTA포탈(fta.customs.go.kr)을 통해 게시

8. 수출자, 생산자 및 수입자의 자료보관

☐ 수출자 관련사항

- 서류보관기간 :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5년
- 수출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
- 계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제공한 원산지증명서 사본
 - 원산지증빙자료 (원산지확인서, 원산지소명서, 생산자가 해당물품의 원산지 증명을 위하여 작성한 후 수출자에게 제공한 서류 등)
 - 수출신고필증 및 수출거래 관련 계약서
 -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수출자의 명의로 수입신고한 경우)
 - 해당 물품 및 원재료의 생산 또는 구입 관련 증빙 서류
 - 원가계산서, 원재료 내역서 및 공정명세서

- 해당 물품 및 원재료의 출납·재고관리대장

□ 생산자 관련사항

- 서류보관기간 : 원산지증빙서류 작성일로부터 5년
- 생산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
 - 수출자 또는 계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해당 물품의 원산지 증명을 위해 작성·제공한 서류
 - 원산지증빙자료 (원산지확인서, 원산지소명서 등)
 - 수출자와 체결한 물품공급 계약서
 -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
 - 해당 물품 및 원재료의 생산 또는 구입 관련 증빙 서류
 - 원가계산서, 원재료 내역서 및 공정명세서
 - 해당 물품 및 원재료의 출납·재고관리대장

□ 수입자 관련사항

- 서류보관기간 :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5년
- 수입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
 - 원산지증명서(전자문서 포함)
 - 원산지증빙자료 (원산지확인서, 원산지소명서 등)
 - 수입신고필증
 - 수입거래 관련 계약서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 수입물품의 국제운송 관련 서류
 - 사전심사서 및 사전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사전심사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한함)
 - 지적재산권거래 관련 계약서

※ 원산지의정서 제17조(원산지신고서 작성조건) 제21조(증빙 서류), 제22조(원산지 신고서 및 증빙 서류의 보존), 특례법시행령 제13조

9.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검증

□ 검증방식 : 수출당사국의 관세당국이 수행하는 간접검증방식

-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검증 요청일부터 10개월 이내에 회신이 없거나, 그 회신이 해당 서류의 진정성 또는 제품의 진정한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 요청하는 관세당국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특혜 자격 부여를 거부할 수 있음

※ 원산지의정서 제25조(원산지 신고서의 검증)

10. HS2012 도입에 따른 협정관세적용신청서 등 작성방법

□ 제5차 HS협약 개정안(HS2012)이 ‘12.1.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터키와의 자유무역협정은 ‘HS2007’ 기준으로 협상 타결

- HS2012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양국간 합의하기 전까지는 “연계표(HS2012 ↔ HS2002)*”를 활용

* 연계표는 기 시달함(’ 11.12.28)

- [문서제목] HS 2012 도입에 따른 FTA 품목별 원산지기준(PSR) 운용 기준 알림
- [문서번호] 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4818호

○ [관련법령] FTA특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시 행 령 : 특혜세율(양허표) 규정(HS2012기준)
- 시행규칙 : 원산지결정기준 규정(HS2007기준)

□ 협정관세적용신청서, 수입신고서상의 HS품목번호 작성방법

서 류 명	품목번호 작성기준
협정관세적용신청서	HS2007
수출입신고서	HS2012

[붙임1] 터키와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관세율 종류

세 율 종 류	협정문 조항	특례법령 근거 조항	
		법	시행령
기 본 세 율	부속서 2	법 제4조	영 제3조 제10항
덤핑방지관세	4.8조 ~ 4.11조	법 제5조의2	영 제4조의9
상 계 관 세			영 제4조의10
긴 급 관 세	4.1조 ~ 4.6조	법 제6조	영 제8조의19

2. 대 터키 아세테이트 직물 수출시 원산지신고서 발급과 관련한 유의사항 안내

서울세관 자유무역협정1과-129, 2015.1.15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터키 FTA의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직물(특히, HS5408호의 아세테이트 직물) 수출시 원산지 신고서 발급과 관련해서 아래와 같이 유의사항을 안내하오니 관련 무역회사 등에 널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가. HS5408호 직물(특히, 아세테이트 직물)의 한-터키FTA 원산지 결정기준은 원칙적으로 역내(한국 또는 터키)에서 생산된 사(絲)를 사용하여 직물을 생산하는 경우에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토록 규정하고 있음

나. 역외에서 생산된 사를 사용하여 HS5408호 직물(특히, 아세테이트 직물)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HS5408호 직물은 실질적으로 한-터키FTA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이러한 경우 원산지신고서 발급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다. 다만, HS5408호 직물은 연간 200Metric ton 물량까지는 역외산 사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원산지를 충족할 수 있으므로 해당 규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한국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16. 한-페루 FTA

1.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운영지침 시행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 2011-08-01(등록일자)

1. 2011.8.1일부터 발효예정인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관세행정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시달하오니,

2. 각 세관장은 동 협정과 지침내용을 확인하시고 내부직원 교육실시 및 관련업계 홍보 등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운영지침 1부. 끝.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운영지침

이 지침에서 ‘한-페루 FTA 협정’은 ‘협정’이라 하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 해당 고시는 각각 ‘특례법’, ‘특례법 시행령’, ‘특례법 시행규칙’, ‘특례고시’라고 지칭함

I. 원산지 증명방식

1. (발효 후 5년 이내) 기관 및 인증수출자에 의한 원산지 증명방식

- 발효 이후 5년의 기간 동안은 “기관발급” 원칙
- 다만, 인증수출자 및 미화 2천불 이하 수출자에 대해서는 “자율발급” 허용

《 한·페루 FTA 기간별 원산지 증명서식 》

구 분	발효 이후 5년간 (' 11. 8월 ~ ' 15. 7월)	발효 후 6년부터 (' 16. 8월 ~)
기관발급	수출자 - 원산지 증명서 (협정 부록 4가-1)	-
자율발급	수출자 - 원산지 신고서 (협정 부록 4가-2)	수출자 - 원산지 증명서 (부속서 4나)

1-1. 기관발급 원산지 증명서

- 발효 이후 5년 동안은 수출자나 수출자의 책임 하에 있는 권한있는 대리인이 신청하면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 의해 원산지 증명서 발급
 - 다만,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에 대해서는 세관에 의해 원산지 증명서 발급 (상공회의소는 불가)
- 원산지 증명서는 하나의 탁송화물을 구성하는 하나 이상 상품을 적용 대상으로 하며 영어로 작성되어야 함

1-2. 원산지 신고서

- 원산지 신고서는 인증수출자 또는 미화 2천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탁송화물의 수출자가 송장, 인도증서 또는 기타 상업문서*에 작성
 - * 송품장, 포장명세서, 선하증권, 인도증서 등
 - 타자, 스탬프, 인채를 통해 영어로 작성되며 수기 작성시 잉크를 사용하여 정자로 작성해야 함
- 미화 2천달러 초과여부는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에게 일시에 송부된 물품 또는 단일의 운송서류에 의하여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에게 송부된 물품가액을 기준으로 판단
 - 운송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송품장의 물품가액에 의하여 판단

(원칙) 송품장의 물품가액 기준

(예외) 단일탁송화물에 여러 송품장이 발행된 경우 운송서류에 표시된 물품가액 기준

-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하였으나 부정확한 정보가 포함되었음을 인지한 경우에 수출자는 수입자 및 수출국의 관세당국 등에 서면으로 즉시 통지해야 함
- 원산지 신고서는 협정이 정하는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원산지 신고서 문안*이 그대로 기재되어야 하고, 단순히 원산지*, 인증수출자번호만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적용 불가
 - *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 신고문안이 아닌 한-EU FTA 등 타 협정의 원산지 신고문안을 기재하는 경우 협정 적용배제
 - * 원산지는 협정문에 있는 당사자명,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가명, 당사자 국가의 ISO 코드만 인정 (THE REPUBLIC OF PERU, PERU, PE)

1-3. 원산지 신고서 양식 (협정 부록 4가-2)

“The exporter of the goods covered by this document (authorization No.....¹⁾)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goods are of.....²⁾ preferential origin, on the basis of the following origin criteria.....³⁾ ”

.....⁴⁾

.....⁵⁾

.....⁶⁾

(작성요령)

- 1) 원산지 신고서가 협정 부속서 4가(원산지 증명)의 규칙 5에 따른 의미에서의 인증수출자에 의해 작성된 경우, 인증수출자의 인증번호가 반드시 여기에 포함되어야 한다. 원산지 신고서가 인증수출자에 의해 작성되지 않은 경우, 괄호 안의 단어는 지우고 빈 칸으로 남긴다.
- 2) 상품의 원산지를 영문으로 기재한다.
- 3) 상품의 원산지 기준이 협정 부록 4가-1(원산지 증명서)의 제9란에서와 같이 명기된다.

원산지 결정기준	기재문구
가) 페루와의 협정에 따라 완전생산된 물품	WO
나) 페루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 기준에 부합하는 재료로만 전적으로 생산된 물품	WP
다) 품목별 원산지 기준에 명시된 세번변경, 역내가치포함, 공정 또는 그 밖의 요건에 부합하는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물품	PSR*
라) 페루와의 협정 제3.15조(영역원칙)의 적용을 받는 물품	OP

* 해당 물품이 역내가치포함비율 요건의 적용을 받는 경우 그 비율과 함께 “BD“(공제법인 경우) 또는 “BU“(집적법인 경우)를 함께 기재 (예:PSR BD 50%)

4)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한 장소 및 날짜를 영문으로 적는다. 다만, 동 정보가 문서 자체에 포함되어 있다면 생략가능하다.

5) 수출자의 성명을 영문으로 정확하게 적고, 서명한다.

* 인증수출자인 경우에도 수기서명 필요

6) 특별한 사항을 기재한다. 예를 들어, 물품이 협정 제3.15조(영역 원칙)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다음의 문구를 기재한다 “Article 3.15 has been applied. “

2. (발효 6년 이후) 자율발급에 의한 원산지 증명방식

- 협정 발효 후 6년부터는 전면적인 “자율발급” 제도로 전환
- 협정 제 4.1조(원산지 증명서)가 협정 부속서 4가(원산지 증명)를 대신하여 적용

2-1. 자율발급 원산지 증명서

- 인증수출자 지정여부와 관계없이 수출자는 변경된 원산지 증명서인 협정 부속서 4나(원산지 증명서)를 사용하여 자율발급 가능
 - 영어로 작성·서명되고, 인쇄본 또는 전자본이어야 함
 - * 원산지 증명서에는 발효후 5년 동안의 기관발급형 원산지 증명서와 발효후 6년부터 적용되는 자율발급형 원산지 증명서가 있음에 유의
- 원산지 증명서는 하나 이상 상품의 단일선적에서 발급일로부터 12개월 이내 동일 수입자, 동일 상품의 복수선적 물품까지 적용 가능

3. 원산지 증명의 면제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이 미화 1천 달러 이하의 소액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 증명 면제
 - 특혜적용을 목적으로 법을 회피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하는 경우 제외
 - 상업용 여부와 관계없이 미화 1천달러 이하의 여행자휴대품, 우편물, 특송물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 면제*
 - * 구매영수증, 제품의 원산지 표기 등을 통해 원산지를 간이하게 확인 후 협정 적용

4. 원산지 증명의 유효기간

- 원산지 증명서는 수출당사국에서 발급한 날로부터 1년 동안 유효
- 원산지 증명서에 언급된 물품이 비당사국 관세당국의 통제 하에 일시 수용·보관되는 경우 유효기간* 1년 추가
 - 수입자는 유효기간 연장의 입증을 위해서 보관기간 등이 기재된 비당사국 관세당국이 발행한 문서와 선적서류를 제출·확인 받아야 함
 - * 하나 이상의 비당사국을 경유하였다 하더라도 유효기간은 1년 초과 불가
-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 통제 하에 일시 수용·보관되는 경우 해당 관세당국이 승인한 기간 동안 유효기간 정지
 - * [참조] 특례법 시행령 10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5항
- 원산지 증명은 협정발효 이후 수출입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가능

* ' 11. 8. 1 이후 수출입 신고물품부터 원산지 증명이 가능

5. 원산지 증명서(원산지 신고서 포함)의 형식적 오류

- 물품의 원산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원산지 증명서의 형식적 오류로 인하여 원산지 증명서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수입 신고인을 통해서 수입자에게 그 오류를 통지해야 함
- 수입자는 통지받은 날의 다음날로 부터 30일 이내 원산지증명서 정정본*을 제출해야 하고, 기간내 제출하지 못한 경우 세관은 검증에 착수할 수 있음
- * 정정본은 수정사항, 수정일을 포함하며 원본 발급자에 의해 서명되어야 함

6. 원산지 증명서(원산지 신고서 포함) 작성시 유의사항

- 단일 탁송화물에 원산지 제품과 비원산지 제품이 혼재되어 수입된 경우, 비원산지 제품이 달리 명확하게 표시되어 원산지 제품과 비원산지 제품을 확인할 수 있으면 협정관세 적용 가능
- 인증수출자가 아닌 업체가 원산지, 비원산지 제품을 혼재하여 자율발급을 통해 수출하는 경우 비원산지 제품의 가격은 2천 달러 기준에 산입하지 않음

II. FTA 실질적 요건 및 특혜신청

7. 직접 운송 원칙

- 원산지 상품은 양 당사국간 직접 운송을 원칙으로 함
- 다만, 비당사국 관세당국의 통제 하에 경유·운송되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인정
 - 비당사국에서 거래되거나 교역되지 않고, 하역·재선적·재포장 또는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공정 이외 어떠한 공정도 거치지 않아야 함
 - * 상기요건 충족시 제3국 물류창고에 일시 보관 후 수입하더라도 협정관세 적용가능
- 수입자는 협정관세 신청시 원산지증명서 및 직접 운송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소지해야 함
- * 직접운송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증명하는 문서

구 분	제출·증명서류
경유·환적	○ 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 복합·결합 운송문서등 운송문서
보 관	○ 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 복합·결합 운송문서 등 운송문서 ○ 비당사국의 관세당국 또는 권한있는 당국이 발행한 문서

- 또한 관세당국이 요구하는 경우 유효한 원산지증명서 및 직접 운송서류를 제출해야 함
- * 특례고시 제3-5-1조(환적 또는 일시장치물품 등의 원산지 확인방법) 개정 예정

8. 영역원칙의 예외

- 해당물품의 생산공정은 역내에서 중단없이 수행되어야 하고, 일부라도 역외에서 이루어지면 원산지를 불인정하는 것이 원칙
- 다만,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100개 품목*(플라스틱, 고무, 철강, 가전, 시계, 가구 등)에 대해서는 국내 영역에서 가공이 수행된 것으로 인정
 - 이 경우 비원산지 투입의 총가치는 FOB 가격의 40% 이하여야 함
 - * [참조] 협정 부속서 3 나 (영역원칙의 예외) “상품목록”

9. 기록보관요건

- 원산지 증명서 기관발급을 신청하였거나 자율적으로 작성·서명한 수출자는 발급일로부터 5년 동안 다음 서류 보관

가. 수출상품의 구매, 비용, 가치 및 그에 대한 지불과 관련된 문서
나. 수출된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간접재료를 포함한 모든 재료의 구매, 비용, 가치 및 그에 대한 지불과 관련된 문서
다. 수출된 형태로의 상품의 생산과 관련된 문서

라.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그 밖의 문서
마. 원산지증명의 사본 및 특례법령이 정하는 문서

- 수입자는 원산지증명의 사본과 수입 관련문서를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
-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원산지증명서 사본과 증빙 관련자료를 발급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
- 기록 보관방식은 디지털, 전자, 광학, 마그네틱 또는 서면형태를 포함하여 제한없이 가능

10. 특혜관세대우 신청

- 수입자는 특혜관세를 신청하기 위해서 수입통관 당시 유효한 원산지 증명서에 근거하여 협정관세적용신청서를 작성·신청해야 함
 - 특례고시 3-2-2조(수입신고수리전 협정관세적용신청) 준용

11. 수입통관후 특혜관세대우 신청

- 수입 당시는 원산지 상품이었으나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해야 함
 - 이 경우 협정관세적용신청서에 원산지 증명서 사본* 및 세관이 요구하는 그 밖의 문서를 제시해야 함
 - * 기발효된 타협정의 경우 수리후 협정관세 적용신청시 원산지증명서 원본제출
→ 특례고시 3-3-2조(수리후 협정관세 적용신청 의사표시) 향후 개정예정

12. 원산지 증명서(원산지 신고서 포함) 사본인정 여부

- 원산지 증명서는 세관에 원본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
 - 다만, 현재 수입신고시 제출서류의 사본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사본을 제출하여도 협정관세 적용 가능
 - 이 경우 원산지 증명서 사본 제출 스탬프(특례고시 별표 6)를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 원산지 증명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곤란하거나 물품의 원산지가 불명확한 경우 등 원본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원본을 제출받아 확인

Ⅲ. 기타 집행사항

13. 당사국간 교환사항

- 양국 관세당국은 당사국 국내법에 따라 운영되는 인증수출자로 지정된 업체들의 인증번호*를 교환하고 인증수출자 감독
 - * 페루측 인증수출자 번호체계는 상호교환과 동시에 향후 시달 예정
- 대한상공회의소 등 원산지 증명 수입기관의 명칭 및 직인의 최신 등록부를 유지하며 당사국간 수입기관의 명칭 및 직인을 통지

14.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

- ‘페루를 원산지로 하는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 *가 적용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협정에 규정된 기준 발동물량을 초과하는 경우 특별긴급관세 조치 시행
 - * [참조] 붙임 3.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대상품목
 - 기준발동물량을 초과하여 수입된 날의 다음날부터는 특별긴급관세조치가 시행되지만,
 - 동 조치가 시행되기 전에 계약*이 체결되어 국내로 운송 중에 있는 물품과 국내 보세구역에 보관 중인 물품은 협정관세 적용 가능
 - * 동일 계약상 물품이라 하더라도 출항 전에 있는 물품은 특별긴급관세조치 적용
- 특별긴급관세조치 시행일부터 수입 신고되는 물품은 서류제출 대상으로 운영 (※조치시행일에 FTA포탈 등에 해당사실 게시)
- 운송서류 등을 통해 출항일을 확인하여 조치시행일 이후에 운송되기 시작한 물품에 대하여 특별긴급관세 적용

15. 중고품 특혜관세 적용배제

- ‘페루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중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는 중고품’ *은 서류제출 대상으로 분류하여 운영
* [참조] 붙임 4.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는 중고품

16. 가격밴드 제도

- 페루는 자국 법령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물품 중 협정 부속서 2라*에 기재된 상품에 대해서 가격밴드 제도**를 적용
* 협정 부속서 2라 : 가격밴드 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품
** 가격밴드 제도(Price Band System) :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해당물품에 대해 수입가격 밴드를 설정하고 수입가격이 동 가격밴드 이하로 낮아질 경우 기본관세 이외 추가관세를 부과하여 가격을 상향하는 제도

17. 관세면제대상 일시 수출입물품

- 원산지와 관계없이 다음 물품에 대해서는 무관세 일시반입을 허용
○ 이 경우 물품의 일시반입 및 담보제공의 요건 등은 특례법 시행규칙 제11조의 2* 제2항 및 제3항 준용

가. 일시입국하는 자가 직접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별도로 수입하는 언론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장비, 소프트웨어, 방송·영화촬영 장비 등 영업활동, 거래 또는 직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장비
나.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상품
다. 상업용 견본품, 광고용 필름 및 기록물
라. 스포츠용으로 반입되는 상품

* [참조] 특례법 시행규칙 제11조의 2 (칠레와의 협정에 따른 관세면제대상 일시수출입물품)
협정 제2.5조(상품의 일시반입)

- 수리 또는 가공*을 위해서 우리나라와 페루간 수입되는 다음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면제
- 우리나라에서 페루로 수리 또는 가공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수출되었다가 다시 수입하는 물품
- 우리나라에서 수리 또는 가공한 후 다시 수출하기 위하여 페루에서 일시적으로 수입하는 물품
* 수리·가공을 초과하는 범위 -[참조]협정 제 2.6조(수리 또는 개조후 재반입되는 상품)

✓ 본질적 특성을 파괴하거나 새로운 또는 상업적으로 다른 상품을 만드는 것
✓ 미완성 상품을 완성 상품으로 변형하는 것

18. 기타 일반적인 집행사항

- 페루와의 협정에 따른 특혜세율 적용, 원산지결정기준 등 협정의 일반적인 집행·적용에 대한 사항은 협정과 특례법 등을 준용하여 업무처리

2. 한-페루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변경 안내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1893, 2016-07-29

1. 관련근거

- 「한-페루 FTA」 제4.13조(이행)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제5호

2. 한-페루 FTA 규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이 ‘16.8.1(월)부터 기관 및 자율(인증수출자 및 미화 2천 불이하)발급에서 전면적 자율발급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 세관에서는 동 내용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수출입기업이 한-페루 FTA 활용에 애로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내 수출입업체 및 관세사 등에게도 동 내용을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한-페루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변경 안내 1부. 끝.

한-페루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변경 안내
(’16.7.28, FTA 집행기획담당관실)

1. 근거

- 한-페루 FTA 협정문 제4.13조(이행)*
* (요약) C/O 자율발급 내용이 규정된 협정 제4.1조(원산지 증명서)가 기관발급과 자율발급이 규정된 협정 부속서 4가(원산지 증명)를 대신하여 적용

2. 변경 내용

’16.8.1. 부터 원산지 증명서가 전면적인 자율발급제도로 단일화

- C/O 서식이 「협정 부속서 4나 서식(원산지 증명서)」으로 변경

[한-페루FTA 기간별 원산지 증명서식]

구분	발효 이후 5년간 (’11.8.1. ~ ’16.7.31.)	발효 이후 6년차 (’16. 8.1. ~)
기관발급	원산지 증명서(협정 부록 4가-1)	-
자율발급	원산지 신고서(협정 부록 4가-1)	원산지 증명서(협정 부속서 4나)

3. 유의사항 안내

- ’16. 8. 1. 부터는 수출자(인증수출자 포함) 또는 생산자가 협정에서 규정된 견본양식(별첨)의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여야 함
 - 시행일 이후 기관발급 불가하므로 견본양식과 작성방법에 따라 자율적 작성(12개월 범위 내 포괄증명 가능)
 - C/O상 서명은 직접 자필 서명 권장*
* 페루 일부세관에서 전자서명 및 인장을 불인정하는 사례가 있음을 고려
- ’16.7.31.까지 발행된 원산지증명서(기관·자율발급)의 유효기간, 전자서명 인정여부 등 기타사항은 추후 안내

※ 원산지 증명서 서식 : 부록 참조

17. 한-호주 FTA

1. 대한민국과 호주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운영지침 시달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2864, 2014-12-11

1. 2014. 12. 12일부터 발효예정인 「대한민국과 호주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관세행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시달합니다.
2. 각 세관장은 동 협정과 지침내용을 확인하시고 직원 교육실시, 홈페이지 게시 및 관련업계 공지 등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대한민국과 호주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운영지침 1부. 끝.

대한민국과 호주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운영지침

이 지침에서 「호주와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은 ‘협정’이라 하고, 동 협정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에 관한 의정서」는 ‘원산지의정서’라 하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은 각각 ‘특례법’, ‘특례법 시행령’, ‘특례법 시행규칙’이라 하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는 ‘특례고시’라고 함

1. 양허 현황은 기재 생략

2 협정관세 적용

□ 협정적용 영역 (제1.4조)

○ 대한민국 : (원산지 부호 KR)

- 대한민국 주권하의 육지, 해양 및 상공, 그리고 한국이 국제법과 그 국내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해의 외측한계에 인접하고 그 한계 밖에 있는 해저 및 하부토양을 포함한 해양지역

○ 호주 : (원산지 부호 AU)

- 호주 영역으로서 노퍽 섬, 크리스마스 섬, 코코스 (킬링) 제도, 애쉬모어와 카르티어 제도, 허드섬과 맥도널드 제도 및 코랄시 제도의 영역 외에 모든 외부 영역을 제외. 그리고
- 국제법에 따라 호주가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하는 호주 영해, 접속 수역, 배타적 경제 수역 및 대륙붕을 포함

□ 협정발효 적용시점 : 협정발효일 오전 0시 신고분부터 적용

- 발효일 이후에 수입신고한 물품은 협정관세적용 가능
- 협정에서 정한 서류를 구비하여 협정관세 적용 수입통관 가능
- 기본세율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수입한 이후,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수리 후 협정관세적용을 신청할 수 있음

□ 협정발효 경과 규정(제3.15조, FTA특례법 시행령 부칙)

- 발효 전에 작성·서명된 원산지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그 서명일부터 2년

□ 특혜관세 부여 신청 요건(3.17조)

- 수입자가 수입 시점에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하는 경우
- 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는 경우
- 수입 당사국의 법 또는 규정상 요구되는 경우에는 세관 수입 신고 당시 수입자가 원산지 증명서를 소지하는 경우
- 수입 당사국 관세행정기관의 요청에 대하여, 수입자가 원산지 증명서 사본 및 수입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상품 수입에 관련된 그 밖의 그러한 서류를 제공하는 경우
- ※ 수입자는 원산지 증명서가 정확하지 아니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수입 신고서를 정정하고 모든 관세를 납부

□ 수입 이후 특혜관세 신청절차(제3.18조)

- 원산지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 당시에 특혜관세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특혜관세 사후신청 가능
 - 수입통관 후 1년 또는 수입국의 법과 규정에 명시된 기간까지 사후 환급 신청 가능

□ 특혜관세대우 거부(제3.25조)

- 수입 당사국은 다음의 경우 법과 규정에 따라 특혜관세대우 신청을 거부하거나 미납된 관세를 징수

가. 상품이 협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 나.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특혜관세대우를 획득하기 위한 모든 관련 요건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또는 제3.22조에 따른 기록 또는 문서의 유지를 못한 경우
- 다.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제3.23조제2항에 따라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 라.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현지검증에 대한 서면 동의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상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증명하는 기록, 생산 공정 또는 시설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 원산지 검증 조치의 대상 상품에 대하여, 그 조치의 기간 또는 일부 기간 동안 특혜관세대우의 적용을 중단하거나 거부
- 수입 당사국이 그 상품이 특혜관세대우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결정한 경우, 모든 측면에서 동일한 상품의 이후 수입에 대해서는 특혜관세대우의 중지 또는 거부권이 적용

□ 직접운송 원칙(제3.14조)

- 비당사국 영역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수입 당사국으로 직접 운송되어야 함
- 다만, 그 상품이 하역·재선적·보관·재포장·재라벨링*, 운송상의 이유로 인한 화물 분리 또는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거나 당사국 영역으로 운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공정 외의 공정을 거치지 아니해야 함. 또는,
- 그 상품이 비당사국의 영역에서 세관당국의 통제하에 있어야 함
 - ※ “재라벨링”이란 수입 당사국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라벨을 붙이는 것을 말하며, “재포장”이란 수입 당사국 영역으로 상품을 운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포장 공정을 말한다.

□ 제3국 송장(제3.26조)

- 송장이 비당사국 영역에서 발급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거부되지 않음

□ 수리 또는 개조 후 재반입되는 상품(제2.4조)

-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하여 자국 영역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 일시적으로 수출된 후 자국 영역으로 재반입되는 상품에 대하여 원산지와 관계없이 무관세 적용
- 가.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하여 그 상품을 수출한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리 또는 개조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 또는
- 나. 수리 또는 개조가 그 상품의 가치를 증가시켰는지 여부와 무관
- 어떠한 당사국도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반입된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의 원산지와 관계없이 무관세 적용

- 수리 또는 개조 목적상 미허용 작업이나 공정
- 가. 상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파괴하거나 새로운 또는 상업적으로 다른 상품을 만드는 것, 또는
- 나. 미완성 상품을 완성 상품으로 변형하는 것

□ 상업용 견본품과 인쇄된 광고물(2.5조)

-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수입되는 무시할만한 가치의 상업용 견본품과 인쇄된 광고물에 대하여 원산지에 관계없이 무관세 반입을 허용
- 가. 견본품이 다른 쪽 당사국이나 비당사국의 상품, 또는 다른 쪽 당사국이나 비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제공되는 서비스의 주문을 권유하기 위해서만 수입될 것
- 나. 광고물이 포장단위로 수입되고 각 포장이 1부를 초과하지 않고 광고물 및 포장이 탁송물의 일부를 구성하지 아니할 것

3	원산지증명 방식(제3.15조)
----------	-------------------------

□ 발급방식

- 우리나라 : 자율발급
- 호주 : 자율발급 및 기관발급

□ 발급주체

- 자율발급 : 수출자·생산자
- 기관발급 : 호주 상공회의소(ACCI) 및 호주산업협회(AIG)
- 수출자가 상품의 생산자가 아닌 경우 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었다는 수출자의 인지
- 또는 생산자가 제공한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었다는 원산지 증명서와 같은 서면 신고서 또는 진술서에 기초하여 수출자가 원산지 증명서 작성 가능

□ 발급형식 : 인쇄본 또는 전자본을 포함한 그 밖의 수단

□ 원산지 신고서(증명서)의 유효기간

- 자율발급: 서명일 부터 2년
- 기관발급: 발급일 부터 2년
- 협정 발효 전에 서명되거나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도 인정 가능
(서명일 또는 발급일 부터 2년)

□ 포괄원산지증명 유효기간

- 포괄증명의 시작일부터 종료일 (From ~ To)
 - 증명일은 서명일보다 앞설 수 있음
- 포괄증명기간 내에 수입되는 것을 기준

□ 원산지증명서 서식

- 시행규칙 별지 [별지 제6호의12서식]서식에 따른 권고서식 또는 협정에서 정한 필수항목을 기재한 서류
《※ 원산지증명서 정보 [협정문 부속서 3-다]》

① 발급 번호
② 수출자(연락처 포함)
③ 복수선적 포괄증명기간
④ 생산자(연락처 포함) *선택사항
⑤ 수입자(연락처 포함) *선택사항
⑥ 물품명세
⑦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6단위)
⑧ 특혜 기준
⑨ 비고(선택사항)
⑩ 서약, 그리고
⑪ 원산지증명서 작성자 이름, 서명, 기업 또는 권한 있는 기관 및 연락처, 발급 일자

※ 인쇄체로 쓰거나 타자로 기재 [추가 기재가 필요할 경우, 별지 사용]

□ 소액물품 원산지증명서 면제(제3.19조)

- 관세가격이 일정 금액 이하인 상품수입의 경우 원산지증명서가 면제됨
 - 호주로 수입되는 경우 : 호주 달러 1,000
 - 한국으로 수입되는 경우 : 미화 1,000달러

□ 원산지증명서 불일치 및 변형(제3.20조)

- 원산지 증명서의 사소한 오류를 이유로 원산지 증명서를 무효화할 수 없으며, 표준서식에서 서식이 변형

되더라도 인정
《원산지증명서 표준 서식》 : 부록 참조

4 원산지 결정기준

- ☐ 원산지 상품(제3.1조)
- 상품이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된 경우
 - 상품이 전적으로 원산지 재료로만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경우
 - 상품이 전적으로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1인 이상의 생산자에 의하여 수행된 절차의 결과로서 부속서 3-가의 모든 적용 가능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또는
 - 상품이 원산지규정 및 원산지 절차에 따라 원산지 상품으로서의 자격을 달리 갖춘 경우
- ☐ 완전생산기준(제3.2조)
-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채취되거나 추출된 광물과 그 밖의 천연자원 등 협정 제3.2조에 규정
 - EEZ에서 어획한 수산물의 경우 기국주의 원칙 적용(당사국에 등록·등기되고 그 국가의 국기를 게양할 자격이 있는 선박의 국적을 따름)
- ☐ 부가가치기준(제3.3조)
- 역내가치포함비율은 다음의 방법 중 하나에 따라 산정
- 가. 공제법
- $$\text{역내가치포함비율(RVC)} = \frac{\text{조정가치(AV)} - \text{비원산지재료가치(VNM)}}{\text{조정가치(AV)}} \times 100$$
- 나. 집적법
- $$\text{역내가치포함비율(RVC)} = \frac{\text{원산지재료가치(VOM)}}{\text{조정가치(AV)}} \times 100$$
- ☐ 누적기준(제3.5조)
- FTA 상대국과의 교역 활성화를 위해 타 당사국의 상품이 당사국영역에서 상품에 결합된 경우, 상품에 결합이 일어난 당사국의원산지 상품으로 간주
 - 하나 이상의 생산자에 의해 어느 한쪽 또는 양당사국 내에서 생산된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
- ☐ 최소허용기준(제3.6조)
- 비원산지 재료가 해당 품목의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모든 비원산지 재료 가치가 상품 가치의 10%이하인 경우 원산지 상품 인정
 - 비원산지재료가 상품과 다른 소호(HS 6단위)로 분류되지않는 경우 제1류-14류(신선농산물)에 대하여는 미소기준을 배제
 - 제0301호 ~ 제0303호, 제0305호 ~ 제0308호, 제0701호 ~ 제0710.10호, 제0713호 ~ 제0714호, 제0801호 ~ 제0810호, 제0813.10호 ~ 제0813.40호에는 적용되지 않음
 - 제50류-제63류(섬유 및 의류) 대해서는 모든 비원산지 섬유 또는 원사의 총중량이 상품 중량의 10%이하로 사용되는 경우에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
- ☐ 대체가능상품 및 재료(제3.7조)
- 대체 사용가능한 재료 및 물품을 사용하여 생산한 물품에 대하여는 재고관리법에 따라 원산지를 판정
 - 선택된 재고관리기법은 그 재고관리기법을 선택한 인의 회계연도 동안 그 상품 또는 재료에 대하여 동일한 재고관리기법 사용 의무
- ☐ 간접 재료(제3.11조)
- 제품 생산시 사용되었으나, 최종 제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지 않았거나 그 일부를 구성하지 않은 연료,

도구, 예비부품, 윤활제, 안전장비, 촉매제 등의 간접재료는 원산지로 취급

□ 품목별 원산지 기준(PSR)

○ 주요 품목별 원산지결정 기준

품목	원산지 결정기준
자동차	- 승용차 : “CTH+부가가치(집적법 30% 또는 공제법40%)” 기준 - 그 외 완성차 : “CTH+부가가치 40%(집적법 또는 공제법)” - 자동차 부품 : “부가가치(집적법 30% 또는 공제법 40%)” 과 “CTSH 또는 부가가치 40%(집적법 또는 공제법)”
기계, 전자기기	- 대부분 6단위 또는 4단위 세 번변경기준 - 부가가치 40%(집적법 또는 공제법) 기준 적용
철강, 철강제품	- 철강 : 4단위 변경 기준 - 철강제품 : 대부분 4단위 세번변경기준, 일부 품목은 부가가치 40%
섬유, 의류	- 수입산 섬유(fiber) 또는 사(yarn)를 사용하여 사(yarn) 또는 직물(fabric)을 만들더라도 원산지 인정 - 수입산 직물을 염색·날염하여도 원산지 인정
농수산물	- 제1~12류는 대체로 완전생산기준(WO) 또는 그와 유사한 세번변경기준(특정 CHAPTER를 제외한 CC)으로 규정

5 관세율 종류

□ 계절관세 적용품목

- 계절관세 해당 물품 : 감자, 오렌지, 감귤류, 포도, 키위프루트, 감귤류
 - 적용기준 : 수입신고일자
 - 다만, 세율이 인상될 예정인 물품은 우리나라에 도착된 후에 수입신고하여야 하는 바, 계절관세 적용기간(높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기간)에 입항하는 물품은 도착된 후에 수입신고하여야 함

< 한-호주 FTA 계절관세 품목 >

HS No	품 명	적용 기간 (2014년도)	
		관세율(%)	적 용 조 건
0701.90-0000	감자(신선, 냉장한 것) -칩용	0	12월 ~ 4월 수입되는 물품
		283.7	5월 ~ 11월 수입되는 물품
0805.10-0000	오렌지	0 (TRQ)	20메트릭톤 이하
		30	20메트릭톤 초과, 4월 ~ 9월 수입되는 물품
		50	20메트릭톤 초과, 10월 ~ 3월 수입되는 물품
0805.20-9000	감귤류 잡종(신선, 건조한 것)	136	4월 ~ 9월 수입되는 물품
		144	10월 ~ 3월 수입되는 물품
0806.10-0000	포도 (신선한 것)	24	12월 ~ 4월 수입되는 물품
		45	5월 ~ 11월 수입되는 물품
0810.50-0000	키위프루트	42	5월 ~ 10월 수입되는 물품
		45	11월 ~ 4월 수입되는 물품

※ 오렌지 : TRQ와 계절관세 병행 적용

□ 수입권 추천방식 TRQ 품목

- ~주무부 장관의 위임을 받은 기관(추천대행기관*)의 추천을 받은 후 해당 추천서를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품목
 - 버터, 치즈류, 오렌지, 맥주맥·맥아, 식용대두, 조제분유(유아용),사료용 근채류(7개 품목)
 - * 세부내역 [붙임 3] 참조
 - 수입권 공매방식 품목과 수입권 배분방식 품목으로 구분

*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유가공협회 등 총 5개 대행기관

○ 전자적 방식에 따른 한·호주 자유무역협정 관세율할당물량 적용 추천서는 전산으로 확인

* 전산용 추천서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

□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 대상품목

○ 농림축산물 긴급수입제한조치 대상품목은 기준발동물량을 초과하여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호주를 원산지로 하는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가 적용되는 물품

○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 적용 대상 물품

- 쇠고기, 맥아(볶지 않은 것) 및 맥주보리, 옥수수, 설탕(4개 품목)

* [붙임 2]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상세내역 참조

<특별긴급관세 대상물품에 대한 운영방법>

□ 호주와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6-가’에 따라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 긴급관세조치를 적용할 물품의 운영방법

1. (대상) 보세구역에 장치한 이후 수입신고되는 물품을 대상으로 운영

※ 수입신고시 세율구분코드

- 한도내 물량 : FAU1

- 한도초과 물량 : FAU9

2. (통관절차)

- 한도수량에 도달하는 날의 전날까지는 선착순으로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적용

- 한도수량에 도달한 날에 수입신고된 물품은 잔여수량을 그날에 수입신고된 수량(수입신고수리된 수량에 한한다)에 비례하여 각각 배분

- 배분한 이후에도 잔여수량이 있는 경우 한도수량도달일의 다음날 순서대로 배분

3. (배분에 따른 세액보정)

- 통관지세관장 : 배분되어 조정된 수량을 수입자에게 통지

- 수입자 : 관세법 제38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세액을 보정

※ 가산이자자는 없음(같은 조 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

4. (잔여수량의 게시) 배분절차가 완료되는 날까지 품목별 총수량·사용수량과 잔여수량을 관세청 FTA포탈(FTA.customs.go.kr)을 통해 게시

6 수입물품의 원산지결정 등에 관한 사전심사(제4.7조)

□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원산지결정 등에 관한 사전심사를 요청할 수 있음

○ 신청인 :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

○ 대상업무 : 품목분류, 관세평가기준의 적용,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사안

○ 효력 발생 : 결정서가 발급된 날 또는 사전심사결정에 명시된 다른 날

○ 효력 유효기간 : 5년

7 원산지 검증, 서류보관의무

□ [검증방식] 간접검증(서면조사, 수출국 세관에 검증 지원 요청)과 현지 직접검증 병행

○ 수입국 세관당국이 수출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 등에 대해 서면조사 또는 검증방문을 통해 원산지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

가. 수입자에게 서면으로 정보 요청

- 나. 기관발급 C/O는 발급기관에 C/O 유효성 검증 요청
- 다. 수출 당사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서면으로 정보 요청
- 라. 수출 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에게 상품의 원산지 검증지원 요청
- 마. 수출 당사국 영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사업장에 대한 검증
 - * 방문시설 및 상품의 생산과정을 시찰, 회계서류를 포함한 원산지 관련 기록 검토

- 상기 가호, 나호 및 다호의 목적상,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 또는 권한 있는 기관에 대한 답변기한: 서면 요청일부터 30일
 -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 또는 권한 있는 기관은 30일내에서기간연장 서면신청 가능

- 상기 마호 검증방문 절차
 -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사업장 검증방문 서면동의 요청
 - 방문할 사업장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서면동의
 - 30일 이내에 검증방문 요청에 대한 서면동의 제공

가. 요청을 하는 관세행정기관의 신원

나. 수출 당사국 내의 상품 수출자의 이름

다. 서면요청이 이루어진 날짜

라. 제안된 방문 날짜와 장소

마. 검증 제안된 방문의 목적과 범위

- 바. 수입 당사국 관세행정기관의 검증담당 공무원의 이름과 직위
 - 수입국의 세관당국은 방문조사시 수출국의 세관당국에게 통지
 - 수출국의 세관당국 공무원은 검증방문시 참관자로 참여 가능

□ 수출자, 생산자 자료보관 사항

- 서류보관기간 : 서명된 날로부터 5년
- 수출자, 생산자 보관 서류 : 원산지 상품이라는 것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모든 기록
<FTA특례법상 보관 서류>

수출자	생산자
- 계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제공한 원산지증명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사본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사본 - 수출신고필증 - 당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수출자의 명의로 수입신고한 경우에 한한다) - 수출거래 관련 계약서 - 당해 물품 및 원재료의 생산 또는 구입 관련 증빙서류 - 원가계산서·원재료내역서 및 공정명세서 - 당해 물품 및 원재료의 출납·재고관리대장 - 생산자[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를 공급하거나 생산한 자(이하 “재료생산자”라 한다)를 포함한다]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 증명을 위하여 작성한 후 수출자에게 제공한 서류	- 수출자 또는 계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당해 물품의 원산지의 증명을 위하여 작성·제공한 서류 - 수출자와의 물품공급계약서 - 제2호 다목 및 마목 내지 사목의 규정에 따른 서류 - 재료생산자가 해당 재료의 원산지 증명을 위하여 작성한 후 생산자에게 제공한 서류

□ 수입자 자료보관 사항

- 서류보관기간 : 수입일로부터 5년
- 수입자 보관 서류 : 원산지 상품이라는 것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모든 기록

- 원산지증명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사본. 다만, 협정에 따라 수입자의 증명 또는 인지에 기초하여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는 경우로서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수입물품이 협정관세의 적용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 수입신고필증, 수입거래 관련 계약서, 지식재산권거래 관련 계약서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수입물품의 국제운송 관련 서류 - 사전심사서 사본 및 사전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사전심사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한한다)

2. 한-호주 FTA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 적용 품목 운영 지침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3044, 2015-11-27

1. 대한민국과 호주간의 자유무역협정 제6.7.7조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및 FTA관세특례법 제8조의27(호주와의 협정에 따른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의 특례) 규정과 관련입니다.
2. 상기 규정에 따라 기준발동물량 소진일('15.11.25)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근거하여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도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가 면제됨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대한민국과 호주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운영지침('14.12.11) 중 동건 관련사항은 동 지침으로 대체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3. 한-호주 FTA 발효 관련 관세율 구분부호 신설 통보

세원심사과-4064, 2014.12.8

1. '14.12.12. 발효 예정인 「한-호주 FTA」에 적용할 관세율 구분부호를 아래와 같이 신설하였기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동 FTA 발효에 대비하여 협정관세율 전산등록 등 사전조치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호	내 용
FAU1	- 하나의 품목번호에 1개의 협정세율이 적용되는 물품 - 하나의 품목번호에 여러 개의 협정세율이 있는 것 중 최고세율 물품
FAU2 FAU3 FAU4 FAU5 FAU6 FAU7	- 하나의 품목번호에 여러 개의 다른 협정세율이 있는 것 중 최고세율인 FAU1을 제외하고 높은 세율 순으로 FAU2, FAU3, FAU4, FAU5, FAU6, FAU7를 순차적으로 부여
FAU8	- 추천이 필요한 물품 중 추천을 받은 물품
FAU9	- 긴급수입제한조치 품목 중 기준발동물량을 초과한 물품

18. RCEP

1.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에 따른 관세행정 운영지침

< 일러두기 >

1. 이 지침에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같은 법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및 「RCEP 협정의 원산지규정을 위한 이행 지침」은 각각 ‘협정’, ‘법’, ‘영’, ‘규칙’, ‘고시’, ‘원산지규정 이행지침’이라 지칭함.
2. 이 지침은 '22. 2. 1. 시행하며, 향후 회원국간 이행협상 결과 등을 반영한 개정·추가·변경사항이 관세청 포털사이트를 통해 공지될 수 있음

1. RCEP 개요

1. 적용 범위

☐ 【회원국】 한국,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 【발 효】 우리나라는 '22. 2. 1. 오전 10시에 발효

○ 먼저 협정을 발효('22.1.1.)한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중국, 일본, 호주, 뉴

질랜드 등 10개국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협정 발효와 동시에 적용

○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미얀마 등 4개국에 대해서는 각각 그 국가의 협정발효일*부터 적용

* 자국 비준 문서를 기탁처(아세안 사무총장)에게 기탁한 난후 60일째 되는 날

※ 인도네시아 등 미발효된 국가의 협정 발효일은 관세청 FTA포털사이트(<http://www.customs.go.kr/ftaportalkor/> main.do)를 통해 공지

※ 협정 제20.6조(발효), 시행령 부칙 제1조(시행일)

2. 양허 현황

□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이 既 체결된 국가에 대해서는 일부 품목의 관세를 추가로 철폐하거나 현행 수준 유지

○ 우리나라와 최초로 FTA를 체결하는 일본과의 양허 수준은 품목수 기준(83%, 양국동일), 수입액 기준(韓 76%, 日 78%)

《 회원국별 관세 양허 현황 (품목수 기준) 》

구분		양허수준	추가철폐 품목
아세안	수출	▶[최 중] 91.9 ~ 94.5%(국가별 상이) [既체결] 79.1 ~ 89.4% * 싱가포르, 브루나이는 100% 철폐	▶자동차(부품 포함), 철강, 석유화학, 기계부품, 섬유, 장신구 등
	수입	▶[최 중] 94.6 ~ 96.6%(국가별 상이) [既체결] 90.2 ~ 95.3%	▶농산물(곡류 가공품, 열대과일 등), 수산물(참치, 넙치, 김 등)
호·뉴	수출	▶[최 중] 100% [既체결] 100%	-
	수입	▶[최 중] 98.2%(호주), 97.9%(뉴질랜드) [既체결] 98.1%(호주), 97.9%(뉴질랜드)	▶[호주] 기타육류, 기타어류, 뱀장어 ▶[뉴질랜드] 기타어류
중 국	수출	▶[최 중] 91.1% [既체결] 90.6%	▶스테인레스강선재, 화학기계, 선박용 부품, 의료용기기, 기타산업기계 등
	수입	▶[최 중] 92.0% [既체결] 92.0%	▶텍스트린, 녹용
일 본	수출	▶[최 중] 83% * 농산물: 54.1%, 수산물 46.9%	▶플라스틱 제품, 합성수지, 증류주(소주 등), 판유리, 정밀화학원료 등
	수입	▶[최 중] 83% * 농산물: 46.2%, 수산물 47.9%	▶플라스틱 제품, 판유리, 석유화학(제품·중간원료), 정밀화학원료, 맥주 등

※ 협정 부속서 I 관세 양허표, 시행령 제2조제21항 및 별표17의6

3. 관세 인하 또는 철폐

□ 협정 부속서 I(관세 양허표)에 따라 다른 당사국들의 원산지 상품에 대한 자신의 관세를 인하 또는 철폐

□ 협정 부속서 I(관세 양허표)에 따른 관세율보다 세계무역기구협정(WTO)에 따른 최혜국 실행관세율이 낮을 경우, 다른 당사국들의 원산지 상품에 최혜국 실행관세율을 적용 가능

4. 상품분류·관세평가

□ [상품분류] 당사국들 간 무역에서의 상품분류는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HS)에 합치되어야 함

※ 협정 제2.7조 (상품 분류)

- ☐ [관세평가] 당사국들 간 교역되는 상품의 관세가격 결정 목적상 1994년도 GATT 제7조 및 관세평가협정 제 1부 및 부속서 I 의 주해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적용

※ 협정 제2.8조 (관세 평가)

5. 관세 양허표의 변경

- ☐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HS)의 주기적 수정 후 개정된 품목분류에서 부속서 I 의 관세 양허표 이행을 위해 각 당사국이 양허표를 변경하는 경우 부속서 I 의 관세 양허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보장

※ 협정 제2.14조 (관세 양허표의 변경)

6. 관세면제 대상 일시수입 물품 등

- ☐ [일시수입 물품]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명시된 기간 내 재수출될 예정이며, 사용에 따른 통상적인 감가상각 및 손실을 제외한 어떠한 변화도 거치지 않은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시수입 상품은 원산지와 관계없이 관세 면제 가능

《규칙 제30조제1항 적용 대상 물품》

- ① 언론장비 텔레비전 방송용 장비, 소프트웨어, 방송·영화 촬영 장비 등 일시 입국하는 사람의 영업활동, 거래 또는 직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②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물품 (구성부품, 보조기구와 부속품 포함)
③ 운동경기용 물품 (시범용 및 훈련용 물품 포함)
④ 상용건품
⑤ 물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거나 임대하기 위하여 그 성질·작동 등을 보여주는 시연용 영상 또는 음향 기록매체, 다만, 일반대중을 위한 방송용은 제외
- ☐ [상용건품] RCEP 회원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상용건품은 상품의 원산지와 관계없이 관세 면제 가능, 다만, 건품 이외의 용도로 판매되거나 사용되기에 부적합하도록 천공, 절단 등 건품화 처리가 된 물품 또는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금액 이하로서 건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으로 한정
- ☐ [컨테이너·팔레트 일시반입] 각 당사국은 자신의 법과 규정 또는 자신이 당사국인 관련 국제 협정 규정에 규정된 대로, 국제운송에서 상품의 선적에 사용되거나 사용될 컨테이너·팔레트에 대하여 원산지와 관계없이 무관세 일시반입 허용

※ 협정 제2.10조(상품의 일시반입) 및 제2.11조(컨테이너 및 팔레트의 일시 반입), 법 제30조제1항, 규칙 제30조제1항 및 제6항

II. 원산지 규정

1. 개요

- ☐ [특징] ❶역내(15개국) 원산지결정기준 통합, ❷회원국 전역에서 조달한 재료의 누적 인정, ❸원산지 자율증명(인증수출자 한정) 도입
- ☐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 결정의 일반기준과 품목별기준을 규정

○ 당사국 내에서 ①완전 획득·생산, ②원산지 재료로만 생산, ③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한 생산(부속서3-가*

(품목별 원산지 규정) 충족)

- 당사국 내 재료의 누적은 협정 발효 즉시 시행, 완전누적은 시행 유보(발효 후 5년 내에 검토 완료)

□ **[원산지절차]** 원산지증명, 인증수출자, 특혜관세 적용, 원산지 검증, 원산지 정보교환 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대해 규정

- **(원산지증명)** ①기관발급, ②인증수출자에 의한 자율증명, ③수출자 또는 생산자 자율증명 방식*

* ③수출자·생산자 자율증명 방식은 협정발효 후 10년 내(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는 20년 내) 시행하도록 규정되었으며, 우리나라는 시행시기 미정

- **(인증수출자)** 인증수출자 요건 및 의무, 인증수출자 DB 구축·등록 등 수출당사국 권한있는 당국의 의무 등을 규정
- **(특혜 적용)** 유효한 원산지증명에 기초하여 특혜관세 신청, 수입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명시된 기간 내 사후신청 가능
- **(검증)** 수입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수입자, 상대국의 수출자 및 생산자, 수출당사국의 발급기관 등에서 면으로 정보 요청 가능, 필요한 경우 수출자 및 생산자에 대한 방문검증 실시

2. 정 의

□ 협정 제3장(원산지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규정

- **(생산)** 재배, 채굴, 수확, 농작, 사육, 번식, 추출, 채집, 수집, 포획, 어로, 양식, 덧사냥, 수렵, 제조, 생산, 가공 또는 조립을 포함한 상품 획득의 방법
- **(상품)** 모든 제품, 생산품, 물품 또는 재료
- **(대체가능 상품 또는 재료)** 상업적 목적으로 호환 가능하고 그 특성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상품 또는 재료
-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 수입, 경비, 비용, 자산 및 부채의 기록, 정보의 공개 그리고 재무제표의 작성에 대하여 당사국에서 컨센서스로 인정된 또는 실질적이고 권위있는 지지를 받는 원칙(세부 표준, 관행, 절차 및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지침 포함)
- **(본선인도가격(FOB))** 운송수단과 관계없이, 해외 최종 선적 항구 또는 장소까지 드는 운송비용을 포함한 상품의 본선인도가격
- **(운임보험료포함가격(CIF))** 수입국으로 들어오는 항구 또는 반입지까지의 보험비용 및 운임을 포함한 수입된 상품의 가격
- **(권한 있는 당국)** 당사국에 의하여 지정되고 그 밖의 당사국들에 통보된 하나 또는 복수의 정부 당국
- **(관세당국)** 각 당사국의 법에 따라 그 당사국의 관세법 및 규정의 행정 및 집행을 담당하는 모든 당국
- **(발급기관)** 당사국에 의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도록 지정되거나 권한을 받고 그 밖의 당사국들에 통보된 기관

※ 협정 제3.1조(정의)

3. 일반 원칙

□ **[원산지 상품]** 다음의 상품을 협정상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 다만, 협정 제3장의 모든 적용 가능한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원산지 상품의 종류 》

- ① [완전생산(WO)] 당사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
- ② [원산지 재료로만 생산(PE)] 하나 이상의 당사국으로부터의 원산지 재료로만 당사국에서 생산된 상품
- ③ [품목별 원산지기준 충족(PSR)]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당사국에서 생산하였으나, 품목별 원산지 규정 (부속서 3-가)의 요건을 충족하는 상품

- 완전생산 상품과 원산지 재료로만 생산된 상품은 해당 상품의 품목별 원산지기준과 상관없이 원산지 지위 인정
- 상품의 가치는 1994년도 GATT 제7조 및 관세평가협정에 따라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산정되며, 비용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준에 따라 기록·유지됨

※ 협정 제3.2조(원산지 상품)

□ [완전생산 상품] 다음은 당사국에서 완전 획득·생산으로 간주

《 완전생산 상품 》

- ① 당사국에서 재배 및 수확, 수집 또는 채집된 과일, 꽃, 채소, 나무, 해초, 균류, 그리고 살아있는 식물을 포함한 식물 및 식물성 상품
- ② 당사국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살아있는 동물
- ③ 당사국에서 사육된 살아있는 동물로부터 획득한 상품
- ④ 당사국에서 수행된 수렵, 밋사냥, 어로, 농작, 양식, 채집 또는 포획에 의해 획득된 상품
- ⑤ 당사국의 토양, 수역, 해저 또는 해저 하부의 하층토로부터 추출되거나 채취된 ①부터 ④까지에 포함되지 않는 광물 및 그 밖의 천연 자원
- ⑥ 국제법에 따라 당사국들 및 비당사국들 영해 밖의 수역, 해저 또는 해저 하부의 하층토에서 그 당사국의 선박에 의하여 획득된 어로 상품 및 그 밖의 해양생물, 그리고 그 당사국 또는 그 당사국의 인에 의하여 획득된 그 밖의 상품. 다만, 어떠한 당사국 또는 비당사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획득된 어로 상품 및 그 밖의 해양생물의 경우, 그 당사국 또는 그 당사국의 인은 그러한 배타적 경제수역을 개발할 권리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 밖의 상품의 경우, 그 당사국 또는 그 당사국의 인은 국제법에 따라 그러한 해저 또는 해저 하부의 하층토를 개발할 권리가 있어야 함
- ⑦ 그 당사국의 선박에 의하여 국제법에 따른 공해로부터 획득된 어로 상품 및 그 밖의 해양생물
- ⑧ 그 당사국의 가공선박에서 ⑥부터 ⑦까지에 언급된 상품만을 사용하여 가공되거나 만들어진 상품
- ⑨ 상품의 처분, 원재료의 회수 또는 재활용 목적으로만 적합한 다음의 상품
 - 가) 당사국에서의 생산 또는 소비로부터 얻어진 폐기물 및 부스러기
 - 나) 당사국에서 수집된 중고품
- ⑩ ①부터 ⑨까지에 언급된 상품 또는 그 파생품만으로 그 당사국에서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

※ 협정 제3.3조(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

□ [원산지 재료로만 생산된 제품] 한 당사국의 원산지 재료로만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경우 이외에도

- 다른 당사국에서 원산지 지위를 획득한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협정 제3.4조에 따라 원산지 재료의 누적을 인정하여 원산지 재료로만 생산된 상품으로 인정 가능
- 수출당사국에서 수행된 공정이 협정 제3.6조의 “최소 공정 및 가공”에 해당하더라도 원산지 지위가 인정되나, 원산지 국가는 원산지 재료 중 최고가치를 기여한 당사국으로 달리 결정될 수 있음

* 상세 내용은 「관세차별」 항목 참조

□ [품목별 원산지기준 충족 상품] II.4. 품목별 원산지기준 참조

4. 품목별 원산지기준

□ [개요] 협정 부속서 3-가에서 총 5,205개 세번(HS 2012, 6단위기준)에 대해 원산지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개별 조건을 규정

- (특징) 우리나라가 既 체결한 FTA와 유사하나, 최신 생산공정 반영과 역내 공급망 활용 극대화 등을 위해 일부 기준 완화

《 품목별 원산지기준 RCEP (PSR) 현황 》

업종	PSR 구조
화학	▶대부분 “세번변경기준(CTH, CTSH)”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 40% 이상” 중 선택 ▶일부 품목은 공정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반응(Chemical Reaction)” 도 선택 가능 ▶대부분 “세번변경기준(CC, CTH)” 으로 규정
섬유·의류	▶한-아세안 FTA 등에서 규정된 의류의 공정기준(재단 및 봉제 수행) 삭제 ▶대부분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 40% 이상” 중 선택
철강	▶스테인레스강 중 일부 품목은 “6단위 세번변경(CTSH)”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 40% 이상” 중 선택
자동차	▶[완성차] “역내가치포함비율 40% 이상” 으로 한-아세안 FTA(RVC45) 대비 완화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 40% 이상” 중 선택 ▶대부분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 40% 이상” 중 선택
기계, 전기·전자	▶세탁기·냉장고·에어컨 등 일부 품목은 “6단위 세번변경(CTSH)”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 40% 이상” 중 선택 ▶대부분 “완전생산기준(WO)” 또는 “2단위 세번변경기준(CC)”
농축수산물	▶수산물(어육 등), 낙농품(분유 등), 화초류 등 일부 품목은 “2단위 세번변경기준 (CC)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 40% 이상” 중 선택
가공식품류	▶대부분 “2단위 세번변경기준(CC)” 또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 적용

※ RCEP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은 HS2012 기준이며, 협정 발효 後 당국간 이행 협상을 통해 HS2022로 현행화될 예정 (관세청 FTA포털사이트를 통해 공지)

□ [역내가치포함비율(RVC) 계산] 공제법 또는 집적법 사용

《 역내가치포함비율 계산 방법 》

- ▶ 공제법(Build-down): 상품에 포함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를 제외

$$= (\text{본선인도가격(FOB)} - \text{비원산지재료가치(VNM)}) \div \text{본선인도가격(FOB)} \times 100\%$$
- ▶ 집적법(Build-up): 상품에 포함된 원산지 재료의 가치와 제조에 사용된 경비 등을 합산

$$= (\text{원산지재료가치(VOM)} + \text{직접노무비} + \text{직접경비} + \text{이윤} + \text{그 밖의 비용}) \div \text{본선인도가격(FOB)} \times 100\%$$

《 역내가치포함비율 계산 시 사용되는 용어 》

- ▶ 역내가치포함비율(RVC): 백분율로 표시
- ▶ 원산지재료가치(VOM): 획득 또는 자가생산되어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산지 재료, 부품 또는 생산품의 가치
- ▶ 비원산지재료가치(VNM):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
- ▶ 직접 노무비: 임금, 보수 및 그 밖의 피고용인 수당 포함
- ▶ 직접 경비: 총 간접비용

- (FOB 가격의 특례)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물품의 실제 FOB 가격을 알 수 없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최종 확인 가능한 가격으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없음

《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 산정 방법 》

- ▶ 획득 경로별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 산정 기준

- ① (수입된 재료) 수입 시 재료의 운임보험료포함가격(CIF)
- ② (당사국에서 획득된 재료) 최초로 확인 가능한 지불된 가격 또는 지불해야 하는 가격
- ▶ 원산지가 결정되지 않은 재료는 비원산지 재료로 취급
- ▶ 확인 및 입증 가능한 다음의 비용은 비원산지 재료 또는 원산지가 결정되지 않은 재료의 가치에서 차감할 수 있음
 - ① 상품을 생산자에게 운송하는데 발생한 화물비, 보험료, 포장비 및 그 밖의 운송 관련 비용
 - ② 면제, 환급되거나 달리 회수되는 관세 외의 관세, 조세 및 통관 증개수수료
 - ③ 재활용 가능한 부스러기나 부산물의 가치를 차감한 폐기물과 손상물의 비용

※ 협정 제3.5조(역내가치포함비율의 산정), 원산지규정 이행지침 6번

- [세번변경기준(CTC)] 비원산지 재료에 대해서만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며, 특정 세번으로부터의 변경을 명시적으로 배제하는 경우 그 배제는 비원산지 재료에만 적용
- [화학반응(CR)] 해당 화학반응의 결과로 생산된 모든 상품에 대해 원산지 지위 인정

《 화학반응의 정의 및 제외 대상 》

- ▶ (정의), 생화학 가공을 포함하여, 분자 내 결합의 파괴 및 새로운 분자 내 결합의 생성 또는 분자 내 원자의 공간배열 변경을 통하여 새로운 구조를 가진 분자를 만들어내는 가공을 의미
- ▶ (제외대상)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학반응으로 불인정
 - ① 물 또는 그 밖의 용제에 용해되는 것
 - ② 용매수를 포함한 용제의 제거
 - ③ 결정수의 첨가 또는 제거

※ 협정 부속서3-가(품목별 원산지 규정)

- [최소 공정 및 가공] 협정 제3장(원산지 규정)의 어떠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에 다음에 해당하는 공정만 수행된 상품에 대해서는 원산지 지위 불인정

《 협정 제3.6조에 따른 최소 공정 및 가공 》

- ① 운송 또는 보관 목적상 상품이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보존 공정
- ② 운송 또는 판매를 위한 상품의 포장 또는 전시
- ③ 감별, 채질, 선별, 분류, 연마, 절단, 쪼개기, 분쇄, 구부리기, 감기 또는 풀기로 구성되는 단순한 가공
- ④ 상품 또는 그 상품의 포장에 마크, 라벨, 로고 또는 그 밖의 유사한 구별 표시의 부착 또는 인쇄
- ⑤ 상품의 특성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으면서 물이나 다른 물질로 단순 희석
- ⑥ 제품의 부품으로의 분해
- ⑦ 동물의 도살
- ⑧ 단순한 페인팅 및 광택 공정
- ⑨ 단순 탈피, 씨 제거 또는 탈각
- ⑩ 다른 종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상품의 단순한 혼합
- ⑪ ①부터 ⑩까지의 공정 중 둘 이상의 조합
- ※ “단순한”은 특별한 기술 또는 그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히 생산되거나 설치된 기계 기기 또는 장비를 필요로 하지 않는 활동을 의미

- 협정 제3.6조의 품목별 원산지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최소 공정 및 가공’ 요건은 협정 제2.6조제5항의 관세차별 상품이 수출당사국 원산지를 인정받기 위한 ‘최소공정’과 동일(적용범위는 상이)

※ 협정 제3.6조(최소 공정 및 가공)

5. 특례 규정 : 누적

- ☐ **[누적]** 재료누적은 협정 발효 즉시 시행, 완전누적(공정 및 부가가치의 누적)은 모든 회원국에 대한 협정 발효 후 5년 내 검토
- **(재료누적)** 한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 또는 재료가 다른 당사국에서 상품 또는 재료의 생산에 사용되는 경우, 그 최종 상품 또는 재료의 작업이나 가공이 발생한 당사국의 원산지 지위 인정
 - **(완전누적)** 당사국들에서 수행되는 모든 생산(공정누적) 및 상품에 부가되는 가치(부가가치 누적)에 대한 누적 확대의 적용여부를 모든 회원국이 협정을 발효하는 날부터 검토
- ☐ **[누적 중빙]** 수입당사국의 관세당국은 수입물품의 원산지 검증 수행 시 누적의 입증서류로서 원산지증명을 요구할 수 있음

※ 협정 제3.4조(누적)

6. 특례규정 : 기타

- ☐ **[최소허용수준(미소기준)]** 부속서 3-가(품목별 원산지 규정)에 규정된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상품이 라도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

《 최소허용수준 인정 기준 》

- ①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고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상품 본선인도가격(FOB)의 10% 이하
- ② 섬유 및 의류(제50류~제63류로 분류되는 상품)의 경우에는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고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비원산지 재료의 중량이 상품 중량의 10% 이하

※ 협정 제3.7조(최소허용수준)

- ☐ **[포장재료 및 용기]** 용도에 따라 달리 적용

- **(운송·선적용)** 상품의 원산지 지위 결정 시 고려하지 않음
- **(소매 포장용)** 해당 상품에 역내가치포함비율(RVC)을 적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산지 지위 결정 시 고려하지 않음

* 역내가치포함비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포장재료, 용기의 원산지 지위에 따라 각각 원산지 재료 또는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에 포함하여 계산

※ 협정 제3.8조(포장과 포장재료 및 용기의 취급)

- ☐ **[부속품, 예비부품 및 공구]** 상품과 함께 제시된 부속품, 예비부품, 공구 및 사용 설명서나 그 밖의 안내서는 다음 조건에 따라 원산지 지위 결정에 반영

《 원산지 지위 결정 시 부속품 등의 적용 기준 》

- ① 세번변경기준 또는 가공공정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부속품 등을 고려하지 않음
 - ② 역내가치포함비율 요건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속품 등의 (RVC) 원산지 지위에 따라 각각 원산지 재료 또는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에 포함하여 계산
- ※ 다만, 부속품 등은 해당 상품과 동일한 송장이 발급되어야 하며, 수량 및 가치가 해당 상품 대비 통상적 수준이어야 함

※ 협정 제3.9조(부속품 예비부품 및 공구)

□ **[간접재료*]** 아래의 물품은 생산된 장소와 관계없이 원산지 재료로 취급됨

* 상품의 생산, 시험 또는 검사에 사용되지만 그 상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지 않거나, 상품의 생산과 관련된 건물의 유지 및 설비의 운영에 사용되는 물품

《 간접재료로 인정 가능한 물품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① 연료 및 에너지② 도구, 형판 및 주형③ 설비 및 건물의 유지에 사용되는 예비부품 및 상품④ 생산에 사용되거나 설비 및 건물의 운영에 사용되는 윤활제, 그리스, 혼합물 및 그 밖의 재료⑤ 장갑, 안경, 신발, 의류, 그리고 안전장비 및 보급품⑥ 상품의 시험 또는 검사에 사용되는 설비, 장치 및 보급품⑦ 촉매제 및 용제⑧ 상품에 결합되지 않으나 그 상품 생산의 일부로 사용되었음이 합리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그 밖의 모든 상품 |
|---|

※ 협정 제3.10조(간접재료)

□ **[대체가능 상품 또는 재료*]** 아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따라 원산지 지위 결정

* 동종이고 상업적으로 동질하며, 동일한 기술적 및 물리적 특성을 가지고, 최종 상품에 결합되는 경우 별도로 구별되지 않는 상품 또는 재료를 의미

《 대체가능 상품 또는 재료에 대한 원산지 인정 기준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① 각각의 대체가능 상품 또는 재료를 물리적으로 분리하여 보관② 대체가능 상품 또는 재료가 혼합되는 경우 수출당사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서 사용되는 재고관리기법*에 따라 원산지 판정 <p>* 다만, 해당 재고관리기법은 해당 회계연도에 동일하게 사용되어야 함</p> |
|---|

《 (참고) 다른 FTA에서 인정되는 재고관리기법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① (개별법) 원산지 재료와 비원산지 재료를 구분하여 각 재료의 원산지에 따라 그 제품의 원산지 결정② (선입선출법) 입고한 재료 중 먼저 입고한 재료가 먼저 출고된 것으로 보아 먼저 입고된 재료의 원산지를 기준으로 그 제품의 원산지 결정③ (후입선출법) 입고한 재료 중 가장 최근에 입고한 재료가 먼저 출고된 것으로 보아 최근에 입고된 재료의 원산지를 기준으로 그 제품의 원산지 결정④ (평균법) 보관 중인 원산지 재료와 비원산지 재료의 구성비율을 기준으로 그 제품의 원산지를 결정. 이 경우 원산지 재료와 비원산지 재료의 구성비율 계산은 보관 또는 취득한 원산지 재료와 비원산지 재료의 취득가격이나 수량 등을 기준으로 적용⑤ ① ~ ④ 외에 상품이 생산된 회원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 |
|--|

※ 협정 제3.11조(대체가능 상품 또는 재료)

7. 직접 운송

□ **[원칙]** 수출당사국에서 수입당사국으로 직접 운송되지 않는 상품은 원산지 지위 불인정

○ 직접운송의 입증 책임은 수입자에게 있음

□ **[예외]** 상품이 수출당사국과 수입당사국 외에 하나 이상의 당사국들(이하 “중간 경유 당사국들”) 또는 비당사국들을 경유하여 운송되는 경우에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직접운송된 것으로 간주

《 직접운송 예외 인정 요건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① 중간 경유 당사국들 또는 비당사국들에서 하역, 재선적, 보관 또는 그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거나 수입 당사국으로 운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모든 공정 이외의 공정이 수행되지 않아야 하고, |
|--|

- ② 상품이 경유하는 중간 경유 당사국들 또는 비당사국들에서 관세당국의 통제하에 있어야 함
- ※ 상기 요건이 충족됨을 입증하기 위해 수입자는 수입당사국의 관세당국에서 요구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 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 복합 또는 결합운송 서류, 그 상품에 대한 상업송장 원본의 사본, 재무 기록, 비조작증명서 또는 그 밖의 관련 증명서류 같은 상업선적 서류나 화물운송 서류 등

※ 직접운송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수출당사국과 수입당사국을 제외한 다른 회원국을 비당사국과 동일하게 취급함에 유의

※ 협정 제3.15조(직접운송)

III. 관세차별

1. 개요

- 당사국은 각 회원국에 대한 관세 양허표를 개별적으로 작성하므로, 같은 품목이라도 수출국가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지는 경우 발생
- 이에 따라 세율이 유리한 국가를 통한 우회수출*을 방지하기 위해 RCEP 회원국 내에서도 원산지 국가를 결정하기 위한 요건 규정
- * (예시) A국 상품이 B국을 단순 경유하여 C국(A국產 10%, B국產 2% 양허)에 수입
- [대상] 수출국은 RCEP 회원국이어야 하고, 수입물품은 RCEP 협정 제3장을 충족하는 원산지 상품이어야 함
- (관세차별 일반품목*) 수입당사국이 수출당사국에 대한 수입물품의 관세율을 상이하게 지정한 품목
- * 수출당사국에서 최소공정 이외의 추가공정을 수행하도록 규정

《 회원국별 관세 양허표 운영 현황 》

- ▶ 우리나라 및 인도네시아·필리핀·베트남·중국은 각 회원국별로 상이한 관세 양허표를 운영하는 반면, 브루나이·캄보디아·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싱가포르·태국·호주·일본·뉴질랜드는 회원국 전체에 단일한 관세 양허표 운영
- ▶ 다만, 단일한 관세 양허표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품목마다 국가별 관세율을 달리 지정한 경우가 있으므로, 해당 수출입 상품에 대한 수입 당사국의 관세 양허표를 확인하여 관세차별 품목 여부 파악

- (민감품목*) 수입당사국이 협정 부속서1 부록에 규정한 품목
- * 수출당사국에서 수출물품 총 가액의 20% 이상 부가가치가 발생(DV20)하도록 규정

《 회원국별 민감품목 운영 현황 》

- ▶ 우리나라 및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필리핀·태국·베트남·중국·일본만 운영

2. 관세차별 물품의 원산지 국가 결정 방법

※ RCEP 원산지 지위 결정(협정 제3장) → RCEP 원산지 국가 판단(협정 제2.6조)

- 수출자(또는 생산자)는 수출품이 협정 제3장의 요건을 충족하는 RCEP 원산지 상품인 경우, 아래 단계에 따라 원산지 국가를 판단하여 원산지증명의 'RCEP Country of Origin' 란에 기재(신청)

※ 이전 단계에서 원산지 국가가 결정되면 다음 단계를 고려할 필요가 없음

《 (1단계) 수입당사국의 민감품목 지정여부 확인 : 협정 부속서1 부록 》

[민감품목의 원산지 국가 결정] : 추가요건(Domestic Value addition)*

- ▶ 수출당사국에서 수출물품 총 가액의 20% 이상의 부가가치(DV20)가 발생한 경우 : 원산지 국가는 수출당사국
- ▶ 수출당사국에서 수출물품 총 가액의 20% 미만의 부가가치가 발생한 경우 : 원산지 국가는 원산지 재료에 최고 가치를 기여한 당사국

- * (유의사항) ❶ 수출당사국이 아닌 다른 당사국의 재료는 DV 계산 시 원산지 재료의 가치에 포함되지 않음
 ❷ 품목별 원산지기준이 세번변경인 경우에도 원산지 국가 판단을 위해서는 역내산 재료의 가치를 확인해야 할 수 있음

《 (2단계) 수입당사국의 관세차별 일반품목 여부 확인 : 관세 양허표 》

[관세차별 일반품목의 원산지 국가 결정] : 최소공정* 이외의 추가공정

- ▶ 협정 제3.2조 가목 및 다목에 따른 상품의 경우 : 원산지 국가는 수출당사국
- ▶ 협정 제3.2조 나목 + 수출당사국에서 최소공정 이외의 추가공정이 수행된 경우 : 원산지 국가는 수출당사국
- ▶ 협정 제3.2조 나목 + 수출당사국에서 최소공정만 수행된 경우 : 원산지 국가는 원산지 재료에 최고 가치를 기여한 당사국

- * 유의사항 협정 제2.6조제5항(최소공정)은 제3.6조(최소 공정 및 가공)과 동일하나, 협정 제2.6조제5항은 이미 원산지 지위를 가진 상품의 모든 재료에 적용되는 반면, 협정 제3.6조는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해 비원산지 재료에 대해서만 적용

《 (3단계) 협정 제2.6호제6항에 따른 최고세율 국가 확인 》

[협정 제2.6조제6항에 따른 원산지 국가 결정] : 수입자의 입증

- ▶ 원산지 재료에 기여한 당사국 중 수입당사국이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국가 (원산지 국가명에 * 표시), 또는
- ▶ 모든 회원국 중 수입당사국이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국가 (원산지 국가명에 **표시)

- 실무적으로 관세차별은 수출당사국이 원산지 국가가 아닌 경우 즉, 협정 제3.4조(누적)를 적용하는 물품, 협정 제3.19조(연결 원산지 증명)를 적용하는 원산지 상품 등에 고려되어야 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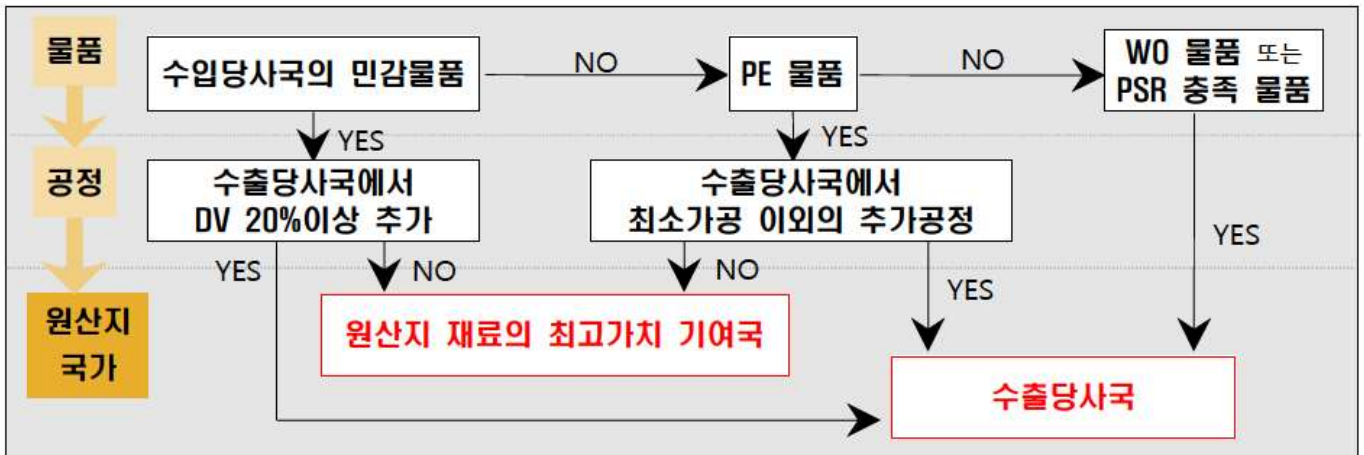
《 관세차별 적용결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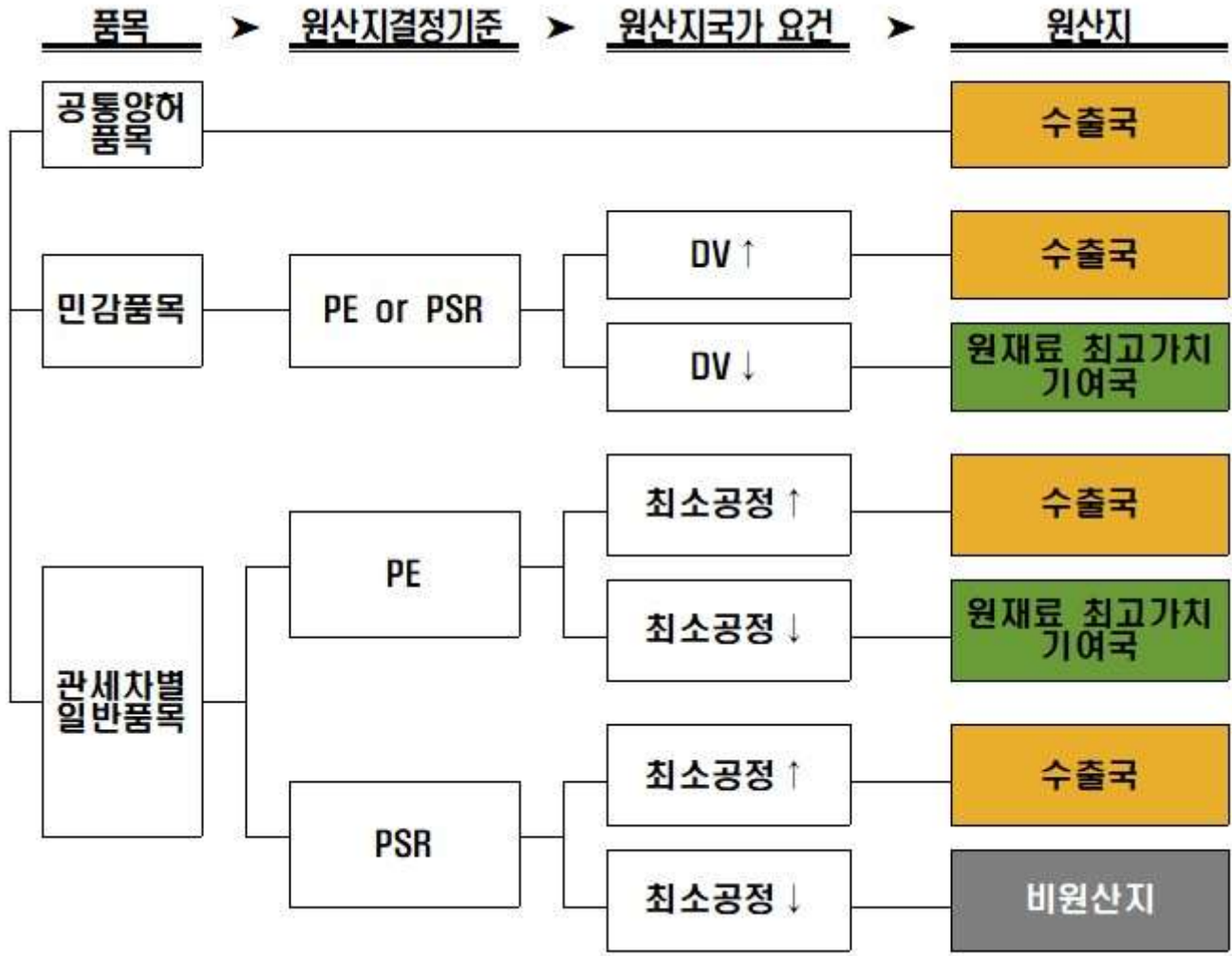
- 수출자의 원산지 국가 판단을 돕기 위해 RCEP 이행가이드에서는 다음과 같은 원산지 국가 결정 프로세스를 규정

※ 이해를 돕기 위해 간략히 수정하였으며, 정확한 내용은 이행가이드 및 overleaf note 확인

- 이 방법에 따르면 수출자는 수입당사국의 관세율표를 비교할 필요 없이 원산지 국가를 판단할 수 있음

《 관세차별 적용을 위한 원산지 국가 결정 순서도 》





상 황	RCEP 원산지 국가
① 상품이 수입당사국의 민감품목으로, 추가요건 불충족	원산지 재료 중 최고가치를 기여한 당사국
② 상품이 수입당사국의 민감품목은 아니지만, 원산지 재료로만 생산된 상품으로 수출당사국에서 최소공정만 수행*	
③ 상품이 수입당사국의 민감품목으로, 추가요건 충족	수출당사국
④ 상품이 수입당사국의 민감품목이 아니고, 원산지 재료로만 생산된 상품으로 수출당사국에서 최소공정 이외의 공정 수행	
⑤ 상품이 수입당사국의 민감품목이 아니고, 품목별 원산지기준 충족 물품	
⑥ 상품이 수출당사국의 완전생산물품	

* 이 경우 관세차별이 적용되지 않는 품목(공통양허품목)임에도 불구하고 수출당사국과 원산지 국가가 다르게 결정될 수 있으나, 관세율은 동일함

※ 협정 제2.6조(관세 차별), 부속서1 부록, 원산지규정 이행지침 8번

참고 : 관세차별 적용 예시

[민감품목]

- ▶ 일본이 A품목을 민감품목으로 지정하고, 한국 5%, 중국 10% 관세 양허
- ▶ 한국에서 호주(\$20), 베트남(\$30), 중국(\$40) 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A를 생산하고 일본에 수출
 - ⇒ ① A의 한국내 부가가치가 \$10인 경우(FOB \$100) 원산지 중국
 - ② A의 한국내 부가가치가 \$60인 경우(FOB \$150) 원산지 한국

[관세차별 일반품목]

상황 1

- ▶ 일본이 A품목을 민감품목으로 지정하지 않고, 한국 5%, 중국 10% 관세 양허
- ▶ 한국에서 호주(\$40), 중국(\$50) 원산지 재료로 A를 생산(FOB \$100)하고 일본에 수출
 - ⇒ ① 한국에서 최소공정만 수행한 경우 원산지 중국
 - ② 한국에서 최소공정 외의 추가공정을 수행한 경우 원산지 한국

상황 2

- ▶ 일본이 A품목을 민감품목으로 지정하지 않고, 한국 5%, 중국 10% 관세 양허, A의 품목별 원산지기준은 RVC 50
- ▶ 한국에서 미국(\$40), 중국(\$50)산 재료로 A를 생산(FOB \$100)하고 일본에 수출
 - ⇒ ① 한국에서 최소공정만 수행한 경우 역외산 (RCEP 특혜관세 ×)
 - ② 한국에서 최소공정 외의 추가공정을 수행한 경우 원산지 한국

[협정제2.6조제6항]

- ▶ 일본이 A품목을 민감품목으로 지정하고, 한국 5%, 중국 10%, 베트남 15%, 나머지 회원국에 10% 관세 양허
- ▶ 한국에서 미국, 한국, 중국산 재료(가격 미상)를 사용하여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는 A를 생산(FOB \$100)하고 일본에 수출
 - ⇒ ① 원산지 재료의 기여국인 한국·중국 중 고세율인 중국산(이 경우 수입자 에게 입증 책임), 또는
 - ② 회원국 중 고세율인 베트남산

《 민감품목의 원산지 국가 결정 실무(예시) 》

- ▶ 대상품목 : 무수프탈산(HS 2917.35)
- ▶ 제조 및 수출국 : 한국 / ▶수입국 : 인도네시아
- ▶ 인도네시아측 관세양허 : (MFN) 5%, (중국産) 미양허, (한국産) 4.6%

〈 원재료 사용 내역 〉

품 명	HS 코드	원산지	원산지 재료 여부	한국산 재료 여부	가격
크실렌	2902.11	중국	○	X	\$20
산화바나듐	2825.30	호주	○	X	\$5
경비+이윤					\$3
국내 운송비					\$0.50
상품가격					\$28.50

- ▶ 원산지 판정 결과 : 원산지결정기준은 충족하나 중국산으로 특혜 실익 없음
 - 원산지 지위 : 원산지 재료로만 생산(PE)되었으므로 RCEP 원산지 상품
 - 원산지 국가 : 수출국 부가가치가 20% 미만($(28.5-2.5)/28.5=12.5\%$)이므로 원산지 재료의 최대가치 기여국인 중국산으로 판정

《 협정 제2.6조제6항가호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 실무(예시) 》

- ▶ 대상품목: 고무매트(HS 4016.91)
- ▶ 제조 및 수출국 : 한국(다만, 최소공정 이상 공정 미수행) / ▶수입국 : 필리핀
- ▶ 필리핀 측 관세양허 : (중국産) 0%, (인도네시아産) 0%, (한국産) 7%

〈 원재료 사용 내역 〉

품 명	원산지	역내산 재료 여부	가격
합성고무	중국	○	미상
염화비닐	인도네시아	○	미상
플라스틱 시트	한국	○	미상

- ▶ 원산지 판정 결과 :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한국에 대한 관세율(7%) 적용
 - 원산지 지위 : 원산지 재료로만 생산(PE)되었으므로 RCEP 원산지 상품 (한국에서 불인정공정만 수행한 것은 원산지 지위에 영향×)
 - 원산지 국가 : 수출국에서 불인정공정만 수행되었고 원산지 재료 가격을 알 수 없어 원산지 국가 판정이불가하므로, 원재료 공급국 중에 최고 관세율이 적용되는 한국산으로 적용 가능
- ※원산지증명 제11번란 작성 시 RCEP 원산지 국가명 뒤에 “*” 표기

IV. 원산지 증명

1. 개요

☐ [원산지증명 대상] 아래를 모두 충족하는 물품에 원산지증명 가능

《 원산지증명을 위한 요건 》

- ① 협정 제3장(원산지 규정)의 모든 관련 규정 준수
- ② 협정 제2.6조(관세 차별)에 따라 원산지 국가 결정
- ③ 특혜관세 적용 대상이 되는 모든 상품이 개별적으로 자격을 갖추어야 함

☐ [발급방식] ①기관발급 또는 ②인증수출자에 의한 자율증명*

* 수출자·생산자 자율증명(완전 자율증명) 방식은 협정발효 후 10년 내(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는 20년 내) 시행하도록 규정되었으며, 우리나라는 시행시기 미정

☐ [발급형태] 영어로 작성된 ①서면본(종이) 또는 ②전자본*

《 회원국별 인정되는 원산지증명 형태 》

회원국	종이 C/O 원본의 스캔본	전자 발급된 C/O의 인쇄본	모든 전자적 C/O (eCO, 스캔본 등 포함)
한국	○	○	○
브루나이		○	
인도네시아			○
말레이시아		○	
싱가포르	○	○	○
베트남			○
호주	○	○	○
중국		○	○
일본		○	○
뉴질랜드			○

※ 수입국에서 특혜 적용 시 인정되는 원산지증명의 전자본 형태는 회원국 별로 상이하며, 상기 표는 참조용으로 각 회원국별 인정 기준은 RCEP 홈페이지(<https://rcepsec.org/rules-of-origin>) 확인

《 우리나라의 RCEP 원산지증명서 발급(출력) 방법 》

- ① 서면본: 원본(Original Copy) 1부만 인쇄 가능
- ② 전자본: 수출상대국이 전자본을 인정하는 국가인 경우 PDF 내려받기* 가능

* 시행일은 관세청 FTA포털사이트를 통해 별도 공지

※ RCEP의 전자적 원산지 정보교환 시스템(EODES) 도입은 향후 검토

☐ [국가명 기재] 원산지증명 상의 국가명은 아래 기준에 따른 영문명으로 기재되어야 하며, 다른 방식(ISO부호 등)은 사용 불가

《 RCEP 원산지증명 상의 국가명 기재 방법 》

국문명	영문명	국문명	영문명
호주	Australia	라오인민민주주의공화국	Lao PDR
브루나이다루살람	Brunei Darussalam	말레이시아	Malaysia
캄보디아왕국	Cambodia	미얀마연방	Myanmar
중화인민공화국	China	뉴질랜드	New Zealand
인도네시아공화국	Indonesia	필리핀공화국	Philippines
일본국	Japan	싱가포르공화국	Singapore
대한민국	Korea	태국왕국	Thailand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Viet Nam

□ **[유효기간]** 원산지증명은 발급 또는 작성일로부터 1년 유효

□ **[적용시점]** 우리나라의 협정 발효일('22.2.1.)부터 발급(작성) 가능

- 다만, 우리나라 협정 발효일에 아직 협정이 발효되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의 협정 발효일*부터 발급(작성) 가능

* 해당 일자는 관세청 FTA 포털사이트를 통해 별도 공지 예정

2. 기관발급 원산지 증명서

□ **[신청인]** 수출자, 생산자, 또는 권한을 받은 그들의 대리인

□ **[발급기관]** 세관 또는 대한상공회의소

※ 각 회원국별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RCEP 홈페이지(<https://rcepsec.org/rules-of-origin>)에서 확인 가능

□ **[발급절차]** 수출물품의 선적 전까지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에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발급기관에 제출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http://unipass.customs.go.kr>) 또는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센터(<http://cert.korcham.net>)에 접속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신청·발급

- **(인증수출자 혜택)**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하고자 하는 업체별 또는 RCEP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는 첨부서류 제출 생략

《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첨부서류 》

- | |
|--|
| <p>① 수출신고 수리필증 사본(증명서발급기관이 수출사실 등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생략 가능)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p> <p>가. 자유무역지역에서 생산된 물품: 국외반출신고서 사본</p> <p>나. 개성공업지구에서 산된 물품: 보세운송신고서 사본</p> <p>다. 우편물·탁송품 및 별송품: 영수증 · 선하증권 사본 또는 그 밖에 계약상대국 으로 수출하였거나 수출할 것임을 나타내는 서류</p> <p>②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p> <p>③ 원산지확인서(최종물품에 대한 원산지확인서로서 해당 물품의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p> <p>④ 원산지소명서. 다만,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생산자는 원산지소명서를 증명서발급기관에 직접 제출할 수 있음</p> <p>⑤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정보 및 국내제조확인서 (발급기관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며,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생산자는 해당 서류를 증명서발급기관에 직접 제출할 수 있음)</p> |
|--|

□ **[소급발급]** 비자발적 오류, 누락 또는 그 밖의 사유 및 정정발급 상황에서 원산지증명서가 선적전*까지 미발급된 경우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급발급 신청 가능

* [소급발급 대상기간 비교] (한-중국 FTA) 선적일 후 7근무일 이내에 미발급
(한-아세안FTA) 선적일로부터 3근무일 이내에 미발급

- 소급발급 원산지증명서에는 “ISSUED RETROACTIVELY” 문구 기재

□ **[재발급]** 원산지증명서 원본이 도난, 분실 또는 멸실된 경우, 원본의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진정등본 발급 신청 가능

- 재발급 원산지증명서에는 원본과 동일한 발급번호, 발급일자와 “ CERTIFIED TRUE COPY ” 문구 기재

□ **[정정발급]** 원산지증명서 정보가 부정확한 경우 발급기관은 아래 중 하나의 방법으로 원산지증명서를 정정할 수 있음

《 원산지증명서 정정 방법 》

- ① 기존의 원산지증명서를 무효화하고 신규 원산지증명서 발급
- ② 오류가 있는 부분을 줄을 그어 지우고 추가 또는 정정사항 기재. 다만, 변경된 사항에는 발급기관의 서명과 인장을 날인하여야 함

《 원산지증명서 재발급·정정발급 시 발급기관 제출서류 》

재발급	정정발급
①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①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② 재발급 신청사유서	② 원산지증명서 원본 (정정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원본 제출 조건으로 사본 제출 가능)
	③ 정정발급 신청사유서
	④ 정정사유 입증 가능한 서류

※ 협정 제3.17조(원산지 증명서), 규칙 제10조, 원산지규정 이행지침 2번

3.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의 작성방법

□ [원산지증명서 서식] ” 붙임 1 참조 “

□ [작성방법] 원산지증명서의 주요 항목은 아래 방법에 따라 기재

《 원산지증명서 주요 항목 기재 방법 》

- ① [3번란, 8번란] 생산자
 - 상품 생산자의 상세정보(이름 주소 및 국가)를 아는 경우 3번란에 기재
 - 생산자가 다수일 경우 3번란에 “SEE BOX 8” 라고 기재하고, 각 물품에 대한 생산자의 상세정보를 8번란에 기재
 - 생산자 정보에 대한 비밀 유지를 원하는 경우 “CONFIDENTIAL” 기재 가능. 다만 권한있는 당국 또는 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제공될 수 있음 ,
 - 생산자의 상세정보를 알 수 없는 경우 “NOT AVAILABLE” 기재 가능
- ② [9번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HS)
 - 수출상품의 6단위 세 번으로, 협정 부속서 3-가를 기초로 작성
- ③ [10번란] 원산지 결정기준

원산지결정기준	10번란에 기입
가. 협정 제3.2조가호를 충족하는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	WO
나. 협정 제3.2조나호를 충족하는 원산지 재료로만 생산된 상품	PE
다.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생산된 상품. 이 경우 그 상품은 협정 부속서 3-가에 규정된 품목별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세번변경	CTC
- 역내가치포함비율	RVC
- 화학반응	CR
라. 협정 제3.4조를 준수하는 상품	ACU
마. 협정 제3.7조를 준수하는 상품	DMI

※ “라.” 기준은 “나.” 또는 “다.” 기준에 병기하여 사용하며, “마.” 기준은 “CTC” 기준에 대해서만 병기하여 사용될 수 있음

- ⑤ [11번란] RCEP 원산지 국가
 - 이 지침 III.2. ‘관세차별 물품의 원산지 국가 결정 방법’에 따라 결정된 원산지 국가를 IV.1. ‘국가명 기재’에 따른 영문명으로 기재
 - 다만, RCEP 원산지 국가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가 제공한 정보에 기초하여 최

고세율 국가명 다음에 별표(*) 표시
 (협정 제2.6조제6항가호) 원산지 국가명 우측에 “*” 표시
 (협정 제2.6조제6항나호) 원산지 국가명 우측에 “**” 표시

- ⑥ [12번란] FOB 가격
 - 역내가치포함비율 기준으로 상품의 원산지 지위를 결정하는 경우에만 기재
- ⑦ [13번란, 14번란, 17번란] 송장
 - 송장번호와 날짜를 13번란에 기재하되, 다수의 송장 사용 시 각 물품별로 송장번호와 날짜를 기재
 - 수입에 사용된 송장이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해 발급되지 않은 경우 17번란의 “Third-Party invoicing” 박스에 체크 표시하고 해당 송장을 발행한 회사의 이름과 국가를 14번란에 기재
- ⑧ [14번란, 17번란] 연결 원산지증명서
 - 연결 원산지증명서인 경우 17번란의 “Back-to-back Certificate of Origin” 박스에 체크 표시하고, 원본 원산지증명서의 참조번호, 발급일, 발급 국가, 최초 수출당사국의 RCEP 원산지 국가, 그리고 적용 가능한 경우 최초 수출 당사국의 인증수출자 인증번호를 14번란에 기재
- ⑨ [17번란] 소급발급
 - 협정 제3.17조제8항에 따라 소급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인 경우 17번란의 “ISSUED RETROACTIVELY” 박스에 체크 표시
- ⑩ [14번란] 진정등본
 - 협정 제3.17조제9항에 따라 원본 원산지증명서의 진정등본이 발급된 경우 “CERTIFIED TRUE COPY” 문구와 진정등본의 발급일자를 14번란에 기재

※ 규칙 제15조제20항 및 별지 제24호의5 서식

4. 자율증명 원산지신고서

☐ **[작성권한]**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산지인증수출자

《 RCEP 원산지신고서 작성 가능한 원산지인증수출자 》

- ① 영 제7조제1호에 따른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② 영 제7조제2호에 따른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다만, RCEP 협정에 대해 인증받은 품목 단위 기준으로 한정한다

※ 인증수출자가 아닌 수출자·생산자에 의한 원산지신고(완전 자율증명)는 협정발효 후 10년 이내 이행될 예정

☐ **[서식]** 현재 협정 부속서 3-나(최소 정보 요건) 제2항의 정보가 포함된 어떤 서식이라도 사용이 가능하고, 향후 회원국 간 이행협상을 통해 원산지신고서 표준 서식이 제정될 예정*

※ 표준 서식 제정 직후 관세청 FTA포털사이트를 통해 공지

○ 원산지신고서는 영어로 작성되어야 하고, 증명인의 이름과 서명, 작성일자가 기재되어야 함

《원산지신고서 최소 정보 요건》

- ① 수출자 이름 및 주소
 ② 생산자 이름 및 주소 (아는 경우로 한정)
 ③ 수입자(수하인) 이름 및 주소
 ④ 상품명, HS6단위

- ⑤ 인증수출자의 경우에는 인증번호 또는 수출자 및 생산자 식별번호
- ⑥ 고유 참조번호
- ⑦ 원산지결정기준
- ⑧ 원산지신고서에 명시된 상품이 협정 제3장의 모든 요건을 충족한다는 인증된 서명권자의 증명
- ⑨ 협정 제2.6(관세차별)에 따른 RCEP 원산지 국가
- ⑩ FOB 가격(원산지 지위 결정에 역내가치포함비율을 사용한 경우로 한정)
- ⑪ 상품의 수량
- ⑫ 연결 원산지신고서의 경우 원본 발급번호, 발급일, 최초 수출국 RCEP 원산지국가, 적용 가능한 경우 최초 수출당사국의 인증수출자 인증번호

※ (유의사항) 다만, 현재 회원국 간 원산지신고서 표준서식이 합의되지 않았음을 고려하여, 통관애로가 빈번히 발생하는 일부 회원국에 대해서는 안정적 특혜 적용을 위해 한시적으로 기관발급 원산지증명 활용 권고

※ 협정 제3.18조 및 부속서 3-나 제2항, 규칙 제15조제120항, 원산지규정 이행지침 3번

5. 인증수출자

□ [인증수출자 DB] 협정 제3.2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협정 제3.16조제1항나목의 원산지신고서 작성이 가능한 우리나라 인증수출자 정보*를 RCEP 회원국의 권한있는 당국에서 조회(관세청 영문 홈페이지)할 수 있도록 조치

* 인증수출자의 상호, 주소, 인증 번호, 발급일 및 만료일(가능한 경우로 한정), 최소 HS2단위 수준의 인증 적용대상 상품목록 등

□ [인증수출자 지정 특혜] 협정 발효 즉시 원산지 자율증명 활용 지원을 위해 인증수출자 요건 충족 여부를 사전 심사

- (기간) ① '22.1.28.까지 접수된 건은 간이인증 절차 적용 가능
- ② 협정 발효 이후 접수건은 일반인증 절차로 진행

※ 인증 신청서 접수 시 20일 이내 심사(보정기간(5~10일)은 제외함)

○ (신청대상) RCEP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 (신청접수) 관할지* 본부세관 또는 직할세관

*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 1 참조

《RCEP 원산지인증수출자 신청 접수처》

구 분	연락처	이메일
인천본부세관	032-452-3169	incheonsupport@korea.kr
서울본부세관	02-510-1387	FTA010@korea.kr
부산본부세관	051-620-6963	busansupport@korea.kr
대구본부세관	053-230-5192	daegusupport@korea.kr
광주본부세관	062-975-8195	ftafta071@korea.kr
평택직할세관	031-8054-7175	fta016@korea.kr

○ (간이인증) 중국·아세안·베트남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RCEP 인증 추가 신청 시 품목에 따라 간이한 절차 적용

《간이인증 및 일반인증 절차》

① (간이인증) 인증 신청 품목이 “RCEP” 인증 심사 간소화 품목에 해당하는 경우, “RCEP 품목별 원산지인

- 증수출자 간이인증 신청서”와 아래 첨부서류 제출
- (간소화 품목) 관세청 FTA 포털사이트에 850개 품목 공지
 - (첨부서류) 원산지소명서, 협약서, 원산지관리 전담자 증빙자료
- ② (일반인증)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심사 방법에 따름

○ (인증서 발급) 인증 효력은 협정 발효 이후에 부여

《 인증 특례 심사 절차(예시) 》

(예시)

	<인증효력 없음>	<유효기간 5년>
21.12.8 인증신청	21.12.31 심사완료→인증서 미발급	22.2.1 RCEP발효일→인증서 발급

※ 협정 제3.21조, 규칙 제18조, 원산지규정 이행지침 3번

6. 연결 원산지증명

☐ [개요] 협정 제3.19조에 따라 최초 수출국에서 작성·발급된 원산지증명을 기초로 하여 중간 경유 당사국에서 작성·발급

☐ [증명 대상] 연결 원산지증명은 아래 기준에 따라 중간 경유 당사국의 발급기관 또는 인증수출자 등이 작성·발급

《 연결 원산지증명 작성(발급) 주체 》

- ① 중간 경유 당사국의 발급기관
- ② 중간 경유 당사국의 인증수출자. 다만, 중간 경유 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해 인증 품목으로 지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해서만 작성

※ 중간 경유 당사국과 수입당사국 모두가 완전 자율증명을 이행하는 경우에만 중간 경유 당사국에서 인증수출자가 아닌 수출자가 연결 원산지증명 작성 가능

☐ [요건] 연결 원산지증명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연결 원산지증명 작성(발급) 요건 》

- ① 유효한 원산지증명 원본 제시
- ② 연결 원산지증명의 유효기간은 원본 원산지증명의 유효기간 이내
- ③ 연결 원산지증명은 협정 부속서 3-나에 따른 원본 원산지증명의 정보 포함
- ④ 채포장 또는 하역, 재선적, 보관, 탁송물의 분리나 수입당사국의 법, 규정, 절차, 행정적 결정 및 정책에 따라 요구되는 경우로 한정된 라벨링 같은 물류 활동 또는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거나 상품을 수입당사국에 운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모든 공정을 제외하고, 연결 원산지증명을 사용하여 재수출될 탁송물은 중간 경유 당사국에서 추가 가공을 거치지 않을 것
- ⑤ 분할 수출 선적되는 경우, 그 분할 수출 수량은 원산지증명 원본의 전체 수량을 대신하여 제시되고, 분할 선적에 따라 재수출된 전체 수량은 원산지증명 원본의 전체 수량을 초과하지 않을 것
- ⑥ 연결 원산지증명에 원본 원산지증명의 발급일 및 발급 번호 포함

☐ [FOB 가격 기재방법] 연결 원산지증명에 기재되는 FOB 가격은 최초 수출국이 아닌 중간 경유국의 FOB 가격이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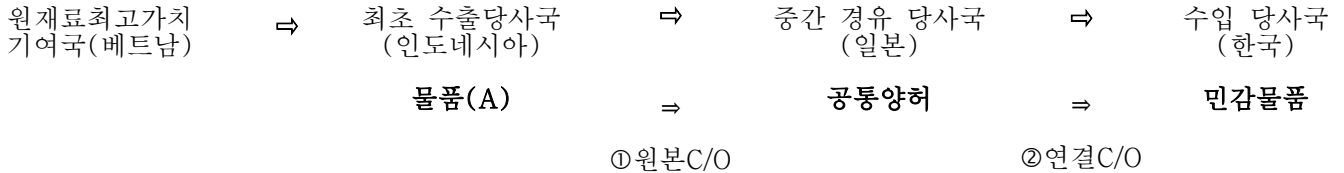
☐ [관세차별 물품에 대한 적용] 연결 원산지증명의 대상물품이 수입당사국의 관세차별 품목인 경우, 중간 경유 당사국의 수출자*는 협정 제2.6조에 따른 원산지국가를 판단하여 연결 원산지증명의 ‘RCEP Country

of Origin' 란에 기재(신청)

* (기관발급) 연결 원산지증명 발급 신청인, (자율발급) 연결 원산지증명 작성자

- 이 경우 연결 원산지증명과 원본 원산지증명의 RCEP 원산지 국가가 상이할 수 있고, 따라서 중간 경유 당사국의 수출자에게 RCEP 원산지 국가에 대한 증명 의무 부여

《연결 원산지증명과 원본 원산지증명의 원산지 국가 상이(예시)》



- ① 원본 원산지증명의 RCEP 원산지 국가 : 인도네시아
- ② 연결 원산지증명의 RCEP 원산지 국가 : 인도네시아의 DV에 따라 상이
 - 인도네시아의 DV > 20% : 원산지 인도네시아
 - 인도네시아의 DV < 20% : 원산지 베트남

□ [원산지검증] 연결 원산지증명에 대해서도 협정 제3.24조의 검증 절차 적용

※ 협정 제3.19조, 원산지 규정 이행지침 4번·6번·8번

V. 협정관세 적용

1. 협정관세 적용 시점

□ [적용 시점] 우리나라의 협정 발효시점('22.2.1. 00시) 이후부터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대해 적용

- (유의사항) 우리나라의 협정 발효시점 이후에 작성·발급된 원산지증명에 근거하여 RCEP 협정관세 적용 신청 가능

□ [경과규정] 아래 경과규정 적용 대상 물품으로 협정 제3장의 요건을 충족하는 원산지 상품은 우리나라의 협정발효일로부터 180일 이내(' 22.7.30.까지)에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수 있음

*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 신청

《 경과규정 적용 대상 물품 》

우리나라에 대한 협정 발효일 당시에

- ① 운송 중인 물품이거나,
- ② 보세창고에 보관 중인 물품이거나,
- ③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유 무역지역에 있는 물품

- (유의사항) 원산지증명이 우리나라의 협정발효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작성되고, 직접운송 입증서류와 함께 제출되어야 함

※ 협정 제3.30조(통과 중인 상품에 대한 경과 규정)

2. 협정관세 적용신청의 시기

□ [원칙] 수입물품에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수입자는 수입신고사 수리되기 전까지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

- (제출서류) 세관장에게 협정관세 적용신청서를 제출
- (증빙서류) 협정 제3.16조에 따른 원산지증명을 포함하여 수입물품이 협정 제3장의 요건을 충족함을 입증하는 원산지 증빙서류를 갖추고, 세관장이 요구하면 제출

□ **[예외 : 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원칙]**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 적용신청 가능

- (제출서류) 세관장에게 ①협정관세 적용신청서 ②수입·납세신고정정신청서 ③원산지증명서를 포함한 원산지 증빙서류를 제출
- (증빙서류) 수입물품은 수입 당시 협정 제3장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때 이를 입증하는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

□ **[유효기간]** 원산지증명서는 협정관세 적용신청일을 기준으로 발급일 또는 작성일로부터 1년 이내의 것이어야 함
 ○ 다만,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경우, 유효기간의 계산에서 도착일 다음날부터 협정관세 적용신청일까지의 기간을 제외

※ 협정 제3.22조(특혜관세 대우의 신청), 법 제8조 및 제9조

3. 협정관세 적용신청의 방법

□ **[관세율 구분부호]** 수입신고서 및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에는 RCEP 관세율 구분부호(“붙임2” 참조)와 협정관세율을 기재

- **(유의사항)** 아래 예시를 참조하여 원산지증명의 RCEP 원산지 국가에 따라 적합한 관세율 구분부호 입력
 ※ 원산지증명의 RCEP 원산지 국가는 수입당사국에서 관세율 적용 목적으로 기재되는 것이므로 수입물품의 실제 원산지 국가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관세율 구분부호 입력 방법(예시) 》

- ① 수출당사국과 원산지증명의 원산지 국가가 일본이고, 하나의 품목번호에 대해 적용되는 서로 다른 협정세율 중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물품 → “FRCJP1”
- ② 수출당사국은 베트남이지만 원산지증명의 원산지 국가가 중국이고, 하나의 품목 번호에 1개의 협정세율이 적용되는 물품 → “FRCCN1”

□ **[인정되는 원산지증명 방식]** 우리나라는 아래 중 하나의 원산지증명만을 인정

《 수입물품의 협정관세 적용 시 인정되는 원산지증명 》

- ① 수출당사국의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 (Certification of Origin)
- ② 수출당사국 인증수출자가 작성한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 (Declaration of Origin)

※ 우리나라의 완전 자율발급 시행 이전에 수출당사국이 완전 자율발급을 시행 하더라도 수출당사국의 수출자(또는 생산자)가 작성한 원산지증명은 불인정

- **(유의사항)**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의 경우 작성자의 수출당사국 인증수출자 여부 사전 확인* 필요
 * 국가별 인증수출자 확인 방법은 관세청 FTA포털사이트를 통해 안내

□ **[원산지증명 제출]** 수입자는 세관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와 그 밖의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 하여야 함

- *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필수 제출
- 우리나라가 인정하는 원산지증명의 형태는 아래와 같음

《 협정관세 적용 신청 시 제출 가능한 원산지증명의 형태 》

- ▶ (서면본) 다음 중 하나의 것
 - ① 종이 원본. 다만, 세관장이 별도로 요구하지 않는 경우 사본제출 스탬프를 날인한 사본으로 대체 가능
 - ② 전자적 형태(Digital Format)로 발급받은 파일(PDF 등)을 인쇄한 것
 - ③ 종이 원본을 스캔하여 이미지화한 파일(PDF, JPEG 등)을 인쇄한 것

《(참고) 원산지증명서 사본제출 스탬프 양식》

본 사본이 원본과 다를 경우 관세법 등 관련법령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고 있으며 세관에서 요구시 원본을 제출하겠습니다.

수입자 ○ ○ ○ (서명)

※ 협정 제3.22조(특혜관세 대우의 신청), 법 제8조, 영 제4조제1항 및 제2항, 원산지규정 이행지침 5번

4. 원산지증명 제출 면제

☐ 과세가격이 미화 200달러 이하인 수입물품은 원산지증명 제출 면제*

* 구매영수증, 제품의 원산지 표기 등을 통해 상품의 원산지를 간이하게 확인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의 제출을 면제하지 않음

《 원산지증명 제출 면제 제외 대상 》

- ① 물품을 분할하여 수입하는 등 물품의 과세가격이 미화 200달러를 초과하지 않도록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수입하는 물품인 경우, 또는
- ② 해당 수입이 당초 계획된 일련의 수입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

※ 협정 제3.22조(특혜관세 대우의 신청)제3항, 법 제8조제2항, 영 제4조제3항제1호

5. 사소한 오류 및 불일치

☐ 세관장은 수입자가 제출한 원산지증명서가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완요구 없이 협정관세를 적용

○ 다만, 물품의 원산지 지위에 합리적 의심을 발생시키는 오류인 경우 제외

《 협정관세 적용 가능한 원산지증명의 오류 》

- ① (FOB 가격 상이) 원산지증명에 기재된 FOB 가격과 수입신고 시 제출된 상업송장에 기재된 FOB 가격이 상이한 경우
- ② (HS번호 상이) 원산지증명에 기재된 HS번호와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HS 번호가 상이하나, 상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이 충족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 「품목분류번호 해석 상이 등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인정여부 판단
- ③ (그 밖의 사소하고 경미한 오류) 뒷면 주해(OVERLEAF NOTES) 미인쇄, 국가명 표기 오류, 사소한 불일치, 정보의 누락, 타자오류 등 세관장이 물품의 원산지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오류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

※ 협정 제3.26조(사소한 불일치 또는 오류), 규칙 제21조제5항, 원산지규정 이행지침 6·7번

본 사본이 원본과 다를 경우 관세법 등 관련법령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VI. 기타사항

1. 원산지검증

☐ RCEP 회원국간 수출입된 물품의 원산지증빙서류 진위여부 및 원산지의 정확성에 대해 다음의 방법으로 원

산지검증 수행

《 우리나라로 수입된 물품에 대한 세관장의 원산지검증 》

- ① [간접검증] 협정 제3.24조 및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수출국의 관세당국 또는 증명서발급기관에 추가 정보 요청
- ② [직접검증] 협정 제3.24조 및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수입자에게 직접 서면으로 추가 정보 요청
- ③ [직접검증] 협정 제3.24조 및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직접 서면으로 추가 정보 요청 또는 사업장 방문검증
 - 사업장 방문검증은 ①의 간접검증 결과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여부 등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 실시될 수 있으며, 당사국간 합의된 절차에 따라 수출당사국의 동의와 지원을 받아 수행됨

《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에 대한 원산지검증 》

- [간접검증] 협정 제3.24조에 따라 수입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추가 정보 요청을 받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수출자, 생산자에게 조사를 실시하고
 -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수출국의 관세당국에 결과를 통지
- [직접검증] 협정 제3.24조에 따라 수입국의 관세당국이 수출자, 생산자에게 직접 서면으로 추가 정보 요청 또는 간접검증 이후 사업장 방문검증
 - 사업장 방문검증의 경우 법 제20조에 따라 조력을 받을 수 있음

※ 협정 제3.24조(검증), 법 제17조 ~ 제19조, 영 제11조~13조, 제15조 및 제16조, 규칙 제22조~제25조,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2. 협정관세 적용제한

- 세관장은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 이 경우 세관장은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의 차액을 부과·징수하고, 필요한 경우 가산세를 징수

《 협정관세 적용이 제한되는 경우 》

- ① 협정관세 적용의 대상이 되는 수입물품이 협정 제3장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 ②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협정관세 적용에 필요한 협정 제3장의 요건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 ③ 세관장이 협정관세 적용의 대상이 되는 수입물품의 원산지 지위를 결정 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받지 못한 경우
- ④ 협정 제3.24조에 따른 정보의 서면 요청에 수출당사국의 수출자, 생산자, 관세당국 또는 발급기관이 기한 내 그 결과를 회신하지 않은 경우
- ⑤ 협정 제3.24조에 따른 현지조사 동의 요청에 대해 수출당사국의 수출자 등이 동의 여부를 요청의 접수일로부터 30일내에 통보하지 않거나 동의 하지 않은 경우
- ⑥ 그 밖에 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협정 제3.25조(특혜관세대우의 거부), 법 제35조, 영 제44조

3. 원산지 사전심사

- [목적] 해당 상품의 수입신고 전 협정관세 적용의 기초가 되는 사항을 관세청장(원산지검증과)이 심사하여 확정
 - (신청인) 수입자, 수출당사국의 수출자 및 생산자와 그 대리인
 - (신청대상) 협정 제3장에 따른 상품의 원산지 여부
- [효력] 사전심사 결과(사전심사서)는 3년간 유효
 - 수입신고된 상품의 내용이 사전심사서와 동일한 경우 협정관세의 적용 시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

《 FTA관세법 제31조에 따른 원산지 사전심사 절차 》

단계	세부단계	주 체	주요 내용
신청	사전심사 신청	신 청 인	서류제출(신청서, 심사요청관련서류) 수수료(3만원)
접수	신청서류 확인·접수	담당부서	사전심사 신청대장 기록, 수수료 수납
검토 결정	신청내용 심사·검토 반려 및 보정	담당부서	신청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리 반려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반려 보정 : 5일 이상의 기간
통지 공표	사전심사서 통지 심사결과 인터넷 공표	담당부서	사전심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 관세청 FTA포털사이트에 사전심사 결과 등재
사후 관리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사전심사 변경	신 청 인 담당부서 신 청 인 담당부서	이의제기 기간 :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처리기간 : 접수일부터 30일, 보정:20일 사실관계나 상황이 변경되는 경우 사전심사내용 변경·철회

붙임 1 RCEP 원산지증명서 서식

1. Goods Consigned from (Exporter's name, address and country)				Certificate No. _____ Form RCEP			
2. Goods Consigned to (Importer's/ Consignee's name, address, country)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CERTIFICATE OF ORIGIN Issued in..... (Country)			
3. Producer's name, address and country (if known)							
4. Means of transport and route (if known) Departure Date: Vessel's name/Aircraft flight number, etc.: Port of Discharge:				5. For Official Use Preferential Treatment: ☐ Given ☐ Not Given (Please state reason/s) Signature of Authorised Signatory of the Customs Authority of the Importing Country			
6. Item number	7. Marks and numbers on packages	8. Number and kind of packages; and description of goods.	9. HS Code of the goods (6 digit-level)	10. Origin Conferring Criterion	11. RCEP Country of Origin	12. Quantity (Gross weight or other measurement), and value (FOB) where RVC is applied	13. Invoice number(s) and date of invoice(s)
14. Remarks							

15. Declaration by the exporter or producer 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at the above details and statements are correct and that the goods covered in this Certificate comply with the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ese goods in the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These goods are exported to: (importing country) Place and date, and signature of authorised signatory	16. Certification On the basis of control carried out, it is hereby certified that the information herein is correct and that the goods described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in the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Place and date, signature and seal or stamp of Issuing Body
17. ☐ Back-to-back Certificate of Origin ☐ Third-party invoicing ☐ ISSUED RETROACTIVELY	

OVERLEAF NOTES

1. **CONDITIONS:** To be eligible for the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under the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the Agreement), goods should:
 - a. fall within a description of goods eligible for concessions in the importing Party; and
 - a. comply with all relevant provisions of Chapter 3 (Rules of Origin) and if applicable, Article 2.6 (Tariff Differentials) of Chapter 2 of the Agreement.
1. **EXPORTER AND CONSIGNEE/IMPORTER:** Provide details of the exporter of the goods (including name, address and country) and consignee/importer (including name, address, and country) in Box 1 and Box 2, respectively.
1. **PRODUCER:** Provide the details of the producer of the goods (including name, address and country) in Box 3, if known. In case of multiple producers, indicate SEE BOX 8 in Box 3 and provide the details in Box 8 for each item. If the producer wishes the information to be confidential, it is acceptable to state "CONFIDENTIAL", however, the producer information may be available to the competent authority or authorised body upon request. In case the details of the producer are unknown, it is acceptable to state "NOT AVAILABLE".
1. **DESCRIPTION OF GOODS:** The description of each good in Box 8 should be sufficiently detailed to enable the products to be identified by the customs officer examining them.
1.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HS):** The HS should be at the 6-digit level of the exported product and based on Annex 3A of the Agreement.
1. **ORIGIN CONFERRING CRITERIA:** For the goods that meet the origin conferring criteria, the exporter should indicate in Box 10 of this Form, the origin conferring criteria met, in the manner shown in the following table:

Origin conferring criteria	Insert in Box 10
(a) Goods wholly obtained or produced satisfying Article 3.2(a) of Chapter 3 of the Agreement	WO
(b) Goods produced exclusively from originating materials satisfying Article 3.2(b) of Chapter 3 of the Agreement	PE
(a) Goods produced using non-originating materials provided that the goods satisfy the product specific requirements set out in Annex 3A of the Agreement: -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 Regional Value Content - Chemical Reaction	CTC VC CR
(d) Goods comply with Article 3.4 of Chapter 3 of the Agreement	ACU
(e) Goods comply with Article 3.7 of Chapter 3 of the Agreement	DMI
1. **EACH GOOD CLAIMING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QUALIFIES IN ITS OWN RIGHT:** It should be noted that all the goods in a consignment qualifies separately in their own right.
1. **RCEP COUNTRY OF ORIGIN:** The RCEP country of origin should be indicated separately for each good in the manner shown in the following table:

Circumstances	Insert in Box 11 – RCEP country of origin
(a) Goods are in Appendix to Annex I of the importing Party but do not meet the additional requirement specified in the Appendix to Annex I i.e. a Domestic Value Addition of 20% (DV20).	Indicate the name of the Party that contributed the highest value of originating materials used in the production of that good in the exporting Party in accordance with Article 2.6.4.
(a) Goods that are not in the Appendix to Annex I of the importing Party, are produced exclusively from originating materials in accordance with Article 3.2(b) of Chapter 3 of the Agreement but are not processed beyond minimal operations set out in Article 2.6.5 of Chapter 2 of the Agreement in the exporting Party.	
IN ALL OTHER CIRCUMSTANCES, including	Indicate the name of the exporting Party
(c) Goods are in Appendix to Annex I of the importing Party and meet the additional requirement specified in Appendix to Annex I i.e. a Domestic Value Addition of 20% (DV20).	
(d) Goods are wholly obtained or produc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2(a) of Chapter 3 of the Agreement	
(e) Goods that are not in the Appendix to Annex I of the Importing Party and satisfy the applicable requirements set out in Annex 3A (Product-Specific Rules) in accordance with Article 3.2(c) of Chapter 3 of the Agreement.	
(f) Goods that are not in the Appendix to Annex I of the importing Party, are produced exclusively from originating materials in accordance with Article 3.2(b) and are processed beyond minimal operations set out in Article 2.6.5 of Chapter 2 of the Agreement in the exporting Party.	

Notes: Notwithstanding the above, under paragraph 6 of Article 2.6 of Chapter 2 of the Agreement the importer is allowed to make a claim for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at either:

- the highest rate of customs duty the importing Party applies to the same originating good from any of the Parties contributing originating materials used in the production of such good, (Article 2.6.6(a)), or

- the highest rate of customs duty that the importing Party applies to the same originating good from any of the Parties (Article 2.6.6(b)).

When the RCEP country of origin cannot be ascertained, based on the information provided by the exporter/producer and importer, indicate the name of the Party with the highest rate of customs duty followed by "✓" if the Article 2.6.6(a) of Chapter 2 of the Agreement is being used or "X" if the Article 2.6.6(b) of Chapter 2 of the Agreement is being used. For example: Australia ✓ or Indonesia X.

1. **FOB VALUE:** The FOB value in Box 12 only needs to be provided when the Regional Value Content criterion is applied in determining the originating status of goods.
1. **INVOICES:** Indicate the invoice number and date in Box 13. If multiple invoices are used, indicate the invoice number and date for each item. The invoice is the one issued for the importation of the good into the importing Party. In cases where invoices used for the importation are not issued by the exporter or producer, in accordance with Article 3.20 of Chapter 3 of the Agreement, the "Third-party invoicing" box in Box 17 should be ticked (✓), and the name and country of the company issuing the invoice should be provided in Box 14.
1. **BACK-TO-BACK CERTIFICATE OF ORIGIN:** In the case of a back-to-back Certificate of Origin issu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19 of Chapter 3 of the Agreement, the "Back-to-back Certificate of Origin" box in Box 17 should be ticked (✓), and the original Proof of Origin reference number, date of issuance, issuing country, RCEP country of origin of the first exporting Party, and, if applicable, approved exporter authorisation code of the first exporting Party should be indicated in Box 14.
1. **ISSUED RETROACTIVELY:** Where a Certificate of Origin is issued retrospectively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8 of Article 3.17 of Chapter 3 of the Agreement, the "ISSUED RETROACTIVELY" box in Box 17 should be ticked (✓).
1. **CERTIFIED TRUE COPY:** Where a certified true copy of the original Certificate of Origin is issu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9 of Article 3.17 of Chapter 3 of the Agreement, the words "CERTIFIED TRUE COPY" and the date of issuance of the certified true copy should be indicated in Box 14.
1. **FOR OFFICIAL USE:** The customs authority of the importing Party may indicate (✓) in the relevant box in Box 5 in accordance with their domestic laws and regulations.
1. **REMARKS:** Box 14 should only be filled out when necessary and contain information including as specified in Paragraphs 10, 11, and 13 of the Overleaf Notes.

Continuation Sheet

Certificate No.					Form RCEP		
6. Item number	7. Marks and numbers on packages	8. Number and kind of packages; and description of goods.	9. HS Code of the goods (6 digit-level)	10. Origin Confering Criterion	11. RCEP Country of Origin	12. Quantity (Gross weight or other measurement), and value (FOB) where RVC is applied	13. Invoice number(s) and date of invoice(s)
14. Remarks							
15. Declaration by the exporter or producer 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at the above details and statements are correct and that the goods covered in this Certificate comply with the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ese goods in the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These goods are exported to: (importing country) Place and date, and signature of authorised signatory				16. Certification On the basis of control carried out, it is hereby certified that the information herein is correct and that the goods described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in the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Place and date, signature and seal or stamp of Issuing Body			

붙임 2 RCEP 관세율 구분 부호

붙임 3 Implementing Guidelines for the Rules of Origin of the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FRCCN1	- 하나의 품목번호에 1개의 협정세율이 적용되는 물품
	FRCCN2	- 하나의 품목번호에 서로 다른 협정세율이 있는 경우 최고세율 적용물품
	FRCCN3	
	FRCCN4	

made in accordance with Article 3.17 of the Agreement by an exporter, producer, or their authorised representative to the issuing body of the exporting Party, together with supporting documents proving that the good to be exported qualifies for the issuance of a CO.

- a. The issuing bodies of the Parties are listed in <https://rcepsec.org/rules-of-origin/>.
- a. The format of the CO as determined by the Parties under Article 3.17 subparagraph 3(a) of the Agreement appears in <https://rcepsec.org/rules-of-origin/>. The CO will be issued in this format according to the description of the Overleaf Notes.

3. Declaration of Origin

Approved exporters can use any format for a Declaration of Origin (hereinafter referred to as “DO”) provided that it contains all relevant information as specified in the Minimum Information Requirements of Annex 3B of the Agreement, the manner of reflecting the DO information requirements should follow the description of the RCEP CO Overleaf Notes, where applicable.

1. Back-to-back PO

- a. An issuing body of an intermediate Party may issue a back-to-back CO, and an approved

exporter or any exporter of an intermediate Party may issue a back-to-back DO in accordance with Article 3.19 of the Agreement. For greater certainty, any exporter can complete a back-to-back DO only if the intermediate Party and the final importing Party have already implemented subparagraph 1(c) of Article 3.16 of the Agreement (DO by any exporter of producer)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2 of that Article.

- a. In case of the back-to-back DO is issued by an approved exporter, it should be completed only for goods for which the approved exporter has been allowed to do so by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intermediate Party.

1. PO in Electronic Format

In accordance with subparagraph 5(a) of Article 3.16 of the Agreement, Parties may accept a PO, or issue a CO in electronic format e.g. a PDF file. The list of the Parties who accept a PO, or issue a CO in an electronic format and the relevant conditions of each Party can be found on <https://rcepsec.org/rules-of-origin/>.

2. Calculation of Regional Value Content and FOB value

- b. The regional value content of a good is to be calculated using the formulas provided in Article 3.5 of the Agreement.
- a. When the actual FOB value of a good is unknown or cannot be ascertained, the “FOB value” referred to in subparagraph (e) of Article 3.1 of the Agreement and “FOB” referred to in paragraph 1 of Article 3.5 of the Agreement can be substituted with the last ascertained value of the goods known to the exporter or producer who applies for the CO or completes the DO.
- a. In the case of back-to-back PO, the FOB value to be indicated in the back-to-back PO should be that of the intermediate Party.
- a. The customs authorities of the importing Party should not deny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for the sole reason that the FOB value indicated in the PO is different from the actual FOB value indicated in the invoice, but may undertake a verification if necessary.

1. HS Code of the Goods

- a. The HS should be at the 6-digit level of the exported product and based on Annex 3A of the Agreement.
- b. The customs authority of an importing Party may disregard as minor discrepancy any difference between the HS code of an importing good indicated in a PO and that of importing Party, provided that it does not create doubt as to the originating status of the good.

3. Tariff Differentials and RCEP country of orig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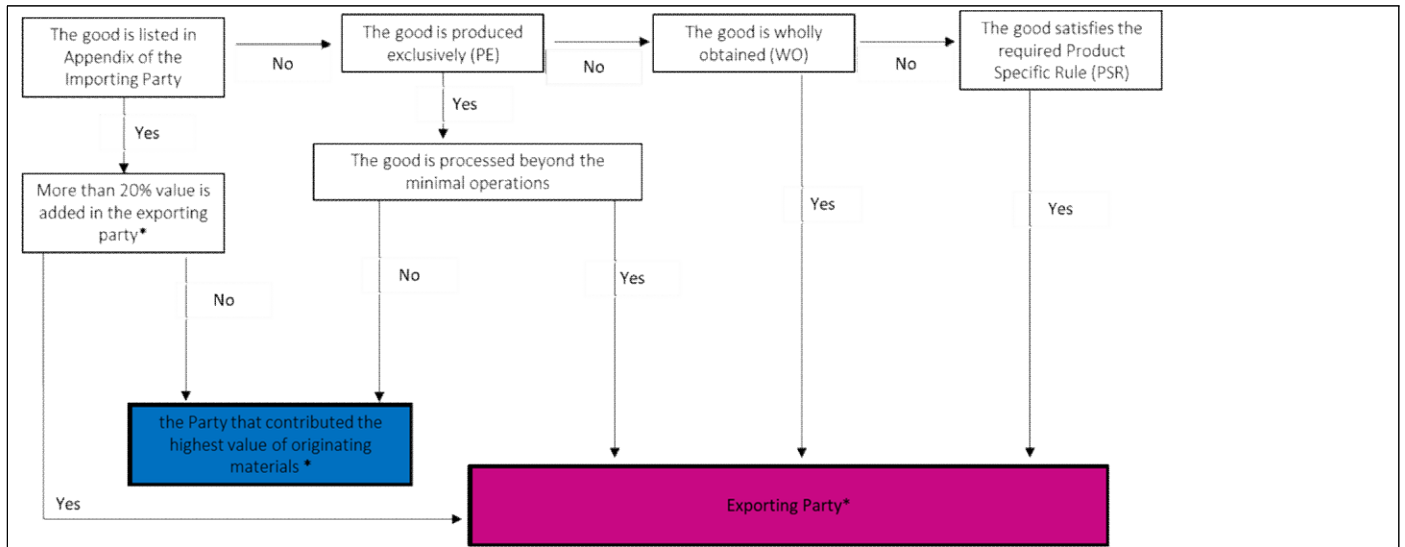
- c. In the Agreement, some parties apply different tariff rate for the same originating good of different parties. When an importing Party sets out more than one tariff rate for a good to be imported, the tariff rate to be applied for that good is the rate allocated the RCEP country of origin of that good. This is why identifying the RCEP country of origin of a good being

exported is one of the minimum information requirements provided in Annex 3B of the Agreements, and as such any PO needs to contain this information.

- a. The RCEP country of origin for an originating good is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2.6 of the Agreement (a guide is provided in Figure 1) and the description of the Overleaf Notes.
- a. For the common concession goods, circumstance (b) in paragraph 8 of the RCEP CO Overleaf Notes is for the purpose of determining RCEP country of origin, and does not affect the application of preferential treatment in importing Party.
- a. In the case of back-to-back PO, an applicant of a back-to-back CO or person who completes a back-to-back DO needs to identify the RCEP country of origin of the good. In this case it should be noted that the RCEP country of origin of the good indicated in the back-to-back PO can be different from that of the original PO, as it depends on the tariff commitment of the importing Party. For example, even when a good is not listed in Appendix to Annex I of the Agreement of the intermediate Party and RCEP country of origin for the good is the exporting Party, the good may be listed in Appendix to Annex I of the Agreement of the final importing Party and RCEP country of origin may be the Party that contributed the highest value of originating materials used in the production of that good. Therefore, if the good is listed in Appendix to Annex I of the Agreement of the importing Party or the good is produced exclusively and subject to tariff differentials in Annex I of the Agreement of the importing Party, the applicant of back-to-back CO or person who completes back-to-back DO should have information to prove the RCEP country of origin of the good.

Figure 1
Flow chart of determining RCEP country of origin of a good

Note: Notwithstanding the above diagram, the importer may choose to use paragraph 6 of Article 2.6 of the Agreement. For example, if the exporter/producer does not know or cannot ascertain the RCEP country of origin. In the case exporter/producer and importer should discuss which Party is to be nominated as the RCEP country of origin.



2. RCEP 원산지증명서 전자본 발급 시행 안내

< ' 22. 8. 31,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 >

☐ 목 적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RCEP”) 원산지증명서 전자본 발급을 지원하여 우리 수출기업의 RCEP 활용 편의 제고

☐ 발급 대상

-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하는 RCEP 원산지증명서

☐ 발급 방법

-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인은 발급이 승인된 경우 전자본을 PDF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음(붙임 참조)
※ 다만, 수출대상국이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브루나이인 경우에만 전자본 발급 활성화(향후 변경 가능)
- 원산지증명서 종이본 발급은 전자본 발급 여부와 무관하게 현행과 동일(1회 출력 원칙)하게 적용

☐ 유의 사항

- RCEP 원산지증명서 전자본의 유효성 인정은 전적으로 수입국 국내 규정에 따르므로 발급 신청인은 해당 수입국에서 특혜 신청 시 전자본 제출을 허용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아울러, 원산지증명서 전자본 제출을 허용하는 국가라도 상황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종이본(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시행 일자

- ' 22. 9. 1. 발급되는 RCEP 원산지증명서부터 적용함

붙임 : 원산지증명서 전자본 발급 방법 안내

원산지증명번호

81588-22-000005X

전송구분

최초

기본정보

발급기관

국가기관

신용제(가)관

서울세관

신청일자

2022-07-05

신청자수

0

신고안정보

원산지증명서 출력

원산지증명서 출력

출력 전 반드시 출력 프린터의 환경설정을 '컬러 단면인쇄'로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원산지증명서는 앞면과 뒷면(OVERLEAF NOTES)이 함께 인쇄되어야 하며, 앞면은 원본과 사본에 각 1회만 발급 가능합니다.

※ 예시) 앞면 출력 1회 클릭 후 다시 클릭시 원본(Original)의 앞면이 2부 출력되는 것이 아니라 원본(Original) 앞면 1부, 사본(Triplicate) 앞면 1부씩 출력

원산지증명서를 잘못 출력할 경우 원산지증명서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하오니 아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1. '미리보기'로 출력하고자 하는 원산지증명서의 앞면이 총 몇 쪽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2. '뒷면출력'으로 원산지증명서의 뒷면(OVERLEAF NOTES)을 여윌게 여러장 출력합니다.

1) 뒷면인쇄 최소 필요 장수: 테스트용 + 앞면 페이지수 × 2 (한-인도는 × 3)

2) 협정별 뒷면(OVERLEAF NOTES) 내용은 상이하며 뒷면 출력은 필수 제한이 없습니다.

3. 뒷면(OVERLEAF NOTES) 출력결과 앞면이 인쇄되도록 프린터의 용지함에 넣으십시오. 「테스트출력」으로 앞면이 모두 한 장으로 정상 출력 되는지 확인하신 후 「앞면출력, 사본으로 원산지증명서의 Original, Triplicate, Quadruplicate(한인도)를 차례로 출력합니다.

1) 「앞면출력, 사본 1번째 출력 시 Original, 2번째 출력 시 Triplicate, 3번째 출력 시 Quadruplicate(한인도)가 순서대로 출력됩니다.

2) 협정별 출력 본수 아래와 같습니다.

- 한-아세안 FTA, 한-중국 FTA, 한-베트남 FTA, APTA(아시아태평양), RCEP 반드시 원산지증명서 뒷면에 "OVERLEAF" 인쇄

- 한-인도 CEPA의 경우 원산지증명서 뒷면에 "OVERLEAF"를 인쇄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인도 원산지관리 강화 규정이 제정된 후 "OVERLEAF"를 출력하지 않은 경우 원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주의사항을 따르지 않을 경우, 통관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시 : 통관 장애, 관세특혜 미적용)

발급된 서류의 기재사항 변경을 위해 **경정신청**하시는 경우에도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단, '수수료결제 대기중'인 상태에서 경정신청할 수 있습니다.

PDF저장

미리보기

뒷면출력

테스트출력

앞면출력

닫기

'FTA 활동지원 및 해외통관에도 발생 시 관할 본부세관 수출입금지지원센터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신청인명

mycadmin

신청인상호

영와이비관리자

CO발급일자

2022-07-18

결과코드

04:승인 통과

중발급일자

2022-08-30

재발급일자

2022-08-30

연락처

053-230-5194

인쇄

재발급

정정발급

② 전자본 발급시 PDF 저장 버튼 클릭

① 인쇄 버튼 클릭 시 출력 화면 팝업

※ 보정발급/재발급/정정발급/인쇄 버튼이 보이지 않을 경우 합치문자판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시저장된 문서가 있을 경우 삭제해야 위와 버튼이 모두 보여집니다.

관세청 UNI-PASS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센터

무역인증안내

원산지증명서

기타무역인증

ATA까르네

마이페이지

고객지원

HOME

마이페이지

종량

마이페이지

웹 인증 현황

증명서 발급 현황

발급 처리 현황

신청서 작성 목록

까르네 발급 현황

결제관리

정보관리

접수번호(Application No.)

001-22-0000521R

※ 공지사항 (필독)

일반 A4용지 사용. 컬러 프린터 이용

'원본' 1회만 출력(재출력 불가)

원본과 사본은 다른 모형을 사용하고 있어, 사본이 정상 출력되더라도 원본은 출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원본 출력 전에 반드시 원본 확인용으로 출력상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아세안 FTA, 한-중국 FTA, 한-베트남 FTA, APTA(아시아태평양), RCEP 반드시 원산지증명서 뒷면에 "OVERLEAF" 인쇄

한-인도 CEPA의 경우 원산지증명서 뒷면에 "OVERLEAF"를 인쇄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인도 원산지관리 강화 규정이 제정된 후 "OVERLEAF"를 출력하지 않은 경우 원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주의사항을 따르지 않을 경우, 통관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시 : 통관 장애, 관세특혜 미적용)

발급된 서류의 기재사항 변경을 위해 **경정신청**하시는 경우에도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단, '수수료결제 대기중'인 상태에서 경정신청할 수 있습니다.

증명서 종류	접수일시 (Application Date)	발급일시 (심사기준)	처리상태 (Status)	인쇄 (Print)
RCEP 원산지증명서 [rcep_cs_test]	2022-08-29 16:32	2022-09-01 00:00	발급완료 (Accept) 원본신청 1회 원본출력 0회 원본다운로드 0회	원본 사본 원본 확인용 원본 PDF 신청자 보관용 OVERLEAF

전자본 발급 시 원본 PDF 클릭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센터

- 571 -

19. 한-이스라엘 FTA

1.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발효에 따른 관세행정 운영지침

‘< 일러두기 >

1. 이 지침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같은 법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는 각각 ‘협정’, ‘법’, ‘영’, ‘규칙’, ‘고시’ 라 지칭함.
2. 향후 당국간 이행협상 결과 등을 반영한 이 지침의 개정·추가·변경사항이 관세청 FTA포털사이트를 통해 공지될 수 있음

I. 한-이스라엘 FTA 개요

1. 적용 범위

☐ [발효] ' 22. 12. 1. 발효

☐ [당사국] 대한민국과 이스라엘

○ (대한민국 영역)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영해 및 영공과 국제법 및 국내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이 행사되는 영해의 외측한계선에 인접하거나 외측한계선 밖의 해저·해저층을 포함한 해양지역

○ (이스라엘 영역) 이스라엘의 영역

※ 이스라엘 영역 적용과 관련하여 1967년 이후 이스라엘에서 점령한 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은 우리나라에서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이스라엘 생산지역 확인 등 상세 내용은 이 지침 VI-5를 참조)

※ 협정 제22.5조(발효 및 종료) 및 제1.6조(영역적 적용), 영 부칙 <대통령령 제32277호, 2021.12.31.> 제1조제2호, 규칙 제2조제1호더목

2. 관세 인하 또는 철폐

☐ 협정 부속서 2-나의 자국 관세 양허표에 따라 원산지 물품에 대한 자국의 관세를 인하 또는 철폐

☐ 협정 발효 후 당사국이 최혜국 실행 관세율을 협정 부속서 2-나의 자국 관세 양허표의 세율보다 낮게 인하한 경우에는 인하된 최혜국 실행 관세율을 적용

※ 협정 제2.4조(관세 인하 또는 철폐)

3. 양허 현황

☐ 對이스라엘 주력 수출품목(자동차, 자동차 부품, 합성수지 등)의 관세가 즉시 철폐되며, 10년 이내에 대부분 교역 품목의 관세 철폐

* [아측] (품목수) 94%, (수입액) 99.9% / [이측] (품목수) 95%, (수입액) 100%

《 한-이스라엘 FTA 전체 상품 양허수준 》

구분	한국				이스라엘			
	품목수(개)		2013~15 對이 수입액(천불)		품목수(개)		2013~15 對한 수입액(천불)	
전체	12,243		895,425		8,280		1,214,207	
즉시철폐	9,661	78.9%	730,784	81.6%	6,032	72.9%	1,182,470	97.4%
유관세	7,702	62.9%	291,054	32.5%	1,401	16.9%	644,110	53.0%
무관세	1,959	16.0%	439,730	49.1%	4,631	55.9%	538,360	44.3%
3년	201	1.6%	55,285	6.2%	567	6.8%	28,086	2.3%
5년	1,105	9.0%	92,400	10.3%	1,037	12.5%	2,879	0.2%
5년내	10,967	89.6%	878,469	98.1%	7,636	92.2%	1,213,434	99.9%
6~8년	78	0.6%	9,680	1.1%	44	0.5%	118	-
10년	491	4.0%	5,874	0.7%	188	2.3%	611	0.1%
10년내	11,536	94.2%	894,023	99.8%	7,868	95.0%	1,214,163	100.0%
12~15년	123	1.0%	814	0.1%	5	0.1%	2	-
16~19년	2	-	93	-	-	-	-	-
소계	11,661	95.3%	894,837	99.9%	7,873	95.1%	1,214,165	100.0%
관세 감축	15%	2	-	-	13	0.2%	0.3	-
	25%	-	-	-	3	-	-	-
TRQ	-	-	-	-	3	-	-	-
양허제외/ 협정제외	580	4.7%	588	0.1%	388	4.7%	42	-

《 한-이스라엘 FTA 양허 단계별 주요 품목 현황 》

우리 양허		양허 단계	이스라엘 양허	
주요 품목	품목 수		품목 수	주요 품목
반도체 제조용장비, 집적회로반도체, 동괴및스크랩, 항공기부품, 나프타, 무선통신기기부품, 전자현미경, 알루미늄괴및스크랩, 기타석유화학제품, 분석시험기, 금속공작기계부품, 경보신호기, 제지인쇄기계부품, 광학기기부품, 기타정밀화학원료, 무기류, 인쇄기계, 실리콘웨이퍼, 밸브 등	9,661	즉시	6,032	승용차, 무선전화기, 건설중장비, 집적회로반도체, 커피조제품, 합성수지, 칼라TV, 냉장고, 발전기, 펄프류, 자동차부품, 유선통신기기부품, 전신기기, 운반하역기기, 컴퓨터부품, 편직물, 타이어, 컴퓨터, 기타정밀화학제품, 금속절삭가공기계, 컴퓨터 주변기기, 인쇄용지, 인쇄회로, 밸브, 기타채소(김치) 등
기타화학공업제품, 무선통신기기부품, 의료용전자기기, 의약품, 평판디스플레이, 의료용기기부품, 레이더, X선및방사선기기, 탭핑공구, 농약, 고주파증폭기, 저압배전반, 목욕용 제품, 제어반 등	201	3년	567	공기조절기, 전선, 냉장고, 의약품, 에어컨, 연결부품, 기타필기구, 배전및제어기, 연마제품, 펌프, 전선, 유리거울, 편직물, 고무판, 플라스틱칼개, 비및브러쉬, 원심분리기, 기타플라스틱제품, 안전유리 등
공구용판 · 봉 · 팁, 기타전자응용기기, 기초화장품, 의료용기기(레이저 작동식 기기), 고무 · 플라스틱용의 기타 성형기, 의료용기기 및 그 부품, 레이더, 의약품, 두발용 제품, 기타정밀화학원료, 복합비료, 자동차부품, 로얄제리, 온도계, 식물성액즙, 기타화학공업제품, 목욕용제품, 측정	1,105	5년	1,037	의자와 부분품, 식탁용구, 면직물, 반창고, 구두, 브라우스, 의료용기기, 기타인쇄물, 기타편직제의류, 스웨터, 기타농산가공품, 나일론직물, 타이어코드, 편직제의류, 직물제의류, 건축용목제품, 스커트, 기타운동복, 기타 속옷, 금속제 가구, 제지원료및종이제품, 노트, 정지형변

분석시험기구, 유기화합물 등				환기, 아이스크림 등
당류, 두발용 제품, 기타과실, 안테나, 기타화학공업제품, 기타농산가공품, 사탕과자류, 세안용품, 대리석, 의료용기기, 자몽, 수산물통조림, 건조수산물, 과실주스, 건과류, 의약품 등	569	6~10년	232	드릴링공구, 기타가구, 화장지, 기타신발, 책상, 의자, 소금, 과일주스, 제조담배, 고추 등
천연꿀, 맨더린, 화초류, 소스류, 기타음료	125	10년 초과	5	기타 향신료, 후추(분쇄), 의료위생용품, 대두유
	11,661	소계	7,873	
석류, 감(기타)	2	관세 감축	16	접착제, 양송이, 텍스트린, 두류, 곡분
해당없음	-	TRQ	3	냉동닭고기, 참치 통조림
	2	소계	19	

* [출처] 한·이스라엘 FTA 상세설명자료

※ 협정 제2.4조(관세 인하 또는 철폐), 협정 부속서 2-나(관세 인하 또는 철폐·한국 양허표·이스라엘 양허표), 영 제2조제20항 및 별표17의5

4. 관세율 할당 (TRQ)

☐ [TRQ] 우리나라에서 이스라엘로 수출되는 아래의 한국산 원산지 물품은 협정 부록 2-나-1에 따라 일정 물량 범위 이내에서 특혜관세 적용 가능

《 한국산 원산지 물품에 대한 이스라엘측의 TRQ 적용 》

구분	품명	HS부호 (이스라엘 기준)	한도 물량	적용 관세율
1	냉동 닭고기	02071200, 02071400	연간 1,000 메트릭톤 이내	협정 발효일부터 최혜국 실행 관세율의 50% 적용 (양허유형: “MFN-50%”)
			연간 1,000 메트릭톤 초과	기준관세율 유지 (양허유형: “X”)
2	참치 통조림	16041490	연간 200 메트릭톤 이내	무관세
			연간 200 메트릭톤 초과	기준관세율 유지 (양허유형: “X”)

※ 협정 제2.15조(관세율할당 운영) 및 부록 2-나-1(이스라엘의 관세율할당 운영)

5. 관세면제 대상 일시수입 물품 등

☐ [일시수입 물품] 이스라엘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2년의 범위*에서 세관장이 인정하는 기간 이내에 재수출하기 위하여 일시 수입하는 아래 물품은 원산지와 관계없이 관세 면제

* 관련 증빙서류, 물품의 상태·용도 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세관장이 인정하는 기간. 다만, 1년의 범위에서 기간 연장 가능

《 규칙 제30조제1항 적용 대상 물품 》

- ① 언론장비, 텔레비전 방송용 장비, 소프트웨어, 방송·영화 촬영 장비 등 일시 입국하는 사람의 영업활동, 거래 또는 직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 ②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물품(구성부품, 보조기구와 부속품 포함)
- ③ 운동경기용 물품(시범용 및 훈련용 물품 포함)
- ④ 상용건품
- ⑤ 물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거나 임대하기 위하여 그 성질·작동 등을 보여주는 시연용 영상 또는 음향 기록매체. 다만, 일반대중을 위한 방송용은 제외
- ⑥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한 물품

□ [수리·개조 물품] 수리 또는 개조 목적으로 이스라엘로 수출하였다가 재수입하는 물품*은 원산지와 관계없이 관세 면제

* 이스라엘에서 수리 또는 개조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 수리·개조가 그 물품의 가치를 증가시켰는지 여부는 고려하지 않음

□ [상용건품 등] 아래에 해당하는 이스라엘로부터 수입되는 상용건품 또는 인쇄광고물은 원산지와 관계없이 관세 면제

《 관세면제 대상 상용건품 및 인쇄광고물 인정 기준 》

- ① (상용건품) 건품 이외의 용도로 판매되거나 사용되기에 부적합하도록 천공, 절단 등 건품화 처리가 된 물품 또는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금액 이하로서 건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 ② (인쇄광고물) 소책자, 전단지, 상품목록 및 단체 발간 연감 등 품목번호 제49류에 분류되는 것으로서 물품 또는 용역의 판매를 촉진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무료로 제공되는 물품

※ 협정 제26조(상품의 일시 반입) 및 제27조(수리 또는 개조 후 재반입되는 상품), 협정 제28조(무시할만한 가치의 상업용 견본품과 인쇄된 광고물의 무관세 반입), 법 제30조제1항, 규칙 제30조제1항, 제4항 및 제6항

II. 관세면제 대상 일시수입 물품 등

1. 정 의

□ 협정 제3장(원산지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규정

- (원산지) 협정 제3장(원산지 규정)에 규정된 원산지 규정상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함
- (재료) 상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원료, 원재료, 구성요소 또는 부품 등
- (상품) 재료 또는 생산품
- (제조) 조립 또는 특정 공정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작업이나 가공
- (탁송물)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에게 일시에 송부된 상품이거나,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으로서의 선적에 대한 단일의 운송서류에 의하여, 또는 그러한 서류가 없는 경우 단일의 송장에 의하여, 다루어지는 상품
-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수입 시 관세가격, 또는 이를 알 수 없는 경우,

1994년도 GATT 제7조 및 관세평가협정에 따라 이에 상당하는 가격

- (관세가격) 1994년도 GATT 제7조 및 관세평가협정에 따라 결정되는 가격
- (운임보험료포함가격) 수입 항구로 운송하는 데 발생하는 화물운송 및 보험, 포장, 그리고 그 밖의 모든 비용을 포함하는 수입 당시의 상품 가격
- (공장도 가격) 최종 작업 또는 가공이 수행된 당사국에서의 제조자 공장에서 인도되는 상품에 대하여 그 제조자에게 지급된 가격. 다만, 그 가격은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를 포함하고, 그 획득된 상품이 수출될 때 환급되거나 환급될 수 있는 모든 내국세를 공제함
- (특혜관세대우) 원산지 상품에 대하여 이 협정에 따라 적용 가능한 관세율

※ 협정 제1.7조(정의), 제3.32조(정의)

2. 일반 원칙

□ [원산지 상품] 다음의 상품을 협정상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

《 원산지 상품의 종류 》

- ① [완전생산(WO)] 당사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
- ② [품목별 원산지기준 충족(PSR)] 당사국에서 완전히 획득되지 않은 재료를 결합하여 당사국에서 획득된 상품. 다만, 그 상품의 제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가 당사국에서 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을 거쳐 부속서 3-가의 목록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해야 함
- ③ [원산지 재료로만 생산(PE)] 당사국에서 원산지 자격을 갖춘 재료로만 획득된 상품

※ 협정 제3.1조(원산지 상품)

□ [자격 단위] 협정 제3장은 HS품목번호로 분류되는 특정 상품을 기본 단위로 간주하여 적용

- 물품의 집단 또는 집합으로 구성된 상품이 동일한 HS품목번호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그 상품 전체가 자격단위를 구성
- 탁송화물이 동일한 HS품목번호로 분류되는 다수의 동일한 상품으로 구성되는 경우 각 상품은 개별적으로 적용해야 함
-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HS) 통칙 5에 따라 포장이 품목분류의 목적상 상품에 포함되는 경우, 그 포장은 원산지 결정 목적상 포함

※ 협정 제3.7조(자격 단위)

□ [완전생산 상품] 다음은 당사국에서 완전 획득·생산으로 간주

《 완전생산 상품 》

- ① 당사국의 토양, 수역, 해저 또는 하층토로부터 취득되거나 추출된 광물과 그 밖의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물질
- ② 당사국에서 재배, 수확, 수집 또는 채집된 식물과 식물성 상품

- ③ 당사국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살아있는 동물
- ④ ③의 살아있는 동물로부터의 상품
- ⑤ 당사국의 육지, 내수 또는 영해 내에서 수행된 수렵, 낚시, 어로, 양식 및 포획에 의하여 획득된 상품
- ⑥ 당사국에서 수집된 것으로 원재료 회수용으로만 적합한 중고 물품
- ⑦ 당사국에서 수행된 사용, 소비 또는 제조 공정으로부터 발생하는 폐기물 및 부스러기
- ⑧ 당사국의 선박에 의해서만 당사국 영해 밖의 수역, 해저 또는 하층토에서 취득한 어로 상품 및 그 밖의 상품
- ⑨ ⑧의 상품으로만 당사국의 가공선박에서 만들어진 상품
- ⑩ 당사국 영해 밖의 수역, 해저, 하층토에서 취득되거나 추출된 상품. 다만, 그 당사국이 그러한 수역, 해저 또는 하층토를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경우로 한정한다. 그리고
- ⑪ ① 부터 ⑩ 까지 명시된 상품으로만 양 당사국 중 어느 당사국에서 생산된 상품

※ 협정 제3.3조(완전하게 획득된 상품)

3. 품목별 원산지기준

- ☐ [충분하게 작업 또는 가공된 상품] 협정 부속서 3-가의 목록에 규정된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충분하게 작업 또는 가공된 것으로 간주하여 원산지 지위 인정
- 부속서 3-가 목록의 조건은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상품의 제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에 수행되어야 하는 작업 또는 가공을 의미하며, 해당 비원산지 재료에 대해서만 적용됨

※ 협정 제3.4조(충분하게 작업 또는 가공된 상품)

- ☐ [PSR 특징 및 현황] HS 2단위별 공통 원칙에 따른 단순한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도입

《 한-이스라엘 FTA 품목별 원산지기준(PSR) 현황 》

업종	PSR 구조
자동차	▶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 또는 비원산지재료가치 60% 이하 중 선택
기계, 전기·전자	▶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 또는 비원산지재료가치 50~60% 이하 중 선택
섬유·의류	▶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 또는 비원산지재료가치 60% 이하 중 선택 ▶ 다만, 의류(61류 및 62류)는 역내에서 재단·봉제 공정 수행 필요
화학제품	▶ 대부분 품목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 또는 비원산지재료가치 50% 이하 또는 특정 화학공정 중 선택
철강·비철금속	▶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 또는 비원산지재료가치 50% 이하 중 선택 ▶ 다만, 기타비금속제품(81류)의 경우 6단위 세번변경기준(CTSH) 적용

※ 한-이스라엘 FTA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은 HS 2012 기준임

※ 협정 부속서 3-가(품목별 원산지 규정), 규칙 제4조 및 별표 15의5

- ☐ [부가가치비율 계산]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물품 물품의 부가가치 비율은 아래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

$$\text{▶ 부가가치 비율(MC)} = \frac{\text{비원산지재료의 가격 (VNM)}}{\text{물품의 공장도가격 (EXW)}} \times 100$$

□ [세번변경기준] 세번변경 기준은 아래의 요건에 따라 적용

《 세번변경 기준 적용 요건 》

- ① 세번변경기준은 비원산지재료에만 적용
- ②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각각의 비원산지 재료는 세번변경을 거친 경우에만 원산지 결정기준이 충족된 것으로 간주
- ③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고, 그 기준이 류(類), 호(號) 또는 소호(小號) 단위에서 특정 품목번호를 제외하도록 규정한 경우 그 품목번호에 해당하는 재료는 원산지재료여야 함

※ 협정 부속서 3-가(품목별 원산지 규정) 제1부 일반주해

□ [화학반응] 협정 부속서 3-가(품목별 원산지 규정)의 제6부(제28류 ~ 제38류), 제7부(제39류 ~ 제40류)의 물품은 해당 류·부의 주석에 따른 화학반응이 수행된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

※ 화학반응 원산지 인정 기준 등 세부내용은 협정 부속서 3-가의 제6부 및 제7부의 주석 참조

□ [불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 협정 제3.4조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의 공정 또는 가공이 수행된 경우 상품의 원산지 지위를 인정하지 아니함

《 불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 》

- ① 운송 및 보관되는 동안 물품이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보장하는 보존 공정
- ② 포장의 단순한 변경이나 포장물의 해체 및 조립
- ③ 세척, 세탁, 먼지·녹·기름·페인트 또는 그 밖의 막의 제거
- ④ 기름 도포를 포함한 단순한 페인팅 및 광택 공정
- ⑤ 곡물 및 쌀의 탈각, 부분 또는 전체의 표백, 연마 및 도정
- ⑥ 방직용 섬유류의 다림질 또는 압착
- ⑦ 당류 착색 또는 각설탕 공정
- ⑧ 과일, 견과류 및 채소에 대한 탈피, 씨 제거 및 탈각
- ⑨ 연마, 단순한 분쇄 또는 단순한 절단
- ⑩ 감별(sifting), 체질(screening), 선별(sorting), 분류(classifying), 등급화(grading) 또는 매칭(matching). 단, 매칭에 물품 세트의 구성도 포함한다.
- ⑪ 마크, 라벨, 로고 및 이와 유사한 그 밖의 구별표시를 상품 또는 그 포장에 부착 또는 인쇄
- ⑫ 물 또는 그 밖의 물질에 단순한 희석. 다만, 상품의 특성이 변화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 ⑬ 단순한 시험 또는 측정
- ⑭ 병, 캔, 플라스크, 가방, 케이스, 상자에 단순한 넣기, 카드 또는 판에 붙이기, 그리고 그 밖의 모든 단순한 포장 공정
- ⑮ 완전한 물품을 구성하기 위한 부품의 단순 조립 또는 상품의 부품으로의 분해
- ⑯ 다른 종류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물품의 단순한 혼합. 다만, 분자 내 결합의 파괴를 통하여 새로운 구조를 가진 분자를 만들어 내는 공정(생화학 공정을 포함한다)인 “화학 반응(chemical reaction)”은 제외한다.
- ⑰ 동물의 도살
- ⑱ ① ~ ⑰까지 명시된 공정의 조합

※ 이 표에 언급된 “단순한”이란 일반적으로 특별한 기술이나 그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히 생산되거나 설치된 기계, 기기 또는 장비를 필요로 하지 않는 활동을 의미

※ 협정 제3.6조(불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

4. 특례 규정

□ [최소허용수준(미소기준)] 부속서 3-가(품목별 원산지 규정)에 규정된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상품이라도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 단, 부가가치기준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 최소허용수준 인정 기준 》

- ① (제15류~제24류)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고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않은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치가 그 물품의 공장도 가격의 10% 이하인 경우. 다만, 상품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재료의 HS 번호가 그 상품과 다른 HS6단위로 분류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 ② (제25류~제49류, 제64류~97류)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고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않은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치가 그 물품의 공장도 가격의 10% 이하인 경우
- ③ (제50류~제63류) 해당 상품의 품목번호를 결정하는 구성요소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섬유원료 또는 원사의 총 중량이 그 구성요소의 총 중량의 10% 이하로 사용된 경우

※ 협정 제3.5조(최소허용수준)

□ [누적] 어느 하나의 계약당사국에서 생산되는 원산지 상품에 결합된 다른 계약당사국의 원산지 재료는 완제품의 작업·가공이 발생한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

※ 협정 제3.2조(누적)

□ [부속품, 예비부품 및 공구] 일반 장비의 일부로서 그 가격에 포함되거나 송장이 별도로 발급되지 않고 장비, 기계, 기기 또는 차량과 함께 발송되는 부속품, 예비부품 및 공구는 해당 장비, 기계, 기기 또는 차량과 일체로 간주됨

※ 협정 제3.9조(부속품, 예비부품 및 공구)

□ [중립재*] 상품의 생산에 사용될 수 있으나 그 상품에 결합되지 않는 아래의 물품은 원산지 결정 시 고려하지 아니함

* 상품의 생산, 시험 또는 검사에 사용되지만 그 상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지 않거나, 상품의 생산과 관련된 건물의 유지 및 설비의 운영에 사용되는 물품

《 중립재로 인정 가능한 물품 》

- ① 에너지 및 연료
- ② 설비 및 장비
- ③ 기계 및 공구
- ④ 그 상품의 최종 구성에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도록 의도되지 않은 상품

※ 협정 제3.11조(중립재)

□ [대체가능 재료*] 아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따라 원산지 결정

* 동종이고 상업적으로 동질하며, 동일한 기술적 및 물리적 특성을 가지고, 최종 제품에 결합되는 경우 원산지 목적상 별도로 구별되지 않는 재료를 의미

《 대체가능 재료에 대한 원산지 인정 기준 》

① 동일하고 대체 가능한 원산지 재료와 비원산지 재료가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경우, 그 재료의 원산지에 따라 물리적으로 구분 보관하여야 함

② ①에도 불구하고 원산지 재료와 비원산지 재료를 물리적으로 구분·보관하는데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상당한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그 상품이 제조된 당사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근거한 재고관리기법을 사용할 수 있음

* 다만, 해당 재고관리기법은 해당 회계연도에 동일하게 사용되어야 함

《 (참고) 다른 FTA에서 인정되는 재고관리기법 》

① (개별법) 원산지 재료와 비원산지 재료를 구분하여 각 재료의 원산지에 따라 그 제품의 원산지 결정

② (선입선출법) 입고한 재료 중 먼저 입고한 재료가 먼저 출고된 것으로 보아 먼저 입고된 재료의 원산지를 기준으로 그 제품의 원산지 결정

③ (후입선출법) 입고한 재료 중 가장 최근에 입고한 재료가 먼저 출고된 것으로 보아 최근에 입고된 재료의 원산지를 기준으로 그 제품의 원산지 결정

④ (평균법) 보관 중인 원산지 재료와 비원산지 재료의 구성비율을 기준으로 그 제품의 원산지를 결정. 이 경우 원산지 재료와 비원산지 재료의 구성비율 계산은 보관 또는 취득한 원산지 재료와 비원산지 재료의 취득가격이나 수량 등을 기준으로 적용

⑤ ① ~ ④ 외에 상품이 생산된 회원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

※ 협정 제3.8조(구분 회계)

□ [중간재] 비원산지 재료가 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을 거쳐 원산지 지위를 갖춰 다른 상품의 생산에 재료(중간재)로 사용되는 경우 해당 재료(중간재)에 포함된 비원산지 재료는 고려하지 아니함

※ 협정 제3.4조(충분하게 작업 또는 가공된 상품)

□ [세트상품] 아래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세트 전체를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

《 세트상품의 원산지 인정 기준 》

- ①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 통칙 제3호에 따른 세트의 모든 구성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 경우
- ② 세트가 원산지 상품과 비원산지 상품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비원산지 상품의 가격이 그 세트의 공장도 가격의 15% 이하인 경우

※ 협정 제3.10조(세트)

5. 영역원칙 및 직접운송

- [영역 원칙] 누적 또는 완전생산기준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협정 제3.4조에 규정된 원산지 지위 획득을 위한 조건은 한국 또는 이스라엘에서 중단 없이 충족되어야 함
- [재수입물품의 원산지 인정 특례] 원산지 상품이 체약당사국에서 비당사국으로 수출되었다가 다시 해당 체약당사국으로 수입된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입증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

《 재수입물품의 원산지 인정 기준 》

- ① 수출된 물품과 동일한 상태로 재수입한 경우
- ② 재수입된 물품이 체약당사국이 아닌 국가에 있거나 수출되는 동안 그 물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는데 필요한 작업 또는 공정 이상을 거치지 않은 경우

- [역외가공(비당사국)] 체약당사국에서 수출한 재료가 체약당사국 영역 밖에서 추가적인 제조 또는 가공을 거친 후 다시 해당 체약당사국으로 수입되어 최종 생산된 경우에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함

《 재수입물품의 원산지 인정 기준 》

- ① 재료가 체약당사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수출되기 전에 협정 제3.6조에 따른 공정(불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 이상의 공정을 거칠 것
- ② 역외가공 후 재수입된 물품이 체약당사국에서 수출된 재료에 대한 작업 또는 가공으로 획득되었을 것
- ③ 수출된 상품과 역외가공 후 재수입된 상품의 HS6단위가 동일할 것
- ④ 비당사국에서 역외가공으로 발생한 총 부가가치가 원산지 지위가 신청된 최종 상품의 공장도 가격의 10% 이하일 것
- ⑤ 협정 제3.4조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상품에는 적용되지 않음
- ⑥ 역외가공에 대한 사실 정보를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것

- [역외가공(개성공단)] 우리나라에서 특정지역으로 반출된 상품이 해당 지역에서 추가적인 작업 또는 가공을 거친 후 다시 우리나라로 반입되는 경우라도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함

※ 향후 구성될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에서 역외가공 지역 및 해당 지역에서 최대 투입 가능한 부가가치 한도 등을 마련할 예정

- [직접운송] 협정에 따른 특혜 대우는 협정 제3장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체약당사국간 직접 운송되는 상품에 한정하여 적용됨이 원칙임

- (예외 인정) 단일 탁송화물을 구성하는 상품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비당사국 영역에서 관세당국의 통제 하에 환적 또는 일시적으로 창고보관 되거나, 해당 영역을 통과하여 운송될 수 있음

《 직접운송 예외 인정 요건 》

- ① 상품이 통과 중인 비당사국에서 거래, 소비 또는 사용이 의도되지 않아야 함
- ② 하역, 재선적 또는 그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하여 고안된 공정 외의 공정을 거치지 않아야 함
- ③ ① 및 ②의 요건이 충족됨을 입증하는 아래와 같은 증빙자료를 수입 당사국에 제출하여야 함
 - 가. 원산지국으로부터 수입국까지의 운송을 증명하는 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 또는 복합운송이나 결합운송 서류와 같은 운송서류
 - 나. 상품이 통과 중이었던 비당사국의 관세 당국에 의하여 발급된 증명서로서, 상품의 정확한 설명, 그 비당사국에서의 상품의 하역 및 재선적 날짜와 장소, 그리고 상품이 놓여진 상태를 포함한 것
 - 다.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서류가 없는 경우 직접 선적을 증빙하는 그 밖의 서류

- [전시상품] 원산지 상품이 전시를 위하여 비당사국으로 발송되었다가 전시 후에 체약당사국으로의 수입을 위해 판매된 전시상품은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특혜 대우 가능

《 전시상품 특혜 인정 요건 》

- ① 전시회의 명칭 및 주소가 기재된 원산지증명서를 협정 제3장에 따라 발급하여 수입당사국의 관세 당국에 제출
- ② 전시 기간 동안 세관의 통제하에 있는 경우, 외국 상품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여 상점 또는 사업장에서 개인적인 목적으로 개최되지 않은 모든 무역, 산업, 농업 또는 공예품 전시회, 박람회 또는 이와 유사한 공개 전시에 적용
- ③ 전시상품을 수입할 때 수입당사국의 세관 당국에 다음 사항을 모두 입증하여야 함
 - 가. 수출자가 그 상품을 우리나라 또는 이스라엘로부터 전시회가 개최된 비당사국으로 운송하고, 그 상품을 그 비당사국에서 전시한 사실
 - 나. 상품이 그 수출자에 의하여 우리나라 또는 이스라엘의 인에게 판매 또는 달리 처분된 사실
 - 다. 상품이 전시를 위하여 발송된 비당사국에서 전시회 기간 동안 또는 전시회 직후에 운송된 사실
 - 라. 상품이 전시를 위하여 운송된 후 전시회에서 시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은 사실

※ 협정 제3.12조(영역 원칙), 제3.13조(직접 운송), 제3.14조(전시회)

Ⅲ. 원산지증명

1. 개 요

- [증명방식] ① 기관발급 방식과, ② 자율증명 방식 중 선택 가능

※ 다만, 원산지 상품의 가치가 미화 1천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인 경우 원산지인증수출자만 자율증

명 방식을 활용할 수 있음

☐ [유효기간] 원산지증명은 발급 또는 작성일로부터 1년간 유효

○ (제외기간) 이스라엘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물품의 경우 아래 기간을 유효기간 계산 시 제외함

《 유효기간 계산 시 제외되는 기간 》

- ① (유효기간 경과 전 물품이 수입항 도착)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날의 다음날부터 해당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신청일 까지의 기간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따른 운송지연 등)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소멸된 날 까지의 기간

☐ [적용시점] 협정 발효일(' 22. 12. 1.) 부터 발급(작성) 가능

※ 협정 제3.15조(일반 요건), 영 부칙<제31906호, 2021. 7. 27.> 제1조(시행일)

2.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

☐ [신청인]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책임하에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

☐ [발급기관] 세관 또는 대한상공회의소

※ 이스라엘의 경우 재무부 이스라엘조세당국 관세국에서 발급

☐ [발급절차] 수출물품의 선적일 후 7근무일(선적일을 포함하지 않음)까지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에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발급기관에 제출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http://unipass.customs.go.kr>) 또는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센터(<http://cert.korcham.net>)에 접속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신청·발급

○ (인증수출자 혜택)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하는 업체별 또는 이스라엘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는 첨부서류 제출 생략

《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첨부서류 》

- ① 수출신고 수리필증 사본(증명서발급기관이 수출사실 등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생략 가능)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②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③ 원산지확인서(최종물품에 대한 원산지확인서로서 해당 물품의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④ 원산지소명서. 다만,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생산자는 원산지소명서를 증명서발급기관에 직접 제출할 수 있음

⑤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정보 및 국내제조확인서
(발급기관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며,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생산자는 해당 서류를 증명서발급기관에 직접 제출할 수 있음)

☐ [소급발급] 비자발적 오류, 누락 또는 그 밖의 사유 및 정정발급 상황에서 원산지증명서가 선적일 후 7근무일(선적일을 포함하지 않음) 이내에 발급되지 않은 경우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급발급(선적 후 발급)*을 신청할 수 있음

* 소급발급된 원산지증명서에는 “ISSUED RETROSPECTIVELY” 기재

《 (참고) 협정별 소급발급 기준 》

대상 협정	소급발급 기준
아세안, 베트남	선적일로부터 3근무일(선적일 포함) 이내에 미발급
인도	선적일로부터 7근무일(선적일 포함) 이내에 미발급
중국, 이스라엘	선적일 후 7근무일(선적일 불포함) 이내에 미발급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선적일로부터 달력상 7일(선적일 포함) 이내에 미발급

□ [제2사본 발급(재발급)] 원산지증명서 종이 원본이 도난, 분실 또는 멸실된 경우, 원본의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원산지증명서 제2사본의 발급 신청 가능

○ 원산지증명서 제2사본에는 “DUPLICATE” 문구가 기재되며, 발급일자도 원본과 동일하게 기재

※ 향후 이스라엘 관세당국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전자본 발급 및 조회형 e-CO 등이 활용될 수 있으며, 시행 시점은 별도 공지할 예정

※ 협정 제3.16조(원산지 증명서 발급 절차), 제3.17조(소급하여 발급된 원산지 증명서), 제3.18조(제2사본 원산지증명서), 규칙 제10조

3.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의 작성방법

□ [원산지증명서 서식] 규칙 별지 제24호의7 서식 참조

□ [작성방법] 원산지증명서의 주요 항목은 아래 방법에 따라 기재

《 원산지증명서 주요 항목 기재 방법 》

- ① [1번란] 수출자의 상호, 주소, 국가 / [3번란] 수입자의 상호, 주소, 국가
 [4번란] 원산지 국가 / [6번란] 목적 국가
 - 1번란 및 4번란의 국가는 “KOREA”, 3번란 및 6번란의 국가는 “ISRAEL” 이 고정값으로 출력
 - 1번란 및 3번란의 주소를 기재할 때 국가명을 입력하는 경우 국가명이 중복 기재되지 않도록 유의
- ② [3번란] 수입자의 상호, 주소, 국가 / [8번란] 상업 송장
 - 상업적인 이유로 수입자 지정이 불가능한 경우 3번란에 “Unknown” 을 기재할 수 있음
 - 상업적인 이유로 송장번호를 기재할 수 없는 경우 8번란에 “Unknown” 을 기재할 수 있음
- ③ [7번란] 비고
 - (제2사본) 해당란에 “DUPLICATE” 표시하고, 10번란, 11번란의 날짜는 당초 발급된 원본 증명서의 발급일자 기재
 - (소급발급) 선적일 후 7일(선적일을 포함하지 않음)부터 선적일로부터 1년(선적일을 포함)까지 발급된 경우 “ISSUED RETROSPECTIVELY” 기재
 - (역외가공) 협정 제3.12조에 따른 역외가공이 수행된 물품은 “OUTWARD PROCESSING” 기재
 - * 원산지증명서 전자문서 항목정의서의 “역외가공기준” 에 “Y” 로 표시한 경우
 - (전시물품) 전시물품에 해당하는 경우 전시회의 명칭과 전시회가 개최된 비당사국의 주소 기재

- (비당사국 송장) 비당사국 운영자가 대상 물품의 송장을 발급하는 경우 해당 사실(비당사국 운영인의 상호 및 국가)을 기재

④ [9번란]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결정기준	9번란에 기입
가. 협정 제3.3조의 의미 내에서 당사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	“WO”
나. 당사국에서 완전히 획득되지 않은 재료를 결합하여 그 당사국에서 획득된 상품. 다만, 그러한 재료가 협정 제3.4조의 의미 내에서 당사국에서 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을 거친 경우로 한정	“PSR”
다. 협정의 원산지 규정에 관한 장에 따른 원산지 자격을 갖춘 재료만으로 당사국에서 획득된 상품	“PE”
라. 협정 부속서 3-나(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에 기초하여 합의된 대로 역외가공 지역에서 생산된 상품	“OP”

④ [10번란] 신고

- 수출자와 생산자가 동일한 경우 “The Producer” 란에 체크
-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The Exporter (if not the producer)” 란에 체크

※ 협정 부속서 3-다(원산지 증명서), 제3.14조(전시회), 제3.25조(증빙서류), 규칙 제15조제20항 및 별지 제24호의7 서식

4. 자율증명 원산지신고서

☐ [작성권한]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 시 원산지신고서 작성 가능

《 원산지신고서 작성 가능한 자 》

- ① 영 제7조제1호에 따른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 ② 영 제7조제2호에 따른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다만, 이스라엘과의 협정에 대해 인증받은 품목(HS6단위 기준)으로 한정
- ③ 수출자. 다만, 원산지 상품의 가치가 미화 1천달러를 초과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

☐ [서식 및 작성방법] 원산지 상품의 가격, 원산지 인증수출자 여부에 따라 다른 서식 사용

※ 우리나라의 수출자가 아래 서식을 작성하는 경우 원산지 지위를 부여하는 생산이 발생한 장소는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이스라엘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생산지역 기재 및 확인 방법은 이 지침의 V-4 참조

○ 인증수출자는 원산지 상품의 가격과 관계없이 아래 서식 사용 가능

《 원산지신고서에 기재할 사안(협정 부속서 3-라-1 서식) 》

상업서류에 기재할 문안	The exporter of the good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zation No ¹⁾)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goods are of (²⁾) (location & postal code ³⁾) preferential origin.
작성방법	인증수출자는 송품장 등의 상업서류에 위 문안을 다음과 같이 타자로 치거나, 인장을 찍거나 인쇄하여 영문으로 작성함. 수기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잉크를 사용하되, 정자로 기재해야 함 1) 수출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의하여 부여받은 인증수출자 번호 기재 2) 원산지 국가(즉, Korea 또는 Israel)를 기재 3) 원산지 지위를 부여하는 생산이 발생한 장소(우편번호 포함) 기재

- 미화 1천달러를 초과하지 않은 물품은 아래 서식 사용 가능.이 경우에는 원산지 신고문안의 작성 장소 및 일자, 수출자의 서명을 하단에 기재하여야 함

《 원산지신고서에 기재할 사안(협정 부속서 3-라-2 서식) 》

상업서류에 기재할 문안	The exporter of the goods covered by this document declares that these goods of(¹⁾)(location & postal code²⁾), unless otherwise clearly specified, comply with the provisions of the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State of Israel and the Republic of Korea.	
	Place and Date	Signature of the Exporter
작성방법	수출자는 송품장 등의 상업서류에 위 문안을 다음과 같이 타자로 치거나, 인장을 찍거나 인쇄하여 영문으로 작성함. 수기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잉크를 사용하되, 정자로 기재해야 함 1) 원산지 국가(즉, Korea 또는 Israel)를 기재 2) 원산지 지위를 부여하는 생산이 발생한 장소(우편번호 포함) 기재	

- [작성 유의사항] 송품장 등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서 문안이 기재되어야 하며, 다른 서류에 별도로 신고문안을 기재한 경우 유효한 원산지증명으로 인정되지 아니함

- 하나의 원산지신고서에 원산지 상품과 비원산지 상품이 혼재된 경우 해당 상업서류에 이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표시하고, 원산지신고서 문안의 ‘원산지 국가’ 란에는 원산지 상품에 해당하는 국가명을 기재

※ 협정 제3.20조(원산지 신고서 작성 조건) 및 부속서3-라-1, 부속서3-라-2, 규칙 제15조제20항, 별표 제20의3 및 별표 제20의4

VI. 협정관세 적용

1. 협정관세 적용 시점

- [시점] 협정 발효시점(' 22. 12. 1. 00시) 이후부터 수입신고되는 물품

- [경과규정] 아래 경과규정 적용 대상 물품으로 협정 제3장의 요건을 충족하는 원산지 상품은 협정 발효일로부터 12개월 이내(' 23. 11. 30.까지)에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수 있음

《 경과규정 적용 대상 물품 》

협정 발효일 당시에

- ① 운송 중인 물품이거나,
- ② 보세창고에 보관 중인 물품이거나,
- ③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물품

○ (유의사항) 협정관세 적용 신청 시, ① 협정 발효일 이후에 소급하여 작성·발급된 원산지증명과 ② 직접운송 입증서류 제출

※ 협정 발효일 이전에 작성·발급된 원산지증명은 유효성이 인정되지 아니함

《 소급 작성·발급된 원산지증명의 유효성 인정 기준(예시) 》

①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 11번란의 발급일자가 ' 22.12.1. 또는 그 이후 날짜

② [자율발급 원산지신고서(인증수출자용)]

- 원산지 신고문안 하단에 작성일자 기재 여부에 따라 달리 판단
 - 작성일자 기재 시: 해당 일자가 ' 22.12.1. 이후인 경우 유효성 인정
 - “ 미기재 시: 원산지신고서가 작성된 상업서류의 작성일자가 ' 22.12.1. 이후인 경우 유효성 인정

③ [자율발급 원산지신고서(미화 1천달러 이하 물품용)]

- 원산지 신고문안 하단에 기재된 날짜가 ' 22.12.1. 이후인 경우 유효성 인정

※ 협정 제3.31조(통과 또는 보관중인 상품에 대한 경과 규정)

2. 협정관세 적용신청의 시기

□ [원칙] 수입물품에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수입자는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

○ (제출서류) 세관장에게 협정관세 적용신청서를 제출

○ (증빙서류) 협정 제3.15조에 따른 원산지증명을 포함하여 수입물품이 협정 제3장의 요건을 충족함을 입증하는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세관장이 요구하면 제출하여야 함

□ [예외: 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 적용신청 가능

○ (제출서류) 세관장에게 ①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②수입·납세신고정정신청서, ③ 원산지증명서를 포함한 원산지증빙서류 제출

○ (증빙서류) 수입물품은 수입 당시에 협정 제3장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때 이를 입증하는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

※ 협정 제3.22조(원산지 증명의 제출), 법 제8조 및 제9조

3. 협정관세 적용신청의 방법

☐ [관세율 구분부호] 수입신고서 및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에는 한-이스라엘 FTA 관세율 구분부호(“붙임”)와 협정관세율을 기재

☐ [인정되는 원산지증명] 아래 중 하나의 원산지증명을 인정

《 수입물품의 협정관세 적용 시 인정되는 원산지증명 》

① 수출당사국의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 (Certification of Origin)

② 수출당사국의 인증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 (Declaration of Origin)

② 1천달러 이하의 원산지 상품에 대해서는 수출당사국의 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 (Declaration of Origin)

- (유의사항)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의 경우 작성자의 수출당사국 인증수출자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함
※ 이스라엘에서 부여하는 인증수출자 번호는 숫자 9자리 체계임

☐ [원산지증명서 제출 방식] 우리나라가 인정하는 원산지증명의 형태는 아래와 같음

《 협정관세 적용 신청 시 제출 가능한 원산지증명의 형태 》

① 종이 원본. 다만, 세관장이 별도로 요구하지 않는 경우 사본제출 스탬프를 날인한 사본으로 대체 가능

② 종이 원본을 스캔하여 이미지화한 파일(PDF, JPEG 등)

《 (참고) 원산지증명서 사본제출 스탬프 양식 》

본 사본이 원본과 다를 경우 관세법 등 관련법령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고 있으며, 세관에
서 요구시 원본을 제출하겠습니다.

수입자 ○○○ (서명)

※ 협정 제3.22조(원산지 증명의 제출), 법 제8조, 영 제4조제1항 및 제2항

4. 이스라엘 생산지역 확인

☐ [원산지 지위를 부여한 생산지역] 1967년 이후 이스라엘이 점령한 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인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상 이스라엘에서 작성·발급한 원산지증명에는 원산지 지위를 부여하는 생산이 발생한 장소(주소)와 우편번호(이하 “생산지역”이라 함)가 기재됨

- (유의사항) 수입자는 원산지증명에 생산지역이 적정하게 기재되었는지 여부와 해당 생산지역이 협정관세 적용 가능한 지역인지 여부를 협정관세 적용 신청 전에 확인하여야 함

☐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않는 생산지역] 생산지역이 다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정관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 협정관세가 적용되지 않는 생산지역 》

① 1967년 이후 이스라엘이 점령한 지역(이하 “점령지역”)

② 1967년 이후 이스라엘이 점령한 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지역(이하 “국경지역”) 중에서 1967년 이후 이스라엘이 점령한 지역으로 확인된 지역

※ 상기 지역 목록은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이스라엘 생산지역 및 확인 방법에 관한 고시」(이하 “이스라엘 생산지역 확인 고시”) 참조

○ (다수의 생산지역) 원산지증명에 기재된 생산지역이 다수인 경우 아래 예시를 참조하여 협정관세 적용 대상이 되는 모든 물품의 생산지역이 적절하게 기재되었는지 확인 필요

《 다수의 생산지역 확인 방법(예시) 》

①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물품 중 일부가 1967년 이후 이스라엘이 점령한 지역에서 생산된 경우

- 원산지증명서 7번란에는 “이하에 명시된 원산지(place of origin as detailed below)”라는 문구가 기재되고, 생산지역(우편번호 포함)은 원산지증명서 9번란에 각 물품별로 기재될 수 있음

② 자율발급 원산지신고서에 기재된 물품 중 일부가 1967년 이후 이스라엘이 점령한 지역에서 생산된 경우

- 원산지 국가란의 “Israel” 단어 옆에 “이하에 명시된 원산지(place of origin as detailed below)”라는 문구가 기재되고, 생산지역(우편번호 포함)은 해당 원산지신고서가 작성된 상업서류에 각 물품별로 기재될 수 있음

○ (재료 및 공정) 협정관세가 적용되지 않는 지역에서 생산된 재료는 비원산지재료로 간주하며, 해당 지역에서 수행된 가공 또는 공정은 비당사국에서 수행된 가공 또는 공정으로 간주

□ [국경지역 확인 절차] 수입자는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생산지역이 ‘국경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협정관세 적용 신청 시 “이스라엘 생산지역 확인 필요” 문구를 아래의 방법에 따라 기재하고, 세관장에게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이스라엘 생산지역 확인 필요” 문구 기재 방법 》

① 수입신고의 수리 전에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 수입신고서의 “신고인기재”란에 기재

② 수입신고의 수리 후에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 수입·납세신고 정정신청서의 “수입(납세)신고 정정사유”란에 기재

○ (국경지역 확인) 세관장은 “국경지역” 물품이 협정관세 적용 신청된 경우 “점령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관세청장에게 확인한 이후에 협정관세 적용

※ “국경지역” 물품이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수리 전 협정관세 적용 신청된 경우에는 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입신고수리 전 협정관세 적용 적정 여부 심사 대상임

※ “점령지역” 여부 확인은 외교부 및 현지 공관의 협조를 통해 진행되므로, 화물의 긴급한 반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세법 제252조에 따른 수리전 반출을 신청하거나, MFN 세율로 수입신고한 후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할 것을 권고

□ [협정관세 적용 제한] 생산지역 심사 및 원산지조사 결과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정관세 적용을 제한함

《 생산지역 불부합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 제한 》

- ① 원산지증명서에 생산지역이 기재되지 않았거나 이스라엘 주소 및 우편번호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등 부적절하게 기재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생산지역이 점령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 ③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생산지역이 국경지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점령지역에 해당함이 확인된 경우

□ [점령지역 현행화] 점령지역 및 국경지역 변경사항은 관세청 FTA 포털에 게시될 예정이며, 해당 고시가 개정·시행되기 전이라도 게시된 내용에 따라 점령지역 여부 등을 판단함

※ 규칙 제15조제2항, 이스라엘 생산지역 확인 고시

5. 원산지증명 제출 면제

- [면제 대상] 사인 간(from private persons to private persons) 소포로 송부되었거나, 여행자 휴대품으로 반입된 총 과세가격 미화 1천달러 이하의 비상업적 물품은 원산지증명 제출을 면제*
- * 구매영수증, 제품의 원산지 표기 등을 통해 상품의 원산지를 간이하게 확인
- 다만, 물품의 분할 반입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의 제출을 면제하지 않음

※ 협정 제3.24조(원산지 증명의 면제), 법 제8조제2항, 영 제4조제3항제1호

6. 사소한 불일치 및 오류

- [사소한 불일치] 협정관세 적용 신청 시 제출된 원산지 증명과 다른 서류 간 사소한 불일치가 있더라도 서류상 물품의 동일성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원산지증명의 유효성 인정
- [형식적 오류] 원산지 증명의 내용의 정확성에 대한 의심을 유발하지 않는 명백한 형식적 오류는 협정관세 적용 거부 사유가 아님

V. 기타사항

1. 원산지검증

- 원산지검증은 무작위 또는 서류의 진정성, 상품의 원산지 지위 및 그 밖의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수입국 관세당국의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아래의 방법에 따라 수행

《 우리나라로 수입된 물품에 대한 원산지검증 》

- ① [수입자 검증]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수입자에게 직접 서면 또는 현지 방문을 통해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 적정 여부 등 확인
- ② [간접검증] 협정 제3.29조 및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간접검증을 요청받은 수출당사국은 검증 결과를 요청일부터 10개월 이내에 회신
 - (추가 정보 요청) 검증 결과가 불충분한 경우 수출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추가 정보·서류, 설명 요청 가능하며, 이 경우 수출당사국은 요청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결과 회신
- ③ [직접검증] ②의 검증 결과가 불충분한 경우 수출당사국 관세당국의 사전 동의 및 지원을 받아 사업장 방문검증 가능

《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에 대한 원산지검증 》

- [간접검증] 협정 제3.29조에 따라 수입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검증 요청을 받은 세관장은 수출자, 생산자에게 조사를 실시하고,
 - 조사 요청일부터 10개월 이내에 수출국의 관세당국에 결과 통지

※ 협정 제3.29조(검증), 법 제17조 ~ 제19조, 영 제11조~13조, 제15조 및 제16조, 규칙 제22조~제25조,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2. 협정관세 적용제한

□ 세관장은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이 경우 세관장은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의 차액을 부과·징수하고, 필요한 경우 가산세를 징수

《 협정관세 적용이 제한되는 경우 》

- ① 협정 제3.13조의 직접 운송에 관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 ② 원산지신고서가 당사국의 수출자에 의해 작성되지 않은 경우
- ③ 인증수출자가 아닌 자가 부속서 3-라-1의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한 경우
- ④ 수입자가 수입국 관세당국이 요구한 원산지 증명을 30일 이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
- ⑤ 수입당사국의 관세당국이 합리적 의심에 따른 간접검증 요청하였으나, 수출당사국의 관세당국이 10개월 이내에 검증 결과를 미회신한 경우
- ⑥ ⑤의 간접검증 결과 수출당사국에서 원산지증명의 진정성 또는 상품의 원산지 결정을 위한 충분한 정보를 회신하지 않은 경우
- ⑦ ⑤의 간접검증 결과가 불충분하여 서면으로 추가 정보를 요청하였으나, 90일 이내에 미회신한 경우
- ⑧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수출당사국의 관세당국을 통해 방문검증을 거부하는 경우
- ⑨ 원산지증명서에 수출당사국 발급기관의 서명이 없거나 원산지신고서에 수출자의 서명이 없는 경우. 다만, 수출당사국의 인증수출자가 부속서 3-라-1의 서식으로 작성한 원산지신고서는 예외
- ⑩ 수입자가 수입신고수리 전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는 때에 유효한 원산지증명을 보유하지 아니하였고, 수입신고 시점 이후에 소급 작성된 원산지증명으로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경우
- ⑪ 원산지증명서에 생산지역이 미기재·부적정 기재되었거나, 점령지역에 해당함이 확인된 경우
- ⑫ 그 밖에 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협정 제3장 주해, 법 제35조, 영 제44조

협 정	관세율 구분부호	내 용
한-이스라엘 FTA	FIL1	- 하나의 품목번호에 1개의 협정세율이 적용되는 물품 - 하나의 품목번호에 서로 다른 협정세율이 있는 경우 최고세율 적용물품
	FIL2 FIL3 FIL4 FIL5 FIL6	- 하나의 품목번호에 서로 다른 협정세율이 있는 경우 최고세율인 FIL1을 제외하고 세율이 높은 순으로 FIL2부터 FIL6까지 순차 적용
	FIL7	- 종가 또는 종량
	FIL8	- 추천이 필요한 물품 중 추천을 받은 물품
	FIL8	- 긴급수입제한조치 품목 중 발동 수준을 초과한 물품

20. 한-캄보디아 FTA

1.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발효에 따른 관세행정 운영지침

<일러두기>

- 이 지침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같은 법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는 각각 ‘협정’, ‘법’, ‘영’, ‘규칙’, ‘고시’, 라 지칭함
- 향후 당국간 이행협상 결과 등을 반영한 이 지침의 개정·추가·변경사항이 관세청 FTA포털사이트를 통해 공지될 수 있음

I. 한-캄보디아 FTA 개요

1. 적용 범위

☐ [당사국] 대한민국, 캄보디아 왕국

- (대한민국 영역)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영해 및 영공과 국제법 및 국내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이 행사되는 영해의 외측한계선에 인접하거나 외측한계선 밖의 해저·해저층을 포함한 해양지역
- (캄보디아 영역) 캄보디아왕국의 영역과 캄보디아왕국이 국제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하는 영해의 외측 한계에 인접한 해저 및 하층토를 포함한 해양지역 및 상공

☐ [발효] ' 22. 12. 1. 발효

※ 협정 제1.1조(일반정의), 제10.10조(발효), 영 부칙<제32766호, 2022. 7. 5.> 제1조(시행일), 규칙 제2조(정의) 제1호 러목

2. 관세 인하 또는 철폐

☐ 협정 부속서 2-가의 양허표에 따라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를 점진적으로 인하 또는 철폐

□ 한-아세안 FTA 대비 우리측은 품목수 기준 4.0%p, 수입액 기준 8.8%p(0.3억불), 캄측은 품목수 기준 12.4%p, 수입액 기준 43.1%p(2.5억불) 추가 관세 철폐

○ [아측] (품목수) 91.0% → 95.0% / (수입액) 83.1% → 91.0%

○ [캄측] (품목수) 76.7% → 89.1% / (수입액) 29.0% → 72.1%

《 한-캄보디아 FTA 전체 상품 양허 현황 》

구분	한국 양허				캄보디아 양허			
	품목수(개)		' 18~' 19년 對韓수입액 평균(천불)		품목수(개)		' 18~' 19년 對韓수입액 평균(천불)	
전체	12,234		100.0%		325,200		100.0%	
한-아세안 FTA	11,127	91.0%	270,213	83.1%	8,295	76.7%	165,762	29.0%
즉시 철폐	173	1.4%	27,285	8.4%	260	2.4%	5,074	0.9%
5년 철폐	43	0.4%	426	0.1%	70	0.6%	413	0.1%
7년 철폐	28	0.2%	470	0.1%	-	-	-	-
10년 철폐	89	0.7%	482	0.1%	74	0.7%	42,351	7.4%
15년 철폐	160	1.3%	82	0.0%	899	8.3%	102,763	18.0%
20년 철폐	6	0.0%	0	0.0%	35	0.3%	96,238	16.8%
소계	499	4.0%	28,745	8.8%	1,338	12.4%	246,839	43.1%
최종 관세철폐율	11,626	95.0%	298,958	91.9%	9,633	89.1%	412,601	72.1%

* [출처] 한 · 캄보디아 FTA 상세설명자료

※ 협정 제2.4조(관세의 인하 또는 철폐), 협정 부속서 2-가(관세의 인하 또는 철폐), 영 제2조제22항 및 별표17의7

3. 관세평가

□ 당사국들 간 교역되는 상품의 관세가격 결정 목적상 1994년도 GATT 제7조 및 관세평가협정 제1부 및 부속서 I의 주해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적용

※ 협정 제2.5조(관세 평가)

4. 관세양허표의 변경

□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HS)의 주기적 변경 후 개정된 품목분류체계에서 자국 관세양허표 전환 시 부속서 2-가의 관세 양허를 손상시키지 않고 상품무역위원회가 합의한 전환 지침에 따라 수행

※ 협정 제2.6조(관세 양허표의 전환)

5. 관세면제 대상 일시반입 물품 등

□ [일시반입 물품] 명시된 기간 내에 재수출될 의도로, 사용에 따른 통상적인 감가상각 및 손실을 제외한 어떠한 변화도 거치지 않고, 자국의 관세 영역으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반입되는 상품되는 아래 상품은 관세의 조건부 면제 가능

《 규칙 제30조제1항 적용 대상 물품 》

- ① 언론장비, 텔레비전 방송용 장비, 소프트웨어, 방송·영화 촬영 장비 등 일시 입국하는 사람의 영업활동, 거래 또는 직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 ②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물품(구성부품, 보조기구와 부속품 포함)
- ③ 운동경기용 물품(시범용 및 훈련용 물품 포함)
- ④ 상용견품
- ⑤ 물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거나 임대하기 위하여 그 성질·작동 등을 보여주는 시연용 영상 또는 음향 기록매체. 다만, 일반대중을 위한 방송용은 제외

□ [상용견품] 협정 상대국 영역에서 수입되는 무시할 만한 가치의 상업적 견본품은 원산지과 관계없이 무관세 반입 허용

○ (대상)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물품을 상용견품으로 인정

《 규칙 제30조제6항에 따른 상용견품 》

- ① 견품 외의 용도로 판매되거나 사용되기에 부적합하도록 천공, 절단 등 견품화 처리가 된 물품
- ②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금액(과세가격 미화 2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 협정 제27조(상품의 일시 반입) 및 제28조(무시할 만한 가치의 상업용 견본품의 무관세 반입), 법 제30조 제1항, 규칙 제30조제1항 및 제6항

II. 원산지 규정

1. 개요

□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 결정의 일반기준과 품목별기준을 규정

- 당사국 내에서 ① 완전 획득·생산, ② 원산지 재료로만 생산, ③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한 생산(부속서 3-가(품목별 원산지 규정) 충족)
-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은 HS 2017 기준 총 5,387개 세번(HS 6단위)에 대해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될 수 있는 요건 규정

□ [원산지절차] 원산지증명, 인증수출자, 특혜관세 적용, 원산지 검증, 원산지 정보교환 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대해 규정

- (원산지증명) ① 기관발급, ② 인증수출자에 의한 자율증명
- (인증수출자) 인증수출자 요건 및 의무, 인증수출자 DB 구축·등록 등 수출당사국 권한있는 당국의 의무 등을 규정
- (특혜 적용) 유효한 원산지증명에 기초하여 특혜관세 신청, 수입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명시된 기간 내 사후신청 가능

- (검증) 수입자, 수출자·생산자 서면 검증, 권한있는 당국에 검증 지원 요청(간접검증), 수출자·생산자 방문 검증

2. 정의

□ 협정 제3장(원산지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규정

- (생산) 상품의 재배, 채굴, 수확, 사육, 번식, 추출, 채집, 수집, 포획, 어로, 덧사냥, 수렵, 제조, 생산, 가공 또는 조립을 포함한 상품의 획득 방법
- (상품) 모든 제품, 생산품, 물품 또는 재료를 말하며, 추후 다른 생산과정에서 재료로 사용되기 위한 것이더라도,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될 수 있는 재료 또는 상품(생산품)을 포함함
(“상품”과 “생산품”이란 용어는 호환하여 사용 가능)
- (재료) 생산과정에 사용되는 원료, 원재료, 부품, 구성품, 하위 조립품을 포함
- (원산지 상품) 협정 제3장(원산지 규정)에 따라 원산지 자격을 갖춘 생산품 또는 재료를 말함
- (비원산지 상품 또는 비원산지 재료) 협정 제3장에 따른 원산지 자격을 갖추지 않은 상품 또는 재료를 의미
- (대체가능 상품 또는 재료) 상업적 목적으로 호환 가능하고 그 특성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상품 또는 재료
-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 수입, 경비, 비용, 자산 및 부채의 기록, 정보의 공개 그리고 재무제표의 작성에 대하여 당사국에서 컨센서스로 인정된 또는 실질적이고 권위있는 지지를 받는 원칙(세부 표준, 관행, 절차 및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지침 포함)
- (품목별 원산지 규정) 재료가 세번의 변경이나 특정 제조 또는 가공 공정을 거쳤거나, 역내가치포함비율(RVC) 또는 이러한 기준들이 결합된 기준을 충족함을 명시하는 규정
- (본선인도가격(FOB)) 생산자로부터 해외 최종 선적 항구 또는 장소까지 소요되는 운송 비용을 포함한 상품의 본선인도가격(FOB)의 가치
- (운임보험료포함가격(CIF)) 수입된 상품의 가격을 말하며, 수입국으로 들어오는 항구 또는 반입지점까지의 화물운송 및 보험 비용을 포함
- (운송을 위한 포장재료와 용기) 운송 동안 상품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상품을 말하며, 소매를 위하여 사용되는 재료 또는 용기가 아님
- (특혜관세대우) 원산지 상품에 대하여 부여된, 이 협정에 따라 적용 가능한 관세율에 반영된 관세 양허
- (수출자)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며 상품을 수출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
- (수입자)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며 상품을 수입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
- (생산자) 상품의 생산에 종사하는 인
- (권한 있는 당국) 한 쪽 당사국에 의하여 지정되고 다른 쪽 당사국에 통보된 하나 또는 복수의 정부 당국

- (발급기관) 한쪽 당사국이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지정하거나 그러한 권한을 주고 다른 쪽 당사국에 통보한 기관
- (제3국) 비당사국을 말함

※ 협정 제3.1조(정의)

3. 일반 규정

□ [원산지 상품] 당사국 영역으로 수입된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상품을 특혜관세대우 대상이 되는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

《 원산지 상품의 종류 》

- ① [완전생산(WO)] 수출 당사국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
- ② [원산지 재료로만 생산(PE)] 원산지 재료로만 수출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상품
- ③ [품목별 원산지기준 충족(PSR)]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수출 당사국영역에서 생산되고, 품목별 원산지 규정(부속서 3-가)의 요건을 충족하는 상품

- 완전생산 상품 또는 원산지 재료로만 생산된 상품인 경우 부속서 3-가의 품목별 원산지기준과 상관 없이 원산지 지위 인정
- 협정 제3.6조의 누적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협정 제3장에 규정된 원산지 지위를 획득하기 위한 조건은 수출 당사국의 영역에서 중단 없이 충족되어야 함

※ 협정 제3.2조(원산지 상품)

□ [완전생산 상품] 다음은 당사국에서 완전 획득·생산으로 간주

《 완전생산 상품 》

- ①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배된 후 수확, 수집 또는 채집된 식물과 식물 생산품
- ② 당사국의 영역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살아있는 동물
- ③ ②에서 언급된 살아있는 동물로부터 획득된 상품
- ④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행된 수렵, 덫사냥, 어로, 양식, 채집 또는 포획으로부터 획득된 상품
- ⑤ 당사국의 토양, 수역, 해저 또는 해저 하부에서 추출되거나 채취된 ①부터 ④까지에 포함되지 않는 광물 및 그 밖의 천연 자원
- ⑥ 당사국 영해 밖의 수역, 해저 또는 해저 하부에서 그 당사국에 등록되고 그 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할 자격이 있는 선박에 의하여 잡힌 어류, 패류 및 그 밖의 해양생물, 그리고 그 당사국 또는 그 당사국의 인에 의하여 잡힌 그 밖의 생산품. 이 경우 그 당사국은 국제법에 따라 그러한 수역, 해저 및 해저 하부의 천연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함
- ⑦ 당사국에 등록되고 그 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할 자격이 있는 선박에 의하여 공해에서 잡힌 어류, 패류 및 그 밖의 해양생물
- ⑧ 당사국에 등록되고 그 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할 자격이 있는 가공선박에서 ⑥ 또는 ⑦에 언급된 생산품만으로 생산되거나 만들어진 상품

- ⑨ 우주에서 취득된 상품. 이 경우 이 상품은 그 당사국 또는 그 당사국의 인에 의하여 획득되어야 함
- ⑩ 상품의 처분, 원재료의 회수 또는 재활용 목적으로만 적합한 다음의 상품
 가) 당사국에서의 생산 또는 소비로부터 얻어진 폐기물 및 부스러기
 나) 당사국에서 수집된 중고품
- ⑪ ① 부터 ⑩ 까지에 언급된 상품으로만 그 당사국에서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

※ 협정 제3.3조(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

□ [품목별 원산지기준] 既 체결한 FTA와 유사하나, 최신 생산공정 반영 및 역내 공급망 활성화 등을 위해 일부 기준 완화

《 한-캄보디아 FTA 품목별 원산지기준(PSR) 현황 》

업종	PSR 구조
석유·화학	▶ 대부분 “세번변경기준(CTH, CTSH)”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 40% 이상” 중 선택
섬유·의류	▶ 대부분 “세번변경기준(CC, CTH)” 으로 규정 ▶ 한-아세안 FTA 등에서 규정된 의류의 추가 공정기준(재단 및 봉제 수행) 삭제
철강	▶ 대부분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 40% 이상” 중 선택
자동차	▶ [전기차] “역내가치포함비율 40% 이상” 으로 한-아세안 FTA(RVC45) 대비 완화 ▶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 40% 이상” 중 선택
기계, 전기·전자	▶ 대부분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 40% 이상” 중 선택
농축수산물	▶ 대부분 “완전생산기준(WO)” 또는 “2단위 세번변경기준(CC)”

※ 한-캄보디아 FTA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은 HS 2017 기준임

※ 협정 부속서 3-가(품목별 원산지 규정), 규칙 제4조(원산지결정의 기준) 및 별표 15의8

□ [역내가치포함비율(RVC) 계산] 공제법 또는 집적법 사용

《 역내가치포함비율 계산 방법 》

- ▶ 간접법/공제법(Indirect/Build-Down Method): 상품에 포함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 제외
- $$= \frac{\text{본선인도가격(FOB)} - \text{비원산지재료가치(VNM)}}{\text{본선인도가격(FOB)}} \times 100$$
- ▶ 직접법/집적법(Direct/Build-Up Method): 상품에 포함된 원산지 재료의 가치와 제조에 사용된 경비 등을 합산
- $$= \frac{\text{원산지재료가치(VOM)} + \text{직접노무비} + \text{직접경비} + \text{이윤} + \text{그 밖의 비용}}{\text{본선인도가격(FOB)}} \times 100$$

《 역내가치포함비율 계산 시 사용되는 용어 》

- ▶ 역내가치포함비율(RVC):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백분율로 표시)
- ▶ 원산지재료가치(VOM): 생산에서 생산자가 획득하거나 자가생산한 원산지 재료, 부품 또는 상품의 가치

▶ **비원산지재료가치(VNM):**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

① (수입된 재료) 재료(부품·상품) 수입 시 운임보험료포함가격(CIF)

② (당사국에서 획득된 재료) 작업 또는 가공이 발생한 당사국의 영역에서 원산지가 결정되지 않은 재료(부품·상품)에 지불된 최초로 확인된 가격

▶ **직접 노무비:** 임금, 보수 및 그 밖의 피고용인 수당 포함

▶ **직접 경비:** 총 간접비용

▶ **그 밖의 비용:** 수출을 위하여 선박 또는 그 밖의 운송 수단에 상품을 적재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국내운송비용, 보관 및 창고, 항만, 중개 수수료 및 서비스 요금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

※ 협정 제3.4조(역내가치포함비율의 산정)

□ [세번변경기준] 2단위(CC), 4단위(CTH), 6단위(CTSH) 기준 규정

○ 세번변경의 요건은 비원산지 재료에만 적용됨

※ 협정 부속서3-가(품목별 원산지 규정)

□ [불인정 공정] 협정 제3장(원산지 규정)의 어떠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국 영역에서 다음의 공정이 그 자체로만 또는 결합되어 수행된 상품에 대해서는 원산지 지위 불인정

《 협정 제3.7조에 따른 불인정 공정 》

- ① 운송·보관 중 상품이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보장하는 보존 공정
- ② 포장의 변경, 포장물의 해체 및 조립
- ③ 단순¹⁾ 세탁, 세척, 먼지, 녹, 기름, 페인트 또는 그 밖의 막의 제거
- ④ 방직용 섬유의 다림질 또는 압착
- ⑤ 단순 페인팅 및 광택 공정
- ⑥ 곡물 및 쌀의 탈각, 부분 또는 전체 표백, 연마 및 도정
- ⑦ 당류 착색 또는 각설탕 제조 공정
- ⑧ 단순 탈피, 씨 제거 또는 탈각
- ⑨ 연마, 단순 분쇄 또는 단순 절단
- ⑩ 감별, 체질, 선별, 분류, 등급화 또는 매칭
- ⑪ 병, 캔, 플라스크, 가방, 케이스, 상자에 단순히 넣기, 카드 또는 판에 붙이기, 그리고 그 밖의 모든 단순 포장 공정
- ⑫ 마크, 라벨, 로고 및 그 밖의 유사한 구별 표시를 제품 또는 제품의 포장에 부착하거나 인쇄하는 것
- ⑬ 다른 종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품의 단순한 혼합²⁾
- ⑭ 완전한 물품을 구성하는 물품 부품의 단순 조립 또는 제품의 부품으로의 분해
- ⑮ 단순 시험 또는 측정
- ⑯ 동물의 도살³⁾

(각주1) “단순한”은 일반적으로 특별한 기술 또는 그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히 생산되거나 설치된 기계, 기기나 장비를 필요로 하지 않는 활동을 의미

(이하 협정 제3.7조에서 같은 의미로 사용)

(각주2) “단순한 혼합”은 화학반응을 포함하지 않음. 화학반응이란 분자 내 결합의 파괴 및 새로운 분자 내 결합의 생성, 또는 분자 내 원자의 공간배열 변경을 통해 새로운 구조를 가진 분자를 만들어내는 가공(생화학 가공을 포함)을 말함

(각주3) “도살”이란 동물의 단순한 도살 및 저장과 운송을 위한 보존을 목적으로 한 절단, 냉장, 냉동, 염장, 건조 또는 훈제와 같은 그 이후 이루어지는 과정을 말함

※ 협정 제3.7조(불인정 공정)

5. 특례 규정

□ [누적] 한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이 다른 쪽 당사국에서 특혜관세대우 자격이 있는 완제품의 재료로 사용되는 경우, 완제품의 작업·가공이 발생한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

○ 향후 양 당사국은 누적 적용 확대를 위한 검토에 합의할 수 있음

※ 협정 제3.6조(누적)

□ [생산에 사용된 재료(중간재)]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생산된 원산지 상품이 다른 상품의 생산에 재료(중간재)로 사용되는 경우 해당 재료(중간재)가 최종 상품의 생산자에 의하여 생산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산지 재료로 인정

※ 협정 제3.8조(생산에 사용된 재료)

□ [최소허용수준(미소기준)] 세번변경기준이 충족되지 않는 상품이라도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

《 최소허용수준 인정 기준 》

① 섬유 및 의류(제50류 ~ 제63류)를 제외한 상품은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고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상품 본선인도가격(FOB)의 10% 이하

② 섬유 및 의류(제50류 ~ 제63류)의 경우에는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고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비원산지 재료의 중량이 상품 중량의 10% 이하

※ ① 및 ②가 적용되는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협정 제3장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함

※ ①에 언급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는 그 상품에 적용되는 RVC 요건 충족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에는 포함됨

※ 협정 제3.10조(최소허용수준)

□ [포장재료 및 용기] 용도에 따라 달리 적용

○ (운송·수송용) 상품의 원산지 지위 결정 시 고려하지 않음

- (소매 포장용) 해당 상품에 역내가치포함비율(RVC)을 적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산지 지위 결정 시 고려하지 않음

* 역내가치포함비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포장재료, 용기의 원산지 지위에 따라 각각 원산지 재료 또는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에 포함하여 계산

※ 협정 제3.11조(포장 및 포장재료의 취급)

- [부속품, 예비부품 및 공구] 상품과 함께 제시된 부속품, 예비부품, 공구 및 사용 설명서나 그 밖의 안내서는 다음 조건에 따라 원산지 지위 결정에 반영

《 원산지 지위 결정 시 부속품 등의 적용 기준 》

- ① 세번변경기준 또는 가공공정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부속품 등을 고려하지 않음
- ② 역내가치포함비율(RVC) 요건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속품 등의 원산지 지위에 따라 각각 원산지 재료 또는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에 포함하여 계산

※ 다만, 부속품 등은 해당 상품과 동일한 송장이 발급되어야 하며, 수량 및 가치가 해당 상품 대비 통상적 수준이어야 함

※ 협정 제3.12조(부속품, 예비부품 및 공구)

- [중립재*] 해당 상품의 생산에 사용될 수 있으나, 결합되지 않을 수 있는 아래의 물품은 원산지 결정 시 제외함

* 상품의 생산, 시험 또는 검사에 사용되지만 그 상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지 않거나, 상품의 생산과 관련된 건물의 유지 및 설비의 운영에 사용되는 물품

《 간접재료로 인정 가능한 물품 》

- ① 연료 및 에너지
- ② 도구, 형판 및 주형
- ③ 설비 및 건물의 유지에 사용되는 예비부품 및 상품
- ④ 생산에 사용되거나 설비 및 건물의 운영에 사용되는 윤활제, 그리스, 혼합물 및 그 밖의 재료
- ⑤ 장갑, 안경, 신발, 의류, 그리고 안전장비 및 보급품
- ⑥ 상품의 시험 또는 검사에 사용되는 설비, 장치 및 보급품
- ⑦ 촉매제 및 용제
- ⑧ 상품에 결합되지 않으나 그 상품 생산의 일부로 사용되었음이 합리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그 밖의 모든 상품

※ 협정 제3.13조(중립재)

- [대체가능 상품 또는 재료] 아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따라 원산지 지위 결정

《 대체가능 상품 또는 재료에 대한 원산지 인정 기준 》

- ① 각각의 대체가능 상품 또는 재료를 물리적으로 분리하여 보관
 - ② 대체가능 상품 또는 재료가 혼합되는 경우 수출당사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서 사용되는 재고관리기법*에 따라 원산지 판정
- * 다만, 해당 재고관리기법은 해당 회계연도에 동일하게 사용되어야 함

《(참고) 다른 FTA에서 인정되는 재고관리기법》

- ① (개별법) 원산지 재료와 비원산지 재료를 구분하여 각 재료의 원산지에 따라 그 제품의 원산지 결정
- ② (선입선출법) 입고한 재료 중 먼저 입고한 재료가 먼저 출고된 것으로 보아 먼저 입고된 재료의 원산지를 기준으로 그 제품의 원산지 결정
- ③ (후입선출법) 입고한 재료 중 가장 최근에 입고한 재료가 먼저 출고된 것으로 보아 최근에 입고된 재료의 원산지를 기준으로 그 제품의 원산지 결정
- ④ (평균법) 보관 중인 원산지 재료와 비원산지 재료의 구성비율을 기준으로 그 제품의 원산지를 결정. 이 경우 원산지 재료와 비원산지 재료의 구성비율 계산은 보관 또는 취득한 원산지 재료와 비원산지 재료의 취득가격이나 수량 등을 기준으로 적용
- ⑤ ① ~ ④ 외에 상품이 생산된 회원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

※ 협정 제3.14조(대체가능 상품 또는 재료)

6. 직접 운송

□ [원칙] 수출당사국에서 수입당사국으로 직접 운송되지 않는 상품은 원산지 지위 불인정

○ 직접운송의 입증 책임은 수입자에게 있음

□ [예외] 상품이 수출당사국과 수입당사국 외에 하나 이상의 비당사국을 경유하여 운송되는 경우에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직접운송된 것으로 간주

《직접운송 예외 인정 요건》

- ① 상품이 경유하는 중간 경유국의 관세당국의 통제하에 있어야 함
- ② 상품이 하역, 재선적, 보관 또는 그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공정 외의 어떠한 공정도 수행되지 않아야 함

□ [입증서류] 수입자는 수입당사국의 관세당국이 요구하는 경우 아래 중 어느 하나의 직접운송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함

《직접운송 입증 서류》

- ① 수출 당사국의 영역에서 발급된 통과선하증권, 수출당사국부터 수입당사국까지의 상품의 전체 운송 경로를 포함한 운송 서류를 결합한 서류도 이에 포함됨
- ② 직접운송 요건을 충족함을 입증하는 그 밖의 증명서류

※ 협정 제3.9조(직접운송), 협정 제3.32조(직접운송의 증명서류)

Ⅲ. 원산지증명

1. 개요

□ [증명방식] ① 기관발급 방식과 ②인증수출자에 의한 자율증명 방식 중 선택하여 활용 가능

☐ [유효기간] 원산지증명은 발급 또는 작성일로부터 1년간 유효

☐ [적용시점] 협정 발효일(* 22. 12. 1.) 부터 발급(작성) 가능

※ 협정 제3.15조(원산지 증명), 영 부칙<제32766호, 2022. 7. 5.> 제1조(시행일)

2.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

☐ [신청인] 수출자, 생산자 또는 권한을 받은 그들의 대리인

☐ [발급기관] 세관 또는 대한상공회의소

※ 캄보디아의 경우 캄보디아 상무부에서 발급

☐ [발급절차] 수출물품 선적 후 달력상의 7일(선적일을 포함) 이내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에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발급기관에 제출*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http://unipass.customs.go.kr>) 또는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센터(<http://cert.korcham.net>)에 접속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신청·발급

○ (인증수출자 혜택)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하는 업체별 또는 캄보디아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는 첨부서류 제출 생략

《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첨부서류 》

- ① 수출신고 수리필증 사본(증명서발급기관이 수출사실 등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생략 가능)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 ②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 ③ 원산지확인서(최종물품에 대한 원산지확인서로서 해당 물품의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 ④ 원산지소명서. 다만,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생산자는 원산지소명서를 증명서발급기관에 직접 제출할 수 있음
- ⑤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정보 및 국내제조확인서
(발급기관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며,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생산자는 해당 서류를 증명서발급기관에 직접 제출할 수 있음)

☐ [소급발급] 비자발적 오류, 누락 또는 그 밖의 사유 및 정정발급 상황에서 원산지증명서가 선적일로부터 달력상의 7일(선적일을 포함) 이내에 발급되지 않은 경우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급발급(선적 후 발급)*을 신청할 수 있음

* 소급발급된 원산지증명서에는 “ISSUED RETROACTIVELY” 기재

《 (참고) 협정별 소급발급 기준 》

대상 협정	소급발급 기준
아세안, 베트남	선적일로부터 3근무일(선적일 포함) 이내에 미발급
인도	선적일로부터 7근무일(선적일 포함) 이내에 미발급
중국, 이스라엘	선적일 후 7근무일(선적일 불포함) 이내에 미발급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선적일로부터 달력상 7일(선적일 포함) 이내에 미발급
-------------	-------------------------------

☐ [재발급] 원산지증명서 원본이 도난, 분실 또는 멸실된 경우, 원본의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진정등본 발급 신청 가능

- 재발급 원산지증명서에는 원본과 동일한 발급번호, 발급일자과 “CERTIFIED TRUE COPY” 문구 기재

☐ [정정발급] 원산지증명서 정보가 부정확한 경우 발급기관은 아래 중 하나의 방법으로 원산지증명서를 정정할 수 있음

《 원산지증명서 정정 방법 》

- ① 기존의 원산지증명서를 무효화하고 신규 원산지증명서 발급
- ② 오류가 있는 부분을 줄을 그어 지우고 추가 또는 정정사항 기재
다만, 변경된 사항에는 발급기관의 서명과 인장을 날인하여야 함

《 원산지증명서 재발급·정정발급 시 발급기관 제출서류 》

재발급	정정발급
①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①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② 재발급 신청사유서	② 원산지증명서 원본 (정정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원본 제출 조건으로 사본 제출 가능)
	③ 정정발급 신청사유서
	④ 정정사유 입증 가능한 서류

※ 협정 제3.16조(원산지 증명서), 규칙 제10조, 고시 제26조 ~ 28조

3.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의 작성방법

☐ [원산지증명서 서식] 규칙 별지 제24호의9 서식 참조

☐ [작성방법] 원산지증명서의 주요 항목은 아래 방법에 따라 기재

《 원산지증명서 주요 항목 기재 방법 》

- ① [3번란] 생산자
 - 상품 생산자의 상세정보(이름, 주소 및 국가)를 아는 경우 3번란에 기재
 - 생산자의 상세정보를 알 수 없는 경우 “공란”
- ② [8번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
 - 수출상품의 6단위 세번을 기재하며, 협정 부속서 3-가를 기초로 작성
- ③ [9번란]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결정기준	9번란에 기입
가. 협정 제3.3조에 규정·정의된 수출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물품	“WO”
나. 원산지 재료로만 수출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물품	“PE”
다. 품목별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는 물품 - 세번변경기준 충족하는 물품 - 역내가치포함비율을 충족하는 물품 - 세번변경기준과 역내가치포함비율을 동시에 충족하는 물품 - 특정 공정을 수행한 물품	“CTC” “RVC %” “CTH + RVC %” “Specific Processes”
라. 협정 제3.5조를 충족하는 물품(개성공업지구 생산품)	“Article 3.5”

※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선택 가능한 원산지결정기준

① WO	② PE	③ CTC
④ RVC 35%	⑤ RVC 40%	⑥ RVC 45%
⑦ RVC 50%	⑧ RVC 60%	⑨ RVC 70%
⑩ CC + RVC 40%	⑪ CTH + RVC 60%	⑫ Specific Processes
⑬ Article 3.5		

④ [10번란] 역내가치포함비율 기준으로 상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FOB 가격 기재

⑤ [13번란]

가. 소급발급: 선적일을 포함하여 7일이 경과하고 선적일 다음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에는 해당 난에 “ISSUED RETROACTIVELY” 기재

나. 재발급: 도난, 분실, 훼손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원산지증명서를 재발급하는 경우 해당 난에 “CERTIFIED TRUE COPY” 가 기재

다. 발급일자: 재발급 또는 정정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해당 난에 원본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자가 기재됨

⑥ [14번란] 수출당사국이 아닌 제3국에서 송품장이 발급된 경우 “Third Party Invoicing” 에 체크 표시하고 송장 발급 회사의 상호와 국가명 기재

※ 협정 부속서 3-마(원산지 신고서 서식 예시), 규칙 제15조제21항 및 별지 제24호의9 서식

4. 자율증명 원산지신고서

☐ [작성권한]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산지인증수출자

《 원산지신고서 작성 가능한 원산지인증수출자 》

① 영 제7조제1호에 따른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② 영 제7조제2호에 따른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다만, 캄보디아와의 협정에 대해 인증받은 품목(HS6단위 기준)으로 한정

☐ [서식] 협정 제3.17조 및 부속서 3-다(최소 정보 요건) 제2항의 정보가 포함된 서류를 원산지신고서로

사용 가능

- 다만, 캄보디아에서의 안정적 특혜 적용 목적상 협정 부속서 3-마 및 규칙 별지 제24호의10서식을 활용할 것을 권고

《 원산지신고서 최소 정보 요건 》

- ① 수출자 이름 및 주소
- ② 생산자 이름 및 주소(아는 경우로 한정)
- ③ 수입자(수하인) 이름 및 주소
- ④ 상품명, HS6단위
- ⑤ 인증수출자의 경우에는 인증번호
- ⑥ 고유 참조번호
- ⑦ 원산지결정기준
- ⑧ 원산지신고서에 명시된 상품이 협정 제3장의 모든 요건을 충족한다는 서명권자의 증명
- ⑨ 원산지 국가
- ⑩ FOB가격(원산지결정기준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을 사용한 경우로 한정)
- ⑪ 상품의 수량

※ 협정 제3.17조(원산지 신고서) 및 부속서3-다 제2항, 부속서3-마, 규칙 제15조제21항 및 별지 제24호의10서식

5. 인증수출장

- [인증수출자 DB] 협정 제3.1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협정 제3.15조제1항나목의 원산지신고서 작성 이 가능한 우리나라의 인증수출자 정보*를 캄보디아의 권한있는 당국에서 전산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조치

* 인증수출자의 상호, 주소, 인증 번호, 발급일 및 만료일(가능한 경우로 한정), 최소 HS2단위 수준의 인증 적용 대상 상품목록 등

- [인증수출자 지정 특례] 원산지 자율증명 활용 편의를 위해 간이인증 지원정책 운영

《 한-캄보디아 FTA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간이인증 》

가. 신청자: 현재 한-아세안, RCEP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중에서
한-캄보디아 FTA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 희망 업체

나. 신청기간: ' 22.11.7(월) ~ 별도 공지 전까지

다. 신청품목: “한-캄보디아 FTA 인증 심사 간소화 품목” (403개)

※ 간이 인증 품목은 관세청 FTA포털사이트(<http://www.customs.go.kr/ftapotalkor>) 공지사항 참조

라. 제출서류: “한-캄보디아 FTA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간이인증 신청서”,
원산지소명서, 협약서, 원산지관리 전담자 증빙자료

※ 관세청 FTA포털사이트(<http://www.customs.go.kr/ftapotalkor>)와 전자통관시스템(<http://unipass.customs.go.kr>)에서 ‘한-캄보디아 FTA 인증수출자 간이인증 신청서’ 내려받기 가능

- (인증신청 접수) 관할지* 본부세관 또는 직할세관

*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 1 참조

《 원산지인증수출자 신청 접수처 》

세관명	부서명	전화번호
인천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32-452-3169
서울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2-510-1373
부산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51-620-6965
대구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53-230-5194
광주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62-975-8195
평택직할세관	통관총괄과	031-8054-7032

○ (인증 유효기간) 인증일부터 5년

※ 협정 제3.19조(인증수출자), 규칙 제18조

IV. 협정관세 적용

협정관세 적용 시점

□ [적용시점] 협정 발효시점(* 22. 12. 1. 00시) 이후부터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대해 적용

□ [경과규정] 아래 경과규정 적용 대상 물품으로 협정 제3장의 요건을 충족하는 원산지 상품은 협정 발효일로부터 180일 이내(* 22. 5. 29. 까지)에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수 있음

*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신청

《 경과규정 적용 대상 물품 》

협정 발효일 당시에

- ① 운송 중인 물품이거나,
- ② 보세창고에 보관 중인 물품이거나,
- ③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물품

○ (유의사항) 협정관세 적용 신청 시, ① 협정 발효일 이후에 소급하여 작성된 원산지증명서와 ② 직접 운송 입증서류 제출

※ 협정 제3.28조(통과 중인 상품에 대한 경과 규정) 및 영 부칙<대통령령 제32766호, 2022.7.5.> 제3조

2. 협정관세 적용신청의 시기

□ [원칙] 수입물품에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수입자는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

○ (제출서류) 세관장에게 협정관세 적용신청서를 제출

○ (증빙서류) 협정 제3.15조에 따른 원산지증명을 포함하여 수입물품이 협정 제3장의 요건을 충족함을 입증하는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세관장이 요구하면 제출하여야 함

□ [예외: 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수입

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 적용신청 가능

- (제출서류) 세관장에게 ①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②수입·납세신고정정신청서, ③ 원산지증명서를 포함한 원산지증빙서류 제출
- (증빙서류) 수입물품은 수입 당시에 협정 제3장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때 이를 입증하는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

☐ [유효기간] 원산지증명은 협정관세 적용신청일을 기준으로 발급일 또는 작성일로부터 1년 이내의 것 이어야 함

- 다만,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경우에는, 유효기간의 계산에서 도착일 다음날부터 협정관세 적용신청일까지의 기간을 제외

※ 협정 제3.20조(특혜관세 대우의 신청), 법 제8조 및 제9조

3. 협정관세 적용신청의 방법

☐ [관세율 구분부호] 수입신고서 및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에는 한-캄보디아 FTA 관세율 구분부호(“불입”)와 협정관세율을 기재

☐ [인정되는 원산지증명] 아래 중 하나의 원산지증명을 인정

《 수입물품의 협정관세 적용 시 인정되는 원산지증명 》

- ① 수출당사국의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 (Certification of Origin)
- ② 수출당사국 인증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 (Declaration of Origin)

- (유의사항)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의 경우 작성자의 수출당사국 인증수출자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함

☐ [원산지증명서 제출 방식] 우리나라가 인정하는 원산지증명의 형태는 아래와 같음

《 협정관세 적용 신청 시 제출 가능한 원산지증명의 형태 》

- ① 종이 원본. 다만, 세관장이 별도로 요구하지 않는 경우 사본제출 스탬프를 날인한 사본으로 대체 가능
- ② 종이 원본을 스캔하여 이미지화한 파일(PDF, JPEG 등)

《 (참고) 원산지증명서 사본제출 스탬프 양식 》

본 사본이 원본과 다를 경우 관세법 등 관련법령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고 있으며, 세관에서 요구시 원본을 제출하겠습니다.

수입자 ○○○ (서명)

※ 협정 제3.20조(특혜관세 대우의 신청), 법 제8조, 영 제4조제1항 및 제2항

4. 원산지증명 제출 면제

☐ 과세가격이 미화 200달러 이하인 수입물품은 원산지증명 제출 면제*

* 구매영수증, 제품의 원산지 표기 등을 통해 상품의 원산지를 간이하게 확인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의 제출을 면제하지 않음

《 원산지증명 제출 면제 제외 대상 》

- ① 물품을 분할하여 수입하는 등 물품의 과세가격이 미화 200달러를 초과하지 않도록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수입하는 물품인 경우, 또는
- ② 해당 수입이 당초 계획된 일련의 수입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

※ 협정 제3.20조(특혜관세 대우의 신청)제3항, 법 제8조제2항, 영 제4조제3항제1호

5. 사소한 불일치 및 오류

- 협정관세 적용 신청 시 제출된 원산지증명서에 서류 간 사소한 불일치, 정보의 누락, 타자 오류 등 원산지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오류가 있는 경우 보완 불요

- 다만, 물품의 원산지 지위에 합리적 의심을 발생시키는 오류는 제외

※ 협정 제3.24조(사소한 불일치 또는 오류), 규칙 제21조제5항

V. 기타사항

원산지 검증

- 특혜관세 적용 대상 물품의 원산지증빙서류 진위여부 및 원산지의 정확성에 대해 다음의 방법으로 원산지검증 수행

《 우리나라로 수입된 물품에 대한 원산지검증 》

- ① [간접검증] 협정 제3.22조 및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수출국의 관세당국 또는 증명서발급기관에 원산지 검증 지원의 서면 요청
- ② [수입자 직접검증] 협정 제3.22조 및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수입자에게 직접 서면으로 추가 정보 요청
- ③ [수출자·생산자 직접검증] 협정 제3.22조 및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직접 서면으로 추가 정보 요청 또는 사업장 방문검증
 - 사업장 방문검증은 ①의 간접검증 결과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여부 등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 실시될 수 있으며, 당사국간 합의된 절차에 따라 수출당사국의 동의와 지원을 받아 수행됨

《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에 대한 원산지검증 》

- ① [간접검증] 협정 제3.22조 및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캄보디아의 권한있는 당국으로부터 추가 정보 요청을 받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수출자·생산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후, 조사요청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결과 통지
- ② [직접검증] 협정 제3.22조에 따라 캄보디아의 권한있는 당국은 수출자, 생산자에게 직접 서면으로 추가 정보 제공을 요청하거나, 간접검증 이후 수출자·생산자의 사업장 방문검증 가능

※ 협정 제3.22조(검증), 법 제17조~제19조, 영 제11조~13조, 제15조 및 제16조, 규칙 제22조~제25조,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2. 협정관세 적용제한

□ 세관장은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 이 경우 세관장은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의 차액을 부과·징수하고, 필요한 경우 가산세를 징수

《 협정관세 적용이 제한되는 경우 》

- ① 협정관세 적용의 대상이 되는 수입물품이 협정 제3장의 요건을 불충족한 경우
- ②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협정관세 적용에 필요한 협정 제3장의 요건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 ③ 세관장이 협정관세 적용의 대상이 되는 수입물품의 원산지 지위를 결정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받지 못한 경우
- ④ 협정 제3.22조에 따른 정보의 서면 요청에 수출당사국의 수출자, 생산자, 관세당국 또는 발급기관이 기한 내 그 결과를 회신하지 않은 경우
- ⑤ 협정 제3.22조에 따른 현지조사 동의 요청에 대해 수출자 등이 요청 접수일로부터 30일내에 동의 여부를 통보하지 않거나 동의하지 않은 경우
- ⑥ 그 밖에 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협정 제3.23조(특혜관세대우의 거부), 법 제35조, 영 제44조

붙임 : 한-캄보디아 FTA 관세율 구분부호

협 정	관세율구분부호	내 용
한-캄보디아 FTA	FKH1	- 하나의 품목번호에 1개의 협정세율이 적용되는 물품 - 하나의 품목번호에 서로 다른 협정세율이 있는 경우 최고세율 적용물품
	FKH2 FKH3 FKH4 FKH5 FKH6 FKH7	- 하나의 품목번호에 서로 다른 협정세율이 있는 경우 최고세율인 FKH1을 제외하고 세율이 높은 순으로 FKH2부터 FKH7까지 순차 적용
	FKH8	- 추천이 필요한 물품 중 추천을 받은 물품
	FKH9	- 긴급수입제한조치 품목 중 발동 수준을 초과한 물품

21. 한-인도네시아 FTA

1.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 협정 발효에 따른 관세행정 운영지침

〈 일러두기 〉

1. 이 지침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 협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같은 법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는 각각 ‘협정’, ‘법’, ‘영’, ‘규칙’, ‘고시’, 라 지칭함
2. 향후 당국간 이행협상 결과 등을 반영한 이 지침의 개정·추가·변경사항이 관세청 FTA포털사이트를 통해 공지될 수 있음

I. 한-인도네시아 CEPA 개요

적용 범위

□ [당사국] 대한민국, 인도네시아공화국

- (대한민국 영역)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영해 및 영공과 국제법 및 국내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이 행사되는 영해의 외측한계선에 인접하거나 외측한계선 밖의 해저·해저층을 포함한 해양지역
- (인도네시아 영역) 영토·영해(내수, 군도수역, 해저 및 하부토양 포함)·영공 및 국제법과 인도네시아의 국내법에 따라 주권,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이 행사되는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

□ [발효] ' 23. 1. 1. 발효

※ 협정 제11조(일반 정의), 제13.4조(발효), 영 부칙<제31906호, 2021. 7. 27.> 제1조(시행일), 규칙 제2조(정의) 제1호 너목

2. 관세 인하 또는 철폐

□ 협정 부속서 2-가의 양허표에 따라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를 점진적으로 인하 또는 철폐

□ 한-아세안 FTA상 ① 관세철폐 대상이었으나 실제로 철폐되지 않은 상호주의 품목, ② 관세철폐 대상이 아닌 민감·초민감품목(관세감축, TRQ 또는 양허제외 품목) 중 일부 품목 추가 양허

- [우리측] (품목수) 90.2% → 95.5% / (수입액) 93.6% → 97.3%
- [인니측] (품목수) 80.1% → 93.0% / (수입액) 88.5% → 97.0%

《 한-인도네시아 CEAP 전체 상품 양허 현황 》

구분	한국 양허				인도네시아 양허			
	품목수(개)		'17-' 18년 對인니수입액 평균(천불)		품목수(개)		'17-' 18년 對韓수입액 평균(천불)	
전체	12,232		10,365,550		10,813		8,605,052	
한-아세안 FTA	11,032	90.2%	9,697,835	93.6%	8,661	80.1%	7,619,434	88.5%
즉시 철폐	235	1.9%	73,485	0.7%	782	7.2%	414,340	4.8%
(특정용도*)	-	-	-	-	104	1.0%	254,694	3.0%
3년 철폐	93	0.8%	217,498	2.1%	28	0.3%	11,180	0.1%
5년 철폐	50	0.4%	9,642	0.1%	69	0.6%	22,356	0.3%
7년 철폐	10	0.1%	46	0.0%	86	0.8%	43,177	0.5%
10년 철폐	231	1.9%	86,478	0.8%	309	2.9%	182,248	2.1%
15년 철폐	20	0.2%	2,424	0.0%	105	1.0%	50,767	0.6%
20년 철폐	16	0.1%	1,728	0.0%	18	0.2%	329	0.0%
소계	655	5.4%	391,302	3.8%	1,397	12.9%	724,396	8.4%
총합계	11,687	95.5%	10,089,137	97.3%	10,058	93.0%	8,343,830	97.0%

* (특정용도 면세제도) 인도네시아에서 특정 용도로 수입된 품목에 대해서는 일정 조건(규격, 등급, 국내 생산여부 등)을 만족하는 경우 무관세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

- ① 자동차·모터사이클 및 그 구성품, ② 전기 및 전자제품, ③ 건설기계 및 중장비, ④ 석유, 가스 및 전력 등 4개 용도

※ [출처] 한·인도네시아 CEPA 상세설명자료

※ 협정 제2.4조(관세 인하 또는 철폐), 협정 부속서 2-가(관세 인하 또는 철폐), 영 제2조제19항 및 별 표17의4

3. 관세 평가

□ 당사국들 간 교역되는 상품의 관세가격 결정 목적상 1994년도 GATT 제7조 및 관세평가협정 제1부 및 부속서 I의 주해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적용

※ 협정 제2.5조(관세 평가)

4. 관세 면제 대상 상용견품

□ [상용견품] 협정 상대국 영역에서 수입되는 상업적 가치가 없는 견본품은 원산지와 관계없이 무관세 반입 허용

○ (대상)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물품을 상용견품으로 인정

《 규칙 제30조제6항에 따른 상용견품 》

- ① 견품 외의 용도로 판매되거나 사용되기에 부적합하도록 천공, 절단 등 견품화 처리가 된 물품
- ②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금액(과세가격 미화 2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 제2.7조(상업적 가치가 없는 견본품의 무관세 반입), 법 제 30조제 1항, 규칙 제30조 제6항

II. 원산지 규정

1. 개요

□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 결정의 일반기준과 품목별기준을 규정

○ 당사국 내에서 ① 완전 획득·생산, ② 원산지 재료로만 생산, ③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한 생산(부속서 3-가(품목별 원산지 규정) 충족)

※ 한-인도네시아 CEPA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은 HS 2017 기준으로 규정

□ [원산지절차] 원산지증명, 특혜관세 적용, 원산지 검증, 원산지 정보교환 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대해 규정

○ (원산지증명) ① 기관발급, ② 인증수출자에 의한 자율증명
③ 수출자·생산자 자율증명

※ 협정 발효 시점에는 기관발급만 가능하며, 자율증명은 단계적 시행 예정

○ (특혜 적용) 유효한 원산지증명에 기초하여 특혜관세 신청, 수입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명시된 기간 내 사후신청 가능

○ (검증) 수출 당사국의 발급기관(우리나라는 관세당국)을 통한 간접검증, 수출자·생산자 방문 검증 절차

차 규정

2. 정의

□ 협정 제3장(원산지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규정

- (생산) 상품의 재배, 채굴, 수확, 사육, 번식, 추출, 채집, 수집, 포획, 어로, 덧사냥, 수렵, 제조, 가공 또는 조립을 포함한 상품 획득 방법
- (상품) 모든 제품, 생산품, 물품 또는 재료
- (재료) 생산과정에 사용되는 원료, 원재료, 부품, 구성품, 하위 조립품을 포함
- (생산) 상품의 재배, 채굴, 수확, 사육, 번식, 추출, 채집, 수집, 포획, 어로, 덧사냥, 수렵, 제조, 가공 또는 조립을 포함한 상품의 획득 방법
- (원산지 상품) 협정 제3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에 따라 원산지 자격을 갖춘 생산품 또는 재료
- (비원산지 상품) 협정 제3장(원산지 규정)에 따라 원산지 자격을 갖추지 않은 생산품 또는 재료를 말함
- (동일하고 대체 가능한 상품 또는 재료) 동종이고 상업적으로 동질이며, 동일한 기술적 및 물리적 특성을 보유하고, 일단 최종 상품에 결합되는 경우 원산지 목적상 어떤 표시 등에 의해서도 서로 구별될 수 없는 상품 또는 재료
-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 수입, 경비, 비용, 자산 및 부채의 기록, 정보의 공개 그리고 재무제표의 작성에 대하여 당사국의 영역에서 인정된 컨센서스 또는 실질적이고 권위 있는 지지를 말하며, 세부 표준, 관행 및 절차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적용을 위한 폭넓은 지침을 포함
- (품목별 원산지 규정) 재료가 세번의 변경이나 특정 제조 또는 가공 공정을 거쳤거나, 역내가치포함비율/인정가치포함비율*(RVC/QVC) 또는 이러한 기준들이 결합된 기준을 충족함을 명시하는 규정
* RVC와 QVC는 동일한 의미를 가짐
- (본선인도가격(FOB)) 생산자로부터 해외 최종 선적 항구 또는 장소까지 소요되는 운송 비용을 포함한 상품의 본선인도가격(FOB)의 가치이며, 평가는 1994년도 GATT 제7조 및 관세평가협정에 따름
- (운임보험료포함가격(CIF)) 수입된 상품의 가격을 말하며, 수입국으로 들어오는 항구 또는 반입지점까지의 화물운송 및 보험 비용을 포함. 평가는 1994년도 GATT 제7조 및 관세평가협정에 따름
- (운송을 위한 포장재료와 용기) 운송 동안 상품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상품을 말하며, 소매를 위하여 사용되는 재료 또는 용기가 아님
- (특혜관세대우) 원산지 상품에 대하여 부여된, 이 협정에 따라 적용 가능한 관세율에 반영된 관세 양허
- (수출자) 수출 당사국에 소재하며 상품을 수출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
- (수입자)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며 상품을 수입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
- (생산자)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을 수행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
- (관세당국) 각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관세법 및 규정의 운영 및 집행을 담당하는 당국으로 한

국은 기획재정부 또는 관세청, 인도네시아는 재무부 산하 관세소비세총국이며 각각 그 승계기관을 포함

※ 협정 제1.1조(일반 정의), 제3.1조(정의)

3. 일반규정

□ [원산지 상품] 당사국 영역으로 수입된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상품을 특혜관세대우 대상이 되는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

《 원산지 상품의 종류 》

- ① [완전생산(WO)] 수출 당사국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
- ② [원산지 재료로만 생산(PE)] 원산지 재료로만 전적으로 수출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상품
- ③ [품목별 원산지기준 충족(PSR)]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전적으로 수출 당사국 영역에서 생산되고, 협정 부속서 3-가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상품

○ 협정 제3.6조의 누적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협정 제3장에 규정된 원산지 지위를 획득하기 위한 조건은 수출 당사국의 영역에서 중단 없이 충족되어야 함

※ 협정 제3.2조(원산지 기준)

□ [완전생산 상품] 다음은 당사국에서 완전 획득·생산으로 간주

《 완전생산 상품 》

- ①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배되고 수확된 식물과 식물 생산품
- ② 당사국의 영역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살아있는 동물
- ③ ②에서 언급된 살아있는 동물로부터 획득된 상품
- ④ 당사국의 영토에서 수렵 또는 낚시 등에 의하여 획득된 상품, 또는 당사국의 내수 또는 영해에서 수행된 어로 또는 양식에 의하여 획득된 상품
- ⑤ 당사국의 영역에서 추출되거나 채취된 ①부터 ④까지에 포함되지 않는 광물 및 그 밖의 천연 자원
- ⑥ 당사국에 등록되고 그 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한 선박에 의하여 당사국 영해 밖의 바다, 해저 또는 하부토양에서 획득한 어로 상품 및 그 밖의 해양생물. 이 경우 그 당사국은 국제법에 따라 그러한 바다, 해저 또는 하부토양을 개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함
- ⑦ 당사국에 등록되고 그 국기를 게양할 자격이 있는 가공선박에서 ⑥에 언급된 상품만으로 생산되거나 만들어진 상품
- ⑧ 당사국의 영역 밖의 해저 또는 하부토양으로부터 당사국 또는 당사국의 인에 의하여 채취된 상품. 이 경우 그 당사국은 국제법에 따라 그러한 해저 또는 하부토양을 개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함
- ⑨ 우주에서 취득된 상품. 이 경우 이 상품은 그 당사국 또는 그 당사국의 인에 의하여 획득되어야 함
- ⑩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집된 물품으로서 더 이상 본래 목적을 수행할 수 없고 저장 또는 수리할 수 없으며 그리고 부품 또는 원재료의 처분이나 회수 또는 재활용 목적으로만 적합한 물품

⑪ 다음으로부터 얻어진 폐기물 및 부스러기

가) 당사국 영역에서의 생산

나) 당사국 영역에서 수집된 중고품. 다만, 그러한 상품은 원재료 회수용으로만 적합한 것이어야 함

⑫ ①부터 ⑪까지 언급된 상품으로만 그 당사국 영역에서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

※ 협정 제3.3조(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

□ [품목별 원산지기준] 한-아세안 FTA 원산지기준과 일관성을 유지하되, 원재료 조달 편의 등을 위해 일부 품목은 기준 완화

《 한-인도네시아 CEPA 품목별 원산지기준(PSR) 현황 》

업종	PSR 구조
섬유·의류	▶ 대부분 “세번변경기준(CC, CTH)” ▶ 한-아세안 FTA 등에서 규정된 의류의 추가 공정기준(재단 및 봉제 수행) 삭제
철강	▶ 대부분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 40% 이상” 중 선택 ▶ 스테인리스강 중 일부품목은 “6단위 세번변경기준(CTH)”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 40% 이상” 중 선택
자동차	▶ “역내가치포함비율 40% 이상” 으로 한-아세안 FTA(대부분 RVC45) 대비 완화
기계, 전기·전자	▶ 대부분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 40% 이상” 중 선택 ▶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등 일부 품목은 “6단위 세번변경기준(CTSH)”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 40% 이상” 중 선택

※ 한-인도네시아 CEPA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은 HS 2017 기준임

※ 협정 부속서 3-가(품목별 원산지 규정), 규칙 제4조(원산지결정의 기준) 및 별표 15의4

□ [역내/인정가치포함비율(RVC/QVC) 계산] 공제법 또는 집적법

《 역내/인정가치포함비율 계산 방법 》

▶ 공제법(Build-down): 상품에 포함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를 제외

$$= \frac{\text{본선인도가격(FOB)} - \text{비원산지재료가치(VNM)}}{\text{본선인도가격(FOB)}} \times 100$$

▶ 집적법(Build-up): 상품에 포함된 원산지 재료의 가치와 제조에 사용된 경비 등을 합산

$$= \frac{\text{원산지재료가치(VOM)}}{\text{본선인도가격(FOB)}} \times 100$$

《 역내가치포함비율 계산 시 사용되는 용어 》

▶ 원산지재료가치(VOM): 원산지 재료, 직접 노무비, 직접 경비, 운송비 및 이윤의 가치를 포함

▶ 비원산지재료가치(VNM)

① (수입된 재료) 재료(부품·상품) 수입 시 운임보험료포함가격(CIF)

② (당사국에서 획득된 재료) 작업 또는 가공이 발생한 당사국의 영역에서 원산지가 결정되지 않은 재료(부품·상품)에 지불된 최초로 확인된 가격

※ 협정 제3.4조(역내/인정가치포함비율의 산정)

□ [세번변경기준] 2단위(CC), 4단위(CTH), 6단위(CTSH) 기준 규정

○ 세번변경의 요건은 비원산지 재료에만 적용됨

※ 협정 부속서3-가(품목별 원산지 규정)

□ [불인정 공정] 협정 제3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의 어떠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국 영역에서 다음의 공정이 그 자체로만 또는 결합되어 수행된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불인정

《 협정 제3.7조에 따른 불인정 공정 》

- ① 운송·보관 중 상품이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보장하는 보존 공정
 - ② 포장의 변경, 포장물의 해체 및 조립
 - ③ 단순한¹⁾ 세탁, 세척, 먼지, 녹, 기름, 페인트 또는 그 밖의 막의 제거
 - ④ 방직용 섬유의 다림질 또는 압착
 - ⑤ 단순한¹⁾ 페인팅 및 광택 공정
 - ⑥ 곡물 및 쌀의 탈각, 부분 또는 전체 표백, 연마 및 도정
 - ⑦ 당류 착색 또는 각설탕 제조 공정
 - ⑧ 단순한¹⁾ 탈피, 씨 제거 또는 탈각
 - ⑨ 연마, 단순 분쇄 또는 단순 절단
 - ⑩ 감별, 체질, 선별, 분류, 등급화, 매칭
 - ⑪ 병, 캔, 플라스크, 가방, 케이스, 상자에 단순히 넣기, 카드 또는 판에 붙이기, 그리고 그 밖의 모든 단순 포장 공정
 - ⑫ 마크, 라벨, 로고 및 그 밖의 유사한 구별 표시를 제품 또는 제품의 포장에 부착하거나 인쇄하는 것
 - ⑬ 다른 종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품의 단순한 혼합²⁾
 - ⑭ 완전한 물품을 구성하는 물품 부품의 단순 조립 또는 제품의 부품으로의 분해
 - ⑮ 단순한 시험 또는 측정
 - ⑯ 동물의 도살³⁾
- (각주1) “단순한”은 일반적으로 특별한 기술 또는 그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히 생산되거나 설치된 기계, 기기나 장비를 필요로 하지 않는 활동을 의미
- (각주2) “단순한 혼합”은 화학반응을 포함하지 아니함. 화학반응이란 분자 내 결합의 파괴 및 새로운 분자 내 결합의 생성, 또는 분자 내 원자의 공간배열 변경을 통해 새로운 구조를 가진 분자를 만들어내는 가공(생화학 가공을 포함)을 말함
- (각주3) “도살”이란 동물의 단순한 도살 및 저장과 운송을 위한 보존을 목적으로 한 절단, 냉장 또는 냉동과 같은 그 이후 이루어지는 과정을 말함

※ 협정 제3.7조(불인정 공정)

5. 특례규정

□ [누적] 한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이 다른 쪽 당사국에서 특혜관세대우 자격이 있는 완제품의 재료로 사용되는 경우, 완제품의 작업·가공이 발생한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

※ 협정 제3.6조(누적)

□ [중간재]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원산지 상품이 다른 상품의 생산에 재료(중간재)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재료(중간재)에 포함된 비원산지 재료는 고려하지 아니함

- 비원산지 상품이 다른 상품의 생산에 재료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에 포함된 원산지 재료와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를 목적에 따라 구분하여 산정

※ 협정 제3.8조(중간재)

□ [최소허용수준(미소기준)] 세번변경기준이 충족되지 않는 상품이라도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

《 최소허용수준 인정 기준 》

- ① 섬유 및 의류(제50류 ~ 제63류)를 제외한 상품은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고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상품 본선인도가격(FOB)의 10% 이하
 - ② 섬유 및 의류(제50류 ~ 제63류)의 경우에는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고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비원산지 재료의 중량이 상품 중량의 10% 이하
- ※ ① 및 ②가 적용되는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협정 제3장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함
- ※ ①에 언급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는 그 상품에 적용되는 RVC/QVC 요건 충족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에는 포함됨

※ 협정 제3.10조(최소허용수준)

□ [포장 및 포장재료의 취급] 용도에 따라 달리 적용

- (운송·수송용) 상품의 원산지 지위 결정 시 고려하지 않음
- (소매 포장용) 아래에 기준에 따라 적용

《 소매 포장용 포장 및 포장재료의 원산지 결정 방법 》

- ① (부가가치기준 적용 시) 해당 상품과 일체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상품의 원산지 결정 시 고려함
- ② (세번변경기준 적용 시) 해당 상품과 같이 분류되는 경우에는 상품의 세번변경 충족 여부 결정 시 고려하지 아니함

※ 협정 제3.11조(포장 및 포장재료의 취급)

□ [부속품, 예비부품 및 공구] 상품과 함께 인도된 상품의 표준 부속품, 예비부품, 공구는 다음 조건에 따라 원산지 지위 결정에 반영

《 원산지 지위 결정 시 부속품 등의 적용 기준 》

- ① (세번변경기준 적용 시) 부속품 등을 고려하지 아니함
 - ※ 다만, 부속품 등은 해당 상품과 동일하게 분류되고, 동일한 송장이 발급되어야 하며, 수량 및 가치가 해당 상품 대비 통상적 수준이어야 함
- ② (부가가치기준 적용 시) 해당 부속품 등의 원산지 지위에 따라 각각 원산지 재료 또는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에 포함하여 계산

※ 협정 제3.12조(부속품, 예비부품 및 공구)

□ [중립재*] 해당 상품의 생산에 사용될 수 있으나, 결합되지 않을 수 있는 아래의 물품은 원산지 결정 시 제외함

* 상품의 생산, 시험 또는 검사에 사용되지만 그 상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지 않거나, 상품의 생산과 관련된 건물의 유지 및 설비의 운영에 사용되는 물품

《 중립재로 인정 가능한 물품 》

- ① 연료 및 에너지
- ② 도구, 형판 및 주형
- ③ 설비 및 건물의 유지에 사용되는 예비부품 및 재료
- ④ 생산에 사용되거나 설비 및 건물의 운영에 사용되는 윤활제, 그리스, 혼합물 및 그 밖의 재료
- ⑤ 장갑, 안경, 신발, 의류, 그리고 안전장비 및 보급품
- ⑥ 상품의 시험 또는 검사에 사용되는 설비, 장치 및 보급품
- ⑦ 상품에 결합되지 않으나 그 상품 생산의 일부로 사용되었음이 합리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그 밖의 모든 상품

※ 협정 제3.13조(중립재)

□ [대체가능 상품 또는 재료] 아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따라 원산지 지위 결정

《 대체가능 상품 또는 재료에 대한 원산지 인정 기준 》

- ① 각각의 대체가능 상품 또는 재료를 물리적으로 분리하여 보관
 - ② 대체가능 상품 또는 재료가 혼합되는 경우 수출당사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서 사용되는 재고관리기법*에 따라 원산지 판정
- * 다만, 해당 재고관리기법은 해당 회계연도에 동일하게 사용되어야 함

《 (참고) 다른 FTA에서 인정되는 재고관리기법 》

- ① (개별법) 원산지 재료와 비원산지 재료를 구분하여 각 재료의 원산지에 따라 그 제품의 원산지 결정
- ② (선입선출법) 입고한 재료 중 먼저 입고한 재료가 먼저 출고된 것으로 보아 먼저 입고된 재료의 원산지를 기준으로 그 제품의 원산지 결정
- ③ (후입선출법) 입고한 재료 중 가장 최근에 입고한 재료가 먼저 출고된 것으로 보아 최근에 입고된 재료의 원산지를 기준으로 그 제품의 원산지 결정
- ④ (평균법) 보관 중인 원산지 재료와 비원산지 재료의 구성비율을 기준으로 그 제품의 원산지를 결정. 이 경우 원산지 재료와 비원산지 재료의 구성비율 계산은 보관 또는 취득한 원산지 재료와 비원산지 재료의 취득가격이나 수량 등을 기준으로 적용
- ⑤ ① ~ ④ 외에 상품이 생산된 회원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

※ 협정 제3.14조(동일하고 대체 가능한 상품 또는 재료)

6. 직접운송

□ [원칙] 수출당사국에서 수입당사국으로 직접 운송되지 않는 상품은 원산지 지위 불인정

□ [예외] 상품이 수출당사국과 수입당사국 외에 하나 이상의 제3국을 경유하여 운송되는 경우에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직접운송된 것으로 간주

《 직접운송 예외 인정 요건 》

- ① 해당 경유가 지리적 이유 또는 운송요건에만 관련된 고려에 의하여 정당화 되어야 함
- ② 상품이 경유국에서 거래 또는 소비되지 않아야 함
- ③ 상품이 하역, 재선적, 그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공정 외의 어떠한 공정도 수행되지 않아야 함

☐ [입증서류] 수입자는 수입당사국의 관세당국이 요구하는 경우 아래 중 어느 하나의 직접운송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직접운송 예외 인정 요건 》

- ① 수출 당사국의 영역에서 발급된 통과선하증권. 이는 수출 당사국부터 수입 당사국까지의 상품의 전체 운송 경로를 포함한 운송 문서를 결합한 것을 포함
- ② 직접운송 예외 인정 요건이 준수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그 밖의 증명서류

※ 협정 제3.9조(직접운송)

III. 원산지증명

1. 개요

☐ [증명방식] 협정 발효 시점에서는 기관발급만 활용 가능하며, 자율발급은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

《 한-인도네시아 CEPA 원산지증명 방식 》

- ① 수출 당사국의 권한있는 발급기관에서 발급한 원산지 증명서
- ② 인증수출자에 의해 작성된 원산지 신고서
 - ※ 협정 발효일로부터 2년 이내에 관세 및 무역원활화 위원회를 통해 규정 및 서식을 합의하고, 수출 당사국이 수입 당사국에 이를 이행함을 통보하는 경우 적용 가능
- ③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한 원산지 신고서
 - ※ 협정 발효일 후 10년 내에 이행. 다만, 최대 10년까지 이행기간 추가 연장 가능

☐ [유효기간] 원산지증명은 발급 또는 작성일로부터 1년간 유효

☐ [적용시점] 협정 발효일(* 23.1.1.) 부터 발급(작성) 가능

※ 협정 제3.15조(원산지 증명), 제13.4조(발효), 영 부칙<제31906호, 2021. 7. 27.>

2. 기관발급 원산지 증명서

☐ [신청인] 수출자, 생산자 또는 권한을 받은 그들의 대리인

☐ [발급기관] 세관 또는 대한상공회의소

※ 인도네시아의 경우 인도네시아 통상부에서 발급

□ [발급형태] ① 종이 서식의 원산지증명서, ② 전자 원산지 증명서*

* 전자 원산지 증명서는 전자적 원산지 정보 교환 시스템(EODES)을 통하여 양 당사국간 전자적으로 전달되는 원산지 증명서 정보를 의미하며, 한-인도네시아 CEPA EODES 개통 시점 및 활용방법은 향후 FTA 포털사이트를 통해 안내 예정

○ (종이 서식 원산지증명서) ① 인쇄본 또는 ② 전자본* 발급 가능

* 발급 신청인은 세관 및 상공회의소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승인된 경우 인쇄본 출력과는 별도로 전자본을 PDF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음

○ (EODES 유의사항) EODES로 원산지증명서 정보가 당국 간 교환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특혜 대우 시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면제되나, 수입국 세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종이 서식의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발급절차] 수출물품 선적일로부터 7일(선적일을 포함) 이내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에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발급기관에 제출*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http://unipass.customs.go.kr>) 또는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센터(<http://cert.korcham.net>)에 접속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신청·발급

○ (인증수출자 혜택)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하는 업체별 또는 인도네시아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는 첨부서류 제출 생략

《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첨부서류 》

- ① 수출신고 수리필증 사본(증명서발급기관이 수출사실 등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생략 가능)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 ②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 ③ 원산지확인서(최종물품에 대한 원산지확인서로서 해당 물품의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 ④ 원산지소명서. 다만,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생산자는 원산지소명서를 증명서발급기관에 직접 제출할 수 있음
- ⑤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정보 및 국내제조확인서
(발급기관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며,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생산자는 해당 서류를 증명서발급기관에 직접 제출할 수 있음)

□ [소급발급] 비자발적 오류, 누락 또는 그 밖의 사유 및 정정발급 상황에서 원산지증명서가 선적일로부터 달력상의 7일(선적일을 포함) 이내에 발급되지 않은 경우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급발급(선적 후 발급)을 신청할 수 있음

○ 소급발급된 원산지증명서에는 “ISSUED RETROACTIVELY” 기재

《 (참고) 협정별 소급발급 기준 》

대상 협정	소급발급 기준
아세안, 베트남	선적일로부터 3근무일(선적일 포함) 이내에 미발급
인도	선적일로부터 7근무일(선적일 포함) 이내에 미발급
중국, 이스라엘	선적일 후 7근무일(선적일 불포함) 이내에 미발급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선적일로부터 달력상 7일(선적일 포함) 이내에 미발급

□ [재발급] 원산지증명서 원본이 도난, 분실 또는 멸실된 경우, 원본의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진정등본 발급 신청 가능

- 재발급 원산지증명서에는 원본과 동일한 발급번호, 발급일자과 “CERTIFIED TRUE COPY” 문구 기재

□ [정정발급] 원산지증명서 정보가 부정확한 경우 발급기관은 아래 중 하나의 방법으로 원산지증명서를 정정할 수 있음

《 원산지증명서 정정 방법 》

- ① 기존의 원산지증명서를 무효화하고 신규 원산지증명서 발급
- ② 오류가 있는 부분을 줄을 그어 지우고 추가 또는 정정사항 기재
다만, 변경된 사항에는 발급기관의 서명과 인장을 날인하여야 함

《 원산지증명서 재발급 · 정정발급 시 발급기관 제출서류 》

재발급	정정발급
①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①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② 재발급 신청사유서	② 원산지증명서 원본 (정정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원본 제출 조건으로 사본 제출 가능)
	③ 정정발급 신청사유서
	④ 정정사유 입증 가능한 서류

《 원산지증명서 정정 방법 》

- ① 기존의 원산지증명서를 무효화하고 신규 원산지증명서 발급
- ② 오류가 있는 부분을 줄을 그어 지우고 추가 또는 정정사항 기재
다만, 변경된 사항에는 발급기관의 서명과 인장을 날인하여야 함

※ 협정 제3.16조(원산지 증명서), 제3.25조(전자적 원산지 정보 교환 시스템), 규칙 제10조, 고시 제26조 ~ 28조

3.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방법

□ [원산지증명서 서식] 규칙 별지 제24호의3 서식 참조

□ [작성방법] 원산지증명서의 주요 항목은 아래 방법에 따라 기재

《 원산지증명서 주요 항목 기재 방법 》

- ① [3번란] 운송수단 및 경로
 - 출발일, 운송수단의 편명, 선적항 및 하역항을 아는 범위에서 기재
 - 다른 협정과 달리 선적항(“Port of loading”) 정보도 해당 난 기재 대상
- ② [4번란] 비고

가. 비당사국 송장 발급: “NON-PARTY INVOICING” 문구 및 송장 발급 회사의 성명(상호)와 국가 기재

나. 소급발급: 선적일을 포함하여 7일(달력상 날짜)이 경과하고 선적일 다음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에는 해당 난에 “ISSUED RETROACTIVELY” 기재

다. 재발급: 도난, 분실, 훼손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원산지증명서를 재발급하는 경우 해당 난에 “CERTIFIED TRUE COPY” 가 기재

③ [7번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

- 수출상품의 6단위 세 번(수입당사국 기준)을 기재하며, 협정 부속서 3-가를 기초로 작성

④ [8번란]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결정기준	9번란에 기입
가. 전적으로 수출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	“WO”
나. 협정 제3장에 부합하는 원산지 재료로만 수출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물품	“PE”
다. 품목별 원산지 규정을 충족 물품	
- 세번변경기준 충족 물품	“CC” / “CTH” / “CTSH”
- 역내/인정가치포함비율 충족 물품	“RVC / QVC40”
- 세번변경 또는 역내/인정가치포함비율 충족 물품	“CC” / “CTH” / “CTSH” 또는 “RVC/QVC40”
- 그 밖의 사항	“CC ex” / “CTH ex” / “CTSH ex” 또는 “RVC/QVC40”
라. 협정 제3.5조 충족 물품(개성공단)	“Article 3.5”

※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선택 가능한 원산지결정기준

① WO	② PE	③ CC
④ CC	⑤ CTH	⑥ CTSH
⑦ RVC/QVC40 BD	⑧ RVC/QVC40 BU	⑨ CC ex
⑩ CTH ex	⑪ CTSH ex	⑫ Article 3.5

⑤ [9번란] 역내/인정가치포함비율로 상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이 난에 FOB 가격 기재

⑥ [10번란] 비당사국 운영자가 상품에 대한 송장을 발급하여 송장 번호 및 일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수출국에서 발급된 송장 원본의 번호와 날짜 기재

※ 협정 부속서 3-나-1, 규칙 제15조제18항 및 별지 제24호의3 서식

IV. 협정관세 적용

협정관세 적용 시점

☐ [적용시점] 협정 발효시점(* 23. 1. 1. 00시) 이후부터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대해 적용

☐ [경과규정] 아래 경과규정 적용 대상 물품으로 협정 제3장의 요건을 충족하는 원산지 상품은 협정 발효일로부터 180일 이내(* 22. 6. 29. 까지)에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수 있음

*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신청

《 경과규정 적용 대상 물품 》

협정 발효일 당시에

- ① 운송 중인 물품이거나,
- ② 보세창고에 보관 중인 물품이거나,
- ③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물품

- (유의사항) 협정관세 적용 신청 시, ① 협정 발효일 이후에 소급하여 작성된 원산지증명서와 ② 직접 운송 입증서류 제출

※ 협정 제3.26조(통과 중인 상품에 대한 경과 규정)

2. 협정관세 적용신청의 시기

□ [원칙] 수입물품에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수입자는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

- (제출서류) 세관장에게 협정관세 적용신청서를 제출
- (증빙서류) 협정 제3.15조에 따른 원산지증명을 포함하여 수입물품이 협정 제3장의 요건을 충족함을 입증하는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세관장이 요구하면 제출하여야 함

□ [예외: 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수입 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 적용신청 가능

- (제출서류) 세관장에게 ①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②수입·납세신고정정신청서, ③ 원산지증명서를 포함한 원산지증빙서류 제출
- (증빙서류) 수입물품은 수입 당시에 협정 제3장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때 이를 입증하는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

□ [유효기간] 원산지증명은 협정관세 적용신청일을 기준으로 발급일 또는 작성일로부터 1년 이내의 것 이어야 함

- 다만, 원산지증명의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경우에는, 유효기간의 계산에서 도착일 다음날부터 협정관세 적용신청일까지의 기간을 제외

※ 협정 제3.18조(특혜관세 대우의 신청), 법 제8조 및 제9조

3. 협정관세 적용신청의 방법

□ [관세율 구분부호] 수입신고서 및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에는 한-인도네시아 CEPA 관세율 구분부호 (“붙임”)와 협정관세율을 기재

□ [인정되는 원산지증명] 아래 중 하나의 원산지증명을 인정

《 수입물품의 협정관세 적용 시 인정되는 원산지증명 》

① 인도네시아의 권한있는 기관이 발급한 원산지증명서 (Certification of Origin)

② 인증수출자에 의해 작성된 원산지신고서 (Declaration of Origin)

③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한 원산지 신고서

※ 협정 발효 시점에는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만 인정되며, ② 또는 ③의 원산지신고서로 협정 관세 신청 가능한 시점은 별도 공지 예정

□ [원산지증명서 제출 방식] 우리나라가 인정하는 원산지증명의 형태는 아래와 같음

《 협정관세 적용 신청 시 제출 가능한 원산지증명의 형태 》

① 종이 원본. 다만, 세관장이 별도로 요구하지 않는 경우 사본제출 스탬프를 날인한 사본으로 대체 가능

② 종이 원본을 스캔하여 이미지화한 파일(PDF, JPEG 등)

《 (참고) 원산지증명서 사본제출 스탬프 양식 》

본 사본이 원본과 다를 경우 관세법 등 관련법령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고 있으며, 세관에
서 요구시 원본을 제출하겠습니다.

수입자 ○○○ (서명)

※ 협정 제3.18조(특혜관세 대우의 신청), 법 제8조, 영 제4조제1항 및 제2항

4. 원산지증명 제출 면제

□ 수입 시 본선인도가격(FOB)이 미화 200달러 이하인 물품은 원산지증명 제출을 면제*

* 구매영수증, 제품의 원산지 표기 등을 통해 상품의 원산지를 간이하게 확인

○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의 제출을 면제하지 않음

《 원산지증명 제출 면제 제외 대상 》

① 물품을 분할하여 수입하는 등 물품 가격이 미화 200달러를 초과하지 않도록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수입하는 물품인 경우

② 해당 수입이 당초 계획된 일련의 수입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

③ 상품의 원산지 지위의 진실성에 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

※ 협정 제3.18조(특혜관세 대우의 신청), 법 제8조제2항, 영 제4조제3항제1호

5. 사소한 불일치 및 오류

□ [사소한 불일치] 협정관세 적용 신청 시 제출된 원산지 증명과 다른 서류 간 사소한 불일치가 있더라도 서류상 물품의 동일성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원산지증명의 유효성 인정

□ [형식적 오류] 타자 오류 등 원산지 증명의 내용의 정확성에 대한 의심을 유발하지 않는 명백한 형식적 오류는 협정관세 적용 거부 사유가 아님

※ 협정 제3.21조(사소한 불일치 또는 오류), 규칙 제21조제5항

V. 기타사항

원산지 검증

□ 원산지검증은 무작위 또는 서류의 진정성, 상품의 원산지 지위 및 그 밖의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수입국 관세당국의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아래의 방법에 따라 수행

《 우리나라로 수입된 물품에 대한 원산지검증 방법 》

- ① [수입자 검증] 협정 제3.23조 및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수출 당사국에 간접검증 요청 전에 수입자에게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 적정 여부 등 확인
- ② [간접검증] 협정 제3.23조 및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간접검증을 요청받은 수출당사국은 조사요청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과 통지
 - (추가 정보 요청) 수입당사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출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추가 정보·서류, 설명 요청 가능하며, 수출당사국은 요청 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이를 제공
- ③ [수출자·생산자 직접검증] ②의 간접검증 결과가 불충분한 경우 협정 제3.23조 및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사업장을 검증방문

《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에 대한 원산지검증 》

- ① [간접검증] 협정 제3.23조 및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인도네시아의 권한있는 당국으로부터 검증 요청을 받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수출자·생산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후, 조사요청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과 통지
- ② [직접검증] 협정 제3.23조에 따라 인도네시아의 권한있는 당국은 간접검증 이후 수출자·생산자의 사업장 검증방문 가능

※ 협정 제3.23조(검증), 법 제17조~제19조, 영 제11조~13조, 제15조 및 제16조, 규칙 제22조~제25조,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2. 협정관세 적용 제한

□ 세관장은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 이 경우 세관장은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의 차액을 부과·징수하고, 필요한 경우 가산세를 징수

《 협정관세 적용이 제한되는 경우 》

- ① 협정 제3.9조의 직접운송에 관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
- ② 원산지 증명이 처음에 부정하게 수입되었던 상품에 대하여 그 이후 작성된 경우
- ③ 원산지 증명이 이 협정의 비당사국에서 발급되었을 경우
- ④ 수입자가 수입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명시된 기간 내에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 증명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⑤ 그 밖에 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협정 제3.24조(특혜관세대우의 거부), 법 제35조, 영 제44조

붙임 : 한-인도네시아 CEPA 관세율 구분부호

협 정	관세율구분부호	내 용
한-인도네시아 CEPA	FID1	- 하나의 품목번호에 1개의 협정세율이 적용되는 물품 - 하나의 품목번호에 서로 다른 협정세율이 있는 경우 최고세율 적용물품
	FID2 FID3 FID4 FID5 FID6 FID7	- 하나의 품목번호에 서로 다른 협정세율이 있는 경우 최고세율인 FID1을 제외하고 세율이 높은 순으로 FID2부터 FID7까지 순차 적용
	FID8	- 추천이 필요한 물품 중 추천을 받은 물품
	FID9	- 긴급수입제한조치 품목 중 발동 수준을 초과한 물품

22 APTA 등 일반협정

1. APTA 등 일반특혜협정에 대한 원산지확인서 처리 지침 통보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704, 2016-03-16(제정일자)

1. 관련근거

- 관세법 제232조의2 제2항,
- 관세법 시행령 제236조의6 제1항

2. 일반특혜협정(APTA, GSTP, GSP 등)의 경우 원산지증명서 확인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원산지확인서가 없어 수출자 및 생산자의 원산지증명과 사후검증시 증빙서류 진위여부에 대한 부담이 있어 이를 완화하고자 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일반특혜협정 원산지확인서 권고서식(전자문서 포함)을 제정하여 통보하오니 '16.3.16일부터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4. 아울러 각 세관장께서는 수출자와 생산자가 일반특혜협정 원산지확인서 권고서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일반특혜 원산지확인서 권고서식 : 부록 참조

2. APTA 등 협정세율 대상물품 신고수리전 반출 허용 수정지침 시달

1. 공정무역과-1476(2008.6.20.)호와 관련하여 시달된 「APTA 등 협정세율 대상물품 신고수리전 반출허용 지침」과 관련입니다.

2. 원산지증명서 제출기한(30일) 세액납부기한(15일)의 불일치에 따른 15일 경과시 가산금 발생 해소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지침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시달하니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내

용을 관내 수출입업체 및 관세사 등에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변 경 전	변 경 후
○ 수입신고시 원산지증명서(C/O)가 구비되지 아니하였어도 APTA 등 일반특혜 양허대상 물품에 해당할 경우에는 양허세율로 수입신고하고 담보제공후 신고수리전 반출 허용 ○ 단, 수리전반출후 1월 이내에 C/O 미제출시 협정세율 불인정	○ 좌 동 ○ 단, 수리전반출후(납부고지서 발행후) 15일 이내에 C/O 미제출시 협정세율 불인정

3. APTA 직접운송원칙 입증서류관련 지침 송부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1678, 2013-07-05

1.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참가국 상품이 제3국을 경유하여 운송시 세관 필수 제출서류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규칙 제8조제3항제1호의 「수출참가국에서 발행된 통과 선하증권」은 APTA 협정세율 적용을 위한 필수 제출서류임을 알려드리오니 APTA 직접운송원칙 입증서류 확인업무 수행시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준 : 2011년도 8월4일 이후 APTA 수입신고물품.

4. APTA 직접운송원칙 입증서류관련 추가 지침 송부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 2013-07-24(제정일자)

1. 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1678('13.7.5)호와 관련입니다.
2. 통과선하증권이 발행되지 않는 경우(예 : 항공운송)에 단순경유사실 증빙서류는 수출국에서 발행된 통과 선하증권과 같이 항공화물운송장이 '최초 수출국 운송업자(운송주선인 포함)가 전 구간의 운송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담보' 하는 하나의 운송서류로 발급된 경우에 인정 가능하며,
3. 홍콩국경 도착시 제출하는 재화청단과 홍콩발행 항공화물운송장은 수출국 운송인이 쏘구간을 보장하는 통과선하증권 형태가 아니므로 단순경유사실 증빙서류로 인정이 곤란합니다.
4. 증빙서류에 대한 사실여부, 조건충족 여부 및 이에 따른 직접운송원칙 충족여부 등은 사안별로 세관장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5. 한·중 간 APTA 원산지 전자자료 교환 시스템 전면시행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제출 방법 안내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1254, 2017.5.10

1. 관련근거 :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39조 제1항
2. 한·중 간 APTA 원산지 전자자료교환시스템(CO-PASS)이 2017.5.11.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양국간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에 따른 양허관세(이하 “APTA”)」 원산지증명서가 전자 자료로 확인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수입 시 APTA 원산지증명서 제출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사 및 수출입기업에게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원산지증명서 제출 방법

현재	’ 17.5.11. 이후
APTA CO(원본) 제출필요	APTA C/O(원본) 제출 생략 (단, 전자자료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C/O 원본제출)

나. 전자 C/O 자료 교환내역 조회방법

-관세청 FTA 포털(www.yesfta.customs.go.kr)> 원산지검증>C0-PASS

6. 세계무역기구협정(WTO) 일반양허관세적용국가 통보

세원심사과, 2010-05-31(등록일자)

내용 : 1. 재정부 다자관세협력과-548호(2010.5.31)와 관련입니다.
2.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의한양허관세규정 제2조(세계무역기구협정 일반양허관세)에 따른 양허관세 적용 국가를 불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수출입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010. 5.31 현재 WTO회원국 153개국 현황 → WTO홈페이지 Members 참조 http://www.wto.org/english/thewto_e/whatis_e/tif_e/org6_e.htm)
불임 : 재정부 공문(다자관세협력과-548호) 1부

○ WTO 양허세율 적용 대상국가 알림

최근 민원인들로부터 세계무역기구(WTO) 양허세율의 적용 대상국가에 대한 문의가 빈번한 바,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세율적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WTO 양허세율 적용 대상국가

1. WTO 회원국(2010.5.31 현재 153개국)
2. 편익관세 대상국가(관세법 제74조, 2010.5.31 현재 21개국)
3. 최혜국 대우조항이 포함된 상호간 무역협정 체결국가(2010.5.31 현재 4개국)
- 수단,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벨라루스
4. 상기 적용 대상국가에 속한 독자적 관세주권이 없는 자치령 또는 속령 등
- 예) 푸에르토리코, 괌(미국령), 그린란드(덴마크령), 버뮤다, 앙겔라(영국령) 등

7.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별표 1] <개정 2021. 4. 30.>

특혜관세가 적용되는 최빈개발도상국(제2조 관련)

지 역	국 가
1. 아시아 · 오세아니아	아프가니스탄 · 방글라데시 · 캄보디아 · 미얀마 · 부탄 · 키리바시 · 라오스 · 네팔 · 투발루 · 솔로몬제도 · 예멘 · 동티모르
2. 아프리카	앙골라 · 베냉 · 부르키나파소 · 부룬디 · 중앙아프리카공화국 · 차드 · 코모로 · 지부티 · 에리트레아 · 에티오피아 · 감비아 · 기니 · 기니비사우 · 레소토 · 라이베리아 · 마다가스카르 · 말라위 · 말리 · 모리타니 · 모잠비크 · 니제르 · 르완다 · 상투메프린시페 · 시에라리온 · 소말리아 · 수단 · 탄자니아 · 토고 · 우간다 · 콩고민주공화국 · 잠비아 · 세네갈 · 남수단
3. 아메리카	아이티

비고

1. 부탄에 대한 특혜관세는 2023년 12월 12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솔로몬제도에 대한 특혜관세는 2024년 12월 12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앙골라에 대한 특혜관세는 2024년 2월 1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4. 상투메프린시페에 대한 특혜관세는 2024년 12월 12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 참고자료

1. 한-EFTA HS기준연도 변환(HS2012→HS2017)에 따른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유의사항 안내

<한-EFTA HS기준연도 변환(HS2012→HS2017)에 따른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유의사항 안내>

2023년 6월 1일자로 한-EFTA FTA 품목별 원산지기준(PSR)의 HS기준연도가 HS2012에서 HS2017로 변환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한-EFTA FTA 인증수출자 인증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은 HS2017을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관세청은 PSR의 HS기준연도 변환에 따라 인증받은 세번이 변경되는 업체의 신규 인증 부담 최소화를 위해, 해당 업체가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요건 충족여부를 자율적으로 점검하여 아래와 같이 '23.6.30.까지 인증사항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인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재심사 또는 변경신고 대상 세번(엑셀파일) 및 HS기준연도 변환에 따른 인증사항 변경신고서는 관세청 FTA포털(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 참여마당 → 공지사항' 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1. [인증 재심사] 원산지결정기준 또는 품목번호의 변경으로 인증요건 충족 여부 확인이 필요한 품목이므로, 해당 HS번호로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를 받은 업체는 관할세관장에게 인증사항 변경신고서, 원산지소명서 및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변경 신고] HS번호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원산지결정기준이 충족됨을 인정할 수 있는 품목이므로 인증사항 변경신고서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인증사항 변경 신고 등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관할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중국세관의 인증수출자 관리방법

해관총서 제254호령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의 인증수출자 관리방법》의 공포에 관한 명령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의 인증수출자 관리방법

(2021년 11월 23일 해관총서령 제254호를 공포하고,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참가한 특혜무역 협정 하에서 인증수출자 제도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고, 수출 물품의 원산지 관리를 규범화 하며, 대외무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아이슬란드 정부간 자유무역협정》, 《중화인민공화국과 스위스 연방간 자유무역협정》,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모리셔스공화국 정부간 자유무역협정》,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관계 협정(RCEP)》 등 특혜무역 협정(이하 '관련 특혜무역협정'이라 한다)의 규정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방법에서 인증수출자라 함은 세관에서 법에 따라 인정하고, 그에 따라 수출 또는 생산할 수 있으며, 관련 특혜무역협정 하에서 원산지 자격을 갖춘 물품에 대해 원산지성명서를 작성할 수 있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 세관은 성실하게 법규를 준수하는 경우 편리하게 한다는 원칙에 따라, 인증수출자에 대해 관리를 실시한다.

세관은 인증수출자 관리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인증수출자 관리의 편리화 수준을 향상시킨다.

제4조 인증수출자는 반드시 다음의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 (1) 세관 고급인증기업
- (2) 관련特惠무역협정 하에서의 원산지규칙을 명확하게 이해할 것
- (3) 완벽하게 준비된 원산지 자격서류 관리제도를 수립할 것

제5조 기업이 인증수출자가 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의 소재지 관할 직할세관(이하 '주관 세관'이라 한다)에 서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서면 신청서는 반드시 다음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 (1) 기업의 중문 및 영문 명칭, 중문 및 영문 주소, 통합 사회신용번호, 세관의 신용등급, 기업 유형, 연락처 정보 등의 기본정보
- (2) 기업의 주요 수출 물품의 중문 및 영문 명칭, 규격모델, HS번호, 적용할特惠무역협정 및 구체적인 원산지 기준, 물품에 사용된 모든 원재료 및 부분품 구성 내역 등 정보
- (3) 관련特惠무역협정 하에서의 원산지 규칙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승낙 성명서
- (4) 완벽하게 준비된 물품의 원산지 자격서류 관리제도를 수립했다는 승낙 성명서
- (5) 원산지성명서에 날인하고자 하는 인장 모형

신청서류와 관련된 영업비밀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 시 서면 형태로 주관 세관에 비밀유지 요구서를 제출해야 하고, 동시에 비밀유지가 필요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열거해야 한다. 세관은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한다.

제6조 주관 세관은 반드시 신청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진행하고 결정을 해야 한다.

심사를 거쳐 인증수출자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주관 세관은 반드시 인증수출자 인증서를 교부해야 하고, 동시에 인증수출자 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인증수출자 조건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관 세관은 반드시 인증수출자 불인정 결정서를 교부해야 한다.

인증수출자 인증서와 인증수출자 불인정 결정서는 반드시 신청인에게 송달해야 하고, 동시에 송달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7조 인증수출자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인증수출자는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이내에 주관 세관에 서면으로 갱신을 신청할 수 있다. 매 회 갱신하는 유효기간은 3년이다.

제8조 해관총서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되었거나 참가하고 있는特惠무역협정 및 관련 협의에 근거하여特惠무역협정 하에서의 기타 계약 상대방(이하 '기타 계약 상대방'이라 한다)과 아래의 인증수출자 정보를 교환한다.

- (1) 인증수출자 번호
- (2) 인증수출자의 중문 및 영문 명칭
- (3) 인증수출자의 중문 및 영문 주소
- (4) 인증수출자 인정의 발효일자 및 유효기간
- (5) 관련特惠무역협정에서 교환하도록 요구하는 기타 정보

해관총서는 전 항의 규정과 기타 계약 상대방과 정보교환을 완료한 후에 주관 세관은 반드시 인증수출자에게 이 방법 제9조,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성명서를 발행해야 한다는 점을 통지해야 한다.

제9조 인증수출자는 그가 수출 또는 생산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성명서를 발행하기 전에 반드시 주관 세관에 물품의 중문 및 영문 명칭, 《상품명 및 품목분류번호 조화제도》6단위 번호, 적용할特惠무역협정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관련 물품의 중문 및 《상품명 및 품목분류번호 조화제도》6단위 번호, 적용할特惠무역협정이 이미 제출된 정보와 동일한 경우에는 중복으로 제출할 필요는 없다.

제10조 인증수출자는 반드시 세관의 인증수출자 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원산지성명서를 발행해야 하고, 동시에 그의 발행한 원산지성명서에 대한 진실성과 정확성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인증수출자가 이 방법에 따라 작성한 원산지성명서는 기타 계약 상대방에 대해 관련特惠무역협정 하에서의特惠대우를 신청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 인증수출자는 반드시 원산지성명서를 발행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물품의 원산지 자격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인증수출자가 수출 물품의 생산자가 아닌 경우에는 반드시 원산지성명서를 발행하기 전에 생산자에게 물품의 원산지 자격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서류를 제공하도록 요구해야 하고, 동시에 전항의 교구사항에 따라 보존해야 한다.

제12조 세관은 인증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성명서 및 그 관련 물품, 원산지 자격 서류 관리제도 및 운영 상황 등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인증수출자는 반드시 협조하여야 한다.

기타 계약 상대방의 주관 기관이 관련 특혜무역협정에 따라 인증수출자이 발행한 원산지성명서 및 그 관련 물품에 대해 심사 청구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관총서의 통일된 조직에서 실시한다.

인증수출자는 반드시 그가 받은 기타 계약 상대방의 주관 기관으로부터 받은 원산지성명서 및 그 관련 물품의 심사청구를 주관 세관에 전달해야 한다.

제13조 인증수출자 정보 또는 물품 정보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인증수출자는 변경을 진행하기 전에는 원산지성명서를 발행할 수 없다.

제14조 다음의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주관 세관은 인증수출자 인증을 말소할 수 있고, 동시에 서면으로 해당 기업에 통지한다.

- (1) 인증수출자가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 (2) 인증수출자가 해관총서에서 규정한 기업신용등급에 더 이상 부합하지 않는 경우
 - (3) 인증수출자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도록 주관 세관에 갱신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 말소 결정은 통지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15조 다음의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주관 세관은 인증수출자 인증을 취소할 수 있고, 동시에 서면으로 해당 기업에 통지한다.

- (1) 허위 자료를 제공하여 인증수출자 인증을 가로챈 경우
- (2) 원산지성명서를 위조하거나 매매하는 행위가 존재하는 경우
- (3) 인증수출자가 이 방법 제12조에 따라 심사 청구를 전달하지 않고, 그 사정이 엄중한 경우
- (4) 인증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성명서가 해관총서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고, 1년 이내에 누적된 총 건수가 전년도 발행한 원산지성명서 총 건수의 100분의 1을 초과하며, 동시에 관련 물품의 총 금액이 100만 위안을 초과한 경우

결정 취소는 통지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다만, 이 조 제1항 제호의 규정에 따라 인증수출자 인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인증수출자 인정은 처음부터 원천 무효이다.

기업이 세관으로부터 인증수출자 인증을 취소당한 경우에는 취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인증수출자 인증 신청을 제출할 수 없다.

제16조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인증수출자 인증을 편취한 경우 또는 원산지성명서를 위조, 매매한 경우에는 주관 세관은 반드시 경고를 하고, 1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17조 세관은 법에 따라 인증수출자에 대해 신용관리를 실시한다.

제18조 세관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였거나 참가한 기타 특혜무역협정 하에서의 인증수출자를 관리하고 이 방법을 적용한다.

제19조 이 방법은 해관총서가 해석을 담당한다.

제20조 이 방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海关总署第254号令

关于公布《中华人民共和国海关经核准出口商管理办法》的令

中华人民共和国海关经核准出口商管理办法

(2021年11月23日海关总署令第254号公布 自2022年1月1日起施行)

第一条 为了有效实施中华人民共和国缔结或者参加的优惠贸易协定项下经核准出口商管理制度，规范出口货物原产地管理，促进对外贸易，根据《中华人民共和国政府和冰岛政府自由贸易协定》《中华人民共和国和瑞士联邦自由贸易协定》《中华人民共和国政府和毛里求斯共和国政府自由贸易协定》《区域全面经济伙伴关系协定》等优惠贸易协定（以下统称“相关优惠贸易协定”）的规定，制定本办法。

第二条 本办法所称的经核准出口商，是指经海关依法认定，可以对其出口或者生产的、具备相关优惠贸易协定项下原产资格的货物开具原产地声明的企业。

第三条 海关按照诚信守法便利原则，对经核准出口商实施管理。
海关建立经核准出口商管理信息化系统，提升经核准出口商管理便利化水平。

第四条 经核准出口商应当符合以下条件：

- （一）海关高级认证企业；
- （二）掌握相关优惠贸易协定项下原产地规则；
- （三）建立完备的原产资格文件管理制度。

第五条

企业申请成为经核准出口商的，应当向其住所地直属海关（以下统称主管海关）提交书面申请。书面申请应当包含以下内容：

- （一）企业中英文名称、中英文地址、统一社会信用代码、海关信用等级、企业类型、联系人信息等基本信息；
- （二）企业主要出口货物的中英文名称、规格型号、HS编码、适用的优惠贸易协定及具体原产地标准、货物所使用的全部材料及零部件组成情况等信息；
- （三）掌握相关优惠贸易协定项下原产地规则的承诺声明；
- （四）建立完备的货物原产资格文件管理制度的承诺声明；
- （五）拟加盖在原产地声明上的印章印模。

申请材料涉及商业秘密的，应当在申请时以书面方式向主管海关提出保密要求，并且具体列明需要保密的内容。海关按照国家有关规定承担保密义务。

第六条 主管海关应当自收到申请材料之日起30日内进行审核并作出决定。

经审核，符合经核准出口商条件的，主管海关应当制发经核准出口商认定书，并给予经核准出口商编号；不符合经核准出口商条件的，主管海关应当制发不予认定经核准出口商决定书。

经核准出口商认定书、不予认定经核准出口商决定书应当送达申请人，并且自送达之日起生效。

第七条 经核准出口商认定的有效期为3年。

经核准出口商可以在有效期届满前3个月内，向主管海关书面申请续展。每次续展的有效期为3年。

第八条 海关总署依据中华人民共和国缔结或者参加的优惠贸易协定以及相关协议，与优惠贸易协定项下其他缔约方（以下简称其他缔约方）交换下列经核准出口商信息：

- （一）经核准出口商编号；
- （二）经核准出口商中英文名称；
- （三）经核准出口商中英文地址；
- （四）经核准出口商认定的生效日期和失效日期；
- （五）相关优惠贸易协定要求交换的其他信息。

海关总署依照前款规定与其他缔约方完成信息交换后，主管海关应当通知经核准出口商可以依照本办法第九条、第十条规定开具原产地声明。

第九条 经核准出口商为其出口或者生产的货物开具原产地声明前，应当向主管海关提交货物的中英文名称、《商品名称及编码协调制度》6位编码、适用的优惠贸易协定等信息。

相关货物的中英文名称、《商品名称及编码协调制度》6位编码、适用的优惠贸易协定与已提交信息相同的，无需重复提交。

第十条 经核准出口商应当通过海关经核准出口商管理信息化系统开具原产地声明，并且对其开具的原产地声明的真实性和准确性负责。

核准出口商依据本办法开具的原产地声明可以用于向其他缔约方申请享受相关优惠贸易协定项下优惠待遇。

第十一条 经核准出口商应当自原产地声明开具之日起3年内保存能够证明该货物原产资格的全部文件。相关文件可以以电子或者纸质形式保存。

经核准出口商不是出口货物生产商的，应当在开具原产地声明前要求生产商提供能够证明货物原产资格的证明文件，并且按照前款要求予以保存。

第十二条 海关可以对经核准出口商开具的原产地声明及其相关货物、原产资格文件管理制度及执行情况等实施检查，经核准出口商应当予以配合。

其他缔约方主管部门根据相关优惠贸易协定，提出对经核准出口商开具的原产地声明及其相关货物核查请求的，由海关总署统一组织实施。

经核准出口商应当将其收到的其他缔约方主管部门有关原产地声明及其相关货物的核查请求转交主管海关。

第十三条 经核准出口商信息或者货物信息发生变更的，经核准出口商未进行变更前，不得开具原产地声明。

第十四条 存在以下情形的，主管海关可以注销经核准出口商认定，并且书面通知该企业：

- (一) 经核准出口商申请注销的；
- (二) 经核准出口商不再符合海关总署规定的企业信用等级的；
- (三) 经核准出口商有效期届满未向主管海关申请续展的。 注销决定自作出之日起生效。

第十五条 存在以下情形的，主管海关可以撤销经核准出口商认定，并书面通知该企业：

- (一) 提供虚假材料骗取经核准出口商认定的；
- (二) 存在伪造或者买卖原产地声明行为的；
- (三) 经核准出口商未按照本办法第十二条转交核查请求，情节严重的；
- (四) 经核准出口商开具的原产地声明不符合海关总署规定，1年内累计数量超过上年度开具的原产地声明总数百分之一，并且涉及货物价值累计超过100万元的。

撤销决定自作出之日起生效，但依照本条第一款第一项规定撤销经核准出口商认定的，经核准出口商认定自始无效。

企业被海关撤销经核准出口商认定的，自被撤销之日起2年内不得提出经核准出口商认定申请。

第十六条 提供虚假材料骗取经核准出口商认定，或者伪造、买卖原产地声明的，主管海关应当给予警告，可以并处1万元以下罚款。

第十七条 海关依法对经核准出口商实施信用管理。

第十八条 海关对中华人民共和国缔结或者参加的其他优惠贸易协定项下经核准出口商的管理，适用本办法。

第十九条 本办法由海关总署负责解释。

第二十条 本办法自2022年1月1日起施行。

3. 한-중 FTA 원산지 증명서 수량 단위 코드 목록

연번	수량단위	수량단위 정의(영문)	수량단위 정의(국문)	금지되는 유사표기 예시
1	2U	Pair	쌍, 켄레, 족	PA, PAI
2	BAG	Bag	가방	BG, BA
3	BLL	Barrel	배럴	BA, BAL
4	BOX	Box	박스	BX

5	BTL	Bottle	병	BO, BOT, BV
6	CAN	Can	캔	CA
7	CT	Carton	카톤, 케이스	CTN, CS, BR
8	DRM	Drum	드럼(drum)	DR, DM
9	DZ	Dozen	더즌(dozen, 12개)	DZN
10	EA	EA	개	
11	GLI	UK gallon	갤런(3.74581 dm3, US)	
12	GLL	US gallon	갤런(4.54062 dm3, UK)	
13	GR	Gram	그램	GRM
14	GT	Gross Ton/long ton	그로스 톤, 롱톤	
15	KG	Kg	킬로그램	KGS
16	KMT	Kilometer	킬로미터	KM, KT, KL
17	L	Liter	리터	VI, LT, LTR
18	LBR	Pound	파운드	LB, PN
19	M	Meter	미터	MTR
20	M2	Square meters	square meters(제곱미터)	SM
21	M3	Cubic meter	입방미터	CBM
22	PC	Piece	피스(Piece)	PCS, PCE, PSC
23	PKG	Pack, Package	팩키지(Package)	PK, PH
24	RL	Roll	롤(Roll), 코일(Coil)	RO, CL, CX, ROL, LAN
25	SET	Set	세트(Set)	ST
26	SF	Square feet	제곱피트	
27	SH	Sheet of Paper	매	
28	TNE	Metric ton	1,000Kg(Metric Ton)	MT, TN
29	TU	Thousand unit	천개	
30	U	A unit	개, 본, 매, 두, 필, 대, 량, 기, 척, 착, 갑	UN, 1B, MR, NO, PL, OU
31	YD	Yard	야드	

※ 유의사항

1. 국·영문 수량단위 정의를 참조하여 수량단위 입력
2. 유사표기방법으로 예시된 수량 단위는 사용할 수 없음
3. 수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수량단위가 없는 경우 예시된 수량코드로 환산하여 입력
☞ 예시 : ① 100CM → 1M, ② 100VI(10,000ml) → 10L

4. 한-베트남 인증수출자 인증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 안내문

〈한-베트남 FTA HS기준연도 변환(HS2012→HS2017)에 따른
품목별 인증수출자 인증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유의사항 안내〉

2022년 8월 1일자로 한-베트남 FTA 품목별 원산지기준(PSR)의 HS기준연도가 HS2012에서 HS2017로 변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베트남 FTA의 인증수출자 인증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은 HS2017을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①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요건

관세청은 PSR의 HS기준연도 변환에 따라 인증받은 세번이 변경되는 업체의 신규 인증 부담을 덜기 위해, 해당 업체가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요건 충족여부를 자율적으로 점검하여 아래와 같이 '22.10.31.까지 인증사항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인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1. 안내문과 함께 첨부된 세번(시트1)은 원산지결정기준이 변경되어 인증요건 충족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품목이므로, 해당 세번으로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를 받은 업체에서는 관할세관장에게

- 인증사항 변경신고서, 원산지소명서 및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
- 또는 인증만료일이 1년 이내로 인증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인증연장심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1의 경우를 제외하고, 인증받은 세번(HS2012)과 HS2017기준의 세번이 다른 경우에는 인증사항 변경신고 (HS·PSR)를 해주시기 바랍니다.(시트2)

3. 인증받은 세번(HS2012)과 HS2017기준의 세번이 동일한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 HS기준연도 변환에 따른 인증사항 변경신고서는 ‘관세청FTA포털(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 FTA 자료실 → FTA 서식모음 → 한-베트남 FTA, 품목별인증수출자 인증사항 변경’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 22.8.1.부터 한-베트남 원산지증명서는 HS2017 기준으로 발급되어야 하오니,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하는 업체에서는 HS2017에 따른 세번으로 원산지충족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발급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업체는 기한 내에 자율점검 후 인증사항 변경신고를 하여 향후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시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람,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어려움이 있는 기업은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붙임 : 한-베트남 PSR 개정에 따른 인증 재심사, 변경신고 대상 세번 1부. 끝.

참 고

한-베트남 FTA, PSR기준 HS변경에 따른 인증사항변경신고서

품목별원산지기준 HS변경에 따른 인증사항 변경신고(수리)서

접수번호		접수일	
신고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성명
	인증번호		팩스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세 번 (원산지기준)	9033.00(CTH or RVC40)		8542.33(CTSH or RVC40)

※ 기존 HS2012 기준으로 인증받은 품목은 '22.12.31일 이후 인증효력이 상실됩니다.

한-베트남 FTA 품목별원산지기준 HS변경에 따라 품목별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사항의 변경내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 하

신고인 제출서류 원산지소명서 등 원산지증빙서류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자 르 는 선

접수번호

귀사에서 신청한 인증수출자 인증사항 변경신고를 수리. 반려합니다.

※ 변경신고가 반려된 경우에는 원산지기준 충족여부를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세관장 직인

○ ○ ○ 귀하

5. 한-베 EDDES 개통관련 공지사항

우리나라와 베트남은 한-아세안 FTA 및 한-베트남 FTA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 (EODES)을 구축하고 ‘23.7.15(토)에 정식 개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한 주요 질의/답변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1) EODES 교환시 종이 C/O는 발급받을 필요가 없나요?

(답변1) EODES와 C/O의 발급/보관/제출에 관한 사항은 별개입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류를 5년간 보관해야 하며, C/O원본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자는 '베트남에서 전자적으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에 수출자가 서명한 종이C/O 원본'을 제공받아야 합니다.

(질문2) EODES 전송(교환) 오류 발생시 통관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답변2) EODES가 시행되더라도, 종전과 같은 종이 C/O로도 상대국에서 통관이 가능합니다.

(질문3) EODES 시범운동을 시작한 이후, 한국과 베트남이 원산지증명서에 수량/중량/포장단위를 기재하는 방식이 상이합니다. 협정 적용에 문제가 없나요?

(답변3) 베트남은 원산지증명서 수량/중량/포장단위에 description(예:kilogram)을 기재하되, EODES를 통해
서는 코드(예:KGM)가 전송됩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원산지증명서 신청/발급 및 EODES 전송시에 단위코드(예:KG)를 기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양국의 시스템 운영정책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질문5) ' 23.7.1일 이후 베트남에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에 QR코드가 없습니다. QR코드가 포함된 C/O와 QR코드가 없는 C/O 모두 유효한 것인가요?

(답변5) 베트남은 ‘23.7.1일 이후부터 원산지증명서 양식을 변경해 발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QR코드와 발급기관의 서명/인장이 전자적으로 날인되지 않은 원산지증명서는 유효하지 않은 서류일 수 있습니다.

※ 본 사안관련 문의사항은 관세청 FTA집행과(Tel : 042-481-3272, e-Mail : kcsfcd@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6. RCEP 회원국별 인정되는 원산지증명 형태

2022.1.31. 기준

발효	회원국	종이 원본 C/O	종이 C/O 원본의 스캔본	전자 발급된 C/O의 인쇄본	모든 전자적 C/O (e-CO 스캔본 등 포함)
' 22.1.1. (10개국)	뉴질랜드	○			○
	라오스	○			
	베트남	○			○
	브루나이	○		○	
	싱가포르	○	○	○	○
	일본	○		○	○
	중국	○		○	○
	캄보디아	○			
	태국	○			
	호주	○	○	○	○
' 22.2.1.	한국	○	○	○	○
-	말레이시아	○		○	
	미얀마	○			
	인도네시아	○			○
	필리핀	○			○

※ 수입국에서 특혜세율 적용 시 인정되는 원산지증명의 전자본 형태는 회원국별로 상이하므로
상기표는 참조

7. RCEP HS기준연도 변환(HS2012→HS2022)에 따른 품목별 인증수출자 인증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유의사항

2023년 1월 1일자로 RCEP 품목별원산지기준(PSR)의 HS기준연도가 HS2012에서 HS2022로 변환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RCEP 인증수출자 인증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은 HS2022을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요건

관세청은 PSR의 HS기준연도 변환에 따라 인증받은 세번이 변경되는 업체의 신규 인증 부담을 덜기 위해, 해당 업체가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요건 충족여부를 자율적으로 점검하여 아래와 같이 '23.2.28.까지 인증사항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인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인증재심사 또는 변경신고 대상 세번(엑셀파일)은 '관세청 FTA포털(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 참여마당 → 공지사항' 에서, HS기준연도 변환에 따른 인증사항 변경신고서는 '관세청FTA포털 → FTA 자료실 → FTA 서식모음 → RCEP 인증사항 변경' 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1. 엑셀파일 시트[인증재심사 대상]의 세번은 원산지결정기준이 변경되어 인증요건 충족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품목이므로, 해당 세번으로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를 받은 업체에서는 관할세관장에게 인증사항

변경신고서, 원산지소명서 및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엑셀파일 시트2[변경신고 대상]**는 세번이 변경되지만, 원산지결정기준이 동일한 품목이므로 인증사항 변경 신고(HS·PSR)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3. **엑셀파일 시트3[재심사 또는 변경신고]**의 세번은 인증재심사 또는 변경신고 해당 여부를 직접 확인하시어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4. 인증받은 세번(HS2012)과 HS2017기준의 세번이 동일한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 일부 세번의 경우 HS2012⇔HS2022 연계 시, 기존 세번이 유지되는 품목과 세번이 변경되는 품목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인증받은 품목을 확인하여 세번이 변경되는 경우 인증재심사 또는 인증 변경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②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 23.1.1.부터 RCEP 원산지증명서는 HS2022 기준으로 발급되어야 하오니,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하거나 작성하는 업체에서는 HS2022에 따른 세번으로 원산지충족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발급 신청 및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RCEP 회원국으로 수출하는 업체는 기한 내에 자율점검 후 인증사항 변경신고를 하여 향후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시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람,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어려움이 있는 기업은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8. RCEP 협정상대국 인증수출자 번호 부여 체계

(’22. 5. 2. 현재)

국가명	인증수출자 번호 부여 체계
말레이시아	(예시) MY-SC2021B001 * MY: 국가코드, SC: Self-Certification, Year: 2021, B: State code, 001: Reference number
일본	승인월(2자리) + 연번(4자리) + 승인년도(2자리) + 협정번호(RCEP은 “04”) * (예시) 0412342204
중국	“CN” (국가코드) + 지역세관(2자리) + 연번(5자리) / 총 9자리
태국	TH-RCEP + 업체등록번호(13자리)
호주	AU + “11자리 호주 사업자번호(ABN)”
인도네시아 (미발효)	일(2자리) + 월(2자리) + 년(2자리) + 연번(6자리) + 보안(1자리)

※ 상기 표는 RCEP 사무국에서 회람(’ 22.5.2.)한 “RCEP 협정국별 인증수출자 번호 부여 체계”에 기초하여 작성됨

9. List of RCEP Parties’ Certificate of Origin Issuing Bodies as of 1 January 2022

RCEP Parties	Name of Issuing Bodies
Australia	Australi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Phone: +61 2 6270 8000 Email: info@australianchamber.com.au Web: https://www.australianchamber.com.au/

	Australian Industry Group Phone: 1300 776 063 Email: trade.docs@aigroup.com.au Web: www.aigroup.com.au/trade/certificateoforigin Ozdocs International Phone: +61 2 9899 2000 Email: info@ozdocs.com.au Web: www.ozdocs.com.au/export-documentation
Brunei Darussalam	Trade Division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y Commonwealth Drive Bandar Seri Begawan BB3910 Email: coo.officebrunei@mofe.gov.bn
Cambodia	Ministry of Commerce Phone / Fax Number: (855) 23 866 469 Lot 19-61, Russian Federation Blvd, Phum Teuk Thla, Sangkat Teuk Thla, Khan Sen Sok, Phnom Penh
China	China Customs No.6, Jian Guo Men Nei Avenue, Beijing 100730 China Council for the Promotion of International Trade (CCPIT) Floor 3 CCOIC Building, No. 2 Huapichang Hutong, Xicheng District, Beijing
Indonesia	Directorate General of Foreign Trade Ministry of Trade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Japan	The Jap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3-2-2 Marunouchi Chiyoda-ku Tokyo 100-0005
Korea	Korea Customs Service Government Complex Dae-Jeon, 189, Cheongsa-Ro Seo-Gu, DAEJEON KOREA Korea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KCCI Bldg, 39, Sejongdaero, Jung-gu, Seoul 04513 Korea
Lao PDR	Department of Import and Export Ministry of Industry and Commerce Phonxay Road Saysettha District, Vientiane Capital P.O. Box 4107
Malaysia	Ministry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
Myanmar	Department of Trade, Ministry of Commerce Office No. 3, Nay Pyi Taw Tel: (95-67) 3408328, Phone: (95-67) 3408405, 3408251 Email: roo.myanmar2014@gmail.com
New Zealand	tbd
The Philippines	The Philippine Bureau of Customs
Singapore	Singapore Customs 55 Newton Road #07-01, Revenue House Singapore 307987 Phone: (65) 63552000 Email: customs_roo@customs.gov.sg
Thailand	Department of Foreign Trade 563 Nonthaburi road, Bangkrasor Muang, Nonthaburi 11000
Viet Nam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10. 중국세관의 RCEP 하의 수출입물품 원산지 관리방법 공포에 관한명령

해관총서 제255호령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의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관계 협정(RCEP)》하에서의 수출입 물품 원산지관리방법》의 공포에 관하여 명령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의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관계 협정(RCEP)》하에서의 수출입 물품 원산지관리방법

(2021년 11월 23일 해관총서령 제255호로 공포하고,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는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관계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 하에서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를 정확하게 확정하고, 우리나라와 협정의 기타 회원국들과의 경제무역의 왕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물품 원산지 조례》 및 《협정》의 규정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방법은 중화인민공화국과 협정의 기타 회원국들 간의 협정 하에서의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관리에 적용한다.

이 방법에서 회원국이라 함은 이미 협정이 이행된 국가(지역)를 말하며, 구체적인 목록은 해관총서가 별도로 공포한다.

제2장 원산지 규칙

제3조 다음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부합하는 물품은 협정 하에서의 원산지 물품(이하 '원산지 물품'이라 한다)이 되며, 협정 하에서의 원산지 자격(이하 '원산지 물품'이라 한다)을 구비한다.

- (1) 하나의 회원국에서 완전히 획득하거나 생산한 경우
- (2) 하나의 회원국에서 완전히 원산지 재료만을 사용하여 생산한 경우
- (3) 하나의 회원국에서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경우에는 단지, 생산 물품에 대한 특정 원산지 규칙 규정의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 또는 기타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경우 생산 물품의 특정 원산지 규칙은 해관총서가 별도로 공고한다.

제4조 이 방법 제3조에서 하나의 회원국에서 완전히 획득하거나 생산한 물품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 (1) 해당 회원국에서 재배, 수확, 채취 또는 수집한 식물 또는 식물 생산품
- (2) 해당 회원국에서 출생하고 사육한 산동물
- (3) 해당 회원국에서 사육한 산동물에서 획득한 물품
- (4) 해당 회원국에서 수렵, 포획, 채포, 경작, 수산 양식, 수집 또는 포획을 통해 직접 획득한 물품
- (5) 해당 회원국의 영토, 영해, 해저 또는 해저 바닥에서 채취 또는 획득한 것, 다마, 이 조의 제1항에서 제4항의 광물질 및 기타 천연자원은 제외한다
- (6) 해당 회원국의 선박이 해당 국제법 규정에 따라 공해 또는 해당 회원국이 권한을 가지고 개발한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포획한 해양 어획 산물 및 기타 해양 생물
- (7) 해당 회원국 또는 해당 회원국의 구성원이 국제법 규정에 따라 해당 회원국의 영해 이외의 수역, 해저 또는 해저 바닥에서 획득한 이 조의 제6조에 포함되지 않는 물품
- (8) 해당 회원국의 가공선박 위에서 완전히 이 조의 제6조 또는 제7조에 서술된 물품을 사용하여 가공하거나 제조한 물품
- (9) 해당 회원국에서 생산 또는 소비 과정에서 생산한 경우에는 단지 폐기 처리 또는 원재료 회수에만 사용되는 폐기 잔재물
- (10) 해당 회원국에서 수집된 경우에는 폐기 처리 또는 원재료 회수에만 사용되는 중고품
- (11) 해당 회원국에서 단지 이 조 제1조부터 제10조에 열거된 물품 또는 그의 파생물품만을 이용하여 획득 또는 생산한 물품

제5조 이 방법 제3조 제1항 제3항의 규정에 부합하는 물품이 만일 생산 과정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가 회원국에서 아래의 하나의 항목 또는 다수의 항목의 가공 또는 처리를 거친 경우에는 해당 물품은 여전히 원산지 자격을 갖추지 못한다.

- (1) 물품의 운송 또는 보관기간 동안에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진행한 보존 작업
- (2) 물품의 운송 또는 판매를 하기 위한 포장 또는 전시
- (3) 단순한 가공으로 여과, 선별, 선택, 분류, 뿔죽하게 연마, 절단, 세로 절단, 연마, 구부리기, 감기 또는 펴기를 포함한다.

- (4) 물품 또는 그 포장에 표시, 상표, 표식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구별을 위해 사용하는 표기의 부착 또는 인쇄
- (5) 단지 물 또는 기타 물질만을 희석하는 경우로서 물질의 특성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지 않은 경우
- (6) 생산품을 분해하여 부분품으로 만든 경우
- (7) 동물을 도축하는 경우
- (8) 단순한 도색과 광택
- (9) 단순한 탈피, 핵 제거 또는 탈각
- (10) 생산품에 대한 단순한 혼합으로서 다른 종류의 생산품을 혼합한 경우를 불문한다.

전항에서 규정한 “단순한”이라 함은 전문적인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고, 동시에 전문적인 생산, 기계장비, 기기 또는 설비가 필요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 하나의 회원국에서 획득 또는 생산한 원산지 물품 또는 원재료가 다른 하나의 회원국에서 생산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다른 하나의 회원국의 원산지 재료로 간주한다.

제7조 이 방법 제3조에 규정된 역내부가가치 비율은 반드시 아래의 공식 중 어느 하나의 방식에 따라 계산한다.

(1) 직접법

$$\text{역내부가가치비율} = \frac{\text{본선인도가격(FOB)} - \text{비원산지 재료가격}}{\text{본선인도가격(FOB)}} \times 100\%$$

(2) 공제법

$$\text{역내부가가치비율} = \frac{\text{원산지 재료가격} + \text{직접인건비} + \text{직접영업비용} + \text{이윤} + \text{기타 비용}}{\text{본선인도가격(FOB)}} \times 100\%$$

원산지 재료가격이라 함은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산지 재료와 부분품의 가격을 말한다.

직접 인건비는 급여, 임금 및 기타 직원의 복리비용을 포함한다.

직접 영업비용의 원가는 경영하는데 필요한 총비용을 말한다.

비원산지 재료가격이란 비원산지 재의 수입 원가, 목적지 항구 또는 장소까지 운송하는 운임 및 보험료를 말하며, 원산지가 명확하지 않은 재료의 가격을 포함한다. 비원산지 재료가 하나의 회원국의 국내에서 획득된 경우에는 그 가격은 반드시 해당 회원국에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확정 가능한 실제 지불하였거나 또는 지불해야 하는 가격이 되어야 한다.

다음의 비용은 비원산지 재료가격에서 공제할 수 있다.

- (1) 비원산지 재료를 생산업체까지 운송하는 운임, 보험료, 포장비 및 그 과정에서 발생한 기타 운송 관련 비용
- (2) 면제, 반환되지 않거나 또는 기타 방식으로 환급되는 관세, 기타 조세 및 통관 대리 비용
- (3) 폐기 재료 및 부산물의 회수 가격을 공제한 후의 폐기물 및 배출 원가

이 방법에서 규정한 물품의 가격은 반드시 'WTO 관세평가협정'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 각 항목의 원가는 반드시 생산 물품의 회원국이 적용하는 공인회계준칙에 따라 기록하고 보존해야 한다.

제8조 '협정' 하에서 세번변경기준의 요구사항을 적용하여 원산지 자격을 확정하는 물품은 만일 이 방법 제5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사정이 있는 경우, 그러나 생산 과정에서 사용한 세번변경기준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비원산지 재료가 아래의 조건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원산지 물품으로 간주한다.

- (1) 상술한 모든 비원산지 재료가 이 방법 제7조에 따라 확정된 가격이 해당 물품의 본선인도가격(FOB)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 (2) 물품이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53류에서 제63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술한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중량이 해당 물품의 총중량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제9조 아래의 포장재와 용기는 물품의 원산지 자격의 확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1) 운송기간 중 물품의 보호를 위하여 사용되는 포장재 및 용기

(2) 물품과 동일하게 분류되는 판매용 포장재 및 용기

물품이 역내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여 원산지 자격을 확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역내부가가치비율을 계산할 때에 물품과 동일하게 분류되는 판매용 포장재 및 용기의 가치는 반드시 원산지 재료 또는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으로 포함하여 계산해야 한다.

제10조 물품과 함께 수입신고하고, '세척' 중의 하나로 함께 분류되고, 동시에 별도로 단독으로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부속품, 예비 부품, 공구 및 설명서류는 물품의 원산지 자격을 확정하는데 영향을 주지 않는다.

물품이 역내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여 원산지 자격을 확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역내부가가치비율을 계산할 때에 전항에서 열거된 모든 부속품, 예비 부품, 공구 및 설명서류의 가격은 반드시 원산지 재료 또는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에 포함하여 계산해야 한다.

부속품, 예비 부품, 공구 및 설명서류의 수량과 가격은 반드시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제11조 물품의 생산, 시험 또는 검사 과정에서 사용되고, 동시에 해당 물품의 구성성분을 구성하지 않는 아래의 재료는 반드시 원산지 재료로 간주한다.

(1) 연료 및 에너지

(2) 공구, 금형 및 모형

(3) 설비 및 건축물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예비 부품 및 자재

(4) 생산 중에 사용하거나, 운행 설비에 사용되거나 또는 공장 건축물을 유지하기 위한 윤활유, 윤활제, 합성 재료 및 기타 재료

(5) 장갑, 안경, 신발, 의류, 안전 설비 및 용품

(6) 물품의 시험 또는 검사하기 위해 사용하는 설비, 장치 및 용품

(7) 촉매제 및 용제

(8) 합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생산에 사용되는 기타 물질

제12조 상업적 목적으로 상호 교환할 수 있고, 또한 성질이 사실상 서로 동일한 물품 또는 재료에 대해서는 반드시 아래의 방법 중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그의 원산지 자격을 확정해야 한다.

(1) 물리적 분리

(2) 수출 회원국의 공인회계준칙의 승인을 받고 동시에 모든 회계 년도 내에서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재고관리 방법

제13조 원산지 자격을 확정할 때에는 물품의 표준 단위는 반드시 '상품명 및 품목분류번호 조화제도 협약'에 따라 물품의 품목 분류 시 확정하는 기본 단위와 일치해야 한다.

동일한 횡수로 운송되는 물품 중에 여러 가지로 품목분류가 가능하고, 동일한 품목분류번호에 열거된 서로 동일할 물품은 반드시 구분하여 각각의 물품의 원산지 자격을 확정해야 한다.

제14조 원산지 자격을 갖추고 동시에 수입 회원국의 '특별물품 목록'에 열거된 물품의 경우, 만일 수출 회원국의 부가가치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협정' 하에서의 원산지 국가(지역)(이하 '원산지 국가(지역)'이라 한다)이 수출 회원국이 된다.

전항에서 규정한 수출 회원국의 부가가치비율은 반드시 이 방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해야 하고, 기타 회원국에서 생산된 재료는 일률적으로 비원산지 재료로 간주한다.

각 회원국의 '특별물품 목록'은 해관총서에서 별도로 공고한다.

제15조 원산 자격을 갖추었으나, 수입 회원국의 '특별물품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물품은 다음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원산지 국가(지역)이 수출 회원국이 된다.

(1) 물품이 수출 회원국에서 완전히 획득되거나 생산된 경우

(2) 물품이 완전히 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생산되었으며, 동시에 수출 회원국에서 이 방법 제5조의 규정 이외의 가공 또는 처리를 거친 경우

(3) 물품이 수출 회원국에서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생산되었고, 동시에 품목별 특별원산지기준의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제16조는 원산지 자격을 갖췄지만, 이 방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 국가(지역)를 알 수 없는 물품은 그것의 원산지 국가(지역)는 해당 물품이 수출 회원국에서 생산에 제공한 모든 원재료 가격 중에서 최고의 구성비를 점유하는 회원국이 된다.

제17조 수출 회원국에서 운송하여 수입 회원국에 도착한 원산지 물품은 아래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부합하는 경우에 물품이 그 원산지 자격을 유지한다.

- (1) 다른 국가(지역)를 경유하지 않았을 경우
- (2) 다른 국가(지역)를 경유하였으나, 하역, 저장 등 물류 활동 및 기타 물품의 운송 또는 물품의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작업을 제외하고는 화물이 그 국가(지역) 내에서 어떠한 기타의 처리를 하지 않았으며, 또한 이들 국가(지역) 세관의 감독관리하에 있는 경우

제3장 원산지 증명서

제18조 협정 하에서 원산지 증명서에 원산지 증명서와 원산지 성명서를 포함한다.

원산지 증명서는 반드시 서면 형식의 영문으로 작성해야 하며, 구체적인 양식은 해관총서에서 별도로 공고한다.

제19조 원산지 증명서는 다음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 (1) 유일한 증명서 번호를 갖출 것
- (2) 화물이 원산 자격을 갖추었다는 근거를 명확히 표시할 것
- (3) 수출 회원국의 발행기관에서 발행한 경우에는 해당 발행기관의 권한 있는 서명과 인장을 갖출 것

원산지 증명서는 반드시 화물의 운송 적재(선적) 전에 발급해야 한다. 과실 또는 기타 합리적인 사유로 인해 운송 적재(선적) 후에 발급한 경우에는 반드시 “ISSUED RETROACTIVELY”(재발급)라는 글자를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원산지 증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정정하는 경우에는 정정기관은 반드시 수출 회원국의 원산지 증명서 발행기관의 권한 있는 서명과 인장이 있어야 한다.

제20조 인증된 원산지 증명서 사본은 반드시 원산지 증명서 원본과 동일한 원산지 증명서 번호와 발급 일자를 가져야 하며, 동시에 “CERTIFIED TRUE COPY”(인증된 실제 사본)이라는 글자를 명확하게 표시해야 하고, 원산지 증명서 원본으로 간주한다.

제21조 원산지 성명서는 반드시 인증수출자가 발급해야 하고, 동시에 다음의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 (1) 인증수출자의 고유 일련번호를 가지고 있을 것
- (2) 고유 성명서 번호를 가지고 있을 것
- (3) 발급자의 성명과 서명을 갖추고 있을 것
- (4) 발급한 원산지 성명서의 발급일자를 명확하게 표시할 것
- (5) 수출 회원국이 이미 기타 회원국에 대해 인증수출자 정보를 통보하였을 것

제22조 하나의 회원국에서 증계 또는 재수출하는 조치를 거치지 않은 원산지 물품에 대해서는 해당 회원국의 발행기관과 인증수출자는 최초 원산지증명서 원본에 근거하여 연결 원산지 증명서를 발행하거나 작성할 수 있고, 연결 원산지증명서를 사용하는 물품의 원산지 자격과 원산지 국가(지역)은 변화가 없다. 전항에서 설명한 조치에는 하역, 저장, 분할 운송 등 물류 조작, 재포장, 수입 회원국의 법률적 요구에 따라 부가되거나, 기타 물품의 운송 또는 물품을 양호한 태로 보존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필요한 조작은 포함하지 않는다.

제23조 연결 원산지 증명서는 반드시 이 방법의 원산지 증명서와 관련된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동시에 다음의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 (1) 최초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 또는 발급일자, 일련번호 및 기타 관련 정보를 포함할 것
- (2) 물류 분할을 통해 수출되는 물품은 반드시 분할 후의 수량을 기재해야 하고, 동시에 분할 후 수출 물품의 총수량과 최초 원산지 증명서에 기재된 물품의 수량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24조 원산지증명서는 발급 또는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유효하다.

연결 원산지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최초 원산지 증명서의 유효기간과 일치한다.

제4장 수입물품의 통관 시 특혜 향유 절차

제25조 원산지 자격을 갖춘 수입 물품은 그 원산지 국가(지역)에 따라 상응하는 '협정' 하에서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26조 수입 물품의 수화인 또는 그 대리인은 수입 원산지 물품에 대해 '협정' 하에서의 세율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관총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해야 하고, 동시에 다음의 증명서류에 근거하여 처리한다.

- (1) 유효한 '협정' 하에서의 원산지 증명서
- (2) 물품의 상업송장
- (3) 물품의 전 과정 운송증명서

물품이 기타 국가(지역)를 거쳐서 중국 국내로 운송되는 경우에도 여전히 반드시 물품이 이 방법 제17조의 규정에 부합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기타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27조 '협정' 하에서의 원산지 증명서에 물품의 원산지 국가(지역)가 표시되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수입 물품의 수화인 또는 그 대리인은 그 다른 회원국이 동일한 원산지 물품에 대해 실시하는 '협정' 하에서의 최고세율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수입 물품의 수화인 또는 그 대리인은 물품수취인 또는 그 대리인 해당 물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제공한 원산지 재료의 모든 회원국을 증명할 수 있을 경우에도 역시 상술한 회원국이 동일한 원산지 물품에 대해 실시하는 '협정' 하에서의 최고세율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제28조 동일한 회 차에 수입하는 원산지 물품의 과세가격이 미화 2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입 물품의 수화인 또는 그 대리인은 '협정' 하에서의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서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이 방법의 규정을 피하기 위하여 분할 신고하는 수입 물품은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29조 원산지 국가(지역)이 회원국이 되는 수입 물품은 수입 물품 수화인 또는 그 대리인이 세관의 통관 절차를 완료하기 전일까지 유효한 원산지 증명서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반드시 세관의 통관 절차를 완료하기 전에 곧바로 해당 물품이 원산지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세관에 보충신고 해야 하며, 다만, 해관총서가 다르게 규정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수입 물품의 수화인 또는 대리 이 전항의 규정에 따라 곧바로 수입 물품이 원산지 자격을 갖추었다는 것을 세관에 보충신고를 진행하고, 동시에 세관 담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세관은 반드시 법에 따라 수입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담보를 제공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사전 반출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이미 물품에 대해 부담할 수 있는 최고세액의 총액에 상당하는 세관 담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이 조항의 세관담보 제공과 관련된 규정에 부합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30조 원산지 증명서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인하고, 수입 물품의 원산지 자격과 원산지 국가(지역)를 심사하기 위하여, 세관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원산지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 (1) 수입 물품의 수화인 또는 그 대리인, 해외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대해 보충 정보의 제공을 요구한다.
- (2) 수출 회원국의 원산지 증명서 발급기관 또는 주관 기관에 대해 보충 정보의 제공을 요구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세관은 수출 회원국의 동의를 거친 후 해외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대해 현지 검증을 실시할 수 있고, 수출 회원국과 협의하여 기타의 방법으로 검증을 진행할 수 있다.

검증기간 동안에 세관은 수입 물품의 수화인 또는 그 대리인 이 담보를 제공하고 반출을 신청하는 것

을 수용할 수 있으며, 다만, 법률의 규정에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세관은 반드시 수입 물품의 수화인(또는 그 대리인), 해외 수출자(또는 생산자) 또는 수출 회원국의 발행기관(또는 주관 기관)에 검증 결과와 이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31조 다음에 열거된 사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세관은 반드시 법에 따라 담보재산과 권리 반환 절차를 처리해야 한다.

- (1) 수입 물품의 수화인 또는 그 대리인이 이미 이 방법의 규정에 따라 세관에 보충 신고를 진행하고, 또한 '협정' 하에서의 유효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 (2) 세관의 검증 결과 물품의 원산지 자격과 원산지 국가(지역)를 충분히 인정하는 경우

제32조 다음에 열거된 사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입 물품은 '협정' 하에서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 (1) 수입 물품의 수화인 또는 그 대리인이 물품의 세관 통관 절차를 완료하기 전까지 이 방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협정' 하에서의 세율 적용 신청을 하지 않고, 또는 이 방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보충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2) 물품이 원산지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 (3) 원산지 증명서가 이 방법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4) 원산지 증명서에 기재된 물품이 실제 수입 물품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 (5) 수입 물품의 수화인 또는 그 대리인, 해외 수출자 또는 생산자, 수출 회원국의 발행기관 또는 주 관기관으로부터 원산지 검증을 요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세관이 검증 결과를 회신 받지 못한 경우, 또는 회신 결과가 원산지 증명서의 진실성, 물품의 원산지 자격 또는 원산지 국가(지역)를 확정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 (6) 수출 회원국 또는 해외 수출자, 생산자로부터 현지 검증 요청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세관이 회신을 받지 못하였거나 또는 현지 검증 요구가 거절 된 경우
- (7) 수입 물품의 수화인 또는 그 대리인이 기타 이 방법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존재하는 경우

제5장 수출 물품 원산지증명서 발행절차

제33조 수출 물품 송화인 및 그 대리인, 이미 원산지 기업 사전등록을 진행한 국내 생산자 및 그 대리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우리나라의 발행기관에 원산지증명서 발행을 신청할 수 있다.

제34조 신청인은 반드시 물품을 적재 운송(선적) 하기 전에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해야 하며, 동시에 물품의 원산지 자격, 원산지 국가(지역)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인은 반드시 그가 교부한 서류의 진실성, 완전성, 정확성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신청인이 연결 원산지 증명서의 발행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역시 반드시 최초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제35조 원산지 증명서 발행기관은 반드시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고, 이 방법의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다. 이 방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서를 발행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원산지 증명서 발행기관이 심사를 진행할 때에는 다음의 방을 통해서 물품의 원산지 자격과 원산지 국가(지역)를 심사할 수 있다.

- (1) 신청인에게 물품의 원산지 자격, 원산지 국가(지역)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추가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 (2) 수출 물품의 생산 설비, 가공 공정, 원재료 및 부분품의 원산지 자격, 원산지 국가(지역) 및 수출 물품의 설명서, 포장, 상표, 마크 및 원산지 표시를 실제 현장 심사한다.
- (3) 관련 계약서, 송품장, 장부 및 기타 관련 자료를 열람하고 복사한다.

제36조 신청인은 과실 혹은 기타 합리적인 사유로 인하여 적재 운송(선적) 전에 발행기관에 원산지 증명서 발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물품을 선적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발행기관에 보충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37조 원산지 증명서에 기재된 정보에 오류가 있거나 또는 정보를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은 원산지 증명서를 발행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원산지 증명서 원본에 근거하여 최초 발행기관에서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증명서 발행기관은 다음의 방법에 따라 정정할 수 있다.

- (1) 원산지 증명서를 정정하고, 동시에 정정된 장소에 서명 및 날인한다.
- (2) 원산지 증명서를 새로 발급하고, 동시에 최초 원산지 증명서를 폐기한다.

제38조 이미 발급된 원산지증서의 원본을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 신청인은 해당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최초 발급기관에 인정된 원산지 증명서의 사본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39조 인증수출자는 이 방법의 규정에 따라 그가 수출 또는 생산하는 원산지 물품에 대해 원산지 성명서를 발행할 수 있다. 세관은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의 인증수출자 관리방법》에 근거하여 인증수출자에 대해 관리를 실시한다.

제40조 수입 회원국의 청구에 대응하여, 세관은 다음의 방법에 따라 수출 물품의 원산지 상황에 대해 검증을 진행할 수 있다.

- (1) 신청인에게 물품의 원산지 자격, 원산지 국가(지역)에 관한 정보 및 자료를 추가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 (2) 수출 물품의 생산 설비, 가공 공정, 원재료 및 부분품의 원산지 자격, 원산지 국가(지역) 및 수출 물품의 포장, 상표, 마크 및 원산지 표시에 대한 실제 현지 검증을 실시한다.
- (3) 관련 계약서, 송품장, 장부 및 기타 관련 자료를 열람하고 복사한다.

제6장 부칙

제41조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은 수출 물품 송화인 및 생산자와 원산지 성명서를 발행한 인증수출자는 반드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 받거나 또는 발행한 날로부터 3년간 물품의 원산지 자격과 원산지 국가(지역)를 충분히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협정’ 하에 따른 세율을 적용을 받는 수입 물품의 수화인은 반드시 물품의 세관 통관 절차가 완료된 날로부터 3년간 물품의 원산지 자격과 원산지 국가(지역)를 충분히 증명할 수 있는 문서와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원산지증명서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원산지증명서의 신청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상술한 문서 기록은 전자 또는 종이 형태로 보관할 수 있다.

제42조 이 방법에서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수출 회원국, 수입 회원국이란 각각 물품을 세관 신고하는 수출 또는 수입하는 때에 소재하는 회원국을 말한다.
- (2) 생산이란 물품을 획득하는 방법으로서, 물품의 재배, 채굴, 수확, 경작, 양육, 번식, 추출, 수집, 채집, 포획, 어획, 수산 양식, 덧사냥, 수렵, 제조, 가공 또는 조립을 포함한다.
- (3) 원산지 재료라 함은 이 방법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 자격을 갖춘 재료를 말한다.
- (4) 비원산지 재료라 함은 이 방법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재료를 말한다.
- (5) 권한 있는 개발이란 회원국이 연해국과의 협정에 따라 또는 배분 계획에 따라 연해국의 어업 자원을 획득할 권리를 말한다.
- (6) 회원국 가공선박 및 회원국 선박이라 함은 각각 회원국에 등기등록되고 동시에 해당 회원국의 국기를 게양한 가공선박 및 선박을 말한다. 다만, 호주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작업하는 어떠한 가공선박 또는 선박은 만일 '1991년 어업관리법(연방)'에 해당하거나 또는 어떠한 후속 입법이 '호주선박'에 대한 정의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구분하여 호주의 가공선박 또는 선박으로 간주한다.
- (7) 'WTO 평가 협정'이라 함은 《1994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7조의 실시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 (8) 공인된 회계준칙이라 함은 하나의 회원국에서 보편적으로 수용하거나, 공식적으로 인가된 소득, 비용, 원가, 자산과 부채, 정보 공시 및 재무제표 작성에 관한 회계준칙으로서,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광범위한 지도원칙 및 상세한 기준, 관행, 절차를 포함한다.
- (9) 원산지 증명서 발행기관은 회원국에서 지정하거나 원산지 증명서를 발행할 권한을 부여 받고, 동시에 '협정'의 규정에 따라 다른 회원국에 통보된 기관을 말한다. 직속세관, 예측세관, 중국국제

- 무역촉진위원회 및 그의 지방 사무소가 우리나라의 원산지 증명서의 발행기관이다.
- (10) 주관 기관이란 회원국이 지정하고, 또한 이미 '협정'의 규정에 따라 다른 회원국에 통보된 하나 또는 다수의 정부기관을 말한다.

제43조 이 방법은 해관총서에서 해석의 책임을 부담한다.

제44조 이 방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海关总署第255号令

关于公布《中华人民共和国海关〈区域全面经济伙伴关系协定〉项下进出口货物原产地管理办法》的令
中华人民共和国海关《区域全面经济伙伴关系协定》项下进出口货物原产地管理办法

(2021年11月23日海关总署令第255号公布 自2022年1月1日起施行)

第一章 总则

第一条 为了正确确定《区域全面经济伙伴关系协定》(以下简称《协定》)项下进出口货物原产地,促进我国与《协定》其他成员方的经贸往来,根据《中华人民共和国海关法》《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货物原产地条例》和《协定》的规定,制定本办法。

第二条 本办法适用于中华人民共和国与《协定》其他成员方之间的《协定》项下进出口货物原产地管理。

本办法所称成员方,是指已实施《协定》的国家(地区),具体清单由海关总署另行公布。

第二章 原产地规则

第三条 符合下列条件之一的货物,是《协定》项下原产货物(以下简称原产货物),具备《协定》项下原产资格(以下简称原产资格):

- (一)在一成员方完全获得或者生产;
- (二)在一成员方完全使用原产材料生产;
- (三)在一成员方使用非原产材料生产,但符合产品特定原产地规则规定的税则归类改变、区域价值成分、制造加工程序或者其他要求。

产品特定原产地规则由海关总署另行公告。

第四条 本办法第三条所称在一成员方完全获得或者生产的货物是指:

- (一)在该成员方种植、收获、采摘或者收集的植物或者植物产品;
- (二)在该成员方出生并饲养的活动物;
- (三)从该成员方饲养的活动物获得的货物;
- (四)在该成员方通过狩猎、诱捕、捕捞、耕种、水产养殖、收集或者捕捉直接获得的货物;
- (五)从该成员方领土、领水、海床或者海床底土提取或者得到的,但未包括在本条第一至第四项的矿物质及其他天然资源;
- (六)由该成员方船只依照国际法规定,从公海或者该成员方有权开发的专属经济区捕捞的海洋渔获产品和其他海洋生物;
- (七)由该成员方或者该成员方的人依照国际法规定从该成员方领海以外的水域、海床或者海床底土获得的未包括在本条第六项的货物;

(八)在该成员方加工船上完全使用本条第六项或者第七项所述的货物加工或者制造的货物;

(九)在该成员方生产或者消费中产生的,仅用于废弃处置或者原材料回收利用的废碎料;

(十)在该成员方收集的,仅用于废弃处置或者原材料回收利用的旧货物;

(十一)在该成员方仅使用本条第一至第十项所列货物或者其衍生物获得或者生产的货物。

第五条 符合本办法第三条第一款第三项规定的货物,如在生产中使用的非原产材料在成员方仅经过下列一项或者多项加工或者处理,该货物仍不具备原产资格:

(一)为确保货物在运输或者储存期间保持良好状态进行的保存操作;

(二)为货物运输或者销售进行的包装或者展示;

(三)简单的加工,包括过滤、筛选、挑选、分类、磨锐、切割、纵切、研磨、弯曲、卷绕或者展开;

(四)在货物或者其包装上粘贴或者印刷标志、标签、标识以及其他类似的用于区别的标记;

(五)仅用水或者其他物质稀释,未实质改变货物的特性;

(六)将产品拆成零部件;

(七)屠宰动物;

(八)简单的上漆和磨光;

(九) 简单的去皮、去核或者去壳；

(十) 对产品进行简单混合，无论是否为不同种类的产品。

前款规定的“简单”，是指不需要专门技能，并且不需要专门生产、装配机械、仪器或者设备的情形。

第六条 在一成员方获得或者生产的原产货物或者原产材料，在另一成员方用于生产时，应当视为另一成员方的原产材料。

第七条 本办法第三条规定的区域价值成分应当按照下列公式之一计算：

(一) 扣减公式

区域价值成分 = (货物离岸价格 - 非原产材料价格) ÷ 货物离岸价格 × 100%

(二) 累加公式

区域价值成分 = (原产材料价格 + 直接人工成本 + 直接经营费用成本 + 利润 + 其他成本) ÷ 货物离岸价格 × 100%

货物离岸价格

原产材料价格，是指用于生产货物的原产材料和零部件的价格；

直接人工成本包括工资、薪酬和其他员工福利；

直接经营费用成本是指经营的总体费用；

非原产材料价格，是指非原产材料的进口成本、运至目的港口或者地点的运费和保险费，包括原产地不明材料的价格。非原产材料在一成员方境内获得时，其价格应当为在该成员方最早可确定的实付或者应付价格。

以下费用可以从非原产材料价格中扣除：

(一) 将非原产材料运至生产商的运费、保险费、包装费，以及在此过程中产生的其他运输相关费用；

(二) 未被免除、返还或者以其他方式退还的关税、其他税收和代理报关费；

(三) 扣除废料及副产品回收价格后的废品和排放成本。

本办法规定的货物价格应当参照《WTO 估价协定》计算。各项成本应当依照生产货物的成员方适用的公认会计准则记录和保存。

第八条 适用《协定》项下税则归类改变要求确定原产资格的货物，如不属于本办法第五条规定的情形，且生产过程中使用的不满足税则归类改变要求的非原产材料符合下列条件之一，应当视为原产货物：

(一) 上述全部非原产材料按照本办法第七条确定的价格不超过该货物离岸价格的百分之十；

(二) 货物归入《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税则》（以下简称《税则》）第五十章至第六十三章的，上述全部非原产材料的重量不超过该货物总重量的百分之十。

第九条 下列包装材料和容器不影响货物原产资格的确定：

(一) 运输期间用于保护货物的包装材料和容器；

(二) 与货物一并归类的零售用包装材料和容器。

货物适用区域价值成分标准确定原产资格的，在计算货物的区域价值成分时，与货物一并归类的零售用包装材料和容器的价格应当纳入原产材料或者非原产材料的价格予以计算。

第十条 与货物一并申报进口，在《税则》中一并归类并且不单独开具发票的附件、备件、工具和说明材料不影响货物原产资格的确定。

货物适用区域价值成分标准确定原产资格的，在计算货物的区域价值成分时，前款所列附件、备件、工具和说明材料的价格应当纳入原产材料或者非原产材料的价格予以计算。

附件、备件、工具和说明材料的数量与价格应当在合理范围之内。

第十一条 在货物生产、测试或者检验过程中使用且本身不构成该货物组成成分的下列物料，应当视为原产材料：

(一) 燃料及能源；

(二) 工具、模具及型模；

(三) 用于维护设备和建筑的备件及材料；

(四) 在生产中使用或者用于运行设备和维护厂房建筑物的润滑剂、油（滑）脂、合成材料及其他材料；

(五) 手套、眼镜、鞋靴、衣服、安全设备及用品；

(六) 用于测试或者检验货物的设备、装置及用品；

(七) 催化剂及溶剂；

(八) 能合理证明用于生产的其他物料。

第十二条 对于出于商业目的可相互替换且性质实质相同的货物或者材料，应当通过下列方法之一区分后分别确定其原产资格：

(一) 物理分离；

(二) 出口成员方公认会计准则承认并在整个会计年度内连续使用的库存管理方法。

第十三条 确定货物原产资格时，货物的标准单元应当与根据《商品名称及编码协调制度公约》确定商品归类时的基本单位一致。

同一批运输货物中包括多个可归类在同一税则号列下的相同商品，应当分别确定每个商品的原产资格。

第十四条 具备原产资格并且列入进口成员方《特别货物清单》的货物，如出口成员方价值成分不低于百分之二十，其《协定》项下原产国（地区）（以下简称原产国（地区））为出口成员方。

前款规定的出口成员方价值成分应当按照本办法第七条规定计算，但其他成员方生产的材料一律视为非原产材料。

各成员方《特别货物清单》由海关总署另行公告。

第十五条 具备原产资格但未列入进口成员方《特别货物清单》的货物，符合下列条件之一的，其原产国（地区）为出口成员方：

- （一）货物在出口成员方完全获得或者生产；
- （二）货物完全使用原产材料生产，并且在出口成员方经过了本办法第五条规定以外的加工或者处理；
- （三）货物在出口成员方使用非原产材料生产，并且符合产品特定原产地规则的规定。

第十六条 具备原产资格，但根据本办法第十四条、第十五条规定无法确定原产国（地区）的货物，其原产国（地区）是为该货物在出口成员方的生产提供的全部原产材料价格占比最高的成员方。

第十七条 从出口成员方运输至进口成员方的原产货物，符合下列条件之一的，货物保有其原产资格：

- （一）未途经其他国家（地区）；
- （二）途经其他国家（地区），但除装卸、储存等物流活动、其他为运输货物或者保持货物良好状态的必要操作外，货物在其境内未经任何其他处理，并且处于这些国家（地区）海关的监管之下。

第三章 原产地证明

第十八条 《协定》项下原产地证明包括原产地证书和原产地声明。

原产地证明应当采用书面形式以英文填制，具体格式由海关总署另行公告。

第十九条 原产地证书应当符合下列条件：

- （一）具有唯一的证书编号；
- （二）注明货物具备原产资格的依据；
- （三）由出口成员方的签证机构签发，具有该签证机构的授权签名和印章。

原产地证书应当在货物装运前签发；由于过失或者其他合理原因在装运后签发的，应当注明“ISSUED RETROACTIVELY”（补发）字样。

原产地证书所载内容有更正的，更正处应当有出口成员方签证机构的授权签名和印章。

第二十条 经认证的原产地证书副本应当具有与原产地证书正本相同的原产地证书编号和签发日期，并且注明“CERTIFIED TRUE COPY”（经认证的真实副本）字样，视为原产地证书正本。

第二十一条 原产地声明应当由经核准出口商开具，并且符合以下条件：

- （一）具有该经核准出口商的唯一编号；
- （二）具有唯一的声明编号；
- （三）具有开具者的姓名和签名；
- （四）注明开具原产地声明的日期；
- （五）出口成员方已向其他成员方通报该经核准出口商信息。

第二十二条 对于在一成员方中转或者再次出口的未经处理的原产货物，该成员方的签证机构、经核准出口商可以依据初始原产地证明正本签发或者开具背对背原产地证明，用于证明货物的原产资格以及原产国（地区）未发生变化。

前款所述的处理不包括装卸、储存、拆分运输等物流操作、重新包装、根据进口成员方法律要求贴标以及其他为运输货物或者保持货物良好状态所进行的必要操作。

第二十三条 背对背原产地证明应当符合本办法对原产地证明的有关规定，并且符合以下条件：

- （一）包含初始原产地证明的签发或者开具日期、编号及其他相关信息；
- （二）经物流拆分出口的货物应注明拆分后的数量，并且拆分后出口货物的数量总和不超过初始原产地证明所载的货物数量。

第二十四条 原产地证明自签发或者开具之日起1年内有效。

背对背原产地证明的有效期与初始原产地证明的有效期一致。

第四章 进口货物通关享惠程序

第二十五条 具备原产资格的进口货物，可以依据其原产国（地区）适用相应的《协定》项下税率。

第二十六条 进口货物收货人或者其代理人为进口原产货物申请适用《协定》项下税率的，应当按照海关总署有关规定申报，并且凭以下单证办理：

- (一) 有效的《协定》项下原产地证明；
- (二) 货物的商业发票；
- (三) 货物的全程运输单证。

货物经过其他国家(地区)运输至中国境内的,还应当提交证明货物符合本办法第十七条规定的其他证明文件。

第二十七条 《协定》项下原产地证明上无论是否标明货物原产国(地区),进口货物收货人或者其代理人可以申请适用对其他成员方相同原产货物实施的《协定》项下最高税率;在进口货物收货人或者其代理人能够证明为生产该货物提供原产材料的所有成员方时,也可以申请适用对上述成员方相同原产货物实施的《协定》项下最高税率。

第二十八条 同一批次进口原产货物完税价格不超过 200 美元的,进口货物收货人或者其代理人申请适用《协定》项下税率时可以免于提交原产地证明。

为规避本办法规定拆分申报进口货物的,不适用前款规定。

第二十九条 原产国(地区)申报为成员方的进口货物,进口货物收货人或者其代理人在办结海关手续前未取得有效原产地证明的,应当在办结海关手续前就该货物是否具备原产资格向海关进行补充申报,但海关总署另有规定的除外。

进口货物收货人或者其代理人依照前款规定就进口货物具备原产资格向海关进行补充申报并且提供税款担保的,海关应当依法办理进口手续。依照法律、行政法规规定不得办理担保的情形除外。因提前放行等原因已经提交了与货物可能承担的最高税款总额相当的税款担保的,视为符合本款关于提供税款担保的规定。

第三十条 为确定原产地证明的真实性和准确性,核实进口货物的原产资格和原产国(地区),海关可以通过以下方式开展原产地核查:

- (一) 要求进口货物收货人或者其代理人、境外出口商或者生产商提供补充信息;
- (二) 要求出口成员方签证机构或者主管部门提供补充信息。

必要时,海关可以经出口成员方同意后对境外出口商或者生产商进行实地核查,也可以通过与出口成员方商定的其他方式开展核查。

核查期间,海关可以应进口货物收货人或者其代理人申请办理担保放行,但法律法规另有规定的除外。

海关应当向进口货物收货人(或者其代理人)、境外出口商(或者生产商)或者出口成员方签证机构(或者主管部门)书面通报核查结果和理由。

第三十一条 具有下列情形之一的,海关应当依法办理担保财产、权利退还手续:

(一) 进口货物收货人或者其代理人已经按照本办法规定向海关进行补充申报并且提交了有效《协定》项下原产地证明的;

(二) 海关核查结果足以认定货物原产资格和原产国(地区)的。

第三十二条 具有下列情形之一的,进口货物不适用《协定》项下税率:

(一) 进口货物收货人或者其代理人在货物办结海关手续前未按照本办法第二十六条规定申请适用《协定》项下税率,也未按照本办法第二十九条规定补充申报的;

(二) 货物不具备原产资格的;

(三) 原产地证明不符合本办法规定的;

(四) 原产地证明所列货物与实际进口货物不符的;

(五) 自进口货物收货人或者其代理人、境外出口商或者生产商、出口成员方签证机构或者主管部门收到原产地核查要求之日起 90 日内,海关未收到核查反馈,或者反馈结果不足以确定原产地证明真实性、货物原产资格或者原产国(地区)的;

(六) 自出口成员方或者境外出口商、生产商收到实地核查要求之日起 30 日内,海关未收到回复,或者实地核查要求被拒绝的;

(七) 进口货物收货人或者其代理人存在其他违反本办法有关规定的行为的。

第五章 出口货物签证程序

第三十三条 出口货物发货人及其代理人、已进行原产地企业备案的境内生产商及其代理人(以下统称申请人)可以向我国签证机构申请签发原产地证书。

第三十四条 申请人应当在货物装运前申请签发原产地证书,同时提交证明货物原产资格、原产国(地区)的材料。申请人应当对其提交材料的真实性、完整性、准确性负责。

申请人申请签发背对背原产地证书的,还应当提交初始原产地证明正本。

第三十五条 签证机构应当对申请人提交的材料进行审核,符合本办法规定的,签发原产地证书;不符合本办法规定的,决定不予签发原产地证书,书面通知申请人并且说明理由。

签证机构进行审核时,可以通过以下方式核实货物的原产资格和原产国(地区):

- (一) 要求申请人补充提供与货物原产资格、原产国(地区)相关的信息和资料;

(二) 实地核实出口货物的生产设备、加工工序、原材料及零部件的原产资格、原产国(地区)以及出口货物说明书、包装、商标、唛头和原产地标记;

(三) 查阅、复制有关合同、发票、账簿以及其他相关资料。

第三十六条 申请人由于过失或者其他合理原因,未能在装运前向签证机构申请签发原产地证书的,可以自货物装运之日起1年内向签证机构申请补发。

第三十七条 原产地证书所载信息有误或者需要补充信息的,申请人可以自原产地证书签发之日起1年内,凭原产地证书正本向原签证机构申请更正。签证机构可以通过以下方式更正:

(一) 更正原产地证书,并且在更正处签名和盖章;

(二) 签发新的原产地证书,并且作废原原产地证书。

第三十八条 已签发的原产地证书正本遗失或者损毁的,申请人可以自该原产地证书签发之日起1年内,向原签证机构申请签发经认证的原产地证书副本。

第三十九条 经核准出口商可以按照本办法规定对其出口或者生产的原产货物开具原产地声明。

海关按照《中华人民共和国海关经核准出口商管理办法》对经核准出口商实施管理。

第四十条 应进口成员方的请求,海关可以通过以下方式对出口货物的原产地情况进行核查:

(一) 要求申请人补充提供与货物原产资格、原产国(地区)相关的信息和资料;

(二) 实地核实出口货物的生产设备、加工工序、原材料及零部件的原产资格、原产国(地区)以及出口货物说明书、包装、商标、唛头和原产地标记;

(三) 查阅、复制有关合同、发票、账簿以及其他相关资料。

第六章 附则

第四十一条 申领原产地证书的出口货物发货人和生产商、开具原产地声明的经核准出口商应当自原产地证明签发或者开具之日起3年内,保存能够充分证明货物原产资格和原产国(地区)的文件记录。

适用《协定》项下税率进口货物的收货人应当自货物办结海关手续之日起3年内,保存能够充分证明货物原产资格和原产国(地区)的文件记录。

签证机构应当自原产地证书签发之日起3年内,保存原产地证书申请资料。

上述文件记录可以以电子或者纸质形式保存。

第四十二条 本办法下列用语的含义:

(一) 出口成员方、进口成员方,分别是指货物申报出口和进口时所在的成员方;

(二) 生产,是指获得货物的方法,包括货物的种植、开采、收获、耕种、养育、繁殖、提取、收集、采集、捕捞、捕捞、水产养殖、诱捕、狩猎、制造、加工或者装配;

(三) 原产材料,是指根据本办法规定具备原产资格的材料;

(四) 非原产材料,是指根据本办法规定不具备原产资格的材料;

(五) 有权开发,是指成员方依照与沿海国之间的协定或者安排享有获得沿海国渔业资源的权利;

(六) 成员方加工船和成员方船只,分别是指在成员方注册并且有权悬挂该成员方旗帜的加工船和船只;但在澳大利亚专属经济区内作业的任何加工船或者船只,如果符合《1991年渔业管理法(联邦)》或任何后续立法对“澳大利亚船”的定义,应当分别视为澳大利亚加工船或者船只;

(七) 《WTO估价协定》,是指《关于实施1994年关贸总协定第七条的协定》;

(八) 公认会计准则,是指一成员方普遍接受或者官方认可的有关记录收入、费用、成本、资产和负债、信息披露以及编制财务报表的会计准则,包括普遍适用的广泛性指导原则以及详细的标准、惯例和程序;

(九) 签证机构,是指由成员方指定或者授权签发原产地证书,并且已依照《协定》规定向其他成员方通报的机构。直属海关、隶属海关、中国国际贸易促进委员会及其地方分会是我国签证机构;

(十) 主管机构,是指由成员方指定并且已依照《协定》规定向其他成员方通报的一个或者多个政府机构。

第四十三条 本办法由海关总署负责解释。

第四十四条 本办法自2022年1月1日起施行。

11. 인도 무역협정에 따른 세관 원산지관리규칙(비공식 번역)

[인도 관보 제2부 제3조 제(i)항에 게재 예정], 인도 재무부

(재정수입국) 공고, 뉴델리, 2020년 8월 20일, 관세청 공고 81/2020 (비관세)

G.S.R 521 (E).-1962년 관세법(1962년 법률 제52호) 제28DA조와 더불어 제156조에 따라 부여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바, 이에 중앙정부는 다음의 규칙을 제정한다.

1. 약칭, 적용범위 및 시행일.

- (1) 이 규칙의 명칭은 2020년 관세법 규칙(무역협정하의 원산지규정의 집행)으로 한다.
- (2) 이 규칙은 2020년 9월의 21번째 날에 발효한다.
- (3) 이 규칙은 수입자가 무역협정 특혜관세 적용신청을 하는 경우 인도로의 물품 수입에 적용된다.

2. 정의.

- (1) 본 규칙에서 문맥에 따라 달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
- (가) “법”이란 1962년 관세법(1962년 법률 제52호)을 의미한다.
- (나) “특혜관세율”이란 무역협정에 의거해 부과되는 관세율을 의미한다
- (다) “특혜관세대우”란 무역협정에 의거해 인도로 수입되는 물품에 특혜관세율을 허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 (라) “원산지 규정”이란 1975년 관세율법(1975년 법률 제51호) 제5조제(1)항의 무역협정을 위해 고지된 규칙을 의미한다.
- (마) “관세율표”란 무역협정에 의거한 특혜관세율을 명시한 법 제25조제(1)항하에 발표된 공고를 의미한다.
- (바) “검증”이란 원산지증명서의 진실성 또는 그 안에 수록된 정보의 정확성을 각 원산지규정에 규정된 방식으로 검증하는 것을 의미한다.
- (사) “검증 기관”이란 무역협약 하의 검증 요청에 답변하도록 지정된 수출당사국 또는 원산지의 기관을 의미한다.

3. 특혜관세 신청.

- (1) 무역협정하의 특혜관세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수입신고서 제출 시 수입자 또는 그 대리인은 다음을 해야 한다.
 - (가) 수입신고서에 물품이 협정하의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었음을 신고한다.
 - (나) 특혜관세를 신청하는 각 물품에 해당하는 관세율표를 수입신고서에 기재한다.
 - (다) 특혜관세를 신청하는 각 물품을 포함하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다.
 - (라) 수입신고서에 다음의 원산지증명서 세부사항을 기입한다.
 - (i) 원산지증명서 참조 번호
 - (ii) 원산지증명서 발급일
 - (iii) 원산지결정기준
 - (iv) 누적기준 적용 시 표시
 - (v) 제3국에서 원산지증명서(연결 원산지증명서)가 발행되었을 시 표시, 그리고
 - (vi) 물품이 원산지에서 직접 운송되었을 경우 표시
- (2) 이 규칙에 포함된 사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검증 없이 담당공무원에 의해 특혜관세 신청이 배제될 수 있다.
 - (가) 원산지증명서가 불완전하고 원산지 규정에 규정된 서식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 (나) 원산지증명서에 발급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 (다) 원산지증명서가 유효기간 만료 후에 발급된 경우, 또는
 - (라) 원산지증명서가 무역협정하의 특혜관세대우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항목에 대해 발급된 경우

상기 모든 경우 해당 원산지증명서에 “사용할 수 없음”이라고 표시된다.

설명 : 제2항 제(라)호는 물품이 해당하는 관세율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나 원산지증명서에 언급된 품목별 원산지기준이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수입자가 소지해야하는 원산지 관련 정보.

특혜관세를 신청하는 수입자는-

- (가) Form I에 표시된 대로 역내가치비율, 품목별원산지기준 등 원산지 규정 상 원산지결정기준 충족방식을 입증하는 정보를 소지하고, 요청 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다.
- (나) Form I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를 수입신고서 제출일로부터 최소 5년 간 보관하고 그를 요청 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다.
- (다) 상기 정보와 서류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보장하기 위해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인다.

5. 수입자로부터의 자료 요청.

- (1) 통관 절차 도중 또는 이후에 담당 공무원이 각 원산지 규정에 규정된 원산지결정기준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담당 공무원은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경우 신청의 정확성 여부 확인을 위해 제4조에 의거해 정보와 증빙서류를 수입자로부터 요구할 수 있다.
- (2) 정보 또는 문서를 제공할 것을 요청받은 경우, 수입자는 해당정보 또는 문서 요청일로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그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공해야 한다.
- (3) 수령한 정보와 문서를 기반으로 담당공무원이 해당 원산지 규정에 규정된 원산지결정기준이 충족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은 신청을 수락하고 상기 정보와 문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5 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수입자에게 고지한다.
- (4) 수입자가 요청받은 정보와 문서를 규정된 기한 내에 제공하지 못했거나 각 원산지 규정에서 규정하는 원산지결정기준이 충족되었다는 결론을 내리기에 수입자로부터 수령한 정보 또는 문서가 불충분한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제6조에 의거해 본 목적상 임명된 담당 공무원에게 검증 제안서를 전송한다.
- (5) 본 규칙에 포함된 모든 사항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장 또는 관세차장은 다음과 같은 경우 서면으로 기록될 사유로 인해 추가검증 없이 특혜관세신청을 불허할 수 있다.
 - (가) 수입자가 신청을 철회한 경우, 또는
 - (나) 수입자가 제공한 또는 기록상의 정보와 문서가 물품이 해당 원산지 규정에 규정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충분한 증거를 제공하는 경우.

6. 검증 요청.

- (1) 담당 공무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통관 절차 도중 또는 그 후에 검증당국에게 원산지증명서의 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
 - (가) 수출국으로부터 받은 무역협정 상의 직인 및 서명 견본과 비교했을 때 서명 또는 직인이 불일치하는 등의 사유로 원산지증명서의 진정성 또는 진위여부에 대한 의심이 있는 경우
 - (나) 원산지증명서상 명시된 원산지결정기준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할 사유가 있거나 수입국에 의한 특혜관세신청이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할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 (다) 신청된 대로 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실사 차원에서 무작위로 검증이 수행되는 경우. 단, 제(나)호에 의한 검증 요청은 수입자가 제5조의 요청받은 자료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공하지 못했을 경우 또는 수입자가 제공한 자료가 불충분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만 검증 요청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한 요청은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할 수 있는 특정 자료를 검증당국에 요청한다.
- (2) 제(1)항의 수령된 정보가 불완전하거나 특정적이지 않은 경우, 수입자가 신청한 특혜관세가 해당하는 특정 무역협정의 원산지 규정에 규정된 방식으로 검증당국에 현장검증을 위한 추가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 (3) 검증 요청이 본 규칙에 의거해 이루어지는 경우, 검증요청을 보낼시 검증 기관에 다음의 답변 제출시한을 고지해야 한다.
 - (가) 해당 무역협정에 규정된 시한
 - (나) 협정에 그러한 시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요청서가 전달된 날로부터 60일.
- (4) 제1항 제(가)호 또는 제(나)호의 검증이 수입품 통관 절차 도중 실시되는 경우,
 - (가) 그러한 물품의 특혜관세대우는 검증 종결 시까지 유예된다.
 - (나) 검증당국은 검증 요청 시 특혜관세대우 유예의 사유를 고지받아야 한다. 그리고,
 - (다) 수입자의 요청에 따라 담당 공무원은 법 제18조 하에 잠정 부과된 관세와 신청된 특혜관세의 차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는 수입자에 대해 물품에 대한 관세를 잠정 부과하거나 통관할 수 있다.

- (5) 본 규칙 하의 모든 검증 요청은 관세·간접세 위원회가 지정한 담당 세관을 통해 이루어진다.
- (6) 본 규칙에서 요청된 정보가 정해진 시한 내에 수령된 경우, 담당 공무원은 해당 정보 수령일로부터 45일 내에 또는 관세청장 혹은 관세차장이 허가한 대로 연장된 기간 안에 검증을 종결한다. 단, 검증 완결 시한이 각 원산지 규정에 규정된 경우, 담당 공무원이 그러한 시한 내에 검증을 완결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 (7) 담당 공무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추가 검증 없이 특혜관세 신청을 배제할 수 있다.
 - (가) 검증 기관이 정해진 시한 내에 검증 요청에 답변하지 못한 경우
 - (나) 검증 기관이 원산지 규정을 비롯한 본 규칙에 규정된 방식으로 요청받은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또는
 - (다) 검증 기관이 제공한 또는 기록상의 정보 및 문서가 물품이 각 원산지 규정에 규정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제공하는 경우.

7. 동일한 물품.

- (1)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물품이 원산지 규정에 규정된 원산지결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이 결정된 경우, 관세청장 또는 관세차장은 동일한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부터 수입된 동일한 물품에 대해 그러한 결정 이전 혹은 이후에 제출된 특혜관세 신청을 추가 검증 없이 배제할 수 있다.
- (2) 제1항하에 동일 물품에 대한 신청이 배제된 경우, 관세청장 또는 관세차장은,
 - (가) 동일한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동일 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음이 확립된 사례의 세부사항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배제 사유를 수입자에게 고지한다. 그리고,
 - (나) 제조 또는 기타 원산지와 관련된 조건이 무역협약 하의 원산지 규정의 원산지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해 변경되었음이 수령한 정보 및 문서를 기반으로 입증된 경우 향후 효력을 발휘하는 동일 물품에 대한 특혜관세대우를 재개한다.

8. 기타.

- (1) 수입자가 5년 규칙 하에 정해진 기한까지 요청받은 정보 및 문서를 제공하지 못하였을 경우 또는 수입자가 본 규칙 하에 제공된 정보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보장하기 위한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음이 확립된 경우, 본 법 제17조 제2항에 의거해 무역협정의 부정한 활용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은 본 규칙과 법에 의거해 취해지도록 요구되는 모든 기타 행동에도 불구하고 향후 해당 수입자에 의해 특혜 관세신청과 함께 제출되는 모든 수입신고서에 대한 부과를 검증한다. 강제 부과 검증제도는 기록을 기반으로 한 충분한 관리를 통해 수입자가 본 법 제28DA조 하에 요구되는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이고 있음을 입증하면 중단된다.
- (2) 수입자가 무역협정으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사실을 숨기거나 고의로 허위진술을 하거나 판매자 또는 그 외 어느 사람과라도 담합을 한 것이 확립되는 경우, 수입자의 특혜관세 신청은 불허되며 법 또는 당시에 유효한 모든 법 하에 처벌 행위를 받을 법적 책임이 있다.
- (3) 본 규칙의 조항과 원산지 규정의 조항이 상충하는 경우, 상충하는 범위 내에서 원산지 규정의 조항이 우선한다.
- (4) 중앙정부는 관보 공고를 통해 필요한 것으로 간주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본 규칙의 조항을 완화할 수 있다.

Form I

(본 규칙 제4조 참조)

제1조

(서식 작성 요령)

1. 1962년 관세법 제28DA조에 의해, 특혜관세를 신청하는 수입자는 역내가치비율 및 품목별원산지기준 등 무역협정의 원산지 규정에서 규정된 원산지결정기준이 충족되는지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소지하도록 요구된다.
2. 상기 목적상, 본 서식은 수입자가 물품을 수입할 때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기본적 정보의 목록을 수록하고 있다.
3. 법 제28DA조는 제공된 정보와 특혜관세 신청의 정확성과 진실성에 대해 수입자가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원산지결정기준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해 적합한 것으로 간주되는 모든

추가 정보 또한 획득될 수 있다.

4. 필요시 전반적 안내를 위해 서식에 사용된 전문 용어를 아래와 같이 설명하였다. 그러나 각 무역협정은 각각 원산지규정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하에 나열된 각 용어의 구체적 정의는 다를 수 있다. 그러므로 수입자가 1975년 관세율법 제5조 제(1)항과 관련해 고지된 대로 각 원산지 규정 또한 참조할 것을 권장한다.
 - i. 완전하게 획득된 물품(WO): 어떤 비원산지 재료도 결합되지 않고 생산되거나 획득된 물품.
 - ii. 예를 들어 완전하게 획득되지 않은 물품 등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생산된 물품은 물품의 원산지로 인정받고자 하는 국가에서 실질적 변형을 거쳐야 한다. 이 원산지결정기준은 물품에 지정된 기준에 따라 이하의 방법을 조합하여 또는 단독으로 사용하여 충족될 수 있다.
 - (가) 세번변경기준(CTC)
 - (나) 역내 또는 국내가치비율(RVC/DVC), 그리고
 - (다) 공정 기준
 - iii. 가치비율기준: 이 규칙에 의하면 물품이 역내산으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물품의 가치 중 일정한 최소한의 백분율이 한 국가에서 유래해야 한다. 가치 요소와 그러한 부가가치 계산을 위한 공식은 협정마다 다를 수 있다.
 - iv. 세번변경기준(CTC): 이 원산지결정기준의 자격을 갖추려면, 해당 물품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는 최종 물품과 HS 세번이 같아서는 안 된다(원산지 규정에서 요구되는 바에 따라 류 단위, 호 단위, 소호 단위가 될 수 있다). 무역협정의 요건에 따라, 물품은 류 단위(CC), 호 단위(CTH), 소호 단위(CTSH) 변경을 거쳐야 FTA 특혜대우의 자격을 갖추 수 있다. 생산자 그리고/또는 수출자는 최종 물품과 비원산지 재료의 HS 세번을 알아야 한다.
 - v. 공정 기준: 이 규칙에 의하면 역내산으로 간주되고 있는 물품은 원산지에서 특정한 화학적 공정을 거쳐 생산되어야 한다.
 - vi. 일반기준 또는 품목별원산지기준(PSR): 많은 무역협정이 비원산지를 사용해 생산된 모든 물품에 대해 단일 규정을 가지고 있다. 일부 협정에서는 일부 또는 모든 세번에 대해 품목별 원산지기준(PSR)을 가지고 있다. 물품의 세번에 따라, 원산지 신청에 어떤 기준이 사용되어왔는지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 vii. 최소허용수준: 이 조항은 해당하는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비원산지 재료를 고려하지 않도록 하며, 이 때 그러한 재료의 총량이 물품의 가치 또는 무게에서 일정 백분율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 조항은 협정에 있을 수도 있고 있지 아니할 수도 있으며 그 백분율 또한 협정마다 다르다.
 - viii. 누적: “누적”이라는 개념은 특혜무역협정의 당사국이 생산을 공유하고 공동으로 관련 원산지 규정 조항을 준수하도록 해준다. 예를 들어, 무역협정 참여국 생산자는 해당 원산지 규정의 목적상 재료의 원산지 지위를 잃지 않으면서 다른 국가 원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달리 말하면, 누적 또는 누적원산지규정은 한 참여국의 상품이 해당 협정의 다른 참여국에서 상품이 추가 가공되거나 추가될 수 있도록 한다. 그러한 누적이 성격과 범위는 협정에 규정되며 협정마다 다를 수 있다. 누적이 양자누적, 지역누적, 유사누적 등일 수 있다.
 - ix. 간접재료/중립재란 물품의 생산, 시험 또는 조사에 사용되었으나 물리적으로 물품에 결합되지 않는 재료, 또는 물품의 생산과 관련된 건물의 유지보수 또는 장비의 작동에 사용되는 재료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에너지, 연료, 공장, 장비, 상품의 최종 구성요소에 들어가지 않는 물품 등이 있다. 무역 협정에 따라 이 요소는 역내산 또는 역외산으로 간주될 수 있다.
 - x. 소매용 포장과 포장재료의 취급에 관한 규칙: 그러한 규정은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받기 위한 가치비율 또는 세 번변경기준을 계산할 때 그러한 재료가 어떻게 취급되어야할지를 규정한다.
 - xi. 직접 운송: 대부분의 협정은 원산지 지위를 신청하는 물품은 해당 국가에서 수입국으로 직접 운송되어야한다는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특정 서류의 제출을 조건으로 무역협정에 특정한 완화 규정이 규정될 수 있다.

제2조

(수입신고서 제출 시 제출)

(가) 수입자 이름

(나) 수입신고서 번호 및 일자

(다) 수입신고서가 접수된 세관

(라) 특혜관세를 신청한 물품

일련번호	품목명	세 번(여덟자리)
------	-----	-----------

제3조

(본 정보는 물품 수입 전에 소지하여야 함)

제1부:

- 수입된 물품의 생산과 관련하여 원산지에서 이루어진 생산 공정을 간략하게 서술하세요. 원산지 규정에 명시된 원산지결정기준 중 어떤 것을 기준으로 신청하는지 기재하십시오. 예를 들어 WO, RVC + CTH/CTSH 또는 CTH 혹은 CTSH 또는 RVC 등이 있습니다.

[WO: 완전하게 획득된 상품, RVC: 역내가치비율, CTH: 4단위 변경기준, CTSH: 6단위 변경기준, CC: 2단위 변경기준]

주1: 물품을 “완전 생산품”으로 신청한 경우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분류될 수 있는지 명시하십시오. 무역협정마다 특정 규정에 그러한 절차를 열거하고 있으며 그 절차는 협정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예시:

- 당사국의 영토 내에서 수렵 또는 딛사냥에 의하거나 당사국의 내수 또는 영해 내에서 행하여진 어로 또는 양시에 의하여 획득된 상품
- 선행하는 호에 언급된 상품으로부터 가공선탁에서 생산된 상품. 다만, 그러한 가공선탁은 당사국에 등록되거나 등기되고 그 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주2: 물품이 완전 생산품이 아닌 경우, 원산지에서 이루어진 제조/가공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품목명	생산 공정	원산지 결정기준
1.		
2.		

제2부:

(해당하는 원산지결정기준이 완전 생산품이 아닌 경우, 각 수입품마다 별지에 작성)

- 본 요청에 해당하는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역내산 재료/원자재 별로 다음의 정보를 기재하십시오. 원산지 재료/원자재가 사용되지 않은 경우 “없음”으로 표시하셔야 합니다.

역내산 재료/원자재 품목명	최종물품 생산자 제조 여부	역내 제3자 생산자 생산 여부	제3자로부터 조달된 경우 최종물품 생산자의 규칙 준수 여부 및 해당 원자재의 원산지 증빙 서류 구비 여부
	(예/아니오)	(예/아니오)	(예/아니오)
1.			
2.			

수입품 품명과 세번(여덟 자리):

주 : 최종물품의 제조에 사용된 모든 원자재는 그 원산지가 확인될 수 없을 경우 역외산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2.

가.	요청 대상 물품이 역내산인지 결정하는데 최소허용수준 조항이 사용되는가?	○ 예 ○ 아니오 ‘예’로 답한 경우, 그러한 재료와 그 백분을 또는 양을 기술하십시오.
----	---	---

나.	요청 대상 물품이 역내산인지 결정하는데 누적 조항이 적용되는가?	○ 예 ○ 아니오 ‘예’로 답한 경우 그 누적 방식과 범위를 기술하십시오.
다.	물품이 역내산인지 확인하는데 간접재료/중립재, 포장재료 등 기타 추가적 기준이 사용되었는가?	○ 예 ○ 아니오 ‘예’로 답한 경우, 사용된 기준을 기재하십시오: 해당하는 재료를 기술하십시오:
라.	원산지결정기준이 가치비율을 기반으로 하는가?	○ 예 ○ 아니오 ‘예’로 답한 경우 다음을 기재하십시오. (1) 역내가치비율(%): (2) 부가가치에 해당하는 요소: (예: 재료, 수익, 노동, 간접비 등)
마.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에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었는가?	○ 예 ○ 아니오 ‘예’로 답한 경우, 물품 생산에 사용된 역외산 재료/원자재의 HS 코드를 기재하십시오:
바.	요청 대상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데 공정 기준이 적용되었는가?	○ 예 ○ 아니오 ‘예’로 답한 경우 적용된 기준을 기재하십시오:
사.	원산지증명서가 소급 발급되었는가?	○ 예 ○ 아니오 ‘예’로 답한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십시오:
아.	해당 탁송품이 원산지에서 직접 운송되었는가?	○ 예 ○ 아니오 ‘아니오’로 답한 경우, 해당 물품이 해당 협약의 조항에 부합함이 확인되었는가? 물품이 규정된 직접 운송 조건을 충족했음이 어떻게 확인되었는가

[F. No. 15021/18/2020(국제관세과)]
(Ananth Rathakrishnan)
Deputy Secretary of the Government of India

12. 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규정의 집행 규칙 [CAROTAR, 2020] FAQ

Q1. CAROTAR의 별지서식인 Form 1은 수입 시점에 제출해야 하나요?

A1. 관세법 제28DA조는 특혜관세를 신청한 경우 수입자가 수입품의 원산지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소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Form 1은 수입자가 물품의 원산지를 분석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수입자는 세관 신고서 제출 시점에 Form 1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신고된 원산지에 대한 의심이 있을 시 세관원이 수입자에게 원산지 관련 세부사항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 수입자는 원산지 증빙서류와 함께 해당 서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Q2. 제 회사는 수입신고서를 다수 제출하기 때문에 수입신고서마다 Form 1을 제출하면 분량이 매우 방대해집니다. 제출을 면제받을 수 있나요?

A2. Form 1에서 요구하는 세부사항은 공정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따라서 생산 공정이 변하지 않는 한 동일 물품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생산 공정이나 가공방법에 변화가 없는 한 동일물품에 대한 Form 1을 제출할 때 같은 정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입신고서 제출 시점에 Form 1을 세관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재차 강조 드립니다

Q3. 규칙에 규정된 모든 정보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도 특혜관세를 신청하여 물품을 수입할 수 있나요?

A3.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경우 인도 세관이 수출국 검증 당국에게 원산지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절차가 상대적으로 더 오래 걸립니다.

Q4. 수출자로부터 모든 정보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A4. 세관원이 제5조의 정보를 요청했으나 수입자가 이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세관원은 다음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 제6조의 국제 검증을 개시합니다. 이러한 경우 검증 종료 시까지 특혜관세대우는 중지될 수 있으며, 규칙에 명시된 대로 보증증서와 담보를 통해 물품에 관세가 잠정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제8조제1항에 명시된 대로 특혜관세신청을 한 수입자가 이후에 제출한 모든 수입신고서의 심사를 검증합니다. 따라서 원산지 관련 정보를 소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수입자가 수입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된 원산지에 대한 의심이 있을 경우에는 국제 검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수입자의 후속 수입은 관세청 위험관리시스템을 통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수입자는 최선을 다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일 의무를 준수하고, 물품 수입 이전에 원산지 관련 정보를 소지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조치를 전반적인 업무 프로세스에 포함시키고 물품조달 결정을 내리는 시점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5. 물품의 원가분석표와 같은 영업비밀도 제공해야 하나요?

A5. 규칙에서 원가분석정보나 고유한 생산 공정에 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다면 제출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에 해당하는 구성요소” [Form 1 제3절 제2부 2번 항목의 라]를 알아야 하는 요건에 있어, 수입자가 정확한 수치를 알 것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재료, 노동, 수익 등 역내 부가가치 계산에 고려되는 주요 요소에 대해서만 기술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부가가치가 대부분 원산지 재료의 가격으로 인해 또는 수익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부사항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 세관이 수출당사국 검증당국에 접촉할 것입니다.

Q6. Form 1(제3절)은 생산 공정을 기록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생산 공정”은 복잡한 기술적 세부사항까지 포함하면 매우 상세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간략하게 기술할 수도 있습니다. Form 1에 생산 공정을 어떤 방식으로 적어야 하나요?

A6. 수입자는 어떤 원산지기준에 따라 역외산 물품이 필요한 변형을 거쳤는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규정된 변형요건이 6단위 세 번 변경이라면 수입자는 증류, 구성요소의 조립, 스탬핑, 절삭 등의 공정을 통한 해당 요건의 충족 여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생산 공정은 규정된 원산지 기준이 충족되는 방식이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다면 간략하게 기록될 수 있습니다.

Q7. 제4조와 관련해 어떤 원산지 증빙서류를 구비해야 하나요?

A7. 본 규칙에서는 그에 대한 특정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원산지 증빙서류는 원산지와 관련한 여러 사항을 보여주는 수출자로부터 받은 이메일부터 수출당사국에서 물품이 거치는 공정을 보여주는 생산현장 사진까지 다양할 수 있습니다.

Q8. 제7조의 동일한 물품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A8. 수출자나 생산자의 물품이 규정된 원산지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판정되는 경우, 이 판정 결과가 동일한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동일한 물품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X 생산자가 A 국가에서 텔레비전과 냉장고를 생산하고, 검증을 통해 해당 생산자가 수행한 생산 공정이 냉장고에 적용되는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난 경우, 그 결과는 X 생산자에 의해 생산된 A 국가 산 냉장고의 이후 수입에 적용될 것입니다.

검증 결과는 X 생산자가 제조한 텔레비전이나 A 국가에서 다른 생산자에 의해 제조된 냉장고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Q9. 이전 탁송품이 제3조와 관련해 특혜관세가 배제된 경우 동일한 물품에 특혜관세 적용이 배제되나요?

A9. 아닙니다. 제3조의 시나리오를 주의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3조 특혜관세대우 배제 조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원산지증명서가 불완전한 경우 등 협정 자체에 규정된 절차

또는 조건이 준수되지 않았을 때 원산지 검증 없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한편, 제7조(동일한 물품)는 원산지기준 불충족 판정 시에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Q10. 무역협정과 CAROTAR 2020이 상충할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A10. 수입자의 의무는 무역협정이 아니라 국내법에서 발생합니다. 그러나 무역협정의 원산지 관련 조항은 관세율법 제5조에 협정별 원산지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국내법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CAROTAR의 제8조 제3항은 상충하는 범위 내에서 원산지 규정이 우선함을 명확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주의: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13. 일본의 RCEP 협정 관련 질의응답

< RCEP 전반 >

Q1. RCEP 협정에 관한 자료(절차, 양식, 품목별 원산지규칙 등)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 세관 홈페이지 중 (1)과 (2)의 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1)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관한 자료(2022년 1월 발효)
<https://www.customs.go.jp/kyotsu/kokusai/gaiyou/rcep/rcep.htm>
(2) 원산지규칙포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https://www.customs.go.jp/roo/information/rcep.htm>

주요 게시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협정 본문·부속서(품목별 원산지규칙, 필요적 기재사항)
- 현재 채택하고 있는 원산지 증명제도
- 원산품신고서·원산품신고명세서 양식 건본 및 기재요령
- 「자기신고제도」 이용 안내
- 홈페이지에 있는 원산지증명서 등의 취급
-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일람
- NACCS 원산지증명서 식별코드 등 입력방법
- 설명회 자료 및 동영상
- 문의처 일람

Q2. RCEP 협정에 관한 사항에 대한 문의처를 알려주세요.

- 아래의 페이지에 정리되어 있으므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jp/kyotsu/kokusai/gaiyou/rcep/rcep_renraku.html

Q3. RCEP 협정 발효국은 어느 나라인가요?

- 일본, 중국, 호주, 뉴질랜드,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의 10개국 간에는 2022년 1월 1일에 발효되었습니다. 한국은 2022년 2월 1일에 발효됩니다.

Q4. RCEP 협정 발효 후에도 CPTPP, 일-ASEAN 협정 등의 적용이 가능한가요?

- RCEP 협정과 일-ASEAN 협정을 비롯한 기존의 경제연휴협정은 각각 개별적인 국제협약으로서 병존하기 때문에 RCEP 협정 발효 후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세울 관계 >

Q5. RCEP 협정세율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 최신판 실행관세율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jp/tariff/index.htm>

Q6. RCEP협정 체결국별 관세인하 기간과 개시시기를 알려주세요.

- 체결국은 협정 발효일(2022년 1월 1일)에 1회차 관세인하를 실시합니다. 일본, 인도네시아, 필리핀의 3개국은 2022년 4월 1일부터 2회차 관세 인하를 실시하고, 이후 매년 4월 1일에 관세가 인하됩니다. 상기 3개국 이외의 체결국은 2023년 1월 1일에 2회차 관세인하를 실시하고, 이후 매년 1월 1일에 관세가 인하됩니다.

< 원산지절차 관계 >

Q7. RCEP 협정에서 채택하고 있는 증명제도에 대해 알려주세요.

- 아래 링크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jp/roo/information/rcep/syoumei_tetsuzuki.pdf

Q8. 각 증명제도의 원산지증명서 등에는 소정의 양식이 있나요?

- 원산지증명서 양식은 체결국 간에 공통양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바른 양식은 우측 상단에 「Form RCEP」이라고 기재된 것으로 기타 양식은 RCEP 협정세율 적용을 위한 원산지증명서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인정수출자에 의한 자율증명 및 수출자·생산자 또는 수입자에 의한 자기신고의 경우, 원산지를 증명하기 위한 양식은 협정 상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협정 부속서 3B에 정해진 필요적 기재사항이 망라되고 영어에 의해 작성되며 인보이스 등과의 관련성이 명기되어 있다면 일본세관에서는 임의의 양식으로 작성된 것도 수리합니다. 일본세관 및 경제산업성 홈페이지에 게시한 양식 견본에는 각 필수 기재 항목의 영어표기와 일본어 번역을 병기하고 있으므로, 필요에 따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체결국에 따라서는 자국의 인정수출자가 작성하는 원산지증명 양식을 독자적으로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원산지증명서 양식

https://www.customs.go.jp/roo/information/rcep/rcep_syoumeisyoyoushiki.pdf

- 자기신고 견본 양식

<https://www.customs.go.jp/roo/information/rcep.htm>

Q9. 원산지증명서는 종이 원본이 필요하나요? 전자발급 받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NACCS로 수입신고 할 때는 다른 EPA와 동일하게 200dpi 이상의 해상도로 컬러스캔한 전자적 기록에 의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전자발급에 의한 원산지증명서에 대해서도 상기 컬러스캔과 동일하다면 전자적 기록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Q10. 각 체결국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어디인가요?

- 세관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jp/kyotsu/kokusai/seido_tetsuduki/syomeisyo.htm#ha_kyu

Q11. 인정수출자에 의한 원산지신고를 이용하는 경우 수출체약국에서 당해 수출자를 인정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나요?

- 수출체약국에서 정당하게 인정을 받았는지 여부는 수출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Q12. 제3자 증명제도의 인영, 서명, 인정수출자 리스트는 공개되니까?

○ 인영, 서명, 인정수출자 리스트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이는 RCEP 협정 이외의 경우도 동일합니다.

Q13. 원산품신고서는 수입신고 시마다 작성해야 합니까?

○ 매번 작성하셔야 합니다.

Q14. 발효일 전에 선적된 화물에 대해 RCEP 협정세율을 적용해서 수입신고할 수 있나요?

○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수입신고하는 경우에는 협정 발효 후에 발급된 원산지증명서 등을 신고 시에 제출하시면 적용 가능합니다. 단, 협정 발효일로부터 180일 이내(2022년 6월 29일까지)에 수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Q15. 과세가격 총액이 20만 엔 이하인 경우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생략해도 되나요?

○ 원산지증명서 제출 생략이 가능하나, 수입하는 물품이 RCEP 협정 상의 원산품이라야 하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잘 확인한 후 수입신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Q16. 하나의 인보이스로 RCEP 협정세율과 일-ASEAN 협정세율 병용이 가능합니까?

○ 가능합니다. 이 경우 각각 협정에서 필요로 하는 원산지증명서 등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Q17. RCEP 협정세율과 관세잠정조치법 제8조에 근거한 관세 경감은 병용이 가능합니까?

○ 가능합니다.

Q18. NACCS에서 원산지증명서 식별코드 입력방법을 알려주세요

○ 다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jp/kyotsu/kokusai/gaiyou/rcep/rcep_naccsnyuuryoku.pdf

Q19. 수출자로부터 받은 원산지증명서를 확인하였는데 QR코드만 기재되어 있고 인영과 서명이 없습니다.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인영과 서명이 없는 원산지증명서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수출자에게 인영과 서명이 있는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송부하도록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Q20. 수출자로부터 받은 원산지증명서를 확인하였는데 기재사항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세관에서는 아래 링크에 있는 「홈결이 있는 원산지증명서 등의 취급」에 근거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원산지증명서의 기재사항에 홈결이 있는지 수입신고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홈결이 발견된 경우에는 수출자에게 수출채약국의 발급기관으로부터 홈결이 없는 원산지증명서 재발급 받도록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jp/roo/procedure/index.htm>

Q21. 원산품신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내용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 세관에서는 원산품신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의 질문에 대해 상담해 드리고 있으나, 원산품신고서 등의 사전심사는 접수하고 있지 않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관 홈페이지에 게시된 기재요령이나

「자기신고제도 이용절차(RCEP 협정)」를 참고하여, 작성한 원산품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홈결이 없는 지 잘 확인하신 후에 수입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 EU 현행 인증수출자제도 주요내용 안내

1. 추진 배경

- ☐ EU는 신EU관세법(UCC) 발효(' 16.5.1)를 통해 포괄인증수출자(Single Authorization)제도를 폐지하고 개정된 인증수출자제도를 운영
- ' 16.5.1이후 발급된 C/O는 개정 인증수출자제도를 적용하도록 일선세관에 안내 필요 ※ 「EU의 포괄인증수출자제도 업무지침(' 15.3.20.시행)」 적용불가

2. 주요 내용

☐ 관련규정

- 「신EU관세법(Union Customs Code 952/2013)」 제26조
- 「인증수출자 안내서(Guidance on Approved Exporters)」 제3.3.4장
- 「신EU관세법 시행규칙(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2015/2447)*」 제67조
- * 포괄인증수출자를 규정한 「EU관세법 시행규칙 1207/2001」은 폐지되고 동 규정으로 대체

☐ 규정내용

- ① Union Customs Code Regulation 952/2013 (UCC) 제26조
 - 하나의 관세당국에 의한 관세법 적용과 관련한 결정(인증 등)은 EU 관세영역 전역에서 유효
- ② Guidance on Approved Exporters 3.3.4장
 - 인증수출자는 다른 회원국에서 상품을 수출하려는 경우 그 물품에 대한 특혜 원산지를 입증해야 함(원산지증빙자료 기록·보관 의무)
 - 한 회원국에서 인증수출자로 인증되면 추가신청 필요없이 모든 회원국에서 인증이 유효함
- ③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2015/2447 제67조
 - 유럽연합의 관세영역에서 설립된 수출자는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인증수출자 인증을 신청할 수 있음
 - 인증수출자 인증은 EU가 체결한 협정의 원산지조항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한 인(人)에게만 부여

<新UCC 관련 EU집행위 회신(' 20.6월)>

- 인증수출자 인증은 EU 전역에서 유효하므로, 인증수출자는 **자신의 소재국 외의 EU회원국에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서도 원산지신고서 작성 가능**
- 인증수출자와 타 회원국 수출서비스 제공자는 **특수관계(본사-지사 관계 등)가 아니어도 무관**

- ☐ [검증요청 대상국] 검증요청은 물품을 수출한 국가가 아닌, 인증수출자 인증서를 발행한 국가에 송부해야 함

*

* (근거) 「Models of Authorization numbers issued for Approved Exporters」

<UCC 개정 전후 내용 비교>

구분	UCC 개정(' 16.5.1) 전	UCC 개정(' 16.5.1) 후
포괄인증 신청여부	• 자신이 설립된 국가 외의 회원국에서 물품을 수출하는 자는 포괄인증수출자 인증을 별도로 받아야 함	• 한 회원국에서 인증수출자로 인증되면 추가신청 필요없이 EU영역 전역에서 인증이 유효함
수출국·회사 명시 의무	• 인증서에 다른 회원국인 수출국 및 회사명을 반드시 기재	• 인증서에 수출국·회사명을 별도로 기재할 필요 없음
통지의무	• 포괄인증 신청받은 관세당국은 인증 후 관련 회원국 관세당국에 통지의무 있음	• 한 회원국에서 인증되면 자동으로 EU 전역에서 인증이 유효하므로 관련 회원국에 별도로 통지

할 필요 없음

참고 1 : EU 인증수출자제도의 관련규정 및 주요내용 비교

UCC 개정(' 16.5.1) 전	UCC 개정(' 16.5.1) 후
<관련규정 및 주요내용>	
	• Union Customs Code Regulation 952/2013 (UCC) (' 16.5.1.부터 발효) - 제26조(전 EU영역에 미치는 결정의 효력) 관세법 적용과 관련한 결정은 EU의 관세영역 전역에서 유효하다.
	• Guidance on Approved Exporters 3.3.4장 3.3.4장 다른 회원국에서의 수출 - 신청자는 다른 회원국으로부터 상품을 수출하려는 경우, 그 물품에 대한 특혜 원산지를 입증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야 함(원산지증빙자료 기록·보관의무) 추가신청은 필요없고, 한 회원국에서 인증수출자로 인증을 받으면 모든 회원국에서 유효함
• EU Council Regulation 1207/2001 (EU관세법 시행규칙) (3) 자신이 설립된 국가 이외의 하나 이상의 회원국으로부터 상품을 수출하며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원산지 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기업들은 때때로 상품 수출이 이루어지는 각 회원국별로 개별 인증신청을 해야 한다. 제8조 1. 자신이 설립된 국가 이외의 회원국으로부터 물품을 빈번히 수출하는 수출자는 그러한 물품을 포괄하는 인증수출자 지위를 획득할 수 있다.	•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2015/2447 (신EU 관세법 시행규칙) - 제67조 1. 유럽연합의 관세영역에서 설립된 수출자는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인증수출자 인증을 신청할 수 있음 - 제67조 3. 인증수출자 인증은 EU가 체결한 협정의 원산지조항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한 인(人)에게만 부여
• Models of Authorization numbers issued for Approved Exporters (' 14.2월) - 검증요청은 물품을 수출한 국가가 아닌, 인증수출자 인증서를 발행한 국가에 송부 - 한 EU회원국에서의 인증수출자 인증은 몇개의(several) 다른 회원국에서도 유효	• Models of Authorization numbers issued for Approved Exporters (' 18.6월) 좌동

참고 2 : EU의 현행 인증수출자 제도 관련 규정(요약)

I. 관련 규정 ○ Union Customs Code Regulation 952/2013 (UCC)(' 16.5.1.부터 발효) ○ Guidance on Approved Exporters 3.3.4장 ○ Models of Authorization numbers issued for Approved Exporters ○ 신EU관세법 시행규칙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2015/2447) II. 주요 내용 ① Union Customs Code Regulation 952/2013 (UCC) 제26조 ○ 관세법 적용과 관련한 결정은 EU의 관세영역 전역에서 유효 ② Guidance on Approved Exporters 3.3.4장 ○ 인증수출자 신청자는 다른 회원국에서 상품을 수출하려는 경우 그 물품에 대한 특혜 원산지
--

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함(원산지증빙자료 기록·보관 의무)

- 추가신청은 필요없고, 한 회원국에서 인증수출자로 인증을 받으면 모든 회원국에서 유효함 (UCC 제26조)

[3] Models of Authorization numbers issued for Approved Exporters

- 검증요청은 물품을 수출한 국가가 아닌, 인증수출자 인증서를 발행한 국가(인증번호의 시작 국가코드 2자리로 쉽게 인식)에 송부해야 함

[4] 신EU관세법 시행규칙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2015/2447)

○ 제61조 공급자원산지신고서와 신고서의 사용

- 원산지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공급자가 수출자 또는 무역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공급자는 원산지신고서로 해당정보를 제공하며, 장기 공급자원산지신고서(제62조)를 제외하고 탁송화물 단위로 개별 작성
- 공급자는 해당 탁송화물과 관련된 상업송장, 인도증서 또는 해당 상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는 기타 상업서류에 신고서를 작성
- 공급자는 언제든지 신고서 제공 가능, 상품이 인도된 이후에도 가능

○ 제63조 공급자원산지신고서의 작성

- 공급자원산지신고서에는 공급자의 수기 서명이 있어야 함. 단, 공급자원산지신고서와 송품장이 모두 전자적 수단에 의해 작성되는 경우, 이러한 서류들은 전자적으로 인증될 수 있거나
- 또는 공급자가 자신의 모든 전자적 공급자원산지신고서에 대해 자신이 수기로 서명한 것과 똑같은 책임을 지겠다는 서면약속을 수출자 또는 무역업자에게 할 수 있음

○ 제64조 정보증명서 INF4의 발행

- 세관당국은 수출자 또는 무역업자에게 공급자원산지신고서의 정확성과 진위성을 증명하는 정보증명서 INF4를 공급자로부터 받아 올 것을 요청할 수 있음
- 공급자가 신청하면 공급자원산지신고서가 작성된 회원국의 세관당국은 정보증명서 INF4를 발행, 세관당국은 이를 위해 검증을 수행
- 세관당국은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정보증명서 INF4를 발행
- 세관당국은 정보증명서 INF4 신청서를 최소 3년 이상 보관

○ 제66조 공급자원산지신고서의 확인

- 수출자가 세관당국의 요청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정보증명서 INF4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수출국 세관당국은 공급자원산지신고서가 작성된 회원국 세관당국에 원산지 확인 요청
- 수출국 세관당국은 공급자원산지신고서가 작성된 회원국 세관당국에 모든 정보와 서류를 보내고 문의하는 이유를 명시
- 공급자원산지신고서가 작성된 회원국 세관당국은 공급자에게 증거를 요청하거나 또는 해당 신고서에 대한 적절한 검증을 수행
- 검증을 수행한 세관당국은 조속히 정보증명서 INF4로 결과 통보
- 검증요청일로부터 150일 이내에 회신이 없거나 회신이 원산지 결정에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지 않은 경우, 수출국 세관당국은 공급자원산지신고서를 근거로 작성된 원산지증명을 무효라고 공표

○ 제67조 인증수출자 인증

- 유럽연합이 역외국가와 체결한 특혜협정에서 원산지증명서의 양식을 인증수출자가 작성한 송품장신고서 또는 원산지신고서로 규정한 경우, 유럽연합의 관세영역에 설립된 수출자는 이러한 신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인증수출자 인증을 신청할 수 있음
- 인증수출자 인증은 유럽연합이 연합의 관세영역 밖에 있는 특정 국가 또는 영역과 체결한 협정 등의 원산지규정을 충족한 인(人)에게만 부여함
- 세관당국은 인증수출자에게 세관인증번호를 부여하고, 인증번호는 특혜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되며, 앞 두 자리는 인증을 부여한 회원국의 ISO 3166-1 알파벳 두 자리 국가코드로 함

※ 서식 등 참고자료

1. 수출자용 표준 질의서(안)【서식】

대한민국 관세청
원산지조사 표준 질의서(안)
(수출자 작성용)

본 질의서는 한-OO FTA협정 제O조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관세법’) 제OO조에 따라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여부와 원산지증명서의 정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각 질문에 대한 답변은 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할 수 있으며, 귀사가 보관하고 있는 별도 양식의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정보가 요구 될 수 있습니다.

부문 I ▶ 업체 현황

1. 업체 개요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업종/업태	
사업장	(본사 주소)		전화	
			팩스	
			홈페이지	
	(공장 주소)		전화	
임직원	(총원) _____명 (관리직) _____명	(임원) _____명 (생산직) _____명	(기타) _____명	
수출입 현황	구 분	수출	수입	
	주요물품			
	상대국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내역	귀사는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업체입니까? ☐ 예 ☐ 아니오 (인증수출자 인증번호)			
2. 원산지관리 현황				
원산지관리 업무인력	☐ 외부전문가 활용(관세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원산지관리사, 컨설팅업체) 업체명(성명) _____ / ☎ _____			
	☐ 자체직원활용(성명 _____ / ☎ _____), 원산지업무경력 _____ 년 기타 원산지관리 조직 및 인력 현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산지관리체제	원산지관리 매뉴얼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보유하고 있다면 원산지관리 매뉴얼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산지관리를 위한 별도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원산지관리책임자	(소속)	(직위)	(성명)	(전화) _____ (e-mail) _____

부문Ⅱ ▶ 원산지증명서

◆ 조사대상물품(한-○○ FTA)

원산지증명서번호	증명서발급일자	수출신고번호	수출신고일자	품명	HS부호	수량 또는 중량

1. 원산지증명서

1-1. 조사대상 원산지증명서는 귀사가 작성 또는 발급 신청한 것입니까? ☐ 예 ☐ 아니오 ☐ 모름

1-2. 조사대상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주체를 표시하여 주십시오. ☐ 원산지증명서발급기관()
☐ 수출자 ☐ 생산자
☐ 상대국수입자 ☐ 기타()

1-3.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원산지증명서의 작성일 또는 발급일로부터 5년(한-중 FTA는 3년)간 보관대상자료(붙임 질의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참고)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귀사는 보관대상자료를 어떠한 형태로 보관하고 있습니까?
☐ 종이서류 ☐ 자료전달매체 (예: USB 등) ☐ 자료보관매체 (예: 외장하드 등) ☐ 기타()

1-4. 조사대상 원산지증명서 발급관련 보관자료 ☐에 √ 표시 후, 원산지증명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산지증명서 ☐ 수출신고수리필증 ☐ 원산지증명된 송품장 (제3국 발급 송품장 포함)
☐ 원산지소명서 ☐ 원산지소명서 기재내용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 정보 ☐ 기타 ((붙임 질의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참고)

2. 품목분류

2-1. 조사대상물품의 품목분류(HS부호)를 어떻게 결정합니까? ☐ 자체결정 ☐ 수입자통지 ☐ 관세사자문
☐ 관세청사전회시 ☐ 기타()

2-2. 조사대상물품의 품목분류 결정에 근거가 되는 자료 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있는 경우에 한함)

3. 운송관계

3-1. 운송경로를 알 수 있는 해당 자료에 대해 ☐에 √ 표시 후, 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B/L ☐ AWB ☐ 적하목록 ☐ 기타자료()

3-2. 특혜관세적용 수출물품 운송과정에서 비당사국(역외국·제3국)을 경유 또는 환적하였습니까? ☐ 예 ☐ 아니오

3-3. 상기 3-2 질문에서 ‘예’를 선택한 경우, 특혜관세 적용 수출물품이 경유국 또는 환적국에서 세관통제 하에 있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관련 입증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증내용 기재, 답변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3-4. 비당사국에서 하역, 재선적, 포장, 상품의 양호한 상태보존, 당사국으로 운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작업 이외의 작업이나 공정을 수행하였습니까? ☐ 예 ☐ 아니오

3-5. 상기 3-4 질문에서 ‘예’를 선택한 경우, 세관 통제하에서 수행한 구체적 작업내용 또는 공정내용을 기재하고, 관련 입증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업 내용 기재, 답변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문Ⅲ ▶ 원산지 결정기준(조사대상 원산지증명서별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공통사항

4-1. 귀사는 조사대상물품을 생산하는 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4-2. 4-2-1. 상기 4-1 질문에서 ‘예’를 선택한 경우, 생산시설의 위치(주소)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4-2-2. 조사대상물품에 사용된 귀사의 주요 생산설비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설비명칭	대수	용도	설치장소

4-2-3. 귀사의 조사대상물품 제조공정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 답변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4-3. 상기 4-2 질문에서 ‘아니오’를 선택한 경우, 생산자(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5.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5-1. 조사대상물품의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귀사가 조사대상물품에 적용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선택하여 아래 ☐에 √ 표시하여 주십시오.
선택기준의 경우 해당 기준 중 어느 하나만을 표시, 조합기준의 경우 해당 기준을 모두 표시하시면 됩니다.
☐ 완전생산기준 ☐ 세번변경기준 ☐ 역내가치기준 ☐ 가공공정기준 ☐ 기타()

5-2. 조사대상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여부를 확인하였습니까? ☐ 예 ☐ 아니오

5-3. 상기 5-2. 질문에서 ‘예’를 선택한 경우,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를 설명하여 주십시오.
(※ 답변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6. 보충적 원산지결정기준

6-1. 6-1-1. 조사대상물품 또는 그 원재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역외국가로 수출하여 가공한 뒤에 다시 국내로 수입한 사실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6-1-2. 있다면 그 역외국가, 역외수출물품, 역외가공공정, 반입물품 등 내용을 기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6-2. 상기 6-1. 질문 외 원산지결정의 특례를 활용한 경우 내용을 기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 예시: 누적, 미소기준, 중간재, 대체가능물품, 간접재료, 부속품, 포장재료, 세트물품 등)

부문Ⅳ ▶ 책임자 서명·확인

이 서류에 기재된 내용은 사실이고 정확하며 기재된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이 서류 또는 이와 관련한 허위진술 또는 중대한 사실 누락에 대해서는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업체명	작성일자	
대표자 직책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책임자 직위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질의서 작성 요령 및 유의사항>

- 본 질문서를 통해 수집된 기업의 비밀정보는 원산지결정, 관세 등 세금의 부과징수 등 협정 및 법령에 정한 목적으로만 이용되며, 귀사의 동의 없이 외부에 제공되지 않습니다.
- 수출자 및 생산자는 다음의 보관대상자료를 원산지증명서의 작성일 또는 발급일로부터 5년(한-중 FTA의 경우 3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협정(법령)별	근거조항	보관대상자료
FTA관세법	제15조	☐ 수출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

FTA 관세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호	가. 원산지증명서(전자문서 포함) 사본 나.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류 사본 다. 수출신고필증 라.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 (수출자의 명의로 수입신고한 경우만 해당) 마. 수출거래 관련 계약서 바. 해당 물품 및 원재료의 생산 또는 구입 관련 증빙서류 사. 원가계산서·원재료내역서·공정명세서 아. 당해 물품 및 원재료의 출납·재고 관리대장 자. 생산자가 해당물품의 원산지증명을 위하여 작성 후 수출자에게 제공한 서류 □ 생산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 가. 수출자 또는 계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해당물품의 원산지증명을 위하여 작성·제공한 서류 나. 수출자와의 물품공급계약서 다. 상기 「수출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 중 ‘라’ 항목부터 ‘아’ 항목까지의 서류 라.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를 공급하거나 생산한 자가 해당 재료의 원산지증명을 위하여 작성한 후 생산자에게 제공한 서류
--------------	--------------	--

3.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정보

- 가.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하는 물품은 세번변경 관련 입증서류
(예: 원료구입명세서, 자재명세서(BOM), 생산공정명세서 등)
- 나.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는 물품은 비원산지재료, 원산지재료 및 수출물품의 가격관련 입증서류
(예: 자재명세서(BOM), 원료구입명세서, 원료수불부, 원가산출내역서 등)
- 다. 원산지(포괄)확인서 또는 수출용 원재료의 국내제조(포괄)확인서
- 라. 그 밖에 해당 물품의 생산자·생산장소·생산공정 등 원산지의 확인이 객관적으로 가능한 서류

4. 물품의 HS부호는 각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6단위 또는 10단위 등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물품의 수량 또는 중량은 해당 물품의 HS부호체계에서 정하는 단위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kg, g, CR, m, m², m³, l, ml, MW, u, 2u, DZ, TU 등

2. FTA 협정적용에 필요한 주요 환적국 세관통제 확인서류 안내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최근 FTA 협정적용 환적화물에 대한 원산지검증 결과, 환적국 세관 통제확인서류(비가공증명서 등) 미비로 FTA 특혜관세 적용을 배제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FTA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FTA 체결국간 직접운송 되어야 하나 불가피하게 비당사국에서 환적할 경우에는 단순환적을 증빙하는 환적국 세관통제확인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타국에서 발행하는 세관통제확인서류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우리 세관에서 확보한 주변 환적국의 세관통제확인서류(비가공증명서, 재수출증명서, 환적허가서 등) 양식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환적국에서 동 서류를 발급받아 FTA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동 서류 외에도 인정 가능한 서류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세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附件 2

优惠贸易项下《未再加工证明》申请书

1. 申请人名称和地址 Name & Address of Applicant		中国海关未再加工证明 CHINA CUSTOMS CERTIFICATE OF NON-MANIPULATION	
2. 货物信息 Details of Consignment			
商品描述 Description of Goods		数量/毛重 Quantity/ Gross Weight	
原产地证据文件号码 Certificate of origin document		用途 Usage of the Certificate	
原产国 (地区) Country of Origin of Goods		最终目的国 (地区) Country of Final Destination	
抵港时间 Date of Discharge in China		进境运单号码 Inward Bill of Lading No./ Air Waybill No.	
出境时间 Date of Departure from China		出境运输工具 (已知) Outgoing Vessel/ Vehicle/ Flight No.(as far as known)	
3. 申请人声明 Declaration by Applicant			
I/We undertake that: The goods do not undergo any other operation in China other than unloading, splitting up of loads for transport reasons, and reloading, or any operation necessary to preserve it in good condition.			
Authorized Signature: Name: Designation: Date: (company stamp)			
4. 海关证明 Certification by China Customs			
We certify that, to the best of our knowledge, the declaration by the applicant is true and correct.			
Accepted date: Authorized Signature: Name: Date of issue:			



붙임

중국 재수출증명서 [전국 발급, 단순환적 증빙 가능]

ORIGINAL

1. Exporter (full name and address)		CERTIFICATE NO.		
2. Consignee (if required)		CERTIFICATE OF RE-EXPORT		
3. Departure date (on or about)				
4. Destination port		5. Vessel / Flight / Vehicle No.		
6. Place of loading CHINA		7. Port of discharge		
8. Final destination if on carriage		9. Country of origin		
10. Marks and numbers of packages	11. Description of goods, number and kind of packages	12. H.S. Code	13. Quantity or weight	14. Number and date of invoices
15. It is hereby certified that the goods described above were from _____ - exported from China. 				
Verification: origin.customs.gov.cn				


 SHANGHAI CUSTOMS
 中华人民共和国
 上海
 ORIGIN
 海关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청도해관 인장



상해해관 인장



Original

1. Name & Address of Shipping Agent/ Freight Forwarder		 SINGAPORE CUSTOMS 55 Newton Road #07-01 Revenue House Singapore 307987 Tel : 6355 2000 CERTIFICATE OF NON-MANIPULATION No.	
2. Details of Consignment			
Item(s) Description		Quantity/ Gross Weight	
Country of Origin of Goods		Outward Bill of Lading No./ Air Waybill No.	
Date of Discharge in Singapore		Date of Departure from Singapore	
Country of Final Destination		Outgoing Vessel/ Vehicle/ Flight No.	
3. Declaration by Shipping Agent/Freight Forwarder			
I/We undertake that a) the goods indicated, when transhipped via Singapore, will not undergo operations beyond the following: i. ensuring the preservation of goods in good condition for the purpose of transport or storage; ii. facilitating shipment or transportation; and iii. packaging or presenting goods for sale. b) all the information provided is true and correct.			
Name: Designation: Date: (This is an electronically submitted declaration. No signature is required.)			
4. Certification by Singapore Customs			
We certify that, to the best of our knowledge, the declaration by the shipping agent/ freight forwarder is true and correct.			
This Certificate is issued without any prejudice or liability whatsoever on our part arising from any circumstances.			
Authorised Signature: Name: Designation: Date:		 (stamp)	

確認書號碼:
Certificate No.:



香港海關
Hong Kong Customs and Excise Department

中轉確認書
Certificate of Non-manipulation

致 申請者:

為符合內地與不同國家及地區所簽訂的自由貿易協定下的「直接運輸」之要求，下列貨物在香港停留期間曾接受香港海關之監管。詳情如下：
To Applicant:

To fulfill the requirement of "Direct Consignment" under the Free Trade Agreement (FTA) signed by the Mainland with other countries and regions, the following consignment has been under the control of the Hong Kong Customs in Hong Kong. Details are as follows:

第一部分 貨物詳情 Part I Consignment Particulars

來源地: Place of Origin:				
目的地: Place of Final Destination:				
香港運送方式: Mode of movement in HK:	從 空運/陸運/海運* () 至 空運/陸運/海運* () From Air/Land/Sea* () To Air/Land/Sea* ()			
抵港船隻/車輛/ 航班編號* Incoming Vessel/Vehicle/ Flight no.:	提單 / 空運提單 (首程運輸工具) 號碼* Bill of Lading/Airway Bill (1 st conveyance):	實際抵港 日期/時間: ATA:		
離港船隻/車輛/ 航班編號* Outgoing Vessel/Vehicle/ Flight no.:	提單 / 空運提單 (尾程運輸工具) 號碼* Bill of Lading/Airway Bill (2 nd conveyance):	預計離港 日期/時間: ETD:		
貨物名稱: Description of goods:				
件數/重量: Pieces/Weight:				
施加海關封條詳情 Details of affixing Customs seal	貨櫃號碼/載具號碼/ 運輸車輛號碼: Container no./ULD no./ (ULD vehicle no.)	封條號碼: Seal no.	施加封條地點: Place of affixing seal	施加封條日期/時間: Date/Time of affixing seal
	抵港 Incoming			
	離港 Outgoing			
貨物有否在香港被處理: Consignment further handled in Hong Kong?	☐ 有 ☐ 裝貨/卸貨 ☐ 重新包裝 ☐ 儲存 ☐ 其他 ☐ 保持貨物原本狀態) ☐ 否 ☐ Yes ☐ Vanning/Devaning ☐ Repacking ☐ Storage ☐ Others ☐ Original status of consignment maintained) ☐ No			
文件查閱: Document check:	☐ 提單 ☐ 船單 ☐ 原產地證明書 (號碼:) ☐ 其他 () ☐ Bill of Lading ☐ Manifest ☐ Country of Origin (No.:) ☐ Others ()			

第二部分 貨主資料 Part II Particulars of Cargo Owner

公司名稱: Company Name:			
公司地址: Address:			
電話號碼: Telephone no.:	傳真號碼: Fax no.:	電郵地址: E-mail address:	
負責人姓名: Name:		日期: Date:	

香港海關印鑑:
Chop of Hong Kong Customs:



海關查詢電話:
Enquiry tel. no.:

(852) 1152 0233

*請到本處問及刪去 (Delete as appropriate)

海關關長

for Commissioner of Customs and Excise

簽發日期:
Date of issue:

驗證碼: _____
(Confirmation No.)

編號(No.): _____

轉口貨物無加工證明書

Certification of Non-processing of Transshipment Cargo

Import	進口日期(Import Date): _____ 航運班次/船名航次(Flight No./Vessel name & Voyage No.): _____ 主提單號碼(Master Delivery Order/Bill of Lading No.): _____ 分提單號碼(House Delivery Order/Bill of Lading No.): _____ 進口海關通關號碼(Import registration No.): _____	國外裝貨地點(Piece of Loading): _____ 給單號碼(Manifest No.): _____
Export	預定出口日期(Estimate Departure Date): _____ 航運班次/船名航次(Flight No./Vessel name & Voyage No.): _____ 主提單號碼(Master Air Waybill/Bill of Lading No.): _____ 分提單號碼(House Air Waybill/Bill of Lading No.): _____ 出口海關通關號碼(Export registration No.): _____	國外目的地(Destination): _____ 裝貨單號碼(S/O No.): _____

茲證明下列轉口貨物在臺停留/轉口期間未進行任何加工作業。

This is to certify that the goods have not been subjected to any processing during their stay/transshipment in Taiw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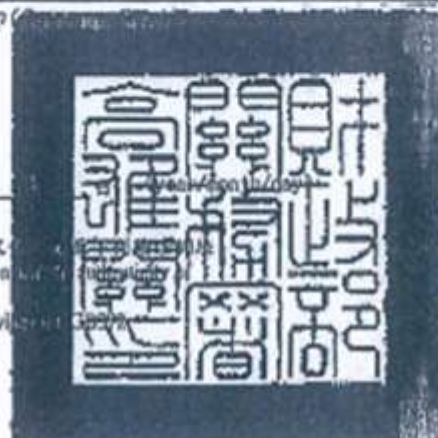
※ 本證明書係由電腦自動列印，無需關員簽章。如需驗證本文，請逕向本局查詢。

Cargo	貨物處理方式(Cargo Treatment): ☒ 維持原貨狀態(Non-Repacking) ☐ 重新包裝(Repacking) 貨物名稱(Brief Description): _____	件數(Quantity): _____ 重量(Weight): _____
Other Declared Items	貨櫃號碼(Container No.): _____ 其他申報事項(Other): _____	

申請人(Applicant):

長榮國際股份有限公司

海關核印



簽發日期(Date of Issue): 西元 2020 年 4 月

本轉口貨物無加工證明書由電腦自動列印，無需關員簽章。如需驗證本文，請逕向本局查詢。
This is a computer generated certificate, and no authorized stamp is required. To confirm the validity of this document, please visit the following website:

※ <https://portal.nv.nai.gov.tw/PPL/RedirectorNonLoginAction?appId=APGQ&privilege=1>
※ Function Code: GB372

□ 일본 적려허가통지서

<SEA/EXP>		積戻し許可通知書 (大額)		1 / 1	
代表統番 0303	申告種別 LR	区分 [1] 1	あて先税関 HAKATA	提出先 01	申告年月日 2019/07/03
				申告条件[]	申告番号 635 4292 4640
搬入[]					
輸出者 住所					
電話 税関事務管理人					
仕向人 住所					
代理人					
国コード 通関士コード					
輸出管理番号			貨物個数		
保税地域			貨物重量		
最終仕向地			蔵置税関		
積込港			事前検査済貨物等識別[]		
積載予定船(機)名			貿易形態別符号		
出港予定年月日			調査用符号		
記号番号			船積(搭載)確認 (関税[A] 内国消費税[] その他[Y])		
輸出承認証等区分 NO					
輸出承認証番号等			仕入書番号		
(1)			仕入書番号(電子)		
(2)			仕入書価格		
(3)			F O B 価格		
(4)			通貨レート		
(5)			B P R 合計		
(6)					
(7)					
(8)					
(9)					
(10)					
(11)					
(12)					
(13)					
(14)					
(15)					
構成 1 枚 1 欄					
バンニング場所					
住所					
コンテナ本数 本					
記事(税関)					
記事(通関)					
記事(荷主)					
荷主セクションコード					
荷主 Ref No.					
社内整理番号					
利用者整理番号					
輸出者(入力)					
税関通知欄					
関税法第75条の規定により、あなたが申告した貨物の積戻しを許可します。					
許可年月日 2019/07/03 博多税関支署長					
保税運送承認期間 2019/07/03 ~ 2019/07/09 又は運送貨物の発送の日を起算日とする同期間					
(注) この申告に基づく処分について不服があるときは、その処分があったことを知った日の翌日から起算して					
3 月以内に税関長に対して再調査の請求又は財務大臣に対して審査請求をすることができます。					
< 01 欄 > 統合先欄					
品名					
統計品目番号					
数量(1)					
数量(2)					
B P R 按分係数					
B P R 金額					
輸出令別表					
外為法第48条[]					
関税法70条関係(1) (2) (3) (4) (5)					
減免戻税条項符号 (法)					
内消費税免符号 -					

□ 일본 적려화물등록정보

積戻貨物登録情報

輸出管理番号

B/L番号

登録者

蔵置場所

輸出者

輸出者名

申告予定者

品名

個数

重量

容積

經由地

船会社

積載予定船舶

航海番号

入港年月日

積出港

出港予定年月日

船卸港

荷受形態

荷渡形態

社内整理番号

記号番号

最終仕向地

ブッキング番号

コンテナ番号

< 일본 환적시 한-미 FTA 인정 사례 >

- (물품) 일본 보세창고 보관 후 한국으로 수입되는 미국産 냉동명란
- (인정 서류) ① 적려허가통지서 + ② 적려화물등록정보 + ③ 구간별 운송서류 ‘미국→일본→한국’ (단, 미국→일본간 다수의 운송서류가 국내 수입시 합쳐질 경우에는 ‘④ 화물취급통합 등록자료’ 추가)

* ②, ④ 서류의 경우, 일본 전자통관시스템(NACCS)을 통해 확인 가능

중화인민공화국 진구화물보관단 (단순환적 증빙 불가)

- 676 -

3. RCEP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간이 인증 신청서 및 협약서

RCEP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간이 인증 신청서		
※ 세관기재란(For Official Use Only)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전화번호
	팩스	전자우편
	주소	
인증번호		
품목번호		
※ 인증번호는 유효한 한-중, 한-아세안, 한-베트남 FTA 품목별 인증수출자인 경우 해당 인증번호를 기재하며, 차수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한-중, 한-아세안, 한-베트남 FTA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서 인증받은 품목에 대하여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원산지소명서, 협약서, 원산지관리 전담자 증빙자료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세관장 귀하		
동 신청에 따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은 협정이 발효된 날 또는 인증받은 날로부터 5년간 유효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RCEP 품목별 인증수출자 간이 인증 협약서		
협약인	상 호	
	사업자번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기존 인증수출자 인증 내역	해당 협정 (한-중, 한-아세안, 한-베트남 중)	
	품목번호	
	인증수출자번호	
○ 상기 본인은 상기 기존 인증수출자 인증 내역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신청 시 제출하는 모든 서류에 기재된 사항에 대하여 허위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에 따른 모든 법적 책임이 본인에게 있음을 협약합니다. 년 월 일 작성 · 협약인 (인 또는 서명) ○○ 세관장 귀하		

4.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개정 서식

ANNEX 3-C
CERTIFICATE OF ORIGIN

ORIGINAL

1. Exporter's name and address, country:			Certificate No.: CERTIFICATE OF ORIGIN Form for Korea-China FTA Issued in _____ (see Overleaf Instruction)			
2. Producer's name and address, country:						
3. Consignee's name and address, country:						
4. Means of transport and route (as far as known): Departure Date: Vessel/Flight/Train/Vehicle No.: Port of loading: Port of discharge:			5. Remarks:			
6. Item number	7. Marks and Numbers on packages	8. Number and kind of packages; description of goods	9. HS code (Six-digit code)	10. Origin criterion	11. Gross weight, quantity (Quantity Unit) or other measures (liters, m3, etc.)	12. Number and date of invoice
13. Declaration by the exporter: 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at the above details and statement are correct, that all the goods were produced in (Country) and that they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in the FTA for the goods exported to (Importing country) Place and date, signature of authorized signatory			14. Certification: On the basis of control carried out, it is hereby certified that the information herein is correct and that the goods described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in the Korea-China FTA. Place and date, signature and stamp of authorized body			

Overleaf Instruction

Certificate No.: Serial number of Certificate of Origin assigned by the authorized body.

- Box 1: State the full legal name and address (including country) of the exporter in either Korea or China.
- Box 2: State the full legal name and address (including country) of the producer. If goods from more than one producer are included in the certificate, list the additional producers, including their full legal name and address (including country). If the exporter or the producer wishes to maintain this information as confidential, it is acceptable to state "AVAILABLE UPON REQUEST." If the producer and the exporter are the same, please complete field with "SAME."
- Box 3: State the full legal name and address (including country) of the consignee resident in either Korea or China.
- Box 4: Complete the means of transport and route and specify the departure date, transport vehicle No., port of loading, and port of discharge.
- Box 5: In case where a good is invoiced by a non-Party operator, the full legal name, country of the non-Party operator shall be indicated in this box. In case of issuance of certificates retroactively, should bear the words "ISSUED RETROACTIVELY", and in case of a certified true copy, should bear the words "CERTIFIED TRUE COPY of the original Certificate of Origin number ____ dated ____".
- Box 6: State the item number.
- Box 7: State the shipping marks and numbers on packages, when such marks and numbers exist, if the shipping marks are images or symbols, other than letter or numerical number, shall state "IMAGE OR SYMBOL (I/S)", otherwise shall state "NO MARKS AND NUMBERS (N/M)"
- Box 8: The number and kind of packages shall be specified. Provide a full description of each good. The description should be sufficiently detailed to enable the goods to be identified by the Customs Officers examining them and relate them to the invoice description and to the HS description of the good. If the goods are not packed, state "IN BULK".
- Box 9: For each good described in Box 8, identify the HS tariff classification to six-digit.
- Box 10: The exporter must indicate in Box 10 the origin criteria on the basis of which he claims that the goods qualify for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in the manner shown in the following table:

Origin Criteria	Insert in Box 10
The good is wholly obtained or produced entirely in a Party, as set out and defined in Article 3.4 (Goods Wholly Obtained or Produced) or required so in Annex 3-A (Product Specific Rules of Origin).	WO
The good is produced entirely in a Party, exclusively from materials whose origin conforms to Chapter 3 (Rules of Origin and Origin Implementation Procedures).	WP
The good is produced in a Party, using non-originating materials that conform to a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a regional value content, a process requirement or other requirements specified in Annex 3-A (Product Specific Rules of Origin).	PSR
The good is subject to Article 3.3 (Treatment of Certain goods)	OP

- Box 11: Gross weight in Kilos should be shown here. Other units of measurement e.g. volume or number of items which would indicate exact quantities may be used when customary.
- Box 12: Invoice number and date of invoice should be shown here. In case where a good is invoiced by a non-Party operator and the number and date of the commercial invoice is unknown, the number and date of the original commercial invoice, issued in the exporting Party, shall be indicated in this box.
- Box 13: This box shall be completed, signed and, dated by the exporter.
- Box 14: This box shall be completed, signed, dated, and stamped by the authorized person of the authorized body.

Note: The instructions hereon are only used for the purposes of reference to complete the Certificate of Origin, and thus do not have to be reproduced or printed in the overleaf page. The instruction hereon can be printed or reproduced in the official language of a Party.